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938호

2023. 12. 28.(목)



서울특별시

목 차

◈ 자치법규 등

[조 례]

제8981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 6

◈ 고 시

제2023-568호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신길13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8
제2023-569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삼육대학교) ····· 41
제2023-570호 미성동 건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 46
제2023-571호 2024년 장기수선계획 운영 교육 위탁·운영 고시 ····· 47
제2023-572호 2024년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교육 위탁·운영 고시 ····· 51
제2023-57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77
제2023-574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 변경 고시 ····· 80
제2023-575호 번동3지역(번동 41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81
제2023-576호 수유동1지역(수유동 52-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88
제2023-577호 2024년 서울특별시 예산 ····· 94
제2023-578호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긴등마을)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95
제2023-579호 양평 제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13
제2023-580호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장위 8·9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37
제2023-581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 205
제2023-582호 개봉3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7
제2023-583호 북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결정 고시 ····· 237
제2023-584호 도시관리계획(연신내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44
제2023-588호 방배제7주택재건축 정비계획(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333

제2023-589호 도시관리계획(개봉역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구로구 개봉동 170-35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 ····· 351
제2023-590호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375
제2023-591호 화곡1동 354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406
제2023-592호 화곡1동 359번지 일대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416
제2023-593호 화곡1동 1087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426
제2023-594호 화곡6동 1130-7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437
제2023-595호 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0·11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452
제2023-596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양천구 신월동 102-33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 ····· 485
제2023-597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강서구 화곡1동 424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 ····· 488
제2023-598호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정정 고시 ····· 491
제2023-599호 도시관리계획[공항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492
제2023-600호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용두1구역 6지구)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509
제2023-601호 성산지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성산시영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형도면 고시 ····· 536
제2023-602호 우신빌라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559
제2023-603호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고시 ····· 583
제2023-604호 거여동 555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584
제2023-605호 둔촌동 77-41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604
제2023-606호 신월동 102-33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617
제2023-607호 도시관리계획(개봉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631
제2023-608호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 657

◈ 공 고

제2023-3500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 및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 704

제2023-3513호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수시분 부과 공시송달 공고 ····· 706
제2023-3516호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713
제2023-3519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명령 공고 ····· 718
제2023-3520호 과학관 신규등록 공고(강서별빛우주과학관) ····· 719
제2023-3522호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1회차 위반 경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 720
제2023-3523호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723
제2023-3527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727
제2023-3531호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 728
제2023-3533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 729
제2023-3537호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 730
제2023-3548호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731
제2023-3550호 공인 재등록 및 폐기 공고 ····· 732
제2023-3551호 종합공사시공업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 733
제2023-3552호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 734
제2023-3553호 공간정보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735
제2023-3558호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계획 예고 ····· 737
제2023-3560호 종합공사시공업 처분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 790
제2023-3564호 2024년 서울특별시 민방위강사 선발 공고 ····· 791
제2023-3565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802
제2023-3567호 차량운행제한위반 부과·독촉 및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 804
제2023-3576호 도시계획시설사업(낙산근린공원 조성) 실시계획인가(변경)을 위한 열람공고문 공시송달 공고 ····· 807
제2023-3577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871
제2023-3583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등록 공고 ····· 879
제2023-3584호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 공고 ····· 880
제2023-3586호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881
제2023-3587호 『상암 택지개발지구내』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사업용지 공급 공고 ····· 886
제2023-3590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공고 ····· 890
제2023-3592호 2023년도 제12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 891
제2023-3597호 도시계획시설사업(낙산근린공원 조성) 실시계획인가(변경)을 위한 열람공고문 공시송달 공고 ····· 895
제2023-3598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 공고 ····· 959
제2023-3599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960
제2023-3601호 공인 재등록 및 폐기 공고 ····· 1009

◈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

제2023-10호 2023년 수시 재산변동사항 공고 ····· 1010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규칙]

제1071호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 1015
제1072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 1021
제1073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 ····· 1023
제1074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199
제1075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 1202

[교육훈령]

제21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 1209

◈ 구 고 시

제2023-210호 도시계획시설사업(이촌소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
(용산구) ····· 1212
제2023-211호 도시계획시설사업(꿈나무소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용산구) ····· 1217
제2023-212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용산구) ····· 1223
제2023-117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사업기간) 고시
(중랑구) ····· 1225
제2023-143호 미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소공원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강북구) ····· 1228
제2023-173호 도시계획시설사업(거북골근린공원)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은평구) ····· 1235
제2023-182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영등포구) ····· 1239
제2023-15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작성 고시(동작구) ····· 1247
제2023-15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작성 고시(동작구) ····· 1250
제2023-15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작성 고시(동작구) ····· 1253
제2023-15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작성 고시(동작구) ····· 1258
제2023-15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작성 고시(동작구) ····· 1261
제2023-15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작성 고시(동작구) ····· 1266
제2023-15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작성 고시(동작구) ····· 1273
제2023-15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작성 고시(동작구) ····· 1276
제2023-16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작성 고시(동작구) ····· 1279

제2023-183호 도시계획시설사업(서리풀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서초구) ····· 1282
제2023-184호 도시계획시설사업(방배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서초구) ····· 1285
제2023-185호 도시계획시설사업(우면산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서초구) ····· 1287
제2023-188호 신반포4지구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소공원(27호) 조성계획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서초구) ····· 1289
제2023-189호 신반포4지구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소공원(29호) 조성계획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서초구) ····· 1295
제2023-190호 신반포4지구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소공원(30호) 조성계획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서초구) ····· 1301
제2023-15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송파구) ····· 1307
제2023-21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시장)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강동구) ····· 1309

◈ 구 공 고

제2023-1537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공고(동대문구) ····· 1312
제2023-1654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완료 공고(성북구) ····· 1314
제2023-1619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공고(도봉구) ····· 1321
제2023-2226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공사완료 공고(송파구) ····· 1323

자치법규 등

[조 례]

◈ 서울특별시조례 제8981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3년 12월 28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5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10년”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재직기간 중 5일, 10년”으로, “휴가”를 “장기재직휴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4일”을 “5일”로 한다.

제14조의3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4(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 (즉, 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삭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9년 6월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4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한 장기재직휴가의 사용 기한을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법령 폐지 및 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 제고

나. 장기재직휴가와 학습휴가 확대를 통해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활력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에 따른 조문 정비

- 재해구호휴가 신설에 따라 중복 조항 삭제 (제14조의2제7항)
-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확대에 따라 관련 조문 및 별표 정비 (제14조의3 및 [별표4])
- 시간외근무수당 연가 전환 제도 신설 반영 (제14조의4)

나. 관련 법령 폐지 및 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제14조의2제5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폐지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관련 법령 사항 변경

다. 특별휴가(장기재직휴가) 확대 (제14조의2제6항)

-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5일 부여

라. 특별휴가(학습휴가) 확대 (제14조의2제9항)

- 학습휴가 일수 확대 (4일→5일)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68호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신길13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45호 (2007.11.29.)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된 이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13호(2009.8.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47호(2009.9.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56호(2010.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25호(2010.4.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69호(2010.7.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93호(2011.4.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58호 (2011.9.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77호(2011.9.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02호(2011.10.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53호(2011.1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6호(2012.1.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14호(2012.5.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7호(2013.1.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2호(2013.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15호 (2013.4.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43호(2013.5.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56호(2013.5.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87호(2013.6.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97호(2013.9.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37호(2013.10.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74호(2013.1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01호(2013.11.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47호(2013.12.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82(2014.8.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13호.(2014.9.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51호(2014.10.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55호.(2015.2.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54호 (2015.8.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29호(2016.08.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49호(2017.04.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57호(2017.07.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61호(2017.12.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69호(2018.08.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28호(2019.04.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54호(2019.05.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38호 (2019.07.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79호(2019.11.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90호(2019.1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98호(2019.1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62호(2020.04.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90호(2020.07.0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143호(2021.03.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35호(2021.05.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22호(2023.06.08.)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신길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변경)을 고시하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길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 유형 · 위치 · 면적 및 지정목적 (변경없음)

구분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개발기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준연도	목표연도
기정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영등포구 신길동 236번지일대	673,603.4	-	673,603.4	2006	2023

* 기정 정정 사항(서고제2023-222호) : 촉진지구 감소 면적 합 오기로 인한 총 면적 (673,603.7㎡→673,603.4㎡) 정정

2. 신길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 적(㎡)			비 율(%)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673,603.4	-	673,603.4	100.00
계획기반시설	소 계	241,449.7	감) 1,720.0	239,729.7	35.59
	공공청사	275.2	감) 118.0	157.2	0.02
	문화/복지	6,217.9	-	6,217.9	0.92
	학교시설	64,485.2	-	64,485.2	9.57
	공원·녹지	79,084.2	감) 1,602.0	77,482.2	11.51
	공공공지	839.9	-	839.9	0.12
	도 로	90,514.3	-	90,514.3	13.44
	철 도	33.0	-	33.0	0.01
주거용지	소 계	398,865.9	증) 1,720.0	400,585.9	59.47
	공동주택	398,865.9	증) 1,720.0	400,585.9	59.47
기타 종교시설 등		33,287.8	-	33,287.8	4.94

* 기정 정정 사항(서고제2023-222호) :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내 학교시설 조서와 부합하게 면적 정정(64,524.2㎡→64,485.2㎡), 공원 · 녹지 조서와 부합하게 면적 정정(81,898.9㎡ →79,084.2㎡), 도로(89,073.2㎡→90,514.3㎡) 오기 정정, 촉진지구 감소 면적 합 오기로 인한 총 면적(673,603.7㎡→673,603.4㎡) 정정

※ 상기면적은 추후 측량성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변경사유 :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공공재건축 정비사업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나. 인구 · 주택 수용계획(변경)

구 분		계획 세대			계획 인구수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존치지역	개별주택	-	-	-	-	-	-	-
	공동주택	482	-	482	1,301	-	1,301	존치지역 등
촉진구역 (공동주택)	소 계*	9,831	증) 321	10,152	26,545	증) 866	27,411	-
	40㎡ 이하	681	-	681	1,839	-	1,839	-
	40㎡~60㎡	4,338	증) 176	4,514	11,713	증) 475	12,188	-
	60㎡~85㎡	4,306	증) 216	4,522	11,627	증) 582	12,209	-
	85㎡ 초과	506	감) 71	435	1,366	감) 191	1,175	-
계		10,313	증) 321	10,634	27,846	증) 866	28,712	-

* 기정(세대수 및 인구수) 정정 사항(서고제2021-235호) : 존치지역(482세대, 1,301명)외 촉진구역별 세대수, 인구수 미반영에 따라 정정(촉진구역 세대수 : 9,823 →9,831세대, 인구수 : 26,521→26,545명)
* 세대당 인구수 2.7인 (최초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시 기준, 202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 변경사유 :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내 공공재건축 사업에 따른 세대수 증가

다.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등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라. 공원 · 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계획(변경)

구 분	명 칭	개 소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공원 녹지 시설	소 계	35	34	79,084.2	감) 1,602.0	77,482.2	
	근린공원	3	3	37,459.7	-	37,459.7	기 설치 2개소, 1개소 신설(조성 완료)
	어린이공원	2	2	3,614.0	-	3,614.0	기 설치 1개소, 1개소 신설(조성 완료)
	소공원	9	9	17,322.2	-	17,322.2	9개소 신설 (8개소 조성 완료)
	녹 지	21	20	20,688.3	감) 1,602.0	19,086.3	21개소 → 20개소 신설 (20개소 조성 완료) (금회 폐지녹지:미개설 시설)

* 기정 정정 사항(서고제2023-222호) :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내 근린공원(39,399.7㎡→37,459.7㎡), 소공원(18,127.2㎡ →17,322.2㎡), 녹지(19,076.3㎡→ 20,688.3㎡) 총 면적 미반영 정정 / 공원 · 녹지 총 35개소의 총 면적(80,217.2㎡→ 79,084.2㎡) 오기 정정
* 기정 비고란 정정 사항(서고제2023-222호) : 모든 공원녹지시설 기설치 → 촉진지구 지정 전 기설치 개소 외 촉진지구를 통한 신설사항으로 표기하되, 조성완료 항목 추가 표기
※ 변경사유 :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공공재건축 정비사업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연결녹지 폐지)

마. 교통계획(변경없음)

바. 경관계획(변경없음)

사.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아.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변경)

1) 촉진구역 전체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역 명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촉진구역)	계	493,245.6	-	493,245.6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7,154.6	-	17,154.6	3.5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3,729.3	증) 50.0	3,779.3	0.8	
	제2종일반주거지역	427,941.7	증) 650.0	428,591.7	86.8	
	제3종일반주거지역	41,132.0	감) 14,971.0	26,161.0	5.3	
	준주거지역	-	증) 14,271.0	14,271.0	2.9	
	근린상업지역	3,288.0	-	3,288.0	0.7	

2) 촉진구역별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

구 역 명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길3 재정비촉진구역	소 계	38,502.9	-	38,502.9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4,029.6	-	4,029.6	10.5	
	제2종일반주거지역	34,473.3	-	34,473.3	89.5	
신길5 재정비촉진구역	소 계	76,629.9	-	76,629.9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2,765.0	-	2,765.0	3.6	
	제2종일반주거지역	73,864.9	-	73,864.9	96.4	

구 역 명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길7 재정비촉진구역	소 계	93,728.6	-	93,728.6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93,728.6	-	93,728.6	100.0	
신길8 재정비촉진구역	소 계	32,287.7	-	32,287.7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127.6	-	1,127.6	3.5	
	제2종일반주거지역	31,160.1	-	31,160.1	96.5	
신길9 재정비촉진구역	소 계	74,091.1	-	74,091.1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1,997.4	-	11,997.4	16.2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448.3	-	448.3	0.6	
	제2종일반주거지역	61,645.4	-	61,645.4	83.2	
신길10 재정비촉진구역	소 계	32,123.0	-	32,123.0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6,111.0	-	6,111.0	19.0	
	제3종일반주거지역	26,012.0	-	26,012.0	81.0	
신길11 재정비촉진구역	소 계	50,759.3	-	50,759.3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47,471.3	-	47,471.3	93.5	
	근린상업지역	3,288.0	-	3,288.0	6.5	
신길12 재정비촉진구역	소 계	52,159.0	-	52,159.0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516.0	-	516.0	1.0	
	제2종일반주거지역	51,643.0	-	51,643.0	99.0	
신길13 재정비촉진구역	소 계	15,120.0	-	15,120.0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증) 50.0	50.0	0.3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650.0	650.0	4.3	
	제3종일반주거지역	15,120.0	감) 14,971.0	149.0	1.0	
	준주거지역	-	증) 14,271.0	14,271.0	94.4	

구 역 명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길14 재정비촉진구역	소 계	27,844.1	-	27,844.1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27,844.1	-	27,844.1	100.0	

※ 용도지역 변경은 사업시행을 전제로 수립된 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효력 발생
※ 변경사유 :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공공재건축 정비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1.04.13.)
- 제101조의6 :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현행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3)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호 다목의 준주거지역*
- 실사용대지(획지)는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기반시설(도로 및 공원)은 최초 용도지역 및 연접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환원

자.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 · 건폐율 및 높이등에 관한 건축계획(변경)

구 역 명	주용도	상한용적률 (%)	건폐율 (%)	높이계획		비고
				공동주택 (평균/최고)	최고높이 (m)	
신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300%이하	60%이하	21/32	112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300%이하	60%이하	22/29	94	
신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300%이하	60%이하	22/27	97	
신길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300%이하	60%이하	22/27	91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300%이하	60%이하	22/29	103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사업)	공동주택	300%이하	50%이하	- /29	103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232%이하	60%이하	19/25	91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300%이하	60%이하	20/29	103	

구 역 명		주용도	상한용적률 (%)	건폐율 (%)	높이계획		비고
					공동주택 (평균/최고)	최고높이 (m)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사업)	기정	공동주택	250%이하	50%이하	- /22	82	
	변경	공동주택	450%이하*	60%이하	- /49	170	공공재건축
신길1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300%이하	60%이하	22/28	94	

※ 신길3,5,6,7,8,9,12,14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의 기준용적률 및 상한용적률은 소형주택을 추가로 건립하는 경우임 (서울시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촉진계획 변경 가이드 라인' (2010.6)에 따름)

※ 변경사유 : 신길13구역 내 공공재건축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으로,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등의 계획 내용 반영

*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의 상한용적률은 공공재건축 정비사업의 공공주택을 확보하여 완화받는 법적상한용적률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 6(신설)에 의거하여 공공재건축사업(「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공공재건축사업 포함)을 시행하는 경우 상향되는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상한까지 정할 수 있음

차.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변경)

구 분	구역면적 (㎡)	기반시설면적(㎡)					비고
		계획기반 시설등면적 ①	계획기반 시설내 국공유지 ②	기존기반 시설내 국공유지 ③	유상매입 시설* ④	순부담면적(㎡) (①-②-③-④)	
신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38,502.90	7,723.00	1,070.40	1,313.04	-	5,339.56 (13.9%)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76,629.90	17,164.30	207.90	1,576.00	-	15,380.40 (20.1%)	
신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93,728.60	21,524.00	-	3,830.00	4,199.70	13,494.30 (14.4%)	
신길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32,287.70	6,652.90	44.00	909.60	-	5,699.30 (17.7%)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74,091.10	20,308.20	4,348.90	7,110.10	-	8,849.20 (11.9%)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사업)	32,123.00	6,171.00	13.00	3,172.00	-	2,986.00 (9.3%)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50,759.30	10,996.70	1,493.00	2,564.00	-	6,939.70 (13.7%)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52,159.00	14,656.40	644.20	4,273.40	-	9,738.80 (18.7%)	

구 분		구역면적(㎡)	기반시설면적(㎡) 계획기반 시설등면적 ①	계획기반 시설내 국공유지 ②	기존기반 시설내 국공유지 ③	유상매입 시설* ④	순부담면적(㎡) (①-②-③-④)	비고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사업)	기정	15,120.00	2,569.00	247.00	547.00	-	1,775.00 (11.7%)	
	변경	15,120.00	*2,688.70	56.00	359.60	-	2,273.10 (15.0%)	
신길1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27,844.10	5,002.30	52.00	1,071.00	-	3,879.30 (13.9%)	
계		493,245.60	112,887.50	7,929.40	26,178.74	4,199.70	74,579.66 (15.1%)	

* 유상매입 시설 : 계획 기반시설 중 유상매입 시설 면적

※ 변경사유 :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내 공공재건축사업에 따른 공공기여 항목 및 면적 변경, 무상양도 대상 재산정

*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내 계획 기반시설 면적은 토지(도로, 공원) 외 공공청사 복합화(입체적결정)에 따른 부속토지 및 건축물 환산 면적(249.4㎡), 공공임대업무시설 부속토지 및 건축물 환산 면적(498.8㎡), 공영주차장 부속토지 및 건축물 환산 면적(193.4㎡)포함하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1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공공시설' (공공임대주택(정비계획 용적률 완화를 위한 공공기여)) 부속토지 및 건축물 환산면적(898.1㎡)도 포함함

※ '①계획 기반시설 면적 → ①계획 기반시설등 면적' 변경 : 기반시설 순부담율에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포함하기 위함

카.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변경)

구분	구 분	계획세대수(세대)	분양주택(세대)	임대주택(세대)	비고
기정	합 계	9,831	8,227	1,604	-
변경		10,152	8,416	1,736	-
기정	신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799	649	150	-
기정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1,546	1,260	286	-
기정	신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1,722	1,533	189	-
기정	신길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641	522	119	-
기정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1,476	1,210	266	-
기정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사업)	812	734	78	-
기정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949	777	172	-
기정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1,008	824	184	-
기정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사업)	266	217	49	-
변경		587	405	*182	-
기정	신길1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612	501	111	-

※ 변경사유 :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공공재건축사업에 따른 계획세대수 변경

* 공공재건축사업의 법적상한용적률 완화를 위하여 제공하는 공공주택(공공분양,공공임대)중 공공에서 인수하여 분양하는 '공공분양' 도 공공에서 활용하는 주택(예:첫 집 주택등)으로 임대주택 항목으로 분류함

타. 재정비촉진사업 시행기간 동안의 범죄예방대책(변경없음)

파.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하.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없음)

거.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변경)

1) 신길3재정비촉진계획 정비계획(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2) 신길5재정비촉진계획 정비계획(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3) 신길7재정비촉진계획 정비계획(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4) 신길8재정비촉진계획 정비계획(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5) 신길9재정비촉진계획 정비계획(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6) 신길10재정비촉진계획 정비계획(주택재건축사업) (변경없음)
7) 신길11재정비촉진계획 정비계획(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8) 신길12재정비촉진계획 정비계획(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9) 신길13재정비촉진계획 정비계획(주택재건축사업) (변경)

가)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신길동 340-1일대	15,120	-	15,120	-

나)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신설)

추정비례율	•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종후자산 추정금액 - 추정사업비) / 종전자산 총액 X 100% • 추정비례율 : 94.81% ⇒ (4,032억 - 2,524억) / 1,590억 X 100% = 94.81% - 종후자산 추정금액 : 4,032억 - 추정 사업비 : 2,524억 - 종전자산 추정금액 : 1,509억
개별종전자산 추정액	• 개별 공시가격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개별 공시가격 확인 • 개별 공시지가 : 서울시 일사편리 부동산 정보조회 시스템에서 개별 공시지가 확인 - 공동주택 소유자 : 공동주택 공시가격 ÷ 현실화율(0.59)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토지평가액 포함) - 단독주택 및 토지소유자 : 개별공시지가 ÷ 현실화율(0.58) - 상가소유자 : 개략단가(약 330 ~ 1,100만원/㎡) X 연면적 (※상가 개략단가의 경우 인근 거래시세를 반영하여 추정하였으며, 토지평가액 포함)
추정분담금 산출	•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a)		추정 권리가액(b)	추정 분담금(a-b)
전용59㎡	6.20억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X 추정비례율(94.81%)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추정 권리가액 (+ : 부담 / - : 환급)
전용84㎡	8.76억		
전용104㎡	10.54억		

※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5,120	-	15,120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2,451	감) 1,602	849	8.3	-
	도 로	792	-	792	5.2	기부채납
	공 원	57	-	57	0.4	
	녹 지	1,602	감) 1,602	-	2.7	
택 지 (획 지)	소 계	12,669	증) 1,602	14,271	91.7	-
	13-1	12,551	증) 1,720	14,271	91.7	공동주택
	13-2	118	감) 118	-	-	공공청사 (토지→복합화)

라)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

(1) 교통시설

▌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3	71	12	집산도로	472 (145)	신길동 426-3 (신길동 340-1)	신길동 336-2 (신길동 340-4)	일반도로	-	서고105 (83.2.24)	-
기정	소로	2	8	8	집산도로	155 (40)	신길동 424-3 (신길동253-259)	신길동 340-1 (신길동253-254)	일반도로	-	서고445 (07.11.29)	-

※ 연장 및 위치 내( )는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내 수치임

▌주차장 결정 조서(신설)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주차장	공영주차장	신길동 340-13일대		증)800.0	800.0 (수평투영면적)	-	입체적결정

▌주차장①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입체적 결정 범위(규모)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주차장	신길동 340-13일대	수평투영면적(㎡)	-	증)800.0	800.0	-	건축물 복합화 (아파트 지하부 지하2층 주차장 복합화)
				높이(층)	-	증)지하2층	지하2층		

▷주차장 결정(신설)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주차장 (공영주차장)	• 공영주차장 신설 증) 800.0㎡	•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대상지 내 지하주차장에 20면을 확보하고, 공공성 확보 및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결정하고자 함

(2) 공간시설

▌공원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2	신길공원	근린공원	신길동 426-3 (신길동 425-31)	19,604.9 (57)	-	19,604.9 (57)	건고258 (82.7.12)	촉진지구 내:12,245.1㎡ 촉진지구 외:7,359.8㎡

※ ( )는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내 면적임

▌녹지 결정 조서(변경)

구분	도면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25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40-1 일대	1,602	감)1,602	-	서고445 (07.11.29)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녹지 (연결녹지)	• 연결녹지 폐지 감) 1,602㎡	• 촉진지구 내 일부 촉진구역 해제로 인한 전체 녹지축의 네트워크가 해제됨에 따라 연결녹지 기능의 보행공간은 유지하되(건축한계선 계획)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대체 공공시설 계획 (공공주택등)

(3) 공공·문화체육시설

▌공공청사 결정 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4	공공청사	-	신길동 340-4일대	118.0	감)118.0	-	서고445 (07.11.29)	파출소
신설	6	공공청사	-	신길동 253-259일대	-	증)420.0	420.0 (수평투영면적)	-	치안센터 (입체적 결정*)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따름

▌공공청사⑥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구분	입체적 결정 범위(규모)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6	공공청사	신길동 253-259일대	수평투영 면적(㎡)	-	증)420.0	420.0	-	건축물 복합화 (아파트 저층부 지상1층 공공청사 복합화)
				높이(층)	-	증)지상1층	지상1층		

※ 본 시설은 국공유지 일괄교환 대상 시설로 향후 교환 예정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공공청사	• 입체적 결정 : 건축물 복합화	• 공공청사 주용도(치안센터)를 고려하여 현황 및 간선변에서의 진출입이 용이한 위치로 신설 • 협소한 토지면적에서 건축물 내 복합화(지상1층부)를 통해 치안센터와 청소년 경찰학교의 용도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

마)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시설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관리사무소		영등포구 신길동 340-1번지일대	120	감) 15	105	지상
주민공동시설	주민공동시설		250	증) 375	625	지하
	지역문화센터		-	증) 95	95	지하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	증) 105	105	지하
	작은도서관		80	증) 80	160	지하
	보육시설(어린이집)		150	증) 255	405	지상
	실내형 어린이놀이터		-	증) 217	217	지하
	다함께돌봄센터		-	증) 70	70	지상
	경로당		150	증) 80	230	지상
	주민운동시설		-	증) 252	252	지하
	어린이놀이터		-	증) 610	610	지상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건축법」 등 관련법령 기준 적용

바) 건축물의 정비 · 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

(1) 기존건축물의 정비 · 개량계획(변경없음)

(2) 건축시설계획(변경)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구 역 구 분</th><th colspan="2">가구 또는
획지 구분</th><th rowspan="2">위 치</th><th rowspan="2">연면적(㎡)주)</th><th rowspan="2">주용도
(주된용도)</th><th rowspan="2">건폐율
(%)</th><th rowspan="2">용적률
(%)</th><th rowspan="2">평균층수/최고층수</th></tr>
<tr><th>명칭</th><th>면적(㎡)</th><th>명칭</th><th>면적(㎡)</th></tr>
<tr><td rowspan="3">기정</td><td rowspan="2">신길13
재정비
촉진구역</td><td rowspan="2">15,120</td><td>13-1</td><td>12,551</td><td>영등포구신길동
340-1번지 일대</td><td>31,203.04</td><td>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td><td>20.84</td><td>248.61</td><td>- / 22</td></tr>
<tr><td>13-2</td><td>118</td><td>영등포구신길동
340-4번지 일대</td><td>236이하</td><td>제1종근린생활시설
(동주민센터)</td><td>60이하</td><td>200이하</td><td>-</td></tr>
<tr><td>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td><td colspan="8">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합 계</th><th colspan="4">분양주택</th><th>임대주택</th></tr>
<tr><th>소 계</th><th>전용109.5㎡</th><th>전용84.9㎡</th><th>전용59.9㎡</th><th>전용59.9㎡</th></tr>
<tr><td>세대수</td><td>266</td><td>217</td><td>104</td><td>87</td><td>26</td><td>49</td></tr>
<tr><td>비율</td><td>100.0%</td><td>81.6%</td><td>39.1%</td><td>32.7%</td><td>9.8%</td><td>18.4%</td></tr>
</table>
•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가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경우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60% 이상
•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연면적에서 50%이상
• 임대주택 건설비율 : 증가된 용적률의 25% 임대주택 건설
</td></tr>
<tr><td>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td><td colspan="8">• 건축법, 주택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함
• 신길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 시행지침에 따름</td></tr>
</table>

주) 연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구 역 구 분</th><th colspan="2">가구 또는
획지 구분</th><th rowspan="2">위 치</th><th rowspan="2">용도</th><th rowspan="2">건폐율
(%)</th><th colspan="3">용적률(%)</th><th rowspan="2">높이(m)
(층수)</th></tr>
<tr><th>명 칭</th><th>면적(㎡)</th><th>명 칭</th><th>면적(㎡)</th><th>기준</th><th>정비계획</th><th>법적상한</th></tr>
<tr><td rowspan="4">변경</td><td>신길13
재정비
촉진구역</td><td>15,120</td><td>획지</td><td>14,271</td><td>신길동
340-1번지일대</td><td>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청사등</td><td>60</td><td>210</td><td>246.6</td><td>450.0</td><td>170
(49층)</td></tr>
<tr><td>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td><td colspan="10">• 주택공급계획 총 587세대
<table>
<tr><th colspan="2">구분(전용면적)</th><th>세대수</th><th>비율(%)</th><th>비고</th></tr>
<tr><td colspan="2">계</td><td>587</td><td>100.0</td><td></td></tr>
<tr><td rowspan="2">85㎡이하</td><td>60㎡이하</td><td>251</td><td>42.8</td><td>(공공주택 138세대)</td></tr>
<tr><td>60~85㎡이하</td><td>303</td><td>51.6</td><td>(공공주택 44세대)</td></tr>
<tr><td colspan="2">85㎡초과</td><td>33</td><td>5.6</td><td></td></tr>
</table>
• 85㎡이하(국민주택규모) 주택 전체세대수의 60%이상 건립(계획 94.4%)
• 주택규모 계획에서 공공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을 말함
-공공주택(촉진사업 의무)건설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름
-공공주택(공공기여)건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1항제3호, 동법시행령 제19조에 따름
-공공주택(공공분양,공공임대)건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6에 따름</td></tr>
<tr><td>심의완화사항</td><td colspan="10">•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 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6) : 법적상한용적률 450.0%</td></tr>
<tr><td>건축물의 건축선등에
관한 계획</td><td colspan="10">• 남서측변 5m, 북측변 3m
(※자세한 위치는 도면 참조)</td></tr>
<tr><td>기타사항에
관한 계획</td><td colspan="10">• 공공보행통로:남서측(12m도로)~북측(8m도로) 연계의 공공보행통로 폭원10m 계획
• 차량출입구: 남측 교차부 및 북서측 교차부의 중앙에 차량출입구 계획
(※자세한 위치는 도면 참조)</td></tr>
</table>

(3) 공공시설 기부채납 계획 및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기부채납 면적(㎡)		세부용도	관리청	비고
			대지지분	건축물연면적			
1	공공청사 (치안센터)	신길동 253-259 일대	113.7	420.0 (환산 135.7)	치안센터	서울특별시	국·공유지 일괄교환 예정
2	공공임대업무시설	신길동 253-259 일대	227.3	840.0 (환산 271.5)	-	서울특별시	
3	주차장	신길동 340-136 일대	116.5	800.0 (환산 76.9)	공용주차장	영등포구	

※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외 공공시설등 기부채납시설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 내용에 대하여 결정도서에 합의서 첨부
※ 향후 토지평가 및 건축계획등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 층고, 형태는 조정될 수 있으며, 세부용도에 대해서는 서울시 기부채납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추후 확정됨

사)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아)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감 예상세대수	홍수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	비고
기정	주택재건축사업	-	공동주택 재건축조합	-	-	-
변경	주택재건축사업 (공공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변경)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이내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동시행]	현황) 167세대 증) 420세대 변경) 587세대	-	-

자)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차)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가 구	면 적(㎡)	획 지			비 고
			구 분	위 치	면 적(㎡)	
기정	13	12,669	13-1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340-1번지 일대	12,551	공동주택
			13-2	〃	118	공공청사
변경	-	14,271	-	〃	14,271	공동주택

카) 공공주택(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1) 재건축 의무 임대주택(기정)

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 수	세 대 수	세대규모		비 고 (연면적)
					전용면적	공급면적	
기정	택 지	12,551.0	-	49세대	59.95㎡	-	-

(※재건축사업 에 따른 의무 임대주택(도정법 제30조의2) 해당 조항은 2009.4.22. 삭제 되었으며, 현재 도정법 제54조 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를 위한 국민주택규모 주택 확보 내용으로 변경)

(2) 재정비촉진사업에 따른 임대주택

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 수	세 대 수	세대규모		비 고 (제공연면적)
					전용면적	공급면적	
변경	획 지	14,271	-	6세대	59.98㎡	88.63㎡	531.78㎡
의무면적	• 재정비촉진사업(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3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 = [촉진계획 용적률(정비계획 246.0%) - 기반시설 완화로 인한 용적률(36.0%) - 촉진지구 지정 당시 용적률 199%(가중평균)] X 30% = 3.3% (연면적 470.94㎡) ≤ 계획 3.7% (연면적 531.78㎡)						

(3) 공공기여 임대주택 (정비계획 용적률 완화를 위한 기부채납)

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 수	세 대 수	세대규모		비 고 (제공연면적)
					전용면적	공급면적	
변경	획지	14,271	-	소 계	24세대		2,496.67㎡
				13세대	59.98㎡	88.63㎡	1,152.20㎡
				11세대	84.98㎡	122.22㎡	1,344.47㎡

(4) 공공재건축사업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101조의6 공공분양, 공공임대)

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 수	세 대 수		세대규모		비 고 (제공연면적)
						전용면적	공급면적	
변경	획지	14,271	-	소계		152세대		14,580.44㎡
				공공분양	계	78세대		7,282.71㎡
					67세대	59.98㎡	88.63㎡	5,938.24㎡
					11세대	84.98㎡	122.22㎡	1,344.47㎡
				공공임대	계	74세대		7,297.73㎡
					52세대	59.98㎡	88.63㎡	4,608.79㎡
					22세대	84.98㎡	122.22㎡	2,688.94㎡

▌ 국민주택규모 주택(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의무면적

구분		주요내용	비고
정비계획용적률		• 246.0%	상한 250%
법적상한용적률		• 450.0%	-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의무기준	용적률 증가분	• 450.0% - 246.0% = 204.0%	-
	의무용적률 (증가된 용적률의 50%)	• 204.0% × 0.5 = 102.0%	-
	의무 연면적	• 102.0% × 14,271.0㎡ = 14,556.42㎡이상	-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확보 계획		• 152세대 (14,580.44㎡) = 의무면적 14,556.42㎡ < 확보면적 14,580.44㎡	의무이상 확보

구분	주요내용	비고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제공 방법	• 의무 용적률(102.0%) 중 50%이상 공공임대 확보 • 공공임대 50.1%, 연면적 7,278.21㎡이상 -공공분양 : 78세대(용적률 51.03%, 연면적 7,282.71㎡) -공공임대 : 74세대(용적률 51.14%, 연면적 7,297.73㎡)	공공분양:공공임대=5: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6에 따른 공공재건축사업 시 적용

너.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1)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73,603.4	-	673,603.4	100.0	
주거지역	소 계	670,088.6	-	670,088.6	99.5	
	제1종일반주거지역	41,255.9	-	41,255.9	6.1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93,868.4	증) 50.0	93,918.4	13.9	
	제2종일반주거지역	452,138.0	증) 650.0	452,788.0	67.2	
	제3종일반주거지역	82,411.6	감) 14,971.0	67,440.6	10.1	
	준주거지역	414.7	증) 14,271.0	14,685.7	2.2	
근린상업지역		3,514.8	-	3,514.8	0.5	

※ 변경사유 :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공공재건축 정비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1.04.13.)
- 제101조의6 :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이란 현행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3)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호 다목의 준주거지역*
- 실사용대지(획지)는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기반시설(도로 및 공원)은 최초 용도지역 및 연접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환원

2)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

가) 교통시설

▌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대로	1	53	35	간선도로	1,550 (459)	문래동 광장 (신길동 397-2)	신길동 광장 (신길동 426)	일반 도로		건고393 (78.12.7)	도림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대로	2	54	30	간선 도로	3,050 (710)	신길동 대로3-28	구로공단 (신길동 347-65)	일반 도로		건고393 (78.12.7)	가마산로
기정	대로	3	28	25~30	주간 선로	2,780 (786)	영등포동 (신길동 233-71)	신도림동 (신길동 3599-3)	일반 도로		건고177 (62.12.8)	신길로
기정	대로	3	134	25~30	간선 도로	1,000 (591)	신길동382 (신길동 740)	신길동 235-2	일반 도로		서고378 (78.7.31)	가마산로
기정	중로	2	1	15	집산 도로	314	신길동 337-390	신길동 335-17	일반 도로		영등포구고시 제2005-22호 (05.4.7)	존치지역 (신길5주택 건설사업)
기정	중로	2	2	9~22	집산 도로	180 (173)	신길동 1190	신길동 2093	일반 도로		서고445 (07.11.29)	5구역
기정	중로	2	4	15~18	집산 도로	110	신길동 335-23	신길동 325-49	일반 도로		서고445 (07.11.29)	11구역
기정	중로	2	34	13.5~15	보조간선	1,650 (390)	신길동 115-1	신길동 2363	일반 도로		건고2493 (66.6.21)	존치지역
기정	중로	2	151	15~17	집산 도로	571 (63)	신길동 2099 (신길동 3002)	신길동 3517	일반 도로		서고156 (91.5.31)	7,8,9,10구역
기정	중로	2	5	15	집산 도로	263	신길동 518	신길동 1673	일반 도로		서고445 (07.11.29)	5구역
기정	중로	3	3	12~16	집산 도로	280 (257)	신길동 2857 (신길동 2862)	신길동 3187	일반 도로		서고445 (07.11.29)	7,10구역
기정	중로	3	63	12~20	집산 도로	268	신길동 335-17	신길동 342-88	일반 도로		서고683 (87.9.24)	11,14구역
기정	중로	3	71	12	집산 도로	472	신길동 426-3	신길동 336-2	일반 도로		서고105 (83.2.24)	12,13구역
기정	중로	3	152	12	집산 도로	299	신길동 3183-28	신길동 242-14	일반 도로		서고156 (91.5.31)	8,9구역
기정	소로	1	4	10	집산 도로	269	신길동 329-57	신길동 263-5	일반 도로		서고105 (83.2.24)	11구역
기정	소로	1	65	10	집산 도로	28	신길동 252-9	신길동 252-11	일반 도로		서고105 (83.2.24)	11구역
기정	소로	2	2	8	집산 도로	321	신길동 253-318	신길동 337-255	일반 도로		영등포구고시 제2005-22호 (05.4.7)	존치지역 (신길5주택 건설사업)
기정	소로	2	6	8~10	집산 도로	128	신길동 2372	신길동 2340	일반 도로		서고445 (07.11.29)	7구역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소로	2	7	8~10	집산도로	243	신길동 337-209	신길동 253-330	일반 도로		서고445 (07.11.29)	12구역
기정	소로	2	8	8	집산도로	155	신길동 424-3	신길동 340-1	일반 도로		서고445 (07.11.29)	13구역
기정	소로	2	12	8	집산도로	180	신길동 237	신길동 242	일반 도로		서고51 (82.2.4)	9구역
기정	소로	2	69	8~9.5	집산도로	114	신길동 253-69	신길동 329-57	일반 도로		서고105 (83.2.24)	11구역
기정	소로	2	153	8	집산도로	162	신길동 341-1	신길동 400-16	일반 도로		서고331 (90.9.28)	존치지역
기정	소로	3	5	4	특수도로	165	신길동 541	신길동 1637	보행자 전용도로		서고445 (07.11.29)	보행자 전용도로

▌철도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철도	고속철도 (신풍역)	신길동 3599 일대	6,623.5	-	6,623.5	서고77 (93.3.18)	신풍역

▌주차장 결정 조서(신설)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주차장	공영주차장	신길동 340-13일대		증)800.0	800.0 (수평투영면적)	-	입체적결정

▌주차장①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입체적 결정 범위(규모)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주차장	신길동 340-13일대	수평투영면적(㎡)	-	증)800.0	800.0	-	건축물 복합화 (아파트 지하부 지하2층 주차장 복합화)
				높이(층)	-	증)지하2층	지하2층		

나) 공간시설

▌공원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메낙골	근린공원	신길동 893 일대	17,229.7 (11,050.6)	-	17,229.7 (11,050.6)	총독부고시208 (40.03.12.)	3구역(4,029.6㎡) 존치지역(7,021.0㎡)
기정	2	신길공원	근린공원	신길동 426-3	19,604.9 (12,245.1)	-	19,604.9 (12,245.1)	건고258 (82.7.12)	13구역(57.0㎡)
기정	4	-	근린공원	신길동 243-58 일대	14,164.0	-	14,164.0	서고445 (07.11.29)	8구역(1,127.6㎡) 9구역(12,166.4㎡) 존치지역(870.0㎡)
기정	1	제1호 어린이공원	어린이 공원	신길동 337-88	1,633.0	-	1,633.0	영등포구고시 제2005-22호 (05.4.7)	존치지역 (신길5주택건설사업)
기정	2	-	어린이 공원	신길동 541 일대	1,981.0	-	1,981.0	서고445 (07.11.29)	5구역
기정	5	-	소공원	신길동 2296 일대	1,498.1	-	1,498.1	서고445 (07.11.29)	5구역
기정	6	-	소공원	신길동 2306 일대	140.4	-	140.4	서고445 (07.11.29)	5구역
기정	7	-	소공원	신길동 2135 일대	1,024.1	-	1,024.1	서고445 (07.11.29)	7구역
기정	8	-	소공원	신길동 3584 일대	3,991.3	-	3,991.3	서고445 (07.11.29)	7구역(199.3㎡) 10구역(3,792㎡)
기정	9	-	소공원	신길동 3126 일대	2,348.6	-	2,348.6	서고445 (07.11.29)	8구역
기정	10	-	소공원	신길동 3403 일대	2,133.8	-	2,133.8	서고445 (07.11.29)	9구역
기정	12	-	소공원	신길동 336-317 일대	2,523.2	-	2,523.2	서고445 (07.11.29)	12구역
기정	13	-	소공원	신길동 335-10 일대	1,661.4	-	1,661.4	서고445 (07.11.29)	11구역
기정	14	-	소공원	신길동 335-34 일대	2,001.3	-	2,001.3	서고445 (07.11.29)	14구역

※( )는 촉진지구 내 면적임

* 기정(메낙골 근린공원①)은 영등포구고시 제2020-129호 미집행구간의 실효 결정고시 사항 반영함 (면적 및 최초결정일)
* 기정(공원 결정 조서) 정정 사항(서고제2021-235호) : 종전 신길8구역 변경(서고제2021-143호) 결정사항 미반영 (소공원⑨:2,348.5㎡→2,348.6㎡)

▌녹지 결정 조서(변경)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7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202-109 일대	726.3	-	726.3	서고445 (07.11.29)	3구역
기정	8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146-18 일대	709.8	-	709.8	서고445 (07.11.29)	3구역
기정	9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140-6 일대	1,274.3	-	1,274.3	서고445 (07.11.29)	3구역
기정	10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142-9 일대	735.3	-	735.3	서고445 (07.11.29)	3구역
기정	12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1964 일대	2,551.8	-	2,551.8	서고445 (07.11.29)	5구역
기정	14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577 일대	29.0	-	29.0	서고445 (07.11.29)	5구역
기정	15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1560 일대	182.5	-	182.5	서고445 (07.11.29)	5구역
기정	17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2121 일대	1,226.6	-	1,226.6	서고445 (07.11.29)	7구역
기정	18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2241 일대	1,620.0	-	1,620.0	서고445 (07.11.29)	7구역(962.3㎡) 8구역(657.7㎡)
기정	19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2888 일대	1,215.7	-	1,215.7	서고445 (07.11.29)	7구역(1,100.7㎡) 10구역(115㎡)
기정	20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2835 일대	314.5	-	314.5	서고445 (07.11.29)	7구역
기정	21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183-156 일대	811.2	-	811.2	서고445 (07.11.29)	8구역
기정	22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516 일대	1,288.4	-	1,288.4	서고445 (07.11.29)	9구역
폐지	25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40-1 일대	1,602.0	감)1,602.0	-	서고445 (07.11.29)	13구역
기정	26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37-6 일대	298.1	-	298.1	서고445 (07.11.29)	12구역
기정	27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36-204 일대	1,425.9	-	1,425.9	서고445 (07.11.29)	12구역
기정	28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36-257 일대	811.7	-	811.7	서고445 (07.11.29)	12구역
기정	29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37-400 일대	582.1	-	582.1	서고445 (07.11.29)	12구역
기정	30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26-6 일대	170.7	-	170.7	서고445 (07.11.29)	11구역
기정	31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25-43 일대	250.0	-	250.0	서고445 (07.11.29)	11구역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32	녹지	연결녹지	신길동 326-9 일대	1,250.4	-	1,250.4	서고445 (07.11.29)	14구역
기정	-	녹지1	경관녹지	신길동 142-41 일대	483.0	-	483.0	서고135 (01.5.4)	존치지역
기정	-	녹지2	연결녹지	신길동 1795-29 일대	1,129.0	-	1,129.0	서고29 (06.1.19)	존치지역

* 기정 정정 사항(서고제2021-235호) : 종전 신길8구역 변경(서고제2021-143호) 결정사항 미반영 (연결녹지⑱:1,621.0㎡→1,620.0㎡)
* 기정 정정 사항(서고제2019-398호) : 연결녹지⑫(2,539.9㎡→2,551.8㎡) 오기 정정
* 존치지역 녹지 결정조서 반영 (뉴타운 지정 전 신길제5주택재개발구역 내 결정사항)
※ 변경사유 :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공공재건축 사업에 따른 연결녹지 폐지 (대체 공공시설 확보)

▌공공공지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	공공공지	신길동 253-312 일대	153.0	-	153.0	영등포구고시 제2005-22호 (05.4.7)	존치지역 (신길5주택 건설사업)
기정	17	공공공지	신길동 425-28	62.9	-	62.9	서고445 (07.11.29)	존치지역
기정	18	공공공지	신길동 3569 일대	624.0	-	624.0	서고154 (19.5.23)	9구역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공공청사 결정 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4	공공청사	-	신길동 340-4일대	118.0	감)118.0	-	서고445 (07.11.29)	파출소
신설	6	공공청사	-	신길동 253-259일대	-	증)420.0	420.0 (수평투영 면적)	-	치안센터 (입체적 결정*)
기정	5	공공청사	-	신길동 349-3 일대	157.2	-	157.2	서고445 (07.11.29)	파출소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따름
※ 변경사유 :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공공재건축 사업에 따른 공공청사 제공형태 및 위치 변경

▌공공청사⑥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구분	입체적 결정 범위(규모)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6	공공청사	신길동 253-259일대	수평투영 면적(㎡)	-	증)420.0	420.0	-	건축물 복합화 (아파트 저층부 지상1층 공공청사 복합화)
				높이(층)	-	지상1층	지상1층		

※ 본 시설은 국공유지 일괄교환 대상 시설로 향후 교환 예정

▌학교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2	학교	초등학교	신길7동 550 일대	21,598.0	-	21,598.0	서교위76 (88.12.21)	대방
기정	3	학교	초등학교	신길5동 341-1	32,888.0	-	32,888.0	서고683 (87.7.10)	대영
기정	4	학교	중학교	신길5동 342-29	대영초에 포함	-	대영초에 포함	서고4546 (85.7.10)	대영
기정	5	학교	고등학교	신길5동 342	대영초에 포함	-	대영초에 포함	서고4546 (85.7.10)	대영
기정	7	학교	중학교	신길동 2064 일대	9,999.2	-	9,999.2	서고445 (07.11.29)	
기정	8	학교	유치원	신길동 339-34 일대	2,890.0	-	2,890.0	서고445 (07.11.29)	사회복지시설②과 중복결정

▌문화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2	문화시설	-	신길동 549 일대	1,027.6	-	1,027.6	서고445 (07.11.29)	

▌도서관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도서관	신길동 252-11 일대	2,300.3	-	2,300.3	서고445 (07.11.29)	구립도서관

▌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2	사회복지시설	신길동 339-34 일대	2,890.0	-	2,890.0	서고445 (07.11.29)	학교⑧(유치원)과 중복결정

더. 광고물 관리계획(변경없음)
러.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머. 방재계획(변경없음)
버. 정보화계획(변경없음)
서. 에너지순환계획(변경없음)
어. 특성화계획(변경없음)
저. 기타(변경없음)

3. 제2023년 제1차(’ 23.9.25.) 도시재정비(수권)소위원회 심의 결과

구분	심의결과	심의의견	반영계획	비고
제1차 도시재정비 (수권)소위원회	수정가결	•기부채납하는 공영주차장은 대상지 주변 기존 주차수요등을 고려하여 주차장 결정 재검토	•주변 기존 주차면은 대상지 외 외부인이 이용하고 있으며, 기존 주차구획 삭제 시 공급량 감소하므로 재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주차장 기부채납 20면 계획은 유지하도록 하겠음	반영
		•신길로23길 교통체계 변경(양방통행 → 일방통행) 계획은 인접지 출입구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논의	•신길로23길은 대상지를 제외 이면부 일부건축물(5개동)을 해소하는 도로이며, •신길로23길은 신풍역 교차로와 간격 27m로서, 사업지 개발에 따라 교통량 증가 시 신길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방에서 일방 으로 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됨 •향후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충분히 재검토하도록 하겠음	일부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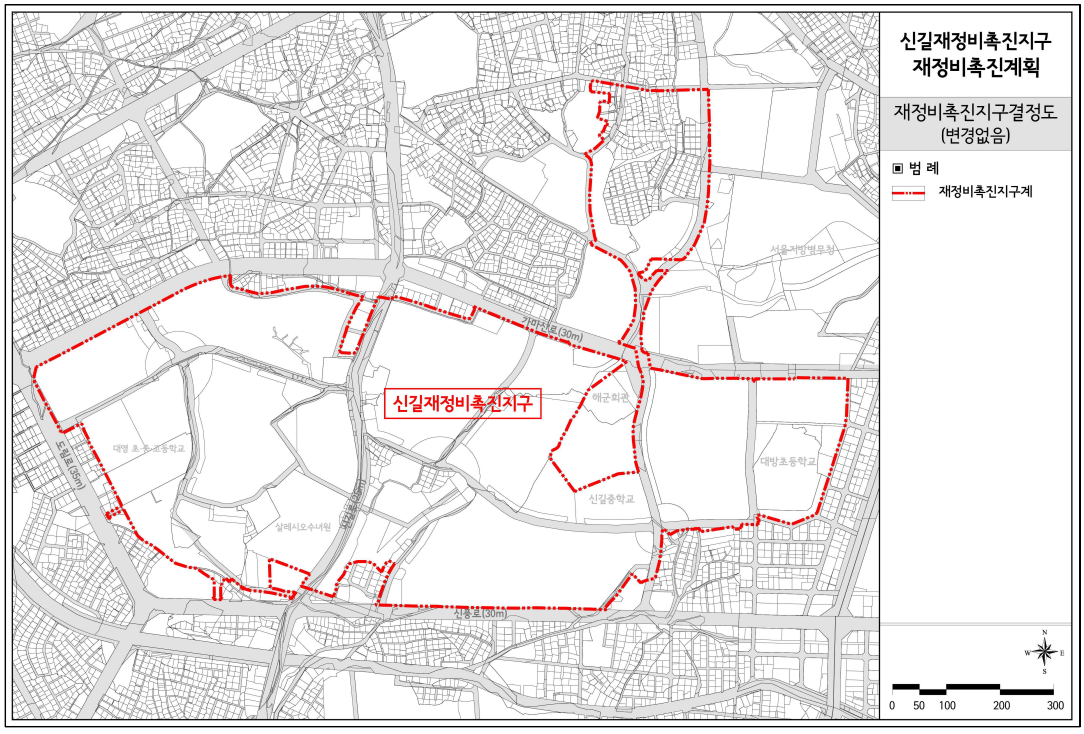
4. 관계 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재정비촉진계획결정 지형도면(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열람 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02)2133-7219) 및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02)2670-3582)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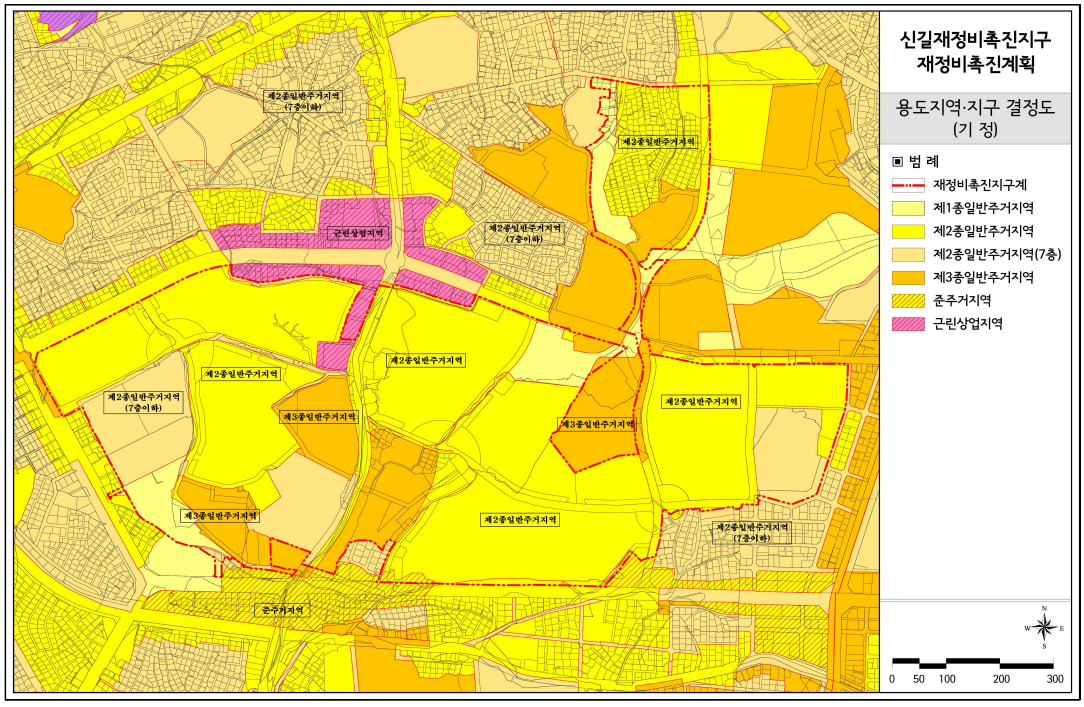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계획포털 (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 (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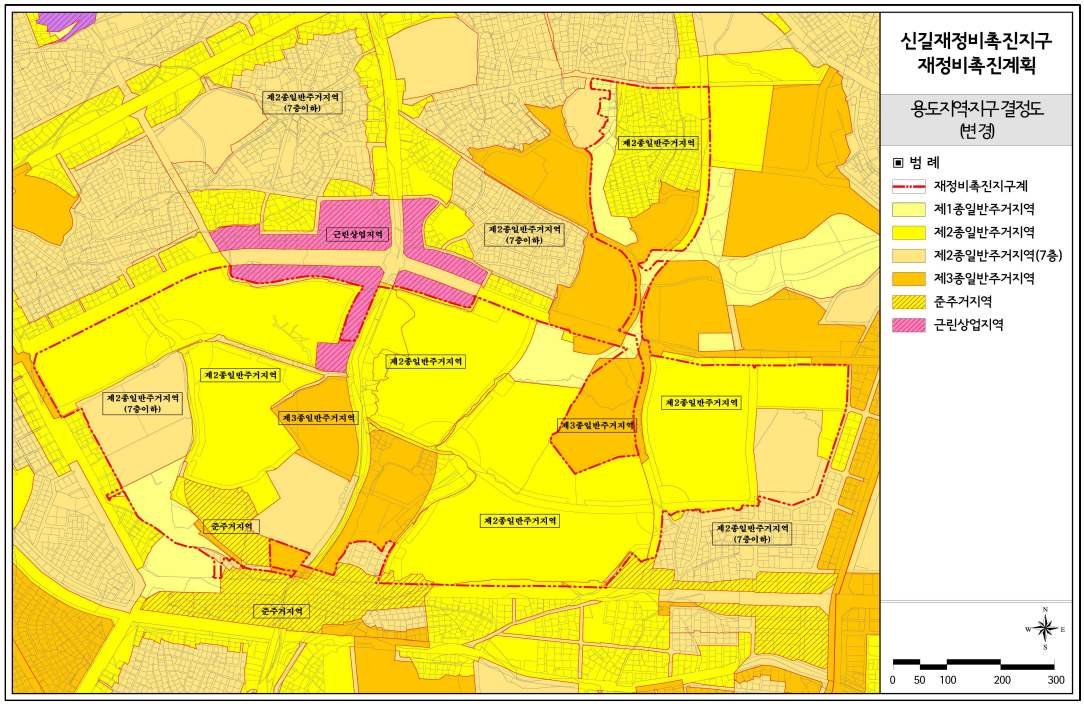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변경없음)>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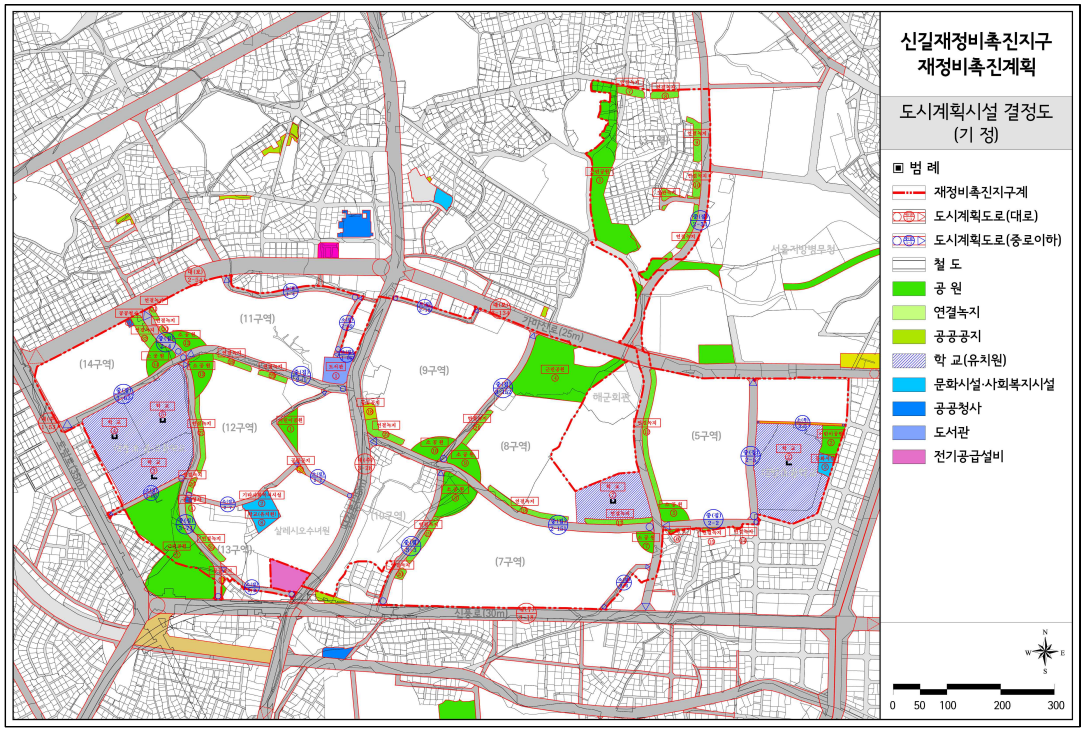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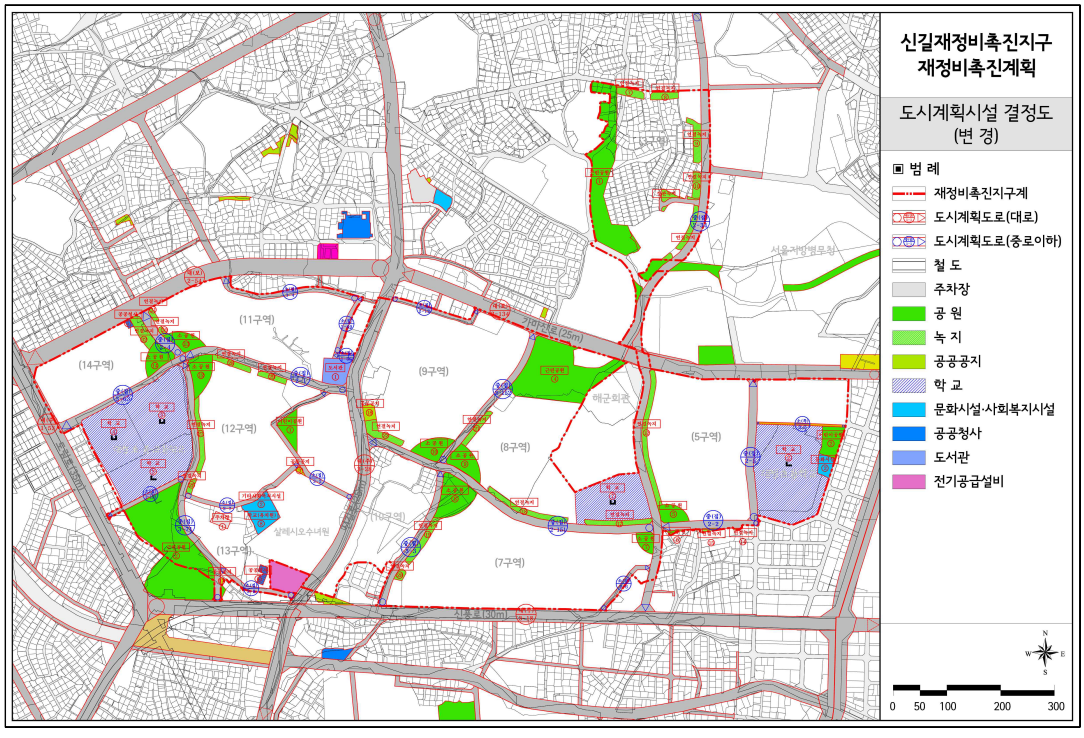


※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의 용도지역 변경은 사업시행을 전제로 수립된 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효력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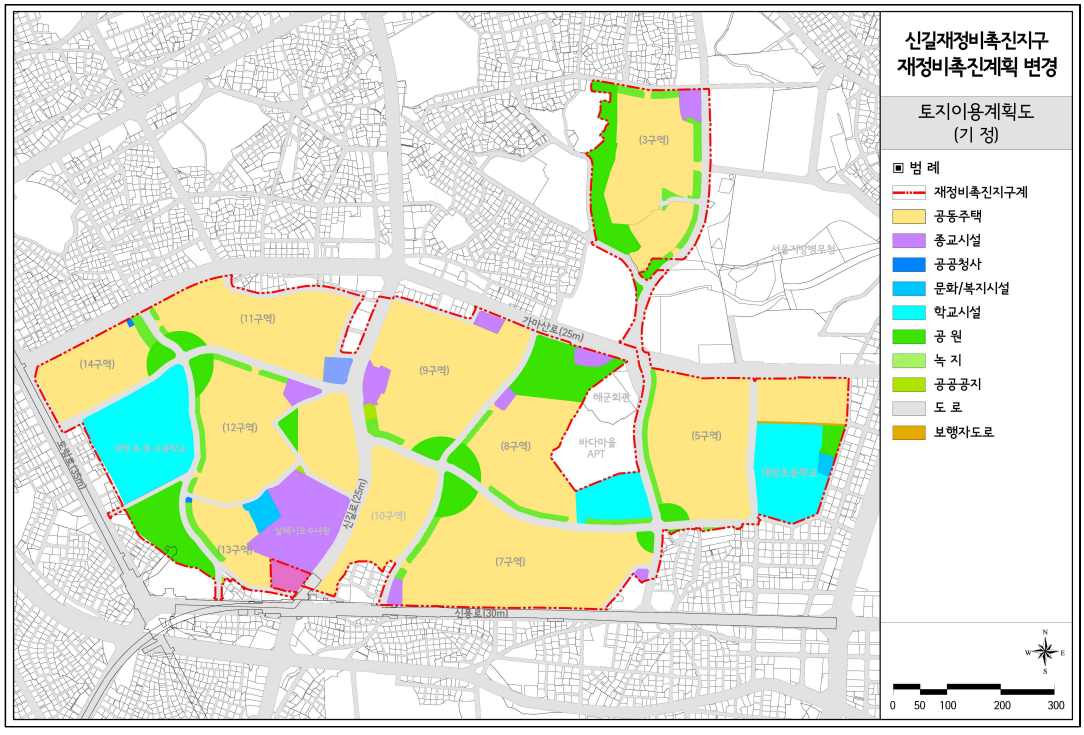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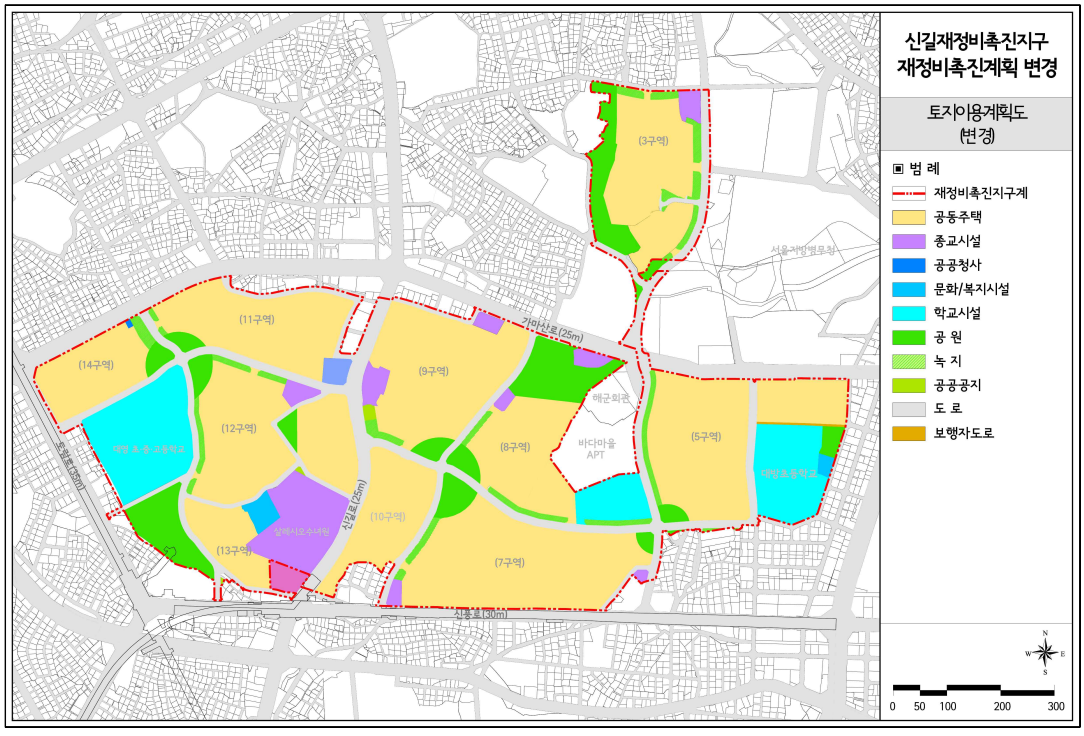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토지이용계획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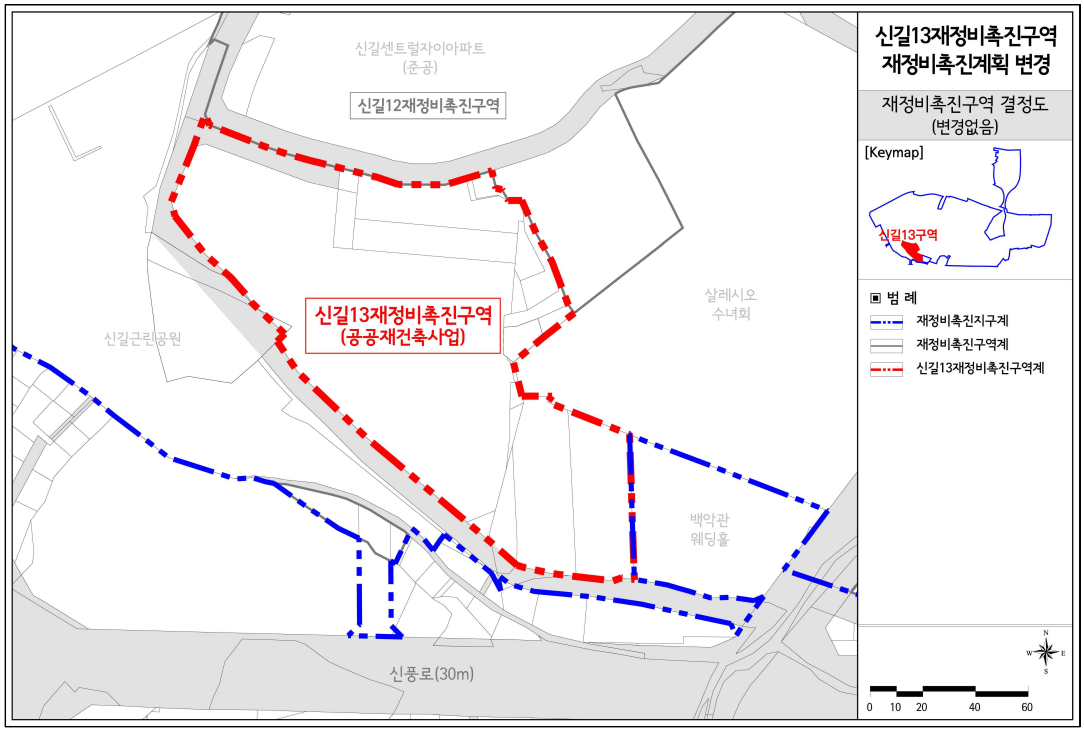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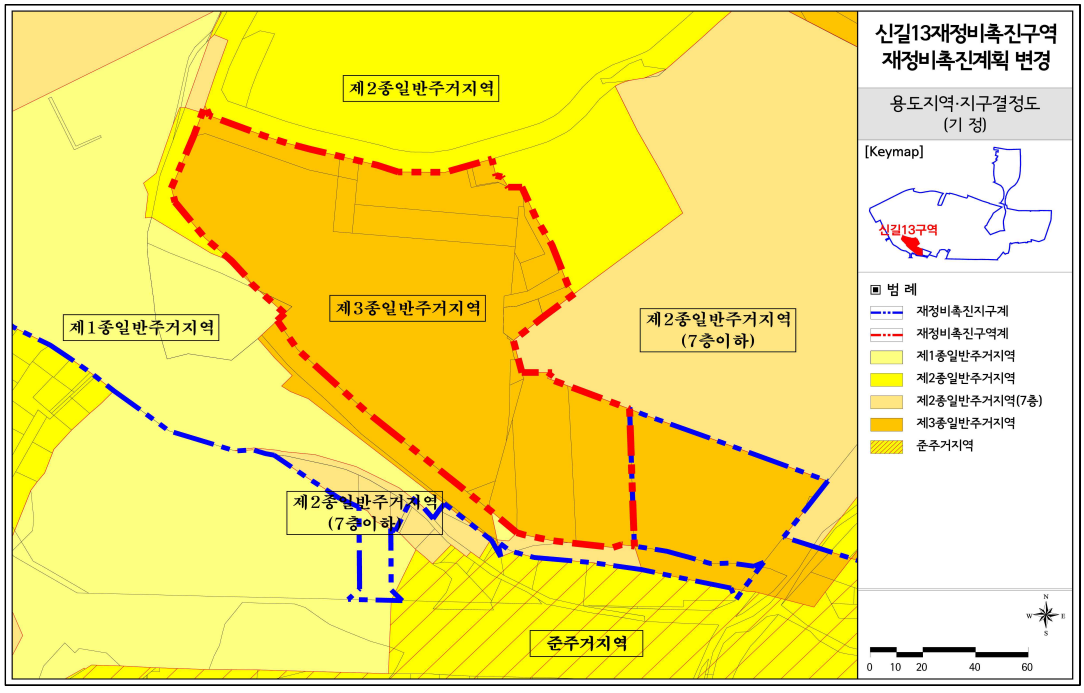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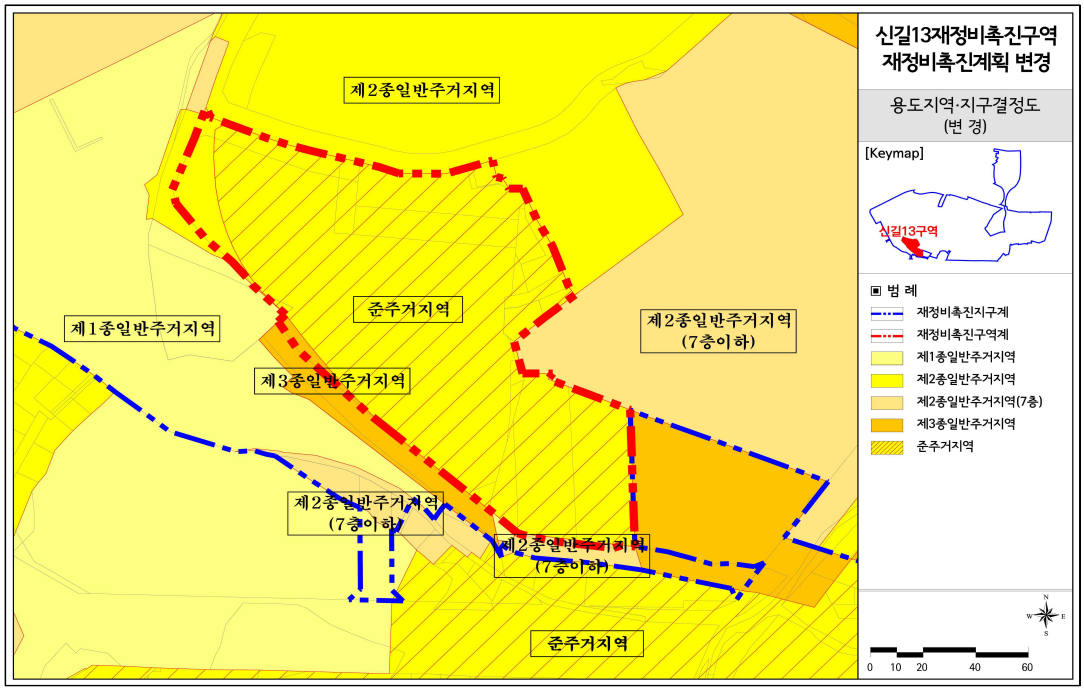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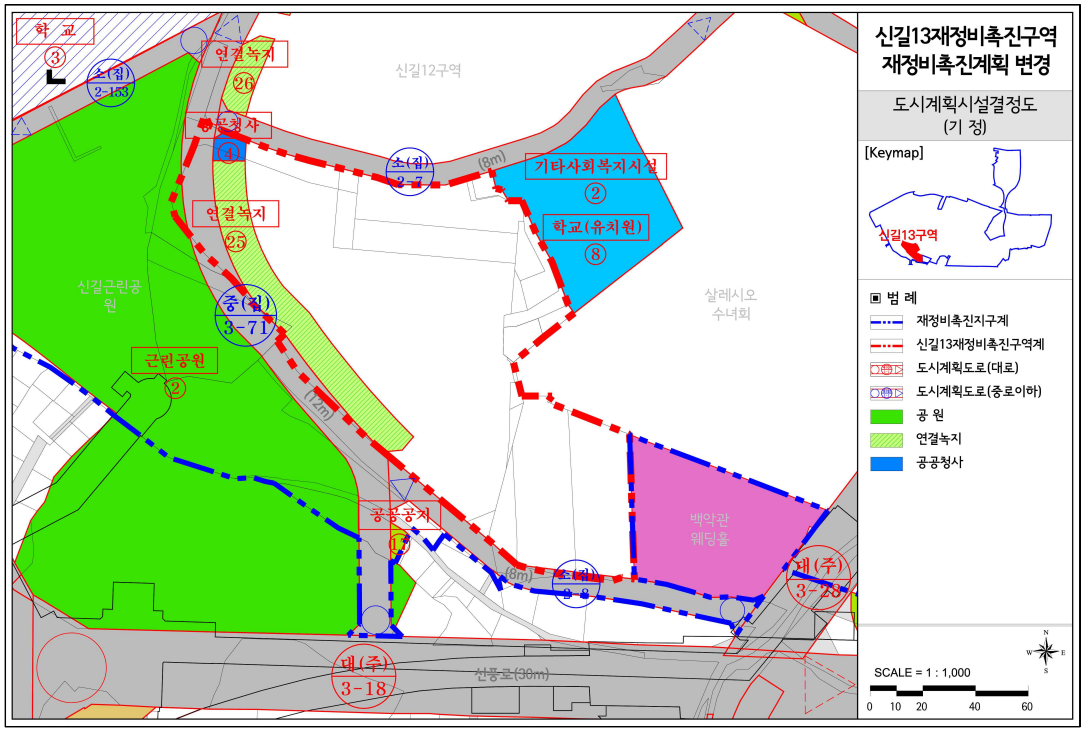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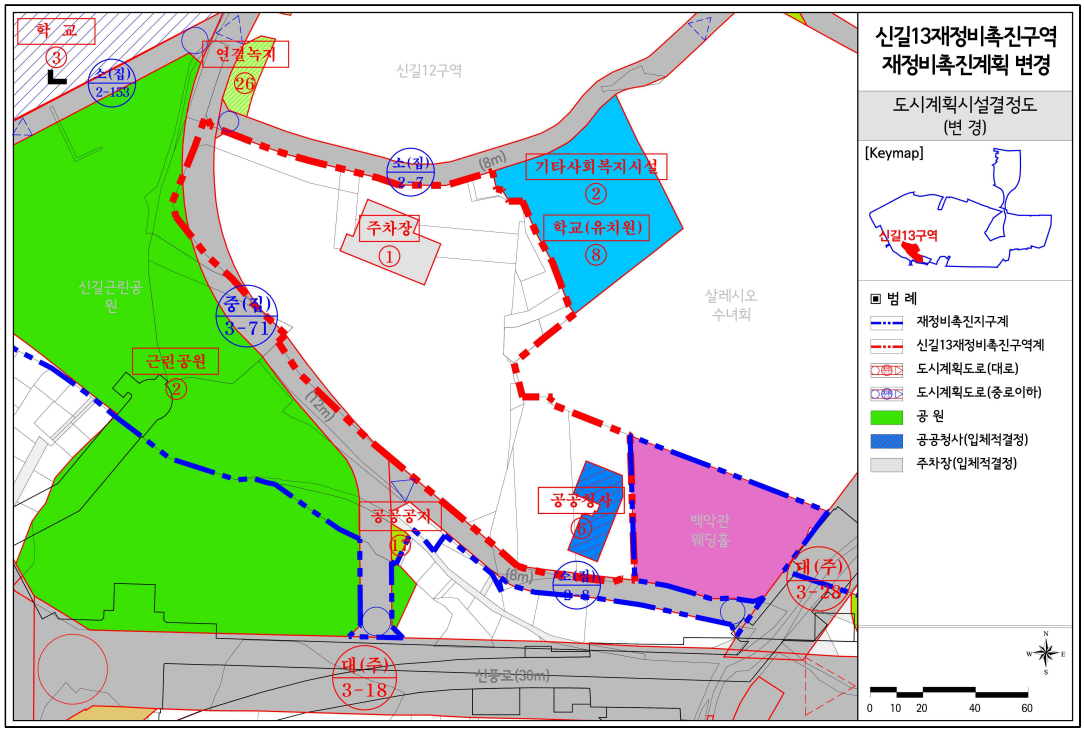


※ 용도지역 변경은 사업시행을 전제로 수립된 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효력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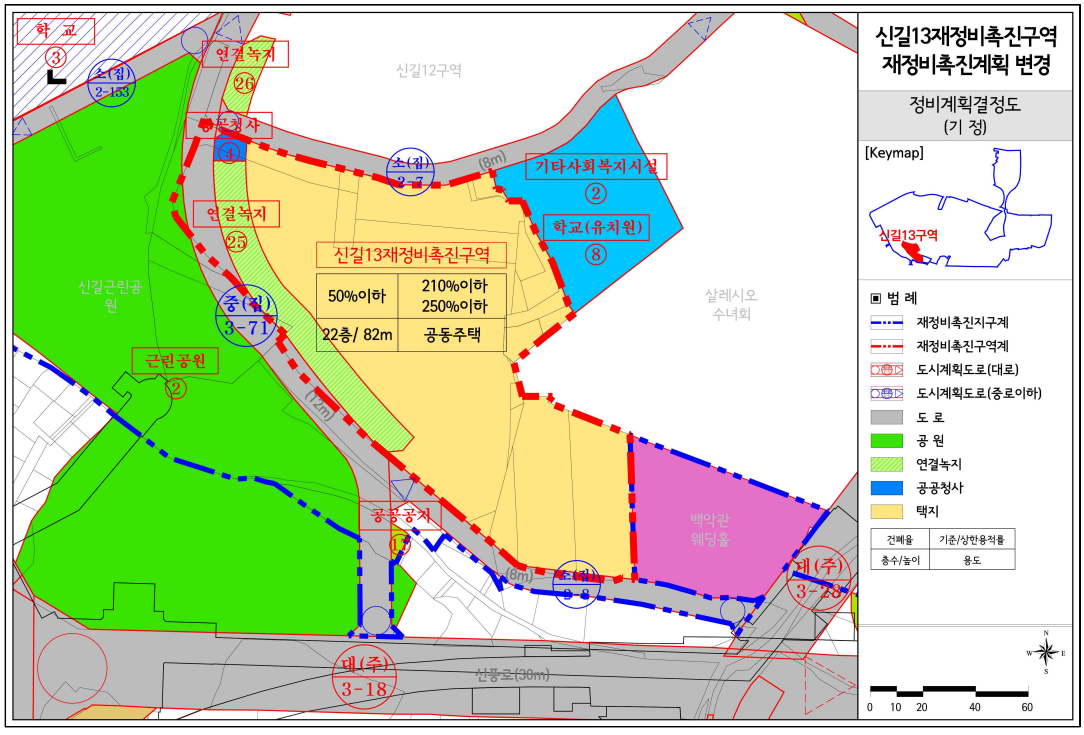
<신길13 재정비촉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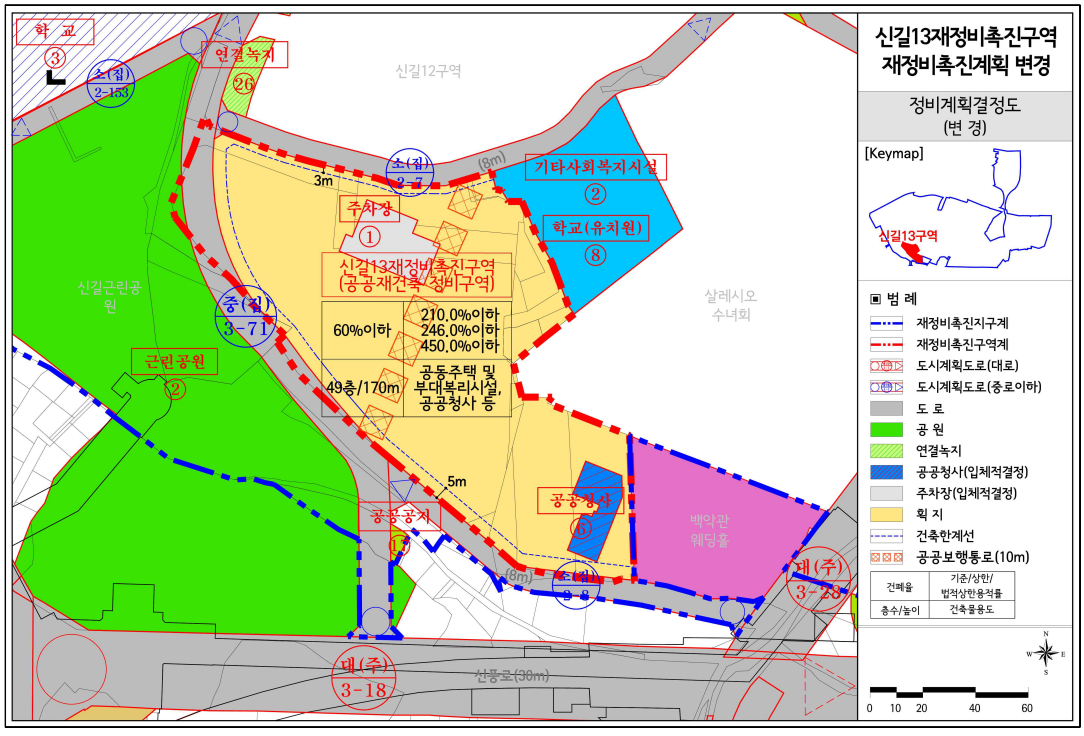
<신길13 재정비촉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신길13 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 결정도(기정)>



<신길13 재정비촉진구역 정비계획 결정도(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69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삼육대학교)

서울특별시고시 제5호('79.1.9.)로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66호(2009.7.9.)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84호(2011.3.31.), 제2014-105호(2014.3.20.), 제2017-155호(2017.4.27.)로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삼육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학교)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학교)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26-21에 위치한 삼육대학교의 건물 신·증축과 기존건물의 준공된 면적으로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학교	대 학 (삼육 대학교)	노원구 공릉동 26-21	173,141	-	173,141	서울시 고시 제 5 호 (1979.1.9)

※ 기 결정된 고시면적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266호(2009.7.9)임

나.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

1) 토지이용계획 조서 (변경있음)

구분	시설명	위 치	구 분	토지이용계획면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학교	노원구 공릉동 26-21	계	173,141	-	173,141	변경없음
			건축부지	30,360	감) 84	30,276	0.28%
			녹지부지	35,957	감) 9,391	26,566	26.12%

구분	시설명	위 치	구 분	토지이용계획면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조경부지	27,288	증) 13,313	40,601	48.79%
			도로부지	58,218	증) 4,906	63,124	8.43%
			주차장부지	5,367	감) 4,681	686	87.22%
			광장부지	1,288	-	1,288	변경없음
			운동장부지	14,663	감) 4,063	10,600	27.71%

※ 기정 주차장부지는 5,367㎡이나, 금번 지하주차장 신축(6,107㎡)과 지상 주차장 부지(686㎡)면적을 고려하면 종전 주차장면적보다 1,426㎡ 증가하여 당초보다 약 26.6%의 주차장 면적이 증가됨.

2) 건축물의 범위 (변경있음)

건 폐 율(%)		용 적 률(%)		높이의 범위(층,m)		비 고
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8 이하	18 이하	56 이하	62 이하	5층 이하	5층 이하	

다. 건축물 변경계획 조서

건물명		건 축 면 적(㎡)		연 면 적(㎡)		지상층연면적(㎡)		높이(층)		비고
		개발제한구역 /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 자연녹지지역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대학본관	사무엘관	722.65	719.38	1,643.55	4,316.28	1,470.03	3,596.90	지하1층 지상3층	지하1층 지상5층	철거 후 신축
대학원 (학생휴게실)	제2실습관 및 조형관	426.85	1,502.04	2,102.75	11,201.08	2,057.75	7,295.26	지하1층 지상5층	지하2층 지상5층	2개동을 철거 후 1개동으로 신축
대학본부 (제2실습관)		1,399.58		5,743.84		5,261.44		지하1층 지상4층		
강의실(가)동		911.25	911.25	3,638.13	5,460.63	2,732.85	4,555.35	지하1층 지상3층	지하1층 지상5층	2개층 수직증축
강의실(나)동		855.29	855.29	3,329.13	3,858.03	3,031.77	3,560.67	지하1층 지상4층	지하1층 지상5층	1개층 수직증축
바울관		1,160.55	1,160.55	5,520.21	6,610.34	4,420.80	5,510.93	지하1층 지상4층	지하1층 지상5층	
제3과학관		1,687.81	1,687.81	7,950.63	9,407.70	6,052.45	7,509.52	지하1층 지상4층	지하1층 지상5층	
음악관		672.19	672.19	1,649.89	2,775.59	1,649.89	2,775.59	지상3층	지상5층	2개층 수직증축
-	대운동장 지하주차장	-	282.70	-	12,126.79	-	400.95	-	지하1층 지상2층	지하주차장 신축

건물명		건 축 면 적(㎡)		연 면 적(㎡)		지상층연면적(㎡)		높이(층)		비고
		개발제한구역 /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 자연녹지지역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	중앙광장 지하주차장	-	85.72	-	2,943.74	-	85.72	-	지하1층 지상1층	
기숙사(남)		749.88	749.55	4,453.03	4,448.01	3,703.15	3,500.71	지하1층 지상5층	지하1층 지상5층	
기숙사(여)		749.88	747.27	4,453.03	4,440.88	3,703.15	3,491.39	지하1층 지상5층	지하1층 지상5층	준공면적 반영
교수연구실		912.03	912.03	2,696.94	2,964.14	2,629.44	2,896.64	지하1층 지상4층	지하1층 지상4층	
본부석	-	122.01	-	213.86	-	213.86	-	지상2층	-	금회 철거
계		10,369.97	10,285.78	43,394.99	70,553.21	36,926.58	45,179.63			
		감) 84.19		증) 27,158.22		증) 8,253.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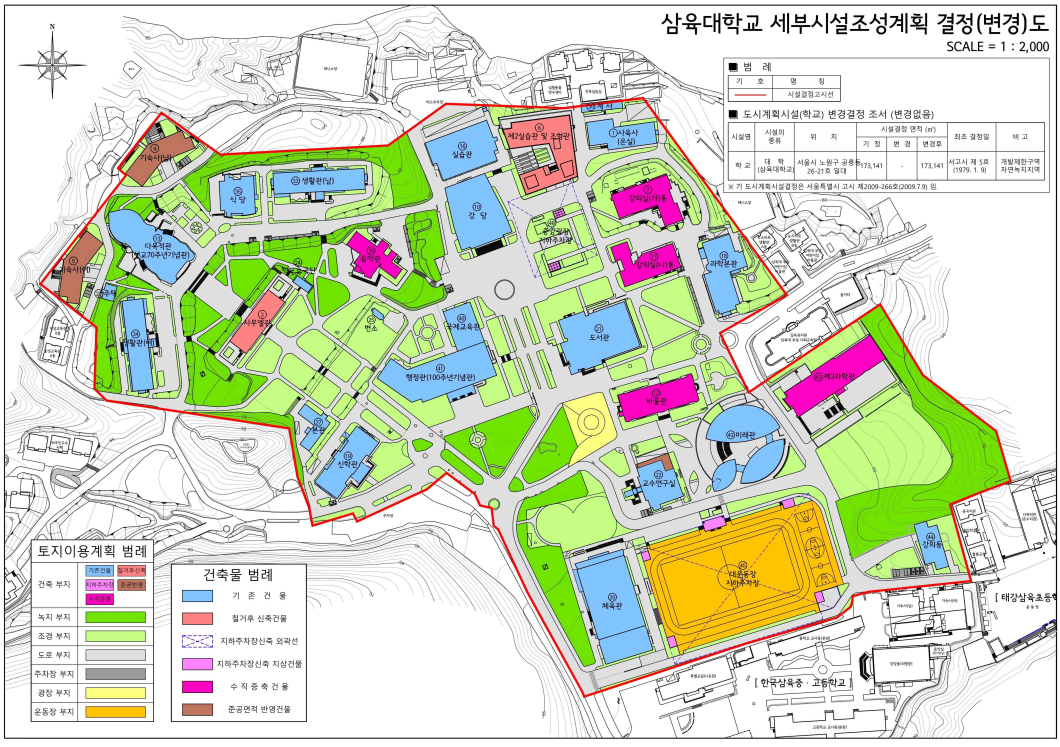
※ 건축물의 규모, 위치 등 세부시설조성계획 상세내용은 고시도면(건축물 조서 포함)에 의함

3. 관계도면 :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도면(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전화 2133-8413), 노원구 도시관리과(전화 2116-3864)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삼육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기정)도
SCALE = 1 : 2,000
범 례
건축 부지
녹지 부지
조경 부지
도로 부지
주차장 부지
광장 부지
운동장 부지
[한국삼육중 · 고등학교]


삼육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도
SCALE = 1 : 2,000
범 례
토지이용계획 범례
건축 부지
녹지 부지
조경 부지
도로 부지
주차장 부지
광장 부지
운동장 부지
건축물 범례
기 존 건 물
철거후 신축건물
지하주차장신축 외곽선
지하주차장신축 지상건물
수 직 증 축 건 물
준공면적 반영건물
[한국삼육중 · 고등학교]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

가.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 (변경)

구분	시설명	위치	구분	토지이용계획면적(㎡) 기정	변경	변경 후	최초결정일	비고
변경	학교 (삼육대학교)	노원구 공릉동 26-21호 일대	계	173,141	-	173,141	서울시 고시 제2004-351호 (2004.11.10)	변경없음
			건축부지 (기존건물 / 증가분건물 / 리모델링 / 증설분 / 신축건물)	30,360	감) 84	30,276		0.28%
			녹지 부지	35,957	감) 9,391	26,566		26.12%
			조경 부지	27,288	증)13,313	40,601		48.79%
			도로 부지	58,218	증) 4,906	63,124		8.43%
			주차장 부지	5,367	감) 4,681	686		87.22%
			광장 부지	1,288	-	1,288		변경없음
			운동장 부지	14,663	감) 4,063	10,600		27.71%

※ 기정 주차장부지는 5,367㎡이나, 금번 지하주차장 신축(6,107㎡)과 지상 주차장 부지(686㎡)면적을 고려하면 증전 주차장면적보다 1,426㎡ 증가하여 당초보다 약26.6%의 주차장 면적이 증가됨.

나. 건축물의 규모 (변경)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범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18% 이하	18% 이하	56% 이하	62% 이하	5층 이하	5층 이하	

※ 기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55호(2017.4.27) 임.

다. 건축 계획 총괄표 (변경)

구분	개발제한구역 / 자연녹지지역 기정	변경	비 고
대지면적(㎡)	173,141.00	173,141.00	
건축면적(㎡)	30,359.91	30,275.72	감) 84.19
건폐율(%)	17.53	17.49	감) 0.04
연면적(㎡)	116,278.03	143,436.25	증) 27,158.22
지상층연적(㎡)	96,400.23	104,653.28	증) 8,253.05
용적률(%)	55.68	60.44	증) 4.76
건물층수(높이)	5층이하	5층이하	

라. 변경건축물 조서

순번	구분	건물번호	건물명 기정	건물명 변경	건축면적(㎡) 기정	건축면적(㎡) 변경	연면적(㎡) 기정	연면적(㎡) 변경	지상층연면적(㎡) 기정	지상층연면적(㎡) 변경	건물층수(높이) 기정	건물층수(높이) 변경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일	비 고
1	변경	2	대학본관	사무실관	722.65	719.38	1,643.55	4,316.28	1,470.03	3,596.90	지하1층/지상3층	지하1층/지상5층	-		철거후 신축
2	변경	6	대학본관(학생복지실) 대학본부(회의실)	제2창슬관 및 조형관	426.85	1,502.04	2,102.75	11,201.08	2,057.75	7,295.26	지하1층/지상6층	지하2층/지상9층	서고시제2014-105호 (2014.3.20)		2개동을 철거후 1개동으로 신축
3	변경	14			1,399.58		5,743.84		5,261.44		지하1층/지상6층				
4	변경	3	강의실(가)동		911.25	911.25	3,638.13	5,460.63	2,732.85	4,555.35	지하1층/지상3층	지하1층/지상5층	-		2개층 수직증축
5	변경	4	강의실(나)동		855.29	855.29	3,329.13	3,858.03	3,031.77	3,560.67	지하1층/지상4층	지하1층/지상6층	-		
6	변경	5	체 육 관		1,160.55	1,160.55	5,520.21	6,610.34	4,420.80	5,510.93	지하1층/지상4층	지하1층/지상6층	-		1개층 수직증축
7	변경	12	제2과학관		1,687.81	1,687.81	7,950.63	9,407.70	6,052.45	7,509.52	지하1층/지상4층	지하1층/지상6층	-	서울고제2023-2799호 (2023.9.26)	
8	변경	21	음 악 관		672.19	672.19	1,649.89	2,775.59	1,649.89	2,775.59	지상3층	지상5층	-		2개층 수직증축
9	변경	45	-	대운동장 (기존부지) 운동장부지 지하주차장	-	282.70	-	12,126.79	-	400.95	-	지하1층/지상2층	-		지하주차장 신축
10	변경	46	-		-	85.72	-	2,943.74	-	85.72	-	지하1층/지상1층	-		
11	변경	8	기숙사(남)		749.88	749.55	4,453.03	4,448.01	3,703.15	3,500.71	지하1층/지상5층	지하1층/지상6층	서고시제2014-105호 (2014.3.20)		준공연적 반영
12	변경	9	기숙사(여)		749.88	747.27	4,453.03	4,440.88	3,703.15	3,491.39	지하1층/지상5층	지하1층/지상6층			
13	변경	22	교수연구실		912.03	912.03	2,696.94	2,964.14	2,629.44	2,896.64	지하1층/지상6층	지하1층/지상6층	-		
14	변경	15	본부석	-	122.01	-	213.86	-	213.86	-	지상2층	-	-		금회 철거
합 계					10,369.97	10,285.78	43,394.99	70,553.21	36,926.58	45,179.63					
					감) 84.19		증) 27,158.22		증) 8,253.05						

마. 전체건축물 조서 (변경)

순번	구분	건물번호	건물명 기정	건물명 변경	건축면적(㎡) 기정	건축면적(㎡) 변경	연면적(㎡) 기정	연면적(㎡) 변경	지상층연면적(㎡) 기정	지상층연면적(㎡) 변경	건물층수(높이) 기정	건물층수(높이) 변경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일	비 고
1	기존	1	사 육 사		820.43	820.43	1,148.69	1,148.69	1,148.69	1,148.69	지상3층	지상3층			
2	변경	2	대학본관	사무실관	722.65	719.38	1,643.55	4,316.28	1,470.03	3,596.90	지하1층/지상3층	지하1층/지상5층	-		철거후 신축
3	변경	4	기숙사(남)		749.88	749.55	4,453.03	4,448.01	3,703.15	3,500.71	지하1층/지상5층	지하1층/지상6층	서고시제2014-105호 (2014.3.20)	서고시제2023-2799호 (2023.9.26)	준공연적 반영
4	변경	5	기숙사(여)		749.88	747.27	4,453.03	4,440.88	3,703.15	3,491.39	지하1층/지상5층	지하1층/지상6층			준공연적 반영
5	변경	6	대학본관(학생복지실) 대학본부(회의실)	제2창슬관 및 조형관	426.85	1,502.04	2,102.75	11,201.08	2,057.75	7,295.26	지하1층/지상6층	지하2층/지상9층			2개동을 철거후 1개동으로 신축
6	변경	14			1,399.58		5,743.84		5,261.44		지하1층/지상6층				
7	변경	3	강의실(가)동		911.25	911.25	3,638.13	5,460.63	2,732.85	4,555.35	지하1층/지상3층	지하1층/지상5층	-		2개층 수직증축
8	기존	10	강 당		1,581.95	1,581.95	3,098.25	3,098.25	2,462.25	2,462.25	지하1층/지상2층	지하1층/지상2층			
9	변경	12	제2과학관		1,160.55	1,160.55	5,520.21	6,610.34	4,420.80	5,510.93	지하1층/지상4층	지하1층/지상6층	-	서울고제2023-2799호 (2023.9.26)	1개층 수직증축
10	기존	13	다목적관		1,294.84	1,294.84	1,567.84	1,567.84	1,419.85	1,419.85	지하1층/지상2층	지하1층/지상2층			
11	변경	15	본부석		122.01		213.86		213.86		지상2층	지상2층	-	서울고제2023-2799호 (2023.9.26)	금회 철거
12	기존	16	실습관		1,404.06	1,404.06	6,900.01	6,900.01	6,900.01	6,900.01	지상5층	지상5층			
13	변경	17	강의실(나)동		855.29	855.29	3,329.13	3,858.03	3,031.77	3,560.67	지하1층/지상4층	지하1층/지상6층	-	서울고제2023-2799호 (2023.9.26)	1개층 수직증축
14	기존	18	과학본관		1,074.25	1,074.25	4,937.22	4,937.22	3,831.97	3,831.97	지하1층/지상6층	지하1층/지상6층			
15	기존	19	신 학 관		1,034.02	1,034.02	4,550.48	4,550.48	3,627.47	3,627.47	지하1층/지상6층	지하1층/지상6층			
16	기존	20	체 육 관		3,041.40	3,041.40	6,375.04	6,375.04	6,375.04	6,375.04	지상3층	지상3층			
17	기존	21	도 서 관		1,870.97	1,870.97	6,694.24	6,694.24	5,295.42	5,295.42	지하1층/지상5층	지하1층/지상5층			
18	변경	22	교수연구실		912.03	912.03	2,696.94	2,964.14	2,629.44	2,896.64	지하1층/지상6층	지하1층/지상6층		서울고제2023-2799호 (2023.9.26)	준공연적 반영
19	기존	23	주 택		70.80	70.80	70.80	70.80	70.80	70.80	지상1층	지상1층			
20	기존	24	학도호국단실		76.80	76.80	76.80	76.80	76.80	76.80	지상1층	지상1층			
21	기존	25	변 소		34.58	34.58	34.58	34.58	34.58	34.58	지상1층	지상1층			
22	기존	27	본 관		341.10	341.10	392.70	392.70	392.70	392.70	지상2층	지상2층			
23	기존	30	계 사		89.26	89.26	89.26	89.26	89.26	89.26	지상1층	지상1층			
24	기존	33	생활관(남)		1,102.95	1,102.95	5,909.17	5,909.17	5,077.17	5,077.17	지하1층/지상5층	지하1층/지상5층	서고시제2017-155호 (2017.4.27)	서울고제2023-2799호 (2023.9.26)	
25	기존	34	생활관(여)		1,102.95	1,102.95	5,909.17	5,909.17	5,077.17	5,077.17	지하1층/지상5층	지하1층/지상5층			
26	기존	35	식 당		603.16	603.16	1,716.02	1,716.02	1,147.92	1,147.92	지하1층/지상2층	지하1층/지상2층			
27	변경	7	음 악 관		672.19	672.19	1,649.89	2,775.59	1,649.89	2,775.59	지상3층	지상5층		서울고제2023-2799호 (2023.9.26)	2개층 수직증축
28	기존	40	국제교육관		424.40	424.40	1,316.38	1,316.38	1,316.38	1,316.38	지상3층	지상3층			
29	기존	41	생활관 (100주년 기념관)		1,577.13	1,577.13	5,098.96	5,098.96	4,722.60	4,722.60	지하1층/지상4층	지하1층/지상4층			
30	변경	42	제3과학관		1,687.81	1,687.81	7,950.63	9,407.70	6,052.45	7,509.52	지하1층/지상4층	지하1층/지상6층	-	서울고제2023-2799호 (2023.9.26)	1개층 수직증축
31	기존	43	미 래 관		1,936.19	1,936.19	15,540.90	15,540.90	8,951.04	8,951.04	지하2층/지상5층	지하2층/지상5층			
32	기존	44	강 의 동		508.70	508.70	1,456.53	1,456.53	1,456.53	1,456.53	지상3층	지상3층			
33	변경	45	-	대운동장 (기존부지) 운동장부지 지하주차장	-	282.70	-	12,126.79	-	400.95	-	지하1층/지상2층	-	서울고제2023-2799호 (2023.9.26)	금회 신축
34	변경	46	-		-	85.72	-	2,943.74	-	85.72	-	지하1층/지상1층	-		금회 신축
총 계					30,359.91	30,275.72	116,278.03	143,436.25	96,400.23	104,653.28					
					감) 84.19		증) 27,158.22		증) 8,253.05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70호

미성동 건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363호(2018.11.08.)로 결정·고시된 관악구 신림동 746-43번지 일대 미성동 건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 기한을 연장하고, 같은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가. 해제기한 연장구역

정비구역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미성동 건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악구 신림동 746-43번지 일대	20,789.0	-

   나.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 2025. 12. 30.까지

2.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토지 등 소유자가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같은 법 제1항제2호의 해당 기간 도래 전 연장 요청한 바,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정비구역 해제 연장

3. 관련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02-2133-7287) 및 관악구 주택과(☎02-879-6322)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71호

2024년 장기수선계획 운영 교육 위탁·운영 고시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2024년 장기수선계획 운영 교육”을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탁·운영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정교육기관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2. 교육대상자
   1) 장기수선계획 조정교육(법 제29조제1항)
      · 대상 : 관리사무소장
      · 시기 : 필요시(비의무)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시설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총괄표

교육기관	교육구분	교육 일시	지역	교육장소	교육 형태	교육 예정인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산실무과정	2024. 1.~ 6.	서울	협회 평생교육원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비숙박 (1일, 8시간)	350명
		2024. 7.~ 12.	서울	협회 평생교육원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비숙박 (1일, 8시간)	350명
	실무과정	2024. 1.~ 6.	17개 시·도	지역별 교육장	비숙박 (1일, 8시간)	1,000명
		2024. 7.~ 12.	17개 시·도	지역별 교육장	비숙박 (1일, 8시간)	1,000명

1. 교육일시 및 장소 시간

1) 교육장 및 교육형태

– 전산실무과정 (교육비 – 비숙박 : 9만 5천원)

지역	장소	교육형태	비고
서울	협회 평생교육원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비숙박 (1일, 8시간)	6회 예정 (전산실습과정)

– 실무과정 (교육비 – 비숙박 : 7만 5천원, 온라인 : 4만 5천원)

지역	장소	교육형태	비고
전국	지역별 교육장	비숙박 (1일, 8시간)	1월 ~ 12월 중 20회 예정

※ 실무과정의 경우 지역별 세부 교육장은 대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교육 일정

–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교육(전산실무과정)

구분	교육기간	예정인원	교육형태	지역
상반기	1월 ~ 6월	350명	비숙박	서울
하반기	7월 ~ 12월	350명	비숙박	

–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교육(실무과정)

구분	교육기간	예정인원	교육형태	지역
상반기	1월 ~ 6월	1000명	비숙박	17개 시·도
하반기	7월 ~ 12월	1000명	비숙박	

※ 집체교육과 온라인교육 병행 진행 예정
※ 상기일정 및 장소는 교육기획 및 준비 또는 '코로나19' 와 같은 비상상황의 경우 변경되거나 '온라인 과정' 으로 대체 될 수 있음

3) 교육 시간표

시 간	교육 내용		
~08:45	교육등록		
08:45~09:00	교육안내		
09:00~13:00	1교시 (4시간)	- 장기수선계획 개관 및 조정실무 - 표준장기수선계획서 작성실무	□장기수선제도의 변천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법령 □표준장기수선계획 작성 □질의 회신
13:00~14:00	중식(中食)		
14:00~18:00	2교시 (4시간)	- 장기수선계획운영시스템 활용 ※노트북 활용 실습 (전산실무과정에만 해당됨)	□장기수선계획운영시스템 사용법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시연 □수선공사의 이해

※ 상기일정 및 장소는 교육기획 및 준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교육과목 및 내용

과목	교육목적	주요 내용
장기수선계획 개관 및 조정 실무	◦공동주택 공유재산의 가치를 유지하고 내구연한 연장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표준장기수선계획서 수립(안)을 활용한 장기수선계획서 작성	◦장기수선제도 ◦장기수선계획운영 기준 ◦장기수선계획 검토 ◦질의 회신 사례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프로그램	◦장기수선공사 대상 공종 선정과 수량산출 및 단가 산정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세대평형별 장기수선충당금 부과금액 산출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서 대상 시설의 노후화, 물가 등을 고려한 수선주기, 단가 등 조정	◦사용신청 및 변경, 단지정보 입력 ◦장기수선공사 대상 항목관리 ◦장기수선공사 항목별 정보 등록 수선주기, 소요수량, 단가 ◦장기수선계획 현황보고서 작성 ◦표준장기수선계획서 수립(안)에 의한 기준단지 시스템 활용 ◦장기수선공사 항목에 대한 공종 및 재료의 이해

3. 교육 강사

과목	강사	비고
장기수선계획운영 실무	우기성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장기수선계획운영시스템 활용	문시형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상기 교육계획은 준비사항에 따라 일부조정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장기수선계획운영시스템(https://new.khmais.net)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72호

2024년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교육 위탁·운영 고시

「공동주택관리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한 “2024년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교육”을 「공동주택관리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탁·운영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정교육기관
   1) 대한주택관리사협회

2. 교육대상자
   1)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교육(법 제70조제1항)
      · 주택관리업자 :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관리사무소장 :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부터 3개월 이내
   2) 휴면자격자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 전 교육(법 제70조제2항)
      · 대상 : 휴면자격자(직전 5년이내 관리기구 및 주택관리업의 임직원으로 종사한 경력이 없는 자로서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 받으려는 주택관리사 등)
      · 시기 : 배치전
   3)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보수 교육(법 제70조제3항)
      · 대상 :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 받아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
      · 시기 : 3년 마다

공동주택 관리·윤리에 관한 교육 총괄표

교육기관	교육구분	교육장	교육 형태	교육장소	교육 일시	교육 예정인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주택관리사(보)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교육	서울 교육장	비숙박	협회 평생교육원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가산디지털1로 168)	2024. 3.~11.	100명/회
		온라인 과정	온라인	온라인 교육	2024. 1.~12.	
	휴면자격자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 전 교육	서울 교육장	비숙박	협회 평생교육원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가산디지털1로 168)	2024. 3.~11.	100명/회
		온라인 과정	온라인	온라인 교육	2024. 1.~12.	
	주택관리사(보)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보수교육	전국 시·도	비숙박	서울교육장 외 14개소	2024. 3.~11.	100명/회
		온라인 과정	온라인	온라인 교육	2024. 1.~12.	
	주택관리업자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교육	주택관리사(보)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교육과 동일(통합실시)				

1. 교육일시 및 장소, 시간

가. 주택관리사보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교육

(교육비 – 비숙박 : 20만원, 온라인 : 13만원)

1) 교육장 및 교육형태

교육장명	장소	교육형태	비고
서울교육장	협회 평생교육원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가산디지털1로 168)	비숙박	- 기수 : 3월(1기), 9월(2기)
온라인과정	온라인 교육	온라인	- 기수: 1월(1기), 2월(2기), 3월(3기), 4월(4기), 5월(5기), 6월(6기), 7월(7기), 8월(8기), 9월(9기), 10월(10기), 11월(11기), 12월(12기)

2) 교육 일정

– 집체교육

구분	기수	교육기간	예정인원	교육형태	지역
보 (2회)	03월(1기)	3월 중	100명	비숙박	서울
	09월(2기)	9월 중	100명	비숙박	

– 온라인교육

구분	기수	교육기간	예정인원	교육형태	지역
보 (12회)	01월(1기)	1월 중	100명	비숙박	온라인과정
	02월(2기)	2월 중	100명	비숙박	
	03월(3기)	3월 중	100명	비숙박	
	04월(4기)	4월 중	100명	비숙박	
	05월(5기)	5월 중	100명	비숙박	
	06월(6기)	6월 중	100명	비숙박	
	07월(7기)	7월 중	100명	비숙박	
	08월(8기)	8월 중	100명	비숙박	
	09월(9기)	9월 중	100명	비숙박	
	10월(10기)	10월 중	100명	비숙박	
	11월(11기)	11월 중	100명	비숙박	
	12월(12기)	12월 중	100명	비숙박	

※ 집체교육과 온라인교육 병행 진행 예정

※ 상기일정 및 장소는 교육기획 및 준비 또는 '코로나19' 와 같은 비상상황의 경우 변경되거나 '온라인 과정' 으로 대체 될 수 있음

3) 교육 시간표

- 집체교육

<table>
<tr><th>요일
시간</th><th>1일차</th><th>2일차</th><th>3일차</th></tr>
<tr><td>09:00-10:00</td><td rowspan="2"></td><td rowspan="3">사업자 선정지침
(3시간)</td><td rowspan="2">공동주택 노무일반
(2시간)</td></tr>
<tr><td>10:00-11:00</td></tr>
<tr><td>11:00-12:00</td><td rowspan="2">공동주택관리법령 주요내용
(2시간)</td><td>숙지도 평가 및 설문조사
(1시간)</td></tr>
<tr><td>12:00-13:00</td><td>중식(中食)</td><td>중식(中食)</td></tr>
<tr><td>13:00-14:00</td><td>중식(中食)</td><td rowspan="3">건설공사계약실무
(3시간)</td><td rowspan="2">관리사무소장
소양 및 윤리
(2시간)</td></tr>
<tr><td>14:00-15:00</td><td rowspan="2">공동주택 시설물 유지관리
(2시간)</td></tr>
<tr><td>15:00-16:00</td><td rowspan="2"></td></tr>
<tr><td>16:00-17:00</td><td rowspan="2">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2시간)</td><td rowspan="2">공동주택 민원회신사례
(2시간)</td></tr>
<tr><td>17:00-18:00</td></tr>
</table>

※ 상기일정 및 장소는 교육기획 및 준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온라인교육

차시(시간)			주 요 내 용
1과목	1차시	50 ‘	【공동주택관리업무 주요화제】 1. 재난상황(호우) 대응요령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분쟁조정 3. 갑질예방
2과목	2차시	50 ‘	【공동주택관리법령 주요내용】 1. 공동주택관리법 주요 개정 내용, 관리규약 등 2.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한 관리주체 업무처리
	3차시	50 ‘	
3과목	4차시	50 ‘	【관리사무소장 소양 및 윤리】 1. 주택관리사보로서 필요한 소양 및 윤리
	5차시	50 ‘	
4과목	6차시	50 ‘	【건설공사계약실무】 1. 개요 2. 도급계약서 3. 계약서 살펴보기 4. 계약 조항 살펴보기 5. 기타 사항
	7차시	50 ‘	
	8차시	50 ‘	
5과목	9차시	50 ‘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1. 공동주택의 회계 2. 핵심감사사항 3. 회계감사의 근거 법령
	10차시	50 ‘	
6과목	11차시	50 ‘	【공동주택 노무일반】 1. 근로계약 체결 시 법률문제 2. 근로기준법상 적용범위
	12차시	50 ‘	
7과목	13차시	50 ‘	【공동주택 시설물 유지관리】 1. 시설별 안전관리 2. 안전유지관리 매뉴얼
	14차시	50 ‘	
8과목	15차시	50 ‘	【공동주택 민원회신사례】 1. 민원 사례의 분포 2.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업무 등
	16차시	50 ‘	
9과목	17차시	50 ‘	【사업자 선정지침】 1. 선정지침의 이해 2. 입찰 업무 프로세스 3. 입찰과정과 계약 작성 실무능력
	18차시	50 ‘	
	19차시	50 ‘	
10과목	20차시	50 ‘	【설문조사 및 숙지도 평가】

4) 교육과목별 세부내용

과목명	주요내용	강의목표
공동주택관리법령 주요내용	◦공동주택관리 관련 규정 주요사항 ◦공동주택관리법령 상 주요 쟁점별 규정 내용 ◦기타 공동주택관리 관련 규정별 주요 내용	◦공동주택관리법 근거한 관리주체 업무처리 도모
관리사무소장 소양 및 윤리	◦주택관리사보로서 자기관리 ◦일의 정서적 측면	◦자기관리를 통해 업무능력을 향상
건설공사계약실무	◦입찰 및 계약 관계 법령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공동주택 입찰 실무 ◦공동주택 계약 실무 ◦입찰 관련 각 종 서식	◦법령을 준수한 흠결 없는 사업자 선정 ◦사업자 선정지침 준수 ◦투명한 입찰 행정
공동주택의 회계처리기준	◦감리결과 양정기준 ◦회계감사 관련규정 및 유의사항 ◦회계 감사 의견 사례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회계업무를 전반적 이해와 회계상태 진단능력 강화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적격증빙 도모
공동주택 노무일반	◦채용 및 근로조건 결정 ◦법정근로조건 ◦여성, 연소자 특별보호, 남녀고용평등 ◦인사 이동 ◦징계, 해고 및 퇴직 ◦취업규칙	◦근로기준에 적합한 인사행정 도모.
공동주택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별 안전관리 ◦안전유지관리 매뉴얼	◦시설별 안전관리 및 정비 도모
공동주택 민원회신사례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규약 ◦관리비등 ◦장기수선계획 ◦하자보수 ◦행위허가	◦최근 주무부처의 민원사례 중심으로 업무별 처리능력 강화
사업자 선정지침	◦국가계약법령의 개요 ◦공동주택관련법령	◦공동주택과 관련된 각종 법령에 대한 학습 등 법령 이해능력 함양
공동주택관리업무 주요화제	◦층간소음 대응 ◦재해·재난 시 대응 요령 ◦갑질에 대한 자세 등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방지 ◦재해·재난 시 대응 능력 강화

나. 주택관리사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교육

○ 휴면자격자 배치 전 교육은 교육생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일정을 편성(접수 인원 저조 시, 법 제70조제1항 주택관리사보 또는 주택관리사 배치교육에 통합하여 실시)

1) 교육장 및 교육형태

교육장명	장소	교육형태	비고
서울교육장	협회 평생교육원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가산디지털1로 168)	비숙박	- 기수 : 3월(1기), 4월(2기), 5월(3기), 6월(4기), 7월(5기), 8월(6기), 9월(7기), 10월(8기), 11월(9기)
온라인과정	온라인 교육	온라인	- 기수: 1월(1기), 2월(2기), 3월(3기), 4월(4기), 5월(5기), 6월(6기), 7월(7기), 8월(8기), 9월(9기), 10월(10기), 11월(11기), 12월(12기)

2) 교육 일정

- 집체교육

구분	기수	교육기간	예정인원	교육형태	지역
사 (2회)	03월(1기)	3월 중	100명	비숙박	서울
	04월(2기)	4월 중	100명	비숙박	
	05월(3기)	5월 중	100명	비숙박	
	06월(4기)	6월 중	100명	비숙박	
	07월(5기)	7월 중	100명	비숙박	
	08월(6기)	8월 중	100명	비숙박	
	09월(7기)	9월 중	100명	비숙박	
	10월(8기)	10월 중	100명	비숙박	
	11월(9기)	11월 중	100명	비숙박	

- 온라인교육

구분	기수	교육기간	예정인원	교육형태	지역
사 (12회)	01월(1기)	1월 중	100명	비숙박	온라인과정
	02월(2기)	2월 중	100명	비숙박	
	03월(3기)	3월 중	100명	비숙박	
	04월(4기)	4월 중	100명	비숙박	
	05월(5기)	5월 중	100명	비숙박	
	06월(6기)	6월 중	100명	비숙박	
	07월(7기)	7월 중	100명	비숙박	
	08월(8기)	8월 중	100명	비숙박	
	09월(9기)	9월 중	100명	비숙박	
	10월(10기)	10월 중	100명	비숙박	
	11월(11기)	11월 중	100명	비숙박	
	12월(12기)	12월 중	100명	비숙박	

※ 집체교육과 온라인교육 병행 진행 예정

※ 상기일정 및 장소는 교육기획 및 준비 또는 '코로나19' 와 같은 비상상황의 경우 변경되거나 '온라인 과정' 으로 대체 될 수 있음

3) 교육 시간표

- 집체교육

<table>
<tr><th>요일
시간</th><th>1일차</th><th>2일차</th><th>3일차</th></tr>
<tr><td>09:00-10:00</td><td rowspan="2">오리엔테이션
(1시간)</td><td rowspan="4">주택관리에 관한 법령 개관
(3시간)</td><td rowspan="2">공동주택 민원회신사례
(2시간)</td></tr>
<tr><td>10:00-11:00</td></tr>
<tr><td>11:00-12:00</td><td rowspan="2">공동주택 수선공사 집행
(2시간)</td><td>숙지도 평가 및 설문조사
(1시간)</td></tr>
<tr><td>12:00-13:00</td><td>중식(中食)</td><td>중식(中食)</td></tr>
<tr><td>13:00-14:00</td><td>중식(中食)</td><td rowspan="2">관리비 징수납부
(2시간)</td><td rowspan="2">관리사무소장
소양 및 윤리
(2시간)</td></tr>
<tr><td>14:00-15:00</td><td rowspan="2">공동주택 회계감사
(2시간)</td></tr>
<tr><td>15:00-16:00</td><td rowspan="3">입찰 및 계약
(3시간)</td><td rowspan="3"></td></tr>
<tr><td>16:00-17:00</td><td rowspan="2">소통하는 공동주택
(2시간)</td></tr>
<tr><td>17:00-18:00</td></tr>
</table>

※ 상기일정 및 장소는 교육기획 및 준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온라인교육

차시(시간)			주 요 내 용
1과목	1차시	50 ‘	【공동주택관리업무 주요화제】 1. 재난상황(호우) 대응요령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분쟁조정 3. 갑질예방
2과목	2차시	50 ‘	【주택관리에 관한 법령 개관】 1. 공동주택관리법 주요 개정 내용 2. 관리방법결정, 관리규약 등 3.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한 관리주체 업무처리 도모
	3차시	50 ‘	
	4차시	50 ‘	
3과목	5차시	50 ‘	【관리사무소장 소양 및 윤리】 1. 주택관리사로서 필요한 소양 및 윤리
	6차시	50 ‘	
4과목	7차시	50 ‘	【소통하는 공동주택】 1. 소통의 중요성 2. 관리사무소장, 직원, 입주민과의 커뮤니케이션 방법
	8차시	50 ‘	
5과목	9차시	50 ‘	【공동주택 회계감사】 1. 핵심감사사항 2. 관련법령과 규정 3. 실무 참고사항(회계오류 등)
	10차시	50 ‘	
6과목	11차시	50 ‘	【공동주택 수선공사 집행】 1. 공사 발주 및 시공 절차에 따른 업무 검토 및 조정 2. 발주 서류 작성 등
	12차시	50 ‘	
7과목	13차시	50 ‘	【관리비 징수납부】 1. 관리비 징수 절차
	14차시	50 ‘	
8과목	15차시	50 ‘	【공동주택 민원회신 사례】 1. 주무부처 민원 사례 중심으로 업무별 처리능력 강화 : 하자보수, 관리업무, 장기수선계획, 입주자대표회의 등
	16차시	50 ‘	
9과목	17차시	50 ‘	【입찰 및 계약】 1. 선정지침의 이해 2. 입찰업무 프로세스 3. 입찰과정과 계약 작성 실무능력 배양
	18차시	50 ‘	
	19차시	50 ‘	
10과목	20차시	50 ‘	【설문조사 및 숙지도 평가】

4) 교육과목별 세부내용

과목명	주요내용	강의목표
주택관리에 관한 법령 개관	◦공동주택관리법 주요 개정 내용 관리방법결정,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관리비 및 회계운영,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공동주택의 전문관리, 공동주택의 분쟁조정 등	◦공동주택관리법령을 근거한 관리주체 업무처리 도모
관리사무소장 소양 및 윤리	◦주택관리사로서 자기관리 ◦일의 정서적 측면	◦자기관리를 통해 업무능력을 향상
소통하는 공동주택	◦공동주택 소통의 중요성, 종류 및 방법 ◦게시판의 관리 및 인터넷카페 활용 ◦회의 진행을 위한 프리젠테이션 ◦노트북과 컴퓨터 모니터 활용한 진행 ◦PT 슬라이드 작성	◦공동주택 게시판 우수 사례 전파 ◦각종 현장설명회 대비
공동주택 회계감사	◦회계처리기준 ◦회계처리 및 회계처리기준의 해설 ◦회계감사 감리결과 양정기준 ◦관리주체의 회계감사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회계업무를 전반적 이해와 회계상태 진단능력 강화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적격증빙 도모
공동주택 수선공사 집행	◦착공단계의 업무 착공신고, 안전관리계획, 공사대장 및 시공계획서, 공사안내문 ◦시공단계의 업무 공사기준 및 내용 숙지, 자재 검사 및 보관, 현장관리, 기성검사 및 대금지급 ◦준공단계의 업무 준공검사원 접수 및 검사, 공사대금 정산 및 지급, 지체상금 및 지연이자	◦공동주택 수선공사 착공·시공·준공 표준화된 업무프로세스 제시 ◦관리현장 활용(준용) 능력 배양 ◦투명한 공사 집행
관리비 징수납부	◦관리비 징수 절차	◦관리비 징수 및 납부 업무처리 능력 도모
공동주택 민원회신 사례	◦관리주체 ◦관리규약 ◦관리비 등 ◦장기수선계획 ◦하자보수 ◦행위허가 ◦선거관리 ◦입주자대표회의	◦최근 주무부처의 민원사례 중심으로 업무별 처리능력 강화
입찰 및 계약	◦입찰 및 계약 관계 법령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공동주택 입찰 실무 ◦공동주택 계약 실무 ◦입찰 관련 각 종 서식	◦법령을 준수한 흠결 없는 사업자 선정 ◦사업자 선정지침 준수 ◦투명한 입찰 행정
공동주택관리업무 주요화제	◦층간소음 대응 ◦재해·재난 시 대응 요령 ◦갑질에 대한 자세 등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방지 ◦재해·재난 시 대응 능력 강화

다. 주택관리사(보)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보수교육
(교육비 – 비숙박 : 20만원, 온라인 : 13만원)

1) 교육장 및 교육형태

교육장명	장소	교육형태	비고
서울교육장	협회 평생교육원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가산디지털1로 168)	비숙박	- 기수 : 3월(1기), 9월(2기)
온라인과정	온라인 교육	온라인	- 기수: 1월(1기), 2월(2기), 3월(3기), 4월(4기), 5월(5기), 6월(6기), 7월(7기), 8월(8기), 9월(9기), 10월(10기), 11월(11기), 12월(12기)

2) 교육일정

– 집체교육

구분	기수	교육기간	예정인원	교육형태	지역
보수 (2회)	05월(1기)	5월 중	100명	비숙박	서울
	11월(2기)	11월 중	100명	비숙박	

– 온라인교육

구분	기수	교육기간	예정인원	교육형태	지역
보수교육 (15회)	01월(1기)	1월 중	100명	비숙박	온라인과정
	01월(2기)	1월 중	100명	비숙박	
	02월(3기)	2월 중	100명	비숙박	
	02월(4기)	2월 중	100명	비숙박	
	03월(5기)	3월 중	100명	비숙박	
	03월(6기)	3월 중	100명	비숙박	
	04월(7기)	4월 중	100명	비숙박	
	05월(8기)	5월 중	100명	비숙박	
	06월(9기)	6월 중	100명	비숙박	
	07월(10기)	7월 중	100명	비숙박	
	08월(11기)	8월 중	100명	비숙박	
	09월(12기)	9월 중	100명	비숙박	
	10월(13기)	10월 중	100명	비숙박	
	11월(14기)	11월 중	100명	비숙박	
	12월(15기)	12월 중	100명	비숙박	

※ 집체교육과 온라인교육 병행 진행 예정
※ 상기일정 및 장소는 교육기획 및 준비 또는 '코로나19' 와 같은 비상상황의 경우 변경되거나 '온라인 과정' 으로 대체 될 수 있음

3) 교육 시간표

– 집체교육

요일 / 시간	1일차	2일차	3일차
09:00–10:00		입찰과 계약 (3시간)	공동주택 하자보수 절차 및 분쟁해결 (2시간)
10:00–11:00	오리엔테이션 (1시간)		
11:00–12:00	주택관리에 관한 법령 개관 (2시간)		숙지도 평가 및 설문조사 (1시간)
12:00–13:00		중식(中食)	중식(中食)
13:00–14:00	중식(中食)	공동주택 민원회신사례 (2시간)	주택관리사(보) 소양 및 윤리 (2시간)
14:00–15:00	주택관리에 관한 법령 개관 (1시간)		
15:00–16:00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3시간)	공동주택 주요시설 교체 및 수리방법 등의 전문지식 (3시간)	
16:00–17:00			
17:00–18:00			

※ 상기일정 및 장소는 교육기획 및 준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온라인교육

차시(시간)			주 요 내 용
1과목	1차시	50 ‘	【공동주택관리업무 주요화제】 1. 재난상황(호우) 대응요령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분쟁조정 3. 감질예방
2과목	2차시	50 ‘	【주택관리에 관한 법령 개관】 1. 공동주택관리 관련 규정 적용 시 주요 참조사항 2. 공동주택관리법령 상 주요 쟁점별 관련 주요내용 3. 공동주택관리 관련 규정별 주요 내용
	3차시	50 ‘	
	4차시	50 ‘	

차시(시간)			주 요 내 용
3과목	5차시	50 ‘	【주택관리사(보) 소양 및 윤리】 1. 주택관리사(보) 로서 필요한 소양 및 윤리
	6차시	50 ‘	
4과목	7차시	50 ‘	【공동주택 하자보수 절차 및 분쟁해결】 1. 하자보수절차 및 분쟁해결 2. 기타민원사례
	8차시	50 ‘	
5과목	9차시	50 ‘	【공동주택 민원회신사례】 1. 주무부처 민원 사례 중심으로 업무별 처리능력 강화 : 하자보수, 관리업무, 장기수선계획,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련
	10차시	50 ‘	
6과목	11차시	50 ‘	【입찰과 계약】 1. 사업자 선정지침 이해 2. 입찰과정과 계약 작성 등 실무능력 배양
	12차시	50 ‘	
	13차시	50 ‘	
7과목	14차시	50 ‘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1. 채용 및 수습, 사용자와 근로자 2.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인사•행정 업무 처리
	15차시	50 ‘	
	16차시	50 ‘	
8과목	17차시	50 ‘	【공동주택 주요시설 교체 및 수리방법 등의 전문지식】 1. 시설별 안전관리 2. 안전유지관리 매뉴얼
	18차시	50 ‘	
	19차시	50 ‘	
9과목	20차시	50 ‘	【설문조사 및 숙지도 평가】

4) 교육과목별 세부내용

과목명	주요내용	강의목표
주택관리에 관한 법령 개관	◦공동주택관리 관련 규정 적용 시 주요 참조사항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요 쟁점별 관련 규정내용 ◦기타 공동주택관리 관련 규정별 주요 내용 주요 공·사법령, 안전·방재관리 관련 주요 법령, 인사관리 관련 주요 법령	◦공동주택관리법을 포함하여 주택관리와 관계된 법령의 개정 내용 이해
주택관리사(보) 소양 및 윤리	◦주택관리사(보)로서 자기관리 ◦일의 정서적 측면	◦자기관리를 통해 업무능력을 향상
공동주택 하자보수 절차 및 분쟁해결	◦하자보수절차 및 분쟁해결 ◦기타민원사례	◦하자보수절차를 통해 분재해결 능력강화
공동주택 민원회신사례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규약 ◦관리비등 ◦장기수선계획 ◦하자보수 ◦행위허가	◦최근 주무부처의 민원사례 중심으로 업무별 처리능력 강화
입찰과 계약	◦입찰 및 계약 관계 법령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공동주택 입찰 실무 ◦공동주택 계약 실무 ◦입찰 관련 각 종 서식	◦법령을 준수한 흠결 없는 사업자 선정 ◦사업자 선정지침 준수 ◦투명한 입찰 행정
공동주택 주요시설 교체 및 수리방법 등의 전문 지식	◦시설별 안전관리 ◦안전유지관리 매뉴얼	◦공동주택 주요시설 교체와 수리방법을 통해 안전관리 능력 함양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채용 및 수습 ◦사용자와 근로자 ◦근로계약 체결 시 법률문제 ◦근로시간, 휴일, 휴가 ◦취업규칙 및 노사협의회 ◦여성 및 연소자 보호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인사·행정 업무처리
공동주택관리업무 주요화제	◦층간소음 대응 ◦재해·재난 시 대응 요령 ◦갑질에 대한 자세 등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방지 ◦재해·재난 시 대응 능력 강화

2. 교육강사 관련

가. 주택관리사보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교육

과목	강사	비고
공동주택관리법령 주요내용	한영화 강사	변호사 한영화 사무소
관리사무소장 소양 및 윤리	주현덕 강사	멘탈케어센터
건설공사계약실무	장시진 강사	주택관리공단
공동주택의 회계처리기준	최준호 강사	청석세무회계법인
공동주택 노무일반	김영규 강사	리더스노무법인
공동주택 시설물 유지관리	이태봉 강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 민원회신사례	최인석 강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사업자 선정지침	이현숙 강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관리업무 주요화제	유벽희 강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나. 주택관리사 공동주택 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교육

과목	강사	비고
주택관리에 관한 법령 개관	한영화 강사	변호사 한영화 사무소
관리사무소장 소양 및 윤리	주현덕 강사	멘탈케어센터
소통하는 공동주택	유벽희 강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 회계감사	최준호 강사	청석세무회계법인
공동주택 수선공사 집행	장시진 강사	주택관리공단
관리비 징수납부	한영화 강사	변호사 한영화 사무소
공동주택 민원회신사례	최인석 강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입찰 및 계약	김해경 강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관리업무 주요화제	유벽희 강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다. 주택관리사(보)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보수교육

공통과목	강사	비고
주택관리에 관한 법령 개관	한영화 강사	변호사 한영화 사무소
주택관리사(보) 소양 및 윤리	주현덕 강사	멘탈케어센터
공동주택 하자보수 절차 및 분쟁해결	한승복 강사	국토안전관리원
공동주택 민원회신사례	최인석 강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입찰과 계약	김해경 강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 주요시설 교체 및 수리방법 등의 전문 지식	이태봉 강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손강용 강사	대일노무법인
공동주택관리업무 주요화제	유벽희 강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상기 교육계획은 준비사항에 따라 일부조정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교육과목 및 내용

가. 주택관리사보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교육

과목명	주요내용	강의목표
공동주택 관리법령 주요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주요 개정 내용 관리방법결정,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관리비 및 회계운영,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공동주택의 전문관리, 공동주택의 분쟁조정 등	◦공동주택관리법령을 근거한 관리주체 업무처리 도모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회계처리기준 ◦회계처리 및 회계처리기준의 해설 ◦회계감사 감리결과 양정기준 ◦관리주체의 회계감사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회계업무를 전반적 이해와 회계상태 진단능력 강화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적격증빙 도모
공동주택 수선공사 집행	◦착공단계의 업무 착공신고, 안전관리계획, 공사대장 및 시공계획서, 공사안내문 ◦시공단계의 업무 공사기준 및 내용 숙지, 자재 검사 및 보관, 현장관리, 기성검사 및 대금지급 ◦준공단계의 업무 준공검사원 접수 및 검사, 공사대금 정산 및 지급, 지체상금 및 지연이자	◦공동주택 수선공사 착공·시공·준공 표준화된 업무프로세스 제시 ◦관리현장 활용(준용) 능력 배양 ◦투명한 공사 집행
공동주택 민원회신사례	◦관리주체 ◦관리규약 ◦관리비 등 ◦장기수선계획 ◦하자보수 ◦행위허가 ◦선거관리 ◦입주자대표회의	◦최근 주무부처의 민원사례 중심으로 업무별 처리능력 강화
공동주택 노무일반	◦채용 및 근로조건 결정 ◦법정근로조건 ◦여성, 연소자 특별보호, 남녀고용평등 ◦인사 이동 ◦징계, 해고 및 퇴직 ◦취업규칙	◦근로기준에 적합한 인사행정 도모.
공동주택 시설물 유지관리 실무	◦법률적 시설물 안전점검 ◦안전사고 예방 안전관리 ◦시설별 안전관리 ◦안전유지관리 매뉴얼 ◦비상상황 대응 요령	◦공동주택 주요시설 효율적 관리 도모 ◦안전사고 방지 ◦비상상황 긴급대처 능력강화
사업자 선정지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의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연혁 ◦선정지침 이해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이해	◦법령을 준수한 흠결 없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사업자 선정지침 준수
관리사무소장 소양 및 윤리	◦층간소음 대응 ◦재해·재난 시 대응 요령 ◦갑질에 대한 자세 등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방지 ◦재해·재난 시 대응 능력 강화

나. 주택관리사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교육

과목명	주요내용	강의목표
소통하는 공동주택	◦공동주택 소통의 중요성, 종류 및 방법 ◦게시판의 관리 및 인터넷카페 활용 ◦회의 진행을 위한 프리젠테이션 ◦노트북과 컴퓨터 모니터 활용한 진행 ◦PT 슬라이드 작성	◦공동주택 게시판 우수 사례 전파 ◦각종 현장설명회 대비
주택관리사 소양 및 윤리	◦층간소음 대응 ◦재해·재난 시 대응 요령 ◦갑질에 대한 자세 등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방지 ◦재해·재난 시 대응 능력 강화
주택관리에 관한 법령개관	◦공동주택관리 관련 규정 주요사항 ◦공동주택관리법령 상 주요 쟁점별 규정 내용 ◦기타 공동주택관리 고나련 규정별 주요 내용	◦공동주택관리법 근거한 관리주체 업무처리 도모
공동주택 수선공사 집행	◦수선공사 단계별 주요업무 내용 ◦착공단계의 업무 착공신고, 대리인 선임, 예정공정표, 물량산출내역서, 안전관리계획서, 공사안내문 ◦시공단계의 업무 공사시방서에 따른 공사 감리 ◦준공단계의 업무 준공검사 등	◦공동주택 수선공사 착공·시공·준공 표준화된 업무프로세스 제시 ◦관리현장 활용(준용) 능력 배양 ◦투명한 공사 집행
공동주택 회계감사	◦감리결과 양정기준 ◦회계감사 관련규정 및 유의사항 ◦회계 감사 의견 사례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회계업무를 전반적 이해와 회계상태 진단능력 강화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적격증빙 도모
공동주택 민원회신사례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규약 ◦관리비등 ◦장기수선계획 ◦하자보수 ◦행위허가	◦최근 주무부처의 민원사례 중심으로 업무별 처리능력 강화
입찰과 계약	◦입찰 및 계약 관계 법령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공동주택 입찰 실무 ◦공동주택 계약 실무 ◦입찰 관련 각 종 서식	◦법령을 준수한 흠결 없는 사업자 선정 ◦사업자 선정지침 준수 ◦투명한 입찰 행정
관리비 징수 실무	◦관리비 징수 절차 ◦관리비 미납 중간 조치 ◦관리비 미납 후속 조치: 법적 조치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절차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비 징수 ◦관리비 체납에 대한 올바른 법적 조치

다. 휴면자격자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 전 교육

○ 휴면자격자 배치 전 교육은 교육생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일정을 편성(접수인원 저조 시, 법 제70조제1항 주택관리사보 또는 주택관리사 배치교육에 통합하여 실시)

– 주택관리사보 휴면자격자 배치 전 교육

과목명	주요내용	강의목표
공동주택 관리법령 주요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주요 개정 내용 관리방법결정,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관리비 및 회계운영,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공동주택의 전문관리, 공동주택의 분쟁조정 등	◦공동주택관리법령을 근거한 관리주체 업무처리 도모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회계처리기준 ◦회계처리 및 회계처리기준의 해설 ◦회계감사 감리결과 양정기준 ◦관리주체의 회계감사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회계업무를 전반적 이해와 회계상태 진단능력 강화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적격증빙 도모
공동주택 수선공사 집행	◦착공단계의 업무 착공신고, 안전관리계획, 공사대장 및 시공계획서, 공사안내문 ◦시공단계의 업무 공사기준 및 내용 숙지, 자재 검사 및 보관, 현장관리, 기성검사 및 대금지급 ◦준공단계의 업무 준공검사원 접수 및 검사, 공사대금 정산 및 지급, 지체상금 및 지연이자	◦공동주택 수선공사 착공·시공·준공 표준화된 업무프로세스 제시 ◦관리현장 활용(준용) 능력 배양 ◦투명한 공사 집행
공동주택 민원회신사례	◦관리주체 ◦관리규약 ◦관리비 등 ◦장기수선계획 ◦하자보수 ◦행위허가 ◦선거관리 ◦입주자대표회의	◦최근 주무부처의 민원사례 중심으로 업무별 처리능력 강화
공동주택 노무일반	◦채용 및 근로조건 결정 ◦법정근로조건 ◦여성, 연소자 특별보호, 남녀고용평등 ◦인사 이동 ◦징계, 해고 및 퇴직 ◦취업규칙	◦근로기준에 적합한 인사행정 도모.
공동주택 시설물 유지관리 실무	◦법률적 시설물 안전점검 ◦안전사고 예방 안전관리 ◦시설별 안전관리 ◦안전유지관리 매뉴얼 ◦비상상황 대응 요령	◦공동주택 주요시설 효율적 관리 도모 ◦안전사고 방지 ◦비상상황 긴급대처 능력강화
사업자 선정지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의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연혁 ◦선정지침 이해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이해	◦법령을 준수한 흠결 없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사업자 선정지침 준수
관리사무소장 소양 및 윤리	◦층간소음 대응 ◦재해·재난 시 대응 요령 ◦갑질에 대한 자세 등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방지 ◦재해·재난 시 대응 능력 강화

– 주택관리사 휴면자격자 배치 전 교육

과목명	주요내용	강의목표
소통하는 공동주택	◦공동주택 소통의 중요성, 종류 및 방법 ◦게시판의 관리 및 인터넷카페 활용 ◦회의 진행을 위한 프리젠테이션 ◦노트북과 컴퓨터 모니터 활용한 진행 ◦PT 슬라이드 작성	◦공동주택 게시판 우수 사례 전파 ◦각종 현장설명회 대비
주택관리사 소양 및 윤리	◦층간소음 대응 ◦재해·재난 시 대응 요령 ◦갑질에 대한 자세 등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방지 ◦재해·재난 시 대응 능력 강화
주택관리에 관한 법령개관	◦공동주택관리 관련 규정 주요사항 ◦공동주택관리법령 상 주요 쟁점별 규정 내용 ◦기타 공동주택관리 고나련 규정별 주요 내용	◦공동주택관리법 근거한 관리주체 업무처리 도모
공동주택 수선공사 집행	◦수선공사 단계별 주요업무 내용 ◦착공단계의 업무 착공신고, 대리인 선임, 예정공정표, 물량산출내역서, 안전관리계획서, 공사안내문 ◦시공단계의 업무 공사시방서에 따른 공사 감리 ◦준공단계의 업무 준공검사 등	◦공동주택 수선공사 착공·시공·준공 표준화된 업무프로세스 제시 ◦관리현장 활용(준용) 능력 배양 ◦투명한 공사 집행
공동주택 회계감사	◦감리결과 양정기준 ◦회계감사 관련규정 및 유의사항 ◦회계 감사 의견 사례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회계업무를 전반적 이해와 회계상태 진단능력 강화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적격증빙 도모
공동주택 민원회신사례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규약 ◦관리비등 ◦장기수선계획 ◦하자보수 ◦행위허가	◦최근 주무부처의 민원사례 중심으로 업무별 처리능력 강화
입찰과 계약	◦입찰 및 계약 관계 법령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공동주택 입찰 실무 ◦공동주택 계약 실무 ◦입찰 관련 각 종 서식	◦법령을 준수한 흠결 없는 사업자 선정 ◦사업자 선정지침 준수 ◦투명한 입찰 행정
관리비 징수 실무	◦관리비 징수 절차 ◦관리비 미납 중간 조치 ◦관리비 미납 후속 조치: 법적 조치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절차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비 징수 ◦관리비 체납에 대한 올바른 법적 조치

라. 주택관리사(보)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보수교육

1) 공통과목

주택관리사(보)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보수교육 과목별 주요내용

과목명	주요내용	강의목표
주택관리에 관한 법령 개관	◦공동주택관리 관련 규정 적용 시 주요 참조사항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요 쟁점별 관련 규정내용 ◦기타 공동주택관리 관련 규정별 주요 내용 주요 공사법령, 안전·방재관리 관련 주요 법령, 인사관리 관련 주요 법령	◦공동주택관리법을 포함하여 주택관리와 관계된 법령의 개정 내용 이해
회계상태진단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합계잔액시산표, 잔액증명서 검토 ◦회계처리기준 ◦예산 대비 집행실적 검토 ◦회계처리시스템을 통한 회계정보 검토	◦회계부정 방지 ◦아파트 회계상태 진단능력 배양
공동주택 공사 발주 실무	◦하자보수보증금,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 ◦공사의 구분과 분리발주 ◦공사업별 경미한 공사 ◦건설업과 건설공사의 종류 ◦건설공사의 시공 자격 ◦공사비 상한선 설정 및 발주 서류 작성	◦공동주택 수선공사 착공·시공·준공 관련 업무 처리 도모 ◦각 법령에 따른 발주 실무 능력 배양
공동주택 민원회신사례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규약 ◦관리비등 ◦장기수선계획 ◦하자보수 ◦행위허가	◦최근 주무부처의 민원사례 중심으로 업무별 처리능력 강화
공동주택 건축물 점검 및 평가	◦건축물 점검·진단 종류 및 실시 주기 ◦정밀안전점검 실시 결과 평가 ◦정밀안전점검 과업지시서 작성 요령 ◦보고서 탐독(보고서 내용 확인 방법) ◦공동주택 취약부위 점검	◦안전점검 제도의 이해 ◦과업지시서 포함 사항 숙지 및 보고서 판독 요령 향상 ◦관리주체 감독 기능 강화
공동주택 관리정책 및 직업윤리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 ◦층간소음 대응 ◦재해·재난 시 대응 요령 ◦갑질에 대한 자세 등	◦관리사무소장 윤리의식 강화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방지 ◦재해·재난 시 대응 능력 강화

2) 법무특화과목

주택관리사(보)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보수교육 과목별 주요내용

과목명	주요내용	강의목표
공동주택 관리규약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적용범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제정 및 개정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해설 ◦공동주택관리규약 규약 해설	◦관리규약 전문에 대한 이해 ◦법적 논란이 되고 있는 조문에 대한 심층 고찰 ◦관리규약 개정 시 흠결 없는 개정(안) 작성 능력 배양 ◦규약에 따른 관리
공동주택 운영규정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안)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안)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주차장 등 각종 시설 사용 · 관리규정(안) ◦방송시설 사용규정(안) ◦공용시설물 사용규정(안) ◦외부 업체 등 출입에 관한 규정(안) ◦승강기 운영규정(안)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자체 운영 규정을 통한 관리분쟁 완화 ◦흠결 없는 운영규정 개정 및 제정 능력 함양
소송대리 I	◦독촉절차 ◦독촉절차의 의의 ◦관할법원 ◦지급명령 ◦채권자의 소제기와 법원의 소송절차 회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지급명령(독촉절차)의 인터넷 신청	◦법적절차에 따른 체납관리비 징수
소송대리 II	◦소장 접수와 송달 ◦답변서의 제출 및 심사 ◦서면에 의한 쟁점처리절차증거조사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 ◦판결의 선고 ◦상소제기 및 강제집행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전체적인 진행순서에 대해 알아보며 각각의 절차에 대한 준비사항을 숙지하여 현장에서의 대처능력 배양

3) 노무특화과목

주택관리사(보)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보수교육 과목별 주요내용

과목명	주요내용	강의목표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채용 및 수습 ◦사용자와 근로자 ◦근로계약 체결 시 법률문제 ◦근로시간, 휴일, 휴가 ◦취업규칙 및 노사협의회 ◦여성 및 연소자 보호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인사·행정 업무처리
임금 및 퇴직금	◦임금 ◦퇴직금	◦법령을 준수한 임금 및 퇴직금 산정
근로관계 종료	◦합의퇴직 ◦정년퇴직 ◦계약기간 만료	◦절차를 준수한 퇴직
해고, 징계	◦해고 ◦징계권행사 및 징계해고 등 ◦정리해고 등 ◦비정규직 차별시정절차	◦절차를 준수한 징계권행사 및 해고

4) 입찰특화과목

주택관리사(보)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보수교육 과목별 주요내용

과목명	주요내용	강의목표
사업자 선정지침	◦국가계약법령의 개요 ◦공동주택관련법령	◦공동주택과 관련된 각종 법령에 대한 학습 등 법령 이해능력 함양
공동주택 입찰 및 계약 I	◦입찰 업무프로세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구성도 ◦지침적용 시 확인할 사항 ◦입찰과정별 확인사항 ◦입찰유의서 작성 ◦사업자선정 관련 실무문서 작성	◦사업자 선정지침에 대한 개괄 및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입찰업무에 과정에 대하여 학습 ◦각 입찰과정의 흐름과 그에 따른 예시를 학습함으로써 입찰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할 수 있음
공동주택 입찰 및 계약 II	◦계약의 기본원칙/의의/종류/절차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예시로 보는 용역계약서 작성 ◦업종별 입찰업무 분석	◦계약내용 작성 시 유의사항 및 용역계약서 작성의 다양한 유형에 대한 숙지로 계약 작성의 실무능력을 배양

마. 주택관리업자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교육

○ 주택관리사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교육과 동일

3. 교육강사

가. 주택관리사보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교육

과목	강사	비고
공동주택관리법령 주요내용	길진영 강사 외 1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 회계감사	최준호 강사 외 2인	청석세무회계법인
공동주택 수선공사 집행	장시진 강사 외 2인	주택관리공단
공동주택 민원회신 사례	김태섭 강사 외 3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 노무일반	김영규 강사 외 3인	공인노무사
공동주택 시설물 유지관리 실무	이현숙 강사 외 1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리사무소장 소양 및 윤리	주현덕 강사 외 1인	멘탈케어센터
사업자 선정지침	최진석 강사 외 2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나. 주택관리사 공동주택 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교육

과목	강사	비고
주택관리에 관한 법령 개관	최정우 강사 외 2인	법무법인 백하 변호사
하자처리실무	한영화 강사 외 2인	변호사 한영화 사무소
소통하는 공동주택	유벽희 강사 외 1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 회계감사	최준호 강사 외 2인	청석세무회계법인
공동주택 민원회신사례	김태섭 강사 외 3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 수선공사 집행	장시진 강사 외 2인	주택관리공단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실무	엄흥식 강사 외 1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입찰과 계약	최진석 강사 외 2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리사무소장 소양 및 윤리	주현덕 강사 외 1인	멘탈케어센터

다. 휴면자격자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 전 교육

○ 휴면자격자 배치 전 교육은 접수인원 저조 시, 법 제70조제1항 주택관리사보 또는 주택관리사 배치교육에 통합하여 실시되는 관계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교육 강사와 동일

라. 주택관리사(보)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보수교육

– 공통과목

공통과목	강사	비고
주택관리에 관한 법령 개관	한영화 강사	변호사 한영화 사무소
공동주택 회계감사	최준호 강사 외 2인	청석세무회계법인
공동주택 공사 발주 실무	장시진 강사	주택관리공단
공동주택 민원회신 사례	김태섭 강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 건축물 점검 및 평가	김재현 강사 외 1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주택관리 관리정책 및 직업윤리	주무부처 공무원 외 2인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특화과목

법무특화과목	강사	비고
공동주택 관리규약	오동현 강사 외 1인	법무법인 백하 변호사
공동주택 운영규정	오동현 강사 외 1인	법무법인 백하 변호사
소송대리 I	유승수 강사	법무법인 백하 변호사
소송대리 II	유승수 강사	법무법인 백하 변호사
노무특화과목	강사	비고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손강용 강사	대일 노무법인 노무사
임금 및 퇴직금	손강용 강사	대일 노무법인 노무사
근로관계 종료	김영규 강사	리더스 노무법인 노무사
해고.징계	김영규 강사	리더스 노무법인 노무사
입찰특화과목	강사	비고
계약관계 및 법령	김해경 강사 외 1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 입찰과 계약 I	김해경 강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 입찰과 계약 II	김해경 강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마. 주택관리업자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교육

○ 주택관리사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교육과 동일

※ 상기 교육계획은 준비사항에 따라 일부조정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7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1. 건고-310호(1987.07.0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제2020-421호(2020.04.11.)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한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 건설공사」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변경)을 작성 및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양천구 신월IC(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가속차로) ~ 경인 제2치하차도 BOX 시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2) 명칭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 건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 왕복4차로 연장1,220m(지하차도 995m), 가속차로 연장 415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1) 성명 : 서울특별시장
2)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초 :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변경 :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붙임조서]

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 주소 : [붙임조서]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붙임조서]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02-2133-8088) 및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02-6438-24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입용지조서]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당초	양천구 신월동	835	도	18,043.4	6,716	서울특별시					
	변경	양천구 신월동	835	도	18,043.4	6,716	서울특별시					
2	당초	양천구 신월동	834	도	5,478.7	920	서울특별시					
	변경	양천구 신월동	834	도	5,478.7	920	서울특별시					
3	당초	양천구 신월동	829	도	2,742.3	73	양천구					
	변경	양천구 신월동	829	도	2,742.3	73	양천구					
4	당초	양천구 신월동	840	도	5,153.6	753	서울특별시					
	변경	양천구 신월동	840	도	5,153.6	753	서울특별시					
5	당초	양천구 신월동	863	도	7,443.6	2,954	서울특별시					
	변경	양천구 신월동	863	도	7,443.6	2,954	서울특별시					
6	당초	양천구 신월동	862	도	10,163.1	2,013	서울특별시					
	변경	양천구 신월동	862	도	10,163.1	2,013	서울특별시					
7	당초	강서구 화곡동	948-2	도	331.9	84	강서구					
	변경	강서구 화곡동	948-2	도	331.9	84	강서구					
8	당초	강서구 화곡동	947-7	도	1,483.6	1,483.6	서울특별시					
	변경	강서구 화곡동	947-7	도	1,483.6	1,483.6	서울특별시					
9	당초	강서구 화곡동	951-9	도	2,403.6	2,403.6	서울특별시					
	변경	강서구 화곡동	951-9	도	2,403.6	2,403.6	서울특별시					
10	당초	강서구 화곡동	931-17	도	297.8	84	서울특별시					
	변경	강서구 화곡동	931-17	도	297.8	84	서울특별시					
11	당초	강서구 화곡동	947-6	도	192.7	192.7	강서구					
	변경	강서구 화곡동	947-6	도	192.7	192.7	강서구					
12	당초	강서구 화곡동	931-15	도	232	83	서울특별시					
	변경	강서구 화곡동	931-15	도	232	83	서울특별시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3	당초	강서구 화곡동	947-4	도	6,796	959	강서구					
	변경	강서구 화곡동	947-4	도	6,796	959	강서구					
14	당초	강서구 화곡동	951-8	도	3,490.6	525	서울특별시					
	변경	강서구 화곡동	951-8	도	3,490.6	525	서울특별시					
15	당초	강서구 화곡동	911-26	도	454	34	서울특별시					
	변경	강서구 화곡동	911-26	도	454	34	서울특별시					
16	당초	양천구 신월동	862	도	10,163.1	5,121	서울특별시					
	변경	양천구 신월동	862	도	10,163.1	5,121	서울특별시					
17	당초	양천구 신월동	863	도	7,443.6	1,471	서울특별시					
	변경	양천구 신월동	863	도	7,443.6	1,471	서울특별시					
18	당초	강서구 화곡동	951-8	도	3,453.9	2,055	서울특별시					
	변경	강서구 화곡동	951-8	도	3,453.9	2,055	서울특별시					
19	당초	강서구 화곡동	947-3	도	5,932.6	103	강서구					
	변경	강서구 화곡동	947-3	도	5,932.6	103	강서구					
20	당초	강서구 화곡동	951-7	도	3,539.8	3,366	서울특별시					
	변경	강서구 화곡동	951-7	도	3,539.8	3,366	서울특별시					
21	당초	강서구 화곡동	951-6	도	3,490.6	312	서울특별시					
	변경	강서구 화곡동	951-6	도	3,490.6	312	서울특별시					
22	당초	양천구 신월동	307-13	도	1,622	50	국토교통부					
	변경	양천구 신월동	307-13	도	1,622	50	국토교통부					
23	당초	양천구 신월동	324	공	1,817	235	양천구					
	변경	양천구 신월동	324	공	1,817	235	양천구					
24	당초	양천구 신월동	149-20	공	215,697.0	1,085	서울특별시					
	변경	양천구 신월동	149-20	공	215,697.0	1,085	서울특별시					
25	당초	양천구 신월동	813	도	3,535.3	26	양천구					
	변경	양천구 신월동	813	도	3,535.3	26	양천구					
26	당초	양천구 신월동	207-61	도	1,153.1	71	서울특별시					
	변경	양천구 신월동	207-61	도	1,153.1	71	서울특별시					
27	당초	양천구 신월동	816	도	2,082.2	205	서울특별시					
	변경	양천구 신월동	816	도	2,082.2	205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74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454호(2022.12.01.)로 고시된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에 대한 오기 사항이 있어 정정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서대문구 좌원상가(아파트)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변경없음
2.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시행자 : 변경없음
3.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위치, 면적, 사업비 및 사업기간(변경)

[정정내용]

위 치	면적(㎡)	사업비	사업기간
서대문구 남가좌동 295-5번지 일대	3,007㎡ (임시이주상가 부지 1,088㎡ 제외)	93,000백만원	2021년~2024년 (정정 전)
			2021년~2023년 (정정 후)

※ 정정사유 : 기정 사업기간 오기에 따른 변경

[변경내용]

위 치	면적(㎡)	사업비	사업기간
서대문구 남가좌동 295-5번지 일대	3,007㎡ (임시이주상가 부지 1,088㎡ 제외)	93,000백만원	2021년~2024년

4.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건축 및 운영·관리 계획의 개요 : 변경없음
5.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기대효과 : 변경없음
6.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주요 도입기능 : 변경없음
7. 일반인 열람
   ○ 열람내용 : 서대문구 좌원상가(아파트)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8.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청 주거환경개선과(☎02-2133-7256), 서대문구청 주거정비과(☎02-330-1633)로 방문하여 주시거나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75호

번동3지역(번동 41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3지역(번동 411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가. 관리지역의 명칭 : 번동3지역(번동 41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나.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구분	위치	관리계획 요건	노후·불량건축물	비고
기준	강북구 번동 411번지 일대	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 미만일 것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현황		79,517.0㎡	전체 : 449동 노후·불량 : 321동(71.5%)	

 다. 정비방향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계획과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계획을 통해 저층 노후주거지의 계획적 공동개발 유도

2.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가. 관리지역의 지정
  ○ 관리지역의 지정 조서

구분	관리지역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	강북구 번동3지역 (번동 41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강북구 번동 411번지 일대	-	증) 79,517.0	79,517.0	-

나. 토지이용계획(안) ※ 향후 관리계획 변경 가능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 지정을 위해 연번부여 및 관리계획 등 현황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본 계획수립 시 관련부서 협의 및 심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자 함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79,517.0	100.0	-
시행구역	공동주택용지	소계		67,138.7	84.4	-
		1	사업가능구역 1 (가로주택정비사업)	9,376.1	11.8	-
		2	사업가능구역 2 (가로주택정비사업)	7,129.5	9.0	-
		3	사업가능구역 3 (가로주택정비사업)	6,967.1	8.8	-
		4	사업가능구역 4 (가로주택정비사업)	6,469.8	8.1	-
		5	사업가능구역 5 (가로주택정비사업)	9,327.6	11.7	-
		6	사업가능구역 6 (가로주택정비사업)	7,441.7	9.4	-
		7	사업가능구역 7 (가로주택정비사업)	4,951.3	6.2	-
		8	사업가능구역 8 (가로주택정비사업)	7,389.7	9.3	-
		9	사업가능구역 9 (가로주택정비사업)	8,085.9	10.2	-
정비기반시설		도로		7,820.2	9.8	-
시행구역 외		주택용지		4,558.1	5.7	-

※ 통합구역 예시 : A구역(1,2구역), B구역(3,4구역), C구역(5구역), D구역(6,7구역), E구역(8,9구역)

다. 정비기반시설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안) ※ 향후 관리계획 변경 가능

1) 도시계획도로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 지정을 위해 기결정 도로에 대한 사항만을 고시하고자 함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기존 미지정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도로의 설치계획(안)은 본 계획 수립 시 관련부서 협의 및 심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자 함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21	3.0	국지	60	번1동 443-98	번1동 443-102	일반	-	-	-
기정	소로	3	22	3.0	국지	44	번1동 443-24	번1동 443-24	일반	-	-	-
기정	소로	3	-	3.9	국지	-	-	-	일반	-	-	-
기정	소로	3	-	4.0	국지	-	-	-	일반	-	-	-
기정	소로	3	-	2.4	국지	-	-	-	일반	-	-	-
기정	소로	3	-	2.6	국지	-	-	-	일반	-	-	-
기정	소로	3	-	2.7	국지	-	-	-	일반	-	-	-
기정	소로	3	-	2.9	국지	-	-	-	일반	-	-	-
기정	소로	3	-	2.6	국지	-	-	-	일반	-	-	-
기정	소로	3	-	3.1	국지	-	-	-	일반	-	-	-
기정	소로	3	-	2.9	국지	-	-	-	일반	-	-	-
기정	소로	3	-	2.9	국지	-	-	-	일반	-	-	-
기정	소로	3	-	2.8	국지	-	-	-	일반	-	-	-
기정	소로	3	-	2.6	국지	-	-	-	일반	-	-	-
기정	소로	3	-	2.7	국지	-	-	-	일반	-	-	-
기정	소로	3	-	2.5	국지	-	-	-	일반	-	-	-
기정	소로	3	-	3.2	국지	-	-	-	일반	-	-	-
기정	소로	3	-	2.9	국지	-	-	-	일반	-	-	-
기정	소로	3	-	3.2	국지	-	-	-	일반	-	-	-
기정	소로	3	-	2.9	국지	-	-	-	일반	-	-	-
기정	소로	3	-	2.9	국지	-	-	-	일반	-	-	-
기정	소로	3	-	2.7	국지	-	-	-	일반	-	-	-
기정	소로	3	-	2.7	국지	-	-	-	일반	-	-	-
기정	소로	3	-	2.7	국지	-	-	-	일반	-	-	-
기정	소로	3	-	3.2	국지	-	-	-	일반	-	-	-
기정	소로	3	-	3.0	국지	-	-	-	일반	-	-	-
기정	소로	3	-	3.0	국지	-	-	-	일반	-	-	-
기정	소로	3	-	2.4	국지	-	-	-	일반	-	-	-
기정	소로	3	-	2.4	국지	-	-	-	일반	-	-	-
기정	소로	3	-	2.4	국지	-	-	-	일반	-	-	-
기정	소로	3	-	2.9	국지	-	-	-	일반	-	-	-
기정	소로	2	-	8.1	국지	-	-	-	일반	-	-	-
기정	소로	2	-	15.0	보조간선	-	-	-	일반	-	-	-

2) 공동이용시설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안)은 본 계획 수립 시 관련부서 협의 및 심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자 함

라. 교통처리계획(안) ※ 향후 관리계획 변경 가능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교통처리계획(안)은 본 계획 수립 시 관련부서 협의 및 심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자 함

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 향후 관리계획 변경 가능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 가로주택정비사업 총 9개소 추진 중

도면표시	구역명	위치	면적	사업계획					비고
				토지등 소유자	기존 호수	시행자	추진 단계	최초 결정일	
합계			67,138.7㎡ (79,517.0㎡)	764	461	-	-	-	-
1	번동 416-4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번동 416-48 일대	9,376.1㎡	110	71	조합 (예정)	동의서 징구	-	-
2	번동 415-5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번동 415-55 일대	7,129.5㎡	67	52	조합 (예정)	동의서 징구	-	-
3	번동 413-4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번동 413-44 일대	6,967.1㎡	78	41	조합 (예정)	동의서 징구	-	-
4	번동 414-1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번동 414-11 일대	6,469.8㎡	74	44	조합 (예정)	동의서 징구	-	-
5	번동 444-8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번동 444-80 일대	9,327.6㎡	100	62	조합 (예정)	동의서 징구	-	-
6	번동 411-2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번동 411-21 일대	7,441.7㎡	52	60	조합 (예정)	동의서 징구	-	-
7	번동 411-10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번동 411-108 일대	4,951.3㎡	52	27	조합 (예정)	동의서 징구	-	-
8	번동 443-46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번동 443-46 일대	7,389.7㎡	108	55	조합 (예정)	동의서 징구	-	-
9	번동 443-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번동 443-4 일대	8,085.9㎡	123	49	조합 (예정)	동의서 징구	-	-

※ 개별 사업구역 면적은 연번부여 및 관리계획 등 현황 기준임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계획: 본 계획 수립 시 관련부서 협의 및 심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자 함

바. 건폐율 · 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안) ※ 향후 관리계획 변경 가능

○ 건축물의 밀도계획은 현재 용도지역, 용도지구 현황을 바탕으로 수립함

구분	내용			비 고
사업가능구역 내	건폐율	준주거	60% 이하	
		3종일반	50% 이하	
		2종일반	60% 이하	
	용적률	준주거	기준 300% 이하 / 상한 500% 이하	
		3종일반	기준 250% 이하 / 상한 300% 이하	
		2종일반	기준 200% 이하 / 상한 250% 이하	
	높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층수(높이 적용)		

3. 관련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4. 관계도서

○ 서울특별시 전략주택공급과(☎ 02-2133-8227) 및 강북구 주거정비과(☎ 02-901-2574)에 비치 ·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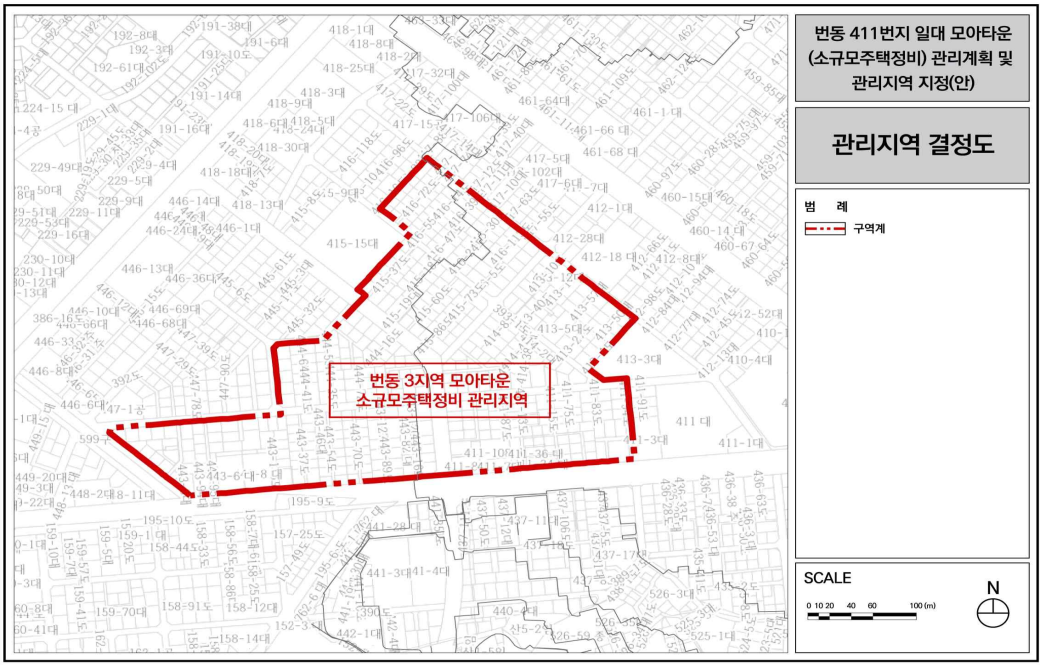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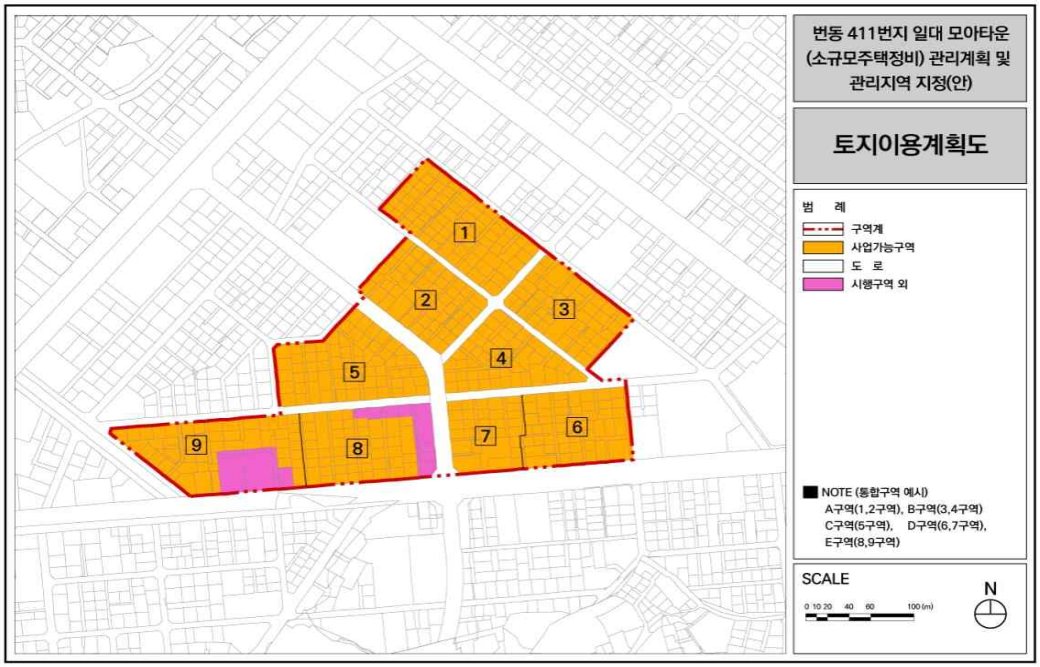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관리계획 및 관리지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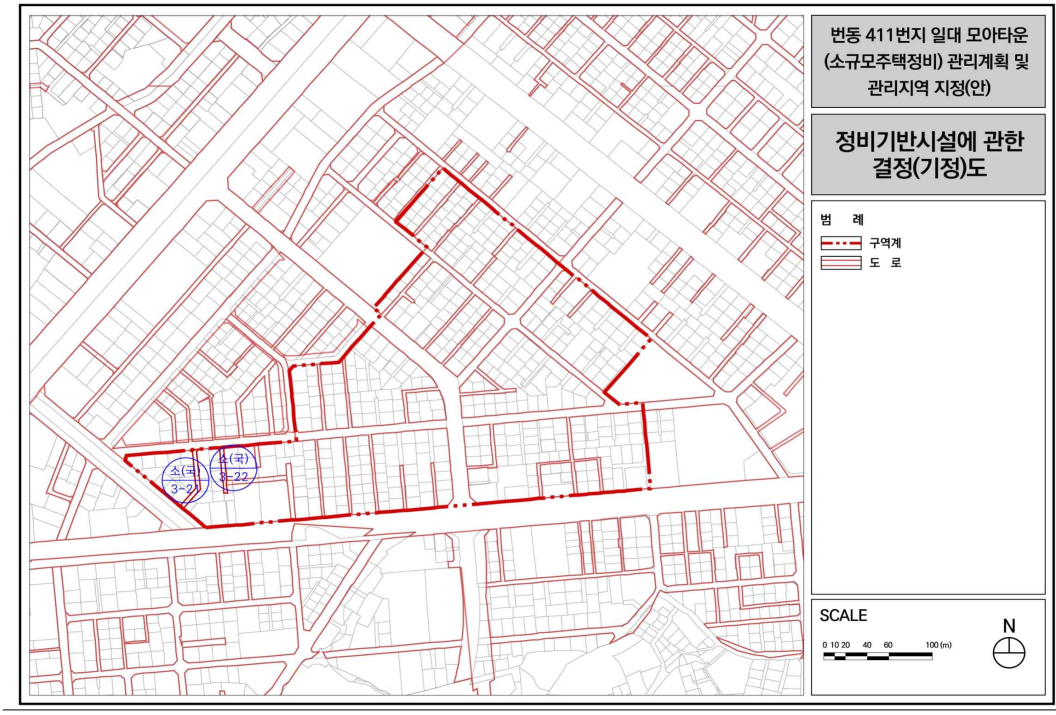
■ 관리지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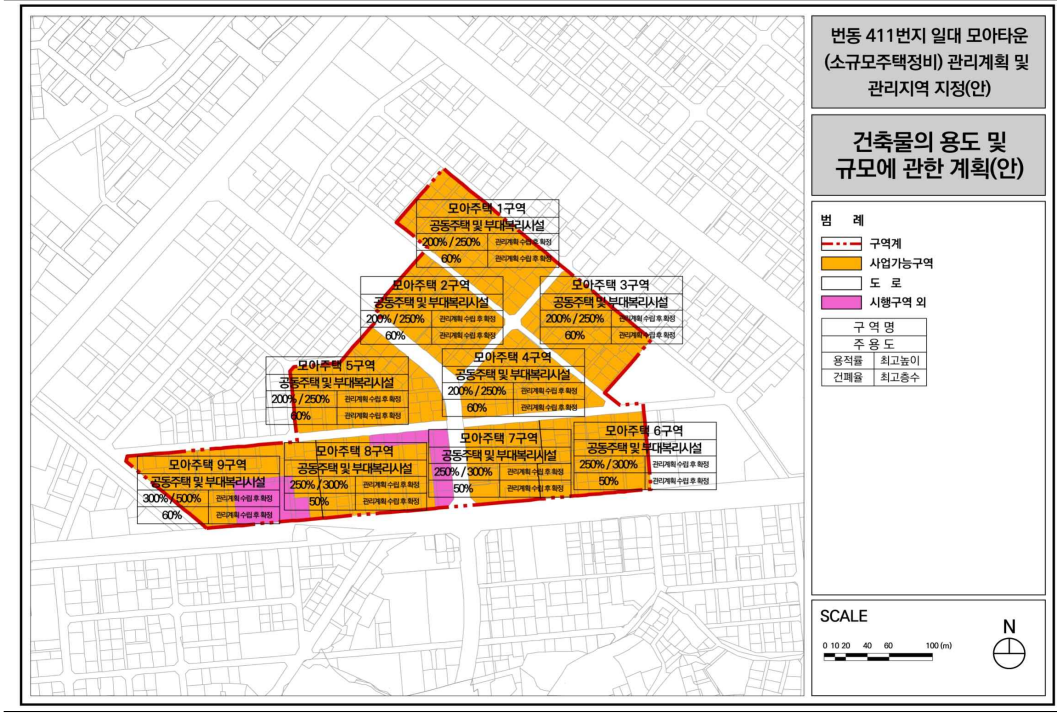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안) ※ 연번부여 및 관리계획 등 현황 기준으로 작성



■ 정비기반시설(기정) – 도로



■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계획(안)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76호

수유동1지역(수유동 52-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1지역(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가. 관리지역의 명칭 : 수유동1지역(수유동 52-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나.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구분	위치	관리계획 요건	노후·불량건축물	비고
기준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 미만일 것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현황		72,754.7㎡	전체 : 361동 노후·불량 : 272동(75.3%)	

다. 정비방향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계획과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계획을 통해 저층 노후주거지의 계획적 공동개발 유도

2.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가. 관리지역의 지정

○ 관리지역의 지정 조서

구분	관리지역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	강북구 수유동1지역 (수유동 52-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	증) 72,754.7	72,754.7	-

나. 토지이용계획(안) ※ 향후 관리계획 변경 가능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 지정을 위해 연번부여 및 관리계획 등 현황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본 계획수립 시 관련부서 협의 및 심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자 함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72,754.7	100.0	-
시행구역	공동주택용지	소계		64,703.7	88.9	-
		1	사업가능구역 1 (가로주택정비사업)	10,047.6	13.8	-
		2	사업가능구역 2 (가로주택정비사업)	12,295.9	16.9	-
		3	사업가능구역 3 (가로주택정비사업)	10,408.6	14.3	-
		4	사업가능구역 4 (가로주택정비사업)	3,483.6	4.7	-
		5	사업가능구역 5 (가로주택정비사업)	4,779.8	6.5	-
		6	사업가능구역 6 (가로주택정비사업)	4,779.7	6.5	-
		7	사업가능구역 7 (가로주택정비사업)	5,122.5	7.0	-
		8	사업가능구역 8 (가로주택정비사업)	4,757.6	6.5	-
		9	사업가능구역 9 (가로주택정비사업)	3,736.4	5.1	공원 포함
		10	사업가능구역 10 (가로주택정비사업)	5,291.9	7.2	-
정비기반시설		도로		8,050.9	11.0	-
시행구역 외		주택용지		-	-	-

※ 통합구역 예시 : A구역(1,10구역), B구역(2,3구역), C구역(4,5구역), D구역(6,7,8,9구역)

다. 정비기반시설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안) ※ 향후 관리계획 변경 가능

1) 도시계획도로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 지정을 위해 기결정 도로에 대한 사항만을 고시하고자 함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기존 미지정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도로의 설치계획(안)은 본 계획 수립 시 관련부서 협의 및 심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자 함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	2.9	국지	-	-	-	-	-	-	-
기정	소로	3	-	2.6	국지	-	-	-	-	-	-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	2.6	국지	-	-	-	-	-	-	-
기정	소로	3	-	2.7	국지	-	-	-	-	-	-	-
기정	소로	3	-	3.6	국지	-	-	-	-	-	-	-
기정	소로	3	-	2.2	국지	-	-	-	-	-	-	-
기정	소로	3	-	2.4	국지	-	-	-	-	-	-	-
기정	소로	3	-	2.6	국지	-	-	-	-	-	-	-
기정	소로	3	-	2.6	국지	-	-	-	-	-	-	-
기정	소로	2	-	8.1	국지	-	-	-	-	-	-	-

2) 공동이용시설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안)은 본 계획 수립 시 관련부서 협의 및 심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자 함

라. 교통처리계획(안) ※ 향후 관리계획 변경 가능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교통처리계획(안)은 본 계획 수립 시 관련부서 협의 및 심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자 함

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 향후 관리계획 변경 가능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 가로주택정비사업 총 10개소 추진 중

도면 표시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사 업 계 획					비 고
				토지등 소유자	기존 호수	시행자	추진 단계	최초 결정일	
합 계			64,703.7㎡ (72,754.7㎡)	658	387	-	-	-	-
1	수유동 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유동 49-62 일대	10,047.6㎡	95	58	조합 (예정)	동의서 징구	-	-
2	수유동 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유동 56-31 일대	12,295.9㎡	128	86	조합 (예정)	동의서 징구	-	-
3	수유동 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유동 57-4 일대	10,408.6㎡	92	65	조합 (예정)	동의서 징구	-	-
4	수유동 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유동 56-25 일대	3,483.6㎡	52	21	조합 (예정)	동의서 징구	-	-
5	수유동 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유동 56-98 일대	4,779.8㎡	76	38	조합 (예정)	동의서 징구	-	-
6	수유동 6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유동 52-1 일대	4,779.7㎡	74	31	조합 (예정)	동의서 징구	-	-

도면 표시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사 업 계 획					비 고
				토지등 소유자	기존 호수	시행자	추진 단계	최초 결정일	
7	수유동 7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유동 52-68 일대	5,122.5㎡	59	41	조합 (예정)	동의서 징구	-	-
8	수유동 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유동 52-11 일대	4,757.6㎡	53	20	조합 (예정)	-	-	-
9	수유동 9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유동 49-1 일대	3,736.4㎡	8	7	조합 (예정)	-	-	-
10	수유동 10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유동 48-55 일대	5,291.9㎡	21	20	조합 (예정)	-	-	-

※ 개별 사업구역 면적은 연번부여 및 관리계획 등 현황 기준임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계획: 본 계획 수립 시 관련부서 협의 및 심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자 함

바. 건폐율 · 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안) ※ 향후 관리계획 변경 가능

○ 건축물의 밀도계획은 현재 용도지역, 용도지구 현황을 바탕으로 수립함

구 분	내 용			비 고
사업가능구역 내	건폐율	3종일반	50% 이하	
		2종일반 (7층 이하)	60% 이하	
		1종일반	60% 이하	
	용적률	3종일반	기준 250% 이하 / 상한 300% 이하	
		2종일반 (7층 이하)	기준 200% 이하 / 상한 250% 이하	
		1종일반	기준 150% 이하 / 상한 200% 이하	
	높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층수(높이 적용)		

3. 관련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4. 관계도서

○ 서울특별시 전략주택공급과(☎ 02-2133-8227) 및 강북구 주거정비과(☎ 02-901-2573)에 비치 ·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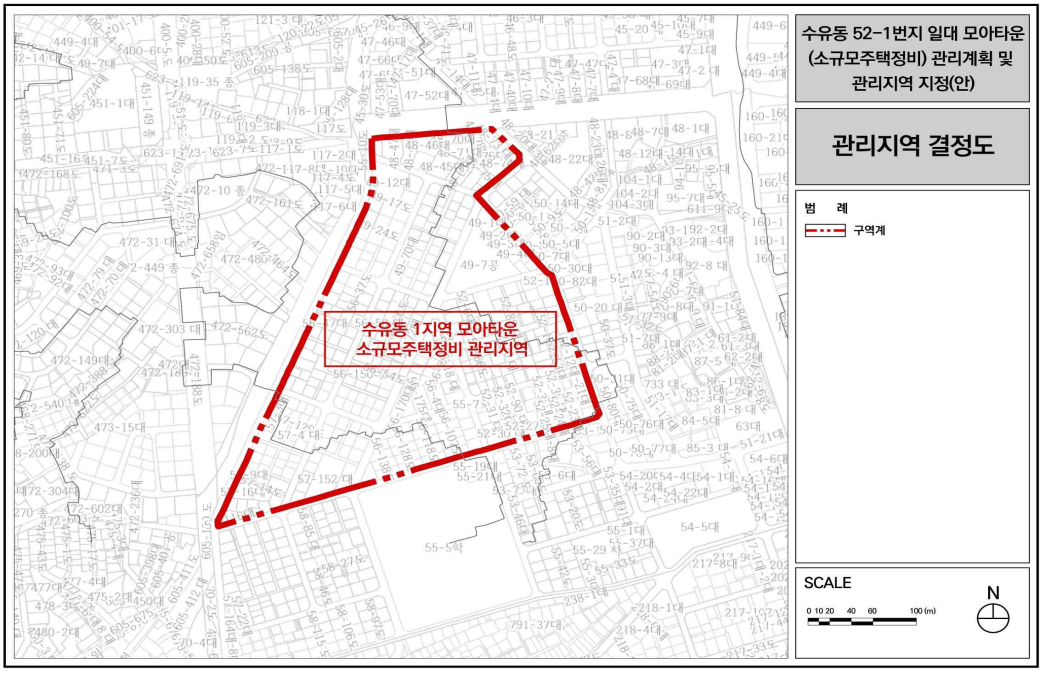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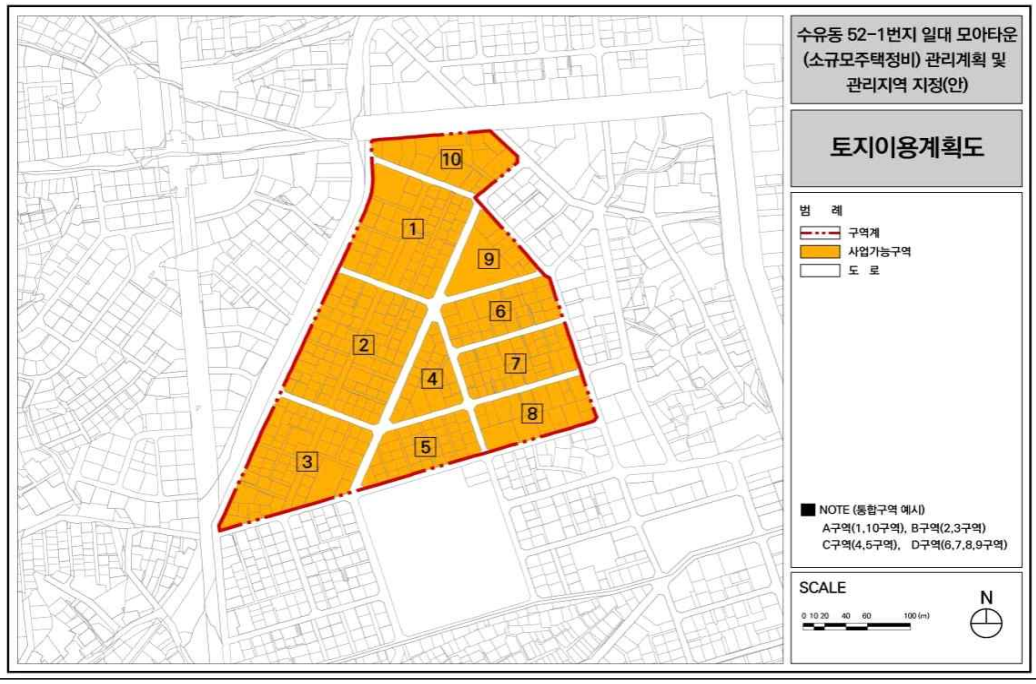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관리계획 및 관리지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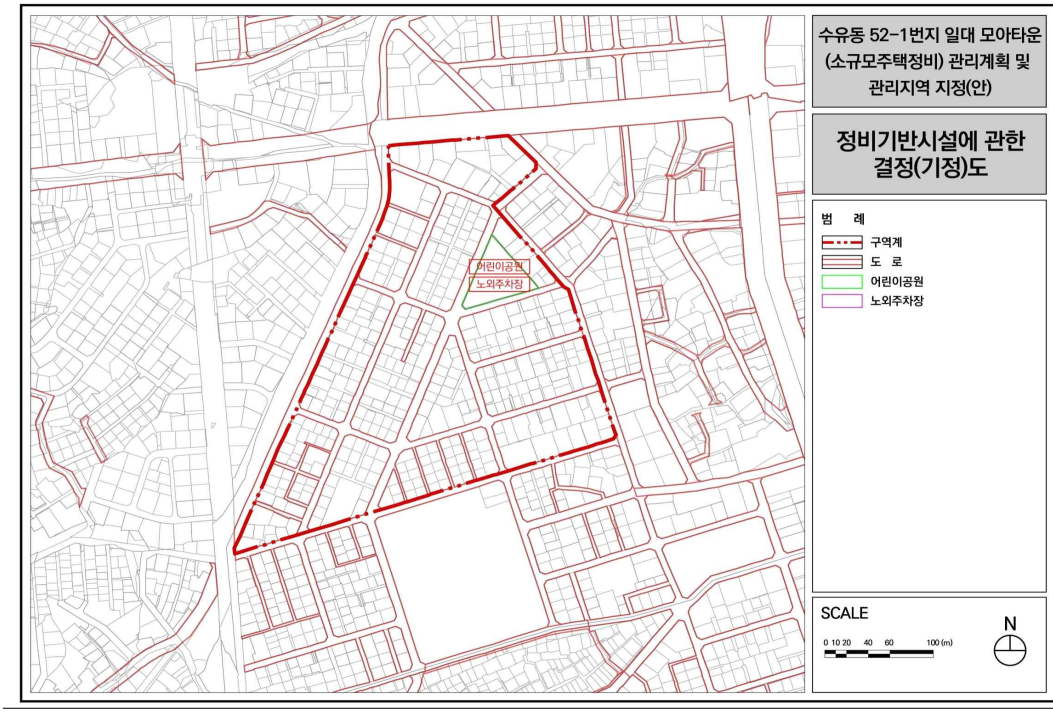
■ 관리지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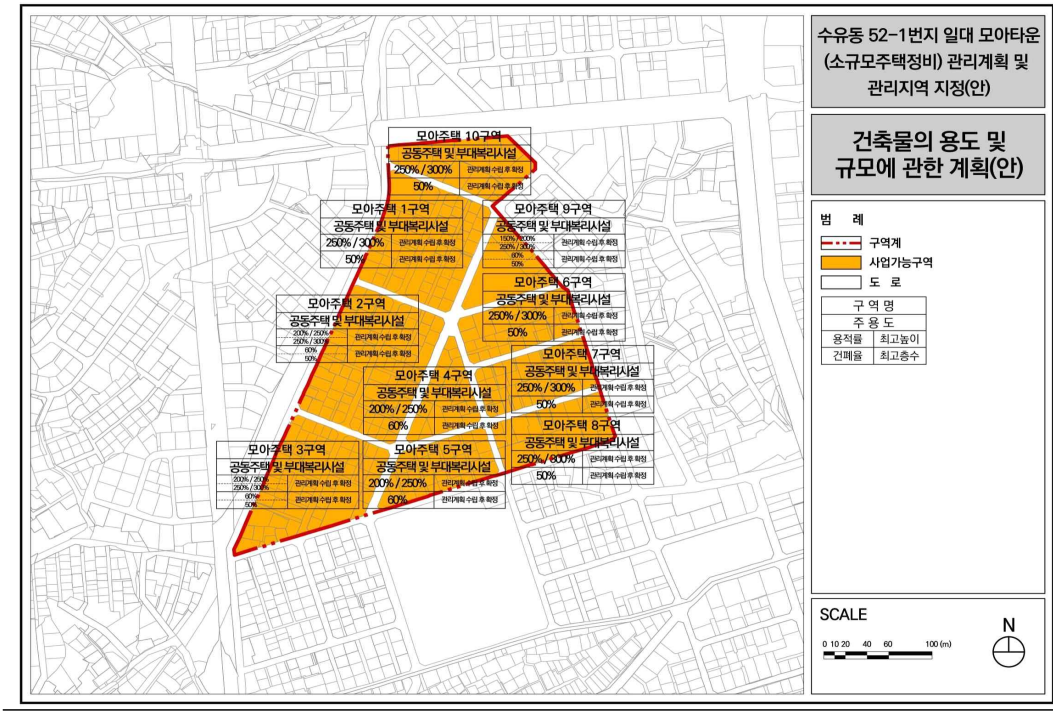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안) ※ 연번부여 및 관리계획 등 현황 기준으로 작성



■ 정비기반시설(기정) – 도로



■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계획(안)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77호

2024년 서울특별시 예산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2024년 서울특별시 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49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단위 : 천원)

회 계 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총 계	45,740,517,556	1,100,000,000
일 반 회 계	33,049,200,567	1,000,000,000
특 별 회 계	12,691,316,989	100,000,000
공기업특별회계	1,821,823,518	100,000,000
(1) 수도사업특별회계	970,000,000	50,000,000
(2)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851,823,518	50,000,000
기타특별회계	10,869,493,471	
(3)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2,051,854,581	
(4) 교통사업특별회계	1,544,935,174	
(5)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23,450,664	
(6) 주택사업특별회계	2,230,740,092	
(7) 도시개발특별회계	1,676,510,576	
(8) 균형발전특별회계	178,751,110	
(9)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8,658,091	
(1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915,163,409	
(11)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32,458,563	
(12) 소방특별회계	1,006,971,211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78호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긴등마을)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218호(2007.07.25.), 제2007-385호(2007.10.25.), 제2010-105호(2010.03.25.), 제2012-192호(2012.07.26.), 제2012-252호(2012.09.20.), 제2014-132호(2014.04.03.), 제2016-194호(2016.07.07.), 제2017-305호(2017.08.17.), 제2017-355호(2017.10.10.), 제2018-119호(2018.04.19.), 제2018-136호(2018.05.03.), 제2020-145호(2020.04.16.), 제2021-61호(2021.02.04.), 제2021-392호(2021.07.22.), 제2022-78호(2022.02.24.), 제2022-364호(2022.08.25.), 제2022-514호(2022.12.22.), 제2023-431호(2023.10.05.)로 변경 결정된 방화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포함)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 목적 : 변경 없음

명 칭	유 형	위 치	면적(㎡)			변경 사유
			기정	증감	변경	
방화 재정비 촉진지구	주거 지형	강서구 방화동 609번지 일대	361,121.2	-	361,121.2	-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 연도 : 변경 없음
   ○ 기준연도 : 2004년
   ○ 목표연도 : 2025년

3. 재정비촉진지구의 기본 방향 및 목표 : 변경 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 변경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361,121.2	-	361,121.2	100.0	-
택 지	소 계	254,150.2	감)9.5	254,140.7	70.4	-
	주택건설용지	254,150.2	감)9.5	254,140.7	70.4	
기반시설	소 계	102,863.0	증)9.5	102,872.5	28.5	-
	도 로	59,597.0	감)24.2	59,572.8	16.5	
	공원 및 녹지	13,066.0	증)33.7	13,099.7	3.6	
	광 장	326.0	-	326.0	0.1	
	학 교	27,478	-	27,478	7.6	
	공 공 청 사	396.0	-	396.0	0.1	
	사회복지시설	656.0	-	656.0	0.2	
	문화시설	1,344.0	-	1,344.0	0.4	사회복지시설 중복
기 타	종 교 시 설	4,108.0	-	4,108.0	1.1	-

※ 변경 사유 : 긴등마을 재정비촉진구역 측량성과 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2) 인구주택 수용계획 : 변경 없음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에 명시

3) 교육 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 변경 없음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에 명시

4) 공원 · 녹지 시설 설치계획 : 변경

구 분	명 칭		개 소			면 적(㎡)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공원 및 녹지 시설	합계		5	-	5	13,066	증)33.7	13,099.7	
	공원	소계	4	-	4	12,739	증)34.9	12,773.9	
		어린이 공원	4	-	4	12,739	증)34.9	12,773.9	방화2,3,5,긴등마을구역 (구역별 1개소)
	녹지	계	1	-	1	327	감)1.2	325.8	
		경관녹지	1	-	1	327	감)1.2	325.8	긴등마을구역 1개소

※ 변경 사유 : 긴등마을 재정비촉진구역 측량성과 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5) 교통 계획 : 변경 없음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에 명시

6) 경관 계획 : 변경 없음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에 명시

7) 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변경

구분	위치		면적(㎡)			구성비(%)	사업방식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계			361,121.2	-	361,121.2	100.0	-	-
재정비 촉진 구역	소 계		254,061.2	증)3.2	254,064.4	70.4	-	변경
	긴등마을		31,631.0	증)3.2	31,634.2	8.8	주택 재건축	변경
	방화6구역		31,554.2	-	31,554.2	8.7	주택 재건축	기정
	방화3구역		92,139.0	-	92,139.0	25.6	주택 재건축	기정
	방화5구역		98,737.0	-	98,737.0	27.3	주택 재건축	기정
존치 지역	소계		107,060.0	감)3.2	107,056.8	29.6	-	변경
	존치 정비구역	방화2구역	35,076.0	-	35,076.0	9.7	-	기정
	존치 관리구역	기반시설 및 존치구역	71,984.0	감)3.2	71,980.8	19.9	-	변경

※ 변경 사유 : 긴등마을 재정비촉진구역 측량성과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8) 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 변경 없음

용도지역		면적(㎡)			구성비
		기정	증감	변경	
계		361,121.2	-	361,121.2	100.0
주거지역	소 계	360,904.2	-	360,904.2	99.9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93,953.4	-	93,953.4	26.0
	제2종일반주거지역	226,820.6	-	226,820.6	62.8
	제3종일반주거지역	40,130.2	-	40,130.2	11.1
자연녹지지역		217.0	-	217.0	0.1

9) 촉진사업별 용적율,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 변경

구역구분	구분	구역명	주용도	건폐율	용적율		최고층수	비고
					기준(%)	상한(%)		
재정비 촉진구역	기정	긴등마을	공동주택	30	180	239.25	15	해발57.86m 미만
	변경				180	239.69		
	기정	방화6구역	공동주택	50	210	236	16	해발57.86m 미만
	기정	방화3구역	공동주택	30	180	218	16	해발57.86m 미만
	기정	방화5구역	공동주택	60	180	220.11	15	해발57.86m 미만
존치 정비구역	기정	방화2구역	공동주택	60	180	230.00	15	해발57.86m 미만

10)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 변경

구분	구역명	구역면적(㎡)	기반시설면적(㎡)					
			계획 기반시설 ①	계획기반 시설내 국공유지 ②	기존기반 시설내 국공유지 ③	유상 매입시설 ④	순부담 ①-②-③-④	
							면적(㎡)	비율(%)
기정	긴등마을 재정비 촉진구역	31,631.00	3,809.00	183.00	634.00	-	2,992.00	9.5
변경		31,634.20	3,821.70	183.00	634.00	-	3,004.70	9.5
기정	방화6재정비촉진구역	31,554.20	5,410.95	2,602.30	1,822.62	-	986.03	3.1
기정	방화3재정비촉진구역	92,139.00	16,423.00	3,873.40	5,017.60	-	7,532.00	8.2
기정	방화5재정비촉진구역	98,737.00	18,238.70	5,347.00	6,205.00	-	6,472.70	6.5

※ 변경 사유 : 긴등마을 재정비촉진구역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11) 임대주택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대책 : 변경 없음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에 명시

12)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에 명시

13) 광고물 관리계획 : 변경 없음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에 명시

14) 폐기물 관리계획 : 변경 없음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에 명시

15) 기타계획(정보화계획, 에너지 계획, 방재계획, 특성화 계획 등) : 변경 없음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에 명시

16)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가. 방화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 : 변경 없음

나. 방화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 : 변경 없음

다. 방화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 : 변경 없음

라. 긴등마을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 : 변경

■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사업의 명칭 및 위치, 면적 : 변경

구분	촉진사업의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변경	긴등마을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사업)	강서구 마곡동 725-1 번지 (공항동 4-8) 일대	31,631.0	증)3.2	31,634.2	측량성과 결과 반영

(2)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31,631	증)3.2	31,634.2	100.0	-
정 비 기 반 시 설	소 계	3,809.0	증)12.7	3,821.7	12.1	-
	도 로	2,295.0	감)21.0	2,274.0	7.2	-
	공 원	1,187.0	증)34.9	1,221.9	3.9	-
	녹 지	327.0	감)1.2	325.8	1.0	-
획지	소 계	27,822.0	감)9.5	27,812.5	88.0	-
	획지1	27,822.0	감)9.5	27,812.5	88.0	-

※ 긴등마을재정비촉진구역 측량성과 결과 반영에 따라 변경된 구역 면적 적용

※ 긴등마을재정비촉진구역 측량성과 결과 반영에 따라 마곡동 718 주차장(주차2대확보)과 긴등마을 구역과의 구역경계 선형 일부 조정(면적 변경 없음)

(3)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변경

가) 도로 : 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증감	변경		
변경	중로	2	7	15	국지	120	마곡동726 -67	마곡동726 -47	일반	1,845	증)10.5	1,855.5	서고 제2007-218호 (2007.7.5.)	-
변경	소로	3	1	4~7	국지	19	마곡동 720	마곡동 726 -31	일반	135	증)3.3	138.3	서고 제2007-218호 (2007.7.5.)	-
변경	중로	1	11	20	집산	353 (28)	마곡동 730 -7	마곡동 730 -35	일반	315	감)34.8	280.2	서고 제2008-498호 (2008.12.3)	-

※ 변경 사유 : 긴등마을 재정비촉진구역 측량성과 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나) 공원 : 변경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변경	9	공원	어린이공원	마곡동 725-27일원	1,187.0	증)34.9	1,221.9	서고 제2005-312호 (2005.10.13.)	-

※ 변경 사유 : 긴등마을 재정비촉진구역 측량성과 결과 반영에 따른 공원 선형 조정

다) 녹지 : 변경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변경	1	녹지	경관녹지	방화동 217-153 일원	327.0	감)1.2	325.8	서고 제2007-218호 (2007.7.5)	-

※ 변경 사유 : 긴등마을 재정비촉진구역 측량성과 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 변경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 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및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긴등마을재정비 촉진구역	31,631.0	획지1	27,822.0	강서구 마곡동 725-1일대	167	-	-	167		공동주택 부대복리 시설
변경	긴등마을재정비 촉진구역	31,634.2	획지1	27,812.5	강서구 마곡동 725-1일대	167	-	-	167	-	공동주택 부대복리 시설

※ 변경 사유 : 긴등마을 재정비촉진구역 측량성과 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 이 하 여 백 >

나) 건축시설 계획 : 변경

■ 기정

<table>
<tr><th rowspan="2">결정
구분</th><th colspan="2">구역구분</th><th colspan="2">가구/획지 구분</th><th rowspan="2">위치</th><th rowspan="2">연면적 (㎡)</th><th rowspan="2">주된 용도</th><th rowspan="2">건폐율
(%)</th><th rowspan="2">용적율(%)
예정법적 상한</th><th rowspan="2">높이</th><th rowspan="2">층수</th></tr>
<tr><th>명칭</th><th>면적(㎡)</th><th>명칭</th><th>면적(㎡)</th></tr>
<tr><td>기정</td><td>긴등마을
재정비
촉진구역</td><td>31,631.0</td><td>획지1</td><td>27,822.0</td><td>강서구
마곡동
725-1</td><td>66,565.18</td><td>공동주택/
부대
복리시설</td><td>30
이하</td><td>239.25 이하</td><td>해발
57.86m
미만</td><td>15층</td></tr>
<tr><td colspan="3" rowspan="2">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td><td colspan="9">o 총 세대수 : 603 세대
<table>
<tr><th colspan="2">구분(전용면적)</th><th>세대수(세대)</th><th>구성비(%)</th><th>비고</th></tr>
<tr><td colspan="2">합계</td><td>603</td><td>100</td><td></td></tr>
<tr><td>임대</td><td>60㎡이하</td><td>59</td><td>9.8</td><td></td></tr>
<tr><td rowspan="4">분양</td><td>소계</td><td>544</td><td>90.2</td><td></td></tr>
<tr><td>60㎡이하</td><td>99</td><td>16.4</td><td></td></tr>
<tr><td>60㎡~85㎡</td><td>393</td><td>65.2</td><td></td></tr>
<tr><td>85㎡ 초과</td><td>52</td><td>8.6</td><td></td></tr>
</table></td></tr>
<tr><td colspan="9">•개발가능용적율 : 기준용적율+(기준용적율 × 1.3α)
= 180 + (180 × 1.3 × 0.10754) = 205.164%
※ α = 공공시설 제공한 면적(순부담)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 후 대지면적
= 2,992.0 ㎡ / 27,822.0㎡ = 0.10754
•예정 법적상한 용적율 : 239.25%
•소형임대주택건설 용적율 : (239.25%-205.164%) × 50% = 17.043%
•소형임대주택건설 연면적 : 27,822㎡ × 17.043% = 4,741.70㎡ 이상 확보 필요
<table>
<tr><th>전용면적</th><th>공용면적</th><th>공급면적</th><th>세대수</th><th>연면적</th></tr>
<tr><td>59.94㎡</td><td>21.59㎡</td><td>81.53㎡</td><td>59</td><td>4,810.27㎡</td></tr>
</table></td></tr>
<tr><td colspan="3">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td><td colspan="9">o 40m 도로변 : 건축한계선 10m 지정
o 15m 도로변 : 건축한계선 5m 지정</td></tr>
</table>

< 이 하 여 백 >

■ 변경

<table>
<tr><th rowspan="2">결정
구분</th><th colspan="2">구역구분</th><th colspan="2">가구/획지 구분</th><th rowspan="2">위치</th><th rowspan="2">연면적 (㎡)</th><th rowspan="2">주된 용도</th><th rowspan="2">건폐율
(%)</th><th rowspan="2">용적율(%)
예정법적 상한</th><th rowspan="2">높이</th><th rowspan="2">층수</th></tr>
<tr><th>명칭</th><th>면적(㎡)</th><th>명칭</th><th>면적(㎡)</th></tr>
<tr><td>변경</td><td>긴등마을
재정비
촉진구역</td><td>31,634.2</td><td>획지1</td><td>27,812.5</td><td>강서구
마곡동
725-1</td><td>66,565.18</td><td>공동주택/
부대
복리시설</td><td>30
이하</td><td>239.69 이하</td><td>해발
57.86m
미만</td><td>15층</td></tr>
<tr><td colspan="3">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td><td colspan="9">o 총 세대수 : 603 세대
<table><tr><th colspan="2">구분(전용면적)</th><th>세대수(세대)</th><th>구성비(%)</th><th>비고</th></tr><tr><td colspan="2">합계</td><td>603</td><td>100</td><td></td></tr><tr><td>임대</td><td>60㎡이하</td><td>59</td><td>9.8</td><td></td></tr><tr><td rowspan="4">분양</td><td>소계</td><td>544</td><td>90.2</td><td></td></tr><tr><td>60㎡이하</td><td>99</td><td>16.4</td><td></td></tr><tr><td>60㎡~85㎡</td><td>393</td><td>65.2</td><td></td></tr><tr><td>85㎡ 초과</td><td>52</td><td>8.6</td><td></td></tr></table>
•개발가능용적율 : 기준용적율+(기준용적율 × 1.3α)
= 180 + (180 × 1.3 × 0.10803) = 205.297%
※ α = 공공시설 제공한 면적(순부담)/공공시설부지로 제공 후 대지면적
= 3,004.7㎡ / 27,812.5㎡ = 0.10803
•예정 법적상한 용적율 : 239.69%
•소형임대주택건설 용적율 : (239.69%-205.297%) × 50% = 17.197%
•소형임대주택건설 연면적 : 27,812.5㎡ × 17.197% = 4,782.92㎡ 이상 확보 필요
<table><tr><th>전용면적</th><th>공용면적</th><th>공급면적</th><th>세대수</th><th>연면적</th></tr><tr><td>59.94㎡</td><td>21.59㎡</td><td>81.53㎡</td><td>59</td><td>4,810.27㎡</td></tr></table></td></tr>
<tr><td colspan="3">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td><td colspan="9">o 40m 도로변 : 건축한계선 10m 지정
o 15m 도로변 : 건축한계선 5m 지정</td></tr>
</table>

< 이 하 여 백 >

(5)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 없음

시행 방법	시행 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으로 증가 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주택재건축사업	구역지정일로부터 4년 이내	긴등마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기존세대수 : 603세대 계획세대수 : 603세대 증가세대수 : -	-

(6)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 변경

구 분	가구 번호	획지(㎡)			구성비(%)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구역계		31,631	증)3.2	31,634.2	100.0	
가구 및 획지	소 계	27,822.0	감)9.5	27,812.5	88.0	
	획지1	27,822.0	감)9.5	27,812.5	88.0	

※ 긴등마을 재정비촉진구역 측량성과 결과 반영에 따라 변경된 획지 면적 적용
※ 긴등마을 재정비촉진구역 측량성과 결과 반영에 따라 마곡동718 주차장(주차2대확보)과 긴등마을구역과의 구역경계 선형 일부 조정(면적 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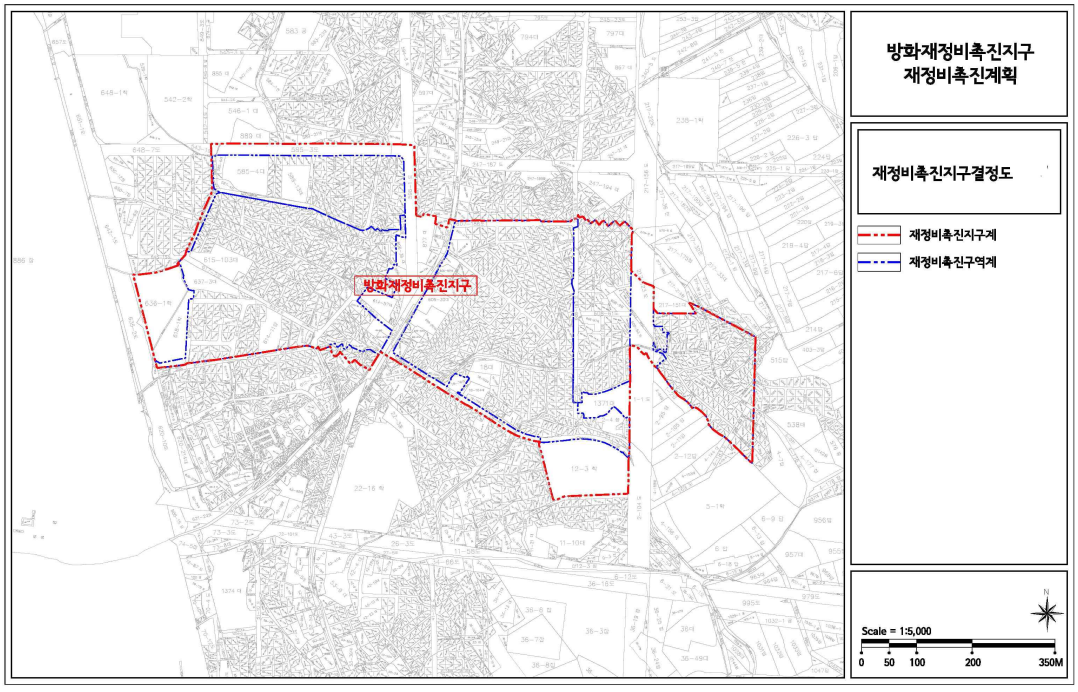
5. 기타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수립 관련 사항은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에 명시

6. 관계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 참조 : 비치한 도서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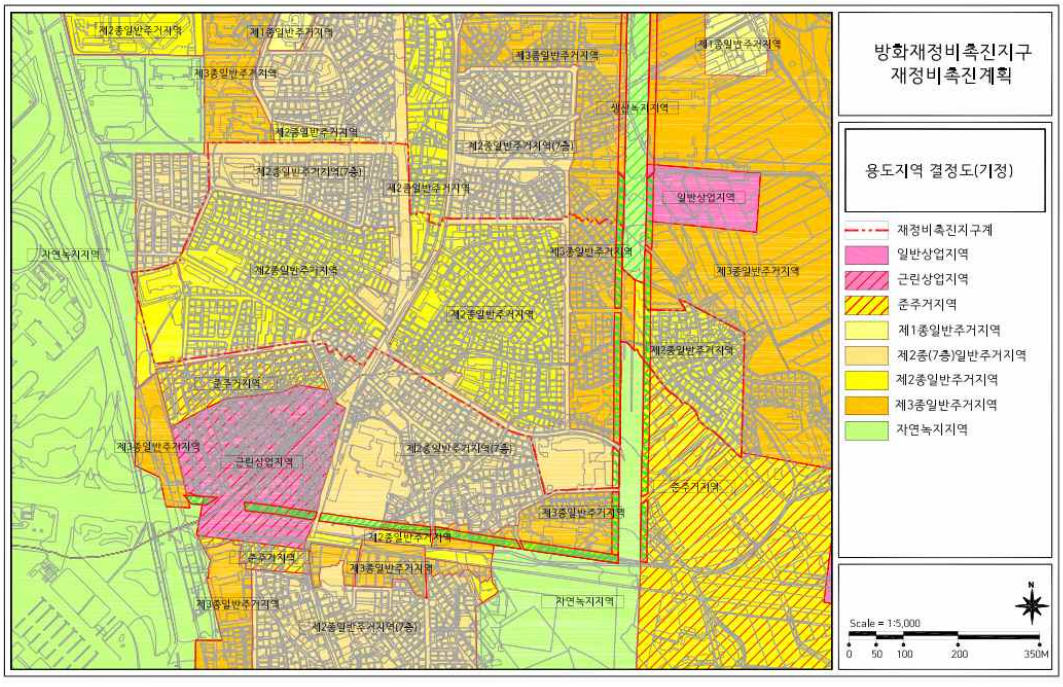
7.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T.02-2133-7222) 및 강서구 도시재생과(T.02-2600-6547)에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8.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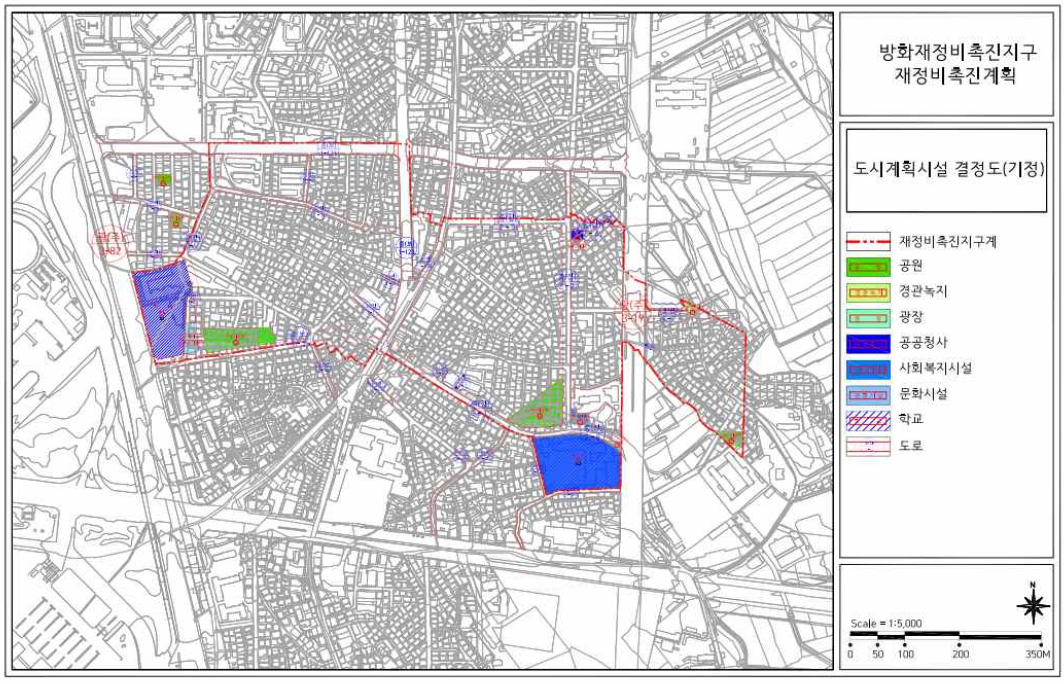
■ 방화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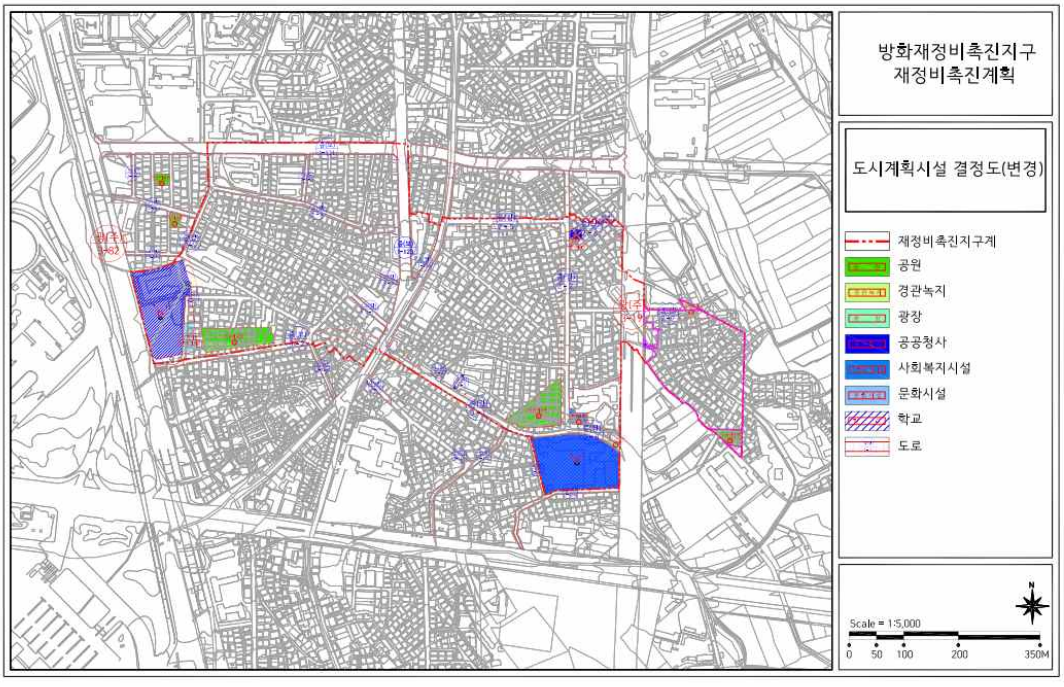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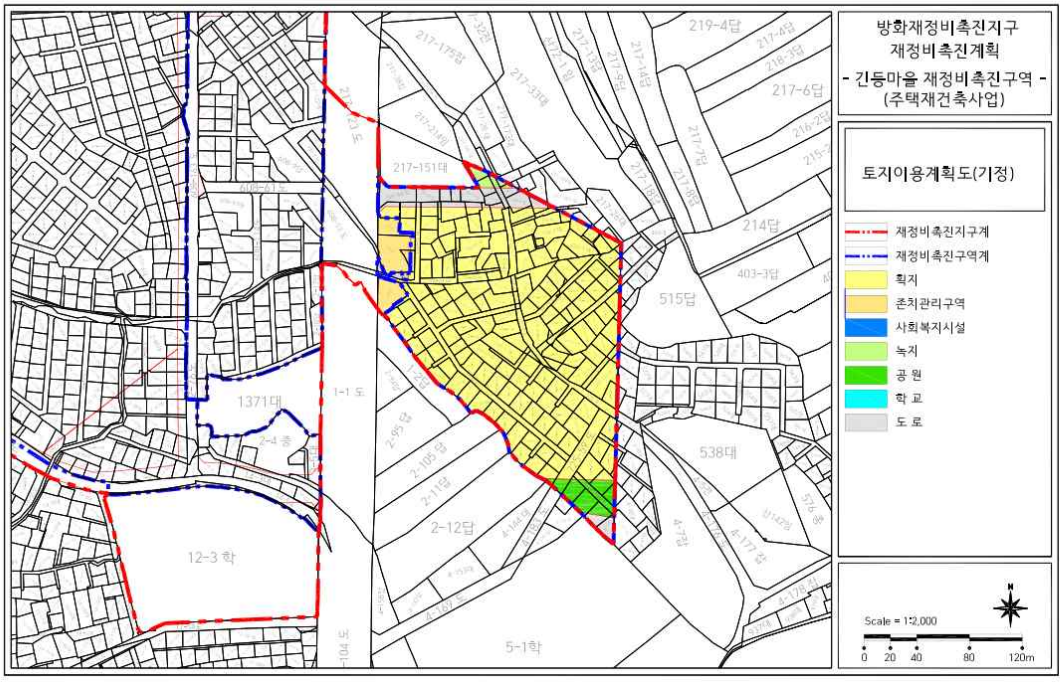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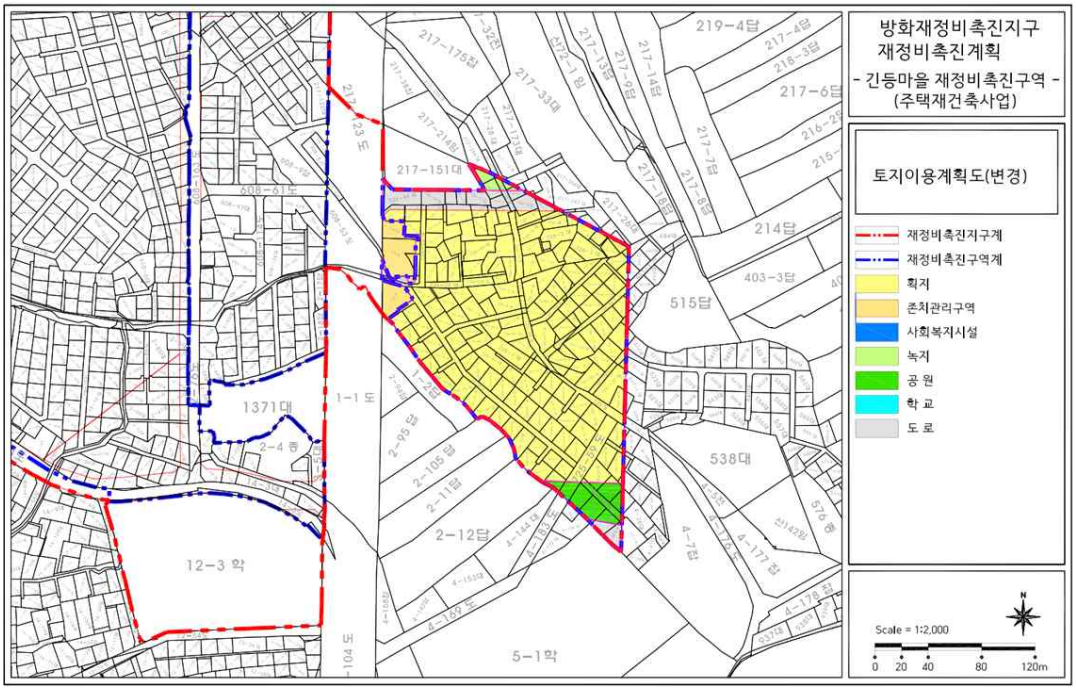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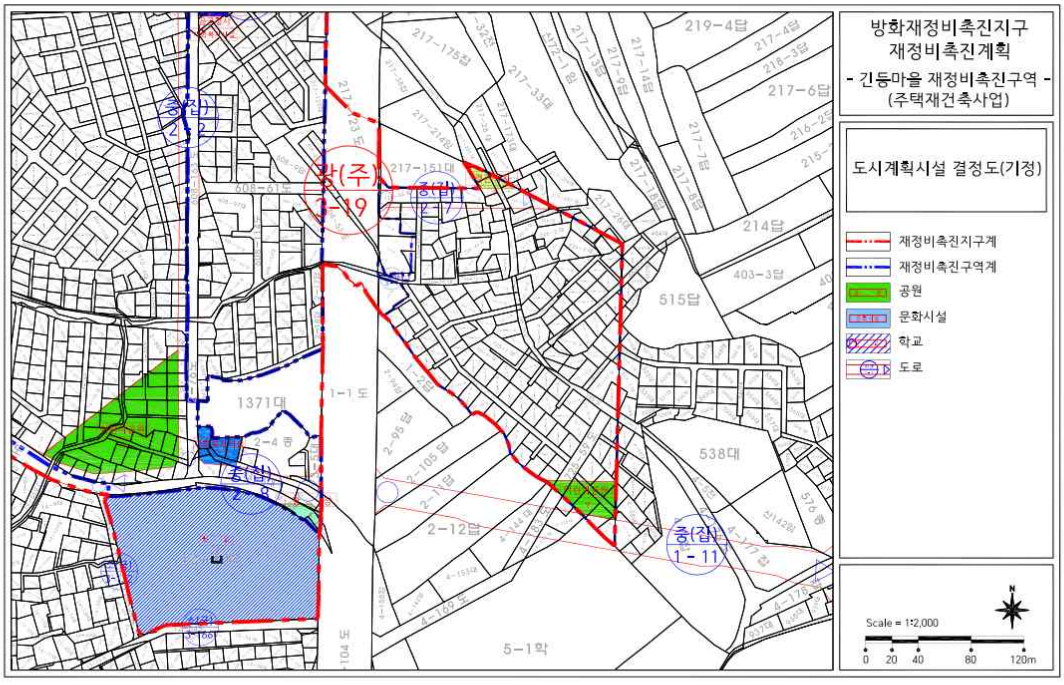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구역 토지이용계획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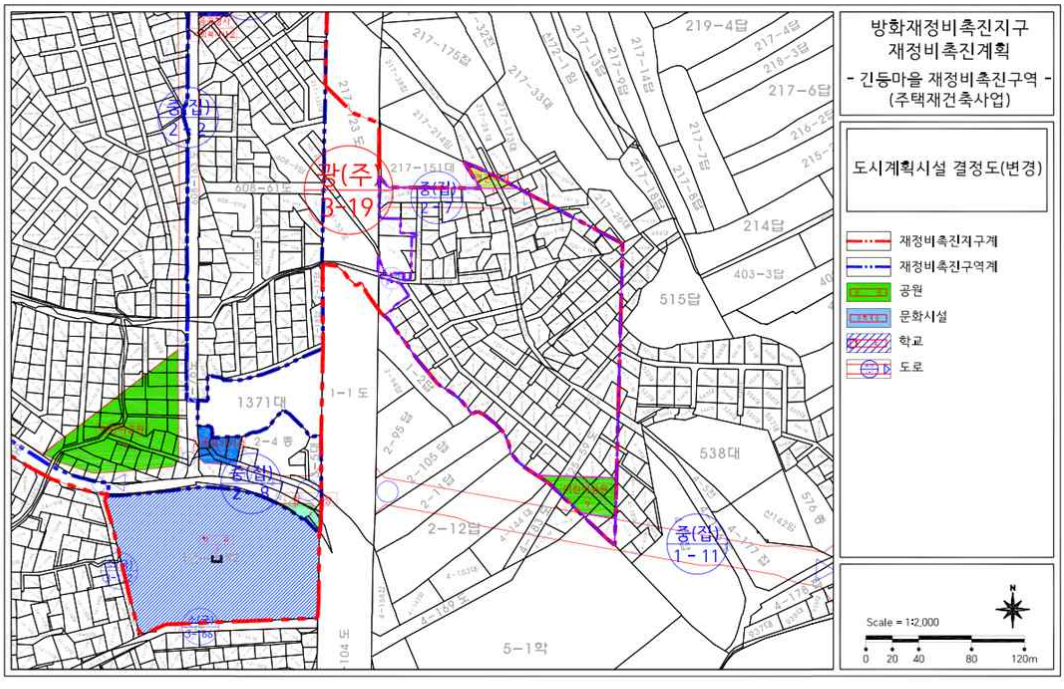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구역 토지이용계획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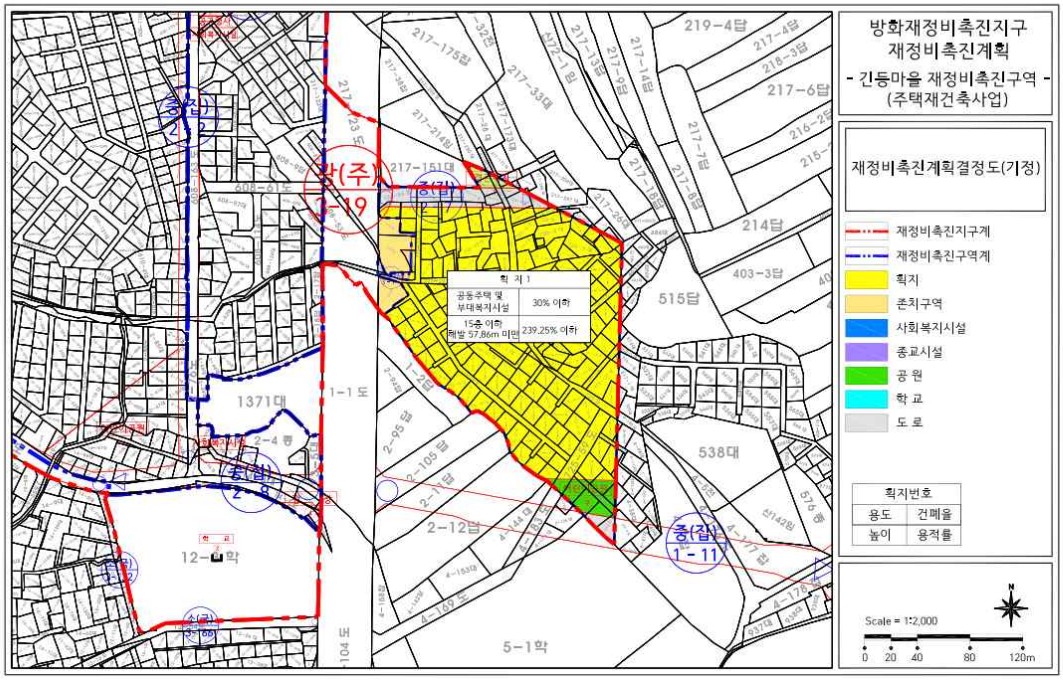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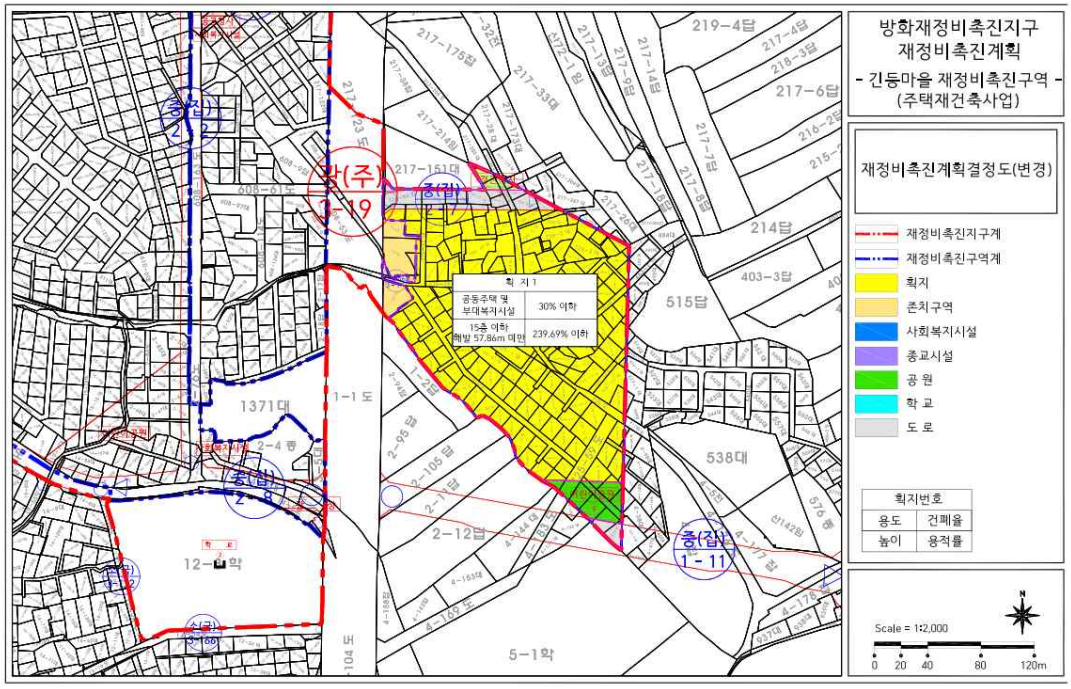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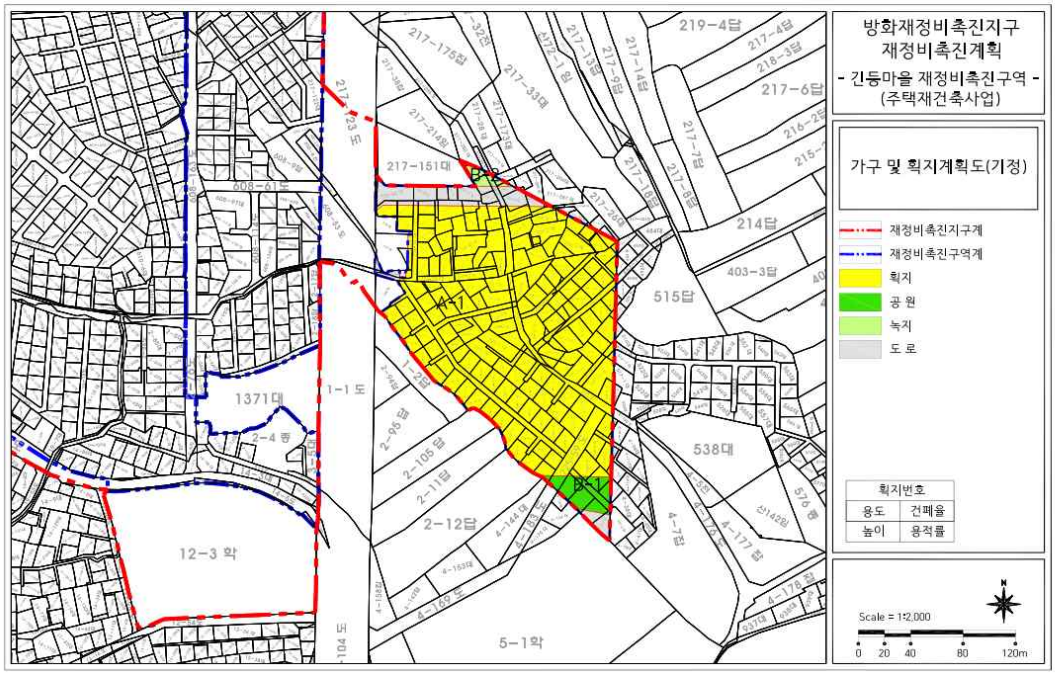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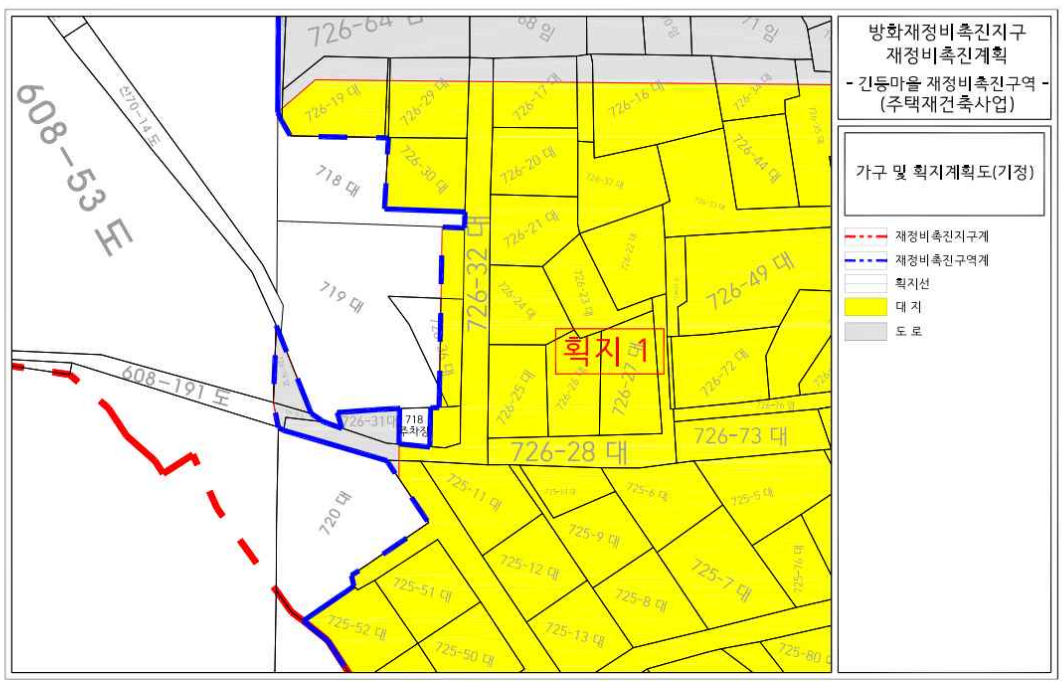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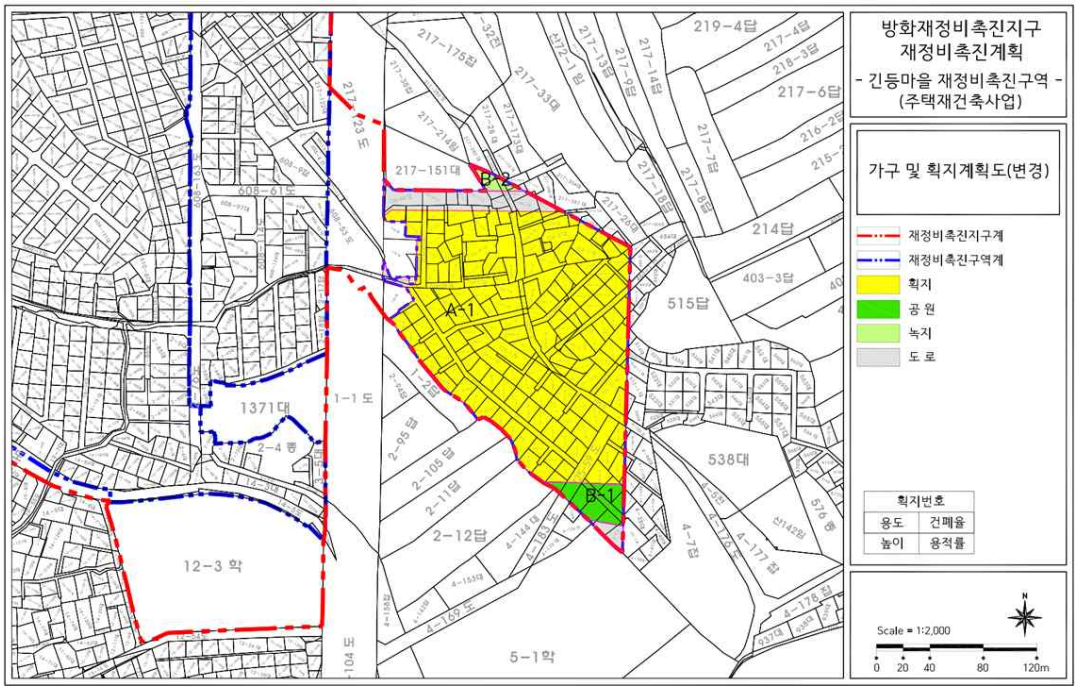
■ 가구 및 획지 계획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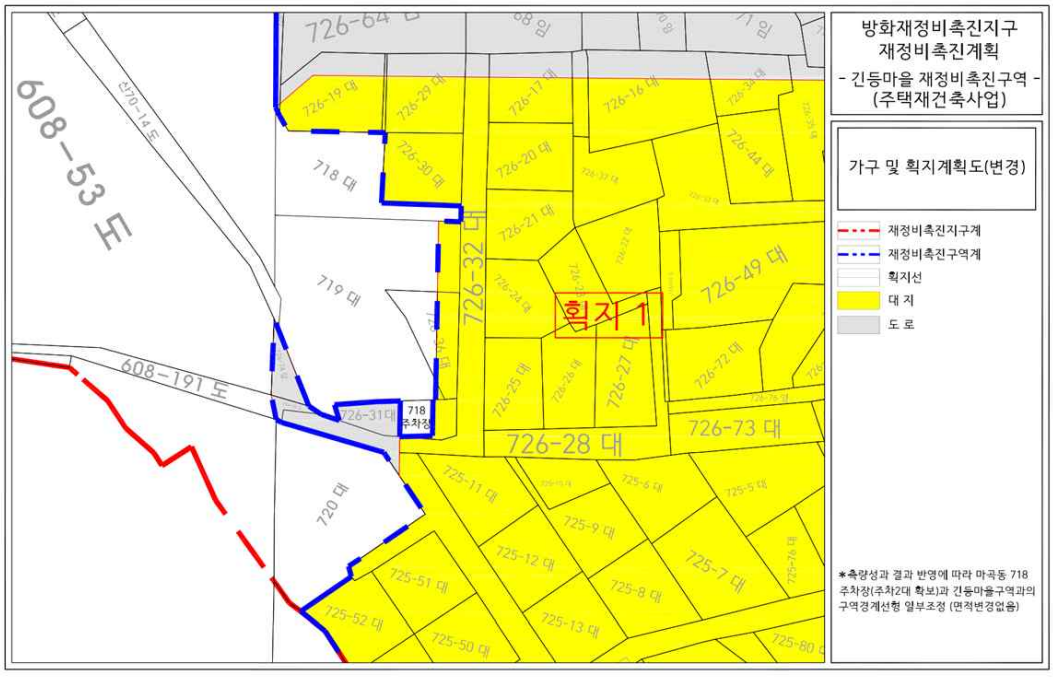
■ 가구 및 획지 계획도(기정 확대)



■ 가구 및 획지 계획도(변경)



■ 가구 및 획지 계획도(변경 확대)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79호

양평 제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80호(2009.09.24.)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되고 영등포구 고시 제2010-55호(2010.10.11.)로 정비계획이 변경된 양평 제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2023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2023.09.13.)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변경지정,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변경)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양평 제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영등포구 양평동2가 33-20번지 일대	27,441.7	-
변경	양평 제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공공재개발사업)	영등포구 양평동2가 33-20번지 일대	27,441.7	• 도시정비법 제2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조에 따른 재개발사업 명칭 변경

※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함)의 다음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2.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분		명칭	면적(㎡) 기정	면적(㎡) 변경	면적(㎡) 변경후	비율(%)	비고
합계		-	27,441.7	-	27,441.7	100.0	-
정비기반시설 등		소계	4,134.7	감) 1,106.5	3,028.2	11.0	-
	정비기반시설	도로	1,684.3	증) 93.9	1,778.2	6.4	-
		공원	2,450.4	감) 2,450.4	-	-	-
	기타시설	공공시설	-	증) 1,250.0	1,250.0	4.6	-
획지		소계	23,307.0	증) 1,106.5	24,413.5	89.0	-
		공동주택	15,405.5	증) 1,106.5	16,512.0	60.2	-
		산업시설	7,901.5	-	7,901.5	28.8	-

3.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7,441.7	-	27,441.7	100.0	-
준공업지역	27,441.7	-	27,441.7	100.0	-

4.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신설)

가. 추정비례율 산출

<table>
<tr><td>추정 비례율</td><td>·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수입 - 총지출) / 종전자산 총액 X 100%
· 추정비례율 : 101.56%
⇒ (5,744.29억 - 3,616.39억) / 2,095.30억 X 100% = 101.56%
- 총수입 추정 : 5,744.29억
- 총지출 추정 : 3,616.39억
- 종전자산총액 추정 : 2,095.30억</td></tr>
<tr><td>개별 종전자산 추정액</td><td>· 개별 공시가격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개별 공시가격 확인
· 추정기준
- 토지가격 = 필지별 개별공시지가 X 토지보정률
- 건물가격 = 재조달원가 X 잔존년수 / 내용연수 X 건물면적
- 구분건물가격 = 공동주택가격 X 구분건물 보정률</td></tr>
<tr><td>추정 분담금 산출 (예시)</td><td>·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
<table>
<tr><th colspan="2">권리자 분양가 추정액(a)</th><th>추정 권리가액(b)</th><th>추정분담금(a-b)</th></tr>
<tr><td rowspan="4">공동주택</td><td>전용39㎡형</td><td>5.17억</td><td rowspan="4">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101.56%)</td><td rowspan="4">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추정 권리가액
(+ : 부담 / - : 환급)</td></tr>
<tr><td>전용59㎡형</td><td>7.39억</td></tr>
<tr><td>전용84㎡형</td><td>9.36억</td></tr>
<tr><td>전용114㎡형</td><td>10.56억</td></tr>
</table>
※ 인근 유사 주택형별 대상 시세를 고려하여 일반분양가를 책정하고, 조합원 분양가는 시세의 63% 수준으로 함. 분양가 추정 시 층 · 향 · 동별 등에 따른 차이 미반영</td></tr>
</table>

※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 시 한국부동산원에서 행해진 분담금 추산액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해당 분담금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검토된 추산액으로 실제 종전 · 종후 감정평가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향후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 · 종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공사비 및 분양가 변동에 따른 비례율 변화

구분		일반분양가		
		시세 80%	시세 70%	시세 60%
공사비 (만원/평)	495	138.49%	114.39%	90.38%
	522.5	132.07%	107.97%	83.96%
	550	125.66%	101.56%	77.55%
	577.5	119.24%	95.14%	71.13%
	605.0	112.83%	88.73%	64.72%

※ 사업계획 및 공사비 등에 따라 비례율, 분담금 등 변동

5.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변경)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조서 (변경)

구분	규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치		주요 경과지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3	1	12	국지도로	일반도로	203	36-2번지 일대	33-42번지 일대	34-15번지 일대	-
변경	중로	3	1	12	국지도로	일반도로	203	36-2번지 일대	33-42번지 일대	34-15번지 일대	-
기정	중로	3	2	12	국지도로	일반도로	136	35-1번지 일대	36-2번지 일대	33-5번지 일대	-

■ 변경사유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3-1	중로 3-1	• 가감속차로 연장 변경 - 78.3m → 106.3m, 증) 28m	• 관련부서 협의 의견에 따른 가감속차로 연장 변경

나. 공간시설

1) 공원 결정조서 (변경)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공원 ①	공원	소공원	영등포구 양평동2가 33-35번지 일대	2,450.4	감) 2,450.4	-	서고제2009-380호 (2009.09.24.)	-

■ 변경사유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원 ①	공원	• 소공원 폐지 - 면적 2,450.4㎡ 감소	• 지역주민들의 필요시설(공공시설 등) 제공을 위하여 공원폐지

6. 기반시설의 설치(부담)계획 (변경)

가. 기반시설 등 부담계획

구분	사업 구역	시행면적(㎡)	대지면적(㎡)	기반시설 면적(㎡)	용도폐지되는 기존기반시설 면적(㎡)	순부담 면적(㎡)	순부담률(%) 기반시설 등	비고
기정	양평 제13구역	27,441.7	23,307.0	4,134.7	2,069.63	2,065.07	8.14	-
변경	양평 제13구역	27,441.7	24,413.5	4,608.23	2,069.63	2,538.6	10.01	-

※ 순부담률 = 순부담면적 / (시행면적 - 용도폐지 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면적)
※ 면적은 추후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변경사유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기반시설 부담면적 변경 - 도로 1,684.3㎡, 공원 2,450.4㎡ → 도로 1,778.2㎡, 공공시설 2,830.03㎡(토지:1,250.0㎡ 건축물:1,580.03㎡)	• 공공기여계획 변경(도로, 공원 → 도로, 공공시설)에 따른 변경

나. 기반시설 설치(확보)계획

구분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비율(%)	비고
정비기반시설 등	합계		4,134.70	증) 473.53	4,608.23	100.0	-
	정비기반시설	소계	4,134.70	감) 2,356.50	1,778.20	38.6	
		도로	1,684.30	증) 93.90	1,778.20	38.6	-
		공원	2,450.40	감) 2,450.40	-	-	-
	기타시설	소계	-	증) 2,830.03	2,830.03	61.4	
		공공시설	-	증) 2,830.03	2,830.03	61.4	토지:1,250.0㎡ 건축물:1,580.03㎡

7.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폐지	보육시설	공동주택	231.91	감) 231.91	-	-
폐지	주민공동시설		402.78	감) 402.78	-	-
폐지	휴게소		1개소	감) 1개소	-	-
변경	작은 작서관		147.14	증) 42.86	190.0	-
변경	경로당		127.52	증) 122.48	250.0	-
변경	주민운동시설		294.97	증) 5.03	300.0	-
변경	어린이놀이터		631.23	증) 168.77	800.0	-
변경	관리사무소		190.39	감) 15.39	175.0	-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어린이집		-	증) 349.0	349.0	-
신설	다함께 돌봄센터		-	증) 80.0	80.0	-
신설	지역공유 커뮤니티		-	증) 150.0	150.0	-
신설	스카이 커뮤니티		-	증) 300.0	300.0	-
신설	주민 생활시설		-	증) 1,100.0	1,100.0	-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건축법 등 관련법령 기준 적용

8.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 개량 계획 (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양평 제13 도시환경 정비구역	27,441.7	택지1	15,405.5	영등포구 양평동2가 33-20번지 일대	114	-	-	114	-	-
			택지2	7,901.5							
변경	양평 제13 도시정비형재개발구역	27,441.7	공동주택	16,512.0	영등포구 양평동2가 33-20번지 일대						
			산업시설	7,901.5							

9. 건축물에 관한 계획 (변경)

■ 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연면적(㎡)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양평 제13 도시환경 정비구역	27,441.7	택지1	15,405.5	양평동2가 35-11 일대	공동주택	64,500이하	30% 이하	254% 이하	100m이하
			택지2	7,901.5	양평동2가 33-9 일대	산업시설	49,500이하	60% 이하	400% 이하	90m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건립 규모 : 공동주택 4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지하2층, 지상11~33층) · 건립 비율									

구분	전용면적(㎡)	세대수	세대비율(%)	비고
임대	38.42	30	8.33	전용85㎡이하 : 80.00% 전용85㎡초과 : 20.00%
	41.97	25	6.94	
	51.51	7	1.95	
	소계	62	17.22	
조합 및 분양	59.80	46	12.78	
	84.84	180	50.00	
	114.80	72	20.00	
	소계	298	82.78	
합계		360	100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연면적(㎡)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건축물의 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	·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지정 : 100m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름									
개발가능 용적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79호)	· 최대용적률 = 기준용적률 × (1+1.3α) = 230% × (1+1.3×0.0811) = 254.24% (산업부지 400%이하) ① 구역면적 : 27,441.7㎡ ② 계획 기반시설 면적 : 4,134.7㎡ ③ 기존 기반시설 면적 : 2,076.0㎡ ④ 순부담 면적 : 2,058.7㎡ (②-③) α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 대지면적대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비율 = ④ / (①-④) = 2,058.7㎡ / 25,383.0㎡ = 0.0811									

■ 변경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명칭	면적(㎡)	명칭	면적(㎡)					
변경	양평 제13 도시 정비형 재개발 구역	27,441.7	공동주택	16,512.0	양평동2가 35-11 일대	공동주택	60%이하	349.33%이하	120m이하
			산업시설	7,901.5	양평동2가 33-9 일대	산업시설	60%이하	400%이하	90m이하
			공공시설	1,250.0	양평동2가 33-42 일대	공공시설	60%이하	400%이하	30m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건립규모 : 공동주택 5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지하3층, 지상20~36층) · 건립비율 : 총세대수의 80% 이상 전용면적 85㎡이하(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52호)								

구분		변경			비고
		분양	임대	합계	
세대수 (세대)	60㎡미만	55	98	153(27.5%)	-
	60~85㎡이하	257	105	362(65.1%)	-
	85㎡초과	41	-	41(7.4%)	-
	합 계	353	203	556(100%)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조정될 수 있음.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심의완화 사항	· 도시정비법 제101조의5에 의거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 '법적상한초과용적률') 완화 · 건축법 제69조에 의거 특별건축구역 수립에 따른 단지 내부 인동 및 채광 이격거리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적용 ※ 향후 건축심의를 통해 확정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름 (건축한계선 : 공동주택 획지 경계선에서 3m 이격, 산업시설 획지 경계선에서 1.5m 이격)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공공보행통로 : 북남측 항시 개방된 형태로 정비유도지침에 따라 조성(폭 8m)								

■용적률 계획

구분	산정내용									
토지이용계획	면적(㎡)									
	구역 면적	획지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면적				신설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대지 내 용도 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합계	공동 주택	산업 시설	합계	토지		건축물		
						도로	공공시설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부지		
	27,441.7	24,413.5	16,512.0	7,901.5	4,608.23	1,778.2	1,250.0	1,580.03	236.8	1,832.8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순부담률 = 10.01%(2,538.63㎡) · 산식 : 토지기부채납 면적 + 건축물기부채납 환산부지 면적 - 신설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 - 대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면적 = 3,028.20㎡+1,580.03㎡-0㎡-236.8㎡-1,832.8㎡ = 4,608.23㎡-2,069.6㎡ = 2,538.63㎡									
토지 기부채납	· 토지기부채납 : 3,028.20㎡ - 도로(1,778.2㎡)+공공시설(1,250.0㎡)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부지	· 설치비용 / 부지가액 = 16,030,000,000원 / 10,145,384.56원 = 1,580.03㎡(환산부지면적) - 건축비 : 3,500,000원 (※「2022년도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중 업무시설 공공청사 평균적용) - 설치비용 : 16,030,000,000원 (건축비 3.500.000원 × 건축연면적 4,580.0㎡) - 부지가액 : 10,145,384.56원 (2022년 개별공시지가 5,072,692.28원/㎡의 2배) ※ 부지면적 환산을 위한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충족여부 최종확인									
상한용적률 (정비계획)	· 기준용적률 = 230% · 허용용적률 = 280% (장기전세주택 건립용적률 25%, 장기전세주택으로 인한 완화용적률 25%) · 상한용적률 = 기준(허용)용적률×(1+1.3×가중치×α토지+0.7×α현금·건축물) = 280%×[1+1.3×1×(3,028.20-2,069.6)/(27,441.7-3,028.20)+ (0.7×(1,580.03/(27,441.7-3,028.20)) = 306.98% (공동주택 계획용적률 300%이하)									

구분	산정내용
	•α토지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 958.60㎡ / 24,413.50㎡ = 0.039 •α건축물 : 공공시설등 부지(현금 및 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 1,580.03㎡ / 24,413.50㎡ = 0.065
법적상한 초과용적률	○ 360% 이하 ※ 도시정비법 제101조5(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건설비율등) 제1항 적용 ①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는 공공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 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 "법적상한초과용적률" 이라 한다)까지 건축할 수 있다.
건축계획 용적률	○ 349.33% 이하

10. 임대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

■ 기정

구분		도시환경정비사업			
		전체 세대수	토지등 소유자 (조합원)분양세대	토지등소유자 제외 세대	
				일반분양	임대주택
세대수(세대)		360	147	151	62
전용 면적 (㎡)	38	30	-	-	30
	40	22	-	-	22
	44	3	-	-	3
	50	7	-	-	7
	59	46	-	46	-
	84	180	75	105	-
	114	72	72	-	-

■ 변경

구분		공공재개발사업								
		전체 세대수	토지등 소유자 (조합원) 분양세대	토지등소유자 제외 세대						
				일반 분양	공적임대주택(공공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					
					소계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 (수익형전세) Ⓓ
						계	재개발 의무임대 Ⓐ	국민주택 규모 Ⓑ	장기전세 주택 (허용용적률)Ⓒ	
세대수(세대)		556	150	203	203	170	77	47	46	33
전용 면적 (㎡)	39	103	-	24	79	79	52	16	11	-
	59	50	15	16	19	19	5	7	7	-
	84	362	94	163	105	72	20	24	28	33
	114	41	41	-	-	-	-	-	-	-

Ⓐ 도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재개발 임대주택
Ⓑ 도시정비법 제101조의5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
Ⓒ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산업재생형(대규모 재생형) 공동주택부지 내 장기전세주택
Ⓓ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11. 환경보전, 재난방지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 결과

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환경보전	① 토양오염방지 : 불투수 포장면을 최소화, 기존건축물 철거전에 정화조 전량 수거처리 후 철거작업 시행 ② 녹 지 조 성 : 지역특성에 맞는 수종선정 및 식재 방향을 설정하되 주변경관과 조화된 충분한 녹지 공간 확보	-
재난방지	① 우기를 피하여 시행하고 절개지 발생시 비닐 등을 덮어 토사유실 되지 않게 함 ② 터파기 공사 시 균열, 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흙막이공법을 실시 후 공사시행 ③ 건설소음 - 가설방음판넬 설치 - 저소음 건설기계등을 선택하여 주간(08:00 ~ 18:00)에만 작업 실시 ④ 먼지 - 방진망 설치 : 부지경계상에서 가설방음판넬과 연계된 방진망(H=1.5m)을 설치 - 자동식 세륜시설 설치(사업대상지 진출입부분) - 주기적인 살수 실시(하계기준 1일 6회 이상)	-

나.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의 반영사항
1. 비오톱	비오톱 보전 등급 향상	○	•비오톱유형평가 4 및 5등급, 개별비오톱 평가제외 등급으로 조사됨	•녹지공간의 확보 및 도시생태기능 복원 및 강화
2. 생태 네트워크	녹지·수생태 연결성 확보	○	•기존 시가지로 주변 녹지가 미미한 상태임	•조경 등을 통해 녹지 확보 계획 반영
3. 동식물상	동식물상 보호	-	•현존식생 시가화지역, 생태·자연도 3등급 권역	-
4. 자연환경자산	자연환경 보호	-	•대상지 주변 보호지역 없음	-
5. 토지이용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조사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6. 토양	토양오염 최소화	○	•측정망 조사결과 기준 만족	•투입장비에 의한 폐유 처리대책 수립
7. 지형·지질	지형·지질 변동 최소화	○	•대상지내는 90%이상 불투수포장지역임	•인도 및 보행로의 포장재료는 투수성 포장재 사용
8. 물순환, 수리·수문	생태면적률 30% 이상	○	•대상지내는 90%이상 불투수포장 지역 •공동주택 30.06%이상 계획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옥상녹화 등을 적용하여 공동주택 생태면적률 30.06%로 계획
9. 수질	수질 등급 유지 및 오염 최소화	○	•수질 상태 확인 •오염원 및 처리시설 현황 파악	•수질 등급 유지 또는 오염 최소화 계획 수립
10.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공동주택 및 산업시설, 공공시설 신축	•기존 시가지 지역으로 신축 건물로 바람길에 대한 특별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
11. 열	열환경 영향 최소화	○	•대상지내는 90%이상 불투수포장지역임	•투수성포장재 사용으로 인한 열섬효과 최소화
12. 대기질	대기오염 최소화	○	•공사시 대기질 영향 예상	•공사시 비산먼지 저감방안 수립
13. 악취	악취공해 해결	-	•해당사항 없음	-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의 반영사항
14. 온실가스	온실가스 저감	○	•공사시 및 운영시 온실가스 발생 예상	•공사시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에너지절약 친환경 건축물 수립계획
15.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발생량 최소화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예상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적정처리
16. 에너지	에너지자립률 상향계획 수립	○	•향후 에너지사용량 추정 •에너지 절약 설비 및 계획 고려	•에너지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및 청정연료 사용
17. 소음진동	소음진동 최소화	○	•공사시 소음영향이 예상	•저소음 장비 사용하여 소음 진동 최소화(가설방진망 설치)
18. 경관	Skyline 보전	○	•주변 건축물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기존 스카이라인에 영향이 미미함
19.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대상지는 시가지지역으로 도로와 접함	•대상지 내부에 오픈스페이스 및 단지내 조경녹지 계획으로 근무자 및 이용객 휴식공간 마련
20. 일조	일조 침해 최소화	-	•해당사항 없음	-
21. 보행 친환공간	보행자 보호계획 수립	○	•대상지는 시가지 지역으로 도로와 접하고 북측으로 지하철(양평역)이 위치함	•보행동선과 차량동선 분리 •폭 2m이상의 보행자 보도 설치
22. 전파장해	전파장해 영향 저감	-	•해당사항 없음	-
23. 인구	인구 고려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
24. 주거	주거 고려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
25. 산업	산업 고려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

12.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기정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이내	정비구역내 도시환경정비조합	현황: 389세대 계획: 360세대 감)29세대	해당사항 없음	-
변경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고시가 있는날부터 4년이내	정비구역내 도시정비형재개발 사업조합 서울주택도시공사	현황: 389세대 계획: 556세대 증)167세대	해당사항 없음	-

13.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해당사항 없음)

14.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조경	단지	• 단지 앞 정원에 1m 이하의 관목을 식재하고, 단지 중앙부는 지하고 2m 이상 교목 식재하여 시야 확보	
	주차장	• 출구 주변에는 조경수를 지양하고 조명과 조경간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시야 확보	
조명	단지	• 공동출입구와 계단은 조명을 설치하여 불안감 감소 • 주차장, 정원은 조도 15룩스 이상으로 하여 시야 확보	
	주차장	• 주차장법 규정에 따른 70룩스 조도 유지 • 지하주차장 조명은 눈부심방지 조명을 설치하고 벽, 천장, 유입로에는 조명을 설치하도록 함	
자연적 접근통제	단지	• 주 출입구에는 출입차단기를 설치하고 경비원을 배치 • 단지 외곽으로는 울타리나 펜스를 설치하여 단지내 출입을 통제	
영역성 강화	단지	• 각 동 앞에는 정원을 설치하고 펜스나 울타리를 사용하여 공적 · 사적 공간을 구분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국토교통부, 2021.06.29.)를 적용,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반영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양평 제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영등포구 양평동2가 33-20번지 일대	27,441.7	-
변경	양평 제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공공재개발사업)	영등포구 양평동2가 33-20번지 일대	27,441.7	• 도시정비법 제2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조에 따른 재개발사업 명칭 변경

※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함)의 다음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변경)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7,441.7	-	27,441.7	100.0	-
준공업지역	27,441.7	-	27,441.7	100.0	-

나.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 (해당사항 없음)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변경)

1) 도로 결정조서 (변경)

구분	규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치		주요 경과지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3	1	12	국지도로	일반도로	203	36-2번지 일대	33-42번지 일대	34-15번지 일대	-
변경	중로	3	1	12	국지도로	일반도로	203	36-2번지 일대	33-42번지 일대	34-15번지 일대	-
기정	중로	3	2	12	국지도로	일반도로	136	35-1번지 일대	36-2번지 일대	33-5번지 일대	-

■ 변경사유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3-1	중로 3-1	• 가감속차로 연장 변경 - 78.3m → 106.3m, 증) 28m	• 관련부서 협의 의견에 따른 가감속차로 연장 변경

2) 공원 결정조서 (변경)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폐지	공원 ①	공원	소공원	영등포구 양평동2가 33-35번지 일대	2,450.4	서고제2009-380호 (2009.09.24.)	-

■ 변경사유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원 ①	공원	• 소공원 폐지 - 면적 2,450.4㎡ 감소	• 지역주민들의 필요시설(공공시설 등) 제공을 위하여 공원폐지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변경)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

도면번호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공동주택	15,405.5	16,512.0	-
산업시설	7,901.5	7,901.5	-
공공시설	-	1,250.0	-

나.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

구분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주용도	비고
공동주택	기정	허용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공동주택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산업시설	기정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 수리점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 전시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마목 연구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중 나목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의 아파트형 공장	아파트형 공장	「2030 준공업 지역 종합 발전 계획」을 따름

구분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주용도	비고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변경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수리점등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의 지식산업센터	산업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공공시설	기정	허용용도	-	-	-
		불허용도	-		
	변경	허용용도	· 관련법령에 따름 ※ 수요기관(영등포구) 요청사항 반영	공공시설	
		불허용도			

다. 건축물의 개발밀도(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변경)

1) 건폐율 계획 (변경)

획지 구분	건폐율		비고
	기정	변경	
공동주택	30%이하	60%이하	계획건폐율 34.63%
산업시설	60%이하	60%이하	계획건폐율 53.00%
공공시설	-	60%이하	계획건폐율 52.60%

2) 용적률 계획(변경)

획지 구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법적상한초과용적률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공동주택	230%이하	230%이하	254%이하	280%이하	-	300%이하	-	349.33%이하	
산업시설	-	-	400%이하	400%이하	-	-	-	-	준공업지역
공공시설	-	-	-	400%이하	-	-	-	-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공동주택)

구분	인센티브		비고
	장기전세주택 건립용적률	장기전세주택으로 인한 완화용적률	
신설	25%	25%	총 50%

■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공동주택)

구분	인센티브	비고
	공공시설 기부채납	
신설	26.98%	300% 이하

■ 법적상한초과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공동주택)

구분	인센티브	비고
	도시정비법 제101조5(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건설비율 등)	
신설	49.33%	360% 이하

3) 높이 계획 (변경)

획지 구분	높이		비고
	기정	변경	
공동주택	100m이하	120m이하	계획높이 113.5m
산업시설	90m이하	90m이하	계획높이 62.0m
공공시설	-	30m이하	계획높이 21.5m

라.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기정	· 건축법,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름	도면참조
	변경	· 건축법,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름 (공동주택 획지 경계선에서 3m 이격, 산업시설 획지 경계선에서 1.5m 이격)	

4.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변경)

가.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비고
공공보행통로	기정	· 도면에 표기	· 건축법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름	도면참조
	변경	· 도면에 표기	· 대상지 내외부 보행동선체계를 고려하여 북남측 폭원 8m의 항시 개방된 형태로 조성 ※ 정비유도지침 참고	

나.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 결정도서 “교통성 검토서”와 같음

다. 환경관리계획 : 결정도서 “환경성 검토서”와 같음

라.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결정조서 : 결정도서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과 같음

Ⅲ. 정비유도지침

1. 민간부문 정비유도지침

가. 공공보행통로

■ 적용기준

- 기존의 주요 보행가로나 도로로 이용되었던 곳에는 최소 3m 이상의 폭으로 설치한다.
- 공공보행통로가 설치된 장소에는 이용자가 잘 보이는 곳에 안내판을 설치한다.
- 공공보행통로 안내판에는 공공보행통로를 알리는 문구(한글/영어), 배치도, 장소성 및 역사성을 담은 내용, 개방시간 및 준수사항, 건축주 및 관리자의 이름,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고 안내판은 공공보행통로의 출입구에 각각 설치한다.
- 공공보행통로 안내판의 디자인은 별도 표준안이 없는 경우 각 자치구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공공보행통로 변으로는 활발한 가로활동 유도를 위해 저층부활성화 용도 도입을 유도한다.
- 보행자의 안전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24시간 개방해야 한다.
- 시설별(공동주택, 산업시설) 관리주체 확정 시 사업시행자와 관리주체간의 협약 등을 통해 공공보행통로 유지 · 관리방안 및 공공성 담보방안을 마련한다.
- 공동주택과 산업시설 연접부에 공공보행통로가 계획된 바 통로를 따라 다양한 식재를 계획하여 완충역할을 하도록 한다.
- 단지내부가로, 광장 계획 등을 고려하여 보행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앉음벽, 벤치, 데크 등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 공공보행통로 조성 예시 〉



※ 그 외 사항은 결정도서의 정비유도지침 참고

Ⅳ. 2023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23.9.13.) 심의결과 : 수정가결

연번	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
1	○ 공동주택용지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인동거리 완화로 인해 단지내 주거환경 악화가 우려되는 바, 향후 건축위원회에서 특별건축구역 지정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시 인동거리 완화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 우려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 필요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겠음.	반영
2	○ 향후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다음 사항을 면밀 검토할 것. - 차량진출입구는 각 획지별로 별도 계획(3개소) 하였으나, 이용 편의성 및 효용성 등 측면에서 건축협정 등을 통해 차량진출입구의 통합 조정 등을 적극 검토할 것. - 서부간선도로로 등 인근 도로변 교통 부영향 최소화 및 교통체계 등의 적정성을 면밀 검토할 것.	○ 차량진출입구 통합에 대해 검토 · 반영하겠음. ○ 향후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이를 반영한 건축계획안을 제시하여 차량진출입구 및 서부간선도로 교통영향 · 교통체계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 협의하겠음.	반영
3	○ ‘기정 공원계획 삭제’ 및 ‘공동주택용지 및 산업부지 간 완충기능 확보’를 고려하여 획지 경계부 녹지공간(식재, 조경 등)을 충분히 계획하고, 공공보행통로계획은 주관부서에서 통로 내 식재 가능 여부 등에 대해 관련 기준과의 정합성 검토 후 적정하게 처리할 것.	○ 공동주택과 산업시설 연접부에 공공보행통로가 계획된 바, 통로를 따라 다양한 식재를 계획하여 완충역할을 하도록 하겠으며, ○ 단지내부가로, 광장 계획 등을 고려하여 보행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공공보행통로 내 앉음벽, 벤치, 데크 등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겠음 ※ 「2030 서울특별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부문)」에 따라 정비유도지침을 작성하고, 공공보행통로 관련 항목에 세부 내용 별도 추가 예정	반영

Ⅴ. 관련도면 : 붙임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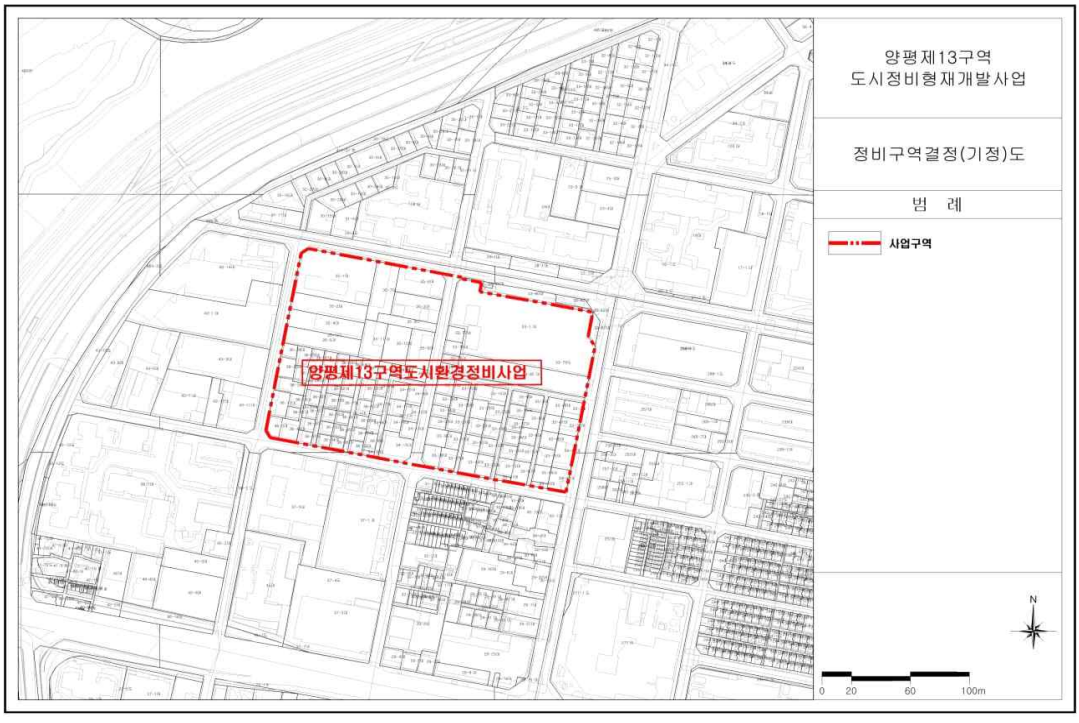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Ⅵ. 열람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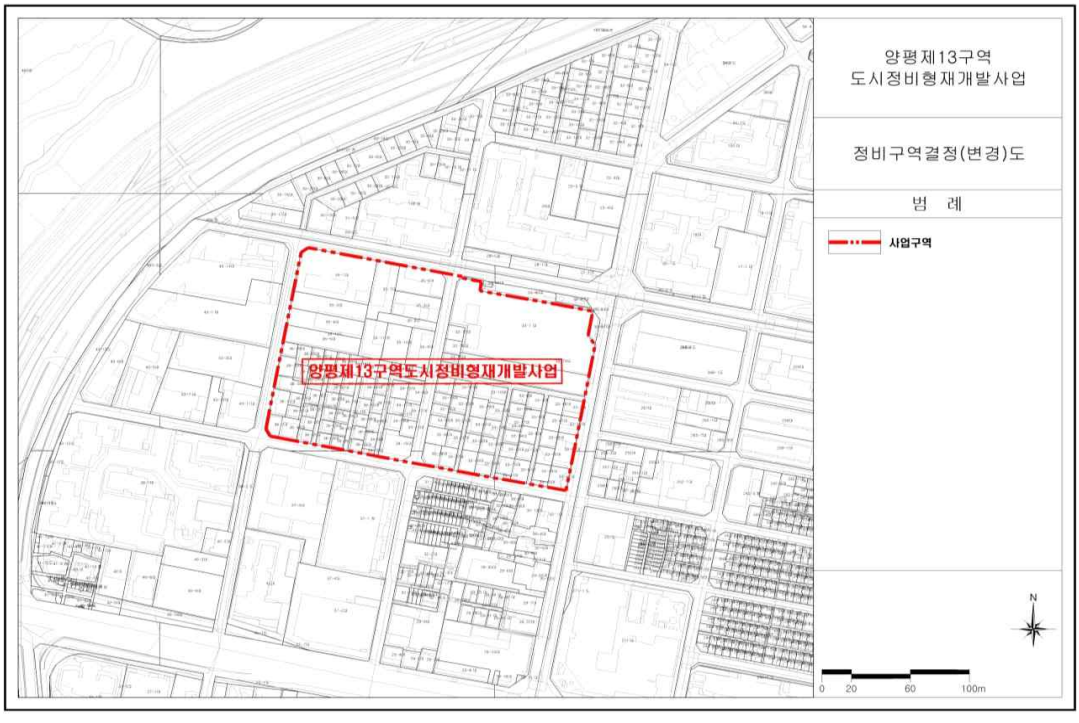
○ 고시 관련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과(☎02-2133-8491) 및 영등포구 주거사업과(☎02-2670-3582)에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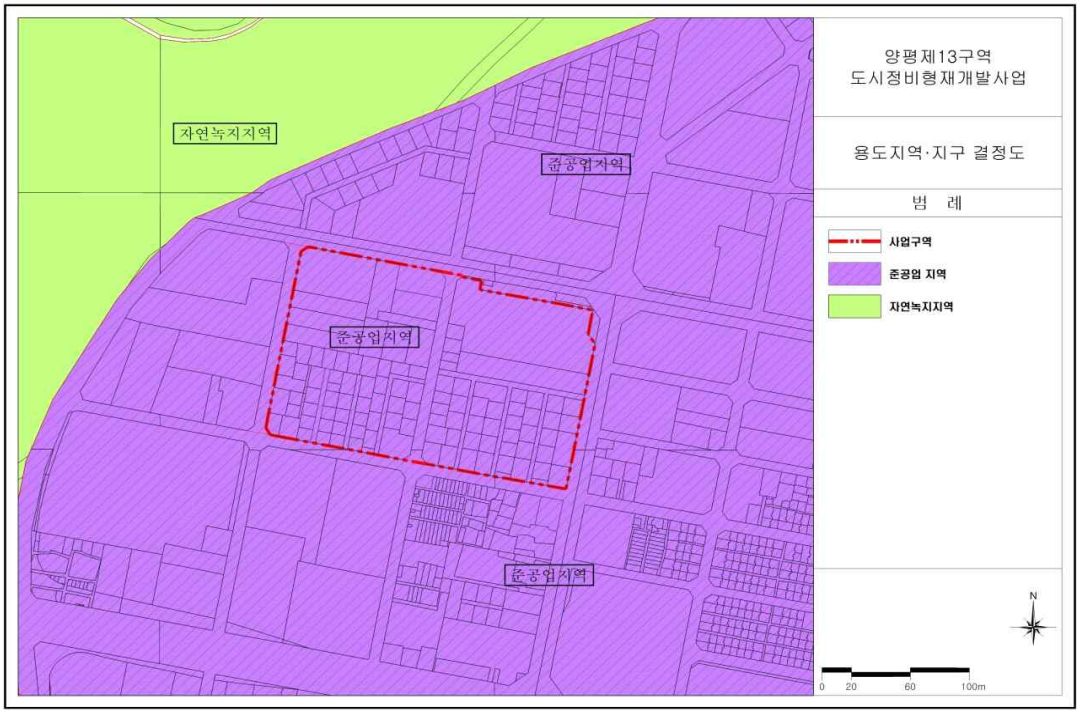
■ 정비구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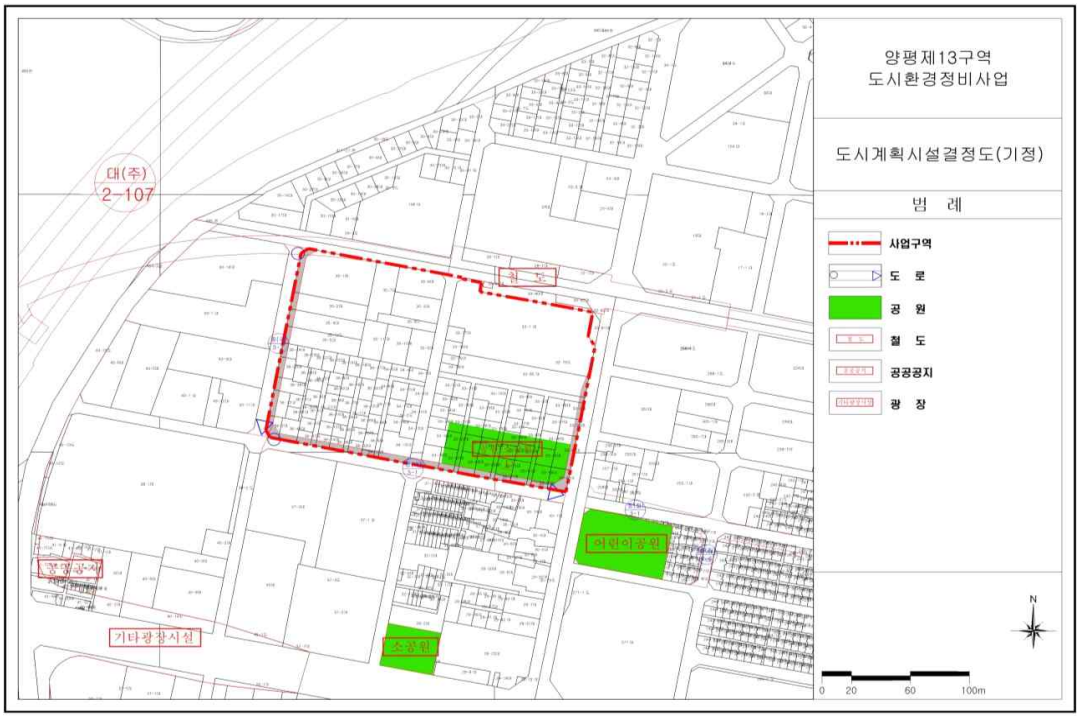
■ 정비구역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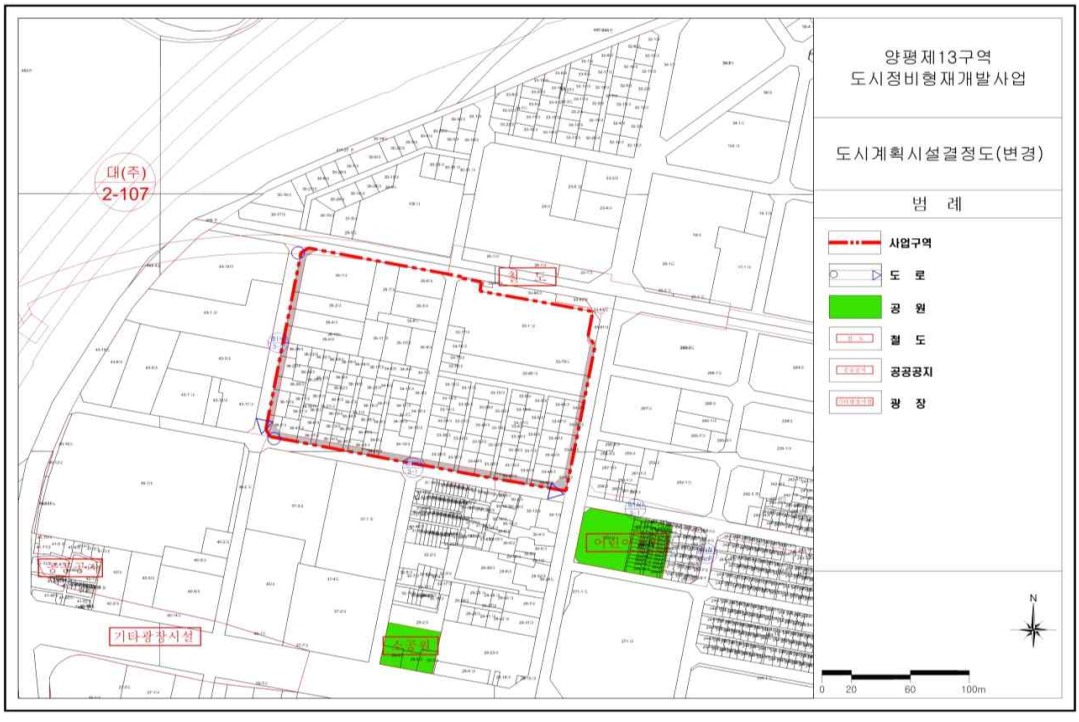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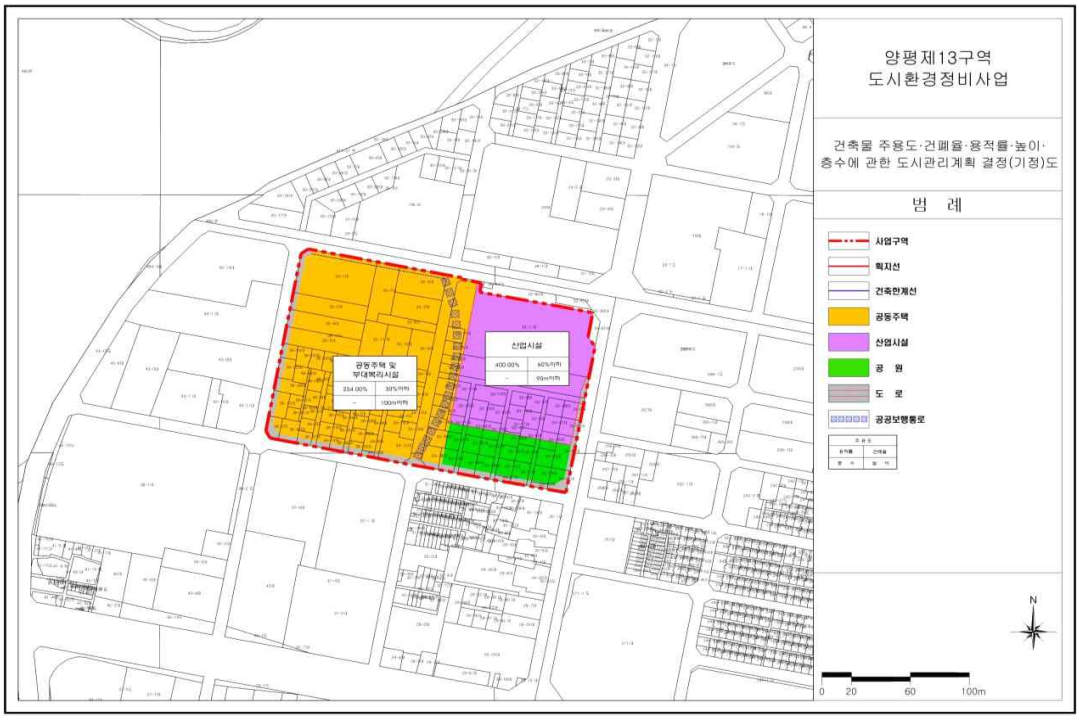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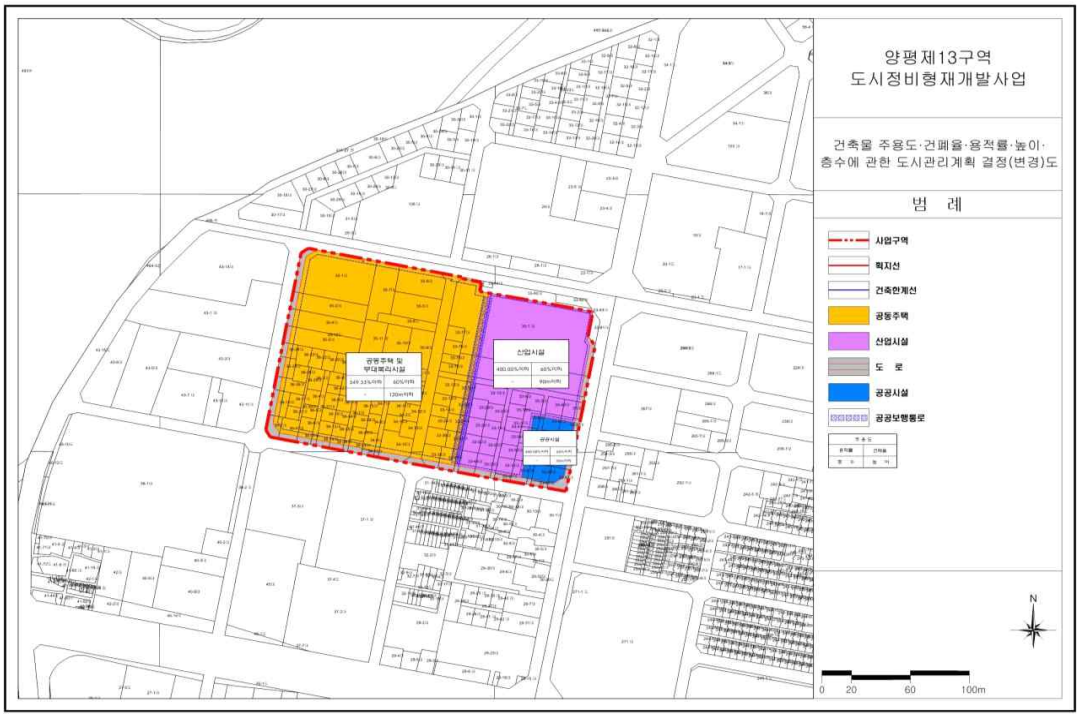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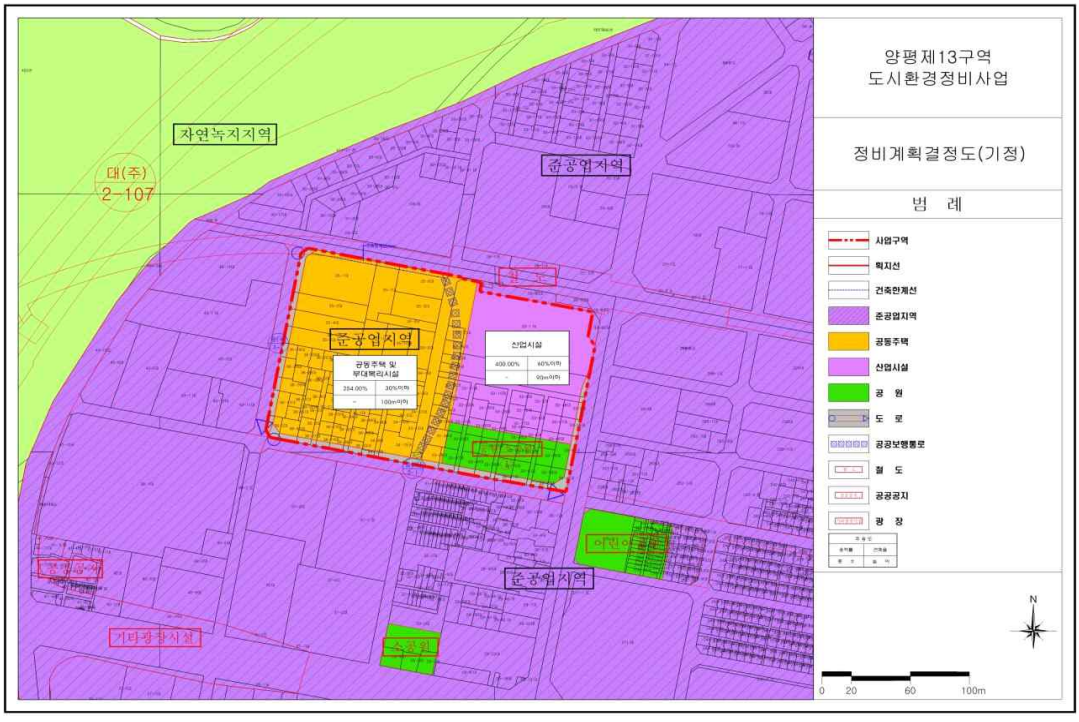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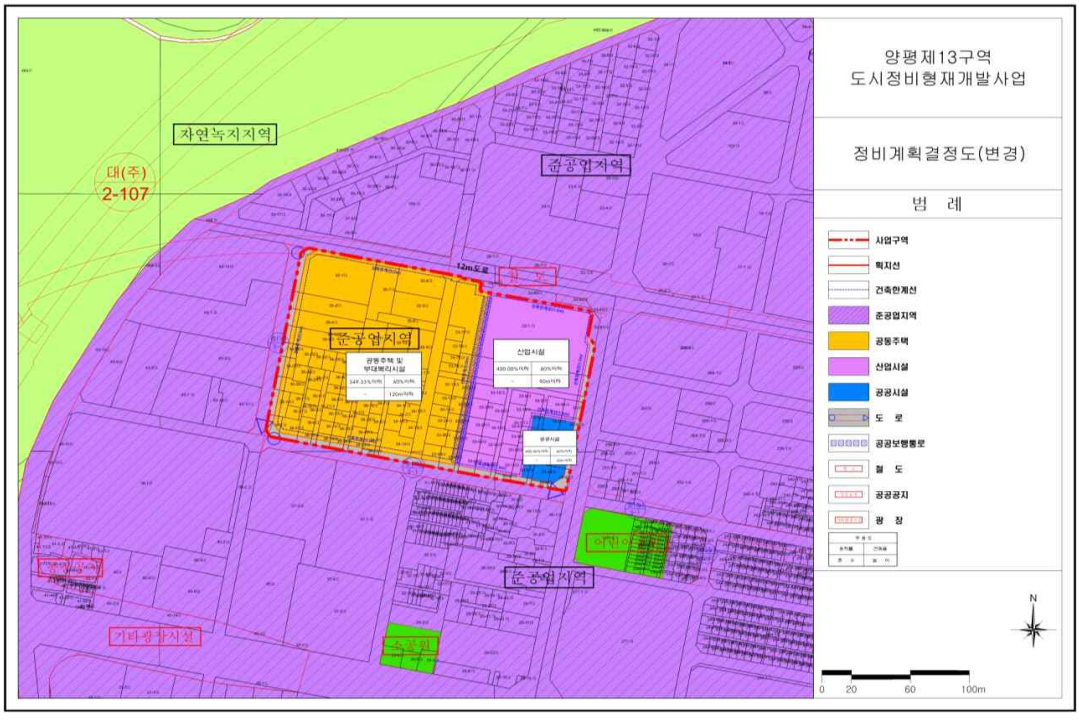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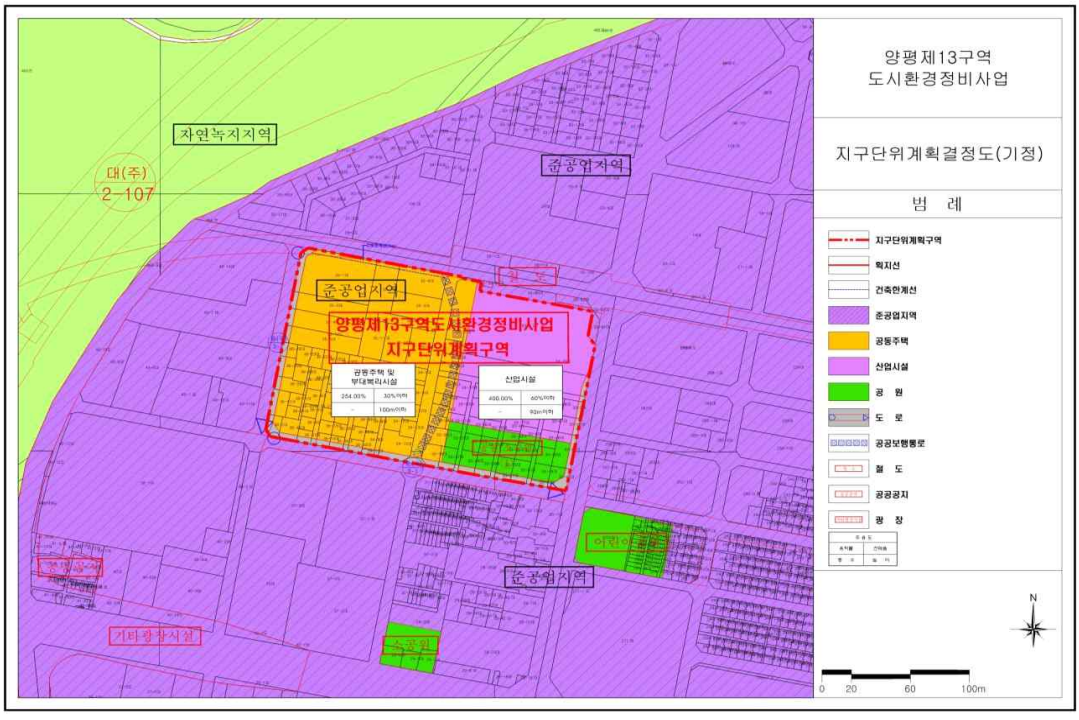
■ 정비계획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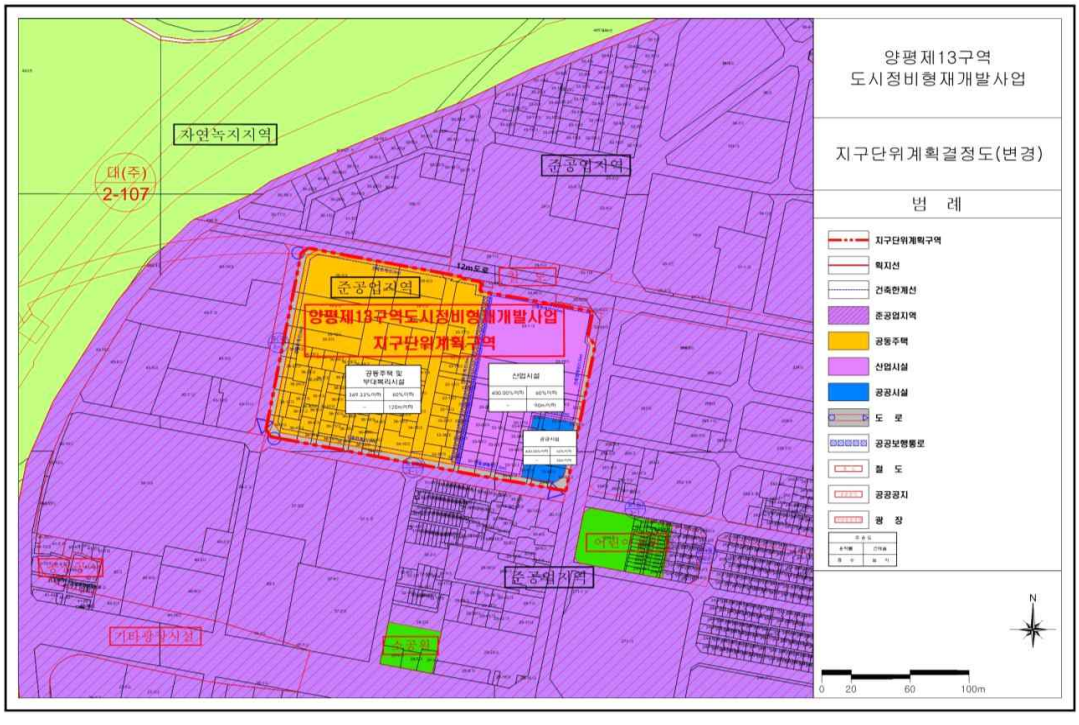
■ 정비계획 결정도(변경)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기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80호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장위 8 · 9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96호(2007.06.2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111호(2008.04.03)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45호(2009.04.0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42호(2010.04.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11호(2010.09.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14호(2011.05.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17호(2011.05.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62호(2011.06.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31호(2011.08.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44호(2011.08.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90호(2011.09.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4호(2012.02.0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38호(2012.05.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69호(2012.06.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0호(2013.01.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05호(2013.04.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61호(2013.05.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01호(2013.09.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73호(2014.07.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27호(2014.09.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06호(2014.11.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08호(2015.04.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32호(2015.05.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20호(2015.10.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73호(2016.03.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19호(2016.07.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82호(2017.10.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7호(2019.01.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88호(2019.03.0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40호(2019.07.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99호(2020.03.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49호(2020.04.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14호(2020.05.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13호(2020.07.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25호(2020.07.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76호(2020.12.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102호(2021.02.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54호(2021.06.0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306호(2021.07.0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02호(2022.07.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56호(2022.08.25.),서울특별시고시 제2023-36호(2023.02.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70호(2023.03.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307호(2023.07.20.)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제1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1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합니다.
2.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장위재정비촉진지구의 변경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명 칭	유 형	위 치	면적(㎡)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성북구 장위동일원	920,535.7	증) 206,711.0	1,127,246.7	-

※ 변경사유 : 장위 8, 9구역 재정비촉진지구 편입으로 인한 촉진지구 면적 변경

2.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관리구역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총 계				920,535.7	증) 206,711.0	1,127,246.7	-
촉진구역	소 계 (11개 구역)			846,105.8	증) 205,882.0	1,051,987.8	-
	장위1구역	장위동 144-24 일원		80,316.6	-	80,316.6	-
	장위2구역	장위동 290-9 일원		25,344.0	-	25,344.0	-
	장위3구역	장위동 305 일원		66,011.0	-	66,011.0	-
	장위4구역	장위동 62-1 일원		153,501.0	-	153,501.0	-
	장위5구역	장위동 173-114 일원		88,765.7	-	88,765.7	-
	장위6구역	장위동 25-55 일원		105,136.9	-	105,136.9	-
	장위7구역	장위동 189-3 일원		87,635.6	-	87,635.6	-
	장위8구역	장위동 85 일원		-	증) 121,634.0	121,634.0	신설
	장위9구역	장위동 238-83 일원		-	증) 84,248.0	84,248.0	신설
	장위10구역	장위동 68-37 일원		94,037.0	-	94,037.0	-
	장위14구역	장위동 233-552 일원		145,358.0	-	145,358.0	-
존치지역	존치 관리구역	소 계		74,429.9	증) 829.0	75,258.9	-
		존치구역	존치시설	74,429.9	증) 829.0	75,258.9	-

주) 구역 외 미개설 도로(가각부) 촉진지구에 포함 및 구역 외 미개설 도로(한천로 일부) 측량면적 반영
※변경사유 : 장위 8, 9구역 재정비촉진지구 편입으로 인한 촉진구역 지정 계획 변경

3.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

가. 장위 8구역(신설)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신설)

구분	재정비촉진 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신설	장위8구역	성북구 장위동 85번지 일대	-	증) 121,634.0	121,634.0	

※ 변경사유 : 구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낙후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 확충 및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재정비촉진구역 신설

2)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신설)

구분	명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계		-	증) 121,634.0	121,634.0	100.0	-
정비기반시설 등	소계	-	증) 24,775.0	24,775.0	20.4	-
	도로	-	증) 13,787.0	13,787.0	11.4	무상귀속
	공원	-	증) 9,148.0	9,148.0	7.5	무상귀속
	사회복지시설	-	증) 1,840.0	1,840.0	1.5	무상귀속
택지(획지)	소계	-	증) 96,859.0	96,859.0	79.6	-
	8-1	-	증) 67,090.0	67,090.0	55.2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8-2	-	증) 26,433.0	26,433.0	21.7	
	8-3	-	증) 900.0	900.0	0.7	종교용지
	8-4	-	증) 2,436.0	2,436.0	2.0	김진흥가

※ 변경사유 : 장위 8구역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신설

3)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 적(㎡)			비 율(%)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121,634.0	-	121,634.0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9,049.0	감) 6,273.0	12,776.0	10.5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95,905.0	감) 95,905.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6,680.0	증) 102,178.0	108,858.0	89.5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장위8 재정비촉진구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감) 6,273.0㎡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감) 95,905.0㎡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102,178.0㎡	• 장위8구역 내 공동주택 및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4)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40	25 ~31	간선 도로	11,530 (1,310)	군자동 (광로5호)	수유동	일반 도로	장위동	총고시722 (36.12.26)	한천로
기정	중로	1	A	20 ~26.5	보조 간선	1,348	장위동 64-95	장위동 311-22	일반 도로		총고시722 (36.12.26)	돌곶이로
변경	중로	1	A	25 ~26.5	보조 간선	1,348	장위동 64-95	장위동 311-22	일반 도로		총고시722 (36.12.26)	
기정	중로	1	510	20 ~25	집산 도로	489	장위동 154-9	장위동 237-90	일반 도로			장월로
변경	중로	1	510	20 ~25	집산 도로	489	장위동 154-9	장위동 237-90	일반 도로			
기정	중로	1	513	20	집산 도로	356	장위동 74-140	장위동 119-1	일반 도로		서고시23 (74.03.02)	장위로
변경	중로	1	513	20	집산 도로	356	장위동 74-140	장위동 119-1	일반 도로		서고시23 (74.03.02)	
기정	중로	1	523	14 ~19	집산 도로	145	장위동 143-38	장위동 270-463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순환도로
변경	중로	1	523	20	집산 도로	441	장위동 143-38	장위동 89-74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신설	소로	2	C	8	국지 도로	52	장위동 75-462	장위동 279	일반 도로			김진흥가 진입로
기정	소로	3	B	6		133	장위동 136-53	장위동 134-36	일반 도로		서고시88 (19.03.07)	
변경	소로	3	B	6		185	장위동 136-53	장위동 77-66	일반 도로		서고시88 (19.03.07)	
폐지	소로	2	136	8		443	장위동 270-58	장위동 91-1	일반 도로		서고시3 (69.01.18)	
폐지	소로	2	161	6~8		150	장위동 77-50	장위동 89-2	일반 도로		서고시61 (94.08.16)	
폐지	소로	3	108	6		36	장위동 135-5	장위동 135-3	일반 도로		서고시164 (92.05.26)	
폐지	소로	3	224	6		286	장위동 143-5	장위동 202-4	일반 도로		서고시111 (69.01.18)	
폐지	소로	3	225	6		428	장위동 81-32	장위동 75-431	일반 도로			
폐지	소로	3	227	6		280	장위동 272-45	장위동 118-3	일반 도로		서고시231 (69.01.18)	
폐지	소로	3	-	6		114	장위동 270-58	장위동 270-58				
폐지	소로	3	-	6		163	장위동 82-4	장위동 89-80				

※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연장을 의미함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1-A	중로 1-A	폭원 증가 (20m→25m)	• 장위8구역 돌곶이로 구간의 확폭을 통하여 타 구역과의 도로의 연속성 확립
중로 1-510	중로 1-510	선형 변경	• 장위8구역 버스베이 확보로 인한 시설 선형 변경
중로 1-513	중로 1-513	선형 변경	• 장위8구역 도로계획으로 인한 선형 변경
중로 1-523	중로 1-523	폭원 증가 (14~19m→20m) 연장 증가 (145m→441m)	• 장위8구역 내 순환도로 20m를 계획하여 단절된 순환도로 연결을 통해 교통 서비스 수준 증진
-	소로 2-C	도로 신설 (폭원 8m, 연장 52m)	• 장위8구역 내 문화재로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 신설
소로 3-B	소로 3-B	연장 증가 (133m→185m)	• 순환도로와의 원활한 도로 연계를 위하여 도로 연장 증가
소로 2-136	-	시설 폐지	• 장위8구역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인한 시설 폐지
소로 2-161	-	시설 폐지	• 장위8구역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인한 시설 폐지
소로 3-108	-	시설 폐지	• 장위8구역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인한 시설 폐지
소로 3-224	-	시설 폐지	• 장위8구역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인한 시설 폐지
소로 3-225	-	시설 폐지	• 장위8구역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인한 시설 폐지
소로 3-227	-	시설 폐지	• 장위8구역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인한 시설 폐지
소로 3-	-	시설 폐지	• 장위8구역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인한 시설 폐지
소로 3-	-	시설 폐지	• 장위8구역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인한 시설 폐지

나)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폐지	-	노외 주차장	장위동 76-55	684.0	감) 684.0	-	성북구고시13 (99.02.08)	-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②	노외주차장	• 폐지 (감 684.0㎡)	• 장위8구역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인한 시설 폐지

다)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신설	A	근린 공원	근린 공원	장위동 76-3일대	-	증) 9,148.0	9,148.0	-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A	근린공원	• 공원 신설 (증 9,148.0㎡)	• 서울시 문화재 김진흥가 주변으로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의 역사성 향상 및 인근 주민들의 휴식 도모

라)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신설	-	사회복지시설	장위동 136-66일대	-	증) 1,840.0	1,840.0	-	-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사회 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신설 (증 1,840㎡)	• 복지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신설

5) 건축물의 정비 · 개량 및 건축시설계획(신설)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신설)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장위8구역	121,634.0	장위동 85일대	567	-	-	567	-	

나) 건축시설계획(신설)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평균	최고
신설	장위 8구역	121,634.0	8-1	67,090.0	장위동 76-35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 이하	300% 이하	24.8층 이하	- (150m이하)
			8-2	26,433.0	장위동 85일대					
			8-3	900.0	장위동 118-2일대	종교용지	관련 법령에 의함			
			8-4	2,436.0	장위동 76-59일대	김진흥가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예정세대수: 2,846세대 [공공임대: 638세대, 공공지원민간임대: 146세대] - 전용면적 40㎡이하: 200세대(7.03%) [공공임대: 144세대] - 전용면적 50~60㎡이하: 1,577세대(55.41%) [공공임대: 435세대, 민간임대: 146세대] - 전용면적 60~85㎡: 999세대(35.10%) [공공임대: 59세대] - 전용면적 85㎡초과: 70세대(2.46%)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8-1, 8-2획지 : 돌곶이로변 10m, 장위로 · 장월로 · 한천로변 6m, 공원 및 공공보행통로변 5m, 순환도로변 및 이면부 3m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계획	• 8-1획지 내 공공보행통로 : 폭원 10m

다) 용적률 계획(신설)

구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 계획	계 (구역면적)	획지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등 면적	기부채납 공공시설(건축물) 환산부지 면적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획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121,634.0㎡	96,859.0㎡	24,775.0㎡	2,675.0㎡	4,188.0㎡	11,079.0㎡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토지+건축물) : 27,450.0㎡ (24,775.0㎡ + 2,675.0㎡) • 기부채납 공공시설 제공면적(순부담) : 12,183.0㎡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등 면적 + 기부채납 공공시설 건축물 환산부지 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대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24,775.0㎡ + 2,675.0㎡ - 4,188.0㎡ - 11,079.0㎡ = 12,183.0㎡ • 기부채납 공공시설(건축물) 환산부지면적 : 2,675.0㎡					
기반시설 부담률	• 기반시설 부담률 : (12,183.0㎡ ÷ 121,634.0㎡) × 100% = 10.02%					
기준용적률	• 기준용적률 : 210%					
정비계획 용적률	• 상한용적률 = 기준용적률+(기준용적률×1.3×α')+(기준용적률×0.7×α") = 210%+(210%×1.3×0.0981)+(210%×0.7×0.0276) = 240.84% ※ α' (토지)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 후 대지면적 = 9,508.0㎡ ÷ 96,859.0㎡ = 0.0981 ※ α" (건축물) = 공공시설환산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 후 대지면적 = 2,675.0㎡ ÷ 96,859.0㎡ = 0.0276					
상한용적률	• 상한용적률 = 240%					
법적상한 초과용적률	• 법적상한초과용적률 = 300%					

라) 공공시설(건축물) 환산부지 면적 산정(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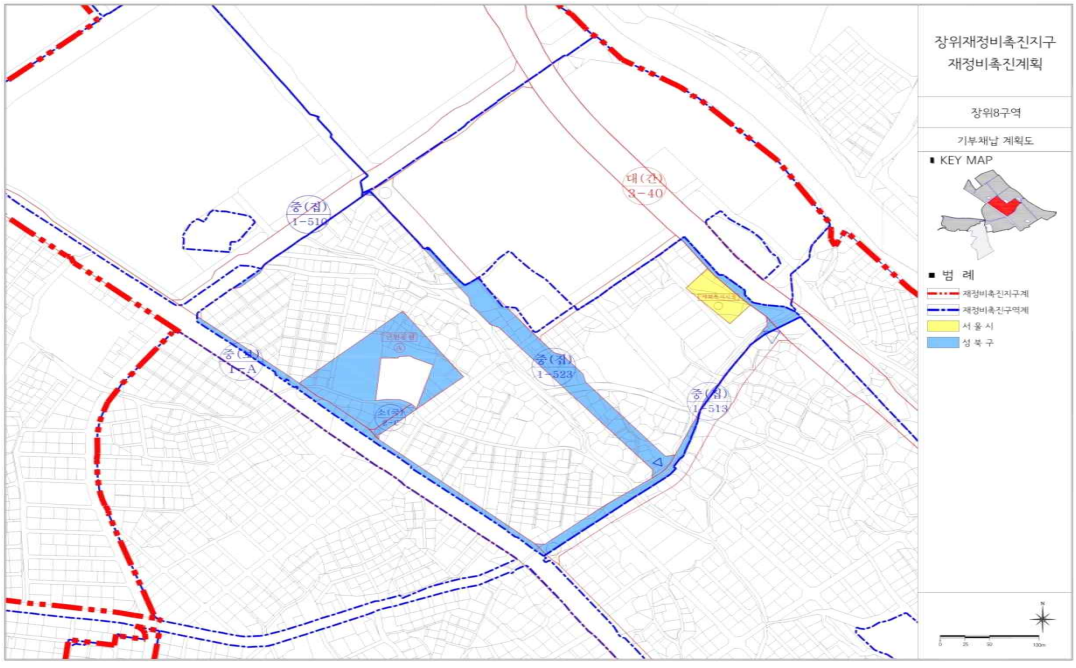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비 고
도입용도	사회복지시설	•서울시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회복지시설 계획
기부채납 연면적	4,350.0㎡	•지상층 연면적 3,600㎡, 지하층 연면적 750㎡
건축비	3,539,091원/㎡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책정 가이드라인(2022) - 사회복지시설 2,000㎡이상 5,000㎡미만
설치비용	15,395,045,850원	•설치비용 : 건축비 X 기부채납 연면적
부지가액	5,755,172원/㎡	•공시지가(2,877,586원/㎡) X 2
환산부지 면적	2,675.0㎡	•환산부지면적 = 설치비용 / 부지가액

• 무상귀속(기부채납) 계획(변경)

– 기부채납시설은 준공인가시 관리청에 귀속시키며,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세부용도, 면적 등을 확정

구분	시설명	시설규모	관리청
도로	대로 3-40	• 대로 3-40호선 (개설 14구역 → 8구역) – 폭 25~31m, 연장 11,530m	성북구
	중로 1-A	• 중로 1-A호선 폭원 증가 – 폭 25~26.5m, 연장 1,348m	성북구
	중로 1-510	• 중로 1-510호선 선형 변경 – 폭 20~25m, 연장 489m	성북구
	중로 1-513	• 중로 1-513호선 선형 변경 – 폭 20m, 연장 356m	성북구
	중로 1-523	• 중로 1-523호선 폭원 및 연장 증가 – 폭 20m, 연장 441m	성북구
	소로 2-C	• 소로 2-C호선 신설 – 폭 8m, 연장 52m	성북구
	소로 3-B	• 소로 3-B호선 연장 증가 – 폭 6m, 연장 185m	성북구
공원	근린공원	• 근린공원 신설 – 면적 : 9,148.0㎡	성북구
공공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토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 – 위치 : 장위동 136-66번지 일대 – 토지면적 : 1,840㎡ / 건축연면적 : 4,350㎡ – 세부용도 : 노인요양시설	서울특별시

※ 향후 토지평가 및 건축계획 변경 등에 따라 건축연면적이 조정될 수 있으며, 세부용도는 서울시 기부채납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추후 확정함



마) 도시경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신설)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도시경관	• 기본 방향 - 도시적 맥락에 따라 주변 지역과 스카이라인 조화를 고려한 계획 - 간선가로변, 커뮤니티가로변, 공원변, 학교변 등 입지특성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	-
환경보전	• 우수유출량 감소를 위한 녹지율 향상, 투수성 포장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	-
재난방지	• 긴급재난구조차량 접근 및 소방차등의 접근 고려 • 자연재해를 대비한 방재시스템 및 단지 내 상하수도시설의 합리적 설계 반영	-

6) 정비사업 시행계획(신설)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시행으로 변경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	비고
신설	공공재개발	7단계 (2023년부터)	서울 주택도시공사	현황: 1,198 계획: 2,846	-	-

7)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신설)

- 본 사업지는 주거 밀집지역으로서 자연성이 매우 낮고 식물상이 매우 빈약하나, 양호한 수목은 사업 시 이식 후 재식토록 함

8) 공공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신설)

구분	건립 위치	부지면적 (㎡)	동수	연면적(㎡)	세대규모(전용)	세대수(비율)	비고 (세대)
신설	장위 8구역	-	-	96,455.35	40㎡이하	• 144세대(18.37%)	공공지원 민간임대 포함
					50~60㎡이하	• 581세대(74.11%)	
					60~85㎡이하	• 59세대(7.52%)	
					계	• 전체:784세대(100.0%)	

주) 세대수 항목의 괄호는 전체 건립세대수에 대한 비율임
주) 구역 내 공공주택과 분양주택을 혼재배치하여 별도의 부지 구획하지 않음

9) 공공지원민간임대(수익형 전세)에 관한 계획(신설)

구분	건립 위치	부지면적 (㎡)	동수	연면적(㎡)	세대규모(전용)	세대수(비율)	비고 (세대)
신설	장위 8구역	-	-	18,461.70	50~60㎡이하	• 146세대(100.0%)	-
					계	• 전체:146세대(100.0%)	

나. 장위 9구역(신설)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신설)

구분	재정비촉진 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신설	장위9구역	성북구 장위동 238-53일대	-	증) 84,248.0	84,248.0	

※ 변경사유 :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낙후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 확충 및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재정비촉진구역 신설

2)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신설)

구분	명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계		-	증) 84,248.0	84,248.0	100.0	-
정비기반시설 등	소계	-	증) 11,892.3	11,892.3	14.1	-
	도로	-	증) 3,102.3	3,102.3	3.7	무상귀속
	공원	-	증) 6,690.0	6,690.0	7.9	무상귀속
	문화시설	-	증) 2,100.0	2,100.0	2.5	무상귀속
택지(획지)	소계	-	증) 72,355.7	72,355.7	85.9	-
	9-1	-	증) 72,355.7	72,355.7	85.9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 용도지역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구 분		면 적(㎡)			비 율(%)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84,248.0	-	84,248.0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84,248.0	감) 72,355.7	11,892.3	14.1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72,355.7	72,355.7	85.9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장위9 재정비촉진구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감) 72,355.7㎡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72,355.7㎡	• 장위9구역 내 공동주택 및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4)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514	20	집산도로	396	장위동 236	장위동 75-1	일반도로	-	서고시23 (74.03.02)	장위로
기정	중로	3	-	12	집산도로	378	장위동 237-226	장위동 238-510	일반도로	-	-	
변경	중로	2	-	20	집산도로	378	장위동 237-226	장위동 238-510	일반도로	-	-	-
폐지	소로	3	222	6	국지도로	110	장위동 270-58	장위동 91-1	일반도로	-	서고시3 (69.01.18)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3-222	-	• 시설폐지	• 장위9구역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인한 시설 폐지
중로 3-	중로 2-	• 폭원 및 선형변경 (B=12 → 20m)	• 주변 지역 연장계획과의 정합성 유지 • 대상지 부출입구 및 소공원 이용자의 보행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폭원, 선형 변경

나)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폐지	-	공공공지	장위동 238-414	172.0	감) 172.0	-	성북구 고시38 (74.03.02)	-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공공지	• 폐지 감) 172.0㎡	•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로 활용

다) 공원 결정(신설)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신설	-	소공원	소공원	장위동 238-98일대	-	증) 6,690.0	6,690.0	-	-

■ 공원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공원	• 공원 신설 (증 6,690.0㎡)	• 문화시설과 연계한 소공원을 조성하여 이용 편의 향상 및 인근 주민들의 휴식 도모

라) 문화시설 결정(신설)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신설	-	문화 시설	문화 시설	장위동 238-104일대	-	증) 2,100.0	2,100.0	-	-

■ 문화시설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	문화시설	문화시설	• 문화시설 신설 증) 2,100.0㎡	• 지역주민의 문화생활을 위한 도서관 및 공연장 등 다목적 통합 문화공간 조성

5)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신설)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신설)

결정구분	구 역 구 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장위 9구역	84,248.0	장위동 238-83 일대	460	-	-	460	-	

나) 건축시설계획(신설)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평균	최고
신설	장위 9구역	84,248.0	획지1 (공동주택)	72,355.7	장위동 238-83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60% 이하	300% 이하	30층 이하	- (150m 이하)
			문화시설	2,100.0	장위동 238-97 일대	도서관 및 문화시설	관련 법령에 의함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예정세대수 : 2,230대 [공공임대: 508세대, 공공지원민간임대: 255세대] - 전용면적 40㎡이하 : 160세대(7.2%) [공공임대: 112세대] - 전용면적 50~60㎡ : 1,043세대(46.7%) [공공임대: 330세대, 민간임대: 120세대] - 전용면적 60~85㎡ : 967세대 (43.4%) [공공임대: 66세대, 민간임대: 135세대] - 전용면적 85㎡이상 : 60세대 (2.7%)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9-1획지 : 돌곶이로변 10m, 장위로, 장월로변 6m, 공공보행통로 양측 5m, 기반시설 이면부 3m									
기타사항	• 9-1획지 내 공공보행통로 : 폭원 10m									

다) 용적률 계획(신설)

구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 계획	계 (구역면적)	획지 (공동주택 등)	신설 정비기반시설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획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84,248.0㎡	72,355.7㎡	11,892.3㎡	3,898.3㎡	2,985.5㎡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토지+건축물) : 15,790.6㎡(11,892.3㎡+3,898.3㎡) •기부채납 공공시설 제공면적(순부담): 9,264.6㎡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등 면적 + 기부채납 공공시설 건축물 환산부지 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대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11,892.3㎡ + 3,898.3㎡ - 2,985.5㎡- 3,540.5㎡ = 9,264.6㎡ •기부채납 공공시설(건축물) 환산 부지면적 : 3,898.3㎡				
기반시설 부담률	• 기반시설 부담률 : (9,264.6㎡ ÷ 84,248.0㎡) × 100% = 10.99%				
기준용적률	• 기준용적률 : 210%				
정비계획 용적률	• 상한용적률 = 기준용적률+(기준용적률×1.3×α ')+(기준용적률×0.7×α ") = 210%+(210%×1.3×0.0742)+(210%×0.7×0.0538) = 238.17%				

구분	산 정 내 용
	※ α '(토지)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 후 대지면적 = (11,892.3㎡ - 2,985.5㎡ - 3,540.5㎡) ÷ 72,355.7㎡ = 0.0742 ※ α "(건축물) = 공공시설환산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 후 대지면적 = 3,898.30㎡ ÷ 72,355.7㎡ = 0.0538
상한용적률	• 상한용적률 = 238%
법적상한 초과용적률	• 법적상한초과용적률 = 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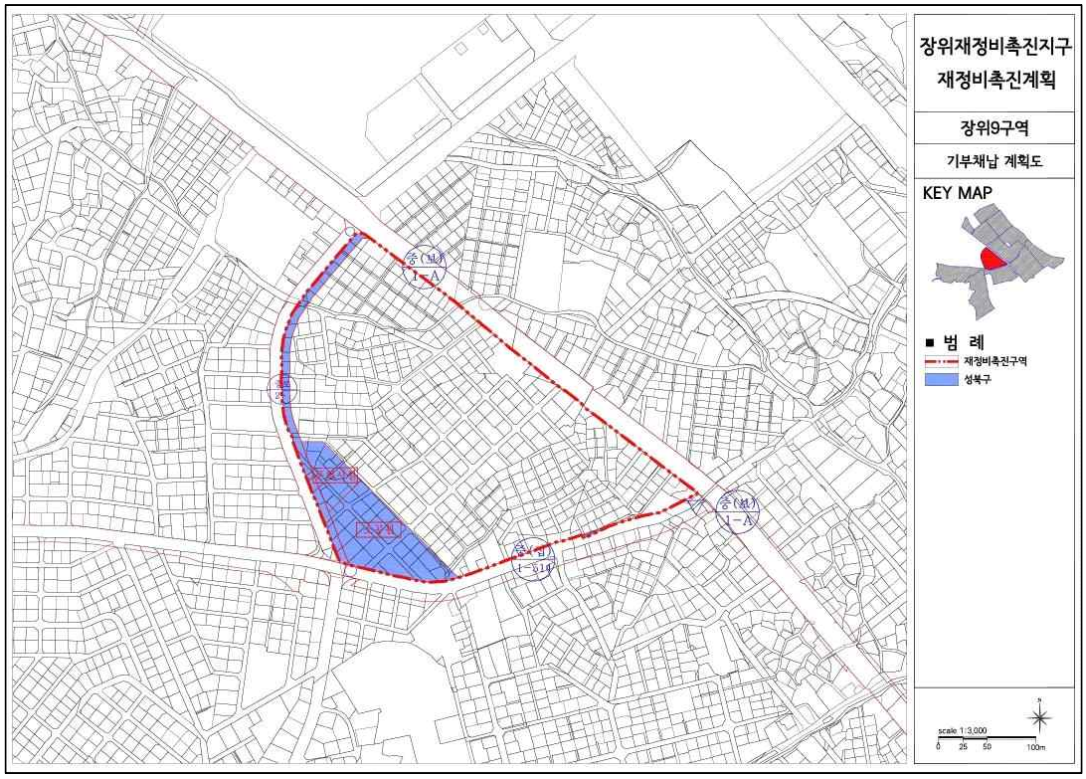
라) 공공시설(건축물) 환산부지면적 산정(신설)

구분	내용	비고
도입용도	문화시설	•성북구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문화시설 계획
기부채납 연면적	6,600.0㎡	•지상층 연면적 5,000㎡, 지하층 연면적 1,600㎡
건축비	3,540,000원/㎡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책정 가이드라인(2022) - 의료 및교육연구시설(도서관) 2,000㎡이상 6,000㎡미만
	4,293.,636원/㎡	•공공건축물건립공사비책정가이드라인(2022) - 문화 및 집회시설(문화예술회관·문화집회시설) 3,000㎡미만
설치비용	18,939,000,000원	•설치비용 : 건축비 X 기부채납 연면적(도서관)
	5,367,045,454원	•설치비용 : 건축비 X 기부채납 연면적(문화시설)
	24,306,045,454원	•설치비용 합계 (도서관+문화시설)
부지가액	6,234,960원/㎡	•공시지가(3,117,480원/㎡) X 2
환산부지 면적	3,898.3㎡	•환산부지면적 = 설치비용 / 부지가액

• 무상귀속(기부채납) 계획(신설)

- 기부채납시설은 준공인가시 관리청에 귀속시키며, 사업시행계획인가시 세부용도, 면적 등을 확정

구분	시설명	시설규모	관리청
도로	중로 1-514	• 중로 1-514 폭원 확장 - 폭 20m, 연장 396m	성북구
도로	중로 2-	• 중로 2- 폭원 및 선형변경 - 폭 12 → 20m, 연장 378m	성북구
공원	소공원	• 공원 신설 - 면적 : 6,690㎡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장위9구역
기부채납 계획도
KEY MAP
■ 범 례
재정비촉진구역
성북구
scale 1:3,000
0 25 50 100m

마) 도시경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신설)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도시경관	• 기본 방향 - 도시적 맥락에 따라 주변 지역과 스카이라인 조화를 고려한 계획 - 간선가로변, 커뮤니티가로변, 공원변, 학교변 등 입지특성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	-
환경보전	• 우수유출량 감소를 위한 녹지율 향상, 투수성 포장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	-
재난방지	• 긴급재난구조차량 접근 및 소방차등의 접근 고려 • 자연재해를 대비한 방재시스템 및 단지 내 상하수도시설의 합리적 설계 반영	-

6) 정비사업 시행계획(신설)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시행으로 변경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	비고
신설	주택재개발	7단계 (2023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	-	

7)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신설)

- 본 사업지는 주거밀집지역으로 자연성이 매우 낮고 식물상이 매우 빈약하나, 양호한 수목은 사업 시 이식 후 재식토록 함

8) 공공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신설)

구분	건립 위치	부지면적 (㎡)	동수	연면적(㎡) (공급)	세대규모 (전용)	세대수 (비율)	비고
신설	장위 9구역	-	-	61,803.2	40㎡이하	· 112세대(14.68%)	공공지원 민간임대
					50~60㎡이하	· 450세대(58.98%)	
					60~85㎡이하	· 201세대(26.34%)	
					계	· 전체 : 763세대(100.00%)	

9) 공공지원민간임대(수익형전세)에 관한 계획(신설)

구분	건립 위치	부지면적 (㎡)	동수	연면적(㎡) (공급)	세대규모 (전용)	세대수 (비율)	비고
신설	장위 9구역	-	-	38,534.9	• 50~60㎡이하	• 120세대(47.1%)	-
					• 60~85㎡이하	• 135세대(52.9%)	
					계	• 전체:255세대(100.0%)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장위 8구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신설	장위8구역	성북구 장위동 85일대	-	증) 121,634.0	121,634.0	100.0	-

※ 변경사유 : 구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낙후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 확충 및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재정비촉진구역 신설

나.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비 율(%)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121,634.0	-	121,634.0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9,049.0	감) 6,273.0	12,776.0	10.5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95,905.0	감) 95,905.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6,680.0	증) 102,178.0	108,858.0	89.5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장위8 재정비촉진구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감) 6,273.0㎡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감) 95,905.0㎡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102,178.0㎡	• 장위8구역 내 공동주택 및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다. 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40	25 ~31	간선 도로	11,530 (1,310)	군자동 (광로5호)	수유동	일반 도로	장위동	총고시722 (36.12.26)	한천로
기정	중로	1	A	20 ~26.5	보조 간선	1,348	장위동 64-95	장위동 311-22	일반 도로		총고시722 (36.12.26)	돌곶이로
변경	중로	1	A	25 ~26.5	보조 간선	1,348	장위동 64-95	장위동 311-22	일반 도로		총고시722 (36.12.26)	
기정	중로	1	510	20 ~25	집산 도로	489	장위동 154-9	장위동 237-90	일반 도로			장월로
변경	중로	1	510	20 ~25	집산 도로	489	장위동 154-9	장위동 237-90	일반 도로			
기정	중로	1	513	20	집산 도로	356	장위동 74-140	장위동 119-1	일반 도로		서고시23 (74.03.02)	장위로
변경	중로	1	513	20	집산 도로	356	장위동 74-140	장위동 119-1	일반 도로		서고시23 (74.03.02)	
기정	중로	1	523	14 ~19	집산 도로	145	장위동 143-38	장위동 270-463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순환도로
변경	중로	1	523	20	집산 도로	441	장위동 143-38	장위동 89-74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신설	소로	2	C	8	국지 도로	52	장위동 75-462	장위동 279	일반 도로			김진흥가 진입로
기정	소로	3	B	6		133	장위동 136-53	장위동 134-36	일반 도로		서고시88 (19.03.07)	
변경	소로	3	B	6		185	장위동 136-53	장위동 77-66	일반 도로		서고시88 (19.03.07)	
폐지	소로	2	136	8		443	장위동 270-58	장위동 91-1	일반 도로		서고시3 (69.01.18)	
폐지	소로	2	161	6~8		150	장위동 77-50	장위동 89-2	일반 도로		서고시61 (94.08.16)	
폐지	소로	3	108	6		36	장위동 135-5	장위동 135-3	일반 도로		서고시164 (92.05.26)	
폐지	소로	3	224	6		286	장위동 143-5	장위동 202-4	일반 도로		서고시111 (69.01.18)	
폐지	소로	3	225	6		428	장위동 81-32	장위동 75-431	일반 도로			
폐지	소로	3	227	6		280	장위동 272-45	장위동 118-3	일반 도로		서고시231 (69.01.18)	
폐지	소로	3	-	6		114	장위동 270-58	장위동 270-58				
폐지	소로	3	-	6		163	장위동 82-4	장위동 89-80				

※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연장을 의미함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1-A	중로 1-A	폭원 증가 (20m→25m)	• 장위8구역 돌곶이로 구간의 확폭을 통하여 타 구역과의 도로의 연속성 확립
중로 1-510	중로 1-510	선형 변경	• 장위8구역 버스베이 확보로 인한 시설 선형 변경
중로 1-513	중로 1-513	선형 변경	• 장위8구역 도로계획으로 인한 선형 변경
중로 1-523	중로 1-523	폭원 증가 (14~19m→20m) 연장 증가 (145m→441m)	• 장위8구역 내 순환도로 20m를 계획하여 단절된 순환도로 연결을 통해 교통 서비스 수준 증진
-	소로 2-C	도로 신설 (폭원 8m, 연장 52m)	• 장위8구역 내 문화재로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 신설
소로 3-B	소로 3-B	연장 증가 (133m→185m)	• 순환도로와의 원활한 도로 연계를 위하여 도로 연장 증가
소로 2-136	-	시설 폐지	• 장위8구역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인한 시설 폐지
소로 2-161	-	시설 폐지	• 장위8구역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인한 시설 폐지
소로 3-108	-	시설 폐지	• 장위8구역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인한 시설 폐지
소로 3-224	-	시설 폐지	• 장위8구역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인한 시설 폐지
소로 3-225	-	시설 폐지	• 장위8구역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인한 시설 폐지
소로 3-227	-	시설 폐지	• 장위8구역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인한 시설 폐지
소로 3-	-	시설 폐지	• 장위8구역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인한 시설 폐지
소로 3-	-	시설 폐지	• 장위8구역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인한 시설 폐지

2)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폐지	-	노외주차장	장위동 76-55	684.0	감) 684.0	-	성북구고시13 (99.02.08)	-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노외주차장	• 폐지 (감 684.0㎡)	• 장위8구역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인한 시설 폐지

3)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신설	A	근린공원	근린공원	장위동 76-3일대	-	증) 9,148.0	9,148.0	-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A	근린공원	• 공원 신설 (증 9,148.0㎡)	• 서울시 문화재 김진흥가 주변으로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의 역사성 향상 및 인근 주민들의 휴식 도모

4)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신설	-	사회복지시설	장위동 136-66일대	-	증) 1,840.0	1,840.0	-	-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신설 (증 1,840㎡)	• 복지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신설

라.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명칭	면 적(㎡)			비율(%)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획지	소계	-	증) 96,859.0	96,859.0	100.0	-
	8-1	-	증) 67,090.0	67,090.0	69.2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8-2	-	증) 26,433.0	26,433.0	27.3	
	8-3	-	증) 900.0	900.0	1.0	종교용지
	8-4	-	증) 2,436.0	2,436.0	2.5	김진흥가

2)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신설)

구분	획지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계획		비고
				기준 (%)	상한 (%)	법적상한 초과(%)	평균	최고	
신설	8-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이하	210%	240%	300%이하	24.8층 이하	- (150m이하)	-
신설	8-2								
신설	8-3	종교용지	관련 법령에 의함						-
신설	8-4	김진흥가							

나) 건축물 건축선에 관한 계획(신설)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건축한계선	돌곶이로변	10m
	한천로 · 장위로 · 장월로변	6m
	공원 및 공공보행통로변	5m
	순환도로 및 이면부	3m

3)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적용위치	계 획 내 용
공공 보행통로	8-1획지 내	•일반인에게 상시개방되어 보행자 통행에 이용될 수 있도록 공공보행통로 지정 (1개소, 폭원 10m)

나) 공공주택 건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건립 위치	부지면적 (㎡)	동수	연면적(㎡)	세대규모(전용)	세대수(비율)	비고 (세대)
신설	장위 8구역	93,523	-	96,455.35	40㎡이하	• 144세대(18.37%)	공공지원민간임대 포함
					50~60㎡이하	• 581세대(74.11%)	
					60~85㎡이하	• 59세대(7.52%)	
					계	• 전체:784세대(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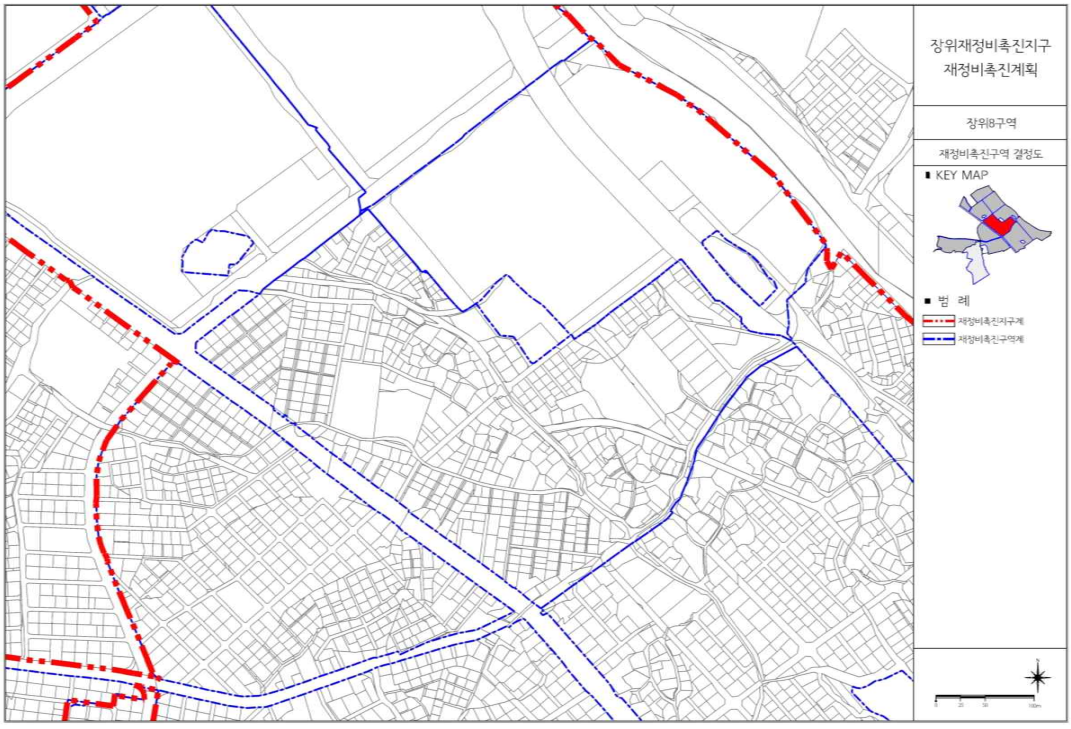
※ 세대수 항목의 괄호는 전체 건립세대수에 대한 비율임

구 분			세대수				비고
			전체	의무	국민주택규모	공공지원민간	
신설	세대 규모 (전용)	40㎡이하	144세대	144세대	-	-	-
		50~60㎡이하	581세대	194세대	241세대	146세대	-
		60~85㎡이하	59세대	-	59세대	-	-
		계	784세대	338세대	300세대	146세대	-
	연면적(㎡)(공급)		96,455.35	37,006.83	40,986.82	18,461.7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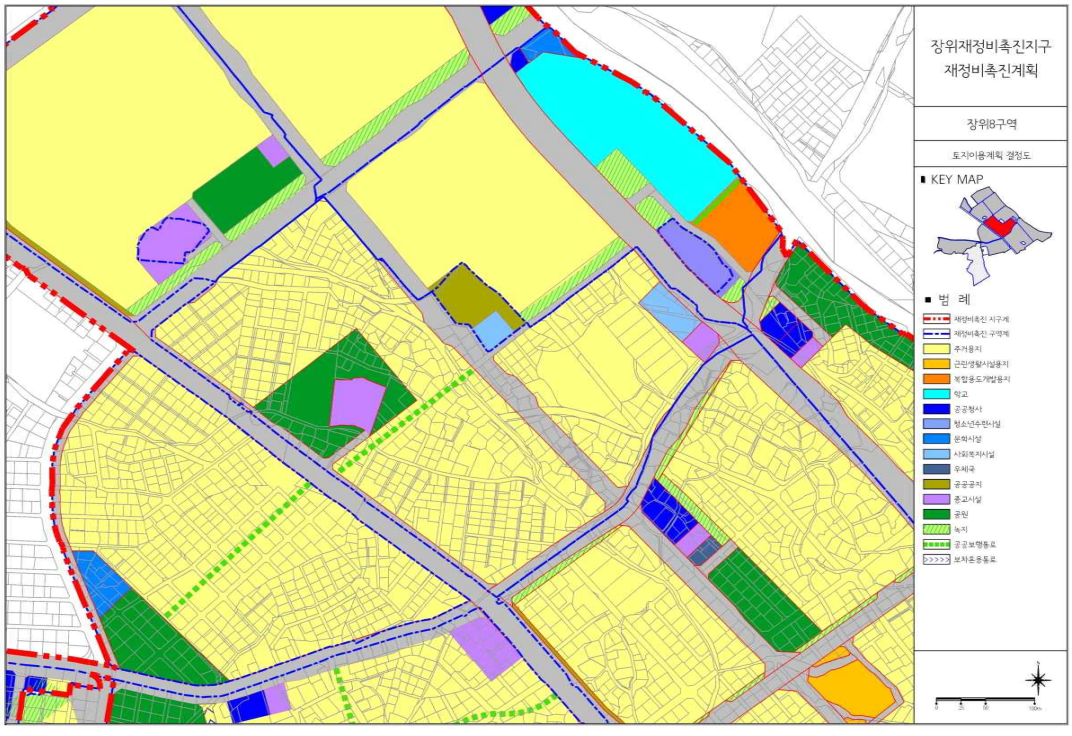
다) 공공지원민간임대(수익형 전세)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건립 위치	부지면적 (㎡)	동수	연면적(㎡)	세대규모(전용)	세대수(비율)	비고 (세대)
신설	장위 8구역	-	-	18,461.70	50~60㎡이하	• 146세대(100.0%)	-
					계	• 전체:146세대(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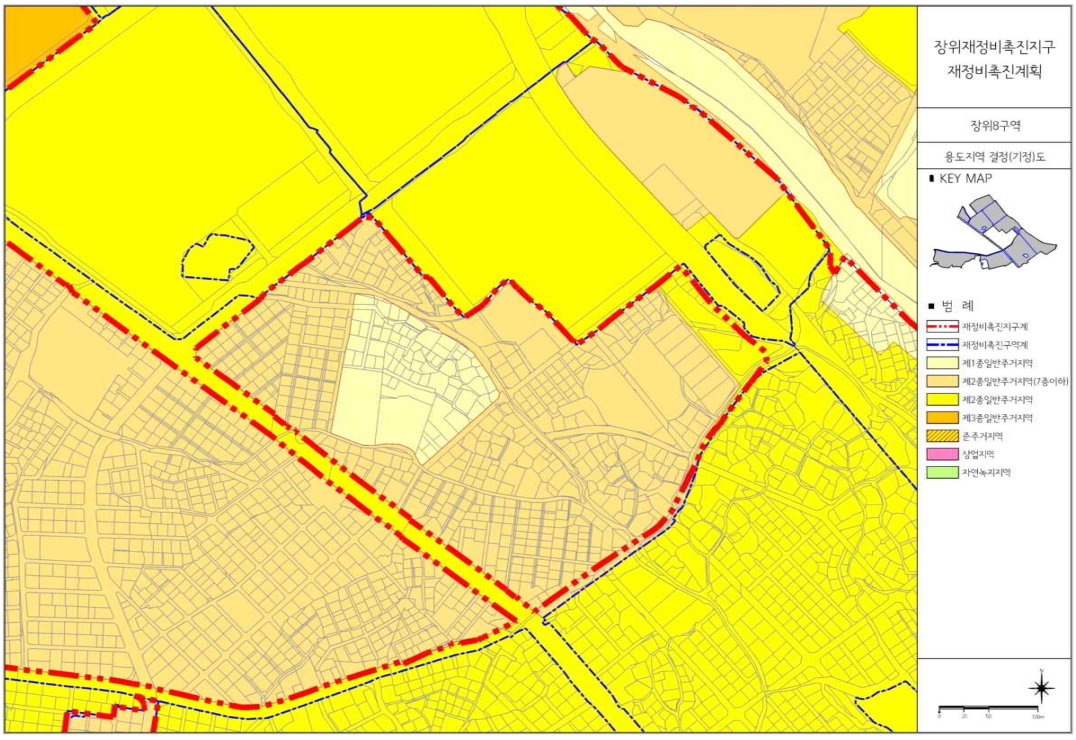
[장위8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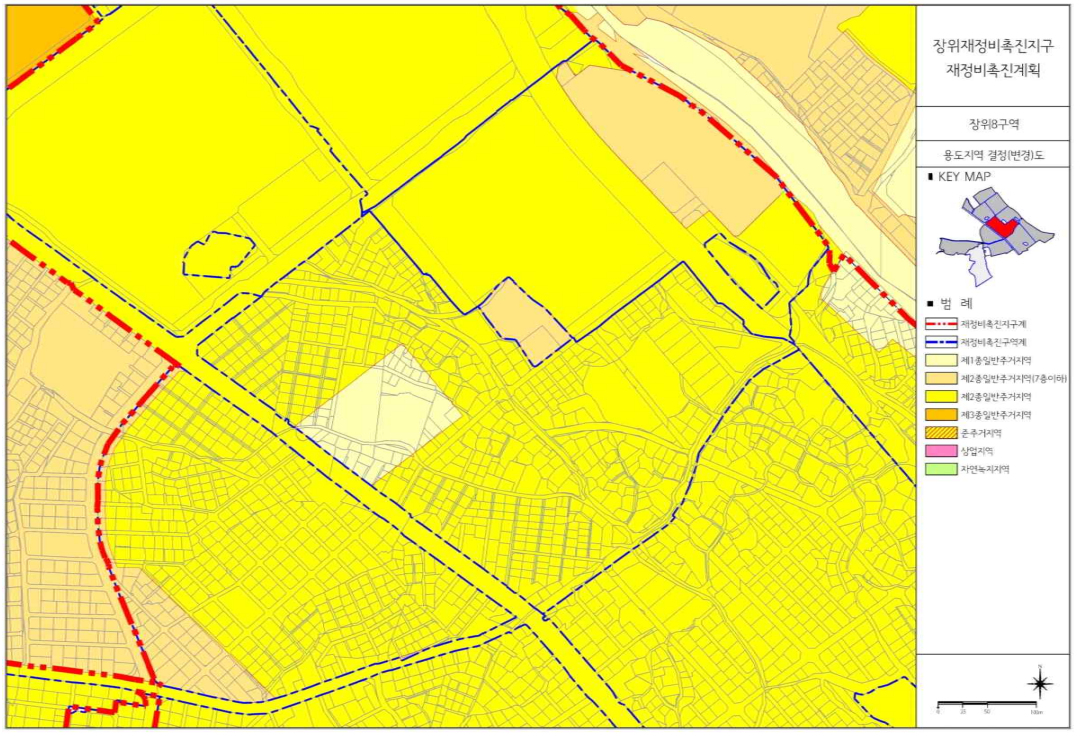
[장위8 재정비촉진구역 토지이용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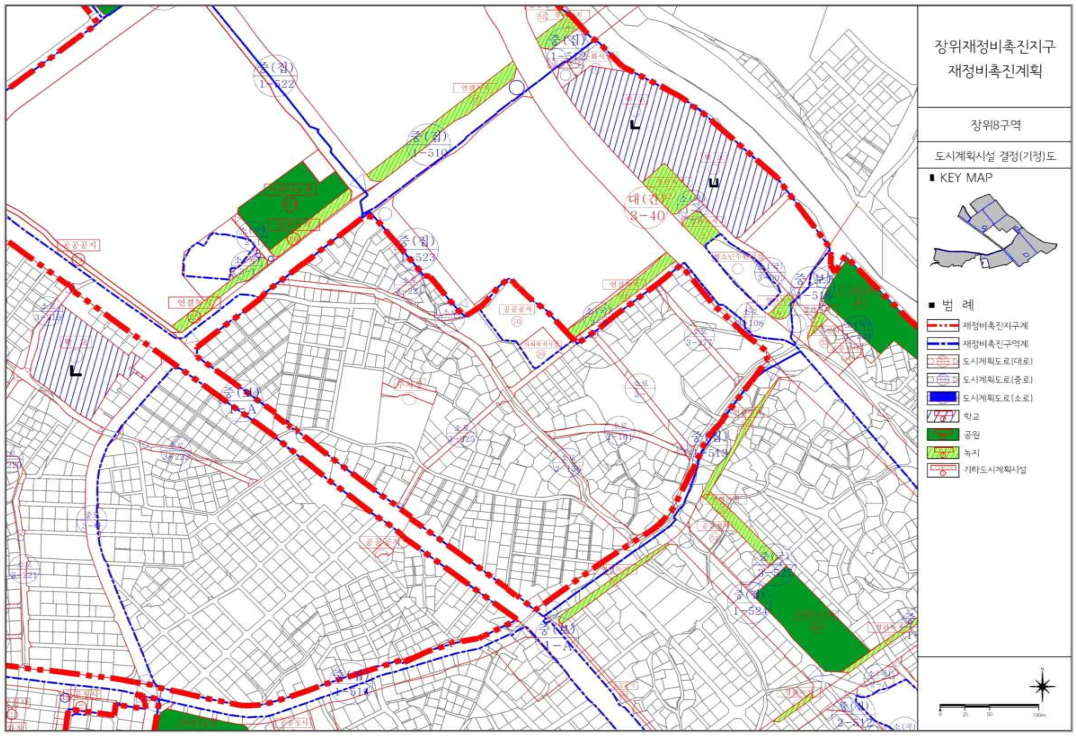
[장위8 재정비촉진구역 용도지역 · 지구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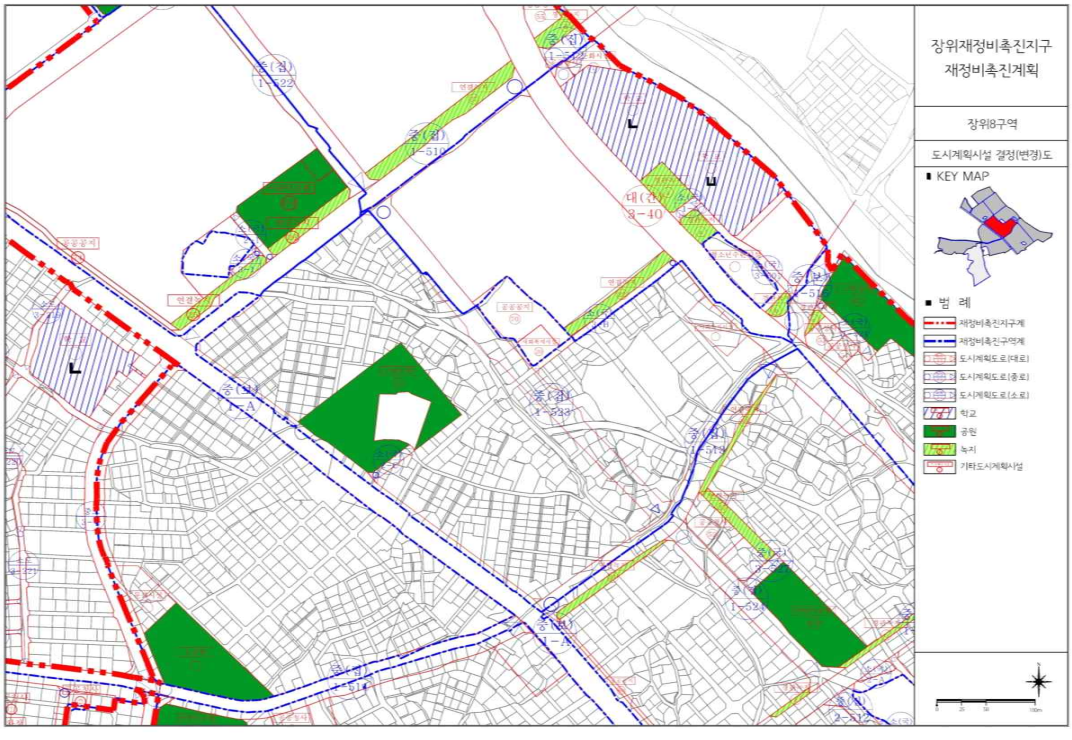
[장위8 재정비촉진구역 용도지역 · 지구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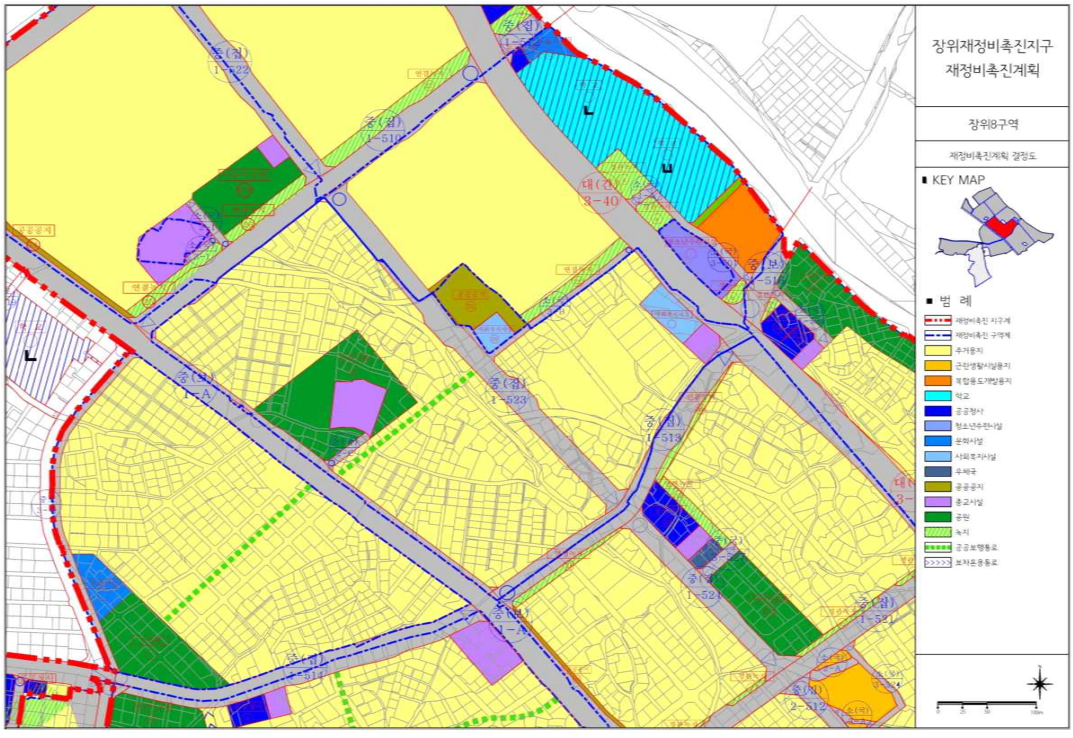
[장위8 재정비촉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장위8 재정비촉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장위8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



[장위8 재정비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2. 장위 9구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신설)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신설	장위9구역	성북구 장위동 238-83일대	-	증) 84,248.0	84,248.0	100.0	

※ 변경사유 :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낙후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 확충 및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재정비촉진구역 신설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비 율(%)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84,248.0	-	84,248.0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84,248.0	감) 72,355.7	11,892.3	14.1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72,355.7	72,355.7	85.9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장위9 재정비촉진구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감) 72,355.7㎡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72,355.7㎡	• 장위9구역 내 공동주택 및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다. 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514	20	집산 도로	396	장위동 236	장위동 75-1	일반도로	-	서고시23 (74.03.02)	장위로
기정	중로	3	-	12	집산 도로	378	장위동 237-226	장위동 238-510	일반도로	-	-	-
변경	중로	2	-	20	집산 도로	378	장위동 237-226	장위동 238-510	일반도로	-	-	
폐지	소로	3	222	6	국지 도로	110	장위동 270-58	장위동 91-1	일반도로	-	서고시3 (69.01.18)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3-222	-	• 노선폐지	• 장위9구역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인한 시설 폐지
중로 3-	중로 2-	• 폭원 및 선형변경 (B=12 → 20m)	• 주변 지역 연장계획과의 정합성 유지 • 대상지 부출입구 및 소공원 이용자의 보행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폭원, 선형 변경

2)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폐지	-	공공공지	장위동 238-414	172.0	감) 172.0	-	성북구 고시38 (74.03.02)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공공지	공공공지	• 폐지 - 감) 172.0㎡	•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로 활용

3) 공원 결정(신설)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신설	-	소공원	소공원	장위동 238-98일대	-	증) 6,690.0	6,690.0	-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공원	• 공원 신설 (증 6,690.0㎡)	• 문화시설과 연계한 소공원을 조성하여 이용 편의 향상 및 인근 주민들의 휴식 도모

4) 문화시설 결정(신설)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신설	-	문화 시설	장위동 238-104일대	-	증) 2,100.0	2,100.0	-	-

■ 문화시설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문화시설	• 문화시설 신설 증) 2,100.0㎡	• 지역주민의 문화생활을 위한 도서관 및 공연장 등 다목적 통합 문화공간 조성

라.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신설)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신설) 조서

구분	명칭	면 적(㎡)			비율(%)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획지	소계	-	증) 74,455.7	74,455.7	88.4	
	9-1	-	증) 72,355.7	72,355.7	85.9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9-2	-	증) 2,100.0	2,100.0	2.5	문화시설

2)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신설)

구분	획지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계획		비고
				기준 (%)	상한 (%)	법적상한 초과(%)	평균	최고	
신설	9-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이하	210%	238%	300%이하	30층 이하	- (150m이하)	-
신설	9-2	문화시설	관련 법령에 의함						-

나) 건축물 건축선에 관한 계획(신설)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건축한계선	돌곶이로변	10m
	장위로, 장월로변	6m
	공공보행통로 양측	5m
	기반시설 이면부	3m

3)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신설)조서

가)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적용위치	계 획 내 용
공공 보행통로	도면에 표기	▪ 일반인에게 상시개방되어 보행자 통행에 이용될 수 있도록 공공보행통로 지정(1개소, 폭원 10m)

나) 공공주택 건설에 관한 결정(신설) 조서

구분	건립 위치	부지면적 (㎡)	동수	연면적(㎡) (공급)	세대규모 (전용)	세대수 (비율)	비고
신설	장위 9구역	-	-	61,803.2	40㎡이하	· 112세대(14.68%)	공공지원 민간임대
					50~60㎡이하	· 450세대(58.98%)	
					60~85㎡이하	· 201세대(26.34%)	
					계	· 전체 : 763세대(100.00%)	

구 분			세대수				비고
			전체	의무	국민주택규모	공공지원민간	
신설	세대 규모 (전용)	40㎡이하	112세대	112세대	-	-	
		50~60㎡이하	450세대	148세대	182세대	120세대	
		60~85㎡이하	201세대	-	66세대	135세대	
		계	763세대	260세대	248세대	255세대	
	연면적(㎡)(공급)		61,067.23	13,357.40	22,425.19	25,284.63	

다) 공공지원민간임대(수익형전세)에 관한 결정(신설) 조서

구분	건립 위치	부지면적 (㎡)	동수	연면적(㎡) (공급)	세대규모 (전용)	세대수 (비율)	비고
신설	장위 9구역	-	-	25,284.63	50~60㎡이하	· 120세대(47.1%)	
					60~85㎡이하	· 135세대(52.9%)	
					계	· 전체 : 255세대(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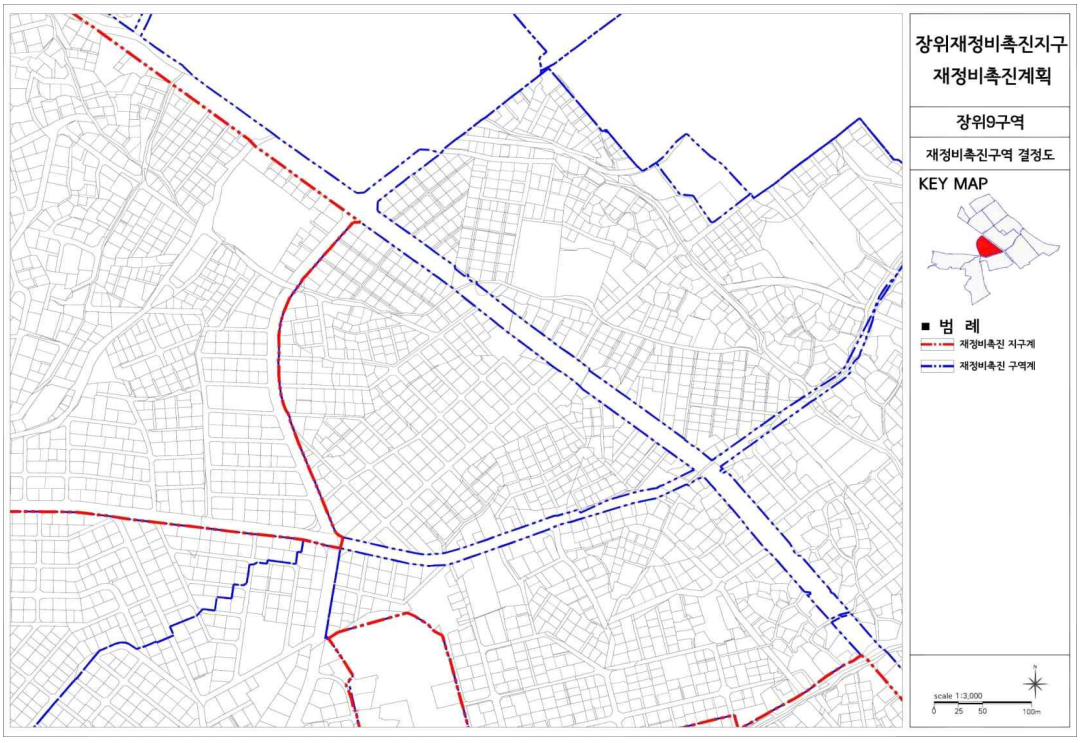
마.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관련 사항은 붙임(장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총괄)고시) 및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도서」에 명시 : 결정(변경)도서 게재 생략

바. 지형도면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및 성북구 도시정비신속추진단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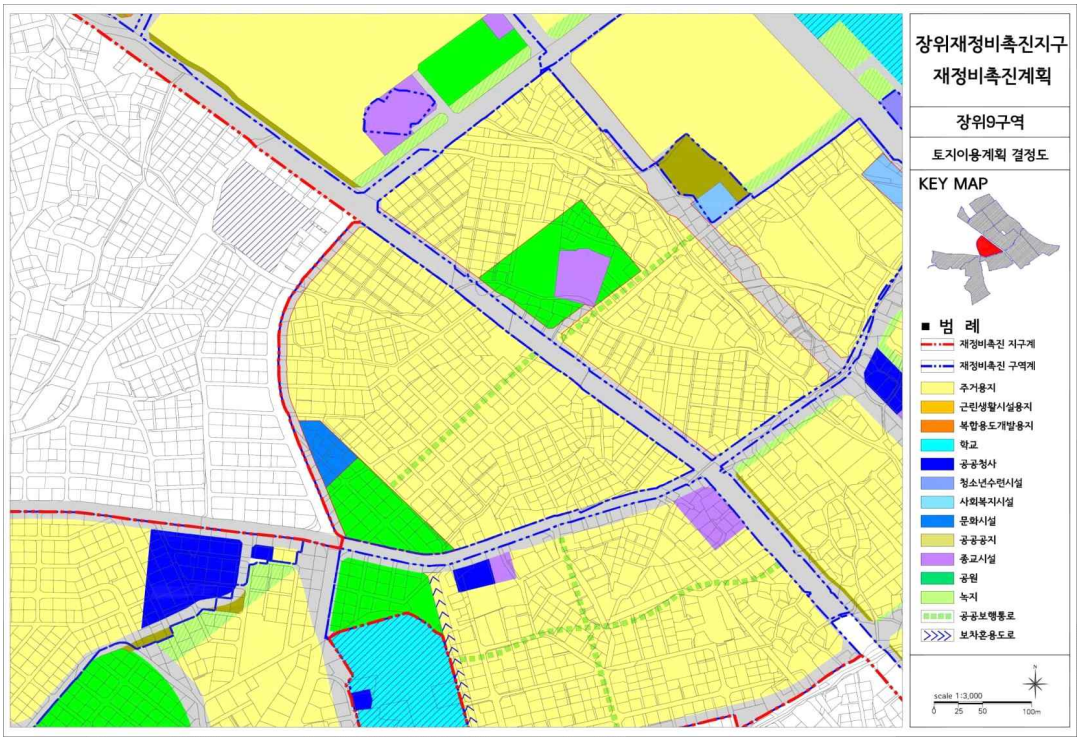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 02-2133-7223) 및 성북구 도시정비신속추진단(☎ 02-2241-2782)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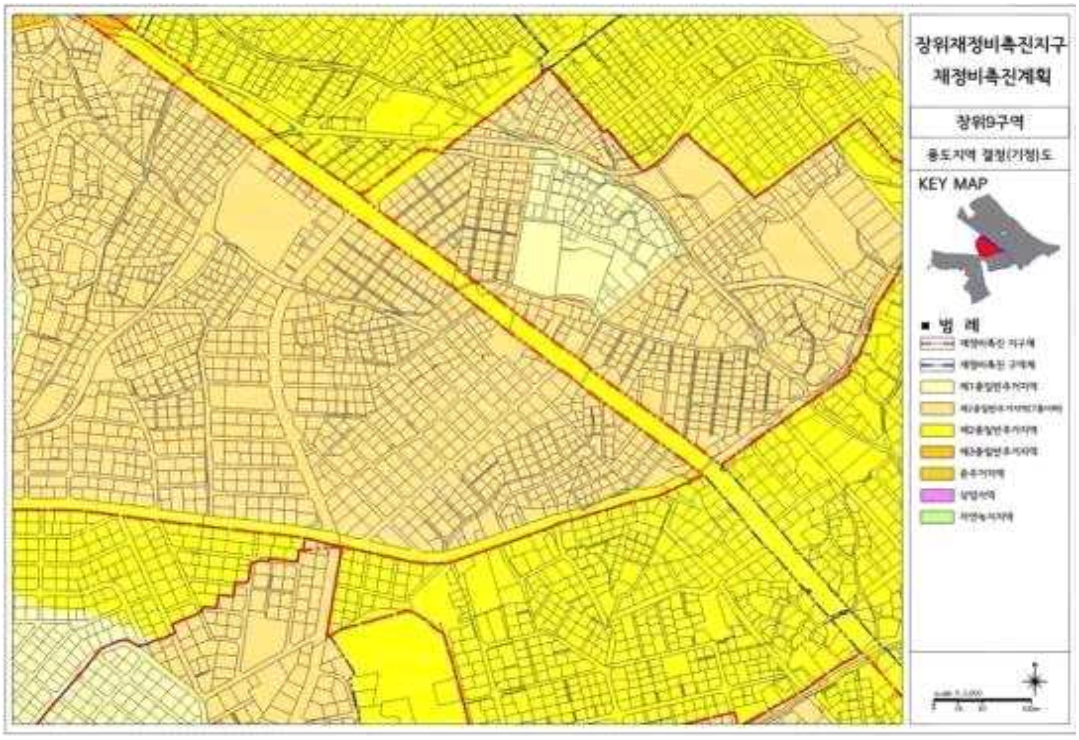
[장위9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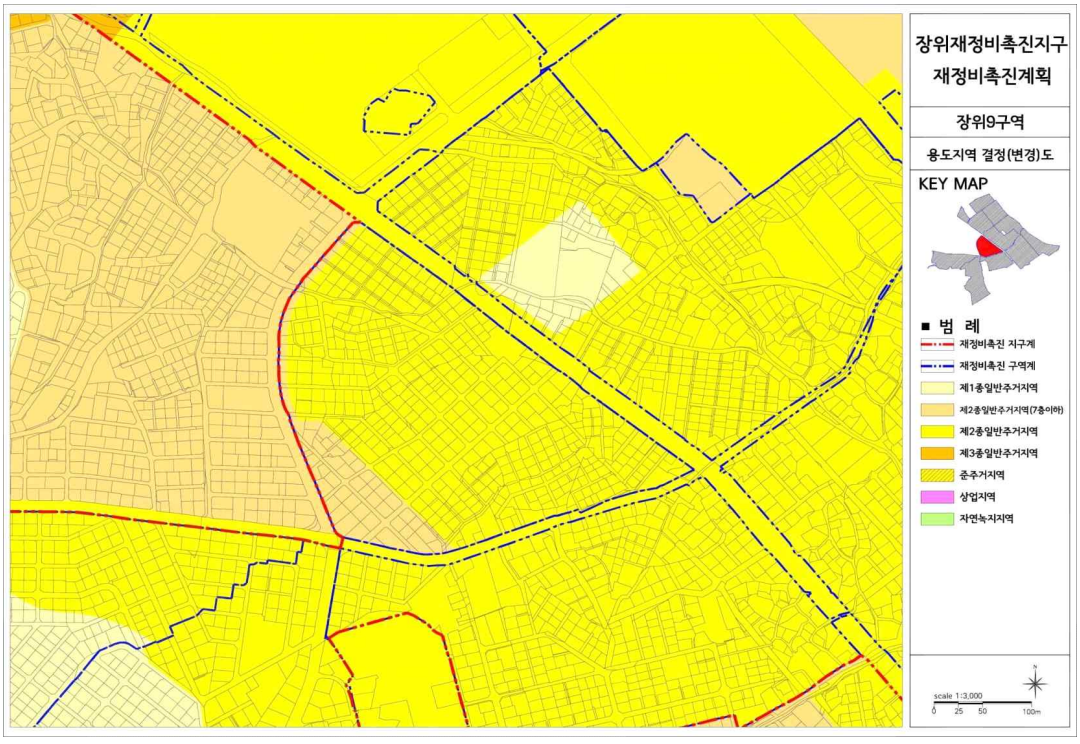
[장위9 재정비촉진구역 토지이용계획 결정도]



[장위9 재정비촉진구역 용도지역 · 지구 결정(기정)도]



[장위9 재정비촉진구역 용도지역 · 지구 결정(변경)도]



[장위9 재정비촉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장위9 재정비촉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장위9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



[장위9 재정비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붙임 :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총괄) 고시

1. 장위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 유형 · 위치 · 면적(변경)

명 칭	유 형	위 치	면적(㎡)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장위재정비 촉진지구	주거지형	성북구 장위동 일원	920,535.7	증) 206,711.0	1,127,246.7	-

※ 변경사유 : 장위 8, 9구역 재정비촉진지구 편입으로 인한 촉진지구 면적 변경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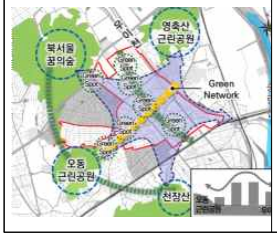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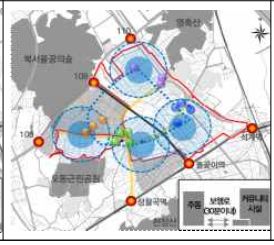
구 분	기준년도	목표연도	비고
기 정	2006년	2025년	-
변 경	2006년	2030년	-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

가. 계획테마 및 목표(변경)



나. 정비 기본방향(변경)

도시적 맥락을 연계한 쾌적한 도시 조성	지역커뮤니티 중심의 생활공간 조성	보행일상권 주거단지 조성	지역자원을 활용한 활기찬 보행공간 조성
			

다. 계획지표 설정(변경)

구분		현황	계획지표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인구·가구	인구(인)	70,000	39,890	증) 13,705	53,595	세대당 2.7인 적용
	건립호수(세대수)	13,811 (26,890)	14,774 (14,774)	증) 5,076	19,850 (19,850)	-
인구밀도(인/ha)		379	434	증) 42	476	-
공원·녹지	공원녹지율(%)	1.5	8.3	감) 0.1	8.2	-
	1인당 녹지면적(㎡)	0.3	1.9	감) 0.4	1.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3㎡/인 이상 「재정비촉진계획수립지침」 : 구역면적의 5% 또는 세대당 3㎡이상
도로율(%)		15.2	20.8	감) 2.6	18.2	-
학교	초등학교	2	2	-	2	지구 내: 2개교(광운초, 장위초) 지구인접: 4개교
	중학교	1	1	-	1	지구 내: 1개교(남대문중) 지구인접 2개교
사회복지시설		3	1	증) 1	2	-
공공청사		8	9	-	9	-
문화시설		-	-	증) 1	1	-

※ 변경사유 : 장위 8, 9구역 재정비촉진지구 편입으로 인한 촉진지구 면적 변경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변경)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총계		920,535.7	증) 206,711.0	1,127,246.7	100.0	-
주거	소계	577,712.8	증) 165,914.7	743,627.5	65.9	-
	공동주택	535,767.8	증) 165,914.7	701,682.5	62.2	-
	복합용지	41,945.0	-	41,945.0	3.7	-
정비기반시설 등	소계	327,946.6	증) 37,496.3	365,442.9	32.4	-
	도로	191,918.8	증) 13,503.3	205,422.1	18.2	-
	공원	59,301.4	증) 15,808.0	75,139.4	6.7	-
	녹지	16,776.7	-	16,776.7	1.5	-
	학교	33,242.0	-	33,242.0	3.0	-
	공공공지	4,747.3	증) 3,228.0	7,975.3	0.7	-
	공공청사	14,500.4	-	14,500.4	1.3	-
	주차장	2,590.0	-	2,590.0	0.2	-
	사회복지시설	1,000.0	증) 2,827.0	3,827.0	0.3	-
	문화시설	1,090.1	증) 2,100.0	3,190.1	0.3	-
	청소년수련시설	2,779.9	-	2,779.9	0.2	-
기타	소계	14,876.3	증) 3,336.0	18,212.3	1.7	-
	종교시설	9,625.5	증) 3,336.0	12,961.5	1.1	-
	근린생활시설	4,332.8	-	4,332.8	0.4	-
	우체국	542.0	-	542.0	0.1	-
	기타	376.0	-	376.0	0.1	14구역

※변경사유 : 장위 8, 9구역 재정비촉진지구 편입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나. 인구 및 주택수용계획(변경)

구분	기정	증·감	변경	비고
인구(인)	39,890	증) 13,705	53,595	
세대수(세대)	14,774	증) 5,076	19,850	

※변경인구(인) : 세대당 2.7인 적용
※변경사유 : 장위 8, 9구역 재정비촉진지구 편입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1) 구역별 주택공급계획(변경)

구분	구역별	합계				공공				분양			
		세대수 (비율%)	60㎡ 미만	60 ~85㎡	85㎡ 초과	소계	40㎡	40 ~50㎡	50 초과	소계	60㎡ 미만	60 ~85㎡	85㎡ 초과
계		19,850 (100%)	9,614 (48.4%)	9,134 (46.1%)	1,102 (5.5%)	4,105 (20.7%)	1,350	1,105	1,650	15,745 (79.3%)	5,769	8,874	1,102
기정	1구역	939	356	556	27	162	71	69	22	777	194	556	27
기정	2구역	513	242	268	3	92	40	37	15	421	150	268	3
기정	3구역	1,078	216	432	430	184	84	79	21	894	32	432	430
기정	4구역	2,840	1,309	1,438	93	484	194	200	90	2,356	825	1,438	93
기정	5구역	1,562	660	756	146	276	123	117	36	1,286	384	756	146
기정	6구역	1,637	758	818	61	285	129	126	30	1,352	473	818	61
기정	7구역	1,711	844	825	42	295	125	137	33	1,416	549	825	42
신설	8구역	2,846	1,777	999	70	784	144	-	640	2,062	1,052	940	70
신설	9구역	2,230	1,203	967	60	763	112	-	651	1,467	641	766	60
기정	10구역	2,004	988	958	58	341	139	137	65	1,663	647	958	58
기정	14구역	2,490	1,261	1,117	112	439	189	203	47	2,051	822	1,117	112

※ 전용85㎡ 초과 주택수 1,102세대 5.5%로 기준 20%미만 충족
※ 공공주택(4,105)은 세대 20.7%로 기준 17%이상 충족
※ 장위1구역 도시형생활주택 전용면적 40㎡이하 173세대(임대30세대) 미포함

다. 기반시설 설치계획(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변경)

1) 교육시설계획(변경없음)

2) 공공시설계획(변경)

구분	현황			계획			비고
	시설명	위치	면적(㎡)	시설명	위치	면적(㎡)	
기정	공공청사 (장위2동 주민센터)	장위동 69-54	798	공공청사 (장위2동 주민센터)	장위동 68-1335일대	1,007	장위11구역 해제에 따라 장위10구역 내 대체확보 • 장위2동주민센터 • 주민커뮤니티센터 - 생활체육관, 주민센터, 취미교실, 경로당, 유치원(어린이집) • 연면적:1,800.0㎡
	복지시설 (장위2동경로당)	장위동 68-1055	165				
기정	공공청사 (장위우체국)	장위동 69-4	427	장위우체국	장위동 110-26	542	• 4구역 내 대체확보
변경	복지시설 (장위3동 어린이집)	장위동 77-64	987	복지시설 (장위3동 어린이집)	장위동 77-64	987	• 장위8구역 편입에 따른 현황시설 존치
기정	청소년수련시설 (성북 청소년수련관)	장위동 135-2	2,696	청소년수련시설 (성북 청소년수련관)	장위동 135-2	2,779.9	장위1구역 • 성북청소년수련관 (지상4/지하2)
기정	-	-	-	문화시설	장위동 158-63 일대	1,090.1	장위1구역 • 1구역 문화시설 용지에 건축물 기부채납 예정 (3구역)
기정	공공청사 (장위3동 주민센터)	장위동 117-5	508	공공청사 (장위3동 주민센터)	장위동 98-1	2,050	장위4구역 • 장위3동주민센터 • 주민커뮤니티센터 (지상3/지하1) - 생활체육관, 주민센터, 취미교실, 도서실, 경로당, 유치원(어린이집) • 연면적: 2,500.0㎡ ※ 장위종합사회복지관 (연면적1,500㎡), 건강생활지원센터 (연면적 600㎡) 4구역 공공청사 대체 확보예정
	복지시설 (장위3동 경로당)	장위동 135-5	165				

구분	현황			계획			비고
	시설명	위치	면적(㎡)	시설명	위치	면적(㎡)	
기정	공공청사(장위소방치안센터)	장위동 34	419	공공청사(소방치안센터)	장위동 270-172	986.9	장위6구역 • 장위동 소방치안센터(지상3/지하1)
기정	-	-	-	공공청사(장위3치안센터)	장위동 270-388	754.8	장위6구역
기정	-	-	-	공공청사(주민커뮤니티센터)	장위동 158-15	1,297.2	장위5구역 • 주민커뮤니티센터 - 생활체육관, 취미교실, 도서실, 경로당, 유치원, 복지센터(실버센터) • 연면적: 1,500.0㎡
기정	-	-	-	사회복지시설	장위동 176-9	1,000	장위3구역 • 복지센터 • 연면적: 2,000.0㎡ ※ 시설용도 변경 검토중
기정	-	-	-	공공청사(치안센터)	장위동 155-1	299.5	• 장위1구역 치안센터
기정	공공청사(장위1주민센터)	장위동 225-100	662	-	-	-	-
	복지시설(장위1동어린이집)	장위동 218-27	307	-	-	-	
	복지시설(장수경로당)	장위동 218-27	307	-	-	-	
	복지시설(장위1동경로당)	장위동 산3-101	165	공공청사 ①	장위동 233-631일대	7,370	• 장위14구역 공공청사 내 경로당(연면적 200㎡)
	공공청사(장위1치안센터)	장위동 233-250	65.36	공공청사 ②	장위동 233-436일대	327	• 장위14구역 치안센터
	-	-	-	공공청사	장위동 6청8-942	408	장위10구역 • 해제구역주민들을 위한 공공사 신설
신설	-	-	-	사회복지시설	장위동 137-2 일대	1,840	장위8구역 • 복지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신설(연면적 4,350㎡)
신설	-	-	-	문화시설	장위동 238-104 일대	2,100	장위9구역 • 주민들의 생활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문화시설 신설(연면적 6,600㎡)

주) 장위3동 주민센터 및 종합문화복지센터의 용도는 추가 검토 및 협의 필요
주) 향후 사업추진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 연면적은 향후 토지가액 및 건축계획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장위 8, 9구역 및 장위3동 어린이집 재정비촉진지구 편입으로 인한 공공시설계획 변경

라.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변경)

1) 공원 · 녹지계획(변경)

구분		시설번호	명칭	면적(㎡)			명칭의 유래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76,078.1	증) 15,838.0	91,916.1	-
주제공원	소 계			59,301.4	증) 15,838.0	75,139.4	-
	문화공원		1개소	4,081.3	-	4,081.3	-
		415	상길례문화공원	4,081.3	-	4,081.3	덕온공주의 하가의식인 '길례' 에서 공원명칭 부여
생활권공원	소공원		1개소	-	증) 6,690.0	6,690.0	-
		A	소공원	-	증) 6,690.0	6,690.0	문화시설과 연계한 소공원
	근린공원		3개소	30,248.0	증) 9,148.0	39,396.0	-
		411	아랫말공원	22,625.0	-	22,625.0	옛 장위동을 이루는 마을이름
		140	오동근린공원	7,623.0	-	7,623.0	대상지의 남북축을 연결하는 공원
		A	근린공원	-	증) 9,148.0	9,148.0	서울시문화재 김진흥가와 연계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4개소	24,972.1	-	24,972.1	-
		417	석촌공원	8,321.0	-	8,321.0	석촌 윤용구 선생을 주제로 한 공원
		418	간대공원	4,990.1	-	4,990.1	옛 장위동을 이루는 마을이름
		419	장석공원	5,649.0	-	5,649.0	장석시장의 지역적 맥락에서 유래
		A	장위공원	6,012.0	-	6,012.0	장위초교 연계
녹지	소 계			16,776.7	-	16,776.7	-
	연결녹지		8개소	10,091.9	-	10,091.9	-
		22	장위산내길 (중앙연결녹지)	1,441.0	-	1,441.0	장위동 + 산 + 내 오동근린공원↔우이천 통경축확보
		25 ~27	푸른에움길 (보행연결녹지)	4,863.5	-	4,863.5	푸른 녹지로 둘러싸인 길
		31 ~36	푸른에움길 (보행연결녹지)	2,733.4	-	2,733.4	보행중심의 환경생태녹지로 조성
		37	보행연결녹지	1,054.0	-	1,054.0	우이천 및 석계역 보행연결
	경관녹지		5개소	6,684.8	-	6,684.8	-
		a	경관녹지	2,232.4	-	2,232.4	우이천변(한천로) 경관향상
		b	경관녹지	378.9	-	378.9	우이천변(한천로) 경관향상
		c	경관녹지	1,208.0	-	1,208.0	우이천변(한천로) 경관향상
		d	경관녹지	2,651.5	-	2,651.5	우이천변(한천로) 경관향상
		e	경관녹지	214.0	-	214.0	우이천변(한천로) 경관향상

※ 변경사유 : 장위 8, 9구역 재정비촉진지구 편입으로 인한 변경

2) 환경보전계획(변경)

검토항목		검토 결과	환경영향	보전대책	비고
자연환경	토양표장 우수유출	X	-	• 현재보다 공원녹지 증가로 환경측면 유리	-
	지형변동 절성토균형	○	지하터파기에 따른 지형변화	• 발생토량은 조경토, 되메우기 등 실시 • 외부로의 토사유출입 자제	-
	녹지변동 녹지체계	X	-	• 현재보다 공원녹지 증가로 환경측면 유리	-
	습지보전	X	보전대상 습지 없음	-	-
	비 오 톱	X	-	• 공원과 우이천을 연계하여 단지 생물서식공간 확보	-
생활환경	일 조	○	일조침해 예상	• 공간에 도로, 조경녹지, 휴계공간 등 계획	-
	바 람	○	영향 미약	• 풍향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및 충분한 오픈스페이스 확보	-
	경 관	○	고층건축물 신축에 따른 경관변화	•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건축설계	-
	에 너 지	○	건물 신축으로 에너지사용 변화 예상	• 지역특성상 도시가스를 사용할 계획으로 지상의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에너지절약형 단지를 조성할 계획	-
	환경오염	○	오수량 및 생활폐기물 증가	• 중량물재생센터 및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처리	-
도시재정비계획 시행중 예상되는 환경영향		○	건축폐기물의 발생, 비산먼지, 공사장 소음 문제 및 강우시 토사유출 예상	• 건축폐기물의 적법처리 및 비산먼지와 토사유출, 소음 저감방안 수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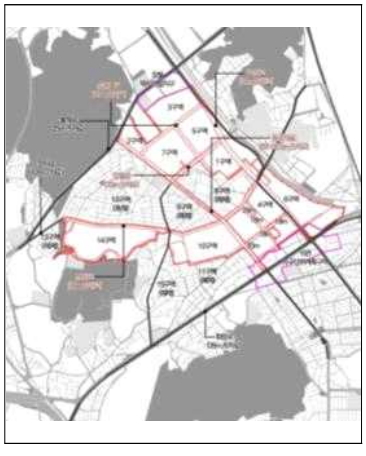
마. 교통계획

구분	도로명	현황	기정	변경	비 고
간선도로	월계로	• 폭원 : 25m • 차로수 : 6차로	• 폭원 : 25m • 차로수 : 5~6차로	• 폭원 : 25m • 차로수 : 5~6차로	• 현황 유지
	한천로	• 폭원 : 25~31m • 차로수 : 6차로	• 폭원 : 31m • 차로수 : 6차로 • 가감속차로, 좌회전차로 설치	• 폭원 : 31m • 차로수 : 6차로 • 가감속차로, 좌회전차로 설치	• 한천로 단절 구간 8구역 개설, 선형 변경
	화랑로	• 폭원 : 35m • 차로수 : 6차로	• 폭원 : 35m • 차로수 : 6차로	• 폭원 : 35m • 차로수 : 6차로	• 현황 유지
보조간선도로	돌곶이로	• 폭원 : 20m • 차로수 : 4차로	• 폭원 : 20~26.5m • 차로수 : 4~5차로	• 폭원 : 25~26.5m • 차로수 : 4~5차로	• 8구역 구간 5m 확폭
집산도로	장위로	• 폭원 : 12m • 차로수 : 2차로	• 폭원 : 12~20m • 차로수 : 2~3차로	• 폭원 : 12~20m • 차로수 : 2~3차로	• 해제구역 현황 유지 • 15구역 단절구간 14구역 개설
	장월로	• 폭원 : 12m • 차로수 : 2차로	• 폭원 : 12~20m • 차로수 : 2~3차로	• 폭원 : 12~20m • 차로수 : 2~3차로	• 9구역 구간 8m확폭 • 해제구역 현황유지
	순환도로	-	• 폭원 : 10~20m • 차로수 : 2~3차로	• 폭원 : 10~20m • 차로수 : 2~3차로	• 8구역 단절구간 20m 신설 • 해제구역 폐지 • 폭원 축소

〈현황〉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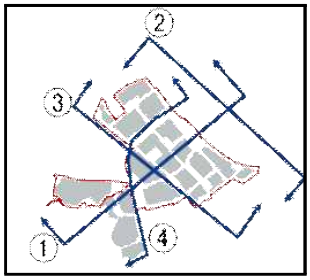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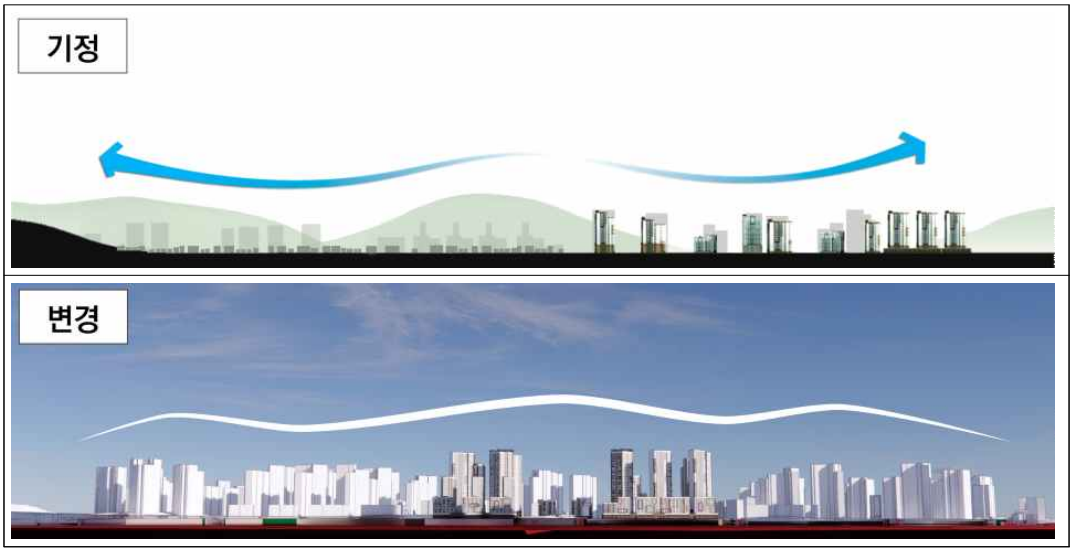


바. 경관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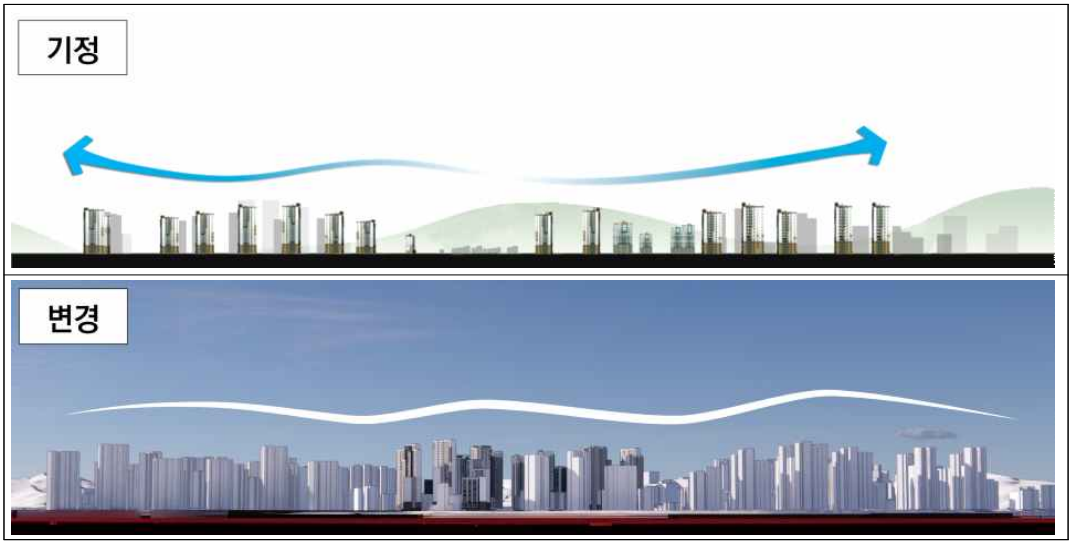
○ 오동근린공원 ~ 우이천 연결 통경 확보를 위한 주동배치
○ 녹지축 및 단지부의 개방감 확보
○ 돌곶이로 지구 진입부의 상징적 탑상형 계획
○ 우이천변 시각통로 및 한천로변의 경관을 고려하여 탑상형 계획
○ 오동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및 주요도로 결절부에는 녹지 유입 및 시각적 개방감을 증진하기 위한 탑상형 계획
○ 순환도로변 연도형 배치로 연속적인 경관 전개
○ 기존 주거형태와의 조화를 고려한 계획
※변경사유 : 장위 8, 9구역 재정비촉진지구 편입으로 인한 경관계획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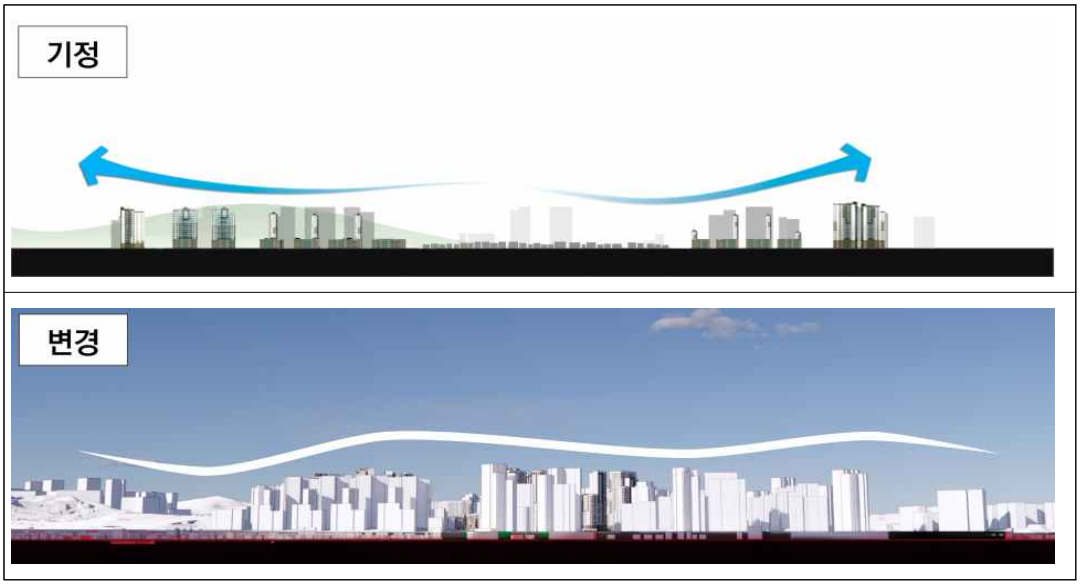
1) 화랑로에서 지구전체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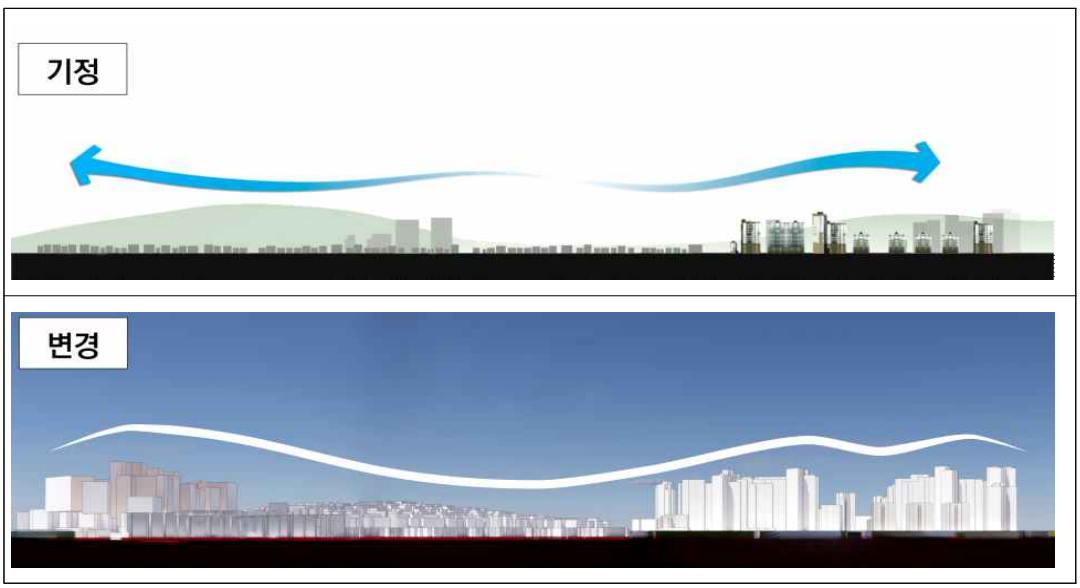
2) 우이천에서 지구전체 VIEW



3) 돌곶이로에서 지구전체 VIEW



4) 장월로에서 지구전체 VIEW



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구분	구역 번호	생활권 유형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	층수	건폐율 (%)	추진 단계	사업시행방식	정비유형	비고
기정	장위1	-	장위동	144-24	8.0	-	-	-	1	주거정비형재개발	전면개발	
기정	장위2	-	장위동	290-9	2.5	-	-	-	2	주거정비형재개발	전면개발	
기정	장위3	-	장위동	305	6.6	-	-	-	6	주거정비형재개발	전면개발	
기정	장위4	-	장위동	62-1	15.4	-	-	-	3	주거정비형재개발	전면개발	
기정	장위5	-	장위동	173-114	9.0	-	-	-	3	주거정비형재개발	전면개발	
기정	장위6	-	장위동	25-55	10.5	-	-	-	5	주거정비형재개발	전면개발	
기정	장위7	-	장위동	189-3	8.8	-	-	-	2	주거정비형재개발	전면개발	
신설	장위8	-	장위동	85	12.2	-	-	-	7	주거정비형재개발	전면개발	
신설	장위9	-	장위동	238-83	8.4	-	-	-	7	주거정비형재개발	전면개발	
기정	장위10	-	장위동	68-37	9.4	-	-	-	3	주거정비형재개발	전면개발	
기정	장위14	-	장위동	233-552	14.5	-	-	-	4	주거정비형재개발	전면개발	

※ 장위8, 9구역 : 재정비촉진지구 편입으로 인한 추진단계7단계 신설

아.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사업방식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총 계				920,535.7	증) 206,711.0	1,127,246.7	-	
촉진 구역	소 계 (11개 구역)			846,105.8	증) 205,882.0	1,051,987.8	-	
	장위1구역	장위동 144-24 일원		80,316.6	-	80,316.6	주거정비형재개발	
	장위2구역	장위동 290-9 일원		25,344.0	-	25,344.0	주거정비형재개발	
	장위3구역	장위동 305 일원		66,011.0	-	66,011.0	주거정비형재개발	
	장위4구역	장위동 62-1 일원		153,501.0	-	153,501.0	주거정비형재개발	
	장위5구역	장위동 173-114 일원		88,765.7	-	88,765.7	주거정비형재개발	
	장위6구역	장위동 25-55 일원		105,136.9	-	105,136.9	주거정비형재개발	
	장위7구역	장위동 189-3 일원		87,635.6	-	87,635.6	주거정비형재개발	
	장위8구역	장위동 85 일원		-	증) 121,634.0	121,634.0	주거정비형재개발	신설
	장위9구역	장위동 238-83 일원		-	증) 84,248.0	84,248.0	주거정비형재개발	신설
	장위10구역	장위동 68-37 일원		94,037.0	-	94,037.0	주거정비형재개발	
	장위14구역	장위동 233-552 일원		145,358.0	-	145,358.0	주거정비형재개발	
존치 지역	존치 관리구역	소 계		74,429.9	증) 829.0	75,258.9	-	
		존치구역	존치시설	74,429.9	증) 829.0	75,258.9	-	

자.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변경)

1) 재정비촉진지구 용도지역 변경계획(변경)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계		920,535.7	증) 206,711.0	1,127,246.7	100.0	-
일반주거지역	소계	915,658.2	증) 206,711.0	1,122,369.2	99.6	-
	제1종일반주거지역	47,775.0	증) 12,776.0	60,551.0	5.4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67,528.2	증) 15,807.3	83,335.5	7.4	-
	제2종일반주거지역	759,047.8	증) 178,127.7	937,175.5	83.1	-
	제3종일반주거지역	41,307.2	-	41,307.2	3.7	-
자연녹지지역		4,877.5	-	4,877.5	0.4	-

※ 장위 8, 9구역 및 존치지역 추가 편입으로 인한 용도지역 면적 변경

2) 재정비촉진구역별 용도지역 변경계획(변경)

가) 장위1구역 ~ 사) 장위7구역, 차) 장위10구역 카), 장위14구역(변경없음)

아) 장위8구역(재개발사업)

구 분		면 적(㎡)			비 율(%)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121,634.0	-	121,634.0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9,049.0	감) 6,273.0	12,776.0	10.5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95,905.0	감) 95,905.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6,680.0	증) 102,178.0	108,858.0	89.5

자) 장위9구역(재개발사업)

구 분		면 적(㎡)			비 율(%)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84,248.0	-	84,248.0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84,248.0	감) 72,355.7	11,892.3	14.1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72,355.7	72,355.7	85.9

차.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

1) 장위1구역 ~ 7) 장위7구역, 10) 장위10구역, 14) 장위14구역(변경없음)

8) 장위 8구역, 9) 장위 9구역

구분	구역 구분	획지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계획		비고
					기준 (%)	상한 (%)	법적상한 초과(%)	평균	최고	
장위 8구역	신설	8-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이하	210%	240%	300%이하	24.8층 이하	- (150m이하)	-
	신설	8-2								
	신설	8-3	종교용지	관련 법령에 의함						-
	신설	8-4	김진흥가							
장위 9구역	신설	9-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이하	210%	238%	300%	30층이하	- (150m이하)	-
	신설	9-2	문화시설	관련 법령에 의함						-

카.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변경)

구 분		면 적(㎡)							
		소계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
		기정	변경						
촉진구역 면적(㎡)		846,105.8	1,051,987.8	80,316.6	25,344.0	66,011.0	153,501.0	88,765.7	105,136.9
분 담 률 (%)		14.87%							
기반시설면적(㎡)	계획기반시설①	258,781.5 (30.58%)	295,448.8 (28.08%)	39,663.2 (49.38%)	7,481.4 (29.52%)	13,330.0 (20.19%)	44,315.0 (28.86%)	31,071.7 (35.0%)	43,716.3 (41.59%)
	계획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②	79,407.3	86,580.8	23,782.0	627.0	607.0	5,237.0	12,382.6	19,018.0
	기존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③	70,093.2	84,712.75	7,627.0	787.0	5,522.0	7,951.0	3,981.3	13,556.0
	공공시설 설치 대지환산④	25,228.5	31,801.8	-	-	1,399.0	2,185.6	999.0	-
	대지지분⑤	494.5	494.5	-	-	-	-	-	-
	순부담면적(㎡) ①-②-③+④+⑤	135,004.0	156,451.6	8,254.2	6,067.4	8,600.0	33,312.6	15,706.8	11,142.3

구 분		면 적(㎡)						
		7구역	8구역		9구역		10구역	14구역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촉진구역 면적(㎡)		87,635.6	-	121,634.0	-	84,248.0	94,037.0	145,358.0
분 담 률 (%)		14.87%						
기반시설면적(㎡)	계획기반시설①	22,861.9 (26.09%)	-	24,775.0 (20.36%)	-	11,892.3 (14.12%)	17,823.0 (18.93%)	38,519.0 (26.50%)
	계획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②	4,613.7	-	4,188.0	-	2,985.5	2,174.0	10,966.0
	기존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③	4,227.95	-	11,079.0	-	3,540.5	5,403.0	21,038.0
	공공시설 설치 대지환산④	-	-	2,675.0	-	3,898.3	3,932.9	14,746.0 (공공청사 건축물 및 기부채납 공공주택) 1,966.0 (구역외 한천로 및 장월로 가각부 개설)
	대지지분⑤	-	-	-	-	-	-	494.5
	순부담면적(㎡) ①-②-③+④+⑤	14,020.3	-	12,183.0	-	9,264.6	14,178.9	23,721.5

주) 장위14구역 : 대토되는 공공청사②(327㎡)는 계획기반시설에서 제외함
※ 14구역 한천로 및 장월로 가각부 개설 환산면적은 장위8구역의 촉진지구 편입으로 인하여 8구역이 부담하며, 14구역 환산면적 추후 정리 필요
※ 존치관리구역 기반시설 포함 시 전체 지구 기반시설률 32.4%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70호(2023.3.2.) 장위4구역 대지환산면적 합계 오기정정

타. 공공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변경)

구 분	구 역 명	전용면적 40㎡ 이하	전용면적 40~50㎡ 이하	전용면적 50~60㎡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	계
기정	장위 1구역	71(30)	69	22	-	162(30)
기정	장위 2구역	40	37	15	-	92
기정	장위 3구역	84	79	21	-	184
기정	장위 4구역	194	200	90	-	484
기정	장위 5구역	123	117	36	-	276
기정	장위 6구역	129	126	30	-	285
기정	장위 7구역	125	137	33	-	295
신설	장위 8구역	144	-	581	59	784
신설	장위 9구역	112	-	450	201	763

구 분	구 역 명	전용면적 40㎡ 이하	전용면적 40~50㎡ 이하	전용면적 50~60㎡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	계
기정	장위10구역	139	137	65	-	341
기정	장위14구역	189	203	47	-	439
계(세대)		1,350(30)	1,105	1,390	260	4,105(30)
비율(%)		32.9	26.9	33.9	6.3	100.0

파.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변경)

구 분		사업기간	해 당 구 역
기정	1단계	2009년	• 장위 1구역
	2단계	2011년	• 장위 2, 7구역
	3단계	2012년	• 장위 4, 5, 10구역
	4단계	2013년	• 장위 14구역
	5단계	2014년	• 장위 6구역
	6단계	2015년	• 장위 3구역
변경	1단계	2009년	• 장위 1구역
	2단계	2011년	• 장위 2, 7구역
	3단계	2012년	• 장위 4, 5, 10구역
	4단계	2013년	• 장위 14구역
	5단계	2014년	• 장위 6구역
	6단계	2015년	• 장위 3구역
	7단계	2023년	• 장위 8, 9구역

하. 기타 계획(에너지순환계획, 방재계획, 정보화계획, 특성화계획)(변경없음)

거. 광고물 관리계획(변경없음)

너.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더.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변경)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촉진지구		920,535.7	증) 206,711.0	1,127,246.7	100.0	
존치관리구역	소계	74,429.9	증) 829.0	75,258.9	6.7	
	②	15,304.0	-	15,304.0	1.4	장위초등학교
	③	2,408.0	-	2,408.0	0.2	장위동교회
	⑤	-	증) 4,215.0	4,215.0	0.4	공공공지 및 사회복지시설
	⑥	2,453.0	-	2,453.0	0.2	성북청소년수련관
	⑦	3,183.8	-	3,183.8	0.3	장석시장
	⑫	51,081.1	감) 3,386.0	47,695.1	4.2	도로

※ 장위3동 어린이집 및 공공공지(장위동 77-79번지 일대, 장위3동 마을공원)의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편입 및 존치관리구역 내 도로(장위로 일대) 3,386.0㎡ 장위8구역 편입으로 인한 존치지역 변경

러.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변경)

1) 장위1구역 ~ 7) 장위7구역, 10) 장위10구역, 14) 장위14구역(변경없음)

8) 장위8구역, 9) 장위9구역 : Ⅰ-3.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 참고

머.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변경) 조서

명 칭	유 형	위 치	면적(㎡)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성북구 장위동일원	920,535.7	증) 206,711.0	1,127,246.7	-

※ 변경사유 : 장위 8, 9구역 재정비촉진지구 편입으로 인한 면적 변경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비 율(%)
		기 정	증·감	변 경	
계		920,535.7	증) 206,711.0	1,127,246.7	100.0
일반주거지역	소계	915,658.2	증) 206,711.0	1,122,369.2	99.6
	제1종일반주거지역	47,775.0	증) 12,776.0	60,551.0	5.4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67,528.2	증) 15,807.3	83,335.5	7.4
	제2종일반주거지역	759,047.8	증) 178,127.7	937,175.5	83.1
	제3종일반주거지역	41,307.2	-	41,307.2	3.7
자연녹지지역		4,877.5	-	4,877.5	0.4

※장위8,9구역 공공재개발 통한 주택공급활성화로 인한 용도지역 상향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변경)

(1) 도로(변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3	35~38	간선 도로	9,500 (623)	종암동	장지리	일반 도로	장위동	건고시267 (71.06.10)	화랑로
기정	대로	3	39	25~30	간선 도로	5,110 (1,120)	미아동 42-13	하계동 184-1	일반 도로			월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40	25~31	간선 도로	11,530 (1,310)	군자동 (광로5호)	수유동	일반 도로	장위동	총고시722 (36.12.26)	한천로
기정	중로	1	A	20~26.5	보조 간선	1,348	장위동 64-89	장위동 310-22	일반 도로		총고시722 (36.12.26)	돌곶이로
변경	중로	1	A	20~26.5	보조 간선	1,348 (450)	장위동 64-89	장위동 310-22	일반도로		총고시722 (36.12.26)	돌곶이로
기정	중로	1	510	20~25	집산 도로	489	장위동 154-9	장위동 237-90	일반 도로			장월로
변경	중로	1	510	20~25	집산 도로	489	장위동 154-9	장위동 237-90	일반 도로			장월로
기정	중로	1	512	20	집산 도로	55	장위동 158-43	장위동 157-22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기정	중로	1	513	20	집산 도로	356	장위동 74-140	장위동 119-1	일반 도로		서고시23 (71.03.02)	장위로
변경	중로	1	513	20	집산 도로	356	장위동 74-140	장위동 119-1	일반 도로		서고시23 (74.03.02)	장위로
기정	중로	1	514	20	집산 도로	396	장위동 238-238	장위동 74-54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장위로
기정	중로	1	515	20	집산 도로	784	장위동 231-170	장위동 233-32	일반 도로		서고시 111 (08.04.03)	장위로 선형변경
기정	중로	1	516	20~23	집산 도로	93	장위동 135-4	장위동 122-1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장위로
기정	중로	1	517	20	집산 도로	570	장위동 165-3	장위동 291	일반 도로		건고시123 (73.04.04)	순환도로
기정	중로	1	521	18~20	집산 도로	366	장위동 69-48	장위동 36-9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순환도로
기정	중로	1	522	20	집산 도로	289	장위동 178-1	장위동 201-5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기정	중로	1	523	14~19	집산 도로	145	장위동 143-38	장위동 270-463	일반 도로		서고시 111 (08.04.03)	순환도로
변경	중로	1	523	20	집산 도로	441	장위동 143-38	장위동 89-74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순환도로
기정	중로	1	524	18~23	집산 도로	232	장위동 93-4	장위동 62-1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순환도로
기정	중로	2	510	15	집산 도로	251	장위동 293-9	장위동 295-25	일반 도로			샘터길
기정	중로	2	511	15	집산 도로	371	장위동 316-9	장위동 316-9	일반 도로		건고시123 (73.04.04)	
기정	중로	2	512	15	집산 도로	167	장위동 60-2	장위동 55-28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A	13	집산도로	140	장위동 68-77	장위동 69-49	일반도로		서고시111 (08.04.03)	순환도로
기정	중로	3	520	12~15	국지도로	269	장위동 43-3	월계동 492-11	일반도로		서고시3 (69.01.18)	
기정	중로	3	521	12	국지도로	364	장위동 63-75	장위동 43-6	일반도로		서고시111 (08.04.03)	
기정	중로	3	524	12	집산도로	26	장위동 55-25	장위동 55-21	일반도로		서고시111 (08.04.03)	석관 지구단위 계획구역
기정	중로	3	526	13	집산도로	197	장위동 300	장위동 317-2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527	12	국지도로	43	장위동 110-28	장위동 110-21	일반도로		서고시231 (11.08.11)	
기정	중로	3	-	12		378	장위동 237-268	장위동 238-510	일반도로			장월로 (지구외)
변경	중로	2	-	20	집산도로	378	장위동 237-268	장위동 238-510	일반도로			장월로 (9구역)
기정	중로	3	-	12~15		651	장위동 238-534	상월곡동 35-7	일반도로			장월로 (10구역)
기정	소로	1	S1	10	국지도로	103	장위동 8-2	장위동 8-3	일반도로		서고시212 (02.06.12)	석관 지구단위계획 구역
기정	소로	1	520	10	국지도로	85	장위동 231-280	장위동 산 3-110	일반도로	장위동	서고시 111 (08.04.03)	
기정	소로	1	524	10	국지도로	80	장위동 270-346	장위동 120-14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S6	10~11		227	장위동 50-17	장위동 63-61	일반도로		서고시212 (02.06.12)	석관 지구단위계획 구역
기정	소로	1	A	10		30	장위동 270-164	장위동 127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B	10	국지도로	270	장위동 68-63	장위동 68-1110	일반도로		서고시240 (19.07.25)	
기정	소로	1	①	10 ~15	국지도로	673	장위동 231-39	장위동 233-636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②	10	국지도로	340	장위동 233-20	장위동 233-156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A	10	국지도로	10	장위동 63-58	장위동 63-71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65	장위동 205-1	장위동 207-15	일반도로		서고시406 (14.11.27)	
기정	소로	2	A	8	국지도로	50	장위동 272-122	장위동 272-122	일반도로		서고시240 (19.07.25)	
기정	소로	2	B	8	국지도로	8	장위동 156	장위동 157-9	일반도로		서고시99 (20.03.12)	빗물펌프장 (쓰레기 적환장) 진출입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C	8	국지도로	52	장위동 75-462	장위동 279	일반도로			김진흥가 진입로
폐지	소로	2	136	8		443	장위동 270-58	장위동 91-1	일반도로		서고시3 (69.01.18)	
폐지	소로	2	161	6~8		150	장위동 77-50	장위동 89-2	일반도로		서고시61 (94.08.16)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38	장위동 205-17	장위동 270-214	일반도로		서고시406 (14.11.27)	
기정	소로	3	239	6		25	장위동 63-59	장위동 63-60	일반도로		서고시212 (02.06.12)	석관 지구단위계획구역
기정	소로	3	501	8	국지도로	153	장위동 270-463	장위동 270-465	일반도로		서고시111 (08.04.03)	
기정	소로	3	524	6~8	국지도로	142	장위동 37-31	장위동 56	일반도로		서고시231 (11.08.11)	
기정	소로	3	A	4	국지도로	38	장위동 272-122	장위동 272-122	일반도로		서고시240 (19.07.25)	
기정	소로	3	B	6		133	장위동 136-53	장위동 134-36	일반도로		서고시88 (19.03.07)	
변경	소로	3	B	6		185	장위동 136-53	장위동 77-66	일반도로		서고시88 (19.03.07)	
기정	소로	3	234	6		220	장위동 274	장위동 65-3	일반도로		서고시3 (69.01.18)	
폐지	소로	3	108	6		36	장위동 135-5	장위동 135-3	일반도로		서고시164 (92.05.26)	
폐지	소로	3	222	6		110	장위동 236	장위동 75-1	일반도로		서고시23 (74.03.02)	
폐지	소로	3	224	6		286	장위동 143-5	장위동 202-4	일반도로		서고시111 (69.01.18)	
폐지	소로	3	225	6		428	장위동 81-32	장위동 75-431	일반도로			
폐지	소로	3	227	6		280	장위동 272-45	장위동 118-3	일반도로		서고시231 (69.01.18)	
폐지	소로	3	-	6		114	장위동 270-58	장위동 270-58				
폐지	소로	3	-	6		163	장위동 82-4	장위동 89-80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1-A	중로 1-A	폭원 증가 (20m→25m)	• 장위8구역 돌곶이로 구간의 확폭을 통하여 타 구역과의 도로의 연속성 확립
중로 1-510	중로 1-510	선형 변경	• 장위8구역 버스베이 확보로 인한 시설 선형 변경
중로 1-513	중로 1-513	선형 변경	• 장위8구역 도로계획으로 인한 선형 변경
중로 1-523	중로 1-523	폭원 증가 (14~19m→20m) 연장 증가 (145m→441m)	• 장위8구역 내 순환도로 20m를 계획하여 단절된 순환도로 연결을 통해 교통 서비스 수준 증진
중로 3-	중로 2-	폭원 및 선형변경 (B=12 → 20m)	• 주변 지역 연장계획과의 정합성 유지 • 대상지 부출입구 및 소공원 이용자의 보행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폭원, 선형 변경
-	소로 2-C	도로 신설 (폭원 8m, 연장 52m)	• 장위8구역 내 문화재로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 신설
소로 3-B	소로 3-B	연장 증가 (133m→185m)	• 순환도로와의 원활한 도로 연계를 위하여 도로 연장 증가
소로 2-136	-	시설 폐지	• 장위8구역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인한 시설 폐지
소로 2-161	-	시설 폐지	• 장위8구역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인한 시설 폐지
소로 3-108	-	시설 폐지	• 장위8구역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인한 시설 폐지
소로 3-222	-	시설 폐지	• 장위9구역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인한 시설 폐지
소로 3-224	-	시설 폐지	• 장위8구역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인한 시설 폐지
소로 3-225	-	시설 폐지	• 장위8구역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인한 시설 폐지
소로 3-227	-	시설 폐지	• 장위8구역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인한 시설 폐지
소로 3-	-	시설 폐지	• 장위8구역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인한 시설 폐지
소로 3-	-	시설 폐지	• 장위8구역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인한 시설 폐지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기정	A	주차장	장위동 238-229일대	6,012.0	-	6,012.0	서고시240 (19.07.25)	어린이공원 A중복결정 (하부조성)
기정	①	주차장	장위동 231-47 일대	2,590.0	-	2,590.0	서고시302 (22.07.14)	-
기정	②	주차장	장위동 233-631 일대	7,370.0	-	7,370.0	서고시302 (22.07.14)	공공청사 중복결정 (하부조성)
폐지	-	노외 주차장	장위동 76-55	684.0	감) 684.0	-	성북구고시13 (99.02.08)	-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노외주차장	• 폐지 (감 684.0㎡)	• 장위8구역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인한 시설 폐지

나) 공간시설(변경)

(1) 공원(변경)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기정	140	오동 근린공원	근린 공원	미아,장위,번동, 상하월곡동	1,453,858.0 (7,623.0)	-	1,453,858.0 (7,623.0)	건고시2181 (66.02.05)	-
기정	411	아랫말 공원	근린 공원	월계동 479-4일대	22,625.0	-	22,625.0	서고시111 (08.04.03)	-
신설	A	근린공원	근린 공원	장위동 76-3일대	-	증) 9,148.0	9,148.0	-	-
신설	A	소공원	소공원	장위동 238-98일대	-	증) 6,690.0	6,690.0	-	-
기정	415	상길례 공원	문화 공원	장위동 289-29일대	4,081.3	-	4,081.3	서고시111 (08.04.03)	-
기정	417	석촌 공원	어린이 공원	장위동 180-1일대	8,321.0	-	8,321.0	-	-
기정	418	간대 공원	어린이 공원	장위동 207-48일대	4,990.1	-	4,990.1	서고시111 (08.04.03)	-
기정	419	장석 공원	어린이 공원	장위동 110-53일대	5,649.0	-	5,649.0	서고시111 (08.04.03)	-
기정	A	-	어린이 공원	장위동 238-229일대	6,012.0	-	6,012.0	서고시240 (19.07.25)	주차장A 중복 결정

※ 면적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 면적을 의미함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A	근린공원	• 공원 신설 (증 9,148.0㎡)	• 서울시 문화재 김진흥가 주변으로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의 역사성 향상 및 인근 주민들의 휴식 도모
A	소공원	• 공원 신설 (증 6,690.0㎡)	• 문화시설과 연계한 소공원을 조성하여 이용 편의 향상 및 인근 주민들의 휴식 도모

(2) 녹지(변경없음)

(3) 공공공지(변경)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기정	70	공공공지	공공공지	장위동 77-79	3,392.9 (103.9)	-	3,392.9 (103.9)	서고시111 (08.04.03)	-
기정	72	공공공지	공공공지	장위동 319-1	572.4	-	572.4	서고시111 (08.04.03)	-
기정	74	공공공지	공공공지	장위동 213-6일대	1,339.0	-	1,339.0	서고시111 (08.04.03)	-
기정	80	공공공지	공공공지	장위동 69-18일대	750.0	-	750.0	서고시111 (08.04.03)	-
기정	82	공공공지	공공공지	장위동 63-36일대	282.0	-	282.0	서고시111 (08.04.03)	-
기정	84	공공공지	공공공지	장위동 63-75일대	48.0	-	48.0	서고시111 (08.04.03)	-
기정	86	공공공지	공공공지	장위동 62-72일대	440.0	-	440.0	서고시231 (11.08.11)	-
기정	①	공공공지	공공공지	장위동 233-596일대	340.0	-	340.0	-	-
기정	②	공공공지	공공공지	장위동 233-542일대	471.0	-	471.0	-	-
기정	③	공공공지	공공공지	장위동 233-678일대	401.0	-	401.0	-	-
폐지	-	공공공지	공공공지	장위동 238-414일대	172.0	감) 172.0	-	성북구고시38 (74.03.02)	-

주) 면적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 장위1구역에 포함된 면적을 의미함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공공지	• 폐지 (감 172.0㎡)	•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공동주택부지로 활용

다)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1) 공공청사(변경없음)

(2) 학교(변경없음)

(3) 사회복지시설(변경)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기정	21	장위 실버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장위동 176-9	1,000.0	-	1,000.0	서고시111 (08.04.03)	-
신설	-	사회복지시설	사회 복지시설	장위동 136-66일대	-	증)1,840.0	1,840.0	-	-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사회 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신설 (증 1,840㎡)	• 복지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신설

(4) 청소년수련시설(변경없음)

(5) 문화시설(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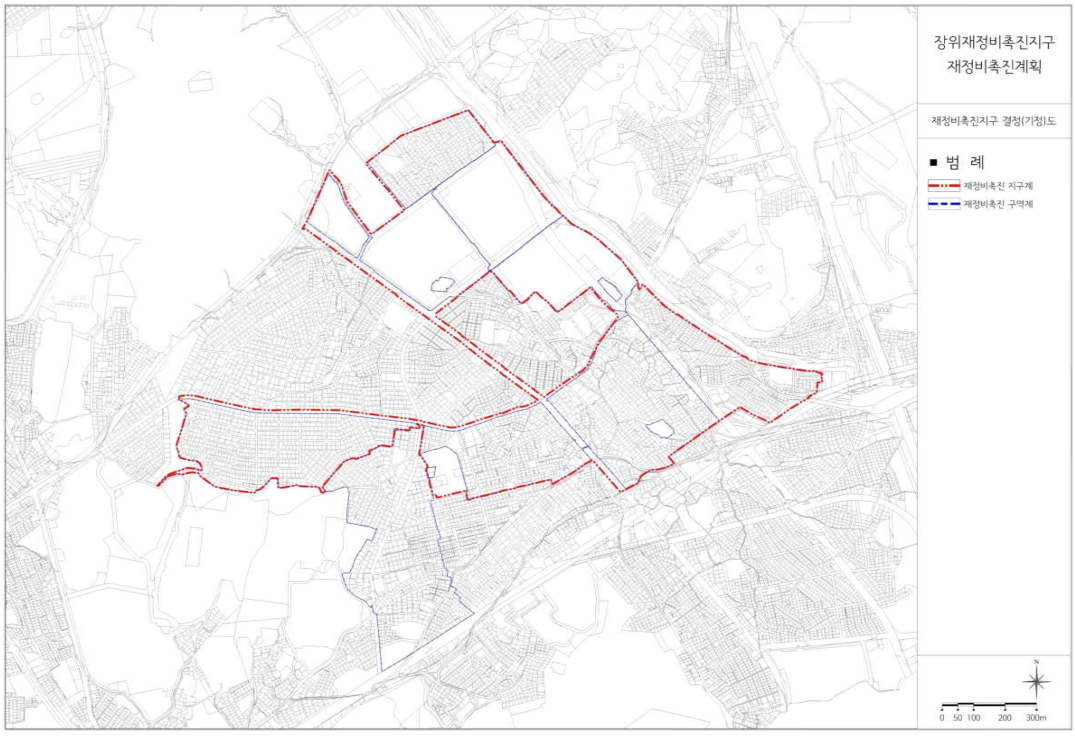
■ 문화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신설	-	문화 시설	문화 시설	장위동 238-104일대	-	증) 2,100.0	2,100.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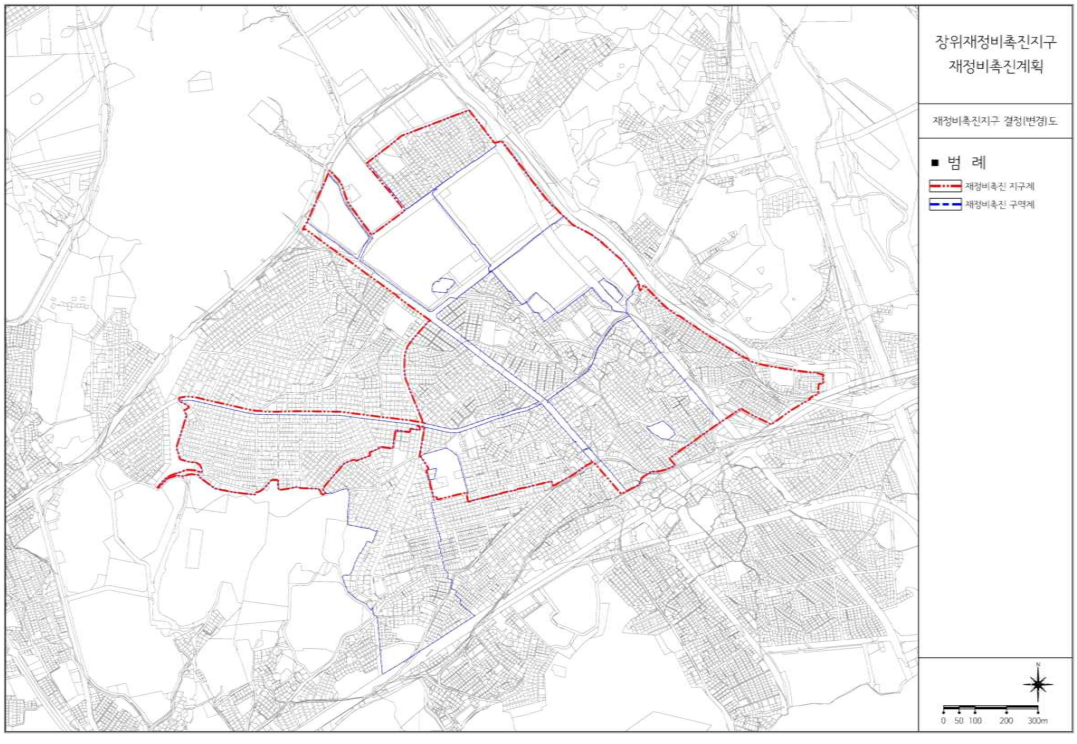
■ 문화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문화시설	• 문화시설 신설 증) 2,100.0㎡	• 지역주민의 문화생활을 위한 도서관 및 공연장 등 다목적 통합 문화공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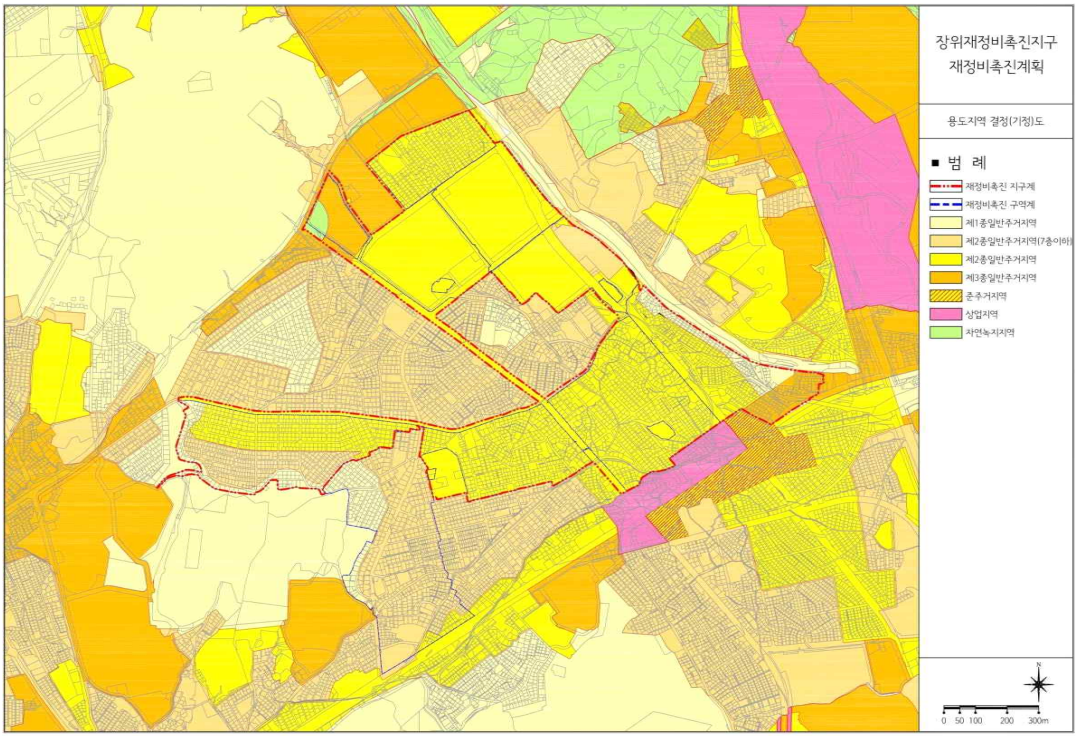
[장위재정비촉진지구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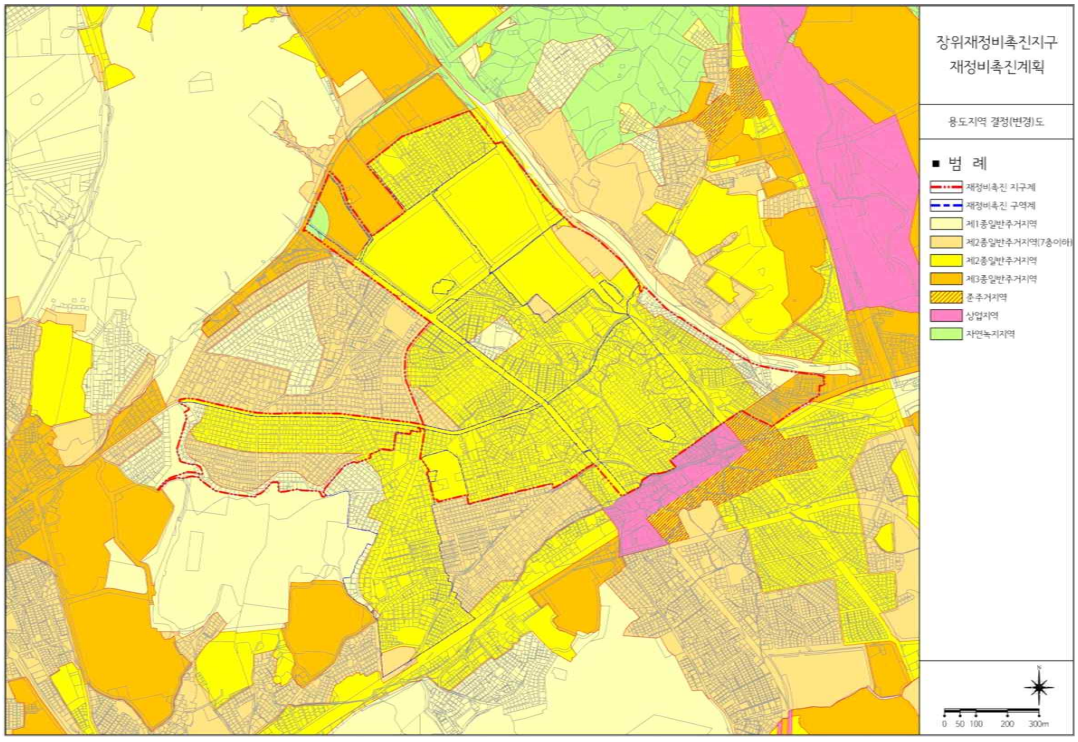
[장위재정비촉진지구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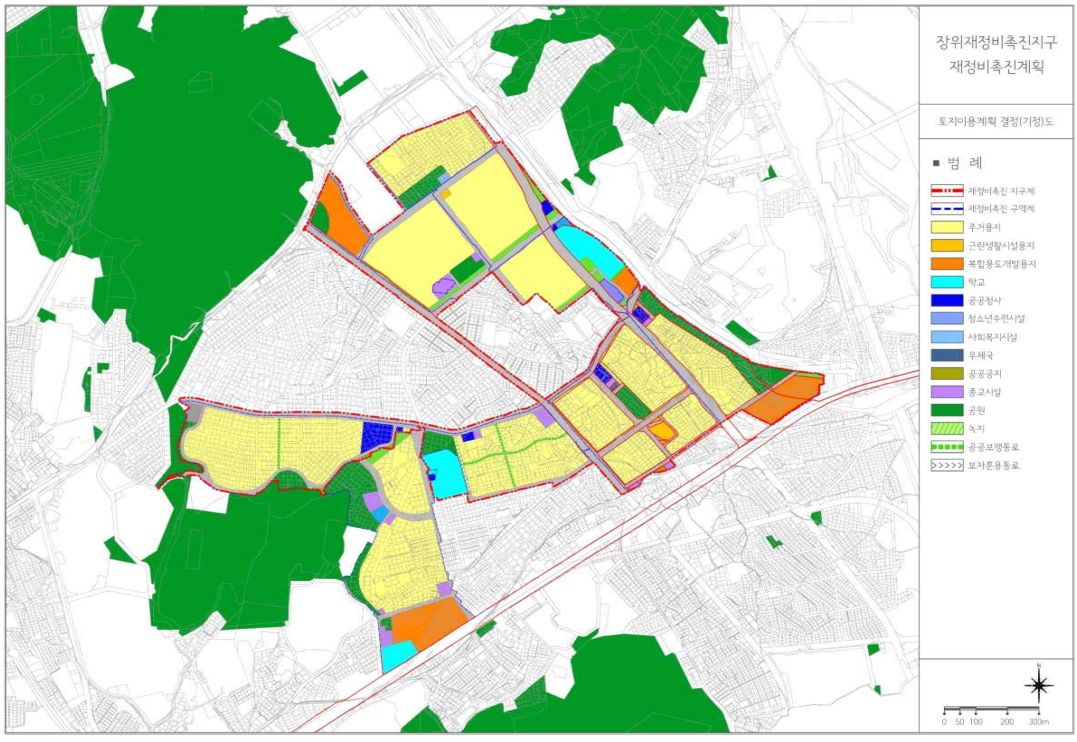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용도지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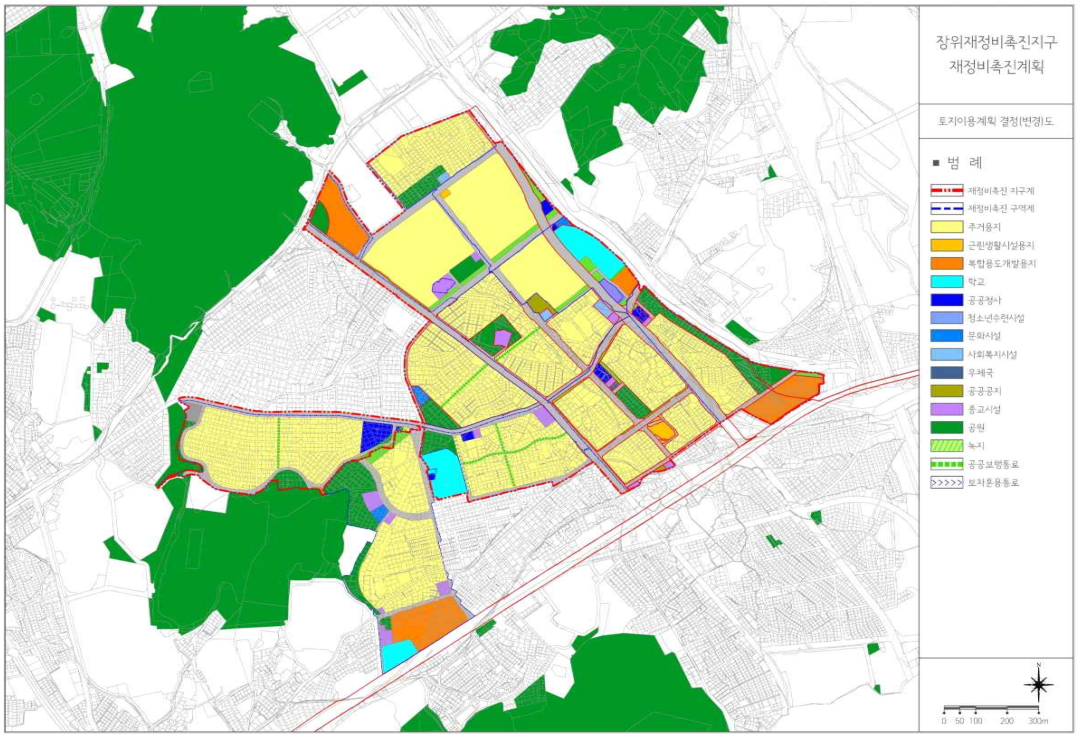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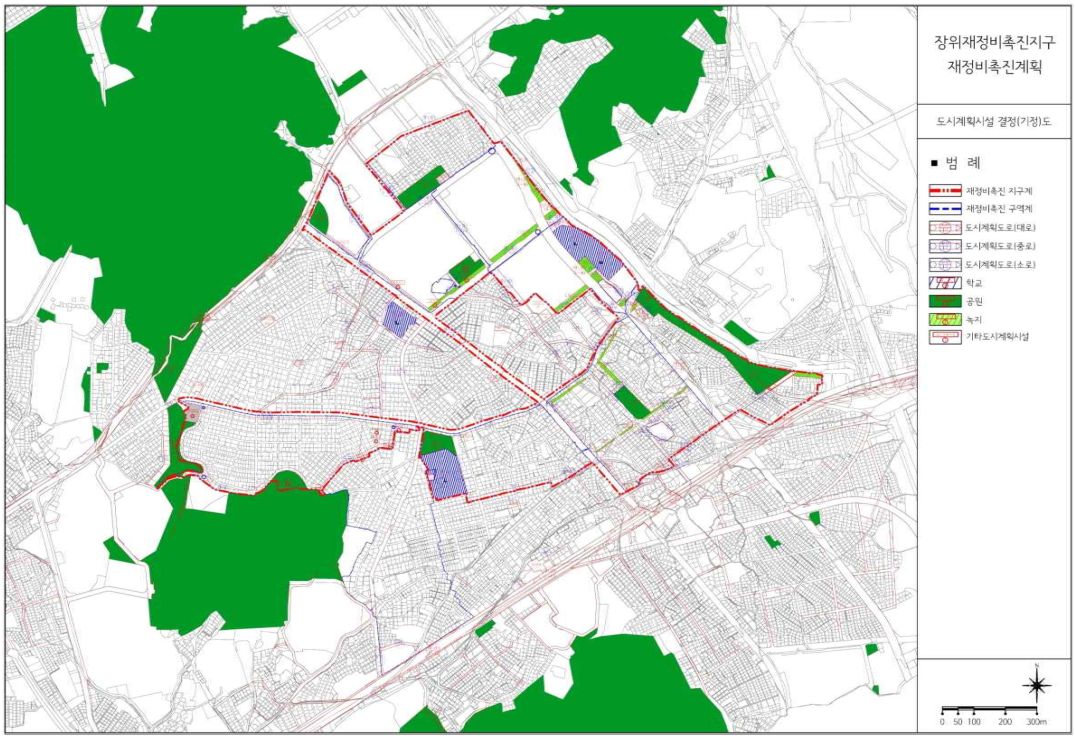
[장위재정비촉진지구 토지이용계획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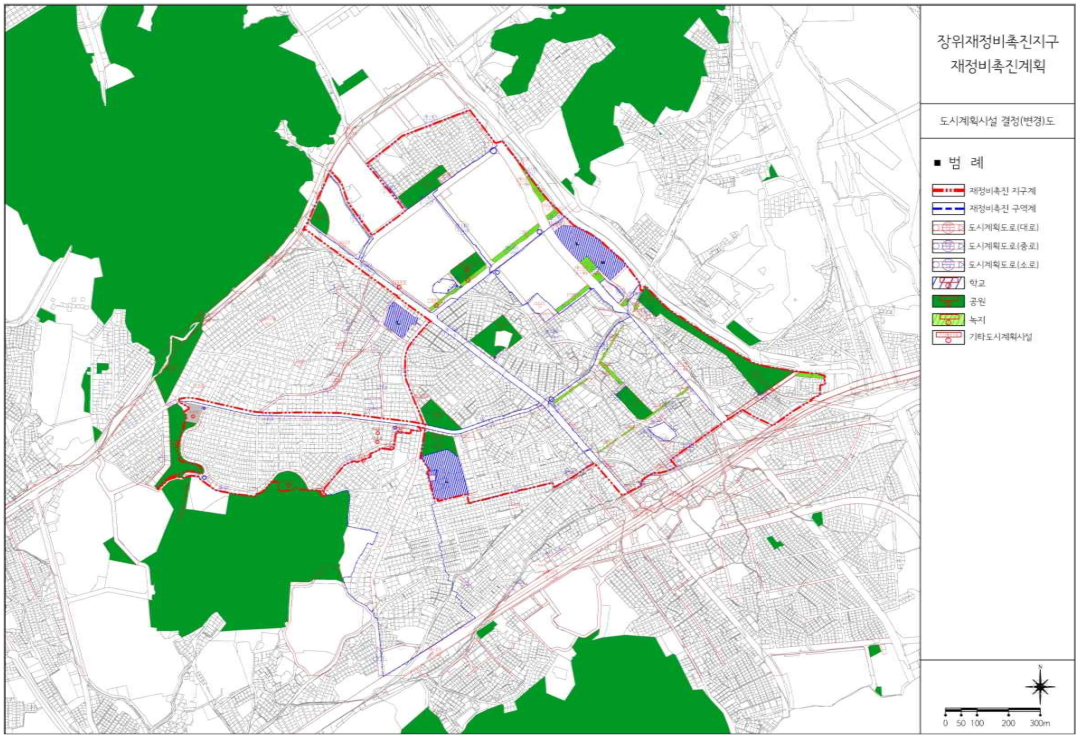
[장위재정비촉진지구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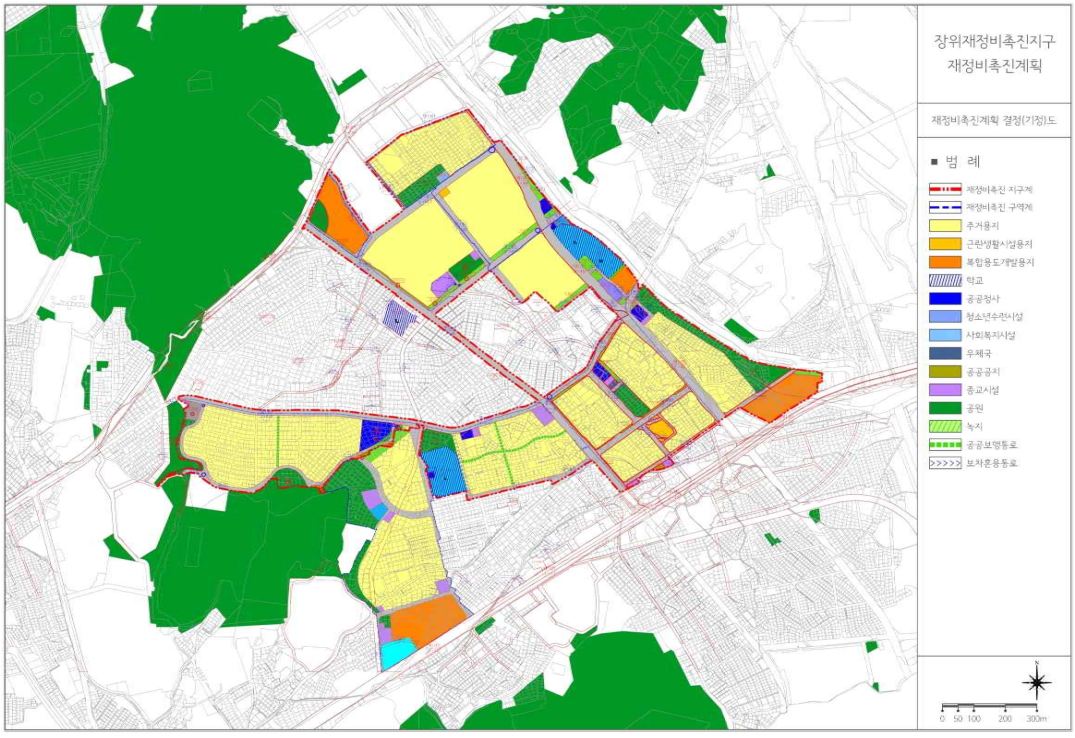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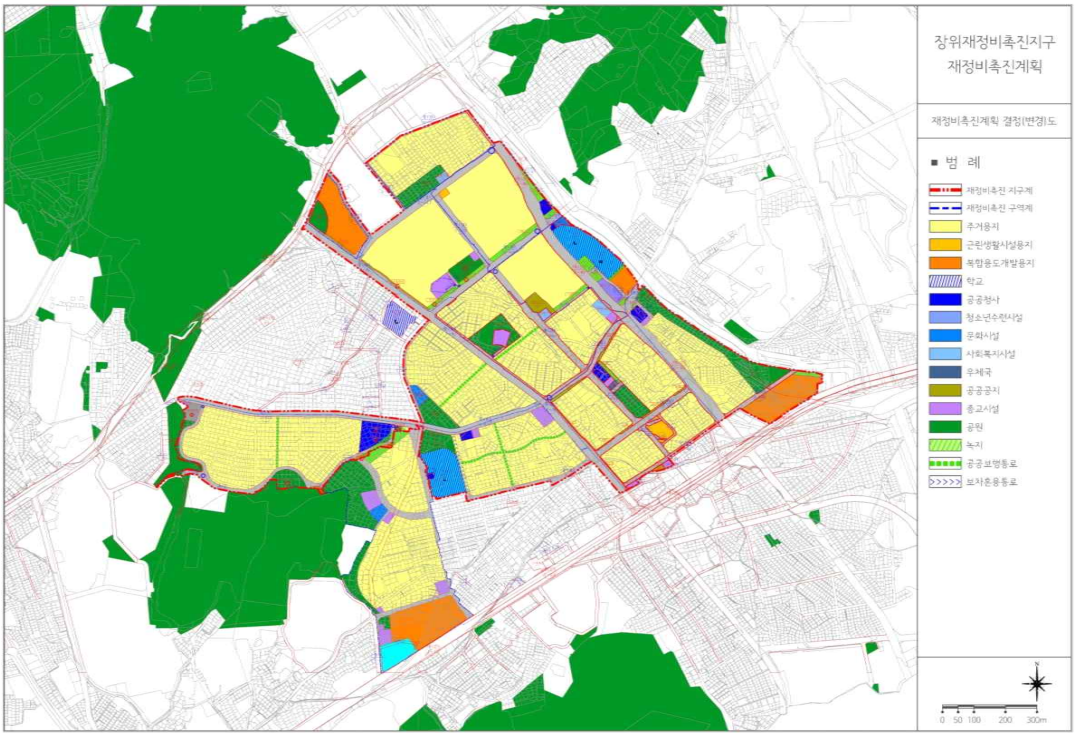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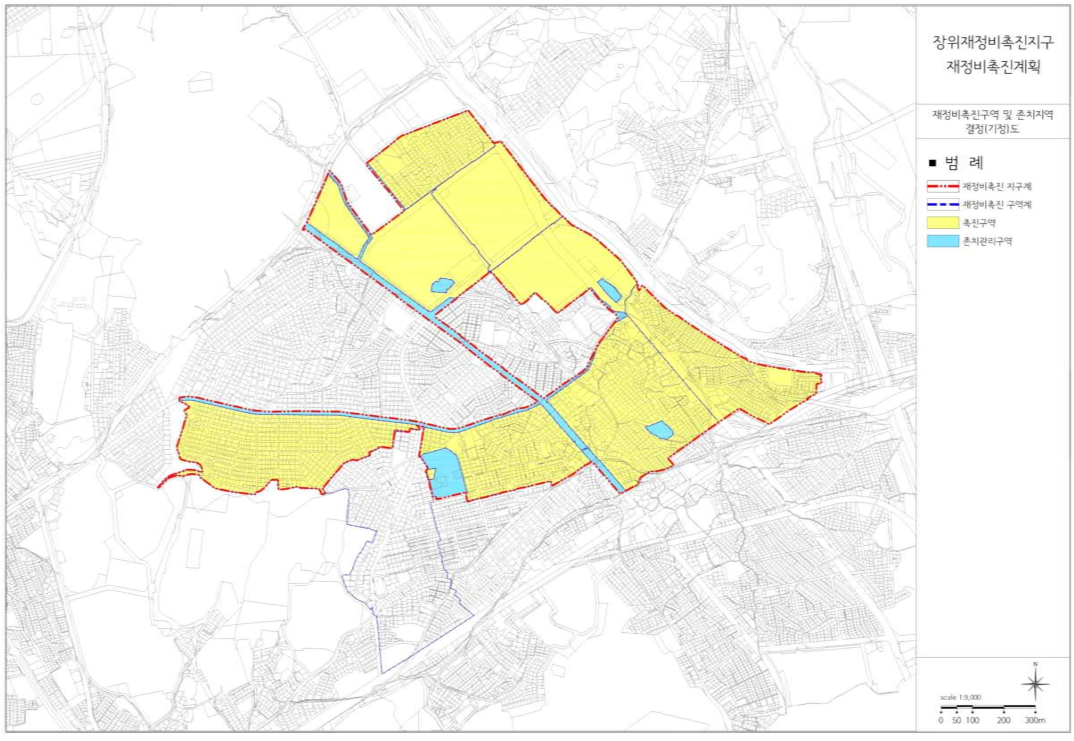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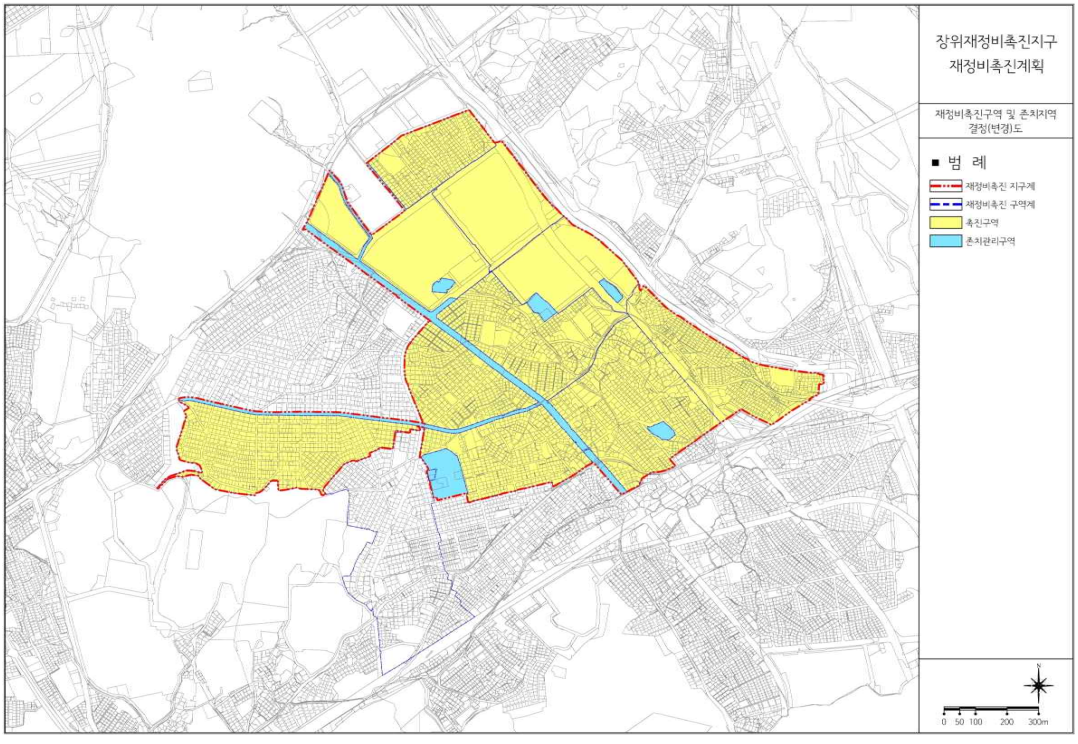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지역결정(기정)도]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지역결정(변경)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81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2365번지 일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함께 잘사는 시장 살리기” 사업(영진시장(아파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영등포구 “함께 잘사는 시장 살리기(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 을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대상지는 1970년대 건립된 노후 · 불량 건축물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세입자문제, 주민갈등* 등으로 미추진된 지역으로서 (*아파트 소유자에게는 토지 지분이 없어 상가와 아파트 소유자 간의 의견 불일치) 붕괴우려(2017년도 재난등급 E 지정)에 따른 거주민 안전 문제가 심각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시급한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임

❍ 이에 따라, 상가 세입자, 주거 세입자의 생계 대책 및 이주 대책을 고려한 도시재생과 연계한 정비사업 추진 필요

2.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변경없음)

3.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위치, 면적, 사업비 및 사업기간(변경)

위치	면적	사업비	사업기간
영등포구 신길동 2365번지 일대	2,754㎡	65,500백만원	2020년~2024년

4.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건축 및 운영·관리 계획의 개요(변경없음)

구분	주체명	추진단계별 역할
시행주체	공기업(LH)	사업 기획, 설계, 인가, 건설 등 재개발 사업시행
운영주체	영등포구청	임시상가, 공공임대상가 및 생활SOC 운영관리

5.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따른 기대효과(변경없음)

가. 주거복지 및 삶의 질 개선

-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연계하여 공공시행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전우려 건축물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인 안전을 보장하고 상가 및 주거 세입자 이주대책 확보를 통한 세입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

나. 일자리창출 및 도시경쟁력

- 기존 영진시장의 판매시설 면적보다 약 8배 가까이 증가된 판매시설을 통해 지역에 신규 사업체가 입점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

다. 사회통합 및 지속가능성

- 서울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과밀부담금의 50%, 타 기금 · 회계 전입금, 정부보조금, 차입금,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도시재생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 · 운용 기준을 마련
- 재개발 사업 추진 시 상가세입자에 대한 보호, 재정착 지원을 통해 둥지내몰림 극복과 공공성을 회복하고자 함

6.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주요 도입기능(변경없음)

구분	이용수요	운영주체	S/W 프로그램
(임시)이주상가	영진시장 기존 상가 세입자	영등포구청	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공공임대상가	영진시장 기존 상가 세입자 및 추가입주자(모집)	영등포구청	
생활SOC	주변 지역 주민	영등포구청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 주민 대상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 고령자, 주부 등 다양한 지역 주민 계층을 고려한 다양한 문화 · 체육 프로그램 운영)
공공임대주택	영진시장 기존 주거 세입자	LH	-

7. 주민 열람(변경없음)

가. 열람내용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함께 잘사는 시장 살리기”(영진시장)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

나.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다. 열람장소 :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

라. 관계도서 : 열람장소 비치(게재 생략)

기타 문의사항은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02-2670-4178)로 방문하여 주시거나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82호

개봉3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311-14번지 일대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03.23.)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 부문)」 상 정비예정구역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79호(2010.05.13.)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된 '개봉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에 대하여, 2023년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3.04.26.) 심의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변경), 동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 변경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안)	
변경	개봉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구로구 고척동 311-14 일원	116,473.0	증) 6,505.0	122,978.0	구역 외 도로 편입에 따라 정비구역면적 변경

※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 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는 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는 때를 말함)의 다음날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2. 토지등소유자 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가. 추산액

추정 비례율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 수입 - 총 지출) / 총자산 총액 × 100% •추정비례율 : 108.65% ⇒ (17,056억 - 10,839억) / 5,722억 × 100 = 108.65% - 총 수입 추정 :17,056억 - 총 지출 추정 : 10,839억 - 종전자산총액 추정 : 5,722억
개별 종전 자산 추정액	•감정평가 추정을 통한 종전자산총액 산출

<table>
<tr><td>추정
분담금
산출</td><td>•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
<table>
<tr><th colspan="2">권리자 분양가 추정액(a)</th><th>추정 권리가액(b)</th><th>추정분담금(a-b)</th></tr>
<tr><td>전용 51㎡형</td><td>5.8억</td><td rowspan="7">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 (108.65%)</td><td rowspan="7">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추정 권리가액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에서 추정 권리가액을 감액한 결과가 (+)인 경우는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며, (-)인 경우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환급금임)</td></tr>
<tr><td>전용 59㎡형</td><td>6.7억</td></tr>
<tr><td>전용 59㎡T형</td><td>6.7억</td></tr>
<tr><td>전용 74㎡형</td><td>7.9억</td></tr>
<tr><td>전용 74㎡T형</td><td>7.9억</td></tr>
<tr><td>전용 84㎡형</td><td>8.4억</td></tr>
<tr><td>전용 104㎡형</td><td>9.9억</td></tr>
</table></td></tr>
</table>

※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은 정비계획 결정도서 참조

3.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16,473.0	증) 6,505.0	122,978.0	100.0	-
획지		소계	80,666.5	증) 5,624.2	86,290.7	70.2	-
		획지1	79,601.5	증) 5,312.2	84,913.7	69.1	공동주택
		보류지	1,065.0	증) 312.0	1,377.0	1.1	-
정비기반시설		소계	35,806.5	감) 2,055.6	33,750.6	27.4	-
		도로	12,907.5	증) 2,417.1	15,324.6	12.5	※ 구역 내 현황도로(457.5㎡)포함 - 공원1 남측 접도구간(고척로 52가길)
		보행자전용도로	1,152.3	감) 1,152.3	-	-	-
		공원1	996.0	증) 147.3	1,143.3	0.9	-
		공원2	17,464.3	감) 2,081.4	15,382.9	12.5	-
		공공청사	3,286.4	감) 3,286.4	-	-	-
		공공공지	-	증) 1,899.8	1,899.8	1.5	-
기반시설		사회복지시설	-	증) 2,936.7	2,936.7	2.4	

4. 용도지역 · 지구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 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주거지역	합 계	116,473.0	증) 6,505.0	122,978.0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20,514.5	감) 1,916.7	18,597.8	15.1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6,357.0	증) 172.8	16,529.8	13.5
	제2종일반주거지역	79,601.5	증) 8,248.9	87,850.4	71.4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고척동 318-14번지 일대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916.7	•공원2의 감소와 보행자 전용도로 폐지 및 정비구역 면적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고척동 313-10번지 일대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172.8	•도시계획시설 도로(중3-)재지정을 위한 도로확폭 (10m→15m)으로 용도지역 일부 변경, 정비구역 변경에 따른 획지 면적 변경과 추가편입되는 구역의 용도지역 반영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가. 교통시설(도로) 결정 조서 : 변경

구 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	20	집산 도로	655	고척동 268-1	개봉동 153-55	일반 도로	-	서고 제2010-179호 (2010.5.13.)	-
변경	중로	2	-	15~18	집산 도로	655	고척동 268-1	개봉동 153-55	일반 도로	-	-	-
신설	중로	3	-	12	집산 도로	680 (235)	고척동 298	고척동 97-33	일반 도로	-	-	-
폐지	중로	3	-	12	특수 도로	95	고척동 318-14	고척동 271-71	보행자 전용도로	-	서고 제2010-179호 (2010.5.13.)	-
기정	소로	2	-	8	국지 도로	70	개봉동 463	개봉동 466	일반 도로	-	서고 제2010-179호 (2010.5.13.)	-
변경	소로	2	-	8	국지 도로	70	개봉동 463	개봉동 466	일반 도로	-	-	선형 조정
기정	소로	2	-	8	국지 도로	95	고척동 164-133	고척동 316	일반 도로	-	서고 제2010-179호 (2010.5.13.)	-

※ ( )는 구역 내 연장임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1-	•폭원 감소(20m → 15~18m)	•대상지 남측 기정 도로(중로1-, 폭원 20m)계획은 연접한 정비예정구역(고척동 134-93)이 해제(' 13.7)됨에 따라 연결되는 도로의 폭원을 고려하여 적정폭원(15~18m)으로 조정
중로 3-(집산도로)	•집산도로(12m) 장기미집행 실효 및 폐지에 따른 재지정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고시로(구로구 고시 제2020-130호, 2020.7.2.) 인해 폐지됐으나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해 도로 재지정(신설) 결정
중로 3-(특수도로)	•보행자전용도로(12m) 폐지 - 보행자전용도로 → 공공보행통로 변경	•공공보행로와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공공보행통로로의 대체에 따른 폐지
소로 2-	•도로 선형조정	•연결되는 도로 및 지적현황을 고려하여 도로의 선형 조정

나. 공간시설(공원) 결정 조서 : 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공원	근린공원	고척동 266-1 일대	108,120.0 (996.0)	증) 147.3	108,267.3 (1,143.3)	서고 제2010-179호 (2010.5.13.)	-
변경	②	공원	근린공원	고척동 316-17 일대	17,464.3	감) 2,081.4	15,382.9	서고 제2010-179호 (2010.5.13.)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원	근린공원	고척동 266-1 일대	•공원 면적 증가 - 위치 : 고척동 266-1일대 - 면적 : 996.0㎡→1,143.3㎡ 증147.3㎡	•도로(중로1-)선형 변경에 따른 공원 면적 변경
②	공원	근린공원	고척동 316-17 일대	•공원 면적 감소 - 위치 : 고척동 316-17일대 - 면적 : 17,463.3㎡→15,382.9㎡ 감)2,081.4㎡	•법적의무면적을 초과한 공원면적에 대하여 관련부서 협의의견 등을 반영하여 공공기여 조정에 따른 면적 축소

다. 공공청사 결정 조서 :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명칭	세분류			
폐지	①	공공청사	공공청사	개봉동 465-9 일대	3,286.4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공청사	•공공청사 폐지 - 3,286.4㎡→ 0.0㎡ 감)3,286.4㎡	•구로구 지역생활권 계획상(2030 서울시 생활권계획)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복지 및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청사 폐지 후 사회복지시설 신설

라. 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명칭	세분류			
신설	①	사회복지시설	종합 사회복지관	고척동 164-23일대	2,936.7	-

▌사회복지시설 결정(신설) 사유서

구분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신설 - 2,936.7 ㎡	•구로구 지역생활권 계획상(2030 서울시 생활권계획)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복지 및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청사 폐지 후 사회복지시설 신설

▌기부채납 시설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대지면적(㎡)	건축물 연면적(㎡)	관리청
신설	사회복지시설	고척동 164-23일대	2,936.7	지상3~4층, 연면적 4,109.69㎡	서울특별시
				지상1층, 연면적 1,428.84㎡	서울특별시
				지상2층, 연면적 2,381.47㎡	구로구

※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외 공공시설등 기부채납시설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내용에 대하여 결정도서에 합의서 첨부
※ 향후 토지평가 및 건축계획등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 층고, 형태는 조정될 수 있으며, 세부용도에 대해서는 서울시 기부채납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추후 확정됨

마. 공공공지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공시설	공공공지	개봉동 465-9일대	-	증) 1,899.8	1,899.8	-	-

▌공공공지 결정(신설) 사유서

구분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공공공지	•공공공지 신설 - 1,899.8㎡	•도시계획시설(도로) 선형 유지 및 추후 인근지역 개발 등을 고려하여 폐지되는 공공청사 부지를 공공공지로 계획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

구분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획지1	1,657.00	감) 57.00	1,600.00	-
	관리사무소		225.00	증) 105.00	330.00	-
	커뮤니티시설		980.00	증) 2,020.00	3,000.00	-
	경로당		354.00	증) 156.0	510.00	-
	어린이놀이터		2,218.00	감) 159.50	2,058.50	-
	어린이집		-	증) 730.00	730.00	-
	주민운동시설		1,513.00	증) 87.00	1,600.00	-
	경비실		75.00	감) 23.16	51.84	-
	문 고		150.00	감) 150.00	-	-
	M D F		60.00	증) 98.00	158.00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55조의2 제6항,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제8조의4
주) 향후 심의 등 인허가 절차 시 계획면적은 변경 될 수 있음

7.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에 관한 계획 : 변경

구분	구역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정	개봉3 재건축정비구역	116,473.0	구로구 고척동 311-14 일대	438	-	-	438	-	-
변경	개봉3 재건축정비구역	122,978.0	구로구 고척동 311-14 일대	438	-	-	438	-	-

8. 건축시설계획

가.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사항 : 변경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 용도	건폐율(%)	용적률(%)		평균층수/ 최고층수 높이(m)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 계획	예정 법적 상한		
기정	개봉3 재건축 정비 구역	116,473.0	획지1	79,601.5	고척동 311-14일대	공동 주택	25.00% 이하	244.89% 이하	249.83% 이하	평균 18층이하/ 해발고도97.5m이하 (75m)	-
변경		122,978.0	획지1	84,913.7	고척동 311-14일대	공동 주택	25.00% 이하	239.03% 이하	250.00% 이하	평균 23층이하/ 최고 35층이하 (99.3m)	-

변경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구분	세대수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728(23)	증) 449	2,177(297)	100.0	
60㎡이하	346(23)	증) 555	901(249)	41.4	
60~85㎡이하	1,096	증) 52	1,148(48)	52.7	
85㎡초과	286	감) 158	128	5.9	

기정 — 심의완화 사항

•용도지역 변경
-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제2종 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층수완화
- 12층 이하 → 평균 18층 이하
•용적률 완화
- 정비계획 용적률(244.89%) → 예정 법적 상한용적률(249.83%)

변경 — 심의완화 사항

•층수완화
- 평균 18층 이하 → 평균 23층 이하
•용적률 완화
- 정비계획 용적률(239.03%) → 예정 법적 상한용적률(250.00%)

기정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적용위치	계획내용	계획목표
20m 도로변	경계선에서 3m	개방감 확보 및 도로 · 보행환경 개선

변경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적용위치	계획내용	계획목표
경인로35길(중로2-), 고척로52길(중로3-), 경인로35다길, 고척로48길(소로2-)	경계선에서 3m	개방감 확보 및 도로 · 보행환경 개선

나. 개발가능 용적률 산정 : 변경

▌기정

구분	산정내용					비고
토지이용계획	계(구역면적)	대지면적	계획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면적 (국공유지 제외)	기부채납 면적 (의무면적)	-
	116,473.0㎡	79,601.5㎡	35,806.5㎡	17,772.7㎡	16,079.5㎡	
순부담 의무면적	•순부담의무 비율 = ①×③ + ②×④ / ①+② = 76,464.8×20% + 3,136.7×25% / 79,601.5 = 20.2% (의무비율) ☞ 의무면적 = 16,079.5㎡ •정비계획상 순부담율 = (기반시설 면적-⑤)/(①+②) ×100% = (35,806.5-18,033.8)/79,601.5 ×100% = 22.3%(17,772.7㎡) •비고 ① 1단계국공유지 종상향+층수완화 면적= 76,464.8㎡ ② 2단계 종상향+층수완화 면적 = 3,136.7㎡ ③ 1단계 종상향 15% + 층수완화 5% ④ 2단계 종상향 20% + 층수완화 5% ⑤ 국공유지 면적 : 18,033.8㎡					-
개발가능 용적률산정	•190% + (190%×1.3×0.2232) = 245.1 α= 17,772.7 / 79,601.5					-
상한용적률	•244.89%					-
예정법적상한 용적률	•249.83% 이하 ※ 법적상한용적률 적용대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결정된 예정법적상한용적률은 건축위원회심의를 통해 확정됨					-
소형주택 건립	•249.83% - 244.89% = 4.94% → 4.94% / 2 = 2.47% → 임대주택 최소의무면적 : 2.47% X 79,601.5 = 1,966.15㎡ → 계획면적 : 60㎡이하 X 23세대 = 1,967.19㎡					-

▌변경

구분	산정내용									비고
토지이용계획	계 (구역면적)	공동주택 부지 등 (획지 및 보류지)	계획정비 기반시설	신설정비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대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기반시설				임대 총297 세대
						임대주택		사회복지시설		
						토지 지분	건축물 환산부지 면적	토지	건축물 환산부지 면적	
	122,978.0	86,290.7	33,293.1	22,115.1	16,961.4	7,628.3	5,776.4	2,936.7	6,537.0	

구분	산정내용	비고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면적)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계획정비기반시설 면적 - 신설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대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임대주택(토지지분 + 건축물 환산면적) + 사회복지시설(토지면적 + 건축물 환산면적) = 33,293.1㎡ - 22,115.1㎡ - 16,961.4㎡ + 7,628.3㎡ + 5,776.4㎡ + 2,936.7㎡ + 6,537.0㎡ = 17,095.0㎡(13.9%) ※ 용도지역 상향 의무면적 8,990.9㎡ ※ 구역 내 공공시설(현황도로) : 457.5㎡	-
사회복지시설 건 축 물 (공공기여)	•사회복지시설 환산부지면적 = ① 공공시설 설치비용 ÷ ② 부지가액 = [30,081,917,170원/㎡] ÷ [2,300,908원 × 2] = 6,537.0㎡ ※ 공공시설 설치비용 : 「2022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책정 가이드라인」 적용 - 노인요양시설 : 3,893,000원/㎡ - 육아보육, 키즈센터 : 3,976,000원/㎡ - 청소년센터 : 3,528,000원/㎡	-
임대주택 (공공기여)	① 공공주택 환산부지 면적 - 건축물 연면적 = 29,631.5㎡ (51형 119세대(12,962.46㎡) + 59형 72세대(8,998.14㎡) + 74형 36세대(5,580.86㎡) + 84형 12세대(2,090.09㎡) - 설치비용 = 33,166,537,950원 - 건축물 환산부지면적 = 33,166,537,950 ÷ 5,741,750원/㎡(공시지가 2배) = 5,776.4㎡ ② 공공주택 대지지분 - 공공주택(지상)연면적(19,065.0㎡)/전체(지상)연면적(212,219.2㎡) × 대지면적(84,913.7㎡) = 7,628.3㎡ ※ 임대주택 설치비용 : 1,119,300원/㎡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국토부고시 제2023-64호, 2023.2.1.」 적용	임대 239 세대
개발가능 용적률 산정	•기준용적률 : 19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적률= 계획용적률+ β = 201.1%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1+1.3α토지+0.7α건축물) = 201.1% × (1 + 1.3 × 0.06079 + 0.7 × 0.15653)} = 239.03% ※ 상한용적률 : 239.03% ※ α토지 =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순부담)/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4,781.6㎡ / (86,290.7-7,628.3) = 0.06079 ※ α건축물 = 건축물 토지환산면적(순부담)/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12,313.4㎡ / (86,290.7-7,628.3) = 0.15653 ※ β = 우수디자인 10%, 세입자주거대책 1.1%	-
허용인센티브 항목	•우수디자인 : 15.0%(최대 10% 적용) •세입자주거대책 : 1.1%	-
소형주택건립 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 = 250.00%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확정)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50%} × 순 사업부지 면적 = {(250.00 - 239.03) × 50%} × 84,913.7㎡ = 4,661.76㎡ 이상 → 계획면적 : 80.41㎡ x 58세대 = 4,664.02㎡ ※ 소형(임대)주택건설 세대수 58세대	임대 58 세대

▌허용용적률 항목

기준 용적률	항목		인센티브	적용여부	허용용적률
190%	우수디자인		15%	-	201.1%
	장수명주택	· 우수등급 이상	10%	-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 에너지 1, 녹색 최우수	9%	-	
		· 에너지 2, 녹색 최우수	6%	-	
		· 에너지 2, 녹색 우수	3%	-	
	신재생 에너지	· 20% 초과	3%	-	
		· 20% 이하 ~ 15% 초과	2%	-	
		· 15% 이하 ~ 10% 초과	1%	-	
	지능형 건축물	· 1등급	15%	-	
		· 2등급	12%	-	
		· 3등급	9%	-	
		· 4등급	6%	-	
	역사문화보전	· 지정 및 등록 문화재 보정 등(위원회 인정)	5%	-	
	우수디자인	· 우수디자인	15%	10% 적용	
	세입자주거대책	· 세입자주거대책	1.1%	1.1%	
인센티브 적용 계			11.1 %		

※ 세입자 이주대책에 따른 허용용적률은 사업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완료 후 인센티브 최종 확정

다. 공공주택(공공기여/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건설에 관한 계획 : 변경

▌기정

계획기준		•소형주택 건설 : 도시정비법에서의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소형주택은 공공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				
법적상한용적률(건축계획)		•249.83%이하(건축심의에서 최종결정)				
상한용적률		•244.89%				
소형주택 의무면적	용적률 증가분	•249.83% - 244.89% = 4.94%				
	증가된 용적률의 50%	•249.83% - 244.89% = 4.94% → 4.94% / 2 = 2.47% → 임대주택 최소의무면적 : 2.47% X 79,601.5 = 1,966.15㎡				
	의무 연면적	•1,966.15㎡ 이상				
소형주택 확보계획 (건축심의에서 최종결정)		전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연면적	비고
		59.90㎡	85.53㎡	23	1,967.19㎡	획지5
		합 계		23	1,967.19㎡ 〉 1,966.15㎡	

▌변경

<table>
<tr><td colspan="2">계획기준</td><td colspan="5">•소형주택 건설 : 도시정비법에서의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소형주택은 공공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td></tr>
<tr><td colspan="2">법적상한용적률(건축계획)</td><td colspan="5">•250.00% 이하 (건축심의에서 최종결정)</td></tr>
<tr><td colspan="2">상한용적률</td><td colspan="5">•239.03%</td></tr>
<tr><td rowspan="3">소형주택 의무면적</td><td>용적률 증가분</td><td colspan="5">•250.00% - 239.03% = 10.97%</td></tr>
<tr><td>증가된 용적률의 50%</td><td colspan="5">•10.97% X 0.5 = 5.49%
→ 임대주택 최소의무면적 : 84,913.70㎡ X 5.49% = 4,661.76㎡</td></tr>
<tr><td>의무 연면적</td><td colspan="5">•4,661.76㎡ 이상</td></tr>
<tr><td colspan="2" rowspan="3">소형주택 확보계획
(건축심의에서 최종결정)</td><td>전용면적</td><td>공급면적</td><td>세대수</td><td>연면적</td><td>비고</td></tr>
<tr><td>59.90㎡</td><td>80.41㎡</td><td>58</td><td>4,664.02㎡</td><td>획지1</td></tr>
<tr><td colspan="2">합 계</td><td>58</td><td colspan="2">= 4,664.02㎡ > 4,661.76㎡</td></tr>
</table>

9.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결과

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주택건설기준</th><th>비고</th></tr>
<tr><td colspan="2">도시경관</td><td>•자연·지형 등과의 관계를 고려한 건축배치
•지형 고저차를 고려한 건축물 높이계획 수립
•단지내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준 제시
•주변지역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층수계획</td><td>-</td></tr>
<tr><td rowspan="3">환경보전</td><td>자연환경</td><td>•현재 지형을 최대한 고려한 실시계획 수립 시 절성토 균형이 되도록 계획하여 외부유출, 내부유입을 최소화
•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해 지상부의 오픈스페이스, 녹지공간 등을 최대한 확보
•도시생태계 회복을 위해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수목 식재
•공사 및 운영 시 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하여 환경오염 최소화</td><td rowspan="3">-</td></tr>
<tr><td>생활환경</td><td>•도시가스 등 청정연료(LNG)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td></tr>
<tr><td>사업시행시 환경영향</td><td>•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td></tr>
</table>

구분		주택건설기준	비고
재난 방지	화재	•대상지 내 화재발생을 대비한 방재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을 수립 •대상지 내 모든 아파트에 대하여 스프링클러와 자동식 소화기를 모든 층에 비치 •공동주택 부지 내에 소방차가 진입, 진입활동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의무화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	-
재난 방지	수해	•자연토양 유지 및 공공보행통로, 공원, 전면공지 등 녹지·조경면적의 확대로 토양 포장률을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 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 •우수유역을 검토하여 대상지 주변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토록 하며, 대상지 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하여 홍수, 수몰 등에 대한 방재계획 수립	-
	교통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소방도로의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동선체계 구축	-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사업대상지 내 수목은 특이수종이 아니므로 단지 계획 시 신규 수목들로 수림대를 형성하도록 함 •단지 내 유실수와 관상수는 수령이 짧고 관상수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므로 활용 효용도가 낮음 •사업대상지 내 기존 수목(약 150여 그루)을 활용하는 계획보다 사업지 내 신규 식재를 통해 수림대를 형성토록 계획	-

나.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 반영사항	비고
자연 경관	생태면적률	공동주택 30% 이상	○	•생태면적률 30%이상 확보	•자연지반녹지, 수공간, 인공지반녹지, 틈새투수포장	-
	녹지 네트워크	녹지평가지표 I	○	•녹지평가지표 I 녹지면적II, 녹지모양III, 내부연결성 I , 외부연결성II	•공원 및 녹지계획에 반영	-
	지형변동	절성토비율 20% 미만 지형변동비율 30% 미만 지하수위 보전	○	•절토사면 및 성토사면발생예상	•자연지형고려한 계획수립으로 부족토 및 사토량 발생 최소화 및 solibank 활용	-
	비오톱	4등급	○	•비오톱유형평가 5등급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로 도시생태기능 복원 및 강화	-
생활 환경	일조	연속 2시간 확보	○	•Sunlight를 이용하여 일조시간 및 일영범위 해석	•9~15시 사이에 연속 2시간 일조 확보되도록 배치	-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서(W)풍 계열 우세	•바람길 및 통경축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
	에너지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신재생에너지 사용	○	•에너지사용량 및 온실가스 발생량 추정	•지역난방(열병합발전)을 통한 열(온수) 공급	-
	경관	Skyline 보전 조망권 확보 가로녹지율 35% 이상	○	•대상지 주변으로 근린공원 많으나 소공원 부재	•주변지역과 녹지 연계 동시에 주변 건축물과 어울릴 수 있는 스카이라인 조성	-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 확보	○	•대상지 주변으로 근린공원 많으나 소공원 부재	•주민공동이용시설 계획	-
	보행친화 공간	보행자 전용도로 계획수립	○	•대상지 내부도로 주차공간 협소 및 보행공간 열악	•차량동선 보행자와 차량동선 분리 및 보행위주 동선체계 구축	-
추가	대기질		○	•공사 시 비산먼지에 의한 영향 예상	•공사 시 자동식 세륜·세차시설, 살수 실시, 가설방진망, 속도제한 등 실시	-
	물순환 (수질)		○	•운영 시 오수발생	•기존의 주변 하수관로에 연계처리	-
	폐기물		○	•공사 시 및 운영 시 건설· 생활·지정폐기물 및 분뇨 발생	•분리수거 및 재활용 •구 처리체계와 연계처리	-
	소음 및 진동		○	•공사 시 공사 장비 소음 발생 •운영 시 도로 교통소음 발생	•가설방음판넬 설치 등 공사장 소음진동관리지침 준수 •복층유리, 녹지공간 조성	-

10.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현황	증감	계획	
기정	관리처분	구역지정(변경) 후 4년 이내	개봉3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1,362세대	증)366세대	1,728세대	-
변경					증)815세대	2,177세대	

11.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범위		내용	비고
용도제한을 통한 교육환경보호	정비구역 전체		•불허용도계획을 통한 유흥업소(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등 교육환경 위해시설 입지금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절대 정화구역	•설정기준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	학교보건법 제6조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제5조, 제6조
			•전염병 요양소, 폐기물처리시설, 호텔, 게임제공업, 특수목욕장, 무도장 등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용도 및 시설 입지 금지	
		상대 정화구역	•설정기준 :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전염병 요양소, 폐기물처리시설, 특수목욕장, 무도장 등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용도 및 시설 입지 금지 •호텔, 당구장,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등 교육환경에 위해를 주는 용도 및 시설은 학교환경위행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입지 가능	
통학권 보행안전 대책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		•지정기준 : 초등학교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어린이 보호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신호기 · 안전표지 설치, 도로부속물 설치, 노상주차장 설치 금지 등	

12.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조 경	단 지	•단지 앞 정원에 1m 이하의 관목을 식재하고, 단지 중앙부는 지하고 2m 이상 교목 식재하여 시야 확보	-
	주차장	•출구 주변에는 조경수를 지양하고 조명과 조경간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시야 확보	-
	공 원	•산책길, 보도 주변에는 관목을 설치하고 안쪽으로 교목을 식재하여 공원 이용자의 시야 확보	-
조 명	단 지	•공동출입구와 계단은 조명을 설치하여 불안감 감소 •주차장, 정원은 조도 15룩스 이상으로 하여 시야 확보	-
	주차장	•주차장법 규정에 따른 70룩스 조도 유지 •지하주차장 조명은 눈부심방지 조명을 설치하고 벽, 천장, 유입로에는 조명을 설치토록 함	-
	공 원	•산책로 주변에 유도등, 보행등을 설치하여 불안감 감소 •공원입구, 통로, 표지판 등에 충분한 조명설치로 야간 시야 확보	-
자연적 접근통제	단 지	•주 출입구에는 출입차단기를 설치하고 경비원을 배치 •단지 외곽으로는 울타리나 펜스를 설치하여 단지내 출입을 통제	-
	공 원	•공원 외곽에는 울타리나 펜스를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 •이용시간이 정해진 공원은 표지판을 통해 정해진 시간을 알림	-
영역성 강화	단 지	•각 동 앞에는 정원을 설치하고 펜스나 울타리를 사용하여 공적 · 사적 공간을 구분	-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변경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개봉3주택재건축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로구 고척동 311-14일원	116,473.0	증) 6,505.0	122,978.0	-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치	결정내용	결정사유
변경	구로구 고척동 311-14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부 편입	•현황도로의 획일적인 확폭과 도시계획시설로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연접한 현황도로를 구역 내 편입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주거지역	합 계	116,473.0	증) 6,505.0	122,978.0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20,514.5	감) 1,916.7	18,597.8	15.1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6,357.0	증) 172.8	16,529.8	13.5
	제2종일반주거지역	79,601.5	증) 8,248.9	87,850.4	71.4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1) 교통시설(도로) 결정 조서 : 변경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	20	집산 도로	655	고척동 268-1	개봉동 153-55	일반 도로	-	서고 제2010-179호 (2010.5.13.)	-
변경	중로	2	-	15~18	집산 도로	655	고척동 268-1	개봉동 153-55	일반 도로	-	-	-
신설	중로	3	-	12	집산 도로	680 (235)	고척동 298	고척동 97-33	일반 도로	-	-	-
폐지	중로	3	-	12	특수 도로	95	고척동 318-14	고척동 271-71	보행자 전용도로	-	서고 제2010-179호 (2010.5.13.)	-
기정	소로	2	-	8	국지 도로	70	개봉동 463	개봉동 466	일반 도로	-	서고 제2010-179호 (2010.5.13.)	-
변경	소로	2	-	8	국지 도로	70	개봉동 463	개봉동 466	일반 도로	-	-	선형 조정
기정	소로	2	-	8	국지 도로	95	고척동 164-133	고척동 316	일반 도로	-	서고 제2010-179호 (2010.5.13.)	-

※ ( )는 구역 내 연장임

2) 공간시설(공원) 결정 조서 :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공원	근린 공원	고척동 266-1 일대	108,120.0 (996.0)	증) 147.3	108,267.3 (1,143.3)	서고 제2010-179호 (2010.5.13.)	-
변경	②	공원	근린 공원	고척동 316-17 일대	17,464.3	감) 2,081.4	15,382.9	서고 제2010-179호 (2010.5.13.)	-

3) 공공청사 결정 조서 :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명칭	세분류			
폐지	①	공공청사	공공청사	개봉동 465-9 일대	3,286.4	-

4) 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명칭	세분류			
신설	①	사회복지시설	종합 사회복지관	고척동 164-23일대	2,936.7	-

5) 공공공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공 시설	공공공지	개봉동 465-9일대	-	증) 1,899.8	1,899.8	-	-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

구분	가구 및 획지	면적(㎡)	위치	비고
기정	1	996.0	고척동 266-1 일원	공 원
	2	53.0	고척동 164-12 번지	보류지
	3	17,464.3	고척동 316-17 일원	공 원
	4	1,152.3	고척동 310-7 일원	보행자전용도로
	5	79,601.5	고척동 311-14 일원	획 지1
	6	12,907.5	고척동 273-77 일원	도 로
	7	3,286.4	개봉동 465-9 일원	공공청사
	8	1,012.0	개봉동 153-86 일원	보류지
변경	1	84,913.7	고척동 311-148 일대	획지1 (공동주택)
	-	1,377.0	개봉동 150-3 일원	보류지
		15,324.6	고척동 273-77 일원	도로
		1,143.3	고척동 266-1 일원	공원1
		15,382.9	고척동 316-17 일원	공원2
		1,899.8	개봉동 465-9 일원	공공공지
		2,936.7	고척동 164-23 일원	사회복지시설

나.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가구 및 획지	용도	비고
기정	허용 용도	1	1	-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2	-	
			3	-	
			4	-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6	-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8	-	
변경	허용 용도	A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2) 건축물의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 건폐율의 계획 : 변경없음

구분		지역	건폐율(%)	비고
기정	공동주택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 이하	-

나) 용적률의 계획 : 변경

구분		용적률(%)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상한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	
기정	공동주택	190.00 이하	200.00 이하	244.89%이하	249.83%이하	-
변경	공동주택	190.00 이하	201.10 이하	239.03%이하	250.00%이하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비고
우수디자인	세입자주거대책	
15.0%(10% 적용)	1.1%	11.1% 적용

▌상한용적률 완화 사항

용적률 완화(%)		비고
임대주택 및 공공시설 기부채납	소형주택 건설	
37.93	10.97	48.90

다) 높이의 계획 : 변경

구분	지역	높이기준	비고
기정	제2종일반주거지역	평균 18층 이하 / 해발고도 97.5m 이하	-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	평균 23층 이하 / 최고35층 이하	

3) 건축물 건축선등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3m)	경인로35길(중로2-) 고척로52길(중로3-) 경인로35다길 고척로 48길(소로2-)	경계선에서 3m	-

다. 경관계획

1)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비고
공동주택	획지1	•주변지역 건축물과 조화롭게 배치하고 층고계획을 통한 자연스러운 개방감 확보 및 스카이라인을 유도하고 주민공동시설과 연계되도록 배치	-
주민공동시설		•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하게 단지 내 보행동선과 맞물리도록 배치하였음	-

2)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건축물 외부형태	획지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지붕은 평지붕을 권장하되,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다양한 디자인 가능 •옥상시설물(물탱크, 기계실 등)의 노출은 최대한 배제하는 것을 권장하고 외벽은 자연환경요소와의 경합을 최대한 피할 것을 권장	-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저층부외관		•지붕은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경사지붕 및 다양한 형태의 설치를 권장	-
재료 및 색채		•주거지의 고유한 분위기와 조화되는 색채의 사용을 권장하고,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지나친 발광, 원색, 고채도 및 명도를 지양하고 생활가로와 연계하여 편안하고 간결한 색채계획을 함. 단, 건축물 강조를 위한 강조색은 부분적으로 사용 •주변 경관과의 이질감을 최소화하고 전체적으로 포근하고 안정된 이미지 부여를 위해 고채도 색상을 지양한 색채계획 수립 •통일된 이미지를 바탕으로 주변 환경 및 맥락에 부합하는 색상, 명도, 채도를 설정하여 계획지구의 정체성 부여	-

3) 경관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비고
옥상녹화	획지1	•옥상녹화 활성화 기본계획(2007.2.7.)에 의하여 설치토록 권장	-
벽면녹화		•서울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활성화 방안 ‘ 준수	-
생태면적률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 준수	-
옥외광고물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모든 옥외광고물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 광고물등 관리조례”, “옥외광고물 등관리법”을 준수하며, 그러지 않은 사항은 기준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기준(2008.3)” 권장	-

라.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

1) 대지 내 공지 및 통로계획 결정조서

구분		기정	변경	비고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	고척동 164-23번지 일대	•지역 내 부족한 녹지 및 보행자의 휴식공간의 확보, 대상지 북측 고척근린공원과의 그린네트워크 연계 강화 •1개소 위치지정
대지 내 통로	공공보행통로	1개소 (6m)	3개소 (6m)	•구역내 공원 및 생활권과의 연계성 확보 •3개소 위치지정
	보차혼용통로	-	1개소 (3m)	•대상지 북측 교회부지와의 원활한 진출입로 확보 •1개소 위치지정

2)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결정조서

구분		제어기준	비고
차량동선 및 주차장	주차 출입구	•경인로 35길 2개소	-
		•고척로 52길 1개소	-
	주차장	•주차장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지하로 확보할 계획	-
차량출입 불허구간		•차량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은 차량출입 불허구간 설정	-

3) 환경관리계획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 반영사항	비고
자연 경관	생태면적률	공동주택 30% 이상	○	•생태면적률 30%이상 확보	•자연지반녹지, 수공간, 인공지반녹지, 틈새투수포장	-
	녹지 네트워크	녹지평가지표 I	○	•녹지평가지표 I 녹지면적II, 녹지모양III, 내부연결성 I , 외부연결성II	•공원 및 녹지계획에 반영	-
	지형변동	절성토비율 20% 미만	○	•절토사면 및 성토사면발생예상	•자연지형고려한 계획수립으로 부족토 및 사토량 발생 최소화 및 solibank 활용	-
		지형변동비율 30% 미만				
		지하수위 보전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 반영사항	비고
	비오톱	4등급	○	•비오톱유형평가 5등급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로 도시생태기능 복원 및 강화	-
생활환경	일조	연속 2시간 확보	○	•Sunlight를 이용하여 일조시간 및 일영범위 해석	•9~15시 사이에 연속 2시간 일조 확보 되도록 배치	-
생활환경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서(W)풍 계열 우세	•바람길 및 통경축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
생활환경	에너지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신재생에너지 사용	○	•에너지사용량 및 온실가스 발생량 추정	•지역난방(열병합발전)을 통한 열(온수) 공급	-
생활환경	경관	Skyline 보전 조망권 확보 가로녹지율 35% 이상	○	•대상지 주변으로 근린공원 많으나 소공원 부재	•주변지역과 녹지 연계 동시에 주변 건축물과 어울릴 수 있는 스카이라인 조성	-
생활환경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 확보	○	•대상지 주변으로 근린공원 많으나 소공원 부재	•주민공동이용시설 계획	-
생활환경	보행친화 공간	보행자 전용도로 계획수립	○	•대상지 내부도로 주차공간 협소 및 보행공간 열악	•차량동선 보행자와 차량동선 분리 및 보행위주 동선체계 구축	-
추가	대기질		○	•공사 시 비산먼지에 의한 영향 예상	•공사 시 자동식 세륜·세차시설, 살수 실시, 가설방진망, 속도제한 등 실시	-
추가	물순환 (수질)		○	•운영 시 오수발생	•기존의 주변 하수관로에 연계처리	-
추가	폐기물		○	•공사 시 및 운영 시 건설·생활·지정폐기물 및 분뇨 발생	•분리수거 및 재활용 •구 처리체계와 연계처리	-
추가	소음 및 진동		○	•공사 시 공사장비 소음 발생 •운영 시 도로 교통소음 발생	•가설방음판넬 설치 등 공사장 소음진동관리지침 준수 •복층유리, 녹지공간 조성	-

■ 2023년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23.04.26.) ‘수정가결’

구 분	심의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수정 사항	○ 구 역 계 : 122,978.0㎡ ○ 획지면적 : 84,913.7㎡ ○ 용도지역 : 제1종-18,597.8㎡, 제2종7층-16,529.8㎡, 제2종-87,850.4㎡ ○ 용 적 률 : 기준 190%, 허용 201.1%, 상한 239.7%, 법적상한 250% ※ 허용용적률 : 우수디자인 10%, 세입자대책 1.1% ○ 공공기여 : 17,094.5㎡ (13.9%) ※ 도로 15,105.8㎡, 공원 16,526.2㎡, 사회복지시설 9,473.7㎡, 공공공지 1,661.1㎡, 임대주택 13,404.2㎡ ※ 국공유지 39,076.5㎡ ○ 높이계획 : 해발 135m이하 (최고 35층 이하, 평균 23층 이하) ○ 세 대 수 : 전체 2,177세대 (임대주택 294세대 포함) ※ 임대주택(36,505.11㎡) : 기부채납 239세대, 소형임대 55세대	○ 대상지에 대한 심의의결 사항 반영에 따라 대상지 구역경계에 접한 외부 도로를 포함,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하였음	반영
조건 사항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시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전제로 다음 사항을 면밀 검토할 것. ○ 건축배치계획 및 통경축계획은 ‘공원의 조망 및 차폐감 최소화’, ‘단지배치시 클러스터링 유도’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할 것. ○ 공원의 일조 부영향 및 수목 식생의 지장이 우려되는 바, 공원주변부 주동의 높이계획(35층)은 하향 조정하고, 단지 내 과도한 층수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할 것.	○ 향후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공공건축가 자문을 통한 특별건축계획 수립으로 구역 내 중앙공원에 대한 차폐감을 최소화 하고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클러스터링을 유도할 수 있도록 배치계획 및 통경축계획을 조정하도록 하겠음 ○ 공원주변부 주동의 높이계획은 특별건축구역 지정 시 공원 일조에 대한 부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건축물 배치 및 높이계획을 조정하여 반영하겠음	추후 반영
	○ 도로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관련 ○ 남측 부출입구변 4지 교차로계획은 구역 내·외부 도로체계를고려하여 삭제하고, 공공공지 동측 신설 계획한 도로(소로 1-)의폭원(12m계획)도 축소할 것 ○ ‘공공공지 서남측 현황 도로’ 와 ‘신설 계획한 경인로35길’ 의접속부는 도류화가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조정할 것.	○ 대상지 남측 부출입구변 4지교차로는 구역 내·외부 도로체계를 고려하여 삭제하였으며 소로(1-)은 인접 주거지의 생활도로로 이용되는 국지도로임에 따라 적정폭원(8m)으로 축소하였음 ○ 공공공지 서남측 현황도로와 신설 계획한 경인로35길 접속부에 대하여 안전지대 설치 등으로 진출입에 대한 교통흐름을 적절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교통 처리계획을 조정하였음	반영
	○ 사회복지시설의 건축배치계획은 건축물의 형상, 규모 등이 중앙공원과 충분히 조화될 수 있도록 전면 조정할 것	○ 사회복지시설의 건축배치계획은 추후 건축심의 전 중앙공원과 조화될 수 있도록 건축물 형상 및 배치형태에 대하여 조정하고 유관부서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계획하겠음	추후 반영
권고 사항	○ 대상지 남측 보류지 계획은 향후 남측 저층주거지 개발 시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관부서에서 권원확보 담보방안 등을 검토할 것	○ 사업시행에 따른 조합해산 전 보류지 매각 조건을 부여하여 조합원 및 보류지 인근 거주자에 우선 매각	반영

Ⅲ. 관련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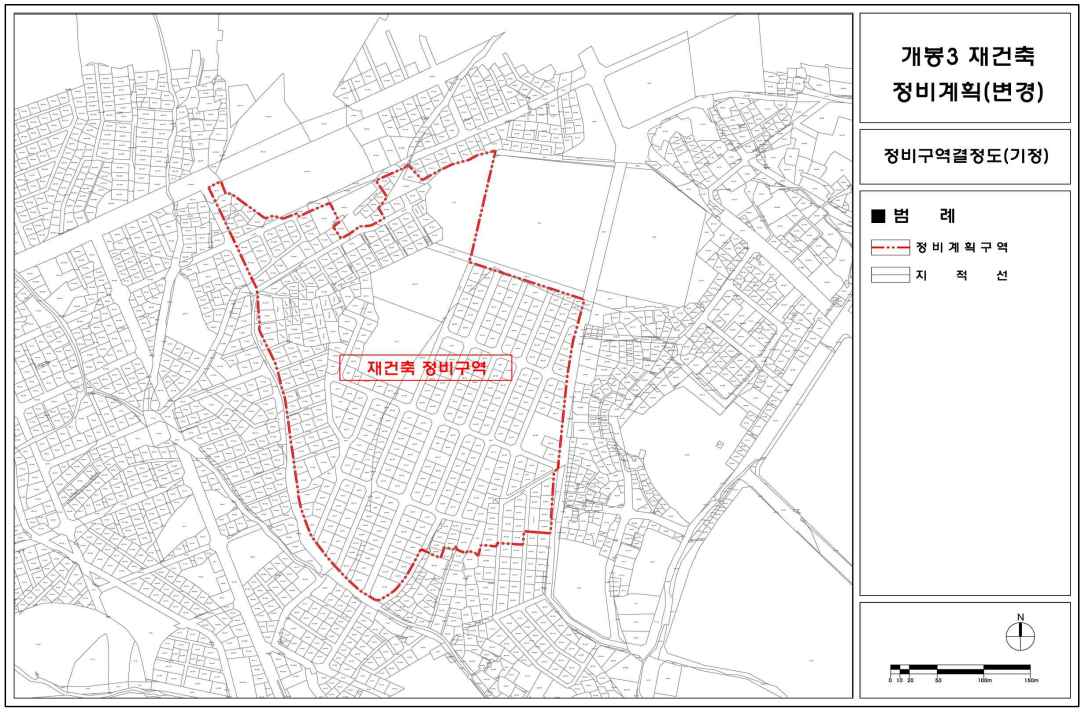
Ⅳ.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도서 : 생략

Ⅴ.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사업과(☎02-2133-7214), 구로구 주택과(☎02-860-2381)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도서 등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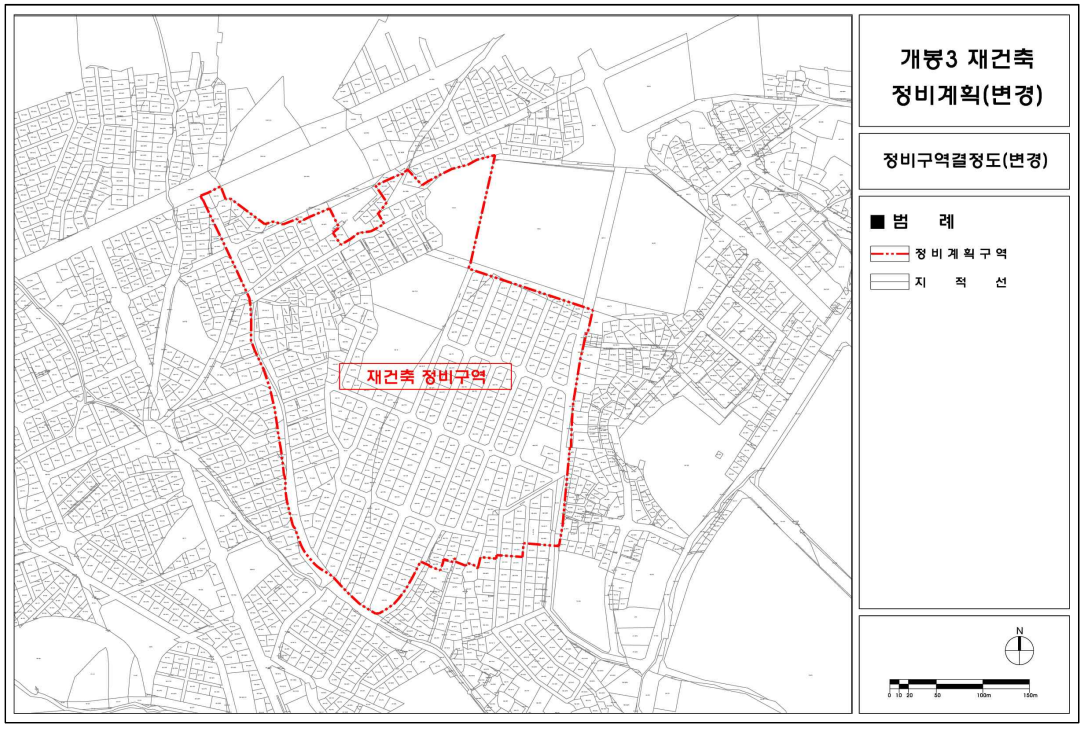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rk)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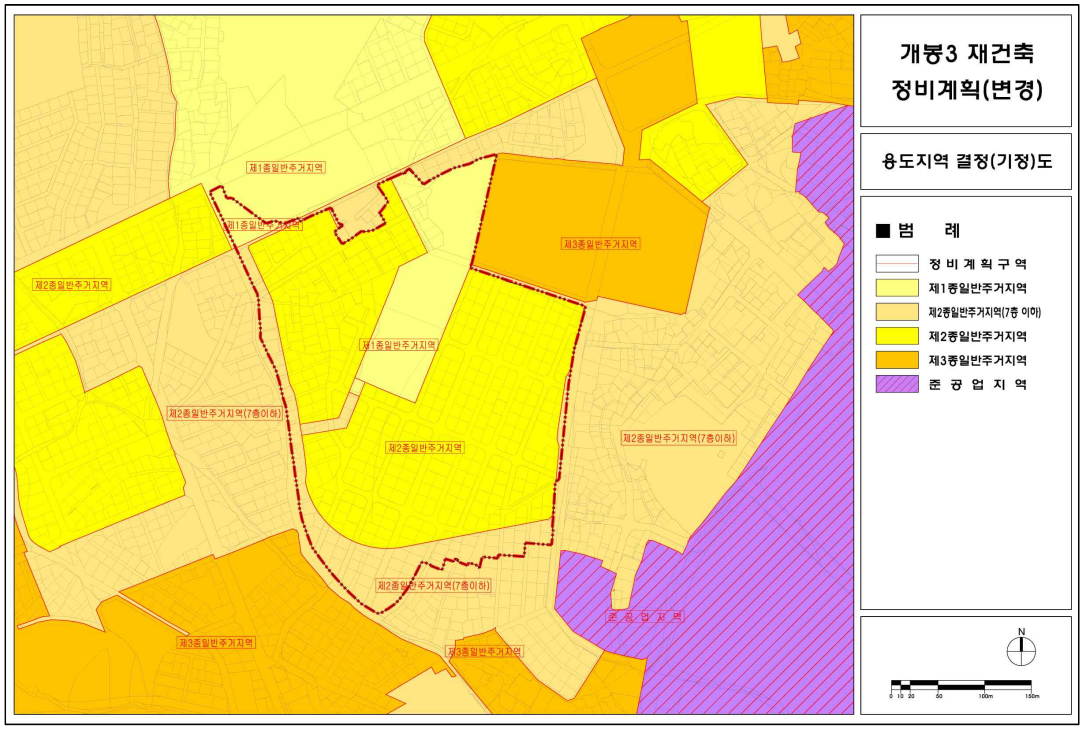
▌정비구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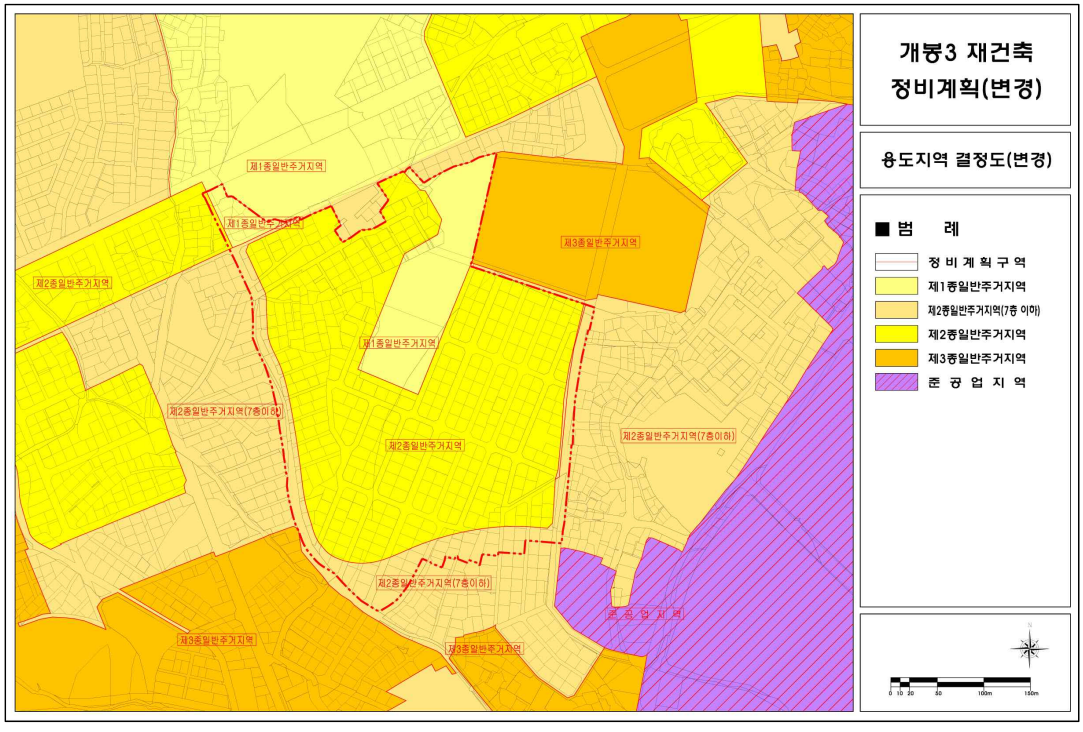
▌정비구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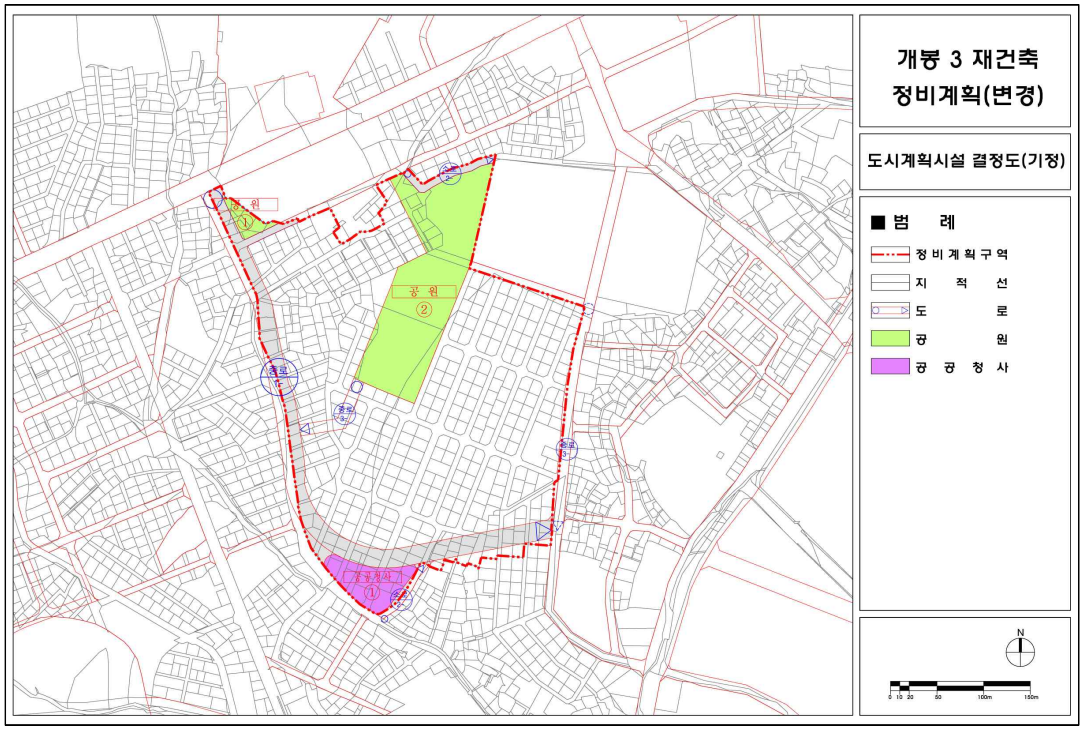
▌용도지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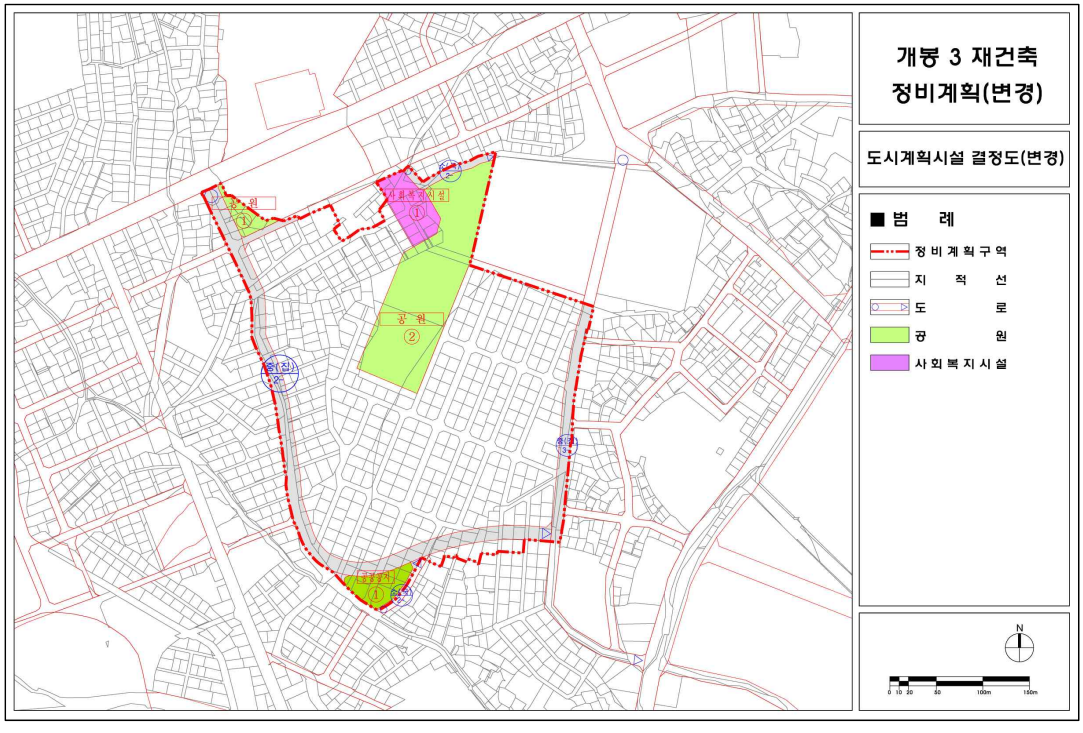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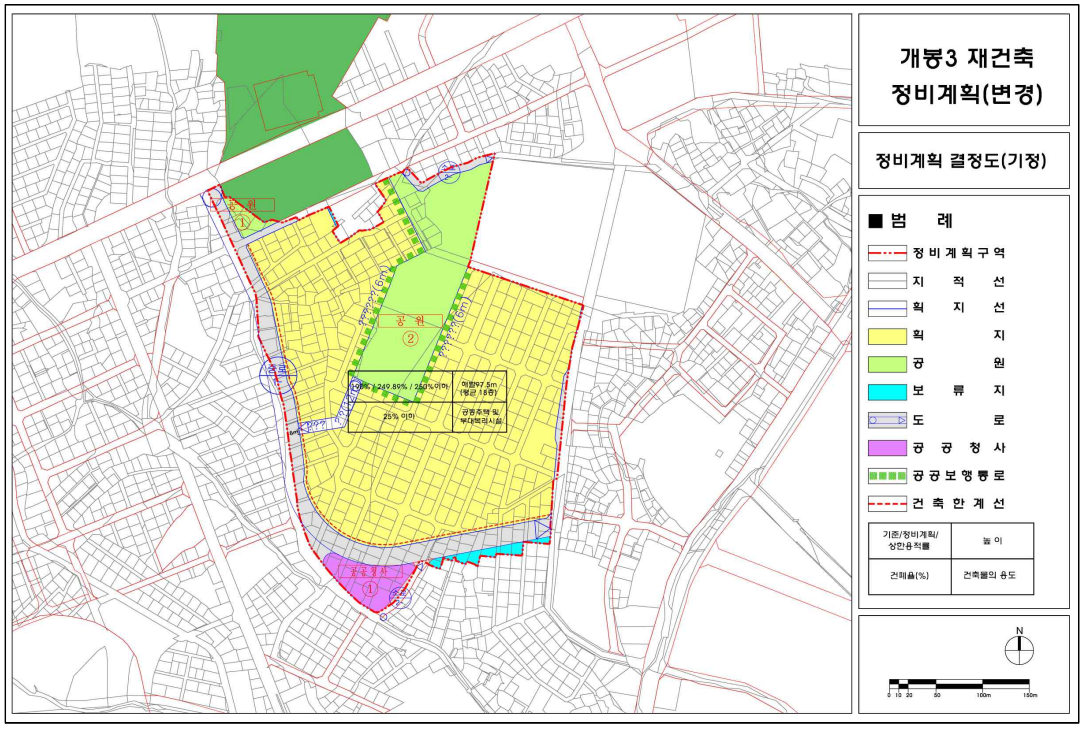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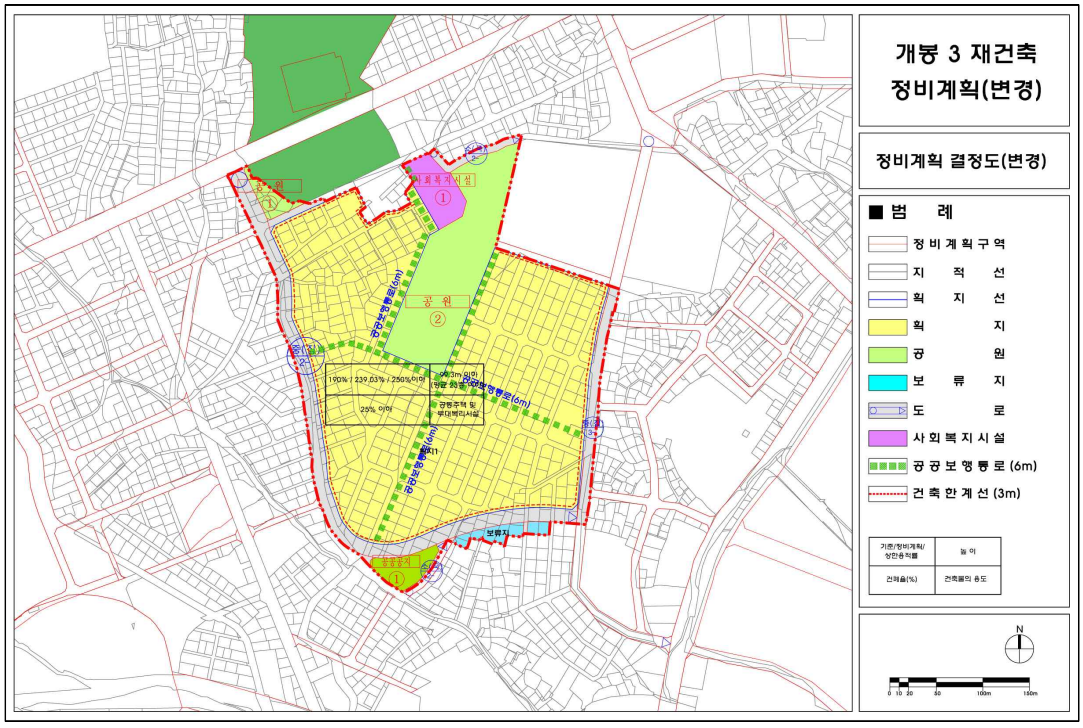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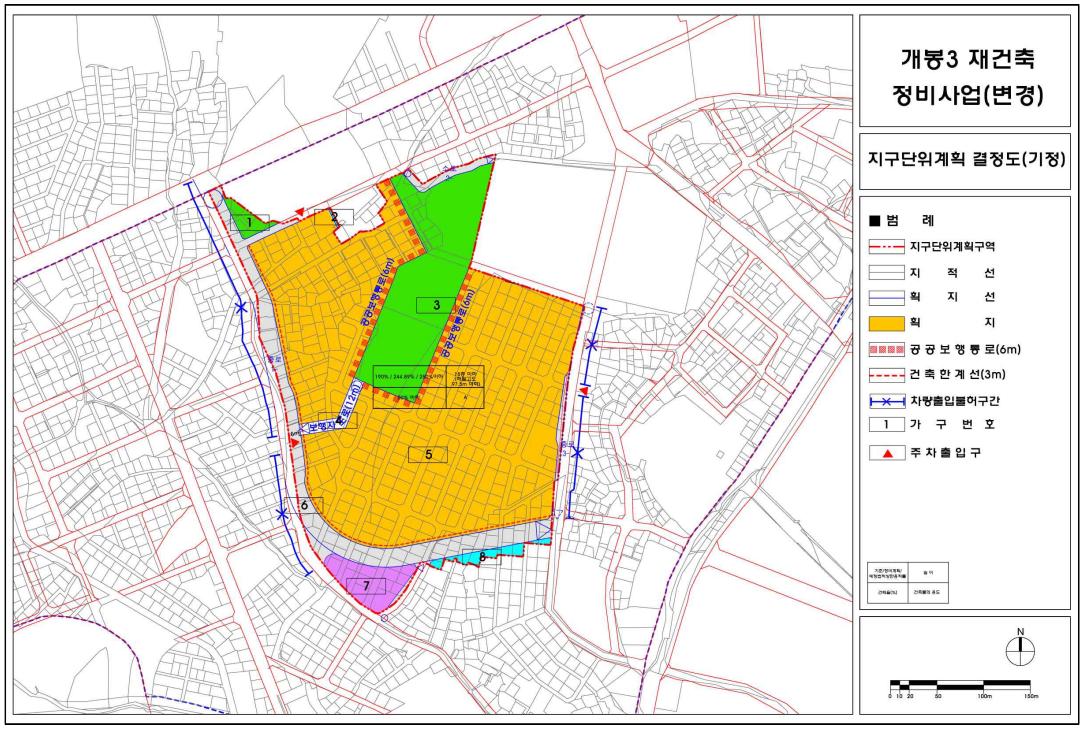
▌정비계획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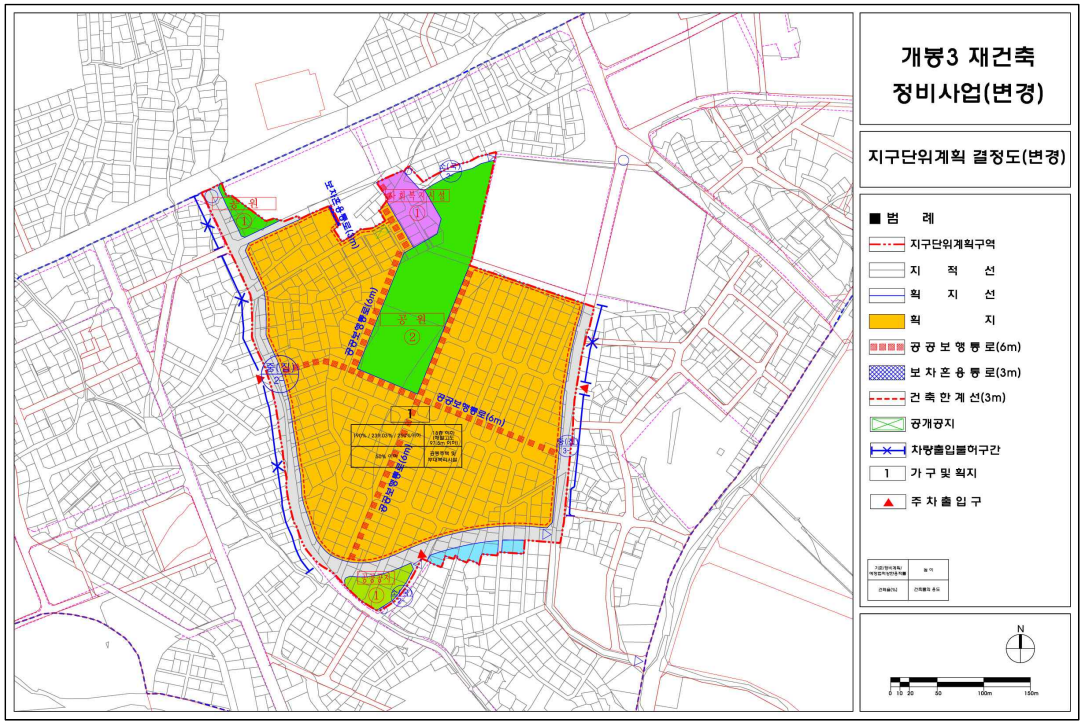
▌정비계획 결정(변경)도



▌지구단위계획 결정(기정)도



▌지구단위계획 결정(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83호

북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결정 고시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2069호(2020.7.16.)로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지정 공고된 북촌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2023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2023.12.14.)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현황
 가. 지역의 명칭 : 북촌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개요

지 역 명	유 형	위 치	면 적	비고
북촌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심시가지형	종로구 가회동 30-3번지 일대	273,867㎡	

 다. 사업기간 : 2021년 ~ 2025년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결정 내용
 가. 계획의 비전 및 목표
  1) 비전 : 역사도심의 품격있는 북촌 한옥마을
  2) 목표
   ○ 한옥중심의 지역정체성 유지
   ○ 공공한옥을 활용한 지역특화시설 조성
   ○ 생활환경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 도시재생사업 전문가 지원을 통해 재구조화 모델 구현
  3) 단위사업 및 추진전략
   ○ 지역거점을 통한 편익시설 조성
    - 정독도서관 공공보행통로 개설, 지역 기반시설과 연계한 주민편익시설 조성
   ○ 지역자산을 활용한 생활편의시설 개선
    - 전선지중화 및 계동길 정비 등 환경정비
    -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공공한옥 운영
   ○ 시설개선을 통한 마을환경 정비
    - 도심주거 지원 및 정주환경 보전
    -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통한 오버투어리즘 예방

나.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1) 사업기간 : 2021년 ~ 2025년

2) 사업계획 및 파급효과

○ 마중물 사업 : 3개 부문, 7개 단위사업

부문	단위 및 세부사업	사업내용	파급효과
지역활력 성과창출	1. 정독도서관 공공보행통로 개설	• 정독도서관 동·북측 보행통로 조성 • 정독도서관 북측 쉼터 조성 및 소음차단을 위한 차폐설치 • 진출입부에 스마트폴을 설치	• 정독도서관의 접근성 향상으로 지역거점 공간으로의 역할 증대
	2. 지역 기반시설 연계 주민 편익시설 조성	• 정독도서관 리모델링을 통한 지역거점 조성 • 3층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들을 위한 공간 조성 • 정독도서관 지하주차장과 연계하여 사업 진행	• 근대건축물 리모델링을 통한 지역 및 공간의 역사적 가치 증대 • 문화시설 및 활동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주민 및 방문객들의 커뮤니티 공간 조성
공공한옥 창의적 활용	3.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계동길 환경정비	• 파손된 도로 및 보도 정비를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 교차로 알리미, LED 가로등 등 안전시설물 설치 • 북촌로 12길 노후된 비한옥 담장개선 • 보행자 안전 및 한옥마을을 위한 전선지중화 사업	• 계동길 및 골목길 정비를 통한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 비한옥 담장을 한옥담장으로 교체하여 통일성 있는 경관개선 • 전선 지중화를 통한 안전성 향상
	4. 공공한옥 북촌문화플랫폼 조성	• 공공한옥 3개소를 활용한 복합문화 공간 조성 • 행정·민간기관과 지속적 교류를 통한 연계사업 실행력 강화	• 북촌 문화플랫폼을 중심으로 시민 모두를 위한 북촌 고유의 전통문화 공유 제공 • 지역 맞춤형 생활편의 서비스 운영(세탁방, 택배 위탁 등)
정주환경 보전개선	5. 안전한 북촌마을을 위한 가로환경 개선	• 북촌로의 보도 확폭 및 쉼터 조성을 통해 상징거리 조성 • 중앙고등학교 앞 급경사 구간에 도로열선 및 화재·안전시설물 설치	• 가로환경 개선을 통한 보행환경 개선
	6.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계획수립	•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한옥마을 주민들의 규제·혜택 마련을 위한 세부대책 수립	• '한옥마을 도심주거' 보호를 위한 관리방안 마련
	7. 한옥 유지관리를 위한 컨설팅	• 측량 및 실측을 위한 찾아가는 컨설팅 실시 • 집수리를 위한 특수공구 활용 교육 및 특수공구 대여소 조성	• 지속 가능한 한옥관리 경제조직 육성 및 선순환 구조 마련

* '정독도서관 공공보행통로 개설' 및 '지역 기반시설 연계 주민 편익시설' 사업은 향후 [정독도서관 재구조화 기본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연계사업

세부사업	관련기관	사업내용
정독도서관 지하주차장 조성	서울시 한옥정책과 종로구 주차관리과	• 정독도서관 지하주차장 조성 (지하2층, 총 241대) • 옹벽의 단차를 활용하여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조성하여 보행자 동선 분리
삼청공원 입구 지하주차장 조성	종로구 주차관리과	• 국군서울지구병원 지하를 활용하여 공용주차장 조성 • 지하2층, 주차장 178면
가회동 지역맞춤형 생활안심 디자인사업	종로구 도시디자인과	• 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CPTED 기법을 활용한 지역 맞춤형 디자인 계획

다.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 정비에 관한 계획

○ 공공한옥(가회동 35-2번지 외 2개소) 3개소를 활용하여 시민 플랫폼 운영

○ 정독도서관 지하를 활용하여 공용주차장 조성

사업명	위 치	규 모	사업비	완료시기
공공한옥 활용	가회동 35-2번지 외 1필지	81.18㎡	-	2022년
	계동 2-131번지 외 1필지	63.4㎡	-	-
	계동 135-1번지	142.2㎡	-	-
정독도서관 지하주차장	화동 2	12,050㎡	-	-

라. 재원조달계획

사업명			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민간
					시비	구비	
합계			20,000	-	20,000		-
마중물예산	마중물예산 소계		20,000	-	20,000		-
	1	정독도서관 공공보행통로 개설	1,325	-	1,325		-
	2	지역 기반시설 연계 주민 편익시설 조성	3,000	-	3,000		-
	3	상권활성화를 위한 계동길 환경 정비	4,190	-	4,190		-
	4	공공한옥 북촌문화플랫폼 조성	2,983	-	2,983		-
	5	안전한 북촌마을을 위한 가로환경 개선	8,078	-	8,078		-
	6	관광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계획수립	350	-	350		-
	7	한옥유지관리를 위한 컨설팅	74	-	74		-

※ 한전지중화 사업비(구비)는 별도임

마. 예산집행계획

사업명			사업비(백만원)				
			계	~2022	2023	2024	2025~
합계			20,000				
마중물예산	마중물예산 소계		20,000				
	1	정독도서관 공공보행통로 개설	1,325	-	-	-	1,325
	2	지역 기반시설 연계 주민 편익시설 조성	3,000	-	-	-	3,000
	3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계동길 환경 정비	4,198		-	1,000	6,694
	4	공공한옥 북촌 문화플랫폼 조성	2,983	2,566	-	-	417
	5	안전한 북촌마을을 위한 가로환경 개선	8,078	-	434	-	7,644
	6	관광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계획수립	350	350	-	-	-
	7	한옥 유지관리를 위한 컨설팅	74	-	-	-	74

※ 향후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바.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계획

1) 성과지표 설정

○ 북촌 도시재생사업의 목표(지역활력 성과창출, 공공한옥 활용, 정주환경 보전개선)와 관련하여 도시재생사업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각 단위사업에 대해 성과지표를 선정하고, 연차별 목표를 제시함

구분		평가지표	연차별 목표					조사방법
			'22	'23	'24	'25	'26~	
지역활력 성과창출	공공보행통로개설	보행통로 만족도 조사	-	-	-	30%	60%	설문조사
	편익시설 조성	만족도 조사	-	-	-	-	80%	설문조사
		방문객 수	-	-	-	-	500명	계측조사
공공한옥 창의적 활용	계동길 환경정비	계동길 환경정비 만족도 조사	-	-	30%	60%	100%	설문조사
		담장정비 만족도 조사	95%	-	-	-	-	설문조사
		전선지중화사업 만족도 조사	-	-	-	-	50%	설문조사
	북촌문화플랫폼 조성	콘텐츠 정착화	10%	30%	60%	80%	100%	계측조사
		전문성 강화 참여인원	2명	4명	6명	8명	10명	계측조사
		민간협력 활동 참여인원	500명	550명	600명	650명	700명	통계조사
정주환경 보전개선	가로환경 개선	북촌로초록길 만족도 조사	-	-	-	60%	80%	설문조사
		환경개선 만족도 조사	-	-	-	60%	100%	설문조사

구분		평가지표	연차별 목표					조사방법
			'22	'23	'24	'25	'26~	
		화재예방 만족도 조사	-	-	30%	80%	100%	설문조사
	관광특별관리지역 지정	거주민 만족도 조사	20%	40%	60%	80%	100%	설문조사
	한옥유지관리	특수공구 교육 지원자 수	-	-	-	100명	200명	계측조사
		특수교육 및 공구대여소 만족도 조사	-	-	-	80%	100%	설문조사
		한옥 컨설팅 참여율	-	-	10%	30%	80%	계측조사
		등록한옥 증가 수	-	-	-	50%	80%	통계조사

* '정독도서관 공공보행통로 개설' 및 '지역 기반시설 연계 주민 편익시설' 사업은 향후 [정독도서관 재구조화 기본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관리를 위해 매년 설문조사, 현장조사, 계측조사, 통계조사 등을 통한 평가지표 측정

○ 평가지표 측정 결과를 통해 성과 및 문제점, 추가 보완사항 등을 파악하여 사업 추진방향 및 운영방식의 조정

○ 주민협의체, 도시재생 전담 조직이 참여한 사업추진협의체를 활용하여 체계 구축

사. 행위 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 해당없음

아.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1) 조직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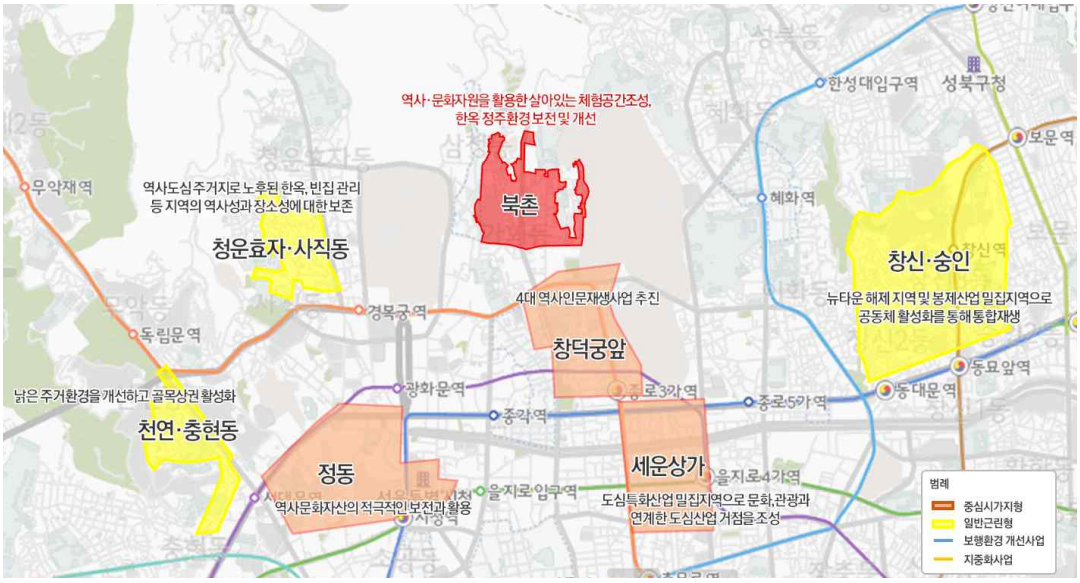
구 분	역 할	운 영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 주민의견 청취 중심의 보조적 역할 • 도시재생 전담조직과 주민협의체 협의 조정	• 총괄코디네이터 중심 4인 내외
도시재생 전담조직	•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사업실행의 행정적 지원	• 서울시 한옥정책과 • 종로구 주택관리과
주민협의체	• 북촌로를 중심으로 북촌로 서측, 동측 및 상인 권역별 운영 • 정기적인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해 참여 역량증진 및 전문성 향상	• 권역별 대표, 부대표 구성 • 분과별 의사결정 진행
사업추진협의회	• 사업추진단계의 의사 조정 및 결정기구 • 도시재생사업 실행계획의 협의, 조정	•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 분야별 전문가 등

2. 관련 도면 : 붙임참조
 1) 위치도 1부.
 2) 도시재생사업 구상도(안) 1부.

3. 관련서류 열람
 관련 서류는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한옥정책과(☎2133-5573)/종로구 주택관리과(☎2148-2626)에서 열람 가능하며 서울시 홈페이지(고시/공고)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위 치 도



붙임 2

도시재생사업 구상도(안)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84호

도시관리계획(연신내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5호(1996. 7. 13.)로 지구단위계획구역(종전 상세계획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55호(2002. 7. 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04호(2011. 4. 28.)로 결정(변경)된 "연신내 지구단위계획" 에 대하여 2023년 제15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3. 10. 11.)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연신내 지구단위계획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GTX-A(연신내역) 착공 등 주변지역 개발 여건 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토지이용 등 지역 중심 위상을 제고하고, 기정 계획의 실현성, 규제사항 등의 개선 및 지역 중심 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가정	변경	변경 후	
기정	①	연신내 지구단위계획구역	불광동 311번지 일대 대조동 185번지 일대 갈현동 396번지 일대	166,010	-	166,010	서울시고시 제2011-104호 (2011. 4. 11.)

주) 구역 최초결정 : 1996. 7. 13.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95호)

Ⅲ.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계		166,010	-	166,010	100.0	
주거지역	소계	24,703	-	24,703	14.9	
	제2종일반주거지역	13,273	-	13,273	8.0	서울시고시 제255호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준주거지역	11,430	-	11,430	6.9	(2002. 7. 2.)
상업지역	소계	141,307	-	141,307	85.1	
	일반상업지역	141,307	-	141,307	85.1	서울시고시 제1996-195호 (1996. 7. 13.)

나. 용도구역 결정조서 : 해당없음

2.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1) 도 로

■ 도로총괄표

유별	합 계			1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8	1,892	39,710	2	1,030	33,500	6	862	6,210
대로	2	1,030	33,500	2	1,030	33,500	-	-	-
소로	6	862	6,210	-	-	-	6	862	6,210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이며 cad 구적 값으로 실제 현황과 다를 수 있음

■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2	35~39	주간선도로	11,250 (520)	홍은동 (갈현동 395-1)	신도읍 삼송리 (불광동 186-49)	일반도로	건고 제177호 ('62.12.8.)	통일로
기정	대로	1	55	25-35	주간선도로	5,000 (510)	역촌동 85-41 (갈현동 456-28)	진관외동284-12 (불광동 320-17)	일반도로	건고 제2493호 ('66.6.21.)	연서로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373 (270)	불광동 486-25	불광동 367-28 (불광동 313-8)	일반도로	서고 제354호 ('90.10.24.)	-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87	불광동 310-4	불광동 310-290	일반도로	서고 제354호 ('90.10.24.)	-
기정	소로	3	3	6	국지도로	84 (75)	불광동 314-25	불광동 367-30 (불광동 310-12)	일반도로	서고 제354호 ('90.10.24.)	-
기정	소로	3	6	6~8	국지도로	640 (200)	불광동 304-5	불광동 346-2 (불광동 326-9)	일반도로	서은고 제99-33호 ('99.7.27.)	-
기정	소로	3	7	6	국지도로	202 (115)	불광동353-68 (불광동 330-13)	불광동 326-8 (불광동 326-8)	일반도로	서고 제354호 ('90.10.24.)	-
기정	소로	3	가	6~8	국지도로	115	불광동 323-43	불광동 309-12	일반도로	서고 제180호 ('21.4.8.)	-

※ ( )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2) 철 도

■ 본선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세분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	철 도	고속철도 (3호선)	벽제	양재동	-	33,200 (527)	-	건고 제53호 ('80.2.22.)	-
기정	-	철 도	도시철도 (6호선)	은평구 신사동	중랑구 신내동	-	36,400 (499)	-	서고 제1994-104호 ('94.4.7.)	-
기정	-	철 도	일반철도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A노선)	은평구 갈현동 산131-1	강남구 삼성동 111-8	연신내역 서울역	20,515 (416)	318,99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32호 ('18.12.31.)	•정거장포함면적 •지하부(구분지상권)는 입체적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주1) 고속철도(3호선) 선로 선형이 없어, 대략적인 CAD구적 연장임.
주2) ( )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CAD구적 연장임.

■ 정거장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세분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	철 도	연신내정거장 (3호선)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185-1 부근			-	4,300	서고 제287호 ('81.07.30.)	-
기정	-	철 도	연신내정거장 (6호선)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185번지 앞			-	5,564	서고 제1994-104호 ('94.04.07)	-
기정	-	철 도	연신내정거장 (수도권광역급행 철도 A노선)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일원			-	11,762.2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932호 ('18.12.31)	-

나. 공간시설

■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공공지	갈현1동 397,389-5,6번지일대	1,903	-	1,903	서고 제2002-255호 ('02.7.2)	-

다. 유통 및 공급시설

■ 시장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②	연서시장	불광동 310-130 일대	1,150	서고 28호('75.2.10.)	-
기정	③	연지시장	대조동 185-43 일대	2,319	서고 28호('75.2.10.)	-

라. 공공·문화시설 결정조서

■ 체육시설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④	체육시설	불광2동 322-2 일대	4,781	서고 105호(' 76.5.10.)	-

Ⅳ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획지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결정조서

구 분	기정		변경 (안)		비 고
	가구번호	가구면적(㎡)	가구번호	가구면적(㎡)	
가구	A1	6,404.0	A1	6,455.0	-
	A2	4,645.0	A2	4,800.0	-
	A3	2,813.0	A3	2,813.0	-
	A4	4,681.0	A4	4,844.0	-
	A5	1,988.0	A5	1,988.0	-
	B1	1,447.0	B1	1,447.0	-
	B2	3,195.0	B2	3,552.0	-
	B3	1,782.0	B3	1,782.0	-
	B4	4,698.0	B4	4,863.0	-
	B5	9,070.0	B5	9,076.0	-
	B6	2,655.0	B6	2,672.5	-
	C1	5,402.0	C1	5,644.0	-
	C2	1,662.0	C2	1,662.0	-
	C3	6,044.6	C3	6,427.6	-
	C4	4,652.0	C4	4,771.0	-
	C5	6,264.0	C5	6,264.0	-
	D1	3,805.0	D1	3,880.0	-
	D2	3,644.0	D2	3,924.0	-
	D3	14.177.0	D3	13,883.0	-
	D4	11,146.0	D4	11,146.7	-
	D5	5,078.0	D5	5,078.0	-

■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가구	• 가구 면적 변경	• 연서시장 특별계획구역 변경에 따라 B6 가구계획 변경 • 가구 내 도로 포함하여 면적 재산정 - 가구 내 포함된 도로 면적은 cad 구적 값으로 실제 현황과 다를 수 있음

나. 공동개발(지정/권장/자율적공동개발)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 계획기준

구 분	적용 대상	계획기준		비 고
		기정	변경 (안)	
공동개발 (지정)	전구역	• 필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로서 기 공동개발되어 있는 경우 • 맹지형 필지인 경우 •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필지로서 신축시 주변 건물과 전면폭의 차이가 심하여 경관상 문제가 될 경우	• 필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로서 기 공동개발 되어 있는 경우	인센티브 미부여
공동개발 (권장)	전구역	•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 • 부정형필지 및 과소필지와 인접한 경우	•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부정형 필지인 경우 • 맹지형 필지인 경우	-
자율적 공동개발	간선부	-	• 최대개발규모 내 공동개발 가능, 연접한 2개 이상 필지	적정개발규모 이상 자율적 공동개발 시 인센티브 부여
	이면부	-	• 최대개발규모 내 공동개발 가능, 연접한 2개 이상 필지	적정개발규모 이상 자율적 공동개발 시 인센티브 부여

주) 자율적 공동개발 관련 인센티브 등 적용기준
- 최대개발규모 내 자율적 공동개발 가능
- 적정개발규모(간선부 : 500㎡/이면부 : 250㎡) 이상 개발 시 인센티브 부여
  - 간선부와 이면부의 필지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간선부 기준규모 적용
- 아래 사항에 해당 될 경우 자율적 공동개발 불허(단, 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외)
  - 자율적 공동개발에 의한 대지의 형태가 지나치게 부정형한 경우
  - 세장비(단변과 장변의 비)가 1:3 이상인 경우
  - 자율적 공동개발에 의해 인접필지가 맹지가 되거나 부정형하게 되는 경우
  - 단일 필지 또는 공동개발(지정)등으로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율적 공동개발 불가

■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동개발(지정)	계획기준 변경	• 주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불합리한 공동개발 지정 해제
공동개발(권장)	계획기준 변경	• 개발 실현성이 적은 공동개발 권장 해제
자율적 공동개발	신설	• 규모 있는 개발을 위해 자율적 공동개발 시행

■ 가구 및 획지조서

구분	가구 번호	가구면적 (㎡)	위치	대지면적 (㎡)	공동개발면적 (㎡)	비고
기정	A1	6,404.0	갈현1동 395-1	1,980		
			갈현1동 395-2	562		
			갈현1동 395-5	624		
			갈현1동 395-6	280		
			갈현1동 395-24	283		
			갈현1동 395-7	437		

구분	가구 번호	가구면적 (㎡)	위치	대지면적 (㎡)	공동개발면적 (㎡)	비고
			갈현1동 395-25	242	295	• 공동개발(권장)
			갈현1동 395-27	40		
			갈현1동 395-8	13		
			갈현1동 395-8	156	483	• 공동개발(지정)
			갈현1동 395-30	142		
			갈현1동 395-10	185		
			갈현1동 395-12	174		
			갈현1동 395-13	180		
			갈현1동 395-14	150	283	• 공동개발(지정)
			갈현1동 395-15	133		
			갈현1동 395-17	308		
			갈현1동 395-9	188		
			갈현1동 395-29	153		
			갈현1동 395-28	144		
변경	A1	6,455.0	갈현동 395-1	1,980		
			갈현동 395-2	562		
			갈현동 395-5	624		
			갈현동 395-6	280		
			갈현동 395-24	283		
			갈현동 395-7	437		
			갈현동 395-25	242		
			갈현동 395-27	40		
			갈현동 395-8	13		
			갈현동 395-8	156	483	• 공동개발(지정)
			갈현동 395-30	142		
			갈현동 395-10	185		
			갈현동 395-12	174		
			갈현동 395-13	180		
			갈현동 395-14	150		
			갈현동 395-15	133		
			갈현동 395-17	308		
			갈현동 395-9	188		
			갈현동 395-29	153		
			갈현동 395-28	144		
			갈현동 395-11(도)	40		
			갈현동 395-35(도)	6		
			갈현동 395-16(도)	30		
			갈현동 395-36(도)	5		

※ 가구 내 포함된 도로 면적은 cad 구적 값으로 실제 현황과 다를 수 있음.

구분	가구 번호	가구면적 (㎡)	위치	대지면적 (㎡)	공동개발면적 (㎡)	비고
기정	A2	4,645	갈현1동 396-1	426	926	• 공동개발(지정)
			갈현1동 396-2	265		
			갈현1동 396-3	235		
			갈현1동 396-4	243	531	• 공동개발(지정) • 398-22는 398-8에서 분할
			갈현1동 396-5	84		
			갈현1동 396-8	192		
			갈현1동 396-22	12		
			갈현1동 396-6	136	383	• 공동개발(지정)
			갈현1동 396-7	143		
			갈현1동 396-21	104		
			갈현1동 396-16	855		
			갈현1동 396-17	446	791	• 공동개발(지정)
			갈현1동 396-9	345		
			갈현1동 396-11	149	497	• 공동개발(지정) • 396-23은 396-15에서 분할
			갈현1동 396-14	162		
			갈현1동 396-15	99		
			갈현1동 396-23	87		
			갈현1동 396-12	398	662	• 공동개발(지정)
			갈현1동 396-13	264		
변경	A2	4,800	갈현동 396-1	426		
			갈현동 396-2	265		
			갈현동 396-3	235		
			갈현동 396-4	243		
			갈현동 396-5	84		
			갈현동 396-8	192		
			갈현동 396-22	12		
			갈현동 396-6	136	383	• 공동개발(지정)
			갈현동 396-7	143		
			갈현동 396-21	104		
			갈현동 396-16	855		
			갈현동 396-17	446		
			갈현동 396-9	345		
			갈현동 396-11	149		
			갈현동 396-14	162		
			갈현동 396-15	99		
			갈현동 396-23	87		
			갈현동 396-12	398		
			갈현동 396-13	264		
			갈현동 396-10(도)	155		

※ 가구 내 포함된 도로 면적은 cad 구적 값으로 실제 현황과 다를 수 있음.

구분	가구 번호	가구면적 (㎡)	위치	대지면적 (㎡)	공동개발면적 (㎡)	비고
기정	A3	2,813	갈현1동 398-7	242		
			갈현1동 398-8	266	549	• 공동개발(지정)
			갈현1동 398-10	164		
			갈현1동 398-12	119		
			갈현1동 398-9	165		
			갈현1동 398-6	454		
			갈현1동 398-11	352		
			갈현1동 398-5	332	569	• 공동개발(지정)
			갈현1동 398-4	237		
			갈현1동 398-3	243		
			갈현1동 398-2	67		
			갈현1동 398-1	172		
변경	A3	2,813	갈현동 398-7	242		
			갈현동 398-8	266		
			갈현동 398-10	164		
			갈현동 398-12	119		
			갈현동 398-9	165		
			갈현동 398-6	454		
			갈현동 398-11	352		
			갈현동 398-5	332		
			갈현동 398-4	237		
			갈현동 398-3	243		
			갈현동 398-2	67		
			갈현동 398-1	172		

※ 가구 내 포함된 도로 면적은 cad 구적 값으로 실제 현황과 다를 수 있음.

구분	가구 번호	가구면적 (㎡)	위치	대지면적 (㎡)	공동개발면적 (㎡)	비고
기정	A4	4,681	갈현2동 456-1	185	385	• 공동개발(지정)
			갈현2동 456-33	200		
			갈현2동 456-36	365		
			갈현2동 456-2	686		
			갈현2동 456-3	293		
			갈현2동 456-19	176		
			갈현2동 456-15	183		
			갈현2동 456-10	186		
			갈현2동 456-8	174		
			갈현2동 456-5	284		
			갈현2동 456-32	244		
			갈현2동 456-6	124		
			갈현2동 456-7	177		
			갈현2동 456-11	174		
			갈현2동 456-14	165		
			갈현2동 456-18	166		
			갈현2동 456-21	133	267	• 공동개발(지정)
			갈현2동 456-20	134		
			갈현2동 456-22	135		
			갈현2동 456-17	167		
			갈현2동 456-13	164		
			갈현2동 456-12	166		
변경	A4	4,844	갈현동 456-1	185		
			갈현동 456-33	200		
			갈현동 456-36	365		
			갈현동 456-2	686		
			갈현동 456-3	293		
			갈현동 456-19	176		
			갈현동 456-15	183		
			갈현동 456-10	186		
			갈현동 456-8	174		
			갈현동 456-5	284		
			갈현동 456-32	244		
			갈현동 456-6	124		
			갈현동 456-7	177		
			갈현동 456-11	174		
			갈현동 456-14	165		
			갈현동 456-18	166		
			갈현동 456-21	133		
			갈현동 456-20	134		
			갈현동 456-22	135		
			갈현동 456-17	167		
			갈현동 456-13	164		
			갈현동 456-12	166		
			갈현동 456-16(도)	83		
			갈현동 456-29(도)	38		
			갈현동 456-9(도)	42		

※ 가구 내 포함된 도로 면적은 cad 구적 값으로 실제 현황과 다를 수 있음.

구분	가구 번호	가구면적 (㎡)	위치	대지면적 (㎡)	공동개발면적 (㎡)	비고
기정	A5	1,988	갈현2동 456-27	405	906	• 공동개발(권장)
			갈현2동 456-28	501		
			갈현2동 456-34	142	667	• 공동개발(지정) • 역세권청년주택(공공민간임대주택)사업
			갈현2동 456-26	168		
			갈현2동 456-25	168		
			갈현2동 456-31	189		
			갈현2동 456-4	192	415	• 공동개발(권장)
			갈현2동 456-24	223		
변경	A5	1,988	갈현동 456-27	405		
			갈현동 456-28	501		
			갈현동 456-34	142	667	• 공동개발(지정) • 역세권청년주택(공공민간임대주택)사업
			갈현동 456-26	168		
			갈현동 456-25	168		
			갈현동 456-31	189		
			갈현동 456-4	192		
			갈현동 456-24	223		
기정	B1	1,447	불광3동 484-76	250		
			불광3동 484-75	286		
			불광3동 484-74	84	246	• 공동개발(지정)
			불광3동 484-319	162		
			불광3동 484-73	252		
			불광3동 484-189	2	221	• 공동개발(지정)
			불광3동 484-72	212		
			불광3동 484-174	7		
			불광3동 484-71	192		
변경	B1	1,447	불광동 484-76	250		
			불광동 484-75	286		
			불광동 484-74	84	246	• 공동개발(지정)
			불광동 484-319	162		
			불광동 484-73	252		
			불광동 484-189	2	221	• 공동개발(지정)
			불광동 484-72	219		
			불광동 484-71	192		

※ 가구 내 포함된 도로 면적은 cad 구적 값으로 실제 현황과 다를 수 있음.

구분	가구 번호	가구면적 (㎡)	위치	대지면적 (㎡)	공동개발면적 (㎡)	비고
기정	B2	3,195	불광3동 484-56	341		• 484-303과 합병
			불광3동 484-223	169		
			불광3동 484-243	294		
			불광3동 484-57	261		
			불광3동 484-58	179		
			불광3동 484-59	152		
			불광3동 484-61	235		
			불광3동 484-60	172		
			불광3동 484-325	11	155	• 공동개발(지정)
			불광3동 484-64	144		
			불광3동 484-66	195		
			불광3동 484-63	410		• 484-65와 합병
			불광3동 486-10	215		
			불광3동 486-13	202		
			불광3동 486-14	215		
변경	B2	3552	불광동 484-56	341		
			불광동 484-223	169		
			불광동 484-243	294		
			불광동 484-57	261		
			불광동 484-58	179		
			불광동 484-59	152		
			불광동 484-61	235		
			불광동 484-60	172		
			불광동 484-325	11	155	• 공동개발(지정)
			불광동 484-64	144		
			불광동 484-66	195		
			불광동 484-63	410		
			불광동 486-10	215		
			불광동 486-13	202		
			불광동 486-14	215		
			불광동 484-1(도)	254		
			불광동 484-230(도)	65		
			불광동 484-304(도)	38		

※ 가구 내 포함된 도로 면적은 cad 구적 값으로 실제 현황과 다를 수 있음.

구분	가구 번호	가구면적 (㎡)	위치	대지면적 (㎡)	공동개발면적 (㎡)		비고
기정	B3	1,782	불광3동 484-70	125	244	826	• 공동개발(권장) : 826㎡ - 484-70, 486-33, 486-17, 486-19
			불광3동 486-33	119			
			불광3동 486-18	208	582		• 공동개발(지정) : 582㎡ - 486-17, 486-18, 486-19
			불광3동 486-19	159			
			불광3동 486-17	215			
			불광3동 486-16	159			
			불광3동 486-15	198			
			불광3동 486-22	205			
			불광3동 486-21	192			
			불광3동 486-20	202			
변경	B3	1,782	불광동 484-70	125			
			불광동 486-33	119			
			불광동 486-18	208			
			불광동 486-19	159			
			불광동 486-17	215			
			불광동 486-16	159			
			불광동 486-15	198			
			불광동 486-22	205			
			불광동 486-21	192			
			불광동 486-20	202			
기정	B4	4,698	불광3동 486-25	638	820		• 공동개발(지정)
			불광3동 311-3	182			
			불광3동 311-13	3,136			
			불광3동 486-3	46	323		• 공동개발(지정)
			불광3동 486-1	277			
			불광3동 486-2	419			
변경	B4	4,863	불광동 486-25	638			
			불광동 311-3	182	3483		• 공동개발(권장) - 311-3, 311-13, 310-16
			불광동 311-13	3,136			
			불광동 310-16	165			
			불광동 486-3	46			• 공동개발(지정)
			불광동 486-1	277			
			불광동 486-2	419			

※ 가구 내 포함된 도로 면적은 cad 구적 값으로 실제 현황과 다를 수 있음.

구분	가구 번호	가구면적 (㎡)	위치	대지면적 (㎡)	공동개발면적 (㎡)	비고
기정	B5	9,070	불광3동 312-155	1	9,070	• 흥창물산부지 특별계획구역
			불광3동 310-123	226		
			불광3동 310-124	175		
			불광3동 310-29	175		
			불광3동 310-30	208		
			불광3동 309-30	4		
			불광3동 310-28	393		
			불광3동 310-26	175		
			불광3동 313-2	41		
			불광3동 310-22	205		
			불광3동 310-21	182		
			불광3동 310-23	169		
			불광3동 310-24	182		
			불광3동 310-20	165		
			불광3동 313-3	180		
			불광3동 313-10	155		
			불광3동 310-17	188		
			불광3동 310-18	165		
			불광3동 310-81	188		
			불광3동 310-80	221		
			불광3동 313-9	132		
			불광3동 313-8	110		
			불광3동 310-12	156		
			불광3동 310-31	193		
			불광3동 310-78	100		
			불광3동 314-34	337		

※ 가구 내 포함된 도로 면적은 cad 구적 값으로 실제 현황과 다를 수 있음.

구분	가구 번호	가구면적 (㎡)	위치	대지면적 (㎡)	공동개발면적 (㎡)	비고
기정	B5	9,070	불광3동 310-192	182	9,070	흥창물산부지 특별계획구역
			불광3동 310-193	21		
			불광3동 310-211	13		
			불광3동 310-212	13		
			불광3동 310-213	24		
			불광3동 310-214	18		
			불광3동 310-215	6		
			불광3동 310-216	10		
			불광3동 310-220	82		
			불광3동 310-232	5		
			불광3동 310-233	7		
			불광3동 310-234	14		
			불광3동 310-235	26		
			불광3동 310-237	12		
			불광3동 310-238	468		
			불광3동 310-241	14		
			불광3동 310-242	14		
			불광3동 310-243	27		
			불광3동 310-244	4		
			불광3동 310-245	15		
			불광3동 310-246	18		
			불광3동 310-247	13		
			불광3동 310-250	8		
			불광3동 310-251	9		
			불광3동 310-252	7		
			불광3동 310-253	10		
			불광3동 310-254	18		
			불광3동 310-255	15		
			불광3동 310-256	15		
			불광3동 310-257	16		
			불광3동 310-258	16		
			불광3동 310-259	15		
			불광3동 310-260	14		
			불광3동 310-261	14		

※ 가구 내 포함된 도로 면적은 cad 구적 값으로 실제 현황과 다를 수 있음.

구분	가구 번호	가구면적 (㎡)	위치	대지면적 (㎡)	공동개발면적 (㎡)	비고
기정	B5	9,070	불광3동 310-262	16	9,070	흥창물산부지 특별계획구역
			불광3동 310-263	16		
			불광3동 310-264	14		
			불광3동 310-265	14		
			불광3동 310-266	14		
			불광3동 310-267	13		
			불광3동 310-268	28		
			불광3동 310-269	13		
			불광3동 310-270	14		
			불광3동 310-271	14		
			불광3동 310-272	5		
			불광3동 310-273	25		
			불광3동 310-274	21		
			불광3동 310-275	6		
			불광3동 310-276	1		
			불광3동 310-277	19		
			불광3동 310-287	3		
			불광3동 310-288	5		
			불광3동 310-290	745		
			불광3동 310-310	38		
			불광3동 310-312	3		
			불광3동 310-314	3		
			불광3동 310-320	6		
			불광3동 310-4	390		
			불광3동 311-10	41		
			불광3동 311-12	91		
			불광3동 311-5	3		
			불광3동 311-6	129		
			불광3동 312-152	7		
			불광3동 488-13	3		
			불광3동 310-202	32		
			불광3동 310-125	155		
			불광3동 310-176	162		
			불광3동 310-177	162		
			불광3동 310-178	162		
			불광3동 310-179	202		
			불광3동 310-1	199		
			불광3동 310-25	102		
			불광3동 310-19	46		
			불광3동 310-79	42		
			불광3동 309-6	289		
			불광3동 310-286	1		
			불광3동 314-31	223		
			불광3동 488-12	4		

※ 가구 내 포함된 도로 면적은 cad 구적 값으로 실제 현황과 다를 수 있음.

구분	가구 번호	가구면적 (㎡)	위치	대지면적 (㎡)	공동개발면적 (㎡)	비고
변경	B5	9,076	불광동 312-155	1	4,731	흥창물산부지 특별계획구역
			불광동 310-123	226		
			불광동 310-124	175		
			불광동 310-29	175		
			불광동 310-30	208		
			불광동 309-30	4		
			불광동 310-192	182		
			불광동 310-193	21		
			불광동 310-211	13		
			불광동 310-212	13		
			불광동 310-213	24		
			불광동 310-214	18		
			불광동 310-215	6		
			불광동 310-216	10		
			불광동 310-220	82		
			불광동 310-232	5		
			불광동 310-233	7		
			불광동 310-234	14		
			불광동 310-235	26		
			불광동 310-237	12		
			불광동 310-238	468		
			불광동 310-241	14		
			불광동 310-242	14		
			불광동 310-243	27		
			불광동 310-244	4		
			불광동 310-245	15		
			불광동 310-246	18		
			불광동 310-247	13		
			불광동 310-250	8		
			불광동 310-251	9		
			불광동 310-252	7		
			불광동 310-253	10		
			불광동 310-254	18		
			불광동 310-255	15		
			불광동 310-256	15		
			불광동 310-257	16		
			불광동 310-258	16		
			불광동 310-259	15		
			불광동 310-260	14		
			불광동 310-261	14		
			불광동 310-262	16		
			불광동 310-263	16		
			불광동 310-264	14		
			불광동 310-265	14		

※ 가구 내 포함된 도로 면적은 cad 구적 값으로 실제 현황과 다를 수 있음.

구분	가구 번호	가구면적 (㎡)	위치	대지면적 (㎡)	공동개발면적 (㎡)	비고
변경	B5	9,076	불광동 310-266	14	5,340	흥창물산부지 특별계획구역
			불광동 310-267	13		
			불광동 310-268	28		
			불광동 310-269	13		
			불광동 310-270	14		
			불광동 310-271	14		
			불광동 310-272	5		
			불광동 310-273	25		
			불광동 310-274	21		
			불광동 310-275	6		
			불광동 310-276	1		
			불광동 310-277	19		
			불광동 310-287	3		
			불광동 310-288	5		
			불광동 310-290	745		
			불광동 310-310	38		
			불광동 310-312	3		
			불광동 310-314	3		
			불광동 310-320	6		
			불광동 310-4	390		
			불광동 311-10	41		
			불광동 311-12	91		
			불광동 311-5	3		
			불광동 311-6	129		
			불광동 312-152	7		
			불광동 488-13	3		
			불광동 310-202	32		
			불광동 310-125	155		
			불광동 310-176	162		
			불광동 310-177	162		
			불광동 310-178	162		
			불광동 310-179	202		
			불광동 310-1	199		
			불광동 310-286	1		
			불광동 488-12	4		
			불광동 310-26	393		
			불광동 310-28	175		
			불광동 313-2	11		

※ 가구 내 포함된 도로 면적은 cad 구적 값으로 실제 현황과 다를 수 있음.

구분	가구 번호	가구면적 (㎡)	위치	대지면적 (㎡)	공동개발면적 (㎡)	비고
변경	B5	9,076	불광동 310-22	205	3,736	흥창물산부지 특별계획가능구역
			불광동 310-21	182		
			불광동 310-23	169		
			불광동 310-24	182		
			불광동 310-20	165		
			불광동 313-3	180		
			불광동 313-10	155		
			불광동 310-17	188		
			불광동 310-18	165		
			불광동 310-81	188		
			불광동 310-80	221		
			불광동 313-9	132		
			불광동 313-8	110		
			불광동 310-12	156		
			불광동 310-31	193		
			불광동 310-78	100		
			불광동 314-34	337		
			불광동 310-25	102		
			불광동 310-19	46		
			불광동 310-79	42		
			불광동 314-31	223		
			불광동 309-38(도)	295		

※ 가구 내 포함된 도로 면적은 cad 구적 값으로 실제 현황과 다를 수 있음.

구분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치	대지면적(㎡)	공동개발면적(㎡)	비고
기정	B6	2,655	불광3동 310-100	13	2,655	연서시장 특별계획구역
			불광3동 310-101	12		
			불광3동 310-102	14		
			불광3동 310-103	19		
			불광3동 310-11	51		
			불광3동 310-118	16		
			불광3동 310-119	8		
			불광3동 310-120	9		
			불광3동 310-121	15		
			불광3동 310-122	3		
			불광3동 310-127	195		
			불광3동 310-129	101		
			불광3동 310-13	32		
			불광3동 310-130	403		
			불광3동 310-131	19		
			불광3동 310-132	30		
			불광3동 310-133	25		
			불광3동 310-134	24		
			불광3동 310-135	22		
			불광3동 310-136	20		
			불광3동 310-137	6		
			불광3동 310-139	2		
			불광3동 310-14	2		
			불광3동 310-140	8		
			불광3동 310-143	7		
			불광3동 310-144	7		
			불광3동 310-148	8		
			불광3동 310-149	7		
			불광3동 310-15	374		
			불광3동 310-151	4		
			불광3동 310-152	3		
			불광3동 310-155	2		
			불광3동 310-156	11		
			불광3동 310-157	11		
			불광3동 310-158	10		
			불광3동 310-159	11		
			불광3동 310-16	165		
			불광3동 310-160	18		
			불광3동 310-161	24		
			불광3동 310-162	12		
			불광3동 310-163	16		
			불광3동 310-164	16		
			불광3동 310-165	15		
			불광3동 310-166	15		
			불광3동 310-167	16		
			불광3동 310-168	16		
			불광3동 310-169	15		
			불광3동 310-170	15		
			불광3동 310-171	16		
			불광3동 310-172	16		
			불광3동 310-173	15		
			불광3동 310-174	16		

※ 가구 내 포함된 도로 면적은 cad 구적 값으로 실제 현황과 다를 수 있음.

구분	가구 번호	가구면적 (㎡)	위치	대지면적 (㎡)	공동개발면적 (㎡)	비고
기정	B6	2,655	불광3동 310-175	17	2,655	연서시장 특별계획구역
			불광3동 310-184	4		
			불광3동 310-185	2		
			불광3동 310-186	2		
			불광3동 310-187	4		
			불광3동 310-188	6		
			불광3동 310-189	4		
			불광3동 310-194	26		
			불광3동 310-195	26		
			불광3동 310-196	26		
			불광3동 310-197	20		
			불광3동 310-198	26		
			불광3동 310-199	26		
			불광3동 310-200	26		
			불광3동 310-201	36		
			불광3동 310-203	3		
			불광3동 310-278	4		
			불광3동 310-279	8		
			불광3동 310-280	14		
			불광3동 310-281	13		
			불광3동 310-282	22		
			불광3동 310-283	3		
			불광3동 310-284	1		
			불광3동 310-293	14		
			불광3동 310-294	7		
			불광3동 310-295	2		
			불광3동 310-296	2		
			불광3동 310-298	2		
			불광3동 310-315	5		
			불광3동 310-316	5		
			불광3동 310-35	108		
			불광3동 310-82	18		
			불광3동 310-83	12		
			불광3동 310-84	16		
			불광3동 310-85	14		
			불광3동 310-86	28		
			불광3동 310-87	15		
			불광3동 310-88	14		
			불광3동 310-89	27		
			불광3동 310-90	8		
			불광3동 310-91	9		
			불광3동 310-92	13		
			불광3동 310-93	12		
			불광3동 310-94	12		
			불광3동 310-95	12		
			불광3동 310-96	26		
			불광3동 310-97	18		
			불광3동 310-98	13		
			불광3동 310-99	14		

※ 가구 내 포함된 도로 면적은 cad 구적 값으로 실제 현황과 다를 수 있음.

구분	가구 번호	가구면적 (㎡)	위치	대지면적 (㎡)	공동개발면적 (㎡)	비고
변경	B6	2,672.5	불광동 310-100	13	2,672.5	연서시장 특별계획구역
			불광동 310-101	12		
			불광동 310-102	14		
			불광동 310-103	19		
			불광동 310-11	51		
			불광동 310-118	16		
			불광동 310-119	8		
			불광동 310-120	9		
			불광동 310-121	15		
			불광동 310-122	3		
			불광동 310-127	195		
			불광동 310-129	101		
			불광동 310-13	32		
			불광동 310-130	403		
			불광동 310-131	19		
			불광동 310-132	30		
			불광동 310-133	25		
			불광동 310-134	24		
			불광동 310-135	22		
			불광동 310-136	20		
			불광동 310-137	6		
			불광동 310-139	2		
			불광동 310-14	2		
			불광동 310-140	8		
			불광동 310-143	7		
			불광동 310-144	7		
			불광동 310-148	8		
			불광동 310-149	7		
			불광동 310-15	374		
			불광동 310-151	4		
			불광동 310-152	3		
			불광동 310-155	2		
			불광동 310-156	11		
			불광동 310-157	11		
			불광동 310-158	10		
			불광동 310-159	11		
			불광동 310-160	18		
			불광동 310-161	24		
			불광동 310-162	12		
			불광동 310-163	16		
			불광동 310-164	16		
			불광동 310-165	15		
			불광동 310-166	15		
			불광동 310-167	16		
			불광동 310-168	16		
			불광동 310-169	15		
			불광동 310-170	15		
			불광동 310-171	16		
			불광동 310-172	16		
			불광동 310-173	15		
			불광동 310-174	16		
			불광동 310-175	17		

※ 가구 내 포함된 도로 면적은 cad 구적 값으로 실제 현황과 다를 수 있음.

구분	가구 번호	가구면적 (㎡)	위치	대지면적 (㎡)	공동개발면적 (㎡)	비고
변경	B6	2,672.5	불광동 310-184	4	2,672.5	연서시장 특별계획구역
			불광동 310-185	2		
			불광동 310-186	2		
			불광동 310-187	4		
			불광동 310-188	6		
			불광동 310-189	4		
			불광동 310-194	26		
			불광동 310-195	26		
			불광동 310-196	26		
			불광동 310-197	20		
			불광동 310-198	26		
			불광동 310-199	26		
			불광동 310-200	26		
			불광동 310-201	36		
			불광동 310-203	3		
			불광동 310-278	4		
			불광동 310-279	8		
			불광동 310-280	14		
			불광동 310-281	13		
			불광동 310-282	22		
			불광동 310-283	3		
			불광동 310-284	1		
			불광동 310-293	14		
			불광동 310-294	7		
			불광동 310-295	2		
			불광동 310-296	2		
			불광동 310-298	2		
			불광동 310-315	5		
			불광동 310-316	5		
			불광동 310-35	108		
			불광동 310-82	18		
			불광동 310-83	12		
			불광동 310-84	16		
			불광동 310-85	14		
			불광동 310-86	28		
			불광동 310-87	15		
			불광동 310-88	14		
			불광동 310-89	27		
			불광동 310-90	8		
			불광동 310-91	9		
			불광동 310-92	13		
			불광동 310-93	12		
			불광동 310-94	12		
			불광동 310-95	12		
			불광동 310-96	26		
			불광동 310-97	18		
			불광동 310-98	13		
			불광동 310-99	14		
			불광동 310-183	3		
			불광동 310-105(도)	177		
			불광동 310-107(도)	0.5		
			불광동 310-108(도)	2		

※ 가구 내 포함된 도로 면적은 cad 구적 값으로 실제 현황과 다를 수 있음.

구분	가구 번호	가구면적 (㎡)	위치	대지면적 (㎡)	공동개발면적 (㎡)	비고
기정	C1	5.402	대조동 185-1	545	606	• 공동개발(권장)
			대조동 185-2	61		
			대조동 185-3	108	760	• 공동개발(지정)
			대조동 185-26	21		
			대조동 185-27	22		
			대조동 185-28	20		
			대조동 185-69	274		
			대조동 185-68	95		
			대조동 185-29	32		
			대조동 185-4	188		
			대조동 185-6	245	525	• 공동개발(권장)
			대조동 185-82	280		
			대조동 185-5	532.8	1,455.80	• 공동개발(지정) - 대조동 185-18 필지분할 가능선 지정
			대조동 185-16	111.7		
			대조동 185-18①	183.1		
			대조동 185-72	50		
			대조동 185-81	578.2		
			대조동 185-73	51.6	61.2	• 공동개발(권장)
			대조동 185-18②	9.6		
			대조동 185-35	30	197	• 공동개발(권장)
			대조동 185-34	22		
			대조동 185-33	22		
			대조동 185-32	22		
			대조동 185-31	22		
			대조동 185-30	28		
			대조동 185-74	51		
			대조동 185-13	118	303	• 공동개발(권장)
			대조동 185-14	185		

※ 가구 내 포함된 도로 면적은 cad 구적 값으로 실제 현황과 다를 수 있음.

구분	가구 번호	가구면적 (㎡)	위치	대지면적 (㎡)	공동개발면적 (㎡)	비고
기정	C1	5,402	대조동 185-21	33	1,494	연지시장 특별계획구역
			대조동 185-22	97		
			대조동 185-23	178		
			대조동 185-24	115		
			대조동 185-36	34		
			대조동 185-37	26		
			대조동 185-38	23		
			대조동 185-39	26		
			대조동 185-40	32		
			대조동 185-41	26		
			대조동 185-42	57		
			대조동 185-43	191		
			대조동 185-45	154		
			대조동 185-46	38		
			대조동 185-47	28		
			대조동 185-48	17		
			대조동 185-49	17		
			대조동 185-50	16		
			대조동 185-51	16		
			대조동 185-52	15		
			대조동 185-53	15		
			대조동 185-54	36		
			대조동 185-55	17		
			대조동 185-56	20		
			대조동 185-57	21		
			대조동 185-58	10		
			대조동 185-59	16		
			대조동 185-60	35		
			대조동 185-61	18		
			대조동 185-62	15		
			대조동 185-63	21		
			대조동 185-64	16		
			대조동 185-65	23		
			대조동 185-66	56		
			대조동 185-67	23		
			대조동 185-80	13		

※ 가구 내 포함된 도로 면적은 cad 구적 값으로 실제 현황과 다를 수 있음.

구분	가구 번호	가구면적 (㎡)	위치	대지면적 (㎡)	공동개발면적 (㎡)	비고
변경	C1	5,644	대조동 185-6	245		
			대조동 185-82	280		
			대조동 185-5	532.8	1,455.8	공동개발(지정) 대조동 185-18 필지분할 가능선 지정
			대조동 185-16	111.7		
			대조동 185-18①	183.1		
			대조동 185-72	50		
			대조동 185-81	578.2		
			대조동 185-73	51.6	61.2	공동개발(지정)
			대조동 185-18②	9.6		
			대조동 185-74	51		
			대조동 185-13	118		
			대조동 185-14	185		
			대조동 185-21	33	3,248	연지시장 특별계획구역
			대조동 185-22	97		
			대조동 185-23	178		
			대조동 185-24	115		
			대조동 185-36	34		
			대조동 185-37	26		
			대조동 185-38	23		
			대조동 185-39	26		
			대조동 185-40	32		
			대조동 185-41	26		
			대조동 185-42	57		
			대조동 185-43	191		
			대조동 185-45(도)	154		
			대조동 185-46	38		
			대조동 185-47	28		
			대조동 185-48	17		
			대조동 185-49	17		
			대조동 185-50	16		
			대조동 185-51	16		
			대조동 185-52	15		
			대조동 185-53	15		
			대조동 185-54	36		
			대조동 185-55	17		
			대조동 185-56	20		

※ 가구 내 포함된 도로 면적은 cad 구적 값으로 실제 현황과 다를 수 있음.

구분	가구 번호	가구면적 (㎡)	위치	대지면적 (㎡)	공동개발면적 (㎡)	비고
변경	C1	5,644	대조동 185-57	21	3,248	연지시장 특별계획구역
			대조동 185-58	10		
			대조동 185-59	16		
			대조동 185-60	35		
			대조동 185-61	18		
			대조동 185-62	15		
			대조동 185-63	21		
			대조동 185-64	16		
			대조동 185-65	23		
			대조동 185-66	56		
			대조동 185-67	23		
			대조동 185-80	13		
			대조동 185-1	545		
			대조동 185-26	21		
			대조동 185-4	188		
			대조동 185-29	32		
			대조동 185-31	22		
			대조동 185-32	22		
			대조동 185-20(도)	210		
			대조동 185-3	108		
			대조동 185-69	274		
			대조동 185-2	61		
			대조동 185-27	22		
			대조동 185-28	20		
			대조동 185-68	95		
			대조동 185-19(도)	14		
			대조동 185-79(도)	4		
			대조동 185-30	28		
			대조동 185-76(도)	5		
			대조동 185-77(도)	5		
			대조동 185-78(도)	4		
			대조동 185-33	22		
			대조동 185-35	30		
			대조동 185-34	22		

※ 가구 내 포함된 도로 면적은 cad 구적 값으로 실제 현황과 다를 수 있음.

구분	가구 번호	가구면적 (㎡)	위치	대지면적 (㎡)	공동개발면적 (㎡)	비고
기정	C2	1,662	대조동 185-11	641	1,058	공동개발(지정) 185-8,185-11 공동개발(권장) 185-8,185-10
			대조동 185-8	225		
			대조동 185-10	192		
			대조동 185-71	426		
			대조동 185-70	30	178	공동개발(지정)
			대조동 185-25	148		
변경	C2	1,662	대조동 185-11	641	866	공동개발(지정)
			대조동 185-8	225		
			대조동 185-10	192		
			대조동 185-71	426		
			대조동 185-70	30		
			대조동 185-25	148		
기정	C3	6044.6	대조동 186-1	333	336	공동개발(지정) 186-1,186-11 공동개발(권장) 186-1,186-2
			대조동 186-11	3		
			대조동 186-2	218		
			대조동 186-10	149		
			대조동 186-12	565		186-13,15,18,56 과 합병
			대조동 186-3	260	405	공동개발(지정) 186-3, 186-4
			대조동 186-4	145		
			대조동 186-5	106		공동개발(권장) 186-5, 186-7
			대조동 186-7	75		
			대조동 186-9	128		
			대조동 186-17	220		
			대조동 186-52	169		
			대조동 186-21	296		
			대조동 186-54	124	255.6	공동개발(지정)
			대조동 186-22	131.6		
			대조동 186-53	144	287	공동개발(지정)
			대조동 186-23	143		
			대조동 186-25	1146	1,393	공동개발(권장) 186-26,27,32,34,35,36,37과 합병
			대조동 186-33	247		
			대조동 186-38	3	236	공동개발(지정)
			대조동 186-40	8		
			대조동 186-41	225		
			대조동 186-39	301	581	공동개발(지정)
			대조동 186-46	91		
			대조동 186-47	3.5		
			대조동 186-57	3.5		
			대조동 186-49	182		
			대조동 186-45	166		
			대조동 186-43	186		
			대조동 186-44	277		

※ 가구 내 포함된 도로 면적은 cad 구적 값으로 실제 현황과 다를 수 있음.

구분	가구 번호	가구면적 (㎡)	위치	대지면적 (㎡)	공동개발면적 (㎡)	비고
변경	C3	6,427.6	대조동 186-1	333		
			대조동 186-11	3		
			대조동 186-2	218		
			대조동 186-10	149		
			대조동 186-12	565		
			대조동 186-3	260		
			대조동 186-4	145		
			대조동 186-5	106		
			대조동 186-7	75		
			대조동 186-9	128		
			대조동 186-17	220		
			대조동 186-52	169		
			대조동 186-21	296		
			대조동 186-54	124		
			대조동 186-22	131.6		
			대조동 186-53	144		
			대조동 186-23	143		
			대조동 186-25	1146		
			대조동 186-33	247		
			대조동 186-38	3	236	공동개발(지정)
			대조동 186-40	8		
			대조동 186-41	225		
			대조동 186-39	301		
			대조동 186-46	91		
			대조동 186-47	3.5		
			대조동 186-57	3.5		
			대조동 186-49	182		
			대조동 186-45	166		
			대조동 186-43	186		
			대조동 186-44	277		
			대조동 186-50(도)	267		
			대조동 186-42(도)	56		
			대조동 186-19(도)	7		
			대조동 186-20(도)	17		
			대조동 186-6(도)	12		
			대조동 186-24(도)	18		
			대조동 186-8(도)	2		

※ 가구 내 포함된 도로 면적은 cad 구적 값으로 실제 현황과 다를 수 있음.

구분	가구 번호	가구면적 (㎡)	위치	대지면적 (㎡)	공동개발면적 (㎡)	비고
기정	C4	4,652	대조동 198-1	96		
			대조동 198-2	59		
			대조동 198-26	33		
			대조동 198-20	36		
			대조동 198-4	657	664	공동개발(지정)
			대조동 198-15	7		
			대조동 198-5	122	223	공동개발(지정)
			대조동 198-6	101		
			대조동 198-7	101		198-16과 합병
			대조동 198-17	6	104	공동개발(지정)
			대조동 198-8	93		
			대조동 198-18	5		
			대조동 198-22	63		
			대조동 198-21	52		
			대조동 198-3	66		
			대조동 198-10	991		
			대조동 198-19	5	1,181	공동개발(지정)
			대조동 198-27	1,176		
			대조동 198-11	139	270	공동개발(지정)
			대조동 198-12	131		
			대조동 198-13	222		
			대조동 198-23	168		
			대조동 198-24	164		
			대조동 198-25	159		
변경	C4	4,771	대조동 198-1	96		
			대조동 198-2	59		
			대조동 198-26	33		
			대조동 198-20	36		
			대조동 198-4	657		
			대조동 198-15	7		
			대조동 198-5	122		
			대조동 198-6	101		
			대조동 198-7	101		
			대조동 198-17	6		
			대조동 198-8	93		
			대조동 198-18	5		
			대조동 198-22	63		
			대조동 198-21	52		
			대조동 198-3	66		
			대조동 198-10	991		
			대조동 198-19	5		
			대조동 198-27	1,176		
			대조동 198-11	139		
			대조동 198-12	131		
			대조동 198-13	222		
			대조동 198-23	168		
			대조동 198-24	164		
			대조동 198-25	159		
			대조동 198-9(도)	119		

※ 가구 내 포함된 도로 면적은 cad 구적 값으로 실제 현황과 다를 수 있음.

구분	가구 번호	가구면적 (㎡)	위치	대지면적 (㎡)	공동개발면적 (㎡)	비고
기정	C5	6,264	대조동 197-1	1,227		
			대조동 197-2	350		
			대조동 197-3	621	1,242	공동개발(지정)
			대조동 197-22	621		
			대조동 197-26	165		
			대조동 197-25	165		
			대조동 197-20	245		
			대조동 197-18	270		
			대조동 197-19	211		
			대조동 197-5	168		
			대조동 197-24	165		
			대조동 197-23	165		
			대조동 197-4	174		
			대조동 197-6	161		
			대조동 197-8	153		
			대조동 197-9	155	310	공동개발(지정)
			대조동 197-10	155		
			대조동 197-11	155		
			대조동 197-12	155		
			대조동 197-13	311		
			대조동 197-15	156		
			대조동 197-16	157		
			대조동 197-17	159		
변경	C5	6,264	대조동 197-1	1,227		
			대조동 197-2	350		
			대조동 197-3	621	1,242	공동개발(지정)
			대조동 197-22	621		
			대조동 197-26	165		
			대조동 197-25	165		
			대조동 197-20	245		
			대조동 197-18	270		
			대조동 197-19	211		
			대조동 197-5	168		
			대조동 197-24	165		
			대조동 197-23	165		
			대조동 197-4	174		
			대조동 197-6	161		
			대조동 197-8	153		
			대조동 197-9	155		
			대조동 197-10	155		
			대조동 197-11	155		
			대조동 197-12	155		
			대조동 197-13	311		
			대조동 197-15	156		
			대조동 197-16	157		
			대조동 197-17	159		
			대조동 197-7(도)	257		

※ 가구 내 포함된 도로 면적은 cad 구적 값으로 실제 현황과 다를 수 있음.

구분	가구 번호	가구면적 (㎡)	위치	대지면적 (㎡)	공동개발면적 (㎡)	비고
기정	D1	3,805	불광2동 309-20	4	88	공동개발(지정)
			불광2동 309-17	28		
			불광2동 320-44	9		
			불광2동 320-19	47		
			불광2동 309-16	28	365	공동개발(지정)
			불광2동 320-1	337		
			불광2동 320-17	234	261	공동개발(지정)
			불광2동 319-33	27		
			불광2동 319-37	27	226	공동개발(지정)
			불광2동 319-36	24		
			불광2동 319-10	175		
			불광2동 319-35	22	410	공동개발(지정)
			불광2동 319-34	17		
			불광2동 319-1	9		
			불광2동 319-9	162		
			불광2동 319-2	200		
			불광2동 319-13	169		
			불광2동 319-14	172		
			불광2동 319-17	165		
			불광2동 319-18	195		
			불광2동 319-21	208		
			불광2동 319-20	178		
			불광2동 319-19	155		
			불광2동 319-16	165		
			불광2동 319-15	155		
			불광2동 319-12	175		
			불광2동 319-11	162		
			불광2동 319-8	169		공동개발(지정)
			불광2동 319-7	238		
			불광2동 319-6	93		

※ 가구 내 포함된 도로 면적은 cad 구적 값으로 실제 현황과 다를 수 있음.

구분	가구 번호	가구면적 (㎡)	위치	대지면적 (㎡)	공동개발면적 (㎡)	비고
변경	D1	3,880	불광동 309-20	4		
			불광동 309-17	28		
			불광동 320-44	9		
			불광동 320-19	47		
			불광동 309-16	28		
			불광동 320-1	337		
			불광동 320-17	234		
			불광동 319-33	27		
			불광동 319-37	27		
			불광동 319-36	24		
			불광동 319-10	175		
			불광동 319-35	22		
			불광동 319-34	17		
			불광동 319-1	9		
			불광동 319-9	162		
			불광동 319-2	200		
			불광동 319-13	169		
			불광동 319-14	172		
			불광동 319-17	165		
			불광동 319-18	195		
			불광동 319-21	208		
			불광동 319-20	178		
			불광동 319-19	155		
			불광동 319-16	165		
			불광동 319-15	155		
			불광동 319-12	175		
			불광동 319-11	162		
			불광동 319-8	169		
			불광동 319-7	238		
			불광동 319-6	93		
			불광동 309-37(도)	75		

※ 가구 내 포함된 도로 면적은 cad 구적 값으로 실제 현황과 다를 수 있음.

구분	가구 번호	가구면적 (㎡)	위치	대지면적 (㎡)	공동개발면적 (㎡)	비고
기정	D2	3,644	불광2동 319-25	155		
			불광2동 319-26	149		
			불광2동 319-27	149		
			불광2동 319-28	149		
			불광2동 319-29	149		
			불광2동 319-30	149		
			불광2동 319-31	152		
			불광2동 319-32	165	175	공동개발(권장)
			불광2동 321-12	10		
			불광2동 320-29	192		
			불광2동 320-28	195		
			불광2동 320-27	195		
			불광2동 320-26	195		
			불광2동 320-34	157		
			불광2동 320-45	3	210	공동개발(지정)
			불광2동 320-10	207		
			불광2동 320-13	436		
			불광2동 320-16	377		
			불광2동 320-39	126		
			불광2동 320-36	23		
			불광2동 320-33	10	311	공동개발(권장)
			불광2동 320-30	205		
			불광2동 320-31	96		
변경	D2	3,924	불광동 319-25	155		
			불광동 319-26	149		
			불광동 319-27	149		
			불광동 319-28	149		
			불광동 319-29	149		
			불광동 319-30	149		
			불광동 319-31	152		
			불광동 319-32	165		
			불광동 321-12	10		
			불광동 320-29	192		
			불광동 320-28	195		
			불광동 320-27	195		
			불광동 320-26	195		
			불광동 320-34	157		
			불광동 320-45(도)	3		
			불광동 320-10	207		
			불광동 320-13	436		
			불광동 320-16	377		
			불광동 320-39	126		
			불광동 320-36	23		
			불광동 320-33	10		
			불광동 320-30	205		
			불광동 320-31	96		
			불광동 320-32(도)	13		
			불광동 320-35(도)	3		
			불광동 320-25(도)	264		

※ 가구 내 포함된 도로 면적은 cad 구적 값으로 실제 현황과 다를 수 있음.

구분	가구 번호	가구면적 (㎡)	위치	대지면적 (㎡)	공동개발면적 (㎡)	비고
기정	D3	14,177	불광2동 327-1	114		
			불광2동 327-7	110		
			불광2동 327-8	116		
			불광2동 327-3	119		
			불광2동 327-16	89		
			불광2동 327-17	89		
			불광2동 327-10	152		
			불광2동 327-11	150		
			불광2동 327-15	7	73	• 공동개발(지정)
			불광2동 326-6	66		
			불광2동 326-1	192		
			불광2동 326-2	126		
			불광2동 326-8	122		
			불광2동 326-10	172		
			불광2동 326-9	264		• 326-9, 326-9와 합병
			불광2동 325-1	102		
			불광2동 325-2	126		
			불광2동 325-3	231		
			불광2동 325-4	159		
			불광2동 324-1	17	159	• 공동개발(지정) – 324-1, 324-2 • 공동개발(권장) – 324-2, 324-3
			불광2동 324-2	139		
			불광2동 323-3	3		
			불광2동 323-5	192		
			불광2동 324-3	145		
			불광2동 324-4	145		
			불광2동 324-5	175		
			불광2동 324-6	79		
			불광2동 327-18(도)	31		
			불광2동 299-7	17	129	• 공동개발(지정) – 299-2, 299-5 • 공동개발(권장) – 299-7, 299-2
			불광2동 299-2	105		
			불광2동 299-5	7		
			불광2동 323-7	169		
			불광2동 323-6	165		
			불광2동 323-9	195		
			불광2동 323-10	242		
			불광2동 323-29	128	1,287	• 공동개발(지정) • 역세권청년주택(공공민간임대주택)사업
			불광2동 323-28	116		
			불광2동 323-11	132		
			불광2동 323-1	132		
			불광2동 323-15	142		
			불광2동 323-21	489		
			불광2동 323-14(도)	59		
			불광2동 323-20(도)	89		
			불광2동 323-8	185		

※ 가구 내 포함된 도로 면적은 cad 구적 값으로 실제 현황과 다를 수 있음.

구분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치	대지면적(㎡)	공동개발면적(㎡)		비고	
기정	D3	14,177	불광2동 323-8	185				
			불광2동 299-1	123				
			불광2동 327-25	23				
			불광2동 299-3	205				
			불광2동 32-26	30				
			불광2동 323-33	91	7,992		• 운동장시설용지 특별계획구역	
			불광2동 323-39	27				
			불광2동 323-43	23				
			불광2동 323-38	6				
			불광2동 322-6	29				
			불광2동 322-2	331				
			불광2동 322-3	3435				
			불광2동 320-41	20				
			불광2동 323-2	1430				
			불광2동 323-41	115				
			불광2동 321-7	653				
			불광2동 320-21	6				
			불광2동 322-5	104				
			불광2동 322-1	385				
			불광2동 320-22	298				
			불광2동 323-42	112				
			불광2동 323-40	239				
			불광2동 309	265				
			불광2동 309-22	224				
			불광2동 323-18	159				
			불광2동 322-4	40				
변경	D3	13,883	불광동 323-29	128	1,287		• 공동개발(지정) • 역세권청년주택(공공민간임대주택)사업	
			불광동 323-28	116				
			불광동 323-11	132				
			불광동 323-1	132				
			불광동 323-15	142				
			불광동 323-21	489				
			불광동 323-14(도)	59				
			불광동 323-20(도)	89				
			불광동 327-1	114	5,099		• 불광동 325-4번지 특별계획 가능구역	
			불광동 327-7	110				
			불광동 327-8	116				
			불광동 327-3	119				
			불광동 327-16	89				
			불광동 327-11	150				
			불광동 327-10	152				
			불광동 327-17	89				
			불광동 327-15	7		162		• 공동개발(권장)
			불광동 326-6	66				
			불광동 326-1	192				
			불광동 326-2	126				
			불광동 326-8	122				
			불광동 326-10	172				
			불광동 326-9	264				

※ 가구 내 포함된 도로 면적은 cad 구적 값으로 실제 현황과 다를 수 있음.

구분	가구 번호	가구면적 (㎡)	위치	대지면적 (㎡)		공동개발면적 (㎡)		비고	
변경	D3	13,883	불광동 327-21(도)	5,099	6	5,099		불광동 325-4번지 특별계획 가능구역	
			불광동 325-1		102				
			불광동 325-2		126				
			불광동 325-3		231				
			불광동 325-4		159				
			불광동 324-1(도)		17				
			불광동 324-2		139				
			불광동 323-3		3		334		공동개발(권장)
			불광동 323-5		192				
			불광동 324-3		145				
			불광동 324-4		145				
			불광동 324-5		175				
			불광동 324-6		79				
			불광동 327-18(도)		31				
			불광동 299-7		17				
			불광동 299-2		105				
			불광동 299-5		7				
			불광동 323-7		169				
			불광동 323-6		165				
			불광동 323-9		195				
			불광동 323-10		242				
			불광동 323-8		185				
			불광동 299-1		123				
			불광동 327-25		23				
			불광동 299-3		205				
			불광동 327-26		30				
			불광동 327-12(도)		17				
			불광동 326-5		106				
			불광동 324-7(도)		4				
			불광동 327-9(도)		40				
			불광동 327-20(도)		28				
			불광동 323-33	91		7,497		운동장시설용지 특별계획구역	
			불광동 323-39	27					
			불광동 322-6	29					
			불광동 322-2	331					
			불광동 322-3	3435					
			불광동 320-41	20					
			불광동 323-2	1430					
			불광동 321-7	653					
			불광동 320-21	6					
			불광동 322-5	104					
			불광동 322-1	385					
			불광동 320-22	298					
			불광동 309	265					
			불광동 309-22	224					
			불광동 323-18	159					
			불광동 322-4	40					

※ 가구 내 포함된 도로 면적은 cad 구적 값으로 실제 현황과 다를 수 있음.

구분	가구 번호	가구면적 (㎡)	위치	대지면적 (㎡)	공동개발면적 (㎡)	비고
기정	D4	11,146	불광2동 307	359	1,043	• 공동개발(지정) - 307, 307-5, 307-8 • 공동개발(권장) - 307, 307-7, 307-8
			불광2동 307-5	46		
			불광2동 307-7	89		
			불광2동 307-8	549		
			불광2동 304-2	1,016	1,254	• 공동개발(지정) - 304-2, 304-3, 306-5
			불광2동 304-3	235		
			불광2동 306-5	3		
			불광2동 305-1	150		
			불광2동 304-1	215	8,699	• 연신내 특별계획구역
			불광2동 304-5	251		
			불광2동 304-17	277		
			불광2동 304-18	126		
			불광2동 304-21	1,090		
			불광2동 305-3	2,108		
			불광2동 305-7	165		
			불광2동 305-8	192		
			불광2동 305-9	206		
			불광2동 305-10	142		
			불광2동 305-11	152		
			불광2동 305-13	152		
			불광2동 305-14	155		
			불광2동 305-15	159		
			불광2동 305-16	182		
			불광2동 305-18	337		
			불광2동 305-19	182		
			불광2동 305-20	162		
			불광2동 305-21	245		
			불광2동 305-22	264		
			불광2동 305-35	1,935		
			불광2동 305-40	2		

※ 가구 내 포함된 도로 면적은 cad 구적 값으로 실제 현황과 다를 수 있음.

구분	가구 번호	가구면적 (㎡)	위치	대지면적 (㎡)	공동개발면적 (㎡)	비고
변경	D4	11,146.7	불광동 307	359		
			불광동 307-5	46		
			불광동 307-7	89		
			불광동 307-8	549		
			불광동 304-2	1,016		
			불광동 304-3	235		
			불광동 306-5	3		
			불광동 305-1	150		
			불광동 304-1	8,699.7	8,699.7	연신내 특별계획구역
			불광동 304-5			
			불광동 304-17			
			불광동 304-18			
			불광동 304-21			
			불광동 305-3			
			불광동 305-7			
			불광동 305-8			
			불광동 305-9			
			불광동 305-10			
			불광동 305-11			
			불광동 305-13			
			불광동 305-14			
			불광동 305-15			
			불광동 305-16			
			불광동 305-18			
			불광동 305-19			
			불광동 305-20			
			불광동 305-21			
			불광동 305-22			
			불광동 305-35			
			불광동 305-40			

※ 가구 내 포함된 도로 면적은 cad 구적 값으로 실제 현황과 다를 수 있음.

구분	가구 번호	가구면적 (㎡)	위치	대지면적 (㎡)	공동개발면적 (㎡)	비고
기정	D5	5,078	불광2동 308-14	298	4,201	• 공동개발(지정)
			불광2동 308-20	1,309		
			불광2동 308-1	783		
			불광2동 308-19	747		
			불광2동 308-15	1,049		
			불광2동308-9	13		
			불광2동 309-8	2		
			불광2동 308-10	877		
변경	D5	5,078	불광동 308-14	298		• 공동개발(지정) - 308-20, 308-1, 308-19, 308-15, 308-9
			불광동 308-20	1,309	3,901	
			불광동 308-1	783		
			불광동 308-19	747		
			불광동 308-15	1,049		
			불광동 308-9	13		
			불광동 309-8	2		
			불광동 308-10	877		

※ 가구 내 포함된 도로 면적은 cad 구적 값으로 실제 현황과 다를 수 있음.

다. 최대개발규모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 결정조서

구 분		최대개발규모(㎡)		비 고
기정	변경 (안)	기정	변경 (안)	
간선교차로변	간선도로변	2,000	2,000	• 연신내 사거리변 • 통일로, 연서로변
간선도로변		1,500		
보조간선도로변	이면도로변	1,000	1,000	• 그 외 이면부
내부도로변		500		

주) 단,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개발규모 적용 예외
- 기 개발된 대지면적이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 특별계획(가능)구역, 공동개발(지정/권장)계획에 따라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한 경우

※ 명칭 변경 (간선교차로변, 간선도로변 → 간선도로변 / 보조간선도로변, 내부도로변 → 이면도로변)

■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간선도로변	• 최대개발규모 계획 신설 - 신설 된 흥창물산부지 특별계획가능구역 해제시 적용 • 최대개발규모 계획 변경 - 1,500㎡ → 2,000㎡	• 흥창물산부지 특별계획가능구역 해제시 최대개발규모 계획 신설 • 지역중심으로써 규모있는 개발을 위해 최대개발규모 완화
이면도로변	• 최대개발규모 계획 변경 - 500㎡ → 1,000㎡	- 지역중심으로써 규모있는 개발을 위해 최대개발규모 완화

2.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불허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 결정조서

구 분	도면 표시	위치	전층	특정층
불허 용도 (기정)	A	간선부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단, 기숙사 및 주거복합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단, 주유소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촬영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 1층부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구 분	도면표시	위치	전층	특정층
	B	이면부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단, 주차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

주) 학교보건법,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령에서 불허하는 용도는 그에 따르도록 함.

구 분	도면표시	위치	전층	특정층
불허용도(변경)	A	간선부	• 해당 용도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단, 기숙사 및 주거복합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일반숙박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1층부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B	이면부	• 해당 용도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일반숙박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불허하는 용도는 그에 따르도록 함.

■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불허용도	간선부	• 불허용도 계획 신설 - 신설 된 흥창물산부지 특별계획가능구역 해제시 적용	• 흥창물산부지 특별계획가능구역 해제시 불허용도 계획 신설
		• 불허용도 계획 추가 - 숙박시설, 위락시설	• 주변 주거 및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유해용도(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에 대해 불허용도 추가
	이면부	• 불허용도 계획 추가 - 숙박시설, 위락시설	• 주변 주거 및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유해용도(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에 대해 불허용도 추가

나. 권장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위치	전 층	특정 층
권장용도(기정)	1	간선부(통일로변)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2층 이상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2	간선부(연서로변)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일반상업지역)	-
	3	이면부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 및 노인복지시설	-
	4	특화거리지구	• 건축법시행령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의류판매관련시설	-

주) 권장용도의 면적구성은 건물 전체용도의 경우 당해용도가 전체 연면적(지하층 및 코아부분 제외)의 30%이상인 경우, 특정층의 경우 규모 및 위치 준수시 권장용도가 수용된 것으로 본다.
단, 특화거리지구에 면한 획지는 1층용도의 경우 권장용도가 당해층 면적의 50%이상인 경우에 권장용도가 수용된 것으로 본다.

구 분	도면표시	위치	전 층	특정 층
권장용도(변경)	1	간선부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2	이면부1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의류판매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뷰티판매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 및 노인복지시설	• 저층부(1~3층)해당 - 의류판매시설, 뷰티판매시설
	3	이면부2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 및 노인복지시설	-
	4	이면부3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 및 노인복지시설	-

주) 뷰티판매시설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미용, 화장품, 메이크업 등)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간선부	• 간선부 통합 • 권장용도 계획 신설 – 신설 된 흥창물산부지 특별계획가능구역 해제시 적용 • 권장용도 변경 – 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추가	• 흥창물산부지 특별계획가능구역 해제시 권장용도 계획 계획 신설 • 지역중심 육성을 위한 업무기능 강화
2	이면부1	• 특화거리지구 폐지 • 권장용도 계획 변경 – 근린생활시설 중 의류판매시설, 뷰티판매시설, 공연장, 사무소,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추가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추가	• 특화거리 의류매장 감소, 공실률 증대에 따라 가로활성화를 위한 뷰티판매시설, 공연장 추가 • 지역중심 육성을 위한 업무기능 강화 • 중심지 경제활동인구의 보육 및 부모부양 등을 고려하여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추가
3	이면부2	• 권장용도 계획 변경 – 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추가	• 지역중심 육성을 위한 업무기능 강화
4	이면부3	• 권장용도 계획 범위 변경	• 용도지역에 부합하는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

3. 건축물의 개발밀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건폐율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 결정조서

구 분	건폐율(%)	비고
일반상업지역	60% 이하	–
준주거지역	60%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

■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흥창물산부지 특별계획가능구역	• 건폐율 계획 신설 – 신설 된 흥창물산부지 특별계획가능구역 해제시 적용	• 흥창물산부지 특별계획가능구역 해제시건폐율 계획 신설

나. 건축물의 용적률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 결정조서

구 분		용적률(%)						비 고
		기 정			변 경(안)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일반상업지역	간선부	600%이하	80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600%이하	80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
	이면부	300%이하	50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간선부	300%이하	63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300%이하	63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상업지역 종상향 (서고 제1996-195호)
	이면부	300%이하	50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300%이하	360%이하	400%이하	300%이하	360%이하	400%이하	준주거지역 종상향 (서고제2002-255호)
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170%이하	20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170%이하	20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

주1) 상한용적률 산정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준수
주2) 법적용적률이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용도지역 별 용적률을 말함
주3) 관광숙박시설 건축 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7항에 의거 용적률 완화 가능
주4)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름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규정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축물의 주거외 용도 비율(준주택 제외)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제3항 [별표 3] 제1호에 따름**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공동주택과 주거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 제2호를 따르되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 일반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400%(허용용적률의 50%)이하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600% 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함
  - 일반상업지역(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15% 이하(허용용적률의 50%)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72.5% 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함
  - 상한용적률 증가량(주1) 중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 : 상한용적률 증가량×(주거용 용적률(주2)/도시계획 조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용적률)

주1)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제3항 [별표 3] 제2호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주거용 부대시설의 용적률 포함)의 최대범위
주2) 상한용적률 증가량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 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용도 비율 및 용적률 규정 등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준주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 시 적용기준(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제22항 관련)

-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적용되는 용적률은 기 계획된 용적률계획과 별도로 100%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계획할 수 있음**
  -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지역에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종전 용도지역의 용적률만큼 허용되는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 은 적용하지 않는다.
  - 건축물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전체 용적률에서 임대주택 도입으로 완화되는 용적률을 제외한 용적률의 10%이상으로 계획한다.
  - 건축물 용도 중 공동주택이 불허용도로 지정된 경우는 적용에서 제외한다.
  -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10m 이내의 범위에서 높이계획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단,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취지, 인근지역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자문(심의)을 거쳐야 하고,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따른 높이완화와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준주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 시 적용기준' 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하여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비주거용도에 대한 기준

-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및 생활숙박시설 제외) 비율을 용적률의 10% 이상으로 하고 지상층에 설치토록 계획함**
  - 입지특성과 공공기여(기부채납 10% 이상 등)를 감안 해당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해 허용용적률의 10% 이상 계획 가능함
  - 준주거지역 내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기숙사 등 해당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 이와 별도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 규정' 을 만족하여야 함

※ 준주택 :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일반상업지역 (이면부)	• 용적률 계획 신설 - 신설 된 흥창물산부지 특별계획가능구역 해제시 적용 • 용적률 계획 변경 - 기준 : 300% 이하 → 600% 이하 - 허용 : 500% 이하 → 800% 이하	• 흥창물산부지 특별계획가능구역 분리에 따라 용적률 계획 신설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상 용적률 체계 적용
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이면부)	• 용적률 계획 변경 - 허용 : 500% 이하 → 630% 이하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상 용적률 체계 적용

다. 건축물의 높이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기 정	변 경(안)	기 정		변 경(안)		
			기준높이	최고높이	기준높이	최고높이	
일반상업지역	간선가각부	간선가각부	80m	100m	80m	100m	-
	간선부1 (통일로변)	간선부1	70m	90m	70m	90m	-
	간선부3 (연서로변)		70m	90m			
	간선부2 (통일로변)	간선부2	60m	80m	60m	80m	-
	간선부4 (연서로변)		60m	80m			
	이면부	이면부	35m	45m	35m	45m	-
준주거지역	간선부	간선부	50m	70m	50m	70m	-
	이면부	이면부	25m	35m	25m	35m	-
제2종일반 주거지역	이면부	이면부	-	20m	-	20m	-
연신내교차로변의 범서쇼핑센터일대		-	16m이하 : 연서로변 대지경계선(기부채납경계)에서 10m이내 지역		-		-

■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일반상업지역	간선부 1~4	• 간선부 동일 높이 통합 • 높이계획 신설 - 신설 된 흥창물산부지 특별계획가능구역 해제시 적용	• 흥창물산부지 특별계획가능구역 해제시 높이계획 신설
연신내교차로변의 범서쇼핑센터 일대		• 최고16m이하 높이 제한 폐지	• 기존 높이계획의 목적 상실(북한산 조망)

4. 건축물의 배치 · 형태 및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

가. 건축물 배치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 결정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기 정	변 경(안)	
벽면한계선	• 특화거리, 블록내부 : 1.5m~3m	• 4m미만 도로변 : 1m	도면참조
건축한계선	• 간선도로변(통일로, 연서로변) : 3~5m • 이면도로변, 블록내부 : 1~3m	• 간선부 : 3~5m • 이면부 : 1~3m	도면참조

주) 벽면한계선은 건축선으로부터 이격(지면으로 유효높이 6m 이상 확보)
※ 명칭 변경(간선도로변 → 간선부 / 이면도로변, 블록내부 → 이면부)

■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벽면한계선	• 이면부 4m 미만 도로변 벽면한계선 지정	• 보행환경 개선 • 소방차 진입 및 활동반경 고려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 계획 신설 - 신설된 흥창물산부지 특별계획가능구역 해제시 적용 • 일부 건축한계선 확대 - 범서쇼핑 이면부	• 흥창물산부지 특별계획가능구역 해제시 건축한계선 계획 신설 • 보행환경 개선

나. 건축물 형태 및 경관 계획 등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 결정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기 정	변 경(안)	
형태	1층부 형태	• 개구부 통일성 유지 • 투시형 셔터 권장	• 개구부 통일성 유지 • 투시형 셔터 권장 • 주요간선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쇼윈도우설치 및 조경시설의 설치 권장	
	차양설치	• 특화거리 상가의 독특한 이미지 창출 • 건축물의 1층 상단, 2층하단에 설치, 폭 1m 이상	폐지	
외관	건축물 외벽처리	• 주변 경관과 조화된 형태 및 재료사용 권장	좌동	
	색채	• 인접 건축물과의 조화 유도	좌동	
	조명	• 가로경관 수준 향상 야간 경관 증진 • 건축물의 외벽 조명설치 권장	좌동	
경관	중점경관 관리구역	-	• 「경관법」, 「경관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서울특별시 경관계획(2016)' 내용 준수	연서로 동측변
기타	옥외 광고물	•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모든 옥외광고물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기준" 준수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 제한·완화 고시」 내용 준수	
	지하철 및 지중화 관련시설	• 지하철 연결통로 조성	• 지하철 출입구와 환기구, 연결통로, 분전반 등의 지중화 관련 시설을 건물 또는 대지 내 설치 권장	
	건축설비	-	• 건축설비는 도로변에 노출하여 설치 금지	

주1) 세부사항은 시행지침 참조
주2) 명칭 변경(지하철시설 건축물 내 설치 → 지하철 및 지중화 관련 시설)
주3) 특별계획구역은 공공시설계획으로 인한 지하철 출입구 등 설치 시 지하철 및 지중화 관련시설 인센티브 중복 적용 가능

■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1층부형태	• 주요간선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쇼윈도우 설치 및 조경시설의 설치 권장	• 통일되고 조화로운 저층부경관 형성
차양설치	• 폐지	• 특화거리 폐지에 따라 계획안 폐지
중점경관 관리구역	•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건축물 조성계획 신설	• 경관법 상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서 구역 내 건축물 신축 시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내용 준수
옥외광고물	• 현행 법령 및 조례, 고시내용 준수	• 현행 법령 및 조례, 개정된 광고물 등 정비시범 구역 고시내용 반영
지하철 및 지중화 관련시설	• 지중화 관련시설 설치계획 신설	• 환기구, 분전반 등 대지 내 이전 유도로 보행환경 개선
건축설비	• 건축설비 설치계획 신설	• 간선변 미관향상 유도

5.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 결정조서

구 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①	연서시장 특별계획구역	불광동 310-130번지 일대	2,987	감) 314.5	2,672.5
변경	②	흥창물산부지 특별계획구역	불광동 310-4번지 일대	9,070	감) 3,730	5,340
변경	③	연지시장 특별계획구역	대조동 185-43번지 일대	1,474	증) 1,774	3,248
변경	④	운동장시설용지 특별계획구역	불광동 322-3번지 일대	7,992	감) 495	7,497
기정	⑤	연신내 특별계획구역	불광동 305-3번지 일대	8,699.7	-	8,699.7
신설	⑥	흥창물산부지 특별계획가능구역	불광동 310-24번지 일대	-	증) 3,736	3,736
신설	⑦	불광동 325-4번지 특별계획가능구역	불광동 325-4번지 일대	-	증) 5.099	5,099

※ 특별계획가능구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특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신청이 없는 경우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특별계획가능구역에 대한 효력을 잃으며 이 경우 일반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축행위는 가능하다. 단, 주민요청 (대상 토지 면적의 1/20이상 동의) 및 입안권자(구청장 등)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2년 이내(총 5년 범위 이내)에서 효력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특별계획(가능)구역 면적은 구역계 내 토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임(단, 도로는 cad 구적 값이므로 현황과 다를 수 있음)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 및 결정내용	변경 및 결정사유
①	연서시장 특별계획구역	• 구역변경 - 면적 : 2,987㎡ → 2,672.5㎡	• 불광동 310-16번지 소유주 반대에 의한 구역 축소
②	흥창물산부지 특별계획구역	• 구역변경 - 면적 : 9,070㎡ → 5,340㎡	• 특별계획가능구역 분리로 구역 축소
③	연지시장 특별계획구역	• 구역변경 - 면적 : 1,474㎡ → 3,248㎡	• 도시계획시설[시장] 포함으로 구역 확대
④	운동장시설용지 특별계획구역	• 구역변경 - 면적 : 7,992㎡ → 7,497㎡	• 도시계획시설[환풍구] 제척으로 구역 축소
⑥	흥창물산부지 특별계획가능구역	• 특별계획가능구역 신설 - 면적 : 3,736㎡	• 흥창물산부지 특별계획구역 분리로 구역 신설
⑦	불광동 325-4번지 특별계획가능구역	• 특별계획가능구역 신설 - 면적 : 5,099㎡	• 대상지 연접 다수 개발사업 추진 중 개발 압력 증대에 따른 난개발 우려로 특별계획가능구역 신설

나.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지침 : 변경

1) 연서시장 특별계획구역 : 변경

■ 연서시장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구 분			계획내용	
			기 정	변 경(안)
위치			• 불광동 310-130번지 일대	좌동
면적			• 2,987㎡	• 2,672.5㎡(불광동 310-16번지 제척)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좌동
공공시설계획			• 구역면적의 18.24%이상 설치	• 구역면적의 15%이상 설치 - 지하철 출입구 등 대지 또는 건축물 내 설치 - 우선공급시설: 공공임대주택, 체육시설
건축물의 용도·밀도에 관한 계획	용도	불허용도	• 단독주택 • 공동주택(단, 기숙사 및 주거복합 제외)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단, 주유소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방송통신시설 중 촬영소 • 발전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1층부에 한함)	• 해당 용도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공장(단, 지식산업센터 제외) • 창고시설 • 방송통신시설 중 촬영소 • 발전시설 • 근린생활시설 중 총포판매점, 다중생활시설, 장의사, 제조업소, 수리점
		권장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업무시설(단, 오피스텔 제외) - 2층이상에 한함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 판매시설(단, 게임제공업 등 복합유통게임제공업시설 제외) • 업무시설(단, 오피스텔 제외)
	건폐율(%)		• 60% 이하	좌동
	용적률(%)	기준	• 600% 이하	좌동
		허용	• 800% 이하	좌동
		상한	• 기부채납시 완화 -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토지+0.7×α건축물) ※ 가중치 및 α의 적용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준수	• 기부채납시 완화 - 허용 or 기준용적률×{1+(1.3×가중치×α토지+1.0×α건축물+1.0×α현금)} • 지하철출입구 등 건물 또는 대지 내 설치시 - 대지내 설치할 경우 : 용적률×(지하철 출입구 또는 환기구의 건폐면적/대지면적)이내 - 건물에 설치할 경우 : 용적률×(지하철출입구 또는 환기구의 연면적/건물 연면적)이내 ※ 가중치 및 α의 적용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준수
	건축물 높이(m)	기준높이	• 80m 이하	좌동
		최고높이	• 100m 이하 • 연서로변 건축물 전면부 16m이하 - 연서로변 대지경계(기부채납 경계)에서 10m이내 지역	• 100m 이하

(표 계속)

구 분		계획내용	
		기 정	변 경(안)
배치	건축한계선	• 통일로변(인도부속형전면공지) : 3m • 특별계획구역 내 동측변(차도부속형 전면공지) : 3m	• 연서로변(보도형 전면공지) : 7m • 동측, 서측변(보도형 전면공지) : 3m
	벽면한계선	• 특별계획구역 내 북측변(공공보행통로 조성) : 3m	• 폐지
건축물형태		• 고층부 탑상형	• 고층부 탑상형(5F) - 5층 이상의 부분에 대하여 건폐율 40% 이하로 건축 권장
교통처리계획		• 통일로, 연서로변에서 직접 차량 진·출입불허	• 좌동
기타에 관한 사항	전면공지	• 특별계획구역내 서측변 : 3m	• 건축한계선에 의한 보도형 전면공지 조성
	공개공지	• 지정된 위치에 1개소 조성	• 지정된 위치에 1개소 권장
	공공보행통로	• 특별계획구역 내 북측변 : 3m	• 공공보행통로 폭원 3m - 높이 6m 이상 확보
	지하철시설 건축물내 설치	• 지하철 연결통로 조성	• 지하철 출입구 대지 내 설치 및 지하공간 연계

주1) 개별법에 의한 개발사업 추진 시 해당 법령 및 지침에 따름.
주2)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계획은 도시계획시설(시장)을 폐지함을 전제로 함.
주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불허하는 용도는 그에 따르도록 함.
주4) 관광숙박시설 건축 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7항에 의거 용적률 완화 가능.
주5) 시장정비사업으로 추진 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의한 완화 적용을 따르도록 함.
주6) 도시계획시설(시장) 변경에 따른 의무공공기여율 5%는 상한용적률 산정 시 제외.
주7) 공공시설계획 중 우선공급시설은 세부 개발 사업 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하는 시설임.

2) 홍창물산부지 특별계획구역 : 변경

■ 홍창물산부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table>
<tr><th colspan="5" rowspan="2">구 분</th><th colspan="2">계획내용</th></tr>
<tr><th>기 정</th><th>변 경(안)</th></tr>
<tr><td colspan="5">위치</td><td>• 불광동 310-4번지 일대</td><td>좌동</td></tr>
<tr><td colspan="5">면적</td><td>• 9,070㎡</td><td>• 5,340㎡(특별계획가능구역 분리)</td></tr>
<tr><td colspan="5">용도지역</td><td>• 일반상업지역</td><td>좌동</td></tr>
<tr><td colspan="5">공공시설계획</td><td>• 구역면적의 20%이상 설치</td><td>• 구역면적의 20%이상 설치
- 도로
- 우선공급시설 : 주차장</td></tr>
<tr><td rowspan="11">건축물의 용도·밀도에 관한 계획</td><td rowspan="2">용도</td><td>불허용도</td><td colspan="2">• 단독주택
• 공동주택(단, 기숙사 및 주거복합 제외)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단, 주유소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방송통신시설 중 촬영소
• 발전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1층부에 한함)</td><td>• 해당 용도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공장(단, 지식산업센터 제외)
• 창고시설
• 방송통신시설 중 촬영소
• 발전시설
• 근린생활시설 중 총포판매소
• 다중생활시설, 장의사, 제조업소, 수리점</td></tr>
<tr><td>권장용도</td><td colspan="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 업무시설(단, 오피스텔 제외)</td><td>•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 판매시설(단, 게임제공업 등 복합유통게임제공업시설 제외)
• 업무시설(단, 오피스텔 제외)</td></tr>
<tr><td colspan="2">건폐율(%)</td><td colspan="2">• 60% 이하</td><td>좌동</td></tr>
<tr><td rowspan="3">용적률(%)</td><td>기준</td><td colspan="2">• 300% 이하</td><td>좌동</td></tr>
<tr><td>허용</td><td colspan="2">• 630% 이하</td><td>좌동</td></tr>
<tr><td>상한</td><td colspan="2">• 기부채납시 완화
-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토지+0.7×α건축물)
※ 가중치 및 α의 적용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준수</td><td>• 기부채납시 완화
- 허용 or 기준용적률×{1+(1.3×가중치×α토지+1.0×α건축물+1.0×α현금)}
※ 가중치 및 α의 적용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준수</td></tr>
<tr><td rowspan="4">건축물 높이(m)</td><td rowspan="2">②-1</td><td>기준높이</td><td>• 70m 이하</td><td rowspan="2">기준 높이</td><td rowspan="2">• 70m 이하</td></tr>
<tr><td>최고높이</td><td>• 90m 이하
• 연서로변 건축물 전면부 16m이하
- 연서로변 대지 경계(기부채납 경계)에서 10m이내 지역</td></tr>
<tr><td rowspan="2">②-2</td><td>기준높이</td><td>• 50m 이하</td><td rowspan="2">최고 높이</td><td rowspan="2">• 90m 이하</td></tr>
<tr><td>최고높이</td><td>• 60m 이하</td></tr>
</table>

(표 계속)

구 분		계획내용	
		기 정	변 경(안)
배치	건축한계선	• 특별계획구역 내 남측변 : 3m • 특별계획구역 내 동·서·북측변 : 2m	• 연서로변(보도형 전면공지) : 5m • 서측, 북측변(보도형 전면공지): 2m
	벽면한계선	• 특별계획구역 내 조성 : 4m	• 폐지
건축물형태		• 고층부 탑상형	• 고층부 탑상형(5F) - 5층 이상의 부분에 대하여 건폐율 40% 이하로 건축 권장
교통처리계획		• 연서로변에서 직접 차량 진·출입 불허	• 좌동
기타에 관한 사항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조성	• 건축한계선에 의한 보도형 전면공지 조성
	공개공지	• 지정된 위치에 2개소 조성	• 지정된 위치에 2개소 권장
	공공보행통로	• 연서로 북측도로와의 연계를 위해 지정된 위치에 공공보행통로 조성: 4m	• 공공보행통로 폭원 4m - 높이 6m 이상 확보

주1) 개별법에 의한 개발사업 추진 시 해당 법령 및 지침에 따름.
주2)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도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함.
주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불허하는 용도는 그에 따르도록 함.
주4) 공공시설계획 중 우선공급시설은 세부 개발 사업 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시설임.

3) 연지시장 특별계획구역 : 변경

■ 연지시장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구 분			계획내용	
			기 정	변 경(안)
위치			• 대조동 185-43번지 일대	좌동
면적			• 1,474㎡	• 3,248㎡(도시계획시설 시장 포함)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좌동
공공시설계획			• 구역면적의 12.55%이상 설치	• 구역면적의 15%이상 설치 - 지하철 출입구 등 대지 또는 건축물 내 설치 - 우선공급시설 : 공공임대상가, 공공임대 산업시설
건축물의 용도·밀도에 관한 계획	용도	불허용도	• 단독주택 • 공동주택(단, 기숙사 및 주거복합 제외)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단, 주유소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방송통신시설 중 촬영소 • 발전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1층부에 한함)	• 해당 용도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공장(단, 지식산업센터 제외) • 창고시설 • 방송통신시설 중 촬영소 • 발전시설 • 근린생활시설 중 총포판매소 • 다중생활시설, 장의사, 제조업소, 수리점
		권장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 판매시설(단, 게임제공업 등 복합유통게임제공업시설 제외) • 업무시설(단, 오피스텔 제외)
	건폐율(%)		• 60% 이하	좌동
	용적률(%)	기준	• 600% 이하	좌동
		허용	• 800% 이하	좌동
		상한	• 기부채납시 완화 -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토지 +0.7×α건축물) ※ 가중치 및 α의 적용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준수	• 기부채납시 완화 - 허용 or 기준용적률×{1+(1.3×가중치×α토지+1.0×α건축물+1.0×α현금)} • 지하철출입구 등 건물 또는 대지 내 설치시 - 대지내 설치할 경우 : 용적률×(지하철 출입구 또는 환기구의 건폐면적/대지면적)이내 - 건물에 설치할 경우 : 용적률×(지하철출입구 또는 환기구의 연면적/건물 연면적)이내 ※ 가중치 및 α의 적용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준수
	건축물 높이(m)	기준높이	• 80m 이하	좌동
		최고높이	• 100m 이하	좌동

(표 계속)

구 분		계획내용	
		기 정	변 경(안)
배치	건축한계선	• 연서로변 : 3m • 특별계획구역 내 동측변 : 3m • 특별계획구역 내 남측변 : 2m • 특별계획구역 내 서측변 : 1.5m	• 연서로변(보도형 전면공지): 5m • 통일로변(보도형 전면공지): 3m • 서측변(보도형 전면공지): 2m
건축물 형태		• 고층부 탑상형	• 고층부 탑상형(5F) - 5층 이상의 부분에 대하여 건폐율 40% 이하로 건축 권장
교통처리계획		• 통일로, 연서로변에서 직접 차량 진 · 출입 불허	좌동
기타에 관한 사항	전면공지	• 북측변 : 3m	• 건축한계선에 의한 보도형 전면공지 조성
	공개공지	-	• 지정된 위치에 2개소 권장
	공공보행통로	-	• 공공보행통로 폭원 3m - 높이 6m 이상 확보
	지하철시설 건축물내 설치	-	• 지하철 출입구 대지 내 설치 및 지하공간 연계

주1) 개별법에 의한 개발사업 추진 시 해당 법령 및 지침에 따름.
주2)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계획은 도시계획시설(시장)을 폐지함을 전제로 하고, 해제요건 미충족시 복합화 검토 필요.
주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불허하는 용도는 그에 따르도록 함.
주4) 도시계획시설(시장) 변경에 따른 의무공공기여율 5%는 상한용적률 산정 시 제외.
주5) 공공시설계획 중 우선공급시설은 세부개발 사업 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시설임.

4) 운동장시설용지 특별계획구역 : 변경

■ 운동장시설용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table>
<tr><th colspan="3" rowspan="2">구 분</th><th colspan="3">계획내용</th></tr>
<tr><th>기 정</th><th>변 경(안)</th><th></th></tr>
<tr><td colspan="3">위 치</td><td>• 불광동 322-3번지 일대</td><td colspan="2">좌동</td></tr>
<tr><td colspan="3">면적</td><td>• 7,992㎡</td><td colspan="2">• 7,497㎡</td></tr>
<tr><td colspan="3">용도지역</td><td>•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td><td colspan="2">•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세부개발계획 시 준주거지역 상향)</td></tr>
<tr><td colspan="3">공공시설계획</td><td>• 구역면적의 30%이상 설치</td><td colspan="2">• 구역면적의 30%이상 설치
- 도로
- 우선공급시설 : 체육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td></tr>
<tr><td rowspan="11">건축물의 용도·밀도에 관한 계획</td><td rowspan="3">용도</td><td>불허용도</td><td>• 단독주택
• 공동주택(단, 기숙사 및 주거복합 제외)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단, 주유소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방송통신시설 중 촬영소
• 발전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1층부에 한함)</td><td colspan="2">• 해당 용도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단독주택
• 공동주택(단, 주거복합 제외)
• 공장(단, 지식산업센터 제외)
• 교정 및 군사시설
• 방송통신시설 중 촬영소
• 근린생활시설 중 총포판매소, 다중생활시설, 장의사, 제조업소, 수리점</td></tr>
<tr><td>권장용도</td><td>•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 운동시설
• 업무시설(단, 오피스텔 제외)</td><td colspan="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판매시설(단, 게임제공업 등 복합유통게임제공업시설 제외)
• 운동시설
• 업무시설(단, 오피스텔 제외)</td></tr>
<tr><td>지정용도</td><td>• 운동시설(건축물 지상 1층부에서부터 전체연면적의 30%이상)</td><td colspan="2">좌동</td></tr>
<tr><td colspan="2">건폐율(%)</td><td>• 60% 이하</td><td colspan="2">좌동</td></tr>
<tr><td rowspan="4">용적률(%)</td><td>구분</td><td>-</td><td>④-1</td><td>④-2</td></tr>
<tr><td>기준</td><td>• 300% 이하</td><td>• 300% 이하</td><td>• 200% 이하</td></tr>
<tr><td>허용</td><td>• 360% 이하</td><td>• 360% 이하</td><td>• 330% 이하</td></tr>
<tr><td>상한</td><td>• 400% 이하
• 기부채납시 완화
-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토지 +0.7×α건축물)
※ 가중치 및 α의 적용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준수</td><td colspan="2">• 400% 이하
• 기부채납시 완화
- 허용 or
기준용적률×{1+(1.3×가중치×α토지+1.0×α건축물+1.0×α현금)}
※ 가중치 및 α의 적용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준수</td></tr>
<tr><td rowspan="2">건축물 높이(m)</td><td>기준높이</td><td>• 50m 이하</td><td colspan="2">좌동</td></tr>
<tr><td>최고높이</td><td>• 70m 이하
• 연서로변 건축물 전면부 16m이하
- 연서로변 대지경계(기부채납 경계)에서10m이내 지역</td><td colspan="2">• 70m 이하
• 연서로변 건축물 전면부 16m이하
- 연서로변 건축선에서 10m이내 지역</td></tr>
</table>

(표 계속)

구 분		계획내용	
		기 정	변 경
배치	건축한계선	• 특별계획구역 내 동측변 : 4m • 특별계획구역 내 서측변 : 2m • 특별계획구역 내 북측 및 남측변 : 1m	• 연서로변(보도형 전면공지): 5m • 서측, 동측변(보도형 전면공지): 2m
건축물형태		• 고층부 탑상형	• 고층부 탑상형(5F) - 5층 이상의 부분에 대하여 건폐율 40% 이하로 건축 권장
교통처리계획		• 연서로변에서 직접 차량 진·출입 불허	• 연서로변에서 직접 차량 진·출입 불허
기타에 관한 사항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조성	• 건축한계선에 의한 보도형 전면공지 조성
	공개공지	-	• 지정된 위치에 2개소 권장
	공공보행통로	• 특별계획구역내 동측변 : 4m	• 공공보행통로 폭원 4m - 높이 6m 이상 확보

주1) 개별법에 의한 개발사업 추진 시 해당 법령 및 지침에 따름.
주2)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계획은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을 폐지함을 전제로 함.
주3) 세부개발계획수립시 도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함.
주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불허하는 용도는 그에 따르도록 함.
주5) 지정용도의 전체 연면적 산정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전체 부지에 해당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함
주6)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변경에 따른 의무공공기여율 10%는 상한용적률 산정 시 제외.
주7) 공공시설계획 중 우선공급시설은 세부 개발사업 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하는 시설임.

5) 연신내 특별계획구역 : 변경없음

■ 연신내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세부개발계획 수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180호)

구 분			계획내용	세부개발계획
위 치			• 불광동 305-3번지 일대	• 불광동 305-3번지 일대
면적			• 8,699.7㎡	• 8,699.7㎡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용도구역			• 해당없음	• 해당없음
공공시설계획			• 구역면적의 20%이상 설치	• 공원 : 32.80%(2,853.5㎡)설치 -도로 : 226.60㎡ -주출입대공간 : 1,919.78㎡ -사회복지시설 : 705.14㎡
건축물의 용도·밀도에 관한 계획	용도	불허용도	• 단독주택 • 공동주택(단,기숙사 및 주거복합 제외)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단,주유소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방송통신시설 중 촬영소 • 발전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1층부에 한함)	• 주용도 : 판매시설, 업무시설
		권장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판매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2층이상에 한함) •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 2025년 목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중 도시경제활성화(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창업지원센터), 생활SOC문화인프라 (생활SOC,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영화상영관 등) 적용할 경우 지정용도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함		
	건폐율(%)		• 60%이하	• 60%이하
	용적률 (%)	기준	• 300%이하	• 300%이하
		허용	• 630%이하	• 583.11%이하
		상한	• 기부채납시 완화 - 허용 or 기준용적률×(1+(1.3×가중치×α토지+0.7×α건축물) ※ 가중치 및 α의 적용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준수	• 799%이하
	건축물 높이 (m)	기준높이	• 70m이하	• 전면부 90m, 이면부 80m이하 ※기본계획에 따라 최고높이 적용
		최고높이	• 전면부 90m이하 / 이면부 80m이하	

(표 계속)

구 분		계획내용	
배치	건축한계선	• 통일로변 : 3m / 이면부 : 2~3m	• 통일로변 : 3m / 이면부 : 2~3m
건축물형태		• 고층부 탑상형 • 이용자 보행동선 및 버스정류장 접근, 공개공지 휴식공간 연계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 내 보행통로(폭원 3m, 높이 6m)를 24시간 개방하여 설치 조성하고, 바닥포장, 보행통로 표지판 등 설치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쉽게 인지 가능하도록 조성	• 고층부 탑상형 • 건축물 내 보행통로(폭원3m, 높이6m) 24시간 개방하여 설치 조성 및 바닥포장, 보행통로 표지판 등 설치 조성
교통처리계획		• 통일로변에서 직접 차량 진·출입 불허	• 통일로변에서 직접 차량 진·출입 불허
기타에 관한 사항	전면공지	• 통일로변 : 보도부속형 3m • 이면도로 북·동측 : 보도부속형2~3m	• 통일로변 : 보도부속형 3m • 이면도로 북·동측 : 보도부속형2~3m
	공개공지	• 이면도로 북측에 1개소 지정	• 1개소 위치 지정
	공공보행통로	• 이면부와 간선가로변과의 보행체계 연계를 위해 위치 지정	• 3개소 위치 지정

6) 홍창물산부지 특별계획가능구역 : 신설

■ 홍창물산부지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지침

구 분			계획내용(신규)
위 치			• 불광동 310-24번지 일대
면적			• 3,736㎡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공공시설계획			• 구역면적의 20%이상 설치 - 도로 - 우선공급시설 : 주차장
건축물의 용도·밀도에 관한 계획	용도	불허용도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공장(단, 지식산업센터 제외) • 창고시설 • 방송통신시설 중 촬영소 • 발전시설 • 근린생활시설 중 총포판매소, 다중생활시설, 장의사, 제조업소, 수리점
		권장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 판매시설(단, 게임제공업 등 복합유통게임제공업시설 제외) • 업무시설(단, 오피스텔 제외)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기준	• 300% 이하
		허용	• 630% 이하
		상한	• 기부채납시 완화 - 허용 or 기준용적률×{1+(1.3×가중치×α토지+1.0×α건축물+1.0×α현금)} ※ 가중치 및 α의 적용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준수
	건축물 높이(m)	기준높이	• 60m 이하
		최고높이	• 80m 이하
배치	건축한계선		• 연서로변(보도형 전면공지) : 3m • 이면부(보도형 전면공지) : 2m
건축물형태			• 고층부 탑상형(5F) - 5층 이상의 부분에 대하여 건폐율 40% 이하로 건축 권장
교통처리계획			• 연서로변에서 직접 차량 진·출입 불허
기타에 관한 사항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조성
	공개공지		• 지정된 위치에 2개소 권장

주1) 개별법에 의한 개발사업 추진 시 해당 법령 및 지침에 따름
주2)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로는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하여야 함
주3) 특별계획가능구역 해제 시 기존 획지계획 적용
주4) 공공시설계획 중 우선공급시설은 세부 개발 사업 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하는 시설임

7) 불광동 325-4번지 특별계획가능구역 : 신설

■ 불광동 325-4번지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지침

구분			계획내용(신규)
위 치			• 불광동 325-4번지 일대
면적			• 5,099㎡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세부개발계획 시 제3종 일반주거지역 상향)
공공시설계획			• 구역면적의 10%이상 설치 - 우선공급시설 : 주차장
건축물의 용도·밀도에 관한 계획	용도	불허용도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공장(단, 지식산업센터 제외)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방송통신시설 중 촬영소 • 발전시설 • 근린생활시설 중 총포판매소, 다중생활시설, 장의사, 제조업소, 수리점
		권장용도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 및 노인복지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기준	• 200% 이하
		허용	• 230% 이하
		상한	• 250% 이하 • 기부채납시 완화 - 허용 or 기준용적률×{1+(1.3×가중치×α토지+1.0×α건축물+1.0×α현금)} ※ 가중치 및 α의 적용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준수
	건축물 높이	기준높이	• 35m 이하
		최고높이	• 45m 이하
배치	건축한계선		• 북측, 동측, 남측변(보도형 전면공지) : 2m
건축물형태			• 고층부 탑상형(5F) - 5층 이상의 부분에 대하여 건폐율 40% 이하로 건축 권장
기타에 관한 사항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한 보도형 전면공지 조성
	공개공지		• 지정된 위치에 2개소 권장
	공공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 폭원 4m - 높이 6m 이상 확보

주1) 개별법에 의한 개발사업 추진 시 해당 법령 및 지침에 따름
주2) 특별계획가능구역 해제 시 기존 획지계획 적용
주3) 공공시설계획 중 우선공급시설은 세부 개발 사업 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하는 시설임

6. 인센티브 운영계획에 관한 결정

가. 인센티브 계획 : 변경

1) 기정

■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기준

1. 허용용적률 산정을 위한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의무형 인센티브는 100분의 20이상, 규제형과 유도형 인센티브 합은 100분의 80 이내로 하고, 기준용적률과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의 합은 허용용적률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2. 의무형 인센티브인 친환경 건축물 항목은 해당 인센티브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유도형과 규제형 인센티브 항목 준수를 통하여 부족한 의무형 인센티브의 대체 적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유도형 인센티브 항목이 두가지 이상인 경우 한 항목의 유도형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해당 유도형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50이내에서 적용하도록 한다.
4. 규제형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해당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 기준을 초과하여 계획용적률이 산출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도 상의 규제사항은 건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권장용도의 면적은
 - 전층 권장의 경우는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지상부 전체 연면적(주차장 제외)의 30%이상일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 특정층(1층 등) 권장의 경우는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해당층 연면적(주차장 제외)의 50%이상일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6. 공동개발(지정/권장)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는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일 당시 계획이 수립된 대지에 한하여 적용하며, 최대 개발규모내에서 토지소유자가 자율적으로 공동개발 시에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7. 미관지구내 건축한계선 후퇴부분은 제공면적 산정시 제외하며,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한 건축한계선보다 추가하여 후퇴한 부분에 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 경우 추가되는 건축한계선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8. 조경면적 등 타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사항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없으며,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인센티브 적용은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계상할 수 없다.
9. 의무형 인센티브 항목은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동일하게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table>
<tr><th>항목</th><th>세분</th><th>완화기준</th><th>비고</th></tr>
<tr><td rowspan="7">환경
친화적
건축물</td><td>자연지반 보존</td><td>• 기준용적률×(보존면적/대지면적)×0.2</td><td></td></tr>
<tr><td>옥상녹화</td><td>• 기준용적률×(녹화면적/대지면적)×0.1</td><td>•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까지만 허용
•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td></tr>
<tr><td>녹색주차장</td><td>• 기준용적률×(설치면적/대지면적)으로서
기준용적률×0.05</td><td></td></tr>
<tr><td>중수도시설 설치</td><td>• 기준용적률×0.04</td><td>• 총 사용량의 10%이상 처리시설 설치시 적용
• 관련법상 의무시설인 경우 제외</td></tr>
<tr><td>빗물관리시설 설치
(저류·침투·이용)</td><td>• 기준용적률×0.04</td><td>• 빗물 저류·이용시설용량(ton) 및 빗물침투시설 설계침투량(ton/hr)의 합이 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적×0.02 이상되도록 설치</td></tr>
<tr><td>신재생에너지 사용</td><td>• 기준용적률×0.05</td><td>• 건축공사비의 1%이상 또는 총에너지 사용량의 1%이상 부담</td></tr>
<tr><td>에너지절약계획
도입</td><td colspan="2"><table><tr><th>구분</th><th>에너지절감율</th><th>에너지성능지표</th><th>친환경건축물인증</th><th>인센티브 량</th></tr><tr><td>1등급</td><td>33.5%이상</td><td>81점 이상</td><td>85점 이상</td><td>기준용적률×0.08</td></tr><tr><td>2등급</td><td>23.5~33.5%미만</td><td>74~81점 미만</td><td>75~85점 미만</td><td>기준용적률×0.05</td></tr></table></td><td></td></tr>
</table>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유형

용도지역	공간특성	유형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계획방향
일반 상업지역	간선 가각부	A (GC1)	600	800	• 지역중심성 기능강화를 위한 적정개발규모 확보 및 권장용도 유도
	간선부	B (GC2,3)	600	800	• 건축물의 권장용도 수용을 통한 지역중심성 유도 • 공동개발로 대지 내 공지 확보를 통한 휴식 및 보행공간 마련
		C (GC4,5, 6,7)	300	630	
	특화거리	D (GC8)	300	630	• 권장용도를 통한 특화거리 육성
	이면부	E (GC9)	300	500	• 건축한계선, 보차혼용통로 확대와 공동개발을 통한 정연한 대지규모 확보 및 가로환경 조성
	특화거리	F (GC10)	300	500	• 권장용도를 통한 특화거리 육성
준주거지역	간선부	G (SR1,2)	300	360	• 건축물의 권장용도 수용을 통한 지역중심성 유도 • 건축한계선 및 보차혼용통로를 통한 가로환경 개선 유도
제2종일반 주거지역	이면부	H (GR1)	170	200	• 건축한계선, 보차혼용통로 확대와 공동개발을 통한 정연한 대지규모 확보 및 가로환경 조성
특별계획구역① (연서시장)		I (SD1)	600	800	• 권장용도계획을 통한 지역중심성 기능 유도 • 대지 내 공지확보를 통한 시민 보행 및 휴식공간 마련 • 지하철 연결통로 조성을 통한 가로환경 및 보행환경 개선
특별계획구역② (흥창물산)		J (SD2)	300	630	• 권장용도계획을 통한 지역중심성 기능 유도 • 대지 내 공지확보를 통한 시민 보행 및 휴식공간 마련
특별계획구역③ (연지시장)		K (SD3)	600	800	
특별계획구역④ (운동장시설)		L (SD4)	300	360	
특별계획구역⑤ (연신내)		M (SD5)	300	630	• 권장용도계획을 통한 지역중심성 기능 유도 • 대지 내 공지확보를 통한 시민 보행 및 휴식공간 마련 • 연신내 특별계획구역은 정비계획에서 제시한 인센티브 항목을 따름

○ 인센티브 유형 : A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GC1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위치특성			간선가각부	
기준/허용용적률			600% / 800%	
중점계획목표			• 지역중심성 기능강화를 위한 적정개발규모 확보 및 권장용도 유도	
항 목		세 분	완화기준(지침)	비 고
유도형	공동개발	공동개발 (권장/자율적)	기준용적률×0.08	2필지=0.06 3필지=0.07 4필지이상=0.08
	대지내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2.5	
	건축물용도	용도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0.3	
규제형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	기준용적률×0.07	2필지=0.05 3필지=0.06 4필지이상=0.07
	대지내공지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3.0	
	대지내통로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1.1	
의무형			인센티브량의 20%	

○ 인센티브 유형 : B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GC2,3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위치특성			간선부	
기준/허용용적률			600% / 800%	
중점계획목표			• 건축물의 권장용도 수용을 통한 지역중심성 유도 • 공동개발로 대지 내 공지 확보를 통한 휴식 및 보행공간 마련	
항 목		세 분	완화기준(지침)	비 고
유도형	공동개발	공동개발 (권장/자율적)	기준용적률×0.06	2필지=0.04 3필지=0.05 4필지이상=0.06
	대지내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2.5	
	건축물용도	용도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0.3	
규제형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	기준용적률×0.04	2필지=0.03 3필지=0.04
	대지내공지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3.0	
	대지내통로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1.9	
	대지내통로	보차혼용통로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0.2	
의무형			인센티브량의 20%	

○ 인센티브 유형 : C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GC4,5,6,7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위치특성			간선부	
기준/허용용적률			300% / 630%	
중점계획목표			• 건축물의 권장용도 수용을 통한 지역중심성 유도 • 공동개발로 대지 내 공지 확보를 통한 휴식 및 보행공간 마련	
항 목		세 분	완화기준(지침)	비 고
유도형	공동개발	공동개발 (권장/자율적)	기준용적률×0.28	2필지=0.26 3필지=0.27 4필지이상=0.28
	대지내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3.0	
	건축물용도	용도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1.0	
규제형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	기준용적률×0.27	2필지=0.25 3필지=0.26 4필지이상=0.27
	대지내공지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3.0	
	대지내통로	보차혼용통로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4.0	
의무형			인센티브량의 20%	

○ 인센티브 유형 : D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GC8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위치특성			간선부 특화거리	
기준/허용용적률			300% / 630%	
중점계획목표			• 권장용도를 통한 특화거리 육성	
항 목		세 분	완화기준(지침)	비 고
유도형	공동개발	공동개발 (권장/자율적)	기준용적률×0.28	2필지=0.26 3필지=0.27 4필지이상=0.28
	대지내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3.0	
	건축물용도	용도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0.6	
규제형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	기준용적률×0.27	2필지=0.25 3필지=0.26 4필지이상=0.27
	대지내공지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3.0	
의무형			인센티브량의 20%	

○ 인센티브 유형 : E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GC9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위치특성			이면부	
기준/허용용적률			300% / 500%	
중점계획목표			• 건축한계선, 보차혼용통로 확대와 공동개발을 통한 정연한 대지규모 확보 및 가로환경 조성	
항 목		세 분	완화기준(지침)	비 고
유도형	공동개발	공동개발 (권장/자율적)	기준용적률×0.12	2필지=0.10 3필지=0.11 4필지이상=0.12
	대지내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2.3	
	건축물용도	용도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0.75	
규제형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	기준용적률×0.19	2필지=0.18 3필지=0.19
	대지내공지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3.0	
	대지내통로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0.6	
	대지내통로	보차혼용통로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1.3	
의무형			인센티브량의 20%	

○ 인센티브 유형 : F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GC10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위치특성			이면부 특화거리	
기준/허용용적률			300% / 500%	
중점계획목표			• 권장용도를 통한 특화거리 육성	
항 목		세 분	완화기준(지침)	비 고
유도형	공동개발	공동개발 (권장/자율적)	기준용적률×0.11	2필지=0.09 3필지=0.10 4필지이상=0.11
	대지내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2.0	
	건축물용도	용도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0.39	
규제형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	기준용적률×0.09	2필지=0.08 3필지=0.09
	대지내공지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3.0	
	대지내통로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1.5	
의무형			인센티브량의 20%	

○ 인센티브 유형 : G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SR1,2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위치특성			간선부	
기준/허용용적률			300% / 360%	
중점계획목표			• 건축물의 권장용도 수용을 통한 지역중심성 유도 • 건축한계선 및 보차혼용통로를 통한 가로환경 개선 유도	
항 목		세 분	완화기준(지침)	비 고
유도형	공동개발	공동개발 (권장/자율적)	기준용적률×0.04	2필지=0.02 3필지=0.03 4필지이상=0.04
	대지내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0.6	
	건축물용도	용도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0.2	
규제형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	기준용적률×0.03	2필지=0.01 3필지=0.02 4필지이상=0.03
	대지내공지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3.0	
	대지내통로	보차혼용통로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0.5	
의무형			인센티브량의 20%	

○ 인센티브 유형 : H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GR1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위치특성			이면부	
기준/허용용적률			170% / 200%	
중점계획목표			• 건축한계선, 보차혼용통로 확대와 공동개발을 통한 정연한 대지규모 확보 및 가로환경 조성	
항 목		세 분	완화기준(지침)	비 고
유도형	공동개발	공동개발 (권장/자율적)	기준용적률×0.04	2필지=0.02 3필지=0.03 4필지이상=0.04
	건축물용도	용도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0.25	
규제형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	기준용적률×0.01	2필지=0.01
	대지내공지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0.9	
	대지내통로	보차혼용통로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3.5	
의무형			인센티브량의 20%	

○ 인센티브 유형 : I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SD1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위치특성			특별계획구역(연서시장)	
기준/허용용적률			600% / 800%	
중점계획목표			• 권장용도계획을 통한 지역중심성 기능 유도 • 대지 내 공지확보를 통한 시민 보행 및 휴식공간 마련 • 지하철 연결통로 조성을 통한 가로환경 및 보행환경 개선	
항 목		세 분	완화기준(지침)	비 고
유도형	대지내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3.0	
	건축물용도	용도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0.4	
규제형	대지내공지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0.7	
	대지내통로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0.5	
	도시경관개선	지하철 건축물내 설치	기준용적률×0.1	
의무형			인센티브량의 20%	

○ 인센티브 유형 : J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SD2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위치특성			특별계획구역(흥창물산부지)	
기준/허용용적률			300% / 630%	
중점계획목표			• 권장용도계획을 통한 지역중심성 기능 유도 • 대지 내 공지확보를 통한 시민 보행 및 휴식공간 마련	
항 목		세 분	완화기준(지침)	비 고
유도형	대지내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3.0	
	건축물용도	용도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1.0	
규제형	대지내공지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3.0	
	대지내통로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4.0	
의무형			인센티브량의 20%	

○ 인센티브 유형 : K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SD3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위치특성			특별계획구역(연지시장)	
기준/허용용적률			600% / 800%	
중점계획목표			• 권장용도계획을 통한 지역중심성 기능 유도 • 대지 내 공지확보를 통한 시민 보행 및 휴식공간 마련	
항 목		세 분	완화기준(지침)	비 고
유도형	대지내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3.0	
	건축물용도	용도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0.4	
규제형	대지내공지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1.0	
의무형			인센티브량의 20%	

○ 인센티브 유형 : L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SD4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위치특성			특별계획구역(운동장시설용지)	
기준/허용용적률			300% / 360%	
중점계획목표			• 권장용도계획을 통한 지역중심성 기능 유도 • 대지 내 공지확보를 통한 시민 보행 및 휴식공간 마련	
항 목		세 분	완화기준(지침)	비 고
유도형	대지내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2.0	
	건축물용도	용도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0.25	
규제형	대지내공지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0.5	
	대지내통로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0.5	
	건축물용도	용도지정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0.2	
의무형			인센티브량의 20%	

○ 인센티브 유형 : M
(연신내 특별계획구역⑤ : 세부개발계획 수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180호)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SD5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위치특성			특별계획구역(연신내)	
기준/허용용적률			300% / 630%	
중점계획목표			• 권장용도계획을 통한 지역중심성 기능 유도 • 대지 내 공지확보를 통한 시민 보행 및 휴식공간 마련	
항 목		세 분	완화기준(지침)	비 고
계획 유도	도시경제 활성화	경제활성화 정책 유도용도	기준용적률×(도입시설면적/대지면적)×0.25	최대 100%
	생활SOC 문화인프라	생활SOC, 공연장, 박물관, 영화상영관 등	기준용적률×(도입시설면적/대지면적)×0.2	최대 50%
	공익시설	건축물내 공익시설, 특정층(최상층)개방, 실내 공개공지	기준용적률×(도입시설면적/대지면적)×0.1	최대 50%
	보행가로 활성화	저층부가로 활성화용도, 무장애도시조성	정량부여 30%	최대 50%
		공공보행통로 등 (지하보행통로포함)	기준용적률×(도입시설면적/대지면적)×2	최대 30%
	안전방재	방재 관련시설	정량부여 30%	최대 30%
의무형	친환경개발	녹색건축물 인증,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 신재생에너지이용시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상 성능대체비율 따라 완화	최대 100%

2) 변경

■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기준

1. 허용용적률 산정을 위한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계획유도 인센티브와 중점 인센티브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2. 허용용적률 산정 시, 계획유도 인센티브의 합은 해당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중점 인센티브는 해당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중점 인센티브가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한 인센티브량은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으로 대체 불가하며, 준수한 중점 인센티브량만 인정함)
3. 공동개발(지정)계획에 따라 공동개발 시 하나의 개발규모로 보아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는다.

   단, 공동개발(권장)계획이 결정된 필지 또는 자율적 공동개발 권장구역 내 필지를 공동개발(지정)계획이 결정된 필지와 공동개발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공동개발(지정)계획이 결정된 필지는 1필지로 산정한다
4. 공동개발(권장)계획에 따라 공동개발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이 경우 필지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5. 최대개발규모 이내에서 토지소유자가 연접필지와 자율적으로 공동개발 할 수 있다.
6. 2개 이상의 연접한 필지가 건축협정을 할 경우, 공동개발로 보지 않는다.
7. 권장용도의 면적은
   - 권장용도의 경우는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지상부 전체 연면적(주차장 제외)의 30%이상일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8. 1층부 형태는 시행지침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9. 은평구 고시 제2019-38호에 따라 건축선으로 결정된 필지의 경우, 건축한계선을 통해 조성되는 전면공지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건축선보다 추가하여 건축한계선으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예 : 건축한계선 5m 결정 시 → 건축선 3m 부분 제외 후 나머지 2m에 대해서만 인센티브 부여)
10. 타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사항(조경, 건축선 등)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없으며,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에서 성격이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인센티브 적용은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계산할 수 없다.
11. 친환경 인센티브는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항목	세분	세분계획기준	α 적용				비고
			일반 상업	일반 상업 (종상향)	준주거 지역	제2종 일반 주거	
물환경	빗물 이용시설	기준용적률×α	0.08	0.18	0.04	0.04	•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시설 침투량(ton/hr)의 합이 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적×0.02 이상이 되도록 설치
	중수도	기준용적률×α	0.08	0.18	0.04	0.04	• 총 사용량의 10%이상 처리시설 설치 시
녹지 조성	자연지반	기준용적률× (보존면적/대지면적)×α	0.40	1.00	0.20	0.21	• 자연토양 및 투수성 포장 • 지하구조물 미설치 시
	옥상녹화	기준용적률× (녹화면적/대지면적)×α	0.20	0.45	0.10	0.11	•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30%까지만 허용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 (설치면적/대지면적)×α	0.20	0.12	0.10	0.03	• 기준용적률 × 0.05 이내 • 필로티 하부에 설치 시 용적률 인센티브 미부여
대기	환경친화적	기준용적률×α	0.10	0.23	0.05	0.05	[주거:300세대 이상]

항목	세분	세분계획기준	α 적용				비고
			일반 상업	일반 상업 (종상향)	준주거 지역	제2종 일반 주거	
환경	자동차						• 전체 주차면수의 5% 이상 전용 주차공간 제공 및 전체 주차 면수의 2% 이상 전기차 충전용 콘센트 설치시 [비주거:연면적 1만㎡ 이상] • 주차면수의 5% 이상 전용 주차공간 제공 및 전체 주차면수의 1% 이상 전기차충전기 설치시 ※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른 의무설치 대상은 제외
열환경	생태면적률	기준용적률× (생태면적률 인정면적/대지면적)× α	0.40	0.05	0.20	0.21	• 관련법령상 의무사항은 미적용 • 자연지반, 옥상녹화, 녹색주차장과 중복 적용 불가

주1)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건축계획에 반영한 경우에 적용받는 인센티브 용적률을 말한다.
주2) 계획유도 인센티브라 함은 지구단위계획 목적 달성을 위한 이행 유도가 필요한 항목을 말한다.
주3) 중점 인센티브라 함은 지구통합기본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중점 계획 항목을 말한다.
주4) 해당 인센티브량이라 함은 허용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을 뺀 값을 말한다.(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x1.2)
주5) 중수도시설, 빗물관리시설, 옥상녹화의 경우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 및 조성할 경우에 한하여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주6) 녹색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의 10% 이상(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을 녹색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에 한하여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유형(변경)

용도지역		공간특성	유형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계획방향
일반상업지역	일반상업	전구역	가	600	800	• 지역중심 강화를 위한 용도권장 및 규모있는 개발 유도
	일반주거 → 일반상업 (종상향)	전구역	나	300	630	• 지역중심 강화를 위한 용도권장 및 규모있는 개발 유도
준주거지역		간선부	다	300	360	• 지역중심 강화를 위한 용도권장 및 규모있는 개발 유도 • 건축한계선 및 보차혼용통로를 통한 가로환경 개선 유도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이면부	라	170	200	• 공동개발을 통한 정연한 대지규모 확보
일반 상업지역		연서시장 특별계획구역 (①)	마	600	800	• 지역중심 강화를 위한 용도권장 및 규모있는 개발 유도 • 대지 내 공지확보를 통한 시민 보행 및 휴식공간 마련 • 지하철 연결통로 조성을 통한 가로환경 및 보행환경 개선
		연지시장 특별계획구역 (③)				
		흥창물산부지 특별계획구역 (②)	바	300	630	• 권장용도계획을 통한 지역중심기능 유도 • 대지 내 공지확보를 통한 시민 보행 및 휴식공간 마련
		연신내 특별계획구역 (⑤)	사	300	630	• 권장용도계획을 통한 지역중심기능 유도 • 대지 내 공지확보를 통한 주민 보행 및 휴식공간 마련
준주거, 제2종 → 준주거 상향 시		운동장시설용지 특별계획구역 (④)	아	300	360	• 지역중심 강화를 위한 용도권장 및 규모있는 개발 유도 • 대지 내 공지확보를 통한 시민 보행 및 휴식공간 마련
일반 상업지역		흥창물산부지 특별계획가능구역 (⑥)	자	300	630	• 권장용도계획을 통한 지역중심기능 유도 • 대지 내 공지확보를 통한 주민 보행 및 휴식공간 마련
제2종 → 제3종 상향 시		불광동 325-4번지 특별계획가능구역(⑦)	차	200	230	• 권장용도계획을 통한 생활편의기능 유도 • 대지 내 공지확보를 통한 주민 보행 및 휴식공간 마련

※ 연신내 특별계획구역은 정비계획에서 제시한 인센티브 항목을 따름

○ 인센티브 유형 : 가

구 분			계 획 내 용	
분류코드			GC1, GC2, GC3, GC4, GC5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위치특성			간선부, 이면부	
기준/허용용적률			600% / 800%	
중점계획목표			• 지역중심 강화를 위한 용도권장 및 규모있는 개발 유도	
항 목		세 분	완화기준(지침)	비 고
중점형	공동개발	공동개발 (권장/자율)	기준용적률×α	2필지=0.08 3필지=0.10 4필지 이상=0.12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연면적)×0.4	30%이상 설치 주차장 제외
계획 유도형	대지내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0.3	-
		전면공지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0.3	-
		보차혼용통로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0.3	-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0.3	-
	건축물 형태 및 경관	1층부 형태 등	기준용적률×0.04	시행지침 참고
	친환경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등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기준(공통사항) 참조	-

○ 인센티브 유형 : 나

구 분			계 획 내 용	
분류코드			GC6, GC7, GC8, GC9, GC10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96종상향)	
위치특성			간선부	
기준/허용용적률			300% / 630%	
중점계획목표			• 지역중심 강화를 위한 용도권장 및 규모있는 개발 유도	
항 목		세 분	완화기준(지침)	비 고
중점형	공동개발	공동개발 (권장/자율)	기준용적률×α	2필지=0.10 3필지=0.2 4필지 이상=0.4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연면적)×1.33	30%이상 설치 주차장 제외
계획 유도형	대지내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1.0	-
		전면공지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1.0	-
		벽면한계선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1.0	-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1.0	-
	건축물 형태 및 경관	1층부 형태 등	기준용적률×0.12	시행지침 참고
	친환경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등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기준(공통사항) 참조	-

○ 인센티브 유형 : 다

구 분			계 획 내 용	
분류코드			SR1, SR2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위치특성			간선부	
기준/허용용적률			300% / 360%	
중점계획목표			• 지역중심 강화를 위한 용도권장 및 규모있는 개발 유도 • 건축한계선 및 보차혼용통로를 통한 가로환경 개선 유도	
항 목		세 분	완화기준(지침)	비 고
중점형	공동개발	자율적 공동개발	기준용적률×α	2필지=0.05 3필지=0.06 4필지 이상=0.07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연면적)×0.23	30%이상 설치 주차장 제외
계획 유도형	대지내공지	전면공지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0.33	-
		벽면한계선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0.33	-
		보차혼용통로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0.33	-
	친환경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등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기준(공통사항) 참조	-

○ 인센티브 유형 : 라

구 분			계 획 내 용	
분류코드			GR1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위치특성			이면부	
기준/허용용적률			170% / 200%	
중점계획목표			• 공동개발을 통한 정연한 대지규모 확보	
항 목		세 분	완화기준(지침)	비 고
중점형	공동개발	공동개발 (권장/자율)	기준용적률×α	2필지=0.03 3필지=0.05 4필지 이상=0.07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연면적)×0.235	30%이상 설치 주차장 제외
계획 유도형	대지내공지	전면공지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0.23	-
		벽면한계선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0.23	-
		보차혼용통로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0.23	-
	친환경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등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기준(공통사항) 참조	-

○ 인센티브 유형 : 마 (연서시장 특별계획구역①, 연지시장 특별계획구역③)

구 분			계 획 내 용	
분류코드			SD1, SD3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위치특성			특별계획구역(연서시장, 연지시장)	
기준/허용용적률			600% / 800%	
중점계획목표			• 지역중심 강화를 위한 용도권장 및 규모있는 개발 유도 • 대지 내 공지확보를 통한 시민 보행 및 휴식공간 마련 • 지하철 연결통로 조성을 통한 가로환경 및 보행환경 개선	
항 목		세 분	완화기준(지침)	비 고
중점형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연면적)×0.8	연면적의 30%이상 설치
계획 유도형	대지내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0.3	-
		전면공지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0.3	-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0.3	-
	건축물 형태 및 경관	1층부 형태 등	기준용적률×0.035	시행지침 참고
		고층부 탑상형	기준용적률×0.035	
	친환경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등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기준(공통사항) 참조	-

○ 인센티브 유형 : 바 (홍창물산부지 특별계획구역②)

구 분			계 획 내 용	
분류코드			SD2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위치특성			특별계획구역(홍창물산부지)	
기준/허용용적률			300% / 630%	
중점계획목표			• 권장용도계획을 통한 지역중심기능 유도 • 대지내 공지확보를 통한 시민 보행 및 휴식공간 마련	
항 목		세 분	완화기준(지침)	비 고
중점형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연면적)×2.67	연면적의 30%이상 설치
계획 유도형	대지내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0.86	-
		전면공지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0.86	-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0.86	-
	건축물 형태 및 경관	1층부 형태 등	기준용적률×0.13	시행지침 참고
		고층부 탑상형	기준용적률×0.13	
	친환경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등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기준(공통사항) 참조	-

○ 인센티브 유형 : 사 (연신내 특별계획구역⑤ - 세부개발계획 수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180호)

구 분			계 획 내 용	
분류코드			SD5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위치특성			특별계획구역(연신내)	
기준/허용용적률			300% / 630%	
중점계획목표			• 권장용도계획을 통한 지역중심기능 유도 • 대지 내 공지확보를 통한 시민 보행 및 휴식공간 마련	
항 목		세 분	완화기준(지침)	비 고
계획 유도형	도시경제활성화	경제활성화 정책 유도용도	기준용적률×(도입시설면적/대지면적)×0.25	최대 100%
	생활SOC 문화인프라	생활SOC, 공연장, 박물관,영화상영관 등	기준용적률×(도입시설면적/대지면적)×0.2	최대 50%
	공익시설	건축물내 공익시설, 특정층(최상층)개방, 실내 공개공지	기준용적률×(도입시설면적/대지면적)×0.1	최대 50%
	보행가로 활성화	저층부가로 활성화용도, 무장애도시조성	정량부여 30%	최대 50%
		공공보행통로 등 (지하보행통로포함)	기준용적률×(도입시설면적/대지면적)×2	최대 30%
	안전방재	방재 관련시설	정량부여 30%	최대 30%
의무형	친환경개발	녹색건축물 인증,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 신재생에너지이용시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상 성능대체비율 따라 완화	최대 100%

○ 인센티브 유형 : 아 (운동장시설용지 특별계획구역④)

구 분			계 획 내 용	
분류코드			SD4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위치특성			특별계획구역(운동장시설용지)	
기준/허용용적률			300% / 360%	
중점계획목표			• 권장용도계획을 통한 지역중심성 기능 유도 • 대지 내 공지확보를 통한 시민 보행 및 휴식공간 마련	
항 목		세 분	완화기준(지침)	비 고
중점형	건축물용도	용도지정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연면적)×0.24	연면적의 30%이상 설치
		권장용도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연면적)×0.24	연면적의 30%이상 설치
계획 유도형	대지내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0.16	-
		전면공지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0.16	-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0.16	-
	건축물 형태 및 경관	1층부 형태 등	기준용적률×0.23	시행지침 참고
		고층부 탑상형	기준용적률×0.26	
	친환경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등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기준(공통사항) 참조	-

○ 인센티브 유형 : 자 (흥창물산부지 특별계획가능구역⑥)

구 분			계 획 내 용	
분류코드			-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위치특성			특별계획가능구역(흥창물산부지)	
기준/허용용적률			300% / 630%	
중점계획목표			• 권장용도계획을 통한 지역중심기능 유도 • 대지내 공지확보를 통한 시민 보행 및 휴식공간 마련	
항 목		세 분	완화기준(지침)	비 고
중점형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연면적)×0.27	연면적의 30%이상 설치
계획 유도형	대지내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1.5	-
		전면공지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1.5	-
	건축물 형태 및 경관	1층부 형태 등	기준용적률×0.11	시행지침 참고
		고층부 탑상형	기준용적률×0.11	
	친환경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등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기준(공통사항) 참조	-

○ 인센티브 유형 : 차 (불광동 325-4번지 특별계획가능구역⑦)

구 분			계 획 내 용	
분류코드			-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위치특성			특별계획가능구역(불광동 325-24번지)	
기준/허용용적률			200% / 230%	
중점계획목표			• 권장용도계획을 통한 생활편의기능 유도 • 대지 내 공지확보를 통한 주민 보행 및 휴식공간 마련	
항 목		세 분	완화기준(지침)	비 고
중점형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연면적)×0.37	연면적의 30%이상 설치
계획 유도형	대지내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0.1	-
		전면공지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0.1	-
		공공보행통로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0.1	-
	건축물 형태 및 경관	1층부 형태 등	기준용적률×0.02	시행지침 참고
		고층부 탑상형	기준용적률×0.02	
	친환경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등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기준(공통사항) 참조	-

나.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 변경

1) 기정

항 목	산정방식	비고
상한 용적률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토지 + 0.7×α건축물)	• α토지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면적/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 α건축물 : 공공시설등 부지(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 제공 면적/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 가중치 : 공공시설등 제공 부지의 해당 용적률/사업부지 용적률(2개 이상의 용도지역인 경우 면적대비 가중평균한 용적률)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는 '기부채납 부지(토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 토지지분' 포함

2) 변경

<table>
<tr><th>항 목</th><th colspan="3">산정방식</th><th>비고</th></tr>
<tr><td rowspan="4">상한 용적률</td><td colspan="3">허용 or 기준용적률×(1+1.3×가중치×α토지 + 1.0×α건축물+1.0×α현금)</td><td>• α토지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α건축물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α현금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현금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등 부지의 해당 용적률</td></tr>
<tr><td rowspan="2">지하철출입구등</td><td>대지 내 설치 시</td><td>용적률×(지하철출입구 등의 건폐면적/대지면적)</td><td rowspan="2">• 공공보도의 보행환경 개선과 도시미관향상을 위하여 지하철 출입구·환기구·배전함 등을 건물 또는 대지 내 설치하여 기부채납 하거나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td></tr>
<tr><td>건물에 설치 시</td><td>용적률×(지하철출입구 등의 연면적/건물 연면적)</td></tr>
<tr><td>친환경</td><td colspan="2">허용용적률×(1+0.7×Σ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β))</td><td>[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 비율(β)]
①ZEB인증(녹색건축법)
ZEB등급 / ZEB1 / ZEB2 / ZEB3 / ZEB4 / ZEB5
완화비율 / 15% / 14% / 13% / 12% / 11%
②녹색건축 및 건축물에너지효율 인증(녹색건축법)
최우수(그린1등급) / 우수(그린2등급)
1+등급 / 9% / 6%
1등급 / 6% / 3%
③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녹색건축법)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 / 15%이상 / 20%이상 / 25%이상
완화비율 / 5% / 10% / 15%
④장수명주택인증(주택법)
장수명주택 인증등급 / 최우수 / 우수
완화비율 / 15% / 10%
※ ①및②항목은 중복 적용 불가
①~③항목 중복 적용시 완화비율의 합은 15% 이내(0.7X(Σ①~③)≤15%)</td></tr>
</table>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는 '기부채납 부지(토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 토지지분' 포함

다. 높이 완화 기준 : 변경

1) 기정

항 목	완화조건	산정방식
기준높이 완화	권장용도	• 기준높이 X (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
	공개공지	• 기준높이 X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공공시설제공(기부채납)	• 기준높이 X (제공면적/대지면적)
	공공기여시설	• 기준높이 X 0.1
최고높이 완화	기부채납	•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최고높이 X (1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주) 1. 용적률 완화(상한용적률)와 중복하여 완화 적용 가능
2. 공공기여시설은 300㎡이상으로 최상층 개방시설(근린생활시설(레스토랑, 카페 등), 문화시설(도서관, 미술관 등) 및 노유자시설)에 한함.
3. 최고높이 완화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지역에 한하여 적용 가능함.
- 전면도로20m이상, 대지면적 2,000㎡이상에 한하여 심의를 통하여 완화 가능
4. 최고높이 완화는 별도의 추가 기부채납시 최고높이에서 1.2배까지 최고높이 추가 완화 가능
5. 최고높이 완화 적용시 추가 기부채납에 따른 완화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공된 부지면적은 용적률 완화(상한용적률) 및 기준높이 완화와 중복 적용할 수 없다.

2) 변경

항 목	완화조건	산정방식
최고높이 완화(α)	공공시설 제공 기부채납	• 최고높이 X [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주1) 공공시설 제공 등에 따른 인센티브는 높이와 용적률에 중복적용 가능
주2) "최고높이" 란 "기준높이" 와 기준높이 완화 항목을 준수하여 받은 "인센티브 높이(β)" 를 합한 높이를 말함
주3) 최고높이 완화는 간선변 필지에 한함
주4) 최고높이 완화는 최고높이의 1.2배[(기준높이+β+α)≤최고높이X1.2]까지 가능

항 목	완화조건	산정방식
기준높이 완화(β)	권장용도	• 기준높이 X (권장용도면적/연면적)
	공동개발(권장/자율)	• 기준높이 X 0.1

주5) 완화조건에 따른 인센티브는 높이와 용적률에서 중복 적용 가능
주6) 특별계획(가능)구역은 공동개발로 인정하여 기준높이 완화 가능

■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기준높이 완화	• 완화조건 - 삭제 : 공개공지, 공공시설제공(기부채납) 공공기여시설 - 추가 : 공동개발(권장/자율)	• 지역중심기능 강화를 위한 규모있는 개발유도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대지내 공지 관한 결정조서 : 변경

■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기 정	변 경(안)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 간선도로의 건축선 후퇴부분의 보행공간, 녹지조성 • 연신내 구역의 상업활동 및 보행환경 제고 • 인접한 기존 보도 및 공공공지와 연계 조성	좌동	-
	공개공지	• 가각부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되 인접필지와 같이 조성할 경우 서로 인접배치하여 조성함을 권장	좌동	-
	공공 보행통로	• 원활한 보행동선체계수립으로 보행환경 개선 • 도로 중심선에서 당해 폭원 확보(3m~4m)	• 원활한 보행동선체계수립으로 보행환경 개선 • 공공보행통로 폭원 3m 확보	이면 도로변
	보차 혼용통로	• 이면도로변 효율적인 교통소통 유도를 위한 보차혼용통로 지정 • 도로 중심선에서 당해 폭원 확보(4m~6m)	좌동	이면 도로변

주) 공공보행통로를 필로티 구조로 조성할 경우 높이 6m이상 확보

■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공 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의 폭원 3~4m에서 3m로 변경	• 이면부 공공보행통로 폭원 3m로 통합

2.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 결정조서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기 정	변 경(안)	
차량출입불허구간	• 주요간선도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이면부 도로가각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좌동	-
공동주차출입구	• 주차통로의 확보가 어려운 간선도로변 대지	좌동	통일로, 연서로변
보행자우선도로	-	•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	연서로 27길,28길, 29길 일대

■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보행자 우선도로	• 연서로 27길, 28길, 29길 일대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하여 보행자 중심 공간 조성

3. 친환경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 결정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기 정	변 경(안)
생활환경부문	물환경	자연지반보존	• 저층부의 바닥, 비건폐지등을 자연재료로 조성하되 지하부 인공구조물 미설치 권장	좌동
		옥상녹화	• "서울특별시 보급형 옥상녹화조성기법 (2001.10.24)"에 의한 설치 권장	•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2017.12)' 에 따라 조성할 것을 권장
		녹색주차장	• "서울특별시 녹색주차장 활성화계획" 에 따라 설치토록 권장	좌동
		중수도시설	• 하수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설치 권장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설치할 것을 권장
		빗물이용시설	•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 및 관리기준",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지침"에 따라 설치토록 권장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설치할 것을 권장
		생태면적률	-	•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2016)' 의 기준 준수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시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령」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산자부 고시 제2007-52)" 의 기준에 따라 시설 설치 권장	폐지
		녹색건축인증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기준' 에 따를 것을 권장
		에너지효율 등급인증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준' 에 따를 것을 권장

■ 변경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물환경	옥상녹화	• 현행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 내용 반영	• 기 운영중인 제도 적용
	중수도시설	• 현행 법령 및 조례, 고시내용 반영	• 기 운영중인 제도 적용
	빗물이용시설	• 현행 법령 및 조례, 고시내용 반영	• 기 운영중인 제도 적용
	생태면적률	• 신설	• 기 운영중인 제도 적용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시설	• 폐지	•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 폐지(2015.7.29.)
	녹색건축인증	• 신설	• 기 운영중인 제도 적용
	에너지효율 등급인증	• 신설	• 기 운영중인 제도 적용

5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가. 기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음.

구분	경미한 사항
용도지역등 변경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 제25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가구 및 획지계획	3. 가구(영 제48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획지면적의 30% 이내의 변경인 경우
	5. 영 제46조 제7항 제2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건축물배치 등	6. 건축선(벽면선 포함)의 1.0m 이내의 변경인 경우
	7.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건축물 높이	8. 건축물 높이의 20% 이내의 변경인 경우
교통처리계획	9. 법 제5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중 주차장출입구 ·차량출입구· 보행자출입구의 위치변경
기타계획	10.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깊이·배치 또는 규모
	11. 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12. 간판의 크기·형태·색채 또는 재질
	13.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계획
	14.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15. 생물서식공간의 보호·조성·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16.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가)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 나) 공개공지, 쌈지형공지, 대지 내 통로의 위치 및 조성방침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 다) 전면공지의 조성방법의 변경 라) 수종 · 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마) 구역과 연접한 필지의 공동개발 (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 바) 건축선에 접해야 하는 건축물 벽면에 관한 사항 사) 필지면적의 20%이내에서의 필지분할 가능선의 변경

주1) 2,3,4,6,8번의 경우에는 2회이상 변경하는 때에는 총 변경되는 합을 말함.
주2) 향후 관련지침 및 법령의 변경시 그에 따르도록 함.

나. 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음.

구분	경미한 사항
법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는 경우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 제25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가구(영 제42조의3 제2항 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3. 획지(劃地 : 구획된 한 단위의 토지를 말한다.) 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 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영 제46조 제7항 제2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6. 건축선 또는 차량출입구의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
	7.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8.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영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10.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중 주차장 출입구, 차량 출입구 또는 보행자 출입구의 위치 변경 및 보행자 출입구의 추가 설치 나)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깊이·배치 또는 규모 다) 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라) 간판의 크기·형태·색채 또는 재질 마)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계획 바)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사) 생물 서식 공간의 보호·조성·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아)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11. 그 밖에 영 제25조 제4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유사한 사항으로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
	12.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표 계속)

구분	경미한 사항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는 경우	13.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관한 사항(단,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외) 나)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필지분할 가능선 신설 포함) 다) 공개공지, 쌈지형공지, 대지 내 통로의 위치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 라) 구역과 연접한 필지의 공동개발(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 마) 필지면적의 20% 이내에서의 필지분할 가능선의 변경 바) 획지계획(가구, 공동개발 등)의 변경에 따른 차량출입불허구간 및 주차출입구(공동주차출입구 포함)의 폐지·변경(신설은 제외)

주1) 향후 관련지침 및 법령의 변경 시 그에 따르도록 함.
주2) 2,3,4,9호 및 6호 가목의 경우에는 2회 이상 변경하는 때에는 총 변경되는 합을 말함.
주3) 5호의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이란 공동개발(지정)계획을 말한다.
주4) 13호 다목의 대지 내 통로라 함은 공공보행통로 및 보차혼용통로를 말한다.
주5) 13호의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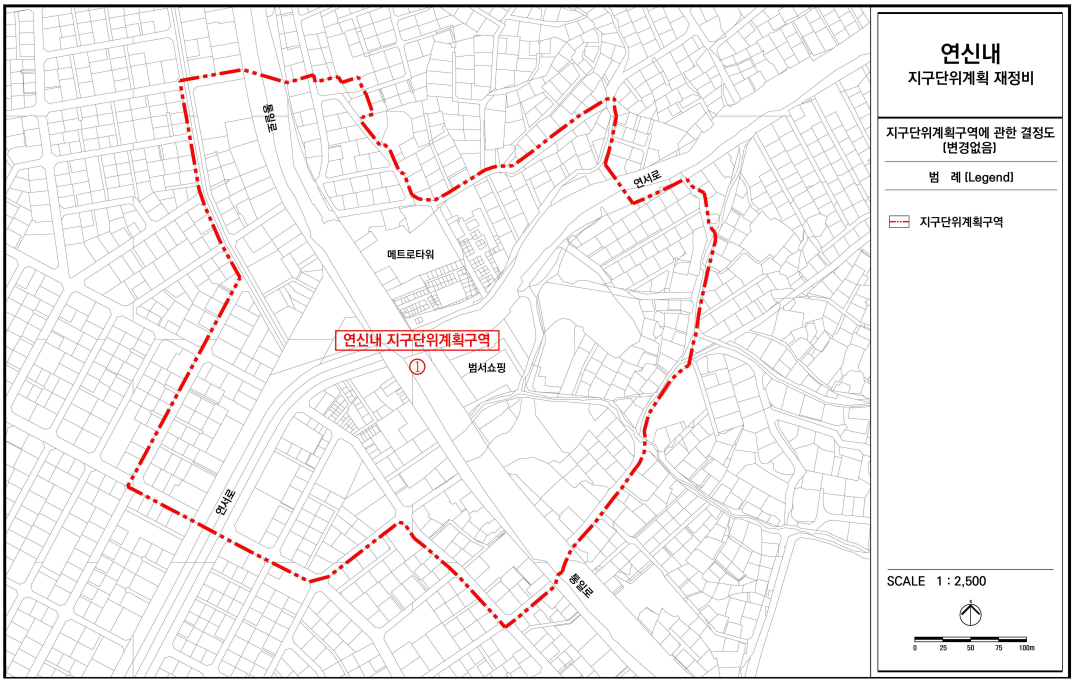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법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는 경우	• 현행 법령 내용 반영	• 법령 개정사항 반영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는 경우	• 대지분할·교환에 관한 사항 세부사항 수립 • 획지계획 변경에 따른 차량출입구간 및 주차출입구 폐지·변경 추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관한 사항 추가 • 전면공지 조성방법의 변경 및 수종, 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 건축선에 접해야 하는 건축물 벽면에 관한 사항의 변경 사항 삭제	•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기준 추가 • 지구단위계획 상 미결정 사항에 대해서 경미한 사항 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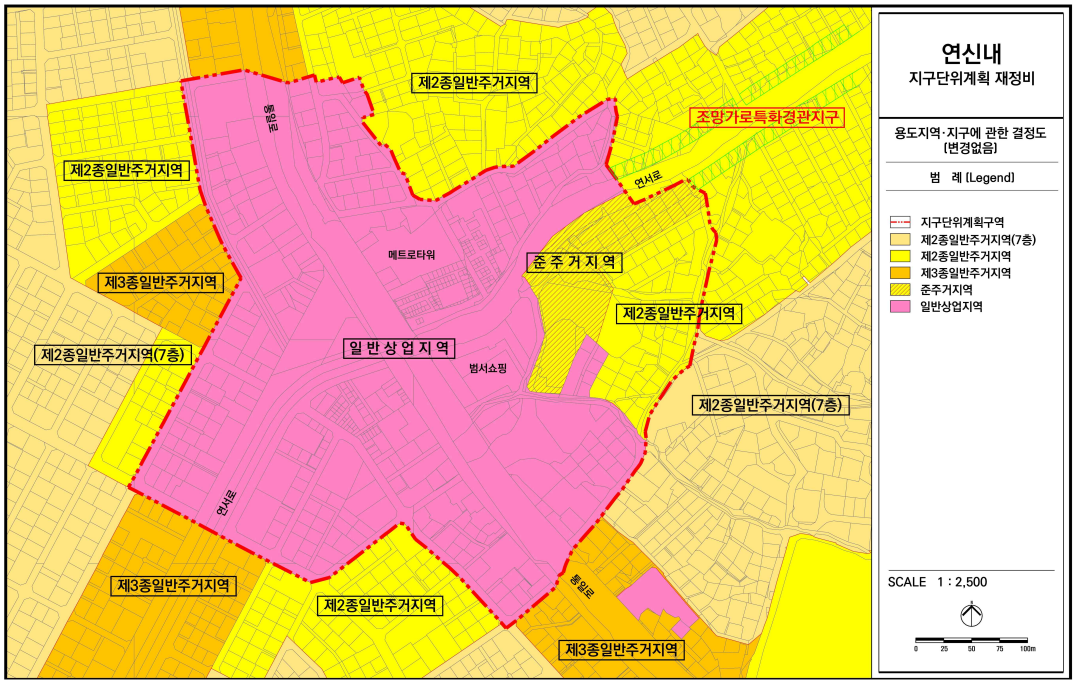
Ⅴ. 관련도면: 붙임 참조(관련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으로 측량 등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Ⅵ.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84) 및 은평구 도시계획과(☎02-351-7412)에 비치·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서비스(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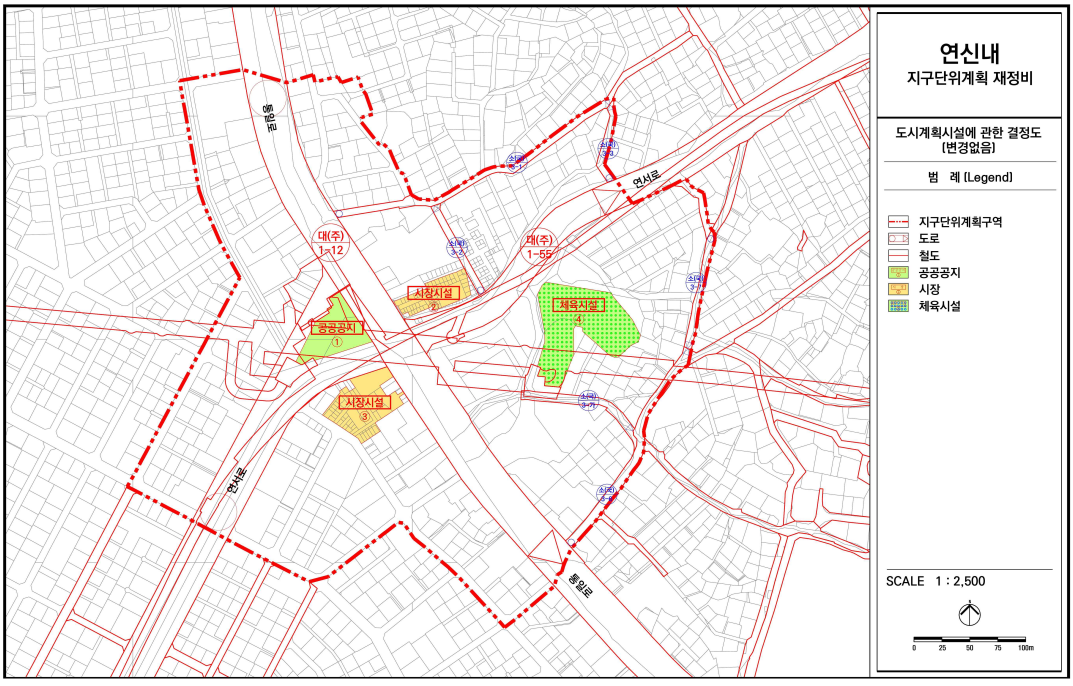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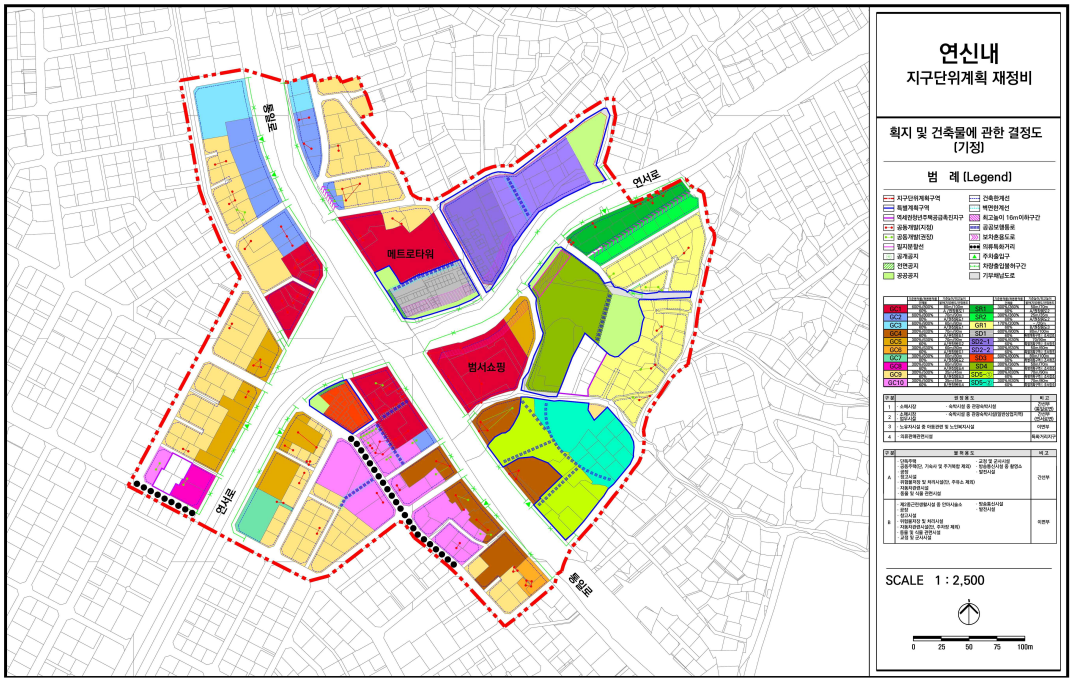
■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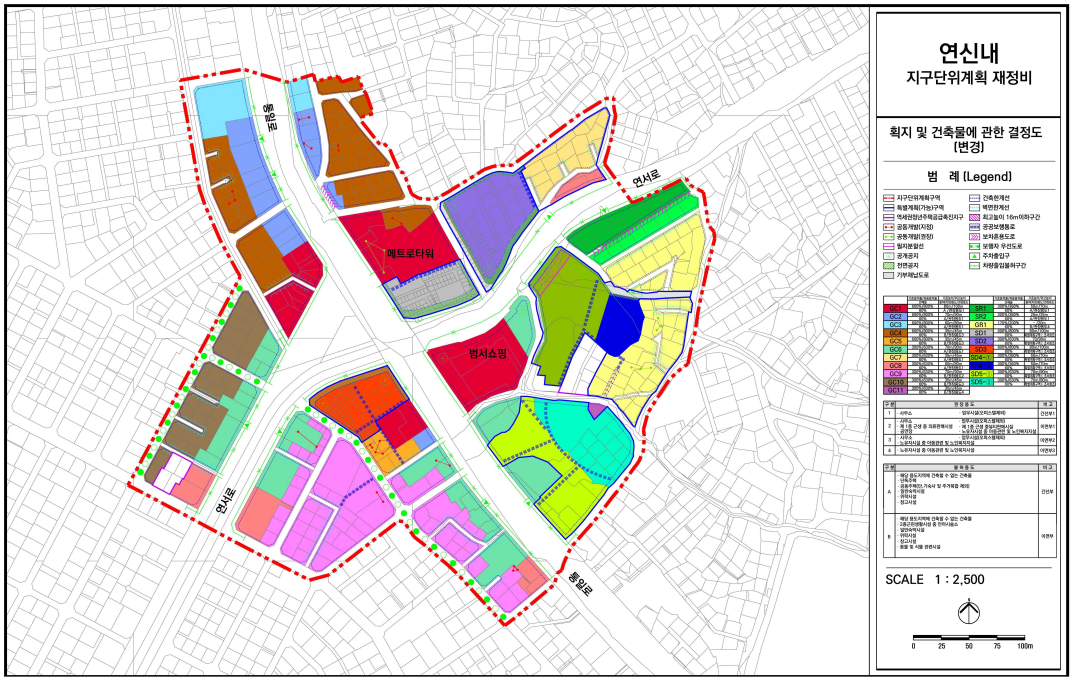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기정)도



※ 특별계획(가능)구역과 역세권청년주택공급촉진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은 해당 지침에 따름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안)도



※ 특별계획(가능)구역과 역세권청년주택공급촉진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은 해당 지침에 따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88호

방배제7주택재건축 정비계획(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93(2012.7.26.)호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17-83(2017.07.2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1-109(2021.06.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2-102호(2022.05.06.)호로 정비계획 변경된 방배제7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방배제7주택재건축정비사업(변경없음)
2. 정비구역 지정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 정	방배 7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91-3번지 일대	17,549.8	-	17,549.8	

3.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추정 비례율	•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 수입 - 총 지출) / 총자산 총액 X 100% • 추정비례율 : 114.82% ⇒ (502,460,605천원 - 279,641,286천원) / 194,050,000천원 X 100 = 114.82% - 총 수입 추정 : 502,460,605천원 - 총 지출 추정 : 279,641,286천원 - 종전자산총액 추정 : 194,050,000천원
개별 종전 자산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 가격 = 2023년 공동주택 공시지가 X 보정률(1.62) ※ 실거래가기준 보정률은 구체성이 다소 약하고 종전자산 가격이 향후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산정되는 바, 감정평가 전례를 기준으로 산출한 보정률을 적용함 (적용 토지보정률 : 2.08, 적용 공동주택보정률 : 1.62)

<table>
<tr><td>추정분담금
산출</td><td>•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조합원 분양가 - 권리가액(종전자산 추정가액 X 비례율)
<table>
<tr><th colspan="2">조합원 분양가(a)(천원)</th><th>추정 권리가액(b)</th><th>추정분담금(a-b)</th></tr>
<tr><td>전용 59.94㎡형</td><td>1,193,300</td><td rowspan="12">개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X 추정비례율(114.82%)</td><td rowspan="12">조합원 분양가
- 추정 권리가액
(+ : 부담 / - : 환급)</td></tr>
<tr><td>전용 59.97㎡형</td><td>1,192,100</td></tr>
<tr><td>전용 72.98㎡형</td><td>1,409,600</td></tr>
<tr><td>전용 84.57㎡형</td><td>1,535,600</td></tr>
<tr><td>전용 84.86㎡형</td><td>1,537,400</td></tr>
<tr><td>전용 108.98㎡형</td><td>1,873,200</td></tr>
<tr><td>전용 113.91㎡형</td><td>1,873,200</td></tr>
<tr><td>전용 113.40㎡형</td><td>1,907,200</td></tr>
<tr><td>전용 133.97㎡형</td><td>2,179,000</td></tr>
<tr><td>전용 150.65㎡형</td><td>2,458,200</td></tr>
<tr><td>상가 33.06㎡형</td><td>421,490</td></tr>
</table></td></tr>
</table>

※ 위 금액은 추정치로서 향후 사업시행계획, 감정평가, 분양신청결과, 부동산시장 동향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에서 결정되며, 위 금액은 주택형별 평균 추정치로서 향후 각 세대(호)별로 달라질 수 있음

4.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분		면 적(㎡)			비 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17,549.8	-	17,549.8	100.0	
획 지	획 지 1	14,356.1	증) 182.7	14,538.8	82.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3,193.7	감) 182.7	3,011.0	17.2	
	도 로	2,212.2	증) 170.2	2,382.4	13.6	
	녹 지 (경관녹지)	981.5	감) 352.9	628.6	3.6	소공원 → 녹지

※ 정비기반시설(도로 · 녹지)선형 조정 및 녹지(경관녹지)신설, 측량성과(2023.03.09.)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면적 변경

5.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면 적(㎡)			비 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계	17,549.8	-	17,549.8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17,549.8	-	17,549.8	100.0	

6.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 변경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변경	소로	1	1	10	일반 도로	105	방배동 891-14	방배동 892-23	국지 도로	서고시 제2012-193호 (2012.7.26.)	선형변경
변경	소로	2	1	8	일반 도로	195	방배동 891-14	방배동 894-1	국지 도로	서고시 제2012-193호 (2012.7.26.)	선형변경
변경	중로	3	1	12	일반 도로	95	방배동 891-24	방배동 141-32	국지 도로	서고시 제2012-193호 (2012.7.26.)	선형변경
변경	중로	3	2	12	일반 도로	210	방배동 892-23	방배동 141-40	국지 도로	서고시 제2012-193호 (2012.7.26.)	선형변경

※ 실제 도로 폭원이 조서상 폭원과 차이가 있어 선형 변경을 통해 적정 도로폭원 확보

나.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명 칭	시설의 세분		기 정	변 경	변경 후		
폐지	-	공원	소공원	방배동 891-21번지 일대	981.5	감) 981.5	-	서고시 제2012-193호 (2012.7.26.)	-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원	소공원	방배동 891-21번지 일대	감) 981.5㎡	세장형의 선형으로 인한 공원 기능성이 열악함을 고려한 공원 폐지

다.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명 칭	시설의 세분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	-	녹지	경관녹지	방배동 891-21번지 일대	-	증) 628.6	628.6	-	-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	녹지	경관녹지	방배동 891-21번지 일대	증) 628.6㎡	세장형의 선형으로 인한 공원 기능성의 열악함을 고려한 녹지(경관녹지)대체 신설

7.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

시설의 종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작은도서관	110.00	증) 34.38	144.38	데크층
보육시설	300.00	감) 19.26	280.74	지하층
경로당	160.00	감) 3.99	156.01	지상층
어린이놀이터	500.00	증) 18.00	518.00	외부
주민운동시설	100.00	증) 10.00	110.00	외부
관리사무소	105.10	증) 81.03	186.13	데크층
주민공동시설	250.40	증) 441.22	691.62	통합경비실, 키즈라운지, 휠컴라운지 등
경비실	65.09	감) 0.35	64.74	지상/지하층
종합방재실	0.00	증) 104.77	104.77	데크층
MDF실	0.00	증) 69.95	69.95	데크층
입주자회의실	0.00	증) 81.43	81.43	데크층, 다목적실 등
피트니스센터	0.00	증) 407.59	407.59	데크층

※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

8.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계획 : 변경없음

구분	구역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방배 제7 주택재건축	17,549.8	방배동 891-3번지 일대	70	-	-	70	-	-

9. 건축시설계획 : 변경

■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 /층수(평균)
	명칭	면적 (㎡)				정비 계획	예정 법적상한	
기정	획지1	14,356.1	방배동 891-3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이하	221.19% 이하	239.45% 이하	65m이하 /최고19층(15층이하)
변경	획지1	14,538.8	방배동 891-3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이하	220.01% 이하	239.45% 이하	65m이하 /최고19층(15층이하)

기정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규모별 주택건설비율

전용면적(㎡)	세대수	비율(%)	비고
계	316	100.0	
60㎡이하	89	28.2	국민주택규모주택 : 15세대(4.7%)
60~85㎡이하	163	51.6	
85㎡초과	64	20.2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도로변 건축한계선 3m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공공보행통로 : 폭원 6m

변경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규모별 주택건설비율

전용면적(㎡)	세대수			비율(%)
	계	분양	공공	
계	316	299	17	100.0
60㎡이하	89	76	13	28.2
60~85㎡이하	163	159	4	51.6
85㎡초과	64	64	-	20.2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도로변 건축한계선 3m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 /층수(평균)
	명칭	면적 (㎡)				정비 계획	예정 법적상한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공공보행통로 : 폭원 6m					

※ 정비기반시설 규모 변경 및 세입자 손실보상 2.02% 적용에 따른 정비계획 용적률 변경, 획지 면적 변경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 변경

■ 용적률 계획(기정)

구 분	산 정 내 용					비고
토지이용계획	계(구역면적)	대지면적	신설 정비기반시설	계획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17,549.8㎡	14,356.1㎡	3,193.7㎡	197.2㎡	1,183.4㎡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순부담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대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3,193.7㎡ - 197.2㎡ - 1,183.4㎡ = 1,813.1㎡ (택지면적대비 12.62%)					-
개발가능 용적률 산정	• 허용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 + β = 190% + 0 = 190%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 1.3α) = 190% × {1 + (1.3 × 0.126294)} = 221.19%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α = 1,813.1㎡ / 14,356.1㎡ = 0.12629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국·공유재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으로 산정한 것임. • 정비계획 용적률 = 221.19% 이하					-
국민주택규모 주택산정	• 국민주택규모 주택 의무연면적 = 용적률 증가분의 50% × 택지(획지)면적 = {(239.45% - 221.19%) × 50%} × 14,356.1㎡ = 1,317.9㎡ 이상 ▸용적률 증가분 = 예정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국민주택규모 주택 확보계획 : 1,350.7785㎡(지상층 연면적) ▸세대수 15세대 = 8세대 × 80.4207㎡ + 5세대 × 96.4839㎡ + 2세대 × 112.4967㎡ ≒ 1,350.7785㎡ 기준 1,310.7㎡(용적률 9.13%) < 계획 1,350.7㎡(용적률 9.41%)					-

■ 용적률 계획(변경)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5">산 정 내 용</th><th>비고</th></tr>
<tr><td rowspan="2">토지이용계획</td><td>계(구역면적)</td><td>대지면적</td><td>신설 정비기반시설</td><td>계획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td><td>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내 국공유지</td><td rowspan="2"></td></tr>
<tr><td>17,549.8㎡</td><td>14,538.8㎡</td><td>3,011.0㎡</td><td>197.2㎡</td><td>1,183.4㎡</td></tr>
<tr><td>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td><td colspan="5">• 순부담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대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3,011.0㎡ - 197.2㎡ - 1,183.4㎡ = 1,630.4㎡ (택지면적대비 9.29%)</td><td></td></tr>
<tr><td>기준용적률</td><td colspan="5">• 기준용적률=190%</td><td></td></tr>
<tr><td>허용용적률</td><td colspan="5">•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 = 190% + 2.02 = 192.02%
• 인센티브 = 2.02%(세입자 보상대책 2.02%(10%이내))</td><td></td></tr>
<tr><td>개발가능 용적률 산정</td><td colspan="5">•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X (1 + 1.3α)
= 192.02% X {1 + (1.3 X 0.112141)} = 220.01%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1,630.4㎡ / 14,538.8㎡ = 0.112141
• 정비계획용적률 = 220.01% 이하</td><td></td></tr>
<tr><td rowspan="2">법적상한 용적률</td><td colspan="5">• 국민주택규모 주택(공공주택) 건설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
• 법적상한용적률 = 239.45%</td><td rowspan="2"></td></tr>
<tr><td colspan="5">•국민주택규모 주택(공공주택) 공급면적 산출 근거
-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건설 :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 국민주택규모 주택 의무연면적 = 용적률 증가분의 50% X 택지(획지)면적
= {(239.45% - 220.01%) X 50%} X 14,538.8㎡ = 1,413.17㎡ 이상
• 국민주택규모 주택 확보계획 : 1,429.97㎡(지상층 연면적)
- 세대수 17세대
= 13세대 X 79.07㎡ + 3세대 X 96.61㎡ + 1세대 X 112.23㎡ ≒ 1,429.97㎡
기준 1,413.17㎡(용적률 9.72%) 〈 계획 1,429.97㎡(용적률 9.83%)</td></tr>
</table>

■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가)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 의무면적 산정

<기정>

<table>
<tr><td colspan="2">계획 기준</td><td colspan="5">•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 도시정비법에서의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공공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td></tr>
<tr><td colspan="2">법적상한용적률(건축계획)</td><td colspan="5">239.45% 이하</td></tr>
<tr><td colspan="2">상한용적률</td><td colspan="5">221.19%</td></tr>
<tr><td rowspan="3">국민주택규모 주택 의무면적</td><td>용적률 증가분</td><td colspan="5">239.45% - 221.19% = 18.26%</td></tr>
<tr><td>증가된 용적률의 50%</td><td colspan="5">18.26% X 0.5 = 9.13%
14,356.1㎡(대지면적) X 9.13% = 1,310.7㎡</td></tr>
<tr><td>의무 연면적</td><td colspan="5">1,310.7㎡ 이상</td></tr>
<tr><td colspan="2" rowspan="5">국민주택규모 주택 확보계획</td><td>전용면적</td><td>공급면적</td><td>세대수</td><td>연면적</td><td>비고</td></tr>
<tr><td>59.9639㎡</td><td>80.4207㎡</td><td>8</td><td>643.3㎡</td><td rowspan="3">-</td></tr>
<tr><td>72.8789㎡</td><td>96.4839㎡</td><td>5</td><td>482.4㎡</td></tr>
<tr><td>84.9912㎡</td><td>112.4967㎡</td><td>2</td><td>225.0㎡</td></tr>
<tr><td colspan="2">합 계</td><td>15</td><td>1,350.7㎡</td><td>>1,310.7㎡</td></tr>
</table>

<변경>

<table>
<tr><td colspan="2">계획 기준</td><td colspan="5">•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 도시정비법에서의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공공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td></tr>
<tr><td colspan="2">법적상한용적률(건축계획)</td><td colspan="5">239.45% 이하</td></tr>
<tr><td colspan="2">상한용적률</td><td colspan="5">220.01%</td></tr>
<tr><td rowspan="3">국민주택규모 주택 의무면적</td><td>용적률 증가분</td><td colspan="5">239.45% - 220.01% = 19.44%</td></tr>
<tr><td>증가된 용적률의 50%</td><td colspan="5">19.44% X 0.5 = 9.72%
14,538.8㎡(대지면적) X 9.72% = 1,413.17㎡</td></tr>
<tr><td>의무 연면적</td><td colspan="5">1,413.17㎡ 이상</td></tr>
<tr><td colspan="2" rowspan="5">국민주택규모 주택 확보계획</td><td>전용면적</td><td>공급면적</td><td>세대수</td><td>연면적</td><td>비고</td></tr>
<tr><td>59.97㎡</td><td>79.07㎡</td><td>13</td><td>1,027.91㎡</td><td rowspan="3">-</td></tr>
<tr><td>72.98㎡</td><td>96.61㎡</td><td>3</td><td>289.83㎡</td></tr>
<tr><td>84.57㎡</td><td>112.23㎡</td><td>1</td><td>112..23㎡</td></tr>
<tr><td colspan="2">합 계</td><td>17</td><td>1,429.97㎡</td><td>>1,413.17㎡</td></tr>
</table>

10.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결과 : 변경없음

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환경보전	토지이용	• 주변 공동주택단지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배치계획 수립 • 녹지공간 최대 확보	
	대기질	• 공해에 강한 대기오염 정화수 식재 • 수관용적이 높은 수종으로 평면적인 식재가 아닌 관목과 교목으로 어우러진 입체적인 식재계획을 통해 녹지를 최대한 확보	
	수질	• 공사 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폐기물	• 공사 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고 발생폐유는 수거 후 위탁처리 • 지구 내에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 서울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한 최종처리	
	소음·진동	• 진출입로 차량운행 시 경적사용 금지 • 진출입로 등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 부지내에 녹지 최대확보	
재난방지	• 피난 및 응급차량의 접근을 위한 동선 확보 • 내구성 있는 건축물이 되도록 하고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사용 • 녹지대를 충분히 확보하고 투수성 포장재 사용률을 높여 전체적으로 투수면적을 확대함으로써 침수피해에 대응 • 수해방지 응급장비를 완비하여 우발적인 홍수재난에 대비 • 수해 위험도가 큰 지역 수전실(변압시설 및 비상발전기실 등) 지상 또는 지하1층에 배치		

나. 환경성 검토결과(변경없음)

검토항목		검토결과	환경영향	대책 및 반영사항	비고
자연환경	토양포장 우수유출	○	•토양포장, 우수유출 다소 변화 예상	•빗물의 지하침투율이 최대가 되도록 조경면적 최대반영, 투수성 포장재료 사용	-
	지형변동 절성토균형	○	•기 주택로서 대규모 지형변동 없음	•주변단지와 도로의 Level에 맞게 계획	-
	녹지변동 녹지체계	○	•녹지축에 변동 없음	•단지내 녹지공간조성, 오픈스페이스 확보	-
	습지보전	X	•보전대상 습지 없음		-
	비오톱	○	•토지이용의 변화로 비오톱 유형변화	•녹지공간 조성, 불투수 토양포장비율 완화	-
생활환경	일조	○	•일조침해 거의 없음	•건축물 높이제한, 통풍이 가능한 건축배치, Sky Line 등 고려 (일조에 의한 사선제한)	-
	바람	○	•건축물의 고층화에 따른 국지적 풍향 및 통풍 변동예상	•풍향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및 충분한 오픈스페이스 확보	-

검토항목		검토결과	환경영향	대책 및 반영사항	비고
	경관 및 휴식공간	○	•Sky line 변화 거의 없음 공개공지 및 시민 쉼터 확보 여부	•Sky Line을 고려한 층고 계획, 차폐 및 경관녹지 조성 •오픈스페이스 확보, 거주지 및 인근 지역 주민의 쉼터 확보	-
	에너지	○	•건물 신축으로 에너지사용 증가 예상	•청정연료(LNG) 사용 환경정화수종 식재	-
	환경오염	○	•에너지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 인구 증가에 따른 오수 및 폐기물의 증가	•청정연료 사용 및 체계적인 계획수립에 따라 오수 및 폐기물에 의한 오염 없음	-
	물순환	○	•우수유출량의 변화 예상	•투수성 포장재료 사용	-
도시계획시행중 예상되는 환경영향		○	•공사 시 장비투입에 따른 소음, 비산먼지, 토사유출 등 발생 예상	•장비분산투입, 작업장내 차속제한, 토공작업 및 나지의 주기적 살수, 경계부에 가설방음판넬 설치	-

주) 검토결과 : X 해당사항 없음, ○ 환경영향 예상됨

11.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자	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 검토결과	비고
기정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내	방배7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현황: 234 • 계획: 316 • 증가세대수: 82 (국민주택규모주택 15세대포함)	해당사항 없음	-
변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내	방배7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현황: 234 • 계획: 316 • 증가세대수: 82 (국민주택규모주택 17세대포함)	해당사항 없음	-

※ 총 계획 세대수는 동일하나, 국민주택규모 주택 세대수 변경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방배 7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91-3번지 일원	17,549.8	-	17,549.8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17,549.8	-	17,549.8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17,549.8	-	17,549.8	100.0	

나. 기반시설 결정조서(변경)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변경	소로	1	1	10	일반 도로	105	방배동 891-14	방배동 892-23	국지 도로	서고시 제2012-193호 (2012.7.26.)	선형변경
변경	소로	2	1	8	일반 도로	195	방배동 891-14	방배동 894-1	국지 도로	서고시 제2012-193호 (2012.7.26.)	선형변경
변경	중로	3	1	12	일반 도로	95	방배동 891-24	방배동 141-32	국지 도로	서고시 제2012-193호 (2012.7.26.)	선형변경
변경	중로	3	2	12	일반 도로	210	방배동 892-23	방배동 141-40	국지 도로	서고시 제2012-193호 (2012.7.26.)	선형변경

※ 실제 도로 폭원이 조서상 폭원과 차이가 있어 선형 변경을 통해 적정 도로폭원 확보

2)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명 칭	시설의 세분		기 정	변 경	변경 후		
폐지	-	공원	소공원	방배동 891-21번지 일대	981.5	감) 981.5	-	서고시 제2012-193호 (2012.7.26.)	-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원	소공원	방배동 891-21번지 일대	감) 981.5㎡	세장형의 선형으로 인한 공원 기능성이 열악함을 고려한 공원 폐지

3)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명 칭	시설의 세분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설	-	녹지	경관녹지	방배동 891-21번지 일대	-	증) 628.6	628.6	-	-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	녹지	경관녹지	방배동 891-21번지 일대	증) 628.6㎡	세장형의 선형으로 인한 공원 기능성의 열악함을 고려한 녹지(경관녹지)대체 신설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변경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획지번호	면적(㎡)	비 고
기정	1	14,356.1	-
변경	1	14,538.8	-

※ 획지 선형 변경 및 측량성과(2023.03.09.)에 따른 가구 및 획지 면적 변경

나.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건축물의 용도계획(변경없음)

■ 건축물의 허용용도 계획(변경없음)

구 분	획지번호	전 층	비 고
허용용도	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결정도 참조

■ 건축물의 불허용도 계획(변경없음)

구 분	획지번호	전 층	비 고
불허용도	1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결정도 참조

2) 건축물의 밀도계획(변경)

■ 건축물의 건폐율 계획(변경없음)

구 분	획지번호	건폐율	비 고
건폐율	1	30% 이하	결정도 참조

■ 건축물의 용적률 계획(변경)

구 분		획지번호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정비계획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	비 고
용적률	기정	1	190%	190%	221.19%	239.45%	결정도 참조
	변경			192.02%	220.01%		결정도 참조

※ 정비기반시설 규모 변경 및 세입자 손실보상 인센티브 2.02% 적용에 따른 용적률 변경

■ 건축물의 높이 계획(변경없음)

구 분	획지번호	최고높이	비 고
높이	1	• 65m 이하(지상 19층) • 평균층수 15층 이하	결정도 참조

다. 건축물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배치	• 주변지역 건축물과 조화롭게 배치하고 층고계획을 통한 자연스러운 개방감 확보 및 스카이라인을 유도하여 층수 조절 및 배치계획 수립 • 기존의 지형, 조망경관, 도로의 위치, 고저차를 고려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배치계획	
형태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지붕은 평지붕을 권장하되,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다양한 디자인 가능 • 옥상시설물(물탱크, 기계실 등)의 노출은 최대한 배제하는 것을 권장하고 외벽은 자연환경요소와의 경합을 최대한 피할 것을 권장	
색채	• 일체성 있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서울색 정립 및 체계화 보고서' 에 준하여 색채계획 수립 • 주변 건축물과 이질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색상, 명도, 채도를 설정하여 색채계획 수립 • 경관 지구별 특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대상지 주변 건축물과 전체적으로 통일감 및 자연스러운 흐름을 연출 될 수 있도록 색채계획	
건축선	• 건축한계선 : 구역경계로부터 3m	

라.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1) 대지내 공지 및 통로 등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공공보행통로	• 폭원 6m 계획	결정도 참조

2)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차량 진출입구	기정	• 대상지 북측(서초대로32길)에 차량진출입구 계획	결정도 참조
	변경	• 대상지 북측(서초대로32길)에 차량진출입구 계획 • 대상지 서측(서초대로30길)에 차량진출입구 계획	

※ 제11차 건축/경관/교통위원회 심의결과(22.11.23.)에 따른 차량진출입구 1개소 추가

3) 경관 및 환경친화적인 요소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옥상녹화	• “옥상녹화 활성화 기본계획(2007.2.7.)” 에 의하여 설치토록 권장	
벽면녹화	• “서울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활성화” 기법에 의하여 설치토록 권장	
생태면적률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업무지침” 준수	
옥외광고물	•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모든 옥외광고물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 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서울시고시 제2017-490호)” 기준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기준(2008.3)” 을 준수	
빗물이용시설	•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 및 관리기준”,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지침” 에 따라 설치하도록 권장	
신·재생에너지시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66호)” 의 기준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	
야간경관조명	• 옥외에 설치하는 환경조형물의 경우에도 야간경관조명 설치 권장	

Ⅲ. 관련도면 : 붙임 참조

<붙임1> 정비계획 관련도면
1) 정비계획 결정도(기정/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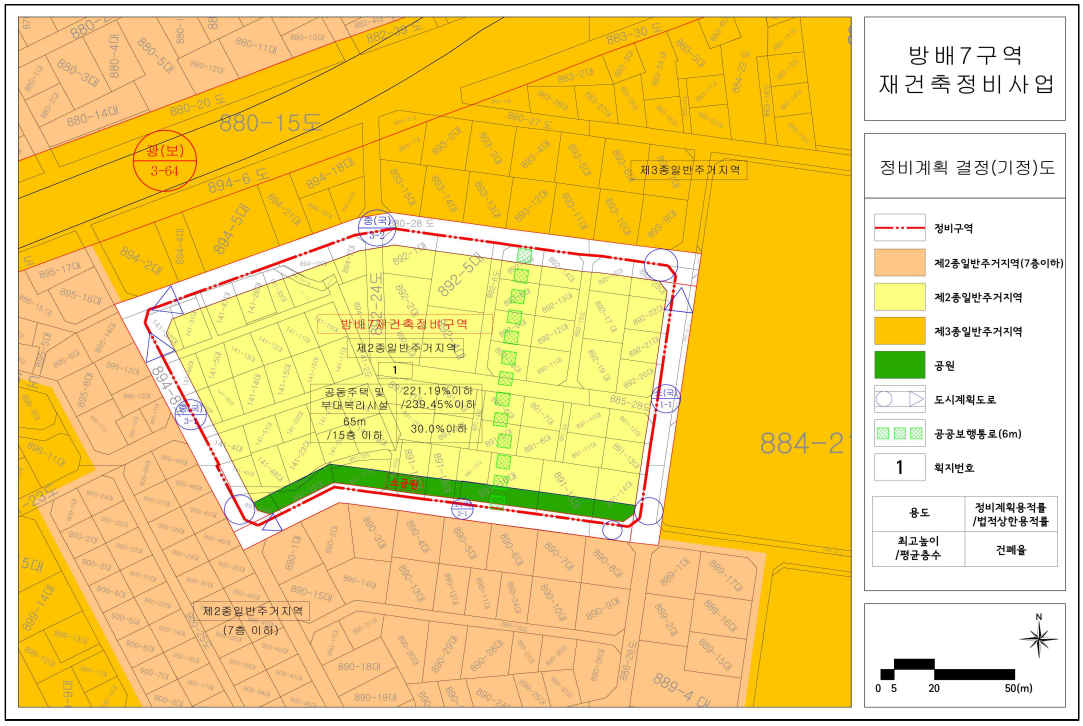
<붙임2> 지구단위계획 관련도면
1) 지구단위계획 결정도(기정/변경)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관련서류 :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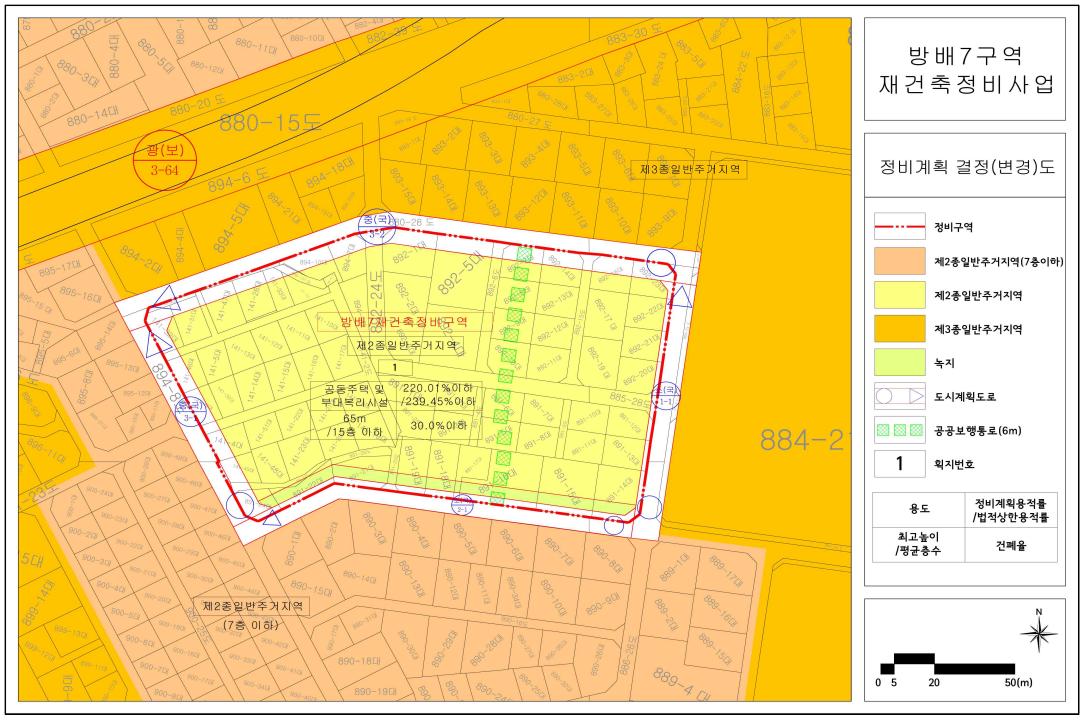
Ⅴ. 열람장소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사업과(☎02-2133-7214), 서초구청 재건축사업과(☎02-2155-8791)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 정비계획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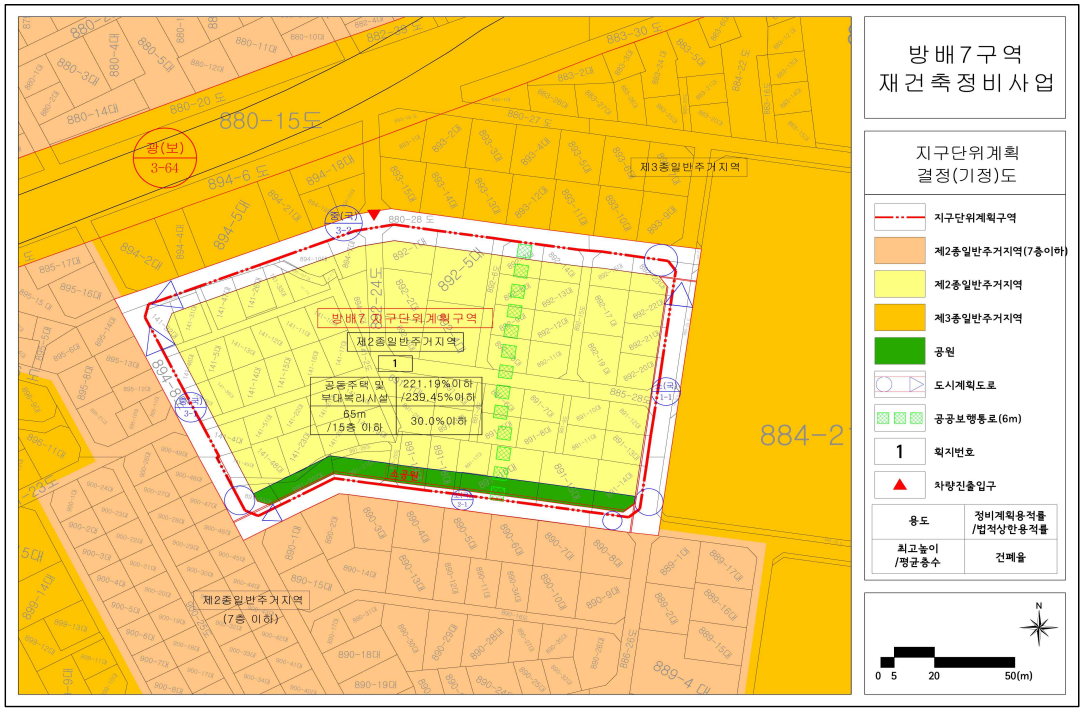


□ 정비계획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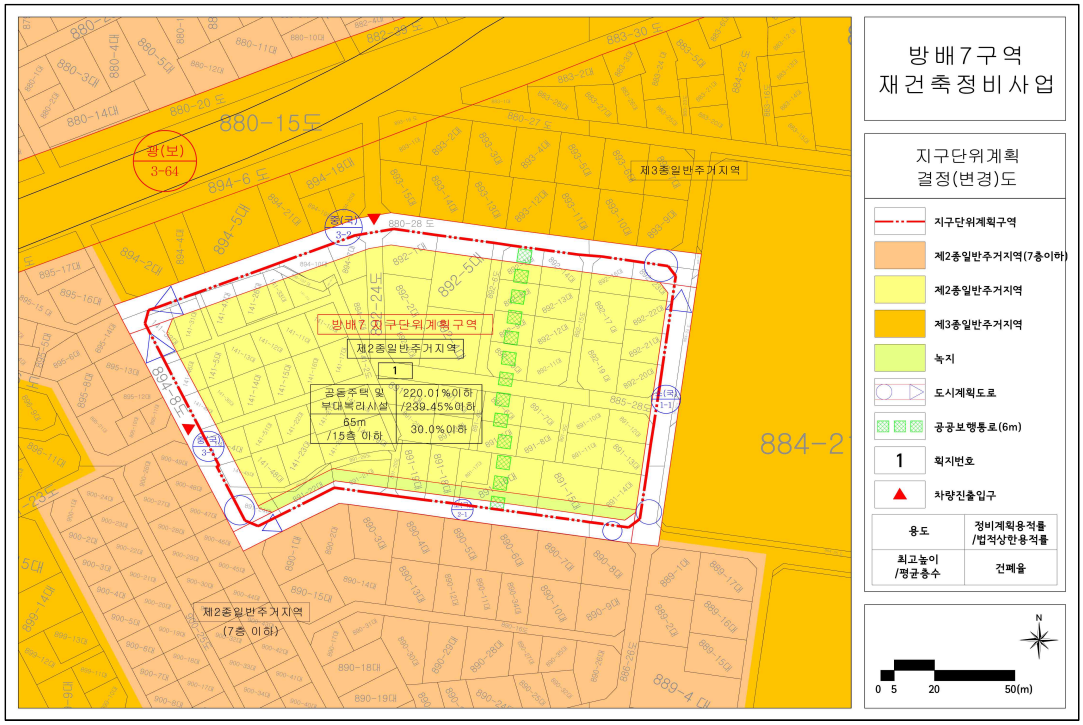


<붙임2>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기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89호

도시관리계획(개봉역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구로구 개봉동 170-35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136호(1997.05.06.)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30호(2001.02.07.), 제2012-256호(2012.09.27.)로 결정(변경)된 개봉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개봉역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변경 및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개봉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개봉동 170-35번지 일원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하여, 개봉역 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 변경 및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①	개봉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로구 개봉동 170번지 일대	134,212	서고시 제1997-136호 (97.5.06)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합계		134,212.0	-	134,212.0	100.0	100.0	-
주거지역	소계	134,212.0	-	134,212.0	100.0	100.0	-
	제3종일반주거지역	118,977.7	감) 11,193.2	107,784.5	88.6	80.3	-
	준주거지역	15,234.3	증) 11,193.2	26,427.5	11.4	19.7	-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개봉동 170-1번지 일원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1,193.2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나.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 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연번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1	신설	중로	1	1	20	집산 도로	94	개봉동173-1	개봉동 171-15	일반도로	-	-
2	기정	중로	2	2	15	집산 도로	240	개봉동 174-10	개봉동 353-20	일반도로	서고시 2001-31호 (2001.2.7)	-
	변경	중로	2	2	15	집산 도로	146	개봉동 171-15	개봉동 353-20	일반도로	-	-
3	기정	중로	3	4-1	12	집산 도로	70	개봉동 175-4	개봉동 179-9	일반도로	서고시 제3호 (1969.1.18)	-
	변경	중로	2	3	15	집산 도로	70	개봉동 175-4	개봉동 179-9	일반도로	-	-
4	신설	소로	2	9	8	국지 도로	161	개봉동 178-19	개봉동 170-13	일반도로	-	-
5	신설	소로	2	10	8	국지 도로	51	개봉동 171-15	개봉동 171-21	일반도로	-	-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 1-1	• 신설 - 폭원 : 20m, 연장 : 94m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의한 남측도로 신설
중로 2-2	중로 2-2	• 변경 - 연장 축소(240m→146m)	- 중로1-1호선 확폭에 따른 연장 축소
중로 3-4-1	중로 2-3	• 변경 - 폭원 확폭(12m→15m)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의한 동측 중로3-4-1 전체 확폭
-	소로 2-9	• 신설 - 폭원: 8m, 연장 : 161m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라 동서간 도로연결을 위한 신설
-	소로 2-10	• 신설 - 폭원: 8m, 연장 : 51m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라 차량진출입을 위한 신설

2) 철도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주차장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 변경없음
다. 보건위생시설 : 변경없음

3 가구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및 획지규모 결정(변경) 조서

구분	가구번호		위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가구	④	-	개봉동170-1번지 일대	3,944.4	감)3,944.4	-	가구⑤에 편입
	⑤	⑤	개봉동170-35번지 일대	4,705.0	증)7,229.2	11,934.2	
	⑦	-	개봉동171-10번지 일대	2,811.0	감)2,811.0	-	가구⑤에 편입

※ 상기 외 변경사항 없음(기재생략)
※ 향후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나. 최대개발규모 : 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 고
전구역	2,000㎡	-

※ 공동개발시 최대개발규모의 범위 넘을 수 없음(단, 기존 대지의 규모가 최대개발규모 이상인 경우, 특별계획구역, 기공동건축물,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공동개발 지정·권장한 필지 예외)
※ 상기 사항 이외의 최대개발규모 2,000㎡ 이상인 대지에 대해서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계획 수립가능

다. 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기정

가구번호	도면표시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 고
④	1	170-1	658.0	1,137	공동개발 권장	
		170-15	479.0			
	2	170-45	1,079.0	1,410	공동개발 권장	
		170-53	331			
	3	170-29	397.0	741	공동개발 지정	
		170-32	344.0			
	4	170-17	601.4	656.4	공동개발 지정	
		170-54	55.0			
⑤	1	170-35	551.0	4,705	특별계획구역	

가구 번호	도면 표시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 고
		170-36	1,132.0		(170-34, 179-23, 179-28, 0-94 포함)	
		170-37	390.0			
		179-14	959.0			
		179-24	717.0			
		179-26	16.0			
		179-36	940.0			
⑦	1	171-10	292.0	292	단독개발	특별계획구역가능지 (417-1, 417-6, 171-7 포함)
	2	171-12	114.0	573	171-12,-13,-14,-15 공동개발 권장	
		171-13	112.0			
		171-14	136.0			
		171-15	211.0			
	3	171-1	666.0	1,119	공동개발 권장	
		171-4	337.0			
		171-6	116.0			
	4	173-1	310.0	310	173-3,416-183, 174-7/173-1 공동개발 지정/권장	
	5	173-3	407.0	517		
		174-7	30.0			
		416-183	80.0			

※ 상기 외 변경사항 없음(기재생략)

□ 변경

가구 번호	도면 표시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 고
④	-	-	-	-	-	가구④-1, 2, 4 → ⑤-1로 편입 가구④-3 → ⑤-2로편입
⑤	1	0-94	22	11,193.2	특별계획구역Ⓐ (170-24, 170-26, 170-34, 174-1, 178-19, 179-23, 179-26, 179-28, 416-183, 416-308, 0-94 포함)	170-13(34㎡), 170-24(212㎡), 170-26(126㎡), 170-34(69㎡), 171-7(3.6㎡), 171-10(39.7㎡), 171-12(16㎡), 171-15(74.7㎡), 173-1(115.3㎡), 173-3(71.2㎡), 174-1(11㎡), 174-7(30㎡), 178-19(140㎡), 179-14(63.1㎡), 179-23(136㎡), 179-24(72.6㎡), 179-26(16㎡),
		170-1	658			
		170-13	130			
		170-15	479			
		170-17	602			
		170-27	190			
		170-35	551			
		170-36	1,132			
		170-37	394			
		170-45	1,079			
		170-53	331			
		170-54	59			
		170-59	90			

가구 번호	도면 표시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 고
		171-1	830			179-28(70㎡), 179-36(53.5㎡), 416-183(7㎡), 416-308(3㎡), 417-1(14.6㎡), 417-6(7.5㎡) → 도로
		171-4	337			
		171-6	116			
		171-7	307.4			
		171-10	264.3			
		171-12	98			
		171-13	112			
		171-14	136			
		171-15	136.3			
		173-1	201.7			
		173-3	335.8			
		179-14	895.9			
		179-24	644.4			
		179-36	888.5			
		416-183	70			
		417-1	82.4			
		417-6	42.5			
	2	170-29	397	741	공동개발 지정	
		170-32	344			
⑦	-	-	-	-	-	⑤-1로 편입

※ 상기 외 변경사항 없음(기재생략)
※ 특별계획구역Ⓐ 내 0-94번지는 향후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 가구④ 3,944.4㎡ 가구⑤에 편입 • 가구⑤ 면적 증가(증 6,488.2) : 11,193.2㎡ - 가구④ 3,944.4㎡, 가구⑦ 2,811㎡, 도로 473.8㎡ 가구⑤에 편입 • 가구⑦ 2,811.0㎡ 가구⑤에 편입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의한 가구편입 및 면적 변경

※ 과거 필지 분할에 따라 일부 필지 면적은 기정과 상이함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나. 건축물 밀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건폐율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용적률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상한용적률 계획

<table>
<tr><th colspan="2" rowspan="2">구 분</th><th rowspan="2">용 도 지 역</th><th colspan="2">계획내용</th><th rowspan="2">비 고</th></tr>
<tr><th>일반</th><th>역세권 장기전세주택</th></tr>
<tr><td rowspan="2">기정</td><td rowspan="3">공동
개발시</td><td rowspan="3">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td><td rowspan="2">- 기준 : 250% 이하
- 허용 : 350% 이하
- 상한 : 400% 이하</td><td>- 기준 : 250% 이하
- 허용 : 450% 이하
- 상한 : 500% 이하</td><td>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가능지</td></tr>
<tr><td>변경</td><td>- 기준 : 250% 이하
- 상한 : 600% 이하</td><td>특별계획구역Ⓐ에 한함</td></tr>
</table>

※ 특별계획구역Ⓐ 상한용적률 계획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2022.06.20.) 적용

다. 건축물의 높이 결정(변경) 조서

1) 최고높이 계획

<table>
<tr><th colspan="2">적용대상</th><th>높이계획</th><th>비고</th></tr>
<tr><td>기정</td><td>특별계획구역 및 기존 공동주택
(영화아파트, 삼호아파트, 림괄아파트)</td><td>70m</td><td rowspan="6">- 특별계획구역Ⓐ는 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2022.06.20) 개정에 따라 1차 역세권내 준주거지역은 채광방향 이격거리 및 인동간격을 용적률과 연계하여 차등 완화
<table><tr><td>상한용적률</td><td>500~600%</td></tr><tr><td>완화비율</td><td>1.5배 이내</td></tr><tr><td>채광이격</td><td>0.17H 이상(1/6)</td></tr><tr><td>인동간격</td><td>0.53H 이상(0.8/1.5)</td></tr></table></td></tr>
<tr><td rowspan="2">변경</td><td>특별계획구역 및 기존 공동주택
(영화아파트, 삼호아파트, 림괄아파트)</td><td>70m</td></tr>
<tr><td>특별계획구역Ⓐ</td><td>130m</td></tr>
<tr><td colspan="2">기존 공동주택(삼환아파트)</td><td>65m</td></tr>
<tr><td colspan="2">간선가로변(개봉로, 경인로)
기존 공동주택(청실아파트)</td><td>60m</td></tr>
<tr><td colspan="2">준주거지역 및 구역 내부 이면도로변</td><td>50m</td></tr>
<tr><td colspan="2">구역 내부 이면도로변</td><td>40m</td></tr>
<tr><td colspan="2">준주거지역(역세권 청년주택)
(개봉동 179-11, 179-16, 179-49, 179-50)</td><td>63m</td><td>- 개봉동 179-11, 179-16, 179-49, 179-50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하며, 연접부 경관계획 관련 높이제한사항 완화</td></tr>
<tr><td colspan="2">특별계획구역Ⓑ</td><td>90m</td><td>-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적용</td></tr>
</table>

※ 특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구역 가능지는 특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계획지침에 따름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계획 적용

라. 건축물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에 관한 계획

1) 건축물의 배치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적 용 대 상	적 용 기 준
건축한계선	• 이면부 보행자 편의	• 이면도로변	도로경계선에서 1~4m주1)
	• 보행자의 개방감과 보행편의를 위한 전면공지 확보	• 특별계획구역Ⓐ 남측도로변	도로경계선에서 3.0m
	• 보행자의 보행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폭원 확보	• 특별계획구역Ⓐ 동측도로변	도로경계선에서 5.0m
	• 도로(차도 및 보행공간) 일정 폭원 확보를 전면공지 확보	• 특별계획구역Ⓒ 동측도로변	도로경계선에서 2.7m~3.7m주2)
건축지정선	• 개봉역 남측 도로 정연한 상점가 조성	• 개봉역 남측 15m 도로변	도로경계선에서 1.0m
벽면지정선	• 광장 활성화	• 개봉역광장 인접필지	대지경계선에서 1m, 3m

주1) 개봉동 199-4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따라 이면도로변 건축한계선 폭원 일부 변경
주2) 특별계획구역Ⓒ 동측 도로(개봉로24길)는 일정폭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축한계선을 2.7~3.7m로 계획함
차도폭원(현황) 6.8~5.8m를 (변경)7m로 일정 폭원 확보하고 차도에서 건축한계선까지의 공간은 2.5m의 일정 폭원의 보행공간 조성

2)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목적	적용기준	적용구역
건축물 형태	가로변 경관의 랜드마크	• 간선가로의 개방감 확보를 위한 건축물 권장 • 지상1층 외벽 투시율 50%이상 확보 • 개구부 없는 벽면의 도로면 노출 제한	경인로변, 개봉로변, 남부순환로변
건축물 외관	재료 / 색채	• 가로에 면한 전면부 전체에 반사성 재료 사용금지 • 석재, 벽돌, 목재 등 자연친화적 재료 사용 권장 • 외벽면의 외장, 재료, 색채에 있어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유지	전구역
	가로환경의 연속성	•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도로와 단차없이 조성 • 부득이하게 단차설치를 해야할 경우 15cm이하 및 경사로 설치 • 경사로는 보도와 어울리게 설치	전구역
	양호한 보행환경조성	• 1층 가로 입면 개구부의 입면적 합 50% 이상 조성 • 투시된 셔터설치	전구역
	옥외광고물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옥외 광고물 가이드라인 기준” 을 준수	전구역
	야간 조명	• 간선변 10층이상 건축물은 건물전면 및 옥상부에 야간 경관조명의 설치 권장	전구역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 분	적 용 목 표	적 용 대 상	적 용 기 준	비 고
전면공지	• 가로보행환경 제고 • 보행공간, 녹지 및 휴게시설 조성 • 보행로와 연계 • 도로 일정 폭원 확보	• 건축한계선으로 제어되는 필지	• 조성지침 제시 • 준주거지역 4m 이하 도로는 도로로 조성	

구 분	적 용 목 표	적 용 대 상	적 용 기 준	비 고
공개공지 (18개소)	• 가로보행환경 개선 • 간선가로변 보행자 휴게공간 확보	• 건축법상 설치 대상 필지 • 주요 보행 결절점 상에 조성 위치지정	• 공공적 기능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가로변 위치 지정 • 건축법 상 대상 획지	• 특별계획구역Ⓐ 변경에 따른 공개공지 위치 일부 조정
공공보행 통로	• 공지와 연계 보행환경 개선	• 간선가로 및 공지변 원활한 보행환경 조성	• 필로티 구조일 경우 유효 높이 6m 이상	• 기존 공공보행통로 계획은 삭제하고, 북측-남측 공개공지를 연결하는 입체적 공공보행통로 계획 (상시개방)

나.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1) 차량출입 허용구간

구분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출입불허구간	• 가구 및 획지계획에 따른 차량출입불허구간 일부 조정	-

2) 공동 주차 출입구

구분	계 획 내 용	비 고
공동 주차출입구	7개소	-

※ 공동주차 출입구가 2개소일 경우는 1개소만 준수해도 지침준수 인정

다. 공공기여 계획 : 변경없음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특별계획구역 Ⓐ	개봉역 특별계획구역Ⓐ	개봉동 170-35 번지 일대	5,008.0	증)7,571.0	12,579.0	
기정	특별계획구역 Ⓑ	개봉역 특별계획구역Ⓑ	개봉동 199-4 번지 일원	5,140.3	-	5,140.3	
기정	특별계획구역 Ⓒ	개봉역 특별계획구역Ⓒ	개봉동 171-2 번지 일대	2,637.0	-	2,637.0	

※ 특별계획구역의 면적은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조정될 수 있음

□ 특별계획구역 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변경	특별계획구역 Ⓐ	개봉역 특별계획구역Ⓐ	• 위치 : 개봉동 170-35 번지 일대 • 면적 : 12,579㎡ - 0-94, 170-1, 170-13, 170-15, 170-17, 70-24, 170-26, 170-27, 170-34, 170-35, 170-36, 170-37, 170-45, 170-53, 170-54, 170-59, 171-1, 171-4, 171-6, 171-7, 171-10, 171-12, 171-13, 171-14, 171-15, 173-1, 173-3, 174-1, 174-7, 178-19, 179-14, 179-23, 179-24, 179-26, 179-28, 179-36, 416-183, 416-308, 417-1, 417-6 (40개 필지)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변경

※ 특별계획구역Ⓐ 내 0-94번지는 향후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나. 특별계획구역 용적률 계획

구 분	용 도 지 역	계획내용		비 고
		일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동 개발시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기준 : 250% 이하 - 허용 : 350% 이하 - 상한 : 400% 이하	- 기준 : 250% 이하 - 상한 : 600% 이하	특별계획구역Ⓐ에 한함

※ 특별계획구역Ⓐ 상한용적률 계획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2022.06.20.) 적용

5. 특별계획구역 가능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①	개봉역 주변 특별계획구역 가능지①	개봉동 170-33 번지 일대	4,584	감)140	4,444
폐지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②	개봉역 주변 특별계획구역 가능지②	개봉동 171-1 번지 일대	3,452	감)3,452	-
기정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③	개봉역 주변 특별계획구역 가능지③	개봉동 208-3 번지 일대	3,983.7	-	3,983.7
기정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⑤	개봉역 주변 특별계획구역 가능지⑤	개봉동 181-1 번지 일대	2,763	-	2,763

※ 특별계획구역가능지의 면적은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조정될 수 있음

□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변경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①	개봉역 주변 특별계획구역 가능지①	• 기정 : 4,584㎡ → 변경 : 4,444㎡ (감 140㎡)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해 특별계획구역Ⓐ에 일부편입
폐지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②	개봉역 주변 특별계획구역 가능지②	• 폐지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해 특별계획구역Ⓐ에 편입

나. 특별계획구역(가능지) 용적률 계획

구 분	용 도 지 역	계획내용		비 고
		일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동개발시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기준 : 250% 이하 - 허용 : 350% 이하 - 상한 : 400% 이하	- 기준 : 250% 이하 - 상한 : 600% 이하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 상한용적률 산정식 =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 이내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적용)
※ 특별계획구역 : 용도지역 변경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공공기여 등을 고려하여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 용도지역 변경은 향후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공공기여 등을 고려하여 상향 검토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 밀도 체계는 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2022.06.20.)적용
※ 특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구역 가능지는 계획지침 적용

Ⅲ.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사항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특별계획구역Ⓐ	개봉역 특별계획구역Ⓐ	개봉동 170-35 번지 일대	5,008	증)7,571	12,579	

□ 특별계획구역 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변경	특별계획구역 Ⓐ	개봉역 특별계획구역Ⓐ	• 위치 : 개봉동 170-35 번지 일대 • 면적 : 12,579㎡ - 0-94, 170-1, 170-13, 170-15, 170-17, 70-24, 170-26, 170-27, 170-34, 170-35, 170-36, 170-37, 170-45, 170-53, 170-54, 170-59, 171-1, 171-4, 171-6, 171-7, 171-10, 171-12, 171-13, 171-14, 171-15, 173-1, 173-3, 174-1, 174-7, 178-19, 179-14, 179-23, 179-24, 179-26, 179-28, 179-36, 416-183, 416-308, 417-1, 417-6 (40개 필지)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변경

※ 특별계획구역Ⓐ 내 0-94번지는 향후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2,579.0	-	12,579.0	100.0	-
주거지역	소계	12,579.0	-	12,579.0	100.0	-
	제3종일반주거지역	12,579.0	감)11,193.2	1,385.8	11.0	-
	준주거지역	-	증)11,193.2	11,193.2	89.0	-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 도 지 역		면 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개봉동 170-1번지 일원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1,193.2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 : 변경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연번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1	신설	중로	1	1	20	집산 도로	94	개봉동173-1	개봉동 171-15	일반도로	-	-
2	기정	중로	2	2	15	집산 도로	240	개봉동 174-10	개봉동 353-20	일반도로	서고시 2001-31호 (2001.2.7)	-
	변경	중로	2	2	15	집산 도로	146	개봉동 171-15	개봉동 353-20	일반도로	-	-
3	기정	중로	3	4-1	12	집산 도로	70	개봉동 175-4	개봉동 179-9	일반도로	서고시 제3호 (1969.1.18)	-
	변경	중로	2	3	15	집산 도로	70	개봉동 175-4	개봉동 179-9	일반도로	-	-
4	신설	소로	2	9	8	국지 도로	161	개봉동 178-19	개봉동 170-13	일반도로	-	-
5	신설	소로	2	10	8	국지 도로	51	개봉동 171-15	개봉동 171-21	일반도로	-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 1-1	• 신설 - 폭원 : 20m, 연장 : 94m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의한 남측도로 신설
중로 2-2	중로 2-2	• 변경 - 연장 축소(240m→146m)	- 중로1-1호선 확폭에 따른 연장 축소
중로 3-4-1	중로 2-3	• 변경 - 폭원 확폭(12m→15m)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의한 동측 중로3-4-1 전체 확폭
-	소로 2-9	• 신설 - 폭원: 8m, 연장 : 161m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라 동서간 도로연결을 위한 신설
-	소로 2-10	• 신설 - 폭원: 8m, 연장 : 51m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라 차량진출입을 위한 신설

3 가구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가구 및 획지규모 결정(변경) 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위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⑤	1	개봉동170-35번지 일대	4,705.0	증)6,488.2	11,193.2	

□가구 및 획지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변경	가구 및 획지 변경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및 기존 종교시설 존치에 의한 변경	-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 용도 계획

1) 건축물 불허용도 결정(변경) 조서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계발계획	비 고
불허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장외발매소 • 마권전화 투표소 • 공장 및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단, 주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좌동	-

2) 건축물 권장용도 결정(변경) 조서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계발계획	비 고
Ⅰ	1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건축자재 제외), 휴게음식점, 제과점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좌동	-

※ 지정용도의 면적구성은 건물 1층 연면적(바닥면적 산정시 주차장 면적 및 공용면적 제외)의 40% 이상인 경우 수용된 것으로 봄
※ 건축물의 지정용도는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인정한 경우에 한해 변경이 가능

나. 건축물의 개발밀도 계획

1) 건폐율 결정(변경) 조서

구 분	용도지역	건폐율	비 고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54조
	준주거지역	60% 이하	

2) 용적률 결정(변경) 조서

구 분	용도지역	계획내용		비 고
		일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특별계획구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기준 : 250% 이하 - 허용 : 350% 이하 - 상한 : 400% 이하	- 기준 : 250% 이하 - 상한 : 600% 이하	특별계획구역A

※ 특별계획구역Ⓐ 상한용적률 계획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2022.06.20.) 적용
※ 그 외 특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변경없음

□상한용적률 산정

구 분		이행조건			
토지이용계획		구역면적(㎡)	획지면적(㎡)	기반시설	비고
		12,579.0	11,193.2㎡	1,385.8㎡	기반시설은 도로에 한함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기준용적률	• 250%				
상한용적률	• 600%				
공공기여	• 175%(완화용적률의 1/2)				
공공기여 용적률산정	공공시설 기부채납		장기전세주택공급		
	• 27.94% 이하		• 147.06% 이상		
	• 기부채납 기반시설 : 1,250.8㎡ = 기반시설면적 - 국공유지면적 = 1,385.8㎡ - 135㎡ • 기반시설 용적률 : 250%(제3종일반주거지역)		• 장기전세주택 공급에 따른 용적률 완화 (서울형 주거환경 정책 준수) = (상한용적률 - 기준용적률) × 1/2 - 기반시설 기부채납률 = (600% - 250%) × 1/2 - 27.94%		

<table>
<tr><td colspan="2">구 분</td><td colspan="3">이행조건</td></tr>
<tr><td></td><td colspan="2">• 기반시설 대지지분 : 27.94%(521.17㎡)
= 기반시설면적 X 기반시설용적률 / 획지면적
= 1,250.8㎡ X 250% / 11,193.2㎡</td><td colspan="2">= 147.06% 이상 장기전세주택 공급</td></tr>
<tr><td colspan="2">구분</td><td colspan="3">계획내용</td></tr>
<tr><td rowspan="6">서울형
주거환경
정책</td><td rowspan="5">필수
항목</td><td>지속가능형
공동주택</td><td colspan="2">•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라멘구조)</td></tr>
<tr><td rowspan="4">친환경건축물</td><td>환경성능</td><td rowspan="4">성능지표검토서의
평점 86점이상,
2등급이상 인증 예정</td></tr>
<tr><td>에너지성능</td></tr>
<tr><td>에너지관리</td></tr>
<tr><td>신재생에너지</td></tr>
<tr><td>역사문화</td><td colspan="2">해당없음</td></tr>
<tr><td>권장항목</td><td>커뮤니티지원시설</td><td>• 의무면적
- 300세대 미만 : 지상층 공동주택 연 면적의 3%(최소 300㎡) 이상
- 300세대 이상 : 지상층 공동주택 연 면적의 2%(최소 450㎡) 이상</td><td>커뮤니티시설 없이
일부 도로 기부채납외
전체 완화 용적률을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td></tr>
</table>

다. 장기전세주택에 관한 계획

<table>
<tr><th>구분</th><th>운영기준</th><th>계 획</th></tr>
<tr><td>장기전세주택
건립비율</td><td>• 전용면적 85㎡ 이하
(100%)</td><td>
<table>
<tr><th>구 분</th><th>세대수(세대)</th><th>공급면적(㎡)</th><th>비율(%)</th></tr>
<tr><td>60㎡ 이하</td><td>95</td><td>81.50</td><td>54.3</td></tr>
<tr><td>75㎡ 이하</td><td>20</td><td>98.51</td><td>11.4</td></tr>
<tr><td>85㎡ 이하</td><td>60</td><td>113.33</td><td>34.3</td></tr>
<tr><td>합 계</td><td>175</td><td>16,512.46</td><td>100.0</td></tr>
</table>
※ 장기전세주택 용적률
• 공급면적 ÷ 대지면적 = 16,512.46㎡ ÷ 11,193.2㎡ = 147.52%
</td></tr>
</table>

※ 상기 장기전세주택에 관한 세부계획(세대수 및 공급면적 등)은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라. 건축물의 높이 계획

1) 최고높이 계획

구 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최고높이	• 130m 이하	좌동	

※ 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2022.06.20) 개정에 따라 1차 역세권 내 준주거지역은 채광방향 이격거리 및 인동간격을 용적률과 연계하여 차등 완화

마. 건축물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건축한계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3m, 5m	좌동	

3.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 가각부 지정	좌동	
자전거 편의시설	• 건축물내 일반인에게 편익시설(보관소등) 개방	좌동	
생태면적률	• 건축유형별 생태면적률 적용기준이상 확보	좌동	

4.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종합)

구 분		계획지침		비고
		기정	변경	
용도지역		• 현재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기반시설		• 구역면적의 15% 이상 기부채납 - 역전길 도로확폭(12m→15m) : 보도조성 - 이면도로 확폭 -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	• 중로3-4-1호선(역전길) 변경 (폭원 12m→15m) • 중로1-1호선 신설(폭원 20m) • 중로2-2호선 변경 (연장 240m→146m) • 소로2-9 및 소로2-10호선 신설 (폭원 8m)	기반시설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가 부담
공공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 건립 용적률 :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인센티브 용적률의 5/10 • 공공임대주택 공유지분토지는 서울시에 무상으로 제공 •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전용60㎡ 이하 주택을 50% 이상 건립 - 60㎡ 이하 /60~85㎡ 이하 /85㎡ 초과 : 60%/30%/10% 권장	• 장기전세주택 건립 용적률 :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따른 인센티브 용적률의 5/10 • 장기전세주택 공유지분토지는 서울시에 무상으로 제공 • 장기전세주택 건설비율: 전용 85㎡이하 주택으로 계획	
가구 및 획지		• 단일대지로 사업시행을 원칙으로 함	좌동	주변필지와의 공동개발 권장
용도계획	불허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장외발매소 • 마권전화 투표소 • 공장 및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좌동	

구 분		계획지침		비고
		기정	변경	
		• 자동차관련시설(단, 주차장 제외)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밀도	기준/허용/상한	• 250% / 450% / 500% • 공공용지 부담률 : 15% 이상	• 기준 : 250% • 상한 : 600%	용도지역 상향
최고높이		• 70m 이하	• 130m 이하	
건축물의 배치	건축한계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3m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3m, 5m	공공보행통로 및 공개공지 구간은 건축한계선 삭제 가능
기타	차량출입 불허구간	• 가각부 지정	좌동	
	자전거 편의시설	• 건축물내 일반인에게 편익시설(보관소 등) 개방	좌동	
	생태면적률	• 건축유형별 생태면적률 적용기준이상 확보	좌동	
운용기준		• 본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은 사업추진을 위한 예시안으로서 계획지침 내용 변경에 대하여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 법정절차에 의거 조정가능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2022.06.20.) 개정에 따른 용적률 및 채광방향 이격거리 및 인동간격 완화적용에 따른 높이계획 변경

Ⅳ. 관계도면 : 붙임 참조(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Ⅴ. 관계서류 열람방법

-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02-2133-7059) 및 구로구 도시계획과(02-860-3249)에 비치·열람하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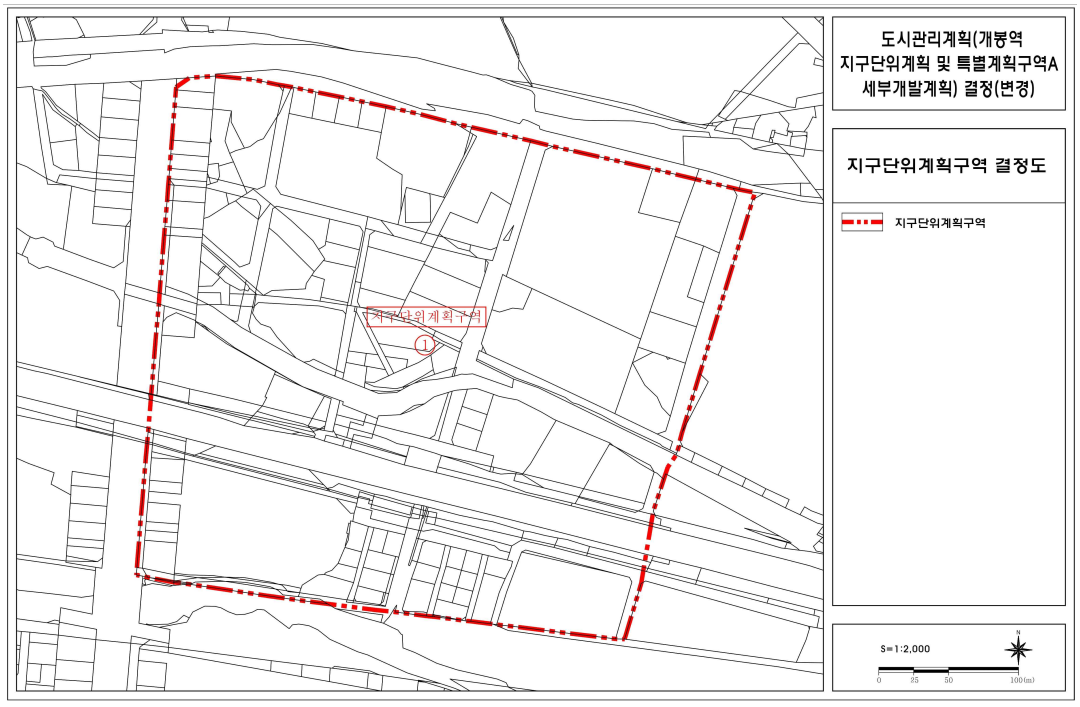
※ 첨부된 결정도면 등(그 외 세부관련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Ⅵ.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 등에 관한 사항(특별계획구역Ⓐ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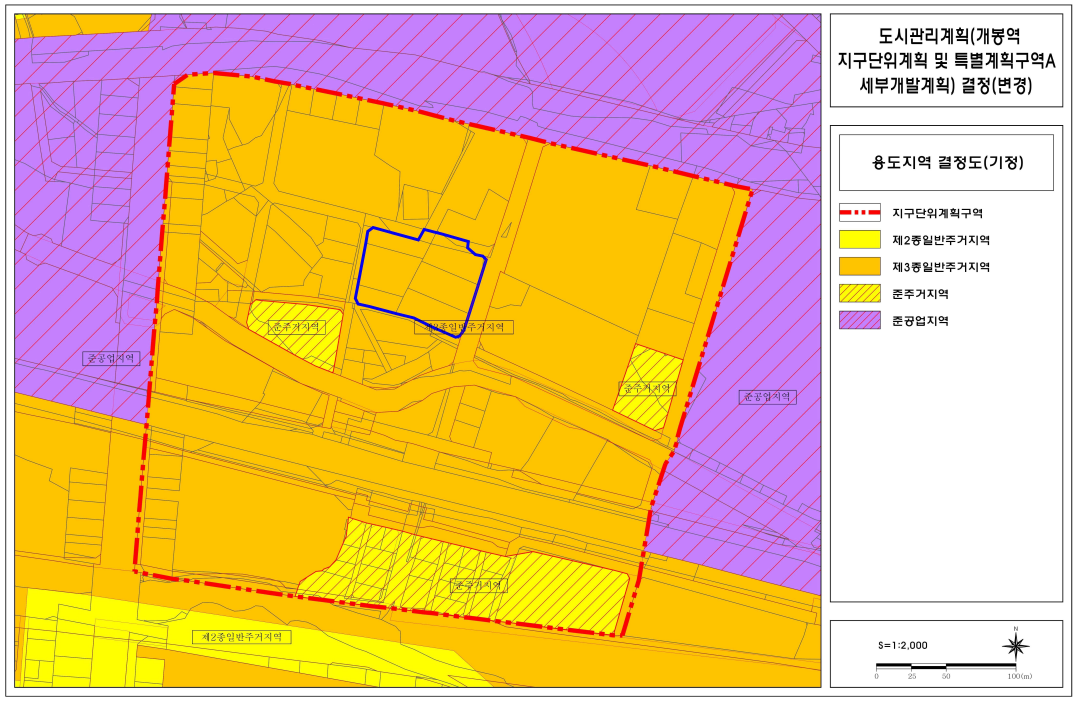
- 금회 상향 결정(변경) 된 용도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및 기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사항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환원됨을 고지합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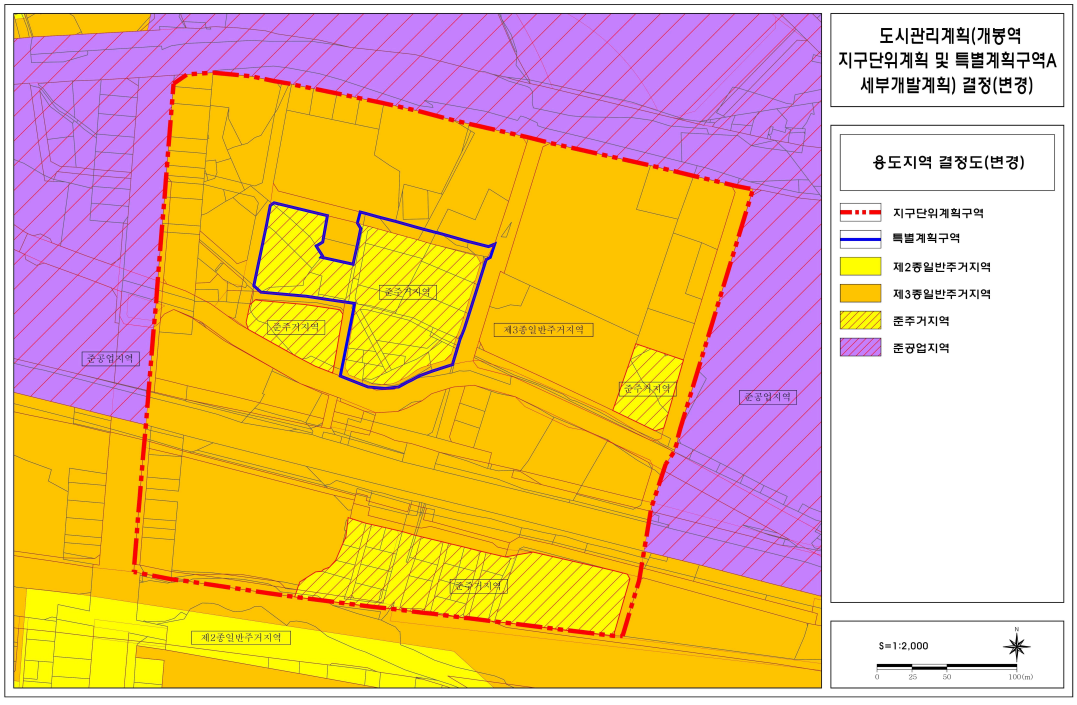


– 이하여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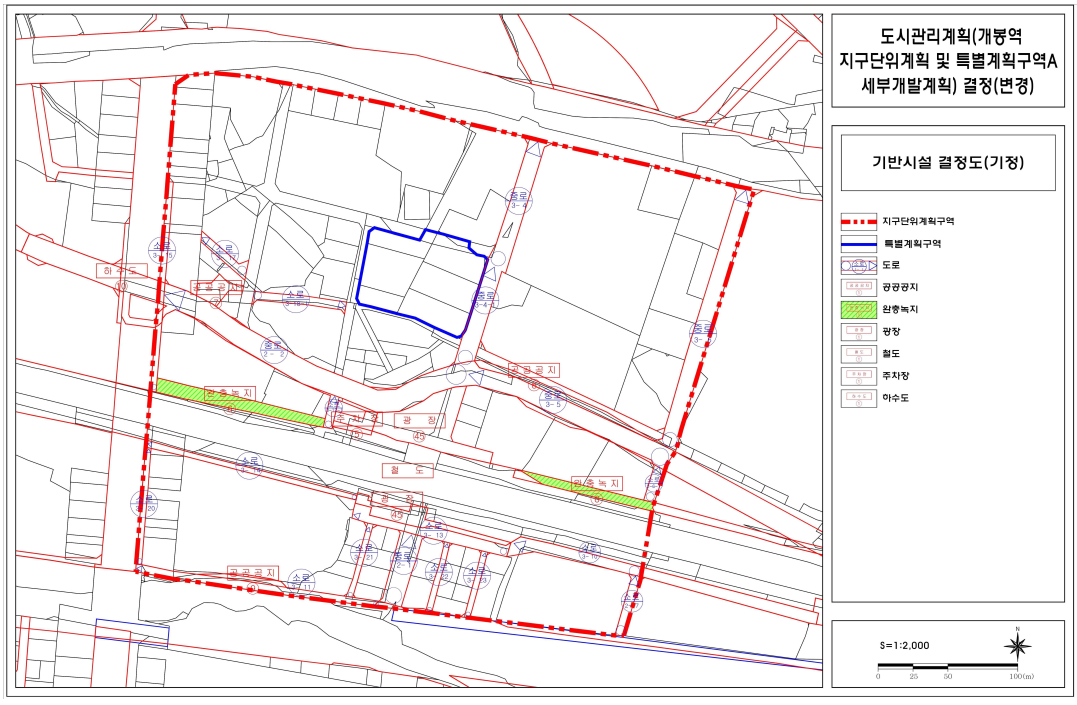
■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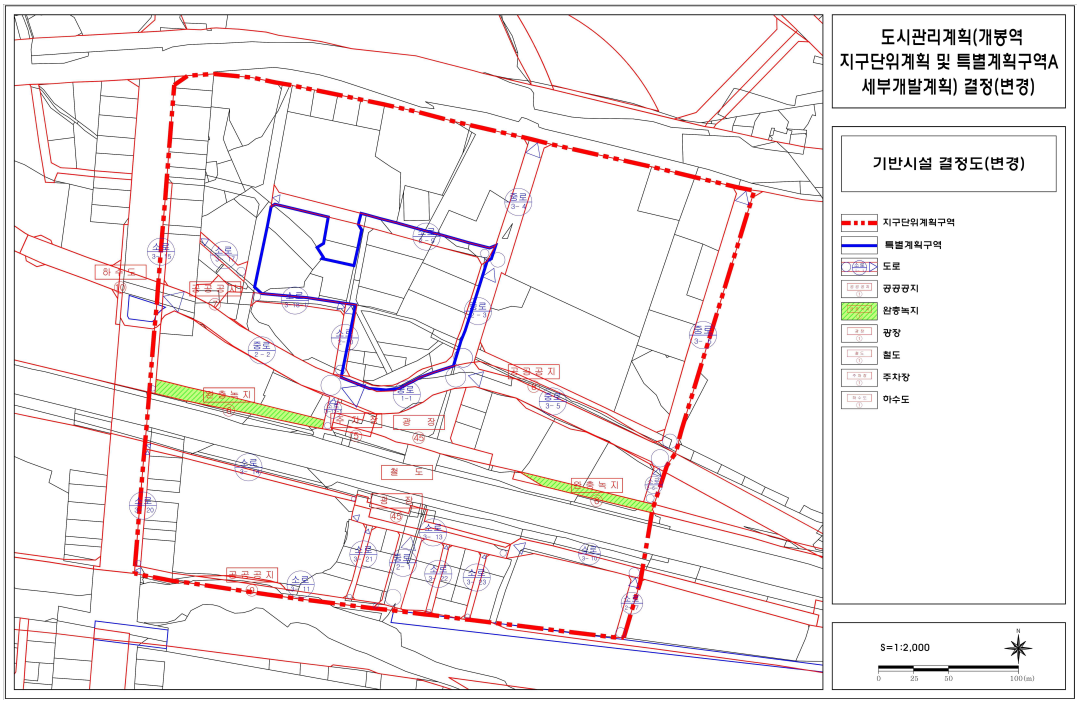
■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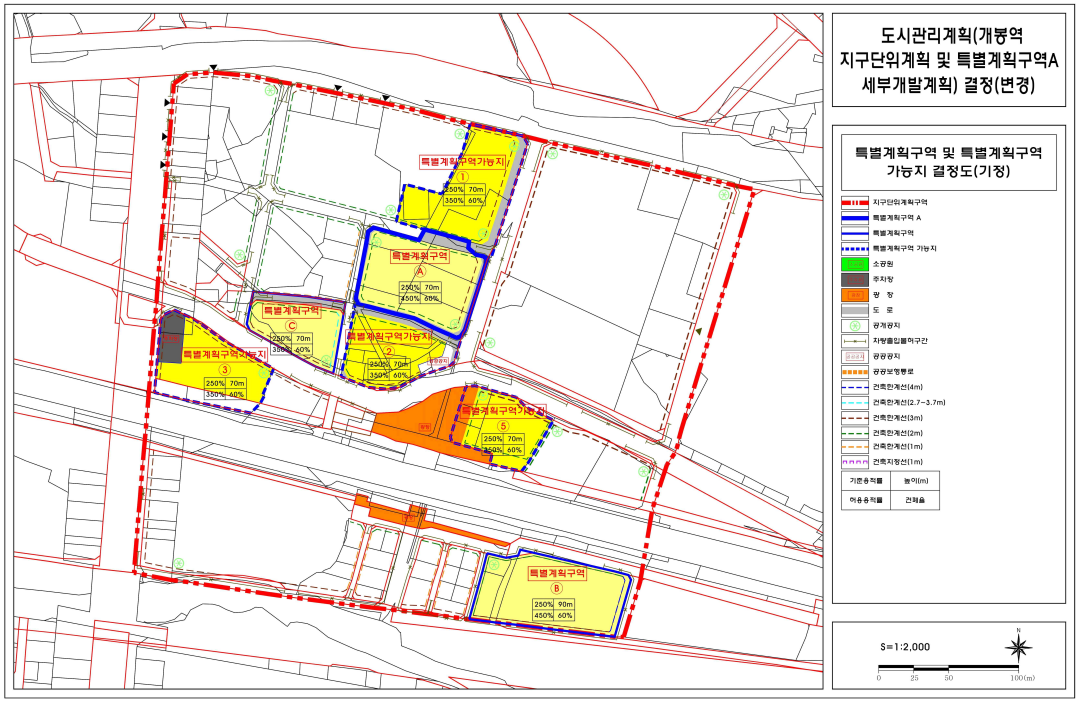
■ 기반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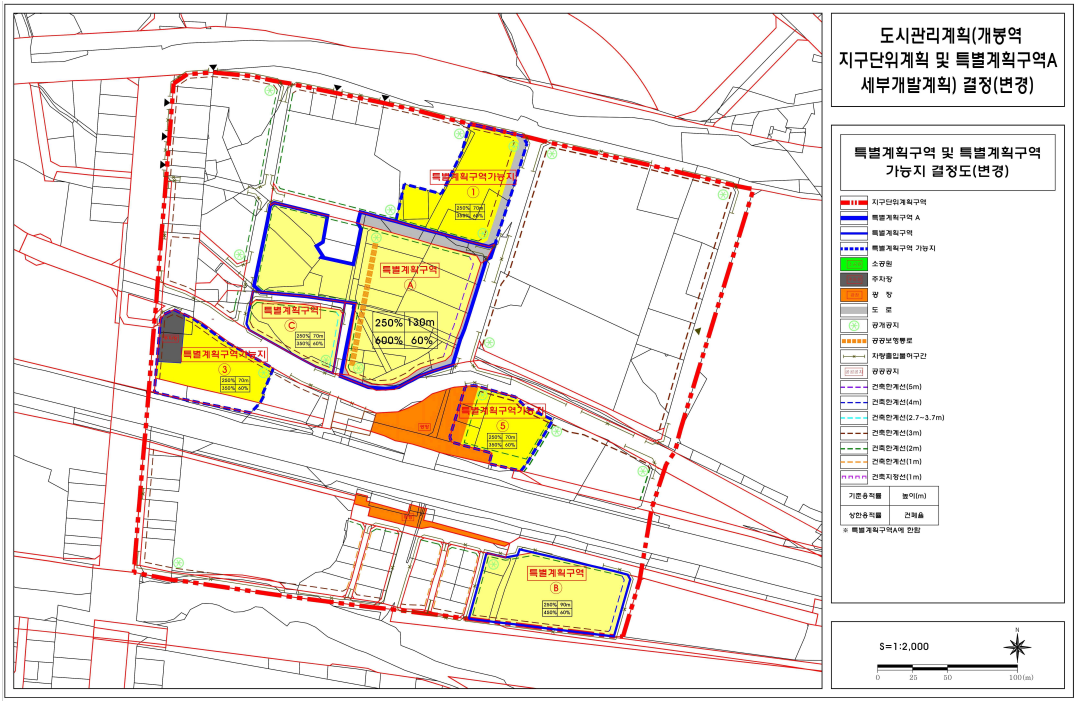
■ 기반시설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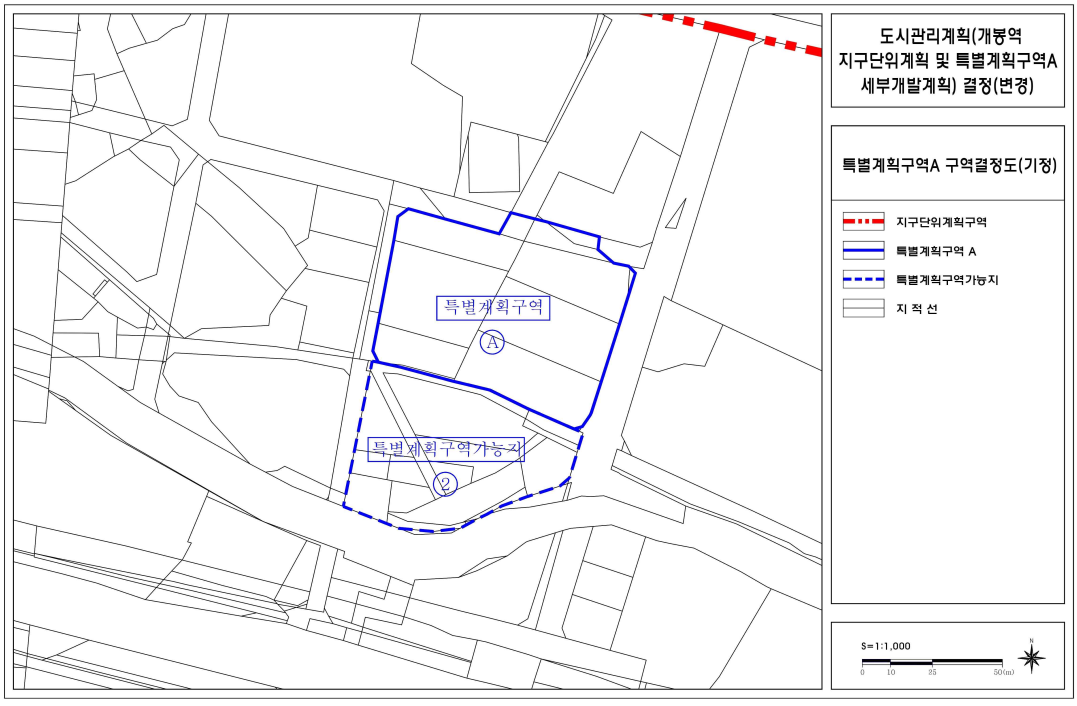
■ 특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구역가능지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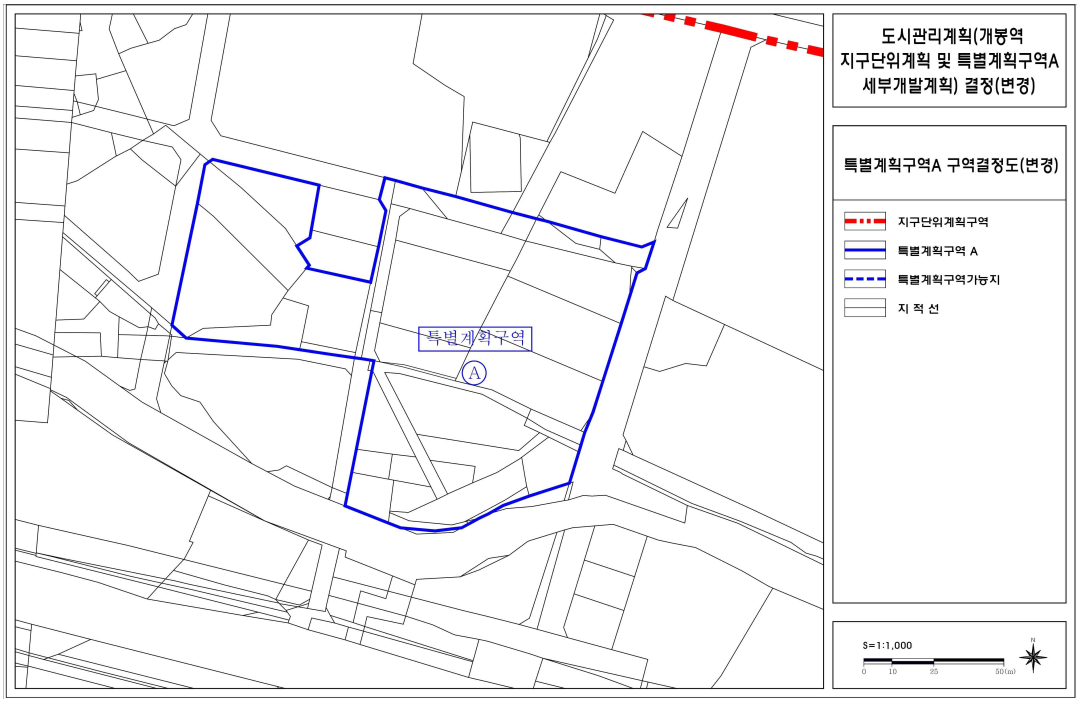
■ 특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구역가능지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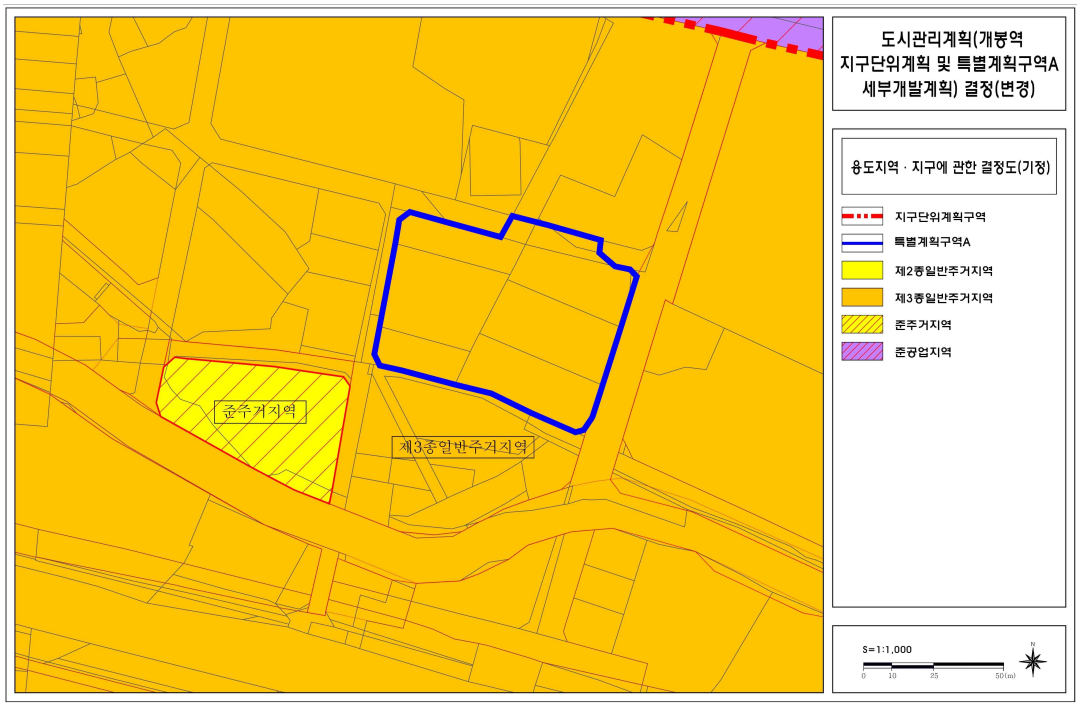
■ 특별계획구역Ⓐ 구역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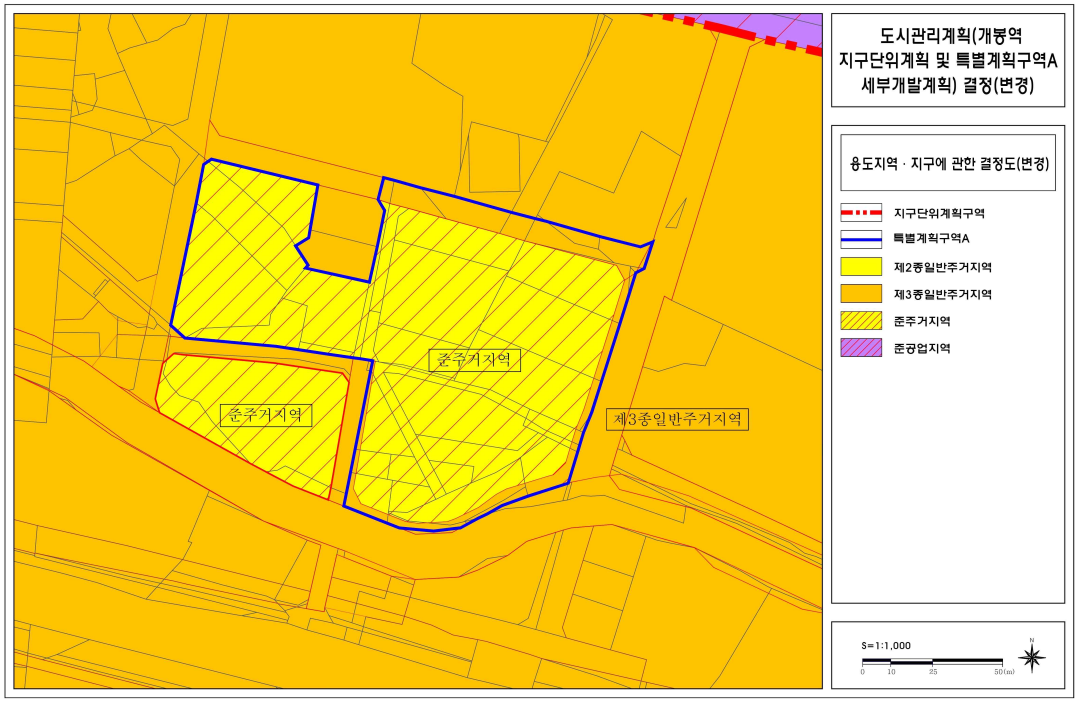
■ 특별계획구역Ⓐ 구역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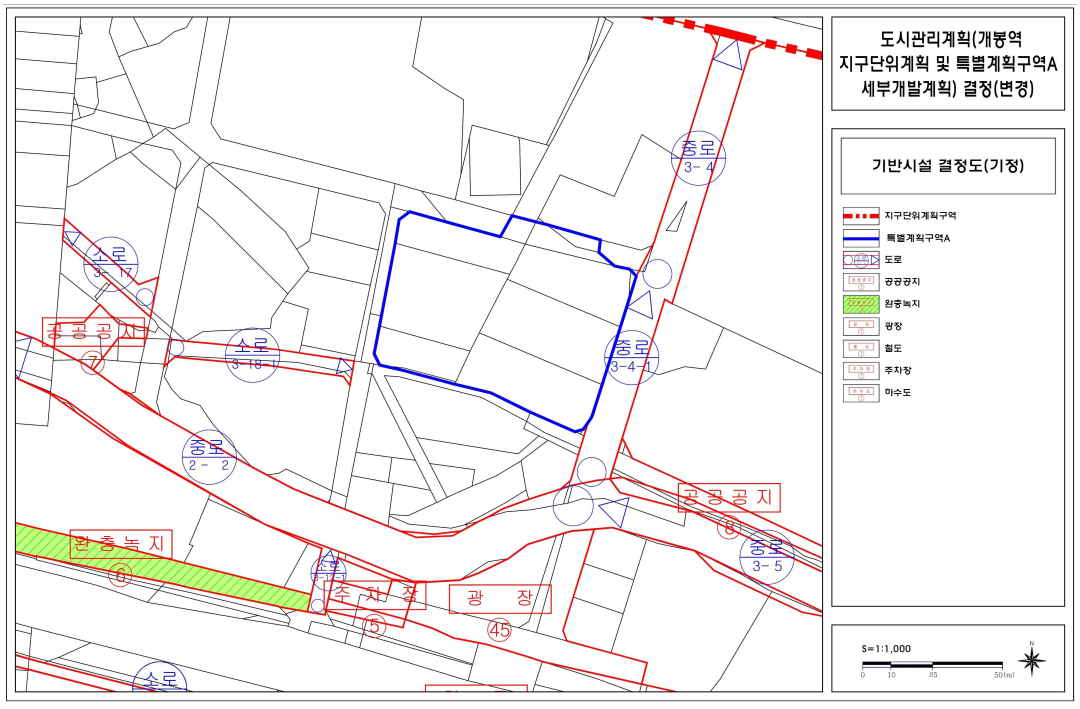
■ 특별계획구역Ⓐ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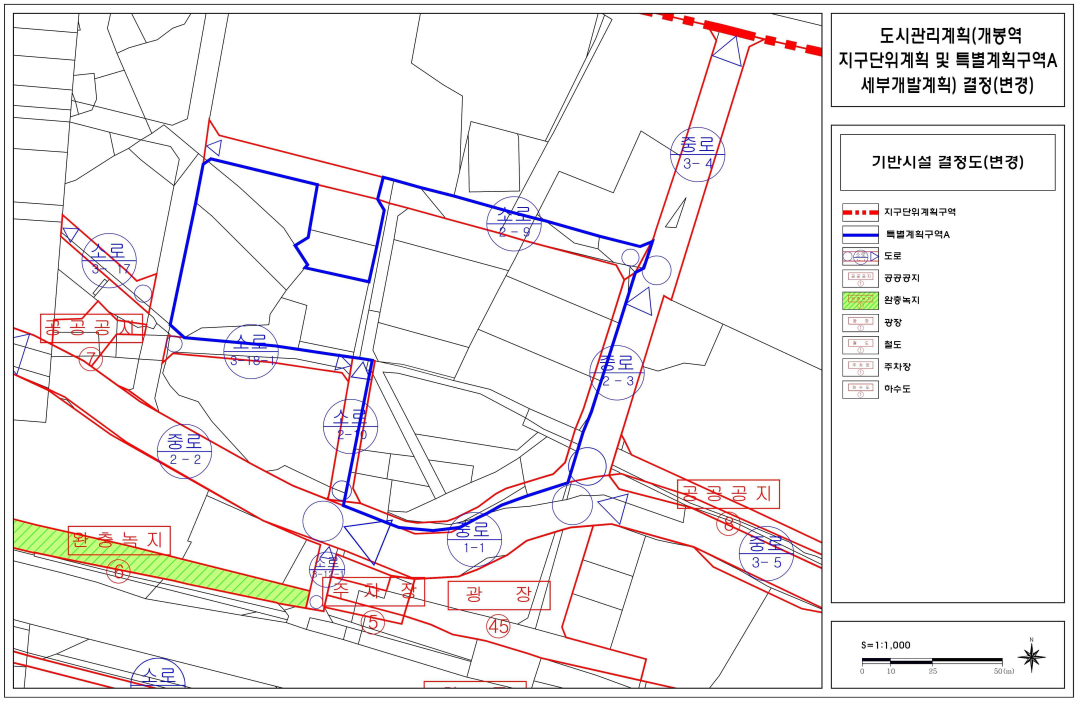
■ 특별계획구역Ⓐ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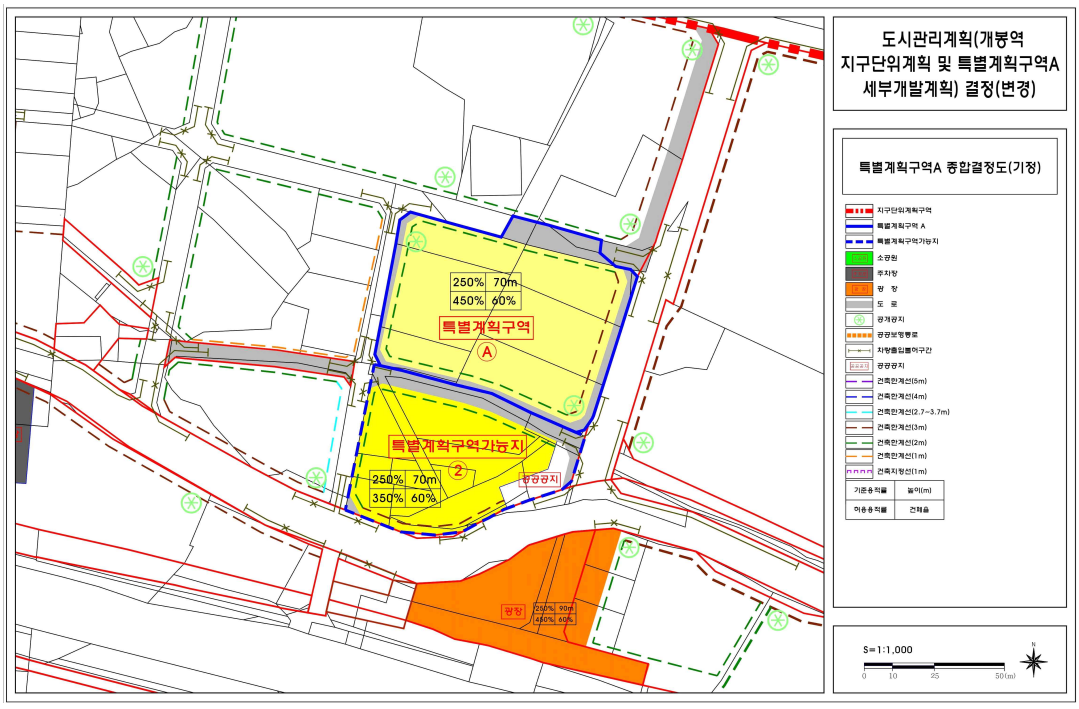
■ 기반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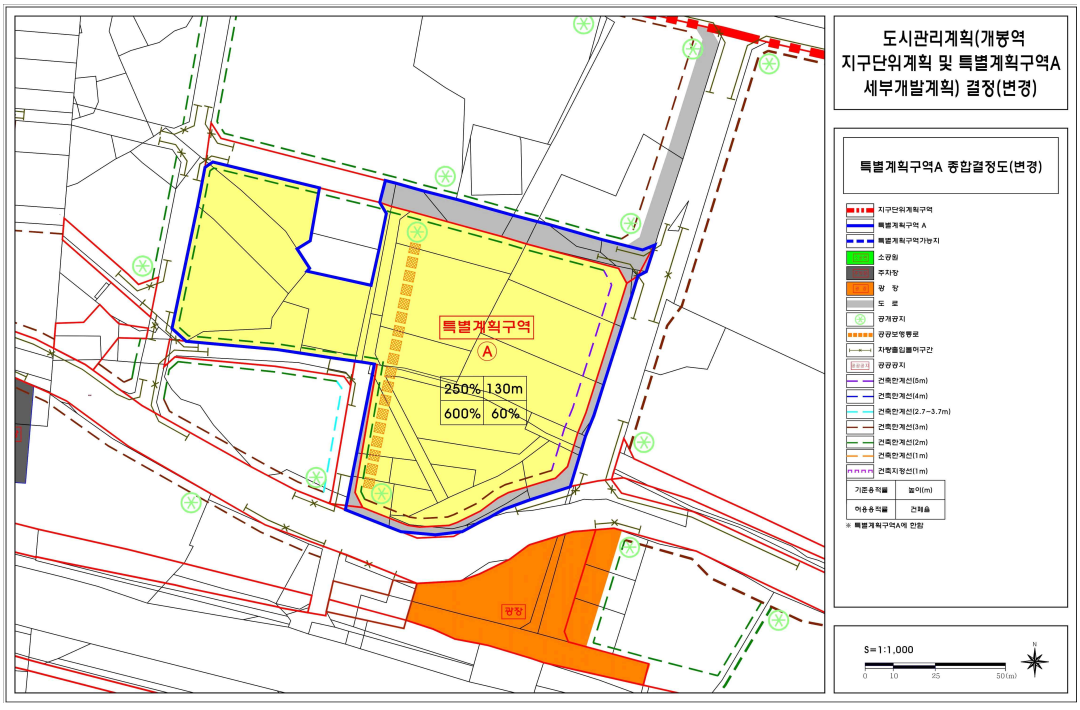
■ 기반시설 결정도(변경)



■ 특별계획구역Ⓐ 종합결정도(기정)



■ 특별계획구역Ⓐ 종합결정도(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90호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호-357호(2006.10.19)로 상봉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호-312호(2009.8.13)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25호(2011.11.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78호(2013.3.2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159호(2013.5.3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367호(2013.10.3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43호(2014.2.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28호(2014.4.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241호(2014.6.2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75호(2014.1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99호(2015.4.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05호(2015.7.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98호(2015.9.24),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74호(2017.5.2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402호(2017.11.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158호(2019.5.2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404호(2019.12.1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31호(2020.1.2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152호(2020.04.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300호(2020.7.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462호(2020.11.1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98호(2020.12.3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124호(2021.3.1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258호(2021.6.1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421호(2021.7.2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608호(2021.11.4.),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139호(2022.3.3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180호(2022.4.2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15호(2022.7.2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463호(2022.12.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45호(2023.6.1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64호(2023.6.29.) 등으로 변경 결정된 상봉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1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 고시합니다.
2.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 유형 · 위치 · 면적 (변경없음)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상봉 재정비 촉진지구	주거지형	중랑구 망우동, 상봉동 일대	505,604.2	-	505,604.2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 (2006.10.19.)	-

나.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연도 (변경없음)

다.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변경없음)

라.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변경)

1)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			비율(%)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505,604.2	-	505,604.2	100.0%	-
계		312,418.4	감) 253.0	312,165.4	61.74%	-
주거용지	소 계	165,878.6	증) 2,694.2	168,572.8	33.34%	-
	도심주거	76,154.8	감) 1,432.0	74,722.8	14.78%	오기사항 수정
	주거복합	89,723.8	증) 4,126.2	93,850.0	18.56%	-
상업용지	소 계	62,144.0	-	62,144.0	12.29%	-
	대형판매	19,428.0	-	19,428.0	3.84%	-
	근린상업서비스	42,716.0	-	42,716.0	8.45%	-
복합용지	소 계	83,154.7	감) 4,379.2	78,775.5	15.58%	-
	상업·업무·숙박	83,154.7	감) 4,379.2	78,775.5	15.58%	-
기타	소 계	2,673.1	-	2,673.1	0.53%	-
	종 교	2,673.1	-	2,673.1	0.53%	-
	소 계	-1,432.0	증) 1,432.0	-	-	-
	철도용지	-1,432.0	증) 1,432.0	-	-	오기사항 수정
계		193,185.8	증) 253.0	193,438.8	38.26%	-
계획기반시설	사회복지시설	1,506.7	-	1,506.7	0.30%	-
	광 장	2,340.7	-	2,340.7	0.46%	-
	공공공지	1,927.0	-	1,927.0	0.38%	-
	보행자전용도로	227.0	-	227.0	0.04%	-
	철 도	15,375.3	-	15,375.3	3.04%	-
	도 로	170,060.3	증) 253.0	170,313.3	33.69%	-
	주차장	179.8	-	179.8	0.04%	-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공공청사	1,569.0	-	1,569.0	0.31%	중복결정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공공청사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	-	-	-	특별계획구역7 내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연면적 : 2,016.77㎡)

구 분		면 적 (㎡)			비율(%)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문화시설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	-	-	-	상봉7촉진구역 내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 (연면적 : 6,047.53㎡)

2) 인구 · 주택수용계획(변경) : 8,307세대 / 21,220인

○ 주택유형별 인구 수용계획 (변경)

주택유형		주택 수(호)			인구 수(인)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8,084	증) 223	8,307	20,631	증) 589	21,220	-
촉진구역	소 계	2,835	-	2,835	7,485	-	7,485	세대당 2.64인
	60㎡이하	889	-	889	2,347	-	2,347	
	60~85㎡이하	1,127	-	1,127	2,975	-	2,975	
	85㎡초과	819	-	819	2,163	-	2,163	
존치관리구역		5,249	증) 223	5,472	13,146	증) 589	13,735	-

※ 상봉4존치관리구역 내 특별계획구역7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인구 및 세대 증가

○ 구역별 주택 수용계획 (변경)

– 기정

구 분		기존 세대수	계획 세대수			인구수	주거비율 (%)
			소계	일반세대	임대주택		
촉진구역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349	841	719	122	2,220	89.1
	상봉8재정비촉진구역	2	497	473	24	1,312	45.9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	999	802	197	2,638	89.9
	상봉10재정비촉진구역	127	498	382	116	1,315	90.0
존치관리구역		4,651	5,249	4,874	375	13,146	-
계		5,129	8,084	7,250	834	20,631	-

– 변경

구 분		기존 세대수	계획 세대수			인구수	주거비율 (%)
			소계	일반세대	임대주택		
촉진구역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349	841	719	122	2,220	89.1
	상봉8재정비촉진구역	2	497	473	24	1,312	45.9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	999	802	197	2,638	89.9
	상봉10재정비촉진구역	127	498	382	116	1,315	90.0
존치관리구역		4,651	5,472	5,052	420	13,735	–
계		5,129	8,307	7,428	879	21,220	–

3)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

○ 촉진지구 기반시설계획 (변경)

구 분		현 황(㎡)		계 획(㎡)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교통시설	도 로	148,052.2	(29.28%)	170,060.3	증) 253.0	170,313.3	(33.69%)	특별계획구역7 내 도로 확폭 (면목로 88길)
	주차장	–		179.8	–	179.8	(0.04%)	–
	철도시설	15,375.3	(3.04%)	15,375.3	–	15,375.3	(3.04%)	–
	여객자동차 터미널	29,204.9	(5.78%)	1,569.0	–	1,569.0	(0.31%)	공공청사 중복결정
	보행자도로	–	–	227.0	–	227.0	(0.04%)	–
	소 계	192,632.4	(38.10%)	187,411.4	증) 253.0	187,664.4	(37.12%)	–
도시공간시설	사회복지시설	–		1,506.7	–	1,506.7	(0.30%)	–
	광 장	–		2,340.7	–	2,340.7	(0.46%)	–
	공공공지	1,099.0	(0.22%)	1,927.0	–	1,927.0	(0.38%)	–
	공공청사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		–	–	–	–	특별계획구역7 내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연면적 : 2,016.77㎡)

<table>
<tr><th colspan="2" rowspan="2">구 분</th><th colspan="2" rowspan="2">현 황(㎡)</th><th colspan="4">계 획(㎡)</th><th rowspan="2">비 고</th></tr>
<tr><th>기 정</th><th>증·감</th><th colspan="2">변 경</th></tr>
<tr><td colspan="2"></td><td colspan="2"></td><td></td><td></td><td colspan="2"></td><td>
<table>
<tr><th>위 치</th><th>세부용도</th><th>연면적(㎡)</th></tr>
<tr><td>지상1층</td><td>가족지원센터</td><td>1,002.84</td></tr>
<tr><td>지상2층</td><td>가족지원센터 /
주거안심
종합센터</td><td>1,013.93</td></tr>
</table>
</td></tr>
<tr><td colspan="2">문화시설
(입체적
도시계획시설)</td><td colspan="2">-</td><td>-</td><td>-</td><td colspan="2">-</td><td>상봉7촉진구역 내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
(연면적 : 6,047.53㎡)
<table>
<tr><th>위치</th><th>세부용도</th><th>연면적(㎡)</th></tr>
<tr><td>지하1층</td><td>주차장</td><td>2,690.05</td></tr>
<tr><td>지상1층</td><td>어린이집</td><td>631.32</td></tr>
<tr><td>지상2층</td><td>여성문화
복지센터</td><td>1,405.97</td></tr>
<tr><td>지상3층</td><td>어린이
종합 체험관</td><td>1,320.19</td></tr>
</table>
</td></tr>
<tr><td colspan="2">소 계</td><td>1,099.0</td><td>(0.22%)</td><td>5,774.4</td><td>-</td><td>5,774.4</td><td>(1.14%)</td><td>-</td></tr>
<tr><td colspan="2">총 계</td><td>193,731.4</td><td>(38.32%)</td><td>193,185.8</td><td>증) 253.0</td><td>193,438.8</td><td>(38.26%)</td><td>-</td></tr>
</table>

※ 상기 면적비율(%)은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전체 면적(505,604.2㎡) 대비 각 시설별 비중을 나타낸 것임

○ 촉진지구 공공 문화 · 복지시설 설치계획 (변경)

<table>
<tr><th colspan="2" rowspan="2">구 분</th><th rowspan="2">위 치</th><th colspan="3">연면적(㎡)</th><th rowspan="2">비 고</th></tr>
<tr><th>기정</th><th>증 · 감</th><th>변경</th></tr>
<tr><td colspan="2">합 계</td><td></td><td>13,438.7</td><td>증) 2,016.77</td><td>15,455.47</td><td>-</td></tr>
<tr><td rowspan="4">문화
복지
시설
(공공)</td><td>문화시설</td><td>촉진7구역</td><td>6,047.5</td><td>-</td><td>6,047.5</td><td>상봉7촉진구역 내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
<table><tr><th>위치</th><th>세부용도</th><th>연면적(㎡)</th></tr><tr><td>지하1층</td><td>주차장</td><td>2,690.05</td></tr><tr><td>지상1층</td><td>어린이집</td><td>631.32</td></tr><tr><td>지상2층</td><td>여성문화
복지센터</td><td>1,405.97</td></tr><tr><td>지상3층</td><td>어린이
종합 체험관</td><td>1,320.19</td></tr></table></td></tr>
<tr><td>소극장 / 갤러리</td><td>촉진8구역</td><td>2,448.6</td><td>-</td><td>2,448.6</td><td>조성 후 기부채납 완료</td></tr>
<tr><td>주민커뮤니티시설
(공공청사)</td><td>촉진9구역</td><td>2,891.8</td><td>-</td><td>2,891.8</td><td>건축물로 조성 후 기부채납
(여객자동차터미널과 중복결정)</td></tr>
<tr><td>사회복지시설
(키움센터)</td><td>촉진10구역</td><td>2,050.8</td><td>-</td><td>2,050.8</td><td>건축물로 조성 후 기부채납</td></tr>
<tr><td colspan="2">공공업무시설
(공공청사)</td><td>특별계획구역7</td><td>-</td><td>증) 2,016.77</td><td>2,016.77</td><td>특별계획구역7 내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연면적 : 2,016.77㎡)
<table><tr><th>위 치</th><th>세부용도</th><th>연면적(㎡)</th></tr><tr><td>지상1층</td><td>가족지원센터</td><td>1,002.84</td></tr><tr><td>지상2층</td><td>가족지원센터 /
주거안심
종합센터</td><td>1,013.93</td></tr></table></td></tr>
</table>

※ 기부채납 대지면적은 건축물 전체 연면적 대비 제공시설 면적을 계산하여 대지지분으로 환산
※ 건축물로 기부채납 시 공공시설 이용편의를 고려하여 인지성이 높은 저층부(지하 1층~지상 2층)를 포함하여 수직방향으로 연속되는 공간 배치 및 해당 시설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전용 출입구 및 전용 엘리베이터 등 전용코어 설치
※ 촉진지구에서 설치하는 문화 · 복지시설은 향후 건축계획 수립시 위치 및 기부채납 면적 결정
※ 산정기준 : 서울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촉진구역 20년, 특별계획구역7 22년 기준 적용)

4) 공원 · 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5) 교통계획 - (도서 참조)

6) 경관계획 - (도서 참조)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없음) : 도시환경정비사업 부문

8)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에 관한사항 (변경없음)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변경없음)

10) 촉진사업별 용도지구 변경계획 (변경없음)

11) 촉진사업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변경없음)

– 이하 여백 –

12) 기반시설 설치비용 분담계획 (변경)

- 기정

구 분		구역명	구역 면적 (㎡)	기반시설면적(㎡)									
				계획기반시설 ①					계획기반 시설내 국공유지 ②	기존기반 시설내 국공유지 ③	유상 매입 시설 ④	순부담 면적 (①-②-③-④)	순 부담률 (%)
				계	도로	광장	자동차 정류장	공공 청사 등					
민간 부문 (촉진 계획)	소 계		80,866.1	16,560.1	12,096.7	1,994.4	1,569.0	900.0 (5,600.6)	809.5	1,713.0	-	19,638.1	24.3
	촉진 구역	상봉7 재정비촉진구역	14,996.3	1,831.0	1,831.0	-	-	- (3,157.4)	789.6	1,117.8	-	3,081.0	20.5
		상봉8 재정비촉진구역	25,334.6	7,276.7	5,282.3	1,994.4	-	-	-	489.9	-	6,786.8	26.7
		상봉9 재정비촉진구역	28,526.6	5,828.1	4,259.1	-	1,569.0	- (1,512.8)	-	-	-	7,340.9	25.7
		상봉10 재정비촉진구역	12,008.6	1,624.3	724.3	-	-	900.0 (930.3)	19.9	105.3	-	2,429.4	20.2
민간 부문 (기부 채납)	소 계		160,272.1	1,888.3	1,888.3	-	-	-	-	-	-	1,888.3	-
	존치 관리 구역	상봉2 존치관리구역	24,383.4	548.6	548.6	-	-	-	-	-	-	548.6	-
		상봉3 존치관리구역	28,117.3	293.2	293.2	-	-	-	-	-	-	293.2	-
		상봉7 존치관리구역	25,467.7	454.4	454.4	-	-	-	-	-	-	454.4	-
		상봉8 존치관리구역	33,148.1	299.0	299.0	-	-	-	-	-	-	299.0	-
		상봉9 존치관리구역	49,155.6	293.1	293.1	-	-	-	-	-	-	293.1	-

※ 1) 상기 내역 중 공공청사 등 항목 "( )" 건축시설 면적은 시설 기부채납할 건축물 연면적을 토지면적으로 환산한 면적과 대지 지분을 합한 면적임

2)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 부지면적 환산을 위한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

3) 사업시행(변경)인가시 구체적 설계내역을 작성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증받아 용적률 인센티브를 위한 환산부지 면적 확정 예정임

4) 상봉9재정비촉진구역의 건축시설 면적(1,512.8㎡)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건축물은 855.8㎡, 공공청사 건축물은 657㎡임

- 공공청사 건축물 기부채납에 따른 순부담면적은 용적률 산정시 제외 (높이 완화로 적용)

5) 민간부문(기부채납)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분담계획은 각 구역 내 해당 대지의 건축허가 시 기반시설로 결정된 부분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상한용적률을 부여받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 해당 가구(블럭) 또는 노선별 기반시설 설치 여건이 갖춰지거나 시설 설치가 시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공(관리청)에서 기반시설 설치공사를 일괄 시행함(필요시 부분별 물건보상에 의한 협의매수로 병행할 수 있음)

– 변경

구 분		구역명	구역 면적 (㎡)	기반시설면적(㎡) 계획기반시설 ① 계	도로	광장	자동차 정류장	공공 청사 등	계획기반 시설내 국공유지 ②	기존기반 시설내 국공유지 ③	유상 매입 시설 ④	순부담 면적 (①-②-③-④)	순 부담률 (%)
민간부문 (촉진계획)	소 계		80,866.1	16,560.1	12,096.7	1,994.4	1,569.0	900.0 (5,600.6)	809.5	1,713.0	–	19,638.1	24.3
	촉진구역	상봉7 재정비촉진구역	14,996.3	1,831.0	1,831.0	–	–	– (3,157.4)	789.6	1,117.8	–	3,081.0	20.5
		상봉8 재정비촉진구역	25,334.6	7,276.7	5,282.3	1,994.4	–	–	–	489.9	–	6,786.8	26.7
		상봉9 재정비촉진구역	28,526.6	5,828.1	4,259.1	–	1,569.0	– (1,512.8)	–	–	–	7,340.9	25.7
		상봉10 재정비촉진구역	12,008.6	1,624.3	724.3	–	–	900.0 (930.3)	19.9	105.3	–	2,429.4	20.2
민간부문 (기부채납)	소 계		195,614.8	2,532.0	2,532.0	–	–	–	–	–	–	2,840.72	–
	존치관리구역	상봉2 존치관리구역	24,383.4	548.6	548.6	–	–	–	–	–	–	548.60	–
		상봉3 존치관리구역	28,117.3	293.2	293.2	–	–	–	–	–	–	293.20	–
		상봉4 존치관리구역	35,342.7	643.7	643.7	–	–	– (699.42)	390.7	–	–	952.42	–
		상봉7 존치관리구역	25,467.7	454.4	454.4	–	–	–	–	–	–	454.40	–
		상봉8 존치관리구역	33,148.1	299.0	299.0	–	–	–	–	–	–	299.00	–
		상봉9 존치관리구역	49,155.6	293.1	293.1	–	–	–	–	–	–	293.10	–

※ 1) 상기 내역 중 공공청사 등 항목 "( )" 건축시설 면적은 시설 기부채납할 건축물 연면적을 토지면적으로 환산한 면적과 대지 지분을 합한 면적임
2)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 부지면적 환산을 위한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
3) 사업시행(변경)인가시 구체적 설계내역을 작성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증받아 용적률 인센티브를 위한 환산부지 면적 확정 예정임
4) 상봉9재정비촉진구역의 건축시설 면적(1,512.8㎡)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건축물은 855.8㎡, 공공청사 건축물은 657㎡임
– 공공청사 건축물 기부채납에 따른 순부담면적은 용적률 산정시 제외 (높이 완화로 적용)
5) 민간부문(기부채납)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분담계획은 각 구역 내 해당 대지의 건축허가 시 기반시설로 결정된 부분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상한용적률을 부여받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 해당 가구(블럭) 또는 노선별 기반시설 설치 여건이 갖춰지거나 시설 설치가 시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공(관리청)에서 기반시설 설치공사를 일괄 시행함(필요시 부분별 물건보상에 의한 협의매수로 병행할 수 있음)

13)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변경)

○ 공급 규모별 임대주택 확보계획

– 기정

구 분	구 역 명	계 획 세대수	일반 주택 (세대)	임대주택 공급계획(세대)						비고
				소계	전용면적 40㎡이하	전용면적 40~45㎡	전용면적 45~60㎡	전용면적 60~85㎡	전용면적 85㎡초과	
계		2,835	2,376	459 (100.0%)	123 (26.8%)	35 (7.6%)	190 (41.4%)	111 (24.2%)	–	–
촉진 구역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841	719	122	37	–	60	25	–	–
	상봉8재정비촉진구역	497	473	24	–	–	24	–	–	–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999	802	197	50	35	42	70	–	–
	상봉10재정비촉진구역	498	382	116	36	–	64	16	–	–

– 변경

구 분	구 역 명	계 획 세대수	일반 주택 (세대)	임대주택 공급계획(세대)						비고
				소계	전용면적 40㎡이하	전용면적 40~45㎡	전용면적 45~60㎡	전용면적 60~85㎡	전용면적 85㎡초과	
계		2,835	2,376	459 (100.0%)	123 (26.8%)	35 (7.6%)	190 (41.4%)	111 (24.2%)	–	–
촉진 구역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841	719	122	37	–	60	25	–	–
	상봉8재정비촉진구역	497	473	24	–	–	24	–	–	–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999	802	197	50	35	42	70	–	–
	상봉10재정비촉진구역	498	382	116	36	–	64	16	–	–
존치관리 구역	특별계획구역7	223	178	45	–	–	16	29	–	–

○ 주택 공급계획

– 기정

구 분		기존 세대수			주택 공급계획		
		계	자가 세대	세입세대	계	일반분양	임대주택
촉진 구역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349	50	299	841	719	122
	상봉8재정비촉진구역	2	1	1	497	473	24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	–	–	999	802	197
	상봉10재정비촉진구역	127	98	29	498	382	116
계		478	149	329	2,835	2,376	459

– 변경

구 분		기존 세대수			주택 공급계획		
		계	자가 세대	세입세대	계	일반분양	임대주택
촉진 구역	상봉7재정비촉진구역	349	50	299	841	719	122
	상봉8재정비촉진구역	2	1	1	497	473	24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	–	–	999	802	197
	상봉10재정비촉진구역	127	98	29	498	382	116
존치관리 구역	특별계획구역7	–	–	–	223	178	45
계		478	149	329	3,058	2,554	504

14)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5)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변경없음)
16)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 (변경)
가)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2) 건축물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7은 별도 계획
(3)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4) 특별계획구역(변경)
○ 특별계획구역7(한남프라자)
- 기정

<table>
<tr><th colspan="3">구 분</th><th>계 획 내 용</th><th>비 고</th></tr>
<tr><td colspan="3">위 치</td><td>상봉동 107-6번지 일대</td><td>-</td></tr>
<tr><td colspan="3">면 적</td><td>3,974.6㎡</td><td>-</td></tr>
<tr><td colspan="3">용도지역</td><td>준주거지역</td><td>-</td></tr>
<tr><td colspan="3">용도지구</td><td>-</td><td>-</td></tr>
<tr><td colspan="3">공공시설계획</td><td>• 면목로 : 폭원 25m
• 공공공지(소공원)
• 기반시설 순부담률 10%</td><td>촉진계획 방향에 따라
10%이상
(先 기부채납 면적포함)</td></tr>
<tr><td rowspan="8">건축물에 관한 계획</td><td rowspan="3">용 도</td><td>불허용도</td><td>• 단독주택, 공동주택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 창고시설, 공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td><td>-</td></tr>
<tr><td>권장용도</td><td>•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 업무시설
• 판매시설</td><td>-</td></tr>
<tr><td>지정용도</td><td>• 업무시설</td><td>전체 연면적의 50%이상
계획</td></tr>
<tr><td colspan="2">건폐율</td><td>60%</td><td>-</td></tr>
<tr><td rowspan="2">용적률</td><td>기 준</td><td>300%</td><td>-</td></tr>
<tr><td>허 용</td><td>360%</td><td>상한용적률 400%이하</td></tr>
<tr><td>건축물
높 이</td><td>최 고
높 이</td><td>80m이하</td><td>-</td></tr>
<tr><td colspan="3">건축물 배치계획</td><td>• 면목로변 : 건축한계선 3m
• 이면도로변 : 건축한계선 2m
• 중앙공원변 : 벽면한계선 5m</td><td>-</td></tr>
<tr><td colspan="3">운 용 기 준</td><td>• 기반시설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 본 특별계획구역은 향후 세부개발계획시 인접블록의 도로폭원과 선형, 주변 녹지를 고려하여 계획하도록 함
• 도시계획시설 시장 해제시 촉진계획 방향에 따라 면목로 확폭부분을 선 기부채납(140m)하며, 순부담률 10%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미적용함</td><td>-</td></tr>
</table>

– 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위 치			상봉동 107-6번지 일대	-
면 적			4,769.9㎡	-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
용도지구			-	-
공공시설계획			• 소로3- (면목로88길) : 폭원 6m • 기반시설 순부담률 10% 이상 • 공공청사 - 중랑구 가족지원센터 (전용면적 : 694.77㎡) - 서울시 주거안심종합센터 (전용면적 : 316.89㎡)	촉진계획 방향에 따라 10%이상 (先 기부채납 면적포함)
건축물에 관한 계획	용 도	불허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주거복합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 창고시설, 공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권장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 업무시설 • 판매시설	-
		지정용도	-	-
	건폐율		60%	-
	용적률	기 준	400%	-
		상 한	600% 이하	-
	건축물 높 이	최 고 높 이	127m 이하 (42층 이하)	-
건축물 배치계획			• 면목로변 : 건축한계선 5m • 이면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 봉우재로 33길변 : 건축한계선 3m • 인접대지경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
운 용 기 준			• 기반시설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 도시계획시설 시장 해제에 따른 순부담률 10%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미적용함	-

※ 용적률 변경 사유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 적용 (기준 400%, 상한 700%이하)
※ 기준용적률 변경 조건
- 조건1 : 상봉재정비촉진계획 허용용적률 항목(계획유도, 친환경 등)을 적용하여 300%에서 360% 도달
- 조건2 :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을 적용하여 360%에서 400%

17) 기타(광고물 관리계획,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방재계획, 정보화계획, 에너지순환계획,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신재생에너지 적용계획, 특성화 계획, 여성친화적 건설계획, 친환경 건축물계획) : 변경없음

1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가) 재정비촉진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나)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다) 용도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2) 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3)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기 정	특별계획구역 2	상봉동 479번지 일대	8,223.0	-	8,223.0	구) 아주레미콘 부지 현) 한일써너스빌 리젠시
기 정	특별계획구역 3	상봉동 79-1번지 일대	8,772.1	-	8,772.1	구) 동서울자동차공업사 부지 현) 상봉듀오트리스 - 준공내역 반영
기 정	특별계획구역 4	상봉동 81-5번지 일대	10,920	-	10,920	구) 강원산업 콘크리트공장 부지 현) 한일써너스빌
기 정	특별계획구역 5	상봉동 81-1번지 일대	11,677.0	-	11,677.0	코스트코(상봉점) 부지
변 경	특별계획구역 7	상봉동 107-6번지	3,974.6	증) 795.3	4,769.9	구) 한남프라자

※ 특별계획구역7 구역면적 증가 - 공동개발(권장) 필지 및 인접현황도로 포함

(4)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결정

①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변 경	특별계획구역7	중랑구 상봉동 107-6번지 일원	3,974.6	증) 795.3	4,769.9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12호 (2009.8.13.)	-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위 치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중랑구 상봉동 107-6번지 일원	• 면적 변경 3,974.6㎡ → 4,769.9㎡ (증 : 795.3㎡)	• 공동개발(권장) 필지(107-6, 107-13, 107-57번지)및 인접현황도로(107-21)를 포함하여 구역계정형화를 유도함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	-	6	국지도로	105	상봉동 107-24	상봉동 107-60	일반 도로	-	면목로88길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사유
-	소로 3-	• 도로 신설 - B=6m, L=105m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2. 공공 · 문화체육시설

– 공공청사(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①	공공청사	공공업무시설	상봉동 107-6번지 일대	지상 1~2층	-	증) 1층:501.49㎡ 2층:510.17㎡	1층:501.49㎡ 2층:510.17㎡	-	•중랑구 가족지원센터(1,2층) - 694.77㎡ •서울시 주거안심종합센터(2층) - 316.89㎡

※ 공공시설 협의 의견 반영 (중랑구 전용면적 : 694.77㎡ 이상 / 서울시 전용면적 : 312.00㎡ 이상)
※ 공공기여시설 수요조사 의견 반영
- 가족지원센터 : 1인가구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운영: 중랑구 보육지원과)
- 주거안심종합센터 : 주거취약계층 대상으로 주거복지업무 및 대시민 교육·상담 지원 (운영: 서울시 주택정책실)
※ 상기 면적은 전용면적임

– 공공청사(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공청사	•신설 - 지상1층 (501.49㎡) - 지상2층 (510.17㎡)	•공공청사를 지상1층 및 지상2층에 입체적으로 결정함으로써,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타용도로 전환을 방지하고자 함

③ 가구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변경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면 적(㎡)		비 고
				필 지	계	
가구번호와 동일	S (존치관리 4구역)	12,809.6	상봉동 107-6	3,974.6	3,974.6	•공동개발(권장)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 치	면 적(㎡)		비 고
				필 지	계	
가구번호와 동일	S (존치관리 4구역)	12,809.6	상봉동 107-6	3,721.6	4,126.2	•공동개발(권장)
			상봉동 107-13	365.3		
			상봉동 107-57	39.3		

※ 특별계획구역7은 재정비촉진계획상 존치관리4구역 내 가구번호 S에 속함
※ 지침상 공동개발 권장을 반영하여 기존 상봉동 107-6번지에 107-13번지, 107-57번지를 포함하여 공동개발 계획

(나)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용 도	불허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주거복합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 창고시설, 공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변경없음	-
	권장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 업무시설 • 판매시설	· 변경없음	
건폐율		60%	· 변경없음	-
용적률	기 준	400%	· 변경없음	-
	상 한	600% 이하		
건축물 높 이	최 고 높 이	127m 이하 (42층 이하)	· 변경없음	-
건축물 배치계획		• 면목로변 : 건축한계선 5m • 이면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 봉우재로 33길변 : 건축한계선 3m • 인접대지경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 3m	· 변경없음	-
운 용 기 준		• 기반시설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 도시계획시설 시장 해제에 따른 순부담률 10%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미적용함 - 순부담 기준 : 사유지 면적 기준 (사유지 면적 : 4,379.20㎡)	· 변경없음	-

(다) 공공시설 기부채납 계획 및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기부채납(㎡)		세부용도	채납행정청 (관리청)	비고
			대지면적(㎡) (대지지분)	건축물/현금 건축연면적(㎡)			
1	공공청사	상봉동 107-6 일대	66.89	629.80 (환산 151.73)	서울시 주거안심종합센터	서울특별시	2층
2			146.65	1,386.97 (환산 334.15)	중랑구 가족지원센터	중랑구	1,2층

※ 향후 토지평가 및 건축계획 등에 따라 건축연면적, 위치 등이 조정될 수 있으며, 세부용도는 서울시 기부채납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추후 확정함.

마)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변경)

(1) 도로 결정(변경)조서 (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5	35~41	간선도로	8,100 (1,210)	중랑교	망우동 서울시계	일반 도로	총독부고시 제722호 (1936.12.26)	망우로
기정	대로	2	88	25~32	-	2,020	망우동 489-2	신내동 674-1	-	서울시고시 제104호 (1994.4.7)	신내길
기정	대로	3	-	25~30	보조간선	(380)	(상봉동 160-7)	(상봉동 160-21)	일반 도로	건교부고시 제935호 (1964.6.25)	면목동길
기정	대로	3	-	25	보조간선	(675)	(상봉동 160-18)	(상봉동 534-21)	일반 도로	건교부고시 제2493호 (1966.6.21)	봉우재길
기정	대로	3	-	25~28	보조간선	(380)	(상봉동 534-65)	(상봉동 534-21)	일반 도로	건교부고시 제2493호 (1966.6.21)	상봉동길
기정	중로	1	185	20~26	-	620	상봉동 99	상봉동 301	-	서울시고시 제949호 (1988.12.12)	상봉중앙길
기정	중로	1	-	20	집산도로	732	상봉동 402-35	상봉동 399-5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425호 (1984.7.31)	면목천길
기정	중로	2	-	15	집산도로	255	상봉동 83-7	상봉동 402-4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312호 (2009.8.13)	요람2길
기정	중로	2	1	15	집산도로	150	상봉동 92-5	상봉동 81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234호 (2000.8.4)	상봉여울길
기정	중로	2	-	16	집산도로	40	상봉동 99-1	상봉동 184-2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157호 (2008.5.8)	-
기정	중로	2	2	16	집산도로	203	망우동 565	망우동 495-1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295호 (2004.9.20)	맛솜씨길
기정	중로	2	3	15	집산도로	119	상봉2동 501	상봉2동 399-7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235호 (2000.8.16)	-
기정	중로	2	-	16	집산도로	207	상봉동 88-93	상봉동 85-41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312호 (2009.8.13)	상봉중앙길
기정	중로	2	-	15	집산도로	140	상봉동 88	상봉동 88-11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174호 (2017.5.25)	
기정	중로	3	2	13	집산도로	292	망우동 534-37	망우동 534-64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295호 (2004.9.20)	새한길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49	망우동 534-62	망우동 534-59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295호 (2004.9.20)	맛솜씨길
기정	소로	2	-	8	국지도로	370	상봉동 184-2	상봉동 500-1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157호 (2008.5.8)	-
기정	소로	2	-	8	국지도로	11	상봉동 500-4	상봉동 72-7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157호 (2008.5.8)	-
기정	소로	2	-	8	집산도로	41	망우동 534-65	망우동 564-1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	3~6	국지도로	27	상봉동 395-4	상봉동 101-18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	4	특수도로	53	상봉동 106-3	상봉동 91-1	보행자 전용도로	서울시고시 제312호 (2009.8.13)	-
기정	소로	3	-	3~4	특수도로	28	상봉동 395-4	상봉동 395-4	보행자 우선도로	-	-
기정	소로	3	-	3~6	국지도로	27	상봉동 395-4	상봉동 101-18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	3~4	국지도로	77	상봉동 395-4	상봉동 395-4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	6	국지도로	105	상봉동 107-24	상봉동 107-69	일반 도로	-	면목로 88길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 3–	• 도로 신설 – B=6m, L=105m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2) 주차장 (변경없음)
(3) 공공공지 (변경없음)
(4) 광장 (변경없음)
(5) 도시철도 (변경없음)
(6) 철도 (변경없음)
(7) 사회복지시설 (변경없음)
(8) 공공청사 (변경없음)
(9) 여객자동차터미널 (변경없음)
(10) 입체적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조서 (신설)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①	공공청사	공공업무시설	상봉동 107–6번지 일대	지상 1~2층	–	증) 1층:501.49㎡ 2층:510.17㎡	1층:501.49㎡ 2층:510.17㎡	–	•중랑구 가족지원센터(1,2층) – 694.77㎡ •서울시 주거안심종합센터(2층) – 316.89㎡

※ 공공기여시설 수요조사 의견 반영
– 가족지원센터 : 1인가구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운영: 중랑구 보육지원과)
– 주거안심종합센터 : 주거취약계층 대상으로 주거복지업무 및 대시민 교육·상담 지원 (운영: 서울시 주택정책실)
※ 상기 면적은 전용면적임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공청사	•신설 – 지상1층 (501.49㎡) – 지상2층 (510.17㎡)	•공공청사를 지상1층 및 지상2층에 입체적으로 결정함으로써,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타용도로 전환을 방지하고자 함

– 기반시설결정도

신 설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범위



지상1층 평면도	지상2층 평면도

※ 향후 토지평가 및 건축계획 등에 따라 건축연면적, 위치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2023년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결과(’ 23.11.21.) 및 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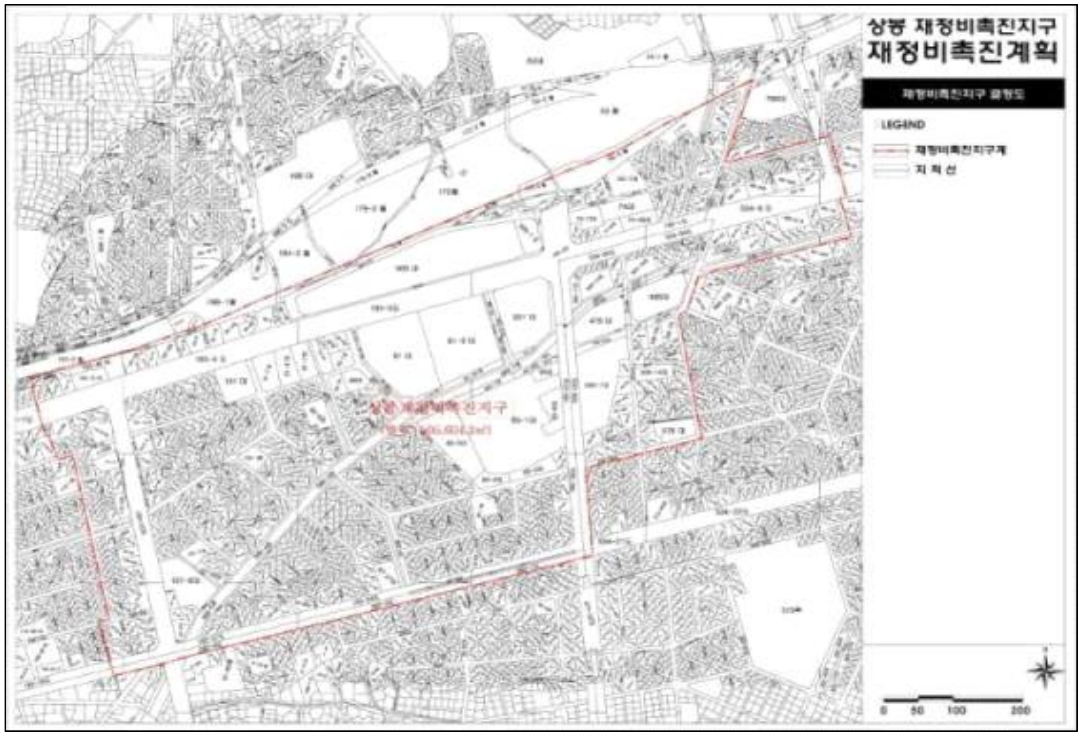
구 분	심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재정비 촉진계획	○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49층 범위에서 계획할 수 있도록 변경 ○ 상업지역에 주거 기능 도입에 따라 용적률은 600% 이하로 변경	○ 대상지는 준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장기전세주택사업으로 용적률은 600% 이하, 높이는 39층, 건축물은 3개동에서 2개동으로 변경하여 통경축(15m)이 확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하였음	-
	○ 대상지 북측 도로(면목로 88길)는 일방통행에서 양방통행으로 변경 검토	○ 북측도로(면목로 88길)는 양방통행으로 변경 - 북측 도로변 건축한계선에 의하여 확보되는 전면공지 3m는 보도로 이용하도록 계획 (*상봉재정비촉진계획상 교통영향평가등에 따라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이 변경 될 경우 변경 내용을 반영할 수 있음)	-
	○ 주거 도입에 따라 교육청과 협의(학생 수용 등) 하시기 바람	○ 상봉특별계획구역7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학생수용 가능한 것으로 협의 완료	-
건축위원회 논의 사항	○ 공공업무시설은 층간 이동이 용이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을 고려하여 엘리베이터 설치를 검토	○ 공공업무시설은 층간 이동이 용이하도록 엘리베이터를 설치 하겠음	-
	○ 전면공지는 외부 공간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인접 주민 등이 이용 시 보행에 제한을 받지않도록 계획	○ 전면공지는 외부 공간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등 이용시 보행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설치 하겠음	-
	○ 공공업무시설, 판매시설 등 용도별로 주차구역을 설정한 지하1층 주차장은 차량 동선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위치로 조정 검토	○ 주차장은 용도별로 구분하여 불필요한 동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
	○ 최고 층수 변경에 따라 건축물로 인한 차폐감을 완화(통경축 확보)할 수 있는 건축계획을 수립	○ 건축물의 높이는 39층 이하로 하고 기존 3개 동을 2개 동으로 변경하여 통경축(15m)이 확보 되도록 하겠음	-
	○ 어린이놀이터는 각 동에서 접근성과 이용성을 고려하여 계획	○ 어린이 놀이터는 각 동에서 직접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겠음	-
	○ 주출입에 대한 표현을 명확히 할 것	○ 주출입구 표현을 명확히 하겠음	-

마.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사항은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도서」 에 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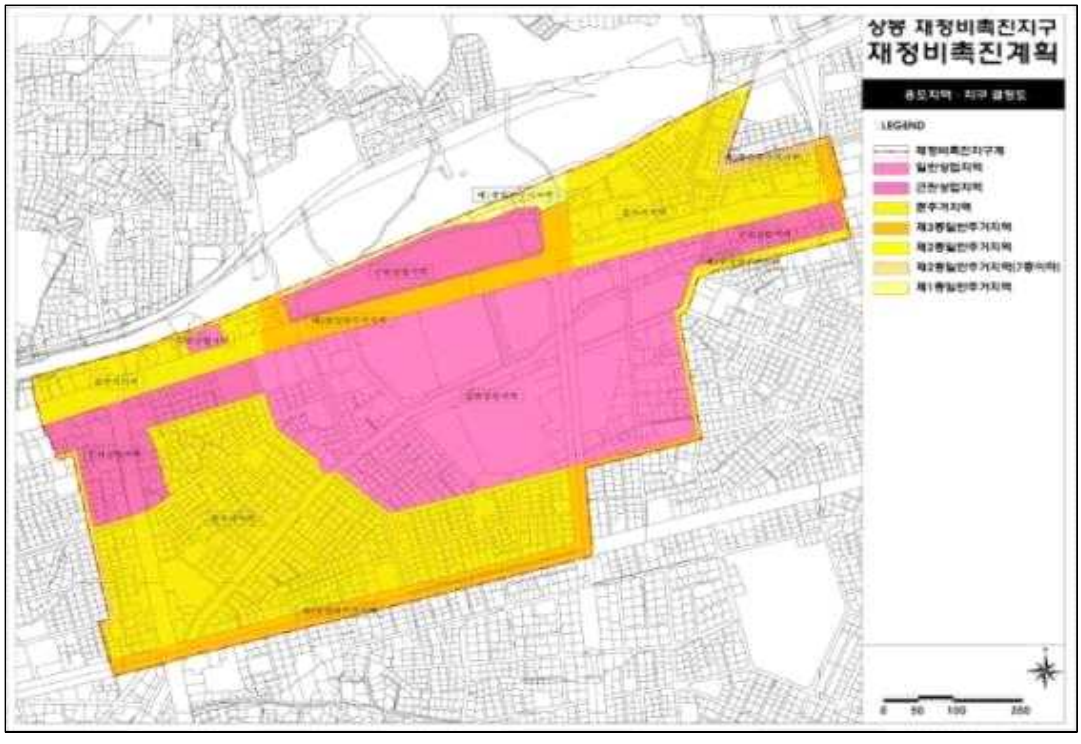
바. 관계도면 :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02-2133-7224) 및 중랑구청 도시계획과(☎02-2094-219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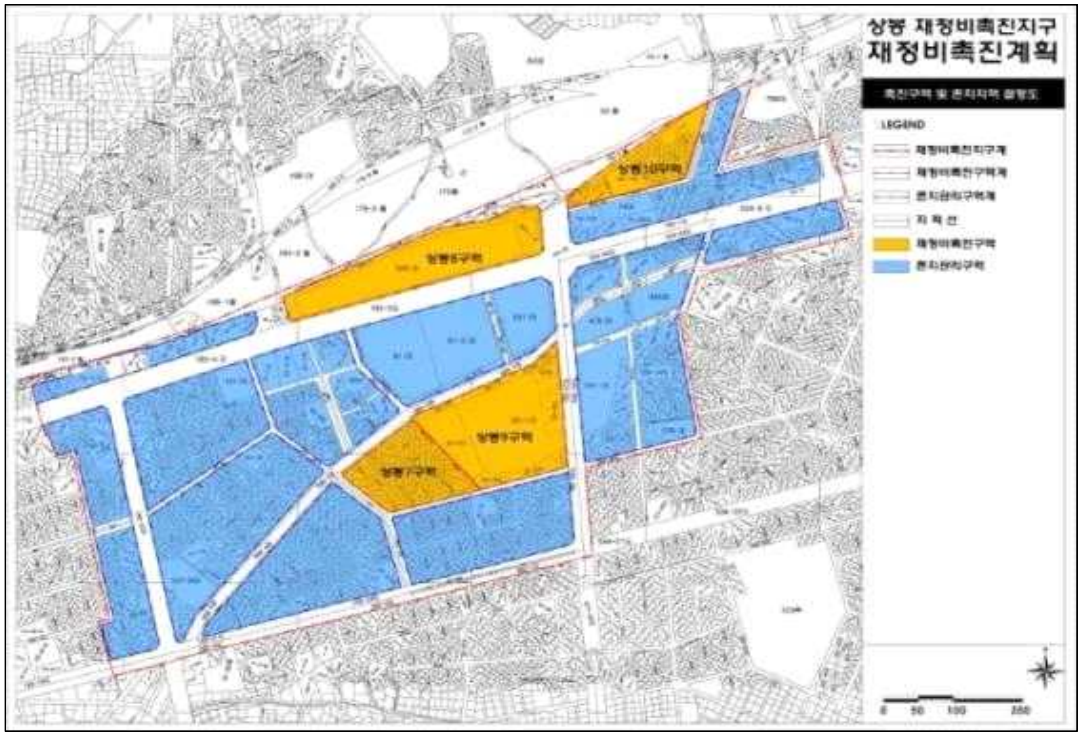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 (변경없음)



○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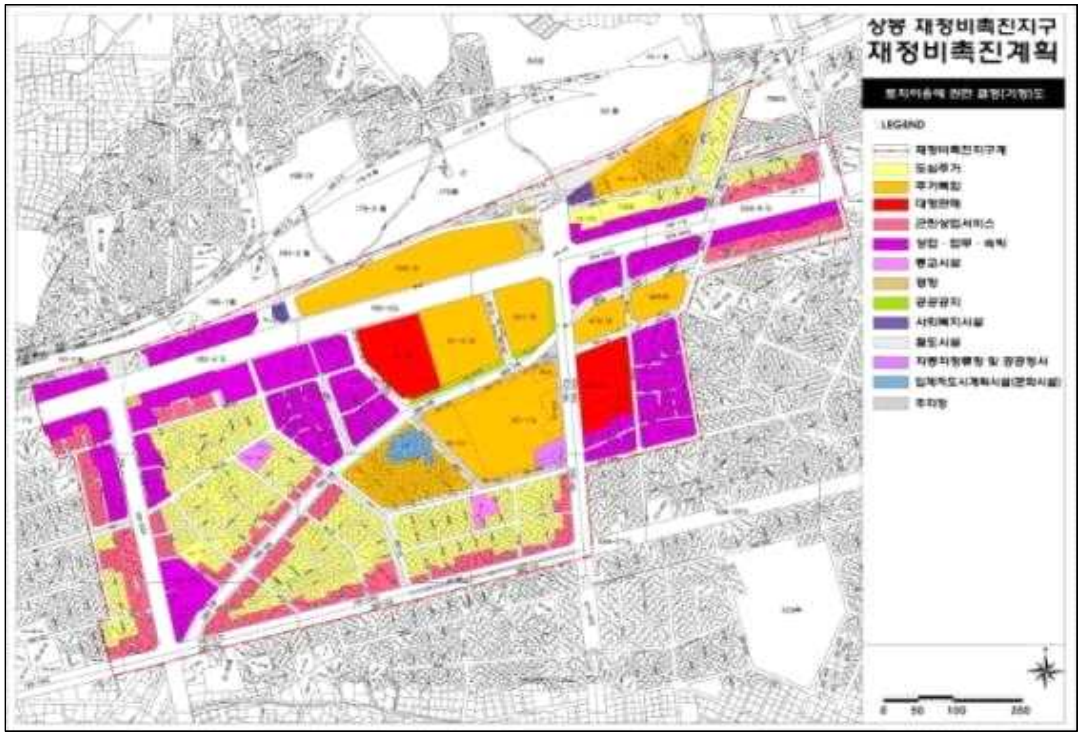


○ 촉진구역 및 존치지역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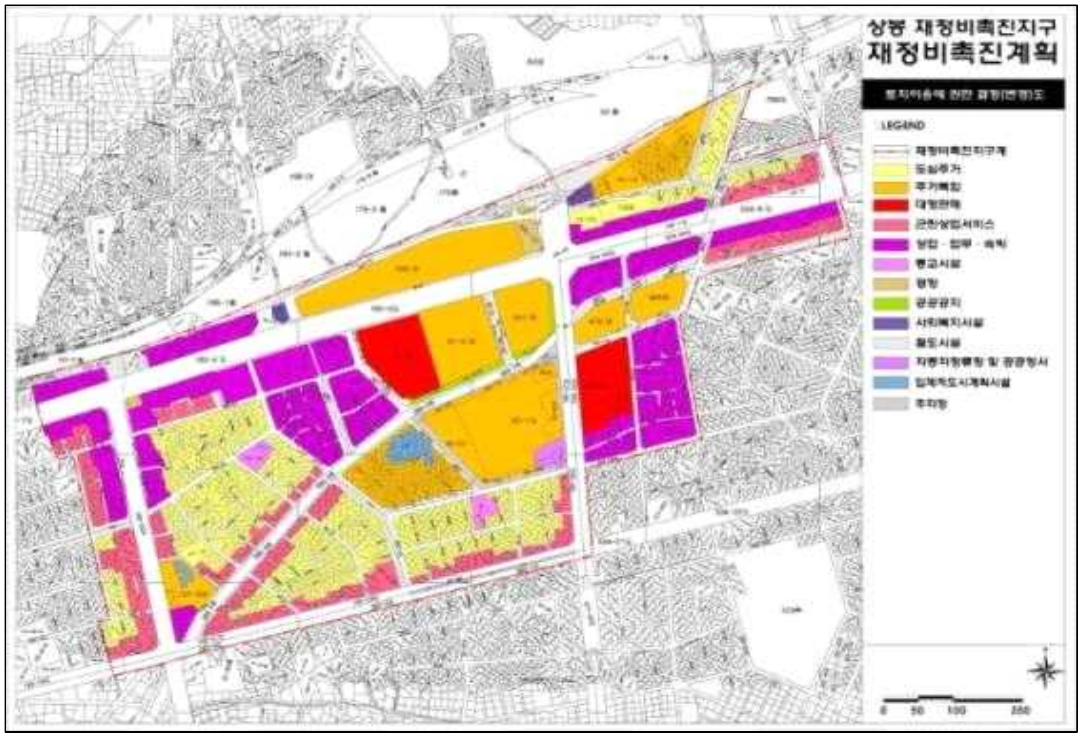


– 이하 여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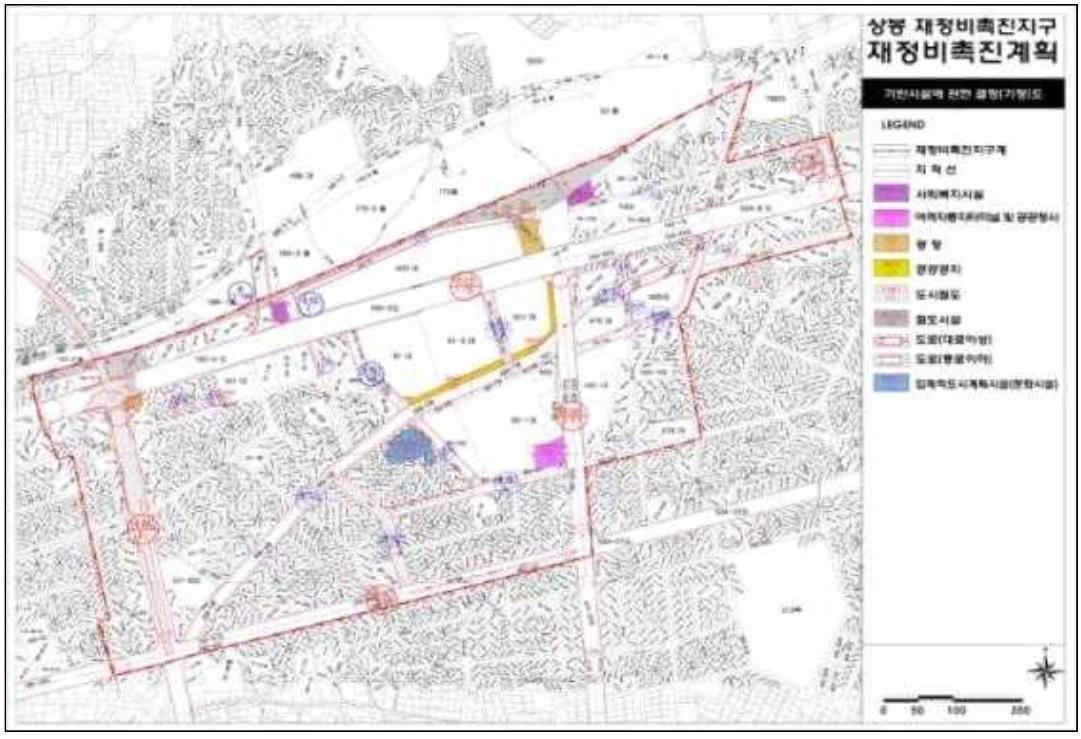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 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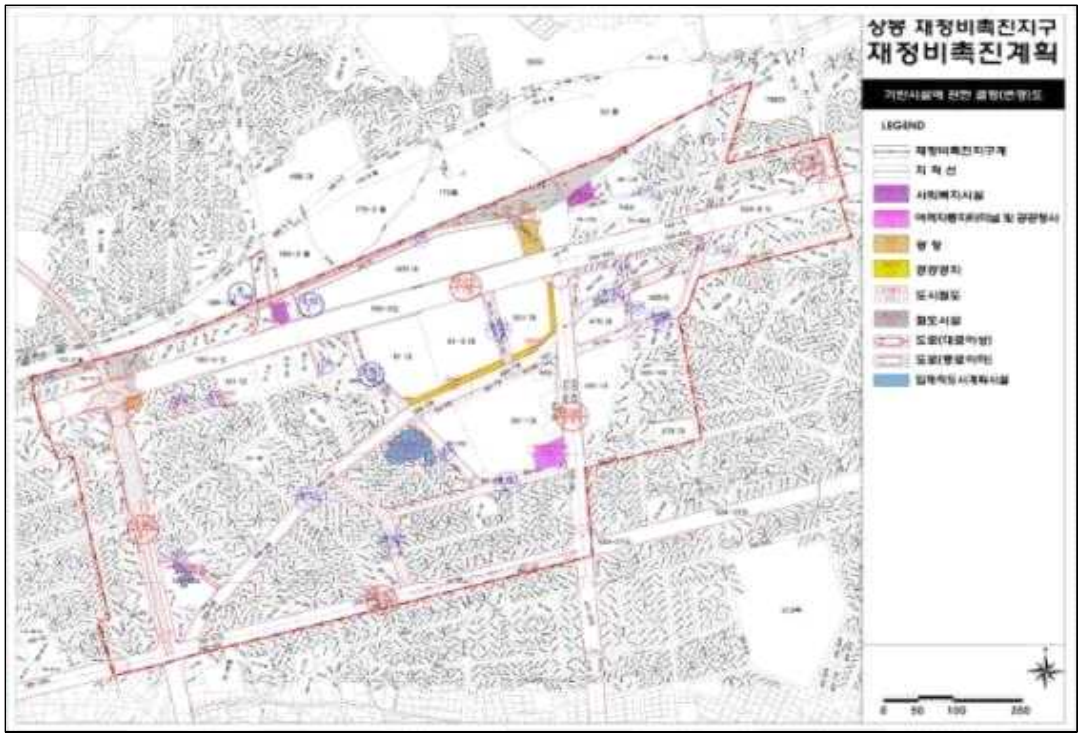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 결정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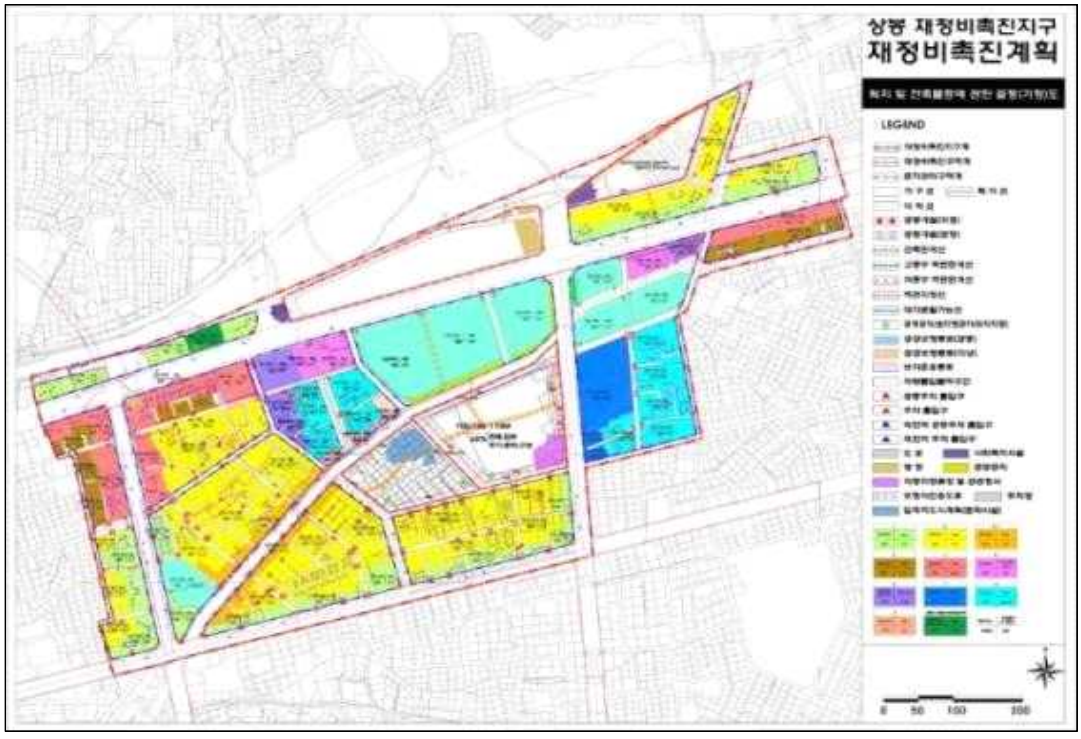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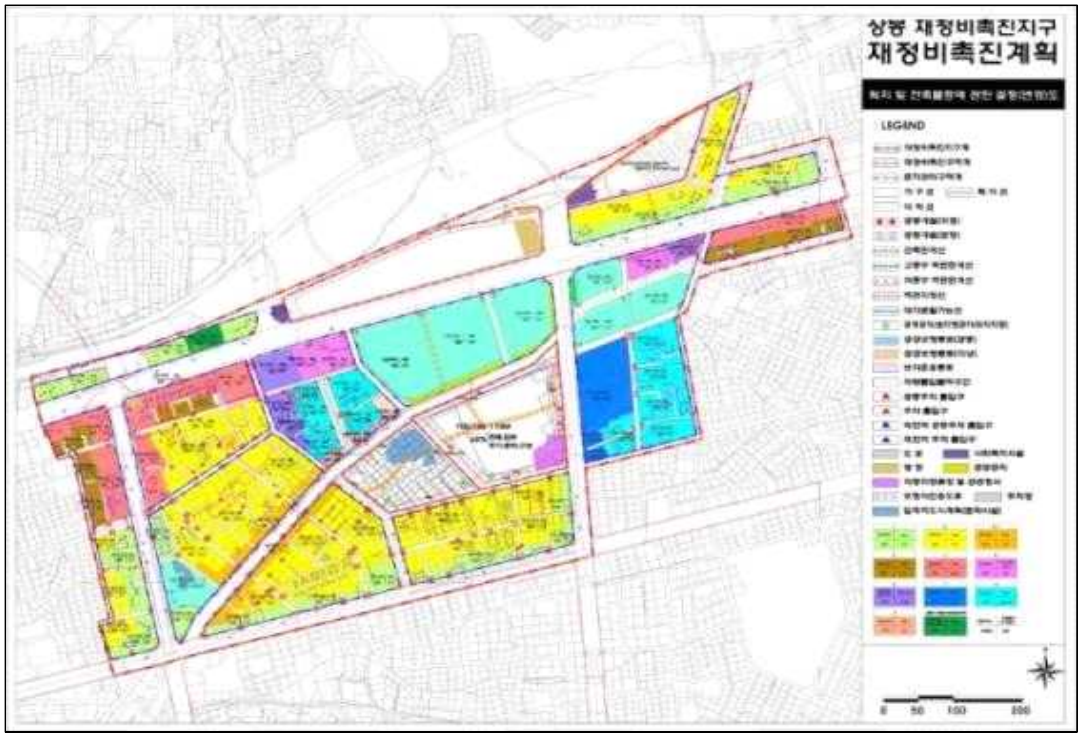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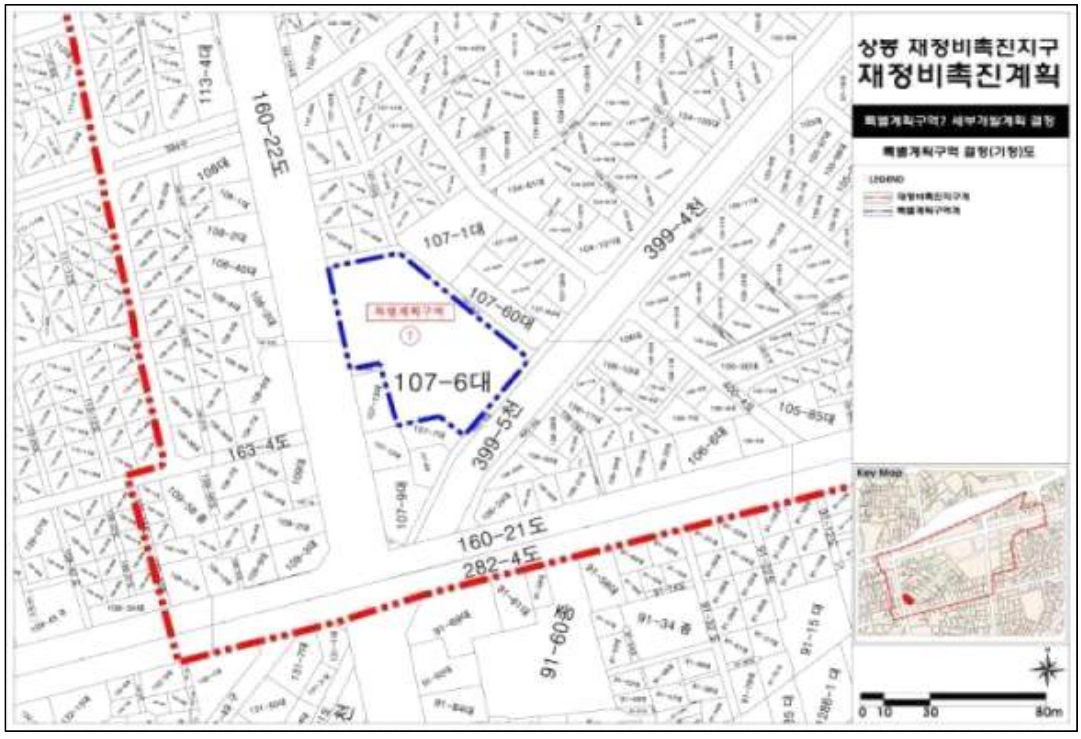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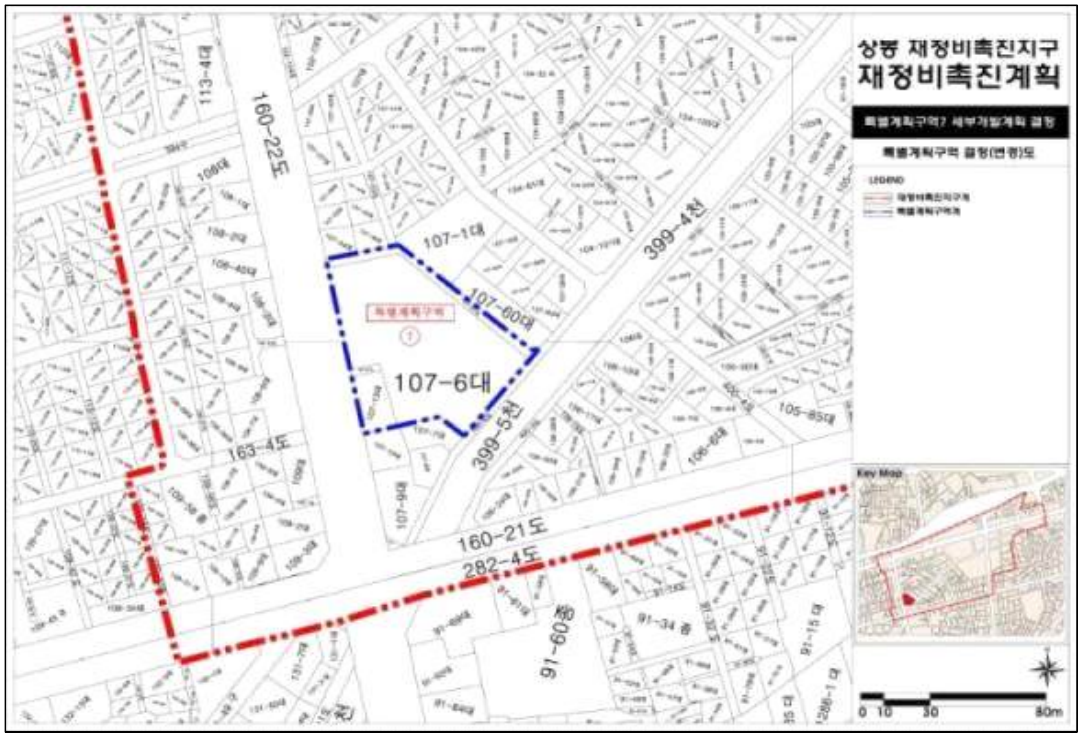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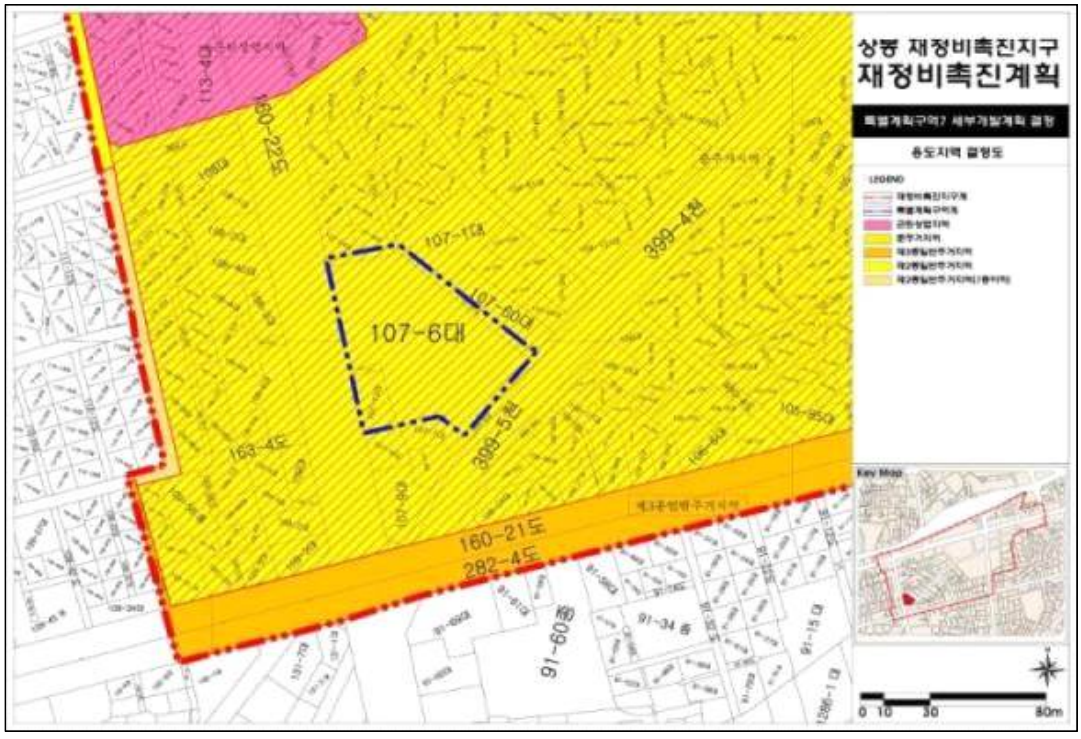
○ 상봉 특별계획구역7 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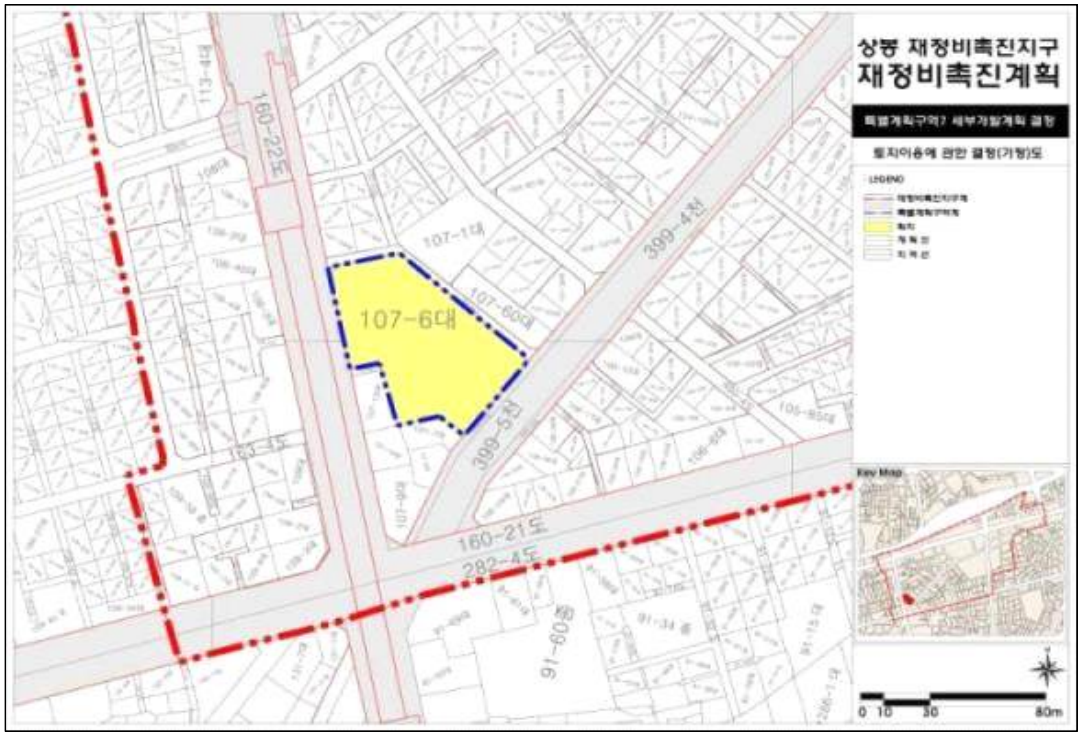
○ 상봉 특별계획구역7 결정도 (변경)



○ 상봉 특별계획구역7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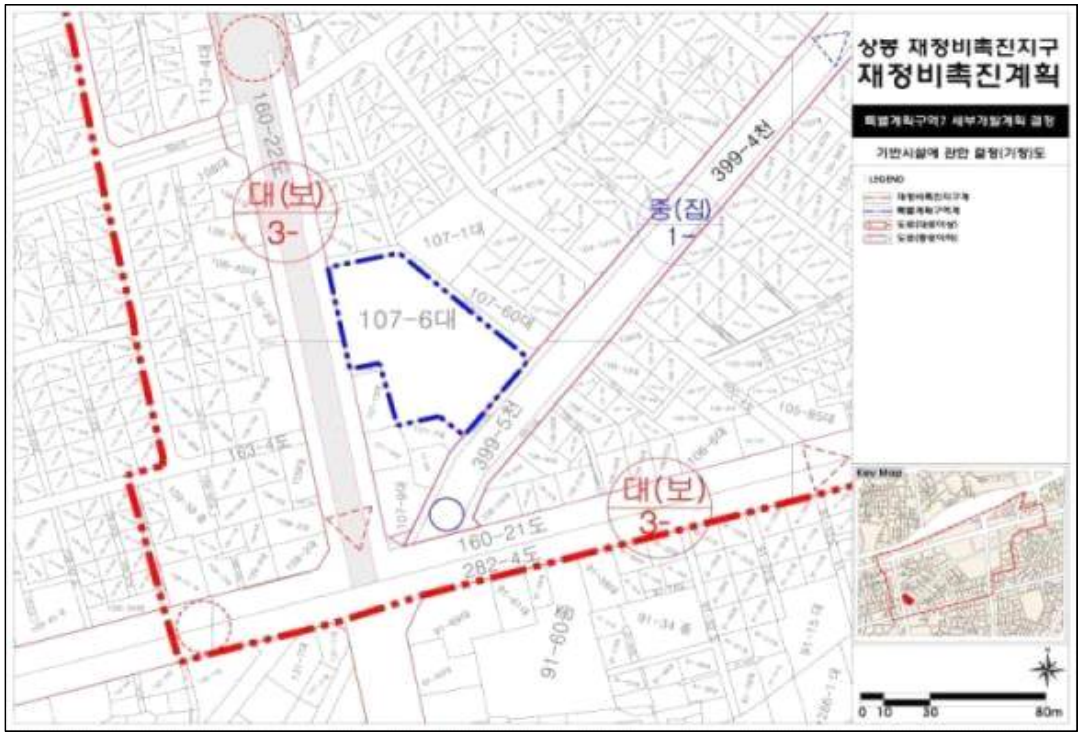
○ 상봉 특별계획구역7 토지이용계획 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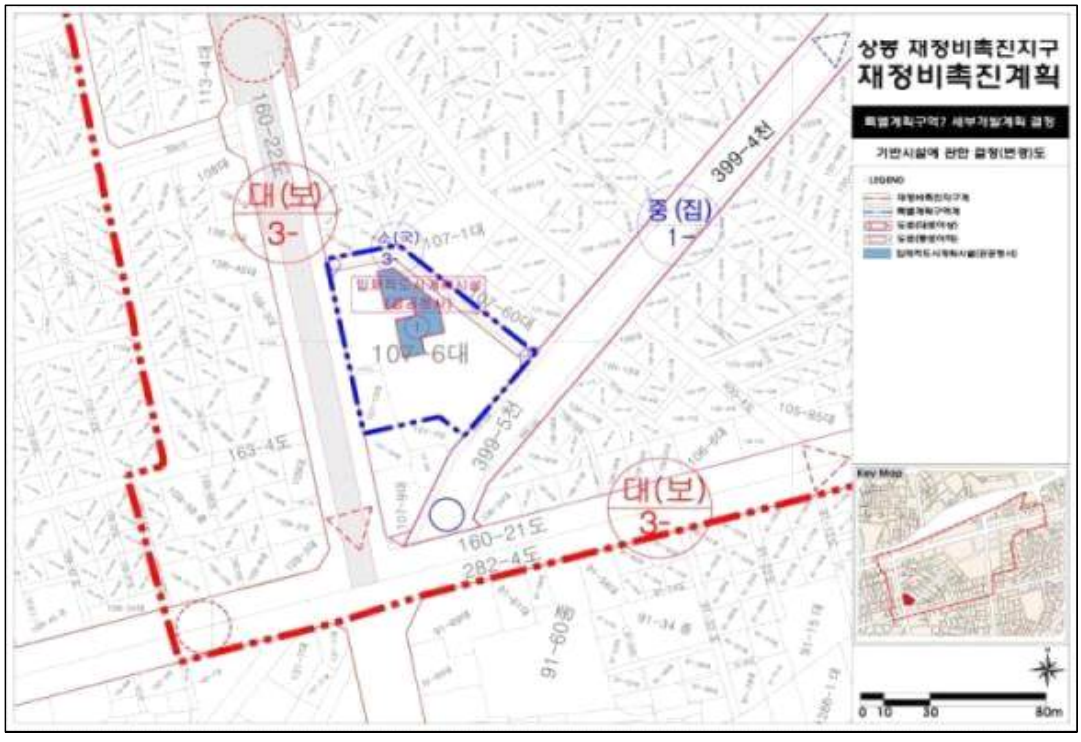
○ 상봉 특별계획구역7 토지이용계획 결정도 (변경)



○ 상봉 특별계획구역7 기반시설 결정도 (기정)



○ 상봉 특별계획구역7 기반시설 결정도 (변경)



○ 상봉 특별계획구역7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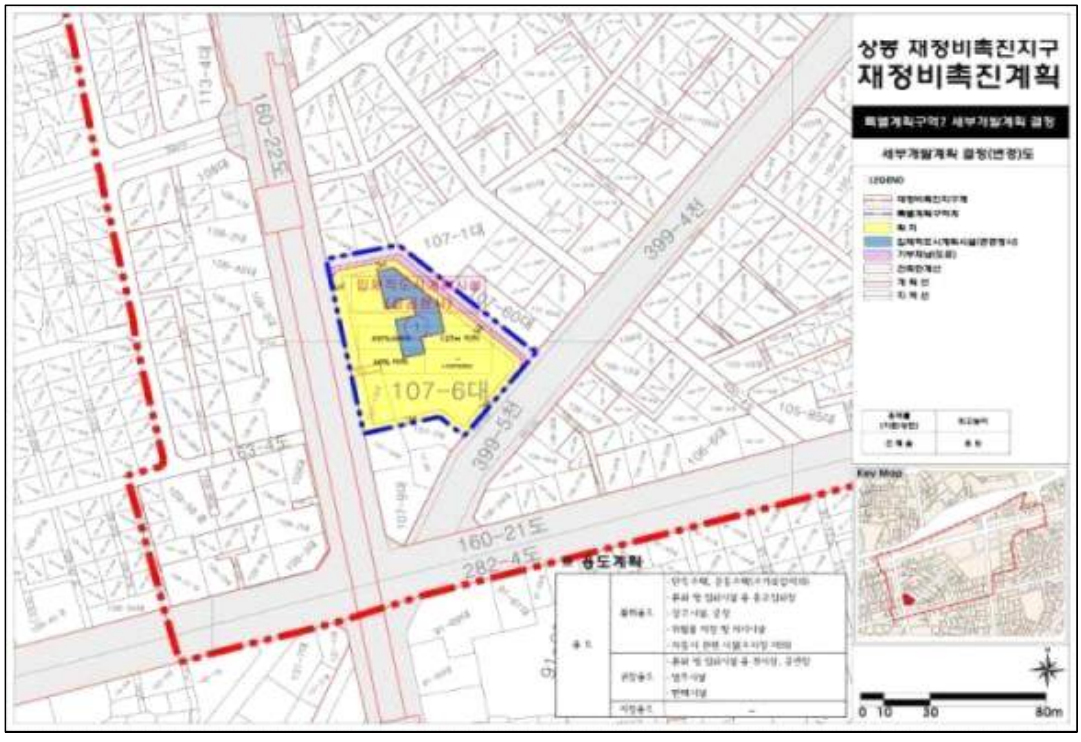
○ 상봉 특별계획구역7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변경)



○ 상봉 특별계획구역7 정비계획도 (기정)



○ 상봉 특별계획구역7 정비계획도 (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91호

화곡1동 354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1동 354번지 일대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가. 관리지역의 명칭 : 화곡1동 354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나.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구 분	위 치	관리계획 요건	노후·불량건축물	비고
기준	강서구 화곡1동 354번지 일대	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 이하일 것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현황		85,462.6㎡	전체 : 296동 노후·불량 : 218동(73.6%)	

다. 정비방향 : 저층 노후주거지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계획과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배치 및 보행환경 개선

2.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가. 관리지역의 지정
○ 관리지역 지정 조서

구분	관리지역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화곡1동 354번지 일대 모아타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강서구 화곡1동 354번지 일대	-	증) 85,462.6	85,462.6	

나. 토지이용계획(안)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85,462.6	100.0	
사업가능구역	공동주택용지	소계		64,144.3	75.1	
		A2-1	사업가능구역2-1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1,315.4	13.2	
		A2-2	사업가능구역2-2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0,855.5	12.7	
		A2-3	사업가능구역2-3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6,175.4	18.9	
		A2-4	사업가능구역2-4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0,324.7	12.1	
		A2-5	사업가능구역2-5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5,473.3	18.1	
정비기반시설		소계		9,600.4	11.2	
		-	도로	2,381.9	2.8	
		-	보행자전용도로	1,286.5	1.5	
		B2	공원	1,560.0	1.8	
		C2-1	공영주차장	3,172.0	3.7	
		C2-2	공영주차장+공공청사	1,200.0	1.4	
사업가능구역 외		소계		11,717.9	13.7	
		대지		8,877.5	10.4	
		도로		2,840.4	3.3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다. 정비기반시설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안)

■ 도로 계획(안)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	-	-	8	-	-	-	-	-	-	-	
변경	중로	3	4	12	국지	288	화곡동 668-14	화곡동 668-6	일반	-	-	
기정	-	-	-	8	-	-	-	-	-	-	-	
변경	중로	3	5	12 (4)	국지	355	화곡동 668-7	화곡동 668-5	일반	-	-	
기정	-	-	-	6	-	-	-	-	-	-	-	
변경	소로	3	2	6	특수	112	화곡동 668-6	화곡동 668-12	보행자전용	-	-	
기정	-	-	-	4	-	-	-	-	-	-	-	
변경	소로	3	3	4	특수	141	화곡동 354-89	화곡동 354-140	보행자전용	-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 )' 는 모아타운 내 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 3-4	기존 도로 확폭 및 도로번호·시종점 부여	• 대상지 일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지역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인정 • 도로선형 경계, 도로번호·시종점 부여
-	중로 3-5	기존 도로 확폭 및 도로번호·시종점 부여	
-	소로 3-2	도로번호·시종점 부여 및 보행자전용도로 설정	
-	소로 3-3	도로번호·시종점 부여 및 보행자전용도로 설정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 공원 계획(안)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원	어린이 공원	화곡동 354-11 일대	-	증) 1,560.0	1,560.0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①	공원	공원 신설 (면적 : 1,560㎡, 증 1,560㎡)	•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고려한 기존 비도시계획시설 어린이 공원의 위치 이동 및 면적 확대 •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성 및 기능 강화

■ 주차장 계획(안)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주차장	공영 주차장	화곡동 362-83 일대	-	증) 3,172.0	3,172.0	-	-
신설	②	주차장	공영 주차장	화곡동 354-133 일대	-	증) 1,200.0	1,200.0	-	중복결정 · 지하:주차장 · 지상:공공청사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 공공청사 계획(안)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공청사	공공청사	화곡동 354-12 일대	-	증)1,200.0	1,200.0	-	중복결정 · 지하:주차장 · 지상:공공청사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 공공청사 건축물의 범위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수)	비고
50% 이하	250% 이하	7층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공동이용시설 계획(안)

도면표시번호	구분	설치기준	비고
A2-1	사업가능구역2-1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세대당 2.5㎡ × 1.25 이상 설치	구역 내
A2-2	사업가능구역2-2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구역 내
A2-3	사업가능구역2-3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구역 내
A2-4	사업가능구역2-4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구역 내
A2-5	사업가능구역2-5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구역 내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각 사업가능구역별 세부계획 수립 및 관리계획 변경 시 관련부서 협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결정

라. 교통계획(안)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차량진출입구간	전구역	• 전구역 차량진출입 허용	
보행자전용도로	가로공원로80길, 강서로17라길	• 기존 도로를 보행자전용도로로 지정하여 보행 안전성 및 편의성 확보	
공공보행통로	월정로30나길	• 도로 폐도 후 공공보행통로로 지정하여 보행 편의성 확보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안)

○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 5개 구역 추진 현황

도면표시번호	사업구역	위치	면적(㎡)			사업계획					비고
			계	공동주택용지	정비기반시설	토지등소유자	기존호수	시행자	추진단계	최초결정일	
합 계			73,744.7	64,144.3	9,600.4	-	1,681	-	-	-	
A2-1	사업가능구역2-1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화곡동 362-59 일대	13,055.4	11,315.4	1,740.0	-	278	-	-	-	
A2-2	사업가능구역2-2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화곡동 362-29 일대	12,602.5	10,855.5	1,747.0	-	286	-	-	-	
A2-3	사업가능구역2-3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화곡동 366-38 일대	19,458.3	16,175.4	3,282.9	-	451	-	-	-	
A2-4	사업가능구역2-4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화곡동 354-79 일대	11,016.0	10,324.7	691.3	-	319	-	-	-	
A2-5	사업가능구역2-5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화곡동 354-2 일대	17,612.5	15,473.3	2,139.2	-	347	-	-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바. 모아주택 통합계획(안)

구분		위치	면적	특례사항	특례적용사유	비고
A2-1	사업가능구역2-1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화곡동 362-59 일대	11,315.4㎡	- 건축법 제61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 건축법 제53조 지하층,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통합설치	- 경관 특화를 위한 창의적인 배치 건축물 계획 - 구역별 세대수 고려 차량진출입구 통합 이용 - 지하주차장 통합 조성	
A2-2	사업가능구역2-2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화곡동 362-29 일대	10,855.5㎡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사. 건폐율 · 용적률 등 건축물 밀도 계획(안)

구분	내용		비고
사업가능구역 내	건폐율	60% 이하	B2, C2-1
		50% 이하	A2-1, A2-2, A2-3, A2-4, A2-5, C2-2
	용적률[1]	기준(상향)[2] 250% 이하 법적상한 300% 이하	A2-1, A2-2, A2-3, A2-4, A2-5
		기준 250% 이하	C2-2(공공청사+공영주차장)
	높이[3]	「공항시설법」에 따른 고도제한 높이 이하	전 구역
사업가능구역 외	건폐율	6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용적률	20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높이	「공항시설법」에 따른 고도제한 높이 이하	전 구역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1) 법 제48조 및 제43조의4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시에는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용적률을 정할 수 있음
2) '기준용적률 상향' 은 법 제43조의4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된 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3)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 구역(수평표면구역)에 적용되는 높이 이하

아. 건축물의 배치 · 형태 · 용도 ·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안)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관리지역 전체	- 건축한계선 3m : 가로공원로76길, 가로공원로84길, 가로공원로76가길, 강서로17다길, 강서로17길 - 건축한계선 2m 가로공원로80길, 강서로17라길	- 가로 · 보행환경 개선 및 보행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계획
공공보행통로	월정로30나길, A3-3	- 공공보행통로 6m 지정	- 도로 폐도 부분을 공공보행통로로 지정하여 보행 편의성 확보 - 보행자 전용도로와 연결하는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조성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자.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계획(안)

구분		위치	기존세대	전체세대	임대주택	조합/일반분양	비고
도면표시	사업구역						
합 계			1,681	2,410 (증 729)	647	1,763	26.8%
A2-1	사업가능구역2-1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화곡동 362-59 일대	278	420 (증 142)	114	306	27.1%
A2-2	사업가능구역2-2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화곡동 362-29 일대	286	407 (증 121)	110	297	27.0%
A2-3	사업가능구역2-3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화곡동 366-38 일대	451	631 (증 180)	178	456	28.2%
A2-4	사업가능구역2-4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화곡동 354-79 일대	319	433 (증 114)	113	320	26.1%
A2-5	사업가능구역2-5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화곡동 354-2 일대	347	516 (증 169)	132	384	25.6%

※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임대주택 인수예정자와 협상 예정
※ 상기의 세대수, 임대주택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준공인가 등 사업 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차. 용도지역 ·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안)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85,462.6㎡	-	85,462.6㎡	100.0	-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증) 1,560.0㎡	1,560.0㎡	1.8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85,462.6㎡	감) 66,904.1㎡	18,558.5㎡	21.7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65,344.1㎡	65,344.1㎡	76.5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3. 관련도면

○ 붙임 참조 (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4. 관계도서

○ 서울특별시 전략주택공급과(☎ 02-2133-8235) 및 강서구 원도심활성화추진단(☎ 02-2600-6845)에 비치 ·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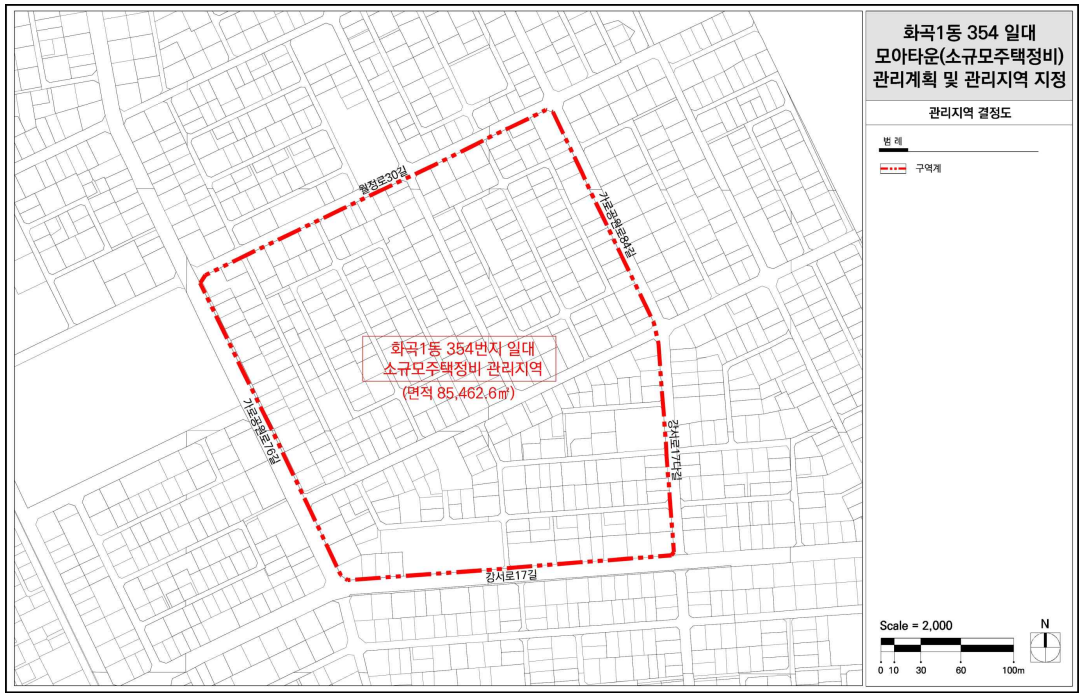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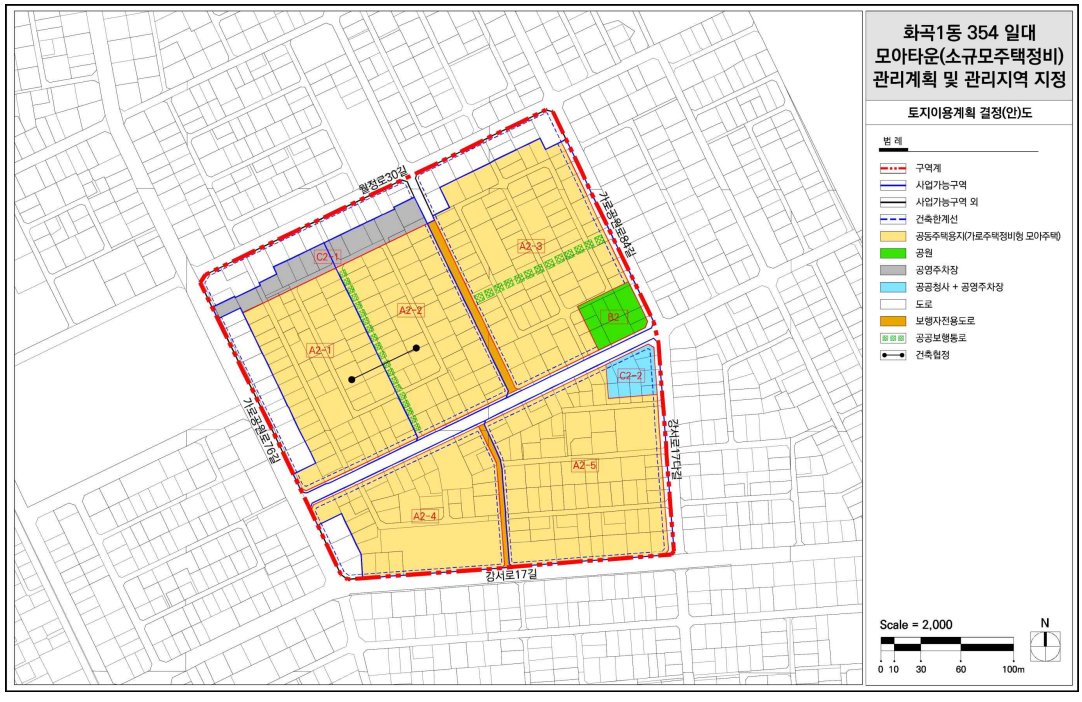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관리계획 및 관리지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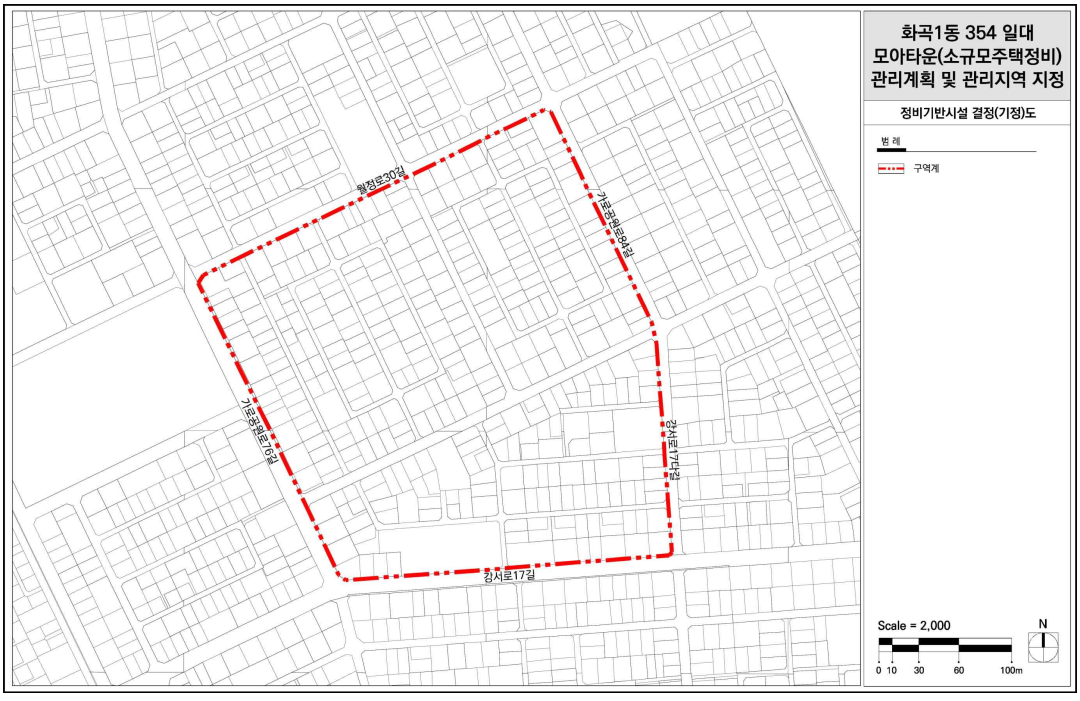
■ 관리지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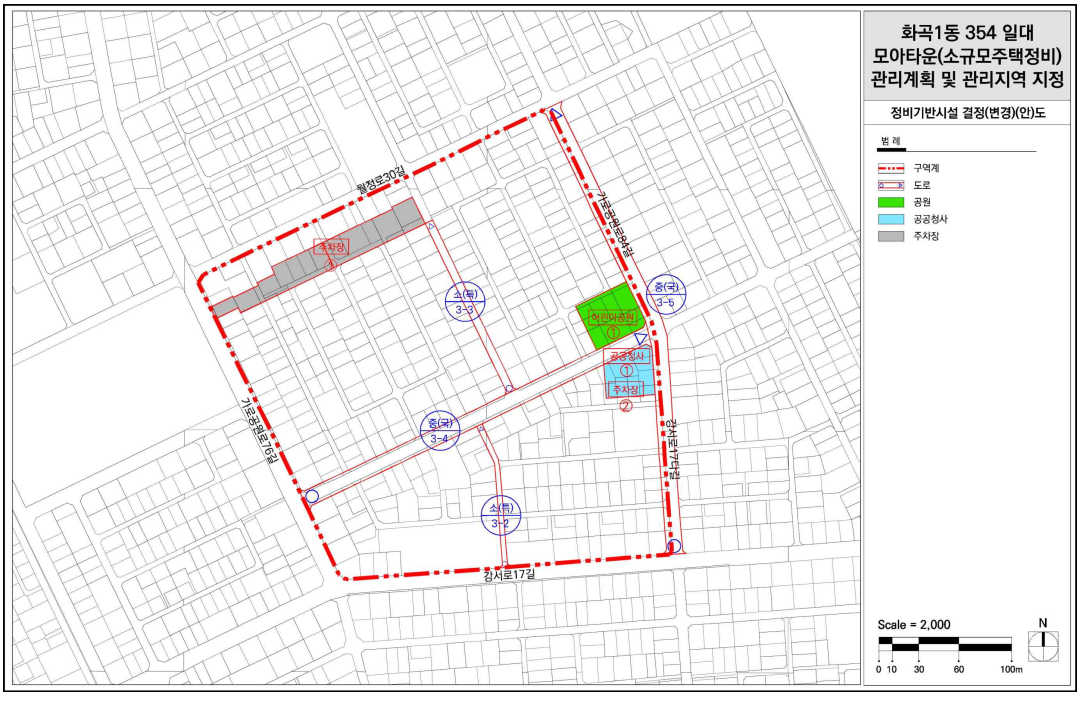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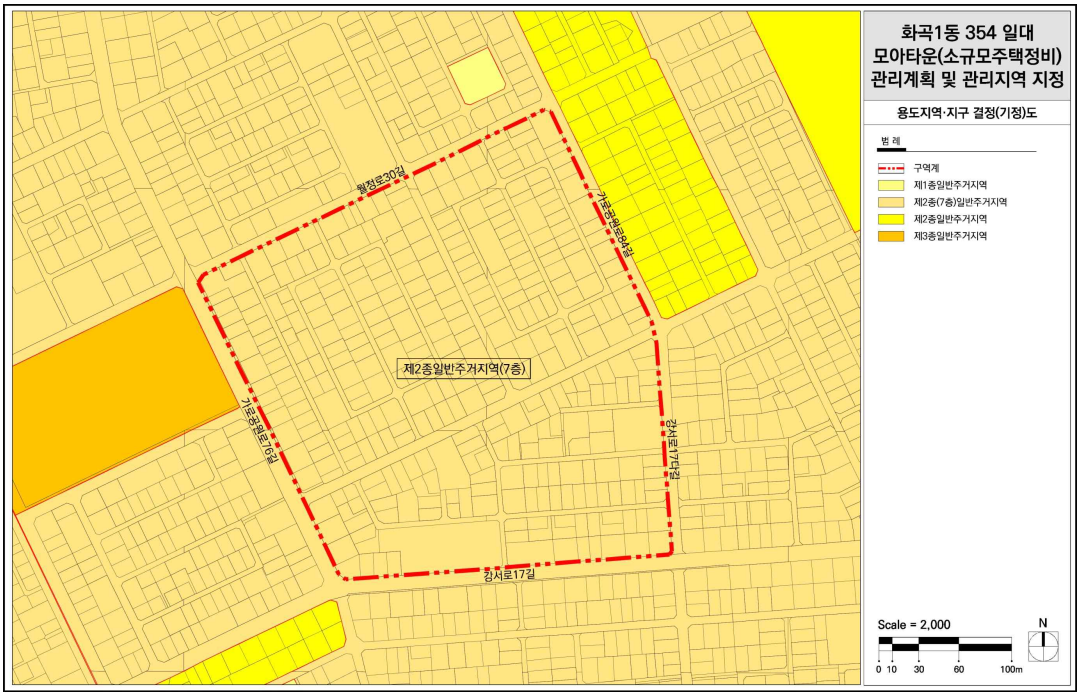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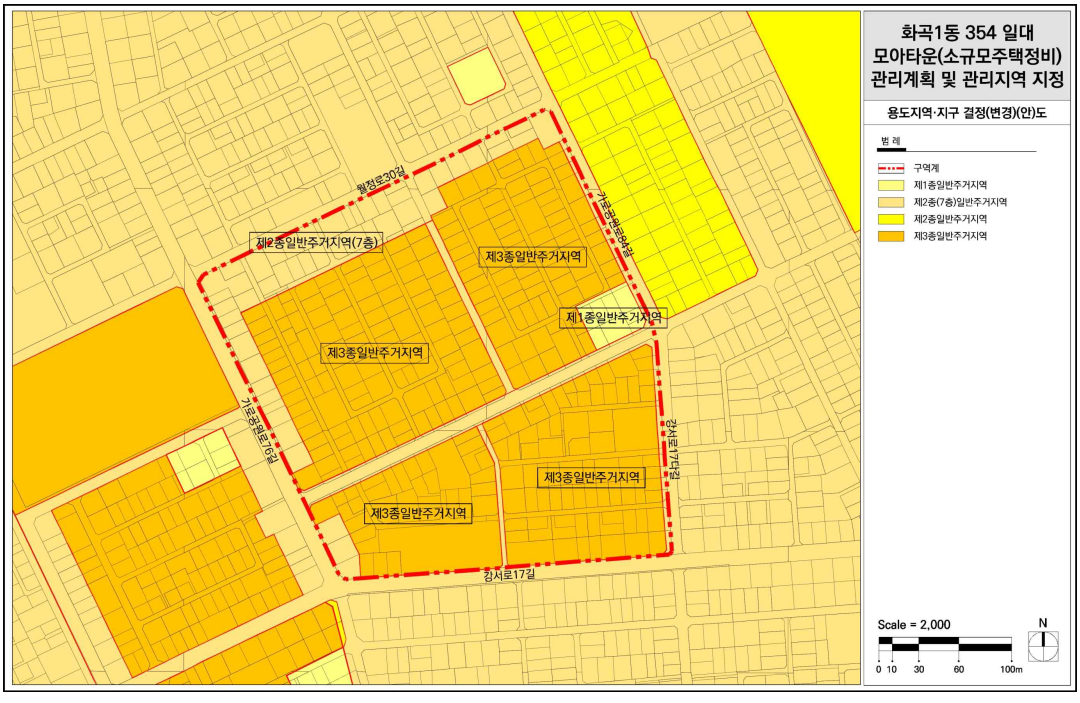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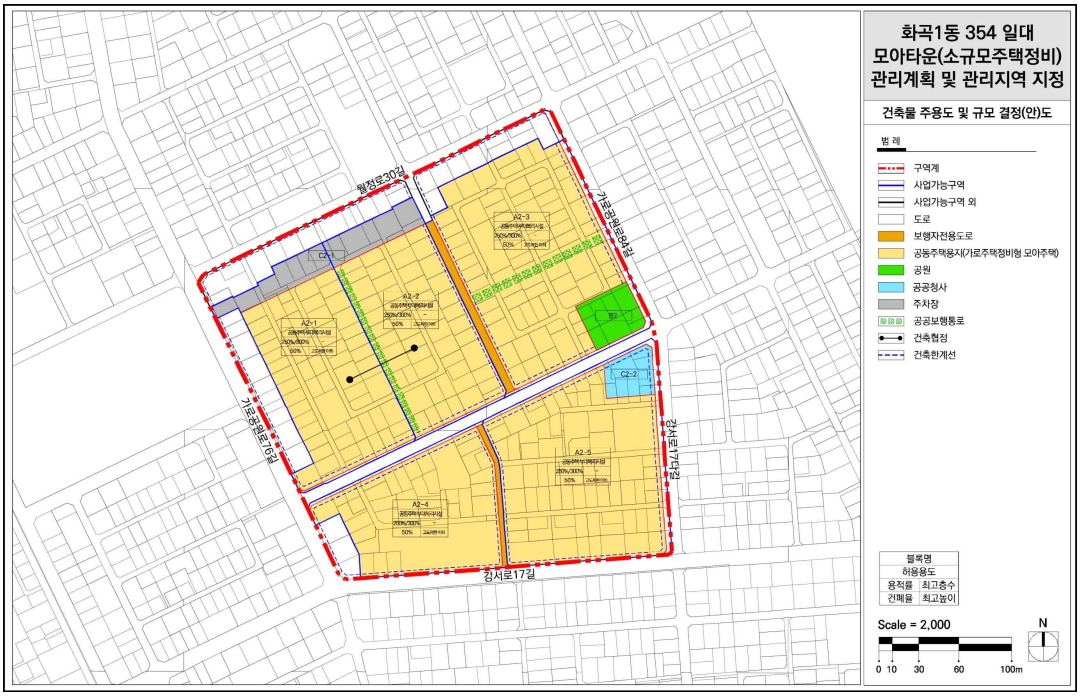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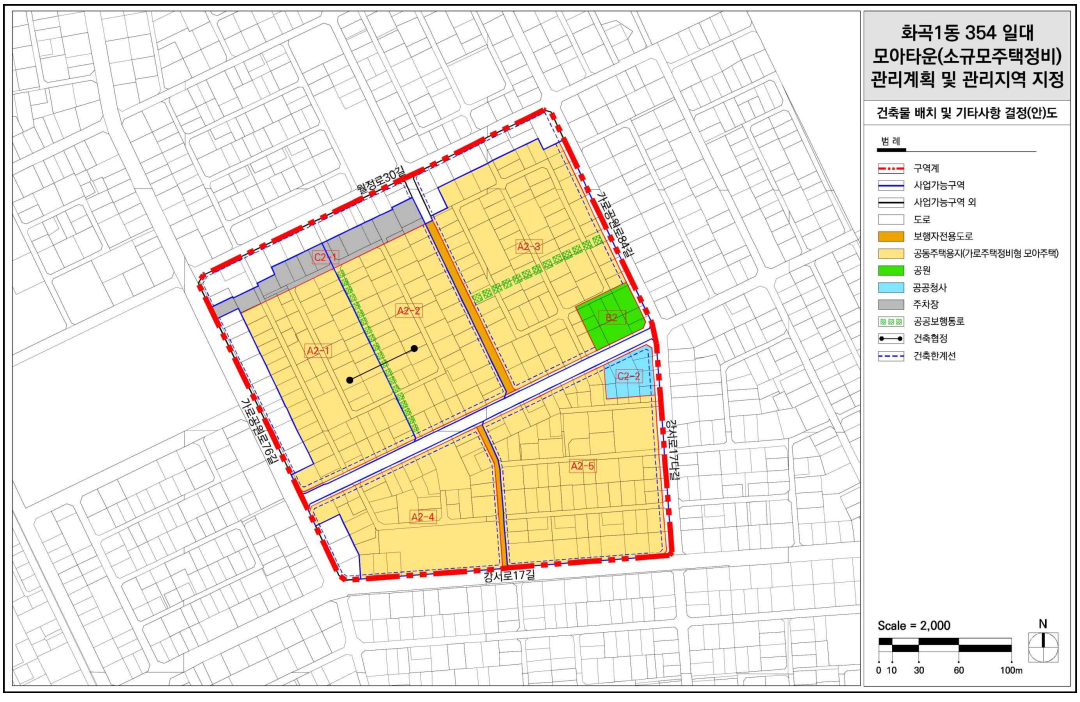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건축물의 주용도 및 규모에 관한 계획(안)



■ 건축물의 배치 및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안)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92호

화곡1동 359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1동 359번지 일대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가. 관리지역의 명칭 : 화곡1동 359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나.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구 분	위 치	관리계획 요건	노후·불량건축물	비고
기준	강서구 화곡1동 359번지 일대	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 이하일 것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현황		58,477.4㎡	전체 : 208동 노후·불량 : 135동(64.9%)	

다. 정비방향 : 저층 노후주거지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계획과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배치 및 보행환경 개선

2.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가. 관리지역의 지정
○ 관리지역 지정 조서

구분	관리지역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화곡1동 359번지 일대 모아타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강서구 화곡1동 359번지 일대	-	증) 58,477.4	58,477.4	

나. 토지이용계획(안)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58,477.4	100.0	
사업가능구역	공동주택용지	소계		41,018.9	70.1	
		A3-1	사업가능구역3-1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8,331.8	31.3	
		A3-2	사업가능구역3-2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9,661.8	16.5	
		A3-3	사업가능구역3-3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3,025.3	22.3	
정비기반시설		소계		5,822.4	10.0	
		-	도로	1,322.4	2.2	
		B3-1	공원	1,500.0	2.6	
		B3-2	공원	1,500.0	2.6	
		B3-3	공원	1,500.0	2.6	
사업가능구역 외		소계		11,636.1	19.9	
		대지		9,432.0	16.1	
		도로		2,204.1	3.8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다. 정비기반시설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안)

■ 도로 계획(안)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	-	-	12	-	-	-	-	-	-	-	
변경	중로	3	6	12	국지	177	화곡동 616-9	화곡동 662-17	일반	-	-	
기정	-	-	-	6	-	-	-	-	-	-	-	
변경	중로	3	7	12 (4~6)	국지	234	화곡동 616-3	화곡동 355-48	일반	-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 )' 는 모아타운 내 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 3-6	도로번호·시종점 부여	• 대상지 일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지역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인정 • 도로선형 경계, 도로번호·시종점 부여
-	중로 3-7	기존 도로 확폭 및 도로번호·시종점 부여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 공원 계획(안)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공원	어린이공원	화곡동 355-12	1,615.0	감) 1,615.0	-	-	필마 어린이공원
신설	①	공원	어린이공원	화곡동 359-6	-	증) 1,500.0	1,500.0	-	
신설	②	공원	어린이공원	화곡동 355-9	-	증) 1,500.0	1,500.0	-	
신설	③	공원	어린이공원	화곡동 355-8	-	증) 1,500.0	1,500.0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폐지	-	공원	공원 폐지 (면적 : 1,615㎡→0㎡, 감 1,615㎡)	• 합리적인 토지이용 고려 및 노후 어린이공원 폐지
신설	①	공원	공원 신설 (면적 : 1,500㎡, 증 1,500㎡)	•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고려한 기존 어린이공원의 위치 이동 및 면적 확대 •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성 및 기능 강화
신설	②	공원	공원 신설 (면적 : 1,500㎡, 증 1,500㎡)	
신설	③	공원	공원 신설 (면적 : 1,500㎡, 증 1,500㎡)	

■ 공동이용시설 계획(안)

도면표시번호	구분	설치기준	비고
A3-1	사업가능구역3-1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세대당 2.5㎡ × 1.25 이상 설치	구역 내
A3-2	사업가능구역3-2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구역 내
A3-3	사업가능구역3-3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구역 내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각 사업가능구역별 세부계획 수립 및 관리계획 변경 시 관련부서 협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결정

라. 교통계획(안)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차량진출입불허구간	곰달래로	• 곰달래로변 공동주택용지에서 차량진출입 불허	
차량진출입구간	불허구간 제외 전구역	• 진출입불허구간 외 차량진출입 허용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안)

○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 3개 구역 추진 현황

도면표시 번호	사업구역	위치	면적(㎡)			사업계획					비고
			계	공동주택 용지	정비 기반시설	토지등 소유자	기존 호수	시행자	추진 단계	최초 결정일	
합 계			46,841.4	41,018.9	5,822.4	-	850	-	-	-	
A3-1	사업가능구역3-1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화곡동 359-2 일대	19,831.8	18,331.8	1,500.0	-	360	-	-	-	
A3-2	사업가능구역3-2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화곡동 359-94 일대	11,486.7	9,661.8	1,824.9	-	136	-	-	-	
A3-3	사업가능구역3-3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화곡동 359-1 일대	15,522.8	13,025.3	2,497.5	-	354	-	-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바. 모아주택 통합계획(안)

구분		위치	면적	특례사항	특례적용사유	비고
A3-2	사업가능구역3-2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화곡동 359-94 일대	9,661.8㎡	- 건축법 제61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 건축법 제53조 지하층,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통합설치	- 경관 특화를 위한 창의적인 배치 건축물 계획 - 구역별 세대수 고려 차량진출입구 통합 이용 - 지하주차장 통합 조성	
A3-3	사업가능구역3-3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화곡동 359-1 일대	13,025.3㎡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사. 건폐율 · 용적률 등 건축물 밀도 계획(안)

구분	내용		비고
사업가능구역 내	건폐율	60% 이하	B3-1, B3-2, B3-3
		50% 이하	A3-1, A3-2, A3-3
	용적률[1]	기준(상향)[2] 250% 이하 법적상한 300% 이하	A3-1, A3-2, A3-3
	높이[3]	「공항시설법」에 따른 고도제한 높이 이하	전 구역
사업가능구역 외	건폐율	6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0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제2종일반주거지역
	높이	「공항시설법」에 따른 고도제한 높이 이하	전 구역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1) 법 제48조 및 제43조의4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시에는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용적률을 정할 수 있음
2) '기준용적률 상향'은 법 제43조의4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된 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3)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 구역(수평표면구역 및 진입표면구역)에 적용되는 높이 이하

아. 건축물의 배치 · 형태 · 용도 ·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안)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관리지역 전체	- 건축한계선 3m : 월정로, 곰달래로, 월정로28길, 강서고17길, 가로공원로76길, 곰달래로15길 - 건축한계선 2m : 가로공원로80길, 강서로17라길	- 가로 · 보행환경 개선 및 보행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계획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아.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계획(안)

구분		위치	기존세대	전체세대	임대주택	조합/일반분양	비고
도면표시	사업구역						
합 계			850	1,433 (증 583)	452	981	31.5%
A3-1	사업가능구역3-1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화곡동 359-2 일대	360	610 (증 250)	212	398	34.8%
A3-2	사업가능구역3-2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화곡동 359-94 일대	136	335 (증 199)	112	223	33.4%
A3-3	사업가능구역3-3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화곡동 359-1 일대	354	488 (증 134)	128	360	26.2%

※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임대주택 인수예정자와 협상 예정
※ 상기의 세대수, 임대주택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준공인가 등 사업 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자. 용도지역 ·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안)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58,477.4㎡	-	58,477.4㎡	100.0	-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674.0㎡	증) 2,826.0㎡	4,500.0㎡	7.7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43,948.5㎡	감) 35,374.0㎡	8,574.5㎡	14.7	-
	제2종일반주거지역	12,854.9㎡	감) 8,471.0㎡	4,383.9㎡	7.5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41,019.0㎡	41,019.0㎡	70.1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3. 관련도면

○ 붙임 참조 (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4. 관계도서

○ 서울특별시 전략주택공급과(☎ 02-2133-8235) 및 강서구 원도심활성화추진단(☎ 02-2600-6845)에 비치 ·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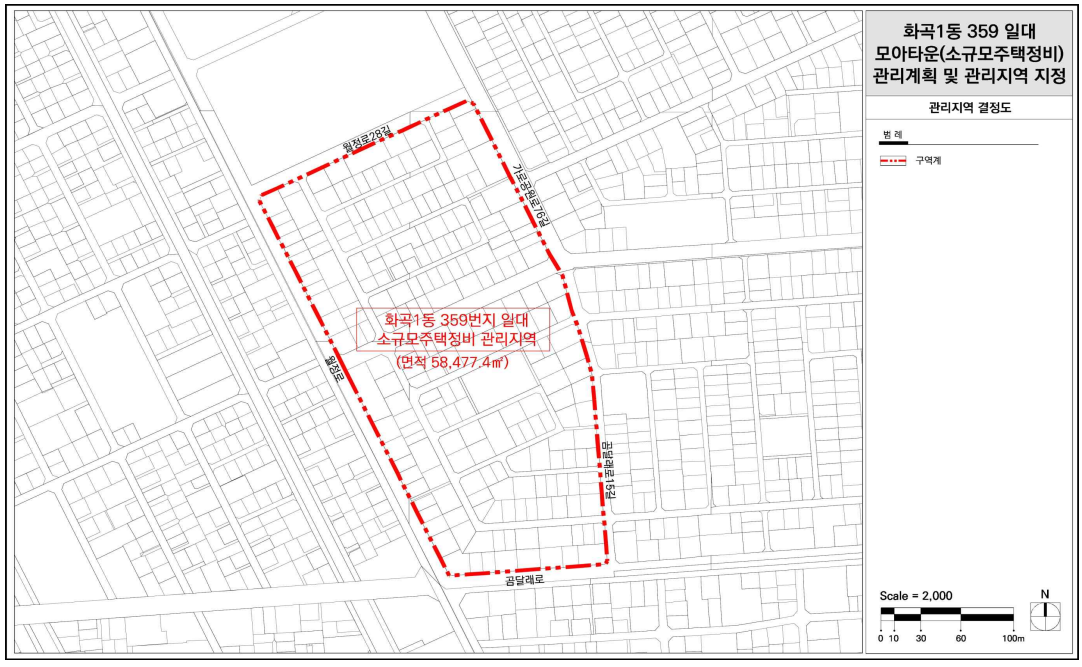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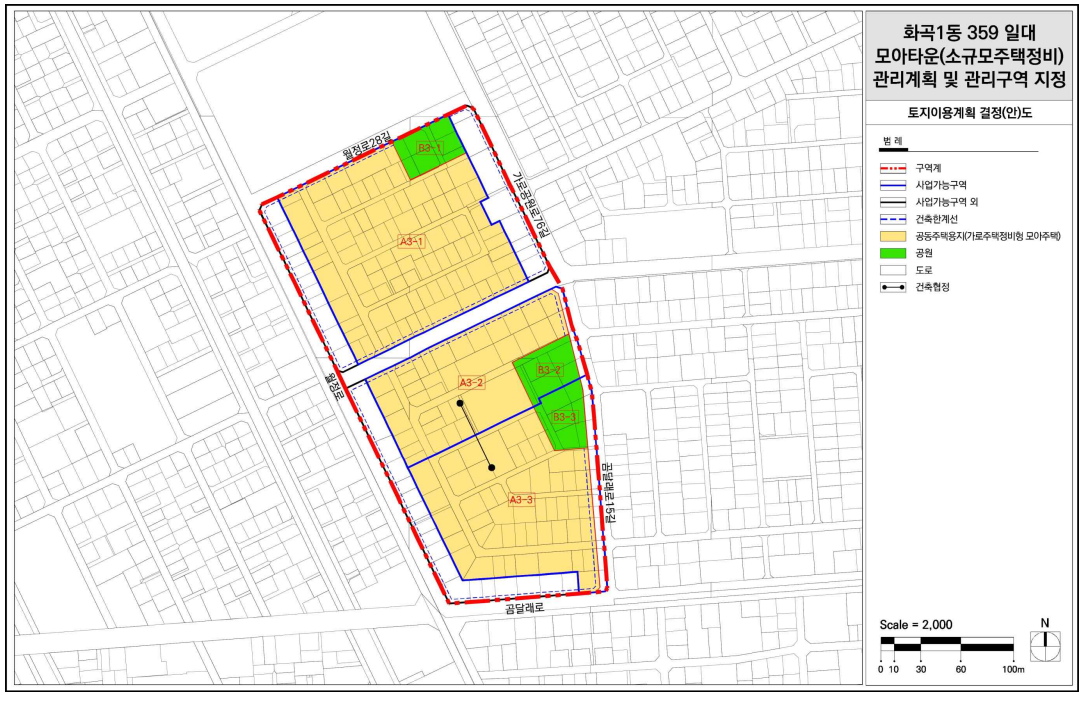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관리계획 및 관리지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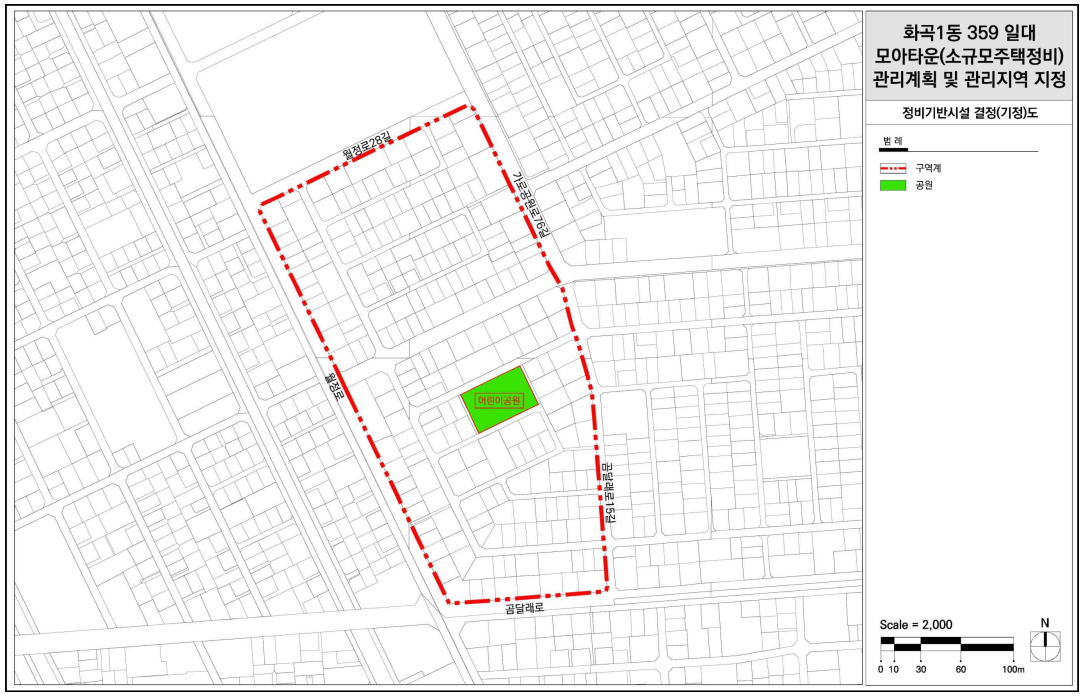
■ 관리지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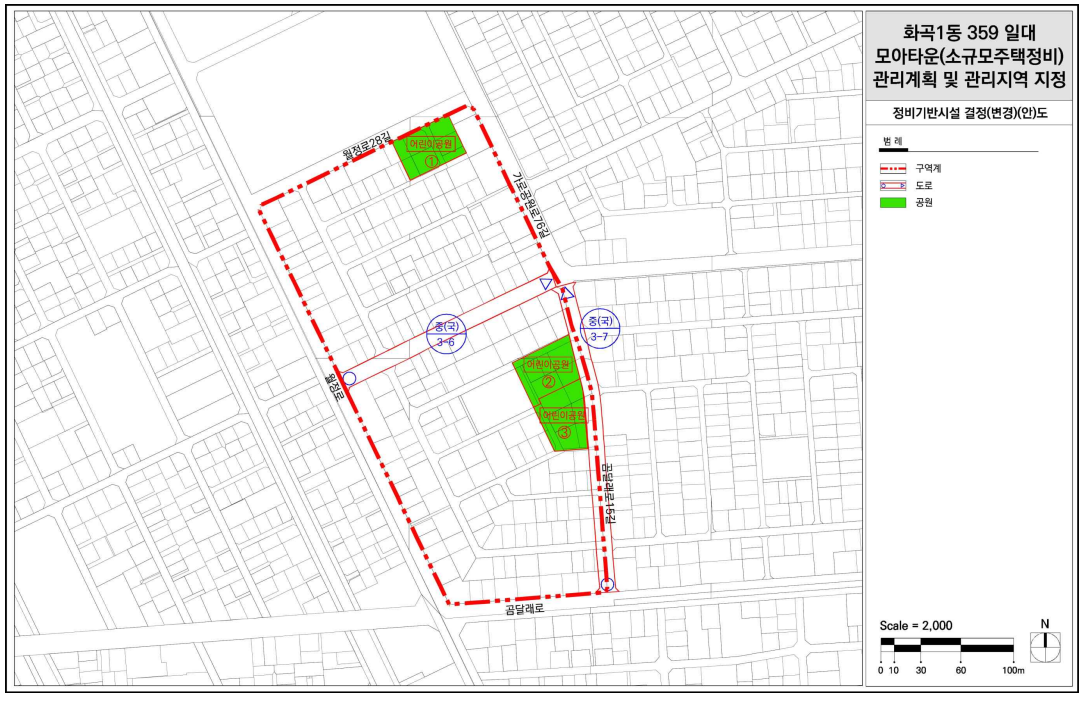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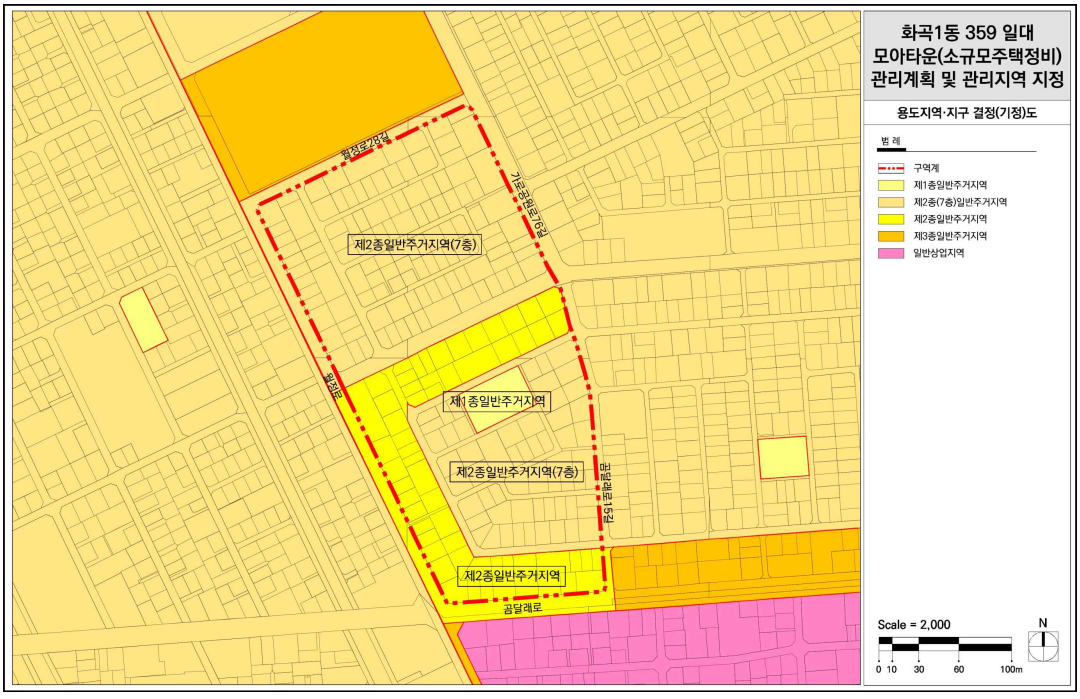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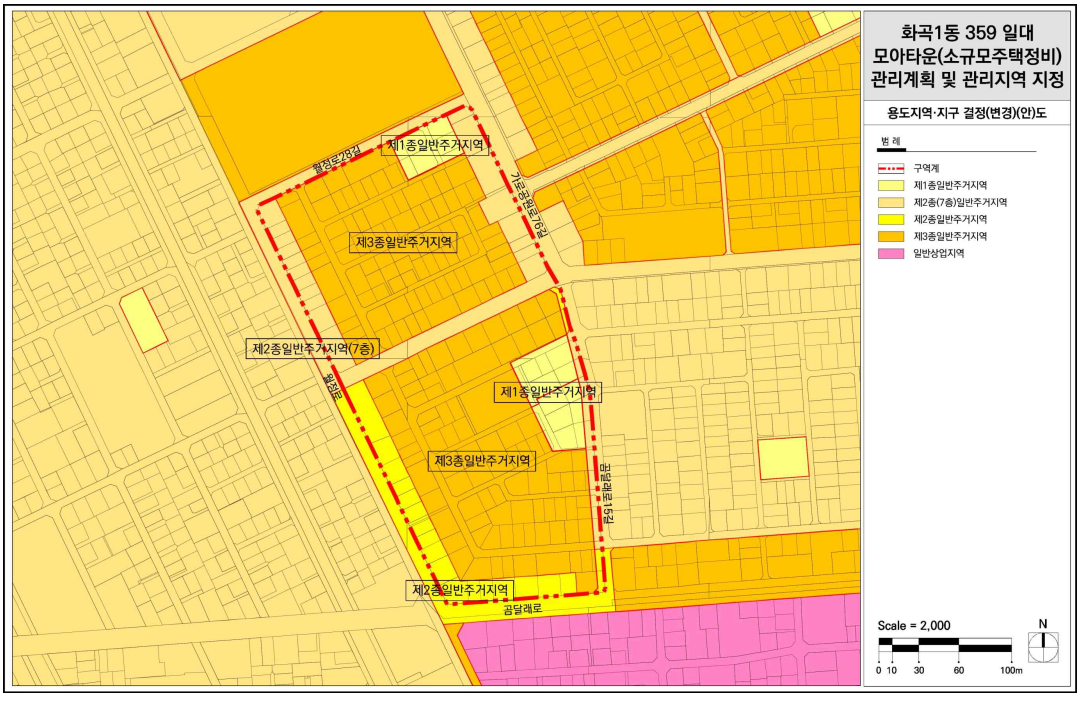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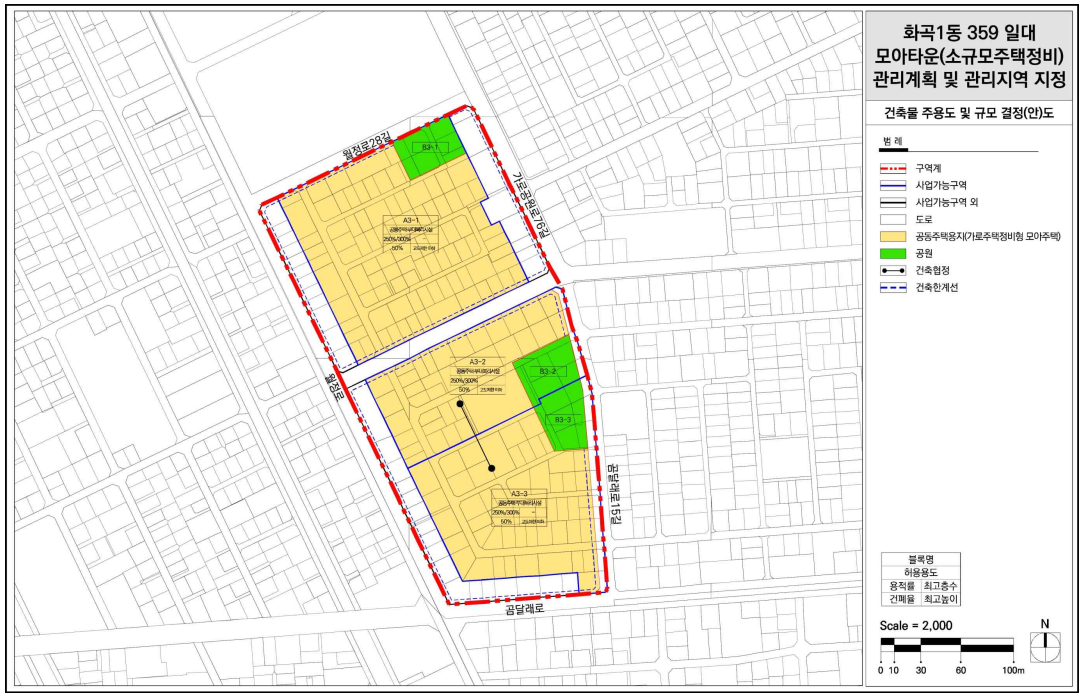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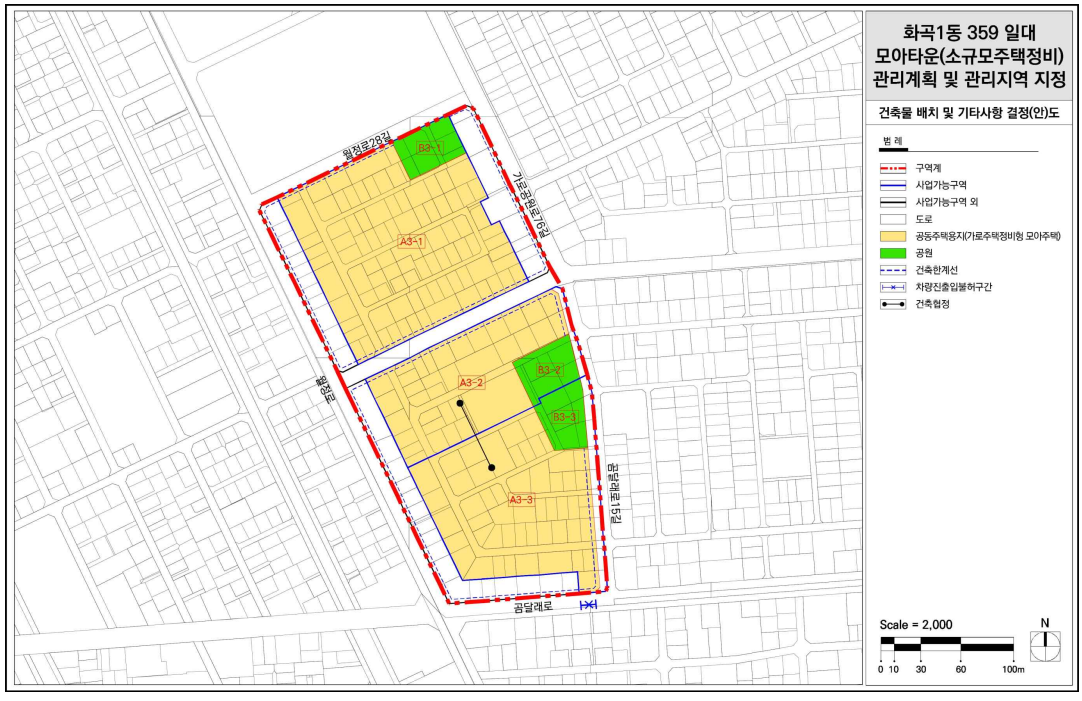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건축물의 주용도 및 규모에 관한 계획(안)



■ 건축물의 배치 및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안)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93호

화곡1동 1087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1동 1087번지 일대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가. 관리지역의 명칭 : 화곡1동 1087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나.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구 분	위 치	관리계획 요건	노후·불량건축물	비고
기준	강서구 화곡1동 1087번지 일대	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 이하일 것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현황		60,616.1㎡	전체 : 186동 노후·불량 : 142동(76.3%)	

 다. 정비방향 : 저층 노후주거지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계획과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배치 및 보행환경 개선

2.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가. 관리지역의 지정
  ○ 관리지역 지정 조서

구분	관리지역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화곡1동 1087번지 일대 모아타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강서구 화곡1동 1087번지 일대	-	증) 60,616.1	60,616.1	

나. 토지이용계획(안)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60,616.1	100.0	
사업가능구역	공동주택용지	소계		30,294.9	50.0	
		A1-1	사업가능구역1-1(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9,428.0	15.6	
		A1-2	사업가능구역1-2(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8,080.9	13.3	
		A1-3	사업가능구역1-3(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2,786.0	21.1	
정비기반시설		소계		3,648.2	6.0	
		-	도로	1,730.3	2.9	
		B1-1	소공원	1,310.0	2.2	
		B1-2	공공공지	228.7	0.4	
		C1	공공시설(서울형 키즈카페 등)	379.2	0.6	
사업가능구역 외		소계		26,673.0	44.0	
		대지		18,266.0	30.1	
		도로		8,407.0	13.9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다. 정비기반시설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안)

■ 도로 계획(안)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	-	-	8	-	-	-	-	-	-	-	
변경	중로	3	1	8~12 (4~12)	집산	324	화곡동 1071-41	화곡동 1070	일반	-	-	
기정	-	-	-	14	-	-	-	-	-	-	-	
변경	중로	3	2	14	국지	114	화곡동 1087	화곡동 1087-8	일반	-	-	
기정	-	-	-	12	-	-	-	-	-	-	-	
변경	중로	3	3	12	국지	226	화곡동 1089-63	화곡동 1089-72	일반	-	-	
기정	-	-	-	6	-	-	-	-	-	-	-	
변경	소로	2	1	8	국지	152	화곡동 1088	화곡동 1088-30	일반	-	-	
기정	-	-	-	6	-	-	-	-	-	-	-	
변경	소로	3	1	6	국지	28	화곡동 1089-61	화곡동 1089-63	일반	-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 )' 는 모아타운 내 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 3-1	기존 도로 확폭 및 도로번호·시종점 부여	• 대상지 일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지역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인정 • 도로선형 경계, 도로번호·시종점 부여
-	중로 3-2	도로번호·시종점 부여	
-	중로 3-3	도로번호·시종점 부여	
-	소로 2-1	기존 도로 확폭 및 도로번호·시종점 부여	
-	소로 3-1	도로번호·시종점 부여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 공원 계획(안)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공원	어린이공원	화곡동 1088-16	946.0	감) 946.0	-	-	초롱어린이공원
신설	①	공원	소공원	화곡동 1086-29 일대		증) 1,310.0	1,310.0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①	공원	위치 이동 및 면적 변경 (면적 : 946㎡→1,310㎡, 증 364㎡)	•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고려한 공원 위치 이동 및 면적 확대 •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성 및 기능 강화

■ 공공공지 계획(안)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공공지	화곡동 1086-28 일대	-	증) 228.7	228.7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①	공공공지	공공공지 신설 (면적 : 228.7㎡, 증 228.7㎡)	•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고려한 공공공지 신설 •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성 및 기능 강화

■ 공공시설 부지 계획(안)

구분	건축물 용도	세부 용도	위치	면적	사업내용	비고
공공시설 용지	노유자 시설	서울형 키즈카페 등	사업가능구역1-1	379.2㎡	부지 및 건축물 조성 후 기부채납	

※ 구체적인 용도 및 규모는 향후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강서구 관련부서 협의 및 수요조사를 통해 결정

■ 공동이용시설 계획(안)

도면표시번호	구분	설치기준	비고
A1-1	사업가능구역1-1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세대당 2.5㎡ × 1.25 이상 설치	구역 내
A1-2	사업가능구역1-2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구역 내
A1-3	사업가능구역1-3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구역 내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각 사업가능구역별 세부계획 수립 및 관리계획 변경 시 관련부서 협의 ·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결정

라. 교통계획(안)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차량진출입불허구간	화곡로, 가로공원로	• 화곡로변, 가로공원로변에서 차량진출입 불허	
차량진출입구간	불허구간 제외 전구역	• 진출입불허구간 외 차량진출입 허용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안)

○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 3개 구역 추진 현황

도면표시번호	사업구역	위치	면적(㎡)			사업계획					비고
			계	공동주택 용지	정비 기반시설	토지등 소유자	기존 호수	시행자	추진 단계	최초 결정일	
합 계			33,943.1	30,294.9	3,648.2	-	562	-	-	-	
A1-1	사업가능구역1-1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화곡동 1087-45 일대	10,408.0	9,428.0	980.0	-	159	-	-	-	
A1-2	사업가능구역1-2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화곡동 1087-2 일대	8,518.5	8,080.9	437.6	-	174	-	-	-	
A1-3	사업가능구역1-3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화곡동 1088 일대	15,016.6	12,786.0	2,230.6	-	229	-	-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바. 건폐율 · 용적률 등 건축물 밀도 계획(안)

구분	내용		비고
사업가능구역 내	건폐율	60% 이하	B1-1, B1-2, C1(공공시설)
		50% 이하	A1-1, A1-2, A1-3
	용적률[1]	기준(상향)[2] 250% 이하 법적상한 300% 이하	A1-1, A1-3
		기준 250% 이하 법적상한 300% 이하	A1-2
		기준 200% 이하	C1(공공시설)
	높이[3]	「공항시설법」에 따른 고도제한 높이 이하	전 구역
사업가능구역 외	건폐율	6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5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0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25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높이	「공항시설법」에 따른 고도제한 높이 이하	전 구역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1) 법 제48조 및 제43조의4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시에는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용적률을 정할 수 있음
2) '기준용적률 상향' 은 법 제43조의4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된 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3)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 구역(수평표면구역)에 적용되는 높이 이하

사. 건축물의 배치 · 형태 · 용도 ·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안)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관리지역 전체	- 건축한계선 3m : 화곡로, 가로공원로, 화곡로14길, 화곡로20길 - 건축한계선 2m : 그 외 도로변	- 가로 · 보행환경 개선 및 보행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계획
저층부 가로활성화시설 배치구간	화곡로, 화곡로20길, 가로공원로	- 화곡로, 화곡로20길, 가로공원로 연도형 가로활성화 시설 배치	- 기존 근린생활가로 기능 유지 위한 저층부 가로활성화 유도 - 커뮤니티가로 활성화를 위한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배치 유도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아.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계획(안)

구분		위치	기존세대	전체세대	임대주택	조합/일반분양	비고
도면표시	사업구역						
합 계			562	1,025 (증 463)	244	781	23.8%
A1-1	사업가능구역1-1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화곡동 1087-45 일대	159	326 (증 167)	60	266	18.4%
A1-2	사업가능구역1-2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화곡동 1087-2 일대	174	246 (증 72)	49	197	19.9%
A1-3	사업가능구역1-3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화곡동 1088 일대	229	453 (증 224)	135	318	29.8%

※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임대주택 인수예정자와 협상 예정
※ 상기의 세대수, 임대주택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준공인가 등 사업 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자. 용도지역 ·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안)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60,616.1㎡	-	60,616.1㎡	100.0	-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946.0㎡	증) 364.0㎡	1,310.0㎡	2.2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28,603.0㎡	감) 12,383.1㎡	16,219.9㎡	26.8	-
	제3종일반주거지역	31,067.1㎡	증) 12,019.1㎡	43,086.2㎡	71.0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3. 관련도면

○ 붙임 참조 (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4. 관계도서

○ 서울특별시 전략주택공급과(☎ 02-2133-8235) 및 강서구 원도심활성화추진단(☎ 02-2600-6845)에 비치·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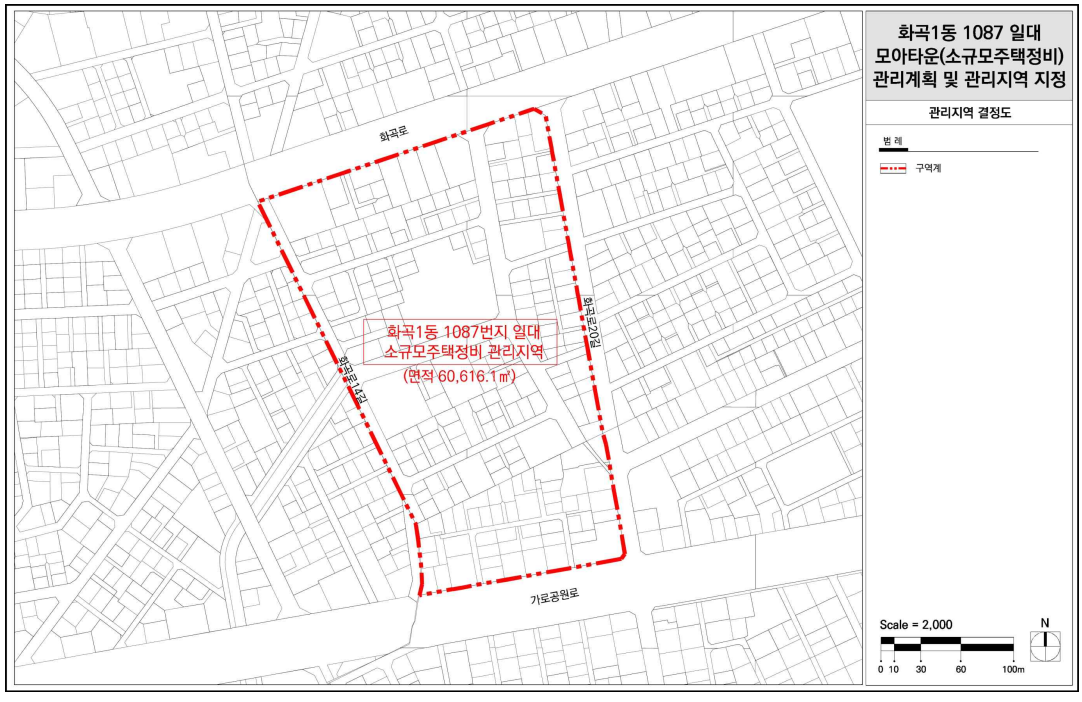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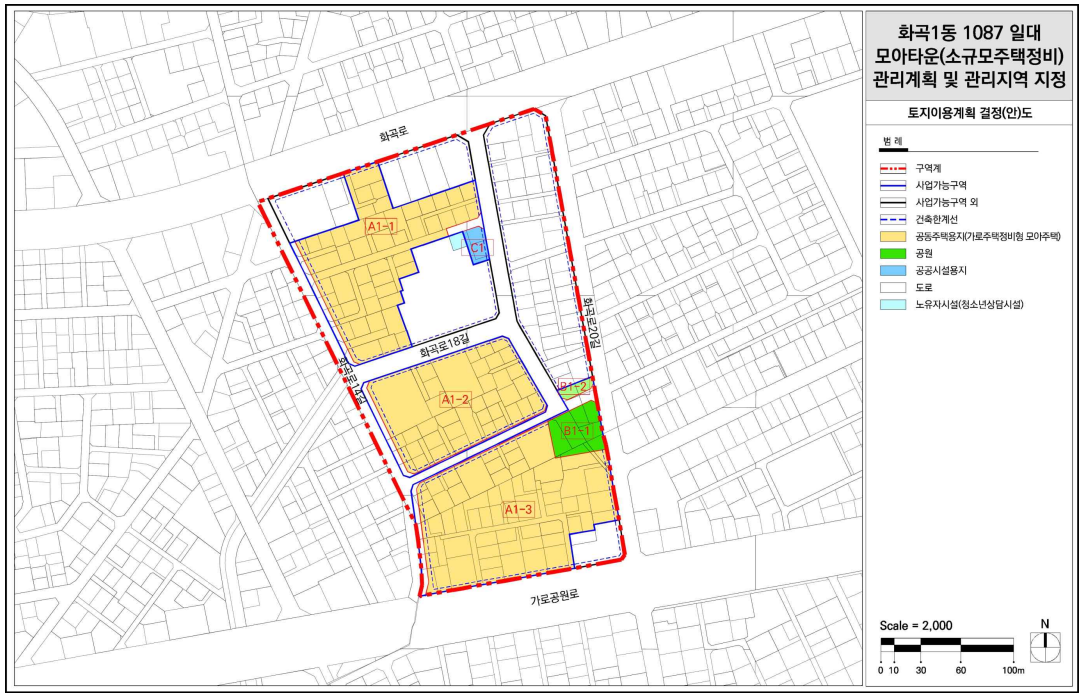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관리계획 및 관리지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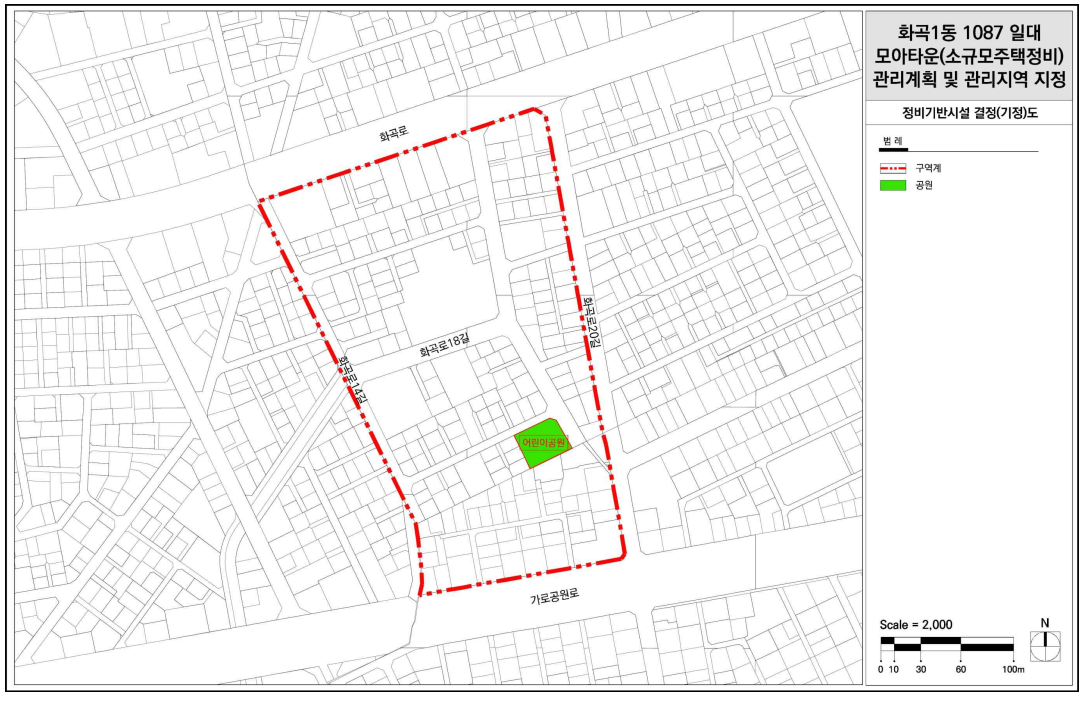
■ 관리지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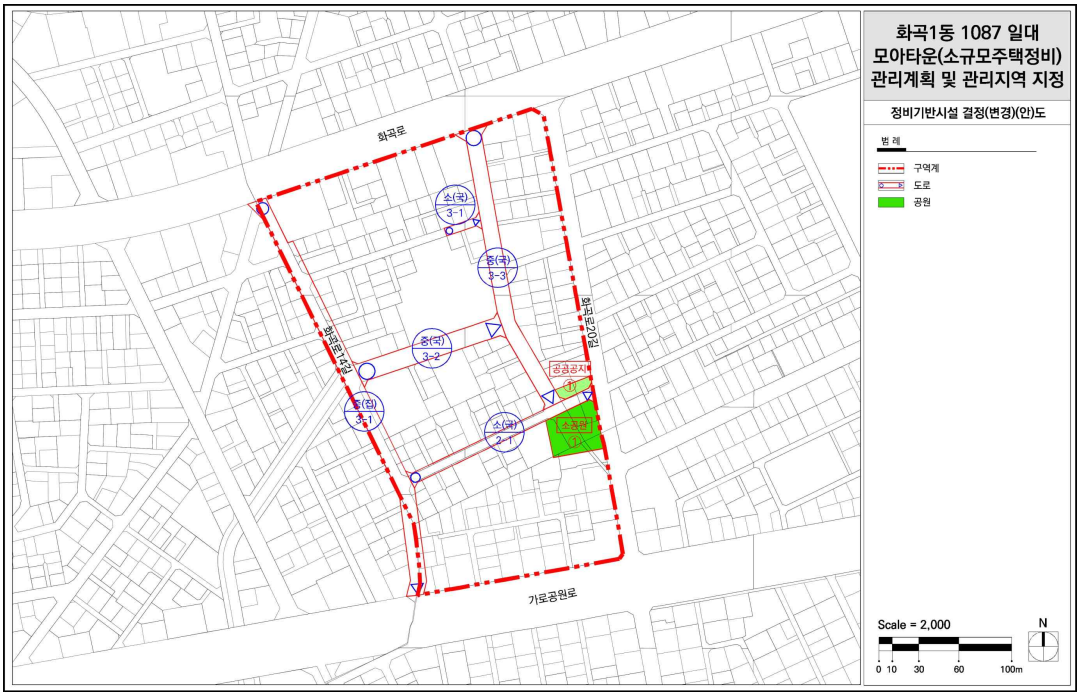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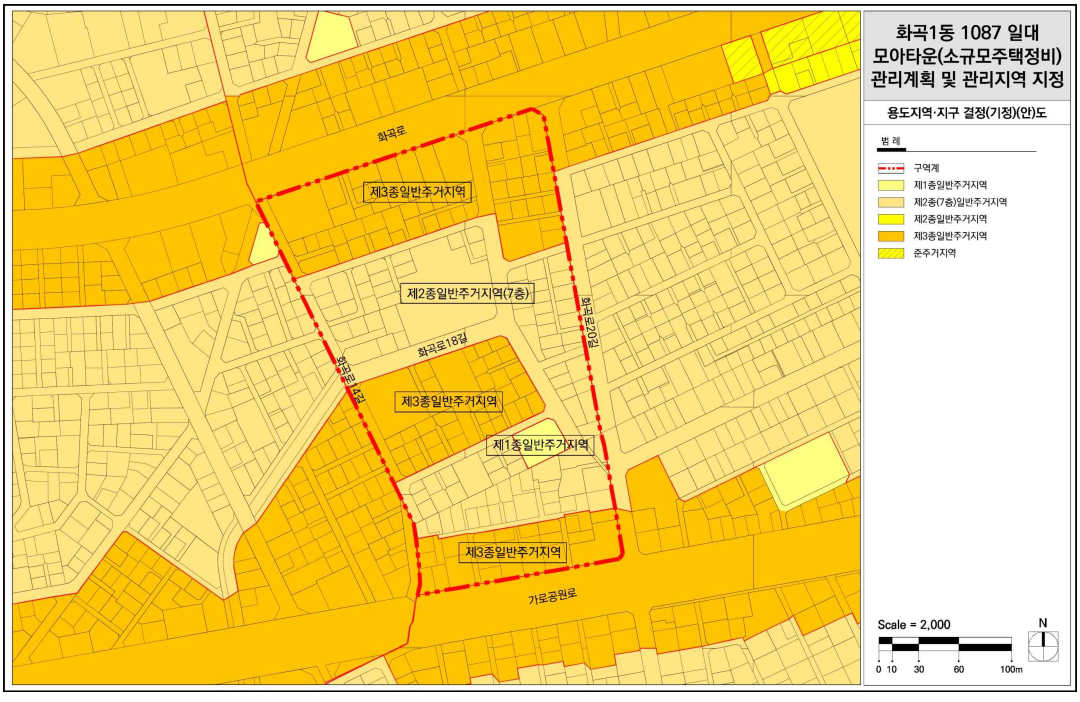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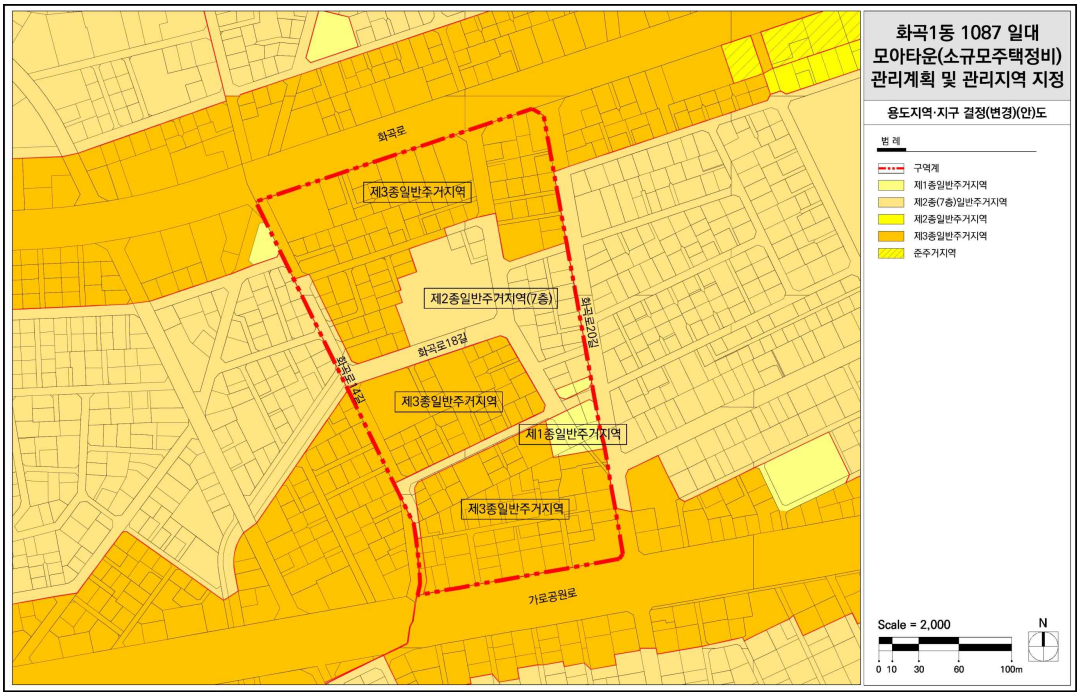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 결정(변경)(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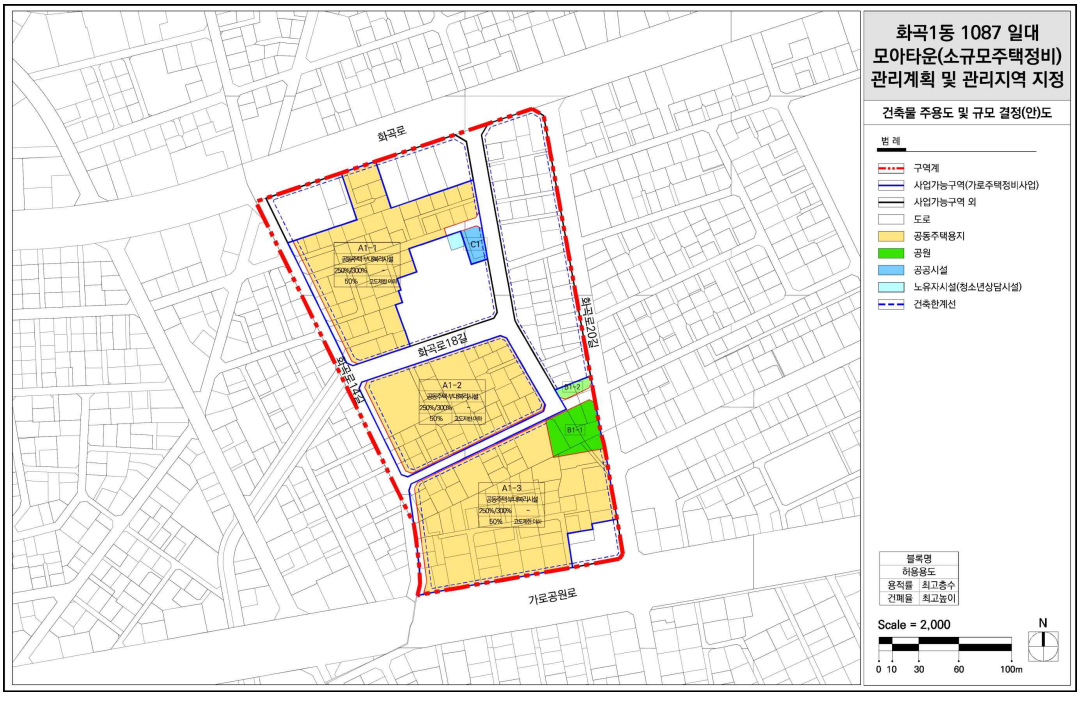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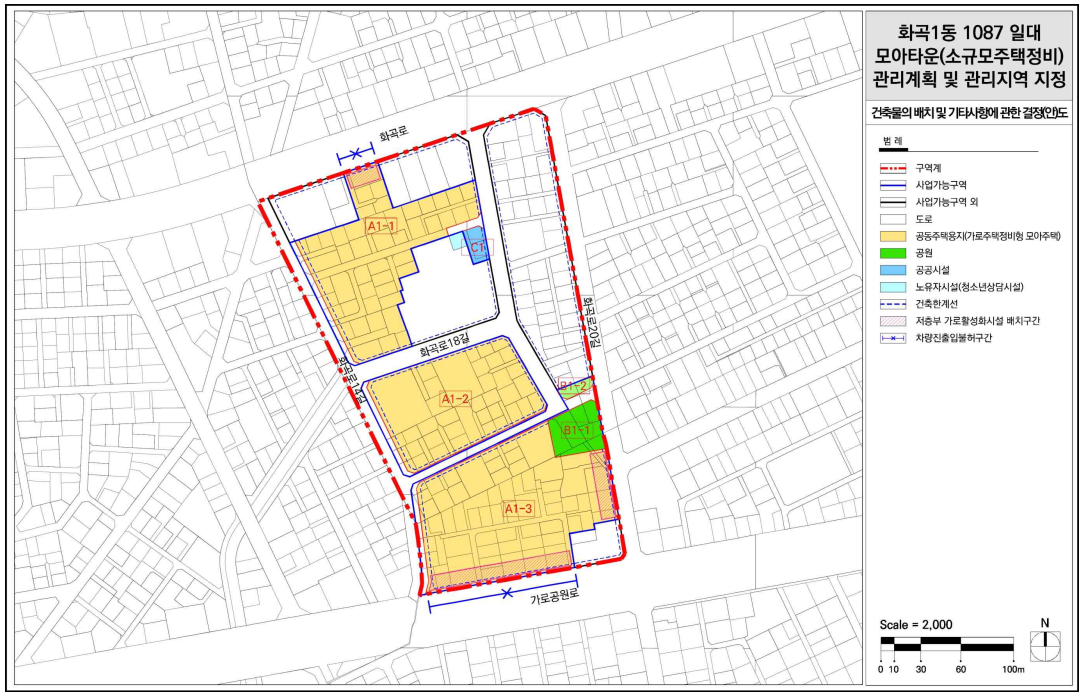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변경)(안)도



■ 건축물의 주용도 및 규모에 관한 계획(안)



■ 건축물의 배치 및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안)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594호

화곡6동 1130-7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6동 1130-7 일대 모아주택사업(소규모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가. 관리지역의 명칭 : 화곡6동 1130-7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나.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구분	관리지역 명칭	위치	관리계획 요건	노후·불량건축물	비고
기준	화곡6동 1130-7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화곡6동 1130-7 일대	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 이하일 것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것	
현황			67,957.1㎡	전체 : 152동 노후불량 : 106동(69.7%)	

 다. 정비방향 : 저층 노후주거지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계획과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배치 및 보행환경 개선

2.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가. 관리지역의 지정
  ○ 관리지역 지정 조서

구분	관리지역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	화곡6동 1130-7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화곡6동 1130-7 일대	-	증) 67,957.1	67,957.1	

나. 토지이용계획(안)

○ 토지이용계획(안)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67,957.1	100.0	
시행구역	공동주택용지	소계		33,510.1	49.3	
		A-1	사업가능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6,415.4	24.2	
		A-2	사업가능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또는 소규모재건축형 모아주택)	5,879.7	8.7	
		A-3	사업가능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8,484.0	12.5	건축협정방식2)
		A-4	사업가능구역 (소규모재건축형 모아주택)	2,731.0	4.0	
정비기반시설 등		소계		6,019.8	8.9	
		도로		3,997.2	5.9	
		(입체적결정 도로)		(621.0)	-	도로면적포함
		B-1	공원	1,110.8	1.6	
		C-1	공공시설	346.2	0.5	노인복지센터
		C-2	어린이집	565.6	0.8	
시행구역 외		소계		28,427.2	41.8	
		도로		7,864.9	11.6	
		E1	사업시행구역 외	20,562.3	30.2	종교,근린생활시설 등

1) A-1구역은 등촌로51길변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등)에 대한 기부채납시 용도지역의 추가 상향 가능 검토 (등촌로51길변 미포함 시 별도 사업시행도 가능)
2) 건축협정방식을 통해 지하통합주차장 설치, 도로 선형 변경과 어린이집 부지 교환 및 확장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함. 단, 건축협정방식이 아닌 개별 사업시행시 관리계획(안) 변경을 통한 재검토가 필요함

※ A-2구역은 향후 주민 동의 시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 가능하며, 사업방식에 따라 구역면적 등 변경 될 수 있음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다.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합계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중로	3	가	12	-	-	-	-	-	화곡로58길
변경	중로	3	가	12	국지	87	화곡동 1129-29	화곡동 1131-19	일반	
기정	중로	3	나	12 ~14	-	-	-	-	-	화곡로58길
변경	중로	3	나	12 ~17	국지	353	등촌동 365-115	화곡동 1129-4	일반	
기정	중로	3	다	12 ~14	-	-	-	-	-	까치산로
변경	중로	3	다	12 ~14	국지	375 (204)	화곡동 957-1	화곡동 1128-1	일반	
기정	소로	3	라	6	-	-	-	-	-	등촌로51길
변경	중로	3	라	12(6)	국지	109	등촌동 365-133	등촌동 365-137	일반	
신설	소로	1	마	10	국지	35	화곡동 1123-11	화곡동 1123-38	일반	
신설	소로	3	바	6	국지	154	화곡동 1126-11	화곡동 1125-1	일반	
신설	소로	3	사	6	국지	103	화곡동 1129-4	화곡동 1126-11	일반	입체결정 도로
신설	소로	1	아	10	국지	87	화곡동 1128-20	화곡동 1128-1	일반	

※ ( )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폭원 및 연장임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 사유
중로3-가	중로3-가	• 노선번호 부여	• 누락된 노선번호 부여
중로3-나	중로3-나	• 노선번호 부여 • 선형변경 (B=12~14m→12~17m)	• 누락된 노선번호 부여 •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따른 도로 선형 변경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 사유
중로3-다	중로3-다	• 노선번호 부여	• 누락된 노선번호 부여
소로3-라	중로3-라	• 노선번호 부여 • 폭원변경(B=6m→12(6)m)	• 누락된 노선번호 부여 • 증가되는 세대수를 고려하여 등촌로51길 폭원 확보를 통한 도로여건 개선
소로1-마	소로1-마	• 신설	•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소로3-바	소로3-바	• 신설	•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소로3-사	소로3-사	• 신설(입체적결정)	•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소로1-아	소로1-아	• 신설	•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 입체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규모		비고
					당초	변경	
신설	소로 3-사	일반도로	화곡동 1129-4	길이	-	103m	*도시계획시설 - 도로(일반도로) : 621㎡ *비도시계획시설 - 지하에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폭	-	6m	
				높이 (해발 고도)	-	지표면 -1.2m~ 지상부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 입체결정(변경) 사유서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 사유
소로 3-사	•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체결정	•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체결정으로 기존의 통행흐름을 유지하며, 지하공간을 공유하여 지하주차장 신설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B-1	공원	소공원	등촌동 365-172일대	-	증)1,110.8	1,110.8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 사유
B-1	공원	• 공원 신설(1,1108㎡)	• 세대수 증가를 고려한 공원 신설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안)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안)

구분		세대수	기준면적	비고
A-1	사업가능1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515세대	1,609.4㎡ 이상	세대당 2.5㎡ x 1.25 이상 설치
A-2	사업가능2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또는 소규모재건축형 모아주택)	114세대	356.3㎡ 이상	
A-3	사업가능3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78세대	556.3㎡ 이상	
A-4	사업가능4구역 (소규모재건축형 모아주택)	53세대	-	

※ 서울시 주택 조례 제8조의4(주민공동시설) 1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기준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마. 교통처리 계획(안)

○ 교통처리 계획(안)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공항대로, 까치산로변	- 공항대로~까치산로변의 원활한 교통흐름과 등서초 주변 보행안전을 위해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설정	
차량진출입구간	까치산로 27길, 까치산로 26길, 화곡로 58길	- 이면도로를 통해 차량 진출입구 설치 - A-3과 A-4구역 건축협정을 통한 통합개발 시 1개소 이상 설치 (단, 개별사업 시 각 사업구역 내 설치)	
입체결정도로	공항대로 48길	- 공항대로로 연계되는 기존 도로를 유지하기 위해 입체결정도로로 지정하여 원활한 통행흐름 유지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바. 거점사업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사. 거점사업 이외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안)

○ 모아주택 사업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안)

도면 표시	구역명	위치	면적(㎡)			사업계획					비고
			계	공동 주택 용지	정비 기반 시설	토지등 소유자	기존 호수	시행자	추진 단계	최초 결정일	
합 계			39,529.9	33,510.1	6,019.8	-	690	-	-	-	-
A-1	사업가능1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화곡6동 1128-26일대	20,801.0	16,415.4	4,385.6	-	377	-	-	-	-
A-2	사업가능2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또는 소규모재건축형 모아주택)	화곡6동 1134-7일대	6,024.0	5,879.7	144.3	-	106	-	-	-	-
A-3	사업가능3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화곡6동 1130-7일대	8,484.0	8,484.0	-	-	165	-	-	-	-
A-4	사업가능4구역 (소규모재건축형 모아주택)	화곡6동 1130-9일대	4,220.9	2,731.0	1,489.9	-	42				

아. 기타(건축협정)에 관한 계획(안)

○ 모아주택 3,4구역 건축협정 체결 및 특례 적용 계획(안)

구분		위치	면적(㎡)	특례사항	특례적용사유	비고
A-3	사업가능3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화곡6동 1130-7일대	8,484.0	공통사항 - 건축법 제61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 건축법 제53조 지하층,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통합설치	공통사항 - 경관 특화를 위한 창의적인 배치 건축물 계획 - 쾌적한 가로환경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통합설치	-
A-4	사업가능4구역 (소규모재건축형 모아주택)	화곡6동 1130-9일대	4,220.9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 건축협정방식을 통해 지하통합주차장을 설치하고, 3구역에서 구립어린이집 부지를 교환하고 확장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함. 단, 개별 사업시행시 관리계획(안) 변경을 통해 재검토가 필요함

자. 건폐율 · 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안)

○ 건폐율에 관한 계획

사업구역	용도지역	건폐율(%)	비고
강서구 화곡6동 1130-7일대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60% (5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 준용」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 용적률에 관한 계획

구분		위치	용적률(%)		비고
도면 표시 번호	사업구역		기준	상한	
A-1	사업가능1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화곡6동 1128-26 일대	195.7 (가중 평균)	245.7 (가중 평균)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5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공급 (제1종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으로 변경) - 동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 10~20% 건설·공급하여 상한용적률 적용

구분		위치	용적률(%)		비고
도면 표시 번호	사업구역		기준	상한	
A-2	사업가능2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또는 소규모재건축형 모아주택)	화곡6동 1134-7 일대	150	200	- 건축물의 용도변경(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을 위한 종상향한 사항으로 기준용적률은 종전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적용 - 기준용적률 이상으로 계획 할 경우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5에 따라 변경된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서 종전의 용도지역 용적률 을 뺀 용적률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에 임대주택을 건설 할 것. - 단, 동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완화사항은 제외
A-3	사업가능3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화곡6동 1130-7 일대	150	200	
A-4	사업가능4구역 (소규모재건축형 모아주택)	화곡6동 1130-9 일대	150	200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 모아주택사업 시행시 건축물의 규모(높이, 밀도 등)는 향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 가능함
※ A-1구역은 등촌로51길변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등)에 대한 기부채납시 용도지역의 추가 상향 가능 검토 (등촌로51길변 미포함 시 별도 사업시행도 가능)

○ 높이에 관한 계획

구분		위치	계획 내용	비고
도시표 시번호	사업구역			
A-1	사업가능1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화곡6동 1128-26일대	용도지역·용도지구에 따른 높이 적용	
A-2	사업가능2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또는 소규모재건축형 모아주택)	화곡6동 1134-7일대		
A-3	사업가능3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화곡6동 1130-7일대		
A-4	사업가능4구역 (소규모재건축형 모아주택)	화곡6동 1130-9일대		

※ 향후 자연경관지구 관련 법령 변경(밀도, 높이 등) 및 해제될 경우 사업시행인가 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계획(사업구역설정, 용도지역, 높이 등) 수립 가능토록 함
※ 향후 공항시설법에 따른 높이제한 변경 될 경우 사업시행인가 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계획(사업구역설정, 용도지역, 높이 등) 수립 가능토록 함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차. 건축물의 배치 · 형태 · 용도 ·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안)

○ 건축물의 배치 및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적용지역	계획 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가로변	- 건축한계선 2m 적용	- 가로 환경 및 보행환경 개선
저층부 가로활성화시설 배치구간	모아주택 1구역(A-1) 모아주택 2구역(A-2) 모아주택 3구역(A-3)	- 가로활성화시설 배치구간은 가로활성화가 필요한 주요 가로로 가로의 ½이상 대지안의 공지 또는 건축한계선에 맞추어 건축물의 저층부(1층 이상)를 설치하고, 해당공간에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연도형으로 조성 - 가로활성화시설의 권장용도 - 「주택법」 제2조 13호, 14호에 의한 부대 · 복리시설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44조 공동이용시설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커뮤니티가로 활성화를 위한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배치 유도	- 기존 근린생활가로 기능을 유지 진입부 저층부 가로활성화 유도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카.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계획

○ 공공임대주택 총 113호 공급 예정

구분		위치	기존 세대	전체 세대	임대 주택	조합/일반 분양	비고
도면 표시	사업구역						
합 계			690	860 (증 170)	113	747	13.1%
A-1	사업가능1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화곡6동 1128-26일대	377	515 (증 138)	113	402	21.9%
A-2	사업가능2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또는 소규모재건축형 모아주택)	화곡6동 1134-7일대	106	114 (증 8)	-	114	가로주택 정비사업시
A-3	사업가능3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화곡6동 1130-7일대	165	178 (증 13)	-	178	-
A-4	사업가능4구역 (소규모재건축형 모아주택)	화곡6동 1130-9일대	42	53 (증 11)	-	53	-

※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임대주택 인수예정자와 협상 예정

※ 상기의 세대수, 임대주택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준공인가 등 사업 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타. 용도지구 ·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67,957.1	-	67,957.1	100.0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38,624.3	감) 24,539.5	14,084.8	20.7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29,332.8	증) 31,116.8	42,009.4	61.8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11,862.9	11,862.9	17.5	
용도지구	자연경관지구	24,729.7	-	24,729.7	36.4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14,084.8	기준: 150% 상한: 200%	•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변경 - 자연연경관지구 포함 사업구역은 건축물의 용도변경(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	제1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53,872.3	기준: 200% 상한: 250%	
-	제2종일반 주거지역(7층)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 A-1구역은 등촌로51길변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등)에 대한 기부채납시 용도지역의 추가 상향 가능 검토 (등촌로51길변 미포함 시 별도 사업시행도 가능)

파.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계획

○ 특별건축구역 결정 조서

구분		면적	결정 내용	결정 사유
특별건축구역	사업가능1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20,801.0㎡	•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 경관특화를 위한 창의적인 배치 및 건축물 계획 •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장 확대 설치
	사업가능2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또는 소규모재건축형 모아주택)	6,024.0㎡		
	사업가능3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8,484.0㎡		
	사업가능4구역 (소규모재건축형 모아주택)	4,220.9㎡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 「건축법」 제 73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특례 및 74조에 따른 통합적용계획에 대한 사항

구분	배제 및 완화	비고
건축법	대지안의 조경(42조), 건폐율(55조), 용적률(56조), 대지안의 공지(58조), 건축물의 높이제한(6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61조)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동주택의 배치(10조), 기준척도(13조), 비상급수시설(35조), 난방설비 등(37조) 등	

3. 관련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4. 관계도서

○ 서울특별시 전략주택공급과(☎ 02-2133-8235) 및 강서구 원도심활성화추진단(☎ 02-2600-6845)에 비치·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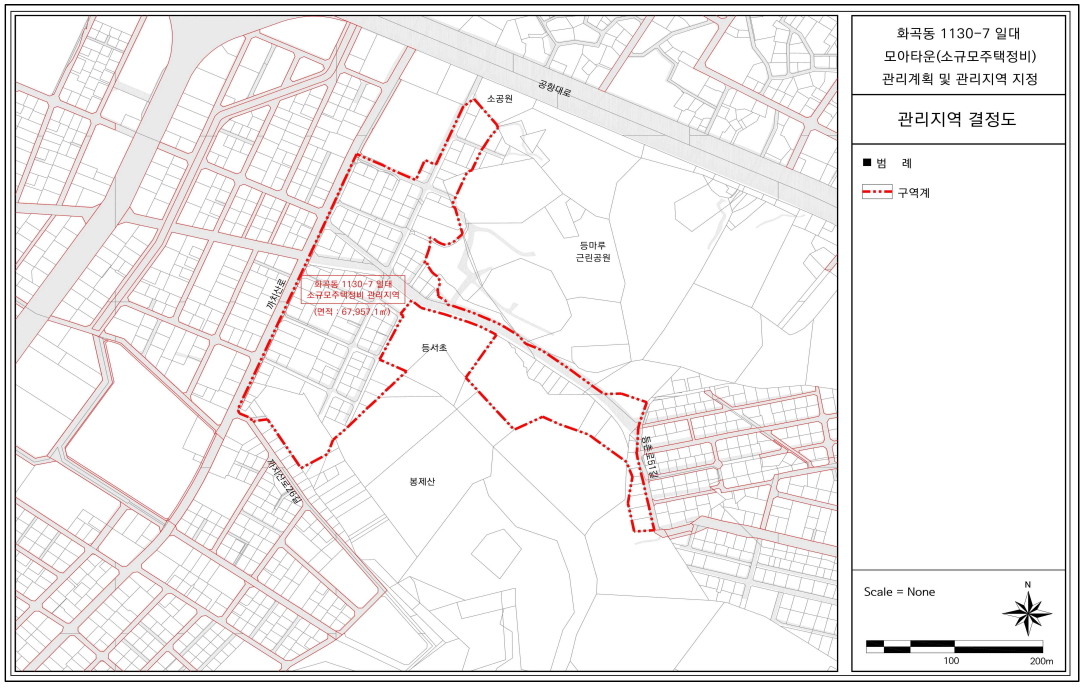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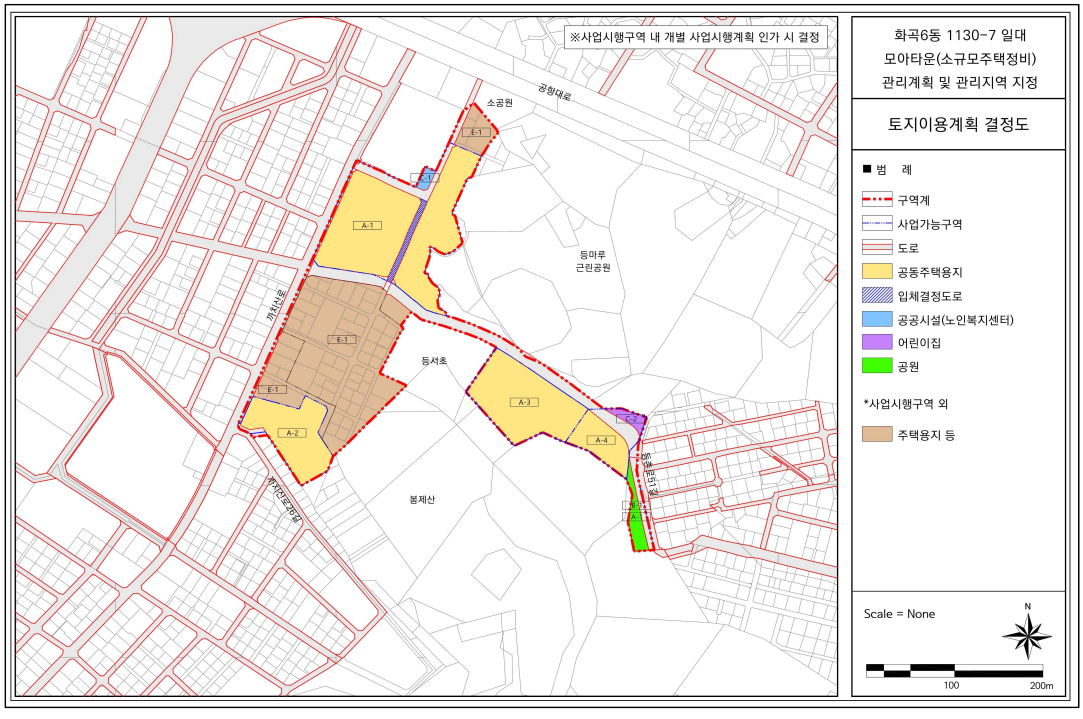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종합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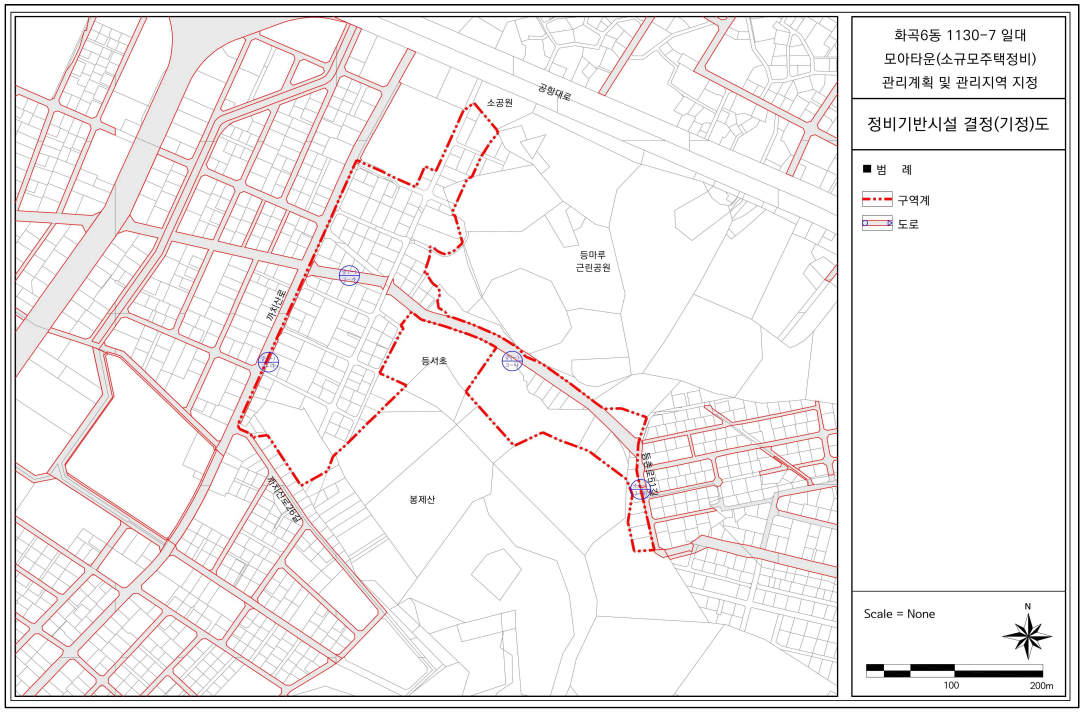
○ 관리지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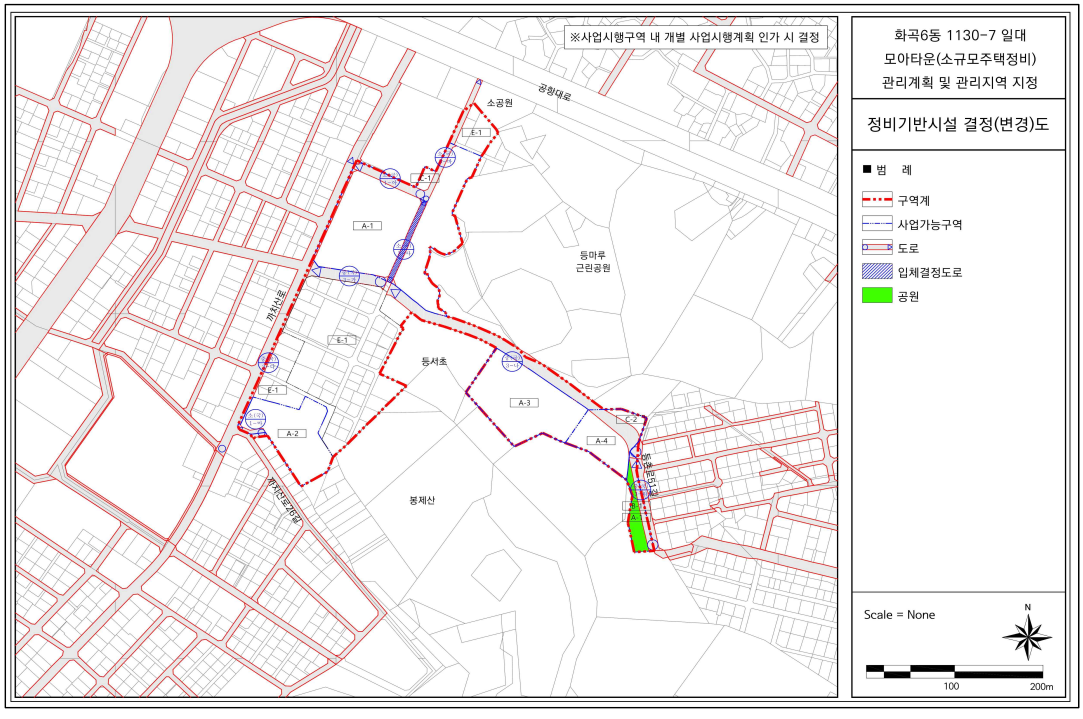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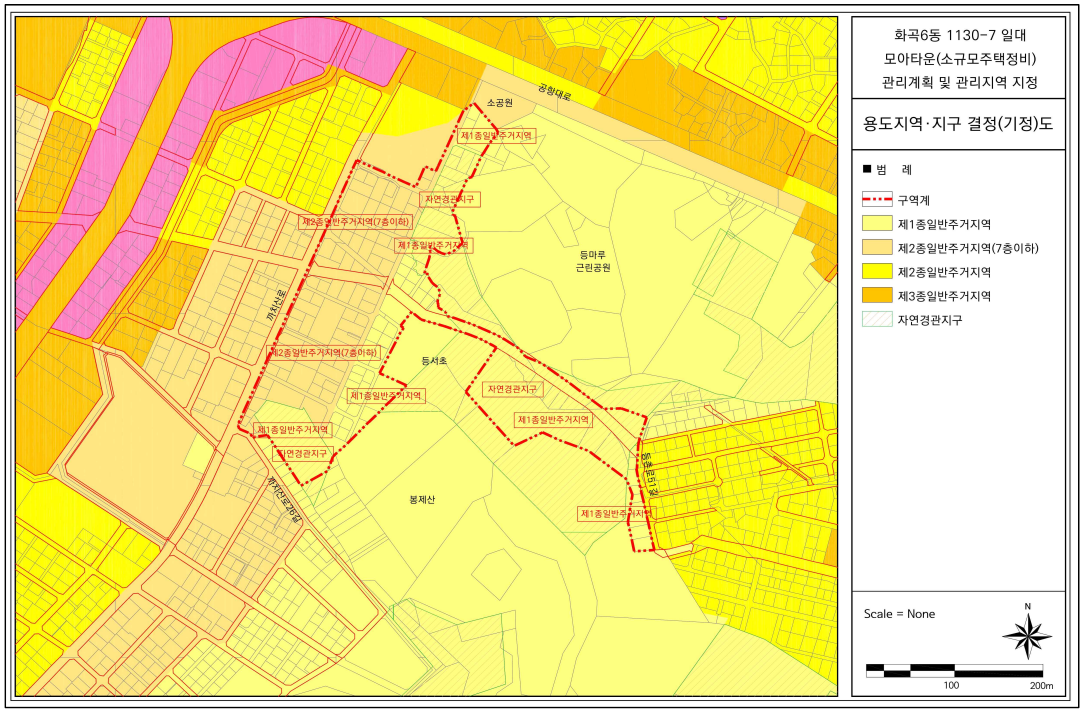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도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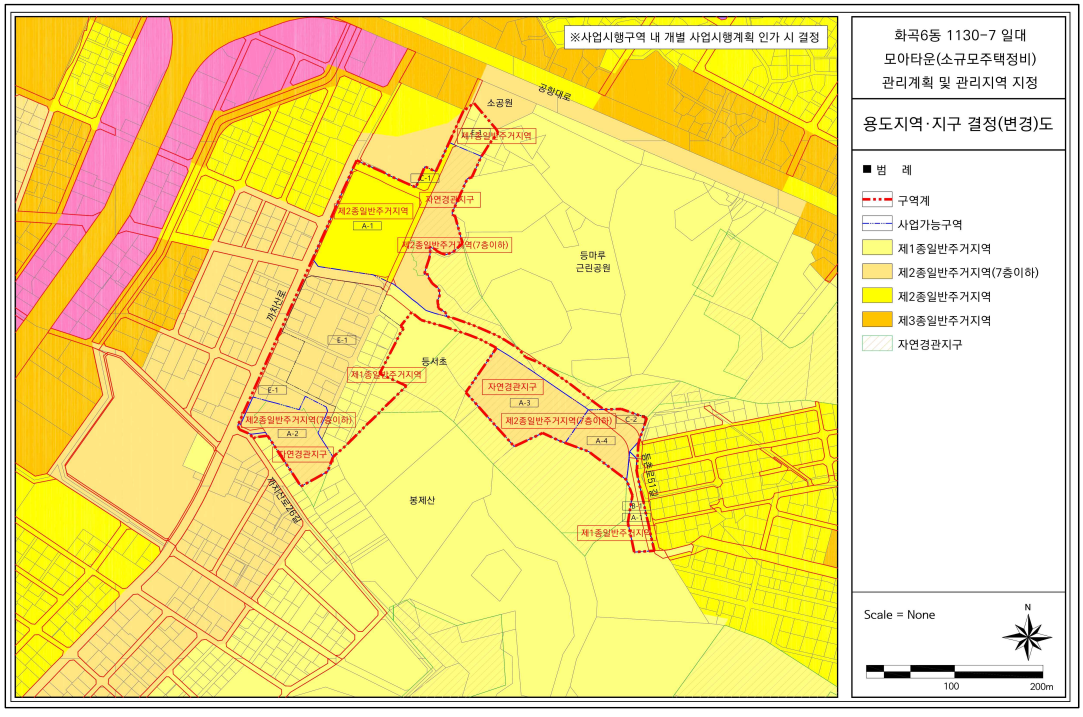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도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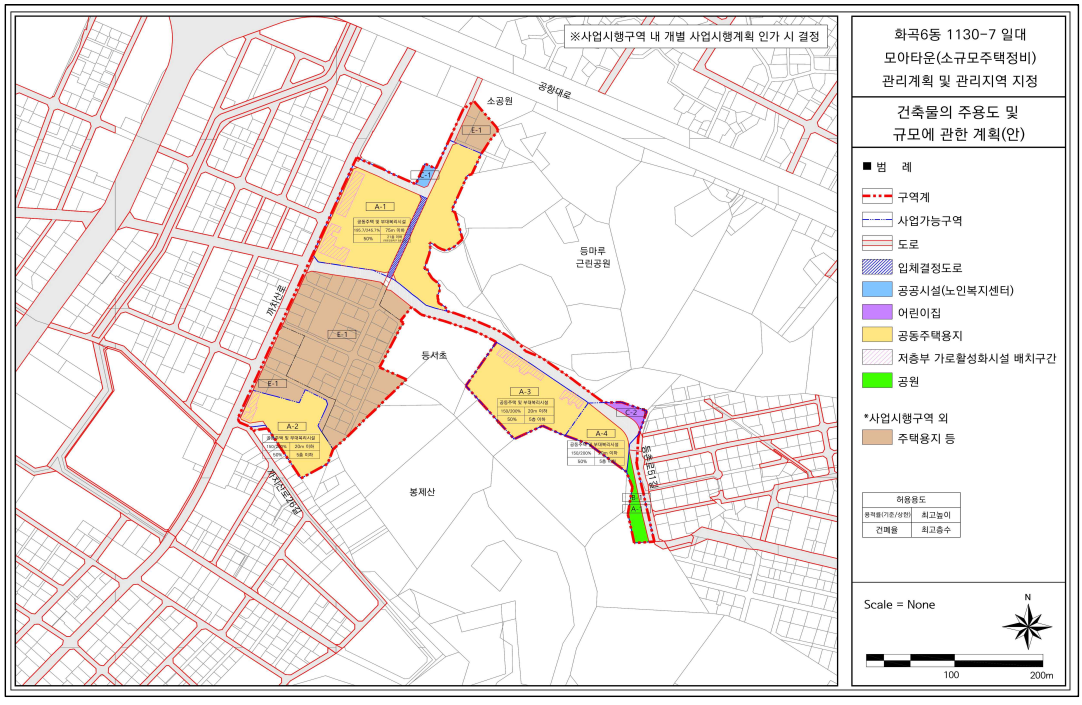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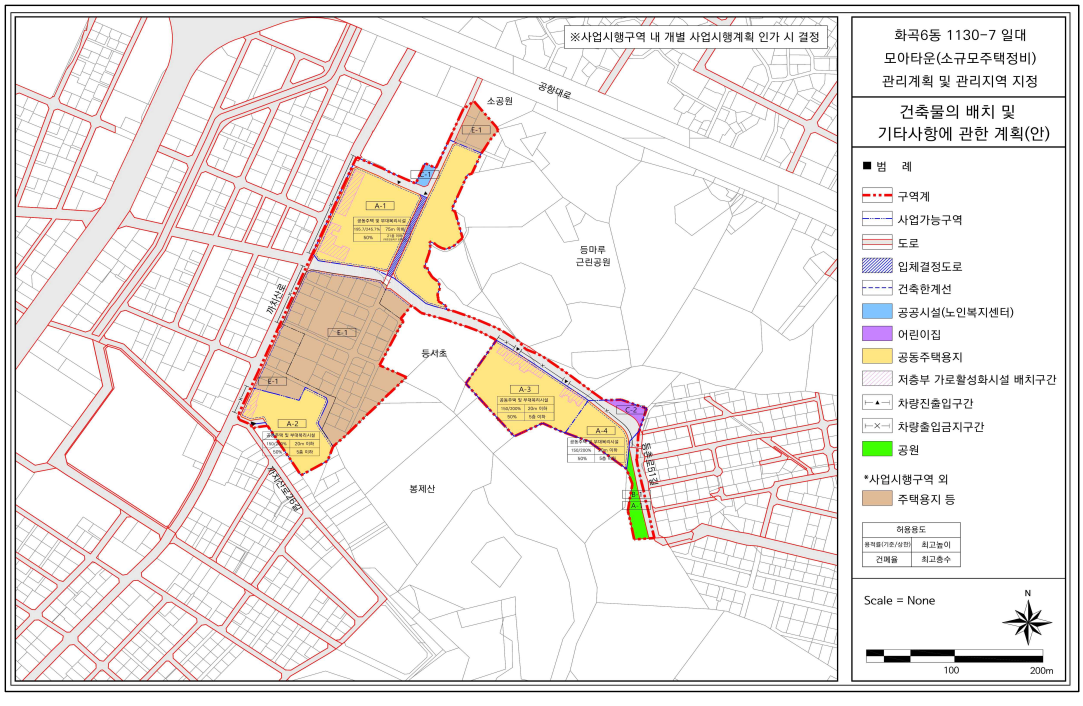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건축물의 주용도 및 규모에 관한 계획(안)



○ 건축물의 배치 및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안)



※ A-3과 A-4구역 건축협정방식이 아닌 개별사업 시 각 사업구역 내 차량진출입구 설치, 건축물의 배치 등 관리계획(안) 변경을 통한 재검토 필요함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95호

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0·11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45호(1979.9.21.)로 재개발구역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412호(1981.11.13.)로 사업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89호(2003.04.15.)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65호(2021.6.10.)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마포로5 제10·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2023년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3.09.20.)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I.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가. 정비구역 지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충정로3가, 합동 28-5번지 일대	61,821.5	-	61,821.5	건설부고시 제345호 ('79.9.21.)

※ 마포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결정) 고시(서울시고시 제2022-389호) 내용 적용

나. 지구지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마포로5구역 10·11지구	중구 중림동 157-2번지 일대	13,028.0	-	13,028.0	서고시 제2021-265호 ('21.6.10.)

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비 율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13,028.0	-	13,028.0	100.0	
획 지	소 계	9,374.7	-	9,374.7	72.0	
	10·11지구	9,374.7	-	9,374.7	72.0	
정비기반 시설	소□ 계	3,653.3	-	3,653.3	28.0	
	공 원	2,828.0	-	2,828.0	21.7	
	도 로	825.3	-	825.3	6.3	

나.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13,028.0	-	13,028.0	100.0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2,933.5	-	12,933.5	99.3	
	제3종일반주거지역	53.8	-	53.8	0.4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40.7	-	40.7	0.3	

2) 용도지구 결정 조서

(1) 방화지구 결정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	방화지구	태평로2가~아현동간	28,980.0 (2,284.5)	-	-

※ ( )는 구역 내 편입되는 면적임

다.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 신설

1) 추산액

<table>
<tr><td>추정
지분율</td><td>• 추정지분율 산정방식 : 개별 분양대상자 투자금액 ÷ 총사업비
- 개별 분양대상자 투자금액 :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평가액 + 분양예정의 대지평가차액 + 비용부담액
- 총사업비 : 분양예정의 대지평가액 + 신축건축물시설평가액</td></tr>
<tr><td>종후자산
평가추산액</td><td>• 654,736,000,000원 = 354,277,649,600원(대지비) + 300,458,350,400원(건축비)
- 감정평가법인의 (약식)종후자산 추정가액 검토의견서를 기준으로 하여 국토교통부령 제1100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추정 평가액의 ±5%로 제시되었으며 산술평균 가격으로 종후자산평가 추산액을 적용</td></tr>
<tr><td>종전자산
평가액</td><td>• 256,187,799,070원 = 252,728,380,000원(토지부문) + 3,459,419,070원(건축물부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두 곳의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산술평균 가격으로 종전자산평가액을 적용</td></tr>
<tr><td>개별
추정분담금
산출</td><td>• 개별 토지등소유자의 추정분담금 산출 기준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금액(천원)</th><th>비고</th></tr>
<tr><td rowspan="2">종후 토지 및 건물평가금액
(총 사업비)</td><td>분양예정의 대지평가액</td><td>354,277,650</td><td>①</td></tr>
<tr><td>신축건물시설 평가액</td><td>300,458,350</td><td>-</td></tr>
<tr><td colspan="2">대지조성비</td><td>2,190,000</td><td>②</td></tr>
<tr><td colspan="2">총 종전 토지 및 건물평가액</td><td>256,187,799</td><td>③</td></tr>
<tr><td colspan="2">총 대지평가차액</td><td>95,899,851</td><td>① - ② - ③</td></tr>
</table>
•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개별 분양예정인 토지 또는 건축물 추산액 - 개별 분양대상자 투자금액
- 개별 분양대상자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평가액 비율 : 개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평가액 ÷ 총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평가액
- 개별 분양대상자 대지평가차액 : 총 대지평가차액 X 개별 종전토지 또는 건축물 평가액 비율
- 개별 분양대상자 투자금액 : 개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평가액 + 개별 분양 대지평가차액</td></tr>
<tr><td></td><td>• 토지등소유자 A의 개별 추정분담금 산출(예시)
- A의 종전토지 또는 건축물 평가액 : 557,661천원
- A의 종전토지 또는 건축물 평가액 비율 : 557,661천원 ÷ 256,187,799천원 = 0.218%
- A의 개별 대지평가차액 : 95,899,851천원 X 0.218% = 208,752천원
- A의 투자금액 : 557,661천원 + 208,752천원 = 766,413천원(종전자산 대비 137.4%)
- A의 지분율 : 766,413천원 ÷ 654,736,000천원 = 0.117%
※ 토지등소유자가 분양받는 물건에 비해 토지등소유자의 권리가액 상당액이 높을 경우 개별 분담금(청산금)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수령하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분담금을 지급</td></tr>
</table>

※ 종전자산평가는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기준(23.08.30.)으로 서울시 중구에서 선정한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진행한 사항임

※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별 추정분담금 산정을 위하여 중구의 협의를 거쳐 감정평가법인의 (약식)종후자산 추정가액 검토의견서를 기준(2023.10.)으로 종후자산평가액을 추산하여 적용한 사항임

※ 다만, 향후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관련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종전자산, 사업비, 종후자산의 금액이 확정되므로 상기 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 개략적인 개별 분담금 추산액 산출

•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①추정 권리가액[종전자산평가액(a)+개별대평가차액(b)] - ②개별 분양가 추정액 = ③개별 추정분담금

[단위: 천원]

연번	지번	토지등소유자	종전자산평가액(토지+건물)(a)	개별대지평가차액(b)	① 추정 권리가액	개별지분율(%)	③개별 추정분담금							
							84A	84B	59	39A	39B	업무시설(50㎡ 기준)	근린생활시설(50㎡ 기준)	판매시설(50㎡ 기준)
②개별 분양가 추정액							1,167,788	1,209,313	943,425	650,859	650,696	629,200	938,200	705,950
1	156-114	OO재단	1,719,056	643,502	2,362,558	0.361	1,194,770	1,153,245	1,419,133	1,711,699	1,711,862	541,011	232,011	464,261
2	156-118	현OO	1,541,429	577,010	2,118,439	0.322	950,651	909,126	1,175,014	1,467,580	1,467,743	1,785,412	1,476,412	1,708,662
3	156-120	김OO	1,694,601	634,347	2,328,948	0.356	1,161,160	1,119,635	1,385,523	-,678,089	1,678,252	1,699,748	1,390,748	1,622,998
4	156-135	이OO	994,467	372,263	1,366,730	0.209	198,942	157,417	423,305	715,871	716,034	338,765	29,765	262,015
5	156-25	우OO	591,314	221,349	812,663	0.124	-355,125	-396,650	-130,762	161,804	161,967	-620,757	-929,757	-697,507
6	156-26	이OO	870,995	326,043	1,197,038	0.183	29,250	-12,275	253,613	546,179	546,342	-70,528	-379,528	-147,278
7	156-41	이OO	704,316	263,649	967,965	0.148	-199,823	-241,348	24,540	317,106	317,269	567,838	258,838	491,088
8	156-42	이OO	406,504	152,168	558,672	0.085	-609,116	-650,641	-384,753	-92,187	-92,024	2,944,706	2,635,706	2,867,956
9	156-45	윤OO	557,662	208,752	766,413	0.117	-401,375	-442,900	-177,012	115,554	115,717	183,463	-125,537	106,713
10	156-85	황OO외 1인	851,475	318,736	1,170,211	0.179	2,423	-39,102	226,786	519,352	519,515	737,530	428,530	660,780
11	156-91	김OO	1,756,932	657,680	2,414,612	0.369	1,246,824	1,205,299	1,471,187	1,763,753	1,763,916	1,733,358	1,424,358	1,656,608
12	158-1	김OO	425,277	159,196	584,472	0.089	-583,316	-624,841	-358,953	-66,387	-66,224	-44,728	-353,728	-121,478
13	187-1	윤OO외 2인	2,600,464	973,443	3,573,906	0.546	2,406,118	2,364,593	2,630,481	2,923,047	2,923,210	137,213	-171,787	60,463
14	149-57	㈜이노디앤씨	130,721,478	48,933,518	179,654,996	27.439	178,487,208	178,445,683	178,711,571	179,004,137	179,004,300	1,489,239	1,180,239	1,412,489
15	156-10													
16	156-100													
17	156-104													
18	156-105													
19	156-11													
20	156-12													
21	156-121													
22	156-123													
23	156-13													
24	156-131													
25	156-15													
26	156-151													
27	156-154													

[단위: 천원]

연번	지번	토지등소유자	종전자산 평가액 (토지+건물) (a)	개별 대지평가 차액 (b)	① 추정 권리가액	개별 지분율 (%)	③개별 추정분담금							
							84A	84B	59	39A	39B	업무시설 (50㎡ 기준)	근린생활시설 (50㎡ 기준)	판매시설 (50㎡ 기준)
②개별 분양가 추정액							1,167,788	1,209,313	943,425	650,859	650,696	629,200	938,200	705,950
28	156-18	㈜이노디앤씨	130,721,478	48,933,518	179,654,996	27.439	178,487,208	178,445,683	178,711,571	179,004,137	179,004,300	1,489,239	1,180,239	1,412,489
29	156-2													
30	156-23													
31	156-24													
32	156-28													
33	156-29													
34	156-3													
35	156-3													
36	156-30													
37	156-32													
38	156-33													
39	156-34													
40	156-35													
41	156-36													
42	156-37													
43	156-43													
44	156-44													
45	156-46													
46	156-47													
47	156-48													
48	156-49													
49	156-5													
50	156-50													
51	156-51													
52	156-52													
53	156-53													
54	156-54													
55	156-56													
56	156-57													
57	156-58													
58	156-59													
59	156-61													
60	156-62													
61	156-63													
62	156-64													
63	156-65													
64	156-66													
65	156-69													
66	156-7													

[단위: 천원]

연번	지번	토지등소유자	종전자산 평가액 (토지+건물) (a)	개별 대지평가 차액 (b)	① 추정 권리가액	개별 지분율 (%)	③개별 추정분담금							
							84A	84B	59	39A	39B	업무시설 (50㎡ 기준)	근린생활시설 (50㎡ 기준)	판매시설 (50㎡ 기준)
②개별 분양가 추정액							1,167,788	1,209,313	943,425	650,859	650,696	629,200	938,200	705,950
67	156-70	㈜이노디앤씨	130,721,478	48,933,518	179,654,996	27.439	178,487,208	178,445,683	178,711,571	179,004,137	179,004,300	1,489,239	1,180,239	1,412,489
68	156-71													
69	156-71													
70	156-73													
71	156-79													
72	156-8													
73	156-80													
74	156-81													
75	156-83													
76	156-84													
77	156-88													
78	156-89													
79	156-90													
80	156-92													
81	156-96													
82	156-98													
83	156-99													
84	157-2													
85	158-2													
86	158-3													
87	158-4													
88	158-5													
89	161													
90	162													
91	166-1													
92	166-2													
93	168													
94	172													
95	173													
96	174													
97	175													
98	176													
99	179													
100	186-1													
101	610													
102	612													
103	624													
104	625													

[단위: 천원]

연번	지번	토지등소유자	종전자산 평가액 (토지+건물) (a)	개별 대지평가 차액 (b)	① 추정 권리가액	개별 지분율 (%)	③개별 추정분담금							
							84A	84B	59	39A	39B	업무시설 (50㎡ 기준)	근린생활시설 (50㎡ 기준)	판매시설 (50㎡ 기준)
②개별 분양가 추정액							1,167,788	1,209,313	943,425	650,859	650,696	629,200	938,200	705,950
105	156-103	임OO	1,062,714	397,810	1,460,524	0.22%	292,736	251,211	517,099	809,665	809,828	831,324	522,324	754,574
106	156-144	이OO	2,230,022	834,773	3,064,795	0.47%	1,897,007	1,855,482	2,121,370	2,413,936	2,414,099	2,435,595	2,126,595	2,358,845
107	156-149	공OO	277,500	103,878	381,378	0.06%	-786,410	-827,935	-562,047	-269,481	-269,318	-247,822	-556,822	-324,572
108	156-177	곽OO	1,004,130	375,880	1,380,009	0.21%	212,221	170,696	436,584	729,150	729,313	750,809	441,809	674,059
109	156-22	권OO	1,148,696	429,996	1,578,692	0.24%	410,904	369,379	635,267	927,833	927,996	949,492	640,492	872,742
110	156-74	박OO	9,667,416	3,618,844	13,286,261	2.03%	12,118,473	12,076,948	12,342,836	12,635,402	12,635,565	12,657,061	12,348,061	12,580,311
111	156-93	정OO외 1인	1,363,104	510,257	1,873,361	0.29%	705,573	664,048	929,936	1,222,502	1,222,665	1,244,161	935,161	1,167,411
112	156-95	김OO	35,880	13,431	49,311	0.01%	-1,118,477	-1,160,002	-894,114	-601,548	-601,385	-579,889	-888,889	-656,639
113	156-97	김OO	657,546	246,142	903,688	0.14%	-264,100	-305,625	-39,737	252,829	252,992	274,488	-34,512	197,738
114	180	박OO외 2인	3,072,555	1,150,162	4,222,717	0.65%	3,054,929	3,013,404	3,279,292	3,571,858	3,572,021	3,593,517	3,284,517	3,516,767
115	180-3	윤OO	593,500	222,167	815,667	0.13%	-352,121	-393,646	-127,758	164,808	164,971	186,467	-122,533	109,717
116	181	OO재단	9,200,815	3,444,179	12,644,994	1.93%	11,477,206	11,435,681	11,701,569	11,994,135	11,994,298	12,015,794	11,706,794	11,939,044
117	183-1	양OO	2,138,642	800,567	2,939,209	0.45%	1,771,421	1,729,896	1,995,784	2,288,350	2,288,513	2,310,009	2,001,009	2,233,259
118	184-1	박OO 외 5인	716,150	268,080	984,230	0.15%	-183,558	-225,083	40,805	333,371	333,534	355,030	46,030	278,280
119	188	음OO 외 3인	6,552,069	2,452,663	9,004,733	1.38%	7,836,945	7,795,420	8,061,308	8,353,874	8,354,037	8,375,533	8,066,533	8,298,783
120	619	주식회사 OO	23,225,550	8,694,117	31,919,667	4.88%	30,751,879	30,710,354	30,976,242	31,268,808	31,268,971	31,290,467	30,981,467	31,213,717
121	626	김OO 외 2인	1,263,516	472,977	1,736,493	0.27%	568,705	527,180	793,068	1,085,634	1,085,797	1,107,293	798,293	1,030,543
122	627	이OO	1,761,565	659,414	2,420,979	0.37%	1,253,191	1,211,666	1,477,554	1,770,120	1,770,283	1,791,779	1,482,779	1,715,029

※ 추정 권리가액-토지등소유자 개별 분양가 추정액=토지등소유자 개별 추정분담금(+ : 부담 / - : 환급)
※ 토지등소유자는 123인으로 수용대상자는 제외하고 작성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3-47호 마포로5구역 제10·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 상기 자료는 금회 정비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종전자산평가액 및 종후자산평가추산액을 기준으로 토지등소유자들에 대한 개별분담금을 추정한 자료로 향후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시 관련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상기 개별 추정분담금은 변경될 수 있음
※ 업무 및 판매, 근린생활시설의 추정분담금은 50㎡을 기준면적으로 산출하였으며, 향후 분양면적 및 층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산출근거

(1) 종후자산평가 추산액 기준의 물건별 토지등소유자 분양가

■ 종후자산평가 추산액 총괄

[단위: 원]

구 분		종후자산 추산가액		비고	종후자산 추산가액 평균가
		하한가	상한가		
공동주택	대지비	152,316,944,500	169,409,211,300	54.11%	160,863,077,900
	건축비	129,178,055,500	143,673,788,700	45.89%	136,425,922,100
	계	281,495,000,000	313,083,000,000	100%	297,289,000,000
업무시설	대지비	116,916,018,100	129,983,042,000	54.11%	123,449,530,050
	건축비	99,154,981,900	110,236,958,000	45.89%	104,695,969,950
	계	216,071,000,000	240,220,000,000	100%	228,145,500,000
근린생활시설	대지비	35,396,056,500	39,333,100,100	54.11%	37,364,578,300
	건축비	30,018,943,500	33,357,899,900	45.89%	31,688,421,700
	계	65,415,000,000	72,691,000,000	100%	69,053,000,000
판매시설	대지비	30,871,378,300	34,329,548,400	54.11%	32,600,463,350
	건축비	26,181,621,700	29,114,451,600	45.89%	27,648,036,650
	계	57,053,000,000	63,444,000,000	100%	60,248,500,000
합 계	대지비	335,500,397,400	373,054,901,800	54.11%	354,277,649,600
	건축비	284,533,602,600	316,383,098,200	45.89%	300,458,350,400
	계	620,034,000,000	689,438,000,000	100%	654,736,000,000

※ 감정평가법인의 (약식)종후자산 추정가액 검토의견서를 기준으로 하여 국토교통부령 제1100호「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추정 평가액의 ±5%로 제시되어 산술평균 가격으로 종후자산평가 추산액을 적용하였으며 향후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금액이 확정

■ 공동주택(아파트)

[단위: 천원]

타입	전용면적		공급(분양)면적		전용 ㎡당 적정 분양가			분양가		
	㎡	평	㎡	평	하한가	상한가	평균	전용 ㎡당	총액	공급(면적) 평당
39A	39.93	12.08	57.24	17.32	15,600	17,000	16,300	16,300	650,859	37,589
39B	39.92	12.08	57.60	17.42	15,600	17,000	16,300	16,300	650,696	37,345
59	59.90	18.12	85.91	25.99	14,900	16,600	15,750	15,750	943,425	36,303
84A	84.93	25.69	119.59	36.18	13,000	14,500	13,750	13,750	1,167,788	32,281
84B	87.95	26.60	119.14	36.04	13,000	14,500	13,750	13,750	1,209,313	33,555

■ 업무 외 근린생활시설 등

[단위: 천원]

구 분	층수	전용면적 (㎡)	계약면적 (㎡)	전용 ㎡당 적정 분양가			분양가 총액
				하한가	상한가	평균	
업무시설	4~21F	16,143.86	33,630.69	12,000	13,350	12,675	204,623,426
	2~3F	1,689.98	3,664.34	11,400	12,600	12,000	20,279,760
	지하1F	296.07	914.88	10,400	11,500	10,950	3,241,967
합 계	-	18,129.91	38,209.92	-	평균가 ▶	12,584	228,145,152
근린생활 시설	지상1F	2,199.46	4,324.10	22,000	24,500	23,250	51,137,445
	지상2F	1,480.60	3,235.71	11,500	12,700	12,100	17,915,260
합 계	-	3,680.06	7,560.70	-	평균가 ▶	18,764	69,052,705
판매시설	지하1F	1,357.50	3,780.84	14,700	16,300	15,500	21,041,250
	지하2F	2,909.63	7,007.31	12,750	14,200	13,475	39,207,264
합 계	-	4,267.13	10,788.15	-	평균가 ▶	14,119	60,248,514

(2) 종전자산평가액

[단위: 원]

구분	대상면적	감정평가법인 1	감정평가법인 2	산술평균
토지부문 (무상양도 제외) ①	12,163.1㎡	251,731,591,000	253,725,169,000	252,728,380,000
건축물 부문 ②	9,870.45㎡	3,561,445,390	3,357,392,750	3,459,419,070
분담금(청산시) 산정시 적용된 종전자산 총액 (①+②)	-	255,293,036,390	257,082,561,750	256,187,799,070

※ 종전자산평가는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기준(23.08.30.)으로 서울시 중구에서 선정한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진행한 사항임
※ 종전자산평가 시 도시정비법 제97조제2항에 따른 무상양도 면적은 제외(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상당 범위에서 무상양도)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1) 교통시설

(1) 도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2	4	30~45	간선도로	1,340 (54)	중구 태평로2가 340-6	서대문구 충정로3가 44-1	일반도로	-	총독부고시 722 ('36.12.26.)	-
기정	소로	1	23	10	집산도로	165 (-)	중구 중림동 500-4	중구 중림동 419-5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412호 ('81.11.13.)	-
기정	소로	1	24	12	집산도로	72 (63)	중구 중림동 500-5	중구 중림동 155-4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1	177	10	집산도로	118 (118)	중구 중림동 156-90	중구 중림동 156-78	일반도로	-	건설부고시 제1963-560호 ('63.9.19.)	-

※ ( )는 구역 내 편입되는 연장임

(2) 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철도	고속철도 (2호선)	중구 중림동 158 일대	1,898.6	감) 9.0	1,889.6	건설부 고시 제203호 ('75.12.20.)	입체적 결정면적 : 대상지 내 281.6㎡

※ 서울시고시 제2021-265호('21.06.10.)에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사항에서 누락된 기결정사항 반영(건설부고시 제203호, '75.12.20. / 서울시고시 제2023-402호, '23.9.14.)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구분	입체적 결정규모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철도	고속철도 (2호선)	중구 중림동 158 일대	길이(m)	23.8	증) 15.9~32.1	39.7~55.9	서울시고시 제2021-265호 ('21.06.10.)	입체적 결정면적 : 대상지 내 281.6㎡
					폭(m)	6.0	증) 0.5~0.8	6.5~6.8		
					높이(m)	-	-	32.8~50.0		
					층수	-	-	지하2층~지하1층		
					면적(㎡)	326.0	감) 9.0	3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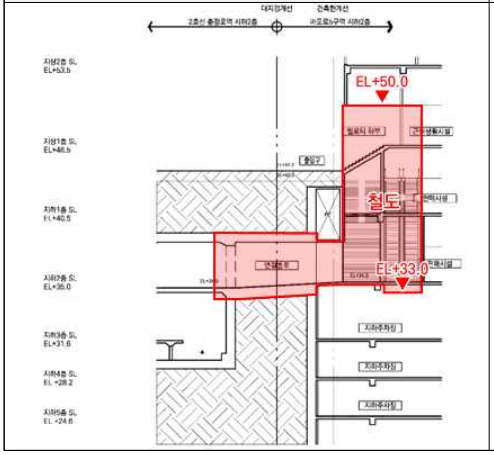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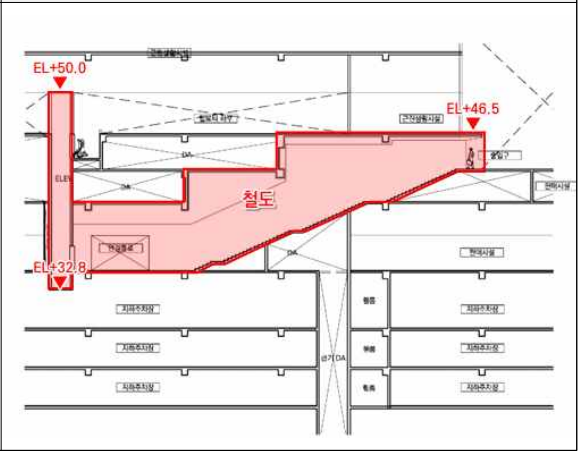
※ 철도의 길이, 폭, 면적은 구적 값으로 향후 측량 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

■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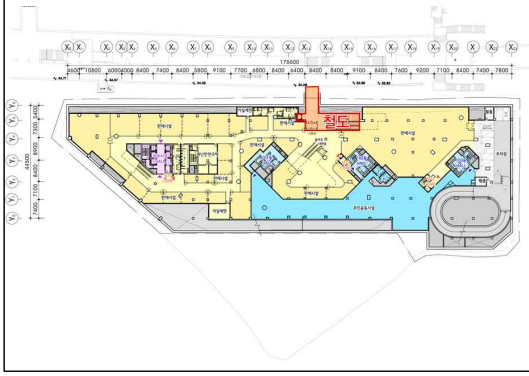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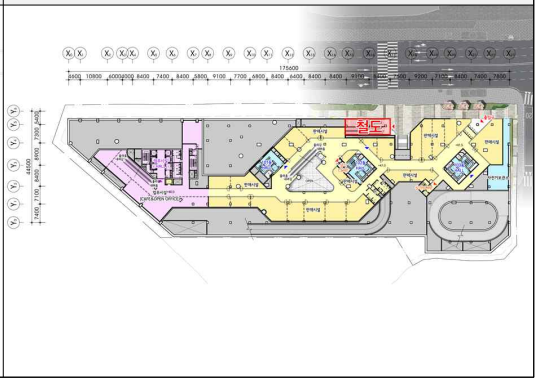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철도	• 입체적 결정 사항 - 길이 : 39.7~55.9m - 폭 : 6.5~6.8m - 높이 : 32.8~50.0m (해수면 기준) - 층수 : 지하2층~지하1층 - 면적 : 317.0㎡	• 서울시 「지하연결통로 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2018)」에 근거, 지상출입구를 신설함에 따라 지하 연결통로의 선형, 면적을 변경하고 이용자 보행편의성 제공을 위해 사유지 편입면적을 입체적 시설로 결정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범위

– 단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 층별 평면도

지하2층	지하1층
	

2) 공간시설

(1) 공원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명칭	세분류		기정	증감	변경		
기정	①	중림 공원	어린이 공원	중구 중림동 156-71 일대	2,828.0	-	2,828.0	서고 1994-327호 ('94.10.07.)	-

3) 공공시설

(1)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폐지	①	사회복지시설	우리동네 거점형 키움센터	중림동 156-71 일대	2,965.0 (연면적)	감) 2,965.0 (연면적)	-	서고 2021-265호 ('21.06.10.)	-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사회복지시설	거점형키움센터 폐지	• 대상지 및 인근의 거점형키움센터 수요를 고려하여 공원(하부)에 중복결정된 사회복지시설의 폐지

마.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 변경

1)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부담) 계획 : 변경

구분	구역명	시행면적 (㎡)	대지면적 (㎡)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국공유지 (무상양도) (㎡)	부담률(%)
기정	마포로 5구역 10·11 지구	13,028.0	9,374.7	4,440.2㎡ = 3,653.3㎡ (도로 : 825.3㎡, 공원 : 2,828.0㎡) + 786.9㎡(건축물)	1,293.3	• 평균부담률 : 16.54% • 부담률산식 = [((825.3㎡+2,828.0㎡+786.9㎡)-1,293.3㎡)/(13,028.0㎡-1,293.3㎡)] = 26.82%
변경	마포로 5구역 10·11 지구	13,028.0	9,374.7	3,653.3㎡ (도로 : 825.3㎡, 공원 : 2,828.0㎡)	825.0	• 평균부담률 : 13.23% 이상 • 부담률산식 = [((825.3㎡+2,828.0㎡)-825.0㎡)/(13,028.0㎡-825.0㎡)] = 23.18%

■ 변경사유 : 국공유지 무상양도 면적 변경 및 이에 따른 건축물 기부채납시설(사회복지시설)의 폐지에 따른 순부담율 변경

※ 정비기반시설 면적은 공부상 면적으로 향후 측량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음

2)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확보) 계획 : 변경

(1)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관리청으로 무상귀속) : 변경없음

구역명	위 치		시설의 종류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비 고
				기정	증 감	변 경	
마포로5구역 10·11지구	중림동	149-57	공원	13.7	-	13.7	
		156-2	공원	30.7	-	30.7	
		156-5	공원	75.5	-	75.5	
		156-30	공원	26.6	-	26.6	
		156-32	공원	17.4	-	17.4	
		156-33	공원	31.2	-	31.2	
		156-43	공원	37.6	-	37.6	
		156-44	공원	52.6	-	52.6	
		156-45	공원	36.4	-	36.4	
		156-46	공원	33.1	-	33.1	
		156-47	공원	12.9	-	12.9	
		156-48	공원	39.7	-	39.7	
		156-49	공원	49.6	-	49.6	
		156-50	공원	39.7	-	39.7	
		156-51	공원	29.7	-	29.7	
		156-52	공원	5.2	-	5.2	
		156-57	공원	3.1	-	3.1	

구역명	위 치		시설의 종류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비 고
				기정	증 감	변 경	
		156-69	공원	97.2	-	97.2	
		156-70	공원	81.2	-	81.2	
		156-71	공원	105.8	-	105.8	
		156-72	공원	84.6	-	84.6	
		156-73	공원	36.4	-	36.4	
		156-74	공원	305.2	-	305.2	
		156-79	공원	64.8	-	64.8	
		156-80	공원	105.8	-	105.8	
		156-81	공원	90.9	-	90.9	
		156-82	공원	107.3	-	107.3	
		156-83	공원	61.5	-	61.5	
		156-84	공원	49.3	-	49.3	
		156-85	공원	53.9	-	53.9	
		156-97	공원	42.0	-	42.0	
		156-131	공원	22.7	-	22.7	
		156-137	공원	9.9	-	9.9	
		156-170	공원	3.8	-	3.8	
		156-177	공원	63.8	-	63.8	
		171	공원	6.5	-	6.5	
		172	공원	2.8	-	2.8	
		179	공원	55.7	-	55.7	
		180	공원	158.8	-	158.8	
		180-3	공원	2.3	-	2.3	
		181	공원	454.5	-	454.5	
		181-1	공원	56.7	-	56.7	
		182	공원	14.5	-	14.5	
		183-1	공원	77.5	-	77.5	
		184-1	공원	25.0	-	25.0	
		185-1	공원	4.2	-	4.2	
		186-1	공원	42.3	-	42.3	
		187-1	공원	6.4	-	6.4	

구역명	위 치		시설의 종류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비 고
				기정	증 감	변 경	
		156-1	도로	6.4	-	6.4	
		156-5	도로	23.4	-	23.4	
		156-10	도로	1.3	-	1.3	
		156-24	도로	9.0	-	9.0	
		156-29	도로	0.8	-	0.8	
		156-30	도로	23.5	-	23.5	
		156-47	도로	4.5	-	4.5	
		156-69	도로	12.9	-	12.9	
		156-70	도로	16.9	-	16.9	
		156-72	도로	26.6	-	26.6	
		156-73	도로	20.9	-	20.9	
		156-74	도로	49.9	-	49.9	
		156-82	도로	5.7	-	5.7	
		156-89	도로	45.3	-	45.3	
		156-90	도로	119.4	-	119.4	
		156-91	도로	12.6	-	12.6	
		156-92	도로	10.8	-	10.8	
		156-93	도로	8.1	-	8.1	
		156-98	도로	48.9	-	48.9	
		156-118	도로	25.1	-	25.1	
		156-120	도로	37.0	-	37.0	
		156-130	도로	4.0	-	4.0	
		156-131	도로	10.3	-	10.3	
		156-156	도로	12.6	-	12.6	
		156-157	도로	5.4	-	5.4	
		156-158	도로	4.6	-	4.6	
		156-170	도로	10.0	-	10.0	
		156-171	도로	107.5	-	107.5	
		584-1	도로	116.2	-	116.2	
		566-1	도로	15.5	-	15.5	
		158-1	도로	4.3	-	4.3	
		158-2	도로	3.2	-	3.2	
		158-3	도로	3.9	-	3.9	
		158-4	도로	1.7	-	1.7	
		158-5	도로	1.3	-	1.3	
		156-150	도로	5.0	-	5.0	
		156-153	도로	2.5	-	2.5	
		156-149	도로	4.2	-	4.2	

구역명	위 치		시설의 종류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비 고
				기정	증 감	변 경	
		156-152	도로	3.0	-	3.0	
		156-106	도로	1.1	-	1.1	
합계				3,653.3	-	3,653.3	

※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은 공부상 면적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측량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음

(2)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사업시행자에 무상양도) : 변경

구역명	위 치		시설의 종류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비 고
				기정	증 감	변 경	
마포로5구역 10·11지구	중림동	149-57	현황도로	179.8	-	179.8	중구
		149-59	현황도로	26.1	감) 26.1	-	중구
		156-4	공원	56.2	감) 56.2	-	중구
		156-19	공원	57.5	-	57.5	중구
		156-21	공원	71.1	감) 71.1	-	중구
		156-27	공원	29.8	감) 29.8	-	중구
		156-39	공원	29.8	감) 29.8	-	중구
		156-40	공원	43.0	감) 4.1	38.9	중구
		156-67	공원	29.8	감) 3.2	26.6	중구
		156-68	공원	23.1	감) 23.1	-	중구
		156-136	공원	33.1	-	33.1	중구
		156-151	공원	22.4	감) 14.2	8.2	서울시
		156-152	도로	3.0	감) 3.0	-	중구
		156-153	공원, 도로	8.6	감) 8.6	-	중구
		156-155	현황도로	11.2	감) 11.2	-	중구
		156-157	도로	5.4	감) 5.4	-	중구
		156-158	도로	4.6	감) 4.6	-	중구
		156-170	도로	11.5	-	11.5	중구
		156-171	도로	114.4	-	114.4	서울시
		156-172	현황도로	50.6	감) 6.3	44.3	서울시
		157-1	공원	135.5	감) 135.5	-	중구
		167-1	현황도로	45.3	-	45.3	서울시
		419-11	공원	72.5	-	72.5	중구
		623-1	현황도로	22.4	감) 22.4	-	중구
		623-2	현황도로	3.0	감) 3.0	-	중구

구역명	위 치		시설의 종류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비 고
				기정	증 감	변 경	
		623-4	현황도로	7.4	감) 7.4	-	중구
		623-5	현황도로	63.3	-	63.3	서울시
		623-7	현황도로	0.7	감) 0.7	-	중구
		623-8	현황도로	0.5	감) 0.5	-	중구
		566-1	도로	15.5	-	15.5	서울시
		584-1	도로	116.2	감) 2.1	114.1	서울시
합계				1,293.3	감) 468.3	825.0	

■ 변경사유 :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협의한 사항을 반영하여 국공유지 무상양도 면적 변경
※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은 공부상 면적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측량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음

(3)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사업시행자에 유상매입) : 변경

구역명	위치		시설의 종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마포로5구역 10·11지구	중림동	156-2	현황도로	30.7	-	30.7	기획재정부
		181-1	현황도로	61.5	-	61.5	기획재정부
		149-59	현황도로	-	증) 26.1	26.1	중구
		156-4	공원	-	증) 56.2	56.2	중구
		156-21	공원	-	증) 71.1	71.1	중구
		156-27	공원	-	증) 29.8	29.8	중구
		156-39	공원	-	증) 29.8	29.8	중구
		156-40	공원	-	증) 4.1	4.1	중구
		156-67	공원	-	증) 3.2	3.2	중구
		156-68	공원	-	증) 23.1	23.1	중구
		156-151	공원	-	증) 14.2	14.2	서울시
		156-152	도로	-	증) 3.0	3.0	중구
		156-153	공원, 도로	-	증) 8.6	8.6	중구
		156-155	현황도로	-	증) 11.2	11.2	중구
		156-157	도로	-	증) 5.4	5.4	중구

구역명	위치		시설의 종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156-158	도로	-	증) 4.6	4.6	중구
		156-172	현황도로	-	증) 6.3	6.3	서울시
		157-1	공원	-	증) 135.5	135.5	중구
		623-1	현황도로	-	증) 22.4	22.4	중구
		623-2	현황도로	-	증) 3.0	3.0	중구
		623-4	현황도로	-	증) 7.4	7.4	중구
		623-7	현황도로	-	증) 0.7	0.7	중구
		623-8	현황도로	-	증) 0.5	0.5	중구
		584-1	도로	-	증) 2.1	2.1	서울시
합계				92.2	증) 468.3	560.5	-

■ 변경사유 :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협의한 사항을 반영하여 국공유지 유상매입 면적 변경
※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은 공부상 면적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측량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음

바.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신설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신설	주민공동시설	중림동 157-2번지 일대	-	-	1,205.5	-
신설	경로당	중림동 157-2번지 일대	-	-	80.5	-
신설	주민운동시설	중림동 157-2번지 일대	-	-	1,058.6	-
신설	관리사무소	중림동 157-2번지 일대	-	-	67.7	-
신설	경비실	중림동 157-2번지 일대	-	-	33.2	-

※ 향후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시 건축물의 면적 · 층고 · 형태는 조정될 수 있음

사. 건축물의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명칭	구역구분 면적(㎡)	가구 또는 획지 구분 명칭	가구 또는 획지 구분 면적(㎡)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기정	마포로 5구역 10·11지구	13,028.0	획지	9,374.7	중구 중림동 157-2번지 일대	주거	60이하	650이하	88이하[1]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구분		세대수(세대)	비율(%)	비고
계		421	100.0	
일반분양	48A	165	39.2	
	48B	134	31.8	
	소 계	299	71.0	
공공임대	48A	15	3.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4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36	15	3.6	
	19	23	5.4	
	소 계	53	12.6	
공공임대	48A	61	14.5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22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36	8	1.9	
	소 계	69	16.4	

심의 완화 사항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① 기준용적률 : 300%

② 허용용적률 완화량 : 100%

목적	인센티브대상	요 건	인센티브		인센티브량
친환경 개발 (의무)	녹색건축물 인증	그린2등급(우수)	기준등급 준수 시 50%		100% 적용
	건축물에너지소비 총량제	260 (kWh/㎡ · y)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10%이상(비주거), 6.5%이상(주거)			
보행가로 활성화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재생관리지침에 따라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시	정량 부여	30%	
	공공보행통로 (지하보행통로 포함)	재생관리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조성 시	정률 부여	20%	

③ 상한용적률 완화량 : 154.34% ⇒ 150% 적용

정비 기반시설 (토지, 건축물)	산식 =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토지+0.7×α건축물) [α = 공공시설부지제공면적/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400%×[(1.3x0.989x(3,653.3㎡-1,293.3㎡)/9,374.7㎡) + (0.7×786.9㎡/9,374.7㎡)] = 152.96%
지하철 연결통로	산식 = 용적률×(지하철출입구등의 연면적/건물 연면적) 이내 = 400%×(326.0㎡/94,495.77㎡)] = 1.38%

④ 추가 완화량 : 100%

공공임대 주택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인센티브 추가 완화 - 증가되는 용적률(100%)의 1/2이상 공공임대주택 건립 시 - 건립세대 수 : 69세대

※ ①(300%) + ②(100%) + ③(150%) + ④(100%) = 650% 이하 적용

높이

○ 높이 완화량 : 88m 적용

완화높이	산식 = 기준높이×(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대지면적) = 70m×[(4,440.2㎡-1,293.3㎡)/(13,028.0㎡-1,293.3㎡)] = 18.8m → 18m 적용

건축물의 건축선 및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서소문로변 5m / 중림로변 3m / 이면도로변 2m

○ 공공보행통로(폐지)

○ 공개공지 위치 지정

공개 공지	공개공지 계획면적 : 945㎡(10.08%) - 산식 = 피로티 하부면적(727.22㎡÷2) + 581.39㎡ = 945㎡ ※ 공개공지 설치면적은 1,308.61㎡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 따라 필로티 구조로 구획된 면적은 2분의 1로 한정하여 면적 산정함

1) 2025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중 마포 지역중심 높이완화 기준 적용 (기준높이 70m, 완화높이 90m)

구분	지 구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비고
	명 칭	면적(㎡)	명칭	면적(㎡)				기준	허용	상한		
변경	마포로 5구역 10·11지구	13,028.0	획지	9,374.7	중구 중림동 157-2 일대	주거, 업무, 근생, 판매	60이하	300	400	650이하	86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구 분		세대수(세대)	비율(%)	비 고
계		299	100.0	
일반 분양	84	113	37.8	
	59	85	28.4	
	39	7	2.3	
	소 계	205	68.5	
공공 임대	59	6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4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39	31	10.4	
	소 계	37	12.4	
공공 임대	84	2	0.7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22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59	47	15.7	
	39	8	2.7	
	소 계	57	19.1	

심의 완화 사항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용적률 계획 : ①(300%) + ②(100%) + ③(250%) ⇒ 650% 이하 적용

① 기준용적률 : 300%

② 허용용적률 완화량 : 100%

목적		인센티브대상	요 건	인센티브		인센티브량
의무	친환경 개발	녹색건축물 인증	그린2등급(우수)	기준 등급 준수 시	50%	100% 적용
		건축물에너지소비 총량제	260 (kWh/㎡ · y)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10%이상(비주거), 6.5%이상(주거)			
계획 유도	보행가로 활성화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재생관리지침에 따라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시	정량 부여	30%	
	안전 · 방재	방재 관련시설	재생관리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조성 시	정률 부여	20%	

③ 상한용적률 완화량 : 256.27% ⇒ 250%적용

정비 기반시설 (공원, 도로)	산식 =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토지+0.7×α건축물)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400%×[(1.3×0.989×(3,653.3㎡-825.0㎡)/9,374.7㎡)] = 155.14%
지하철 연결통로	산식 = 용적률×(지하철출입구 등의 연면적/건물 연면적) 이내 = 400%×(281.6㎡/99,899.62㎡) = 1.13%
공공 임대주택 (추가완화)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인센티브 추가 완화 = 100% - 증가되는 용적률(100%)의 1/2이상 공공임대주택 건립 시 - 건립세대 수 : 57세대

높이

○ 높이 완화량 : 86m 이하 적용

완화높이	산식 = 기준높이×(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대지면적) = 70m×[(3,653.3㎡-825.0㎡)/(13,028.0㎡-825.0㎡)] = 16.2m → 16m 적용

건축물의 건축선 및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서소문로변 5m / 중림로변 3m / 이면도로변 2m

○ 공개공지 위치 지정 : 서소문로 및 중림로 교차점 1개소

공개 공지	공개공지 계획면적 : 945㎡ (법정면적 : 937.47㎡) - 산식 = 피로티 하부면적(641.02㎡÷2) + 624.49㎡ = 945㎡ ※ 공개공지 설치면적은 1,265.51㎡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에 따라 필로티 구조로 구획된 면적은 2분의 1로 한정하여 면적 산정함

○ 공공보행통로 지정(1개소)

- 위치 및 폭원 : 서소문로(횡단보도) ~ 중림공원 (B=6.0m)
- 피로티형으로 조성 가능하며, 유효높이는 5m 이상으로 계획

II.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마포로5구역 10·11지구	중구 중림동 157-2번지 일대	13,028.0	-	13,028.0	서고시 제2021-265호 ('21.6.10.)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 · 지구 결정 조서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13,028.0	-	13,028.0	100.0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2,933.5	-	12,933.5	99.3	
	제3종일반주거지역	53.8	-	53.8	0.4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40.7	-	40.7	0.3	

2) 용도지구 결정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	방화지구	태평로2가~아현동간	28,980.0 (2,284.5)	-	-

※ ( )는 구역 내 편입되는 면적임

나. 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2	4	30~45	간선 도로	1,340 (54)	중구 태평로2가 340-6	서대문구 충정로3가 44-1	일반 도로	-	총독부고시 722 ('36.12.26.)	-
기정	소로	1	23	10	집산 도로	165 (-)	중구 중림동 500-4	중구 중림동 419-5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412호 ('81.11.13.)	-
기정	소로	1	24	12	집산 도로	72 (63)	중구 중림동 500-5	중구 중림동 155-4	일반 도로	-	-	-
기정	소로	1	177	10	집산 도로	118 (118)	중구 중림동 156-90	중구 중림동 156-78	일반 도로	-	건설부고시 제1963-560호 ('63.9.19.)	-

※ ( )는 구역 내 편입되는 연장임

2) 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①	철도	고속 철도 (2호선)	중구 중림동 158 일대	1,898.6	감) 9.0	1,889.6	건설부 고시 제203호 ('75.12.20.)	입체적 결정면적 : 대상지 내 281.6㎡

※ 서울시고시 제2021-265호('21.06.10.)에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사항에서 누락된 기결정사항 반영(건설부고시 제203호, '75.12.20. / 서울시고시 제2023-402호, '23.9.14.)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구분	입체적 결정규모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철도	고속 철도 (2호선)	중림동 158 일대	길이(m)	23.8	증) 15.9~32.1	39.7~55.9	서울시고시 제2021-265호 ('21.06.10.)	입체적 결정면적 : 대상지 내 281.6㎡
					폭(m)	6.0	증) 0.5~0.8	6.5~6.8		
					높이(m)	-	-	32.8~50.0		
					층수	-	-	지하2층~지하1층		
					면적(㎡)	326.0	감) 9.0	3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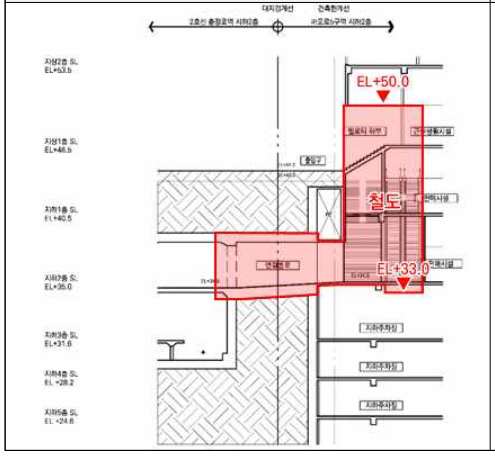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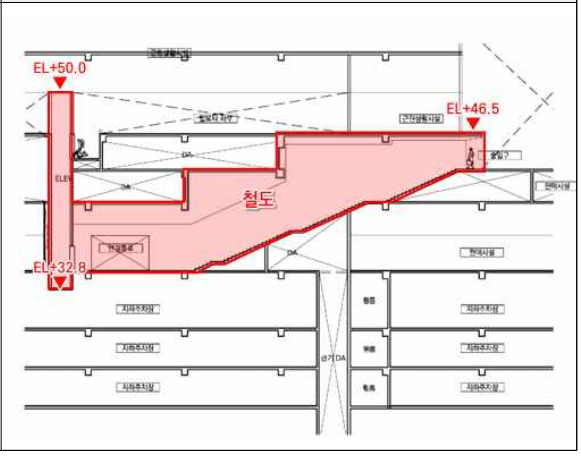
※ 철도의 길이, 폭, 면적은 구적 값으로 향후 측량 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

■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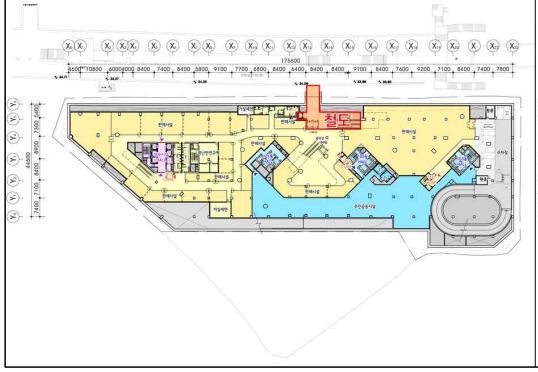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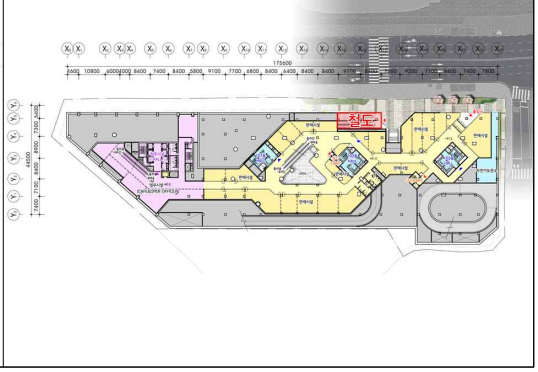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철도	• 입체적 결정 사항 - 길이 : 39.7~55.9m - 폭 : 6.5~6.8m - 높이 : 32.8~50.0m (해수면 기준) - 층수 : 지하2층~지하1층 - 면적 : 317.0㎡	• 서울시 「지하연결통로 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2018)」에 근거, 지상출입구를 신설함에 따라 지하 연결통로의 선형, 면적을 변경하고 이용자 보행편의성 제공을 위해 사유지 편입면적을 입체적 시설로 결정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범위

– 단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 층별 평면도

지하2층	지하1층
	

3)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①	중림공원	어린이공원	중구 중림동 156-71 일대	2,828.0	-	2,828.0	서고 1994-327호 ('94.10.07.)	-

4)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폐지	①	사회복지시설	우리동네 거점형 키움센터	중림동 156-71 일대	2,965.0 (연면적)	감) 2,965.0 (연면적)	-	서고 2021-265호 ('21.06.10.)	-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사회복지시설	거점형키움센터 폐지	• 대상지 및 인근의 거점형키움센터 수요를 고려하여 공원(하부)에 중복결정된 사회복지시설의 폐지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가 구	면 적(㎡)			비 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획 지	소 계	9,374.7	-	9,374.7	72.0	-
	획지	9,374.7	-	9,374.7	72.0	-

나.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지구명	용도	비 고
기정	허용용도	제10,11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2호의 공동주택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제7호의 판매시설 - 제14호의 업무시설	-

※ 202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마포지역(일반업무지역, 준주거지역) 주용도는 업무, 판매, 근린생활, 주거, 숙박 중 주용도 선택하여 계획

2)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1) 건폐율 계획

구분	용도지역	건폐율	비 고
기정	준주거지역	60% 이하	-

(2) 용적률 계획

구분	용적률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기정	300% 이하	400% 이하	650% 이하	-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구분	인센티브				비 고
	친환경개발 (녹색건축물 인증, 건축물에너지소비 총량제,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보행가로활성화		안전 · 방재 (방재관련시설)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공공보행통로		
기정	50.0%	30.0%	20.0%	-	총 100.0%
변경	50.0%	30.0%	-	20.0%	총 100.0%

■ 상한용적률 완화 사항

구분	용적률 완화				비 고
	토지 기부채납	건축물 기부채납	지하철 연결통로	공공임대주택 건립	
기정	129.47%	23.49%	1.38%	100.0%	순부담률 26.82%
	254.34%(250% 적용)				
변경	155.14%	-	1.13%	100.0%	순부담률 23.18%
	256.27%(250% 적용)				

※ 마포로5구역 평균부담률 13.23% 이상

(3) 높이 계획

구분	지역	높이기준	비 고
기정	준주거지역 (마포로 5구역 10·11지구 획지)	88m 이하	「2025 서울특별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90m 이하의 범위에서 기부채납에 따른 높이완화 가능 (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에 따른 높이완화 16m 적용)
변경	준주거지역 (마포로 5구역 10·11지구 획지)	86m 이하	

다. 건축물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기정	건축 한계선	서소문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 후퇴
		중림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
		이면도로변(서소문로6길, 중림로5길)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후퇴

라.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기정	공개공지	도면에 표기	• 서소문로변 및 중림로변이 교차하는 가각부에 공개공지 조성
기정	전면공지	서소문로변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간은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 - 폭원 : 5m
		중림로변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간은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 - 폭원 : 3m
		이면도로변(서소문로6길, 중림로5길)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간은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 - 폭원 : 2m
신설	공공보행통로	도면에 표기	• 서소문로변과 중림공원 간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지정(1개소) - 서소문로(횡단보도)~중림공원(B=6.0m)

III. 2023 제14차(‘23.09.20)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구분	심의결과	의견사항
제14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	[추후반영] • 차량진출입구를 2개소로 분리하였으나, 북측 서소문로 6길변 출입구는 서소문로에서의 부영향이 우려되는 바, 향후 교통영향평가시 서소문로6길변 완화차로 확보 또는 중림로변으로의 차량진출입구 통합조정 등 검토 필요 • 차량진출입구 계획과 연계된 건축물 내 주차장 램프계획의 적정성 검토 필요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시 대상지 서측 공개공지계획은 주요 간선도로(서소문로, 중림로)변 가각부의 개방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로티형 계획의 조정 가능성을 면밀 검토하고, 공개공지의 위치성을 고려하여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시할 것.

IV. 관련도면 : 붙임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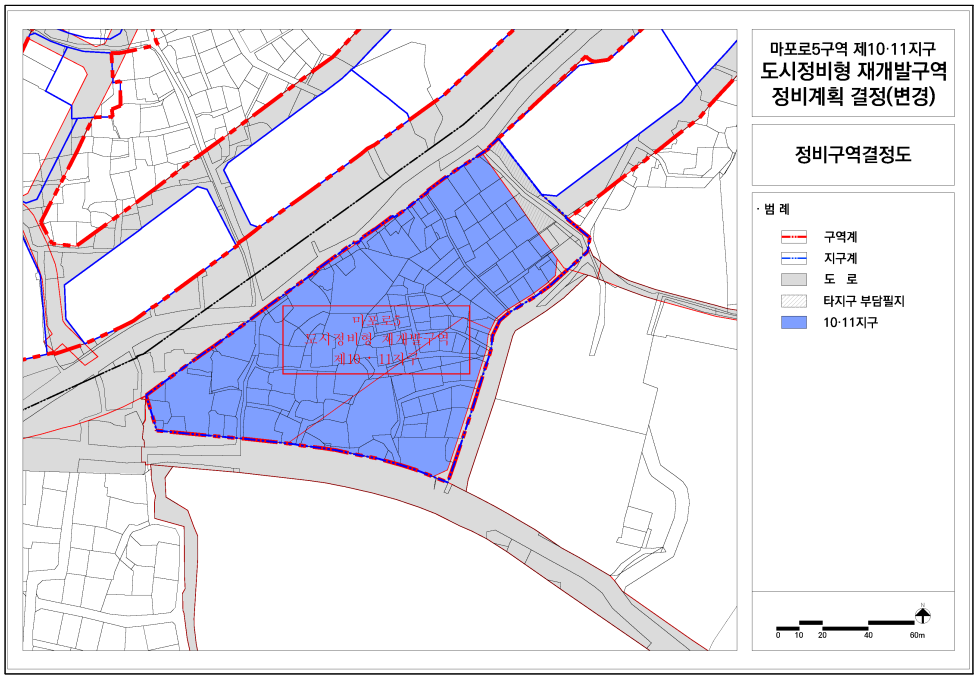
V. 열람장소

○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과(☎02-2133-8493) 및 중구 도심정비과(☎02-3396-5775)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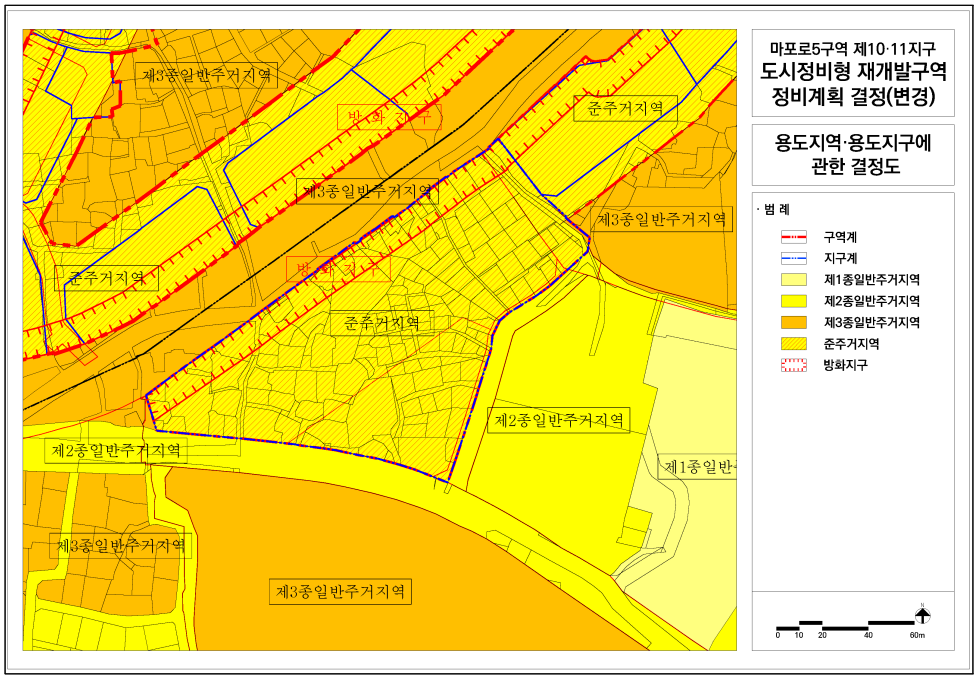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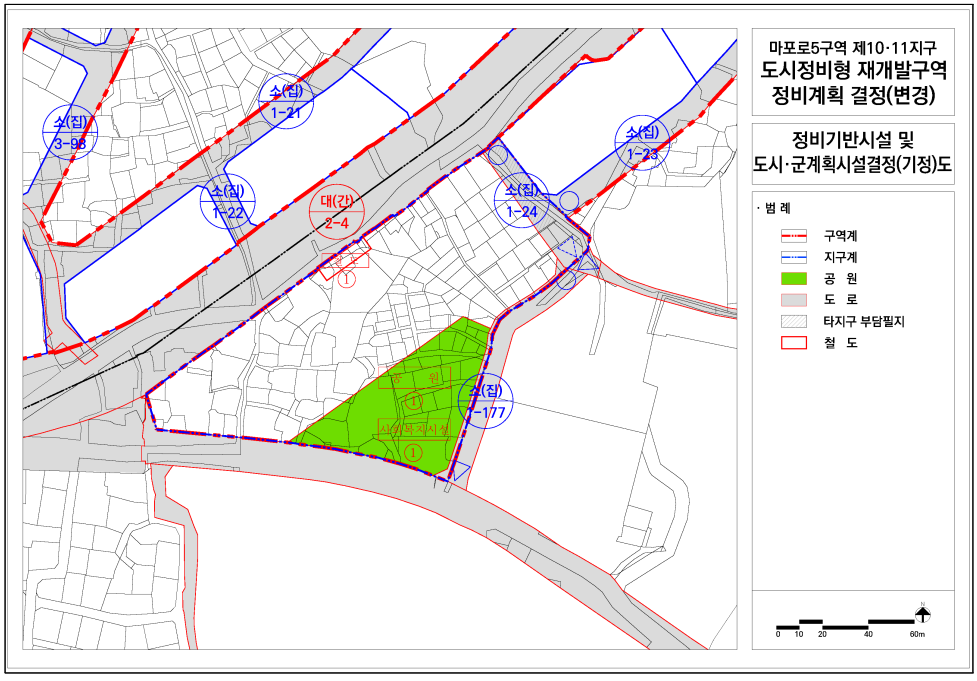
○ 정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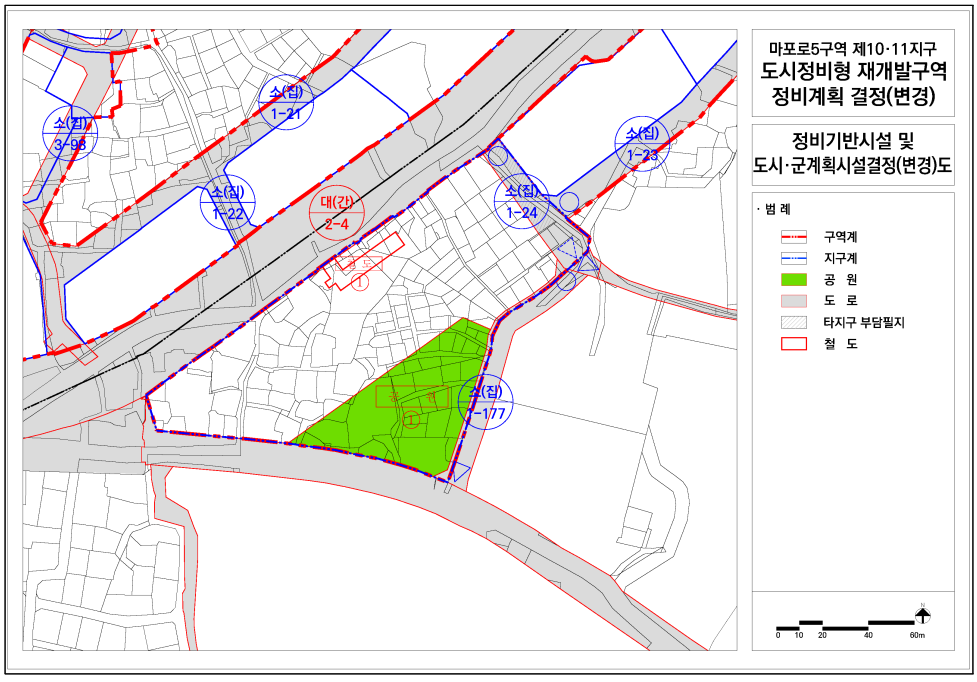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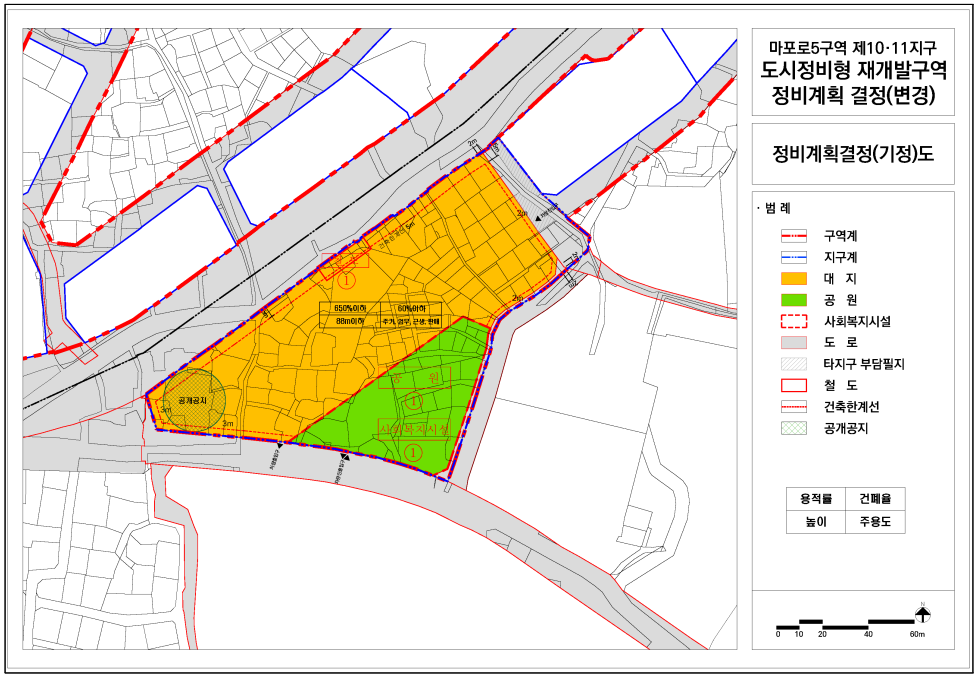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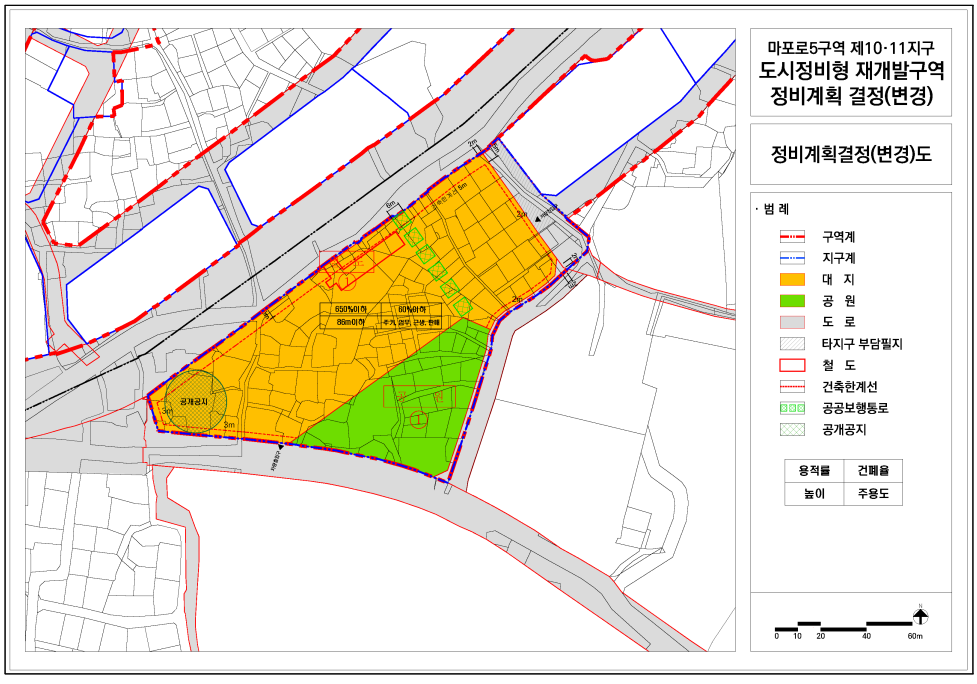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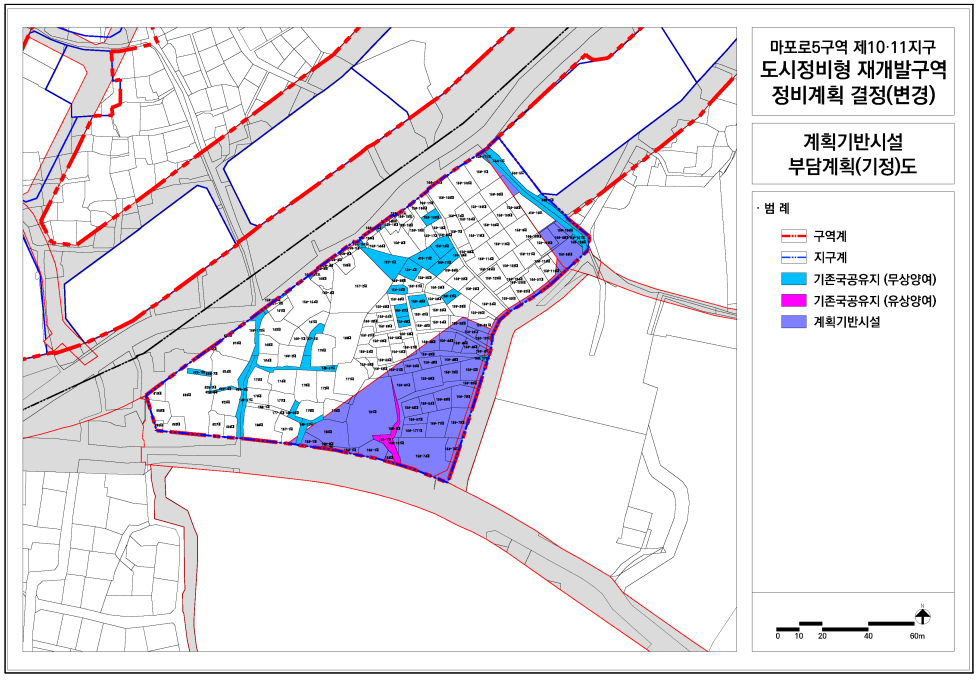
○ 정비계획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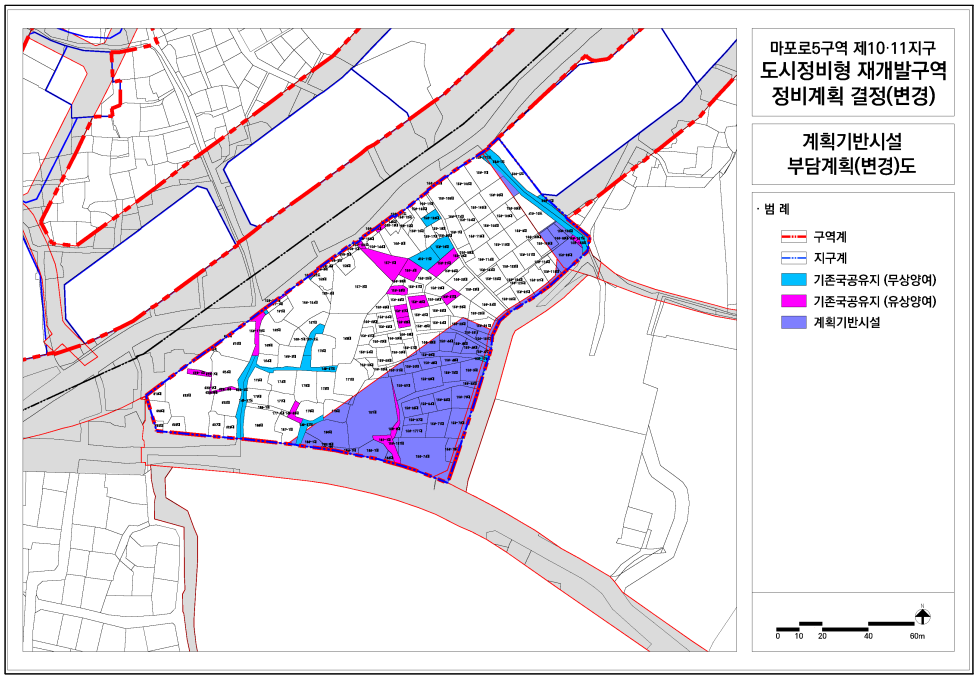
○ 정비계획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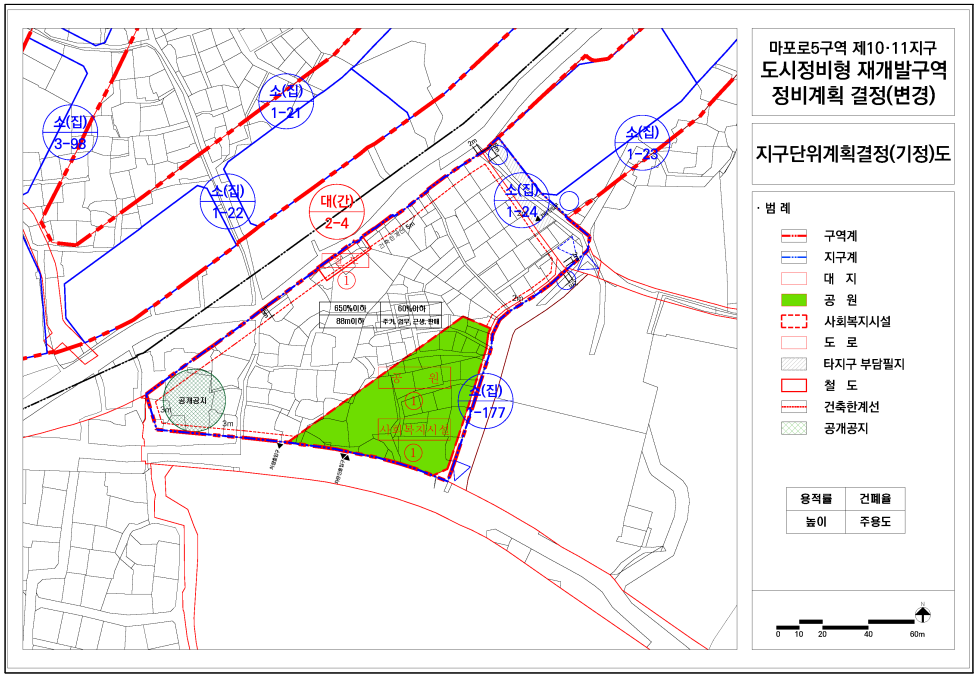
○ 계획기반시설 부담계획(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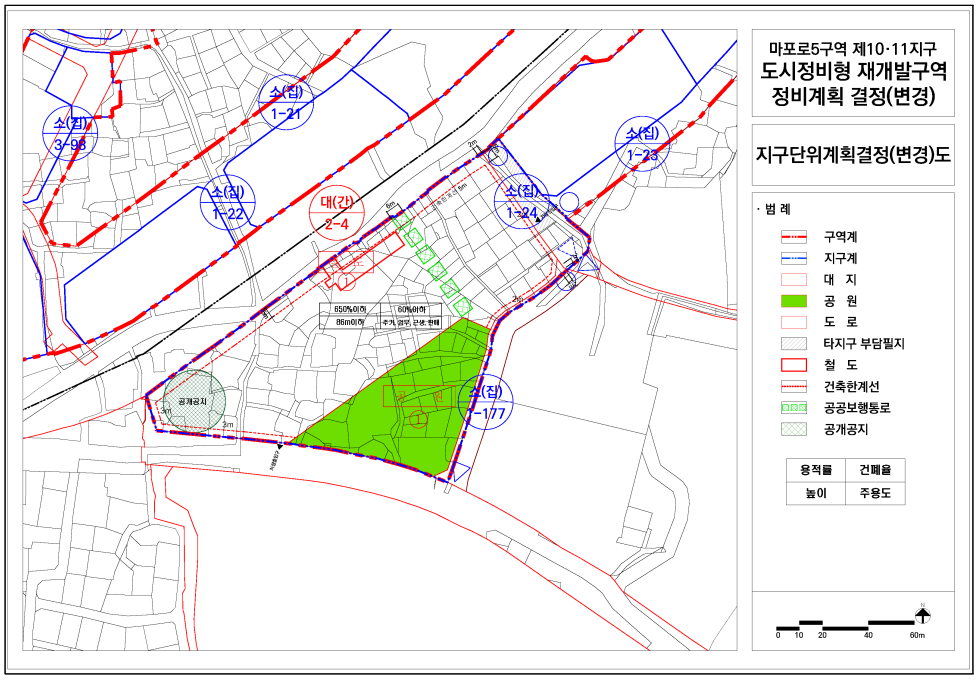
○ 계획기반시설 부담계획(변경)도



○ 지구단위계획 결정(기정)도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96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양천구 신월동 102-33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
   가. 명 칭: 신월동 102-33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나. 위치 및 면적

연번	자치구	위 치	면적(㎡)		권리산정기준일	비 고
1	양천구	신월동 102-33일대	합계	74,094.0		
			기존	75,000.0	2022. 6. 23.	
			제척	4,865.7	2022. 6. 23.(실효)	국공유지 도로 제외
			추가	3,959.7	2023. 12. 28.	가로구역 내 미포함필지 추가

2. 권리산정기준일: 2023. 12. 28.(구역 확대 3,959.7㎡ 부분)
○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날 아래 행위는 현금청산 대상임
(단, 권리산정기준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득했을 경우 분양대상으로 인정함)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 아울러,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였을 경우라도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관련 법률과 서울시 조례 규정에 충족되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음

3. 지정 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 억제를 위하여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 규정에 따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하되,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 관리계획이 승인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

6. 안내사항

○ 본 모아타운 대상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 02-2133-823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 지역 내 모아주택 모아타운 관련 사업추진 등에 대한 문의 사항은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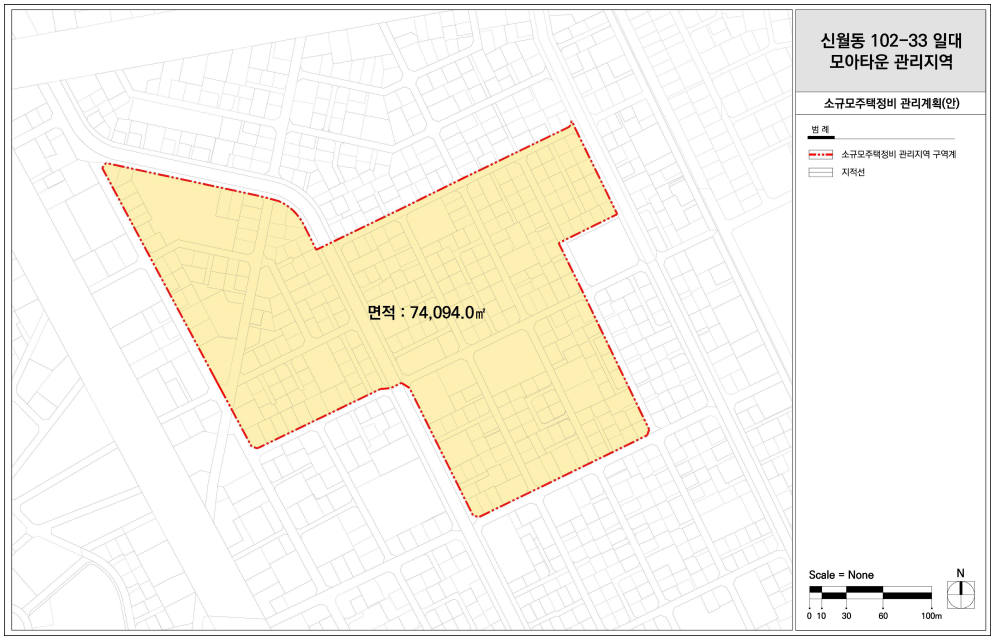
※ 본 고시는 향후 추진될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추진 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되, 소유권 이전 및 건축허가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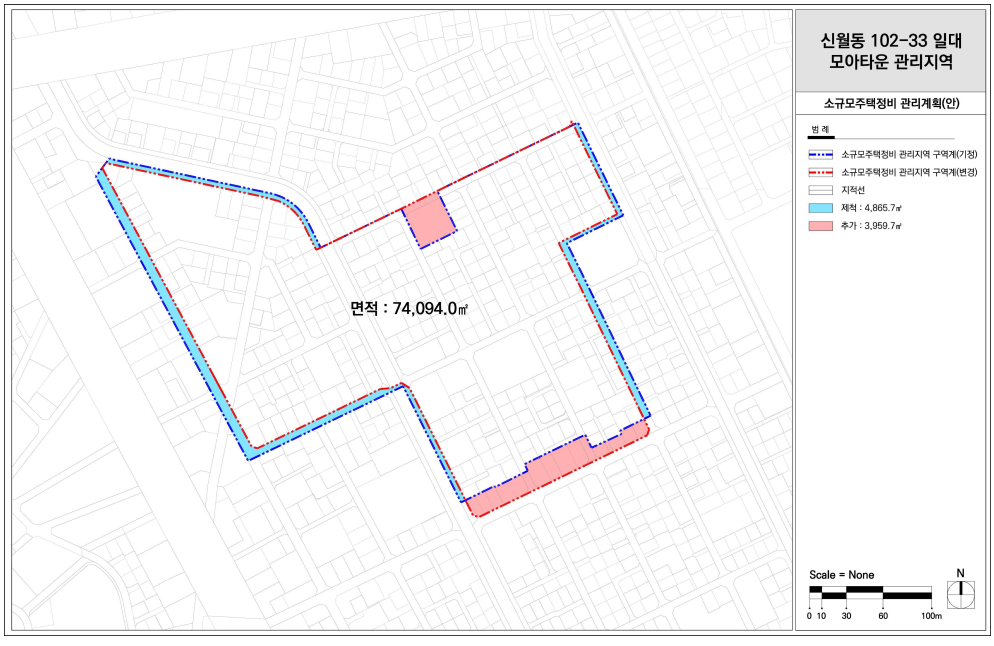
※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지정고시 시, 일부 면적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관계도면(양천구 신월동 102-33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

변경후



제척·추가구역 구분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97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강서구 화곡1동 424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

강서구 화곡1동 424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을 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

가. 명 칭 : 강서구 화곡1동 424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나. 위치 및 면적

구분	자치구	위 치	면적(㎡)	권리산정기준일	비 고
기정	강서구	화곡동 424 일대	59,000	`22. 1. 20.	
변경	강서구	화곡동 424 일대	54,767	`22. 1. 20.	

2. 권리산정기준일 : 2022. 1. 20.

※ 나대지,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다세대주택 등으로 건축하여 지분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

3. 지정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를 위하여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 취득, 건축물의 신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 규정에 따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2에 따라 관리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에 한하여 적용하되,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4년 내(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8호에 따른 자동

실효 기간에서 2년 연장)에 관리계획이 승인되지 않거나,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

6. 안내사항

○ 본 모아타운 대상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 02-2133-8235)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 지역 내 모아주택/모아타운 관련 사업추진 등에 대한 문의 사항은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 02-2600-684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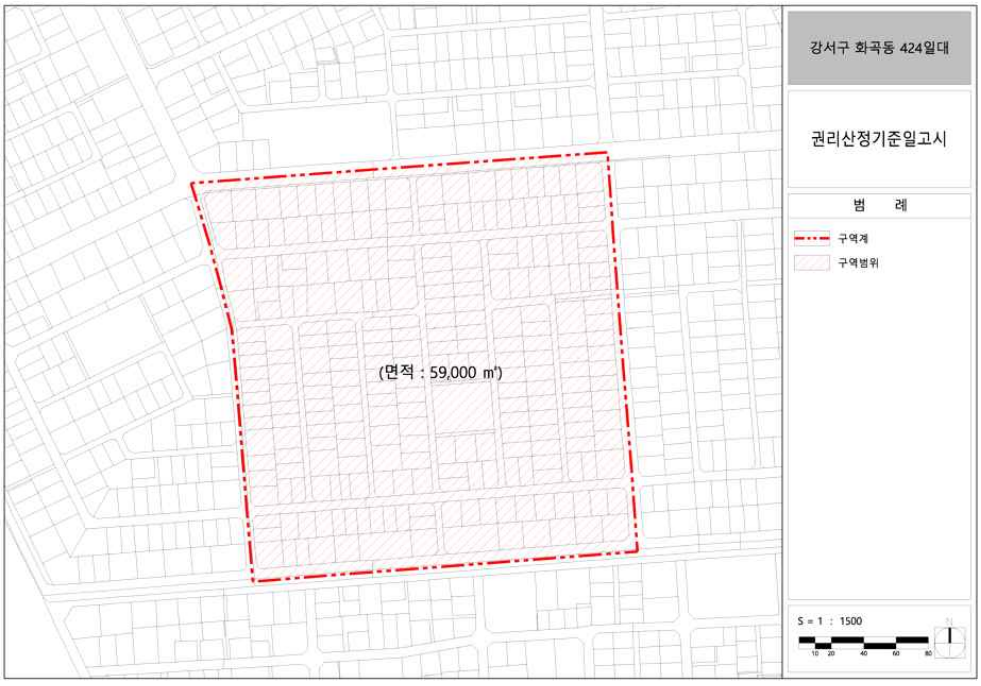
※ 본 고시는 향후 추진될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추진 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되, 소유권 이전 및 건축허가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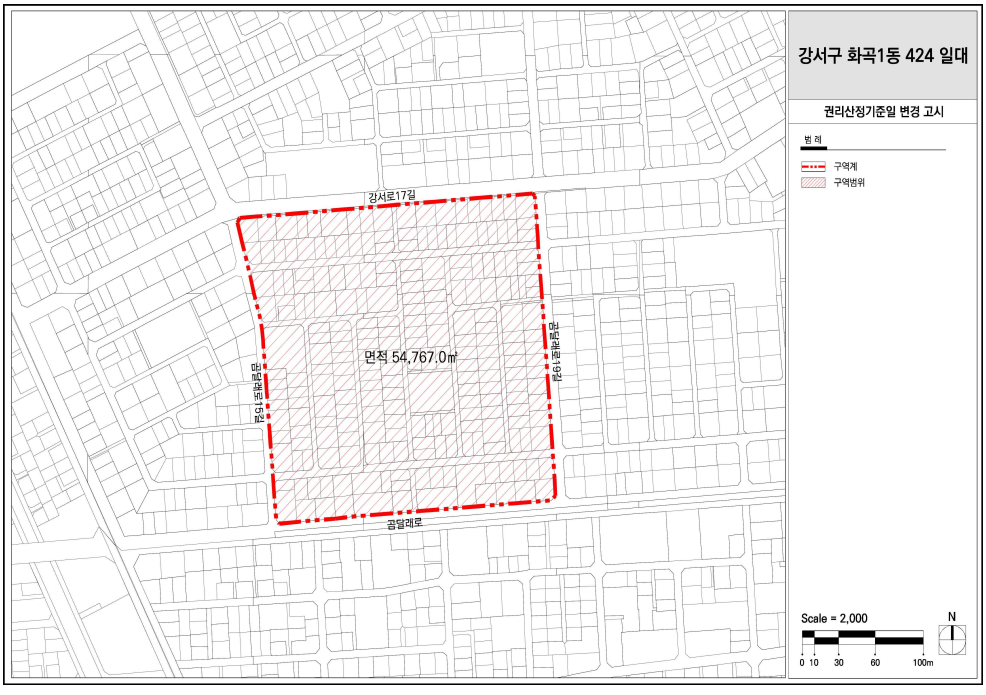
※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지정고시 시, 일부 면적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관계도면(강서구 화곡1동 424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

변경전



변경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98호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정정 고시

「문화재보호법」 제70조(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시·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등),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8조(지정문화재)·제11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장

1.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정정 개요
 가. 정정 개요

지정 종별	지정 명칭	수량	규격(cm)	조성연대	보관장소 (소유자/ 관리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553호	화계사 대웅전 상량문 및 복장물 일괄	3건 19점	98.5×61.5 외	1870년	강북구 (대한불교조계종 화계사)

 나. 정정 사유
 : 문화재의 수량을 정정함

2. 정정 일자 : 서울시보 고시 일자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문화재정책과(☎ 02-2133-26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99호

도시관리계획[공항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318호(2002.8.1.)로 구역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60호(2009.9.17.)로 변경(재정비) 결정 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87호(2013.11.21.)로 변경(재정비) 결정되고, 강서구고시 제2018-64호(2018.6.14.)로 변경 결정된 「공항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2023년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3.11.8.) 및 재열람공고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취지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건립된 등촌동 505-7번지 관광숙박시설(지정용도)을 업무시설로 변경 하기 위해 지정용도 폐지 및 획지계획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Ⅱ.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공항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강서구 마곡동, 화곡동, 내발산동, 등촌동, 염창동, 공항동 일대	440,474 (4,442.4)	-	440,474 (4,442.4)	서고 제318호 (2002.08.01.)	

주) 괄호는 대상지(등촌동 505-2, 505-7번지 일원) 면적임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최대개발규모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최대개발규모(㎡)	비 고
간선도로변	3,000	공항로, 화곡로, 강서로, 등촌로변
이면부	1,500	이면도로변

예외) 1. 특별계획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및 기 개발된 대지규모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2. 획지계획 및 공동개발(지정·권장) 계획이 수립된 필지의 경우

다. 획지 및 공동개발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계획내용	비고
				지번	면적(㎡)		
기정	E-5-a	8	4,953.4	505-13	150.1	단독개발	
				505-14	10.6	공동개발(권장)	
				505-10	570.6	공동개발(지정)	동일소유
				505-11	127.6		
				505-15	23.5		
				505-1	312.7	획지	
				505-2	2,733.8		
				505-7	513.5	단독개발	
				505-6	511.0	단독개발	
변경	E-5-a	8	4,953.4	505-13	150.1	획지	동일소유
				505-14	10.6		
				505-10	570.6		
				505-11	127.6		
				505-15	23.5		
				505-1	312.7		
				505-2	2,733.8		
				505-7	513.5		
				505-6	511.0	단독개발	

※ 금회 변경사항인 도면번호 E-5-a에 가구번호 8에 해당되는 사항만 명기

■ 획지 및 공동개발에 관한 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비고
E-5-a	8	•획지계획 변경(505-2번지 일원) - 3,046.5㎡ → 4,442.4㎡(증1,395.9㎡)	•505-7번지 관광숙박시설 지정용도를 폐지함에 따라 관광숙박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완화받은 용적률의 현행화를 위해 505-2번지 일원 획지계획 변경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건축물의 권장용도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계획지침	비고
1	일반상업지역 (간선도로변)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판매시설 중 상점 • 업무시설(바닥면적 1,000㎡이상) •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제외)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2	일반상업지역 (이면부)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 판매시설 중 상점 • 업무시설	
3	주거지역 (간선도로변)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판매시설 중 상점 • 업무시설(바닥면적 1,000㎡이상) •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제외)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아동센터 • 노유자 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4	주거지역 (이면부)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아동센터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 노유자 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주1)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 참조

주2) 전층 권장용도는 당해 용도가 차지하는 바닥면적의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바닥면적 산정시 주차장 면적 및 공용면적 제외)의 20%이상(상업지역은 30%이상 준수시 초과부분에 대하여 적용)인 경우 권장용도가 수용된 것으로 본다.

(2) 건축물의 불허용도 결정조서 : 변경없음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전층 불허용도</th><th>1층 불허용도</th></tr>
<tr><td>A1</td><td>일반
상업
지역
(간선도로변)</td><td>• 단독주택
• 공동주택 [주거복합 건축물 제외. 단,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
<table><tr><th>'91.5.11이전 상업지역</th><th>'91.5.11이후 상업지역으로 상향된 경우</th></tr><tr><td>전체 용적률의 15%이상</td><td>전체 연면적의 30%이상</td></tr></table>•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 공장(아파트형 공장 제외)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td><td>•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td></tr>
<tr><td>A2</td><td>일반
상업
지역
(이면부)</td><td>• 단독주택
• 공동주택 [주거복합 건축물 제외. 단,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
<table><tr><th>'91.5.11이전 상업지역</th><th>'91.5.11이후 상업지역으로 상향된 경우</th></tr><tr><td>전체 용적률의 15%이상</td><td>전체 연면적의 30%이상</td></tr></table>•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위락시설,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아파트형 공장 제외), 창고시설</td><td>-</td></tr>
<tr><td>B1</td><td>주거
지역
(간선도로변)</td><td>• 단독주택
• 공동주택 [주거복합 건축물 제외. 단,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는 전체 용적률의 15% 이상 적용]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창고시설
• 공장(아파트형 공장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td><td>•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td></tr>
<tr><td>B2</td><td>주거
지역
(이면부)</td><td>•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공장(아파트형 공장 제외)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td><td>-</td></tr>
</table>

주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 참조
주2)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상대 및 절대정화구역) 내 불허용도 불허(단, 상대정화구역은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득한 경우는 제외)
주3)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성기구 취급점, 실내경마장 및 이와 유사한 실내 사행행위업, 성인전용 전화방, 성인전용 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은 불허
주4) 「관광진흥법」 제16조제⑤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등은 공항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가능함
주5) 주거복합 건축물의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3]의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 기준을 만족할 것

(3) 건축물의 지정용도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전층 지정용도
기정	가	염창동 260-7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폐지	나	등촌동 505-7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기정	다	서울특별시 역세권청년주택	• 공동주택(주거복합) ※단, 지상1-2층은 비주거용도 설치 ※단, 지하2층-지상2층 비주거용도 설치 가능(염창동 275번지 일원에 한함)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준용
주2) 공동주택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의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하며, 오피스텔 등 준주거 제외

■ 건축물의 지정용도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비고
나	등촌동 505-7번지	• 관광숙박시설 지정용도 폐지	• 여건변화에 따라 관광숙박시설 운영이 어려워졌으므로 현재 관광숙박시설을 일반 업무시설로 사용하고자 지정용도 폐지	

나.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건폐율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적용지역	건폐율	비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60%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준용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자연녹지지역	20%	

(2) 용적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비고
종전	변경	접도조건 양호 (상업12m,준주거 8m이상대지)	접도조건 불량 (상업12m,준주거 8m미만대지)	접도조건 양호 (상업12m,준주거 8m이상대지)	접도조건 불량 (상업12m,준주거 8m미만대지)	
일반상업지역		500% 이하	-	800% 이하	-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300% 이하	250% 이하	630% 이하	500% 이하	서고제1996-195호 (1996.07.05)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300% 이하	250% 이하	360% 이하	300% 이하	서고제1996-46호 (1996.03.06) 서고제1996-231호 (1996.08.14)
제3종일반주거지역		220% 이하		25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 이하		230% 이하		상한용적률 : 25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		170% 이하		20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150% 이하		200% 이하		
자연녹지지역		-		50% 이하		

주1) 특별계획구역 및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은 각각의 세부 개발계획의 지침에 따름.
주2)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1991.05.11이후)된 경우에는 별도로 산정한 아래의 '주거복합 건축물 및 공동주택 건축 시 허용용적률'을 적용하고, 준주거지역 공동주택(아파트)부분의 용적률은 250%이하로 적용함.
주3)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상 용도지역 상향된 경우의 건축물 용도에 따른 용적률 및 용도제한 적용기준을 준용할 것
주4)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상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 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 적용기준을 준용할 것

○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용적률의 10% 이상 계획 - 다만, 입지특성과 공공기여(기부채납 10%이상 등)를 감안 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용용적률의 10%이상 계획 가능
※ 기존 용도지역 및 용도지역이 상향된 지역 모두 적용 ※ 용적률 10%이상 설치는 지상부 설치를 의미

【 주거복합 건축물 및 공동주택 건축시 허용용적률 】

주택연면적 비율(%) 서울시고시 제2019-312호	준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서울시고시 제1996-46호, -231호	
	접도조건 양호(8m이상)	접도조건 불량(8m미만)
90이상	250% 이하	250% 이하
70이상~90미만	300% 이하	250% 이하
60이상~70미만	320% 이하	260% 이하
50이상~60미만	330% 이하	270% 이하
40이상~50미만	340% 이하	280% 이하
30이상~40미만	350% 이하	290% 이하
20이상~30미만	360% 이하	300% 이하
20 미만	360% 이하	300% 이하

※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3항 관련 [별표3]을 따르되 다음의 기준을 적용함
- 일반상업지역(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중 접도조건이양호한 상업지역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315% 이하(허용용적률의 50%) 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472.5% 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일반상업지역(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중 접도조건이 불량한 상업지역의 경우 [별표3] 제2호 가목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250% 이하(허용용적률의 50%) 로 한다. ([별표3] 제2호 나목의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주거용적률은 375% 이하(허용용적률의 75%)로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과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확보에 따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용적률 기준은 같은 조례 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상한용적률 】

구 분	상한용적률	비 고
전 구 역	• 허용 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토지 + 1.0 × α현금·건축물)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의 용적률(2개 이상의 용도지역인 경우에는 면적대비 가중평균한 용적률) 비율 ※α토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α현금,건축물=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현금 및 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단, 2000.07.01.이후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되고 용적률 완화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된 용도지역의 용적률 범위 내에서 상한용적률을 적용한다.
공동개발 (권장)	• 공항동 11-9의 기부채납은 9-1, 9-3, 10-5의 공동개발 시 기부채납하여 인센티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공동개발(권장)인 공항동 9-1번지가 별도개발 시 동일소유인 11-9번지에 대한 기부채납 인센티브를 공항동 9-9번지 외 5필지가 받도록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적용 용적률 : 변경 】

구 분	위 치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비 고
기정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염창동 260-7외 2필지)	300% 이하	360% 이하	460% 이하	-
폐지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촌동 505-7번지)	300% 이하	360% 이하	450% 이하	

주)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및 서울시 「관광숙박시설 용적률에 관한 특례 운영기준」 적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적용 용적률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비고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촌동 505-7번지)	• 지정용도 폐지에 따른 상한용적률 운용체계 변경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관광숙박시설로 지정된(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96호)505-7번지 지정용도 폐지에 따라 적용 받은 상한용적률 폐지	

(3) 용적률 완화항목 및 내용 : 변경없음

○ 공 통 사 항

1. 허용용적률 산출 : 기준용적률 + ∑(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2.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대지내 공지 등을 확보한 경우 또는 이를 추가로 확보한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함. 다만,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의무사항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음.
3. '보차혼용통로' 및 '공공보행통로'에 대한 인센티브는 건축(벽면)한계선으로 적용토록 함.
4. 성격이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하나의 항목만 적용할 수 있으며 중복하여 계상할 수 없음.



5. 전층 권장용도는 당해 용도가 차지하는 바닥면적의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바닥면적 산정시 주차장 면적 및 공용면적 제외)의 20%이상(상업지역은 30%이상 준수시 초과부분에 대하여 적용)인 경우 권장용도를 수용한 것으로 인정함.
6. 허용용적률 산정을 위한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의무형 인센티브 100분의 20이상, 규제형과 유도형 인센티브 합은 100분의 80이내로 하나, 규제형 인센티브가 계획된 필지의 경우에는 계획내용을 모두 반영하여야 함.
7. 규제형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해당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음.
8. 의무형 인센티브인 친환경 건축물 항목은 해당 인센티브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유도형과 규제형 인센티브 항목 준수를 통하여 부족한 의무형 인센티브의 대체 적용은 인정하지 않음.
9. 유도형 인센티브가 두 개 항목 이상일 경우 한 항목의 유도형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해당 유도형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적용함.
10. 특별계획구역(서울도시가스부지, 시그네틱스부지) 및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은 기 심의완료된 세부 개발계획 내용에 따름.
11. 환경친화적 건축물항목은 본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동일하게 아래와 같이 적용함.

항목 \ 내용				완화기준
의무형	친환경계획	자연지반보존	보존시	기준용적률 X (보존면적 / 대지면적) X 0.2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X(녹화면적 / 대지면적) X 0.1
		녹색주차장/투수성포장	준수시	기준용적률X(설치면적 / 대지면적)으로서 기준용적률 X 0.05이내
		중수도시설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 X 0.04
		빗물이용시설 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 X 0.04
		신재생에너지 사용	준수시	기준용적률 X 0.05
		에너지 절약계획 도입	1등급	기준용적률 X 0.08
			2등급	기준용적률 X 0.05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유형

용도지역	유형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SR

※ 금회 변경사항인 도면번호 E-5-a에 가구번호 ⑧에 해당되는 사항만 명기

• 인센티브 유형 SR : 준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E-3-C ③ / E-5-a ①~④, ⑧~⑪ / E-6 ①~⑤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위치특성	간선도로변, 이면부
기준/허용용적률	300/360, 250/300
중점계획목표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 유도 •지하철 출입구 대지내 이전 유도 •대지내공지 확보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 및 휴식공간 제공

• 인센티브 유형 SR : 완화기준

항 목		세 분	완 화 기 준	비 고
규제형	획지계획	획지단위개발	기준용적률 X 0.03	

항 목		세 분	완 화 기 준	비 고
	공동개발	공동개발(지정)	기준용적률 X 0.03	
	대지내 공 지	건축(벽면)한계선 건축지정선	기준용적률 X (제공면적/대지면적) X 0.5	
	주차계획	공동주차출입구	기준용적률 X 0.02	
유도형	공동개발	공동개발(권장)	기준용적률 X α	2필지이하 α=0.02 3필지이상 α=0.03
	대지내 공 지	쌈지형 공지	기준용적률 X (제공면적/대지면적) X α	필로티구조 α=0.5 침상형구조 α=1.2 개방형구조 α=1.4
	건축물 용 도	권장용도	기준용적률 X (권장용도면적/ 주차장면적 및 공용면적을 제외한 건축연면적) X 0.25	20%이상 준수시
	도시경관 개 선	지하철 및 지중화시설 건축물내 설치	기준용적률 X 0.05	

다.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기준높이	최고높이	
일반상업지역	간선도로변		65m 이하	•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최고고도지구 (H1 : 수평표면 해발 57.86m이하, H2 : 원추표면 해발112.86m이하)를 초과할 수 없음.
	이면부			
준주거지역	간선도로변	60m 이하	70m 이하	
	이면부	-	45m 이하	
제3종일반 주거지역	간선도로변	-	55m 이하	
	이면부	-	35m 이하	
제2종일반 주거지역	간선도로변	-	30m 이하	
	이면부	-		
	7층이하	-	25m 이하	
자연녹지지역	-	-	-	

주1) 특별계획구역 및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은 각각의 세부 개발계획의 지침에 따름.
주2) 기부채납에 의한 높이완화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기준높이X{(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은 상한 용적률과 중복적용이 가능함.)

라. 건축물 배치 · 형태 · 외관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적용지역	비고
건축한계선	• 3~5m(간선도로변) • 2m(15m이상의 이면도로변) • 1~2m(15m미만의 이면도로변)	※간선도로변 - 공항로 강서로 등촌로 화곡로
건축지정선	• 5m(강서구청사거리 남측) • 3m(강서구청사거리 북측 및 양화교 입구 가각부)	
벽면한계선	• 저층부(1층) : 1~6m	
탑상형	• 간선도로변 및 가각부 필지 • 건축물의 장변과 단변의 비를 2:1 이상, 건폐율을 40%이하로 건축할 것을 권장	
지하철 출입구	• 지하철사업과 연계한 건축계획시 건축물의 위치, 형태, 배치 등에 대하여 해당 허가권자와 사전협의	
옥외광고물 및 간판	•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기준을 준수	
외장·재료 ·색채	• 통일성 유지 • 인접건축물과 조화된 색조사용	
개구부	• 30m이상 도로변 건축물 1층개구부 안쪽으로 개폐 • 개구부 없는 벽면은 노출금지	
야 간 경관조명	• 쇼윈도 및 건축물 외부에서 1층전면을 투사하는 야간조명 및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 장식품 등의 야간조명 설치 권장	
담장· 벽면녹화	• 6m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는 담장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생울타리·투시형휀스 설치 및 차폐식재 권장 • 인공구조물 설치시 전면부에 최소 20~30cm정도의 선형 식재공간확보 • ‘서울특별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활성화’ 기법 준수	
기타구조물	• 폭15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옥탑, 냉각탑, 에어컨 실외기 등의 건축설비 도로변 노출금지 • 보행로에 면한 건축물의 외벽면은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의 설치금지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가. 대지내 공지 및 통로 : 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대지내 공지	공공조경	•등촌동 533-2	※간선도로변 - 공항로 강서로 등촌로 화곡로
	전면공지	•3~5m(간선도로변) •2m(15m이상의 이면도로변) •1~2m(15m미만의 이면도로변)	
	공개공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2조에 의거 설치대상에 설치	
	쌈지형공지	•용도지역·용적률 미변경지역 - 건축연면적 3,000㎡이상 건축시 의무설치 : 45㎡이상 •용도지역·용적률 상향지역 - 건축연면적 1,500㎡이상 3,000㎡미만 : 45㎡이상 - 건축연면적 3,000㎡이상 : 45㎡ + 대지면적의 1%이상	
통로	공공보행통로	•장변이 긴 폭원의 블록에 보행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대지내 조성(폭원3m이상)	
	보차혼용통로	•폭원 4m 이상(단, 일부구간 폭원3m확보)	

나. 동선 및 주차 : 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간선도로변 및 이면도로변(폭원15m이상)에 지정	
주차출입구	•주차출입구 표시 위치에 설치(폭3m이상)	
공동주차 출 입 구	•주차출입구 표시 위치에 설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각각 3m이상 출입구를 확보하여 최소폭원 6m이상 조성	
보 행 자 전용도로	•차량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곳에 설치	
보 행 자 우선도로	•차량보다 보행자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	

다. 환경친화적 요소 : 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자연지반보존	•대지규모와 상관없이 대지안의 조경의무면적, 공개 공지면적, 쌈지형공지 면적 등을 제외한 지층부 비건폐지 면적의 30% 이상이 자연지반으로 보존시 인정	

구분	계획내용	비고
옥상녹화	• '서울특별시 보급형옥상녹화조성기법' 에 의하여 설치	
녹색주차장	• '서울특별시 녹색주차장활성화계획' 에 의하여 설치	
빗물이용시설	•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설치 및 관리기준' 에 의하여 설치 • '서울특별시빗물저수조설치지침' 에 의하여 설치	
중수도시설	•총 사용수량 10%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설치 • '수도법 제14조' 에 의한 설치의무면적 적용	
신·재생에너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 및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 에 적합하게 설치	
에너지절약계획	• '건축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 '건축물 에너지 설계기준' 및 '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세부지침 '에 의거하여 준수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5.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4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계 획 내 용	비 고
• 대지의 분할 · 교환에 관한 사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5항 단서, 동법시행령 제25조제4항 및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18조 규정에 의거 -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 공동개발(지정·권장) 변경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필지와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필지의 공동개발 (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	
• 대지내 공지 중 공공조경의 위치변경	
• 수종 · 조명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 차량출입불허구간의 변경(단, 공동개발 등의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	

Ⅲ. 관계도면 : 붙임참조 (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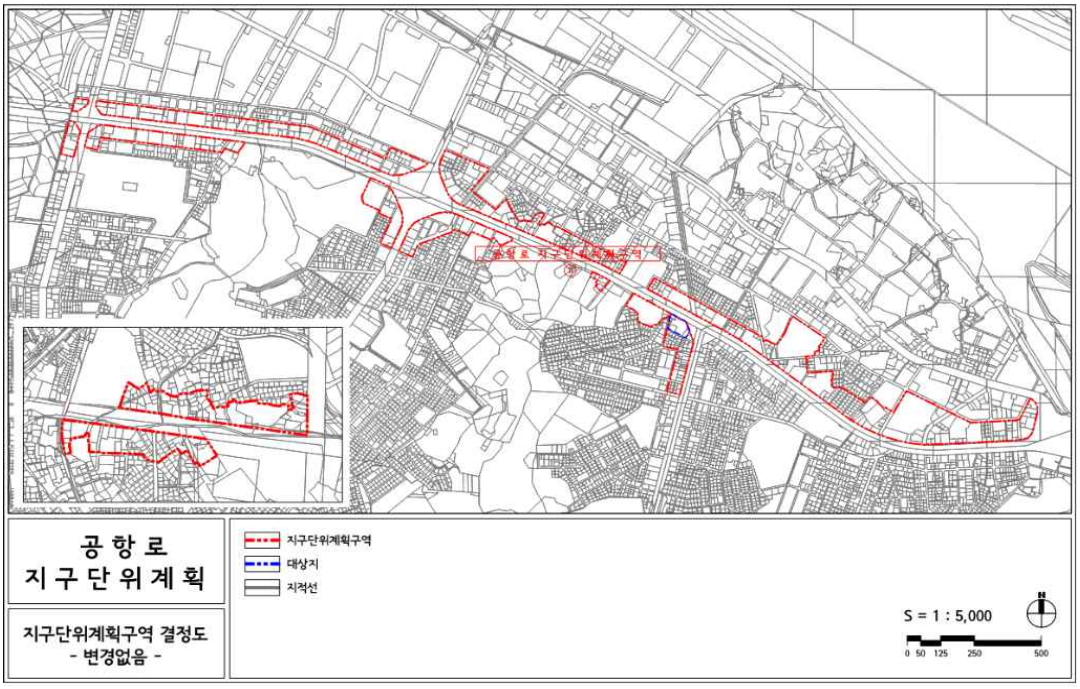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 02-2133-8386) 및 강서구 도시계획과(☎ 02-2600-6384)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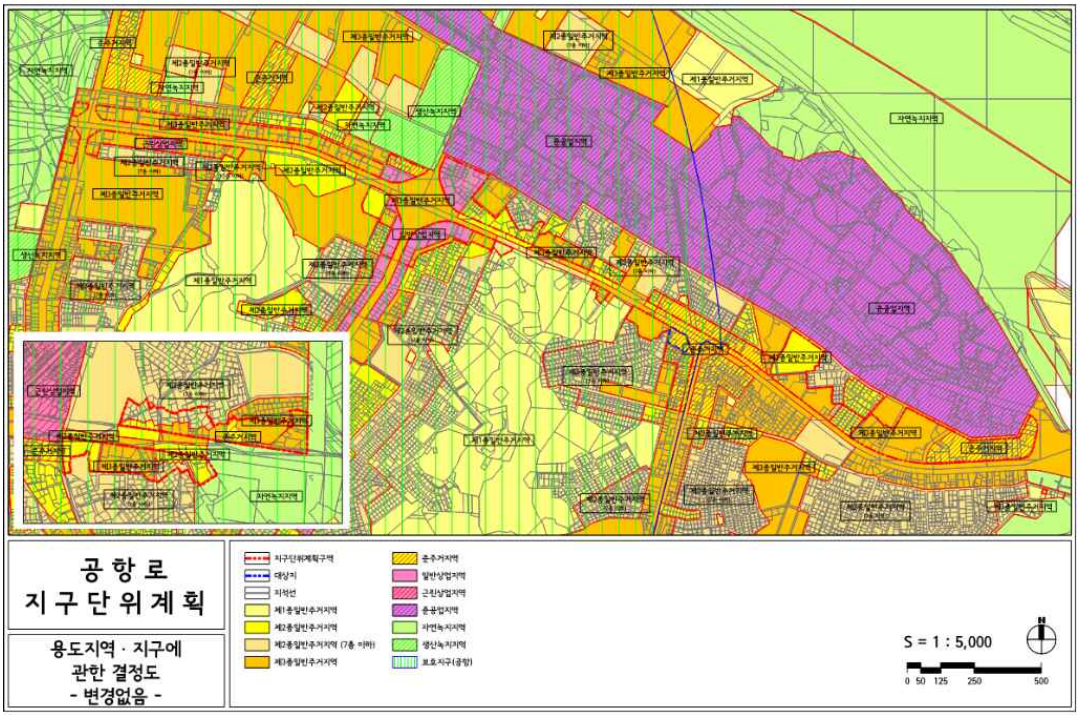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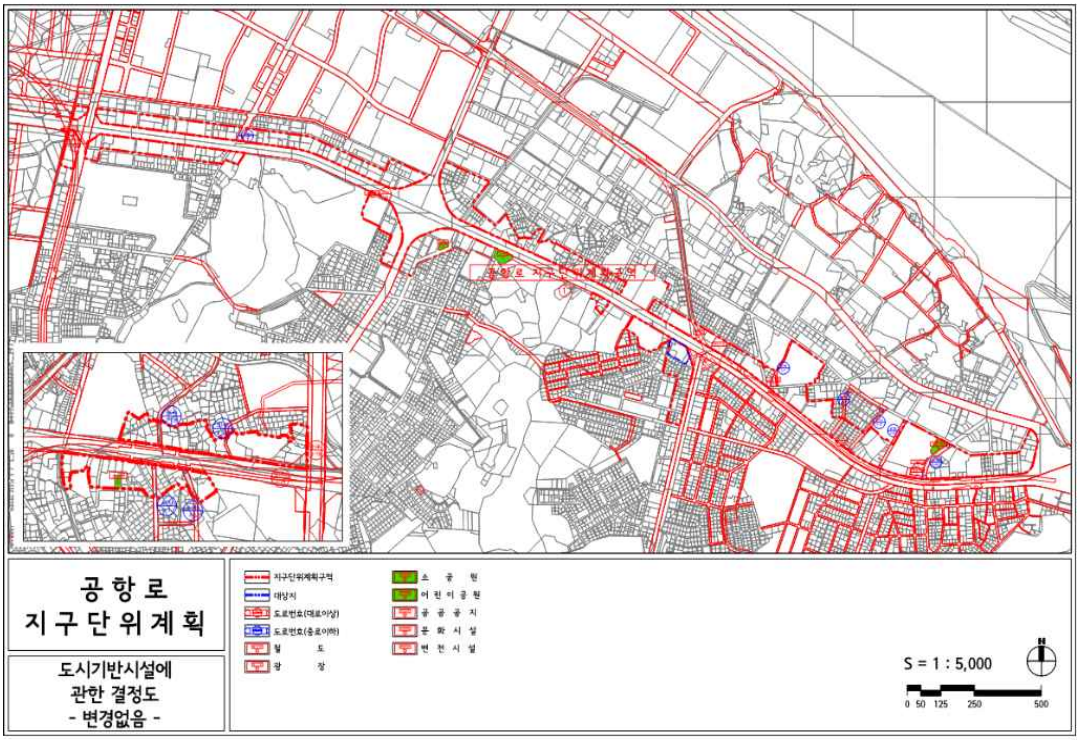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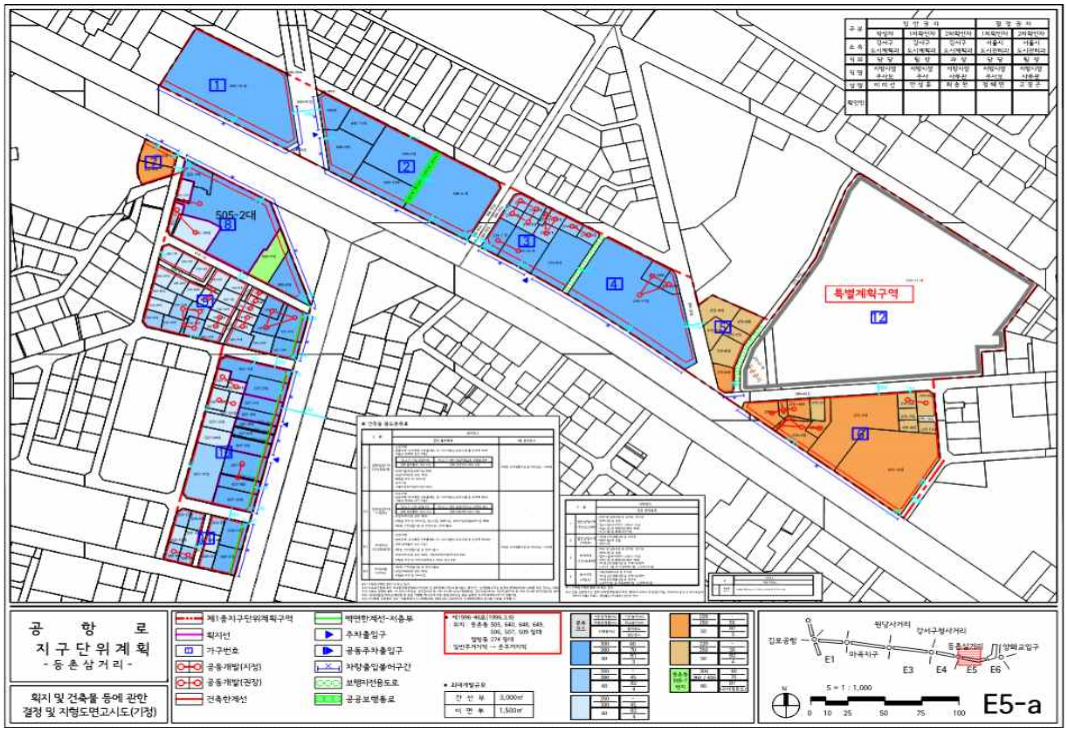
–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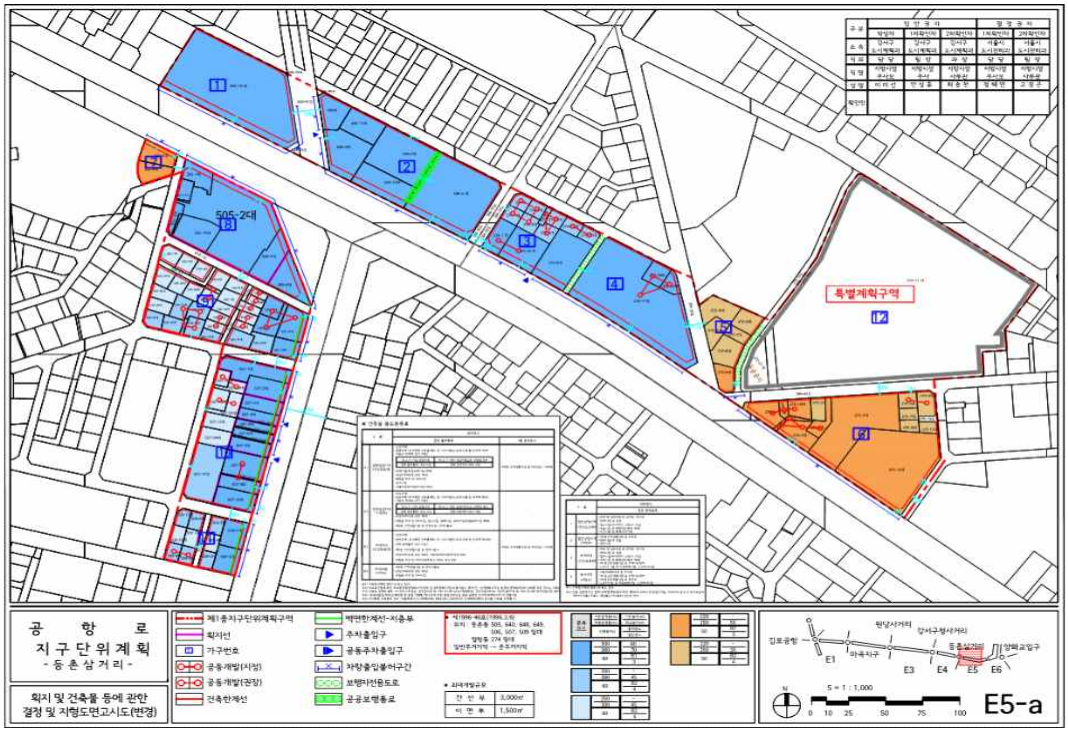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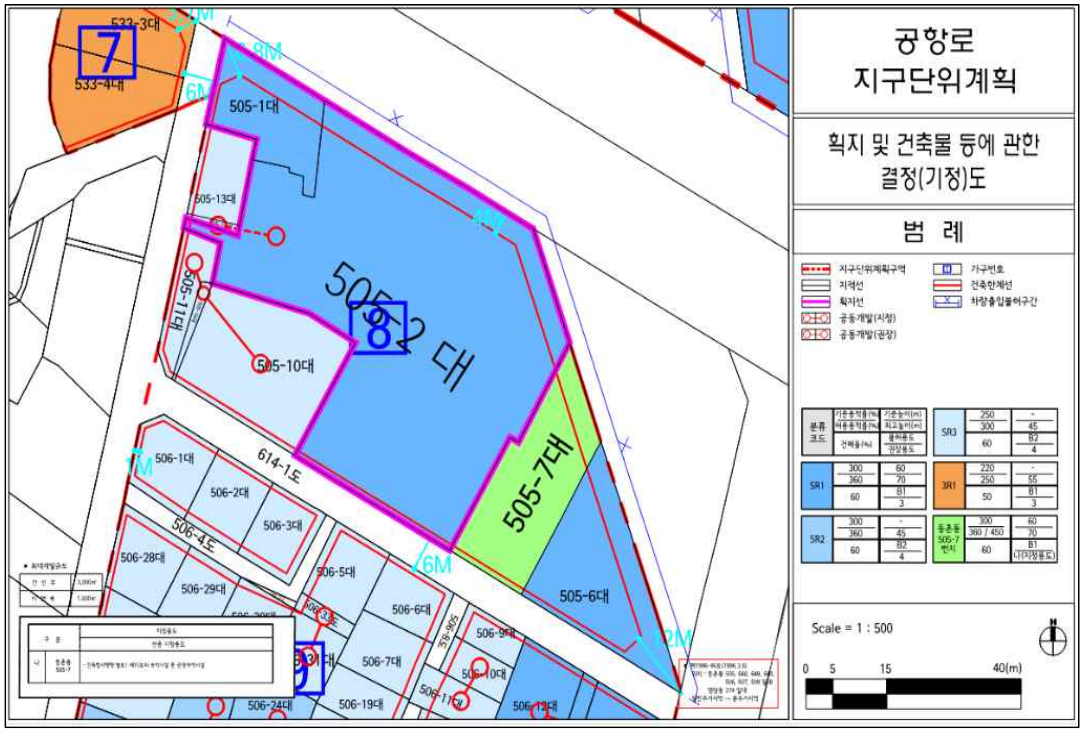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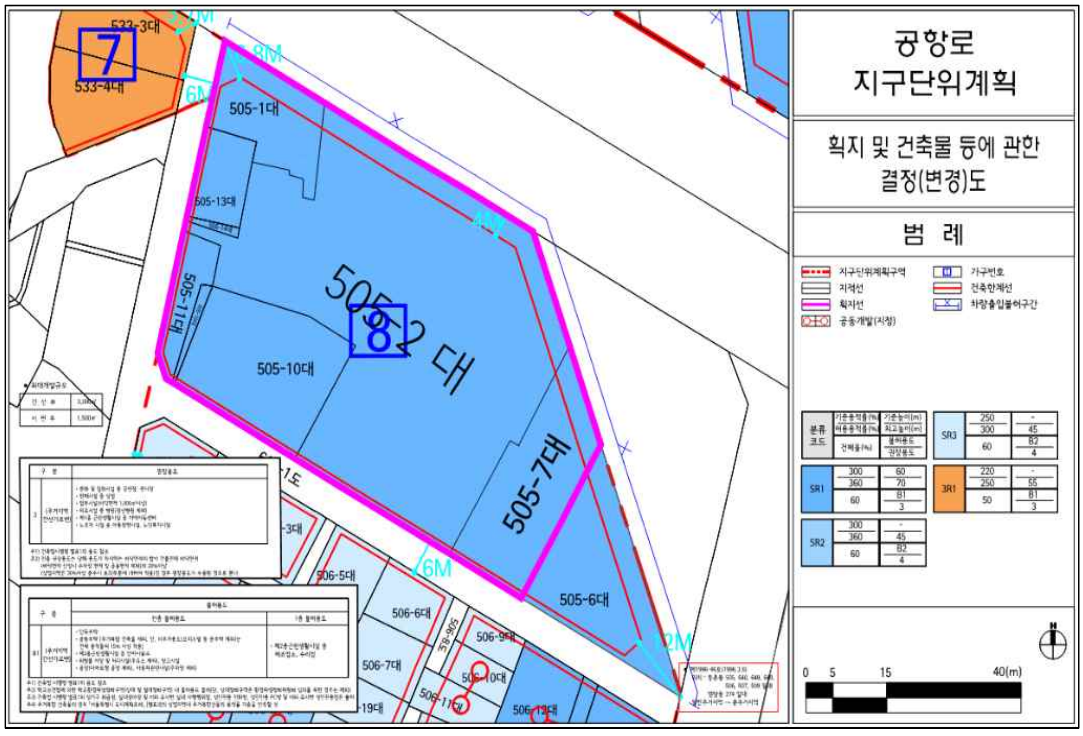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도(변경)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600호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용두1구역 6지구)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23호(2000.02.09.)로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29호(2007.05.17.)로 용두1구역 변경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45호(2009.09.10.)로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36호(2010.09.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40호(2012.02.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76호(2013.06.0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66호(2016.06.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56호(2017.02.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56호(2017.07.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08호(2018.09.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10호(2019.03.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27호(2020.10.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63호(2020.11.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64호(2021.06.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19호(2021.07.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89호(2021.10.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0호(2022.01.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73호(2022.06.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21호(2022.07.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45호(2022.08.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4호(2023.1.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4호(2023.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77호(2023.3.9.)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5조제5항,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 변경없음

지구명	유 형	위 치	면 적(㎡)	비 고
청량리재정비 촉진지구	중심지형 (20만㎡이상)	동대문구 용두전농동 일원	358,292.7	최초결정일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45호 (2009.09.10.)

※ 촉진지구 면적은 당초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72호) 오기사항 정정 반영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변경
가. 기준년도 : 2010년
나. 목표연도 : 2024년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없음

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부도심 기능 회복도모

나. 청량리 재정비촉진구역 계획 변경을 통하여 낙후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을 통하여 균형발전 도모(청량리 부도심의 기능을 회복하고 서울 동북권의 관문역할 수행)하며,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보다 나은 도시생활을 영위하기 위함

4.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가.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지역 결정 : 변경없음

구 분	사업방식	구 역 명	면 적(㎡)	비 고
총 계			370,742.7	-
촉진 구역	소 계		148,485.9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청량리1재정비촉진구역	1,819.2	-
		청량리2재정비촉진구역	1,938.3	-
		청량리3재정비촉진구역	7,020.6	-
		청량리4재정비촉진구역	41,602.5	-
		용두1재정비촉진구역	51,665.9	-
		전농재정비촉진구역	28,202.4	-
	주택재개발사업	전농12재정비촉진구역	16,237.0	-
존치 지역	소 계		222,256.8	-
	존치관리구역		222,256.8	-

5. 촉진구역별 정비계획 결정(변경) : 용두1재정비촉진구역 외 다른 구역 변경없음.

6. 용두1재정비촉진구역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변경

가. 용두1 재정비촉진구역

1) 재정비촉진구역 결정조서 : 변경 없음

구분	구 역 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용두1재정비촉진구역	용두동26일대	51,665.9	-	51,665.9	

2)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 분		지구명		면적(㎡)	비율(%)	비 고	
						기정	변경
용두 1 구역	합 계			51,665.9	100.0		
	획지계획	소 계		34,803.4	67.4		
		1		2,019.6	3.9	[업무,판매]	
		2		2,566.8	5.0	[업무,주거]	
		3		3,039.3	5.9	[업무,주거]	
		4		1,360.5	2.6	[판매,주거]	
		5	준주거	12,183.4	23.6	[판매,주거]	
			일반상업			[업무,판매]	
		6	준주거	13,633.8	26.4	[판매,주거]	[업무,주거]
			일반상업			[업무,판매]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소 계		16,862.5	32.6	-	
		도 로		15,293.7	29.6	도시계획시설	
		공 원		1,568.8	3.0	-	

3)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변경

① 도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1	51	35~42 (42)	주간선 도로	3,300 (280)	종로6가89	청량리동 749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2020-427호 (2020.10.22)	-
기정	대로	2	58	33~35 (33)	주간선 도로	1,850 (150)	용두동 (대2-14)	행당동 (118광장)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2020-427호 (2020.10.22)	-
기정	중로	2	1	15	집산 도로	117	용두동24-2	용두동20-36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2020-427호 (2020.10.22)	-
기정	중로	2	500	15	집산 도로	343	용두동47-7	용두동12-5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2020-427호 (2020.10.22)	-
기정	중로	2	501	15	집산 도로	85	용두동26-27	용두동20-80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2020-427호 (2020.10.22)	-
기정	중로	2	502	15	집산 도로	152	용두동23-1	용두동20-3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2020-427호 (2020.10.22)	-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503	15 (13)	집산 도로	150	용두동14-20	용두동12-5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2020-427호 (2020.10.22)	-
기정	중로	3	4	12	국지 도로	78	용두동26-14	용두동26-17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2020-427호 (2020.10.22)	-

※ 1. ( )는 용두1구역 연장 및 폭원임

② 입체적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분	도면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규모		비고
기정	1	도로	· 기점부 : 용두동 23-12 · 종점부 : 용두동 23-47	길이(m)	60		5구역
				폭(m)	15		
				높이	지하2m~지상15m이하	도시계획시설(도로)	
					지하2m초과,지상15m초과	비도시계획시설	
기정	2	도로	· 기점부 : 용두동 14-10 · 종점부 : 용두동 14-21	길이(m)	94		6구역
				폭(m)	15		
				높이	지하2m~지상15m이하	도시계획시설(도로)	
					지하2m초과,지상15m초과	비도시계획시설	
변경	2	도로	· 기점부 : 용두동 14-10 · 종점부 : 용두동 14-21	길이(m)	94		6구역
				폭(m)	15		
				높이	지하2m~지상15m이하 (건축물간 연결을 위한 시설물 (연결브릿지) 부분 6m)	도시계획시설(도로)	
					지하2m초과,지상15m초과	비도시계획시설	

③ 공원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	공원	소공원	동대문구 용두동 26-1 일원	1,568.8	-	1,568.8	서울시고시 제2020-427호 (2020.10.22)	

4) 건축시설계획 : 변경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m) 최고 층수	비고 (주거비율제한)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용두1 재정비 촉진구역	51,665.9	1	2,019.6	용두동 24-1일대	업무,판매	50%이하	899%이하	90m이하	0%
			2	2,566.8	용두동 23-8일대	주거,업무	50%이하	899%이하	90m이하	90%이하
			3	3,039.3	용두동 26-14일대	업무,판매	50%이하	899%이하	90m이하	0%
			4	1,360.5	용두동 26-3일대	판매,주거	50%이하	549%이하	60m이하	89.4%이하
			5	12,183.4	용두동 23-1일대	판매,주거	50%이하	549%이하	60m이하	54.0%이하
						업무,판매		899%이하	90m이하	
			6	13,633.8	용두동 14-1일대	판매,주거	50%이하	549%이하	60m이하	53.4%이하
						업무,판매		899%이하	90m이하	
변경	용두1 재정비 촉진구역	51,665.9	1	2,019.6	용두동 24-1일대	업무,판매	50%이하	899%이하	90m이하	0%
			2	2,566.8	용두동 23-8일대	주거,업무	50%이하	899%이하	90m이하	90%이하
			3	3,039.3	용두동 26-14일대	업무,판매	50%이하	899%이하	90m이하	0%
			4	1,360.5	용두동 26-3일대	판매,주거	50%이하	549%이하	60m이하	89.4%이하
			5	12,183.4	용두동 23-1일대	판매,주거	50%이하	549%이하	60m이하	54.0%이하
						업무,판매		899%이하	90m이하	
			6	13,633.8	용두동 14-1일대	업무,주거	50%이하	1,100%이하	200m이하	90%이하

	구역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기정	용두1구역	건축 한계선	왕산로변		3m	-
				고산자로변		3m	
			벽면 한계선	1,2지구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각4m 이격 (지상1층부에만 적용)	-
	변경	용두1구역	건축 한계선	왕산로변	6지구	5m	-
					6지구외	3m	
				고산자로변		3m	
			벽면 한계선	1,2지구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각4m 이격 (지상1층부에만 적용)	-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기정	용두1구역	공공 보행통로	1,2 지구내 벽면한계선으로 지정된 공지		폭8m	※ 공공보행통로조성 지침 참조
				5,6 지구내 건축한계선으로 지정된 공지		폭12m	
			쌈지형 공 지	5,6 지구내 위치조정		지구별 각2개소 (개소별 45㎡이상)	-
	변경	용두1구역	공공 보행통로	1,2 지구내 벽면한계선으로 지정된 공지		폭8m	※ 공공보행통로조성 지침 참조
				5,6 지구내 건축한계선으로 지정된 공지		폭12m	
				6 지구내 건축한계선으로 지정된 공지		폭10m	
			쌈지형 공 지	6 지구외		지구별 각2개소 (개소별 45㎡이상)	-
				6 지구내		2개소 (개소별 60㎡이상)	면적증가

주1) 준주거지역은 주거비율을 건축연면적의 90%이하로 제한
주2) 업무·판매시설 유도지역은 주거용도 입지 불허 및 공공보행통로에 면한 저층부(지상1층) 주거용도 입지 불허
→ 6지구의 경우 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2022.1.26)에 따라 상업지역 중 광역·지역중심 이하에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주거90%(주거·오피스텔등80+임대주택10) + 비주거 10% 적용
주3) 용두1구역내 4획지 공개공지 183㎡이상 확보(서울시 건축조례 제22조 제3항 적용)
주4) 용두1구역내 5획지(준주거지역) 공개공지 1,502㎡이상 확보(서울시 건축조례 제22조 제3항 적용)
※ 주용도라함은 당해 건축시설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용도이며 제시된 용도 중 선택하여야 함
※ 공공보행통로 조성지침
① 대지 내 통로는 단차가 없이 연속적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 혹은 도로와 접하거나 인접대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단차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치물을 설치 할 수 없다.
②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된 대지는 지정된 위치에 규정된 폭원 이상으로 24시간 일반인이 통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③ 공공보행통로는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바닥재료 및 포장을 하여야 하며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고, 야간통행에 안전을 도모 할 수 있도록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대지 내 통로로 연결되는 양측도로에 고저차가 있을 경우 경사로로 처리하여야 한다.
⑤ 동·서간 도로·통로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직선 형태로 조성하고, 건물간 지상연결 브릿지는 지상 6m이상 높이에 설치하되 지구별 3개소 이하로 설치 가능.

5)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부담률 : 변경

① 정비사업시행계획 : 변경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도시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구역지정 후 3년이내	서울주택도시공사	831	해당없음	

② 공공용지 부담률 : 변경

▮ 공공시설 부담률(토지) : 변경없음

정비 구역명		위치	시행면적(㎡)	사업계획내역(㎡)				비고	
				지구면적	공공시설면적			획지내 기존 공공용지	공공용지부담율
					계	공공시설 부담면적	계획공공용지내 기존공공용지		
용두1구역	1	용두동24-1대일대	3,212.1	2,019.6	1,192.5	805.1	387.4	357.5	18.14%
	2	용두동23-8대일대	3,660.4	2,566.8	1,093.6	645.5	448.1	101.4	17.49%
	3	용두동26-18대일대	4,295.8	3,039.3	1,256.5	673.5	583.0	0.0	18.14%
	4	용두동26-3대일대	1,923.0	1,360.5	562.5	301.5	261.0	0.0	
	5	용두동23-1대일대	17,794.2	12,183.4	5,610.8	3,273.7	2,337.1	573.8	
	6	용두동14-1대일대	20,780.4	13,633.8	7,146.6	4,531.3	2,615.3	1,510.0	
	합계		51,665.9	34,803.4	16,862.5	10,230.6	6,631.9	2,542.7	18.09%

▮ 공공시설 부담률(건축물) : 신설

○ 6지구

– 금회 공공재개발을 통한 상업·업무기능 확대 등 기반강화를 위하여 일부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계획에 따라 상향되는 면적의 20%를 건축물 기부채납 계획을 반영함

구 분		기부채납(㎡)		용도지역 상향면적	계획 연면적(㎡)	비고
		토지면적	대지지분			
기 준		871.70		4,358.5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계 획	세부내용	712.62	159.26	871.88	2,757.0	상향면적 20%
	합계	871.88				

나. 용두1(6지구) 재정비촉진구역 : 변경

1) 재정비촉진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용두1(6지구)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용두동 14-1번지 일대	20,780.4	-	20,780.4	

2) 추정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추정 비례율

-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 수입 - 총 지출) / 종전자산 총액 X 100%
- 추정비례율 : 91.96%
  ⇒ (11,055억 - 8,647억) / 2,627억 X 100 = 91.66%
  - 총수입 추정 : 11,055억
  - 총지출 추정 : 8,647억
  - 종전자산총액 추정 : 2,627억

개별 종전 자산 추정액

- 개별 공시가격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개별 공시가격 확인
- 공동주택 소유자 = 공동주택 공시가격 X 보정률(2.50)
  ※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토지평가액 포함
- 단독주택, 상가 소유자 = 토지가액 + 건물가액
  - 토지 = 개별공시지가 X 토지면적 X 보정률(2.18)
  - 건물 = 개략단가(약 25.9만원/㎡) X 연면적
  ※ 건물의 개략단가는 경과연수 40~50년 기준 평균 약25.9만원/㎡ 추정

추정 분담금 산출

-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a)		추정 권리가액(b)	추정분담금(a-b)
전용39㎡형	4.91억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91.66%)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추정 권리가액 (+ : 부담 / - : 환급)
전용59㎡형	7.43억		
전용84㎡형	9.16억		
전용110㎡형	9.56억		

※ 추정비례율 등은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한국부동산원)' 자료를 기반으로 산정하였으며,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계획 : 변경

구 분		면적(㎡)			비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소계		20,780.4	-	20,780.4	100.0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3,383.8	증) 4,358.5	17,742.3	85.4	-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7,396.6	감) 4,358.5	3,038.1	14.6	-

4)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구분	명칭	면 적(㎡)			비 율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0,780.4	-	20,780.4	1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계	7,146.6	-	7,146.6	34.4	-
	도로	6,350.5		6,350.5	30.6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796.1	-	796.1	3.8	도시계획시설(공원)
획 지	소계	13,633.8	-	13,633.8	65.6	-
	획지 (6지구)	13,633.8	-	13,633.8	65.6	주용도 - (기정)상업:판매 · 업무, 준주거:주거 · 업무→ - (변경)상업 : 업무 · 주거

5)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변경

① 도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1	51	35~42 (42)	주간선 도로	3,300 (280)	종로6가89	청량리동 749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2020-427호 (2020.10.22)	-
기정	대로	2	58	33~35 (33)	주간선 도로	1,850 (150)	용두동 (대2-14)	행당동 (118광장)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2020-427호 (2020.10.22)	-
기정	중로	2	1	15	집산 도로	117	용두동24-2	용두동20-36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2020-427호 (2020.10.22)	-
기정	중로	2	500	15	집산 도로	343	용두동47-7	용두동12-5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2020-427호 (2020.10.22)	-
기정	중로	2	501	15	집산 도로	85	용두동26-27	용두동20-80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2020-427호 (2020.10.22)	-
기정	중로	2	502	15	집산 도로	152	용두동23-1	용두동20-3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2020-427호 (2020.10.22)	-
기정	중로	2	503	15 (13)	집산 도로	150	용두동14-20	용두동12-5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2020-427호 (2020.10.22)	-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4	12	국지도로	78	용두동26-14	용두동26-17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2020-427호 (2020.10.22)	-

※ 1. ( )는 용두1구역 연장 및 폭원임

② 입체적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분	도면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규모		비고
기정	1	도로	· 기점부 : 용두동 23-12 · 종점부 : 용두동 23-47	길이(m)	60		5구역
				폭(m)	15		
				높이	지하2m~지상15m이하	도시계획시설(도로)	
					지하2m초과,지상15m초과	비도시계획시설	
기정	2	도로	· 기점부 : 용두동 14-10 · 종점부 : 용두동 14-21	길이(m)	94		6구역
				폭(m)	15		
				높이	지하2m~지상15m이하	도시계획시설(도로)	
					지하2m초과,지상15m초과	비도시계획시설	
변경	2	도로	· 기점부 : 용두동 14-10 · 종점부 : 용두동 14-21	길이(m)	94		6구역
				폭(m)	15		
				높이	지하2m~지상15m이하 (건축물간 연결을 위한 시설물 (연결브릿지) 부분 6m)	도시계획시설(도로)	
					지하2m초과,지상15m초과	비도시계획시설	

③ 공원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	공원	소공원	동대문구 용두동 26-1 일원	1,568.8	-	1,568.8	서울시고시 제2020-427호 (2020.10.22)	

6) 건축시설계획 : 변경

구분	구역구분		위 치	용도지역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층수 (지상/지하)	비고 (주거비율 제한)
	명 칭	면적(㎡)								
기정	용두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0,780.4	용두동 14-1 일대	일반 상업지역	판매, 업무	50% 이하	899% 이하	90m이하	지상24층이하 지하5층	0%
				준주거 지역	판매, 주거	50% 이하	549% 이하	60m이하	지상18층이하 지하5층	0%
변경	용두1(6지구) 도시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20,780.4	용두동 14-1 일대	일반 상업지역	주거, 업무	50% 이하	1,100% 이하	200m 이하	지상61층이하 지하8층	90%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공동주택 - 977세대 (재개발임대-138세대, 국민주택임대-140세대, 공공지원민간임대-143세대, 조합원/분양-556세대)

구 분		세대수	비율(%)
계		977	100.0
공동주택	소 계	699	71.5
	40㎡이하	45	4.6
	40㎡~60㎡	34	3.5
	60㎡~85㎡	434	44.4
	85㎡초과	186	19.0
공공 임대주택	소 계	278	28.5
	40㎡이하	57	5.8
	40㎡~60㎡	114	11.7
	60㎡~85㎡	107	10.9

구 분		실수	비율(%)
계		120	100.0
오피스텔	60㎡~85㎡	24	20.0
	85㎡초과	96	80.0

심의완화 사항

「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
- 광역중심 이하 : 주거 90%(주거 · 오피스텔등 80+임대주택10)+비주거10%
-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 : 400% 이상
- 비주거 의무비율 : 전체 연면적의 10% 이상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한계선
- 왕산로변 : 5m
- 고산자로변 : 3m

주1) 준주거지역은 주거비율을 건축연면적의 90%이하로 제한
주2) 업무·판매시설 유도지역은 주거용도 입지 불허 및 공공보행통로에 면한 저층부(지상1층) 주거용도 입지 불허
→ 6지구의 경우 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2022.1.26)에 따라 상업지역 중 광역·지역중심 이하에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주거90%(주거 · 오피스텔등80+임대주택10) + 비주거 10% 적용
주3) 용두1구역내 4획지 공개공지 183㎡이상 확보(서울시 건축조례 제22조 제3항 적용)
주4) 용두1구역내 5획지(준주거지역) 공개공지 1,502㎡이상 확보(서울시 건축조례 제22조 제3항 적용)
※ 주용도라함은 당해 건축시설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용도이며 제시된 용도 중 선택하여야 함
※ 공공보행통로 조성지침
① 대지 내 통로는 단차가 없이 연속적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 혹은 도로와 접하거나 인접대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단차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치물을 설치 할 수 없다.
②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된 대지는 지정된 위치에 규정된 폭원 이상으로 24시간 일반인이 통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③ 공공보행통로는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바닥재료 및 포장을 하여야 하며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고, 야간통행에 안전을 도모 할 수 있도록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대지 내 통로로 연결되는 양측도로에 고저차가 있을 경우 경사로로 처리하여야 한다.
⑤ 동·서간 도로 · 통로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직선 형태로 조성하고, 건물간 지상연결 브릿지는 지상 6m이상 높이에 설치하되 지구별 3개소 이하로 설치 가능.

7) 공공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계획 : 변경

▌ 공공시설 부담률(%) = {(7,146.6+871.88)−(2,615.3+1,510.0)}
/{20.780.4−(2,615.3+1,510.0)}×100 = 23.38%

구분	촉진구역 계획기반시설(㎡)		계획기반시설내 국공유지면적(㎡)	기존기반시설내 국공유지 면적(㎡)	촉진구역 총면적(㎡)	공공시설 부담률(%)
	토지	건축물				
기정	7,146.6	-	2,615.3	1,510.0	20,780.4	18.14
변경	7,146.6	871.88	2,615.3	1,510.0	20,780.4	23.38

8) 용적률 계획 : 변경

▌ 상한용적률 산정(기정)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 이용 계획 (㎡)	계 (구역면적)	획지면적	공공시설 제공 면적(㎡)			비고
			계	공공시설 부담면적	계획공공용지내 기존공공용지	획지 내 기존공공용지
	20,780.4	13,633.8 (일반상업지역 9,275.3, 준주거지역 4,358.5)	7,146.6 (일반상업지역 4,108.5 준주거지역 3,038.1)	4,531.3 (일반상업지역 3,082.7 준주거지역 1,448.6)	2,615.3	1,510.0

상한용적률 산정식	허용용적률 × (1 + 1.3 × 가중치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공공시설부지 제공후 대지면적		
상한 용적률	준주거 용지	[1+1.3×[1,448.6/4,358.5]]×400≒572.8% ∴ 적용 상한용적률 = 899% - 용두1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서울시고시 제2007-129호 (2007. 5. 17)) 용적률계획 반영 상한용적률 899%이하 적용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은 순부담면적임
	일반 상업용지	[1+1.3×[3,082.7/9,275.3]]×800≒1,002.4% ∴ 적용 상한용적률 = 899% - 용두1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서울시고시 제2007-129호 (2007. 5. 17)) 용적률계획 반영 상한용적률 899%이하 적용	

▌ 상한용적률 산정(변경)

구 분	산정내용								
토지이용계획(㎡)	계(구역면적)	획지면적	공공시설 제공 면적(㎡)			획지 내 기존 공공용지	정비기반시설외 신설공공시설(기부채납)등 면적		
			계	공공시설 부담면적	계획공공용지내 기존공공용지		계	건축물(환산면적)	토지(대지지분)
	20,780.4	13,633.8 (일반상업지역 13,633.8)	7,146.6 (일반상업지역 4,108.5 준주거지역 3,038.1)	4,531.3	2,615.3	1,510.0	871.88	712.62	159.26
공공시설등 부지제공 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제공 면적 = 공공시설 제공면적 - 계획공공용지내 기존공공용지 - 획지내 기존 공공용지 = 7,146.6㎡ - 2,615.3㎡ - 1,510.0㎡ = 3,021.3㎡								

구 분	가중평균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672.12%	800%	400%

▪ 기준용적률(가중평균)

= ((상업지역용적률×상업지역대지면적)+(준주거지역용적률×준주거지역대지면적)/사업지구면적)

= ((800%×9,275.3㎡)+(400%×4,358.5㎡)/13,663.8㎡) = 672.12%

▪ 2030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상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는 별도 허용용적률 적용 없음

정비계획용적률(상한용적률)	887.75%

▪ 정비계획용적률(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토지) + 0.7 × α(건축물))

▸ 일반상업지역 상한용적률 = 672.12 × (1 + 1.3 × 0.93725 × 0.23328 + 0.7 × 0.05226)

= 887.75%

∴ 적용 상한용적률 = 887.75%

$$- \alpha(\text{토지}) = \frac{\text{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text{공공시설부지 제공후 대지면적}} = \frac{7,146.6 + 159.26 - 2,615.3 - 1,510.0}{20,780.4 - 7,146.6} = 0.23328$$

$$- \alpha(\text{건축물}) = \frac{\text{건축물기부채납 토지환산면적}}{\text{공공시설부지 제공후 대지면적}} = \frac{712.62}{20,780.4 - 7,146.6} = 0.05226$$

$$- \text{가중치} = \frac{\text{공공시설 제공부지 용적률}}{\text{사업부지 용적률}} = \frac{629.95\%}{672.12\%} = 0.93725$$

건축계획용적률	1,099.87%이하

▪ 공공재개발에 따른 법적상한 초과용적률 관련

구 분	내 용	비 고
① 상한용적률	887.75	
② 초과용적률	1,099.87	
③ = ② - ①	212.12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0조 ③×0.5 = 106.06
국민주택 임대건설	106.06	

7.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공공임대주택은 표준건축비 매입(서울시) 및 부속토지는 기부채납

구 분		세대수(세대)	비율(%)	산출근거
총 세대수		697	-	• 전체 세대수(977세대)에서 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세대수(280세대) 제외 = 697세대 • 재개발의무임대 - 총세대수의 5%이상 (697×5%=34.85 ≤ 138세대) • 공공임대(주거비율완화) - 전체 연면적 188,840.34㎡의 10.04%에 해당하는 연면적 18,952.93㎡ 공급
의무 공공임대주택 세대수		138	100.0	
	40㎡이하	57	41.3	
	40㎡초과 ~ 50㎡이하	-	-	
	50㎡초과 ~ 60㎡이하	42	30.4	
	60㎡초과 ~ 85㎡이하	39	28.3	

※ 추후 동호수 전산추첨을 통해 공급(임대 선추첨, 후분양)
※ 「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급 규모에 대한 계획기준 반영

8.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도시 경관	• 경관계획 -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및 개발계획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높이계획 수립 • 건축물 배치 및 건축선 계획 - 도로변의 정연한 가로경관과 상호 연속성을 확보하되 주요부 통경축 및 개방감 확보 - 건축물 전면에 유효한 오픈스페이스 조성으로 가로망 확보, 보행자의 쾌적성 등을 제공	-
환경 보전	• 토양오염방지 - 불투수 포장면 최소화 • 녹지조성 - 지역특성에 맞는 수종선정 및 식재방향을 설정하되 주변경관과 조화된 충분한 녹지 공간 확보	-
재난 방지	• 우기를 피하여 시행하고 절개지 발생시 비닐 등을 덮어 토사가 유실되지 않게 함 • 터파기 공사시 균열, 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흙막이공법을 실시 후 공사시행 • 건설소음 - 가설방음 판넬 설치 - 저소음 건설 기계 등을 선택하여 주간(08:00~18:00)에만 작업실시 • 먼지 - 방진망 설치 : 부지경계상에서 가설방음 판넬과 연계된 방진망(H=1.5m) 설치 - 자동식 세륜시설 설치(사업대상지 진출입부분) - 주기적인 살수 실시(하계기준 1일 6회이상)	-

9.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해당없음

10.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도시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구역지정 후 3년이내	서울주택도시공사	831	해당없음	

11.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 용두1구역 : 변경

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역 명	위치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증감	변경후		
용두1(6지구)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용두동14-1일대	20,780.4	-	20,780.4	100.0	

2) 용도지역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 분		면적(㎡)			비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소계		20,780.4	-	20,780.4	100.0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3,383.8	증) 4,358.5	17,742.3	85.4	-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7,396.6	감) 4,358.5	3,038.1	14.6	-

(2) 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변경

① 도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1	51	35~42 (42)	주간선 도로	3,300 (280)	종로6가89	청량리동 749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2020-427호 (2020.10.22)	-
기정	대로	2	58	33~35 (33)	주간선 도로	1,850 (150)	용두동 (대2-14)	행당동 (118광장)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2020-427호 (2020.10.22)	-
기정	중로	2	1	15	집산 도로	117	용두동24-2	용두동20-36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2020-427호 (2020.10.22)	-
기정	중로	2	500	15	집산 도로	343	용두동47-7	용두동12-5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2020-427호 (2020.10.22)	-
기정	중로	2	501	15	집산 도로	85	용두동26-27	용두동20-80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2020-427호 (2020.10.22)	-
기정	중로	2	502	15	집산 도로	152	용두동23-1	용두동20-3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2020-427호 (2020.10.22)	-
기정	중로	2	503	15 (13)	집산 도로	150	용두동14-20	용두동12-5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2020-427호 (2020.10.22)	-
기정	중로	3	4	12	국지 도로	78	용두동26-14	용두동26-17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2020-427호 (2020.10.22)	-

※ 1. ( )는 용두1구역 연장 및 폭원임

② 입체적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분	도면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규모		비고
기정	1	도로	· 기점부 : 용두동 23-12 · 종점부 : 용두동 23-47	길이(m)	60		5구역
				폭(m)	15		
				높이	지하2m~지상15m이하	도시계획시설(도로)	
					지하2m초과,지상15m초과	비도시계획시설	
기정	2	도로	· 기점부 : 용두동 14-10 · 종점부 : 용두동 14-21	길이(m)	94		6구역
				폭(m)	15		
				높이	지하2m~지상15m이하	도시계획시설(도로)	
					지하2m초과,지상15m초과	비도시계획시설	
변경	2	도로	· 기점부 : 용두동 14-10 · 종점부 : 용두동 14-21	길이(m)	94		6구역
				폭(m)	15		
				높이	지하2m~지상15m이하 (건축물간 연결을 위한 시설물 (연결브릿지) 부분 6m)	도시계획시설(도로)	
					지하2m초과,지상15m초과	비도시계획시설	

③ 공원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	공원	소공원	동대문구 용두동 26-1 일원	1,568.8	-	1,568.8	서울시고시 제2020-427호 (2020.10.22)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변경

①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율(%)	비고
	기 정	증 감	변경후		
획지	13,633.8	-	13,633.8	100.0	-

②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용 도	비 고
기정	주용도	• 판매, 업무	업무기능
		• 판매, 주거	주거기능
변경	주용도	• 주거, 업무	복합기능

㉡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 건폐율 계획

구 분	건폐율 계획(%)	비 고
기 정	50	일반상업지역 / 준주거지역
변 경	50	일반상업지역

▮ 용적률 계획

구 분	용적률 계획(%)	비 고
기 정	899	일반상업지역
	549	준주거지역
변 경	1,100	일반상업지역

▮ 높이계획

구 분	높이(m)	층수(지상/지하)	비 고
기 정	90m이하	지상24층이하/지하5층	일반상업지역
	60m이하	지상18층이하/지하5층	준주거지역
변 경	200m이하	지상61층이하/지하8층	일반상업지역

③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변경

구 분		적용위치		계 획 내 용
기 정	건축한계선	왕산로변		3m
		고산자로변		3m
	벽면한계선	1, 2지구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4m이격 (지상부1층에만 적용)
변 경	건축한계선	왕산로변	6지구	5m
			6지구외	3m
		고산자로변		3m
	벽면한계선	1, 2지구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4m이격 (지상부1층에만 적용)

④ 경관계획(배치 · 형태 포함) : 변경없음

㉠ 건축물 배치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위치	계 획 내 용
건축물의 방향성	공동주택	• 건축물의 주된 벽면 및 출입구의 방향은 대지가 접하는 전면도로의 방향과 일치되도록 배치 • 가각에 접한 대지의 벽면은 접한 모든 도로의 방향에 일치되도록 배치 권장
건물 진출입구	생활가로변 근린생활시설	• 생활가로에 면한 근린생활시설의 벽면 및 주출입구 방향은 가로의 방향과 일치되도록 권장 • 생활가로에 면한 근린생활시설의 출입구는 가로에서 개별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

㉡ 건축물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위치	계 획 내 용
건축물 외부형태	공동주택	•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입면을 지양하고 변화감 있는 입면으로 계획 •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지나친 색채 사용 금지 • 주변 자연과 조화를 유지 •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 • 대항부에서 조망되는 옥탑부에 우수한 입면 계획 권장 • 물탱크, 냉난방시설 등의 부속시설의 외부노출 지양
저층부 외관	생활가로변 근린생활시설	•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질서있는 입면 계획 권장 • 생활가로에 면한 1층 벽면은 투시형으로 계획 • 장대한 입면 및 돌출경관 지양 • 쇼윈도 설치 및 야간조명 설치
재료 /색채	공동주택	• 넓은 면에 원색계열 재료 및 도료 사용 금지
진입구 처리	공동주택	•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보도와 단차를 가급적 지양 • 접근로는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 및 형태로 계획

㉢ 경관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위치	계 획 내 용
개방감	-	• 주변지역 건축계획과 연계한 통경축 확보
조명계획	-	• 주변 빛 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객관적 수치를 검토하여 야간 조명 설치계획
스카이라인	-	• 주변지역과 조화된 스카이라인 계획 • 주변지역에 대한 조화로운 경관계획 유도

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내 용	비고
공개공지	• 단지 내 공개공지는 주변의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지역주민이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성	-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간은 보도와 연속적으로 조성하도록 하며 단차는 최소화하여 조성함	-
공공보행통로	• 24시간 개방되어 보행자 통행에 이용될 수 있도록 대지 내에 조성	-

㉡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차량출입 불허구간	왕산로	• 간선 및 일부 이면도로에서 대지 안으로의 차량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

㉢ 환경관리계획

구 분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검토항목	계획에 반영사항
1. 생태 면적율	30%이상	○	• 대상지 내 충분한 녹지를 조성하여 30.02% 조성	•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옥상녹화, 투수포장 적용
2. 생태 네트워크	녹지평가 지표1	○	• 현재 녹지가 미미한 수준임	• 조경계획을 반영하여 녹지 확보
3. 지형 변동	절성토비율 20%미만	○	• 본 대상지는 건축물 1개동이 있으며, 업무시설이 입지해있으며, 평탄한 지형임 • 부지조성시 지하굴착에 따른 토량 발생	• 발생토량은 토석정보 공유시스템을 통해 재활용
	지형변동비율 30%미만	○	• 지형변동 비율 미미함	•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지형변동 최소화	○	• 지하공간계획으로 지하수 유출 일부 예상	• 지하공간 최소화, 흙막이공법 실시
4. 비오톱	3등급	○	•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상 비오톱유형평가 5등급으로 조사됨	• 대지면적내 조경녹지 등을 조성할 계획임에 따라 새로운 녹지공간을 형성
5. 일조	연속 2시간 확보	○	• 대상지 서측과 북측은 업무시설 및 상업시설이 입지하고 있으며, 동측으로 일부 주거지역이 분포함	• 일조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6.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 바람길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
7. 에너지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	• 에너지 사용량 증가	• 청정연료 사용 • 에너지절약형 설계기법 도입
	신재생에너지 사용	○	-	•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을 검토

구 분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검토항목	계획에 반영사항
8. 경관	Skyline보전	○	• 본 대상지 주변에 업무시설 및 상가시설이 고밀개발되어 지역중심지로서의 도시경관을 이룸	• 인접지역 경관에 위압감 해소를 위해 기준 높이를 적용하여 주변 건물과의 스카이라인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
	조망권 확보	○	• 주변지역의 조망권 보호 필요	• 합리적인 조경계획수립 및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를 통해 녹지공간 확보를 비롯한 녹색경관창출을 도모함
9. 휴식 및 여유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 대상지 남측으로 용두공원과 청계천이 위치함	• 자연 · 인공지반 등 녹지공간 최대확보 • 옥상녹화 등을 통한 휴식공간 제공 • 대상지 동측에 소공원 조성계획
10.보행 친화공간	보행자전용도로 계획수립	○	• 사업지 북측으로 왕산로(6차로, 30.0m)지나가고 있음	• 용두1구역 내 도로 및 공공보행통로 계획 수립 • 지구서측 공공보행통로 계획
	자전거전용도로 계획수립	○	• 사업지 북측(왕산로) 자전거도로 연계 필요	• 북측 왕산로변 자전거도로계획
11. 소음 및 진동	소음환경 기준이하	○	• 공사중 인근지역에 공사장비 가동에 따라 소음 65dB(A)이상 발생 예상 • 도로에 의한 교통소음 영향	• 환경기준이하 유지를 위하여 가설방음판넬 설치후 공사시행 • 차음설계(창호,외벽)를 통한 정온한 환경 유지
12. 폐기물	건설폐기물 재활용	○	• 공사시 건설폐재 및 폐유동 발생	• 건설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하여 재활용토록하며, 폐유는 별도시설에 보관후 전량 위탁처리토록 하겠음

㉣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결정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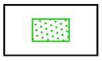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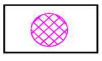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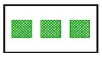
▮ 주택의 규모별 비율

– 공공임대주택은 표준건축비 매입(서울시) 및 부속토지는 기부채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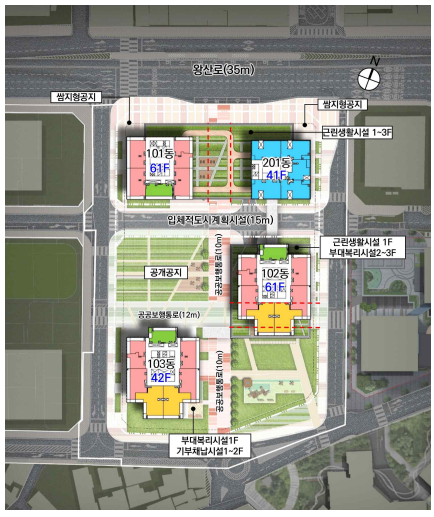
구 분		세대수(세대)	비율(%)	산출근거
총 세대수		697	–	
의무 공공임대주택 세대수		138	100.0	• 전체 세대수(977세대)에서 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세대수(280세대) 제외 = 697세대 • 재개발의무임대 – 총세대수의 5%이상 (697×5%=34.85 ≤ 138세대) • 공공임대(주거비율완화) – 전체 연면적 188,840.34㎡의 10.04%에 해당하는 연면적 18,952.93㎡ 공급
	40㎡이하	57	41.3	
	40㎡초과 ~ 50㎡이하	–	–	
	50㎡초과 ~ 60㎡이하	42	30.4	
	60㎡초과 ~ 85㎡이하	39	2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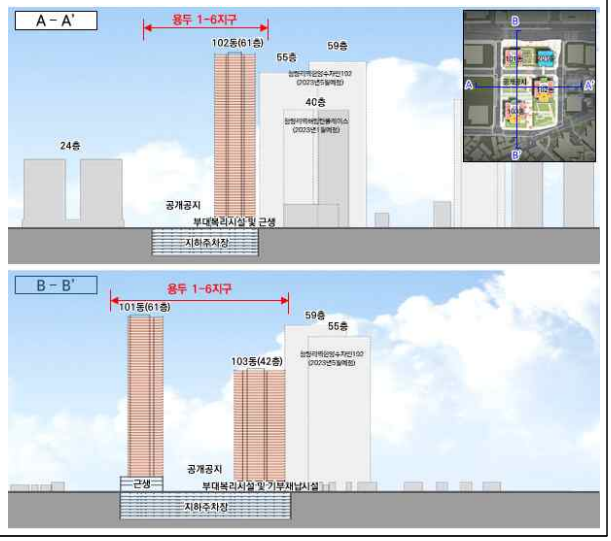
※ 추후 동호수 전산추첨을 통해 공급(임대 선추첨, 후분양)
※ 「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급 규모에 대한 계획기준 반영

⑥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

구분 및 범례	세부지침	계획내용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 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되어서는 아니 되도록 지정한 선을 말한다. • '건축한계선' 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른다.	왕산로	3m,5m
		고산자로	3m
 벽면한계선	• '벽면한계선' 은 특정층의 건축물 외벽면의 위치가 넘어서는 안되도록 지정하는 선을 말한다	1지구,2지구	4m
 공개공지	• '공개공지' 란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간으로, 시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 '공개공지' 는 도시의 공적공간으로서 시민의 자유로운 활동과 가로활성화 차원에서 저층부 용도와 연계하여 활용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쌈지형공지	• '쌈지형 공지' 란 일반 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휴게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전면공지, 공개공지, 대지안의 조경 등을 소공원 형태로 보행결절점에 조성하는 공지를 말한다.	6지구	60㎡이상
		6지구 외	45㎡이상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출입 불허구간' 은 도로에서 대지 안으로 차량출입이 전면 금지되는 구간을 말한다. • '차량출입 불허구간' 의 위치는 지침도를 따른다.	-	
 공공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 란 일반인에게 24시간 개방되어 보행자 통행에 이용될 수 있도록 대지 내에 조성한 통로로, 지상부 설치 또는 지하통로형, 필로티형 등으로 설치 ·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진입부 및 보행로가 명확히 인지되도록 조성한다.	1지구,2지구	각8m
		5지구	12m
		6지구	10,12m

건축배치도 및 단면도





□ 2023년 제10차(’ 23. 09. 25)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결과 : 수정가결

심의결과	조치계획	비고
○ 왕산로변 안전한 대중교통이용을 위한 보행안전대책 고려	○ 왕산로변 버스정류장 주변 및 청량리역을 이용하는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보행자 안전보호시설 등을 설치하여 교통영향평가시 반영하겠음	반영
○ 지하주차장 차량 출입 동선과 통행량을 고려한 출입구 위치 적정성을 검토하고 교통영향평가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것	○ 사업지 차량진출입구는 대지의 위치 및 인접도로 통행여건을 고려하여, 진출입구 위치를 통합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지하주차장 차량 출입 동선과 통행량을 고려한 출입구 위치 적정성을 검토하여 교통영향평가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음	반영
○ 공개공지는 생태적, 입체적인(정원형) 관점에서 검토하고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논의하여 절정할 수 있도록 할 것	○ 공개공지는 생태적, 입체적인 시설, 요소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논의,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음 ○ 공개공지는 광장형보다는 생태적 요소를 고려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겠으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음	반영
○ 건축계획은 현상설계 공모를 추진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소형비율(59㎡이하)은 과반이상으로 조정할 것	○ 현상설계 공모는 주민대표회의 및 기 선정된 공동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토록 하겠음 ○ 건축심의 시 공공임대주택의 소형비율(59㎡이하)은 과반이상으로 조정토록 하겠음	반영

12.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 사항은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에 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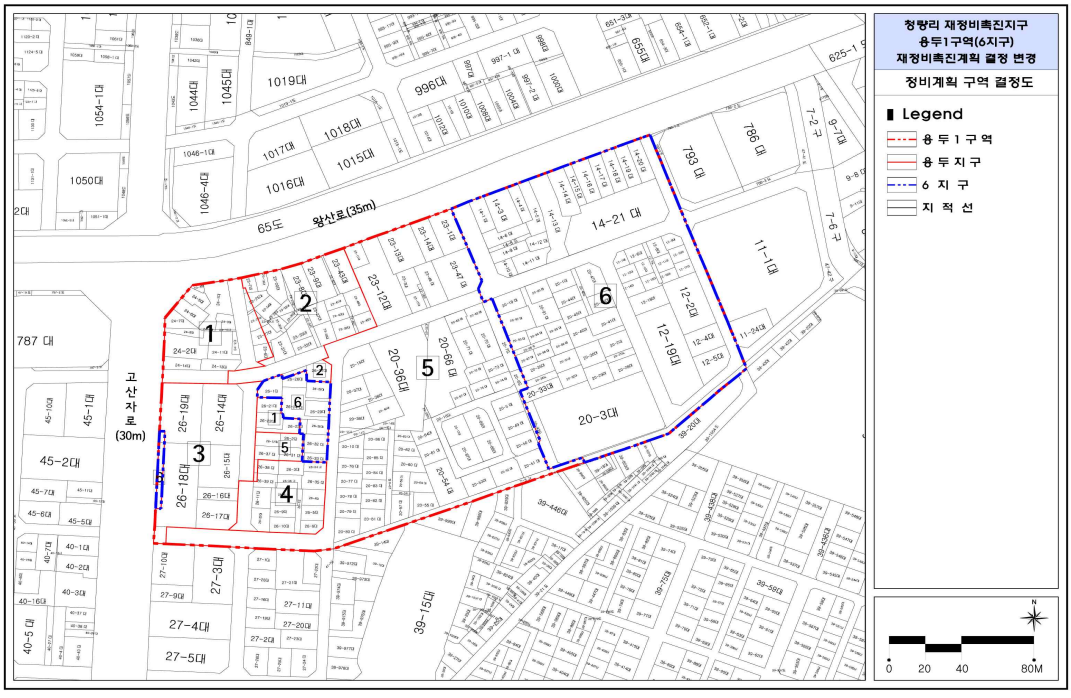
13. 지형도면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와 동대문구 주거정비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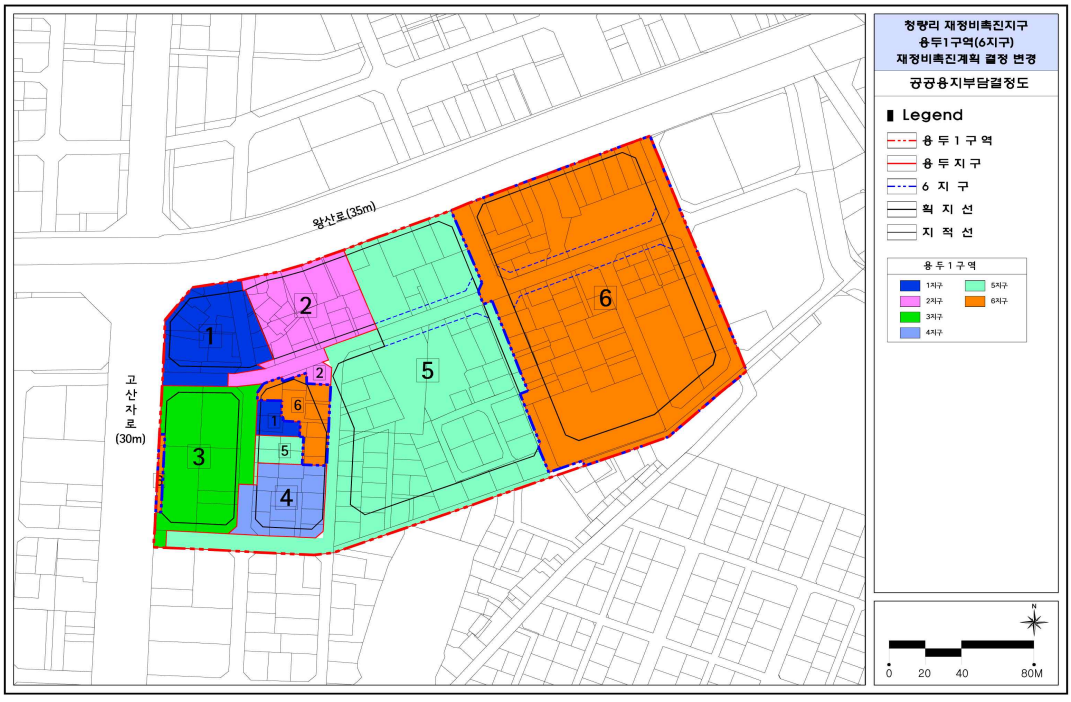
14.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02-2133-7217) 및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 02-2127-4293)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련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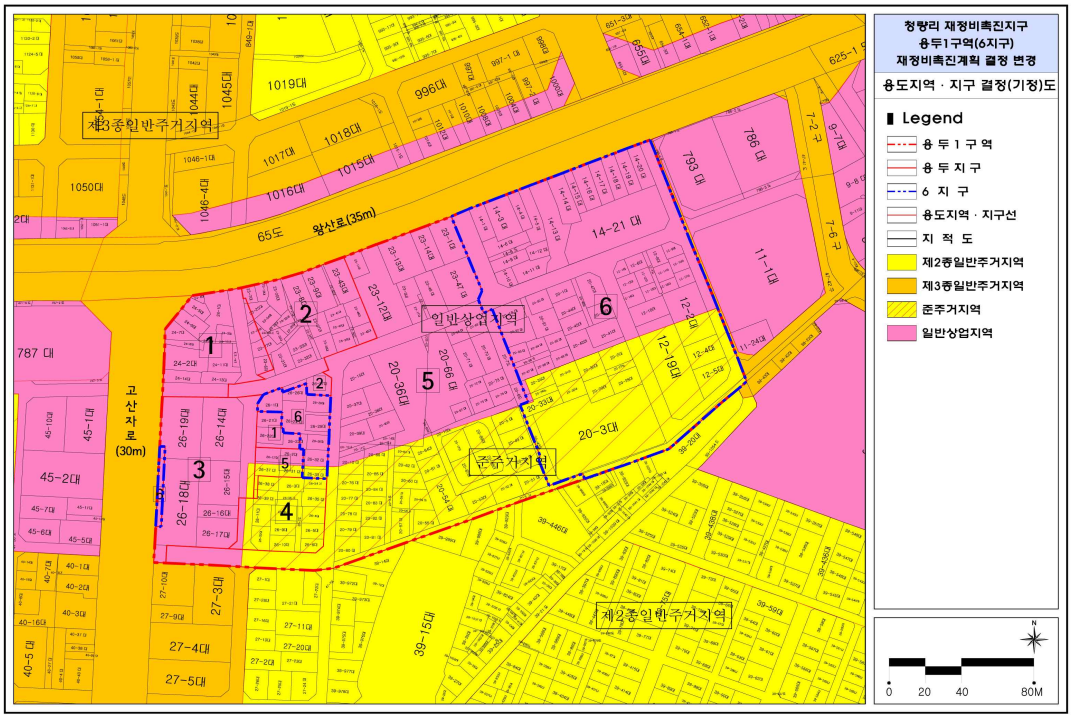
■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용두1구역(6지구) 정비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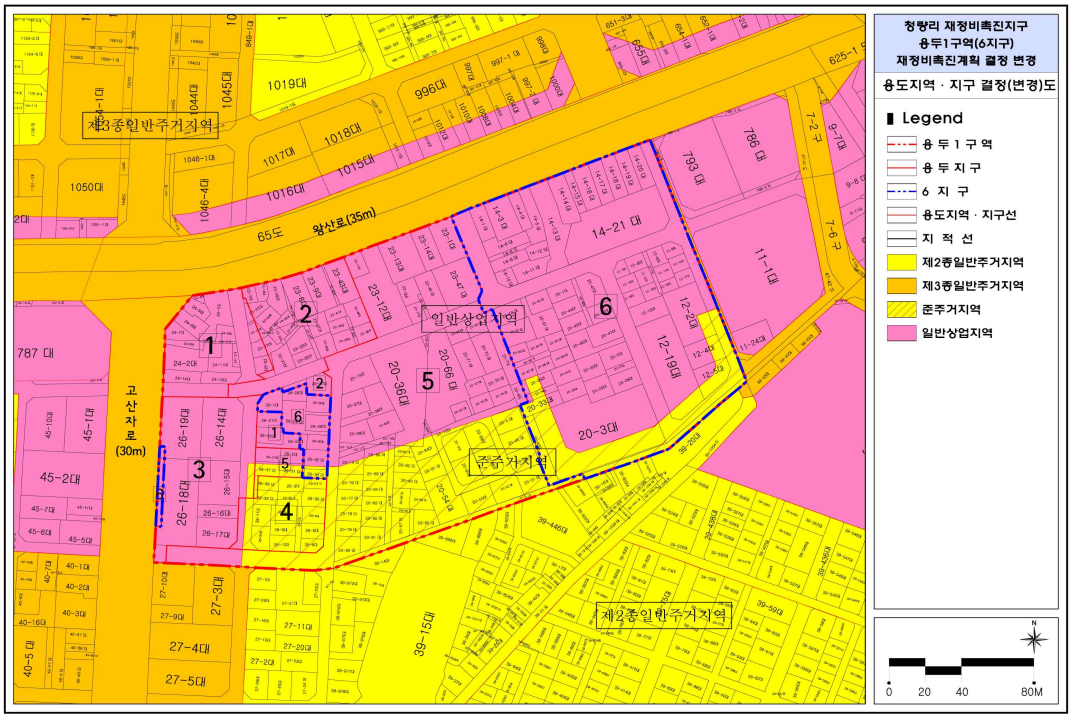
■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용두1구역(6지구) 공공용지 부담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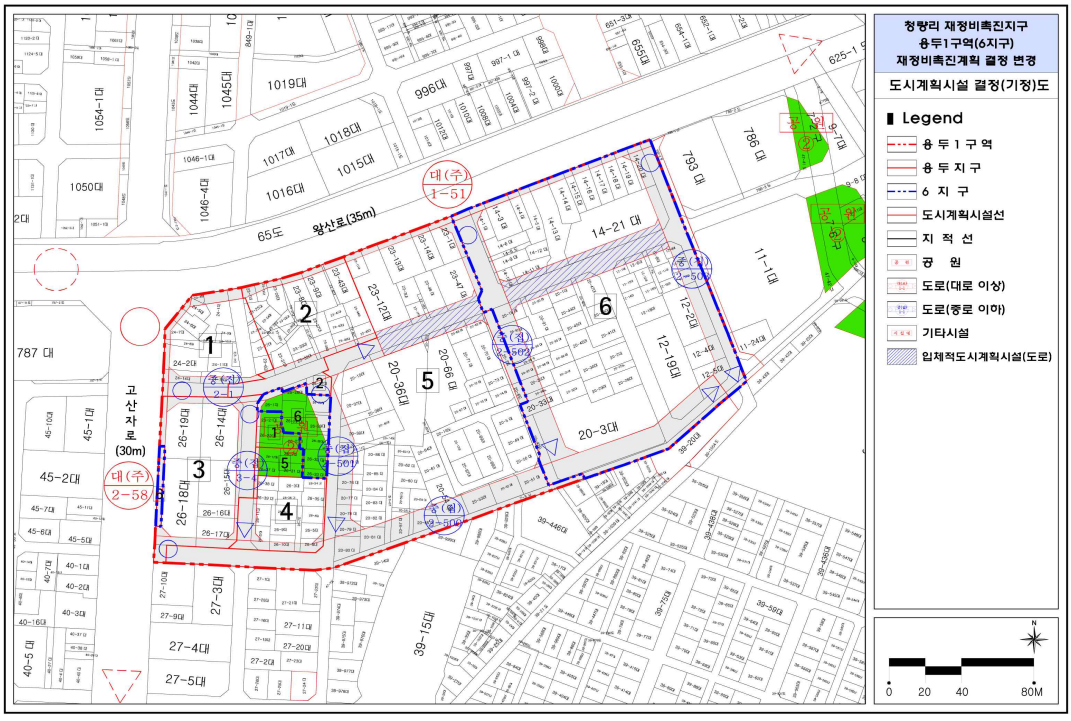
■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용두1구역(6지구) 용도지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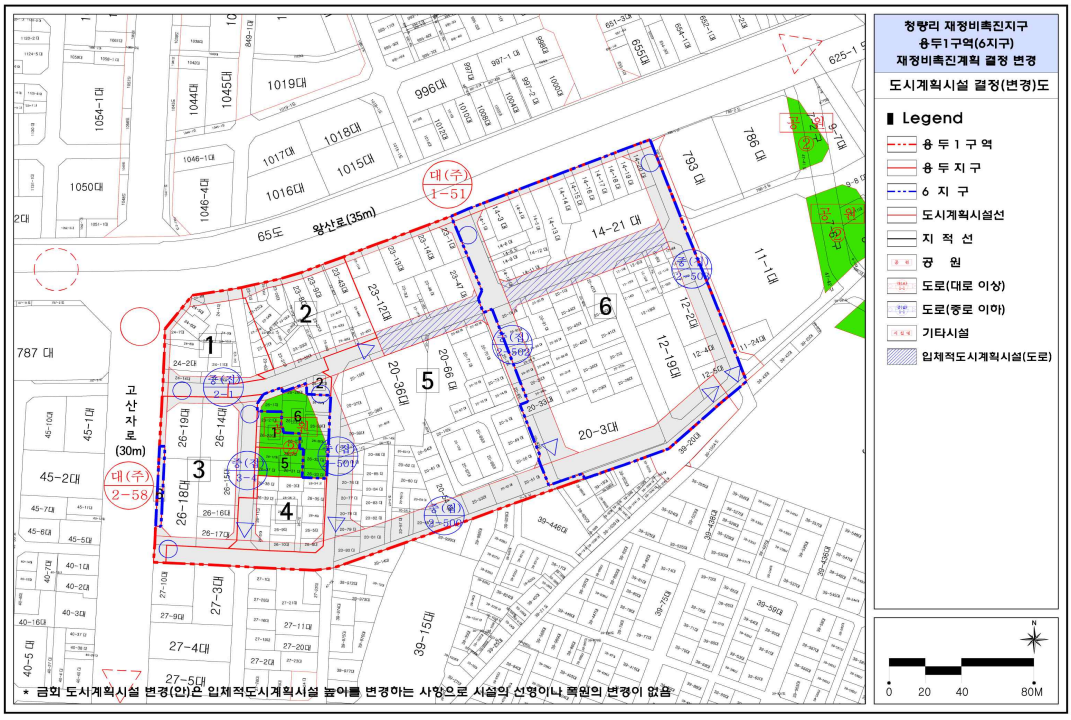
■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용두1구역(6지구)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용두1구역(6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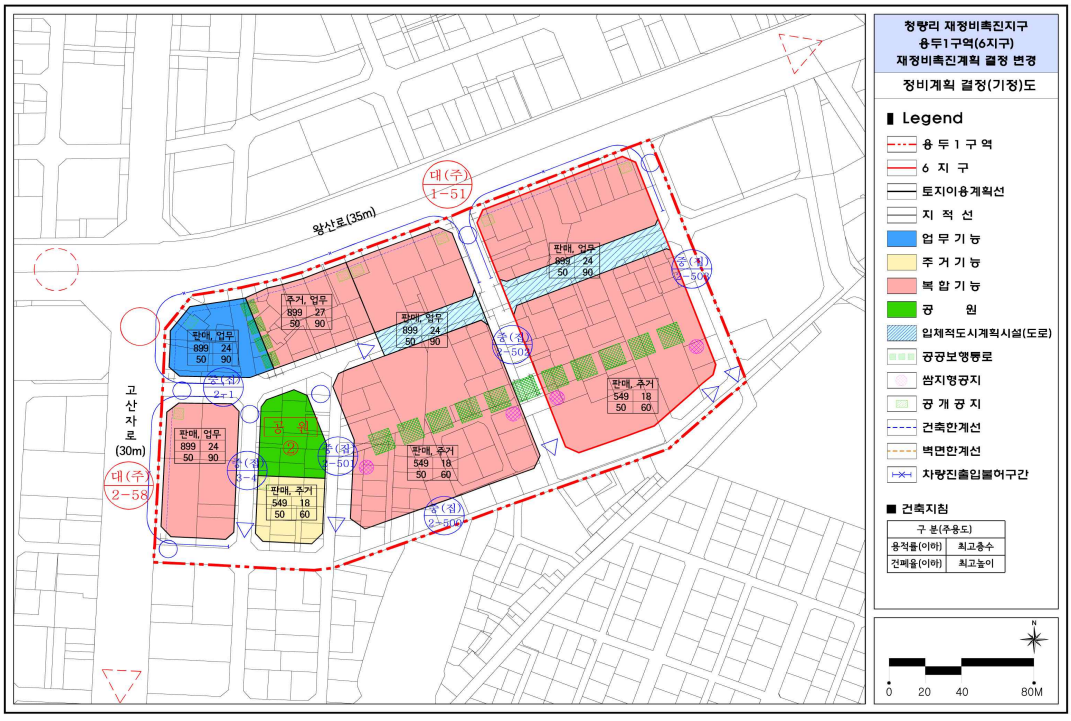


■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용두1구역(6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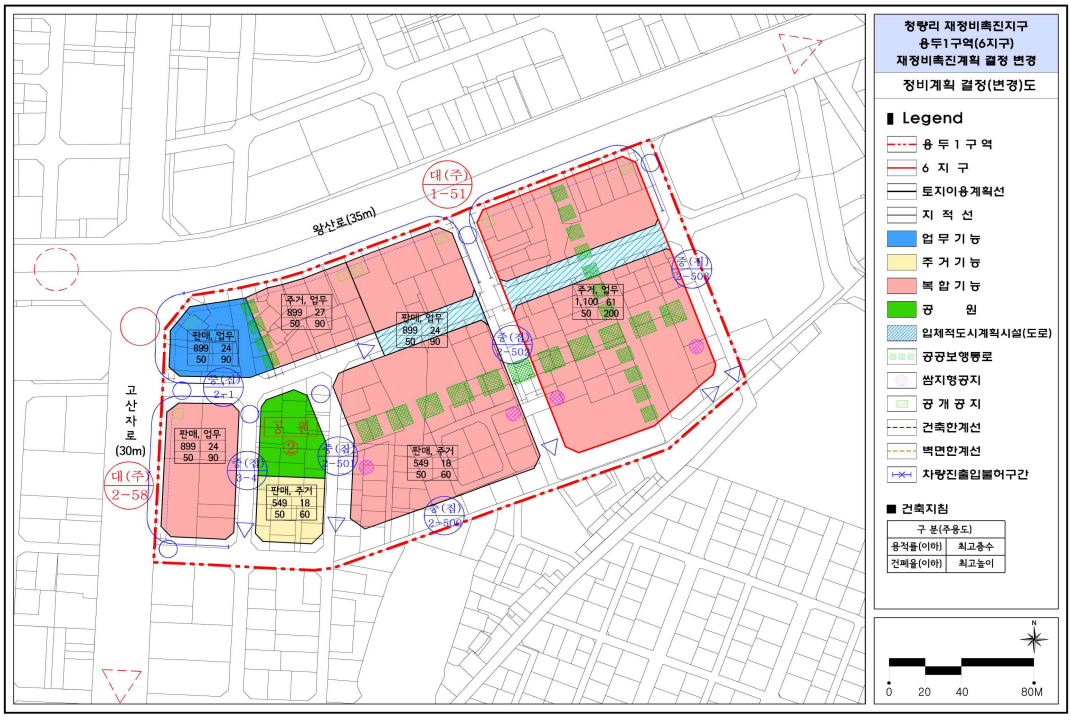


* 금회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은 입체적도시계획시설 높이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시설의 선형이나 폭원의 변경이 없음.

■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용두1구역(6지구) 정비계획 결정(기정)도



■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용두1구역(6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601호

성산지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성산시영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446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에 적합한 범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3년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3.10.18.)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변경)하고, 국토계획법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계획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성산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마포구 성산동 446번지 일대	-	증) 182,618.4	182,618.4	

2.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추정 비례율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 수입 - 총 지출) / 종전자산 총액 X 100% •추정비례율 : 100.46% = (62,652억 - 19,897억) / 42,560억 X 100 = 100.46% - 총수입 추정 : 62,652억 - 총지출 추정 : 19,897억 - 종전자산총액 추정 : 42,560억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개별 공시가격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개별 공시가격 확인 •공동주택 소유자 = 공동주택 공시가격 X 보정률(1.46) ※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에 토지평가액 포함하며 상기 보정률은 kb평균가격과의 격차율임 •상가 소유자 = 토지가액 + 건물가액 - 토지 = 개별공시지가 X 토지면적 X 보정률(2.07) - 건물 = 개략단가(약 140만원/3.3㎡) X 연면적 ※ 건물의 개략단가는 경과연수 35년 기준 평균 약 140만원/3.3㎡ 추정

<table>
<tr><td>추정
분담금
산출</td><td>•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
<table>
<tr><th colspan="2">권리자 분양가 추정액(a)</th><th>추정 권리가액(b)</th><th>추정분담</th></tr>
<tr><td>전용 49㎡형</td><td>10.05억</td><td rowspan="5">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100.46%)</td><td rowspan="5">권리자분양가 추정액 - 추정 권리가액 (+ : 부담 / - : 환급)</td></tr>
<tr><td>전용 59㎡형</td><td>12.39억</td></tr>
<tr><td>전용 74㎡형</td><td>14.32억</td></tr>
<tr><td>전용 84㎡형</td><td>15.24억</td></tr>
<tr><td>전용 118㎡형</td><td>19.61억</td></tr>
</table></td></tr>
</table>

※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은 정비계획 결정도서 참조.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182,618.4	100.0	
정비기반시설 등	소 계	21,330.9	11.7	
	도 로	6,830.9	3.8	월드컵북로(존치)
	공 원	11,455.0	6.3	
	녹 지	3,045.0	1.6	
획 지	소 계	161,287.5	88.3	
	획지1	123,143.0	67.5	공동주택용지
	획지2	37,144.5	20.3	
	획지3	1,000.0	0.5	유치원용지

4.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82,618.4	-	182,618.4	100.0	
주거 지역	소 계	182,618.4	-	182,618.4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182,618.4	-	182,618.4	100.0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도로 (변경없음)

구 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 (m)								
기 정	대 로	3	30	25	보조 간선도로	3,250	성산동	수색동	일반 도로	-	서고 제386호 (1978.08.10.)	

나. 철도 (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	철 도	도시철도 (6호선)	은평구 신사동 24일대 ~ 중랑구 신내동 355일대	170.7	-	170.7	서고 제1994-104호 (1978.08.10.)	

다.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1	공 원	근린공원	성산동 450	-	증) 11,455.0	11,455.0	-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 원	• 근린공원 신설 - 면적 : 11,455.0㎡	• 근린공원 조성을 통해 불광천 및 월드컵공원 이용객들의 휴식공간 조성

라.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1	녹 지	연결녹지	성산동 450	-	증) 1,853.2	1,853.2	-	
신 설	2	녹 지	연결녹지	성산동 466	-	증) 1,191.8	1,191.8	-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녹 지	• 연결녹지 신설 - 면적 : 1,853.2㎡	• 성중길변 근린공원 및 메타세콰이어 데크길과 연계될 수 있도록 연결녹지 조성
2	녹 지	• 연결녹지 신설 - 면적 : 1,191.8㎡	

마. 하수도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폭 원	연 장	시 점	종 점	최초 결정일	비 고
폐 지	-	하수도	6m	1,100m	성산동 481-1	성산동 398-2	서고 제5호 (1977.01.04.)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하수도	• 하수도 폐지	• 원활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역내 미집행 하수도시설 폐지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획지1	획지2	계	
신 설	공동이용시설	경로당	획 지	800.0	400.0	1,200.0	1,500세대 이상 500㎡ 이상
		어린이집		900.0	600.0	1,500.0	1,500세대 이상 725㎡ 이상
		주민공동시설		3,000.0	2,500.0	5,500.0	-
		주민운동시설		3,000.0	800.0	3,800.0	-
		작은도서관		450.0	250.0	700.0	1,500세대 이상 298㎡ 이상
		어린이놀이터		3,200.0	1,300.0	4,500.0	-
		다함께돌봄센터		400.0	200.0	600.0	-
		커뮤니티시설(개방형)		1,830.0	-	1,830.0	실내형 어린이놀이터 등
		소 계		13,580.0	6,050.0	19,630.0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획지1	획지2	계	
	관리사무소		200.0	80.0	280.0	10㎡+(4,823-50)×0.05 = 248.65㎡ 이상
	합 계		13,780.0	6,130.0	19,910.0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건축법」 등 관련 법령 기준 적용.

7.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에 관한 계획

구 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계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계	성산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82,618.4	-	160,287.5	-	37	-	-	37	-	
신 설			획지1	123,143.0	성산동 450	30	-	-	30	-	
신 설			획지2	37,144.5	성산동 446	7	-	-	7	-	

8. 건축시설계획

가.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구 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 이(m) (최고층수)	비 고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정비 계획	법적 상한		
신 설	성산시영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82,618.4	획지1	123,143.0	성산동 45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 이하	250% 이하	299.96% 이하	120m이하 (40층이하)	
			획지2	37,144.5	성산동 446						
			획지3	1,000.0	성산동 450	유치원	관련법규에 따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공급계획 : 4,823세대

■ 전체건립규모 ※ 세대수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

구 분		세대수(공공주택)	비 율(%)
계		4,823(516)	100.0(10.7)
85㎡ 이하	60㎡이하	2,100(469)	43.5 (9.7)
	60㎡ ~ 85㎡이하	2,443 (47)	50.7 (1.0)
85㎡ 초과		280 (-)	5.8 (-)

-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2">구역구분</th><th colspan="2">가구 또는
획지 구분</th><th rowspan="2">위 치</th><th rowspan="2">주용도</th><th rowspan="2">건폐율
(%)</th><th colspan="2">용적률(%)</th><th rowspan="2">높 이(m)
(최고층수)</th><th rowspan="2">비 고</th></tr>
<tr><th>명 칭</th><th>면 적
(㎡)</th><th>명 칭</th><th>면 적
(㎡)</th><th>정비
계획</th><th>법적
상한</th></tr>
<tr><td colspan="5"></td><td colspan="8">- 공공주택(국민주택규모) 건설 : 초과용적률의 50% 이상
※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에 따른 공공주택의 규모 및 세대수는 건축심의를 통해 확정</td></tr>
<tr><td colspan="5">심의완화 사항</td><td colspan="8">• 공공주택건설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
법적상한용적률 299.96%</td></tr>
<tr><td colspan="5">건축물의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td><td colspan="8">• 건축한계선
- 획지별 아래와 같이 건축한계선을 지정, 건축한계선으로 발생하는 전면공지는 보행공간 및 차량진출입구변 가감속차로 조성
<table>
<tr><th>구 분</th><th>건축선 지정 내용</th><th>비 고</th></tr>
<tr><td>획지1, 획지2,
획지3</td><td>• 마포구청변 : 13m 이상
• 그 외 도면표시 : 3m 이상</td><td></td></tr>
</table>
• 벽면지정선 : 공원 변 3m(공원과 동일한 레벨로 1개층 이상 배치)</td></tr>
<tr><td rowspan="2">기타사항에 관한
계획</td><td colspan="4">공공보행통로</td><td colspan="8">• 폭원 10m 이상 : 마포구청 변(보도 6m, 양방향 자전거통로 4m 이상)
• 폭원 6m 이상 : 공원~월드컵북로, 공원~월드컵로 36길(성원초등학교 변)
• 주변과 구분되는 포장을 통해 공공보행통로 명확화
• 24시간 일반이 이용가능하도록 상시 개방</td></tr>
<tr><td colspan="4">차량진출입
불허구간</td><td colspan="8">• 월드컵북로 및 월드컵로 36길, 성암로 9길변 지정
• 원활한 차량흐름 유도 및 보행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출입구 제외 대지에서 차량 진·출입 불허</td></tr>
</table>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조정 될 수 있음.

나. 용적률 계획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5">산 정 내 용</th></tr>
<tr><td rowspan="2">토지
이용
계획</td><td>계
(구역면적)</td><td>택지
(공동주택 등)</td><td>신설
정비기반시설</td><td>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td><td>택지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td></tr>
<tr><td>182,618.4㎡</td><td>160,287.5㎡</td><td>21,330.9㎡</td><td>6,830.9㎡</td><td>-</td></tr>
<tr><td>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td><td colspan="5">•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택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21,330.9㎡ - 6,830.9 - 0㎡ = 14,500.0㎡ (※ 순부담률 8.2%)
※ 14,500.0㎡(21,330.9㎡ - 6,830.9㎡) / 175,787.5㎡(182,618.4㎡ - 6,830.9㎡)</td></tr>
<tr><td>기준용적률</td><td colspan="5">• 기준용적률 : 210%</td></tr>
<tr><td>허용용적률
(사업별 인센티브
항목 적용)</td><td colspan="5">•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최대 20%) = 210% + 14% = 224%
<table>
<tr><th colspan="2">항 목</th><th>인센티브</th><th>적용여부</th></tr>
<tr><td>신·재생에너지</td><td>•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20% 이하 15% 초과</td><td>2%</td><td>적용(2%)</td></tr>
<tr><td>지능형건축물</td><td>• 2등급</td><td>12%</td><td>적용(12%)</td></tr>
<tr><td colspan="2">합 계</td><td colspan="2">14%</td></tr>
</table>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2023.03.22.)전 정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을 열람공고한 경우로 종전 기준을 적용. (※ 정비기본계획 개정 시 변경된 항목 적용 가능.)</td></tr>
<tr><td rowspan="2">상한용적률</td><td colspan="5">•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완화
• 상한용적률은 도시계획과의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개정」 적용</td></tr>
<tr><td colspan="3">• 상한용적률
= 허용or기준용적률×(1+1.3×가중치×α토지+0.7×α현금·건축물)
▸ 대상지
·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부채납 8.2%)
· 허용용적률 : 224%, 대지면적 : 160,287.5㎡
▸ 기부채납 내용 (가중치 1.0)
· 토지(기부채납 및 건축물 토지지분) 제공면적 : 14,500.0㎡
· 현금·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환산부지면적 : “해당없음”
⇒ 224%×(1+1.3×1×0.09046)
∴ 상한용적률 = 250.34% [250% 이하]</td><td colspan="2">α토지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14,500.0㎡ / 160,287.5㎡
= 0.09046
α현금·건축물 = 공공시설 등 부지(현금 및 건축물 설치비용) 제공 면적/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해당없음”</td></tr>
<tr><td>법적
상한용적률</td><td colspan="3">• 공공주택 건설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
• 법적상한용적률 = 299.96%(계획 기준) 이하</td><td colspan="2">•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용도지역별 법적상한용적률 이하로서 건축심의에서 최종 확정</td></tr>
</table>

9.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 고
재건축사업	구역지정 후 4년 이내	성산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	현황) 3,710세대 계획) 4,823세대 증) 1,113세대	

10.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항 목		지 점	개 선 방 안
주변가로 및 교차로	사업지외부	-	• 영향권내 교차로 신호주기 최적화 제시(7개소)
		-	• 월드컵북로상 진출입 교차로 개소수 축소(3개소→2개소)
		Ⓐ	• ⑤성산고가차도 하부 교차로 운영계획 수립 - 차로 중앙선 및 정지선 설치 - 도류화 및 노면표시 설치 - 점멸등 및 규제봉 설치
		Ⓑ	• 성산2동 우체국 월드컵북로상 진출입 계획 - 보도턱 낮춤 시공, 우회전 진출입 - 이동식 볼라드 2개소 설치
		Ⓗ	• 중암교 도로확폭(25m→29m, 왕복5차로→왕복6차로) ※ 성산시영아파트 재건축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주체가 구체화되어 사업시행계획인가 진행 시 협의 후 시행계획 수립
		-	• 중암교 앞 사거리 남북접근로 차로수 추가설치 건의 - NB접근로 : 우회전차로 60m - SB접근로 : 좌회전차로 46m
		Ⓘ	• 사업지 동남측 이면도로 노상주차 삭제(16면) 및 일방통행 해제
	사업지내부	Ⓒ	• 월드컵북로 좌회전차로 연장 설치 - ②중암교 앞 사거리 : B=3.0m, L=36.0m, T=24.0m - ④성산119 안전센터 앞 교차로 상암방면 : B=3.0m, L=50.0m, T=24.0m, 홍대방면 : B=3.0m, L=67.0m, T=24.0m
		Ⓓ	• 공동주택 진출입구 가·감속차로계획(안) 제시 - 월드컵북로 상암 방면 가속차로 : B=3.0m, L=58.0m, 가·감속차로 : B=3.0m, L=240.0m - 월드컵북로 홍대 방면 가·감속차로 : B=3.0m, L=284.0m, 가속차로 : B=3.0m, L=127.0m - 월드컵로36길 가속차로 : B=3.0m, 마포구청 연접지점 까지 차로폭 확폭 감속차로 : B=3.0m, L=15.0m, T=12.0m
		-	•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재지정 - 월드컵북로, 월드컵로36길, 성암로9길 변

<table>
<tr><th>항 목</th><th>지 점</th><th>개 선 방 안</th></tr>
<tr><td rowspan="9">대중교통
자전거
및 보행</td><td>-</td><td>• BIT 설치(3개소)</td></tr>
<tr><td>-</td><td>• 성산119안전센터(14161) 버스정류장 20m 이설 및 정차대 설치</td></tr>
<tr><td>Ⓔ</td><td>• 불광천 자전거통로 연계를 위한 자전거경사로 설치</td></tr>
<tr><td>Ⓕ</td><td>• 근린공원 ↔ 월드컵경기장(성미다리) 연결통로 확보</td></tr>
<tr><td>-</td><td>• 보행자 이동편의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지정
- 공통 : B=6.0m 이상, 3개소
- 마포구청변 : B=10.0m(보도 6m, 양방향 자전거통로 4m 이상)</td></tr>
<tr><td>-</td><td>• 도로 접한 공지는 보도부속형 전면공지(3~6m) 확보
- 월드컵북로, 상암로9길, 월드컵북로38길: 3.0m
- 월드컵로36길 : 6.0m
※사업지 주변보도는 도로구조및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도록 유효보도폭 2.0m이상 확보
※특별계획구역내 전면공지(보도부속형/차도부속형/식수대[시설물구역])는 보도 및 차도의 기능 존치와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성 확보방안 수립</td></tr>
<tr><td>-</td><td>• 보행공간 단절지점 횡단보도 설치 (11개소)</td></tr>
<tr><td>-</td><td>• 성중길 힐링 · 테마 산책로 조성사업
- L=395m, B=2.0~10.3m 보행공간 정비 · 확장</td></tr>
<tr><td>Ⓒ</td><td>• 월드컵36길 마포구청 소유 부지는 향후 사업시행계획 수립시 구청과 협의하여 도로확폭 조성</td></tr>
<tr><td>주차</td><td>-</td><td>• 사업지내 적정규모의 주차대수 확보
<table>
<tr><td>법정주차</td><td>4,954대</td></tr>
<tr><td>주차수요</td><td>5,024대(2029년, 원단위법)</td></tr>
<tr><td>계획주차</td><td>8,238대
- 법정대비 166.3%, 수요대비 164.0%
- 세대당 1.71대
※ 지역주민을 위한 외부개방주차장(근린생활시설 지하1층) 15대 설치</td></tr>
</table></td></tr>
<tr><td rowspan="2">교통안전
및 기타</td><td>-</td><td>• 월드컵로36길 교통안전시설 설치
- 고원식 교차로 설치(3개소)
- LED 표지병 설치(3개소)
- 바닥형 보행자 신호등 설치(2개소)
- 신호등 설치(2개소)</td></tr>
<tr><td>Ⓐ</td><td>• 월드컵북로38길 교통안전시설 설치
- 고원식 교차로 설치(2개소)
- LED 표지병 설치(1개소)</td></tr>
</table>

항 목	지 점	개 선 방 안
	Ⓑ	• 사업지 주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 상암방면 미끄럼방지포장 설치(1개소) - 성산119 안전센터 앞 교차로 바닥형 보행자 신호등, 차량유도선, 무인단속CCTV 설치 - 성산대우아파트교차로 횡단보도 1개소 추가 설치 및 바닥형 보행자 신호등 설치

※ 주 지점은 교통처리계획도 참조.

11.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환경보전	자연환경	• 절성토의 균형고려, 지형변화의 최소화 • 기존구역 내 녹지율을 향상시키는 녹지면적 확보 • 차폐 및 조경녹지의 확보로 비오톱(biotope) 공간 확장	
	생활환경	• 도시가스 등 청정연료 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시행시 환경영향	•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재난방지	수재해	• 우수유역을 검토하여 구역주변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토록 하며 구역 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한 억제토록 하여 홍수, 수몰 등에 대한 방재계획 수립	
	산사태	• 산사태 우려는 없으나 토질의 종류에 따른 안정구배를 유지토록 하고, 벽면의 상하단에 배수시설 설치 등을 통한 사면안정과 경관적 처리를 통해 토사의 유출을 방지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화 재	• 구역내 화재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12.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 고
사업대상지 동북측 신북초등학교, 중암중학교, 한국우진학교 사업대상지 동남측 성원초등학교	•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교육환경 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승인을 받아 사업추진	

13.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현황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비 고
	추진위/조합 설립 ~ 착공 전	착공 ~ 공사 완료	범죄예방설계 적용	
현재 추진위승인 이전 상태로 주민들 거주중	•펜스 설치 및 유지·관리 •1일 오전·오후 1회 우범지역 순찰 •방범용 CCTV 설치 운영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규정 준수 안전시공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비 계상	•방범용 CCTV는 사각지대 설치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 사이에 전이공간을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공간의 성격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 •수목의 식재로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수목의 간격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계획	

14.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가 구	면 적(㎡)	비 율(%)	비 고
획 지	계	161,287.5	88.3	
	획지1	123,143.0	67.5	공동주택용지
	획지2	37,144.5	20.3	
	획지3	1,000.0	0.5	유치원용지

15. 공공주택 건설에 관한계획

- 모든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 공공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 단지 내 분양주택과 공공주택은 동일(유사)한 규모와 적정한 비율로 혼합하여 특정 동·층 및 라인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 되도록 건설하고, 공공주택의 선정은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역의 특성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다.

구 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 수	세대수	세대규모 (전용)	비 고 (연면적)
신 설	획지1,2 (공동주택용지)	160,287.5	30	516세대		40,068.66㎡
				248세대	49.80㎡	
				221세대	59.95㎡	
				22세대	74.00㎡	
				25세대	84.95㎡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조정 될 수 있음.

■ 공공주택 공급면적 산정

<table>
<tr><td colspan="2">계획기준</td><td colspan="5">•공공주택 건설 : 도시정비법에서의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공공주택은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td></tr>
<tr><td colspan="2">법적상한용적률(건축계획)</td><td colspan="5">•299.96% 이하(건축심의에서 최종결정)</td></tr>
<tr><td colspan="2">상한용적률</td><td colspan="5">•250%</td></tr>
<tr><td rowspan="3">공공주택 의무면적</td><td>용적률 증가분</td><td colspan="5">•299.96% - 250% = 49.96%</td></tr>
<tr><td>증가된 용적률의 50%</td><td colspan="5">•49.96% X 0.5 = 24.98%
•160,287.50㎡(대지면적) X 24.98% = 40,039.82㎡</td></tr>
<tr><td>의무 연면적</td><td colspan="5">•40,039.82㎡ 이상</td></tr>
<tr><td colspan="2" rowspan="6">공공주택 확보계획
(건축심의에서 최종결정)</td><td>전용면적</td><td>공급면적</td><td>세대수</td><td>연면적</td><td>비 고</td></tr>
<tr><td>49.80㎡</td><td>67.70㎡</td><td>248</td><td>16,789.60㎡</td><td rowspan="4">획지1, 획지2</td></tr>
<tr><td>59.95㎡</td><td>82.65㎡</td><td>221</td><td>18,265.65㎡</td></tr>
<tr><td>74.00㎡</td><td>99.53㎡</td><td>22</td><td>2,189.66㎡</td></tr>
<tr><td>84.95㎡</td><td>112.95㎡</td><td>25</td><td>2,823.75㎡</td></tr>
<tr><td colspan="2">합 계</td><td>516</td><td>40,068.66㎡</td><td>〉40,039.82㎡</td></tr>
</table>

16. 환경성검토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의 반영사항	비 고
자연환경	가. 녹지네트워크	녹지평가지표 달성	○	· 현재 녹지면적 58,251.30㎡	· 계획 녹지면적 61,568.75㎡ · 녹지평가지표1 달성 [녹지면적Ⅲ(5.19%), 녹지모양Ⅲ(1.76), 내부연결성Ⅰ, 외부연결성Ⅰ]	
	나. 비오톱	비오톱보전 등급 향상	○	· 개별비오톱평가도(평가제외) · 비오톱유형평가도(3등급>5등급)	·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로 도시생태기능 복원 및 강화	
생활환경	다. 토지이용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 현재 대부분 시가화지역 · 현재 50% 이상 불투수포장지역	· 녹지조성 61,568.75㎡ (면적의 38.41%) · 불투수포장지역 98,718.75㎡ (면적의 61.59%)	
	라. 지형·지질	지형·지질 변동 최소화	○	· 서측으로 불광천이 인접한 매우 평탄한 지역임	· 토목공사 완료 즉시 나대지 안정을 위한 조경식재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	
	마. 물순환	생태면적률 30%	○	· 현재 시가화 지역으로 생태면적률 미미함	· 생태면적률 30.01% ·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수공간 포함	
	바. 수질	수질 등급 유지 및 오염 최소화	○	· BOD 1.2~1.6㎎/L로 하천수수질기준 Ib(좋음)등급	·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하여 토사가 주변 경계지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	
	사.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 사업지구 주변의 바람은 북서풍계열의 바람이 우세하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	· 녹지면은 바람길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경을 조성할 계획임	
	아. 대기질·미세먼지	대기오염 최소화	○	· 현황농도는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하는 수준임	· 세륜·세차시설 설치 · 살수 차량 운용 및 방진망 설치	
	자. 친환경적 자원순환	각종 폐기물 발생 최소화	○	· 건축물 신축 시 : 24,538.76ton	· 철거 전 분리수거를 실시하여 건설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차. 소음·진동	공사시 65dB(A) 이하	○	· 사업지구는 주거지역임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 준수 · 가설방음판넬 설치(10m)	
	카. 경관	조망권 확보	○	· 고층 및 저층 주거지역, 상업시설, 교육시설 등이 분포하여 시가지 경관을 형성	·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한 건축배치 및 완충녹지 조성계획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의 반영사항	비 고
	타. 일조	일조침해 최소화	○	· 서울기상대 - 연일조시간 : 2,609.1hr - 최대 일조 : 10월(241.9hr) 최소 일조 : 11월(177.6hr)	· 건축배치 수립 시 배치 및 층수 조정 등 여러 대안에 대한 일조영향을 사전 검토 하여 주변지역에 일조영향이 가장 적은 배치안을 선정하여 반영할 계획	

Ⅱ. 성산지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성산지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마포구 성산동 446번지 일대	191,253.6	-	191,253.6	100.0	

2. 토지이용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 · 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1) 교통시설 (변경없음)

2) 공간시설

가)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1	공 원	근린공원	성산동 450	-	증) 11,455.0	11,455.0	-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 원	• 근린공원 신설 - 면적 : 11,455.0㎡	• 근린공원 조성을 통해 불광천 및 월드컵공원 이용객들의 휴식공간 조성

나)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1	녹 지	연결녹지	성산동 450	-	증) 1,853.2	1,853.2	-	
신 설	2	녹 지	연결녹지	성산동 466	-	증) 1,191.8	1,191.8	-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녹 지	• 연결녹지 신설 - 면적 : 1,853.2㎡	• 성중길변 근린공원 및 메타세콰이어 데크길과 연계될 수 있도록 연결녹지 조성
2	녹 지	• 연결녹지 신설 - 면적 : 1,191.8㎡	

3) 환경기초시설

가) 하수도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폭 원	연 장	시 점	종 점	최초 결정일	비 고
폐 지	-	하수도	6m	1,100m	성산동 481-1	성산동 398-2	서고 제5호 (1977.01.04.)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하수도	• 하수도 폐지	• 원활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역내 미집행 하수도시설 폐지

3.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4. 건축물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성산시영아파트 특별계획구역	마포구 성산동 446번지 일대	182,618.4	성산시영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예정

나. 성산시영아파트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구역면적		• 182,618.4㎡	"좌 동"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변경없음)	"좌 동"
기반시설	도 로	• 월드컵북로(변경없음)	"좌 동"
	도시철도	• 도시철도(변경없음)	"좌 동"
	하수도	• 하수도 폐지	• 하수도 폐지 : 폭 6m
	공 원	• 위치 및 형태 – 성미교를 중심으로 반원형태로 조성 – 공원과 제방(성중길)의 레벨을 동일하게 조성 • 공원기능 – 문화비축기지, 월드컵경기장 등의 문화기능이 대상지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 ※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의무조성 면적 이상으로 조성 ※ 정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위치 및 형태 등 계획지침 변경 가능	• 근린공원 : 11,455.0㎡ 신설 • 공원시설 : 공원조성계획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녹 지	–	• 불광천변 연결녹지 신설 : 폭 10m
건축물 용도	지정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건축물 밀도	건폐율	• 50% 이하	"좌 동"
	용적률	• 기준용적률 : 210% 이하 • 허용용적률 : 230% 이하 • 상한용적률 : 250% 이하 • 법적상한용적률 : 300% 이하	"좌 동"
	높 이	• 120m 이하의 범위에서 서울도시기본계획 등에 따른 높이기준 준수	"좌 동"
건축선	건축한계선	• 불광천변 : 10m 이상 • 마포구청변 : 13m 이상 • 그 외 도면표시 : 3m 이상	• 마포구청변 : 13m 이상 • 그 외 도면표시 : 3m 이상
	벽면지정선	• 공원 변 : 3m (외부 개방이 가능한 주민공동시설을 공원과 동일한 레벨로 1개층 이상 배치)	"좌 동"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 도로에 접한 공지는 도로의 보행공간과 일체화된 보행공간으로 조성 • 차량진출입구변 가감속차로 조성	"좌 동"
대지내 통로	공공보행통로	공 동	• 6m 이상으로 조성 • 주변과 구분되는 포장을 통해 공공보행통로 명확화 • 24시간 일반이 이용가능하도록 상시 개방	"좌 동"

구 분		기 정		변 경
		마포 구청변	• 10m 이상의 산책로 형태로 조성 - 보도 6m, 양방향 자전거통로 4m 이상	
교통 처리 계획	차량출입 불허구간	• 월드컵북로 및 월드컵로36길, 성암로9길변 지정 • 원활한 차량흐름 유도 및 보행단절 최소화를 위해 대지에서 도로로의 차량진출입 불허		"좌 동"
	교통개선 대책	•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2023.5.8.)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검토반영 ※ 향후 교통영향평가가 변경되는 경우 그에 따름 - 종암교(5차로) 교량은 확장 - 사업지 내 보도 등은 관계기준 이상 확보 - 종암교 앞 사거리 ~ 성미다리 구간은 차도 추가 설치 방안 - 월드컵36길 도로폭과 마포구청 연접 지점의 도로폭은 일정하게 할것		• 재건축사업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반영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2023.03.22.)전 정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을 열람공고한 경우로 종전 기준을 적용. (※ 정비기본계획 개정 시 변경된 항목 적용 가능.)

6. 경미한 변경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구 분	검토의견	조치계획
1	○ 공원의 형상은 금회 상정안의 반원 형태의 면적을 일부 축소하여, 서측 성중길변 현황 메타세콰이어 데크길과 연계되는 형상으로 조정 검토할 것.	○ 공원면적 일부를 축소 성중길변 연결녹지(폭 10m)를 조성하여 공원 및 메타세콰이어 데크길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안)을 수정하였음.
2	○ 건축계획 및 스카이라인계획 관련 다음 사항을 반영하고,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시 적정성을 검토할 것. - 공원 연접부 주동의 높이(최고 33층 상정)는 공원의 개방감 확보 등의 측면에서 추가 하향할 것. - 공동이용시설계획은 획지 규모를 고려하여 각 획지별 적정 면적이 배분되도록 조정할 것. - 공원 연접부 공동이용시설의 세부 용도는 공원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조정 검토할 것.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결과를 반영한 건축계획 및 스카이라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겠음.
3	○ 향후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개발규모를 고려한 차량진출입구 개소수(4개) 및 월드컵북로의 대상지 해당 구간 차로 확대(5차로 → 7차로) 적정성을 검토할 것.	○ 향후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차량진출입구 개수 및 월드컵북로 차로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겠음.

Ⅲ. 관련도면 : 붙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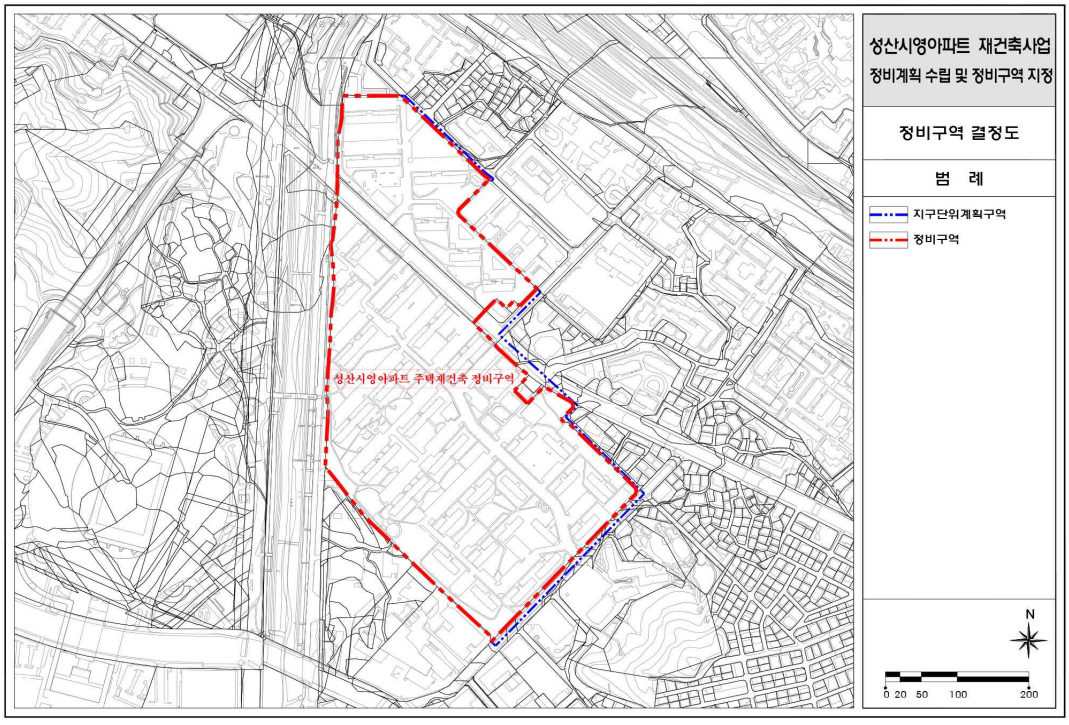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도서 :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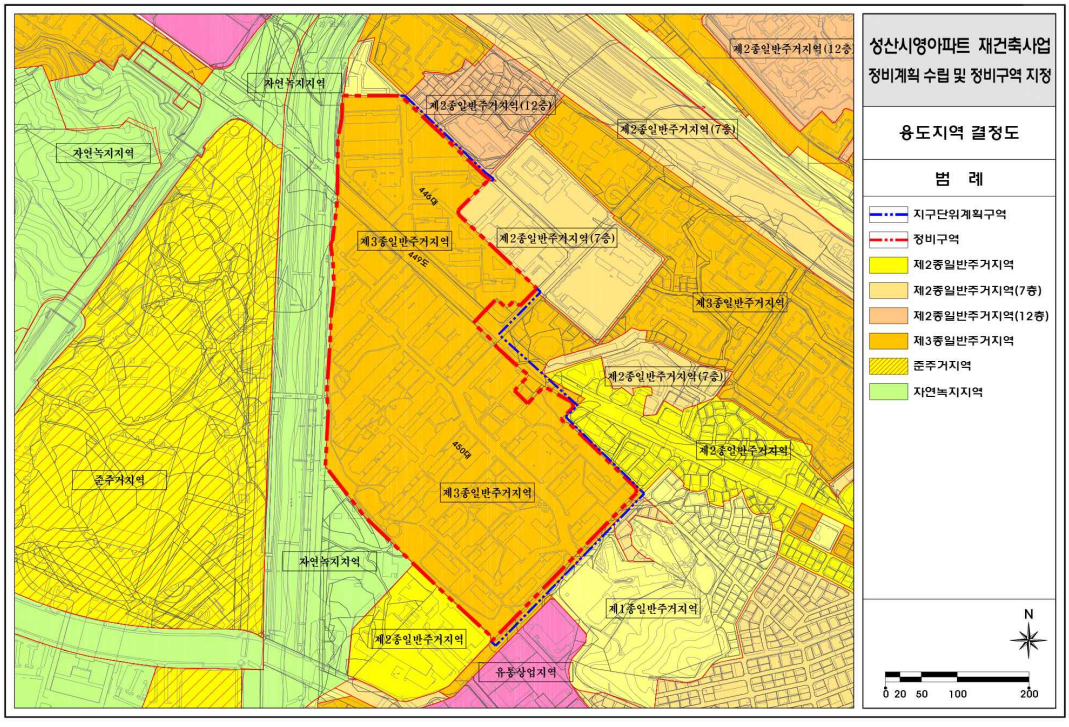
Ⅴ.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02-2133-7141), 마포구 주택상생과(☎02-3153-9323)에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도서 등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rk)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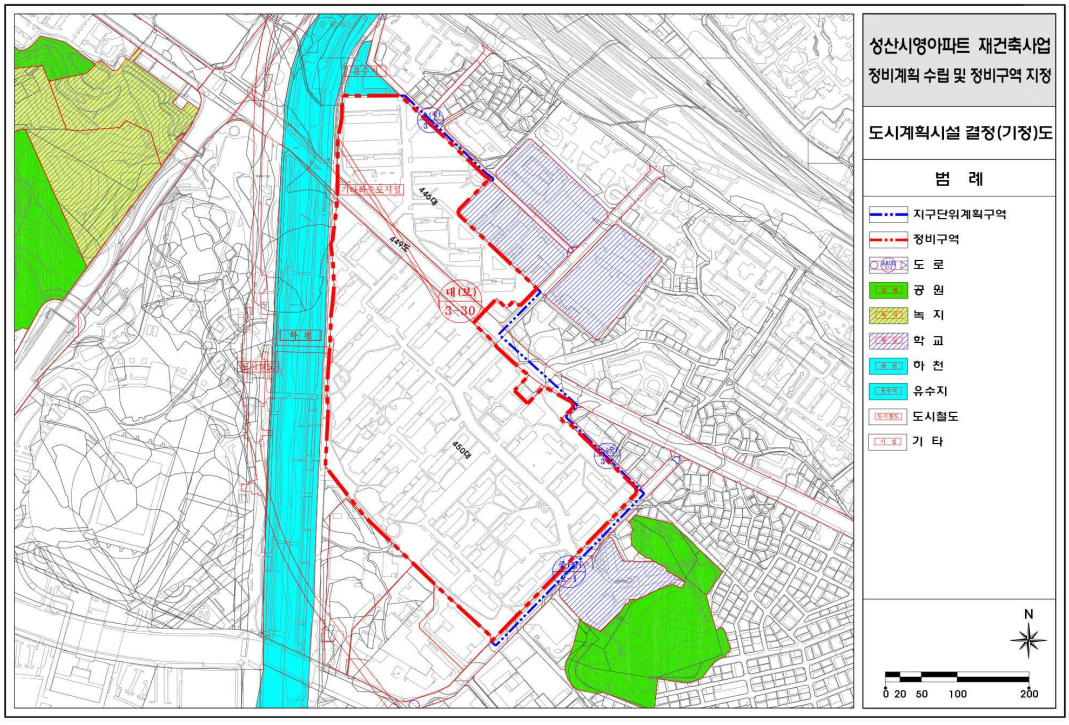
[정비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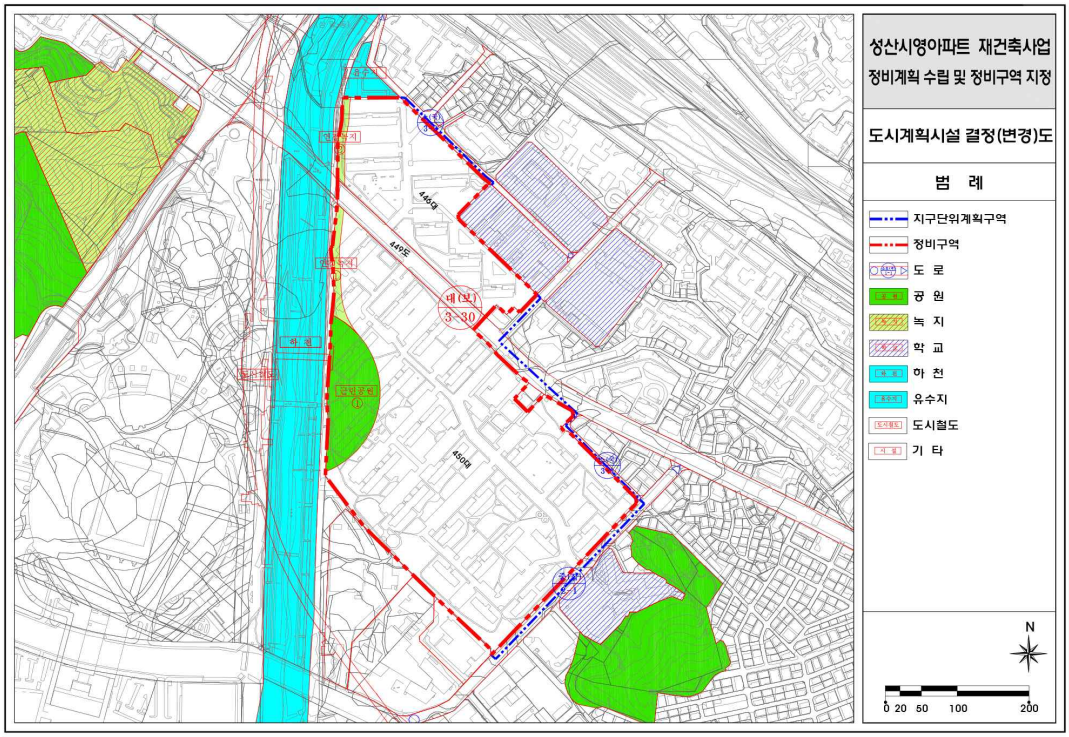
[용도지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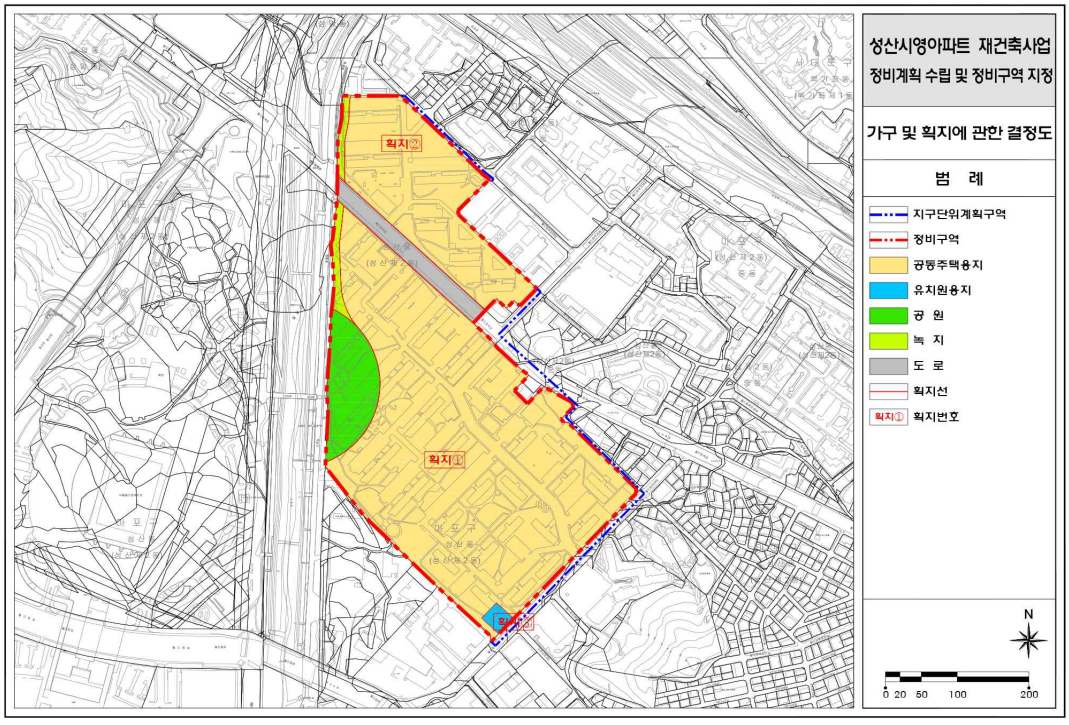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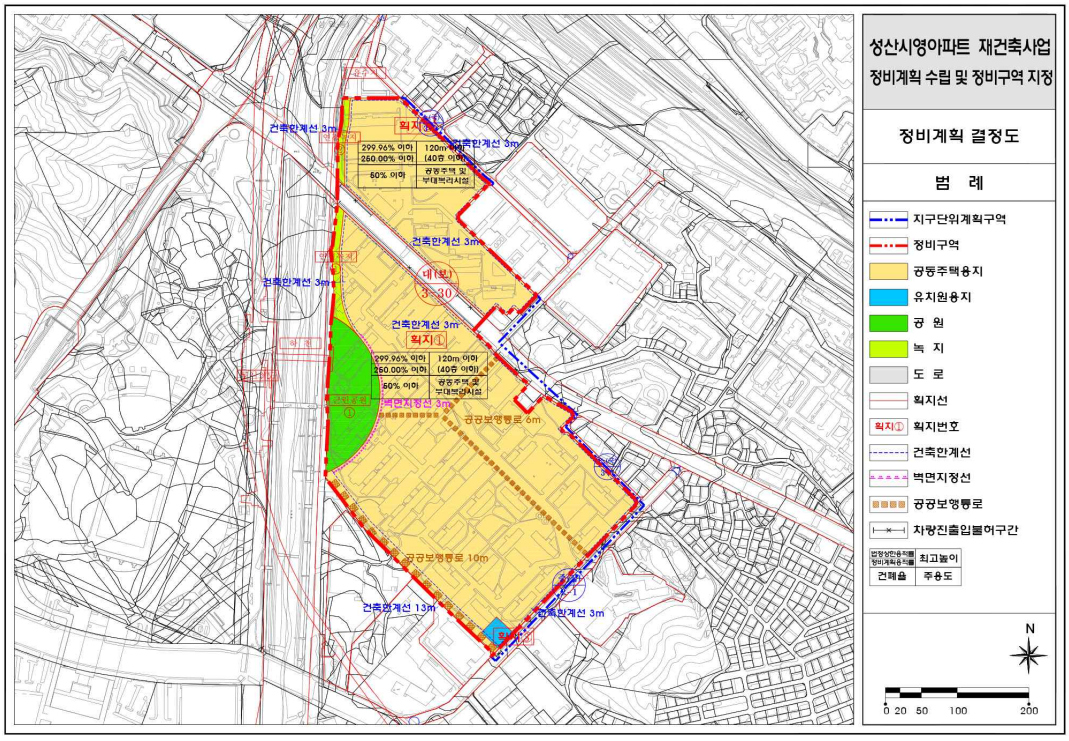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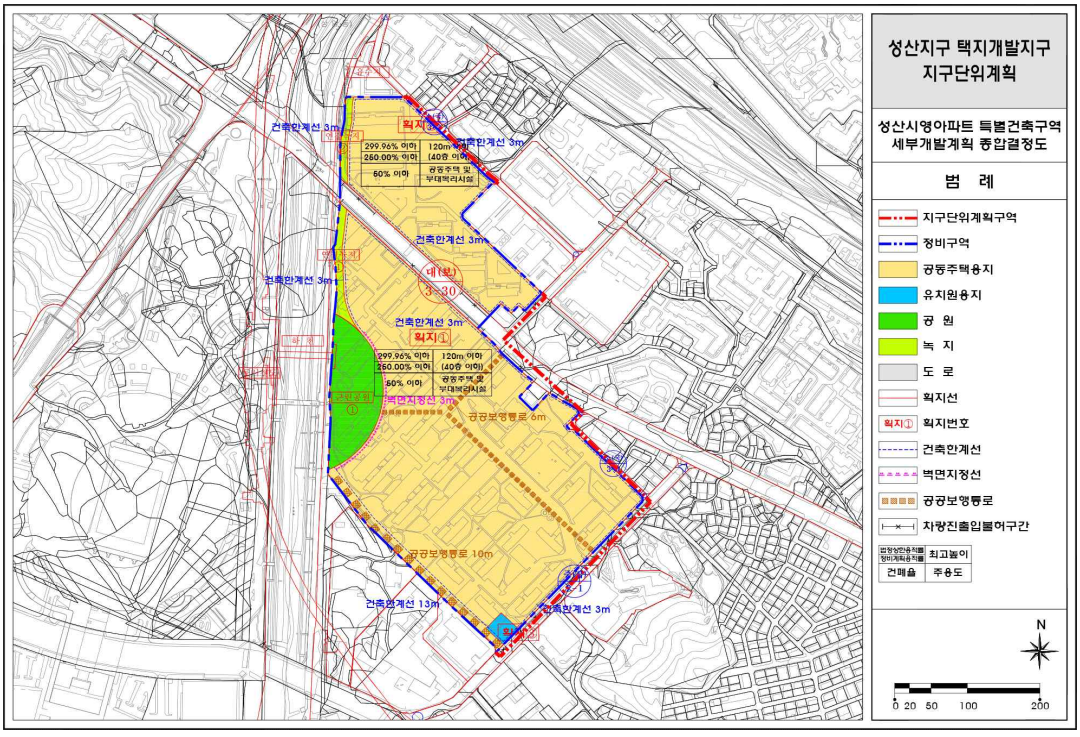
[가구 및 획지의 규모 결정도]



[정비계획 결정도]



[지구단위계획 특별건축구역 종합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602호

우신빌라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궁동 213-27번지 일대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3년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3.10.18.)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비고
신설	우신빌라 재건축정비사업	구로구 궁동 213-27번지 외 2필지	51,071.1	-

2.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증) 51,071.1	51,071.1	100.0	-
정비기반 시설	소계	-	증) 4,296.0	4,296.0	8.4	-
	도로	-	증) 696.0	696.0	1.4	-
	공원	-	증) 3,600.0	3,600.0	7.0	공영주차장 중복결정
획지	소계	-	증) 46,775.1	46,775.1	91.6	-
	공동주택	-	증) 46,775.1	46,775.1	91.6	비오톱 1등급 포함 (3,879.8㎡)

3.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table>
<tr><td>추정
비례율</td><td>•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 수입 - 총 지출) / 총자산 총액 X 100%
• 추정비례율 : 100.01%
⇒ (8,910.2억 - 4,544.1억) / 4,365.7억 X 100 = 100.01%
- 총 수입 추정 : 8,910.2억
- 총 지출 추정 : 4,544.1억
- 조합원자산총액 추정 : 4,365.7억 (종전자산총액 - 현금청산자)</td></tr>
<tr><td>개별 종전자산
추정액</td><td>• 우신빌라 공동주택 소유자 = 공동주택 공시가격 X 보정률 (1.60)
• 동광빌라 공동주택 소유자 = 공동주택 공시가격 X 보정률 (1.80)
※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토지평가액 포함하며, 상기 보정률은 본건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과의 비율임
※ 개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 우신빌라, 동광빌라 상가 소유자 = 대지권 또는 지분과 건물을 일체로 각각의 집합건물을 본건 및 인근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가격을 추정.
(전유면적당 단가 X 전유면적)</td></tr>
<tr><td>추정
분담금
산출</td><td>•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
<table>
<tr><th colspan="2">권리자 분양가 추정액(a)</th><th>추정 권리가액(b)</th><th>추정분담금(a-b)</th></tr>
<tr><td>전용 59㎡형</td><td>6.29억</td><td rowspan="5">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 (100.01%)</td><td rowspan="5">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추정 권리가액
(+ : 부담 / - : 환급)</td></tr>
<tr><td>전용 74㎡형</td><td>7.39억</td></tr>
<tr><td>전용 84㎡형</td><td>8.15억</td></tr>
<tr><td>1층상가 20㎡</td><td>2.40억</td></tr>
<tr><td>2층상가 20㎡</td><td>1.08억</td></tr>
</table>
</td></tr>
</table>

※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은 정비계획 결정도서 참조

4. 용도지역 · 지구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1,071.1	-	51,071.1	100.0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51,071.1	감) 46,775.1	4,296.0	8.4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46,775.1	46,775.1	91.6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변경사유
		기정	변경			
-	구로구 궁동 213-27번지 외 2필지	제2종일반 주거지역 (7층)	제2종일반 주거지역	46,775.1	250이하	· 주택공급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 규제완화 적용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함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해당사항 없음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18	20~33	보조간선	3,805	천왕동 서울시계	서울시계	일반도로	-	서고제392호 (`89.08.14.)	-
변경	중로	1	18	20~33	보조간선	3,805 (125)	천왕동 서울시계	서울시계	일반도로	-	-	도로확폭 (20m→24.5m)
기정	소로	3	6	6	국지도로	32	궁동 285-4	궁동 286	일반도로	-	서고제186호 (`73.12.3.)	-
변경	소로	1	-	10~13	국지도로	43	궁동 285-4	궁동 286	일반도로	-	-	도로확폭 (8m→10~13m)
기정	소로	2	-	8	국지도로	423	궁동 278	궁동 285-4	일반도로	-	서고제582호 (`87.08.19.)	-
변경	소로	2	-	8	국지도로	410	궁동 278	궁동 285-4	일반도로	-	-	연장축소

※ ( )는 정비사업 구간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1-18	-	· 도로확폭 20m → 24.5m(4.5m확폭) -확폭구간 L=125m	· 차량진출입로와 오리로(20m)의 상충을 최소화하고 개발에 따른 원활한 교통처리계획을 위해 도로 확폭
소로 3-6	소로 1-	· 도로확폭 8m → 10~13m(2~5m확폭) ※ 폭원은 기정 6m이나 현황 상 8m폭원으로 조정함 · 도로연장 L=32m → 43m(증 11m)	· 공원부지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계획함으로써 가속차로 설치를 위해 도로 확폭
소로 2-	-	· 도로연장 L=423m → 410m(감 13m)	· 소로3-6호선의 도로확폭으로 인한 도로연장 축소

나.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관리청)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주차장	구로구 궁동 213-27번지 일대	-	증) 3,600.0	3,600.0	-	공원시설과 중복결정 (구로구)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주차장	· 신설 - 위치 : 구로구 궁동 213-27번지 일대 - 면적 : 3,600.0㎡(공원시설과 중복결정) - 주차대수 : 70면	·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인근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원시설과 중복결정하고자 함(자치구 수요조사 결과 반영)

※ 공영주차장의 세부계획 등은 관리청 및 관할 자치구와 협의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시 확정

다.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관리청)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공원	어린이공원	구로구 궁동 213-27번지 일대	-	증) 3,600.0	3,600.0	-	주차장 중복결정 (구로구)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어린이 공원	· 신설 - 위치 : 구로구 궁동 213-27번지 일대 - 면적 : 3,600.0㎡	· 인근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 지역주민의 건강과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경로당	궁동 213-27번지 외 2필지	-	증) 460.0	460.0	공공개방
	어린이집		-	증) 1,000.0	1,000.0	공공개방
	다함께돌봄센터		-	증) 150.0	150.0	공공개방
	주민공동시설		-	증) 1,800.0	1,800.0	일부 공공개방 (700.0㎡)
	작은도서관		-	증) 250.0	250.0	공공개방
	어린이놀이터		-	증) 1,300.0	1,300.0	공공개방
	주민운동시설		-	증) 700.0	700.0	공공개방
계			-	증) 5,660.0	5,660.0	-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시 주택조례」 등 관련 법령 기준 적용

7.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우신빌라 재건축 정비구역	51,071.1	획지	46,775.1	구로구 궁동213-27번지 외 2필지	30	-	-	30	-	-

8. 건축물에 관한 계획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최고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계획	법적상한		
신설	우신빌라 재건축 정비구역	51,071.1	획지	46,775.1	궁동 213-27번지 외 2필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이하	226.8% 이하	250% 이하	90m이하/ 최고 30층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주택공급계획 : 1,127세대
· 전체 건립규모(전용면적기준)

구분		합계	분양주택	공공주택
합계		1,127(100.0%)	1,063(94.3%)	64(5.7%)
공동주택	60㎡이하	331(100.0%)	274(82.8%)	57(17.2%)
	60㎡~85㎡이하	796(100.0%)	789(99.1%)	7(0.9%)
	85㎡초과	-	-	-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60%이상을 85㎡이하로 건설(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2호)

심의완화사항

▪허용용적률 적용
- 허용용적률 = 190%(기준) + 10% = 200%

인센티브 항목	인센티브 용적률	비고
공공보행통로(4개소)	10%	허용용적률 최대 10%

※ 위에서 적용된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허용용적률의 인정여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되며, 건축심의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용적률이 변경 될 수 있음

▪공공주택 건설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최고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계획	법적상한		

①법적상한 용적률	②상한용적률 (정비계획)	초과용적률 (①-②)	초과용적률의 50%적용	공공주택 공급계획
250.0%	226.8%	23.2%	11.6%	-57세대(공급 81.69㎡) -7세대(공급 110.99㎡)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대지경계로부터 6m이격(비오톱 구간 제외) · 공공보행통로(②, ④)변 3m이상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공공보행통로 4개소(6m) ※ 정비계획 결정도 도면참고

■용적률 계획

구분	산정내용							
토지 이용 계획	계 (구역면적)	획지 (공동주택)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면적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	대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면적
			계	도로	공원	주차장 (건축물 환산부지면적)		
	51,071.1㎡	46,775.1㎡	5,679.6㎡	696.0㎡	3,600.0㎡	1,383.6㎡	-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5,679.6㎡(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면적) - 0㎡(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 - 0㎡(대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면적) = 5,679.6㎡ ■ 순부담 면적 : 5,679.6㎡(구역면적 대비 11.1%)							
기준용적률	■ 기준용적률 = 190%							
허용용적률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최대 10%) = 190% + 10% = 200%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 공공보행통로 10% 적용 ※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개선(`23.03) 적용 ※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허용용적률의 인정여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되며, 건축심의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용적률이 변경 될 수 있음							
상한용적률 산정	■ 기준용적률 190%, 허용용적률 200%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토지 + 0.7 × α현금·건축물) = 200% × (1 + 1.3 × 0.95 × 0.0918 + 0.7 × 0.0296) = 226.8%							
α토지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면적 비율 = (696.0㎡ + 3,600.0㎡) ÷ 46,775.1㎡ = 0.0918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는 '기부채납 부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 토지지분' 포함							

구분		산정내용
	α건축물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현금 및 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 제공 면적 비율 = 1,383.6㎡ ÷ 46,775.1㎡ = 0.0296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등 부지의 해당 용적률 = 190% ÷ 200% = 0.95
법적 상한용적률		▪ 법적상한용적률 : 250.0%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결정된 법적상한용적률은 건축위원회심의를 통해 확정예정

9.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건설에 관한 계획

○ 모든 공공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공공주택 등은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공공주택 배치계획

○ 공공주택은 분양주택과 차별없이 외관,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동별 · 동내 혼합과 층별 혼합)하고,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동 · 호수 배정도 조합원과 서울특별시(공공주택)가 동일 · 동시에 공개추첨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추첨 시 서울 특별시가 필수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할 것

■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공공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table>
<tr><td>구분</td><td colspan="5">산정내용</td></tr>
<tr><td>계획기준</td><td colspan="5">•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이상</td></tr>
<tr><td>법적상한용적률</td><td colspan="5">•250.0%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td></tr>
<tr><td>상한용적률(정비계획)</td><td colspan="5">•226.8%</td></tr>
<tr><td>초과용적률의 50%</td><td colspan="5">•(250.0% - 226.8%) X 50% = 11.6%
•46,775.1㎡(대지면적) X 11.6% = 5,425.9㎡이상(공공주택 연면적 기준)</td></tr>
<tr><td rowspan="4">공공주택 확보계획
(법적상한용적률 완화)</td><td>전용면적</td><td>공급면적</td><td>세대수</td><td>연면적</td><td>비고</td></tr>
<tr><td>59.99㎡</td><td>81.69㎡</td><td>57</td><td>4,656.33㎡</td><td rowspan="2">소셜믹스</td></tr>
<tr><td>84.99㎡</td><td>110.99㎡</td><td>7</td><td>776.93㎡</td></tr>
<tr><td colspan="2">합계</td><td>64</td><td>5,433.26㎡</td><td>〉5,425.9㎡
(공공주택 연면적 기준)</td></tr>
</table>

10.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 관한 계획

가. 정비계획부문

구분	내용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제2종일반주거지역
순부담률	•10% 내외(공원, 도로 등 필수기반시설 확보)
용적률	•기준용적률:190%, 허용용적률:200%이하, 상한용적률:230% 내외, 법적상한용적률 : 250%이하(증가 용적률의 1/2은 공공주택으로 건설) ※ 2종7층 → 2종일반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규제완화(기준용적률 170%→190%적용)
층수/높이	•최고층수 25층 이하 원칙 -학교일조영향을 미치는 대상지 북측과 서측은 중저층 계획(7~15층 내외) -오리로변과 공원에 인접한 부분은 최고 30층 가능 ※ 2040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에 따라 용도지역별 최고층수 폐지(`22.12. 예정) : 25층 → 30층 완화
기반시설	•도로(정비계획 기본구상도에 따른) -오리로와 대상지 동측 경계부로 1차선 추가 확보 •공원 -공원 녹지 면적은 법정의무 면적 수준으로 최소화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약 70면)은 오류수궁 지역생활권계획과 자치구 수요조사에 따라 공원 하부에 중복결정하여 설치
공공보행통로	•대상지 동측 저층 주거지와 비오톱, 공원 순환을 위한 4개의 공공보행통로(폭원 6m 이상) - ① 북측 대지경계선을 따라 오리로17길과 비오톱 연결 - ② 동서방향으로 오리로변 공원 북측과 비오톱 연결 - ③ 비오톱 남측 끝나는 지점으로부터 부일로변까지 대지경계선 따라 형성 - ④ 동서방향으로 오리로변 공원 남측과 ③ 공공보행통로 연결 •공공보행통로와 비오톱 구간을 순환할 수 있는 체계 형성
주민공동이용시설 배치구간	•오리로17길을 따라 옹벽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④ 공공보행통로를 따라 통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학습지원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
건축한계선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이상(공공보행통로 설치 시 공공보행통로 포함 가능) •비오톱에 접한부분은 별도 건축한계선 지정 없음 •공공보행통로(②, ④)변 : 3m 이상
차량진출입 계획	•오리로변 차량출입구는 진출만 가능 •부일로변 차량출입구는 진입만 가능 ※ 향후 교통영향평가시 차량진출입구를 포함한 교통처리계획을 검토하여 최종 결정

구분	내용
비오톱 구역 (1등급)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 비오톱 내 산책로 조성 •공공보행통로와 연결하여 순환 동선체계 형성

※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은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위원회 심의 이후 확정된 가이드라인은 사업 완료시까지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속통합기획과 및 관계부서 협의, 신속통합기획가(MP) 자문, 위원회 심의 자문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관계법령 및 기준 변경 시 변경된 법령 및 기준에 따름

나. 건축계획부문

구분	내용
특별건축구역	•창의적 건축물 디자인을 위하여, 특별건축구역을 전제로 계획 •특별건축구역의 완화기능 규정을 적용하되,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고려하여 인동거리를 산정하고, 남향세대 및 일조만족 세대 최대화 등 주거성능이 저하 되지 않도록 계획 •철도 및 고가도로 인접지역(정비계획 기본구상도에 따름)은 정북일조,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완화
경관 및 스카이라인	•북서측 학교와 인접지역은 일조영향 최소화를 위해 중저층(7~15층 내외) •남측 철도 및 고가도로 인접지역과 공원의 남서측 인접구역은(고층 30층 이하) 계획
주거동 유형	•주동의 다양한 층수 변화, 배치, 교차 등 건축적 요소의 다양화를 통해 시각적으로 특색있고 입체적인 주동형태 계획 •비오톱을 조망하는 세대는 적극적인 외부공간(발코니, 오픈공용공간 등) 도입 권장 •옥상은 가능한 단형으로 구성하여 정원을 도입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공공보행통로, 외부마당과 연계하여 배치 •오리로17길변과 ④ 공공보행통로변 주민공동시설은 개방형으로 설치 권장 •공원 남측으로는 교육 및 학습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외부마당	•주동 사이 중정 형태의 외부마당 구성 •보행순환체계와 연결되며 다양한 테마로 계획(예시:생활마당, 작은 운동장, 쉼터. 학습마당 등) •지역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열린공간 제공
공원	•인근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계획 •오리로변에서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 지역 주민의 접근성 향상 •자연스러운 경사로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여 단지 내부와 옹벽 발생 최소화

※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은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위원회 심의 이후 확정된 가이드라인은 사업 완료시까지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속통합기획과 및 관계부서 협의, 신속통합기획가(MP) 자문, 위원회 심의 자문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관계법령 및 기준 변경 시 변경된 법령 및 기준에 따름

11.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결과

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환경보전	• 환경성 검토를 통하여 정비사업으로 인한 환경저해요소를 검토하여 환경영향 저감방안 마련 • 부득이한 법면 발생시 경계부에 녹화 및 조경처리 • 주차시설을 최대한 지하에 설치하여 지상녹화를 통한 친환경적 주거지 조성 • 조경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자연친화적인 단지계획을 수립하겠음 ※ 공사시 저감 방안(세부계획 일부) - 비산먼지의 발생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륜·세차시설, 방진망설치, 사업대상지내 살수실시, 풍속에 따른 공사 진행여부 판단 등 적절한 저감대책을 현장의 여건에 맞게 단계적으로 수립·시행토록 할 계획임	-
재난방지	• 구역 내 화재 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리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 구역주변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토록 하며, 구역 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토록 하여 홍수, 수목 등에 대한 방재계획 수립 • 재해시 소방도로 기능수행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동선체계 구축 도모 •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음 • 녹지 · 조경 면적의 확대로 토양포장율을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하겠음	-

나.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결과	환경영향	대책 및 반영사항
자연환경	비오톱	3등급	○	· 주거지비오톱, 산림지비오톱 · 비오톱유형평가 1, 5등급 · 개별비오톱 평가제외 및 1등급	· 조경녹지 확보에 따른 녹지율 증가 · 비오톱 평가등급 5등급에서 상향 예상
	동·식물상	동·식물상 보호	○	· 공사에 따른 녹지변화 · 공사장비에 의한 동·식물상 영향 · 식생보전등급의 변화 · 생태자연도 2,3등급지	· 도시생태기능 및 생물서식 공간 확보 · 공사시 동·식물에 대한 영향 최소화 · 생태자연도 2등급지 보존
생활환경	토지이용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 대상지는 주거형태를 이루고 있음 · 비효율적인 공간이용 및 주변과의 정주환경 차이	· 노후화 된 건축물의 주거역활 강화 ·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반영 · 임대주택 공급으로 서민주거안정 도모
	토양	토양오염 최소화	○	· 공사시 폐유발생 등 토양오염 우려 · 철거시 정화조등에 의한 토양오염	· 공사전 지하시설물 확인 · 공사시 폐유 적정관리
	지형·지질	지형변동 최소화	○	· 토양 포장율 변화 · 지형변화	· 조성시 현 지형을 고려하여 계획 · 불투수 면적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녹지조성 및 투수성 포장 활용
	물순환 및 수리·수문	생태면적률 확보	○	· 생태공간 확보	· 일부 자연지반 녹지 등 생태면적률(31.27%) 확보 · 조경녹지, 식재지 확보

검토항목		목표기준	결과	환경영향	대책 및 반영사항
	수질	용수량, 오수량 예상	○	· 개발전·후의 우수유출량 변화 · 운영시 계획인구 및 수용인구에 따른 용수사용량, 오수발생량 발생 · 비점오염원 발생	· 공사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 기존의 하수관로를 이용 서남물재재생센터 처리할 계획 ·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기존의 상수관로를 이용 · 급수할 계획
	바람	바람길 확보	○	· 건축물 조성에 따른 바람 및 미기후 변화 예상됨	· 건축물간의 이격거리 확보 · 건축물간 높이차를 주어 바람길 확보
	대기질·미세먼지	대기오염 최소화	○	· 공사시 장비가동 및 토사이동 · 운영시 연료사용	· 공사시 세륜·세차시설 운영, 방진망 설치 등 · 청정연료 사용
	온실가스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사용	○	· 공사장비 가동에 따른 탄소배출량 · 공동주택에 따른 에너지사용량 발생	· 공사장비 공회전 최소화 · 정부의 에너지 정책 참여, 청정연료 사용 · 부지 내 녹지공간 확보, 투수성포장재 사용, 고효율 가로등 등 친환경적, 에너지 절약형 설계 사용 권장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 발생 최소화	○	· 공사시 건축, 생활폐기물, 오수발생 · 현재 지장물 분포함 ·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	· 공사시 오수는 이동식화장실 설치 및 사용 · 운영시 생활폐기물 구로구폐기물처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처리, 발생분뇨는 서남물재생센터에 연계하여 처리토록 함
	소음·진동	소음진동 예상	○	· 공사시 건설장비소음발생 · 현재 시가지로 교통소음발생	· 소음저감대책수립 · 공사시 가설방음판넬 설치, 건설공사장비 분산투입
	경관	Sky Line보전 조망권 확보	○	· 주변지형과 조화로운 경관형성	· 단지조성 시 건물배치 및 높이설정에 반영하여 주변과의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계획
	휴식 / 여가공간	휴식 및 여가공간 확보	○	· 휴식 · 여가공간 확보	· 기능적 공간고려 조경시설 조성 · 휴게공간 및 조경시설을 조성하여 휴식공간 확보
	보행친화 공간	보행자도로 계획수립	○	· 단지 내 차량통행 최대 억제	· 지하공간 활용한 주차공간 확보 · 지상 보도위주의 공간 조성
사회환경	인구	인구 및 세대현황, 인구동태, 활동인구 예측	○	· 재건축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로 인구밀집 발생	· 구로구에 대한 인구밀집 발생은 미미함
	주거		○	· 재건축으로 인한 기존 거주자 타지역으로 이동	· 공동주택의 공급을 확대하여 주택난 해소와 주택보급률 증가

12. 정비사업 시행계획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기존	계획	증	
신규	재건축사업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정비사업조합	775	1,127	352	-

13.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 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고
대상지 200m이내 우신중학교, 세종과학고등학교, 우신고등학교, 온수초등학교 위치	•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을 규제 • 교육시설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의 설치를 지양함 • 공사시 교육환경 장애요소(소음·진동·먼지 등)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 교육시설 이용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계획 • 추후 사업으로 발생하는 학교 신·증설에 대한 설치비용은 사업시행계획인가시 협의하도록 하겠음(현재 사업으로 신·증설이 있을 경우에 한함) • 대상지는 교육환경평가대상으로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여 교육환경평가심의를 득하도록 하겠음	-

14.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구분	내용	비고
방범용 CCTV	• 방범용 CCTV 설치시 가로등과 가로수, 건축물에 부착된 돌출물 등의 관계를 고려해 가시범위를 축소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해야 하며, 간선도로보다는 주거지 내부 골목길의 진출입부와 막다른 골목 주변, 어린이 놀이터 및 근린공원 등에 집중적으로 배치함 • CCTV를 설치할 경우 반드시 하단에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되 안내표지판은 주변과 차별화 되는 색상(노란색, 주황색 등)이나 야간인식을 고려하여 형광 기능을 추가하거나 조명시설과 함께 설치토록 함	-
비상벨	•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과 차별화된 색상이 반영된 비상벨을 골목길의 취약공간을 중심으로 설치하고, 주변에서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경광기능이 있는 제품을 선택	-
주민공동체·자치단체· 경찰의 연대를 통한 방범대책	• 범죄특성은 동네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며, 범죄패턴이나 범죄수법은 시간의 경과와 함께 변화함. 따라서 시의적절하게 해당지역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방범대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함으로 이를 위해서는 주민공동체, 자치단체, 경찰 등 지역 상황에 따라 지역주민조직, 자치단체, 경찰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지원하는 것이 필요	-

Ⅱ. 우신빌라 재건축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지구단위계획구역 명칭	위치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우신빌라 재건축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로구 궁동 213-27번지 외 2필지	-	증)51,071.1	51,071.1	100.0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1,071.1	-	51,071.1	100.0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51,071.1	감) 46,775.1	4,296.0	8.4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46,775.1	46,775.1	91.6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변경사유
		기정	변경			
-	구로구 궁동 213-27번지 외 2필지	제2종일반 주거지역 (7층)	제2종일반 주거지역	46,775.1	250이하	· 주택공급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 규제완화 적용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함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해당사항 없음

다. 기반시설 결정(변경)조서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18	20~33	보조 간선	3,805	천왕동 서울시계	서울시계	일반 도로	-	서고제392호 (`89.08.14.)	-
변경	중로	1	18	20~33	보조 간선	3,805 (125)	천왕동 서울시계	서울시계	일반 도로	-	-	도로확폭 (20m→24.5m)
기정	소로	3	6	6	국지 도로	32	궁동 285-4	궁동 286	일반 도로	-	서고제186호 (`73.12.3.)	-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변경	소로	1	-	10~13	국지도로	43	궁동 285-4	궁동 286	일반도로	-	-	도로확폭 (8m→10~13m)
기정	소로	2	-	8	국지도로	423	궁동 278	궁동 285-4	일반도로	-	서고제582호 (`87.08.19.)	-
변경	소로	2	-	8	국지도로	410	궁동 278	궁동 285-4	일반도로	-	-	연장축소

※ ( )는 정비사업 구간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1-18	-	· 도로확폭 20m → 24.5m(4.5m확폭) -확폭구간 L=125m	· 차량진출입로와 오리로(20m)의 상충을 최소화하고 개발에 따른 원활한 교통처리계획을 위해 도로 확폭
소로 3-6	소로 1-	· 도로확폭 8m → 10~13m(2~5m확폭) ※ 폭원은 기정 6m이나 현황 상 8m폭원으로 조정함 · 도로연장 L=32m → 43m(증 11m)	· 공원부지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계획함으로써 가속차로 설치를 위해 도로 확폭
소로 2-	-	· 도로연장 L=423m → 410m(감 13m)	· 소로3-6호선의 도로확폭으로 인한 도로연장 축소

(2)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관리청)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주차장	구로구 궁동 213-27번지 일대	-	증) 3,600.0	3,600.0	-	공원시설과 중복결정 (구로구)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주차장	· 신설 - 위치 : 구로구 궁동 213-27번지 일대 - 면적 : 3,600.0㎡(공원시설과 중복결정) - 주차대수 : 70면	·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인근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원시설과 중복결정하고자 함(자치구 수요조사 결과 반영)

※ 공영주차장의 세부계획 등은 관리청 및 관할 자치구와 협의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시 확정

(3)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관리청)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공원	어린이공원	구로구 궁동 213-27번지 일대	-	증) 3,600.0	3,600.0	-	주차장 중복결정 (구로구)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어린이 공원	· 신설 - 위치 : 구로구 궁동 213-27번지 일대 - 면적 : 3,600.0㎡	· 인근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 지역주민의 건강과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가구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	-	-	증) 46,775.1	46,775.1	100.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나.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가구	계획내용	비고
신설	허용용도	획지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2호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2)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 건폐율 계획

구분	지역	건폐율(%)	비고
신설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

나) 용적률 계획

구분	용적률(%)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상한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		
신설	190% 이하	200% 이하	226.8% 이하	250% 이하	정비계획	허용용적률 200.0%
						상한용적률 226.8%
						법적상한용적률 250.0%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구분	인센티브	비고
	공공보행통로	
신설	10%	총 12.9%(10%적용)

■상한(법적상한)용적률 완화사항

구분	용적률 완화		비고
	공공시설 기부채납	공공주택 건설(법적상한용적률 적용)	
신설	26.8%	11.6%	38.4%

다) 높이계획

구분	지역	높이기준	비고
신설	제2종일반주거지역	최고 30층 이하(90m이하)	-

다. 건축물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건축한계선	획지	·대지경계로부터 6m이격(비오톱 구간 제외) ·공공보행통로(②, ④)변 3m이상 ※ 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도 도면참고

라.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공공보행통로	획지	·대지 내 고립되어 있는 비오톱 연계를 위해 공공보행통로 설치 -공공보행통로 4개소, 폭원 : 6m ※ 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도 도면참고

(2) 환경관리계획

검토항목		목표기준	결과	환경영향	대책 및 반영사항
자연환경	비오톱	3등급	○	· 주거지비오톱, 산림지비오톱 · 비오톱유형평가 1, 5등급 · 개별비오톱 평가제외 및 1등급	· 조경녹지 확보에 따른 녹지율 증가 · 비오톱 평가등급 5등급에서 상향 예상
	동·식물상	동·식물상 보호	○	· 공사에 따른 녹지변화 · 공사장비에 의한 동·식물상 영향 · 식생보전등급의 변화 · 생태자연도 2,3등급지	· 도시생태기능 및 생물서식 공간 확보 · 공사시 동·식물에 대한 영향 최소화 · 생태자연도 2등급지 보존
생활환경	토지이용	종합적인 토지이용 계획	○	· 대상지는 주거형태를 이루고 있음 · 비효율적인 공간이용 및 주변과의 정주환경 차이	· 노후화 된 건축물의 주거역활 강화 ·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반영 · 임대주택 공급으로 서민주거안정 도모
	토양	토양오염 최소화	○	· 공사시 폐유발생 등 토양오염 우려 · 철거시 정화조등에 의한 토양오염	· 공사전 지하시설물 확인 · 공사시 폐유 적정관리
	지형·지질	지형변동 최소화	○	· 토양 포장을 변화 · 지형변화	· 조성시 현 지형을 고려하여 계획 · 불투수 면적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녹지조성 및 투수성 포장 활용
	물순환 및 수리·수문	생태면적률 확보	○	· 생태공간 확보	· 일부 자연지반 녹지 등 생태면적률(31.27%) 확보 · 조경녹지, 식재지 확보

검토항목		목표기준	결과	환경영향	대책 및 반영사항
생활환경	수질	용수량, 오수량 예상	○	· 개발전·후의 우수유출량 변화 · 운영시 계획인구 및 수용인구에 따른 용수사용량, 오수발생량 발생 · 비점오염원 발생	· 공사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 기존의 하수관로를 이용 서남물재재생센터 처리할 계획 ·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기존의 상수관로를 이용 · 급수할 계획
	바람	바람길 확보	○	· 건축물 조성에 따른 바람 및 미기후 변화 예상됨	· 건축물간의 이격거리 확보 · 건축물간 높이차를 주어 바람길 확보
	대기질·미세먼지	대기오염 최소화	○	· 공사시 장비가동 및 토사이동 · 운영시 연료사용	· 공사시 세륜·세차시설 운영, 방진망 설치 등 · 청정연료 사용
	온실가스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사용	○	· 공사장비 가동에 따른 탄소배출량 · 공동주택에 따른 에너지사용량 발생	· 공사장비 공회전 최소화 · 정부의 에너지 정책 참여, 청정연료 사용 · 부지 내 녹지공간 확보, 투수성포장재 사용, 고효율 가로등 등 친환경적, 에너지 절약형 설계 사용 권장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 발생 최소화	○	· 공사시 건축, 생활폐기물, 오수발생 · 현재 지장물 분포함 ·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	· 공사시 오수는 이동식화장실 설치 및 사용 · 운영시 생활폐기물 구로구폐기물처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처리, 발생분뇨는 서남물재생센터에 연계하여 처리토록 함
	소음·진동	소음진동 예상	○	· 공사시 건설장비소음발생 · 현재 시가지로 교통소음발생	· 소음저감대책수립 · 공사시 가설방음판넬 설치, 건설공사장비 분산투입
	경관	Sky Line보전 조망권 확보	○	· 주변지형과 조화로운 경관형성	· 단지조성 시 건물배치 및 높이설정에 반영하여 주변과의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계획
	휴식 / 여가공간	휴식 및 여가공간 확보	○	· 휴식 · 여가공간 확보	· 기능적 공간고려 조경시설 조성 · 휴게공간 및 조경시설을 조성하여 휴식공간 확보
	보행친화 공간	보행자도로 계획수립	○	· 단지 내 차량통행 최대 억제	· 지하공간 활용한 주차공간 확보 · 지상 보도위주의 공간 조성
사회환경	인구	인구 및 세대현황, 인구동태, 활동인구 예측	○	· 재건축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로 인구밀집 발생	· 구로구에 대한 인구밀집 발생은 미미함
	주거		○	· 재건축으로 인한 기존 거주자 타지역으로 이동	· 공동주택의 공급을 확대하여 주택난 해소와 주택보급률 증가

(2)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건설에 관한 계획

○ 모든 공공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공공주택 등은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공공주택 배치계획

○ 공공주택은 분양주택과 차별없이 외관,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동별 · 동내 혼합과 층별 혼합)하고,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동 · 호수 배정도 조합원과 서울특별시(공공주택)가 동일 · 동시에 공개추첨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추첨 시 서울 특별시가 필수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할 것

■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공공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table>
<tr><th>구분</th><th colspan="5">산정내용</th></tr>
<tr><td>계획기준</td><td colspan="5">•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이상</td></tr>
<tr><td>법적상한용적률</td><td colspan="5">•250.0%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td></tr>
<tr><td>상한용적률(정비계획)</td><td colspan="5">•226.8%</td></tr>
<tr><td>초과용적률의 50%</td><td colspan="5">•(250.0% - 226.8%) X 50% = 11.6%
•46,775.1㎡(대지면적) X 11.6% = 5,425.9㎡이상(공공주택 연면적 기준)</td></tr>
<tr><td rowspan="4">공공주택 확보계획
(법적상한용적률 완화)</td><td>전용면적</td><td>공급면적</td><td>세대수</td><td>연면적</td><td>비고</td></tr>
<tr><td>59.99㎡</td><td>81.69㎡</td><td>57</td><td>4,656.33㎡</td><td rowspan="2">소셜믹스</td></tr>
<tr><td>84.99㎡</td><td>110.99㎡</td><td>7</td><td>776.93㎡</td></tr>
<tr><td colspan="2">합계</td><td>64</td><td>5,433.26㎡</td><td>〉5,425.9㎡
(공공주택 연면적 기준)</td></tr>
</table>

■ 공공주택 혼합계획

건립규모	전체 세대수	비율(%)	조합원 및 일반분양	공공주택	공공주택 비율(%)	
					전체 세대수 대비	전체비율
합계	1,127	100.0	1,063	64	5.7	100.0
60㎡이하	331	29.4	274	57	17.2	89.1
60㎡초과~85㎡이하	796	70.6	789	7	0.9	10.9
85㎡초과	-	-	-	-	-	-

Ⅲ. 2023년 제16차(‘2023.10.18.)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가결’

구분	심의의견	반영계획	비고
〈수정사항〉 - 용도지역 : 제2종7층 4,296㎡, 제2종일반 46,775.1㎡ - 용적률 : 기준 190%, 허용 200%. 상한 226.8%, 법적상한 250% - 세대수 : 전체 1,127세대(임대 64세대 포함) ※ 임대 : 국민주택 64세대 (5,433.25㎡) - 공공보행통로 : 구역 중앙 공공보행통로의 선형			
〈조건사항〉			
1	○ 건축물 기준층 층고는 일조권 수인한도를 침해하지 않도록 확장 가능한 범위까지 검토·반영하여 실내 개방감 확보 ※ 금회 상정안상 기준층 층고 - 2,850mm	○ 건축심의시 일조권 수인한도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확장 가능한 기준층 층고 높이를 2,950㎜ 까지 반영하여 실내 개방감을 확보하도록 하겠음	추후 반영
2	○ 어린이집 남측 오리로 방향 차량 출구(일방통행) 부분의 승하차공간은 승하차 시 교통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치 또는 형태 등 개선	○ 어린이집 남측 차량 출구부분의 승하차공간의 형태를 개선하여 교통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수정하였음	반영
3	○ 대상지 북측 궁동 284-13번지 소유자 협의를 통해 구역계 편입 검토	○ 궁동 284-13번지는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가 동의할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편입 하도록하겠음	추후 반영
4	○ 지하 공영주차장 상부 토심은 공원의 수목 생육을 고려하여 주차대수 감소 없는 범위에서 최대한 확보	○ 공영주차장 상부 토심은 공원의 수목 생육을 고려하여 추후 구조검토를 통해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음	추후 반영

Ⅳ. 관련도면 : 붙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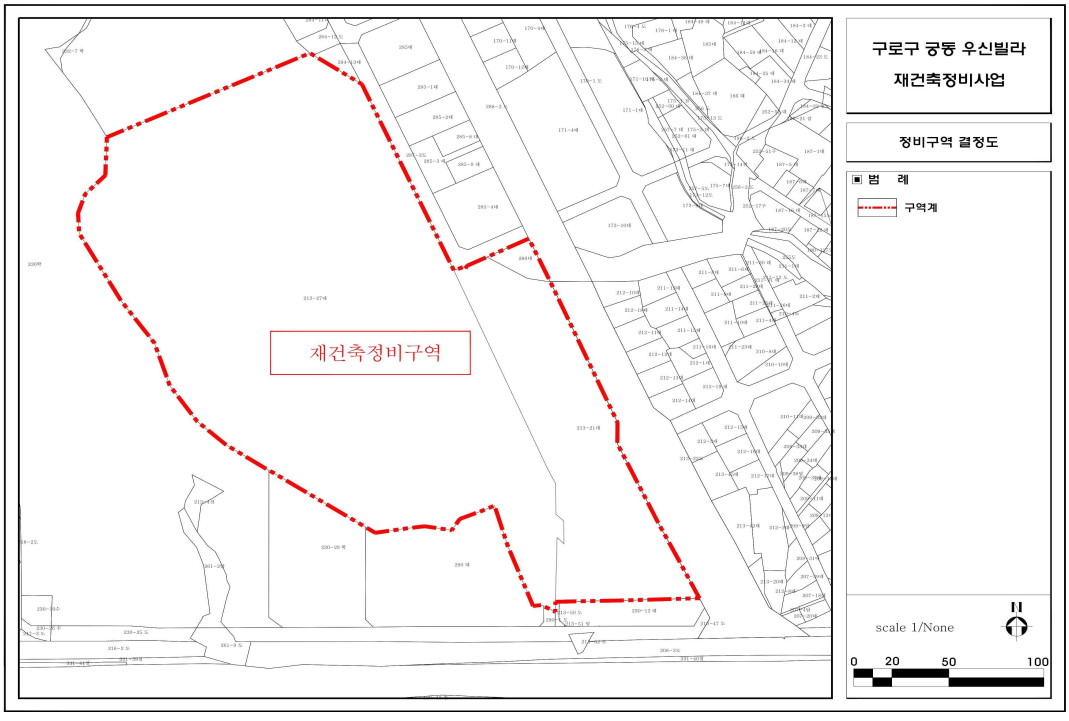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도서 :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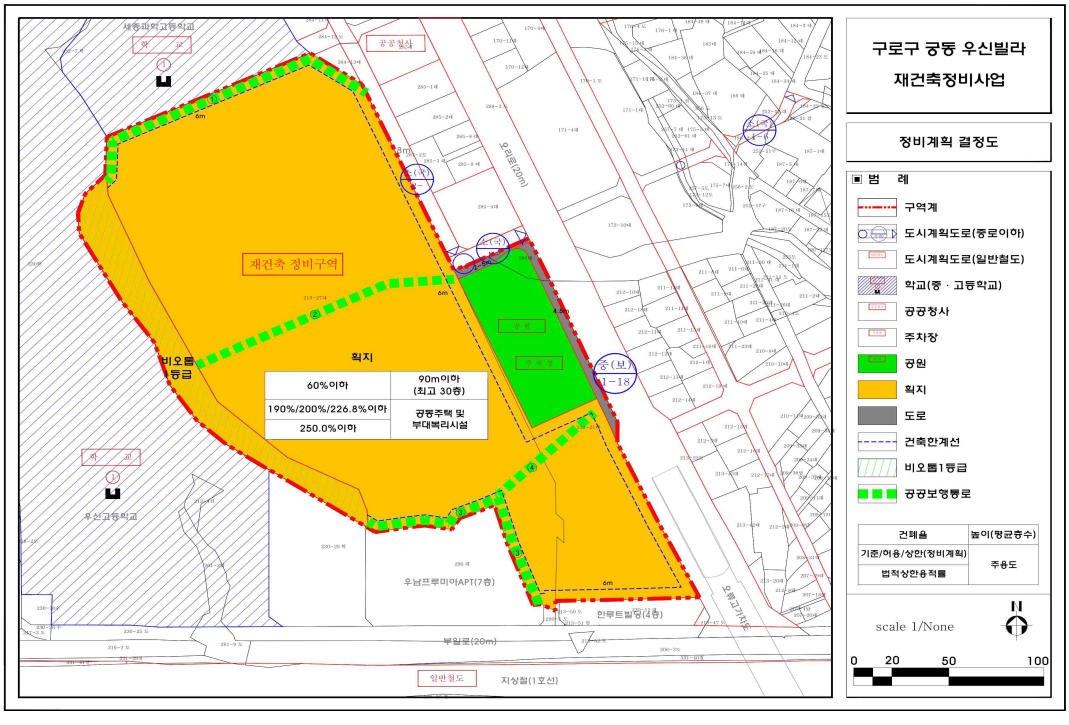
Ⅵ.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02-2133-7139), 구로구 주택과(☎02-860-2940)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도서 등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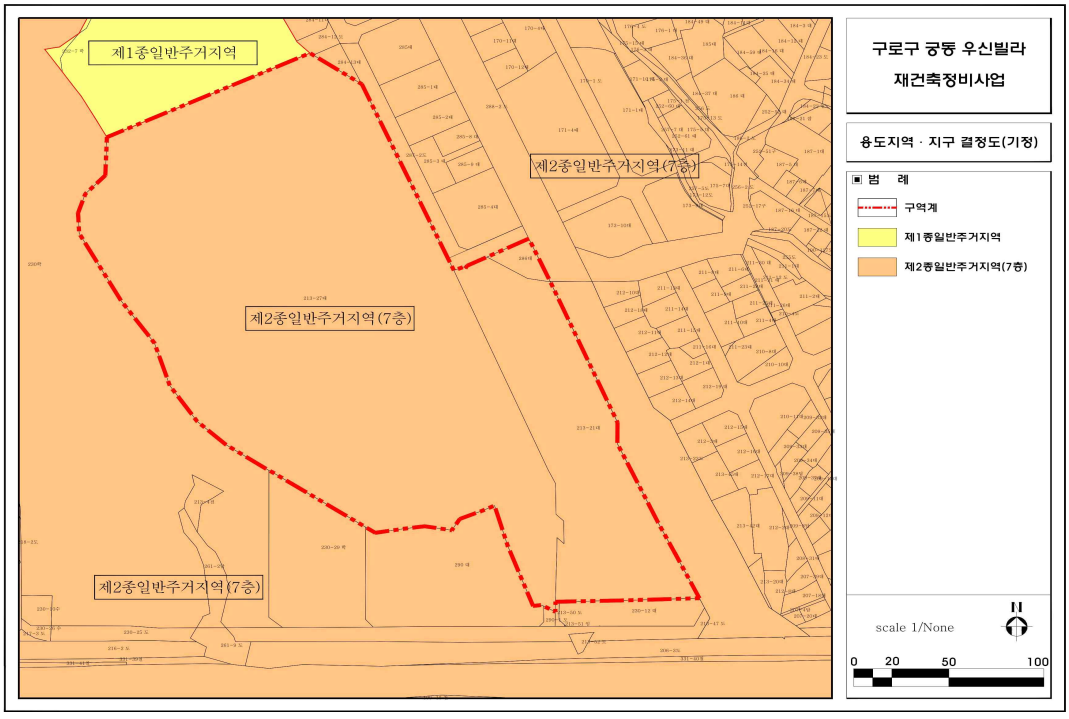
[정비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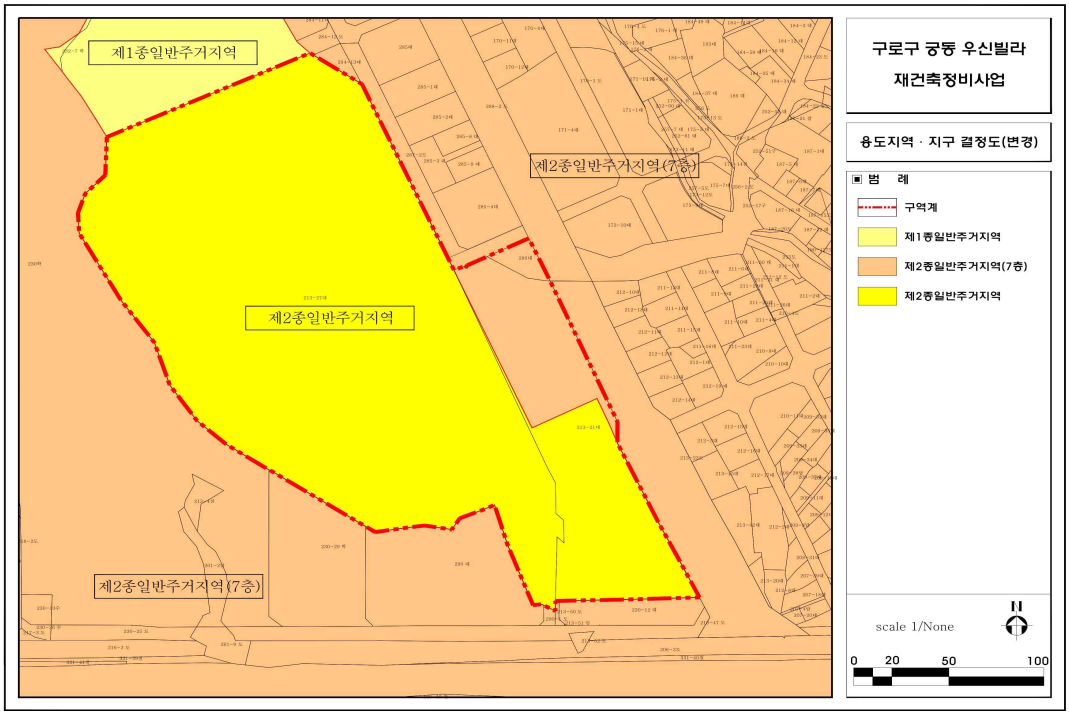
[정비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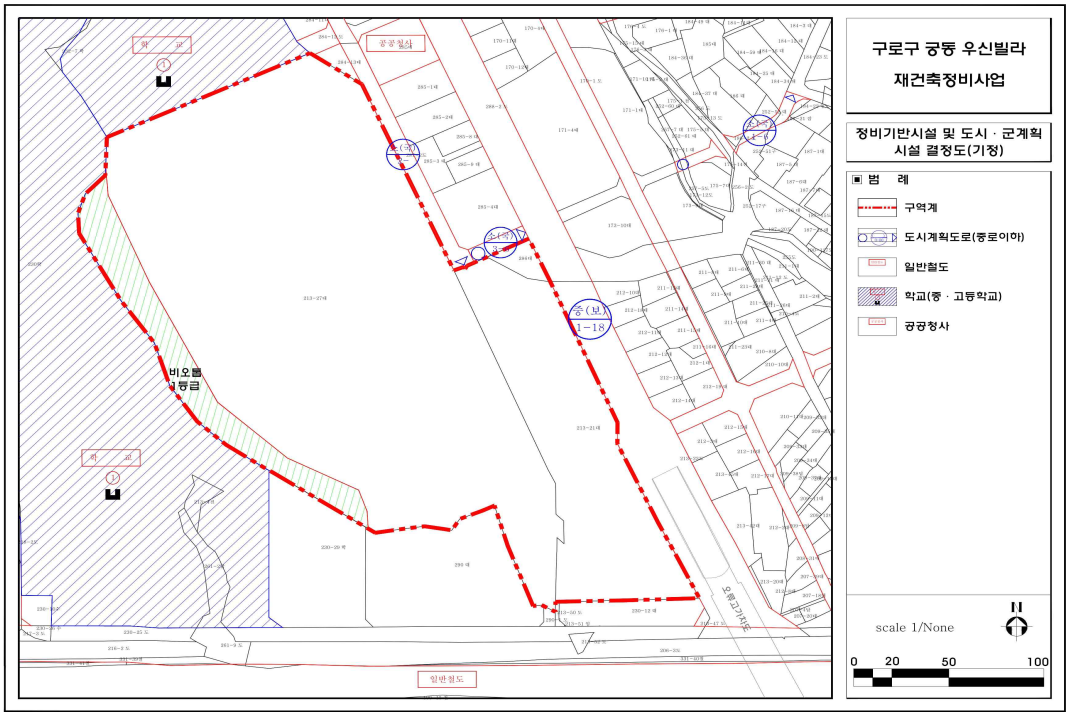
[용도지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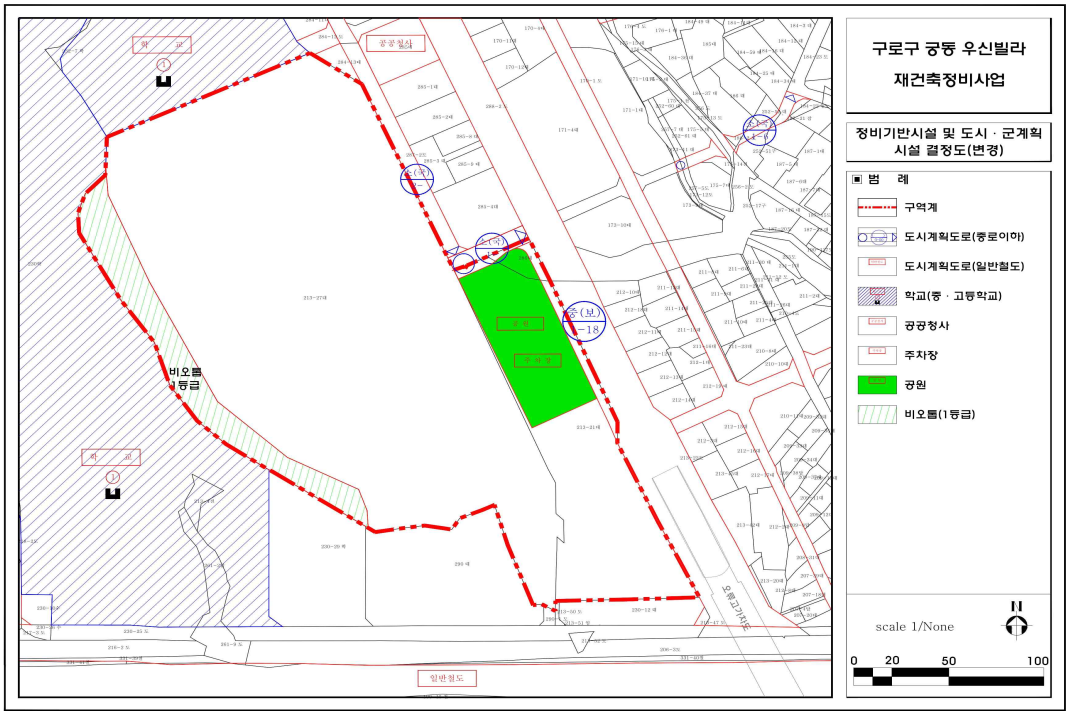
[용도지역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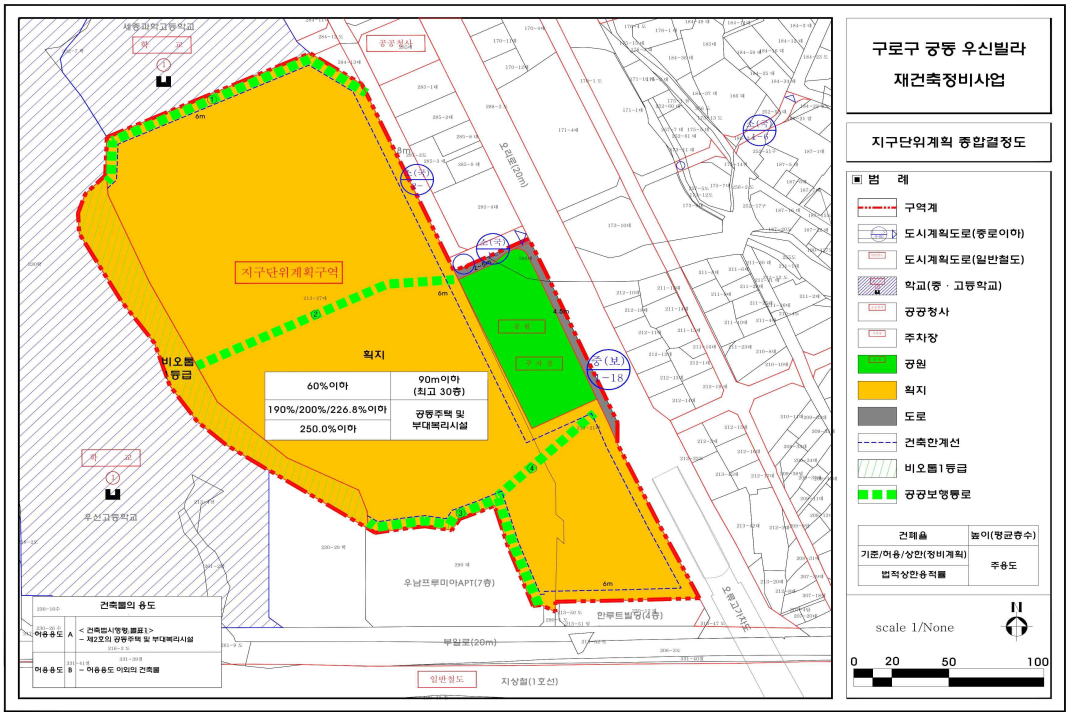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구로구 궁동 우신빌라
재건축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도
범 례
구역계
도시계획도로(중로이하)
도시계획도로(일반철도)
학교(중 · 고등학교)
공공청사
주차장
공원
획지
도로
건축한계선
비오톱1등급
공공보행통로
건폐율
높이(평균층수)
기준/허용/상한(정비계획)
주용도
법적상한용적률
scale 1/None
0 20 50 100
지구단위계획구역
획지
60%이하
90m이하
(최고 30층)
190%/200%/226.8%이하
250.0%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비오톱
1등급
우남프루미아APT(7층)
한루트빌딩(4층)
부일로(20m)
오류고가차도
일반철도
지상철(1호선)
건축물의 용도
어용용도 A
어용용도 B
어용용도 이외의 건축물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603호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570호(2018.7.5.)로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01호(2019.6.20.)로 고시되고, 제2022-433호(2022.11.3.)로 변경고시된「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경미한) 결정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현황
 가. 지역의 명칭 :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개요

지 역 명	유 형	위 치	면 적	비 고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근린재생형 (중심시가지형)	강북구 수유동 4.19사거리 및 우이동 일대	628,000㎡	-

 다. 사업기간(마중물사업)

기 정	변 경	변 경 사 유
2017년 ~ 2023년	2017년 ~ 2024년	마중물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및 마무리를 위한 기간연장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내용 : 변경사항 없음

3. 관련 도면 : 변경사항 없음

4. 관련서류 열람
 관련서류는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2133-8288) / 강북구 주택과(☎901-6822))에서 열람 가능하며 서울시 홈페이지(고시/공고)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604호

거여동 555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555번지 일대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승인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가. 관리지역의 명칭 : 거여동 555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나.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구분	위치	관리계획 요건	노후·불량건축물	비고
기준	송파구 거여동 555번지 일대	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 이하일 것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사업시행지별 57% 이상 포함)	
현황		12,615.7㎡	전체 : 93동 노후불량 : 78동(83.9%)	

다. 정비방향 : 저층 노후주거지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계획과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배치 및 보행환경 개선

2.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가. 관리지역의 지정
○ 관리지역의 지정 조서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거여동 555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송파구 거여동 555번지 일대	-	증)12,615.7	12,615.7	-

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 관한 계획(안)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송파구 거여동 22번지 일대	50,853.0	감) 10,000.8	40,852.2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46호 ('96.03.11)

※사업시행인가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척

다. 토지이용계획(안)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2,615.7	100.0	-
시행 구역	공동주택 용지	A	모아주택 가능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11,710.0	92.8	통합 정비시
		A-1	모아주택 가능구역1 (가로주택정비사업)	7,906.0	62.7	사업시행 구역별 정비시
		A-2	모아주택 가능구역2 (가로주택정비사업)	3,804.0	30.1	
	정비기반 시설	공공시설		189.3	1.5	1개소
		도로		585.5	4.7	-
시행 구역외	정비기반 시설	도로		130.9	1.0	

※ 사업시행구역별 분리시행시 공공시설은 1구역에서 기부채납토록 함

라. 정비기반시설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안)

■ 도로 계획(안)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구분	합 계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소로	2	5	8	국지도로	187(69)	거여동 564-11	거여동 561-13	일반도로	-	서고 7호 (12.1.12)	-
변경	소로	2	5	4~8	국지도로	235(81)	거여동 564-11	거여동 561-13	일반도로	-		도로연장

구분	합 계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소로	3	1	4	국지도로	84	거여동 555-9	거여동 555	일반도로	-	서고 7호 (12.1.12)	-
폐지	소로	3	1	4	국지도로	-	거여동 555-9	거여동 555	일반도로	-		폐도
기정	소로	3	2	4	국지도로	94(10)	거여동 556-6	거여동 362-1	일반도로	-	서고 7호 (12.1.12)	-
변경	소로	2	A	8	국지도로	124	거여동 557-2	거여동 362-1	일반도로	-		도로연장 및 확폭
기정	소로	3	4	4	국지도로	31	거여동 557-2	거여동 557	일반도로	-	서고 7호 (12.1.12)	-
폐지	소로	3	4	4	국지도로	31	거여동 555-9	거여동 555	일반도로	-		폐도
기정	소로	3	5	4	국지도로	84(73)	거여동 356	거여동 556	일반도로	-	서고 7호 (12.1.12)	-
폐지	소로	3	5	4	국지도로	-	거여동 356	거여동 556	일반도로	-		폐도
기정	소로	3	7	6	국지도로	80(22)	거여동 561-13	거여동 559	일반도로	-	서고 7호 (12.1.12)	
변경	소로	3	7	6	국지도로	22(-)	거여동 560-13	거여동 559	일반도로	-		도로축소
기정	소로	3	8	4	국지도로	66(4)	거여동 561	거여동 561-6	일반도로	-	서고 7호 (12.1.12)	-
변경	소로	3	8	4	국지도로	66(2)	거여동 561	거여동 561-6	일반도로	-		면적변경
기정	소로	3	9	4	국지도로	73(21)	거여동 564-22	거여동 562	일반도로	-	서고 7호 (12.1.12)	-
변경	소로	3	9	4	국지도로	52(-)	거여동 564	거여동 562	일반도로	-		도로축소
기정	소로	3	10	4	국지도로	30(3)	거여동 557-3	거여동 557-5	일반도로	-	서고 7호 (12.1.12)	-
폐지	소로	3	10	4	국지도로	30(3)	거여동 557-3	거여동 557-5	일반도로	-		폐도
기정	소로	3	12	4	국지도로	109(2)	거여동 564-11	거여동 564	일반도로	-	서고 7호 (12.1.12)	-
변경	소로	3	12	4	국지도로	109(2)	거여동 564-11	거여동 564	일반도로	-		면적변경
기정	소로	3	a	4	국지도로	112(83)	거여동 552-4	거여동 145-32	일반도로	-	-	-
변경	소로	3	a	4	국지도로	30(-)	거여동 552-4	거여동 552-5	일반도로	-		구역 내 폐지

■ 도로 계획(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5	소로2-5	도로 연장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기정 소로2-5호선과 소로 3-10호선 합병(소로3-10호선 폐지)
소로3-1	-	도로 폐지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도로 폐지
소로3-2	소로2-A	도로 연장 및 확폭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도로 연장 및 확폭
소로3-4	소로3-4	도로 폐지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도로 폐지
소로3-5	소로3-5	도로 폐지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도로 폐지
소로3-7	소로3-7	도로 축소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도로 축소
소로3-8	소로3-8	면적 축소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도로 면적 축소
소로3-9	소로3-9	도로 축소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도로 축소
소로3-10	-	도로 폐지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도로 폐지
소로3-12	소로3-12	면적 축소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도로 면적 축소
소로3-A	소로3-A	도로 축소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구역 내 도로 폐지 및 도로 축소

■ 입체도로 계획(안)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규모		비고
					당초	변경	
신설	소로 2-B	도로	거여동 560-13 일원	길이	-	21.6m	*비도시계획시설 : 지하에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폭	-	8m	
				높이	-	지표면 -1.2m~ 지상부	
				수평투영면적	-	183.5㎡	

※ 입체결정도로의 길이, 폭, 높이 면적은 구적 값으로 향후 측량 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

■ 도로 계획(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 2-B	도로 신설	구역 경계 남측 공동주택 진입도로 및 구역내 지하부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를 위한 입체결정

■ 사회복지시설 계획(안)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사회복지시설	거여동 555 일원	-	증) 189.3	189.3	-	-

※ 사회복지시설내 세부 도입시설은 사업시행계획인가시 관련부서와 협의 및 수요 조사를 통해 결정

- 건축물의 범위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①	사회복지시설	거여동 555 일원	60	150	4층이하	-	-

■ 도로 폐도 및 입체결정 등에 관한 계획(안)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안)

- 모아타운 지정 및 모아주택 사업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거나 입체결정 도로로 사업시행 구역에 포함되는 송파구 또는 서울시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소규모주택정비법 43조3항에 따름
- 용도가 폐지되는 송파구, 서울시 소유의 토지 면적은 1,822㎡임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구분	구역명	위치	규모(㎡)	내용	비고
합계			1,822㎡	-	-
도로	모아주택 가능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거여동 362-1	130.9	편입	송파구
도로		거여동 552-12	147.3	편입	송파구
도로		거여동 552-13	1,044.4	부분편입	송파구
도로		거여동 553-14	113.8	편입	송파구
도로		거여동 553-2	18.5	편입	송파구
대지		거여동 555-3	97.7	편입	송파구
도로		거여동 560-13	132.6	부분편입	송파구
도로		거여동 563-21	90.3	부분편입	송파구
대지		거여동 553-20	46.5	편입	서울특별시

○ 기부채납하는 정비기반시설(안)

- 모아타운 지정 및 모아주택 사업시행시 도로 확폭을 위해 일부 편입하고, 기부채납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함

〈기부채납하는 정비기반시설〉

구분	구역명	위치	규모	내용	비고
합계			978.8㎡	-	-
도로	모아주택 가능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거여동 555동 일대	716.4㎡	도로 확폭으로 도로 편입 및 기부채납	송파구
공공시설		거여동 555동 일대	262.4㎡ (73.1㎡)[1)]	노인복지시설 설치 제공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환산면적 기부채납	송파구

1) 연면적 156.88㎡에 해당하는 건축물 환산부지면적임(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안)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 모아타운 내 추진되는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 사업시 공동이용시설을 활용하여 주변지역에 부족한 생활편의시설을 개방형 공동이용시설로 설치하도록 권장

구분	시설유형	내용	비고
권장 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놀이터, 공동체육시설, 공동작업장, 돌봄센터, 독서실, 서울형 키즈카페 등 ◦「2030 서울플랜」 거여·마천지역 생활권 부족시설 및 보행소외권 발생 시설 확보 (주차장, 도서관)	관리지역 내 추진되는 모아주택사업을 통해 주변 지역에 부족한 생활편의시설을 공동이용시설로 확보	-

시설 구분	구역	위치	시설의 종류	면적(㎡)	비고
공동 이용 시설	모아주택 가능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거여동 555일원	계	1,090	통합 정비시
			경로당	160	
			작은도서관	110	
			어린이집	210	
			공동체육시설	300	
			기타공동이용시설	310	
	모아주택 가능구역1 (가로주택정비사업)	거여동 555일원	계	1,035	사업시행구역별 정비시
			경로당	160	
			작은도서관	100	
			어린이집	210	
			기타공동이용시설	565	
	모아주택 가능구역2 (가로주택정비사업)	거여동 552일원	계	360	사업시행구역별 정비시
			경로당	60	
			공동체육시설	300	

※ 서울시 주택 조례 제8조의4(주민공동시설) 1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기준 : 세대당 2.5㎡ X 1.25 이상 확보

마. 교통계획(안)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 주변 주도로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기존 도로망 계획을 유지하고,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을 고려하여 양산로 및 오금로변을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하여 교통을 원활하게 계획함

구 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양산로, 오금로	- 간선도로변 차량진출입은 원칙적으로 불허	
차량진출입 구간	불허구간 제외 전 지역	- 이면도로에 대해 차량진출입 허용	

바. 거점사업에 관한 계획(안)

○ 해당 없음

사. 거점사업 이외의 모아주택에 대한 추진계획(안)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내 진행중인 사업은 없으며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후 통합시행 또는 사업시행구역별 추진예정임

도면표시 번호	사업구역	위 치	사업추진현황					계획(안)	비고
			면적(㎡)	토지등소유자	기존 호수	시행자	추진 단계	면적(㎡)	
A	모아주택 가능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거여동 555일원	-	151명	125호	-	-	11,710.0	통합 정비시
A-1	모아주택 가능구역1 (가로주택정비사업)	거여동 555일원	-	98명	86호	-	-	7,906.0	사업시행 구역별 정비시
A-2	모아주택 가능구역2 (가로주택정비사업)	거여동 552일원	-	53명	39호	-	-	3,804.0	사업시행 구역별 정비시

아. 모아주택 통합계획(안)

○ 해당 없음

자.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 계획(안)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밀도계획(안)_통합 정비시

구 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시행구역내	건폐율	50%이하	A (A-1.A-2)
	용적률	기준 250%이하 법적 상한 300% 이하	A (A-1.A-2)
	높이	용도지역 층수 적용	A (A-1.A-2)
시행구역외	건폐율	60%이하	C-1
	용적률	150%이하	
	높이	용도지역 층수 적용	

※ 법 제48조 및 제43조의4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시에는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음

■ 밀도계획(안)_사업시행구역별 정비시

구 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시행구역내	건폐율	50%이하	A-1
		60%이하	A-2
	용적률	기준 250%이하 법적 상한 300% 이하	A-1
		기준 200%이하 법적 상한 250% 이하	A-2
	높이	용도지역 층수 적용	A-1
		용도지역 층수 적용	A-2
시행구역외	건폐율	60%이하	C-1
	용적률	150%이하	
	높이	용도지역 층수 적용	

※ 법 제48조 및 제43조의4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시에는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음

■ 건폐율 결정 조서(안)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명칭	위치	용도지역	건폐율(%)	비고
거여동 555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송파구 거여동 555번지 일대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	통합정비시 또는 모아주택가능구역1 사업시행시
	송파구 거여동 552번지 일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	모아주택가능구역2 사업시행시
	송파구 거여동 555번지 일대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	공공시설용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 준용

■ 용적률 결정 조서(안)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구분		위치	용적률(%)		비고
도면 표시 번호	사업구역		기준	법적 상한	
A	모아주택 가능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거여동 555일원	250%	300%	통합정비시
A-1	모아주택 가능구역1 (가로주택정비사업)	거여동 555일원	250%	300%	사업시행구역별 정비시
A-2	모아주택 가능구역2 (가로주택정비사업)	거여동 552일원	200%	250%	사업시행구역별 정비시
C-1	모아주택 가능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거여동 555일원	150%	-	공공시설용지

주) 1. 기준용적률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에 따른 용적률
주) 2. 상한용적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
주) 3. 상한용적률의 적용 :
① 용도지역 변경구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 5에 따라 상향된 용도지역의 용적률에서 종전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 범위 내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건설·공급
②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 20%이상 건설·공급하여 법적상한용적률 적용
※ 법 제48조 및 제43조의4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시에는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음

차. 건축물의 배치·형태·용도 ·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안)

■ 건축물의 배치 및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안)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구 분	적용지역	계획 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A (A-1,A-2) C-1	- 건축한계선 2m 적용 - 건축한계선 3m적용(오금로,양산로, 오금로56길)	- 가로 환경 및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한계선 후퇴구간은 보도형 전면공지로 계획
벽면한계선	오금로	- 저층부(2층이하) 5m 적용	- 오금로변 충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한 저층부 벽면한계선 지정
공공보행통로	A (A-1)	- 공공보행통로 4m 적용	- 기존 보행 가로망 체계 유지를 위하여 공공 보행통로 계획
배치계획	A-1	- 가로변 경관 차폐 및 장벽 형성 등 위압감 완화를 위하여 건축계획시 매스를 분절하여 개방적 시야를 확보	- 장대한 입면 형성을 지양하고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형성을 위한 계획

구분	계획 내용	비고
보도형 전면공지 조성지침	1.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또는 차도와 단차 없이 조성한다. 2. 전면공지 내에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등 차량 및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치물을 설치할 수 없다. 3. 포장패턴은 공공부문의 포장패턴을 우선 준용하고 개별포장 선정시인접지역의 포장패턴과 조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바닥은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포장토록한다. 4. 보도부속형 전면공지의 설계시보도공사 상세설계 표준도 작성지침 및 장애없는보도 디자인 가이드라인 시행계획을 준용하도록 하며 사업시행전 송파구 관련부서에 설계지도 점검을 득하여야 한다.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전면공지(보도형)계획

■ 건축물의 용도 계획(안)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A	유형		A (A-1,A-2)	•공동주택 용지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제2조 13호, 14호에 의한 부대· 복리시설 • 「서울특별시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조례」 제44조 공동이용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저층부1~2층에 한하여 허용)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C	유형		C-1	•공공시설 용지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가목, 나목, 다목의 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카.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계획(안)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 임대주택 총 142호 공급 예정

– 사업시행구역별 정비시 총 131호 공급예정

구분		위치	전체 세대수	임대주택세대수		임대주택 인수예정자	비고
도면표시 번호	사업구역			세대수	비율 (%)		
A	모아주택 가능구역	거여동 555일원	359	142	39.6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통합정비시
A-1	모아주택 가능구역1	거여동 561일원	235	94	40.0		사업시행 구역별 정비시
A-2	모아주택 가능구역2	거여동 552-1일원	88	37	42.0		사업시행 구역별 정비시

※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임대주택 인수예정자와 협상 예정
※ 상기의 세대수, 임대주택 세대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준공인가 등 사업 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타.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안)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 모아타운 내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은 통합 정비와 사업시행구역별 정비로 구분하여 계획함

– 통합시행에 관한 사항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름

– 통합 정비시 주변 지역의 개발여건에 대응 및 개발의 실현성을 위하여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사업시행구역별 정비시 현재 용도지역을 고려 사업시행구역별 제3종일반주거지역(1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2구역)으로 변경함

■ 용도지역계획(안)_통합 정비시

구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12,615.7	-	12,615.7	100.0	-
제1종일반주거지역	4,364.1	감)3,916.8	447.3	3.5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6,130.1	감)5,671.7	458.4	3.7	-
제2종일반주거지역	2,121.5	감)2,121.5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11,710.0	11,710.0	92.8	-

※ 사업시행구역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 용도지역계획(안)_사업시행구역별 정비시

구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12,615.7	-	12,615.7	100.0	-
제1종일반주거지역	4,364.1	감)3,916.8	447.3	3.5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6,130.1	감)5,671.7	458.4	3.7	-
제2종일반주거지역	2,121.5	증)1,682.5	3,804.0	30.1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7,906.0	7,906.0	62.7	-

※ 사업시행구역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파.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계획(안)

○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계획(안)

- 특별건축구역은 관리계획 고시 후 사업시행계획인가시점에 지정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특별건축구역	모아주택가능구역1~2	-	증)12,615.7	12,615.7	

※ 상기 특별건축구역의의 특례 사항 및 사유 등은 사업 시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시행시기가 동일할 경우 적용 가능

■ 「건축법」 제 73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특례 및 제74조에 따른 계획에 대한 사항

구분	배제 및 완화	비고
건축법	대지안의 조경(제42조), 건폐율(제55조), 용적률(제56조), 대지안의 공지(제58조), 건축물의 높이제한(제6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제61조) 등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동주택의 배치(제10조), 기준척도(제13조), 비상급수시설(제35조), 난방설비(제37조) 등	
통합적용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의 설치	

※ 상기 특별건축구역의 특례 사항 및 사유 등은 사업시행과정에게 변경될 수 있음

하. 공공이 시행하는 사업과의 연계 계획

○ 해당없음

거. 경미한 변경에 관한 계획

○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모아타운의 면적을 100분의 5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 사업시행기간을 계획된 기간의 3년 이내에서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경우
- 관리계획을 법 제43조의3 제5호 및 제7호의 사항을 완화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 계산착오 및 오기·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관련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4. 관계도서

○ 서울특별시 전략주택공급과(☎ 02-2133-8237) 및 송파구 주택사업과(☎ 02-2147-2889)에 비치·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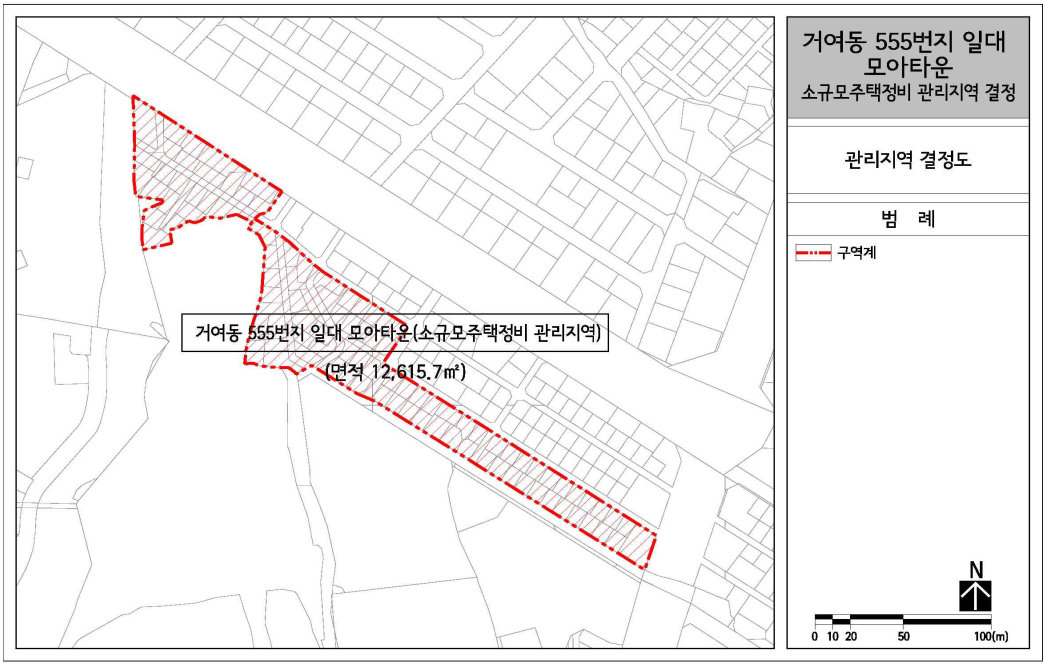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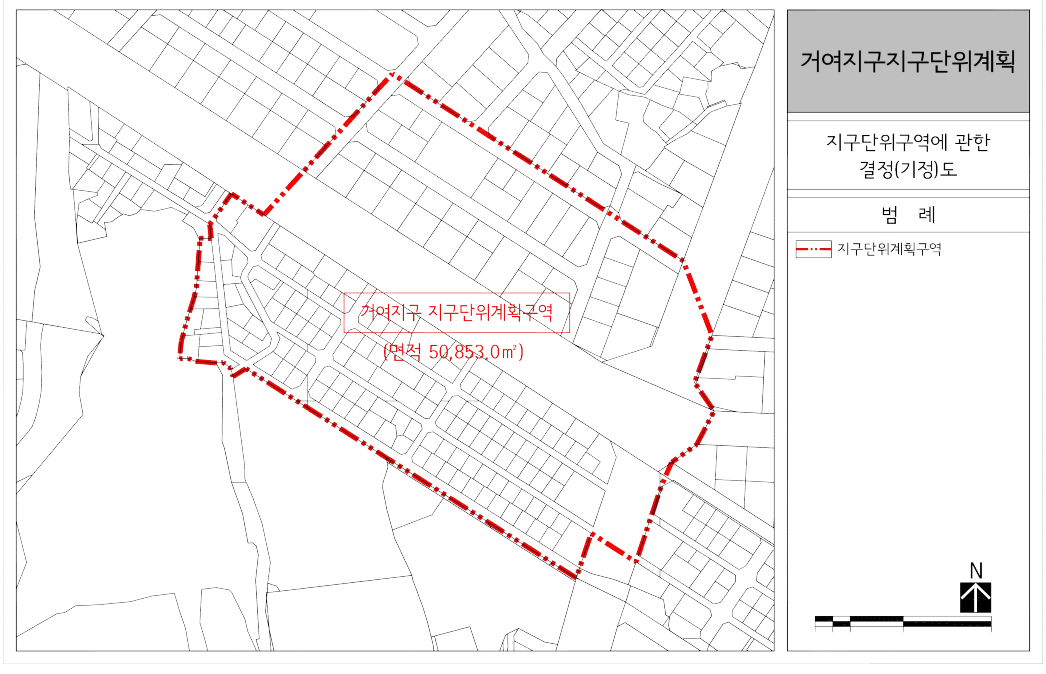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관리계획 및 관리지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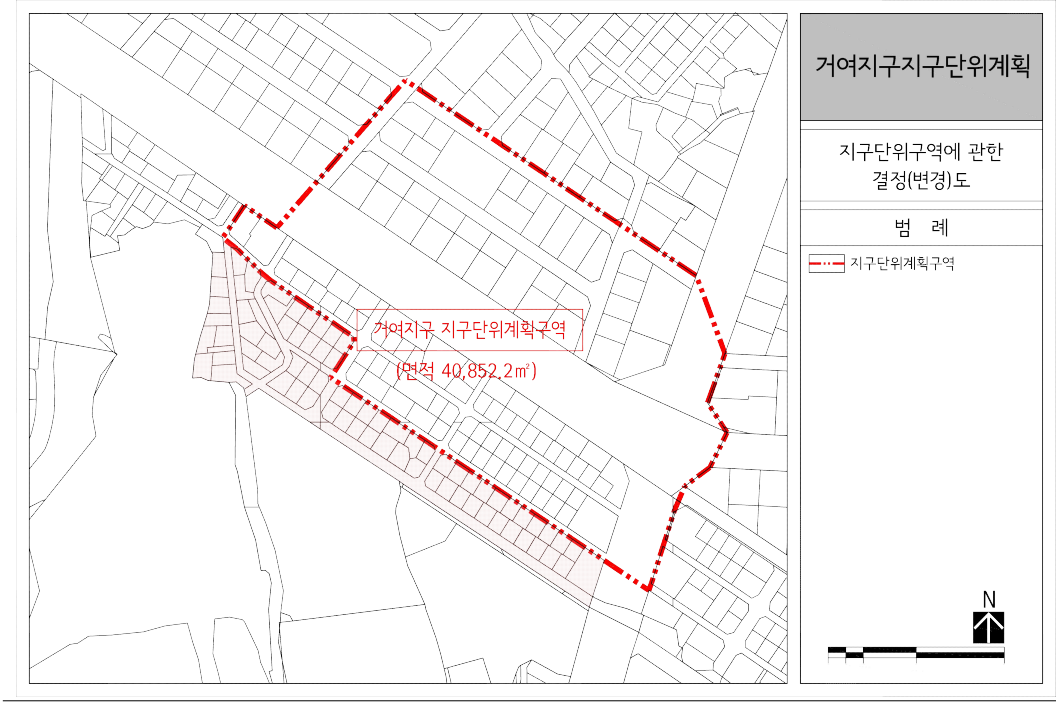
■ 관리지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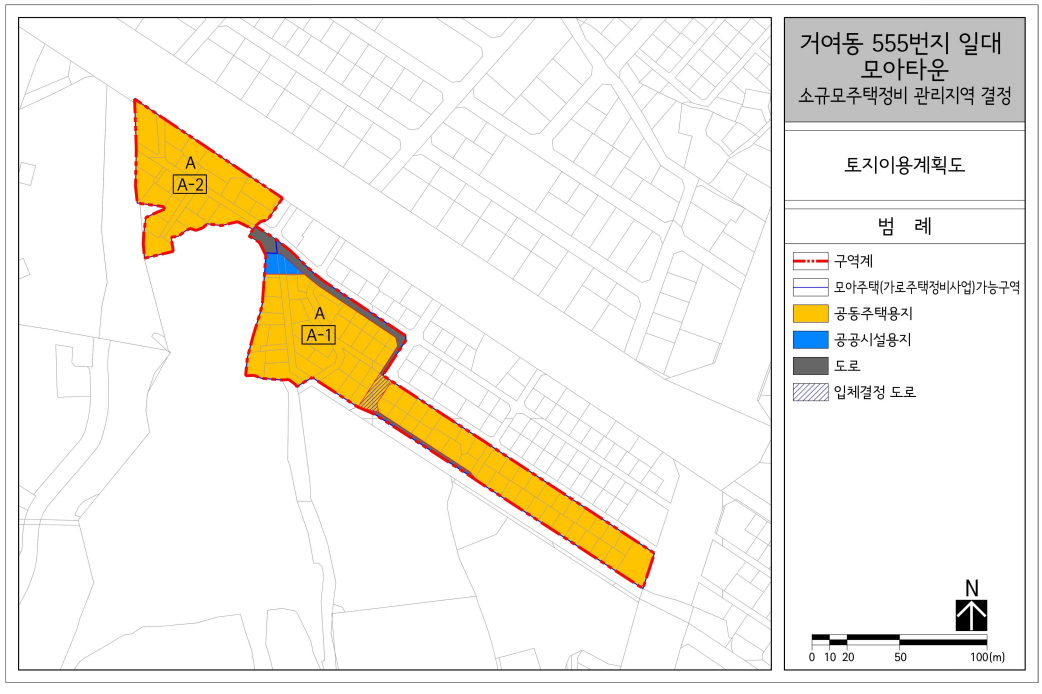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 결정(안)_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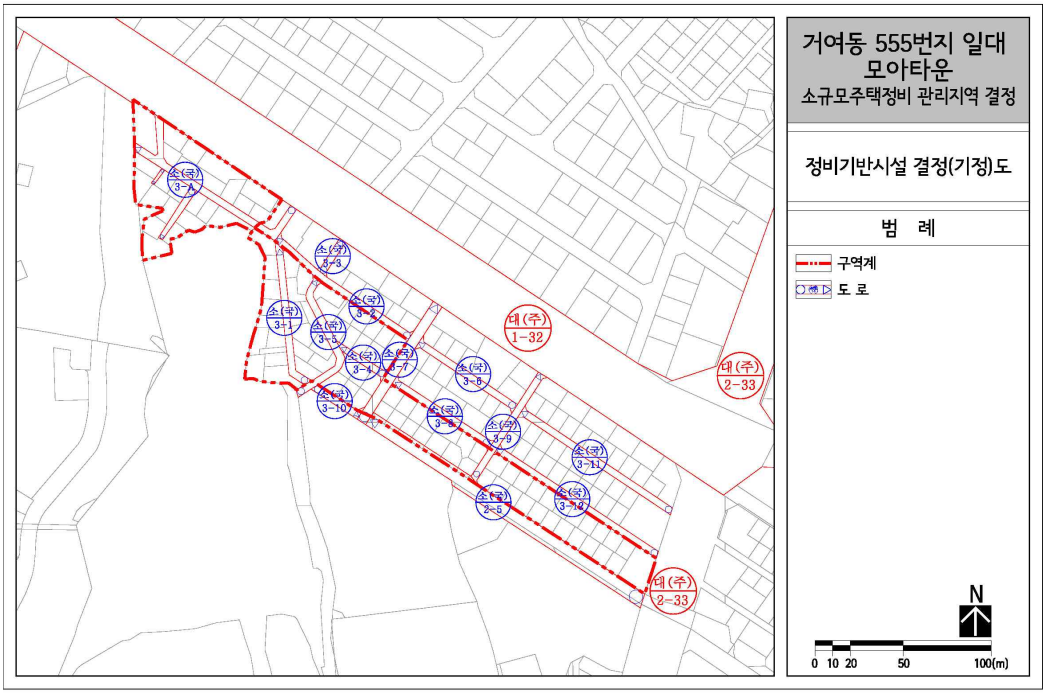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 결정(안)_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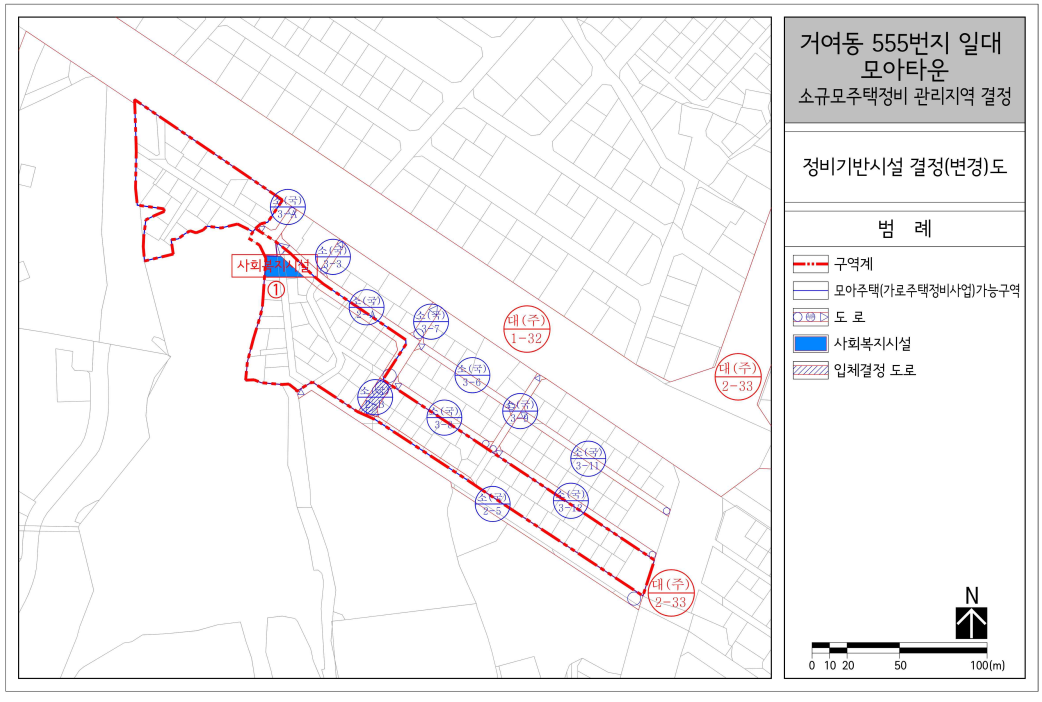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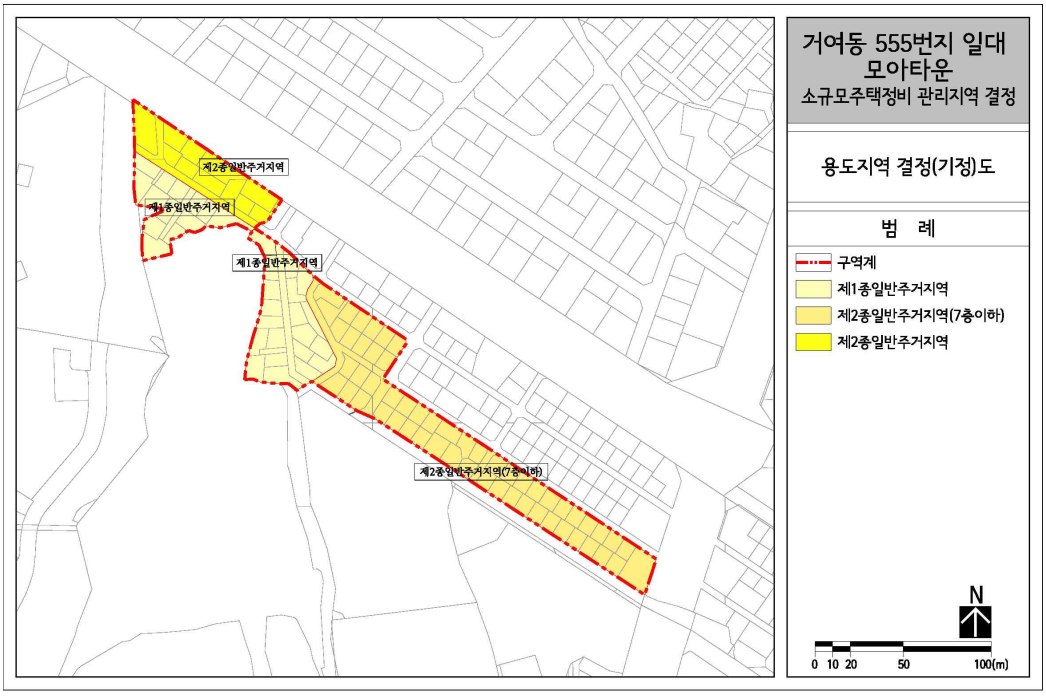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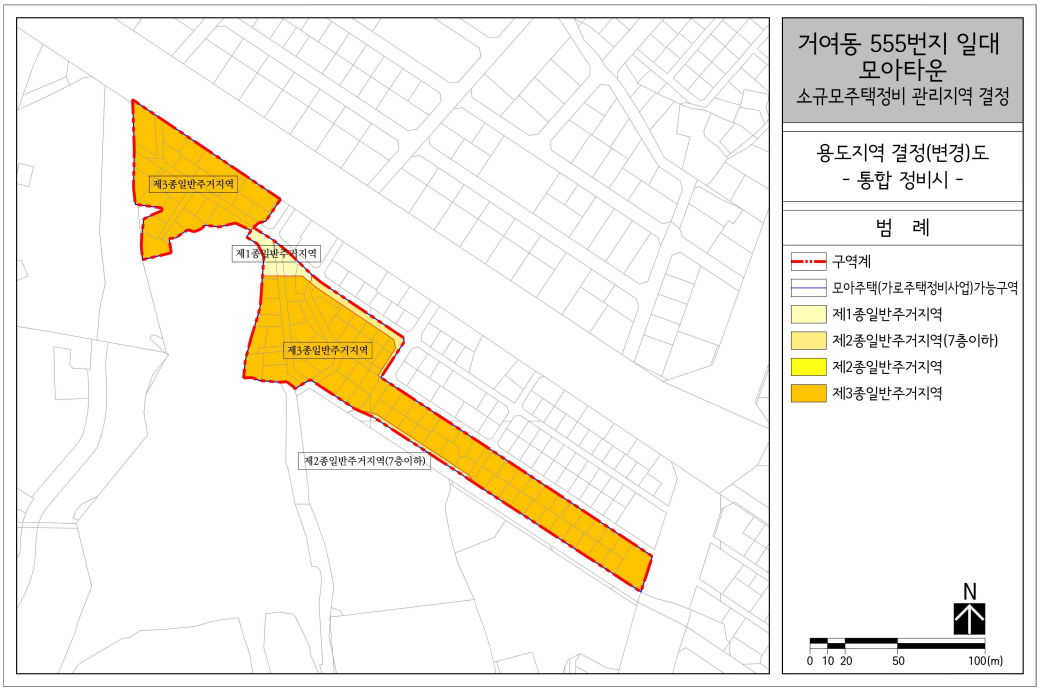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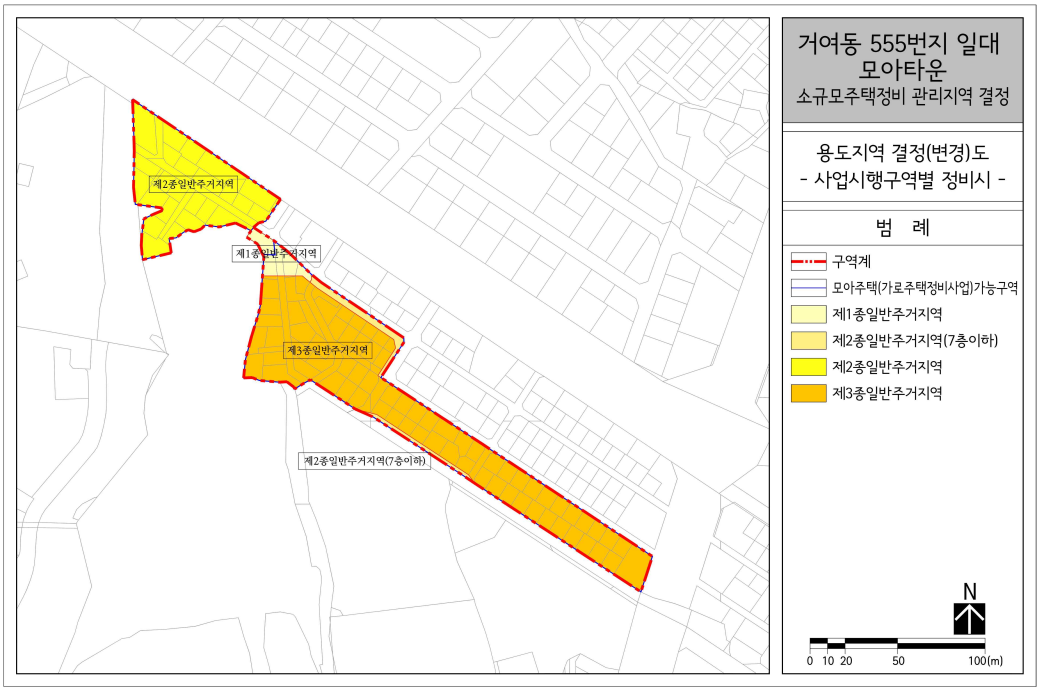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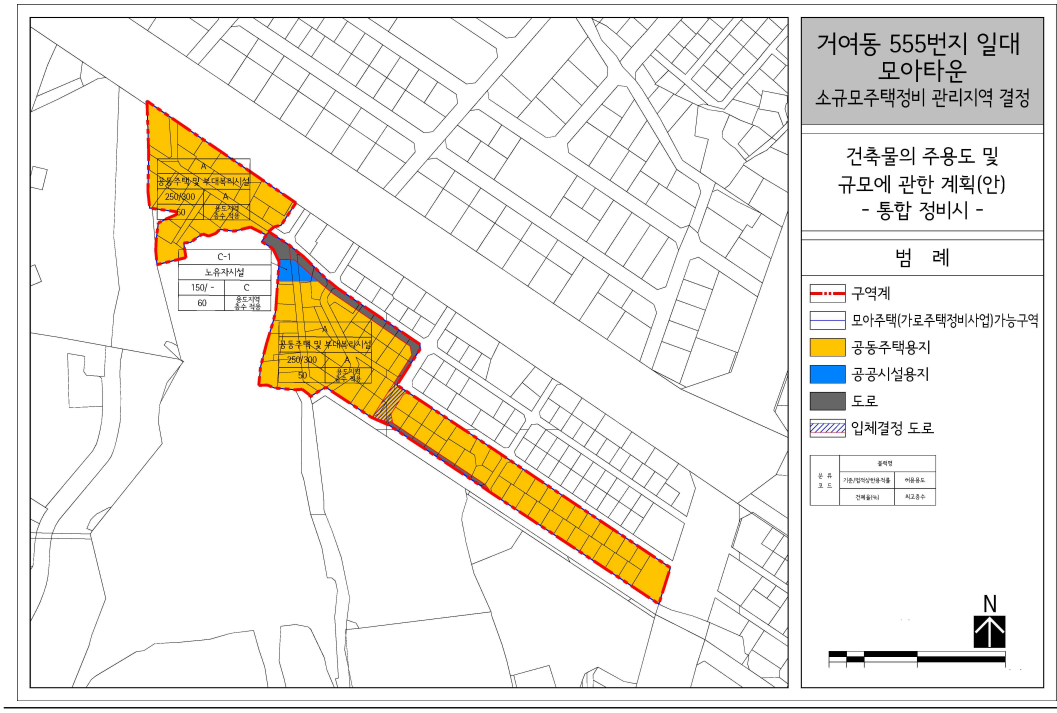
■ 용도지역 변경 계획(안)_통합정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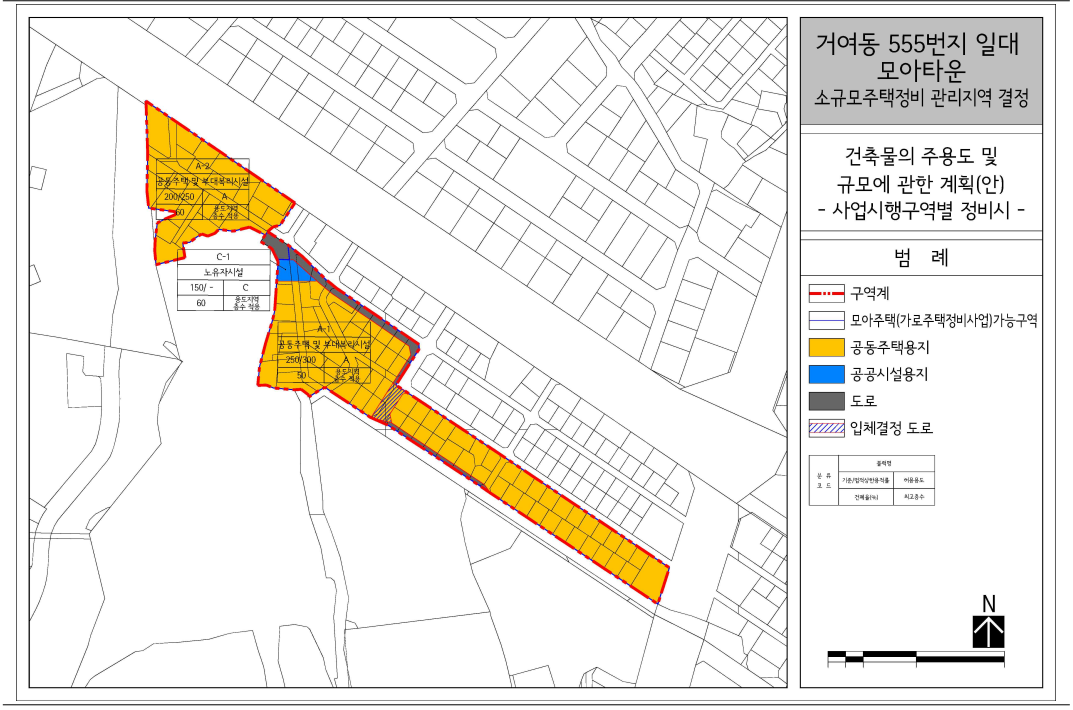
■ 용도지역 변경 계획(안)_사업시행구역별 정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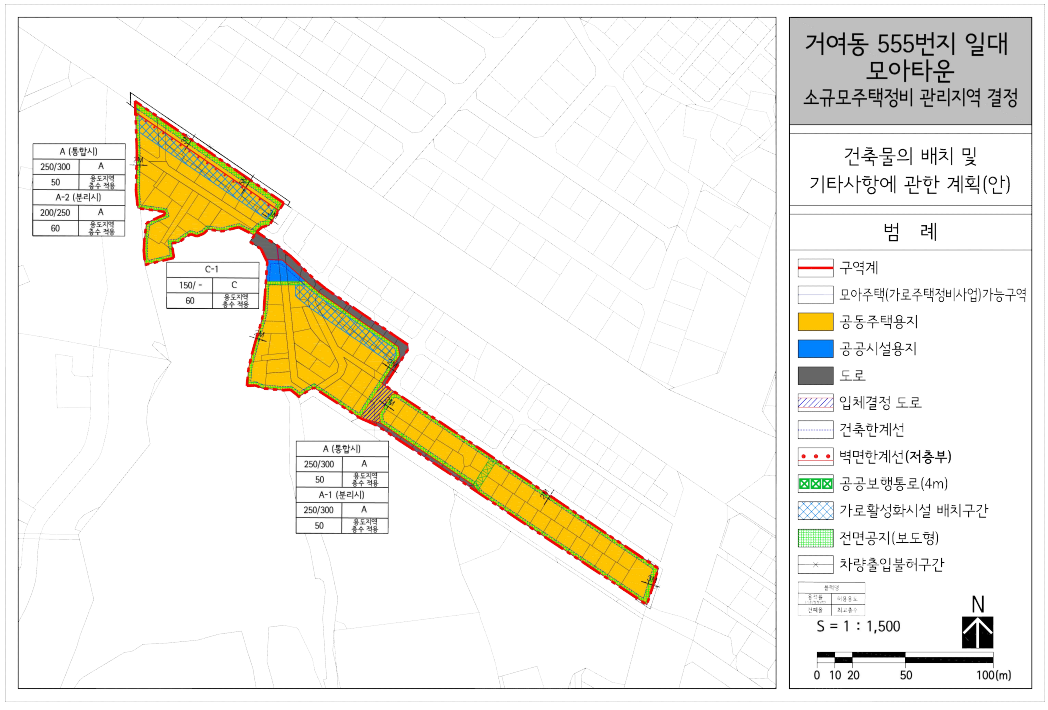
■ 건축물의 주용도 및 규모에 관한 계획(안)_통합정비시



■ 건축물의 주용도 및 규모에 관한 계획(안)_사업시행구역별 정비시



■ 건축물의 배치 및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안)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605호

둔촌동 77-41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77-41번지 일대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승인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가. 관리지역의 명칭 : 둔촌동 77-41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나.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구분	위치	관리계획 요건	노후·불량건축물	비고
기준	둔촌동 77-41번지 일대	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 미만일 것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
현황		65,326.84㎡	전체 : 283동 노후·불량 : 200동(70.67%)	-

다. 정비방향 :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계획과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계획을 통해 저층 노후주거지의 계획적 공동개발 유도

2.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가. 관리지역의 지정
○ 관리지역의 지정조서

구분	관리지역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둔촌동 77-41번지 일대 모아타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둔촌동 77-41번지 일대	-	증) 65,326.84	65,326.84	-

나. 토지이용계획(안)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65,326.84	100.0	
시행구역	사업가능구역	소계		39,002.22	59.70	
		A-1	모아주택 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19,999.86	30.62	
		A-2	모아주택 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19,002.36	29.09	
	사업추진가능구역	B-1	주택용지 등	16,189.57	24.78	
	정비기반시설 등	C-1	공원(주차장)	3,549.54	5.43	중복결정
		-	도로	6,585.50	10.08	

다.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안)

○ 도로 결정(변경) 조서(안)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조성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가	6	-	-	-	-	-	양재대로 102가길
기정	소로	1	나	10	-	-	-	-	-	풍성로 65길
기정	소로	2	다	6~10	-	-	-	-	-	풍성로 63길
변경	소로	3	다	6	-	-	-	-	일반	풍성로 63길 -일부폐도
기정	소로	3	라	5	-	-	-	-	-	풍성로 65길
변경	소로	1	라	10	국지	-	-	-	일반	풍성로 65길
기정	중로	3	3	12	보조간선	303	둔촌동 66-2	둔촌동 454-6	일반	
변경	중로	2	3	12~15	보조간선	303	둔촌동 66-2	둔촌동 454-6	일반	-일부확폭
기정	소로	3	마	6	국지	110	둔촌동 485	둔촌동 488-2	일반	양재대로 98길
변경	소로	2	마	8	국지	110	둔촌동 485	둔촌동 488-2	일반	양재대로 98길
기정	소로	3	바	6	국지	280	둔촌동 487-3	둔촌동 469-5	일반	양재대로 98길
변경	소로	1	바	6~10	국지	280	둔촌동 487-3	둔촌동 469-5	일반	양재대로 98길
기정	소로	3	사	6	국지	114	둔촌동 489-8	둔촌동 489	일반	풍성로 61길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조성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변경	소로	1	사	10	국지	114	둔촌동 489-8	둔촌동 489	일반	풍성로 61길
신설	소로	2	아	8	국지	78	소로 2-자	소로 1-라	일반	양재대로 102가길 -입체결정
신설	소로	2	자	8	국지	240	둔촌동 452-2	둔촌동 442-14	일반	풍성로 65길

※천호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도로로서 임의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작성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소로 2-다	소로 3-다	도로 축소	거주자우선주차 제거로 인한 도로 축소
소로 3-라	소로 1-라	도로 확폭	도로 확폭 및 도로 폭원에 맞게 조정
중로 3-3	중로 2-3	도로 확폭	완화차선 계획으로 인한 도로 폭원 확보
소로 3-마	소로 2-마	도로 확폭	도로 확폭 및 도로 폭원에 맞게 조정
소로 3-바	소로 1-바	도로 확폭	도로 확폭 및 도로 폭원에 맞게 조정
소로 3-사	소로 1-사	도로 확폭	도로 확폭 및 도로 폭원에 맞게 조정
-	소로 2-아	도로 신설	기존 미지정된 도로 신설
-	소로 2-자	도로 신설	기존 미지정된 도로 신설

○ 입체결정 조서(안)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규모		비고
					당초	변경	
신설	소로 2-아	일반도로	둔촌동 468 (양재대로 102가길)	길이	-	78m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약 620㎡ • 비도시계획시설 - 지하에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폭	-	8m	
				높이 (해발고도)	-	지표면 -1.2m~지상부	

○ 입체결정 사유서

도로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소로 2-아	• 도시계획시설 : 도로 B : 8m, L : 78m, H : -1.2m~지상부 • 비도시계획시설 : 지하에 공동주택 부설 주차장 설치	모아주택 1구역 (A-1)을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설정하고 기존 차량통행을 유지하기 위해 입체결정 함

○ 공원 계획(안)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어린이공원	둔촌동 484-13번지 일대	-	증)3,549.54	3,549.54		주차장과 중복결정

○ 주차장 계획(안)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영주차장	둔촌동 484-13번지 일대	-	증)3,549.54	3,549.54		공원과 중복결정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안)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구분	시설유형	설치기준	비고
권장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놀이터, 독서실, 공동체육시설, 공동작업장 등	주변지역에 부족한 시설을 가로활성화를 위해 커뮤니티 가로변으로 확보	

라. 교통계획(안)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진황도로 및 양재대로98길, 풍성로65길의 일부구간	• 커뮤니티가로 및 간선부의 가로 활성화 및 보행권의 안전을 위한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설정 • 가각부에 진출입을 막기 위한 일부구간 설정	
차량진출입구간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제외	•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구간	
공공보행통로	풍성로63길 일부구간	• 폐도되는 일부 도로 구간의 공공보행통로 계획	

마.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안)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도면표시	사업구역	위치	사업계획						비고
			면적(㎡)	토지등소유자	기존호수	시행자	추진단계	최초결정일	
합 계			39,002.22	563	1,026	-	-	-	
A-1	모아주택 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둔촌동 470-1번지 일대	19,999.86	318	612	-	-	-	
A-2	모아주택 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둔촌동 458-1번지 일대	19,002.36	245	414	-	-	-	

바. 기타(건축협정)에 관한 계획(안)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의 체결로 「건축법」 제77조의13에 따른 특례적용 계획

구분		위치	면적(㎡)	특례사항	특례적용사유	비고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A-1	모아주택 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둔촌동 470-1번지 일대	19,999.86	- 공통사항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 공통사항 경관특화를 위한 창의적 배치 및 건축물 계획	-
A-2	모아주택 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둔촌동 458-1번지 일대	19,002.36			-

사.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 계획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1) 건폐율에 관한 계획

사업구역	용도지역	건폐율	비고
모아주택 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2) 용적률에 관한 계획

구분		위치	용적률(%)		비고
도면표시번호	사업구역		기준	상한	
A-1	모아주택 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둔촌동 470-1번지 일대	250	300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5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 (제2종 →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동법 제48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와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공급하여 상한용적률 적용
A-2	모아주택 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둔촌동 458-1번지 일대	250	300	

3) 높이에 관한 계획

구분		위치	용도지역	높이기준	비고
도면 표시 번호	사업구역				
A-1	모아주택 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둔촌동 470-1번지 일대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 층수적용	
A-2	모아주택 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둔촌동 458-1번지 일대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 층수적용	

아. 건축물의 배치·형태·용도·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구 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대상지 내 도로와 접한 대지	건축한계선 3m적용	커뮤니티가로변 및 그 외 도로변 3m 적용
가로활성화 시설 배치구간	모아주택 1구역 모아주택 2구역	가로활성화시설 배치 가로활성화시설 권장용도	커뮤니티가로 활성화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거점시설, 근린생활시설 배치 유도
통경축 확보구간	공공보행통로 구간	2개소 지정 건축물 배치 계획시 확보	통경축 확보 및 안전한 등하굣길, 보행공간 확보
담장미설치	모아주택 사업시행구역	공공보행통로 및 구역간 담장 미설치	

자.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계획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임대주택으로 260세대(약 22.32%) 공급 예정

구분		위치	전체세대	임대주택	조합/일반분양	비고
도면 표시 번호	사업구역					
합계		-	1,165	260	905	22.32%
A-1	모아주택 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둔촌동 470-1번지 일대	604	94	510	15.56%
A-2	모아주택 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둔촌동 458-1번지 일대	561	166	395	29.59%

※ 상기의 세대수, 임대주택수 등은 사업시행인가, 준공인가 등 사업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차.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65,326.84	-	65,326.84	10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51,952.17	감)26,749.04	25,203.13	38.58	
	제2종일반주거지역	13,202.37	감)12,253.18	949.19	1.45	
	제3종일반주거지역	172.30	증)39,002.22	39,174.52	59.97	

카.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계획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특례사항	적용사유
A-1	모아주택 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둔촌동 470-1번지 일대	19,999.86	모아타운 관리계획에서 지정한 사항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건축함으로 도시경관 창출 및 공공성 확보 기여
A-2	모아주택 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둔촌동 458-1번지 일대	19,002.36		

○ 특례 지정 사항

구분	배제 및 완화	비고
건축법	대지안의 조경(제42조), 건폐율(제55조), 용적률(제56조), 대지안의 공지(제58조), 건축물의 높이제한(제6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제61조) 등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동주택의 배치(제10조), 기준척도(제13조), 비상급수시설(제35조), 난방설비 등(제37조) 등	
통합적용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의 설치	

3. 관련도면

○ 붙임 참조 (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4. 관계도서

○ 서울특별시 전략주택공급과(☎ 02-2133-8237) 및 강동구청 재건축재개발과 모아타운팀(☎ 02-3425-8862)에 비치·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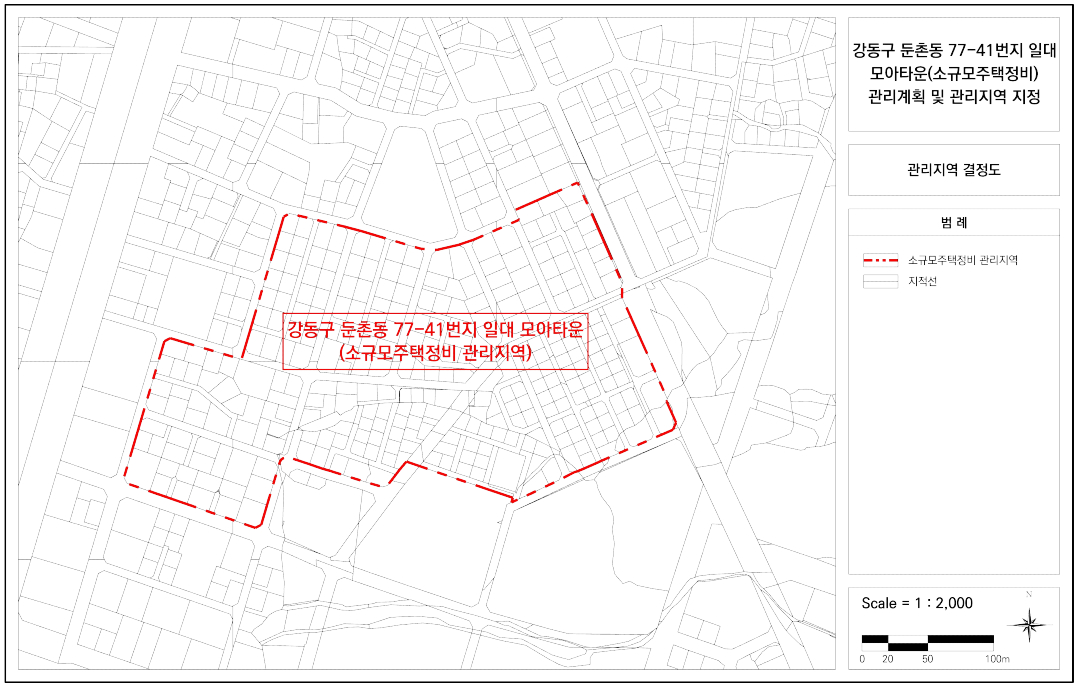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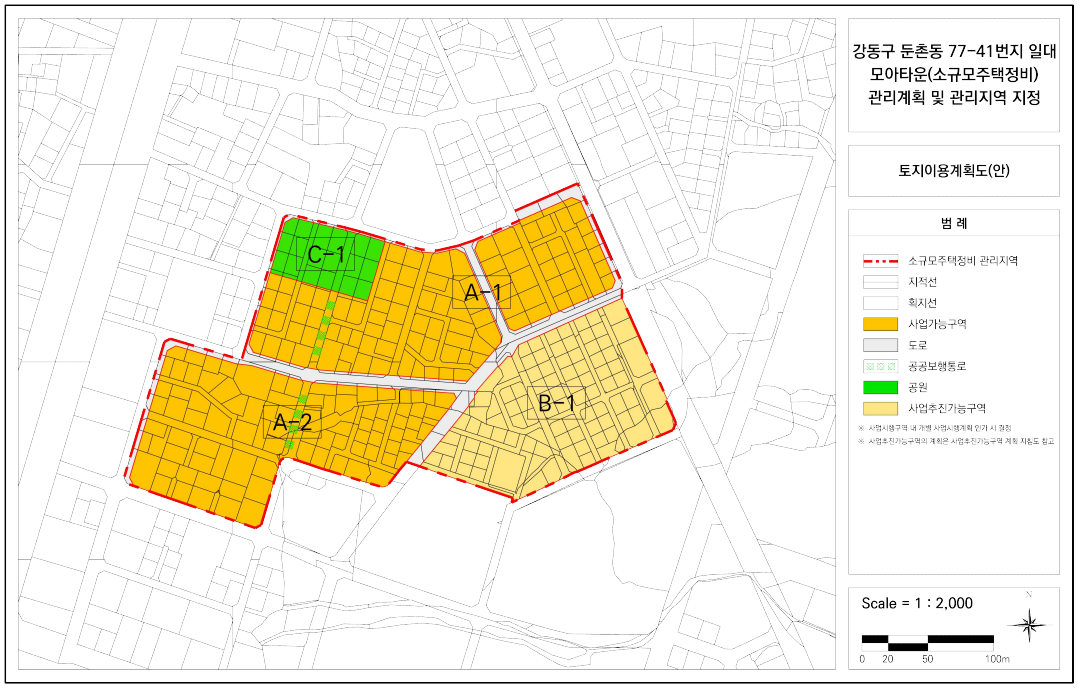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관리계획 및 관리지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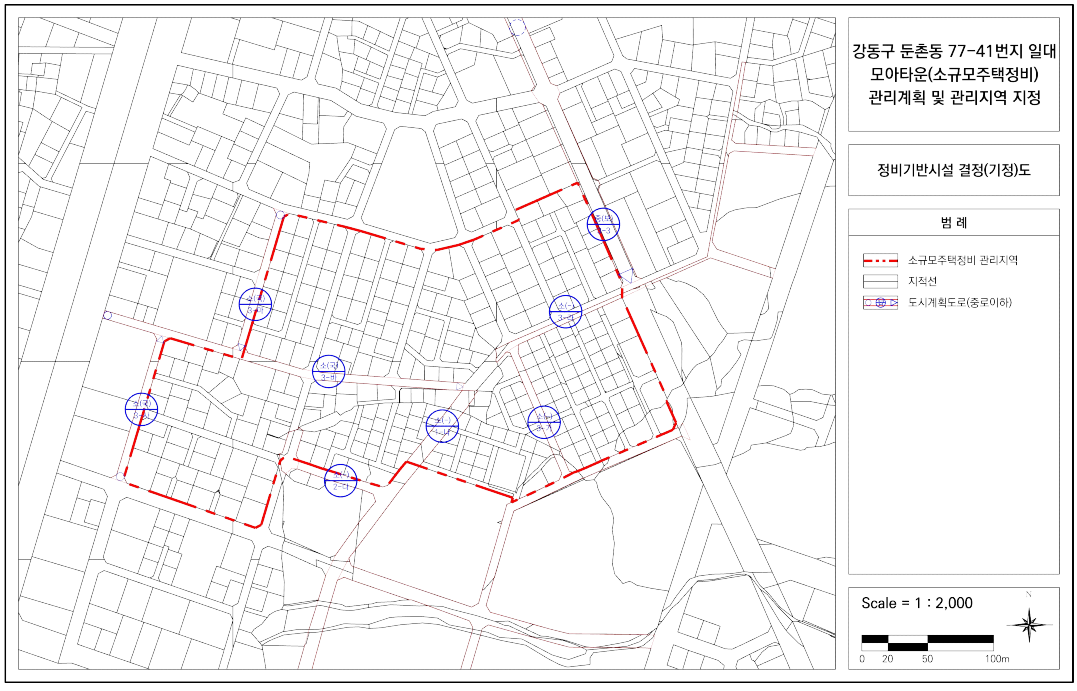
■ 관리지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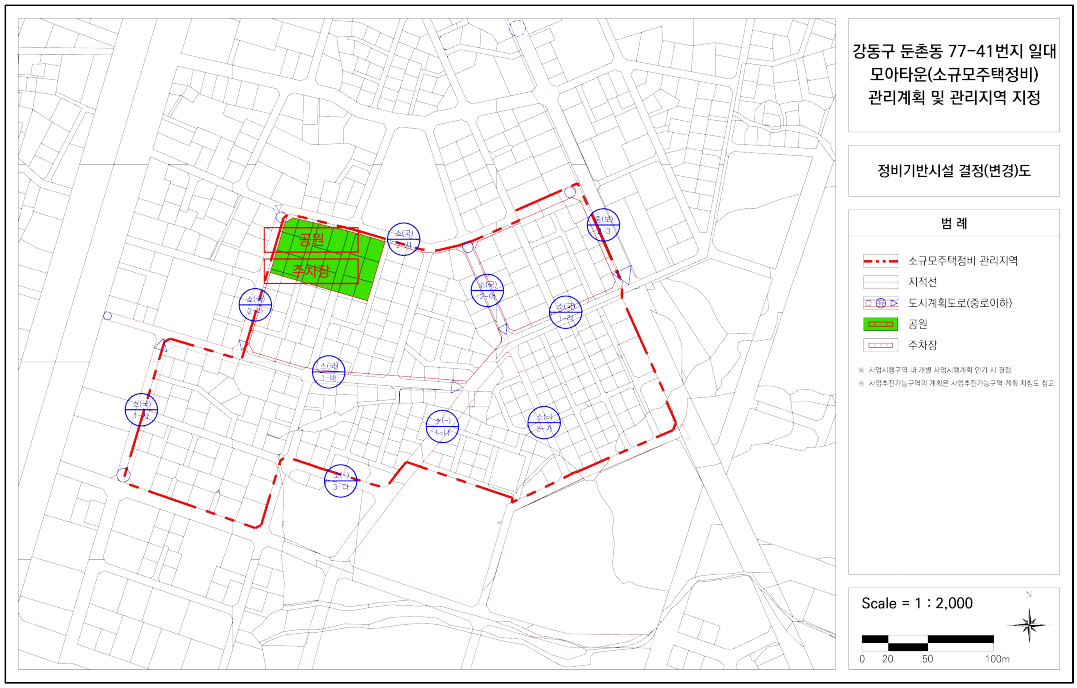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안)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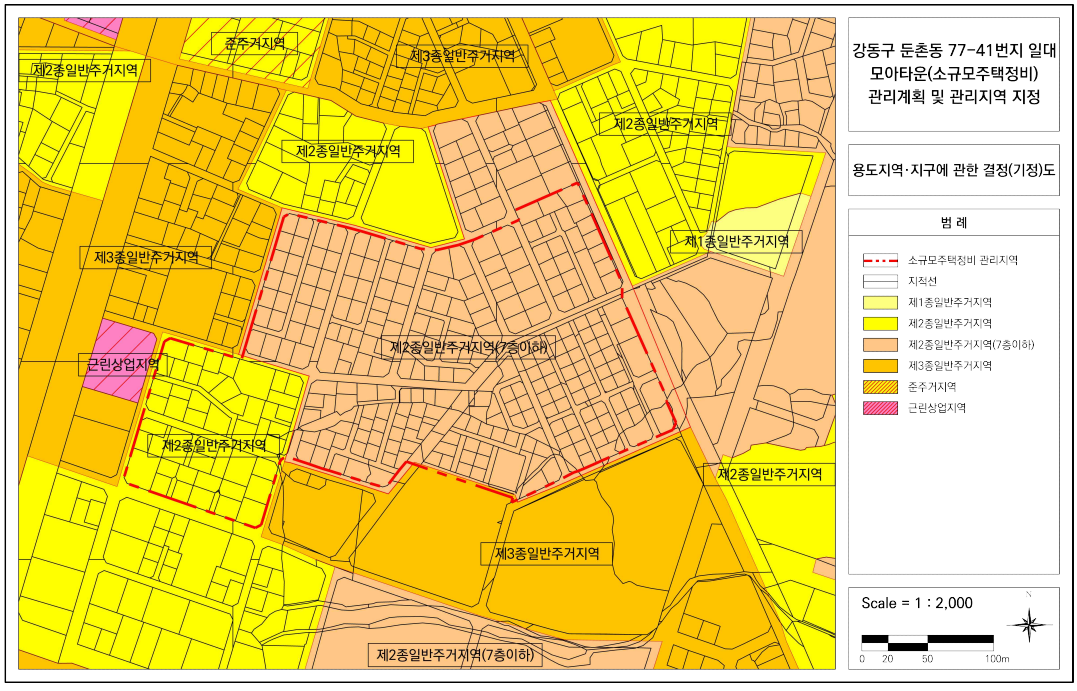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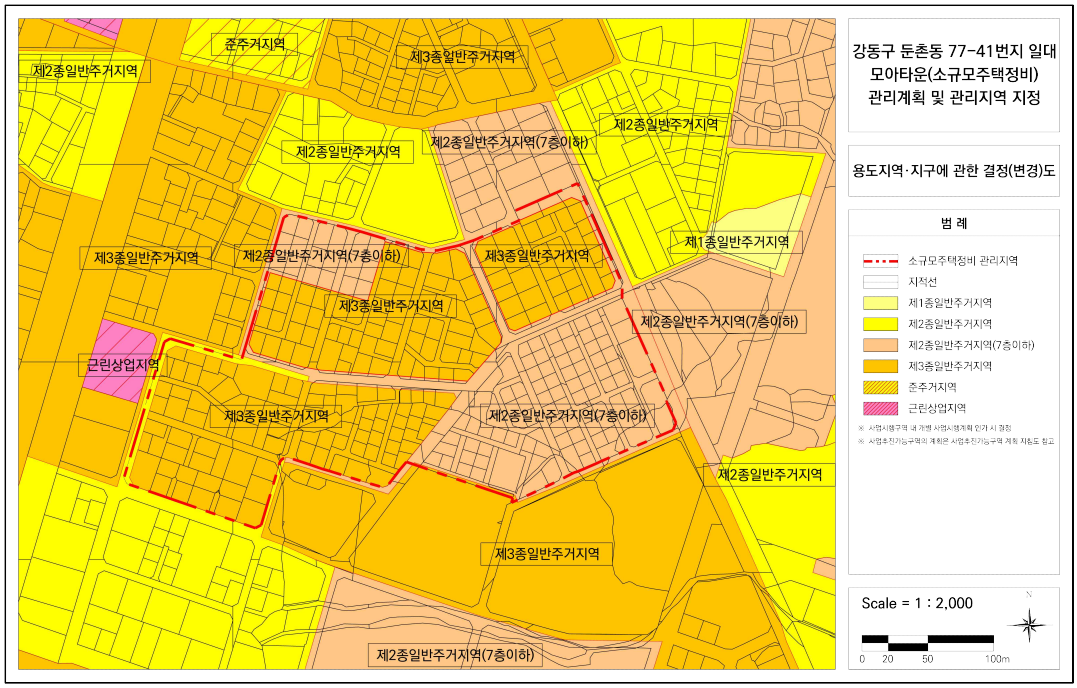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 결정(변경)도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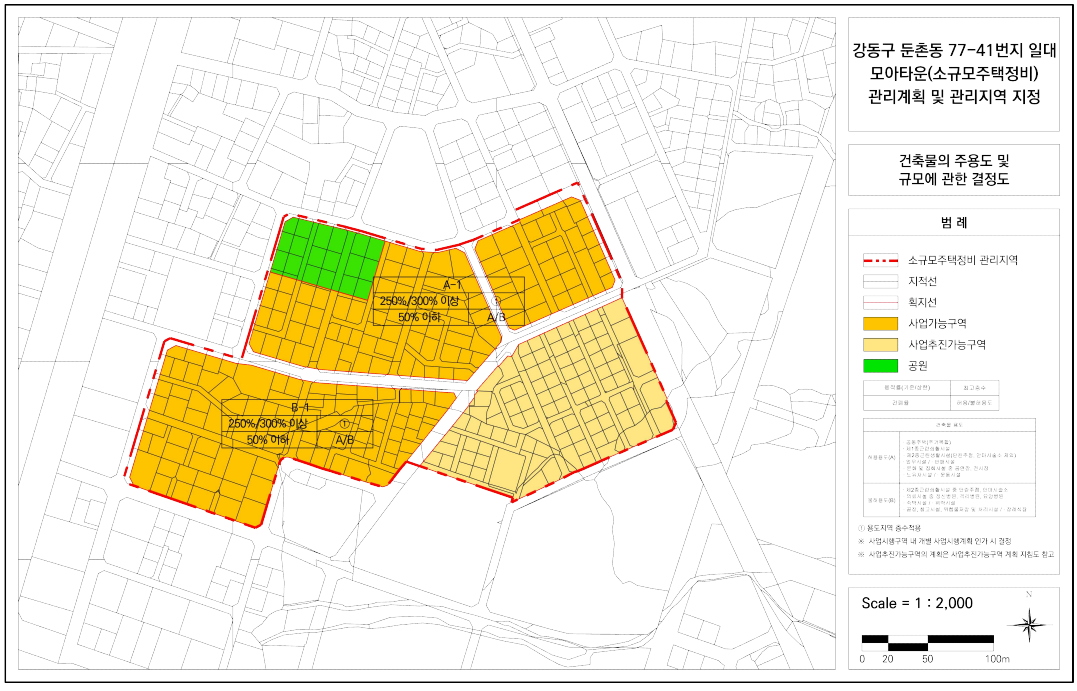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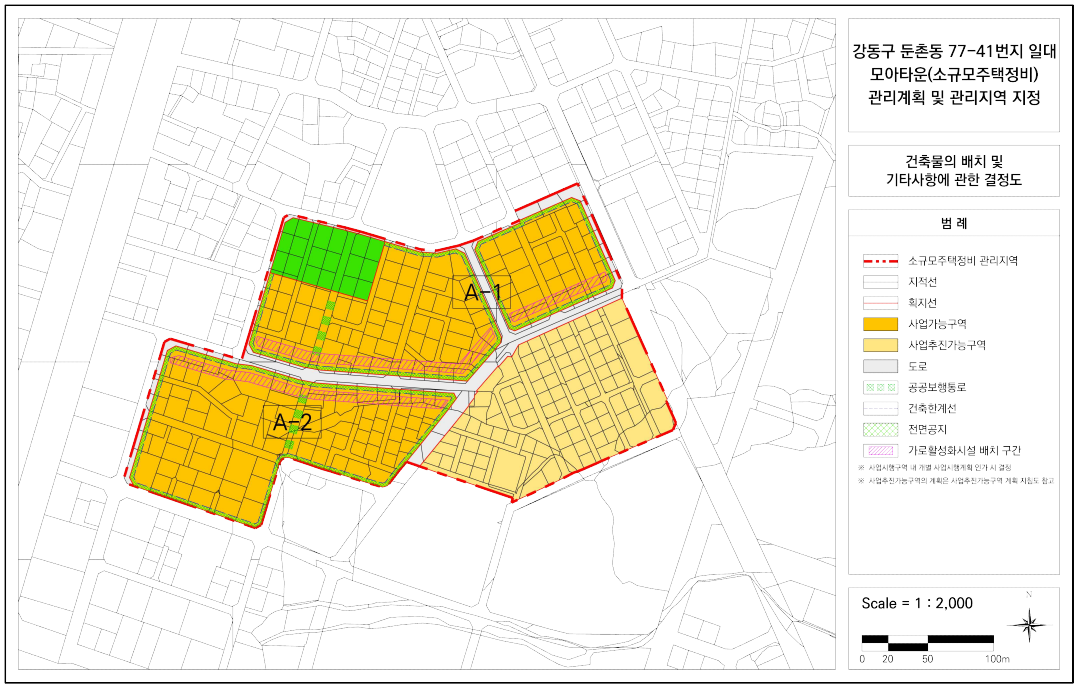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도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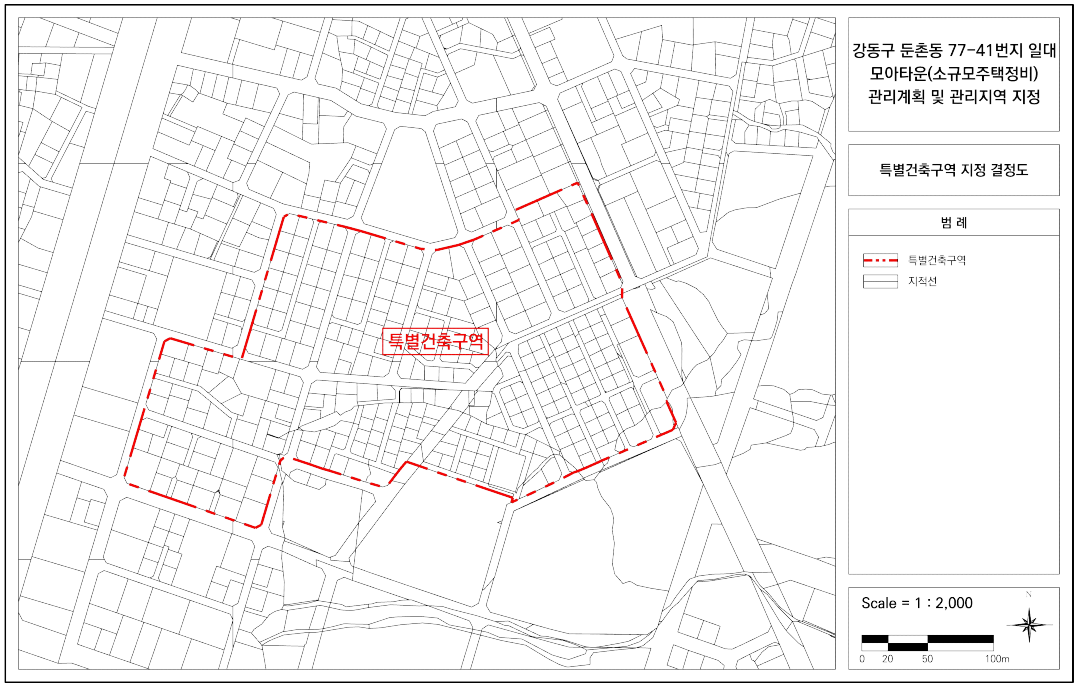
■ 건축물의 주용도 및 규모에 관한 결정도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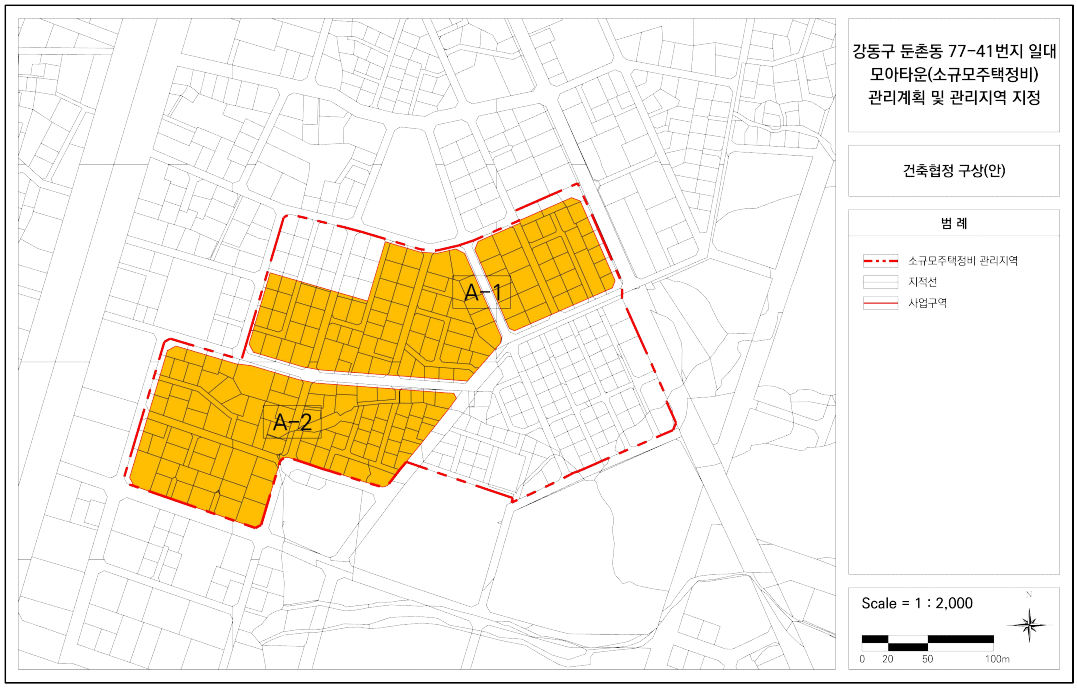
■ 건축물의 배치 및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도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특별건축구역 지정 결정도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건축협정 구상(안)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606호

신월동 102-33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102-33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가. 관리지역의 명칭 : 신월동 102-33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나.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구분	위치	관리계획 요건	노후·불량건축물	비고
기준	양천구 신월동 102-33일대	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 이하일 것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것	-
현황		74,094.0㎡	전체 : 310동 노후불량 : 266동(85.8%)	

   다. 정비방향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계획과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계획을 통해 저층 노후주거지의 계획적 공동개발 유도

2.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가. 관리지역의 지정
      ■ 관리지역의 지정 조서

구분	관리지역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	신월동 102-33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양천구 신월동 102-33일대	-	증) 74,094.0	74,094.0	-

나. 토지이용계획(안)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74,094.0	100.0	-
시행 구역	공동 주택 용지	소 계		59,878.1	80.8	-
		A1	사업가능 1구역(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1,281.0	15.2	-
		A2	사업가능 2구역(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2,831.7	17.3	-
		A3	사업가능 3구역(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9,226.3	26.0	-
		A4	사업가능 4구역(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6,539.1	22.3	-
	정비 기반 시설 등	소 계		8,725.7	11.8	-
		-	도로	4,125.7	5.6	-
		B1	공원	3,000.0	4.0	주차장 중복결정
		B2	사회복지시설	1,600.0	2.2	-
시행 구역 외		소 계		5,490.2	7.4	-
		도로		4,747.7	6.4	-
		종교시설용지		742.5	1.0	신월1동 성당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다. 정비기반시설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안)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	-	-	18	-	-	-	-	-	곰달래로5길 (폭원변경없음)
변경	중로	2	1	18	867 (122)	신월동 97-1 (신월동 99-1)	신월동 125 (신월동 109-19)	일반도로	-	
기정	-	-	-	8	-	-	-	-	-	남부순환로57길 (폭원8m→10m)
변경	소로	1	1	10	171	신월동 138-3	신월동 144-10	일반도로	-	
기정	-	-	-	6	-	-	-	-	-	월정로31길 (폭원6m→10m)
변경	소로	1	2	10	159	신월동 99-24	신월동 107-31	일반도로	-	

구분	규 모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	-	-	6	-	-	-	-	-	월정로33길 (폭원6m→10m)
변경	소로	1	3	10	215	신월동 98-36	신월동 103-12	일반도로	-	
기정	-	-	-	6	-	-	-	-	-	곰달래로5길 (폭원6m→8m)
변경	소로	2	1	8	118	신월동 137-32	신월동 137-21	일반도로	-	
기정	-	-	-	6	-	-	-	-	-	곰달래로11길 (폭원6m→8m)
변경	소로	2	2	8	224	신월동 107-16	신월동 103-17	일반도로	-	

※ ( )는 모아타운 관리지역 내 연장 및 시종점임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 사유
-	중로2-1	• 노선번호 부여	- 대법원 판례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인정되는 도로에 노선번호 부여
-	소로1-1	• 노선번호 부여 • 폭원변경(B=8m→10m)	- 대법원 판례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인정되는 도로에 노선번호 부여 -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른 도로 폭원 확폭
-	소로1-2	• 노선번호 부여 • 폭원변경(B=6m→10m)	
-	소로1-3	• 노선번호 부여 • 폭원변경(B=6m→10m)	
-	소로2-1	• 노선번호 부여 • 폭원변경(B=6m→8m)	
-	소로2-2	• 노선번호 부여 • 폭원변경(B=6m→8m)	

■ 주차장 계획(안)

구분	도면 표시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신설	①	공영주차장	신월동 109-19일대	3,000	-	중복결정 · 지상 : 공원 · 지하 : 주차장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 중복결정(안)

구분	시 설 명	위 치	공간적 범위				비고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영주차장	신월동 109-19일대	면적	-	증) 3,000㎡	3,000㎡	총 연면적 4,200㎡
			높이	-	지하1층~지하2층	지하1층~지하2층	

– 중복결정(안)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①	공영 주차장	• 중복결정 (지하1층~지하2층)	- 공원 지하에 인근지역 주민과 재래시장 이용객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효율적 토지이용 도모 (2개층 / 연면적 4,200㎡)

■ 공원 계획(안)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어린이공원	신월동 100-1	1,003.1	감) 1,003.1	-	서고1995-141 ('95.05.20)	신대 어린이공원
신설	①	어린이공원	신월동 109-19일대	-	증) 3,000	3,000	-	중복결정 · 지상 : 공원 · 지하 : 주차장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 공원 계획(안)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어린이 공원	• 기존 공원 폐지하고 어린이공원 신설	- 어린이공원 면적기준에 미달하는 기존 어린이공원을 폐지하고 남측으로 이전 및 확장된 규모로 어린이공원 신설하여 인접한 전통시장 및 인근 주민들에게 휴식공간 제공 - 지하에 주차장 시설을 중복결정하여 토지이용효율 증대 및 주차편익 제공

■ 사회복지시설 계획(안)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사회복지시설	신월동 99-24일대	-	증) 1,600	1,600	-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 건축물의 범위

시설명	위치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비고
사회 복지시설	신월동 99-24일대	60%	200%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제한표면 기준 이하	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사회복지시설 계획(안)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사회 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신설	-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에따라 부지 및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이를 지역에 필요한 사회복지시설로 조성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안)

구분	설치기준	비 고
사업가능 1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세대당 2.5㎡ X 1.25 이상 설치	구역내
사업가능 2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구역내
사업가능 3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구역내
사업가능 4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구역내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라. 교통처리 계획(안)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차량진출입불허구간	• 곰달래로5길, 곰달래로13길, 월정로29길	- 곰달래로5길 일부 및 곰달래로13길, 월정로29길변에서 차량진출입 불허	-
차량진출입구간	• 불허구간 제외 전구역	- 진출입불허구간 외 차량 진출입 허용	-
공공보행통로	• 곰달래로9길	- 사업가능 3,4구역 내 도로 폐도 부분을 공공보행통로로 지정하여 보행 편의성 확보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안)

구분	면적(㎡)			사업계획					비고
	계	공동주택 용지	정비기반 시설	토지등 소유자	기존 호수	시행자	추진 단계	최초 결정일	
합 계	68,603.8	59,878.1	8,725.7	-	-	-	-	-	-
사업가능 1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1,478.6	11,281.0	197.6	-	223	-	-	-	-
사업가능 2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3,237.5	12,831.7	405.8	-	196	-	-	-	-
사업가능 3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23,770.3	19,226.3	4,544.0	-	278	-	-	-	-
사업가능 4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20,117.4	16,539.1	3,578.3	-	317	-	-	-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바. 기타(건축협정)에 관한 계획(안)

구분	면적(㎡)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건축법」 제77조의 13)		비고
		통합적용	완화적용	
사업가능 1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1,478.6	대지의 조경(42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44조), 지하층의 설치(53조), 건폐율(55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주차장법 제19조) 등	대지안의 조경(42조), 건폐율(55조), 용적률(58조), 건축물의 높이제한(6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61조)	-
사업가능 2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3,237.5			
사업가능 3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23,770.3			
사업가능 4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20,117.4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사. 건폐율 · 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안)

구분	내용					적용구역
시행구역	건폐율	60% 이하				B1, B2
		50% 이하				A1, A2, A3, A4
	용적률1)	기준(상향)	250% 이하2)	법적상한	300% 이하	A1, A2, A3, A4
		기준 200% 이하				B2
		기준 150% 이하				B1
	높이3)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제한표면 기준 이하				전 구역
시행구역 외	건폐율	6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용적률	20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높이3)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제한표면 기준 이하				전 구역

1) 법 제48조 및 제43조의4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시에는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용적률을 정할 수 있음
2) '기준용적률 상향' 은 법 제43조의4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된 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3) 2023.12월 현재 대상지 일대 장애물제한표면 기준 적용 시 해발 57.86m 이하 적용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 모아주택사업 시행시 건축물의 규모(높이, 밀도 등)는 향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 가능함

아. 건축물의 배치 · 형태 · 용도 ·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안)

■ 건축물의 용도

구 분		계획 내용	비고
사업가능 1구역 사업가능 2구역 사업가능 3구역 사업가능 4구역	유 형	• 공동주택 용지	-
	허 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제2조 제13호, 제14호에 의한 부대 · 복리시설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44조 공동이용시설	-
	불 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 건축물의 배치 · 형태 · 건축선 등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관리지역 전체	• 건축한계선 3m	- 가로 · 보행환경 개선 및 보행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계획
저층부 가로활성화 배치구간	곰달래로5길, 월정로29길	• 곰달래로5길, 월정로29길변 연도형 가로활성화시설 배치	- 기존 근린생활가로 및 재래시장 기능 유지 위한 저층부 가로활성화 유도 - 커뮤니티가로 활성화를 위한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배치 유도
공공보행통로	A3, A4	• 공공보행통로 6m 지정	- 도로 폐도 부분을 공공보행통로로 지정하여 보행 편의성 확보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자.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계획(안)

구분		위치	전체세대	임대주택	임대주택 인수예정자	비고
도면 표시	사업구역					
합 계			1,829	436	-	-
A1	사업가능 1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신월동 144-20번지 일대	344	81	-	-
A2	사업가능 2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신월동 137-14번지 일대	390	94	-	-
A3	사업가능 3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신월동 102-33번지 일대	592	142	-	-

구분		위치	전체세대	임대주택	임대주택 인수예정자	비고
도면 표시	사업구역					
A4	사업가능 4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신월동 108-1번지 일대	503	118	-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 상기 세대수 및 임대주택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준공인가 등 사업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차.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안)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안)	변경후		
합 계	74,094.0	-	74,094.0	100.0	-
제1종일반주거지역	1,003.1	증) 1,996.9	3,000.0	4.1	-
제2종일반주거지역	6,020.6	감) 6,020.6	-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67,070.3	감) 55,854.4	11,215.9	15.1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59,878.1	59,878.1	80.8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카.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계획(안)

구분		위치	특례사항	특례 적용 사유	비고
도면 표시	사업구역				
A1	사업가능 1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신월동 144-20번지 일대	건축법 제69조	- 인접한 사업구역간 통합적, 효율적 건축 계획 도모 - 경관 특화를 위한 창의적인 배치 및 건축물 계획 유도	-
A2	사업가능 2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신월동 137-14번지 일대			
A3	사업가능 3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신월동 102-33번지 일대			
A4	사업가능 4구역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신월동 108-1번지 일대			
B1	-	신월동 109-19번지 일대	-	-	-
B2	-	신월동 99-24번지 일대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3. 관련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4. 관계도서

○ 서울특별시 전략주택공급과(☎02-2133-8230) 및 양천구 재건축사업과(☎02-2620-3453)에 비치·열람하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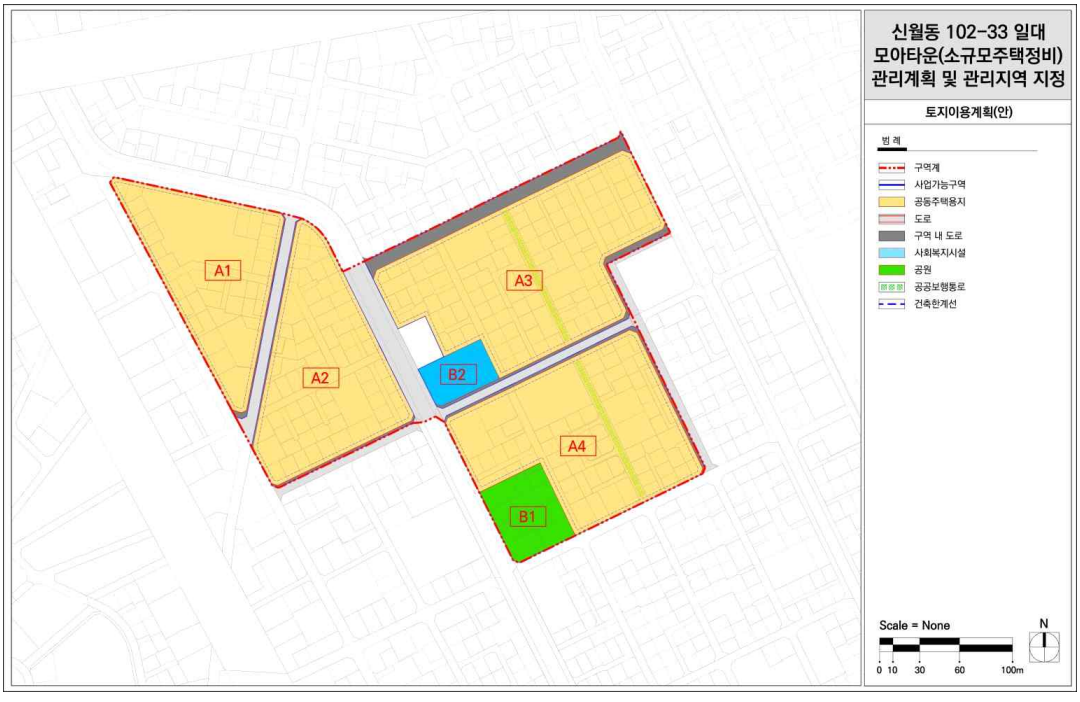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지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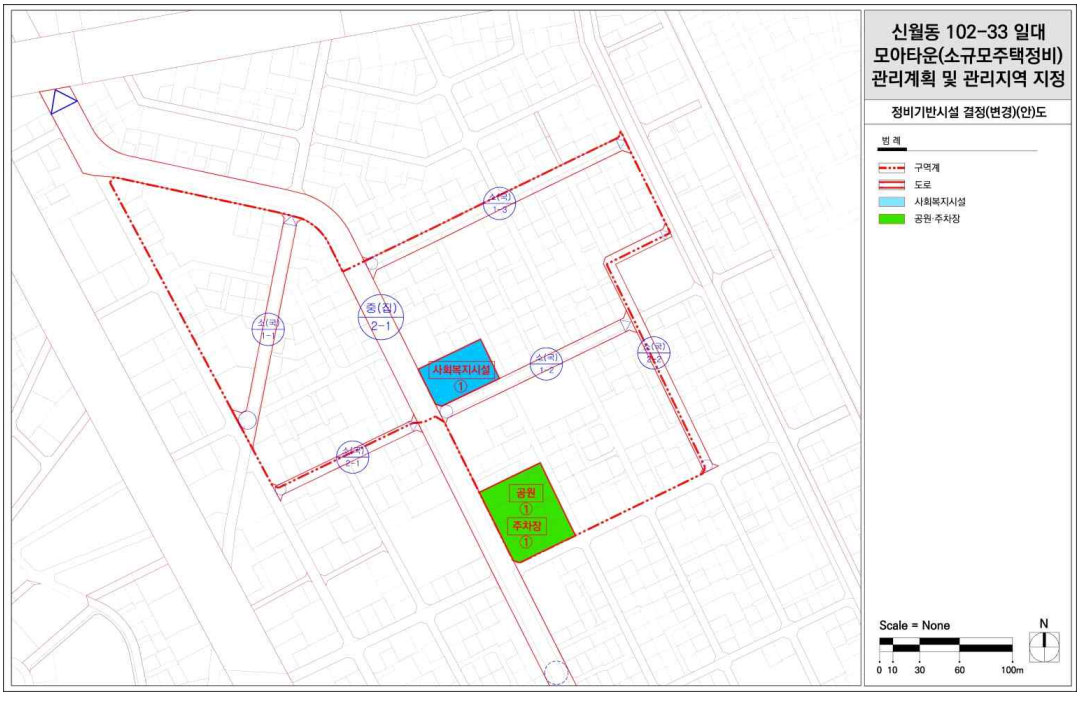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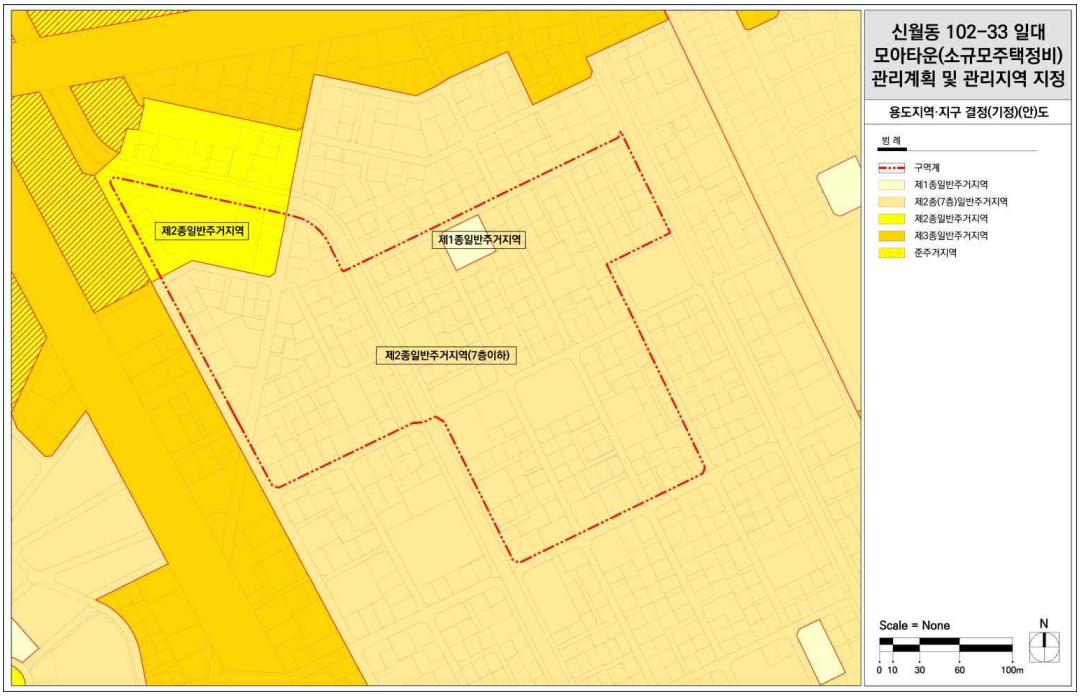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 결정(기정)(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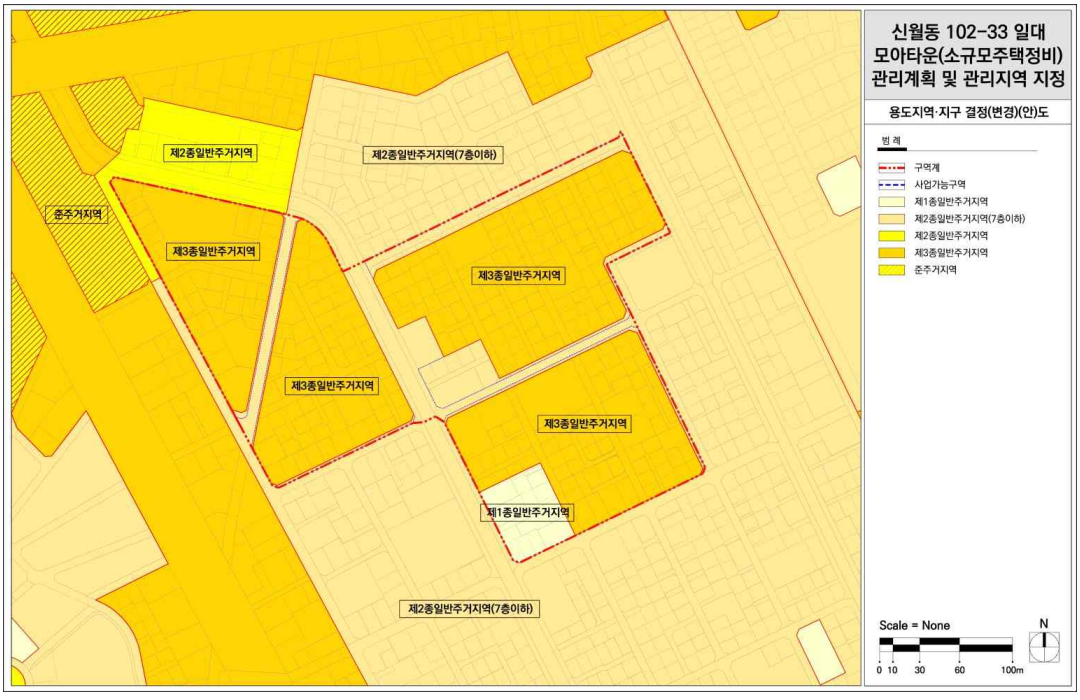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 결정(변경)(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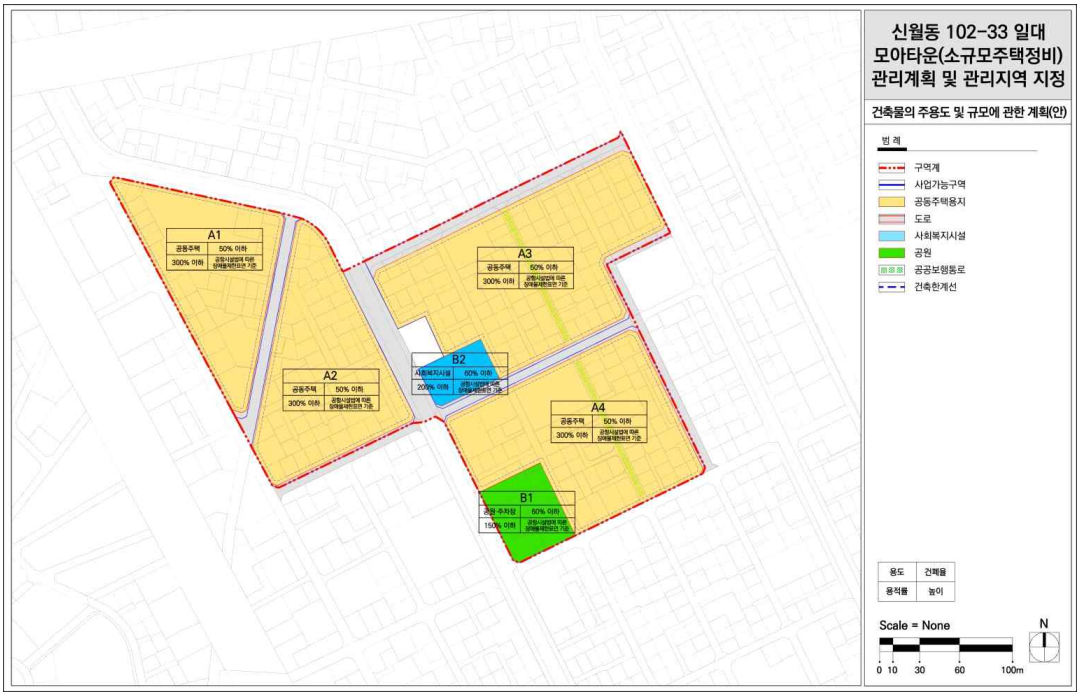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기정)(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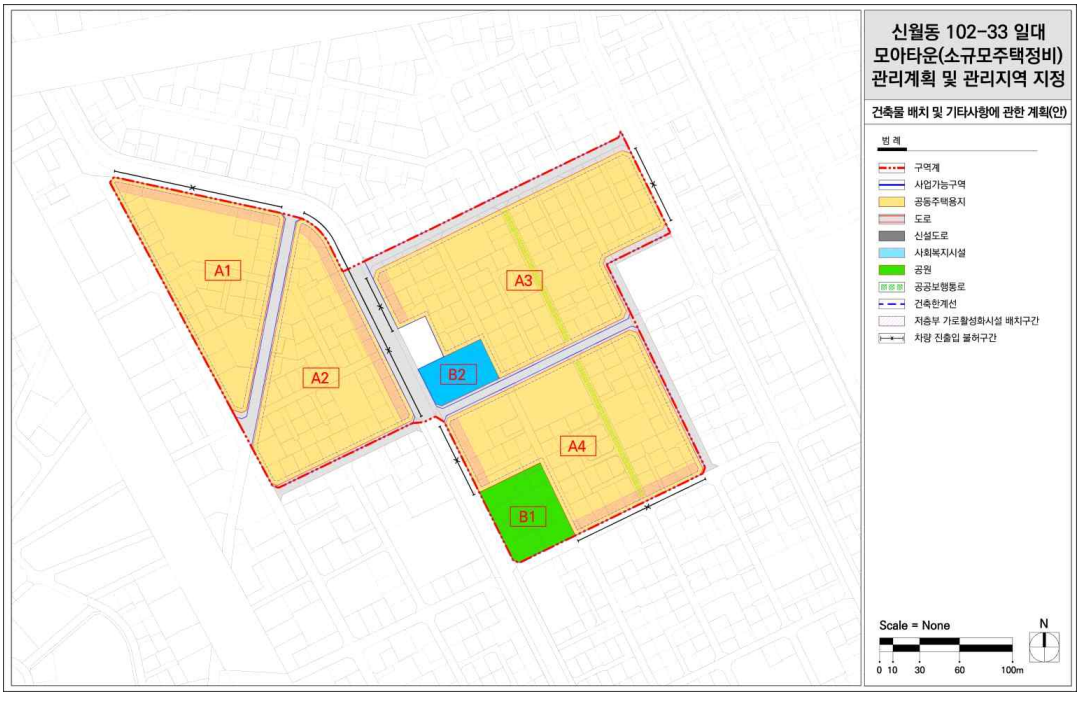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변경)(안)도



○ 건축물의 주용도 및 규모에 관한 계획(안)



○ 건축물 배치 및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안)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607호

도시관리계획(개봉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136호(1997.5.6.)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30호(2001.2.7.)로 개봉역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31호(2001.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56호(2012.09.27.), 구로구고시 제2023-217호(2023.12.14.)로 결정(변경)된 개봉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개봉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2023년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개봉역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구로구 개봉동 170-33번지 일원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개봉역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개봉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개봉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로구 개봉동 170번지 일대	134,212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136호 (1997.05.06.)	-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134,212.0	-	134,212.0	100.0	-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주거지역	소계	134,212.0	-	131.510.3	98.0	
	제3종일반주거지역	118,977.7	감) 2,701.7	116,276.0	86.6	
	준주거지역	15,234.3	-	15,234.3	11.3	
상업지역	소계	-	증) 2,701.7	2,701.7	2.0	
	근린상업지역	-	증) 2,701.7	2,701.7	2.0	

■ 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변경	개봉동 170-33 번지 일대	제3종 일반 주거지역	근린 상업지역	2,701.7	•역세권 입체 · 복합개발을 유도함과 동시에 공공시설 확충을 위해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용도지역을 변경함

※ 상기면적은 CAD 면적으로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 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 변경없음
 다. 공공공지 : 변경없음
 라. 환경기초시설 : 변경없음

4. 공공기여계획 결정조서 : 신설
 가. 개봉동 170-33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공공기여 계획
 ■ 공공기여 계획

구 분	기준(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공공 기여율	공공기여면적					비고 (구성비)
				구 분	구성비	총면적	부지제공	환산부지	
제3종 일반 주거지역 → 근린 상업지역	250%	600%	부지면적의 29.17% 이상 (788.09㎡)	합 계	29.20%	789.00㎡	378.21㎡	410.79㎡	100.0%
				공공주택	8.62%	232.98㎡	232.98㎡	-	
				지역필요시설	20.58%	556.02㎡	145.23㎡	410.79㎡	

구 분	기준(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공공 기여율	공공기여면적					비고 (구성비)
				구 분	구성비	총면적	부지제공	환산부지	
				기준 788.09㎡(29.17%) ≤ 계획 789.00㎡(29.20%)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4-1-1에 따라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를 부지면적으로 환산함
주2) 공공주택의 경우 토지는 기부채납, 건축물은 표준건축비로 매입하며, 그 외 공공기여시설(기반시설 포함)은 토지, 건물 모두 기부채납 하되 필요한 경우 건축물을 매입할 수 있음(기부채납만 공공기여율로 산정)
주3) 공공기여시설은 서울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을 따르며,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건축허가 시점에 관할 관리청과 사업자가 각각 선정한 2개의 감정평가 기관이 평가한 단위면적 당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값으로 산정하여 확정
주4) 공공기여시설은 세부건축계획 성능 수준, 설비 등 조성계획을 관할 관리청과 협의 후 건축 인·허가 시 확정하여 준공 시 기부채납함
주5)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한 도로(중로3-4) 가각부의 기부채납 부분은 공공기여 산정에서 제외

■ 공공기여시설 세부내역

구 분	총 공공 기여면적	부지 제공면적	환산 부지면적	공공기여율 (비 율)	지상 연면적	지하 연면적	연면적 계	비고 (관리청)
공공주택	232.98㎡	232.98㎡	-	8.62% (29.50%)	1,468.89㎡	949.93㎡	2,418.82㎡	서울특별시
지역필요시설	556.02㎡	145.23㎡	410.79㎡	20.58% (70.50%)	679.76㎡	828.09㎡	1,507.85㎡	구로구
계	789.00㎡	378.21㎡	410.79㎡	29.20% (100.0%)	2,148.65㎡	1,778.02㎡	3,926.67㎡	-

3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가구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가구 번호	기정		변경		비고
		위치	면적(㎡)	위치	면적(㎡)	
가구	③	개봉동 170-38번지 일대	13,317.0	개봉동 170-38번지 일대	13,316.7주1)	도시계획도로를 기준으로 가구 구분

주1) 상기면적은 CAD 면적 반영으로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③	•가구③ 면적 감소 13,317.0㎡ → 13,316.7㎡	•170-33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라 도로(중로3-4) 가각부 기부채납 후 획지 면적 반영

■ 최대개발규모 : 변경없음

■ 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구번호	기정						변경					
	도면표시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도면표시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고
③	1	170-38	289	594	공동개발 권장	-	1	170-38	289	594	변경없음	-
		170-39	305					170-39	305			
	2	170-40	305	622	공동개발 권장	-	2	170-40	305	622	변경없음	-
		170-41	317					170-41	317			
	3	170-18	2,854	2,877	공동개발 지정	170-58→ 170-33에서 분할	3	170-18	2,854	2,877	변경없음	170-58→ 170-33에서 분할
		170-58	23					170-58	23			
	4	170-30	4,793	4,793	단독개발	삼환 아파트	4	170-30	4,793	4,793	변경없음	삼환 아파트
	5	170-33	2,598	3,717	170-33,-56,-57 공동개발지정 170-13,-17 공동개발지정 170-33,-56,57/ 170-13,-17 공동개발권장	170-56,-57 → 170-18에서 분할,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178-19 포함)	5-1	170-33	2,597.7	2,701.7주1)	공동개발지정	특별계획 구역 가능지 ① 실효되어 폐지
		170-56	81					170-56	81			
		170-57	23					170-57	23			
		178-13	1,013				5-2	178-13	1,013	1,015	공동개발권장	
		179-17	2					179-17	2			
	6	170-23	274	714	공동개발 지정		6	170-23	274	714	변경 없음	
		170-25	440					170-25	440			

주1) 상기면적은 CAD 면적 반영으로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③-4,5	•공동개발권장 및 공동개발지정 변경 - 개봉동 170-33,-56,-57(공동개발지정) - 개봉동 170-13,-17(공동개발권장) •가구번호 변경 - 개봉동 170-33,-56,-57은 가구③ 5 → 가구③ 5-1 - 개봉동 170-13,-17은	•특별계획가능지 ① 실효되어 폐지됨 •역세권 활성화사업(개봉동 170-33,-56, -57) 추진으로 인한 공동개발권장 및 공동개발지정 변경 •개봉동 170-33,-56,-57는 가구③의 5-1로 170-13,-17은 가구③의 5-2로 변경함 •170-33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라 도로(중로3-4) 가각부 기부채납으로 획지 면적 감소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가구③ 5 → 가구③ 5-2 •획지 5-1중 개봉동 170-33번지 면적 감소 - 170-33 : 2,598㎡ → 2,597.7㎡	

2. 건축물의 용도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결정(변경)조서

■ 불허용도 : 변경

구 분			불허용도	비고
기정	변경			
-	F	근린상업 (역세권 활성화 사업)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거복합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조업소, 수리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철도시설은 제외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및 다중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른 불허용도	개봉동 170-33 일대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한함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불허용도 변경 - 간선부(제3종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역세권활성화사업)	•개봉동 170-33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필지에 역세권 활성화에 저해되는 요소를 고려하여 불허용도 계획

■ 권장용도 : 변경

구 분				권장용도	비고
기정	변경				
-	4	간선부(근린상업지역)	전층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업무시설(단, 오피스텔 및 1층부 은행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개봉동 170-33 일대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한함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권장용도 변경 - 간선부(제3종일반주거지역) → 간선부(근린상업지역)	•개봉동 170-33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권장용도 변경

■ 지정용도 : 변경없음

3. 건축물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 건폐율 · 용적률 관한 결정(변경)조서

■ 건폐율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 분		용도지역	건폐율	비고
기정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준주거지역	60% 이하	
변경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준주거지역	60% 이하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60% 이하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건폐율 변경 - (기정)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 이하 - (변경) 근린상업지역 : 60% 이하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내 근린상업지역 기준을 적용해 건폐율 체계 변경

■ 용적률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 분		용도지역	계획내용	비고
기정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준 : 210% 이하 허용 : 250% 이하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2010.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준주거지역	기준 : 300% 이하 허용 : 360% 이하 상한 : 400% 이하	
			기본 : 400% 이하 상한 : 500% 이하	•개봉동 179-11, 179-16, 179-49, 179-50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변경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준 : 210% 이하 허용 : 250% 이하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2010.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준주거지역	기준 : 300% 이하 허용 : 360% 이하 상한 : 400% 이하	
			기본 : 400% 이하 상한 : 500% 이하	•개봉동 179-11, 179-16, 179-49, 179-50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기준(허용)주1) : 250% 이하 상한주1) : 600% 이하	•개봉동 170-33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한함

※ 상한용적률 산정식 = 허용용적률 X (1+1.3×가중치×α) 이내 (서울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적용)
주1) 170-33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상한용적률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기준」 적용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용적률 변경 - (기정) 제3종일반주거지역 : 기준/허용 - 210%/250% - (변경) 근린상업지역 : 기준(허용)/상한 - 250%/600%	•개봉동 170-33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기준」을 준용하여 근린상업지역 기준 적용

나. 건축물의 높이 결정(변경)조서

■ 최고높이계획 : 변경

구 분	적용대상	최고높이	비고
기정	특별계획구역 및 기존 공동주택 (영화아파트, 삼호아파트, 림괄아파트)	70m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산정식' 적용 배제 •단, 공동개발 권장된 필지내에서 단독개발 시행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산정식' 적용
	기존 공동주택(삼환아파트)	65m	
	간선가로변(개봉로, 경인로) 기존 공동주택(청실아파트)	60m	
	준주거지역 및 구역 내부 이면도로변	50m	
	구역 내부 이면도로변	40m	

구 분	적용대상	최고높이	비고
	준주거지역(역세권 청년주택) (개봉동 179-11, 179-16, 179-49, 179-50)	63m	•개봉동 179-11, 179-16, 179-49, 179-50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하며, 연접부 경관계획 관련 높이제한사항 완화
	특별계획구역 Ⓑ (개봉동 202-5, 202-6, 199-4, 183-5)	90m	•역세권 공공주택 건립에 따른 가로구역별 최고높이계획 적용
변경	특별계획구역 및 기존 공동주택 (영화아파트, 삼호아파트, 림괄아파트)	70m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산정식' 적용 배제 •단, 공동개발 권장된 필지내에서 단독개발 시행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산정식' 적용
	기존 공동주택(삼환아파트)	65m	
	간선가로변(개봉로, 경인로) 기존 공동주택(청실아파트)	60m	
	준주거지역 및 구역 내부 이면도로변	50m	
	구역 내부 이면도로변	40m	
	준주거지역(역세권 청년주택) (개봉동 179-11, 179-16, 179-49, 179-50)	63m	•개봉동 179-11, 179-16, 179-49, 179-50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하며, 연접부 경관계획 관련 높이제한사항 완화
	특별계획구역 Ⓑ (개봉동 202-5, 202-6, 199-4, 183-5)	90m	•역세권 공공주택 건립에 따른 가로구역별 최고높이계획 적용
	근린상업지역(역세권 활성화사업) (개봉동 170-33, 170-56, 170-57)	120m	•개봉동 170-33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한함

※ 「건축법」 제60조제3항에 의한 도로사선(1.5D)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단 공동개발 권장된 필지내에서 단독개발 시행시 사선제한 적용)
※ 특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구역가능지는 특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구역가능지 계획지침에 따름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계획 적용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최고높이 변경 - 기정 : 간선가로변(개봉로, 경인로) 60m 이하 - 변경 : 근린상업지역(역세권 활성화사업) 120m 이하	•개봉동 170-33 일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적용 및 역세권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한 높이기준 완화

4. 건축물의 배치·형태 및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배치 결정(변경)조서

■ 건축물의 배치계획 : 변경

구분	계획내용		적용대상	적용기준	비고
기정	건축한계선	•이면부 보행자 편의	•이면도로변	도로경계선에서 1~3m	도로선형변경에 따른 건축선 변경
		•보행자의 개방감과 보행편의를 위한 전면공지 확보	•간선가로변 •특별계획구역	도로경계선에서 3.0m	-
		•도로(차도 및 보행공간) 일정 폭원 확보를 위한 전면공지 확보	•특별계획구역 ⓒ동측 도로	도로경계선에서 2.7~3.7m	-
	건축지정선	•개봉역 남측 도로 정연한 상점가 조성	•개봉역 남측 15m 도로변	도로경계선에서 1.0m	-
	벽면지정선	•광장 활성화	•개봉역광장 인접필지	대지경계선에서 1m, 3m	-
변경	건축한계선	•이면부 보행자 편의	•이면도로변	도로경계선에서 1~3m	도로선형변경에 따른 건축선 변경
		•보행자의 개방감과 보행편의를 위한 전면공지 확보	•간선가로변 •특별계획구역	도로경계선에서 3.0m	-
			•경인로변 •경인로40길	도로경계선에서 4.0m	개봉동 170-33 일대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한함
		•도로(차도 및 보행공간) 일정 폭원 확보를 위한 전면공지 확보	•특별계획구역 ⓒ동측 도로	도로경계선에서 2.7~3.7m	-
	1층 벽면한계선	•보행편의를 위한 보행공간 확보	•경인로40길	도로경계선에서 5.0m	개봉동 170-33 일대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한함
	건축지정선	•개봉역 남측 도로 정연한 상점가 조성	•개봉역 남측 15m 도로변	도로경계선에서 1.0m	-
	벽면지정선	•광장 활성화	•개봉역광장 인접필지	대지경계선에서 1m, 3m	-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건축한계선 변경 - 기정 : 건축한계선 경인로 3m, 건축한계선 경인로40길 3m - 변경 : 건축한계선 경인로 4m, 건축한계선 경인로40길 4m •1층 벽면한계선 신설 - 1층 벽면한계선 경인로40길 5m	•개봉동 170-33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으로 가로변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건축한계선 계획 변경 및 1층 벽면한계선 신설

나. 건축물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건축물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분		적용목적	적용기준	적용구역
기정	건축물 형태	가로변 경관의 랜드마크	•간선가로의 개방감 확보를 위한 건축물 권장 •지상1층 외벽 투시율 50%이상 확보 •개구부 없는 벽면의 도로면 노출 제한	경인로변, 개봉로변, 남부순환로변
	건축물 외관	재료 / 색채	•가로에 면한 전면부 전체에 반사성 재료 사용금지 •석재, 벽돌, 목재 등 자연친화적 재료 사용 권장 •외벽면의 외장, 재료, 색채에 있어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유지	전구역
		가로환경의 연속성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도로와 단차없이 조성 •부득이하게 단차설치를 해야할 경우 15㎝이하 및 경사로 설치 •경사로는 보도와 어울리게 설치	전구역
		양호한 보행환경 조성	•1층 가로 입면 개구부의 입면적 합 50% 이상 조성 •투시된 셔터설치	전구역
		옥외광고물	• “서울특별시구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 기준” 을 준수	전구역
		야간 조명	•간선변 10층이상 건축물은 건물전면 및 옥상부에 야간경관조명의 설치 권장	전구역
변경	건축물 형태	가로변 경관의 랜드마크	•간선가로의 개방감 확보를 위한 건축물 권장 •지상1층 외벽 투시율 50%이상 확보 •개구부 없는 벽면의 도로면 노출 제한	경인로변, 개봉로변, 남부순환로변
			•주거부분은 탑상형의 형태를 권장 •옥탑부의 형태를 조형적으로 처리 •건축물 입면의 조화로운 계획 •1층부의 높이는 4.5m 이상으로 계획	개봉동 170-33 일대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한함
	건축물 외관	재료 / 색채	•가로에 면한 전면부 전체에 반사성 재료 사용금지 •석재, 벽돌, 목재 등 자연친화적 재료 사용 권장 •외벽면의 외장, 재료, 색채에 있어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유지	전구역
		가로환경의 연속성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도로와 단차없이 조성 •부득이하게 단차설치를 해야할 경우 15㎝이하 및 경사로 설치 •경사로는 보도와 어울리게 설치	전구역
		양호한 보행환경 조성	•1층 가로 입면 개구부의 입면적 합 50% 이상 조성 •투시된 셔터설치	전구역
		옥외광고물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기준” 을 준수	전구역
		야간 조명	•간선변 10층이상 건축물은 건물전면 및 옥상부에 야간경관조명의 설치 권장	전구역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건축물 형태 변경 - 가로변 경관의 랜드마크	•개봉동 170-33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한하여, 가로변의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건축물 형태 계획을 변경함

다. 대지 내 공지·통로 결정(변경)조서

■ 대지 내 공지·통로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 분		적용목표	적용대상	적용기준	비고
기정	전면공지	•가로보행환경 제고 •보행공간, 녹지 및 휴게시설 조성 •보행로와 연계 •도로 일정폭원 확보	•건축한계선으로 제어되는 필지	•조성지침 제시 •준주거지역 4m 이하 도로는 도로로 조성	-
	공개공지 (18개소)	•가로보행환경 개선 •간선가로변 보행자 휴게공간 확보	•건축법상 설치 대상 필지 •주요 보행결절점 상에 조성 위치 지정	•공공적 기능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가로변 위치 지정 •건축법상 대상 획지	-
	공공 보행통로	•공지와 연계 보행환경 개선	•간선가로 및 공지변 원활한 보행 환경 조성	•필로티 구조일 경우 유효 높이 6m 이상	-
변경	전면공지	•가로보행환경 제고 •보행공간, 녹지 및 휴게시설 조성 •보행로와 연계 •도로 일정폭원 확보	•건축한계선으로 제어되는 필지	•조성지침 제시 •준주거지역 4m 이하 도로는 도로로 조성	-
			•개봉동 170-33 일대 역세권 활성화 사업지	•경인로변 - 보도형 전면공지 4m •경인로40길 - 차도형 전면공지 1m주1) - 보도형 전면공지 4m	결정도 참조
	공개공지 (17개소)주2)	•가로보행환경 개선 •간선가로변 보행자 휴게공간 확보	•건축법상 설치 대상 필지 •주요 보행결절점 상에 조성 위치 지정	•공공적 기능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가로변 위치 지정 •건축법상 대상 획지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1개소 위치 지정 해제
	공공 보행통로	•공지와 연계 보행환경 개선	•간선가로 및 공지변 원활한 보행 환경 조성	•필로티 구조일 경우 유효 높이 6m 이상	-
			•개봉동 170-33 일대 역세권 활성화 사업지	•폭 2.0m 이상 •유효높이 6.0m 이상	결정도 참조

주1) 개봉동 170-33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차도형 전면공지는 공공의 원활한 이용과 관리를 위해 지역권 설정(지역권자 : 구로구청장)
주2) 개봉동 170-33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공개공지 1개소 위치 지정 해제(결정도 참조)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차도형(지역권 설정), 보도형 전면공지 •공개공지 1개소 지정 해제 •개봉동 170-33 일대 공공보행통로 신설	•건축한계선 내 보행 환경개선 및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전면공지를 보도형과 차도형으로 조성 •건축법상 대상 획지에 해당하지 않아 1개소 위치 지정 해제 •경인로~개봉로24길의 원활이 보행이 가능하도록 보행공간 조성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변경없음

다.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 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특별계획구역 가능지①	개봉역 주변 특별계획구역 가능지①	개봉동 170-33번지 일대	4,584.0	감) 4,584.0	-
기정	특별계획구역 가능지②	개봉역 주변 특별계획구역 가능지②	개봉동 171-1번지 일대	3,452.0	-	3,452.0
기정	특별계획구역 가능지③	개봉역 주변 특별계획구역 가능지③	개봉동 208-3번지 일대	3,983.7	-	3,983.7
기정	특별계획구역 가능지⑤	개봉역 주변 특별계획구역 가능지⑤	개봉동 181-1번지 일대	2,763.0	-	2,763.0

※ 특별계획구역 가능지의 면적은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조정될 수 있음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변경사유
-	개봉역 주변 특별계획구역 가능지①	개봉동 170-33번지 일대	4,584.0	•개봉동 170-33 일대 특별계획구역 가능지 ① 실효되어 폐지 (결정 고시일로부터 3년, '12.09.27.)

■ 특별계획구역 가능지② 계획지침 :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 가능지③ 계획지침 :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 가능지④ 계획지침 :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 가능지⑤ 계획지침 : 변경없음

6.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가.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및 내용 : 변경없음

나. 용적률 유형별 인센티브 계획 기준 : 변경없음

■ 유형1 : 변경없음

■ 유형2 : 변경없음

■ 유형3 : 변경없음

■ 유형4 : 변경없음

■ 유형5 : 변경없음

다. 개봉동 170-33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용적률 적용기준(의무사항) : 신설

구 분		적용기준	계획내용	완화 내용	비고
공공 기여에 관한 계획	공공기여율	•부지면적의 29.17% 이상	•부지면적의 29.20% 계획	기준 용적률 250% 상한 용적률 600%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 하여야함
	공공기여시설 설치기준	•공공주택 30% 이상 권장 •한가지 유형의 시설이 50%를 초과하여 설치 하지 않는 것을 권장	•공공주택 8.62%(29.50%) •지역필요시설 20.58%(70.50%)		
건축물 용도 구분	비주거비율	•지상 용적률 10% 이상	•주거 : 비주거 = 83.31% : 16.69%		
		•전체 연면적 20% 이상	•주거 : 비주거 = 79.98% : 20.02%		
	주거비율	•「도시계획조례」 별표3 적용	•주거용적률 499.41%		
주택 건설 기준	주택규모	•공공주택 : 전용 85㎡ 이하	•공공주택 : 전용 46.91㎡ (12세대), 59.85㎡(7세대) 계획		
		•민간주택(분양) : 기준 없음	•공동주택(아파트): 전용 46.91㎡, 59.85㎡, 84.90㎡ 계획		
건축물 형태	서울형 주거환경 정책	•3가지 의무적 이행 적용 -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 친환경 건축물 - 역사문화 보전(해당 시)	•2가지 이행적용(역사문화 해당없음) -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 친환경 건축물		
주민 공동시설		•관련규정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설치대상이 아닌 100세대 미만인 경우 : 100㎡ 이상	•158세대 -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동시설 150㎡ 이상 계획 - 용도 : 라운지, 기타주민공동시설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활성화사업 운영기준」 준용

주2) 향후, 건축계획 및 인허가 등에 따라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내에서 계획내용의 면적 및 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결정내용	신설사유
-	•공공기여계획, 건축물 용도(주거:비주거)구분, 주택의 규모, 서울형 주거환경정책등 계획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을 적용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2. 경인로40길(중로3-4) 차도형 전면공지에 대한 지역권 설정 : 신설

■ 경인로40길(중로3-4) 차도형 전면공지(1m)는 공공의 원활한 이용과 관리를 위해 지역권 설정

구 분	내 용
위 치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170-33번지 일대 - 경인로40길(중로 3-4) 차도형 전면공지
규 모주1)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m (너비 : 1m, 길이 : 49.58m)
보 상	•도로 존속기간 내 무상제공
시행 주체	•사업시행자 조성
관리운영 주체	•도로과(구로구청)
지역권자	•구로구청장

주1) 규모는 캐드구적을 근거한 것으로 향후 측량 등에 따라 관리 부서와 협의 후 확정하여 준공 시 지역권을 설정함

Ⅲ. 관계도면 : 붙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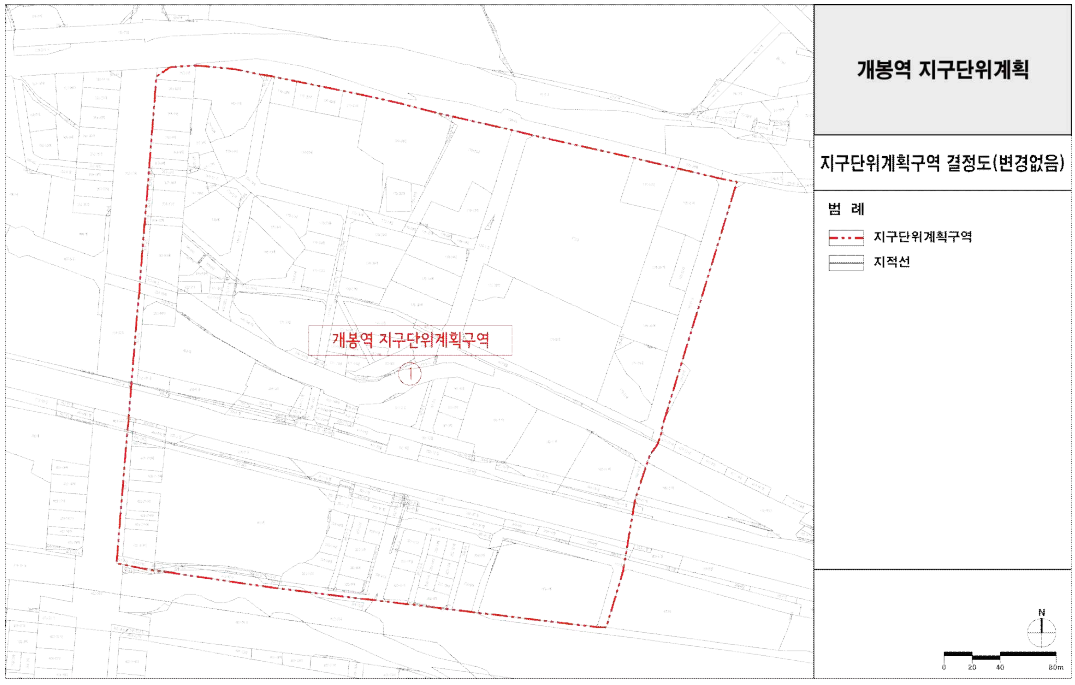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열람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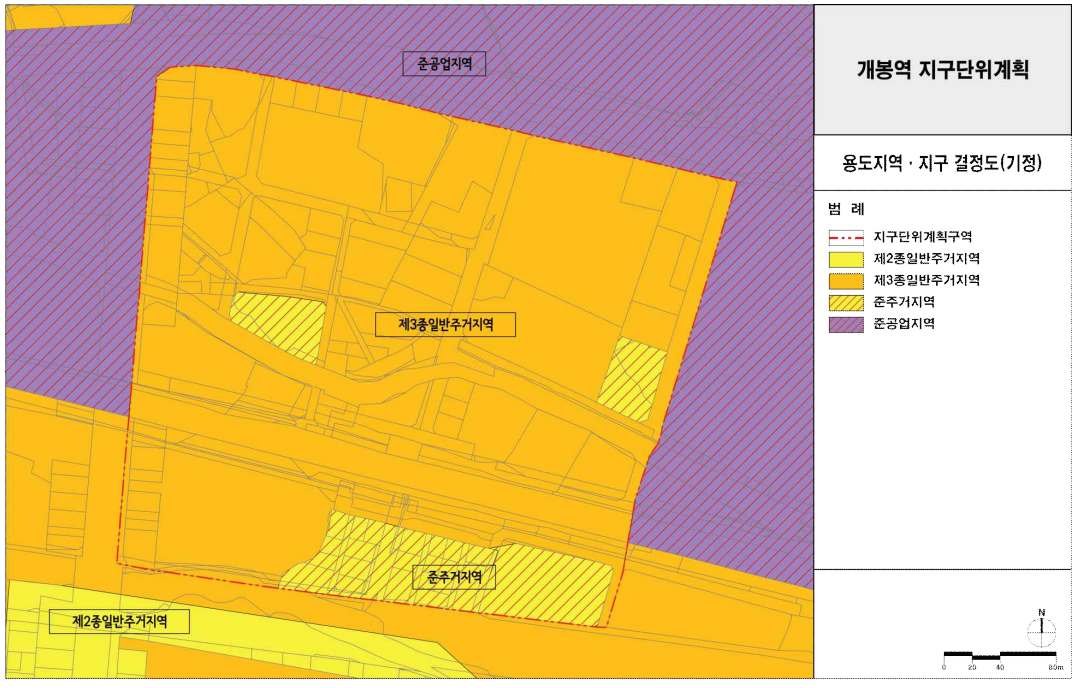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2133-2597) 및 구로구청 도시계획과(☎860-2280)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 (https://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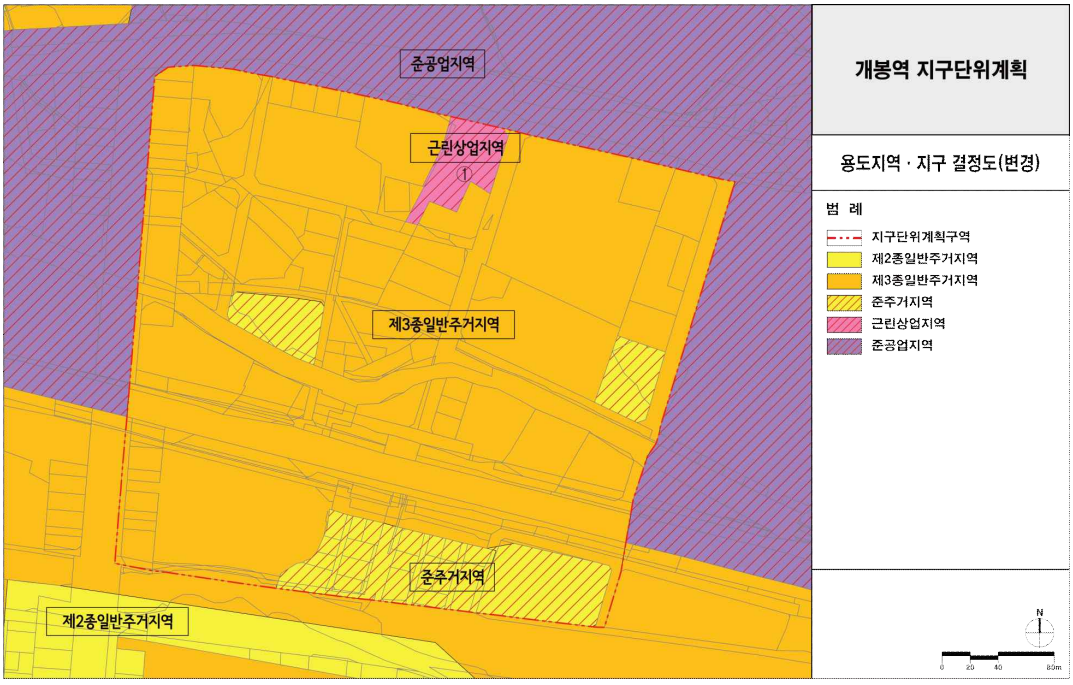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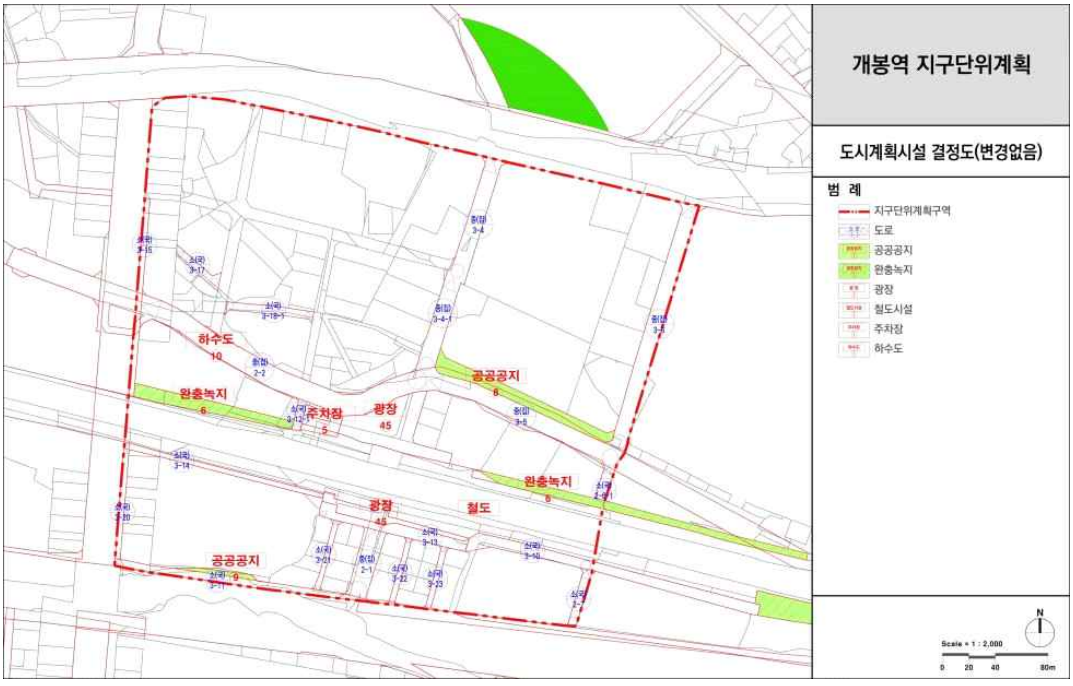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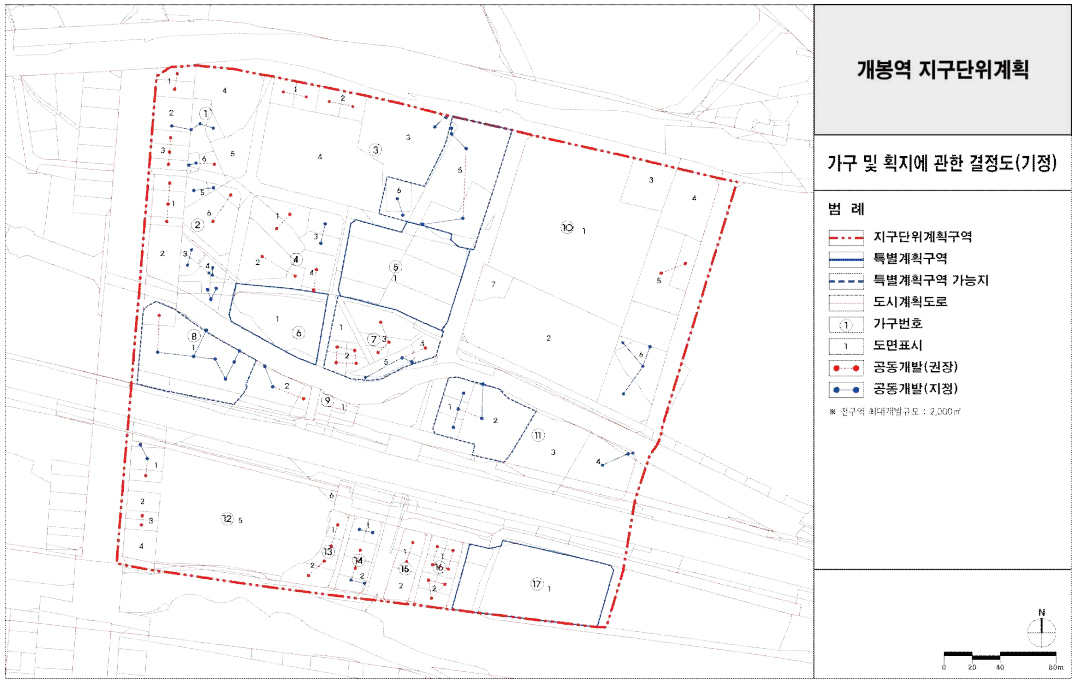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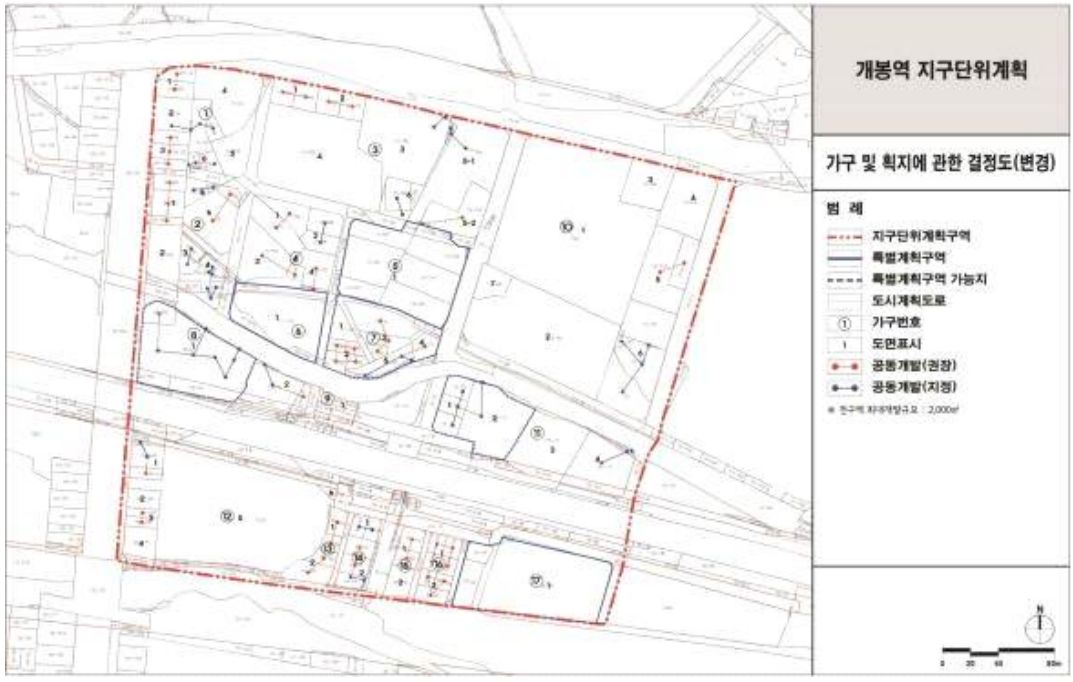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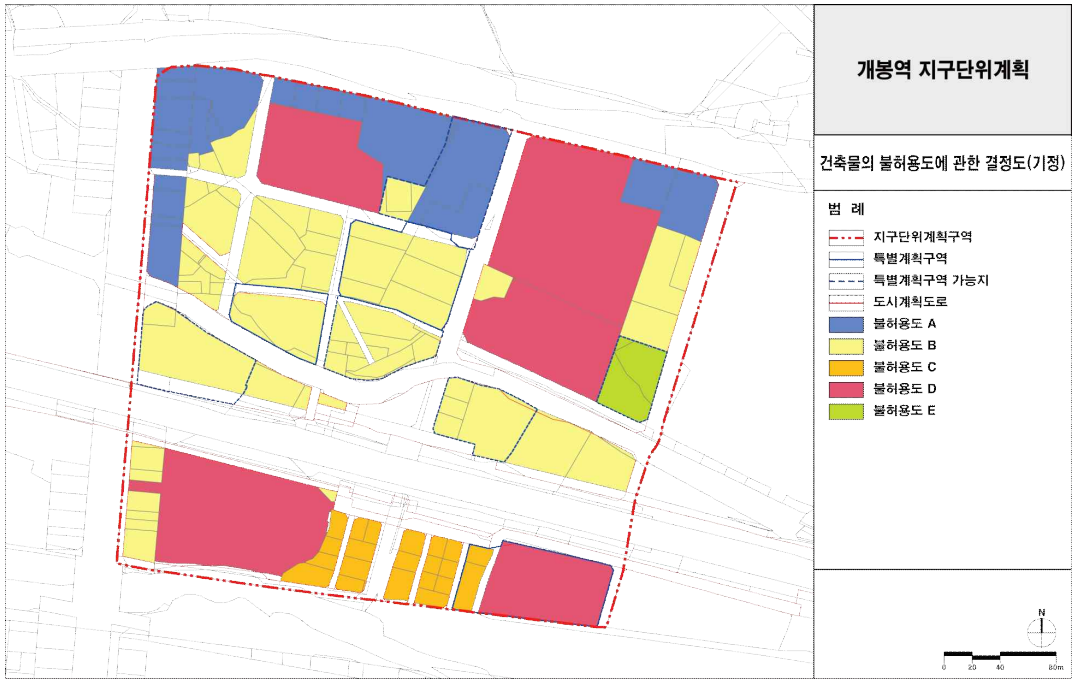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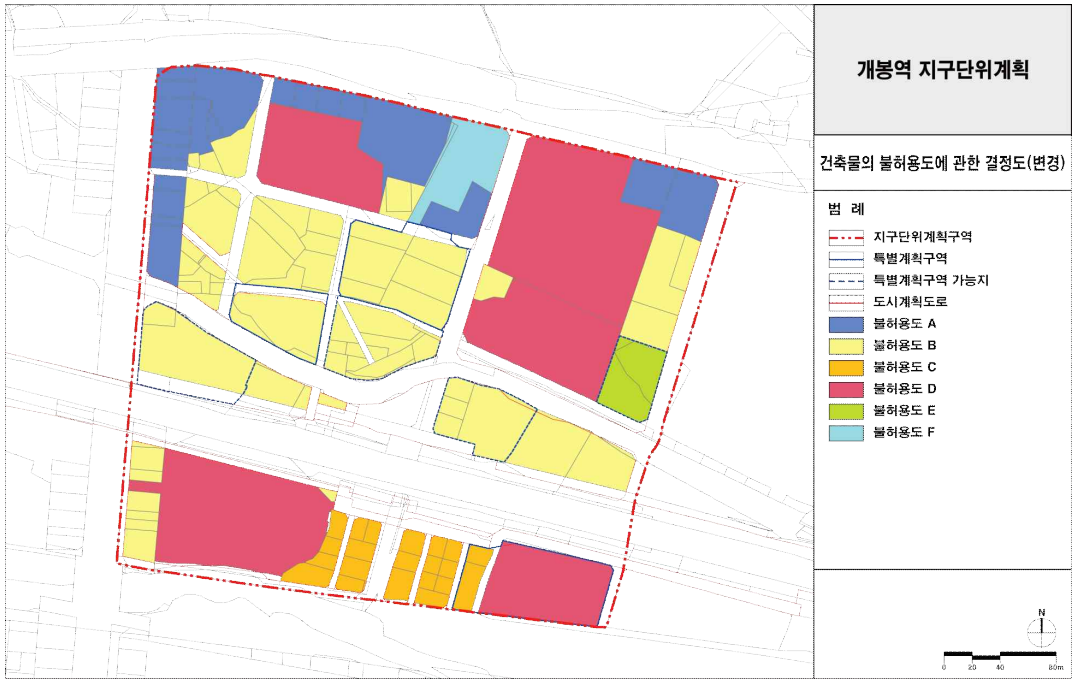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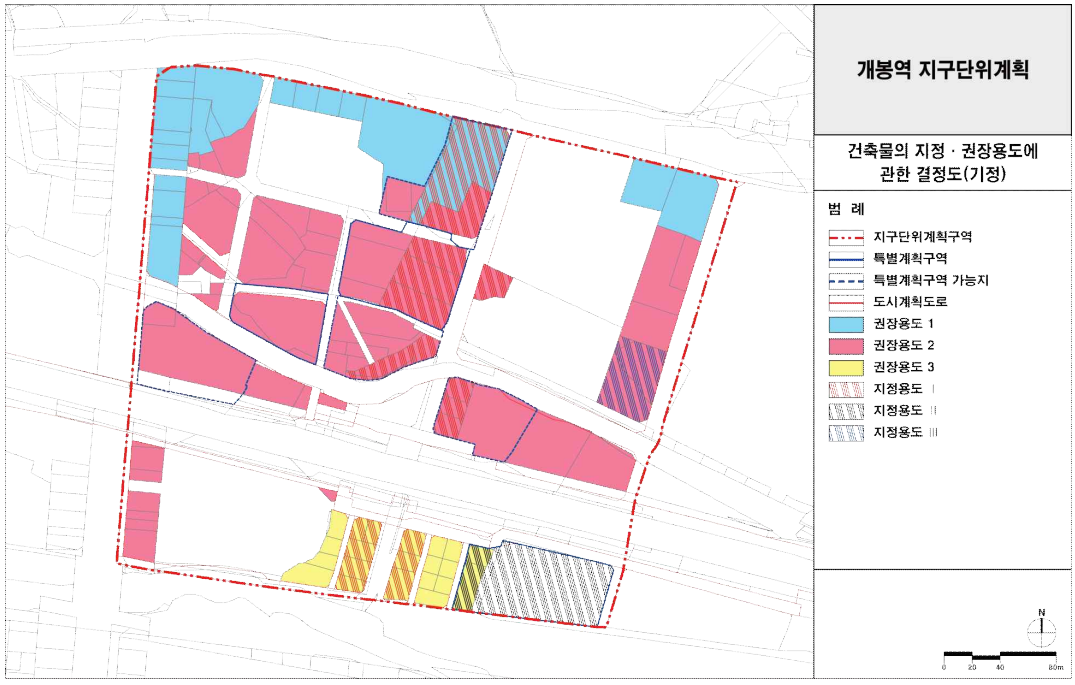
■ 건축물의 불허용도에 관한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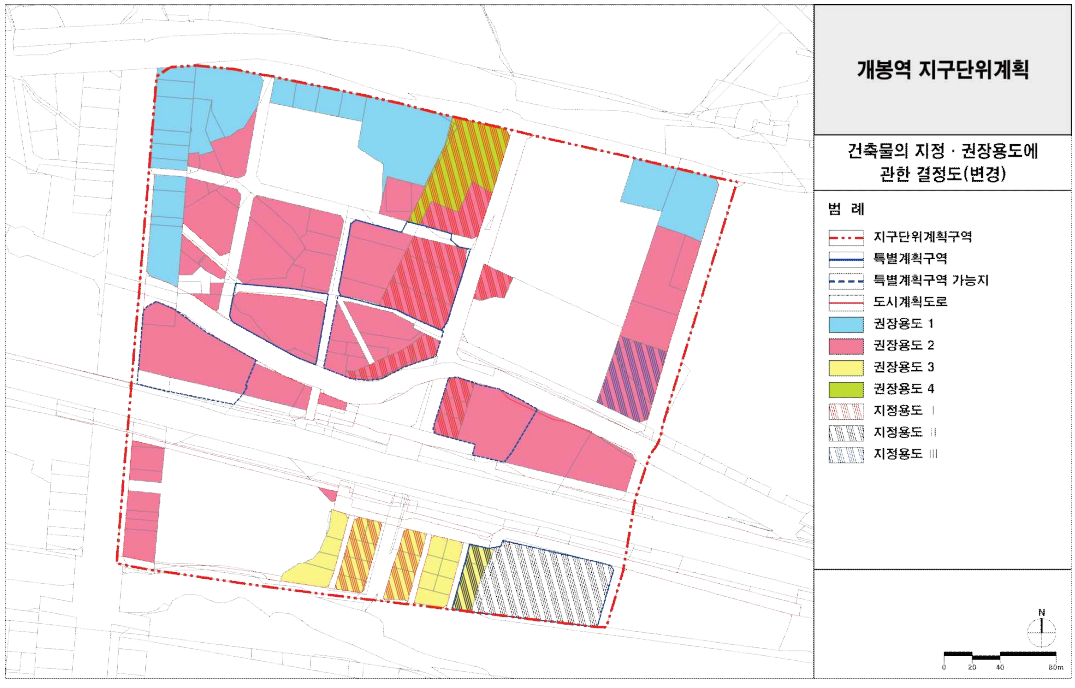
■ 건축물의 불허용도에 관한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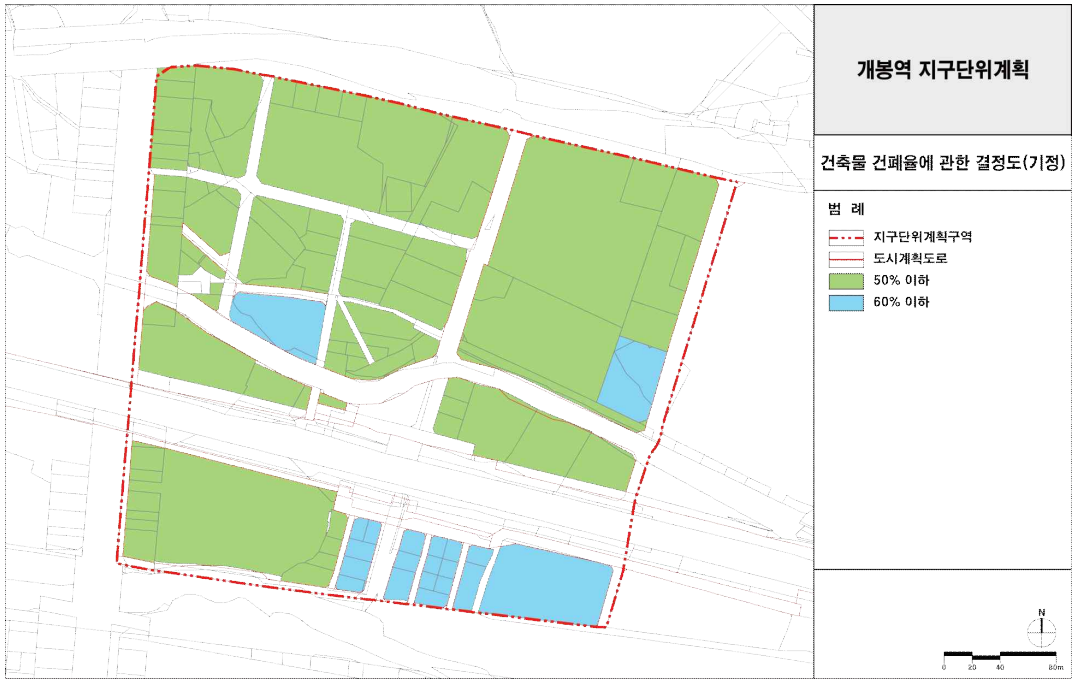
■ 건축물의 지정 · 권장용도에 관한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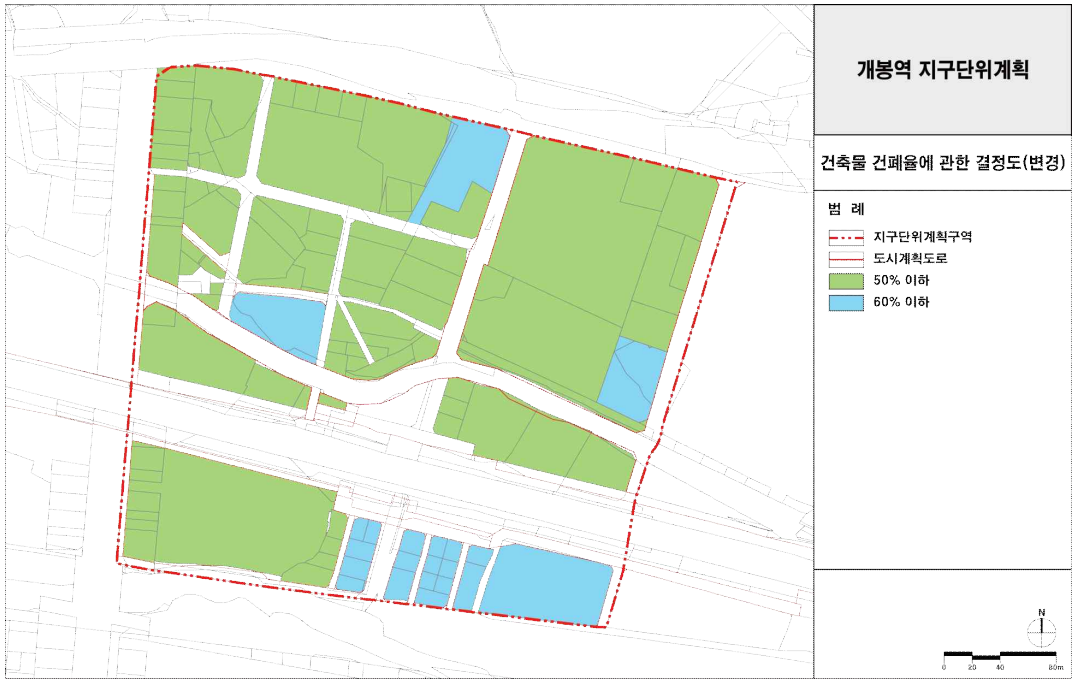
■ 건축물의 지정 · 권장용도에 관한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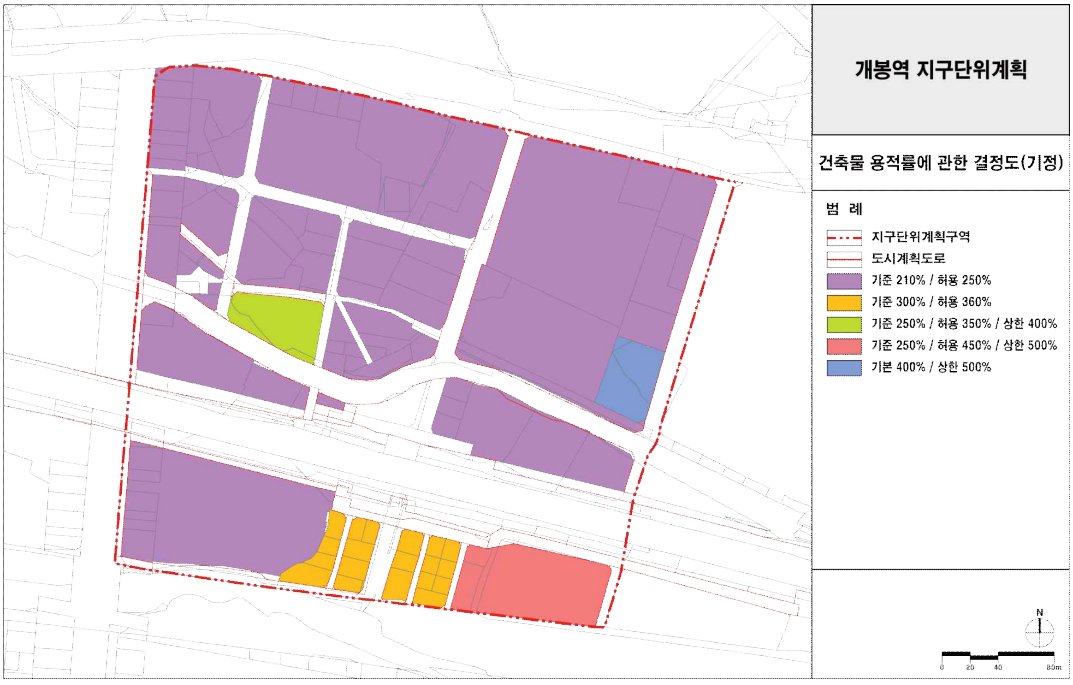
■ 건축물의 건폐율에 관한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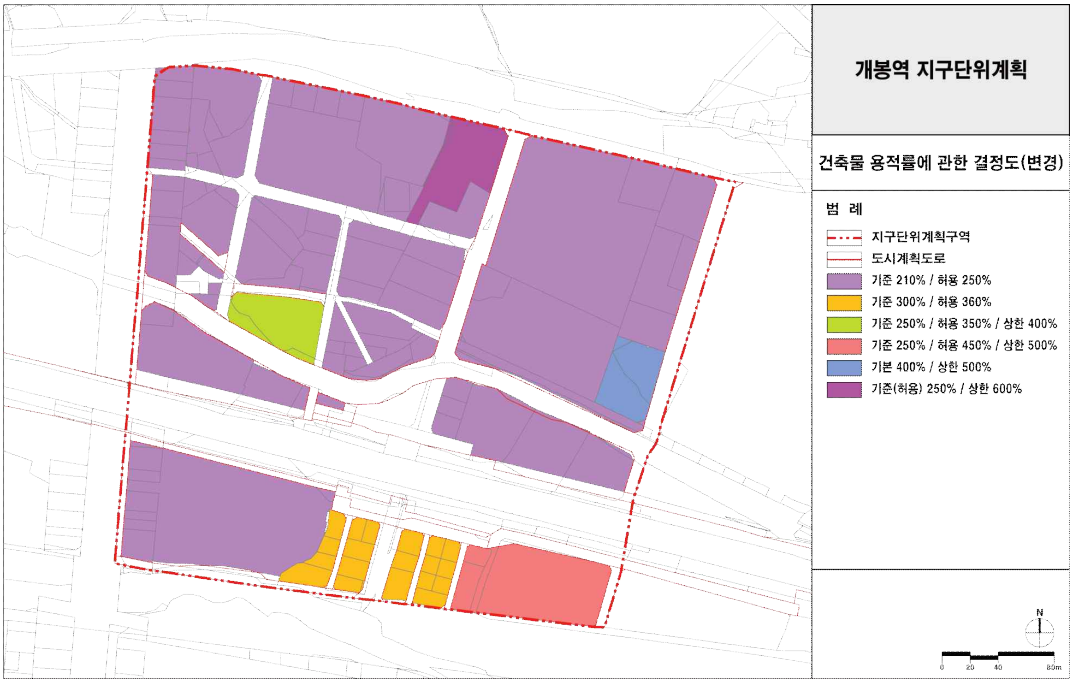
■ 건축물의 건폐율에 관한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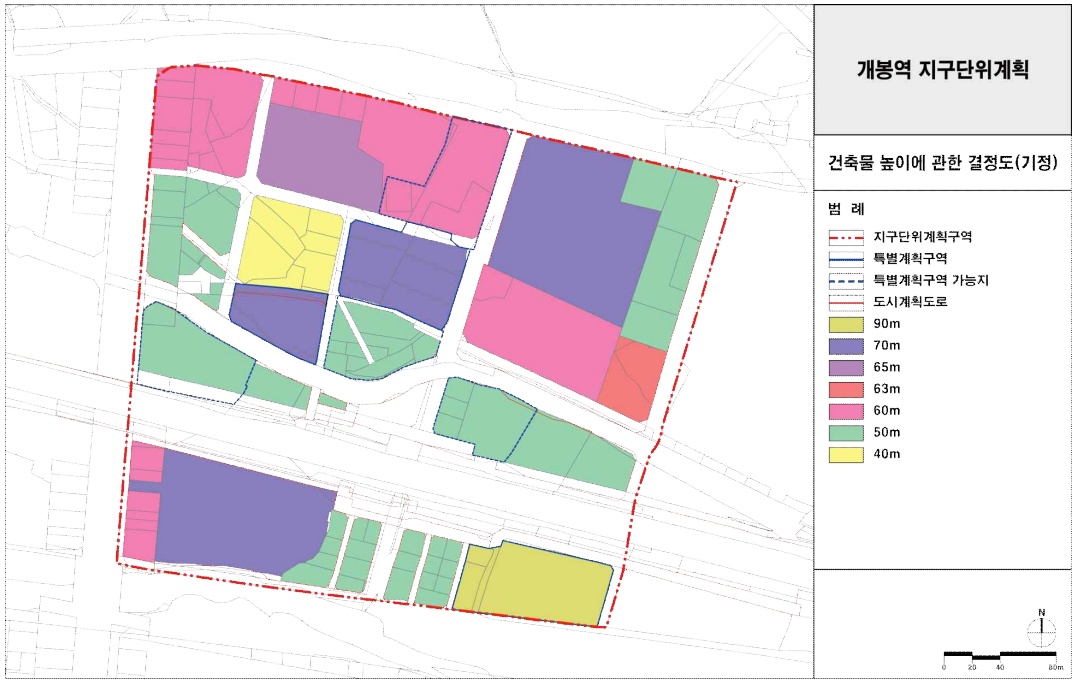
■ 건축물의 용적률에 관한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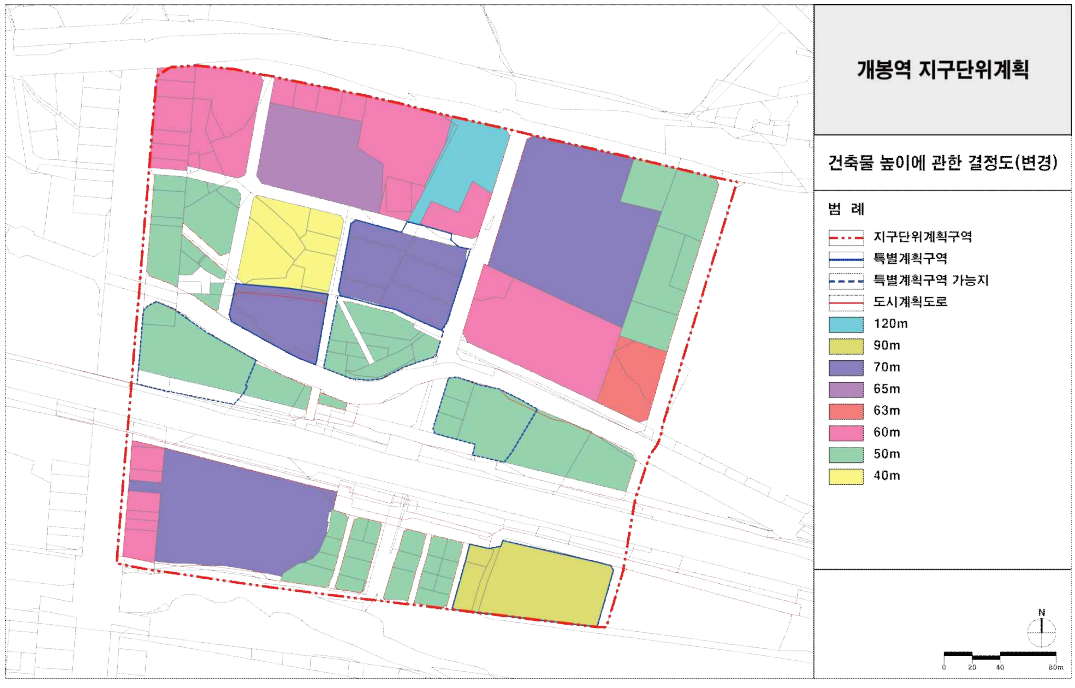
■ 건축물의 용적률에 관한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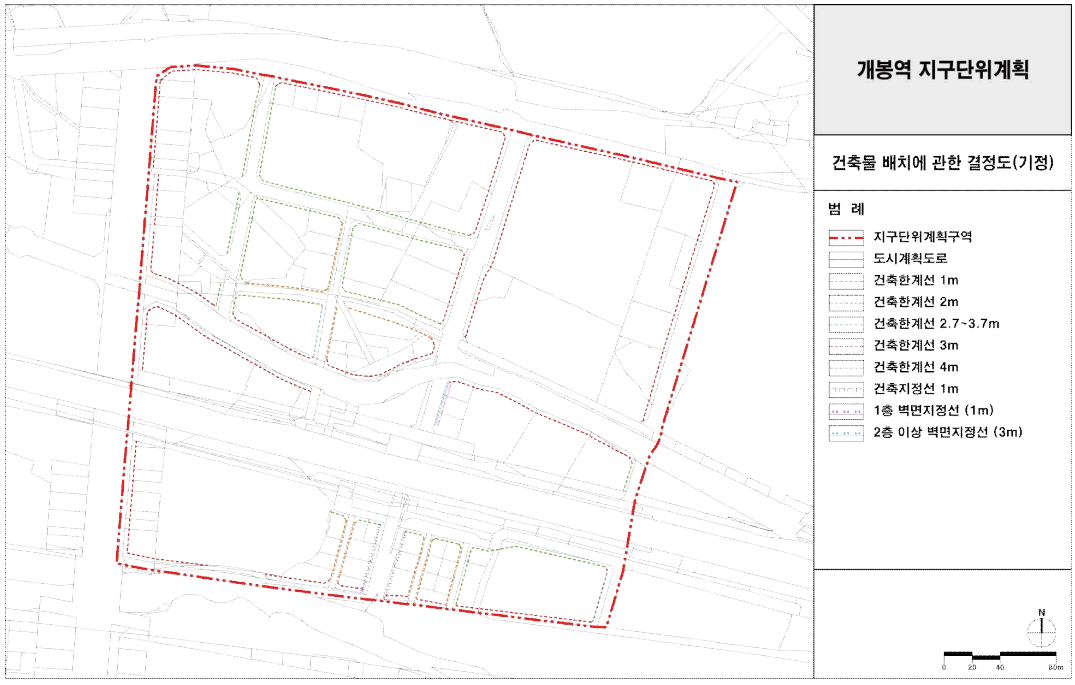
■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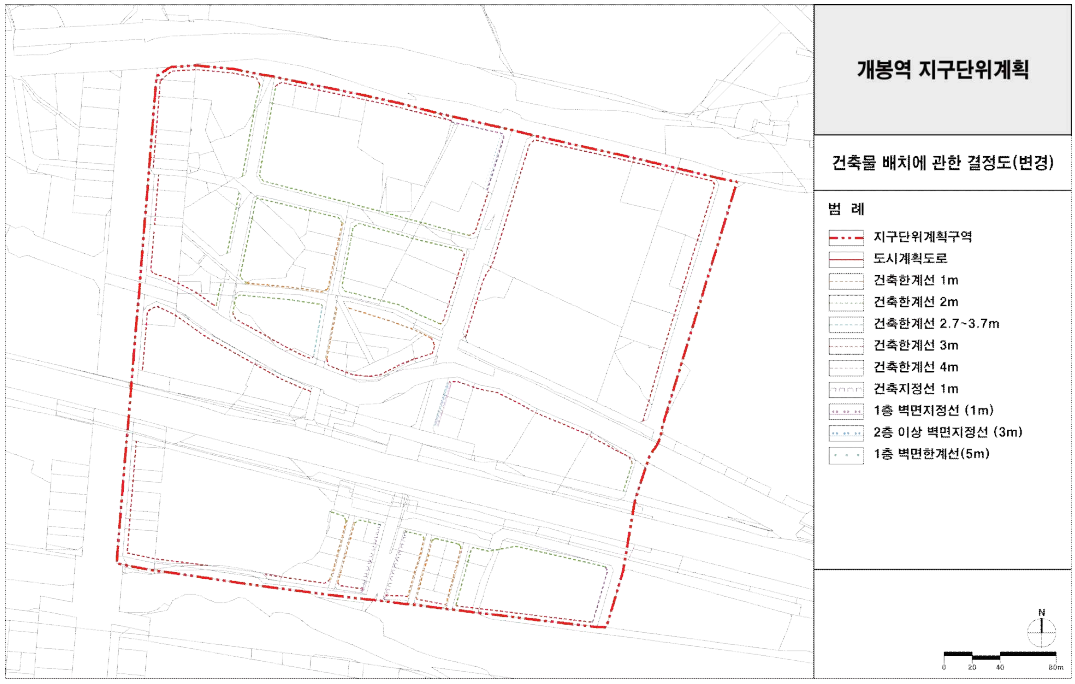
■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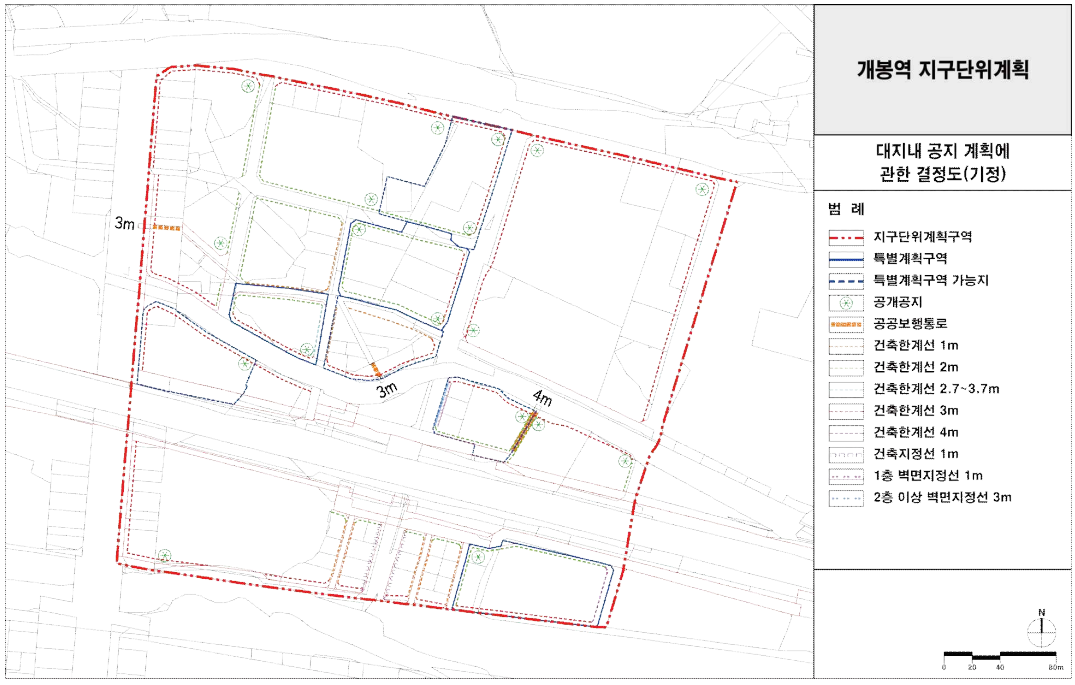
■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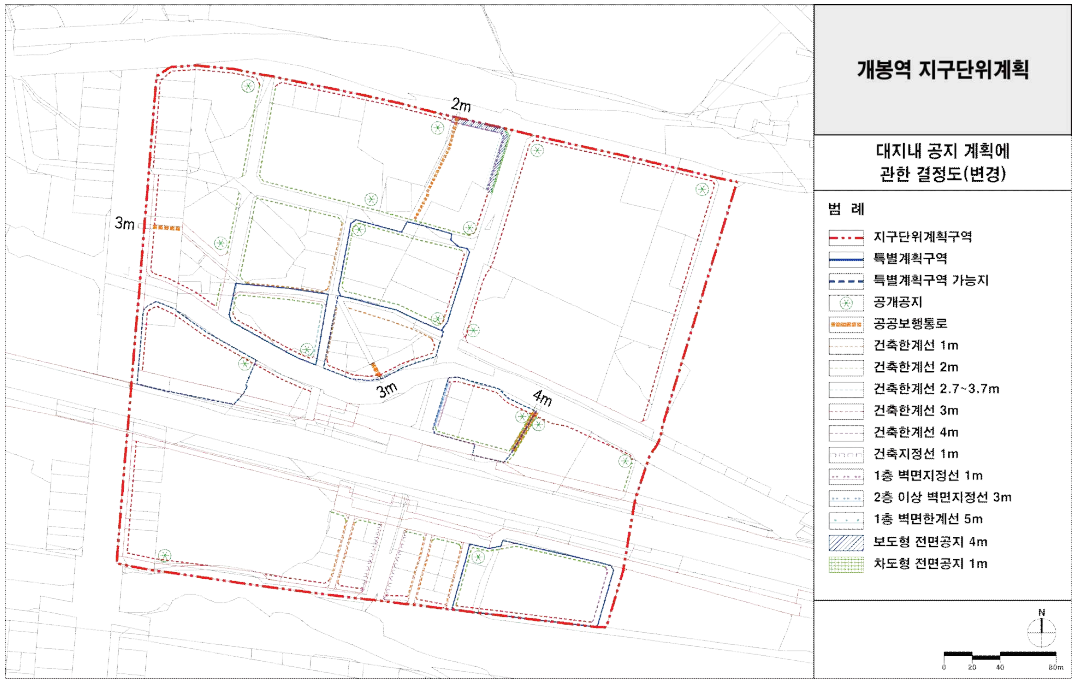
■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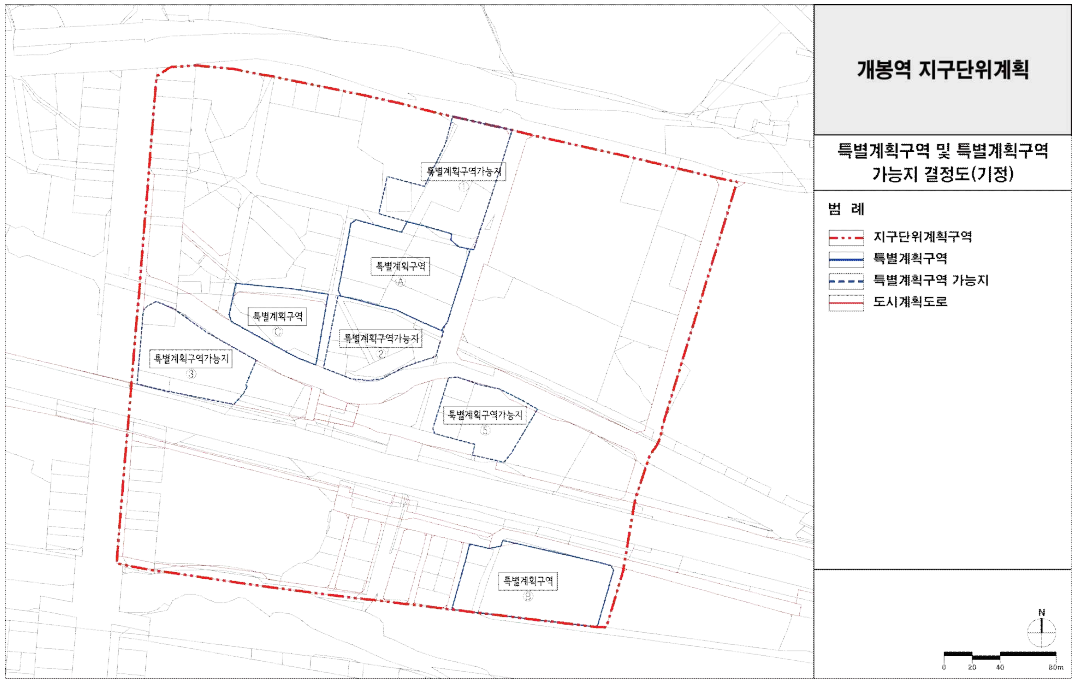
■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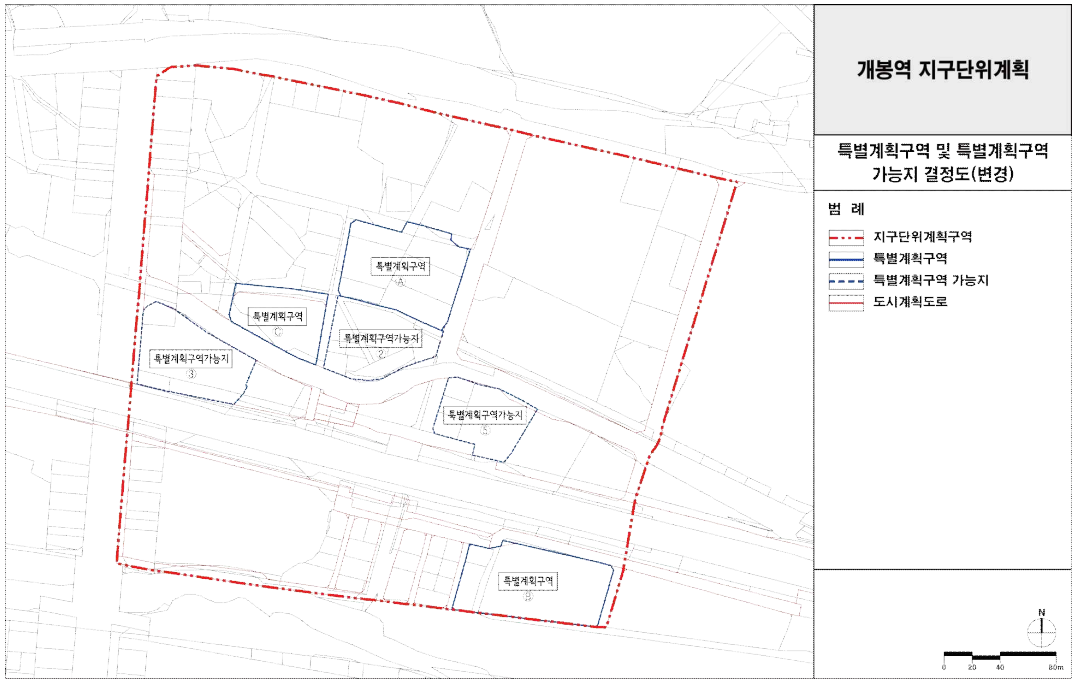
■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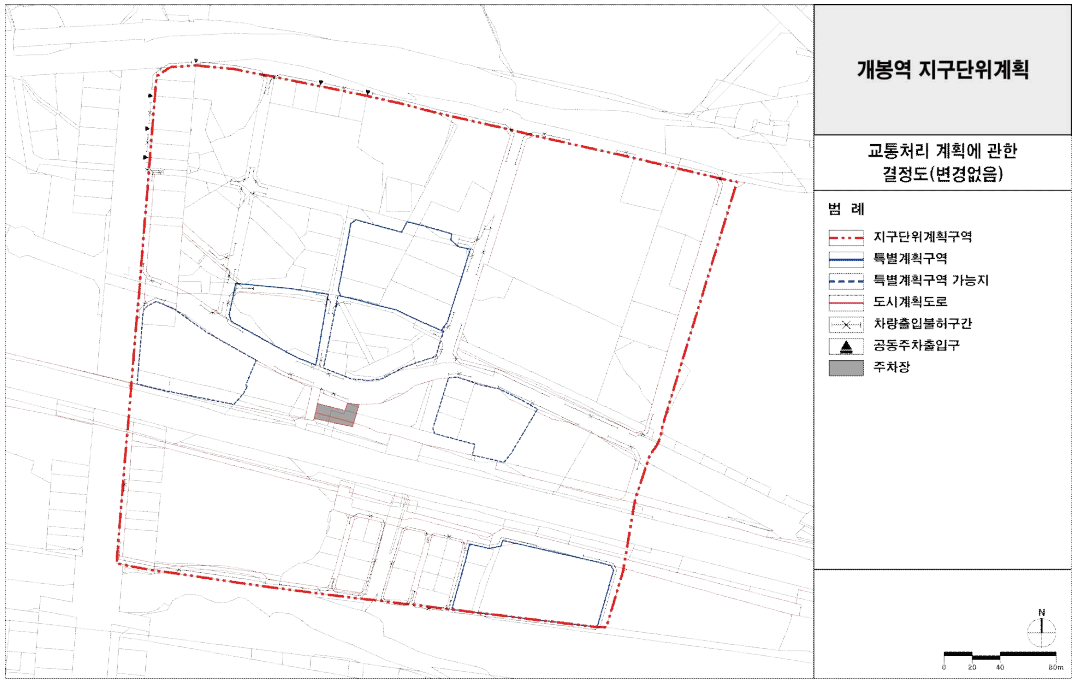
■ 특별계획구역(가능지)에 관한 결정도(기정)



■ 특별계획구역(가능지)에 관한 결정도(변경)



■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608호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제6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7조제6항에 따라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3조 및 제77조에 따른 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 조합의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자등”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말한다.
2. “조합”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8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3조에 따른 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 조합을 말한다.
3. “전자조달시스템”이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중 “누리장터”를 말한다.
4. “설계도서”란 설계도면·공사시방서·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 등 공사의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5. “공동주택성능요구서”란 조합원이 원하는 공동주택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이 별표 1과 같이 공동주택 요구성능을 기재하여 시공자 선정 전에 제시하는 서류를 말한다.
6. “공사비총괄내역서”란 공종별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총액으로 산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7. “물량내역서”란 당해 정비사업의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과 규격 등이 적힌 내역서를 말한다.
8. “산출내역서”란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내역서를 말한다.
9. “검증기관”이란 법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 또는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를 대행하여 공사비 검증을 수행할 기관으로써 「한국부동산원법」에 의한 한국부동산원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주택도시공사를 말한다.
10. “정비계획”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계획을 말한다. 다만, 법(법률 제6852호, 2002.12.30. 제정) 부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간주된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은 제외한다.
11. “대안설계”란 정비계획 범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및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경미

한 변경사항은 허용하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최고 높이의 확대, 정비구역 면적의 증가 및 정비기반시설의 변경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에서 창의적인 건축디자인, 혁신적인 건설기술 등을 포함하여 제안하는 설계안을 말한다.

12. “전문기관”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2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① 조합의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법·같은 법 시행령·조례(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하 “계약업무 처리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과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으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조합 대의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시공자 선정 절차 등

제4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①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개최 전에 공사입찰에 필요한 설계도서(정비계획 내용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고 공사원가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 작성은 정비계획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 중 설계도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제5조에 따른 기본설계도면 작성방법에 따른다.

③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1의 공동주택성능요구서를 입찰참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참여자는 제시된 공동주택성능요구서의 대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제4조의2(총액입찰, 내역입찰 등) ① 조합이 총액입찰로 하는 경우 입찰참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비 총괄내역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된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정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공사비총괄내역서와 관련된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이 내역입찰로 하는 경우 입찰참여자는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제1항 후단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에 따라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선정된 시공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사원가 자문, 공사비 검증 등) ① 조합은 제4조에 따라 설계도서 및 공사원가가 산정된 경우에는 입찰공고 3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부서, 검증기관, 전문기관에 공사원가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등을 자문기관에 제공하여야 하고, 자문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공사원가 자문 결과를 시공자 선정시 공사비 예정가격 결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시공자 선정 전에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의 경제성 검토, 입찰관리, 계약관리, 시공관리 등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 등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

④ 조합은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법 제72조에 따른 분양공고 전에 설계도면, 변경 전·후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 등 공사비 내역을 증빙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검증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공자는 변경 전·후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 등 요청받은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조합은 공사비 검증을 요청한 사실을 조례 제72조제1호에 따른 공공지원자(이하 "공공지원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사비 검증 관련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기준」(이하 "공사비 검증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조합은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검증보고서를 총회에서 공개하여야 하며, 공사비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변경계약 체결에 대한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⑧ 시공자는 조합에 공사비 증액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공지원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지원자는 공사비 검증 절차 이행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하여 조합, 시공자 및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입찰의 방법) 조합이 법 제29조제4항 본문에 따라 건설업자등을 시공자로 선정할 때에는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선정계획 결정) ①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선정계획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사회가 의결한 선정계획안에 대하여 대의원회의 소집을 통지하기 전에 미리 공공지원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공지원자는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제출 자료 미비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입찰참가자격 및 제한에 관한 사항
2.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3. 시공자 선정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4. 합동홍보설명회 개최 및 개별 홍보 금지 등에 관한 사항
5. 입찰기준 등 위반자에 대한 입찰 무효 또는 시공자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공공지원자의 검토 결과를 선정계획안에 반영하고,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정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시공자 선정계획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8조(입찰 공고 등) ①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을 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1회 이상 일간신문(전국 또는 서울특별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찰을 공고하고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인 정보몽땅(이하 "정비사업 정보몽땅"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 외에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내용증명우편으로 입찰 대상자에게 통지(도달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할 때에는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대안설계 제안 시공내역 제출 등) ① 건설업자등은 시공자 선정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안설계를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업자 등은 조합이 작성한 원안설계와 비교할 수 있도록 원안 공사비 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건설업자등이 대안설계를 제안하는 경우 제출하는 입찰제안서에 포함된 설계도서, 물량 및 산출내역서에 포함된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 시공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건설업자등이 대안설계를 제안하는 경우 원안이 아닌 제안 내용으로 해당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보며, 조합은 입찰제안서에 포함된 설계도서, 물량 및 산출내역서,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 입찰제안 내용에 대한 시공 내역을 반영하여 계약 체결하여야 한다.

④ 건설업자등이 제안한 대안설계에 따라 후속절차가 이행되는 과정에서 기간연장, 공사비 증액 등으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은 건설업자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⑤ 조합은 건설업자등의 입찰제안서 및 내역서 등 작성과 이에 대한 조합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반영하여 입찰 추진일정을 계획하는 등 조합원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 참가자격 제한, 입찰 무효 등) ① 조합은 입찰 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지체 없이 해당 업체명과 부정당 사유 및 일자 등을 공공지원자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자(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2. 입찰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 선정 또는 계약이 취소된 자

② 시장은 법 제113조의3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대상, 기간, 사유, 그 밖의 입찰참가 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고, 공공지원자 및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조합은 해당 건설업자등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여자가 제4조제2항 또는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대안설계 등을 제안한 경우와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등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 사은품 제공 등을 한 행위가 1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여자의 입찰 참가는 무효로 본다.

④ 조합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 참가를 제한받거나 입찰 참가가 무효로 된 건설업자등과 계약(수의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현장설명회) ① 조합은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일 4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정비계획 내용을 반영한 다음 각 목의 설계도서
 가.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도서
 나. 설계도면
 다. 공사시방서
 라. 물량내역서(필요시)
 마. 공동주택성능요구서

바. 공사비총괄내역서, 물량내역서 또는 산출내역서 작성방법 및 설계도서 열람방법(도면과 시방서 등은 현장설명회 참여자에게 정보저장매체로 제공할 것)

2. 입찰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입찰안내서

가. 입찰제안서 작성방법·제출서류·접수방법 및 입찰유의사항 등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예입조치에 관한 사항

다. 입찰의 참가자격 제한 및 무효에 관한 사항

라. 건설업자등의 공동홍보방법 및 위반시 제재사항

마. 시공자 선정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3. 공사도급계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

가. 공사도급계약서(안)

나. 공사도급계약조건 및 특수조건(안)

다. 공사도급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라. 기타 공사도급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4.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내역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참여자는 제1항제1호라목의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기재하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물량내역서의 기재 내용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여자에게 있다. 다만, 조합은 입찰참여자가 설계도서의 검토에 참고할 수 있도록 물량내역서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조합은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건설업자등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건설업자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참여 의향서를 작성 · 제출하도록 하여 조합의 인감이 날인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입찰제안서의 접수 및 개봉) 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서의 접수 및 개봉에 관한 사항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2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 부속서류 접수 시에 조합은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등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입찰참여 신청서를 작성 · 제출하게 하고, 조합의 인감이 날인된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입찰제안서 비교표 작성 등) 조합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찰 부속서류를 개봉한 때에는 입찰참여자가 제출한 별지 제4호서식의 입찰제안서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입찰제안서 비교표를 작성하고, 입찰참여자와 각각 확인 · 날인하여 사업을 완료하는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대의원회의 의결) ① 조합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총회에 상정할 건설업자등을 결정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대의원회 개최 전에 제13조에 따라 작성된 입찰제안서 비교표를 대의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건설업자등의 홍보) ① 조합은 제14조에 따라 총회에 상정될 건설업자등이 결정된 때에는 조합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등의 합동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은 총회에 상정하는 건설업자등이 제출한 입찰제안서에 대하여 시공능력, 공사비 등이 포함되는 객관적인 비교표를 작성하여 조합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등이 제출한 입찰제안서 사본을 조합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적 방식(정비사업 정보몽땅을 사용하거

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통해 게시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할 때에는 개최일 7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건설업자등의 임직원,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홍보 등을 위해 계약한 용역업체의 임직원 등은 조합원 등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으며, 홍보를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 사은품 등 물품·금품·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조합은 제1항에 따른 합동홍보설명회(최초 합동홍보설명회를 말한다) 개최 이후 건설업자등의 신청을 받아 정비구역 내 또는 인근에 개방된 형태의 홍보공간을 1개소 제공하거나, 건설업자등이 공동으로 마련하여 한시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공간 1개소를 홍보공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업자등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제공하거나 지정하는 홍보공간에서는 조합원 등에게 홍보할 수 있다.

⑤ 건설업자등은 제4항에 따라 홍보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홍보를 수행할 직원(건설업자등의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홍보직원"이라 한다)의 명단을 조합에 등록하여야 하며, 홍보직원의 명단을 등록하기 이전에 홍보를 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홍보직원이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등록하는 홍보직원의 수는 조합원 100명당 1인으로 하되 최대 20명 이내로 하며, 조합은 등록된 홍보직원의 명단을 조합원에게 알릴 수 있다.

제16조(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의 의결 등) ① 조합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여 시공자를 선정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총회 개최 전에 제13조에 따라 작성된 입찰제안서 비교표를 조합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조례 제77조제1항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세부 선정방법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총회에서 재투표하는 경우 재투표를 하기 전에 조합원의 과반수 직접 출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기 전에 공공지원자에게 관련 자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공지원자는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제출자료 미비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장 보칙 및 벌칙

제17조(수의계약의 공사비 검증) ① 조합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6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증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경우 검증보고서를 총회에서 공개하고 계약 체결을 의결 받아야 한다.

② 그 밖에 공사비 검증에 관한 사항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공사비 검증기준에 따른다.

제18조(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입찰보증금의 예입조치) ① 조합은 총회에서 선정된 건설업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입찰참여 규정 등을 위반하여 조합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건설업자등의 입찰보증금을 해당 조합에 귀속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미리 그 뜻을 해당 건설업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예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해당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 등에게 통지하고 당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거나 조합 소유 유가증권으로 전환하게 할 수 있다.

③ 조합은 해당 건설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1. 총회 상정할 업체 결정에서 제외된 건설업자등 : 대의원회 개최일부터 14일 이내
2. 총회에서 시공자로 선정된 건설업자등 : 계약일부터 14일 이내(단, 조합이 시공자와 협의한 경우 대여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건설업자등 : 총회 개최일부터 14일 이내

④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라 총회에서 시공자 선정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제1항과 제2항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합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20조(입찰안내서 등의 작성) 조합은 해당 정비구역의 여건 등에 따라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과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별표 2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입찰제안서 비교표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21조(자료제출 등) ① 조합은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시기에 관련 자료를 공공지원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자 선정계획 : 대의원회 소집 공고 전
2. 입찰공고 : 관련 기관에 공고 의뢰 전
3. 이사회·대의원회 및 총회 상정 자료 : 소집 공고 전
4. 이사회·대의원회 및 총회 결과 : 개최 후 지체없이
5. 현장설명회 결과 : 현장설명회 후 지체없이

② 공공지원자는 제출받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자료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 자료 미비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제2항에 따른 공공지원자의 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입찰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22조(자료의 공개 등)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및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정비사업정보몽땅)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시공자 선정계획에 관한 사항
2.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설계도서 포함)
3. 현장설명회 자료
4. 이사회·대의원회 및 총회의 의사록
5. 시공자 선정계약서
6. 입찰참여업체의 홍보에 관한 사항
7. 공사비 검증보고서(법 제29조의2제1항, 제5조제3항 및 제17조,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6조제3항에 따라 공사비 검증을 받은 경우에 한함)

제23조(부정행위 단속) ① 공공지원자 및 조합은 입찰공고부터 시공자 선정 완료시까지 부정행위

단속반과 신고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부정행위 동향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 외의 기간에도 제1항에 따른 단속반과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감독 등) ① 법 제113조에 따라 시장 또는 공공지원자는 시공자 선정과 관련된 사항이 관계법령등, 이 기준 또는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공자 선정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조합에게 처분의 취소·변경·정지, 임원의 개선 권고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공공지원자는 시공자 선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통하여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관련 자료의 제공 등 점검반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시공자 선정 취소 명령 등) ① 시장은 법 제113조의2에 따라 건설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에게 건설업자등의 해당 정비사업에 대한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명하거나 그 건설업자등에게 조합과 시공자 사이의 계약서상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자 선정 취소의 명을 받은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건설업자등이 법 제1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2. 건설업자등이 법 제132조의2를 위반하여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용역업체의 임직원(건설업자등이 고용한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3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참여자 중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입찰 무효 또는 시공자 선정 취소가 된 업체의 업체명, 사유 및 일자 등을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매년 반기마다 그 현황을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 종전의 기준 제8조에 따라 입찰공고한 조합은 종전의 기준(제15조는 제외한다)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별표1] 정비사업 공동주택성능요구서
[별표2] 입찰 안내서

[별지 제1호서식] 공사비 총괄내역서
[별지 제2호서식] 입찰참여 의향서
[별지 제3호서식] 입찰참여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입찰제안서
[별지 제5호서식] 입찰제안서 비교표

[별표 1]

00구역 정비사업 공동주택 성능요구서(예시)

□ 일반사항

가. 본 예시는 「주택법」 제39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공동주택 성능 등급에 기반하여 공동주택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제시한다.

나. 조합은 본 예시를 참고·수정·보완하여 당해 정비사업의 공동주택에 요구되는 성능을 확정하고, 현장설명회 시 입찰참여자에게 제시한다.

다. 입찰참여자는 조합이 제시한 공동주택 요구 성능을 반영한 공사비총괄내역서 등을 작성하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의 기재 내용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여자에게 있다.

□ 공동주택 요구 성능

가. 구조 관련 성능

1. 내구성

가) 요구성능: 건축물의 내용년수(물리적 수명)는 65년 이상으로 한다.

- 내구성 정의: 수명기간(내용년수) 동안 일상의 유지관리 조건 하에서 대규모 이상의 보수, 보강을 필요로 하지 않음.

나) 세부요건

1) 부재의 최소단면: 외벽은 180㎜, 슬래브는 150㎜ 이상으로 한다.

2) 철근의 피복두께

- 흙에 접하지 않는 부분: 지붕 및 바닥슬래브, 비내력벽 – 실내 40㎜, 실외 50㎜
  기둥, 보, 내력벽 – 실내 50㎜, 실외 60㎜
  옹벽 – 60㎜
- 흙에 접하는 부분: 기둥, 보, 바닥슬래브, 내력벽 – 60㎜
  기초, 옹벽 – 80㎜

3) 설계기준강도(fck): 27MPa 이상

4) 슬럼프: 표준 15㎝ 이하, 유동화콘크리트 21㎝ 이하

5) 단위수량: 표준 175㎏/㎥ 이하
6) 단위결합재량: 300㎏/㎥ 이상
7) 물결합재비: 60% 이하
8) 공기량: 4.0~6.0%
9) 염화물량: 0.2㎏/㎥ 이하

2. 가변성

가) 요구성능: 세대 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 비율이 10% 이상으로 한다.

$$\text{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 비율} = \frac{\text{세대 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text{세대 내부 전체벽 및 기둥의 길이}} \times 100$$

-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 비율 산정은 세대 내부를 기준으로 하며,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 벽 및 기둥의 길이는 장변의 길이로 산출한다.

3. 수리용이성

가) 요구성능(전용부분): 아래 선택 항목 중 3개 이상으로 한다.

1) 욕실 바닥의 건식공법 적용 여부
2) 모든 욕실 천장에 600㎜×600㎜ 이상 크기의 점검구 적용 여부
3) 배관 및 배선의 구조체 매립 여부
4) 난방용 분배기 전용함 설치
5) 구조체에 매립되지 않은 수평 2중 배관 구조
6) 급수 급탕 분배기 존별 차단 볼밸브 설치

나) 요구성능(공용부분): 아래 선택 항목 중 5개 이상으로 한다.

1) 배관배치: 공용입상 배관의 공용부분 배치계획
2) 배관구조: 조립이 가능한 배관구조의 적용
3) 예비배관: 예비 배관의 설정
4) 전기실: 향후 용량 증가 및 관리를 위한 공간 확보
5) 전기실: 수배전반의 보수 및 점검 교체에 지장이 없는 구조 확보
6) 점검구: 개보수를 고려한 점검구의 크기, 위치, 구조 확보
7) 점검구: 점검시설 및 계측시설의 확보
8) 수요의 증가와 통합 분리를 고려한 공용 PS의 추가 배치 계획 수립의 적용
9) PS(Pipe Shaft)에 개폐문이나 패널 등의 설치
10) PS(Pipe Shaft) 입상관에서 세대 인입관 사이에 유니온 또는 유니온 일체형 밸브 설치

나. 화재·소방 관련 성능

1. 내화성능

가) 요구성능: **법규상의 내화구조에 콘크리트 피복두께 15mm 증가, 전층 수직공용부 내화충전재 설치 또는 철골 내화피복두께 5mm 증가 이상으로 한다.**

- 콘크리트 피복두께의 기준은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KDS 14 20 00)'의 최소피복두께로 하며, 철골의 경우는 내화구조인정 피복두께로 한다.

2. 감지 및 경보설비

가) 요구성능: **법규에 따른 감지, 경보 및 수신 설비와 아날로그 감지기 및 방재실 내 통합방재설비를 설치한다.**

- 아날로그 감지기란 주위의 온도 또는 연기량의 변화에 따라 감지하여, 작동위치 확인이 가능한 감지기를 말한다.
- 통합방재설비란 소방시설 및 소방관련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평상시에는 소방·방재시설의 작동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시할 수 있고, 화재시 신속한 상황대처가 이루어지도록 설치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제연설비

가) 요구성능: **계단실에 제연설비(피난층 포함) 설치한다.**

4. 피난설비

가) 요구성능: **전 층에 복합형 유도등 설치 또는 피난유도선 설치한다.**

5.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가) 요구성능: **건축법 규정에 따른 계단실 출입구 및 복도의 유효너비를 확보하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 유효너비는 1m 이상으로 하며, 복도의 유효너비는 5% 이상 증가한다.**

- 출입구 유효너비는「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 따르며, 복도의 유효너비는 같은 규칙 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를 기준으로 한다.

다. 소음 관련 성능

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가) 요구성능: 역A특성 가중 규준화 바닥충격음레벨(dB)을 48 이하로 하거나, 가중 표준화 바닥충격음레벨(dB)을 41 이하로 한다.

- "경량충격음레벨"이란 공동주택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제2조에 따라 KS F ISO 717-2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 중 "가중 표준화 바닥충격음레벨"을 말한다.
- 상·하층 간 경계바닥구조-화장실, 현관, 발코니(확장한 경우에는 포함) 등의 바닥구조는 제외한다.

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가) 요구성능: 역A특성 가중 규준화 바닥충격음레벨(dB)을 43 이하로 하거나, A특성 가중 최대 바닥충격음레벨(dB)을 41 이하로 한다.

- "중량충격음레벨"이란 공동주택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제2조에 따라 KS F ISO 717-2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 중 "A-가중 최대 바닥충격음레벨"을 말한다.
- 상·하층간 경계바닥구조-화장실, 현관, 발코니(확장한 경우에는 포함) 등의 바닥구조는 제외한다.

3. 세대 간 경계벽 차음성능

가) 요구성능: 차음성능에 의한 평가로서 공기전달음 차단성능 평가치를 63dB 미만으로 하거나, 경계벽 구조에 의한 평가로서 세대간 경계벽체의 두께를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시멘트 모르타르 등 바름두께 포함)는 210mm 이상, 무근콘크리트조·조적조·블록조·석조(시멘트 모르타르 등 바름두께 포함)는 260mm 이상, 조립식 콘크리트판은 180mm 이상으로 한다.

4. 화장실 급배수 소음

가) 요구성능: 화장실 급배수 소음 저감공법 및 설비 채택 점수 합계를 8점 이상으로 한다.

나) 세부요건: 화장실 급배수 소음 저감공법 및 설비 채택 점수는 아래와 같다.

1) 세대별 급수압을 0.245MPa 이하로 유지: 2점

2) 저소음형 변기[1] 채용: 2점

3) 벽체 고정형 변기[2] 채용: 3점

4) 벽체 및 바닥의 배관 관통부, 하부층 배수관 고정부, 욕조 하부 진동절연 시공, 변기 하부 절연시공법 중 1~2개 채택: 1점

5) 벽체 및 바닥의 배관 관통부, 하부층 배수관 고정부, 욕조 하부 진동절연 시공, 변기 하부 절연시공법 중 3개 이상 채택: 2점

6) 오·배수관의 당해 층 배관방식 채택: 5점

7) 저소음형 배수관(배수공법 포함)[3]과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KS M 3404의 VG2)과의 소음레벨 차가 5dB 이상 10dB 미만은 1점, 10dB 이상 15dB 미만은 2점, 15dB 이상 20dB 미만은 3점, 20dB 이상은 4점으로 한다.

8) 배기용 AD(air duct)를 통한 상하층 간 소음전달 방지대책 수립 여부에 따라 소음차단형 배기구[4] 설치는 2점, 독립 급배기관 설치는 3점으로 한다.

* 1) 저소음형 변기란 동일한 장소(공동주택 화장실이나 이와 동등하게 구축된 시험용 주택 화장실) 및 측정조건(배수관, 하부층의 천장마감 등이 동일)에서 사이폰(또는 사이폰제트)형 변기와 비교 측정한 배수 시(급수음은 제외)의 최대 소음도(Lmax) 차가 3dB(A) 이상인 변기를 말하며, 소음도 측정은 변기가 설치된 층에서 실시함.

* 2) 벽체 고정형 변기란 변기용 배수관이 벽을 통해 곧바로 배관 덕트(pipe duct)에 연결된 경우를 말함.

* 3) 저소음형 배수관에는 배관 내에 소음저감을 목적으로 장치나 부품(재료 포함) 등을 설치하는 공법을 포함하며, 동일한 장소(공동주택 화장실이나 이와 동등하게 구축된 시험용 주택의 화장실) 및 측정조건(동일한 변기 타입, 세면대, 욕조 타입(욕실 모든 배수관), 동일한 배수량, 하부층의 천장마감이 없는 상태 등)에서 실시한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KS M 3404)과 측정대상 배수관(공법 포함)과의 최대 소음도(Lmax) 차이로서 판단함.

* 4) 소음차단형 배기구라 함은 동일한 측정조건에서 측정한 일반 배기구와의 소음차단성능 차가 5dB(A) 이상인 배기구를 말함.

라. 에너지 관련 성능

1. 에너지 성능

가) 요구성능: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 평점 합계 85점 이상,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또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66% 이상 절감하는 경우 중 유리한 등급을 적용한다.

2.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가) 요구성능: 세대 전체에 에너지 모니터링 장치와 공용부분에서 소비되는 모든 에너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되, 설치된 장치에 에너지 분석 기능을

포함한다.

가) 세부요건

1)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는 세대의 경우 모든 세대 내, 공용부분의 경우 관리사무소 등에 모니터링 장치를 설치한 경우를 인정한다.

2) 공용부분은 세대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말하며, 상가 등 분양면적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한다.

3) 에너지 모니터링 장치는 전력, 가스, 지역냉난방, 유류 등 사용 에너지원의 에너지 소비량 구분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세대에 설치되는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는 월패드와 같이 필요한 정보를 원활히 표시하고 조작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5) 에너지 분석 기능이란 세대 및 공용부분에서 사용자 또는 관리자가 분석을 위하여 에너지원(비용포함), 사용기간, 시스템별 정보(관제점) 등을 선택 및 지정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설정 기능을 의미한다.

3. 물 사용량 모니터링

가) 요구성능: 건축물 전체에 설치된 물 사용량 측정 계량기의 100%가 환경표지(마크) 인증을 받거나 또는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계량기를 설치하고, 건축물 내 모니터링 장치를 통해서 물 사용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물 사용량 계측기 및 물 소비량을 관리할 수 있는 수돗물 관리 프로그램과 장치를 설치하여 물 소비량을 감시, 관리한다.

마. 환경 관련 성능

1.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가) 요구성능: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 적용기준 점수합계 15점 이상으로 한다.

나) 세부요건: 적용 점수는 아래의 기준으로 산출한다.

실내공기 오염물질	구분 항목		적용부위	적용 점수	추가점수[주2]	
					적용기준의 50% 감소제품	유해물질 감소 인증제품
폼알데하이드(HCHO) 및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주1](TVOC)	최종 마감재	벽체	실내벽면(기둥, 간막이벽 포함)	1.0	0.5	0.5
		천장	천장면	0.5	0.5	0.5
		바닥	바닥면	1.0	0.5	0.5
	접착제	벽체	실내벽면	1.0	0.5	0.5
		천장	천장면	0.5	0.5	0.5
		바닥	바닥면	1.0	0.5	0.5

실내공기 오염물질	구분 항목		적용부위	적용 점수	추가점수[주2]	
					적용기준의 50% 감소제품	유해물질 감소 인증제품
폼알데하이드(HCHO) 및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주1](TVOC)	그 밖의 내장재	벽체	실내벽면(기둥, 간막이벽 포함)	1.0	0.5	0.5
		천장	천장면	0.5	0.5	0.5
		바닥	바닥면	0.5	0.5	0.5
	붙박이 가구	주방	싱크대 등 주방가구	1.0	0.5	0.5
		현관	신발장 등	1.0	0.5	0.5
		침실 및 거실	단순선반 제외	1.0	0.5	0.5
	실란트(실링재)		붙박이 가구	0.5		
			욕실	0.5		
			실내마감재	0.5		
라돈 등 방사능 농도 지수[주3]	천연석 기반 자재		욕실상판,현관바닥재, 주방가구상판(아일랜드 식탁 포함) 등	1.0		

* 주1) 폼알데하이드(HCHO) 및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적용기준은 「건강친화형 건설기준」[별표1] 및 [별표5]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따름

* 주2) 적용점수 외에 추가점수는 적용기준의 50% 감소자재, 유해물질 감소 인증제품을 적용하였을 경우 부여함

* 주3) 라돈 등 방사능 농도 지수 적용기준은「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따름 (방사능 농도 지수(CRa, CTh , CK) 1.0 이하)

2.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가) 요구성능: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별표3]의 효율적인 환기성능의 확보에 적합한 환기설비가 설치하며 단위세대 내에서 실내공기 오염물질*이 측정되고 이에 따른 환기풍량이 자동으로 제어가 되도록 한다.

나) 세부요건

1) 실내공기 오염물질은 초미세먼지(PM2.5) 및 이산화탄소(CO2)를 포함하여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공동주택성능등급의 경우에는 전체 세대가 각 등급에 적합하게 적용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3.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가) 요구성능: 난방장치의 세대별 일괄 가동·정지(on/off)에 대한 시간대별 제어가 가능하거나, 실별로는 시간대별 온도제어가 가능한 온도조절기와 온도조절 밸브 설치한다.

- 각 세대의 실별 또는 난방 존(zone)마다 별도의 실내 온도조절기를 설치한 경우와 각 실에 온도센서를 두고 특정 실에 통합 온도조절기를 설치한 경우를 모두 인정한다.

마. 생활환경 관련 성능

1. 커뮤니티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 수준

가) 요구성능: 주민공동시설을 법적기준면적의 1.10배 이상 설치하고 커뮤니티 공간을 계획한다.

- 커뮤니티 공간면적: 세대 당 0.3㎡ 이상[단, 전체세대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는 0.15㎡/세대 이상]

※ 최소 50㎡ 이상, 최대 400㎡(계산상 400㎡ 이상일 경우에는 400㎡로 인정)

※ 커뮤니티 공간은 근린교제가 가능한 오픈공간으로서, 단지 내 중앙광장, 노천극장, 테마광장 등이 포함된다.

2.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가) 요구성능: 전체 평가항목 중 20개 이상 항목에 해당되도록 한다.

나) 세부요건: 전체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기본항목 2개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인프라 부문

① 세대 및 공용 부문의 제어 및 연동을 위한 세대단말기 설치(기본항목)

② 세대 내 무선 AP 설치

③ 세대 내 IoT 허브 설치

2) 세대부문

2-1) 안전한 삶

① 세대단말기와 스마트홈 애플리케이션과 연동된 현관 도어 카메라 설치(기본항목)

② 세대단말기와 스마트홈 애플리케이션과 연동된 현관 방범센서 설치

③ 세대단말기와 스마트홈 애플리케이션과 연동된 세대 동체감지기 설치

④ 관리서버와 연동된 외부침입 감지센서 설치

⑤ 세대단말기와 스마트홈 애플리케이션과 연동된 주방의 가스 또는 전기 차단 장치 설치

⑥ 세대단말기와 관리서버가 연동된 욕실 비상호출기 설치

⑦ 정전 시 비상전원 장치 설치

2-2) 편리한 삶

① 세대단말기와 연동된 다기능 스마트 스위치 설치

② 세대단말기와 연동된 주차위치 및 날씨정보 스마트 스위치 설치

③ 세대단말기와 연동된 주방TV 설치

④ 세대단말기와 양방향 연동된 양방향 통신 디지털 도어락 설치

⑤ 세대단말기와 스마트홈 애플리케이션과 연동된 학습 및 예측제어 센서 설치

⑥ 세대단말기와 연동된 음성 인식 장치 설치

2-3) 건강한 삶

① 세대단말기와 스마트홈 애플리케이션과 연동된 환경감지기 설치

② 조도, 습도, 동작 등 센서가 적용된 지능형 욕실 팬 설치

③ 세대단말기와 연동된 층간소음 경보장치 설치

2-4) 저에너지 삶

① 세대단말기와 스마트홈 애플리케이션과 연동된 세대 에너지 사용량 원격검침 설치(기본항목)

② 세대단말기와 스마트홈 애플리케이션과 연동된 조명 원격 On/Off 제어기, 일괄소등 스위치 설치

③ 세대단말기와 연동된 조명 디밍 제어 스위치 설치

④ 세대단말기와 스마트홈 애플리케이션과 연동된 난방 제어 설치

⑤ 세대단말기와 스마트홈 애플리케이션과 연동된 냉방 제어 설치

3) 공용부문

3-1) 안전한 삶

① 세대단말기와 관리서버가 연동된 주동 현관통제기 설치(기본항목)

② 세대단말기와 관리서버가 연동된 차량 통제기 설치(기본항목)

③ 관리서버와 연동된 지하주차장 비상벨 통화 장치 설치(기본항목)

④ 관리서버와 연동된 스마트키 원패스 시스템 설치

⑤ 관리서버와 연동된 입주자 위치인식 센서 설치

⑥ 관리서버와 연동된 승강기 내 범죄 예방장치 설치

3-2) 편리한 삶

① 세대단말기와 스마트홈 애플리케이션과 연동된 커뮤니티센터 시설 예약시스템 설치

② 조도, 습도, 동작 등 센서가 적용된 지능형 욕실 팬 설치

③ 세대단말기와 연동된 층간소음 경보장치 설치

④ 세대단말기와 스마트홈 애플리케이션과 연동된 무인택배함 설치

3-3) 건강한 삶

① 세대단말기와 스마트홈 애플리케이션과 연동된 단지 공기질 측정기 설치

3-4) 저에너지 삶

① 지하주차장 LED 조도 제어장치 설치(기본항목)

② 세대단말기와 스마트홈 애플리케이션과 연동된 전기차 충전시스템 설치

③ 관리서버와 연동된 에너지저장시스템 설치

3. 방범안전 콘텐츠

가) 요구성능

1) 비상사태 알림은 세대 단말기 비상경보* 설치하고 세대단말기·관리소(경비실) 자동통보와 휴대폰 자동통보가 가능하도록 한다.

* 세대 단말기 비상경보는 세대 내에 설치된 비디오폰 또는 월패드의 비상버튼기능 조작 시 세대 단말기 및 관리소(경비실 포함)에 경보를 발하는 것을 말한다.

2) 외부인 출입통제는 세대현관 방문자 영상확인이 가능하며 주동 방문자 영상확인, 부재중 방문자 녹화와 방문차량 통보가 가능하도록 한다.

4.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가) 요구성능: 준공도면* 및 준공서류**, 정기점검 목록에 의거한 정기점검 문서***를 제공하고, 운영·유지관리 매뉴얼 중 7개 항목 이상을 제공한다.

*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소방설비, 조경, 토목 등

** 지질조사보고서, 구조계산서, 시방서 등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근거한 정기점검 매뉴얼

나) 세부요건: 운영·유지관리 매뉴얼의 전체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옥상방수의 유지관리 매뉴얼

2) 건축물의 구조체·비내력벽체의 유지관리 매뉴얼

※ 건축물 운영·유지관리 매뉴얼에는 현황, 점검방법, 상시유지관리 점검사항, 해당업체(공사참여자, 설비 설치업체 등), 유지관리 담다자의 연락처를 포함하여야 한다.

3) 냉난방열원 및 급탕설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매뉴얼

4) 승강기, 외부조명기기, CCTV, 주차관제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매뉴얼

5) 조명설비 및 조명기기에 관한 유지관리 매뉴얼

6) 조경 관련 유지관리 매뉴얼

7) 급수 및 배수시설(우수, 중수 포함)의 유지관리 매뉴얼

8) 지하주차장 및 공용부분에 대한 결로 유지관리 매뉴얼

9)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관리 매뉴얼

10)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시설 유지관리 매뉴얼

11) 소방 및 소화설비 유지관리 매뉴얼

5. 사용자 매뉴얼 제공

가) 요구성능: 사용자 매뉴얼 중 6개 항목 이상을 제공한다.

※ 사용자 매뉴얼은 점검, 고장감지 및 교체방법, 효율적인 운전방법 등과 유지관리, 보수 점검 주기에 기초한 정기적인 예방보전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세부요건: 사용자 매뉴얼의 전체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 구조체(내력벽/비내력벽), 기둥의 위치, 치수 등이 포함된 단위세대 설계도
2) 난방(냉방)·급탕·가스설비 등 사용자 매뉴얼
3) 급수, 배수, 위생 등 사용자 매뉴얼
4) 조명 및 전기설비 등 사용자 매뉴얼
5) 정보통신설비 등 사용자 매뉴얼
6) 공동주택에서의 안전 및 생활에티켓 관련지침(소화시설사용법, 피난방법, 쓰레기처리방법 등)
7) 층간소음 대처 관련 지침

바. 건축물 주동 및 단위세대 관련 성능

1) 단열 및 보온성능

① 단열재 및 보온재는 내화성, 내구성 및 내부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내습 및 내수가 가능한 재료로서 같은 종류가 있을 경우에는 상급품을 사용해야 한다.

②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66호)에 정한 성능 이상의 기자재(창호 등)로 설계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04호)에 따라 틈새바람에 의한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는 거실 부위에는 기밀성 창 및 문을 사용한다.

④ 창 및 문의 종류에 따라 창 및 문의 단열성능은 아래 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창 및 문의 단열성능 (단위: W/㎡·K)

창 및 문의 종류			창틀 및 문틀의 종류별 열관류율								
			금속재						플라스틱 또는 목재		
			열교차단재[1]미적용			열교차단재 적용					
유리의 공기층 두께[mm]			6	12	16 이상	6	12	16 이상	6	12	16 이상
창	복층창	일반복층창[2]	4.0	3.7	3.6	3.7	3.4	3.3	3.1	2.8	2.7
		로이유리(하드코팅)	3.6	3.1	2.9	3.3	2.8	2.6	2.7	2.3	2.1
		로이유리(소프트코팅)	3.5	2.9	2.7	3.2	2.6	2.4	2.6	2.1	1.9
		아르곤 주입	3.8	3.6	3.5	3.5	3.3	3.2	2.9	2.7	2.6
		아르곤 주입+로이유리(하드코팅)	3.3	2.9	2.8	3.0	2.6	2.5	2.5	2.1	2.0
		아르곤 주입+로이유리(소프트코팅)	3.2	2.7	2.6	2.9	2.4	2.3	2.3	1.9	1.8

창 및 문의 종류				창틀 및 문틀의 종류별 열관류율								
				금속재						플라스틱 또는 목재		
				열교차단재[1]미적용			열교차단재 적용					
유리의 공기층 두께[mm]				6	12	16 이상	6	12	16 이상	6	12	16 이상
창	삼중창	일반삼중창[2]		3.2	2.9	2.8	2.9	2.6	2.5	2.4	2.1	2.0
		로이유리(하드코팅)		2.9	2.4	2.3	2.6	2.1	2.0	2.1	1.7	1.6
		로이유리(소프트코팅)		2.8	2.3	2.2	2.5	2.0	1.9	2.0	1.6	1.5
		아르곤 주입		3.1	2.8	2.7	2.8	2.5	2.4	2.2	2.0	1.9
		아르곤 주입+로이유리(하드코팅)		2.6	2.3	2.2	2.3	2.0	1.9	1.9	1.6	1.5
		아르곤 주입+로이유리(소프트코팅)		2.5	2.2	2.1	2.2	1.9	1.8	1.8	1.5	1.4
	사중창	일반사중창[2]		2.8	2.5	2.4	2.5	2.2	2.1	2.1	1.8	1.7
		로이유리(하드코팅)		2.5	2.1	2.0	2.2	1.8	1.7	1.8	1.5	1.4
		로이유리(소프트코팅)		2.4	2.0	1.9	2.1	1.7	1.6	1.7	1.4	1.3
		아르곤 주입		2.7	2.5	2.4	2.4	2.2	2.1	1.9	1.7	1.6
		아르곤 주입+로이유리(하드코팅)		2.3	2.0	1.9	2.0	1.7	1.6	1.6	1.4	1.3
		아르곤 주입+로이유리(소프트코팅)		2.2	1.9	1.8	1.9	1.6	1.5	1.5	1.3	1.2
	단창			6.6			6.10			5.30		
문	일반문	단열 두께 20㎜ 미만		2.70			2.60			2.40		
		단열 두께 20㎜ 이상		1.80			1.70			1.60		
	유리문	단창문	유리비율[3] 50%미만	4.20			4.00			3.70		
			유리비율 50%이상	5.50			5.20			4.70		
		복층창문	유리비율 50%미만	3.20	3.10	3.00	3.00	2.90	2.80	2.70	2.60	2.50
			유리비율 50%이상	3.80	3.50	3.40	3.30	3.10	3.00	3.00	2.80	2.70

* 1) 열교차단재 : 열교 차단재라 함은 창 및 문의 금속프레임 외부 및 내부 사이에 설치되는 폴리염화비닐 등 단열성을 가진 재료로서 외부로의 열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재료를 말한다.

* 2) 복층창은 단창+단창, 삼중창은 단창+복층창, 사중창은 복층창+복층창을 포함한다

* 3) 문의 유리비율은 문 및 문틀을 포함한 면적에 대한 유리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 창 및 문을 구성하는 각 유리의 공기층 두께가 서로 다를 경우 그 중 최소 공기층 두께를 해당 창 및 문의 공기층 두께로 인정하며, 단창+단창, 단창+복층창의 공기층 두께는 6mm로 인정한다.

※ 창 및 문을 구성하는 각 유리의 창틀 및 문틀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열관류율이 높은 값을 인정한다.

※ 복층창, 삼중창, 사중창의 경우 한면만 로이유리를 사용한 경우, 로이유리를 적용한 것으로 인정한다.

※ 삼중창, 사중창의 경우 하나의 창 및 문에 아르곤을 주입한 경우, 아르곤을 적용한 것으로 인정한다.

2) 방수성능

① 건축물의 어느 부분 및 어느 부위에서도 누수 및 흡수가 되지 않아야 한다.

② 구조체의 신축, 균열, 산성비 등에 견딜 수 있는 방수재료를 선택하여 충분한 내구성과 내식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배수는 가장 신속하고 안전한 경로를 채택하고, 배수구 및 배수관의 수와 크기는 일부가 막히더라도 넘쳐흐르지 않도록 충분한 여유를 감안하여 설계해야 한다. 또한 최대 강우량(국지성 집중호우)를 고려하여 설계에 적용하되 최단 시간에 배수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각종 배수로 및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의 경우는 완벽한 방수 처리로 여타의 장소에 물이 흐르지 않도록 한다.

⑤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폭설·기습한파 등을 고려하여 배수로, 트랜치, 맨홀, 외벽단열, 스노우멜팅 등 적절한 안전시설을 구축하도록 계획한다.

⑥ 구조물 상부에 수목 등이 식재되는 경우에는 충분한 방근 기능이 반영되어야 한다.

3) 결로방지성능

① 건축물 및 구조물에 결로방지 구조로 표면결로 및 내부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지하층, 창호, 벽체접합부, 모서리 등의 결로방지에 유의한다. 또한 단열설계 보강, 적절한 환기성능 유지 등의 기법으로 결로 방지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4) 단위세대 반자높이

① 세대 내 각 실 반자높이의 가장 낮은 부분은 2.4m 이상으로 계획한다.

사. 주차장 관련 성능

1) 지하 주차장 입구 주변에는 학원차, 방문차 등을 위해 회차로를 계획한다.

2) 지하 주차장 입구 높이는 택배차량 등이 진·출입 및 조업할 수 있도록 2.7미터 이상으로 계획한다.

3) 주차단위구획은 승·하차 편리 및 문콕 방지 등을 위해 기둥 배치를 최적화하고,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으로 계획한다.

4) 주차구획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를 위해 주차유도시스템을 계획한다.

아. 기타 조합이 요구하는 성능

- 건축물 내·외 마감재 수준 및 리스트, 외부공간의 디자인 및 재료 등

[별표 2]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

입찰 안내서

20 . .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조합

- 목 차 -

Ⅰ. 일반사항

Ⅱ. 시공자 선정 입찰 참여규정

Ⅲ. 정비구역 현황

Ⅳ. 입찰제안서 작성 기준

※ 서식1 - 입찰참여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과 동일]

※ 서식2 - 입찰제안서 [별지 제4호서식과 동일]

※ 서식3 - 입찰참여견적서(밀봉)

※ 서식4 - 입찰안내서에 대한 공람확인서

※ 서식5 - 건설업자등 홍보 지침 및 준수 서약서

※ 서식6 - 이행각서

※ 서식7 - 회사소개서

Ⅰ. 일 반 사 항

1. 지침의 성격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사업참여 및 입찰에 필요한 제안서인 동시에 총회에서 선정된 시공자와의 계약 등을 이행하는 데 기준이 되는 지침서이다.

2. 입찰참여자격

가. 입찰보증금 원(금○○○○○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나.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다.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라. 면허에 관한 사항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2)「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3) (1)에 해당하는 자가 (2)의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 가능

(4) 각각의 면허를 만족하는 업체간 공동도급 가능

마. 개별홍보 등 입찰참여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입찰참여 자격이 박탈됨.

3. 시공자 선정 추진일정

가. 입찰공고 : 20 년 월 일 (요일)

나. 입찰안내서 배부 (현장설명회시)

- 일 시 : 20 년 월 일 (요일) 00:00(오후 시)
- 장 소 : 조합 사무실 (☎ :)

다. 입찰제안서 접수 마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제안서 접수)

(1) 제출시한 : 20 년 월 일(요일)00:00까지 (우편접수 불가)

(2) 장 소 : 조합 사무실(※ 입찰제안서 이외 입찰부속서류 등 방문접수)

라. 시공자 선정 방법

(1) 입찰방법 :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

(2)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하 "계약업무 처리기준"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장이 고시한「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이하 "시공자 선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름.

Ⅱ. 시공자 선정 입찰 참여 규정

【제 1 조】 총 칙

1. 이 규정은 조합이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구 ○○동 ○○ 번지 일대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규정은 제1호의 정비사업의 입찰제안서 작성·입찰참여 자격에 관한 사항 및 시공자 선정을 위한 기준이 된다.
3. 이 사업의 계획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결정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4. 이 규정 및 낙찰자의 제출서류는 해당 사업의 성격과 업무범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시공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5.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및 정관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자”라 함은 해당 조합을 말한다.
2. “입찰자”라 함은 이 규정에서 제시된 자격 조건을 갖추고, 시공입찰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3. “낙찰자”라 함은 입찰자 중 발주자의 총회에서 선정되어 시공계약의 우선권이 부여된 자를 말한다.
4. “예정가격”이란 발주자인 조합이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한 공사원가 범위 안에서 입찰공고 시 공표한 입찰금액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제 3 조】 입찰참여 신청 서류

입찰자는 발주자가 지정한 기간 안에 다음 각 호의 입찰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여 신청서 1부
2. 입찰제안서 1부
   가. 입찰참여 견적서 1부(밀봉)
   나. 입찰안내서에 대한 공람확인서 1부
   다. 건설업자등 홍보 지침 및 준수 서약서 1부

라. 이행각서 1부
마. 회사소개서 1부
바. 공사비총괄내역서 1부(화일첨부, 밀봉)
사. 대안계획서 1부(필요시, 밀봉)
아. 법인인감증명서 1부
자. 법인등기부 등본 1부
차.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카. 재무제표(최근 2년간) 1부
타. 입찰보증금 예치 확인자료 및 환급받을 통장 사본 각 1부
파. 법인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도장 지참(단, 사용인감도장인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제 4 조】 입찰제안서 및 입찰참여견적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입찰제안서는 발주자가 배부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입찰제안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이 필요한 경우 입찰마감 전까지 수정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에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사용인감 가능)
3. 입찰제안서의 금액 표시는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된 숫자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것에 따른다.
4. 입찰제안서의 제출시 입찰참여견적서는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입찰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고 발주자에게 귀속한다.
6. 입찰제안서 제출시 발주자가 배부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가 무상제공계획서 또는 대안설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된 계획서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발주자에게 귀속되며,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설계변경시 응용 및 활용될 수 있다.

【제 5 조】 입찰의 참가자격 제한 및 무효

1.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때
2.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금액을 제시한 업체
3. 현장설명회 후 개별 홍보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때
   - 시공자 선정기준 제10조 규정을 위반하여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및 입찰 무효 등에 관한 사항 포함

4. 입찰제안서의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날인을 누락한 업체
5. 담합·타사의 참여 방해 또는 발주자의 입찰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가 속한 업체
6. 이행각서의 내용을 위반한 때
7. 입찰안내서에 따른 참여규정(제한사항) 및 제반 조건을 위반한 때
8. 현장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입찰안내서를 미수령한 업체
9. 우편 또는 FAX로 접수된 입찰제안서
10.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구비서류가 누락된 입찰제안서
11. 2개 이상의 상이한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회사
12. 입찰제안서 제출후 제안내용과 다르게 홍보한 업체
13.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9조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 제공을 제안한 업체

【제 6 조】 입찰의 연기 및 재입찰

1. 발주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공고(내용증명) 또는 입찰안내서에 기재된 입찰제안서 제출마감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가. 입찰자의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
   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회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2. 발주자는 제1호에 따라 입찰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연기 사유와 기간을 포함하여 재공고 또는 서면통지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입찰을 하여야 한다.
   가. 입찰자가 없는 경우
   나. 발주자가 제시한 입찰참여조건과 입찰자의 제안내용이 현격한 차이가 있어 재입찰이 불가피한 경우

【제 7 조】 시공자 선정방법

1. 투표용지의 기호 순번은 입찰제안서 제출 순서에 따른다.
2. 시공자 선정은 총회에서 조합원의 비밀투표에 따라 선정한다.
3. 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시공자 선정기준 등이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선정한다.
4. 일반경쟁입찰의 경우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2인 미만인 경우 재공고 한다. 다만, 미응찰 또는 단독응찰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할 수 있다.
5. 지명경쟁입찰의 경우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3인 미만인 경우 재공고 하거

나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하고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한다.

6. 입찰자는 발주자가 주관하는 합동홍보설명회 이외의 개별홍보를 할 수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 고시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4조 제4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조합이 제공한 개방된 형태의 홍보공간에서는 조합에 미리 등록된 홍보직원에 한하여 조합원 등에게 홍보할 수 있다.

【제 8 조】 계약체결

1. 낙찰자는 총회에서 선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제1호에 따른 기간 안에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당해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 9 조】 입찰제안서 제출 및 입찰 서류 확인

1. 입찰자는 이 규정과 입찰제안서 작성기준에 따라 입찰제안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입찰 마감 이후 입찰제안서 일체를 개봉하되, 입찰제안서 중 입찰참여견적서 개봉 시기는 발주자가 입찰참여 업체에 추후 통지하여 건설업자등의 대표(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 1인과 조합임원 및 기타 이해 관계인이 참여한 가운데 개봉하여 확인·날인 한다.
3. 개봉된 입찰참여견적서의 원본은 해당 입찰자가 모두 인감 날인 후 발주자의 책임하에 보관·관리한다.

【제 10 조】 건설업자등의 개별홍보 금지

1. 발주자는 대의원회에서 총회에 상정할 입찰자로 결정된 건설업자등의 합동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최초 합동홍보설명회 개최 이후 건설업자등의 신청을 받아 정비구역 내 또는 인근에 개방된 형태의 홍보공간을 1개소 제공하거나, 건설업자등이 공동으로 마련하여 한시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공간 1개소를 홍보공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시공자 선정기준 제10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 등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 사은품 제공 등을 한 행위가 1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여자의 입찰은 무효로 본다.
4. 발주자는 합동홍보설명회의 개최 일시·장소 및 방법 등을 설명회 개최 7일 전까지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1 조】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은 입찰제안서 제출 전까지 발주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원으로 한다.
   - 금융기관 : 은행
   - 예 금 주 :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조합
   - 계좌번호 :
2. 입찰보증금은 시공자의 담합 또는 홍보지침 미준수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입찰참여자격의 박탈 등 발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또는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총회에서 선정이 무효로 된 경우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3. 발주자는 대의원회 또는 총회 개최 후 입찰자가 예치한 입찰보증금을 14일 이내 환급하되,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환급한다. 이 경우 예치기간중 발생한 이자는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제 12 조】 관계사항의 숙지 등

1. 입찰자는 입찰안내서 등 입찰참여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제안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시 입찰안내서에 대한 공람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2.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입찰참여 규정 등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법·령, 계약업무 처리기준, 시공자 선정기준 및 정관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입찰자는 입찰안내서 등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에 서면으로 질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은 서면으로 입찰자 모두에게 유권해석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조합임원 등이 개인적인 의견으로 답변한 내용은 효력이 없다.

Ⅲ. 정비구역 현황

1. 일반현황

가. 사 업 명 :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번지 일대

다. 시행면적 : ㎡

라. 기존건축물 동수 :

마. 거주가구 및 인구 :

바. 용도지역 :

사. 조합원수 : 명

2. 정비계획

가. 건축시설

- 대지면적 : ㎡
- 주 용 도 :
- 건축면적 : ㎡(건폐율 %)
- 건축연면적 : ㎡(용적률 %)
- 층수 및 동수 :
- 주택규모별 건설세대수(전용면적 기준)

공급구분	동수	세대수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					
합계								
분양								
임대								

나. 정비기반시설

시설구분	도로			공원		녹지	공용 주차장	공공 공지	비고
	대로	중로	소로						
시설규모									

Ⅳ. 입찰제안서 작성 기준

1. 입찰제안서는 발주자가 제시한 설계도서에 대하여 입찰자들이 제안하는 공사비 및 이주비 산출내역을 동일한 기준에서 공정하게 비교하고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발주자가 배부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사비 산출내역
   총액입찰 경우 입찰참여자는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비총괄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입찰 경우 입찰참여자는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비 대여에 관한 사항
   입찰자가 사업비를 대여할 수 있는 총액·이율 및 대여조건을 기재하되 발주자가 제시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항목별로 구분하여 조건을 명시할 수 있고, 담보물 제공에 따른 설정비용 부담사항까지 표기하여야 한다.
4. 이주기간(발주자가 시공자의 업무범위에 이주를 포함한 경우에 한함)
   이주기간을 제시한다.
5. 공사기간
   가. 이주 완료 후 철거공사, 부지조성( )개월(철거 및 잔재처리 포함) 이내로 한다.
   나. 착공 후 준공 시까지 ( )개월 이내로 한다.
   다. 공사기간은 총 ( )개월 이내로 한다.
6. 금리기준
   사업비 대여이자와 연체이자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7. 대안설계제안에 관한 사항
   가.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9조제3항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등이 대안설계를 제안하는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정비계획의 범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및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허용하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최고 높이의 확대, 정비구역 면적의 증가 및 정비기반시설의 변경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내에서 제안할 수 있으며, 입찰참여자는 조합이 작성한 원안설계와 비교할 수 있도록 원안 공사비 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대안설계는 조합이 작성한 원안설계와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기능 및 효과가 있고, 공기단축 또는 비용절감이 가능한 설계이며, 입찰참여자는 설계도면, 수량산출서 및 산출내역서,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 입찰서와 대안설계 설명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조합총회에서 선정된 시공자가 계약 체결 후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 이 기준에 따라 입찰참여자가 대안설계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원안이 아닌 대안설계 제안내용으로 해당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보며, 예정가격의 범위 안에서 입찰금액을 제안하여야 한다.

라. 대안설계를 제안한 입찰참여자가 시공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입찰서에 포함된 설계도서, 물량 및 산출내역서,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 입찰제안 내용에 대한 시공내역을 반영하여 조합과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서식1 >

<접수번호 : 제 호>

입찰참여 신청서

입찰참여자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팩스번호	

귀 조합에서 실시하는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에 관한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 입찰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장 귀중

<접수번호 : 제 호>

입찰참여 확인서

접수번호	제 호	접수자 확인	(인)
업체명		대표자	
제출자		전화번호	

당 조합에서 실시하는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장 ○○○ (인)

< 서식2 >

입 찰 제 안 서

입찰공고번호	제20 - 호	입 찰 일 자	20 년 월 일
입 찰 건 명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		
사업발주방식	도급제(지분제)		
전용면적별 건축 아파트세대/ 부대복리시설	㎡ - 세대 (임대) ㎡ - 세대 부대복리시설 동 ㎡	㎡ - 세대 ㎡ - 세대	
공 사 기 간			

당사는 귀 조합의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제안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같이 제출합니다.

구비서류 : 1. 입찰참여 견적서 1부(밀봉)
2. 입찰안내서에 대한 공람확인서 1부
3. 건설업자등 홍보 지침 및 준수서약서 1부
4. 이행각서 1부
5. 회사소개서
6. 공사비총괄내역서 1부(화일첨부, 밀봉)
7. 대안설계계획서 1부(필요시, 밀봉)
8. 법인인감증명서 1부
9. 법인등기부 등본 1부
10.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1. 재무제표(최근 2년간) 1부
12. 입찰보증금 예치 확인자료 및 환급받을 통장 사본 각 1부
13. 법인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도장 지참(단, 사용인감도장인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20 . . .

입찰참여신청자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서식3 >

입찰참여 견적서

구 분			입찰조건 및 작성기준	비고
회사 일반 사항	업체명			
	시공능력 평가순위			
	신용등급/부채비율			
	정비사업 준공실적			
공사 금액	원안	순공사비	철거비 포함	산출내역서, 수량산출서 등 첨부
		제경비		
		총공사비	VAT 포함	
	대안	순공사비	철거비 포함	설계도면, 산출내역서, 수량산출서,대안설명서 등 첨부
		제경비		
		총공사비	VAT 포함	
사업비 대여	대여자금(원)		원 이상	조합은 항목별 세분 가능
	금리조건			
	상환조건			
청산 방법	부담금 납부시점/방법		예)계약:중도:입주 =20%:60%:20% 기준	금융비용 제시
	환급금 지급시점/방법			
공사 도급 조건	물가상승에 따른 설계변경 여부		변경 여부와 변경시 기준일 기재	
	지질여건 변동시 설계변경 여부			
	착공시기		이주 완료 후 개월 이내	
	공사기간		착공 후 개월 이내	
	공사비 지급방법		기성/분양	
분양책임/조건				
시공자 책임에 따른 공사지연시 보상 조건				
사실 확인			당사의 입찰제안내용과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를 조합에 제출합니다. 만약 허위 사실을 작성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당사에 있음을 서약합니다. 업체명 : (인) (법인 인감)	

※ 입찰참여자는 공사금액 항목 중 원안인지, 대안으로 제시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서식4 >

입찰안내서에 대한 공람 확인서

당사는 귀 조합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귀 조합이 작성, 제시한 입찰참여 안내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였기에 이에 공람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확인자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 귀중

< 서식5 >

건설업자등 홍보 지침 및 준수 서약서

당사는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아래 사항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귀 조합에서 입찰 지위 및 선정된 시공자의 지위를 박탈하여도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아울러 아래 사항을 위반하여 귀 조합이 시공자를 적법하게 선정하지 못하거나, 총회를 다시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 당사는 귀 조합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해 지출한 제반비용의 부담 및 이에 따른 조합의 손실을 배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 홍보 관련 준수사항 및 위반시 제재조치

연번	구 분	준 수 사 항	제 재 조 치
1	합동설명회	·1차 : 20 년 ○월 ○일(○) 오후 ○시 ·2차 : 20 년 ○월 ○일(○) 오후 ○시 ·회사소개 및 홍보동영상 : 20분 이내 ·홍보인원 : 회사별 5명 이내 (해당 명단과 증명사진을 조합에 제출)	·합동설명회 이외 개별홍보 활동 일체금지(적발시 입찰참가 무효) ·조합에 등록된 인원 외의 홍보자 적발시 입찰자격 또는 시공자 자격 박탈 - 입찰보증금 조합 귀속
2	시공사 선정 총회일	각사 화환 설치 불가. 총회 당일 전단지·홍보물 배포 및 현수막 설치 금지. 무대·파라솔·천막 및 가설물 등 설치 일체금지	·임원,공공지원자등 감시단 통제에 불응할 경우, 입찰자격 박탈 - 입찰보증금 조합 귀속
3	홍보물	·홍보물(카다로그) 1종 : 40쪽 이내 (표지포함) ·전단지 1종 : 국전 양면 ·크기 : A4 규격(반드시 준수) ·수량 : 400매 (조합원 우편물 발송용) ·합동설명회 및 총회시 A.V 시스템은 각사 준비	·홍보물은 조합이 지정한 날까지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합동설명회 전까지 조합에 신고된 것만 인정하고, 임의 변경시 입찰자격 박탈 - 입찰보증금 조합 귀속

연번	구 분	준 수 사 항	제 재 조 치
4	현수막 설치	·현수막 설치 및 홍보물 부착 일체금지	·적발시 입찰무효 및 선정 자격 박탈 - 입찰보증금 조합 귀속
5	허위과장 홍보 및 상호비방, 허위사실 유포금지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홍보물 제작 금지 ·경쟁사를 비방하는 행위 금지 ·타사를 가장하는 홍보활동 금지	·타사를 가장하여 고의로 자격박탈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입찰참여 및 시공자 자격 박탈 - 입찰보증금 조합 귀속
6	부정행위	·금품살포 및 이권약속 금지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일체 행위 금지	·적발시 입찰무효 및 선정 자격 박탈 - 입찰 보증금 조합 귀속
7	기 타	·모델하우스,무대,파라솔,천막 및 가설물 등 설치 일체금지(조합이 제공하는 개방된 형태의 홍보공간 1개소는 예외로 함)	·적발시 입찰무효 및 선정 자격 박탈 - 입찰 보증금 조합 귀속
8	공통사항	·홍보활동과 관련하여 문의할 내용이 있을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만 할 수 있음 ·타사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본 조합에 제재조치를 요구하고자 할 경우, 서면의 방법으로 하되 반드시 증거자료(사진,녹취,동영상 촬영 등)를 첨부해야 함. ·조합은 제출된 위반행위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시공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중요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년 월 일

위 확약인 업체명 :

대표자 : (인감)

주 소 :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 귀중

< 서식6 >

이 행 각 서

귀 조합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입찰참여를 신청함에 있어 시공자로 선정되기 전이나 선정된 후에도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귀 조합에서 정한 결정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를 것을 약속하여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1. 제출된 모든 서류에 하자가 있거나 보완의 필요성이 있어 조합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요구하는 지정 기간일까지 어김없이 이행하겠음.
2. 홍보시에는 기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 범위 안에서만 홍보하고, 기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을 변경하는 등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음.
3. 다른 참여업체를 비방하거나 관련 업무를 방해하지 않겠음.
4. 외부인을 고용하거나 관계인으로 하여금 유언비어 유포, 상호비방, 과대선전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음.
5. 어떠한 경우에도 임원, 대의원, 조합원을 상대로 향응을 제공하거나 금전 등을 일절 제공하지 않겠음.
6. 낙찰에 관계없이 조합의 결정사항을 이의없이 따르겠음.
7. 총회에서 시공자로 선정된 후 공사 시공을 이행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합이 차순위 계약상대자와 약정을 체결하여도 이의없이 따르겠음.
8. 입찰지침서 상의 입찰보증금 처리 규정에 따라 이의없이 이행하겠음.
9. 시공자 선정과정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및 서울특별시장이 고시한「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과 귀 조합에서 제시한 입찰참여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조합의 결정에 이의없이 따르겠음.

첨부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용도 기입요망 :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조합 시공자 선정관련 이행각서용)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 귀중

< 서식7 >

회사 소개서

□ 회사(업체)명 :

○ 경영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근 3년간 경영실적			비 고
	년	년	년	
총 자 산				
자본총계				
부채비율				
매 출 액				
순 이 익				

○ 시공능력 평가 순위(도급순위)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근 3년간 경영실적			비 고
	년	년	년	
순 위				
평가액				

○ 정비사업 실적(최근 3년간)

사업명	대지면적	총연면적	건립세대수	착공/준공일	비 고

첨부 : 증빙서류 각 1부

<별지 제1호서식>

공 사 비 총 괄 내 역 서(예 시)

공 사 비 총 괄 표

비목		요율	건축공사				건축 소계	전기	통신	소방 (기계+전기)	총 합계	평당 공사비	구성비	비고
			건축	기계설비	토목	조경								
순공사원가	재료비													
	노무비													
	경 비													
계														
일반관리비, 이윤 등														
공급가액														
부가세														
도급공사비														
이설비 등														
총 공사비														

※ 비목 구성은 예시로써 사업장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 가능.
※ 조합이 별도로 발주하는 사업비는 제외.

직접비 집계표

1. 건축공사

구분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평당공사비
예시) 1블록, 2블록 또는 101동, 102동 또는 지상층 및 지하층 등					

2. 토목공사

구분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평당공사비

3. 조경공사

구분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평당공사비

4. 기계공사

구분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평당공사비

5. 전기공사

구분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평당공사비

6. 통신공사

구분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평당공사비

7. 기계소방공사

구분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평당공사비

8. 전기소방공사

구분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평당공사비

※ 공사비총괄표에 따른 공종별 직접비(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집계표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
※ 직접비 집계표의 구분란은 블록별, 동별, 지상층 및 지하층별로 구분하여 각각 작성 및 제출할 것.

<별지 제2호서식>

<접수번호 : 제 호>

입찰참여 의향서

귀 조합에서 실시하는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에 관한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귀 조합에서 정한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합니다.

참여 건설업자등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팩스번호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 귀중

<접수번호 : 제 호>

입찰참여 의향서 접수증

당 조합에서 실시하는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과 관련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입찰참여의향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접수번호	제 호	접수자 확인	(인)
업체명		대표자명	

년 월 일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장 ○○○ (인)

<별지 제3호서식>

<접수번호 : 제 호>

입찰참여 신청서

입찰참여자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팩스번호	

귀 조합에서 실시하는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에 관한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 입찰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장 귀중

<접수번호 : 제 호>

입찰참여 확인서

접수번호	제 호	접수자 확인	(인)
업체명		대표자	
제출자		전화번호	

당 조합에서 실시하는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장 ○○○ (인)

<별지 제4호서식>

입 찰 제 안 서

입찰공고번호	제20 - 호	입 찰 일 자	20 년 월 일
입 찰 건 명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		
사업발주방식	도급제(지분제)		
전용면적별 건축 아파트세대/ 부대복리시설	㎡ - 세대 (임대) ㎡ - 세대 부대복리시설 동	㎡ - 세대 ㎡ - 세대 ㎡	
공 사 기 간			

당사는 귀 조합의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제안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같이 제출합니다.

구비서류 : 1. 입찰참여 견적서 1부(밀봉)
2. 입찰안내서에 대한 공람확인서 1부
3. 건설업자등 홍보 지침 및 준수서약서 1부
4. 이행각서 1부
5. 회사소개서
6. 공사비총괄내역서 1부(화일첨부, 밀봉)
7. 대안설계계획서 1부(필요시, 밀봉)
8. 법인인감증명서 1부
9. 법인등기부 등본 1부
10.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1. 재무제표(최근 2년간) 1부
12. 입찰보증금 예치 확인자료 및 환급받을 통장 사본 각 1부
13. 법인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도장 지참(단, 사용인감도장인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20 . . .

입찰참여신청자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별지 제5호서식>

입찰제안서 비교표

구 분			기호1	기호2	기호3	비고
회사 일반 사항	업체명					
	시공능력 평가순위					
	신용등급/부채비율					
	정비사업 준공실적					
공사 금액	조합 작성 설계서 기준 (원안)	순공사비				철거 포함
		제경비				
		총공사비				VAT 포함
	대안계획 (원설계의 대안)	순공사비				철거 포함
		제경비				
		총공사비				VAT 포함
사업비 대여	대여자금(원)					
	금리조건					
	상환조건					
청산 방법	부담금 납부시점/방법					
	환급금 지급시점/방법					
공사 도급 조건	물가상승에 따른 설계변경 여부					
	지질여건 변동시 설계변경 여부					
	착공시기					
	공사기간					
	공사비 지급방법					

구 분	기호1	기호2	기호3	비고
분양책임/조건				
시공자 책임에 따른 공사지연시 보상조건				
사실 확인	본 입찰제안서 비교표는 각 사에서 제출한 입찰제안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입찰제안서 등 일체 서류와 상이하지 않음을 확인 합니다.			
	(인)	(인)	(인)	
	○○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장 ○○○ (인) (법인 인감)			

(주1) 조합은 해당 정비구역의 여건 등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및 이 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수정·보완할 수 있다.

(주2) 조합은 대안설계계획에 대한 세부 자료를 포함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3500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 및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지방세징수법」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독촉 및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이 되지 않은 송달 불능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 및 부과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도로법』 제1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가.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성 명	주 소		
이정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아산로 **8번길 *9, *동**2호(서창동)	일시 : 2023-07-19 18:15 장소 : 서울시 양재동 양재대로 내용 : 차량의 폭 제한 0.12미터 초과	과태료 : 30만원

나.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성 명	주 소		
문홍식	충청남도 논산시 계백로 ***6번길 *8-*(지산동)	일시 : 2023-11-04 21:45 장소 : 서울시 장지동 동부간선도로 내용 : 차량의 폭 제한 0.28미터 초과	과태료 : 30만원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성 명	주 소		
김우연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부토로 **3번길 *7, *동 **4호(작전동)	일시 : 2023-10-10 12:00 장소 : 서울시 논현동 봉은사로 내용 : 차량의 축하중 제한 1.4톤 초과	과태료 : 50만원
이상호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호국로 ***5-*4, **2동 **6호(신북면)	일시 : 2023-10-16 00:23 장소 : 서울시 장지동 동부간선도로 내용 : 차량의 폭 제한 0.28미터 초과	과태료 : 30만원
양광일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0길 *0-*0, **1호(오금동)	일시 : 2023-10:26 14:10 장소 : 서울시 대치동 테헤란로 내용 : 차량의 축하중 제한 1.2톤 초과	과태료 : 50만원

4.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납부기한: 2024.1.31.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가.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고 75%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과태료 부과 처분청(이의제기서 제출처)
      - 주 소: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02-2040-0321, 팩스번호: 02-2040-0305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3513호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수시분 부과 공시송달 공고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또는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82조(과태료)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수취거절,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된 과태료 수시분 부과처분 송달 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수시분 부과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별첨
4. 공고기간 : 2023. 12. 28. ~ 2024. 1. 10. (14일간)
 - 공시송달 대상자는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단속되었기에 「철도안전법」 제82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아래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3%의 가산금과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될 예정입니다. 만약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아래의 안내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한: 2024. 1. 11. ~ 2024. 1. 24.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종료일부터 14일
 - 이의제기 기한: 2024. 1. 11. ~ 2024. 3. 11.(60일간)
   ※ 기한 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5. 이의제기 안내
 - 이의제기를 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이의제기 기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출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도시철도과
   F A X: 02-2133-1076
6. 문의처
 -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청 도시철도과(☏02-2133-43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2. 이의신청서 1부. 끝.

철도안전법위반과태료

부과일자2023.12.1./납기2024.1.31

순번	등기번호	반송사유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물건명	과세금액	위반일자
1	1078832733414	기타	4304**-*******	박*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3길	철도종사자지시위반	3,000,000	2023-08-24 22:20
2	1078832733436	기타	4812**-*******	이*희	경기도 시흥시 함송로	이동상인	150,000	2023-08-28 10:23
3	1078832733437	기타	4812**-*******	이*희	경기도 시흥시 함송로	이동상인	150,000	2023-08-03 10:20
4	1078832733438	기타	4812**-*******	이*희	경기도 시흥시 함송로	이동상인	150,000	2023-08-29 11:29
5	1078832733446	기타	4204**-*******	김*업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16길	기부요청	150,000	2023-07-26 13:07
6	1078832733447	기타	4204**-*******	김*업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16길	기부요청	150,000	2023-07-15 08:27
7	1078832733448	기타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115길	이동상인	150,000	2023-07-31 10:33
8	1078832733449	기타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115길	이동상인	150,000	2023-07-29 10:00
9	1078832733450	기타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115길	이동상인	150,000	2023-07-25 13:43
10	1078832733451	기타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115길	이동상인	150,000	2023-07-24 11:00
11	1078832733452	기타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115길	이동상인	150,000	2023-07-25 11:21
12	1078832733453	기타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115길	이동상인	150,000	2023-07-19 11:04
13	1078832733454	기타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115길	이동상인	150,000	2023-07-18 10:52
14	1078832733455	기타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115길	이동상인	150,000	2023-07-15 14:07
15	1078832733456	기타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115길	이동상인	150,000	2023-07-14 10:51
16	1078832733457	기타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115길	이동상인	150,000	2023-07-11 11:02
17	1078832733458	기타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115길	이동상인	150,000	2023-07-10 11:08
18	1078832733459	기타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115길	이동상인	150,000	2023-07-06 13:20
19	1078832733460	기타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115길	이동상인	150,000	2023-07-04 11:05
20	1078832733461	기타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115길	이동상인	150,000	2023-07-29 10:58
21	1078832733462	기타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115길	이동상인	150,000	2023-07-15 10:59
22	1078832733463	기타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115길	이동상인	150,000	2023-07-15 11:47
23	1078832733464	기타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115길	이동상인	150,000	2023-07-13 13:28
24	1078832733465	기타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115길	이동상인	150,000	2023-07-11 10:25
25	1078832733466	기타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115길	이동상인	150,000	2023-07-07 10:44

순번	등기번호	반송사유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물건명	과세금액	위반일자
26	1078832733467	기타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115길	이동상인	150,000	2023-07-03 13:33
27	1078832733468	기타	4811**-*******	김*록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이동상인	150,000	2023-07-29 10:09
28	1078832733469	기타	4811**-*******	김*록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이동상인	150,000	2023-07-25 11:00
29	1078832733470	기타	4811**-*******	김*록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이동상인	150,000	2023-07-30 10:52
30	1078832733471	기타	4811**-*******	김*록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이동상인	150,000	2023-07-29 11:07
31	1078832733472	기타	4811**-*******	김*록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이동상인	150,000	2023-07-13 13:40
32	1078832733473	기타	6610**-*******	김*기	서울시 성북구 월곡로8길	이동상인	150,000	2023-07-10 14:03
33	1078832733474	기타	6610**-*******	김*기	서울시 성북구 월곡로8길	이동상인	150,000	2023-07-13 13:46
34	1078832733475	기타	6610**-*******	김*기	서울시 성북구 월곡로8길	이동상인	150,000	2023-07-13 13:55
35	1078832733476	기타	5206**-*******	김*호	서울시 동대문구 외대역동로12가길	이동상인	150,000	2023-07-29 12:27
36	1078832733477	기타	6501**-*******	박*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64길	이동상인	150,000	2023-07-12 10:30
37	1078832733479	기타	5207**-*******	서*범	서울시 중구 청구로	이동상인	150,000	2023-07-01 11:16
38	1078832733480	기타	5207**-*******	서*범	서울시 중구 청구로	이동상인	150,000	2023-07-19 10:37
39	1078832733481	기타	5207**-*******	서*범	서울시 중구 청구로	이동상인	150,000	2023-07-19 11:07
40	1078832733482	기타	5207**-*******	서*범	서울시 중구 청구로	이동상인	150,000	2023-07-21 10:43
41	1078832733483	기타	5207**-*******	서*범	서울시 중구 청구로	이동상인	150,000	2023-07-25 10:50
42	1078832733484	기타	5207**-*******	서*범	서울시 중구 청구로	이동상인	150,000	2023-07-05 12:48
43	1078832733485	기타	5207**-*******	서*범	서울시 중구 청구로	이동상인	150,000	2023-07-26 10:36
44	1078832733486	기타	5207**-*******	서*범	서울시 중구 청구로	이동상인	150,000	2023-07-11 11:18
45	1078832733487	폐문부재	6905*-*******	신*식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724번길	이동상인	150,000	2023-07-17 13:07
46	1078832733488	폐문부재	6905*-*******	신*식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724번길	이동상인	150,000	2023-07-29 10:40
47	1078832733489	기타	7511**-*******	연*성	서울시 성동구 한림말길	철도종사자 지시위반	3,000,000	2023-07-20 10:00
48	1078832733490	기타	6202**-*******	이*실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84길	기부요청	150,000	2023-07-30 12:24
49	1078832733492	기타	4812**-*******	이*희	경기도 시흥시 함송로	이동상인	150,000	2023-07-15 11:08
50	1078832733493	기타	4812**-*******	이*희	경기도 시흥시 함송로	이동상인	150,000	2023-07-07 10:52
51	1078832733494	기타	4812**-*******	이*희	경기도 시흥시 함송로	이동상인	150,000	2023-07-11 10:41
52	1078832733495	기타	4812**-*******	이*희	경기도 시흥시 함송로	이동상인	150,000	2023-07-25 11:11

순번	등기번호	반송사유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물건명	과세금액	위반일자
53	1078832733496	기타	4812**-*******	이*희	경기도 시흥시 함송로	이동상인	150,000	2023-07-19 10:21
54	1078832733497	폐문부재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이동상인	150,000	2023-07-17 10:49
55	1078832733498	폐문부재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이동상인	150,000	2023-07-24 13:42
56	1078832733499	폐문부재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이동상인	150,000	2023-07-24 13:42
57	1078832733500	폐문부재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이동상인	150,000	2023-07-08 14:10
58	1078832733501	폐문부재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이동상인	150,000	2023-07-10 10:56
59	1078832733502	폐문부재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이동상인	150,000	2023-07-03 13:02
60	1078832733503	폐문부재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이동상인	150,000	2023-07-12 12:25
61	1078832733504	기타	7201**-*******	임*환	인천시 남동구 인주대로681번길	이동상인	150,000	2023-07-28 11:31
62	1078832733505	기타	8011**-*******	임*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천로20길	이동상인	150,000	2023-07-17 14:52
63	1078832733506	기타	5403**-*******	정*갑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18가길	연설권유	150,000	2023-07-13 16:58
64	1078832733507	기타	5602**-*******	최*숙	서울시 구로구 개봉로17길	이동상인	150,000	2023-07-17 14:45
65	1078832733508	기타	5602**-*******	최*숙	서울시 구로구 개봉로17길	이동상인	150,000	2023-07-31 17:59
66	1078832744376	기타	4204**-*******	김*업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16길	기부요청	150,000	2022-05-24 09:36
67	1078832744377	기타	4204**-*******	김*업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16길	기부요청	150,000	2022-05-23 11:48
68	1078832744378	기타	4204**-*******	김*업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16길	기부요청	150,000	2022-05-30 11:48
69	1078832744379	기타	4204**-*******	김*업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16길	기부요청	150,000	2022-05-30 14:16
70	1078832744380	기타	4204**-*******	김*업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16길	기부요청	150,000	2022-05-23 14:24
71	1078832744381	기타	4204**-*******	김*업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16길	기부요청	150,000	2022-05-24 17:48
72	1078832744382	기타	4204**-*******	김*업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16길	기부요청	150,000	2022-05-31 14:34
73	1078832744383	기타	4204**-*******	김*업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16길	기부요청	150,000	2022-05-25 16:51
74	1078832744384	기타	4204**-*******	김*업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16길	기부요청	150,000	2022-05-30 17:30
75	1078832744385	기타	4204**-*******	김*업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16길	기부요청	150,000	2022-06-11 09:01
76	1078832744386	기타	4204**-*******	김*업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16길	기부요청	150,000	2022-06-11 15:14
77	1078832744387	기타	4204**-*******	김*업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16길	기부요청	150,000	2022-06-13 11:18
78	1078832744388	기타	4204**-*******	김*업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16길	기부요청	150,000	2022-06-15 12:29
79	1078832744389	기타	4204**-*******	김*업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16길	기부요청	150,000	2022-06-28 17:18

순번	등기번호	반송사유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물건명	과세금액	위반일자
80	1078832744390	기타	4204**-*******	김*업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16길	기부요청	150,000	2022-06-01 11:05
81	1078832744391	기타	4204**-*******	김*업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16길	기부요청	150,000	2022-06-21 15:10
82	1078832744392	기타	4204**-*******	김*업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16길	기부요청	150,000	2022-06-22 07:55
83	1078832744393	기타	4204**-*******	김*업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16길	기부요청	150,000	2022-06-08 13:16
84	1078832744394	기타	4204**-*******	김*업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16길	기부요청	150,000	2022-06-08 15:03
85	1078832744395	기타	4204**-*******	김*업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16길	기부요청	150,000	2022-06-16 11:34
86	1078832744396	기타	4204**-*******	김*업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16길	기부요청	150,000	2022-06-18 08:37
87	1078832744397	기타	4204**-*******	김*업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16길	기부요청	150,000	2022-06-03 13:20
88	1078832744398	기타	4204**-*******	김*업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16길	기부요청	150,000	2022-06-04 11:25
89	1078832744399	기타	4204**-*******	김*업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16길	기부요청	150,000	2022-06-01 12:55
90	1078832744400	기타	4204**-*******	김*업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16길	기부요청	150,000	2022-06-17 09:18
91	1078832744401	기타	4204**-*******	김*업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16길	기부요청	150,000	2022-06-04 16:04
92	1078832744402	기타	4204**-*******	김*업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16길	기부요청	150,000	2022-06-24 07:27
93	1078832744403	기타	4204**-*******	김*업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16길	기부요청	150,000	2022-06-24 13:43
94	1078832744404	기타	4204**-*******	김*업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16길	기부요청	150,000	2022-06-30 08:07
95	1078832744405	기타	4204**-*******	김*업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16길	기부요청	150,000	2022-06-14 11:29
96	1078832744406	기타	4204**-*******	김*업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16길	기부요청	150,000	2022-06-15 11:20
97	1078832744407	기타	4204**-*******	김*업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16길	기부요청	150,000	2022-06-07 09:14
98	1078832744408	기타	4204**-*******	김*업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16길	기부요청	150,000	2022-06-08 10:18
99	1078832744409	기타	4204**-*******	김*업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16길	기부요청	150,000	2022-06-13 14:12
100	1078832744410	기타	4204**-*******	김*업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16길	기부요청	150,000	2022-07-28 15:23
101	1078832744411	기타	4204**-*******	김*업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16길	기부요청	150,000	2022-07-04 13:20
102	1078832744412	기타	4204**-*******	김*업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16길	기부요청	150,000	2022-07-06 10:56
103	1078832744413	기타	4204**-*******	김*업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16길	기부요청	150,000	2022-07-09 07:28
104	1078832744414	기타	4204**-*******	김*업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16길	기부요청	150,000	2022-07-08 14:07
105	1078832744415	기타	4204**-*******	김*업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16길	기부요청	150,000	2022-07-13 11:23
106	1078832744416	기타	4204**-*******	김*업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16길	기부요청	150,000	2022-07-17 13:50

순번	등기번호	반송사유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물건명	과세금액	위반일자
107	1078832744419	기타	4204**-*******	김*업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16길	기부요청	150,000	2022-07-15 10:24
108	1078832744421	기타	4204**-*******	김*업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16길	기부요청	150,000	2022-08-13 15:05
109	1078832744417	기타	4204**-*******	김*업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16길	기부요청	150,000	2022-07-25 10:37
110	1078832744418	기타	4204**-*******	김*업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16길	기부요청	150,000	2022-07-08 10:25
111	1078832744420	기타	4204**-*******	김*업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16길	기부요청	150,000	2022-08-13 14:11
112	1078832744422	기타	4204**-*******	김*업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16길	기부요청	150,000	2022-08-29 14:35
113	1078832744423	기타	4204**-*******	김*업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16길	기부요청	150,000	2022-08-25 10:15
114	1078832744424	기타	4204**-*******	김*업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16길	기부요청	150,000	2022-08-03 12:38
115	1078832744425	기타	4204**-*******	김*업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16길	기부요청	150,000	2022-08-31 11:02
116	1078832744426	기타	4204**-*******	김*업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16길	기부요청	150,000	2022-08-25 15:20
117	1078832744427	기타	4204**-*******	김*업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16길	기부요청	150,000	2022-09-14 13:01
118	1078832744428	기타	4204**-*******	김*업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16길	기부요청	150,000	2022-09-27 07:46
119	1078832744429	기타	4204**-*******	김*업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16길	기부요청	150,000	2022-09-02 10:58
120	1078832744430	기타	4204**-*******	김*업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16길	기부요청	150,000	2022-08-31 14:55
121	1078832744431	기타	4204**-*******	김*업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16길	기부요청	150,000	2022-08-06 13:26
122	1078832744432	기타	4204**-*******	김*업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16길	기부요청	150,000	2022-09-13 07:17
123	1078832744433	기타	4204**-*******	김*업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16길	기부요청	150,000	2022-09-01 13:58
124	1078832744434	기타	4204**-*******	김*업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16길	기부요청	150,000	2022-09-06 12:39
125	1078832744435	기타	4204**-*******	김*업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16길	기부요청	150,000	2022-09-27 07:16
126	1078832744436	기타	4204**-*******	김*업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16길	기부요청	150,000	2022-09-21 10:20
127	1078832744437	기타	4204**-*******	김*업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16길	기부요청	150,000	2022-09-24 11:51
128	1078832744438	기타	4204**-*******	김*업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16길	기부요청	150,000	2022-09-06 10:11
129	1078832744439	기타	4204**-*******	김*업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16길	기부요청	150,000	2022-09-08 14:36
130	1078832744440	기타	4204**-*******	김*업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16길	기부요청	150,000	2022-09-03 14:34

<서식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	위반일시		위반장소	
	부과관청		부과일자	
	부과번호		부과금액	
이의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 . .

신청인 (인)

서울시장 귀하

※ 문의전화 : 02-2133-4337 FAX : 02-2133-1076

☞ 팩스(FAX)로 접수하신 민원인께서는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3516호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또는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82조(과태료)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징수법」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수취거절,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된 과태료 독촉고지 송달 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별첨
4. 공고기간 : 2023. 12. 28. ~ 2024. 1. 10. (14일간)
 - 과태료 납부지연에 따라 가산금 3%가 부과되었으며, 중가산금 1.2%씩(최대 75%)이 매월 부과됩니다.
 - 「지방세기본법」의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청 도시철도과(☎02-2133-43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철도안전법위반 과태료 2023년 12월 과태료 독촉통지 반송건

순번	등기번호	반송사유	반송일자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물건명	위반일시
1	1078832729283	기타	2023-12-12 11:05	6908**-*******	강*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43길	이동상인	2023-05-10 13:37
2	1078832729284	기타	2023-12-12 11:05	6908**-*******	강*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43길	이동상인	2023-05-12 13:38
3	1078832729285	기타	2023-12-12 11:05	6908**-*******	강*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43길	이동상인	2023-05-17 15:28
4	1078832729286	기타	2023-12-12 11:05	6908**-*******	강*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43길	이동상인	2023-05-11 10:25
5	1078832729287	기타	2023-12-12 11:05	6908**-*******	강*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43길	이동상인	2023-05-17 12:30
6	1078832729288	폐문부재	2023-12-07 11:05	5304**-*******	김*직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이동상인	2023-05-08 10:28
7	1078832729289	폐문부재	2023-12-07 11:05	5304**-*******	김*직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이동상인	2023-05-11 10:33
8	1078832729290	폐문부재	2023-12-07 11:05	5304**-*******	김*직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이동상인	2023-05-11 12:21
9	1078832729291	폐문부재	2023-12-07 11:05	5304**-*******	김*직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이동상인	2023-05-17 14:31
10	1078832729372	수취인불명	2023-12-06 13:28	5401**-*******	김*스더	서울시 종로구 평창길	연설 · 권유	2023-05-10 11:35
11	1078832729373	기타	2023-12-12 10:00	6601**-*******	김*용	서울시 금천구 범안로	철도종사자 지시위반	2023-05-19 13:48
12	1078832729374	기타	2023-12-12 14:00	4204**-*******	김*업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16길	기부요청	2023-05-04 08:45
13	1078832729375	기타	2023-12-12 14:00	4204**-*******	김*업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16길	기부요청	2023-05-23 16:53
14	1078832729376	기타	2023-12-12 09:5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115길	이동상인	2023-05-27 12:46
15	1078832729377	기타	2023-12-12 09:5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115길	이동상인	2023-05-18 10:18
16	1078832729378	기타	2023-12-12 09:5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115길	이동상인	2023-05-04 13:45
17	1078832729379	기타	2023-12-12 09:5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115길	이동상인	2023-05-01 13:40
18	1078832729380	기타	2023-12-12 09:5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115길	이동상인	2023-05-02 12:55
19	1078832729381	기타	2023-12-12 09:5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115길	이동상인	2023-05-05 10:33
20	1078832729382	기타	2023-12-12 09:5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115길	이동상인	2023-05-09 11:27
21	1078832729383	기타	2023-12-12 09:5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115길	이동상인	2023-05-09 13:40
22	1078832729384	기타	2023-12-12 09:5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115길	이동상인	2023-05-10 11:23
23	1078832729385	기타	2023-12-12 09:5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115길	이동상인	2023-05-17 13:58
24	1078832729386	기타	2023-12-12 09:5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115길	이동상인	2023-05-20 10:27
25	1078832729387	기타	2023-12-12 09:5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115길	이동상인	2023-05-25 11:31
26	1078832729388	기타	2023-12-12 09:5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115길	이동상인	2023-05-30 10:55

순번	등기번호	반송사유	반송일자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물건명	위반일시
27	1078832729389	기타	2023-12-12 09:5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115길	이동상인	2023-05-30 11:27
28	1078832729390	기타	2023-12-12 09:5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115길	이동상인	2023-05-09 11:00
29	1078832729391	기타	2023-12-12 09:5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115길	이동상인	2023-05-16 13:06
30	1078832729392	기타	2023-12-12 09:5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115길	이동상인	2023-05-17 10:41
31	1078832729393	기타	2023-12-12 09:5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115길	이동상인	2023-05-23 10:22
32	1078832729396	수취인불명	2023-12-06 11:18	5011**-*******	노*수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기부요청	2023-05-01 14:34
33	1078832729397	수취인불명	2023-12-06 11:18	5011**-*******	노*수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기부요청	2023-05-01 13:05
34	1078832729398	기타	2023-12-12 11:05	7304**-*******	백*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1길	이동상인	2023-05-29 11:50
35	1078832729399	기타	2023-12-12 11:05	7304**-*******	백*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1길	이동상인	2023-05-26 13:43
36	1078832729400	기타	2023-12-12 07:02	5207**-*******	서*범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	이동상인	2023-05-24 10:55
37	1078832729401	기타	2023-12-12 07:02	5207**-*******	서*범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	이동상인	2023-05-25 10:05
38	1078832729402	기타	2023-12-12 07:02	5207**-*******	서*범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	이동상인	2023-05-25 10:42
39	1078832729403	기타	2023-12-12 07:02	5207**-*******	서*범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	이동상인	2023-05-26 10:57
40	1078832729404	기타	2023-12-12 07:02	5207**-*******	서*범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	이동상인	2023-05-30 11:52
41	1078832729405	기타	2023-12-12 07:02	5207**-*******	서*범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	이동상인	2023-05-30 10:06
42	1078832729406	기타	2023-12-12 07:02	5207**-*******	서*범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	이동상인	2023-05-30 10:38
43	1078832729407	기타	2023-12-12 07:02	5207**-*******	서*범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	이동상인	2023-05-31 10:19
44	1078832729408	기타	2023-12-12 07:02	5207**-*******	서*범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	이동상인	2023-05-02 10:55
45	1078832729409	기타	2023-12-12 07:02	5207**-*******	서*범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	이동상인	2023-05-02 13:49
46	1078832729410	기타	2023-12-12 07:02	5207**-*******	서*범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	이동상인	2023-05-02 14:22
47	1078832729411	기타	2023-12-12 07:02	5207**-*******	서*범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	이동상인	2023-05-10 11:20
48	1078832729412	기타	2023-12-12 07:02	5207**-*******	서*범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	이동상인	2023-05-17 10:59
49	1078832729413	기타	2023-12-12 07:02	5207**-*******	서*범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	이동상인	2023-05-23 13:27
50	1078832729414	폐문부재	2023-12-11 09:00	6905**-*******	신*식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724번길	이동상인	2023-05-09 12:44
51	1078832729415	폐문부재	2023-12-11 09:00	6905**-*******	신*식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724번길	이동상인	2023-05-11 10:18
52	1078832729416	폐문부재	2023-12-11 09:00	6905**-*******	신*식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724번길	이동상인	2023-05-15 10:28
53	1078832729417	폐문부재	2023-12-11 09:00	6905**-*******	신*식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724번길	이동상인	2023-05-16 12:50

순번	등기번호	반송사유	반송일자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물건명	위반일시
54	1078832729418	폐문부재	2023-12-11 09:00	6905**-*******	신*식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724번길	이동상인	2023-05-09 10:23
55	1078832729419	폐문부재	2023-12-11 09:00	6905**-*******	신*식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724번길	이동상인	2023-05-02 11:44
56	1078832729420	폐문부재	2023-12-11 09:00	6905**-*******	신*식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724번길	이동상인	2023-05-05 11:05
57	1078832729421	폐문부재	2023-12-11 09:00	6905**-*******	신*식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724번길	이동상인	2023-05-29 11:28
58	1078832729422	주소불명	2023-12-06 11:38	7511**-*******	연*성	서울시 성동구 매봉9다길	철도종사자 지시위반	2023-05-13 15:54
59	1078832729423	주소불명	2023-12-06 11:38	7511**-*******	연*성	서울시 성동구 매봉9다길	철도종사자 지시위반	2023-05-31 10:15
60	1078832729425	기타	2023-12-12 10:50	4812**-*******	이*희	경기도 시흥시 함송로	이동상인	2023-05-15 10:17
61	1078832729426	폐문부재	2023-12-12 13:07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이동상인	2023-05-02 11:30
62	1078832729427	폐문부재	2023-12-12 13:07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이동상인	2023-05-22 11:54
63	1078832729428	폐문부재	2023-12-12 13:07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이동상인	2023-05-23 10:55
64	1078832729429	폐문부재	2023-12-12 13:07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이동상인	2023-05-25 11:19
65	1078832729430	폐문부재	2023-12-12 13:07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이동상인	2023-05-26 10:58
66	1078832729431	폐문부재	2023-12-12 13:07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이동상인	2023-05-30 11:26
67	1078832729432	폐문부재	2023-12-12 13:07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이동상인	2023-05-30 11:08
68	1078832729433	폐문부재	2023-12-12 13:07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이동상인	2023-05-08 13:52
69	1078832729434	폐문부재	2023-12-12 13:07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이동상인	2023-05-10 11:41
70	1078832729435	폐문부재	2023-12-12 13:07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이동상인	2023-05-10 11:54
71	1078832729436	폐문부재	2023-12-12 13:07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이동상인	2023-05-10 13:49
72	1078832729437	폐문부재	2023-12-12 13:07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이동상인	2023-05-10 14:36
73	1078832729438	폐문부재	2023-12-12 13:07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이동상인	2023-05-15 13:41
74	1078832729439	폐문부재	2023-12-12 13:07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이동상인	2023-05-16 10:49
75	1078832729440	폐문부재	2023-12-12 13:07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이동상인	2023-05-18 12:04
76	1078832729441	폐문부재	2023-12-12 13:07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이동상인	2023-05-18 14:27
77	1078832729442	폐문부재	2023-12-12 13:07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이동상인	2023-05-19 12:51
78	1078832729443	기타	2023-12-12 15:40	7201**-*******	임*환	인천시 남동구 인주대로 681번길	이동상인	2023-05-23 11:10
79	1078832729444	수취인불명	2023-12-06 11:23	7510**-*******	정*수	서울시 구로구 우마2길	기부요청	2023-05-04 21:53

순번	등기번호	반송사유	반송일자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물건명	위반일시
80	1078832729445	수취인불명	2023-12-06 11:23	7510**-*******	정*수	서울시 구로구 우마2길	기부요청	2023-05-11 14:20
81	1078832729446	수취인불명	2023-12-06 11:23	7510**-*******	정*수	서울시 구로구 우마2길	기부요청	2023-05-11 20:30
82	1078832729447	수취인불명	2023-12-06 11:23	7510**-*******	정*수	서울시 구로구 우마2길	기부요청	2023-05-20 19:16
83	1078832729448	수취인불명	2023-12-06 11:23	7510**-*******	정*수	서울시 구로구 우마2길	기부요청	2023-05-22 21:04
84	1078832729449	수취인불명	2023-12-06 11:23	7510**-*******	정*수	서울시 구로구 우마2길	기부요청	2023-05-29 20:48
85	1078832729450	수취인불명	2023-12-06 11:23	7510**-*******	정*수	서울시 구로구 우마2길	기부요청	2023-05-30 21:36
86	1078832729451	수취인불명	2023-12-06 13:12	7510**-*******	정*수	서울시 구로구 우마2길	기부요청	2023-05-31 21:20
87	1078832729452	기타	2023-12-12 10:00	5602**-*******	최*숙	서울시 구로구 개봉로17길	이동상인	2023-05-06 13:49
88	1078832729453	기타	2023-12-12 08:47	9405**-*******	하*혜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183길	기부요청	2023-05-02 07:43
89	1078832729454	기타	2023-12-12 10:00	5410**-*******	홍*목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17길	이동상인	2023-05-31 11:19
90	1078832729455	수취인불명	2023-12-06 11:10	6810**-*******	곽*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	이동상인	2023-06-24 16:29
91	1078832729457	폐문부재	2023-12-07 11:05	5304**-*******	김*직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이동상인	2023-06-02 13:24
92	1078832729458	폐문부재	2023-12-07 11:05	5304**-*******	김*직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이동상인	2023-06-21 10:43
93	1078832729459	폐문부재	2023-12-07 11:05	5304**-*******	김*직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이동상인	2023-06-09 11:20
94	1078832729482	기타	2023-12-12 11:05	7304**-*******	백*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1길	이동상인	2023-06-23 10:48
95	1078832729483	기타	2023-12-12 11:05	7304**-*******	백*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1길	이동상인	2023-06-09 13:13
96	1078832729512	기타	2023-12-12 10:50	4812**-*******	이*희	경기도 시흥시 함송로	이동상인	2023-06-20 11:45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3519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명령 공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및 제133조에 근거하여 휴면조합 지정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활동 재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아래의 조합에 대해 해산을 명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3. 12. 28. ~ 2024. 1. 11.

2. 공고대상 : 서울중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외 6

구분	연번	조합명	주 소	해산명령 일자
해산명령	1	서울중동부수퍼마켓 협동조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5길 19, 108호	2023.12.8.
	2	강동주양쇼핑시장 사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48	
	3	남대문액세서리 사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49-3, E동 4층 남문	
	4	문정가든파이브진흥 사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66, 패션관동 11층 자산관리사무실	
	5	서울강남서초화훼 사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35-5, 드림타운 지하	
	6	서울중장비부품 사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무로 66, 대일빌딩 3층 302호	
	7	서울혁신식품 사업협동조합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몰 2관 3층	

3. 공고내용 : 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명령 통보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해산명령으로 해산하는 경우 해산한 날부터 2주 이내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이신혁 주무관(02-2133-5256)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3520호

과학관 신규등록 공고(강서별빛우주과학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따라 신규등록한 과학관을 같은 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등록연월일 : 2023. 12.
2. 등록 번호 : 제 서-19호
3. 명 칭 : 강서별빛우주과학관
4. 구 분 : 공립전문과학관
5. 대 표 자 : 심재현
6.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78
7. 규 모 : 전시실 136㎡, 사무실 35㎡, 강당 144㎡

※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담당자 : 최지현(02-2133-5242)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3522호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1회차 위반 경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제29조,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등에 의해 1회차 위반 경고안내 후, 송달불능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1회차 위반 경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제29조,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

3. 공시송달내용(총7건)
경고 대상차량 차주분께서는 본 고지일로부터 2024년 01월 31일(수)까지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2024년 01월 31일(수)이후에는 위반시 월 1회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저공해조치(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조기폐차)를 완료하거나, 저공해조치 유예신청을 하여 차량운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고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순번	차량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1	05조8951	대*택배(주)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3-11-27 12:14	도봉01_도봉로시계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2	08너9077	이*영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3-11-23 12:32	강남10_대곡교후방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3	16고4915	고*윤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3-11-15 13:12	강서05_화곡터널(강서로) 2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4	36가7576	이*남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11-16 10:32	송파01_송파대로 4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경고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순번	차량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5	80루7441	이*용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3-11-26 08:12	서초01_올림픽대로(공항) 5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6	92보7331	노*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3-11-21 10:53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의정부IC) 4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7	서울40구9760	이*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3-11-27 13:41	서대문01_통일로(산골고개) 1차로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

4. 공 고 기 간 : 공고일(서울시 시보 게재일)로부터 14일간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기한 : 2023년 01월 31일(수)

나. 본 1회차 위반 경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으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제출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대기정책과(운행차관리팀)
- 문자 제출 : 의견제출서를 작성 후 사진촬영하여 업무용 핸드폰(010-9615-3659)으로 문자 전송
- 담당 : 김석근(Tel 02-2133-3659) 장재희(Tel 02-2133-3664)

붙임 : 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2. 당 사 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접수 방법 가.핸드폰(010-9615-3659)로 사진파일 문자접수 가능합니다. 나.우편접수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1동 11층 대기정책과 다.이메일(smalleyesj@seoul.go.kr)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3523호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제29조,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등에 의해 과태료 사전통지 후, 송달불능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제29조,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

3. 공시송달내용(총36건)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부과액
1	01나4449	함*옥	서울특별시 중구	2023-11-17 22:10	영등포03_서울교(경인로) 2차로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160,000원
2	01너3943	서*상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3-11-30 10:29	노원05_화랑로(화랑대역) 2차로	〃	〃
3	02부8957	윤*선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3-11-20 18:24	노원01_동일로(동부간선도로) 1차로	〃	〃
4	02오7854	황*욱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3-11-26 15:43	중랑03_망우리고개 1차로	〃	〃
5	03모9273	김*훈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3-11-16 17:27	금천09_석수역 1차로	〃	〃
6	03보6592	주*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3-11-23 11:20	양천05_서부트럭터미널(남부순환로) 1차로	〃	〃
7	03부9655	황*진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3-11-01 22:31	성북02_길음역 1차로	〃	〃
8	04고6363	김*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3-11-28 13:08	강서05_화곡터널(강서로) 2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부과액
9	04노1147	유*곤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3-11-25 20:30	금천02_서부간선도로(성산) 1차로	〃	〃
10	05주4134	이 *성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11-29 17:44	서초06_분당내곡로 3차로	〃	〃
11	06구1063	장*혁(장*윤)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3-11-26 18:31	용산02_강변북로(구리) 4차로	〃	〃
12	06러4798	㈜*에스브이테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11-07 14:19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230-3 화성방면 3차로	〃	〃
13	07머1737	김*양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3-11-25 03:54	은평07_증산로(DMC) 3차로	〃	〃
14	12보7036	김*진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3-11-24 19:30	광진03_워커힐(아차산로) 2차로	〃	〃
15	19러1375	변*근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3-11-19 14:14	은평07_증산로(DMC) 1차로	〃	〃
16	34소5609	유한회사 에*유엑스씨티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3-11-27 08:07	인천광역시 중산교차로 중구 중산동 1373-12(1차로)	〃	〃
17	36머5061	김*남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11-20 11:05	강남08_수서IC 4차로	〃	〃
18	38다5060	박*석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3-11-21 09:12	용산02_강변북로(구리) 4차로	〃	〃
19	38서9258	정*성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3-11-15 10:52	광진02_천호대로(군자교) 1차로	〃	〃
20	40도8541	㈜*렌트카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3-11-28 15:59	강남10_대곡교후방 5차로	〃	〃
21	47너8070	양*환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11-20 12:14	강동06_천호역(천호대로) 1차로	〃	〃
22	49부1279	신*훈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3-11-24 17:38	광진04_잠실대교북단(자양로) 3차로	〃	〃
23	55나9536	김*응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3-11-25 13:53	강동03_고덕역(고덕로) 1차로	〃	〃
24	69모7659	이*운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3-11-24 13:43	중랑02_신내IC(용마산로) 4차로	〃	〃
25	70구5449	임*석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11-22 23:05	송파01_송파대로 4차로	〃	〃
26	70다1580	㈜*크린포유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3-11-23 05:08	구로01_작동터널 3차로	〃	〃
27	75더1281	남*수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3-11-05 09:50	강남01_올림픽대로(잠실) 4차로	〃	〃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부과액
28	80라4856	박*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11-03 19:09	인천광역시 강화인삼센터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산 6-3(2차로)	〃	〃
29	80로9787	박*석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3-11-14 16:31	양천03_경인고속도로 1차로	〃	〃
30	80부8143	㈜*로드커뮤니케이션테크놀러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3-11-30 19:54	경기도 수원시 LG전자베스트샵(수원방면) 1차선	〃	〃
31	89오9838	이*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3-11-29 23:27	양천03_경인고속도로 4차로	〃	〃
32	90루6225	박*덕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3-11-26 08:33	영등포03_서울교(경인로) 3차로	〃	〃
33	91도1058	이*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3-11-21 16:25	인천광역시 용종교 1차로	〃	〃
34	서울40모5845	이*훈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3-11-22 15:27	도봉01_도봉로시계 1차로	〃	〃
35	서울82루8868	㈜*길전력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3-11-27 13:13	도봉01_도봉로시계 3차로	〃	〃
36	서울90바4090	아*상운(주)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3-11-04 16:55	인천광역시 하늘공원앞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69-1(송도→남항방향)(2차로)	〃	〃

4. 공고 기간 : 공고일(서울시 시보 게재일)로부터 14일간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기한 : 2024년 01월 31일(수)

나. 본 사전통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으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제출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대기정책과(운행차관리팀)
- 모바일(문자)제출 : 의견제출서를 작성 후 사진촬영하여 업무용 핸드폰 (010-9615-3659)으로 문자 전송
- 담당 : 김석근(Tel 02-2133-3659) 장재희(Tel 02-2133-3664)

붙임 : 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2. 당 사 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접수 방법 가.핸드폰(010-9615-3659)로 사진파일 문자접수 가능합니다. 나.우편접수:(서울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1동 11층 대기정책과 다.이메일(smalleyesj@seoul.go.kr)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3527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예고서를 소유자에게 2차례 송달하였으나 부재로 인해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④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①항 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3. 12. 28. ~ 2024. 1. 10.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및 압류 내역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비고
		과목	납 기	횟수	금 액	
042362840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115나길 28(상계동)	수도요금	2023. 10월 등 11납기	11회	668,630원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건소유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민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115나길 28(상계동)	김희승	850622-1****** (2회송달 부재)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서로 162-15 125동 103호	668,630원	2024.1.11.이후

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김영란(☎02-3146-329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3531호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이 사실을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이사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3.12.28. ~ 2024.1.11.

2. 처분대상 및 내용

업 체 명 (대표)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 근거
이도종합건설㈜ (대표 김태형)	건축공사업 01-442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25길 12, 201호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보증가능금액)	법 제10조 제4호	영업정지 5개월 (2024.1.19.~2024.6.18.)	법 제83조 제3호

3.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19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3533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 내역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1	203907	23. 12. 15.	주식회사 서원정보 서형석 280211-0118519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51, 11층(서초동, 청남빌딩)
2	203908	23. 12. 15.	주식회사 네패스이앤씨 남택용, 이세희 110111-1474389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15(서초동)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공사업등록의 신청 등)

3.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2133-289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3537호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동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3.12.28. ~ 2024.1.11.

2. 처분 사전통지 사항

업 체 명 (대표)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 근거
(주)건휘건설 (대표 백인호)	건축공사업 01-4740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237, 1102호	영업정지 후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 미보완 (보증가능금액)	법 제10조 제4호	등록말소 (2023.1.12.)	법 제83조 제3호의2

3.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19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3548호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9조에 따라 변상금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건　　명 :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법적근거
가. 변상금 부과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9조
나. 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대상자	내용	무단점유사실 및 부과 내역	송달주소	반송사유
두○조○협동조합 (11**51-01**260)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 통지	- 무단점유재산 : 서초구 양재대로12길 36 - 점유기간 : 2023.03.01.~2023.07.06. - 점유면적 : 3,372㎡ - 부과 내역 : 총액 2,000,792,180원 ※ 납부기한 : 2024.2.28.(수)	경기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323번길 20-10, 4**호	폐문부재

※ 공시송달기간 : 2023.12.28. ~ 2024.1.11.
※ 공시송달 주소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 주소임.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2항 및 제6항에 의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략적 사항을 기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이 있을 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담당관(☎02-2133-55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3550호

공인 재등록 및 폐기 공고

서울특별시공인조례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의거하여, 공인 등록 및 폐기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공인 재등록

○ 공인등록 사유 : 2024년 01.0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명칭 변경

○ 최초 사용일자 : 2024년 01월 01일

○ 공인등록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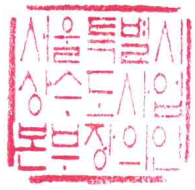
공 인 명	규 격	인 영	전자이미지 인영
서울아리수본부장의인	2.4㎝×2.4㎝		

□ 공인 폐기

○ 공인폐기 사유 : 2024년 01.0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명칭 변경

○ 폐기 일자 : 2024년 01월 01일

○ 공인폐기 내용

공 인 명	규 격	인 영	전자이미지 인영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의인	2.4㎝×2.4㎝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3551호

종합공사시공업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있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처분사전 통지(청문실시통지)를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 등으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이사불명,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3.12.28. ~ 2024.1.11.(14일간)
2. 처분 사전통지 사항

업 체 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위반내용	예정된 처분내용	청문실시		처분 근거
				일시 및 장소	주재자	
지음씨엠㈜ (채동진)	건축 공사업 01-3625	건설기계대여 대금 미지급 o 현장소재지: 마포구 연남동 245-72 o 체불금액: 440,000원 o 공급업체: 남주스카이(이대훈) o 대여장비: 고소작업차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2024.1.19.(금) 10:00 건설혁신과 청문실	변호사 조창흠	법 제82조 제1항 제8호

3.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29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3552호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이 사실을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 불명 및 이사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3.12.28. ~ 2024.1.11.
2. 처분대상 및 내용

업 체 명 (대표)	업종 및 등록번호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분 근거
두울건설㈜ (대표 안태수)	건축공사업 01-4861	보증가능금액 실효(2022. 12. 13)로 영업정지 후 영업정지 종료일(2023.10.16.)까지 보증가능금액 미보완	등록말소 (2024.1.19.)	법 제83조 제3호의2

3.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29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3553호

공간정보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측량업의 휴업·폐업 등 신고) 및 제111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측량업 위반자에게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명: 공간정보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거: 공간정보관리법 제48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3. 공시송달 대상

대상자	소재지	위반내용	부과 예정 금액	반송일시	반송사유
김*천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길 **-*	측량업 폐업 미신고 (공간정보관리법 제48조 제1호)	300,000원	2023.11.7.	폐문부재
				2023.11.14.	폐문부재
				2023.12.7.	폐문부재

4. 공고기간: 2023. 12. 28. ~ 2024. 1. 29.
5. 유의사항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법률」 위반으로 같은 법 제48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서울시청 토지관리과 (☎ 02-2133-4659)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내 서울시청 토지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기한(2024년 1월 29일까지)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위 법률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위 공고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 감경 받을 수 있으며, 과태료 체납 시 본 부과 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체납된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1개월 경과할 때 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되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상에 불이익(압류) 처분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

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청 토지관리과 공간측량팀(02-2133-465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3558호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계획 예고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을 위한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8조(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지정문화재의 지정절차)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계획을 예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계획
가. 문화재 지정 개요

지정 예정 종별	지정 예정 명칭	수량	규격(cm)	조성 연대	소재지 (소유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김홍도 필 송석원시사야연도 및 이인문 필 송석원시회도 (金弘道 筆 松石園詩社夜宴圖 및 李寅文 筆 松石園詩會圖)	1건 2점	25.5×31.8 25.5×31.9	1791년경	종로구 (김영무)
	제주십이경도 (濟州十二景圖)	12점	56.2×35.3	조선 후기	종로구 (이호재)
	분청사기 선각박지 모란절지문 호 (粉靑沙器 線刻剝地 牧丹折枝紋 壺)	1점	높이 27.9, 구경 13.1, 저경 12.7	조선시대	마포구 (금성문화재단)
	묘각사 아미타삼존도불감 (妙覺寺 阿彌陀三尊圖佛龕)	1점	불감 : 31.7×24.0×2.0 아미타삼존도 : 27×24 신중도 2폭 : 각 27×11	조선 후기	종로구 (대한불교관음종 묘각사 주지 이무웅)
	진재해 필 조문명 초상 (秦再奚 筆 趙文命 肖像)	1점	120×60(그림) 166.4×74.6 (전체)	1728년	종로구 ((주)마이아트옥션)

지정 예정 종별	지정 예정 명칭	수량	규격(cm)	조성 연대	소재지 (소유자)
	만력을유 사마방목 (萬曆乙酉 司馬榜目)	1책 (37장)	31×19.8	1585년 (선조 18)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만력기축 종계증광 사마방목 (萬曆己丑 宗系增廣 司馬榜目)	1책 (37장)	28.2×19.5	1589년 (선조 22)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황여일 사초 (黃汝一 史草)	12책	24.5×18.5 등	조선시대 (1587~1589)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문선 (文選)	18권 15책	32.5×21	1509년 (중종 4)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위정공간록 (魏鄭公諫錄)	5권 2책	36×21.8	1542년 (중종 37)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완영일록 (完營日錄)	8책	19.5×13.7	1833~1834년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나. 예고 사유

: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고자,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예고함.

■ 유형문화재

【김홍도 필 송석원시사야연도 및 이인문 필 송석원시회도(金弘道 筆 松石園詩社夜宴圖 및 李寅文 筆 松石園詩會圖)】

조사대상인 <김홍도 필 송석원시사야연도(金弘道 筆 松石園詩社夜宴圖)>는 1791년 6월 15일에 천수경(千手經, ?~1818)의 후원(後園)인 송석원(인왕산 자락 옥류동 소재)에서 열린 시회를 기념하고자 제작된 《옥계청유첩(玉溪淸遊帖)》에 실린 작품으로 현재 상태는 표구되어 죽절형 유리 액자에 넣어져 있다. 화면에는 조선 후기의 전형적인 사의적 수지법을 이용해 여러 그루의 나무가 그려져 있으며, 특히 우측에는 나무에 둘러싸인 초가집이 표현되어 있고 안쪽의 뜰에는 9명의 선비가 모임을 갖는 모습이 보인다. 달이 표현되어 있어서 시간을 짐작할 수 있으며, 어슴푸레한 대기를 담묵으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깔끔한 필묵법과 경물의 강약 표현 등은 전형적인 김홍도의 화풍이다. 좌측 상단에는 아래와 같이 마성린(馬聖麟, 1727~1798)의 관지(款識)와 제시(題詩)가 있다. 이 작품은 제작 시기를 19세기로 추정하는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금오계첩>>의 모본이 되는 등, 아회도의 한 형식으로 사용되었다.

조사 대상 <김홍도 필 송석원시사야연도>는 제작 시기, 제작 동기, 제작자 등이 확실하며, 여항문인의 대표적인 시사인 송석원시사를 표현한 회화라는 점, 그리고 김홍도의 40세 후반 ~ 50세경의 회화 경향을 보여주는 완성도 높은 작품이라는 점에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가능하다.

<이인문 필 송석원시회도(李寅文 筆 松石園詩會圖)>는 조선 후기 인왕산 자락에 위치한 송석원(松石園) 일대의 실경과 시회(詩會)의 장면을 그린 그림이다. 이 그림은 1791년 6월 15일, 평민 시인 천수경(千壽慶, ?-1818)의 집 후원(後園)에서 가진 시모임을 기념하여 만든 《옥계청유첩》에 김홍도(金弘道)의 작품(<송석원시사야연도>)과 함께 실렸다. 절벽처럼 보이는 큰 바위를 배경으로 넓게 자리 잡은 암반 위에 시회의 참가자들이 자유스럽게 나뉘어 앉아 시모임을 즐기고 있는 그림이다. 암반 뒤편으로는 인왕산 정상의 능선이 오른쪽으로 이어지며, 그 사이사이를 수채화처럼 가볍게 채색하였는데, 봉우리 부분을 밝게 남겨놓아 입체감 있는 변화를 주었다. 화면의 중단 오른쪽 공간은 옥류동에 해당하며,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가옥이 드문드문 보인다. 간결하면서도 성근 소나무가 그 사이를 메우며 구체적인 실경의 공간을 설명해주고 있다.

<이인문 필 송석원시회도(李寅文 筆 松石園詩會圖)>는 40대 후반인 이인문의 개성적인 화풍이 돋보이는 실경산수화이며, 1791년의 제작연도가 파악되는 기년작(紀年作)이다. 아울러 《옥계청유첩》의 기록을 통해 평민 시인들이 주도한 그림의 제작 배경과 경위도 알 수 있고, 그림 속 실경의 경관도 찾아 비교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 그림이다. 아울러 보존 상태도 양호하고, 원형의 상태도 잘 유지하고 있어 지정대상으로서의 가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제주십이경도(濟州十二景圖)】

<제주십이경도>는 조선 후기, 1694~96년 제주목사를 역임한 이익태(李益泰, 1633-1704)가 제주도의 명승 10경을 꼽고 화공을 시켜 제작한 '탐라십경도(耽羅十景圖)'를 주제로 하였다. 이익태가 품제한 탐라십경은 조천관(朝天館), 별방소(別防所)·성산(城山), 서귀소(西歸所), 백록담(白鹿潭), 영곡(靈谷), 천지연(天池淵), 산방(山房), 명월소(明月所), 취병담(翠屛潭)이다. 이익태는 화면 상단에는 화기(畫記)를 배치하고, 하단에는 그림을 그려서 10폭의 소형 병풍을 제작했

다고 밝혔다.

이 작품은 이익태가 품제한 10경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화면 구성 및 화기도 대부분 동일하다. 다만 <제주목도성지도>와 <화북진>의 2장면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이 장면들은 기존에 알려진 탐라십경도 이본에는 없던 것으로, 이익태의 탐라십경도가 후대에 다양하게 변용된 양상을 드러낸다.

현재 전하는 탐라십경도 후모본은 대부분 19세기에 제작되었으나, 이 작품은 이익태가 제작한 1696년의 '탐라십경도', 1703년에 제작된 《탐라순력도》의 양식에 보다 가깝기 때문에, 18세기의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서울시 유형문화재로서 지정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분청사기 선각박지 모란절지문 호(粉靑沙器 線刻剝地 牧丹折枝紋 壺)】

조사대상 <분청사기 선각박지 모란절지문 호>는 조선시대 분청사기 항아리이다. 조사대상 항아리의 문양은 선각 기법과 박지 기법으로 장식되었다. 항아리는 구연부와 저부를 제외하고 백토로 분장되었으며, 어깨에는 분장된 백토를 선 위주로 음각하여 문양을 장식하는 선각 기법(線刻技法)으로 시문된 화판문(花瓣紋)이 자리한다. 동체에는 모란절지문(牧丹折枝紋)이 선각 기법으로 묘사되었고 그 배경은 박지 기법(剝地技法)으로 모두 걷어냈다. 모란절지문은 중앙에 활짝 핀 모란꽃과 줄기가 자리하고 그 양쪽으로 가지가 'V' 자로 벌어지는 모습이다. 각 가지에는 잎사귀가 달려있으며 유사한 모습의 모란절지문이 동체 양쪽에 대칭으로 자리한다.

현전하는 분청사기 가운데 선각박지 기법으로 문양을 장식한 입호(立壺)는 대체로 높이가 35㎝ 이상인 경우가 많다. 조사대상처럼 30㎝ 미만의 중형의 입호 형태의 항아리들은 완형에 가깝게 남아 있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조사대상 <분청사기 선각박지 모란절지문 호>는 구연부의 일부가 수리되었으나 원래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문양 등 조형 특징의 희소성과 독창성 등이 15세기 후반 분청사기 제작 경향과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유용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조사대상을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해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묘각사 아미타삼존도불감(妙覺寺 阿彌陀三尊圖佛龕)】

<묘각사 아미타삼존도불감>은 나무로 제작한 불감 내부에 아미타삼존도를 붙여 봉안한 방형 불감으로, 상자 전면에 양쪽으로 여닫이문을 달아 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감실의 문을 열면 중앙의 판면 바탕에 우선 비단이 붙어 있고 그 위에 다시 암적색 비단에 아미타삼존과 시방불(十方佛)의 비래(飛來) 장면이 황선묘(黃線描)로 그려진 비단 화면이 붙어 있다. 좌우 문비(門扉) 안쪽에는 역시 암적색 비단 바탕에 각기 신장상이 그려져 있어 중앙의 아미타삼존을 외호하는 구성을 이룬다. 삼면의 불화 테두리에는 2-3겹의 흑색 비단이 둘러져 화면의 외곽을 구획하고 있다.

<묘각사 아미타삼존도불감>은 비록 부분적으로 손상이 있고 기존의 조선 후기 불감에 비해 장식성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완형(完形)을 유지하고 있으며 불감 내부에 아미타삼존도를 그려 넣은 현존 사례가 극히 드문 불감이라는 점이 독특하다. 아미타삼존도는 특히 19세기에 성행한 적색 바탕에 황선묘로 그린 선묘불화라는 점과 불화의 양식 역시 19세기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목제 불감의 조형 역시 19세기로 추정된다. 불화를 그려 넣은 불감이라는 희소성을 감안해 볼 때 <묘각사 아미타삼존도불감>은 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진재해 필 조문명 초상(秦再奚 筆 趙文命 肖像)】

조문명(趙文命, 1680-1732)은 1728년 이인좌와 정희량 등이 주도하여 발생한 무신란戊申亂의 진압에 공을 세워 분무공신奮武功臣 2등에 녹훈되고, 풍릉군豊陵君에 책봉되었다. 그리고 병조판서, 대제학, 이조판서를 거쳐 우의정, 좌의정까지 지낸 인물이다. 조문명은 영조와 사돈 간으로 조선 후기 정치문화사상 중요한 인물이다.

<진재해 필 조문명 초상(秦再奚 筆 趙文命 肖像)>은 배경을 생략하거나 간단한 화문석이나 交椅, 足座 정도를 비치한 일반적인 초상화와는 다른 형식인 점이 가장 주목된다. 주인공 조문명이 높은 산과 바위, 흐르는 개울물 옆에서 큰 소나무를 어루만지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조문명은 흰색 학창의에 푸른 운건(雲巾)을 착용한 뒤 녹색 당혜(唐鞋)를 신고 반죽장(斑竹杖)을 들고 소나무를 만지며 앞을 바라보는 모습이다. 이런 모습은 동양 회화에서 흔히 도연명의 귀거래사의 구절 중 '무고송이반환(撫孤松而盤桓; 외로운 소나무를 어루만지며 서성이다)'을 따서 '무송반환도'로 많이 그려졌다. 그의 일반적인 공신상 초상화와 함께 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사적 초상화가 보존되어 있다는 것은 미술사적, 문화사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다. 더욱이 이를 그린 화가 진재해(秦再奚)는 당대 최고의 초상화가로 꼽히던 인물로 회화적 수준도 아주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만력을유 사마방목(萬曆乙酉 司馬榜目)】

<만력을유 사마방목(1585)>은 선조 18년(乙酉; 1585)에 성균관과 장악원에서 사마시(司馬試) 시험을 치르고 이에 합격한 생원시(生員試)와 진사시(進士試) 급제자들의 명단을 등급별로 기록하여 금속활자인 재주갑인자로 편찬한 방목이다. 생원·진사시는 '사마시(司馬試)'라고도 하며 방목은 보통 '사마방목(司馬榜目)'이라 한다. 내용은 크게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험 출제자이자 채점관 곧 시관(試官)의 이름이 기록된 '은문(恩門)', 생원시 합격자 이름이 기록된 '생원시(生員試)', 진사시 합격자 명단이 기록된 '진사시(進士試)'로 나뉘어 있다. 은문은 시험 장소에 따라 '일소(一所)'와 '이소(二所)'로 구분하고 있으며 一所는 성균관의 시관 의정부 좌참찬 이산해(李山海)를 비롯하여 6명의 관직과 이름이 그리고 二所인 장악원(掌樂院)의 시관은 의정부 우참찬 안자유(安自裕)를 비롯하여 6명의 관직과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1585년에 사마시를 치르고 간행한 동일본은 현재 신청 대상본이 유일하나 내용이 동일한 필사본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지정 신청한 성균관대학교 소장본은 재주갑인자인 금속활자로 인쇄한 희귀한 자료이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만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된 필사본이 전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만력기축 종계증광 사마방목(萬曆己丑 宗系增廣 司馬榜目)】

<만력기축 종계증광 사마방목(1589)>은 선조 22년(己丑; 1589)에 한성부와 장악원에서 조선 건국 이후 이성계의 가계에 대한 중국 명나라 측의 오류를 바로잡은 이른바 '종계변무(宗系辨誣)'에 관한 문제가 1588년에 이르러 원만히 해결되자 이를 기념하기 위해 이듬해인 1589년에 사마시(司馬試) 시험을 치르고, 이에 합격한 생원시(生員試)와 진사시(進士試) 급제자들의 명단을 등급별로 기록하여 금속활자인 재주갑인자로 편찬한 방목이다. 생원시에는 장원을 한 유학 황근중(黃謹中)을 비롯한 1등 5인, 2등은 홍경신(洪慶臣) 등 25인, 3등은 이호의(李好義) 등 70인 총 100명의 생원 합격자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의 응시 당시의 직역, 이름, 자(字), 생년, 본

관, 거주지, 아버지의 품계와 직책 및 성명, 부모의 생존 여부, 형제의 이름 등이 차례대로 실려 있다. 진사시에도 장원 이성길(李成吉)을 비롯한 1등 5인, 2등은 김봉명(金鳳鳴) 등 25인, 3등은 박돈(朴敦) 등 70인의 진사시 합격자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지정 신청한 성균관대학교 소장본은 1589년에 종계변무 처리를 기념하여 사마시를 치르고 재주갑인자로 찍은 금속활자본으로서 희귀한 자료이다. 현재 성균관대에만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황여일 사초(黃汝一 史草)】

<황여일 사초>는 임진왜란 이전에 예문관 관원으로서 춘추관 기사관을 겸임한 황여일이 사관으로서 그날그날 현장에서 작성한 기록이다. 전체 12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작성 시기는 1587년(선조 20) ~ 1589년(선조 22) 사이이다.

해월 황여일의 생애를 요약 기술한 행장(行狀)에는 한림(예문관)에 뽑혀 들어간 후 예문관의 검열, 대교, 봉교를 역임하고, 무자년 가을에 사고(史庫)의 포쇄 임무를 맡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요컨대, <황여일 사초>는 이름 그대로 1587년 12월 26일로부터 1589년 8월 16일 사이에 예문관 관원이었던 황여일이 춘추관 기사관이라는 겸직을 맡아 작성한 사관의 사초이다. 다만, 최종 완성된 실록과 비교해 볼 때 다소간의 문장 출입이 확인되므로 실록 편찬 과정에 활용된 전형적인 '가장 사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선시대 실록 편찬의 전 과정을 놓고 볼 때 이러한 자료를 '가장사초(家藏史草)'라고 지칭할 수 있어 실록 편수 과정을 살펴보는 데도 매우 중요한 사료로 평가된다. 성균관대학교 소장본 <황여일 사초>는 조선시대 실록 편수 과정에서 작성된 1차 자료일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사관이 현장에서 기록한 기록물로서도 매우 가치 있는 문화재로 평가할 수 있다.

【문선(文選)】

『문선文選』은 중국은 물론 한국, 일본 등에서 과거시험, 문예 창작 또는 외교문서 작성 그리고 국가의 전례 문장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된 문헌으로 많이 이용하였다. 따라서 선비들의 필독서가 되어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 이래 없어서는 안 되는 필독서로 자리매김하였다. 『문선』은 조선 세종과 성종 시기에 금속활자인 경자자로 인출된 바 있으며 선조 이후 목활자인 훈련도감자로 인출하기도 했다. 세종과 성종대에 인출된 판본은 매우 희귀하다. 다만 경상도 관찰사로 있었던 강혼(姜渾, 1464~1519)이 1509년 간행한 목판본이 온전하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오래된 판본에 속한다. 성균관대 소장본은 이 경상도 관찰사가 간행한 판본 중 일부인 잔본(殘本)들(卷8, 卷11~卷17, 卷25~卷27, 卷29이 빠진 총 18권 15책)이다.

이 책은 원래 光山金氏禮安派宗家 後彫堂 소장본으로 보인다. 각 책마다 '後彫堂'이라 묵서되어 있으며, 장서인 '先相公家藏書', '男富儀謹追記'가 날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後彫堂은 金富弼(1516~1577)의 號이며 안동에 종택이 있다.

성균관대학교 소장 『문선』은 1509년에 경상도 관찰사 강혼이 간행한 것과 같은 판본으로, 비록 결본이나 이 판본은 매우 희귀하고, 시기적으로 오래되었음을 감안하여,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위정공간록(魏鄭公諫錄)】

『위정공간록(魏鄭公諫錄)』은 중국 당(唐)나라 무주(武周) 때 재상이며 장서가인 왕침(王緟, ?~702)이 편찬한 문헌으로 당시 문신인 위징(魏徵, 580~643)이 당나라 태종(太宗)에게 올린 간주(諫奏)와 문대(問對)를 모아 왕침이 5권2책으로 엮은 것이다. 성균관대학교 소장 『위정공간록』은 1507년 조대유가 간행한 목판본을 저본으로 1542년경 동활자(銅活字)인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로 인출한 책이다. 표지의 문양은 연당초문이며 상태는 매우 좋은 편이다. 이 초주갑인자본 『위정공간록』은 5권2책의 완질본으로 매우 희귀한 판본이다. 인쇄사적 측면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뛰어나다.

표지 뒷면 면지에는 내사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嘉靖二十一年(1542)四月日 內賜承政院右副承旨金緣魏鄭公諫錄一件 命除謝恩 左承旨臣洪手決"이라 묵서되어 있으며, 서문면 상단에는 '宣賜之記', 내사인과 하단에는 '先相公家藏書', '男富儀謹追記' 이라는 광산김씨 예안파 종가의 소장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다. 즉 이 성균관대학교 소장 『위정공간록』은 광산김씨 예안파 종가인 광산김씨 金緣(1487~1544)이 1542년 중종으로부터 하사받은 내사본으로서 그 가치가 크며 또한 남아 있는 동일본이 매우 희귀한 초주갑인자본이라는 점에서 문화재적 보존의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한다.

【완영일록(完營日錄)】

『완영일록(完營日錄)』은 서유구(徐有榘, 1764~1845)가 전라도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 도순찰사 전주부윤(全羅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都巡察使全州府尹)으로 재임하는 동안 업무일지 형식으로 쓴 문헌이다. 기록된 기간은 1833년 4월부터 1834년 12월까지로 약 1년 9개월이며, 업무 수행 내용과 함께 장계(狀啓)를 비롯하여 관문(關文)·감결(甘結)·보장(報狀) 등 각종 공문서를 필사해 놓았다.

『완영일록』은 조선후기 감영 일기로는 가장 내용이 풍부하고 완결성을 갖춘 문헌이라 할 수 있다. 『완영일록』의 저자 서유구가 남긴 또 다른 업무일지인 『화영일록』이나, 경상감사 조재호(趙載浩, 1702~1762)의 『영영일기(嶺營日記)』 등과 형식면에서 매우 유사하나 『완영일록』에 수록된 공문서가 가장 많고, 여타 내용면에서도 구체성을 띠고 있다. 『완영일록』은 이미 지역사, 행정사, 사회사 등 다양한 분야에 사료로서 적극 활용되고 있어 사료적 가치가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적 가치에 더해 감영일기로서의 형태적 가치, 다양한 공문서를 수록한 일종의 서식집으로서의 문헌학적 가치도 충분히 평가받을 만한 요소이다.

『완영일록』은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결락이 없어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으므로 내용적 가치 평가에서 더 나아가 문화재적 가치도 평가받을 요소가 풍부하다고 판단된다.

2. 의견 제출 방법 안내
○ 제출기간 : 예고일로부터 30일간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문화재정책과
① 전화 : (02) 2133-2632
② 우편 :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1가, 한국프레스센터) 4층
○ 제출방법 :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기재사항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붙임> 조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및 입증자료
- 문화재 지정에 대한 찬반 의견 및 그 사유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문화재정책과(☎ 02-2133-26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김홍도 필 송석원시사야연도 및 이인문 필 송석원시회도】

검토종별	서울시 유형문화재	문화재명	김홍도 필 송석원시사야연도 (金弘道筆松石園詩社夜宴圖)
수 량	1건 1점	규 격 (㎝)	세로 25.5, 가로 31.8
재 료	종이에 엷은 색	소유자	김영무
시 대	1791년경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조사 내용	■ 현황 – 조사대상인 김홍도의 <송석원시사야연도(松石園詩社夜宴圖)>는 표구되어 족절형 유리 액자에 넣어져 있다. – 상기 작품은 이인문(李寅文, 1745~1821)의 <송석원시회도((松石園詩會圖>(금번에 김홍도 작품과 함께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신청됨)와 함께 한독의약박물관 기탁품으로 알려진 <<옥계청유첩(玉溪淸遊帖)>>(이명: <<옥계아집첩(玉溪雅集帖)>>)에 들어 있던 작품이다. 다만 언제 분철되었는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현재 나머지 <<옥계청유첩(玉溪淸遊帖)>>의 소재는 파악할 수 없다. – <<옥계청유첩>>은 1791년 6월 15일에 천수경(千手經, ?~1818)의 후원(後園)인 송석원(인왕산 자락 옥류동 소재)에서 열린 시회를 기념하고자 제작되었으며, 시 등이 18면에 걸쳐 수록되어 있다. 이중에는 마성린이 1797년에 쓴 「추서옥계청유첩후(追書玉溪淸遊帖後)」이 있다. 이 글에서 그는 시사에 참여한 김의현(金義鉉)의 집에서 이 첩을 보았고 김홍도와 이인문의 작품이 포함된 사실을 밝혔다.(“余一日, 過金士貞有竹軒, 見案上有玉溪淸遊帖一卷. 卽展而觀之, 檀園金士能畵其首, 松水館李文郁繼而畵之 …”). ■ 구성 – 화면에는 조선 후기의 전형적인 사의적 수지법을 이용해 여러 그루의 나무가 그려져 있으며, 특히 우측에는 나무에 둘러싸인 초가집이 표현되어 있고 안쪽의 뜰에는 9명의 선비가 모임을 갖는 모습이 보인다. – 달이 표현되어 있어서 시간을 짐작할 수 있으며, 어슴푸레한 대기를 담묵으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깔끔한 필묵법과 경물의 강약 표현 등은 전형적인 김홍도의 화풍이다. – 좌측 상단에는 아래와 같이 마성린(馬聖麟, 1727~1798)의 관지(款識)와 제시(題詩)가 있다. 마성린이 이 화첩을 본 시기는 1797년이므로, 이때 쓴 것이다.		

[유예(游藝)]

“庚炎之夜 雲月朦朧 筆端造化 驚人昏夢 眉山翁(달빛 밝은 밤, 구름 속의 달 몽롱한 가운데 빼어나고, 붓끝의 조화 속, 해오라기와 사람들이 꿈속에 잠겨 있네. 미산옹)”

[마씨(馬氏)] [경의(景義)]

- 마성린 관서 좌측에는 다음과 같은 김홍도 관지가 있다.

‘단원(檀園)’ [단원(檀園)] [사능(士能)]

- 좌측 하단에는 ‘김씨운림서소(金氏雲林書所)’가 쓰여 있는데, 서자는 알 수 없으나 김홍도로 보기도 한다. 화기에서 말하는 김씨의 서옥은 김의현의 집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이 작품은 제작 시기를 19세기로 추정하는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금오계첩>>의 모본이 되는 등, 아회도의 한 형식으로 사용되었다.

■ **제작 시기**

- 김홍도가 상기 작품을 그린 시기에 대한 정확한 단서는 없다. 제작 시기는 시사가 열린 1791년 6월부터 마성린이 작품을 본 시기인 1797년 6월 이전이 된다. 다만 김홍도는 1791년 12월에 연풍 현감을 제수받아 1795년 1월 7일까지 재직하였다. 그러므로 제작 시기를 통상 1791년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화면에 김씨(김의현 추정)의 거소가 언급된 화기가 있는 점이나 이인문이 김홍도의 집에서 <송석원시회도>를 그린 점으로 미루어, 김홍도가 시사에 참석하여 그리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한다.
- 또한 화풍 상으로도 1796년 작 <소림명월도(疏林明月圖)>보다는 필묵법이 얌전하고 고운 편이어서 양식상 상기의 편년과 비슷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원형 유지 정도**

- 화면 중앙에는 첩에 있을 때 형성된 접힌 흔적이 있다. 이외에는 원형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 오주석, 「이인문필 <강산무진도>의 연구」(중), 『미술자료』51, 국립중앙박물관, 1993.6
- 강명관, 『조선후기 여항문학 연구』, 창작과비평사, 1997.
- 오주석, 『단원 김홍도』, 열화당, 1998.
- 진준현, 『단원 김홍도 연구』, 일지사, 1999.
- 윤진영, 「조선후기 금오계첩의 제작관행과 신경향」, 『조선시대사학보』 91, 조선시대사학회, 2019.12.

조사 결과	■ 지정 여부 : 지정 가능 – 조사 대상 작품은 제작 시기, 제작 동기, 제작자 등이 확실하며, 여항문인의 대표적인 시사인 송석원시사를 표현한 회화라는 점, 그리고 김홍도의 40세 후반 ~ 50세경의 회화 경향을 보여주는 완성도 높은 작품이라는 점에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가능하다. – 다만 작품이 포함되어 있었던 <<옥계청유첩(玉溪淸遊帖)>>이 추후 지정될 경우에는 지정 명칭을 재고할 필요가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이인문의 <송석원시회도>와 함께 원래 수록되었던 순서에 따라 “김홍도 필 <송석원시사야연도> 및 이인문 필 <송석원시회도>”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 자료 2	문화재 이미지

전체 그림



세부(글씨 부분)





검토종별	서울시 유형문화재	문화재명	이인문 필 송석원시회도 (李寅文筆松石園詩會圖)
수 량	1건 1점	규 격 (㎝)	세로 25.5, 가로 31.9
재 료	종이에 담채	소유자	김영무
시 대	1791년경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조사 내용	**【현황】** <송석원시회도>는 조선 후기 인왕산 자락에 위치한 송석원(松石園) 일대의 실경과 시회(詩會)의 장면을 그린 그림이다. 이 그림은 1791년 6월 15일, 평민 시인 천수경(千壽慶, ?-1818)의 집 후원(後園)에서 가진 시모임을 기념하여 만든 《옥계청유첩(玉溪淸遊帖)》에 김홍도(金弘道)의 작품(<송석원시사야연도>)과 함께 실렸다. 지금은 첩에서 분리되어 죽절형 프레임에 유리를 끼운 액자에 들어 있다. 그림 중앙에 접힌 자국이 있어 원래 첩의 형태로 제작되었음을 알려준다. 《옥계청유첩》에는 이인문, 김홍도의 그림과 아울러 박윤묵(朴允默), 마성린(馬聖麟)의 글씨, 장혼(張混)의 서문, 참석자 8인이 지은 시 등 모두 18면으로 꾸며져 있지만, 현재 이 시화첩의 행방은 알 수 없다. (≪옥계청유첩≫은 『여항문학총서』 8에 영인되어 있다.) 이인문은 그림 상단에 3행의 글씨를 써서 자신이 이 그림을 그렸다고 밝혔다. **【화면에 남긴 글씨】** 그림 오른편 상단의 이인문 글씨 : “고송유수관도인 이인문 문욱이 단원 집에서 그렸다.(古松流水館道人 李寅文 文郁 寫於檀園所)” 앞에는 두인(頭印)을 찍었고, 글씨 끝에는 ‘촌심천고(寸心千古)’라는 원형 인장을 찍었다. 이인문의 서체이다. 그림 왼편 상단의 마성린 글씨 : “정선과 심사정(沈師正) 이후 산수 잘 그리는 화가를 보지 못했다. 지금 이첩을 보니 고송유수관 역시 그 이름이 헛되이 전하지 않음을 알았다. 팔십을 바라보는 미산 늙은이(謙玄以後 不見山水善畵者矣 今覽此帖 卽松水館亦是名不虛傳 望八眉翁)”. ‘마씨(馬氏)’ 백문방인, ‘경휘(景羲)’ 주문방인을 찍었다. **【화면의 구성과 화풍】** 송석원은 정조 연간에 활동한 평민시인 천수경이 옥류동 골짜기에 모옥(茅屋)을 짓고 ‘송석원’이라 이름 붙인 데서 유래한다. 송석원에서 가장 인상적인 경물은 절벽처럼 보이는 큰 바위를 배경으로 넓게 자리 잡은 암반이다. 이 암반 위에 시회의 참가자들이 자유스럽게 나뉘어 앉아 시모임을 즐기고 있다. 그 뒤편으로는 인왕산 정상의 능선이 오른쪽으로 이어지며, 그 사이사이를 수채화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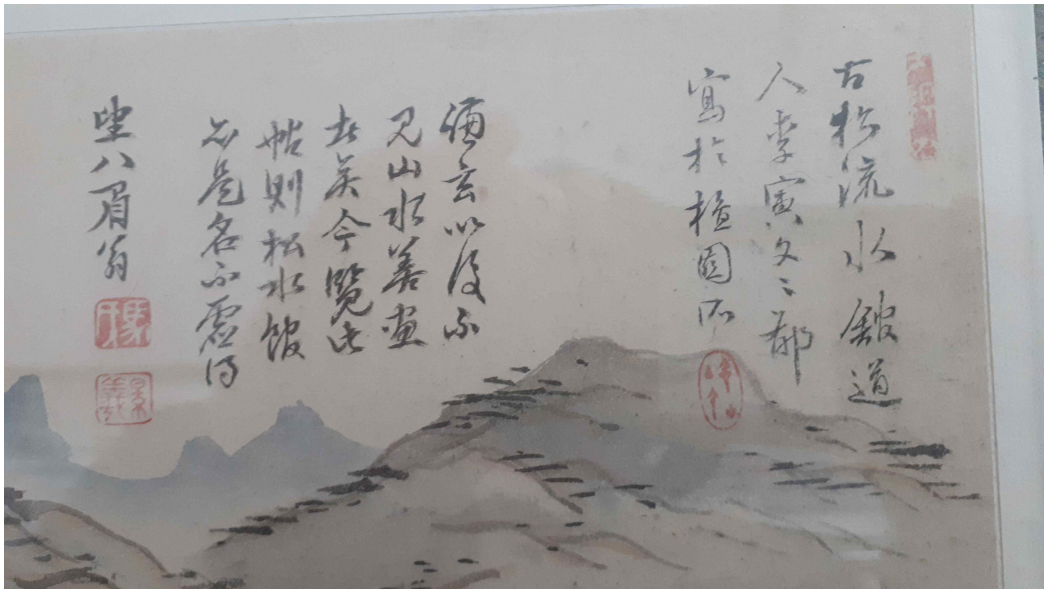
	럼 가볍게 채색하였는데, 봉우리 부분을 밝게 남겨놓아 입체감 있는 변화를 주었다. 화면 오른편으로는 백악산이 원경(遠景)으로 자리 잡았다. 화면의 중단 오른쪽 공간은 옥류동에 해당하며,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가옥이 드문드문 보인다. 간결하면서도 성근 소나무가 그 사이를 메우며 구체적인 실경의 공간을 설명해주고 있다. 화면 아래에는 옥류동에서 내려온 물길이 작은 바위들 사이로 흘러가고, 그 물길 위쪽 지대는 점묘(點描)에 담채를 가하여 잡풀 무성한 여름의 계절감을 나타내었다. <송석원시회도>는 이인문이 40대 후반에 그린 매우 능숙한 화풍의 실경산수화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앞 시대의 겸재 정선(鄭敾)이나 동시대의 김홍도의 화법과 겹치지 않는 독자적인 화풍을 보여주었다. 실제 경관의 특징을 면밀하게 반영하면서도 세련된 필치로 현장감을 표현하였다.
조사 결과	■ 지정 여부 : 지정 가능 <송석원시회도>는 40대 후반인 이인문의 개성적인 화풍이 돋보이는 실경산수화이며, 1791년의 제작연도가 파악되는 기년작(紀年作)이다. 아울러 《옥계청유첩》의 기록을 통해 평민 시인들이 주도한 그림의 제작 배경과 경위도 알 수 있고, 그림 속 실경의 경관도 찾아 비교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 그림이다. 아울러 보존 상태도 양호하고, 원형의 상태도 잘 유지하고 있어 지정대상으로서의 가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작품이 포함되어 있었던 <<옥계청유첩(玉溪淸遊帖)>>이 추후 지정될 경우에는 지정 명칭을 재고할 필요가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김홍도의 <송석원시사야연도>와 함께 원래 수록되었던 순서에 따라 “김홍도 필 <송석원시사야연도> 및 이인문 필 <송석원시회도>”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 자료 2	문화재 이미지

전체 그림



세부(글씨 부분)



【제주십이경도】

참고 자료 1	조사보고서

검토종별	서울시 유형문화재	문화재명	제주십이경도(濟州十二景圖)
수 량	12점	규 격 (㎝)	56.2×35.3 (그림 각 폭)
재 료	종이에 수묵 채색	소유자	이호재
시 대	조선 후기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조사 내용	1. 문화재 현황 ■ 현황 – 이 작품은 총 12점의 낱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폭은 56.2×35.3cm 내외이며(소장처 기록은 57.0×36.5cm), 종이 틀로 고정하고 종이 상자에 넣어 보관 중이다. 각 폭을 둘러싼 종이틀은 미색 비단으로 마감하였으며, 그림이 접하는 테두리(내협)에는 너비 0.2cm가량의 금색 테이프를 둘렀다. 그림 위에 종이틀을 두르면서, 그림은 사방 약 0.8cm 정도 가려진 것으로 보인다. – 각 폭은 상단에 화기를, 하단에 그림을 배치하였다. 화기와 그림의 비율은 1:3이다. 그림은 종이에 수묵채색으로 그려졌으며, 화면은 노화로 인하여 부분적인 오염과 박락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안정적이고 양호하다. 현재 낱폭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원래의 장황 형태와 순서는 명확히 알 수 없다. – 화기는 먹선으로 외곽선을 그린 뒤 해서체로 기입하였으며, 가는 각필로 칸을 구획한 뒤에 글자를 썼다. ■ 특징 및 평가 – 이 작품은 1970년대 일본에서 출판된 『李朝の民畵』(講談社, 1975)에서 처음 소개되었다. 현 소유자는 2015년 5월 31일 열린 서울옥션 제15회 홍콩경매에 출품된 것을 낙찰받았다. 작품 전체가 국내에 일반공개된 것은 2020년이 처음이며, 그해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제주공예박물관과 국립제주박물관에 전시되었다. – 이 작품은 조선 후기, 1694~96년 제주목사를 역임한 이익태(李益泰, 1633–1704)가 제주도의 명승 10경을 꼽고 화공을 시켜 제작한 ‘탐라십경도(耽羅十景圖)’를 주제로 하였다. – 이익태가 품제한 탐라십경은 조천관(朝天館), 별방소(別防所)·성산(城山), 서귀소(西歸所), 백록담(白鹿潭), 영곡(靈谷), 천지연(天池淵), 산방(山房), 명월소(明月所), 취병담(翠屛潭)이다.[1] 이익태는 화면 상단에는 화기(畫記)를 배치하고, 하단에		

는 그림을 그려서 10폭의 소형 병풍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 이 작품은 이익태가 품제한 10경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화면 구성 및 화기도 대부분 동일하다.[2] 다만 <제주목도성지도>와 <화북진>의 2장면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이 장면들은 기존에 알려진 탐라십경도 이본에는 없던 것으로, 이익태의 탐라십경도가 후대에 다양하게 변용된 양상을 드러낸다. 기존에 알려진 탐라십경도 후모본 가운데, 10경의 구성을 온전하게 갖추고 있는 것은 국립민속박물관 소장의 《제주십경도》가 유일하다.[3]
- <제주목도성지도>는 현재 알려진 조선 후기 제주도 관련 지도 및 실경도 가운데 제주목의 지형지물과 주요 시설을 가장 상세하게 재현한 회화식 지도라는 점에서 큰 가치를 지닌다. 제주목의 전체 모습은 이형상의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1703) 〈제주조점〉, 〈건포배은〉에서 소략하게 그려져 있다. 기존의 탐라십경도 이본 가운데 《제주도도》, 《영주십경도》에는 제주도 전도가 포함되어 있다.
- 전체적으로 회화식 지도의 형식에 조선 중기의 실경산수화풍을 결합한 양식으로 그려졌으며 지명을 병기하였다. 선묘와 채색, 선염 등을 중심으로 경물을 표현하여 평면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수목과 건물을 묘사한 필치는 가늘고 꼼꼼한 편이다. 전반적인 구도와 화풍은 후대의 탐라십경도 이모본 4종과 제주목사 이형상이 제작한 기록화첩 《탐라순력도》(1703)와 유사하다.
- 화풍과 채색 등에 근거할 때, 19세기에 제작되어 도식화가 진행되고 세부 묘사가 정확하지 않은 《제주십경도》(국립민속박물관 소장)보다는 18세기 초반 제작된 《탐라순력도》의 화풍에 더욱 가깝다.
- 화면에 그려진 건축물의 축조 및 소실연대로 볼 때, 18세기 제주도의 현황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4] <제주목도성지도>에서는 1724년에 화재로 인하여 다시 세운 제주향교가 산지천의 동쪽에 그려져 있고, 1741년 허물어진 연무정이 광양 밖에 그려져 있다. 또 <화북진>에는 1737년 건립한 영송정이 그려져 있다.

2. 원형 유지 정도

-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된 10폭 화첩 상태의 《제주십경도》는 화면에 가로, 세로로 접은 선이 나타난 데 비하여, 이 작품에는 접은 선이 없다. 또한 표면의 오염으로 볼 때 외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현재는 낱폭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본래는 이익태의 '탐라십경도'처럼 소형 병풍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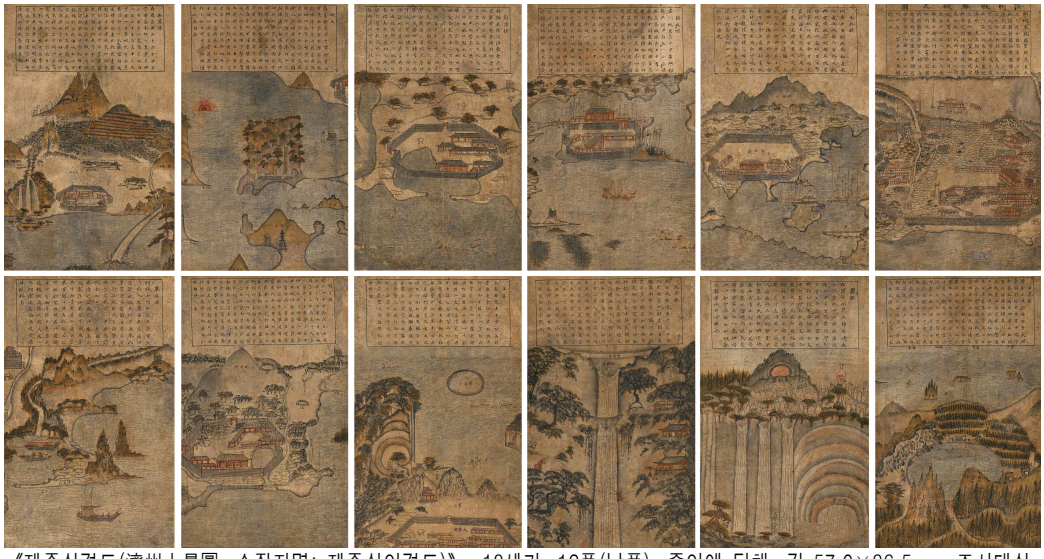
[참고문헌]

국립제주박물관, 『탐라순력도: 그림에 담은 옛 제주의 기억』, 2020.
서울옥션, 『2015 | Spring : Seoul Auction Hong Kong Sale Highlight』, 2015.
윤민용, 「조선 후기 濟州實景圖의 비교 연구:《耽羅巡歷圖》와 '耽羅十景圖' 후모본을 중심으로」, 『한국고지도연구』 13:2, 2021, pp. 33-60.
이원복,「제주 십경도의 성립과 전개-한 정형을 이룬 《탐라십경도》」, 『탐라순력도-그림에 담은 옛 제주의 기억』, 국립제주박물관, 2020, pp. 228-237.

	이태호,「조선 후기 김남길 화파의 《제주 12경 병풍》, 처음 대중에 선보이다」, 『제주실경도와 제주문자도』, 제주공예박물관, 2020, pp. 14-23.
조사 결과	**3. 지정 여부 : 可** - 이 작품은 조선 후기 제주도의 실경을 상세하게 기록한 그림으로 역사적, 미술사적, 지도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 이익태가 품제한 탐라 십경을 고스란히 수록하면서도 <제주목도성지도>와 <화북진>이 추가되어, 조선 후기 제주실경도의 수요 증가와 '탐라십경도'의 변용 양상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 특히 현재 전하는 탐라십경도 후모본은 대부분 19세기에 제작되었으나, 이 작품은 이익태가 제작한 1696년의 '탐라십경도', 1703년에 제작된 《탐라순력도》의 양식에 보다 가깝기 때문에, 18세기의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시지정문화재로서 지정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지정 명칭은 "제주십경도(濟州十景圖)"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

1) 李益泰, 『知瀛錄』,「耽羅十景圖序」.
2) 〈별방진〉 화기의 마지막 줄에 "제주목사 유한명이 말을 사다가 우도에 넣어 방목하였다(牧使柳漢明, 貿馬入牧牛島)"라는 문장이 추가되었다.
3) 탐라십경도 4종이 도록과 전시를 통해 소개되었다. 국립민속박물관 소장의 《제주십경도(濟州十景圖)》와 《제주도도(濟州島圖)》, 일본 고려미술관의 《영주십경도(瀛州十景圖)》, 개인 소장의 《영주도》가 전한다. 탐라십경도의 제작 및 전래 현황에 대한 정리는 윤민용, 「조선 후기 濟州實景圖의 비교 연구:《耽羅巡歷圖》와 '耽羅十景圖' 후모본을 중심으로」, 『한국고지도연구』13:2(2021), p. 40 참조.
4) 오상학은 제작연대를 1720~1734년으로 추정하였으나, 이태호는 1778~1785년 사이, 윤민용은 1737~1741년의 상황을 그린 것으로 보고 있다. 오상학, 「조선시대 제주도 지도의 현황과 유형별 특성」, 『제주도연구』53(2020), p. 214; 이태호,「조선 후기 김남길 화파의 《제주 12경 병풍》, 처음 대중에 선보이다」, 『제주실경도와 제주문자도』(제주공예박물관, 2020), pp. 20-21; 윤민용, 위의 논문, p. 55.
5) 이태호,「조선 후기 김남길 화파의 《제주 12경 병풍》, 처음 대중에 선보이다」, 『제주실경도와 제주문자도』(제주공예박물관, 2020), p. 14. 한편 이원복은 바탕에 병풍의 나무살 자국이나 손때 등이 보이지 않아서 절첩본이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원복,「제주 십경도의 성립과 전개-한 정형을 이룬 《탐라십경도》」, 『탐라순력도-그림에 담은 옛 제주의 기억』(국립제주박물관, 2020), p. 231.

참고 자료 2	문화재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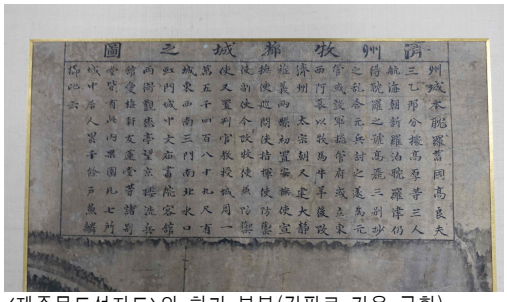
《제주십경도(濟州十景圖, 소장자명: 제주십이경도)》, 18세기, 12폭(낱폭), 종이에 담채, 각 57.0×36.5cm, 조사대상



이익태의 탐라십경도에서 새롭게 추가된 2장면, 〈제주목도성지도〉과 〈화북진〉



현재 개별 폭의 장황 상태:
종이틀에 고정하고 내협에 금색 테이프를 둘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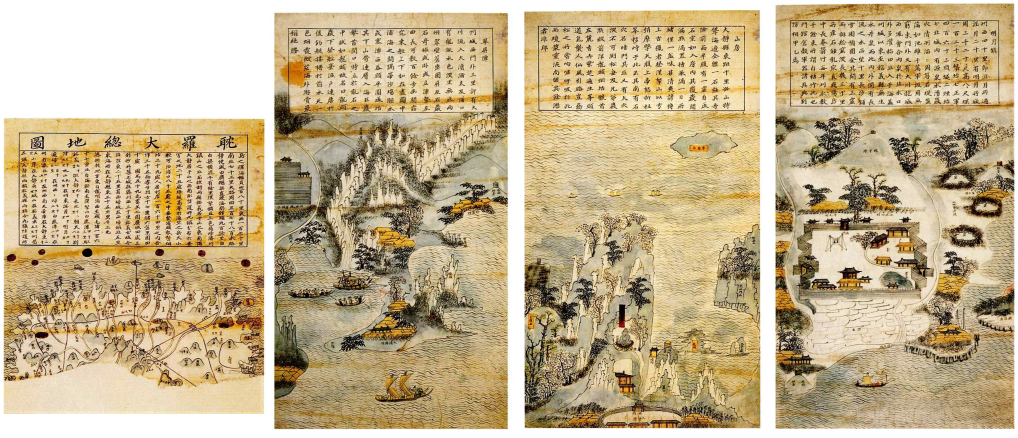
〈제주목도성지도〉의 화기 부분(각필로 칸을 구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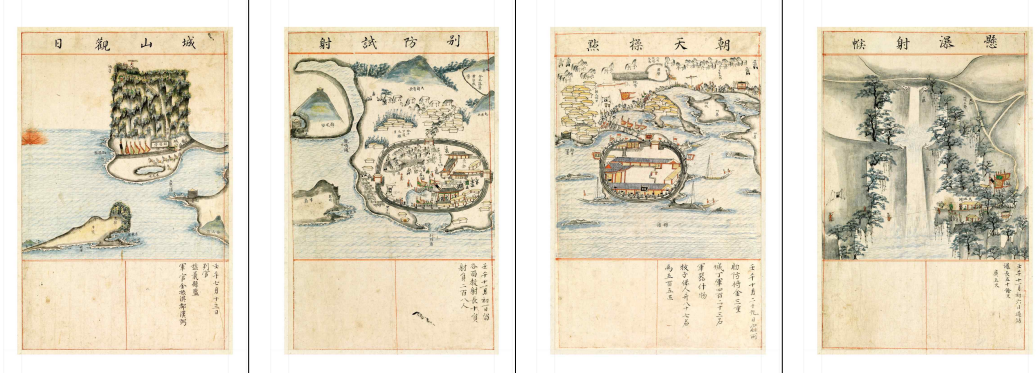
참고.《제주십경도(濟州十景圖)》, 19세기, 10폭, 화첩, 종이에 담채, 각 52.0×30.2cm,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참고.《제주도도(濟州島圖)》, 19세기, 현 4폭, 병풍, 종이에 담채, 각 61.0×40.5cm,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참고.《영주십경도(瀛州十景圖)》, 19세기, 현 4폭, 축, 종이에 담채, 각 63.1×36.0cm, 일본 고려미술관 소장



참고. 이형상(李衡祥) 글, 김남길(金南吉) 그림,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 부분(왼쪽부터 〈성산관일〉, 〈별방시사〉, 〈조천조점〉, 〈현폭사후〉,
1703년, 41면 화첩, 종이에 채색, 각 56.9×36.4cm, 제주특별자치도 소장

【분청사기 선각박지 모란절지문 호】

검토종별	서울시 유형문화재	문화재명	분청사기 선각박지 모란절지문 호 (粉靑沙器線刻剝地牧丹折枝紋壺)
수 량	1점	규격(㎝)	높이 27.9, 구경 13.1, 저경 12.7
재 료	자기(磁器)	소 유 자	(재)금성문화재단
시 대	조선시대	소 재 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옛길 23 (금성문화재단 수장고)

조사 내용

1. 문화재 현황

조사대상은 조선시대 분청사기 항아리이다. 구연부는 외반하며 그 아래로 이어진 사선의 목은 곡선으로 벌어지는 어깨로 연결된다. 어깨를 지난 기측선은 사선으로 좁아들어 평저의 저부로 이어진다(도 1).



도1. 분청사기선각박지모란절지문호, 조사대상-1



도2. 분청사기선각박지모란절지문호, 조사대상-2



도3. 분청사기선각박지모란절지문호, 조사대상-3



도4. 조사대상 상단 보조문양



도5. 조사대상 내부 물레흔



도6. 조사대상 저부와 접지면 세부

조사대상 항아리는 도기를 제작하는 방식으로 동체가 만들어졌음을 그릇에 남아 있는 제작 흔적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항아리의 내외면에는 점토띠를 이어붙인 다음 타날기법(打捺技法)으로 동체를 성형했던 흔적이 남아 있으며, 특히 외면에는 사격자 형태의 타날문이 부분적으로 잔존한다(도 2, 3). 내면의 경우 성형 흔적은 대부분 정면되었고 그 위로 얕은 음각선 형태의 물레흔이 다수 자리한다(도 4, 5). 저부는 평저로 물레 위에 원형의 흙판을 마련하고 그 둘레에 흙띠를 이어 올렸던 흔적이 남아 있다. 바닥까지 모두 시유되었으며 번조 받침의 흔적은 선명하게 남아있지 않다(도 6).

조사대상 항아리의 문양은 선각 기법과 박지 기법으로 장식되었다. 항아리는 구연부와 저부를 제외하고 백토로 분장되었으며, 어깨에는 분장된 백토를 선 위주로 음각하여 문양을 장식하는 선각 기법(線刻技法)으로 시문된 화판문(花瓣紋)이 자리한다(도 4). 동체에는 모란절지문(牧丹折枝紋)이 선각 기법으로 묘사되었고 그 배경은 박지 기법(剝地技法)으로 모두 걷어냈다. 모란절지문은 중앙에 활짝 핀 모란꽃과 줄기가 자리하고 그 양쪽으로 가지가 'V' 자로 벌어지는 모습이다. 각 가지에는 잎사귀가 달려있으며 유사한 모습의 모란절지문이 동체 양쪽에 대칭으로 자리한다(도 1). 두 개의 모란꽃 잎사귀가 서로 마주하는 동체 한쪽에는 모란 잎사귀 위쪽으로 모란꽃과는 별개의 커다란 잎사귀가 구름 모양처럼 묘사되어 있다(도 2). 항아리의 어깨 부분과 동체 상단 일부는 백토층이 두껍게 분장되었으나 그 외 부분의 백토층은 상대적으로 얇은 편이다. 동체 하단부는 부분적으로 백토가 분장되지 않아서 백토 붓칠의 흔적이 나타나기도 한다. 동체의 하단부는 기면을 상하 방향으로 얕게 깎아내는 방식으로 정면(整面)한 흔적이 남아있다(도 6).



도7. 조사대상 외면 유약 뭉침 부위



도8. 조사대상 상부 유약 용융 상태

조사대상 항아리의 태토는 가는 모래 알갱이와 일부 잡물이 섞여 있는 편이다. 항아리는 대체로 회색이 감도는 녹갈색을 나타내며, 회청색이나 황갈색이 두드러지는 곳도 있다. 외면이나 저부 일부는 유약이 잘 녹지 않고 뭉쳐서 백색을 나타내기도 하고 핀홀을 관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또한 동체 일부에 유약이 두껍게 뭉친 곳은 기면의 유약이 부식되기도 했고 그 주변으로 빙렬도 다수 자리한다. 반면에 동체 상단을 중심으로 유약이 잘 녹은 곳은 유층이 투명하고 광택도 또한 높은 편이다(도 7, 8).

조사대상 항아리는 구연부 일부가 수리된 것을 제외하면 특별하게 결실된 곳을 복원하거나 수리한 부분이 드러나지 않는다. 대체로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그릇 표면에 부착되었던 잡물 제거 등을 위해 기면을 부분적으로 보수한 흔적들은 일부 남아 있다(도 9, 10, 11).



도9. 조사대상 수리흔 세부-1



도10. 조사대상 수리흔 세부-2



도11. 조사대상 수리흔 세부-3

2. 내용 및 특징

조사대상 분청사기 항아리의 주문양은 선각(線刻) 및 박지 기법(剝地技法)으로 장식되었다. 그릇을 백토로 분장한 다음 분장된 백토층을 선으로 음각하여 문양을 시문하는 장식 기법을 선각으로 지칭하고, 주로 문양의 배경을 면으로 걷어내는 시문 기법을 박지로 구분한다. 선각과 박지기법은 대체로 함께 활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도12. 〈분청사기선각박지모란당초문항아리〉, 높이 45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관 14562)



도13. 〈분청사기선각박지모란당초문병〉, 높이 30.1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동원 453)



도14. 〈분청사기선각박지모란당초문편병〉, 높이 20.4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신수 15844)

조선 전기 분청사기는 15세기 후반 이후 상감 기법 외에 선각박지 기법이나 철화 기법 등으로 문양이 장식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 특히 다양한 문양이 장식된 선각 박지 분청사기들이 전국에 걸쳐 제작되었으며, 전라도 지역에서 다수의 생산지가 확인되었다. 선각박지 기법으로 문양이 장식된 분청사기의 기종은 대체로 병, 항아리, 편병이 주류를 차지하는 가운데 장군을 비롯하여 매병, 합, 제기, 자라병, 발, 접시 등 다양하다

	(도 12, 13, 14). 대표적인 문양은 모란문(牧丹紋), 연화문(蓮花紋), 초화문(草花紋), 어문(魚紋) 등이며, (도 12, 13, 14)처럼 모란문과 연화문의 경우 주로 당초문(唐草紋) 형식으로 묘사되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조사대상 항아리에 장식된 모란문은 가지 끝에 꽃이 피어있는 모습의 절지(折枝) 형태이다. 절지형으로 묘사된 모란문은 당초형 모란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수량이 현전하고 있으며, 당초형 모란문에 비하여 다소 개성적인 면모가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다(도 15, 16). 조사대상 항아리의 모란 절지문 역시 현전하는 다른 분청사기 가운데 동일한 사례를 확인하기 어렵다(도 17). 전라남도 광주시 충효동, 전라북도 고창군 용산리 등지의 분청사기 요지에서 제작된 선각박지 항아리들은 대체로 모란 당초문, 연화 당초문 등이 전형적인 모습으로 그릇에 시문되었고, 보조 문양대 역시 일정한 형태의 연판문이다. 그와 달리 조사대상 항아리의 모란문은 중앙에 자리한 활짝 핀 모란꽃과 주변에 배치된 잎사귀가 개성 있는 모습으로 동체 양면에 대칭으로 배치되었다.  도15. 〈분청사기선각박지모란절지문항아리〉, 높이 38cm, 개인 소장  도16. 〈분청사기선각모란절지문항아리〉, 높이 34cm, 일본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  도17. 조사대상, 높이 27.9cm 현전하는 분청사기 가운데 선각박지 기법으로 문양을 장식한 입호(立壺)는 대체로 높이가 35㎝ 이상인 경우가 많다. 조사대상처럼 30㎝ 미만의 중형의 입호 형태의 항아리들은 완형에 가깝게 남아 있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조사 결과	**3. 지정 여부: 지정 가** - 조사대상 분청사기 항아리의 명칭은 지정신청서에 명기된 <분청박지모란문호> 대신에 실제 유물에 장식된 문양의 특징을 반영하여 <분청사기 선각박지 모란절지문 호>로 정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조사대상 <분청사기 선각박지 모란절지문 호>는 구연부의 일부가 수리되었으나 원래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문양 등 조형 특징의 희소성과 독창성 등이 15세기 후반 분청사기 제작 경향과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유용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사료됨. –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조사대상은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해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묘각사 아미타삼존도불감】

참고 자료 1	조사보고서

검토종별	서울시 지정문화재	문화재명	묘각사 아미타삼존불감 妙覺寺 阿彌陀三尊佛龕
수 량	1점	규 격 (㎝)	불감 : 31.7×24.0×2.0 아미타삼존도 : 27×24 신중도 2폭 : 각 27×11
재 료	불감 : 나무 불화 : 비단	소유자	대한불교관음종 묘각사 주지 이무웅
시 대	조선 후기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종로63가길 31 묘각사

조사 내용

1. 문화재 현황

○ 불감(佛龕)은 보통 전각 혹은 원통 모양의 이동용 불당(佛堂)이다. 내부에 불상 혹은 불화를 봉안하며, 겉에 여닫을 수 있는 문을 달아 필요시 열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내부에는 대부분 불상을 봉안하지만 본 묘각사 불감처럼 불화를 봉안하는 감실도 드물게 남아 있는데 이 경우 외형은 대부분 납작한 상자(箱子) 형태이다.

○ <묘각사 아미타삼존불감>은 나무로 제작한 불감 내부에 아미타삼존도를 붙여 봉안한 방형 불감으로, 상자 전면에 양쪽으로 여닫이문을 달아 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감실의 문을 열면 중앙의 판면 바탕에 우선 비단이 붙어 있고 그 위에 다시 암적색 비단에 아미타삼존과 시방불(十方佛)의 비래(飛來) 장면이 황선묘(黃線描)로 그려진 비단 화면이 붙어 있다. 좌우 문비(門扉) 안쪽에는 역시 암적색 비단 바탕에 각기 신장상이 그려져 있어 중앙의 아미타삼존을 외호하는 구성을 이룬다. 삼면의 불화 테두리에는 2-3겹의 흑색 비단이 둘러져 화면의 외곽을 구획하고 있다. 불상의 위쪽 천개(天蓋)가 그려진 부분에는 화면 상단에서부터 짧은 낙영(絡纓)이 하나 드리워져 있어 독특한데, 아마도 탱화 위에 걸어놓는 복장주머니 대신 설치한 듯하다. 불화의 복장주머니는 보통 위에 뚜껑이 달린 주머니와 아래로 세 가닥 낙영 장식이 달려 있는 형태가 대부분이나, 이 불화에는 복장주머니를 대신하여 간략하게 한 가닥의 낙영 장식만 붙여놓은 것 같다. 끝에 달린 3개의 삼각형 장식 중 가운데 것은 현재 결실되어 있다. 장식이 떨어진 끝부분의 바탕천은 주황색이 선명하여 탈색과 오염의 정도를 알아볼 수 있다.

○ 아미타불은 방형 대좌 위의 연화좌에 앉아서 왼손을 복부 앞에 놓고, 오른손을 어깨높이로 들어 설법인을 짓고 있으며 삼중선이 둘러진 원형 두광과 신광을 배경으로 앉아 있다. 어깨가 넓은 건장한 신체이며 둥근 얼굴에 높진 않지만 뾰족한 형태의 육계가 표현되었다. 채색이 마모되어 이목구비의 세부 형태가 잘 드러나지는 않으나 눈과 입이 매우 작고 섬약하다. 눈썹과 수염은 흑선으로 짙고 두드러지게 그려져 있어 제작 이후 가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오염이 심한 편이며 광배는 일

부 채색층이 탈락되었다. 본존 왼쪽의 관음보살은 특히 얼굴과 가슴 부분에 오염이 심하고 얼굴의 일부 채색층이 탈락되어 있어 세부 모습은 거의 알아볼 수 없다. 머리에는 영락 장식이 길게 내려온 보관을 쓰고 있으나 화불이나 세부 모양은 오염으로 인해 확인할 수 없다. 오른손은 손가락을 위로 치켜들어 엄지와 약지를 맞대고 있으며 왼손은 앞으로 뻗어 정병을 살짝 잡고 있다. 세지보살은 상태가 양호하지만, 본존과 마찬가지로 이목구비는 섬약하게 표현되어 있다. 오른손을 가슴 앞으로 들어 경책을 잡고 있으며, 둥근 어깨 위로 검은 보발이 허리까지 길게 내려와 있다. 삼존 모두 건장하며 균형있는 신체와 안정된 자세로 표현되어 있으며, 복식은 굵은 황선으로 비교적 유연하게 묘사되어 있다. 좌우 협시보살 위로는 구름을 타고 시방제불이 날아오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는데 각기 연화좌 위에 앉아 있으나 얼굴의 세부 표현은 알아보기 어렵다. 본존 위쪽의 구름층 너머로는 천개(天蓋)와 백호(白毫) 광선이 좌우로 퍼져나가고 있다.

삼존도의 테두리는 흑색 천으로 변아(邊兒)를 둘렀는데, 상부의 변아는 채색층의 탈락이 심하고 중앙에는 짧고 굵은 낙영이 살짝 드리워져 있으나 이 역시 표면 채색층의 오염과 변색 및 탈락이 심하다. 좌우 문비에는 각기 무장형 신장이 시립하고 있다. 갑옷을 입었으나 무기는 들고 있지 않으며 가슴 앞에서 합장한 형태이다. 이는 천왕으로 볼 수도 있으나 합장한 모습이 불법과 가람의 신으로 믿어지는 위태천(韋馱天)이 아닐까 한다. 위태천은 신들의 우두머리로서 신중도에서는 신들에게 둘러싸여 중심에 자리하고 있으며, 경전에서는 앞이나 뒤 혹은 앞과 뒤 양쪽에 위치하여 불법의 수호자 역할을 담당한다. 일반적으로 가슴 앞에서 합장하고 팔 위에 가로로 금강저(金剛杵)를 올려놓은 모습이 가장 보편적인 형상이지만 이 불감에서는 금강저가 생략되어 있다.

○ 채색을 배제한 선묘불화는 사경변상도의 예에서 보듯이 일찍부터 제작되어 왔지만 조선시대에 특히 예배용 불화로서도 꾸준히 제작 봉안되어 왔다. 특히 조선 후기인 19세기에 선묘불화들이 많이 제작되었다. 또한 조선 전기에는 주로 금선묘로 그렸으나 조선 후기에는 이처럼 적색 혹은 감색(紺色)이나 흑색 바탕에 황색 선묘로 묘사하는 것이 보편적인 방식이었다. <묘각사 아미타삼존도>는 도상과 존상 및 복식의 형태 등 19세기 불화에서 볼 수 있는 모습과 상통한다.

○ 이 불감과 같은 상자형의 불감은 현재 묘각사 불감을 포함하여 총 5점이 알려져 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일본의 고려미술관, 개인 소장(소재 불명), 또 관음보살로 도상은 다르지만 부산박물관에도 한 점 소장되어 있다. 묘각사 불감의 조형적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나무 판재 위에 여닫이 문을 달기 위해 문울거미를 국화형 거멀잡이로 고정시켜 만들었으며, 문은 양쪽 상, 하단에 삼엽형 경첩으로 달아 놓았다. 전면 중앙에는 앞바탕은 없이 국화형 받침 위에 고리를 달고 걸쇠를 달아 놓았고, 불감의 상면에는 어디엔가 걸어 놓기 위해 끈을 달기 위한 장치로 국화형 받침 위에 고리를 두 개 박아 놓았다. 상자 겉면에는 흑칠이 되어 있고, 장석의 재료는 황동으로 보이는 것도 있고, 철장석처럼 보이기도 하여 육안으로 확실하지 않지만 질이 좋아 보이지는 않으며, 녹 등 손상이 있는 편이다. 장석의 표현이 단순하고 조이질이나 다른 섬세한 장식이 되어 있지 않다. 유사 사례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이나 개인소장본의 장식에 비해 약간 격이 떨어지는 장식성을 보인다.

이 불감과 형태 및 도상이 유사한 예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불감을 들 수 있다. 불

	감의 형태와 중앙에 아미타삼존도와 시방제불의 비래 장면, 좌우 문비에 신장상을 배치한 구성과 각 그림의 외곽이 굵은 테두리로 둘러진 점 등 제작 방식과 불화의 도상이 공통적이어서 참고가 된다. 그러나 국립중앙박물관본의 좌우 신장상은 금강역사상을 그린 것이지만 묘각사본은 갑옷을 입고 합장한 위태천으로 보이는 도상이다. 국립중앙박물관 본의 불, 보살 형태와 필선 등의 양식은 18세기 불화의 특징을 지니고 있음에 비해 묘각사본은 필선의 양상에서 이완되고 기량이 떨어져 보여 시대적인 차이를 감지하게 된다. 이 불감은 아미타삼존도의 화풍 및 목공예적 양식을 종합해 보면 조형적인 면이 돋보이는 18세기보다는 19세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원형 유지 정도** ○ <묘각사 아미타삼존불감>은 상태가 완형으로 남아있지만 문이 틀어져서 틈이 벌어지고, 내부의 그림을 둘러싼 종이와 비단 등도 부분적으로 탈락되고 오염된 부분이 있다. 아미타삼존도는 전체적으로 오손(汚損)과 탈색 및 얼룩이 심한 편이며, 화면 곳곳에 채색층이 훼손되기도 하였다. 특히 테두리에는 여러 곳에 바탕재가 탈락되는 등 손상이 심한 편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도상이나 양식은 대부분 알 수 있다.
조사 결과	**3. 지정 여부 : 可** ○ <묘각사 아미타삼존 불감>은 비록 부분적으로 손상이 있고 기존의 조선 후기 불감에 비해 장식성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완형(完形)을 유지하고 있으며 불감 내부에 아미타삼존도를 그려 넣은 현존 사례가 극히 드문 불감이라는 점이 독특하다. 아미타삼존도는 특히 19세기에 성행한 적색 바탕에 황선묘로 그린 선묘불화라는 점과 불화의 양식 역시 19세기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목제 불감의 조형 역시 19세기로 추정된다. 불화를 그려 넣은 불감이라는 희소성을 감안해 볼 때 <묘각사 아미타삼존불감>은 시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지정 명칭은 <묘각사 아미타삼존도불감>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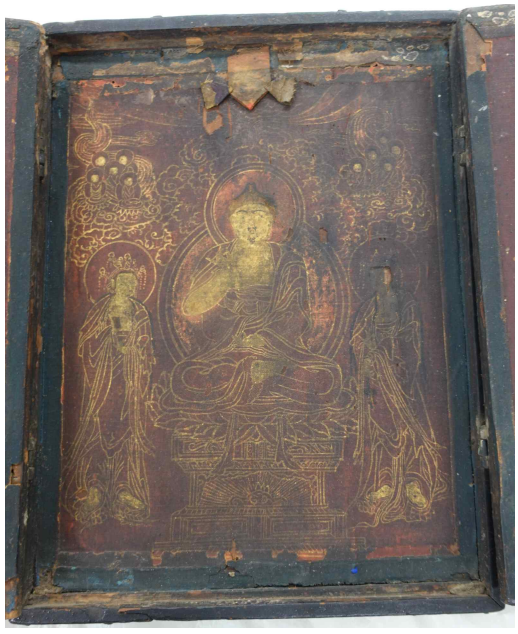
참고 자료 2	문화재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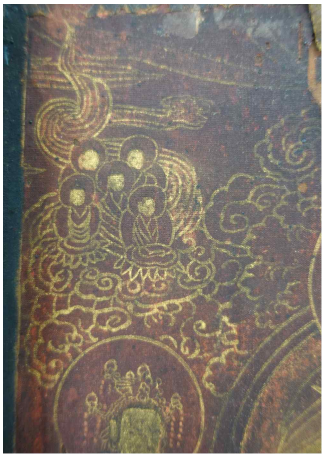
불감 내부의 아미타삼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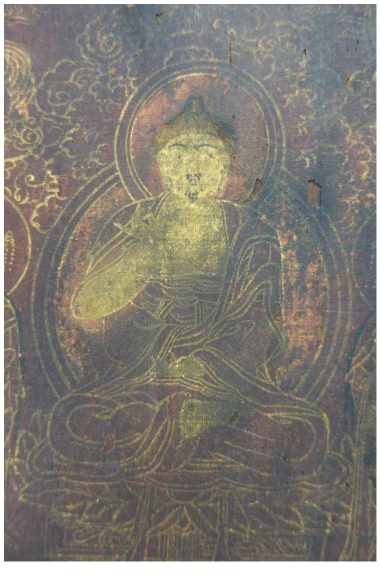
불감 상부의 낙영



아미타삼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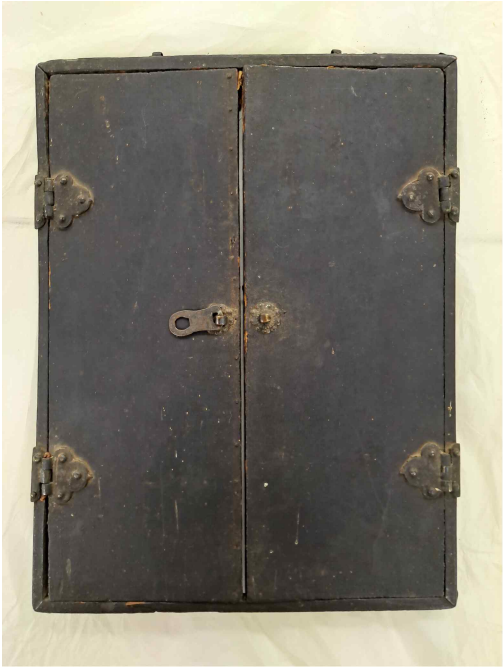
시방불의 비래장면



아미타불



신장



불감 전면



문고리



경첩



하단



상면 고리와 거멀장석



상면 고리장식과 국수형 거멀잡이, 문틀어짐



문짝 벌어진 틈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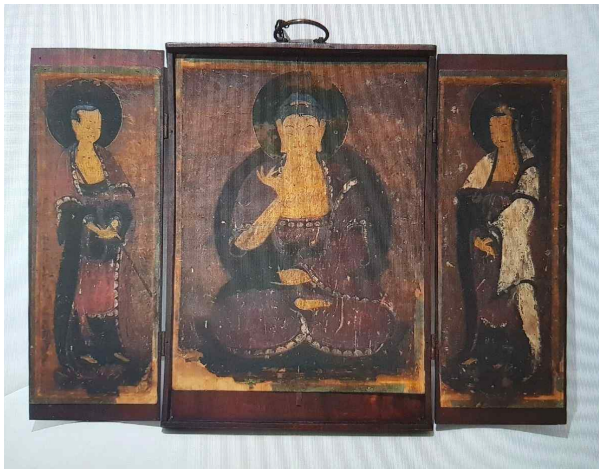
아미타삼존불감, 국립중앙박물관



내부 아미타삼존도



목제 불감, 개인소장



내부 화면

【진재해 필 조문명 초상】

참고 자료 1	조사보고서

검토종별	서울시 유형문화재	문화재명	진재해 필 조문명 초상 (秦再奚 筆 趙文命 肖像)
수 량	1점	규 격 (㎝)	120×60(그림) 166.4×74.6(전체)
재 료	비단에 채색	소유자	㈜마이아트옥션
시 대	1728년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 62-5, 6층
조사 내용	**1. 문화재 현황과 내용** 이 작품은 족자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화본을 둘러싼 상하 좌우의 변(邊)은 화면과 별 차이가 없는 약간 노랗게 변색된 무늬있는 비단을 둘렀다. 상하 회장(回裝)은 진한 하늘색 비단으로 대어서 족자를 펼쳤을 때 상하를 안정감 있게 잡아주는 느낌을 준다. 족자의 상하축(軸)도 잘 보존되어 있으며, 족자끈, 유소(流蘇)도 원래의 형태로 보인다. 변과 회장 부분에는 다소 비단이 손상된 부분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양호하다. 족자의 우변 상단에 “豐陵府院君趙文明號鶴巖 肅廟朝文科 英廟朝御將策揚武功勳訓將摠戎使大提學左議政 謚文忠”이라는 墨書가 있어 조문명 초상이라는 점을 밝혀두었다. 또 족자 상축에도 ‘文忠公 影幀’이라고 墨書되어 있다. 현재 오동나무 상자 속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흑칠목함이 아닌, 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오동나무 상자 뚜껑 겉면에는 ‘僻隱筆 文忠公 鶴巖 諱文明 四十九歲 眞’이라고 묵서되어 있으며, 뚜껑 내부에는 ‘乙亥仲秋節 海亭 題’라고 墨書되어 있다. 을해년은 오동나무 상자의 상태가 깨끗한 것으로 보아 1995년으로 보인다. 조문명 초상은 배경을 생략하거나 간단한 화문석이나 交椅, 足座 정도를 비치한 일반적인 초상화와는 다른 형식인 점이 가장 주목된다. 주인공 조문명이 높은 산과 바위, 흐르는 개울물 옆에서 큰 소나무를 어루만지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조문명은 흰색 학창의에 푸른 운건(雲巾)을 착용한 뒤 녹색 당혜(唐鞋)를 신고 반죽장(斑竹杖)을 들고 소나무를 만지며 앞을 바라보는 모습이다. 이런 모습은 동양 회화에서 흔히 도연명의 귀거래사의 구절 중 ‘무고송이반환(撫孤松而盤桓; 외로운 소나무를 어루만지며 서성이다)’을 따서 ‘무송반환도’로 많이 그려졌다. 조문명이 이렇게 특이한 형식의 초상화를 그리게 된 연유는 화면 우상단에 적힌 자제시를 통해 알수 있다. 踈慵不合畫麒麟 更倩秦君作小眞 네 성긴 모습 기린각 그림에 적합지 않아, 다시 진군에게 청해 작은 그림으로 그렸네 老石蒼松何世界 芒鞋竹杖是前身 노석과 저 푸른 솔은 어떤 세계인가?			

	죽장망혜는 마치 전생의 모습인 듯하네. 戊申 中秋 鶴巖 山人 自題 무신년 중추에 학암 산인이 직접 쓰다. 기린각 그림이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그린 공신상을 말한다. 그런데 이 초상화와 같은 1728년에 그린 조문명의 <분무공신상(奮武功臣像)> 이 이화여대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조문명은 공식적 초상화를 그리고, 이어 사적인 초상화를 자연을 배경으로 삼은 형식으로 그리게 한 것이다. 이런 모습은 17세기 이후 중국의 영향을 받아 생겨난 경향, 즉 양반관료들이 관복상과 야복상을 동시에 그려 官人으로서의 공적 자의식과 士人으로서의 사적 자의식의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정체성을 담고자 하는 새로운 경향을 계승한 것이다(이에 대한 자세한 논고는 강관식, 「공적 초상화와 사적 초상화 -진재해 필 조문명의 <분무공신상>과 <학암무송상>을 중심으로」, 『미술사와 시각문화』 제24호, 미술사와 시각문화학회, 2019. 참조).
조사 결과	**2. 지정 여부 : 可** 조문명(趙文命, 1680-1732)은 1728년 이인좌와 정희량 등이 주도하여 발생한 무신란戊申亂의 진압에 공을 세워 분무공신奮武功臣 2등에 녹훈되고, 풍릉군豐陵君에 책봉되었다. 그리고 병조판서, 대제학, 이조판서를 거쳐 우의정, 좌의정까지 지낸 인물이다. 조문명은 영조와 사돈 간으로 조선후기 정치문화사상 중요한 인물로서, 그의 일반적인 공신상 초상화와 함께 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사적 초상화가 보존되어 있다는 것은 미술사적, 문화사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다. 더욱이 이를 그린 화가 진재해(秦再奚)는 당대 최고의 초상화가로 꼽히던 인물로 회화적 수준도 아주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명칭은 “진재해 필 조문명 초상(秦再奚 筆 趙文命 肖像)”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됨.

참고 자료 2	문화재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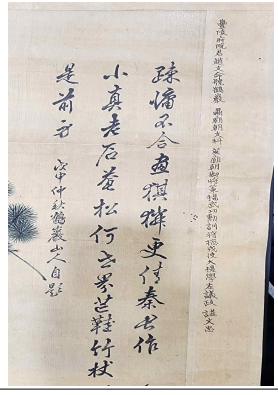
진재해, 조문명 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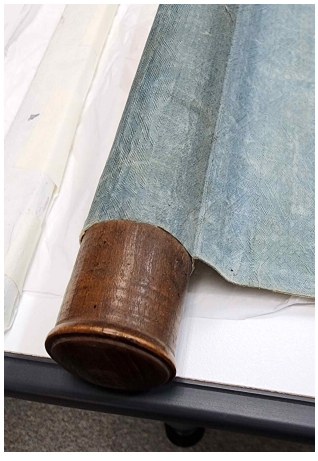
조문명 초상 부분



조문명 초상 상단



題 부분



족자 하단봉



流蘇 부분



조문명 초상 상자

【만력을유 사마방목】

참고 자료 1	조사보고서

검토종별	서울시 유형문화재	문화재명	만력을유 사마방목(1585) (萬曆乙酉 司馬榜目)
수 량	1책(37張)	규 격 (㎝)	31.0 × 19.8
재 료	종이(楮紙)	소유자	성균관대학교
시 대	1585년(선조 18)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존경각

조사 내용

1. 문화재 현황

- 선조 18년(乙酉; 1585)에 성균관과 장악원에서 사마시(司馬試) 시험을 치르고 이에 합격한 생원시(生員試)와 진사시(進士試) 급제자들의 명단을 등급별로 기록하여 금속활자인 재주갑인자로 편찬한 방목이다. 생원·진사시는 '사마시(司馬試)'라고도 하며 방목은 보통 '사마방목(司馬榜目)'이라 한다.
- 본 신청대상본은 크게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험출제자이자 채점관 곧 시관(試官)의 이름이 기록된 '은문(恩門)', 생원시 합격자 이름이 기록된 '생원시(生員試)', 진사시 합격자 명단이 기록된 '진사시(進士試)'로 나뉘어 있다.
- 은문은 시험 장소에 따라 '일소(一所)'와 '이소(二所)'로 구분하고 있으며 일소는 성균관의 시관 의정부 좌참찬 이산해(李山海)를 비롯하여 6명의 관직과 이름이 그리고 이소인 장악원(掌樂院)의 시관은 의정부 우참찬 안자유(安自裕)를 비롯하여 6명의 관직과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 생원시에는 장원을 한 유학 이상의(李尙毅)를 비롯한 1등 5인, 2등은 류사경(柳思敬) 등 25인, 3등은 안덕인(安德仁) 등 70인 총 100명의 생원 합격자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수록 내용은 응시 당시의 직역, 이름, 자(字), 생년, 본관, 거주지, 아버지의 품계와 직책 및 성명, 부모의 생존여부, 형제의 이름 등이 차례대로 실려 있다.
- 진사시에도 장원을 한 정협(鄭協)을 비롯한 1등 5인, 2등은 홍경후(洪慶後) 등 25인, 3등은 이익(李鈺) 등 70인의 진사시 합격자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 서지 사항

  본 신청대상본의 판본학적 형태를 살펴보면, 권수제(卷首題)는 '만력십삼년을유팔월이십사일사마방목(萬曆十三年乙酉八月二十四日年司馬榜目)'이라 하였다. 판심제는 '방목(榜目)'이라하고 하단 어미 위쪽에 차례에 따라 장차(張次)가 표기되어 있다. 표지는 당초문의 능화문 표지로 제책되어 있는데 표지서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변란은 사주쌍변이며 반곽의 크기는 세로가 22.6cm, 가로가 15.5cm이며 계선은 유계로 9항 16자 주쌍항이며 판구는 백구이고 접지표는 내향3엽화문어미로 되어 있다. 보존상태는 누습 및 잦은 열람으로 인하여 그리 좋지 않은 편이나 글자를 판독하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 『사마방목(司馬榜目)』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것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조선 제8대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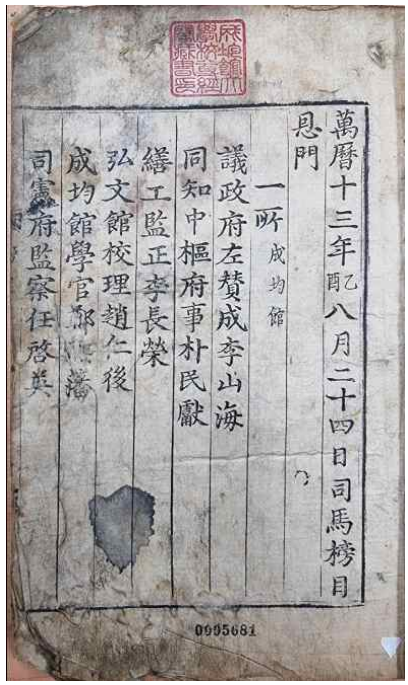
	종 원년(1469)에 시험을 치르고 간행한 갑인자(甲寅字)본이나, 현재 이 갑인자본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그 다음으로 오래된 것이 을해자본(乙亥字本)으로 1513년 사마시를 치르고 찍어낸 방목이다. 이 방목은 『정덕계유사마방목(正德癸酉司馬榜目)』으로 현재 옥산서원(玉山書院)에 소장되어 있는데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이와 동일본이 경상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는데 이 판본은 경상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 현재 전해지고 있는 생원·진사방목은 조선시대 전체 생원 진사시 229회 중 170회에 가까운 방목이 국내외에 산재되어 있으나 그 중에서 금속활자 판본으로 된 방목은 희귀한편이다. - 이 중 현재문화재로 관리되고 있는 사마방목은 옥산서원본(보물, 을해자본)을 비롯하여, 계명대 소장본(보물) 홍치십사년신유사마방목(1501년, 초주갑인자본), 경상도 유형문화재 3책(1588년 초본, 1660년 목활자본, 1790년 금속활자본)일괄과 옥산서원본과 동일본인 경상대 소장본,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전사본(轉寫本) 1책(1589년 본을 후대에 정서한 사마방목) 등이 있다. - 신청대상본 이전(1585년)에 작성된 사마방목으로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방목은 1528년(국립중앙도서관), 1546년(국립중앙도서관, 고려대), 1552년(고려대, 성대), 1555년(일본), 1561년(국학진흥원), 1564년(고려대), 1566년(고려대), 1570년(고려대), 1573년(국립중앙도서관, 성암), 1576년(규장각), 1579년(규장각) 본 등이 있다. - 한편, 1585년에 사마시를 치르고 간행한 동일본은 현재 성균관대본이 유일하나 내용이 동일한 필사본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2. 원형 유지 정도** - 본 신청대상본은 원형이 그대로 살아 있으나 누습 및 잦은 열람 등으로 인하여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문자 해독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조사 결과	**3. 문화재 지정 여부: 可** - 지정 신청한 성균관대학교 소장본은 1585년에 사마시를 치르고 간행된 것으로 재주갑인자인 금속활자로 인쇄한 희귀한 자료이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만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된 필사본이 전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 서지학(書誌學)상으로나 역사적 가치로 보아서도 이 방목은 조선의 인쇄사 연구·인물연구·사회사 연구·방목 연구 및 과거제도사 연구 등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2	문화재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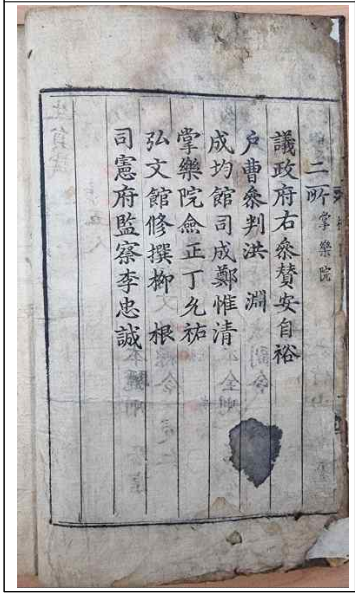
사마방목 표지 사진



본문1(권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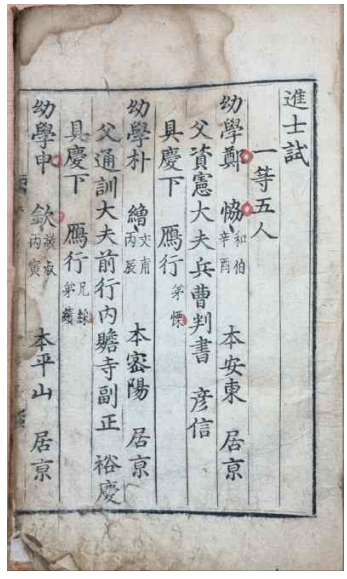
본문2



본문3



본문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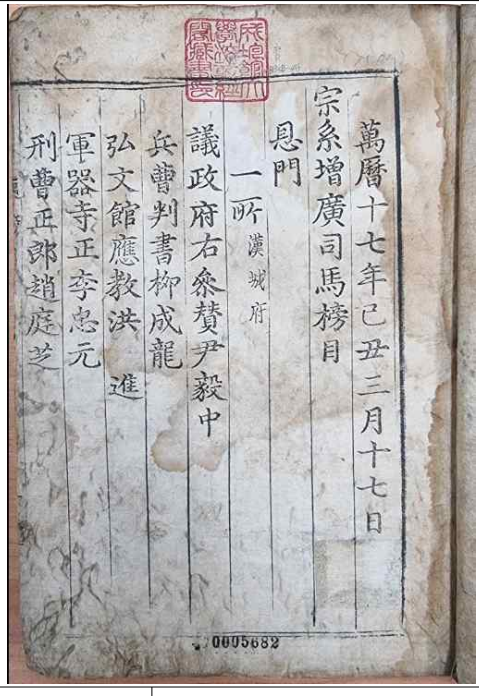
【만력기축 종계증광 사마방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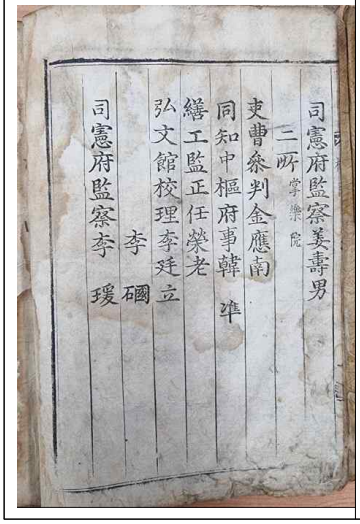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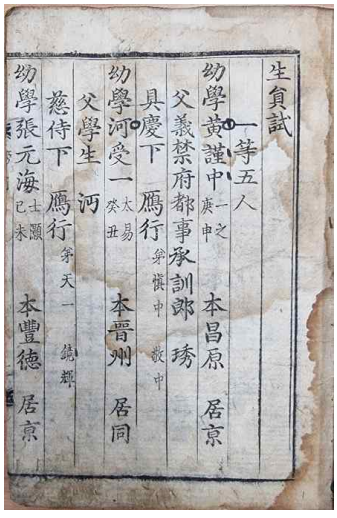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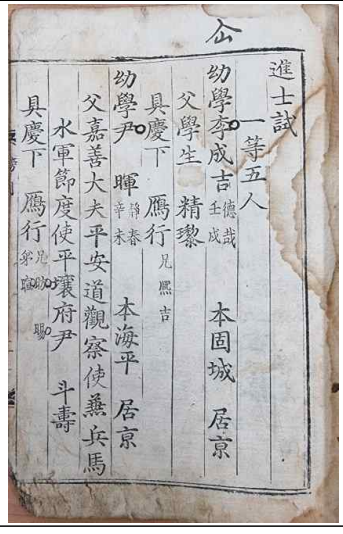
참고 자료 1	조사보고서

검토종별	서울시 유형문화재	문화재명	만력기축 종계증광 사마방목(1589) (萬曆己丑 宗系增廣 司馬榜目)
수 량	1책(37張)	규 격 (㎝)	28.2 × 19.5
재 료	종이(楮紙)	소유자	성균관대학교
시 대	1589년(선조 22)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존경각
조사 내용	**1. 문화재 현황** – 선조 22년(己丑; 1589)에 한성부와 장악원에서 조선 건국 이후 이성계의 가계에 대한 중국 명나라 측의 오류를 바로잡은 이른바 ‘종계변무(宗系辨誣)’에 관한 문제가 1588년에 이르러 원만히 해결되자 이를 기념하기 위해 이듬해인 1589년에 사마시(司馬試) 시험을 치르고, 이에 합격한 생원시(生員試)와 진사시(進士試) 급제자들의 명단을 등급별로 기록하여 금속활자인 재주갑인자로 편찬한 방목이다. 생원·진사시는 ‘사마시(司馬試)’라고도 하며 방목은 보통 ‘사마방목(司馬榜目)’이라 한다. – 신청대상본은 크게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험출제자이자 채점관 곧 시관(試官)의 이름이 기록된 ‘은문(恩門)’, 생원시 합격자 이름이 기록된 ‘생원시(生員試)’, 진사시 합격자 명단이 기록된 ‘진사시(進士試)’로 나뉘어 있다. – 은문은 시험 장소에 따라 ‘일소(一所)’와 ‘이소(二所)’로 구분하고 있으며 일소인 한성부(漢城府)의 시관은 의정부 우참찬 윤의중(尹毅中)을 비롯해서 6명의 관직과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이소인 장악원(掌樂院)의 시관은 이조참판(吏曹參判) 김응남(金應南)을 비롯하여 6명의 관직과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 생원시에는 장원을 한 유학 황근중(黃謹中)을 비롯한 1등 5인, 2등은 홍경신(洪慶臣) 등 25인, 3등은 이호의(李好義) 등 70인 총 100명의 생원 합격자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수록 내용은 응시 당시의 직역, 이름, 자(字), 생년, 본관, 거주지, 아버지의 품계와 직책 및 성명, 부모의 생존 여부, 형제의 이름 등이 차례대로 실려 있다. – 진사시에도 장원 이성길(李成吉)을 비롯한 1등 5인, 2등은 김봉명(金鳳鳴) 등 25인, 3등은 박돈(朴敦) 등 70인의 진사시 합격자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 서지사항 신청대상본의 판본학적 형태를 살펴보면, 권수제(卷首題)는 ‘만력십칠년기축삼월십칠일종계증광사마방목(萬曆十七年己丑三月十七日年宗系增廣司馬榜目)’이라 하였고 표지서명은 ‘기축사마방목(己丑司馬榜目)’이라 묵서되어 있다. 판심제는 ‘방목(榜目)’이라 하였다. 판심 하단 어미 위쪽에 차례에 따라 장차(張次)가 표기되어 있다. 표지는 연당초보상문의 능화문 표지로 제책되어 있으며, 권수제면 아래에 인장을 오려낸 흔적이 보인다. 변란은 사주쌍변이다. 반곽의 크기는 세로가 22.8cm, 가로가 15.5cm이며 계선은 유계로 9항16자 주쌍항이며 판구는 백구이고 접지표는 내향3엽화문 어미로

	되어 있다. 보존상태는 누습 및 잦은 열람으로 인하여 그리 좋지 않은 편이나 글자를 판독하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 『사마방목(司馬榜目)』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것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조선 제8대 예종 원년(1469)에 갑인자(甲寅字)로 찍어낸 책이다. 이 갑인자본은 지금 전해지지 않는다. 그 다음으로 오래된 것이 을해자본(乙亥字活字本)으로 1513년에 찍어낸 방목이다. 이 방목은 『정덕계유사마방목(正德癸酉司馬榜目)』으로 현재 옥산서원(玉山書院)에서 소장하고 있는데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이와 동일본이 경상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는데 경상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 현재 우리나라에 전해지고 있는 생원·진사방목은 조선시대 전체 생원 진사시 229회 중 170회에 가까운 방목이 국내외에 산재되어 있으나 그 중에서 금속활자로 찍은 방목은 희귀한 편이다. – 현재문화재로 관리되고 있는 사마방목은 옥산서원본(보물, 을해자본)을 비롯하여, 계명대 소장본(보물) 홍치십사년신유사마방목(1501년, 초주갑인자본), 경남 유형문화재 3책(1588년 초본, 1660년 목활자본, 1790년 금속활자본), 옥산서원본과 동일본인 경상대 소장본,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전사본(轉寫本) 1책(1589년 본을 후대에 정서한 사마방목) 등이 있다. – 그 밖에 1528년(국립중앙도서관), 1546년(국립중앙도서관, 고려대), 1552년(고려대, 성대), 1555년(일본), 1561년(국학진흥원), 1564년(고려대), 1566년(고려대), 1570년(고려대), 1573년(국립중앙도서관, 성암), 1576년(규장각), 1579년(규장각), 1585년(국립중앙도서관, 성대), 1588년(성암)에 작성된 사마방목 등이 소장되어 있는데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다. – 신청대상본은 1589년에 사마시를 치르고 간행한 판본으로 현재 성균관대본이 유일하다. **2. 원형 유지 정도** – 본 신청대상본은 원형이 그대로 살아 있으나 누습 및 잦은 열람 등으로 인하여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문자 해독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조사 결과	**3. 문화재 지정 여부: 可** – 지정 신청한 성균관대학교 소장본은 1589년에 종계변무 처리를 기념하여 사마시를 치르고 재주갑인자로 찍은 금속활자본으로서 희귀한 자료이다. 현재 성균관대에만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는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 서지학(書誌學) 상으로나 역사적 가치로 보아서도 이 방목은 조선의 인쇄사 연구·인물 연구·사회사 연구·방목 연구 및 과거제도사 연구 등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2	문화재 이미지

사마방목 표지 사진	본문1(권수면)
	

본문2	본문3	본문4
		

【황여일 사초】

참고 자료 1	조사보고서

검토종별	서울시 유형문화재	문화재명	황여일 사초 (黃汝一 史草)
수 량	12책	규 격 (㎝)	24.5×18.5
재 료	지류	소유자	성균관대학교
시 대	조선시대(1587~1589)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존경각

조사 내용

■문화재 현황

- 성균관대학교 소장 <황여일 사초(黃汝一 史草)>는 조선 중기 문신 황여일(1556~1622)이 춘추관 기사관(記事官)의 직임을 맡아 사관(史官)으로서 작성한 필사본이다. 전체 12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작성 시기는 1587년(선조 20) ~ 1589년(선조 22) 사이이다.

- 각 책별 작성 시기와 크기는 아래와 같다.

구분	작성 시기	크기(cm, 세로×가로)	비고
1책	정해(1587) 12월 26일	24.6×18.3	
2책	무자(1588) 정월 초1일	23.6×18.2	
3책	무자(1588) 정월 초3일	24.0×18.7	
4책	무자(1588) 정월 초4일	23.8×18.2	
5책	무자(1588) 정월 초6일	24.9×19.4	
6책	무자(1588) 정월 초8일	23.9×18.8	
7책	무자(1588) 정월 11일	25.1×18.3	
8책	무자(1588) 정월 12일	24.1×18.8	
9책	무자(1588) 정월 14일	24.2×18.8	무자 정월 14일, 무자 7월 초5일 합철
10책	무자(1588) 7월 23일	23.0×18.0	
11책	기축(1589) 8월 13일	24.0×18.8	
12책	기축(1589) 8월 16일	24.3×18.5	

※ 위 표와 같이 제9책은 실제로는 무자 정월 14일과 무자 7월 초5일 기사가 합철되어 있음.

- <황여일 사초>는 소유자의 신청 서류상에는 “승정원 주서가 작성한 초책”, “임진왜란 이전의 『승정원일기』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 등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작성자를 황여일로 본다면, 당시 황여일은 예문관 소속 관원으로서 춘추관 기사관을 겸임한 상황이었으

므로 승정원일기의 작성을 맡은 주서 또는 그 임무와는 관련이 없다.

- 해월 황여일의 생애를 요약 기술한 행장(行狀)에는 한림(예문관)에 뽑혀 들어간 후 예문관의 검열, 대교, 봉교를 역임하고, 무자년 가을에 사고(史庫)의 포쇄 임무를 맡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또한 종가에 전래된 관직 임명 교지 가운데도 1588년(무자) 7월에 무공랑 예문관 봉교 겸 춘추관 기사관으로 승진한 문서와 1589년 11월에 선무랑 행 예문관 봉교 겸 춘추관 기사관으로 다시 승진한 문서가 확인된다.

- 위 자료의 본문에 기재된 내용 가운데 입시 관원의 명단 중 "記事 黃汝一"이라고 기재된 것이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어 이 역시 예문관 관원으로 춘추관 기사관을 겸임한 사관 황여일이 작성한 실록의 사초임을 방증한다.

- 요컨대, <황여일 사초>는 이름 그대로 1587년 12월 26일로부터 1589년 8월 16일 사이에 예문관 관원이었던 황여일이 춘추관 기사관이라는 겸직을 맡아 작성한 사관의 사초이다. 다만, 최종 완성된 실록과 비교해 볼 때 다소간의 문장 출입이 확인되므로 실록 편찬 과정에 활용된 전형적인 '가장 사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1587년 12월 26일 실록 기사와 <황여일 사초>의 일부 내용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선조 실록 기사	황여일 가장 사초 기사
北兵使李鎰馳啓, 大概鹿屯島陷沒事 °傳曰: "**觀此狀辭, 極爲慘酷痛憤 °**" …(중략)… 司諫院啓曰: "郭山郡守韓希吉, 性本泛濫, 專事肥己, 至於詞訟之間, 顯有麤鄙之事 °請命罷職 ° …(중략)… " 答曰: "依啓 ° 堂上已爲推考矣 °"	以北兵使書狀, 傳于右副李誠中曰: "**觀此狀辭, 極爲慘酷痛憤 °** " 兵使李鎰以概鹿屯島被殺人恤典事, 吳亨·林景藩死之 ° 正言宋諄來啓曰: "郭山郡守韓希吉, 性本泛濫, 專事肥己, 至於詞訟之間, 顯有麤鄙之事, **凡在見聞, 莫不唾鄙,** 請命罷職 °" 答曰: "色郎罷職, **依啓 ° 堂上已爲推考矣 °** 韓希吉, 依啓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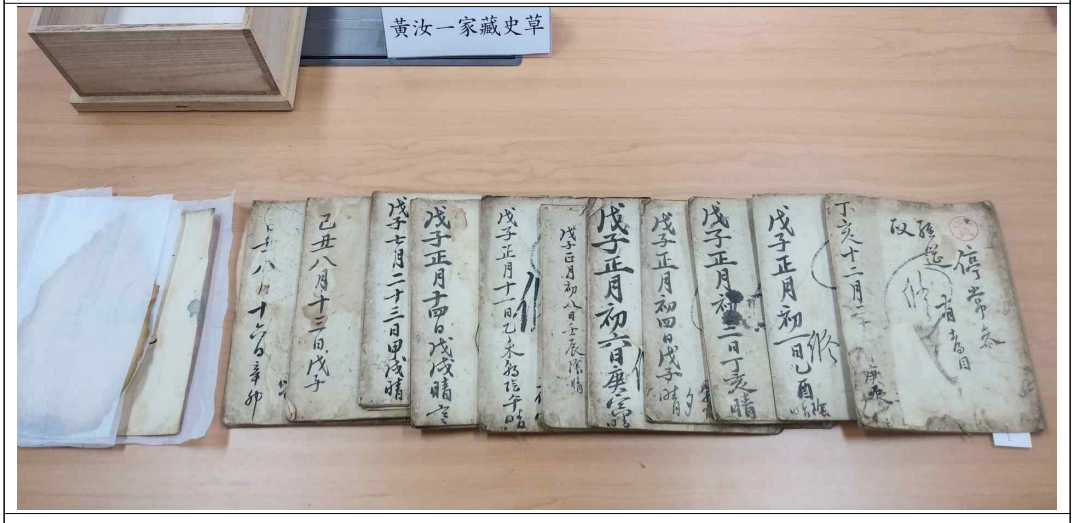
■ 원형 유지 정도

일부 표지에 훼손 흔적과 습해를 입은 자국 등이 관찰되지만, 대체로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낱장 형태의 기사는 차후 원래 있었던 위치를 찾아주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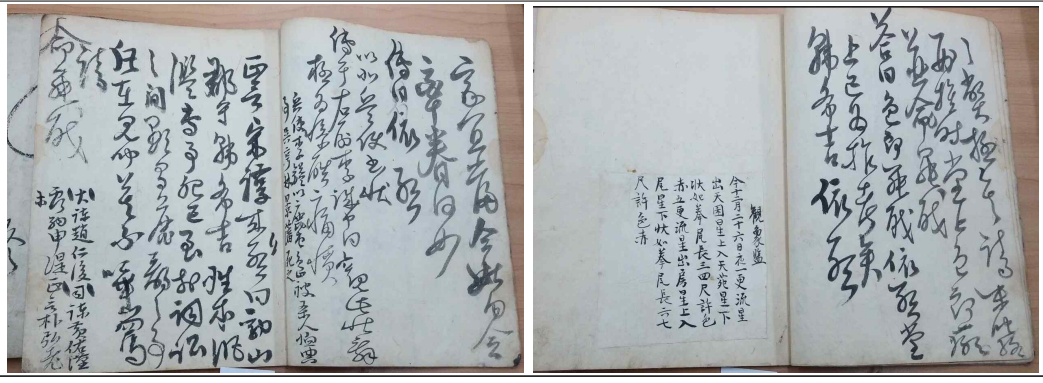
조사 결과	■ 지정 여부 : 가 <황여일 사초>는 임진왜란 이전에 예문관 관원으로서 춘추관 기사관을 겸임한 황여일이 사관으로서 그날그날 현장에서 작성한 기록이다. 조선시대 실록 편찬의 전 과정을 놓고 볼 때 이러한 자료를 '가장사초(家藏史草)'라고 지칭할 수 있어 실록 편수 과정을 살펴보는 데도 매우 중요한 사료로 평가된다. 성균관대학교 소장본 <황여일 가장 사초>는 조선시대 실록 편수 과정에서 작성된 1차 자료일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사관이 현장에서 기록한 기록물로서도 매우 가치있는 문화재로 평가할 수 있다.

참고 자료 2	문화재 이미지

전체 사진



정해(1587) 12월 26일 본문 (위 보고서 중 실록 기사와 대조 부분)



【문선】

참고 자료 1	조사보고서

검토종별	서울시 유형문화재	문화재명	문선(文選)
수 량	18권 15책(전 30권 25책)	규 격 (㎝)	32.5 × 21.0
재 료	종이(楮紙)	소유자	성균관대학교
시 대	1509년(중종 4)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존경각

조사 내용

1. 문화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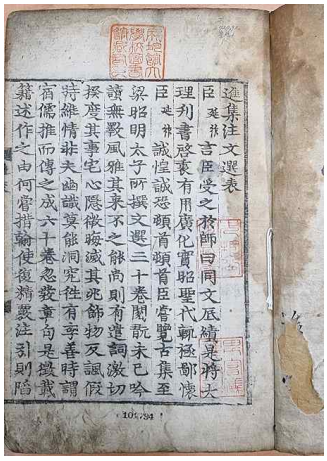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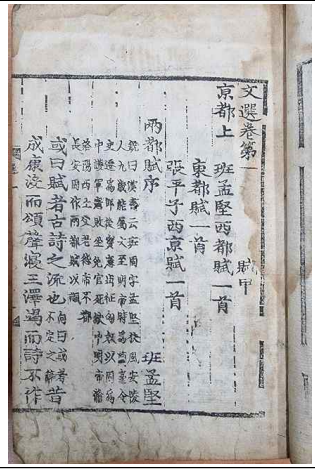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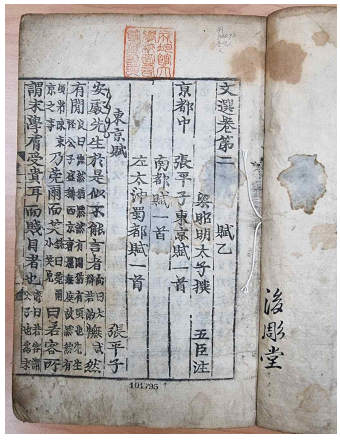
- 중국 양나라 때 소명태자(昭明太子) 소통(蕭統, 501~531)이 진한(秦漢) 이후 제(齊)나라 양(梁)나라 시대의 대표적인 시문을 모아 엮은 <昭明文選>이 중국 최초의 시문총집으로 알려져 있다. 이 문집에는 130명이 지은 작품 514제(題)가 실려 있는데 모두 37개의 문체로 분류하여 부(賦), 시(詩), 소(騷), 묘지(墓誌), 행장(行狀), 제문(祭文) 등으로 세분한 문선(文選)이다.
- 『文選(문선)』은 중국은 물론 한국, 일본 등에서 과거시험, 문학 창작 또는 외교문서 작성 그리고 국가의 전례 문장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된 문헌으로 많이 이용하였다. 따라서 선비들의 필독서가 되어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 이래 없어서는 안 되는 필독서로 자리매김하였다.
- 이 책은 원래 30권으로 편집 간행되었으나 이는 사라지고 현재는 없다. 이후에 이선(李善, 630~689)이 658년에 60권으로 재정리한 이선주본이 탄생하였다. 이후 718년(唐開元6)에는 여연제(呂延濟), 유량(劉良), 장선(張詵), 여향(呂向), 이주한(李周翰)의 5명이 모여 주를 달고 조정에 상주한 바 있는데 이것을 일반인들이 '오신주(五臣註)'라 부른다. 다시 북송의 원우(元祐) 연간(1086~1093)에 '李善註'와 '五臣註'를 합하여 발간한 이후로 이 판본을 '六臣註'라 부르고 있다.
- 『文選(문선)』은 조선 세종과 성종 시기에 금속활자인 경자자로 인출된 바 있으며 선조 이후 목활자인 훈련도감자로 인출하기도 했다. 세종과 성종대에 인출된 판본은 매우 희귀하다. 다만 경상도 관찰사로 있었던 강혼(姜渾, 1464~1519)이 1509년 간행한 목판본이 온전하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오래된 판본에 속한다. 성균관대 소장본은 이 경상도 관찰사가 간행한 판본 중 일부인 잔본(殘本)들이다.
-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소장본은 원래 총 30권 25책으로 구성되어 있는 판본 중에 卷8, 卷11~卷17, 卷25~卷27, 그리고 卷29가 결본으로 총 18권 15책이 남아 보존 관리되고 있다. 표지는 연당초문으로 총책표시는 '共二十五'라 되어 있으며 표제는 '文選'이라 묵서되어 있다.
- 서지적 판사항을 보면 표지는 오침 능화판(五針 菱花板)이며 외형적 크기는 대체로 32.5×21.0 cm이고 권4-5는 표지를 개장했으며 일부 내용(3장 정도)의 하단이 훼손되

	어 있다. 다른 책들에도 훼손된 부분이 더러 있다. – 모든 책의 표지 뒷면 면지에는 ‘後彫堂’이라는 소장사항이 묵서되어 있다. 후조당은 경북 안동 오천리에 있는 정자로 광산김씨 김부필(金富弼, 1516~1577)의 별당 건물명이기도 하다. 이 책의 판본은 木板本으로 四周單邊 半郭 23.2×16.8 cm, 有界, 10行17字 註雙行, 內向黑魚尾이다. 장서인 2과가 각 책 권수면에 날인되어 있고 비인으로 ‘成均大學校圖書’라고 원형으로 각 책의 내용 속에 찍혀 있다. – “正德己巳(1509)十二月…通訓大夫軍資監正知製校兼校書館校理黃琿(1464~1526) 跋”이라는 발문이 수록되어 있는 ‘五臣注’본이다. – 이 책은 원래 光山金氏禮安派宗家 後彫堂 소장본으로 보인다. 각 책마다 ‘後彫堂’이라 묵서되어 있으며, 장서인 ‘先相公家藏書’, ‘男富儀謹追記’가 날인 되어 있기 때문이다. 後彫堂은 金富弼(1516~1577)의 號이며 안동에 종택이 있다. 김부필의 字는 ‘彦遇’이며 시호는 ‘文純’으로 아버지는 광산김씨 김연(金緣, 1487~1544)이며 아우는 김부의(金富儀, 1525~1582)이다. 김부의의 호는 ‘읍청정(挹淸亭)’이며 자는 ‘신중(愼仲)’이다. **2. 원형 유지 정도** – 조사 대상본인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소장본은 총 30권25책 가운데, 卷8, 卷11~卷17, 卷25~卷27, 그리고 卷29가 결본으로 18권 15책이 남아 있다. 표지는 연당초문으로 총책표시는 ‘共二十五’라 되어 있으며 표제는 ‘文選’이라 묵서되어 있고, 광산김씨 후조당 종택 수택본임을 말해 주듯 모든 책 표지 이면에 ‘後彫堂’이라 묵서되어 있다. 일부 훼손된 부분이 있어 수리가 필요하다.
조사 결과	**3. 문화재 지정 여부: 可** – 이번에 지정 신청한 성균관대학교 소장 『문선』은 1509년에 경상도 관찰사 강혼이 간행한 것과 같은 판본으로, 비록 결본이나 이 판본은 매우 희귀하고, 시기적으로 오래되었음을 감안하여,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참고 자료 2	문화재 이미지

문선 표지 사진



진표문	본문	소장(후조당)
		

【위정공간록】

참고 자료 1	조사보고서

검토종별	서울시 유형문화재	문화재명	위정공간록(魏鄭公諫錄)
수 량	5권 2책	규 격 (㎝)	36 × 21.8
재 료	종이(楮紙)	소유자	성균관대학교
시 대	1542년(중종 37)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존경각

조사 내용

1. 문화재 현황

- 『위정공간록(魏鄭公諫錄)』은 중국 당(唐)나라 무주(武周) 때 재상(宰相)이며 장서가인 왕침(王緟, ?~702)이 편찬한 문헌으로 당시 문신인 위징(魏徵, 580~643)이 당나라 태종(太宗)에게 올린 간주(諫奏)와 문대(問對)를 모아 왕침이 5권2책으로 엮은 것이다.
- 위징은 字가 현성(玄成), 시호가 문정(文貞)으로 당 태종의 부름을 받아 간의대부(諫議大夫) 등의 요직에 있으면서 당 태종을 보좌하여 '貞觀之治'라는 태평시대를 여는데 크게 공헌한 사람이다.
- 왕침은 字가 방경(方慶)으로 본명보다는 '왕방경'으로 더 잘 알려진 인물이다. 무후(武后) 때 광주도독(廣州都督)을 역임하였고 석천형공(石泉縣公)에 봉해졌으며 박학다식한 인물이었다. 주요 저서로는 『위정공간록(魏鄭公諫錄)』을 비롯하여 『잡례답문(雜禮答問)』, 『문정공사록(文貞公事錄)』 등이 있다.
- 이 책의 내용을 보면 권1에 앞서 서문으로 1507년 감찰어사(監察御史) 조대유(曺大有)가 쓴 '重刊魏鄭公諫錄序'가 있고 이어서 목록이 수록되어 있다. 권1에는 '諫詔免租賦又令輸納', '諫簡點中男入軍' 등 20편의 간주(諫奏)가, 권2에는 '諫聘鄭仁基女爲充華' 등 21편의 간주(諫奏)가, 권3에는 '對突厥大雪' 등 31편의 문대(問對)가, 권4에는 '對所居殿隋文帝造' 등 31편의 문대가, 권5에는 '或奏公阿黨親' 등 27편의 유사(遺事)가 수록되어 있다. 권말에는 마만경(馬萬頃)과 이모(李某, 이름 불명)가 1179년에 쓴 2편의 원발(原跋)과 1507년에 두계(杜啓)가 쓴 '重刊魏鄭公諫錄後序'가 수록되어 있다.
- 성균관대학교 존경각본은 1507년 조대유가 간행한 목판본을 저본으로 1542년경 동활자(銅活字)인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로 인출한 책이다. 『위정공간록(魏鄭公諫錄)』은 중국 강남(江南)에서 간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조선에 수입되었으며 치도(治道)에 도움이 되는 책으로 평가되어 간행한 책이다.
- 성균관대학교 존경각본의 판본 판식 사항을 살펴보면, 초주갑인자로 인출한 5권 2책의 금속활자본이다. 변란은 사주쌍변으로 판면에는 계선(界線)이 보이고 있다. 광곽의 크기는 25.0×17.0 cm이다. 줄 글자수는 반엽을 기준으로 10줄이며, 매 줄에는 17자씩 배자되어 있다. 판심의 상하에는 대흑구(大黑口) 판심이 보이고 있으며, 어미는 서로 마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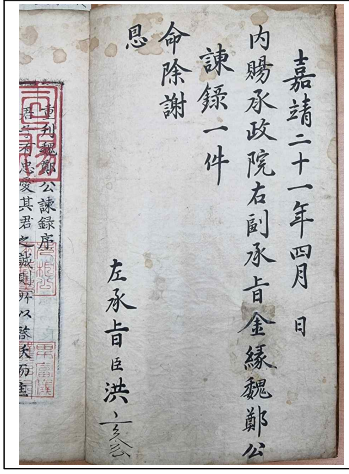
	고 있는 상하내향 3엽화문어미(上下內向3葉花紋魚尾)이다. 그리고 판심 중앙에 '魏鄭公諫錄' 이라는 판심제가 보이고 있고, 그 아래에 장차(張次)가 표기되어 있다. – 오침안정법을 사용한 선장으로 표지의 문양은 연당초문이며 상태는 매우 좋은 편이다. '魏鄭公諫錄 上下' 라고 종이에 묵서한 제첨지가 붙어 있으며, 표지 뒷면 면지에는 내사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嘉靖二十一年(1542)四月日 內賜承政院右副承旨金緣魏鄭公諫錄一件 命除謝恩 左承旨臣洪手決"이라 묵서되어 있으며, 서문면 상단에는 '宣賜之記', 내사인과 하단에는 '先相公家藏書', '男富儀謹追記' 이라는 광산김씨 예안파 종가의 소장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다. 중간서문(重刊序文)은 '正德二年(1507) … 齊安魯大有識'이며, 중간후서문은 '正德丁卯(1507) … 蘇人杜啓序'라 되어 있다. – 성균관대학교 존경각본은 1542년에 중종이 광산김씨 우부승지 김연(金緣, 1487~1544)에게 내사한 문헌으로 光山金氏 禮安派 宗家에서 소장했던 전적이라는 것을 장서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김연은 조선 중종 때 활동한 문신으로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자적(子迪) 또는 자유(子裕), 호는 운암(雲巖)이다. 할아버지는 김회(金淮)이고, 아버지는 생원 김효로(金孝盧)이며 어머니는 이지(李持)의 딸이다. 자식으로는 장남 후조당(後彫堂) 김부필(金富弼, 1516~1577)과 차남 읍청정(挹淸亭) 김부의(金富儀, 1525~1582)가 있다. **2. 원형 유지 정도** – 성균관대학교 존경각본은 상태가 깨끗하고, 조선 세종 때인 1434년에 주조된 금속활자인 갑인자를 활용하여 중종 때인 1542년경에 인출한 도서로 활자가 달아 있으며 보주된 활자가 들어가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중종이 광산김씨 김연에게 1542년에 내사한 내사본으로서 5권2책의 완질본이며 매우 희귀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조사 결과	**3. 문화재 지정 여부: 可** –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소장 『위정공간록』은 조선시대에 사용된 금속활자(동활자)인 초주 갑인자를 사용하여 인출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 초주갑인자본 『위정공간록(魏鄭公諫錄)』은 5권2책의 완질본으로 매우 희귀한 판본으로 인쇄사적 측면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뛰어나다. – 성균관대학교 소장 『위정공간록(魏鄭公諫錄)』은 광산김씨 예안파 종가인 광산김씨 金緣(1487~1544)이 1542년 중종으로부터 하사받은 내사본으로서 그 가치가 크며 또한 남아 있는 동일본이 매우 희귀한 초주갑인자본이라는 점에서 문화재적 보존의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한다.

참고 자료 2	문화재 이미지

문선 표지 사진



내사기	서문	권수면


嘉靖二十一年四月 日
內賜承政院右副承旨金緣魏鄭公
諫錄一件
命除謝
恩
左承旨臣洪


魏鄭公諫錄序
左承旨臣洪


魏鄭公諫錄卷第一
目錄終

【완영일록】

참고 자료 1	조사보고서

검토종별	서울시 유형문화재	문화재명	완영일록(完營日錄)
수 량	8책	규 격 (㎝)	19.5×13.7
재 료	종이(楮紙)	소유자	성균관대학교
시 대	1833~1834년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존경각

조사 내용

1. 문화재 현황

○ 『완영일록(完營日錄)』은 서유구(徐有榘, 1764~1845)가 전라도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 도순찰사 전주부윤(全羅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都巡察使全州府尹)으로 재임하는 동안 업무일지 형식으로 쓴 문헌이다. 기록된 기간은 1833년 4월부터 1834년 12월까지로 약 1년 9개월이며, 업무 수행 내용과 함께 장계(狀啓)를 비롯하여 관문(關文)·감결(甘結)·보장(報狀) 등 각종 공문서를 필사해 놓았다. 서유구가 동일한 형식으로 수원유수(水原留守)의 기록인 『화영일록』도 남긴 점을 감안하면 서유구의 학자적 관료로서의 면모와 19세기 전반기의 사회상, 관청의 행정절차 및 관행이 투영된 문헌이라 할 수 있다. 『완영일록』은 성균관대학교가 1998년 개인 소장자로부터 구입하여 현재 존경각(尊經閣) 장서로 등록하여 보관하고 있다.



○ 『완영일록』은 가로 13.7cm, 세로 19.5cm의 8책으로 되어 있다. 앞뒤 표지는 안쪽을 관인(官印)이 있는 관문서(官文書)로 배접한 상태인데, 3책·5책 표지의 배접지는 첩정(牒呈)으로 확인되며, 6책은 지명과 인명, ~부(負) ~속(束) 등의 수치가 수록된 것으로 보아 깃기(衿記)를 가지고 배접한 것으로 보인다. 8책은 표지의 원형이 크게 훼손

되어 있지는 않으나 원래 표지 위에 겉표지를 추가로 제작해 입혀 놓았다. 8책 모두 장마다 판심 하단에 '자연경실장(自然經室藏)' 이 새겨져 있다. '자연경실' 은 서유구가 만년에 번계(樊溪)에 거주할 당시 그의 서재명이다.

각 책은 서문이나 발문, 목차 등의 요소 없이 일기체로 바로 날짜 밑에 본문을 수록하는 형식으로 쓰여있다. 1책은 계사년(1833, 순조 33) 4월 10일 부임 인사를 위해 흥정당에 입시한 내용으로 시작하여, 당일 내려진 유서(諭書)를 옮겨 적고 며칠 후 임지에 도착하여 국왕에게 올린 장계(狀啓)를 수록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1,070여 건의 공문서를 옮겨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책은 1833년 4월 10일~10월 29일, 2책은 동년 11월 1일~12월 3일, 3책은 1834년 1월 1일~1월 29일, 4책은 동년 2월 1일~3월 15일, 5책은 동년 3월 16일~5월 15일, 6책은 동년 5월 16일~7월 29일, 7책은 동년 8월 1일~10월 15일, 8책은 동년 10월 16일~12월 30일까지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 『완영일록』은 매우 정갈한 해서체로 1책부터 8책까지 동일한 서체와 형식을 유지하고 있다. 날짜 밑에 자신이 수행한 공무 내역을 기록하되, 격자와 대두를 적절히 활용하여 격식을 드러내고 있다. 공문서를 인용하는 경우 [관문(關文)]·[보장(報狀)] 등과 같이 기호 안에 문서명을 밝히고 내용을 옮겨 적었다. 하지만 보장(報狀)이나 사안(査案) 등 제사(題辭)가 있는 문서의 경우, 보장이나 사안의 본문은 2행의 소자(小字)로 쓰고 제사는 [제(題)]로 표기한 후 1행의 대자(大字)로 수록하였다.

○ 이 책은 본문 중 수정·교감·가필 등의 흔적은 없으나 한두 글자 단위로 오려 붙였거나, 2~3행, 많게는 한쪽 면의 대부분을 새로 쓴 종이를 칼로 오려 덧대어 붙인 흔적이 곳곳에 있다. 다만 오려 붙인 부분이 원래 본문과 글자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후대에 수정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그 외에는 글자가 마멸되었거나 훼손된 부분 없이 비교적 내용과 형태 모두 온전하게 보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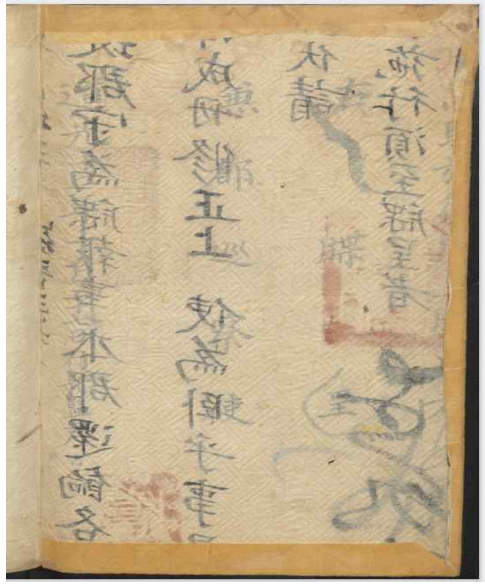
이상을 종합하면, 『완영일록』은 서유구라는 이조판서·대제학 등을 역임한 문신 관료의 업무일지이다. 저자 자신의 공무 수행 내용은 물론이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전라감영과 타 관부 사이에 주고받은 공문서를 상세히 옮겨 적었다. 공문서를 옮겨 적을 때 문서상에 인용된 다른 공문서가 일부 축약 또는 생략된 부분은 있으나 이두(吏讀)를 비롯한 공문서의 각종 투식과 문서의 전반적 형식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완영일록』은 전라감영을 기반으로 한 업무일지이므로 전라도 지역의 농업·경제·사회 등 19세기 지역사 연구자료로 이미 활용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이 문헌을 구입한 성균관대에서 2002년에 이를 영인본으로 출간하였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구축사업에 참여하여 『완영일록』의 원문을 DB로 구축하여 일반에 공개한 바 있다. 그에 따라 농업사·행정사·지역사는 물론이고, 이 책에 수록된 1,070여 건의 공문서를 통해 각종 문서식과 관부(官府) 사이의 행이(行移) 체계 등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료적 가치 외에, 전라감사가 직접 경험한 행정업무를 일지 형식으로 기록했다는 점, 1년 9개월이라는 단기간의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8책에 수록될 정도로 매우 방대하고 구체적이라는 점, 8책 모두 온전하게 결락 없이 전존(傳存)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원형 유지 정도 『완영일록』은 전반적으로 보존 상태가 좋다. 8책 모두 표지부터 한 장의 결락도 없이 온전한 상태이다. 단, 8책 중 제8책의 경우 원래 표지 위에 새로 표지를 입히고 재장정된 상태이다. 각 책의 내부에 일부 변색 또는 탈색된 면이 있으나 글자가 손상되거나 종이가 망실된 부분은 거의 없다. 즉 지질(紙質), 글씨, 표지 및 장정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전반적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조사 결과	**3. 지정 여부 : 可** ○ 『완영일록』은 조선후기 감영 일기로는 가장 내용이 풍부하고 완결성을 갖춘 문헌이라 할 수 있다. 『완영일록』의 저자 서유구가 남긴 또 다른 업무일지인 『화영일록』이나, 경상감사 조재호(趙載浩, 1702~1762)의 『영영일기(嶺營日記)』 등과 형식면에서 매우 유사하나 『완영일록』에 수록된 공문서가 가장 많고, 여타 내용면에서도 구체성을 띠고 있다. ○ 『완영일록』은 이미 지역사, 행정사, 사회사 등 다양한 분야에 사료로서 적극 활용되고 있어 사료적 가치가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적 가치에 더해 감영일기로서의 형태적 가치, 다양한 공문서를 수록한 일종의 서식집으로서의 문헌학적 가치도 충분히 평가받을 만한 요소이다. ○ 『완영일록』은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결락이 없어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으므로 내용적 가치 평가에서 더 나아가 문화재적 가치도 평가받을 요소가 풍부하다고 판단된다.

참고 자료 2	문화재 이미지

1책 표지	3책 표지 안쪽 배접부분
	
본문	본문 마지막 장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3560호

종합공사시공업 처분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법인 소재지 및 대표이사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3. 12. 28. ~ 2024. 1. 11.
2. 처분사전통지 사항

업 체 명 (대표)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예정된 처분 내용	청문실시		처분 근거
					일시 및 장소	주재자	
㈜아이렉스 건설 (대표 최진규)	건축공사업 01-3760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4길 68, 2층	2022년 건설업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	영업 정지	2024.1.12.(금) 10:00 건설혁신과 청문실	변호사 한민구	법 제83조 제3호

3.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19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3564호

2024년 서울특별시 민방위강사 선발 공고

2024년 서울특별시 민방위 교육강사를 선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 요

가. 위촉권자 : 서울특별시장 (강사운영 : 자치구청장)

나. 위촉기간 : 1년 (위촉일 ~ ’ 24년 12월 31일)

※ 위촉일자 및 장소는 최종 선발이후 추후 통보하고, 강사연수 병행 예정

다. 강사운영 : 최종합격자를 서울시 민방위 교육강사풀로 구성, 자치구는 교육강사풀 안에서 적합한 강사를 선정하여 운영

라. 추진일정

① 강사선발 공고 (시 · 구 공통)	⇨	② 지원서류 접수 (자치구)	⇨	③ 지원서류 제출 (자치구 → 시)	⇨	④ 서류평가 (시)
‘23.12.28.~ ‘24.1. 11.		‘24.1.12.~1.15.		‘24.1.16.~1. 17.		‘24.1.23.~1.24.
⑧ 강사 연수 (시)	⇦	⑦ 최종결과 발표 (시 · 구 공통)	⇦	⑥ 강의평가 및 면접심사(시)	⇦	⑤ 서류평가결과 / 강의평가일정안내 (시 · 구 공통)
‘24.2. 29.(예정)		‘24.2.21.(예정)		‘24.2.13.~2.16.		‘24.1. 26.

마. ’ 24년도 민방위 교육일정 : ’ 24년 3월 ~ 11월 (자치구별 일부 상이)

2. 세부내용

가. 선발과목 및 인원

총 계	민방위 기본	응급처치	화재안전	지진 · 핵 및 화생방호
90명	28명	26명	20명	16명

※ 교육중점 이해도 및 강의 적합여부 고려하여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나. 자격기준 : 과목별 전문적인 학식과 기능 또는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증빙자료로 검증)

다. 과목별 교육중점 (반드시 교육내용에 맞는 강의안 작성)

과 목		교 육 중 점
민방위 기본 (1시간)		· 민방위대의 임무와 역할 (20%) ※ 최근 북한 도발 등 시사성 있는 내용을 민방위와 접목하여 구성 · 민방위 조직 · 편성, 교육, 장비 종류 (10%) · 민방위대 동원(동원요건, 명령 · 해제절차, 응소시간, 활동, 직장보장, 동원유예, 민방위대 동원과 인력동원의 비교) (40%) · 경보(민방공 /재난/핵) 구분, 대피소 찾기(안전디딤돌 앱 활용법) (30%)
실 전 체 험 (3시간)	응 급 처 치	· 응급처치 목적 및 필요성 (10%) ·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50%) · 기도폐쇄(성인, 어린이, 영아 등)시 응급처치 (20%) · 감염병 행동수칙(코로나19/온열질환 등)(20%)
	화 재 안 전	· 화재발생시 행동요령(화재예방, 신고, 소화기 · 소화전, 대피요령 등) (40%) · 자연재난시 행동요령(풍수해, 대설 발생시) (30%) · 완강기, 화재감지기 등 사용방법 (30%)
	지진 · 핵 및 화생방호	· 지진발생시 상황별 / 장소별 행동요령 (40%) · 핵 및 화생 방호 행동요령(10%) · 핵 및 화학,생물학 상황 발생 시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30%) · 일반방독면 착용법 / 대체물자 사용법 (20%) ※ 작용제 특성 이론 제외

3. 지원서 접수

가. 일 시 : ’ 24. 1. 12.(금) ~ 1. 15.(월)

나. 장 소 : 자치구 담당부서 (모든 자치구 중 1곳으로만 접수하되 어디든 무방함)

다. 접수방법 : 이메일, 우편접수(등기)

1) 이메일 접수 시 이력서와 지원서약서는 서명본을 스캔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제출 전 접수 자치구 담당자에게 관련내용 사전확인 후 접수 요망

2) 이메일 제출시 마감일자까지의 도착시간(‘24.1.15, 23:59분),
우편 제출시 마감일자(‘24.1.15.)까지의 우편소인에 한해 유효하며, 주소오기 및 오류 등으로 인한 서류 미수신, 제출 서류미비 등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3) 지원자 제출서류 목록 (작성양식은 붙임 참고)

구 분	작 성 방 법 (유의사항)	제출형태
① 이력서	·생년월일 기재 (주민등록번호 기재 금지) ·자격증 증빙서류 제출 (미제출 시 인정 불가) ·실무경력은 증빙 가능내용만 기재 (증빙서류 제출) ·자필 서명(하단부)	①~④번 서류를 PDF파일 1건으로 종합하여 제출
② 강의계획서	·핵심위주 작성(1장), 강의시간계획 포함 (50분 기준)	
③ 지원서약서	·자필 서명(하단부)	
④ 증빙자료	·이력서에 기재한 증빙자료 제출 (경력, 자격증명) ※ 해당자만 제출, 별도양식 없음 ※ 이력서 기재한 증빙자료 미제출시 경력, 자격 미반영	
⑤ 강의자료	·과목별 교육중점(2쪽 참고)을 중심으로 50분 강의용으로 작성 (관련 동영상 제출하지 않음)	PPT파일 1건

4) 유의사항 : 제출 후 수정불가, 접수기한 경과 시 미접수

4. 서류평가

가. 대 상 자 : 자치구로 지원(접수)하여 서울시로 서류가 제출된 지원자

나. 평가내용 : 강의계획서, 강의자료, 경력 등 (강의자료 중점 확인)

1) 강의계획 및 교육중점 포함여부, 교육내용 적절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

2) 서류평가 합격자는 평가위원 평가점수 평균 상위자 순으로 과목별 최종 합격자의 1.5배수 이내에서 선정

다. 결과발표 : ’ 24. 1. 26.(금) 예정

1) 시에서 자치구로 서류합격자와 지원자 개인별 강의 및 면접평가 일정 통보

2) 자치구에서 서류합격자에게 결과 및 강의평가 일정 안내

① 서류평가 합격자 안내일(‘24.1.26,<금>)까지 2024년 행정안전부 민방위교육 표준교재 제작/배부 시 변경(수정)된 내용이 있는 과목은 자치구에서 합격자에게 ‘24.1.29까지 반드시 안내하고, 지연(미안내)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은 자치구 책임.

② 표준교재가 변경(수정)된 내용이 있는 과목의 서류평가 합격자는 ‘24.2.5까지 강의자료 PPT를 수정하여 자치구로 제출하며, 수정하지 않는 강의자료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은 서류평가 합격자 책임.

③ 서류평가 합격자가 자치구로 제출한 수정된 강의자료 PPT를 자치구 담당자는 시(市)로 ‘24.2.6까지 제출. (기한 내 미제출시 00구 서류합격자 강의자료 수정 없음으로 간주)

④ 서류평가 합격자 안내일(‘24.1.26,<금>)이후 표준교재 제작/배부시 위 사항은 미적용하고, 시 주관 강사 연수시 과목별 변경 사항을 안내 하고 교육시 반영.

5. 강의 및 면접평가

가. 일 정 : ’ 24. 2. 13.(화) ~ 2. 16.(금) / 서류평가 결과 통보 시 평가일 안내

※ 위 기간내 지원자별 강의평가 일정 확정시 일정 변경이 불가함에 따라 강사지원 전 개인 일정(여행, 출장 등) 반드시 확인 후 지원

나. 대 상 자 : 서류평가 합격자

다. 평가내용

1) 과목별 선발인원 고려 강의평가 우수자 순으로 선발 (서류평가점수 미반영)

※ 강의 적합여부 고려 선발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으며, 평균 80점 미만자는 선발 제외

2) 제출 강의자료 전체의 핵심을 요약하여 10분간 평가(강의 및 질의답변)

※ 행정안전부 2024년 민방위교육 표준교재 미배부시 최초 제출한 강의자료로 강의 실시(접수시 제출한 강의자료 변경 불가)

※ 행정안전부 표준교재 배부시 변경된 사항이 반영된 수정 제출 강의자료로 강의 실시 (강의자료 수정제출 후 변경 불가)

※ 실전체험강사는 실습과제 교육 및 시범 포함하여 평가

라. 방 법 : 대면평가(급성 전염병 유행등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 전환 시 별도안내)

마. 결과발표 : ’ 24. 2.21.(목) 예정

※ 합격자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자치구에서 위촉절차 개별안내

6. 강사위촉

가. 위촉일자 : ’ 24. 2.29.(목) 예정 ※ 강사연수 병행

나. 위촉권자 : 서울특별시장 (교육운영 : 자치구청장)

다. 위촉기간 : 1년 (’ 24년 당해연도)

라. 강사운영 : 최종합격자를 서울시 민방위 교육강사풀로 구성, 자치구는 교육강사풀 안에서 적합한 강사를 선정하여 운영

7. 참고사항

가. 지원자는 강의할 1개 과목을 선택하여 1개 자치구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나. 선발자는 교육강사풀로 구성되나, 강의시간 배정과는 무관합니다.

다.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일체는 수정 및 반환이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즉시 선발을 무효로 합니다.

라. 제출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저작권에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된 문제발생 시 책임은 지원자(작성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마. 선발 관련 개인점수 및 불합격 사유 등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바. 선발 후 강사의 주관적 견해, 정치·종교관, 성 문제, 기타 등으로 강의진행 등에서 물의를 야기할 경우 즉시 선발을 무효로 합니다.

사. 급성 감염병 유행 및 기타상황으로 민방위 집합교육 불가시 민방위강사로 합격했다 하더라도 강의를 실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민방위 교육업무 담당자(6쪽 참조)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교육업무 담당자(시/구)>

구 분	부서명	연락처	구 분	부서명	연락처
서울시	민방위담당관	2133-4537 2133-4540	서대문구	재난안전과 민방위팀	330-8313
종로구	자치행정과 민방위팀	2148-1473	마포구	구민안전과 민방위팀	3153-8333
중 구	생활안전과 민방위팀	3396-4584	양천구	안전재난과 민방위팀	2620-4396
용산구	안전재난과 민방위팀	2199-7974	강서구	안전관리과 민방위팀	2600-6144
성동구	안전관리과 민방위팀	2286-5154	구로구	도시안전과 민방위팀	860-2326
광진구	도시안전관 민방위팀	450-7258	금천구	주민안전과 민방위팀	2627-1058
동대문구	안전재난과 민방위팀	2127-4431	영등포구	도시안전과 민방위팀	2670-3183
중랑구	도시안전과 민방위팀	2094-0292	동작구	행정자치과 민방위팀	820-1226
성북구	도시안전과 민방위팀	2241-4382	관악구	안전관리과 민방위팀	879-5823
강북구	자치행정과 민방위팀	901-6102	서초구	안전도시과 민방위팀	2155-7119
도봉구	재난안전과 민방위팀	2091-4262	강남구	재난안전과 민방위팀	3423-6954
노원구	자치행정과 민방위팀	2116-3126	송파구	자치행정과 민방위팀	2147-2237
은평구	안전관리과 민방위팀	351-7713	강동구	자치안전과 민방위팀	3425-5164

붙 임 1. 지원자 제출서류 서식 (이력서, 지원서약서, 강의계획서)
2. 행정안전부(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민방위 표준교재
(서울시 홈페이지 참조 :https://news.seoul.go.kr/safe/archives/511410)

3. 행정안전부 민방위 교육영상
(행정안전부 유튜브 페이지 참조 : http://www.youtube.com/withyou3542)
4.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 참조 :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contents/prevent/SDIJKM5104.html?menuSeq=784)
5. 감염병 예방 및 건강수칙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참조 : http://www.cdc.go.kr/). 끝.

【붙임 1】 지원자 제출서류 서식

이 력 서

사진파일 삽입 또는 사진부착 (3.5×4.5㎝)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세)		성 별		
현 주 소					
현(전) 소 속	기관 및 부서 :		직위 :		
연 락 처	자 택	사무실	휴대폰	E-MAIL	
	02-000-0000	02-000-0000	010-0000-0000	ABCD@seoul.go.kr	
병 역	출신구분 입영(임관)일		계 급		
	전역일자		복무기간	년 월(개월)	

□ 학 력

학 교 명	입학년월일	졸업년월일	전 공	학 위

□ 자격증 (관련분야)

자격증명	취득일	발급기관	비 고

□ 서울시 민방위 강사 선발 여부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3년
선발여부	선발 / 해당없음	선발 / 해당없음	선발 / 해당없음	선발 / 해당없음
선발과목	과목명 작성	과목명 작성	과목명 작성	과목명 작성

□ **실무경력** (경력증명서로 증빙 가능한 경력만 기재)

근무 또는 참여기간	근무기관	근무부서 또는 사업명	담당분야 또는 직책
년 월 ~ 년 월 (년 개월)			
년 월 ~ 년 월 (년 개월)			
년 월 ~ 년 월 (년 개월)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현재까지 귀하가 달성한 업적과 장점 등을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1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지 원 서 약 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상기 본인은 2024년 서울특별시 민방위 교육강사 선발을 위해 이력서 등에 기재하고 제출한 서류일체에 허위기재 및 오류가 없음을 서약하며, 차후 허위로 확인될 경우 민방위 교육강사 해촉에 동의합니다.

또한 강사선발 모든 진행과정과 결과에 동의하며, 민방위 교육 시 부적절한 교육내용 및 언행, 양성평등 위배 등으로 민원, 언론보도 등의 물의를 야기할 경우에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취하는 해촉, 강의금지 등의 조치에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

2024. . .

서약인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강 의 계 획 서

<과목명, 강사성명>

□ 교육중점

○ 신명 태명조 14

○

□ 교육내용 ※ 항목별 교육 예상시간 기재

○ 신명 태명조 14 (00분)

○ (00분)

○ (00분)

○ (00분)

○ (00분)

□ 결 론

○ 신명 태명조 14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3565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도 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도로법」 제1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가.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이*로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한진1길 ***-**, *동 ***호(송악읍)	일시: 2023-10-14 07:33 장소: 마곡중앙3로 내용: 운행제한 폭 0.28m 초과	처분일: 2023. 11. 27.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24. 1. 31.
이*준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환로120길 **-**, ***호(독산동)	일시: 2023-10-16 12:10 장소: 서부간선지하도로(상행) 내용: 운행제한 높이 0.69m 초과	처분일: 2023. 11. 27. 과태료: 100만 원 납기일: 2024. 1. 31.

나.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독촉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홍*수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로151번길 ** (부발읍)	일시: 2023-08-26 06:51 장소: 마곡중앙3로 내용: 운행제한 폭 0.29m 초과	처분일: 2023. 10. 5.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23. 11. 30.
이*영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로 ***, ***호 (봉덕동)	일시: 2023-08-26 06:55 장소: 마곡중앙3로 내용: 운행제한 폭 0.29m 초과	처분일: 2023. 10. 5.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23. 11. 30.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정*완	경상북도 구미시 경은로 ***, ***호 (형곡동)	일시: 2023-09-06 06:48 장소: 마곡중앙로 내용: 운행제한 폭 0.28m 초과	처분일: 2023. 10. 5.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23. 11. 30.
임*혁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 ***, *층 (대조동)	일시: 2023-09-07 15:18 장소: 행주대교 남단 과적검문소 내용: 운행제한 축하중 2.38t 초과	처분일: 2023. 10. 5. 과태료: 80만 원 납기일: 2023. 11. 30.

4. 공고기간: 2023. 12. 28.~2024. 1. 10.

5. 납부기한: 2024. 1. 31.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가.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고 75%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과태료 부과 처분청(이의제기서 제출처)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마곡동)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02-2657-7922, 팩스번호: 02-2657-7950
- 전자우편: skyblue7@seoul.go.kr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3567호

차량운행제한위반 부과·독촉 및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운행제한)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독촉고지서 및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보관기관 경과)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독촉고지 공시송달
   차량운행제한위반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2. 근 거 : 「도로법」 제1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2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가.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전영배	인천광역시 서구 서로3로 49 1303동 6**호	위반일시: 2023-10-11 21:37 위반장소: 서대문구 연희동 519-26(홍제교) 위반내용: 차량의 총 중량 초과(실측값:36.3t, 초과값:4.3t 006다784*)	과태료: 70만원 부과 처분일: 2023-11-27 납기일: 2024-01-31
이홍주	인천광역시 서구 신석로 122번길 10 4**호	위반일시: 2023-11-02 05:42 위반장소: 서대문구 충정로3가 463(충정교) 위반내용: 차량의 총 중량 초과(실측값:38.25t, 초과값:6.25t 서울06너573*)	과태료: 80만원 부과 처분일: 2023-11-27 납기일: 2024-01-31
최정근	인천광역시 서구 오동로 40 201동 11**호	위반일시: 2023-11-02 06:44 위반장소: 용산구 한강로 1가 11-11 위반내용: 차량의 총 중량 초과(실측값:46.25t, 초과값:14.25t 006가671*)	과태료: 80만원 부과 처분일: 2023-11-27 납기일: 2024-01-31
박세준	인천광역시 미추호구 경인로 203-12 1동 11**호	위반일시: 2023-11-03 09:23 위반장소: 서대문구 북가좌동 481 북가좌삼거리 위반내용: 차량의 축 하중 초과(실측값:11.1t, 초과값:1.1t 경기06조701*)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일: 2023-11-27 납기일: 2024-01-31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강형훈	제주도 서귀포시 월평하원로 163-*	위반일시: 2023-10-14 11:39 위반장소: 마포구 상암동 1762 위반내용: 차량의 폭 초과(실측값:2.75m, 초과값:0.25m 서울07나696*)	과태료: 30만원 부과 처분일: 2023-11-27 납기일: 2024-01-31
전승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11번길 4*	위반일시: 2023-10-07 06:39 위반장소: 서대문구 홍은동 217-5(홍제교) 위반내용: 차량의 총 중량 초과(실측값:36.5t, 초과값:4.5t 서울06하618*)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일: 2023-11-27 납기일: 2024-01-31

나.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유대일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2로 2*	위반일시: 2023.08.05 09:03 위반장소: 강서구 가양동 1475 가양대교남단 위반내용: 차량의 축 하중 초과(실측값:11.65t 초과값:1.65t 서울06너542*)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일: 2023-09-26 납기일: 2023-11-30
박병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7**	위반일시: 2023.08.12. 10:01 위반장소: 용산구 원효로 1가 108-18 위반내용: 차량의 총 중량 초과(실측값:36.6t 초과값:4.6t 경기06모150*)	과태료: 50만원 부과 처분일: 2023-09-26 납기일: 2023-11-30

다.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압류		
성명	주 소		물건명	압류일자	금액(원)
조남인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고시길 21-2 2**호	위반일시: 2023-01-18 20:13 위반장소: 강변북로 당인리발전소 인근 위반내용: 차량의 폭 초과(실측값:2.7m, 초과값:0.2m ,서울15가791*)	자동차	2023.11.3	334,200
정상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35번길 3**호	위반일시: 2021-06-01 15:36 위반장소: 마포구 상암동 난지천공원 인근 위반내용: 차량의 축하중 초과(실측값:11.9t, 초과값:1.9t ,서울06자594*)	자동차	2023.11.3	677,000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가.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고 7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과태료 부과 행정청(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양대로 203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 02-300-8347, 팩스번호: 02-300-833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3576호

도시계획시설사업(낙산근린공원 조성) 실시계획인가(변경)을 위한 열람공고문 공시송달 공고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으로 시행하는 낙산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4조 및 「민사소송법」제19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공시송달 대상자

번호	성명	송달주소	비고
1	김*희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227, 517동 ***호 (운양동, 풍경마을래미안한강2차)	
2	김*민	서울시 종로구 낙산성곽동길 59-*, 1층 1**호(창신동)	
3	전*비	경기도 의왕시 모락로 89-16, 103동 ****호 (오전동, 수선화아파트)	
4	유*보	서울시 종로구 낙산성곽동길 59-*, 3**호(창신동)	

□ 공시송달 내용: 도시계획시설사업(낙산근린공원)실시계획인가(변경) 열람공고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615-280 등 56필지(변경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사업의 명칭 : 낙산근린공원 조성사업(보상)

다. 사업의 내용 및 규모(변경없음)

1) 사업면적 : 3,782.1㎡

2) 사업내용 : 도시공원 조성 및 보상

라. 사업의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1) 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마.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장(변경없음)

바. 사업기간(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1) 기존 : 실시계획인가고시일로부터 2024.12.31까지
2) 변경 : 실시계획인가고시일로부터 2026.12.31까지

사. 수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변경): 따로붙임

아.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자.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중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02-3783-5920)

※ 향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도면 등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업명 : 낙산근린공원 조성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연번	변경전										변경후										비고
	소재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공유지분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공유지분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권리	
계			3,645.8	3,782.1									3,648.5	3,782.1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15-280	대	163.1	163.1		**기업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76 롯데캐슬천지인 지****4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15-280	대	163.1	163.1		서울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15-281	대	121.9	121.9		**기업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76 롯데캐슬천지인 지****4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15-281	대	121.9	121.9		서울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15-282	대	8.5	8.5		**기업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76 롯데캐슬천지인 지****4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15-282	대	8.5	8.5		서울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15-283	대	240.2	240.2		**기업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76 롯데캐슬천지인 지****4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15-283	대	240.2	240.2		서울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15-265	대	3.3	3.3		김*심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성곽길 96-**(창신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15-265	대	3.3	3.3		서울시					
6	서울특별시	대	6.0	6.0		전*형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대	6.0	6.0		서울시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관계인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동 9-412	대	194.9	194.9	1/4	박*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20길 **(정릉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동 9-412	대	194.9	194.9		서울시					
					1/4	김*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은로126번길 46, 311동 ***호(보라동, 민속마을현대모닝 사이드)												
					1/4	박*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세실로 114-**												
					1/4	안*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세실로 114-**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동 9-957	도로	66.2	66.2		종로구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동 9-957	도로	66.2	66.2		종로구청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동 9-958	도로	10.5	10.5		종로구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동 9-958	도로	10.5	10.5		종로구청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	188.5	188.5		종로구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동	도로	188.5	188.5		종로구청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화동 9-779										9-779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동 9-955	도로	7.1	7.1		종로구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동 9-955	도로	7.1	7.1		종로구청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7-211	도로	6.2	6.2	1/8	박*윤	평안남도 평양시 하수구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7-211	도로	6.2	6.2		서울시					
					5/8	박*봉	평안남도 평양시 장별동 **														
					2/8	윤*엽	평안남도 평양시 위청리 ***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7-228	도로	6.4	6.4	1/8	박*윤	평안남도 평양시 하수구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7-228	도로	6.4	6.4		서울시					
					5/8	박*봉	평안남도 평양시 장별동 **														
					2/8	윤*엽	평안남도 평양시 위청리 ***														
14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7-55	도로	109.7	109.7	1/8	박*윤	평안남도 평양시 하수구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7-55	도로	109.7	109.7		서울시					
					5/8	박*봉	평안남도 평양시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15	서울특별시 중로구 창신동 627-67	도로	3.3	3.3			장별동 **				서울특별시 중로구 창신동 627-67	도로	3.3	3.3		서울시					
					2/8	윤*풍	평안남도 평양시 위청리 ***														
					1/8	박*윤	평안남도 평양시 하수구리 ***														
					5/8	박*풍	평안남도 평양시 장별리 **														
					2/8	윤*엽	평안남도 평양시 위청리 ***														
16	서울특별시 중로구 창신동 627-339	도로	272.3	272.3							서울특별시 중로구 창신동 627-339	도로	272.3	272.3		서울시					
					1/8	박*윤	평안남도 평양시 하수구리 ***														
					5/8	박*풍	평안남도 평양시 장별리 **														
					2/8	윤*엽	평안남도 평양시 위덕리 ***														
17	서울특별시 중로구 창신동 627-240	도로	11.1	11.1							서울특별시 중로구 창신동 627-240	도로	11.1	11.1		서울시					
					1/8	박*윤	평안남도 평양시 하수구리 ***														
					5/8	박*풍	평안남도 평양시 장별리 **														

연번	변경전									변경후									비고
	소재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공유지분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공유지분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8	서울특별시 중로구 창신동 627-103	도로	0.7	0.7	2/8	윤*표	평안남도 평양시 워*리 ***			서울특별시 중로구 창신동 627-103	도로	0.7	0.7		서울시				
					1/8	박*윤	평안남도 평양시 하수구리 ***												
					5/8	박*봉	평안남도 평양시 장별리 **												
					2/8	윤*표	평안남도 평양시 워*리 ***												
19	서울특별시 중로구 창신동 627-107	대	9.9	9.9		최*만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산6-*			서울특별시 중로구 창신동 627-107	대	9.9	9.9		서울시				
20	서울특별시 중로구 창신동 627-128	도로	9.9	9.9	1/8	박*윤	평안남도 평양시 하수구리 ***			서울특별시 중로구 창신동 627-128	도로	9.9	9.9		서울시				
					5/8	박*봉	평안남도 평양시 장별리 **												
					2/8	윤*표	평안남도 평양시 워*리 ***												
21	서울특별시 중로구	도로	1.7	1.7	1/8	박*윤	평안남도 평양시 하수구리 ***			서울특별시 중로구 창신동	도로	1.7	1.7		서울시				

연번	변경전										변경후									비고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창신동 627-131				5/8	박*봉	평안남도 평양시 장별리 **				627-131					서울시					
					2/8	윤*엽	평안남도 평양시 워덕리 ***														
22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7-241	도로	2.7	2.7	1/8	박*균	평안남도 평양시 하수구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7-241	도로	2.7	2.7		서울시					
					5/8	박*봉	평안남도 평양시 장별리 **														
					2/8	윤*엽	평안남도 평양시 워덕리 ***														
23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7-328	도로	76.3	76.3	1/8	박*은	평안남도 평양시 하수구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7-328	도로	76.3	76.3		서울시					
					5/8	박*봉	평안남도 평양시 장별리 **														
					2/8	윤*엽	평안남도 평양시 워덕리 ***														
24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7-149	도로	13.2	13.2	1/8	박*은	평안남도 평양시 하수구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7-149	도로	13.2	13.2		서울시					
					5/8	박*봉	평안남도 평양시 장별리 **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연번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25	서울특별시 중구 충신동 1-584	도로	3.1	3.1	2/8	윤*엽	평안남도 평양시 위덕리 ***	강*오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13길 23-6, ***호 (사당동)		서울특별시 중구 충신동 1-584	도로	3.1	3.1	60709/306600	김*봉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동 1-***								
					21870/8375400	강*진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동 1-***(5/2)	강*호	서울시 광진구 용마산로22길 11-8, ***호 (중곡동)	상속					10800/8375400										
					24300/8375400	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1가 1-164(1/1) 베수지4차빌라 ***호	정*훈	경기도 구리시 걸매중앙로 25, 603동 ****호 (걸매동, 걸매6단지)	상속					92453 0/93306 00	서울시							
								강*하	서울시 구로구 개봉로3길 87, 109동 ****호 (개봉동, 개봉현진아파트)	상속													
								강*화	서울시 중구 난계로11길 16, ***호 (황학동, 아메인)	상속													
								강*화	울산광역시 중구 번영로 463, 103동 ***호	상속													

연번	변경전												변경후								비고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부산동, 서한이다음1 단지)												
					29752/8375400	권*주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21번길 26, 2동 ***호(갈산동, 정광빌라)														
					14876/8375400	권*혁	경기도 부천시 장말로 136, 1902동 ****호(상동, 꿈동산)														
					22500/8375400	김*덕	전라남도 해남군 북일면 만월길 **	예금보험공사	서울시 중구 다동 **	가압류											
					22500/8375400	김*혜	충청남도 천안시 신부동 56-20(14/5) 금동아파트 2동 ****호	김*덕	전라남도 해남군 북일면 만월길 **	상속											
								김*혜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화천길 86-**	상속											
								김*득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2270 번길 16, 109동 ***호(소망마	상속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서울특별시 서울 중로구 중 1-584	도로	3.1	3.1	31770/0837/5400	김*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891, 301동 ****호 (도봉동, 도봉파크빌아파트)	김*실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물무로 227, 105동 ***호 (도동휴먼시아)	상속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산동 1-584	도로	3.1	3.1	92453/09306/00	서울시					
					39240/8375/400	김*심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201-12(4/7) ***호	공*원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 ***(남부민동)	상속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22500 0/837 5400	김*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97, 106동 ***호(서초동, 롯데캐슬클래식아파트)													
					22500 0/837 5400	변*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97, 106동 *호(서초동 롯데캐슬클래식아파트)													
					22500 /8375 400	김*숙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신하길로 135번길 5-14, ***호													
					27450 /8375 400	김*수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516-* (9/4)	윤*숙	서울시 관악구 양녕로6다길 36, ***호(봉천동)	상속										
								김*희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동리로 133-*	상속										
								김*아	서울시 관악구 은천로33길 5, 107동 ***호(봉천동, 관악동부센트레빌)	상속										
					62100 /8375 400	김*수	서울특별시 중로구 충신동 1-***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동 1-584	도로	3.1	3.1	21870 0/837 5400	김*열	경기도 파주시 시민회관길 13-11, 가동 ***호(금촌동,정안 귀빈아파트)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동 1-584	도로	3.1	3.1	92453 0/9306 00	서울시				
					54630 /8375 400	김*봉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동 1-***														
					31500 /8375 400	김*덕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동 1-***	**산업주식회사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신도림동, 디큐브시티)	근저당권											
					28800 /8375 400	김*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동 1-***														
					6750/ 83754 00	김*학	경기도 부천시 역곡로98번길 36-**(역곡동)														
					69750 /8375 400	김*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2길 **(충신동)														
					13500 /8375 400	라*필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2길 72-*(충신동)														
					10890 0/837 5400	박*준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동 76-**														

연번	변경전									변경후								비고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관계인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31500/8375400	박*순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동 1-***													
					32805 0/837 5400	박*규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빌리지3길 52, ***호 (한남동, 상월대2동)	현*환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85길 89-5, ***호 (길동, 한강스타빌)	근저당권										
					27000/8375400	박*철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521번길 **													
					32805 0/837 5400	배*예	#1208 880 GRANDVIEW WAY NORTH YORK ON M2N *** CANADA													
					43740 0/837 5400	배*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33, 1401동 ***호 (주엽동, 강선마을)													
					27450/8375400	서*종	광주광역시 광산구 본광동서로 ** (송정동)													
					27450/8375400	석*수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서로109, 701동 ***호 (반석동, 반석마을7단지아파트)	서*애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로 123, 604동 ***호 (지족동, 노은해랑숲마을6단지아파	상속										

연번	변경전										변경후										비고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1)	상속											
								서*숙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0길 74, 101동 ****호 문배동 이안용산1차아파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168, 501동 ****호 관양동, 공작아파트)	상속											
								서*숙													
									광주광역시 광산구 본량동서로 ** (송치동)	상속											
								서*중													
									서울시 성동구 독서당로63길 53, ***호(응봉동, 금호파크빌)	상속											
								송*옥													
						송춘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63길 53, ***호(응봉동, 금호파크빌)								13050/18375 400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52길 19, ***호(면목동, 미스 빌리지)	상속											
								송*숙													
									경기도 양주시 삼숭로38번길 91, 404동 ****호(삼숭	상속											
								송*숙													

연번	변경전											변경후							비고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양주 자이아파트)													
								송*섭	서울시 성동구 독서당로63길 53, ***호(응봉동, 금호파크빌)	상속												
					11970 0/837 5400	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36길 6, **호 (상도동, 시온빌라)															
					21870 0/837 5400	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88, 301동 ***호 (잠원동, 신반포7차아파트)															
					40500 /8375 400	유*식	서울특별시 중로구 충신2길 16-* (충신동)	최*례	서울특별시 중로구 충신2길 16-* (충신동)	상속												
								유*홍	서울특별시 중로구 충신2길 16-* (충신동)	상속												
								유*홍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126번 길 17-26, 106동 ****호(한도 아파트)	상속												

연번	변경전										변경후									비고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유*미	전라남도 나주시 우정로 101, 207동 ****호 빛가람동, 빛가람 중흥S-CLASS 센트럴 2차)	상속											
					58050/83754400	유*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														
					27794/97/83754400	윤*욱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75 (6/4) 호수마을 404동***호	윤*선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가마골로 9, 101동 ****호 뚜르 마을아파트)	상속											
								윤*선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30-*(48/1)	상속											
								윤*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노루목로 79, 404동 ***호 (장항동, 호수마을)	상속											
					27450/83754400	윤*숙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녕로6다길 36, ***호 봉천동)														
					6750/83754 00	아*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46길 28, 104동 ***호														

연번	변경전										변경후									비고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논현동, 논현아파트)														
					72900/8375400	이*	서울특별시 중로구 충신동 1-***														
					21870/8375400	이*상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29길 20-17, 가동 ***호 (목동, 황금위너빌)	박*숙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29길 20-17, 가동 ***호 (목동, 황금위너빌)	상속											
								이*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29길 20-17, 가동 ***호 (목동, 황금위너빌)	상속											
								이*영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73길 24, 102동 ***호 (염창동, 염창힐스테이트)	상속											
					81945/8375400	이*도	서울특별시 중로구 충신4길 21-*(충신동)														
					83632/8375400	이*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257번길 **														

연번	변경전											변경후										비고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용	경기도 성남시	이*옥	경기도 부천시 삼작로118번 길 19, ***호 (내동, 행복마을)		상속											
					83632			이*석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상미1로 7, 209동 ****호 (헬스테이트 리버시티 2단지)		상속											
					13500/8375400	이*흠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57길 15, ***호 (연건동)	윤*순	서울시 강서구 까치산로 180-10, ***호(화곡동)		상속											
								이*화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39길 74, 502동 ****호 (등촌동, 등촌5단지 주공아파트)		상속											
					21870/8375400	이*임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12길 ** (신림동)	안*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3로 45, 213동 ****호 (가좌동, 가좌마을)		근저당권											
							(서현동)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8375 400		중원구 은행로 13, 103동 ***호(은행동, 두산위브)														
					44100 /8375 400	이*희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4나길 14-**(충신동)														
					21600 /8375 400	이*선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로32길 57, 116동 ****호(신정동, 양천아파트)														
					22500 /8375 400	이*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숭문16가길 17-*(염리동)														
					45000 /8375 400	이*상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307길 30-6, *층(안암동 1가)														
					83632 /8375 400	이*연	강원도 강릉시 선수촌로 113, 801동 ****호(유천동, 내선수촌 8단지 아파트)														
					62100 /8375 400	이*웅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동 1-***	전*희	서울시 종로구 낙산성곽서길 89-*(충신동)	상속						이*국	울산광역시 중구 옥교로	상속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지 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지 분	소 유 자		관 계 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동 1-584	도로	3.1	3.1	21870/8375400	장*술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매송북길247번길 41-*	박*순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매송북길247 번길 41-*	상속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동 1-584	도로	3.1	3.1	92453/93060	서울시								
					58050/8375400	임*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																		
					16200/8375400	이*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동 1-**																		
								이*성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14길 17, ***호(혜화동)	상속														
								이*숙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로206, 706동 ***호(중산동, 중산마을)	상속														
									83, 2동 ***호(행성동, 삼화골든아파트)																

연번	변경전										변경후									비고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장*환	경기도 화성시 메송면 메송로37번길 17-13, C동 ***호 (효도빌라)	상속											
					12544 8/837 5400	정*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257번길 ** (서현동)														
					14876 1/837 5400	정*욱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중로 16번길 17, *층 (주안동)														
					11250 /8375 400	조*수	경기도 구리시 갈매중앙로 131, 311동 ****호 (갈매동, 힌라비발디)														
					11250 /8375 400	조*숙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읍 경춘북로558번길 12, 121동 ***호 (퇴계원힐스테이트)														
					21600 /8375 400	주*희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동 1-***														
					13500 /8375 400	최*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중앙로7길 7,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26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40-408	대	30.0	30.0	31500/8375400	학교법인**대학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40-408	대	30.0	30.0		서울시					
27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60-159	대	6.2	6.2		학교법인**대학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60-159	대	6.2	6.2		서울시					
28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60-171	대	0.7	0.7		학교법인**대학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60-171	대	0.7	0.7		서울시					
29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40-418	도로	9.1	9.1		학교법인**대학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40-418	도로	9.1	9.1		서울시					
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40-417	도로	78.9	78.9		학교법인**대학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40-417	도로	78.9	78.9		서울시					
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40-419	도로	1.4	1.4		학교법인**대학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40-419	도로	1.4	1.4		서울시					

연번	변경전											변경후									비고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32	서울특별시 서울로구 창신동 640-381	도로	109.5	109.5		학교법인**대학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40-381	도로	109.5	109.5		서울시					
33	서울특별시 서울로구 창신동 640-420	도로	12.5	12.5		학교법인**대학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40-420	도로	12.5	12.5		서울시					
34	서울특별시 서울로구 창신동 640-376	도로	205.2	205.2		학교법인**대학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40-376	도로	205.2	205.2		서울시					
35	서울특별시 서울로구 창신동 668-64	도로	133.6	133.6	1/2	오*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68-64	도로	133.6	133.6		서울시					
					1/2	이*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시로 147, 6동 ***호(청량리동, 미주아파트)														
36	서울특별시 서울로구 창신동 668-29	대	3.3	3.3		이*삼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68-29	대	3.3	3.3		서울시					
37	서울특별시 서울로구 창신동 668-28	도로	32.3	32.3		이*삼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68-28	도로	32.3	32.3		서울시					
38	서울특별시 서울로구	도로	3.1	3.1		이*삼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도로	3.1	3.1		서울시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창신동 668-47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68-47	종교 용지	419.3	419.3		지*암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성곽동				
39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68-48	도로	1.0	1.0		이*삼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68-48	도로	1.0	1.0		서울시					
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70-4	대	64.0	64.0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성곽1길 * (창신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70-4	대	64.0	64.0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성곽1길 * (창신동)				
41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101	대	27.8	27.8		최*희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의 동**	국		압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101	대	27.8	27.8		서울시					
42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102	대	14.7	14.7		최*희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의 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102	대	14.7	14.7		서울시					
43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53	대	4.0	4.0		최*희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의 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53	대	4.0	4.0		서울시					
44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54	대	0.6	0.6		최*희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의 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54	대	0.6	0.6		서울시					
45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7-38	종교 용지	419.3	419.3		지*암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성곽동길 57-*(창신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7-38	종교 용지	419.3	419.3		지*암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성곽동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627-38															길 57-*(청신동)					
46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신동 627-39	대	56.2	56.2	1/8	박*윤	평안남도 평양시 하수구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신동 627-39	대	56.2	56.2		서울시					
					5/8	박*경	평안남도 평양시 장별리 **														
					2/8	윤*엽	평안남도 평양시 위덕리 ***														
47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신동 627-40	종교 용지	86.0	86.0	1/2	황*식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문화로8번길 84, 112동 ****호(송도동, 베르디움 더퍼스트)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신동 627-40	종교 용지	86.0	86.0		서울시					
					1/2	신*혜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문화로8번길 84, 112동 ****호(송도동, 베르디움 더퍼스트)														
4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신동 23-312	대	3.0	3.0		**기업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인동 76 롯데캐슬천지인 지****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신동 23-312	대	3.0	3.0		서울시					
49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	21.2	21.2	7.21/1	김*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백양로 84,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신동	대	21.2	21.2	7.21/1	김*희	경기도 고양시				

연번	변경전										변경후										비고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창신동 626-100				39.9	권*석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분평로 18, 703동 ****호(분평동, 분평주공아파트)				626-100				34.34		덕양구 백양로 84, 1203동 ****호(화정동, 옥빛마을)				
					20.54/139.9	전*비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회현동1가)	주식회사** 은행		근저당권					20.54/134.34	전*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영서로 16길 54-3 ***호(외도일동)	주식회사*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회현동1가)	근저당권	
					7.21/139.9	김*민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성곽동길 59-8, 1층 ***호(창신동)								7.21/134.34	김*민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성곽동길 59-8, 1층 ***호(창신동)				
					7.21/139.9	홍*성	경기도 괴명시 양지로 16, 103동 ****호(일곡동,								7.21/134.34	홍*연	경기도 괴명시 양지로 16,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지 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지 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지 분	소 유 자		관 계 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99	종교 용지	686.4	686.4	7.21/1 39.9	지*암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성곽동길 57-*(창신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99	종교 용지	686.4	686.4		지*암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성곽동길 57-*(창신동)													
51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7-336	종교 용지	99.6	99.6	7.21/1 39.9	지*암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성곽동길 57-*(창신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7-336	종교 용지	99.6	99.6		지*암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성곽동													
					20.54/ 139.9	김*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4길 30-*(동숭동)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은행	서울시 종로구 종로**(공평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99	종교 용지	686.4	686.4	20.54/ 134.34	김*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4길 30-*(동숭동)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 은행	서울시 종로구 종로**(공평동)											
					7.21/1 39.9	유*보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성곽동길 59-8, ***호(창신동)								7.21/1 34.34	유*보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성곽동길 59-8, ***호(창신동)													
					43.88/ 139.9	고*열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성곽동길 59-8, 4층 ***호(창신동)	종로중앙** *금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길 **(창신동)						43.88/ 134.34	고*열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성곽동길 59-8, 4층 ***호(창신동)	종로중앙** **금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길 **(창신동)											
						광명역써밋플레이스)	103동 ****호(일괄 작동, 광명역써밋 플레이스)									광명역써밋플레이스)	103동 ****호(일괄 작동, 광명역써밋 플레이스)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627-336					길 57-*(창신동)										길 57-*(창신동)					
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7-203	종교 용지	0.5	0.5		자*암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성곽길 57-*(창신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7-203	종교 용지	0.5	0.5		자*암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성곽길 57-*(창신동)				
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가 1-86	대	0.9	0.9		조*환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수동 27-**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가 1-86	대	0.9	0.9		서울시					
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97-6	대	0.1	0.1		권*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97-*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97-6	대	0.1	0.1		서울시					
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동 1-571	대	0.7	0.7		김*환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4길 **, 1층 (충신동)	김*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4길 **, 1층	세입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동 1-571	대	0.7	0.7		김*환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4길 **, 1층 (충신동)	김*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4길 **, 1층	세입자	
								윤*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4길 **, 1층	세입자								윤*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4길 **, 1층	세입자	
5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1가 0-9			133.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1가 산1-11			133.6		문화재청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 사업명 : 낙산근린공원 조성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편입 면적(㎡)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편입 면적(㎡)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1	이화동	9-412	대	출입문	샷시형 (H1.5*W0.9*T0.04)	1EA		1/4	박*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20길 **(정릉동)				이화동	9-412	대	출입문	샷시형 (H1.5*W0.9*T0.04)	1EA			서울시				
	이화동	9-412	대	출입문	샷시형 (H1.5*W0.9*T0.04)	1EA		1/4	김*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사은로126번길 46, 311동 ****호(보라동, 민속마을현대모닝사이드)				이화동	9-412	대	출입문	샷시형 (H1.5*W0.9*T0.04)							
	이화동	9-412	대	출입문	샷시형 (H1.5*W0.9*T0.04)	1EA		1/4	박*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새실로 114-**				이화동	9-412	대	출입문	샷시형 (H1.5*W0.9*T0.04)							
	이화동	9-412	대	출입문	샷시형 (H1.5*W0.9*T0.04)	1EA		1/4	안*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새실로 114-**				이화동	9-412	대	출입문	샷시형 (H1.5*W0.9*T0.04)							
	이화동	9-412	대	담장	시멘블록조 (W7.8m*H1.8m*T0.1)	1식		1/4	박*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20길 **(정릉동)				이화동	9-412	대	담장	시멘블록조 (W7.8m*H1.8m*T0.1)	1식			서울시			
	이화동	9-412	대	담장	시멘블록조 (W7.8m*H1.8m*T0.1)	1식		1/4	김*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사은로126번길 46, 311동 ****호(보라동, 민속마을현대모닝사이드)				이화동	9-412	대	담장	시멘블록조 (W7.8m*H1.8m*T0.1)							

연번	변경전													변경후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이화동	9-412	대	담장	시멘블록조 (W7.9m*H1.8m*T0.1)	1식			박*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세실로 114-**				이화동	9-412	대	담장	시멘블록조 (W7.9m*H1.8m*T0.1)	56.1	56.1		서울시				
	이화동	9-412	대	담장	시멘블록조 (W7.8m*H1.8m*T0.1)	1식			안*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세실로 114-**				이화동	9-412	대	담장	시멘블록조 (W7.8m*H1.8m*T0.1)	56.1	56.1		서울시				
	이화동	9-412	대	건물	시멘블록조	56.1	56.1	1/4	박*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20길 **(정릉동)				이화동	9-412	대	건물	시멘블록조	59.4	59.4		서울시				
	이화동	9-412	대	건물	시멘블록조	56.1	56.1	1/4	김*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사은로126번길 46, 311동 ***호(보라동, 민속마을현대모닝사이드)				이화동	9-412	대	건물	시멘블록조	56.1	56.1		서울시				
	이화동	9-412	대	건물	시멘블록조	56.1	56.1	1/4	박*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세실로 114-**				이화동	9-412	대	건물	시멘블록조	56.1	56.1		서울시				
	이화동	9-412	대	건물	시멘블록조	56.1	56.1	1/4	안*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세실로 114-**				이화동	9-412	대	건물	시멘블록조	56.1	56.1		서울시				
	이화동	9-412	대	건물	시멘블록조	59.4	59.4	1/4	박*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20길 **(정릉동)				이화동	9-412	대	건물	시멘블록조	59.4	59.4		서울시				
	이화동	9-412	대	건물	시멘블록조	59.4	59.4	1/4	김*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사은로126번길 46, 311동 ***호(보라동, 민속마을현대모닝사이드)				이화동	9-412	대	건물	시멘블록조	59.4	59.4		서울시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이화동	9-412	대	건물	시멘블록조	59.4	59.4	1/4	박*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세실로 114-**				이화동	9-412	대	건물	시멘블록조							
	이화동	9-412	대	건물	시멘블록조	59.4	59.4	1/4	안*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세실로 114-**				이화동	9-412	대	건물	시멘블록조							
	이화동	9-412	대	건물(지하)	시멘블록조	6.3	6.3	1/4	박*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20길 **(정릉동)				이화동	9-412	대	건물(지하)	시멘블록조	6.3	6.3		서울시			
	이화동	9-412	대	건물(지하)	시멘블록조	6.3	6.3	1/4	김*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사은로126번길 46, 311동 ****호(보라동, 민속마을현대모닝사이드)				이화동	9-412	대	건물(지하)	시멘블록조	6.3	6.3		서울시			
	이화동	9-412	대	건물(지하)	시멘블록조	6.3	6.3	1/4	박*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세실로 114-**				이화동	9-412	대	건물(지하)	시멘블록조							
	이화동	9-412	대	건물(지하)	시멘블록조	6.3	6.3	1/4	안*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세실로 114-**				이화동	9-412	대	건물(지하)	시멘블록조							
	이화동	9-412	대	창고		6.3	6.3	1/4	박*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20길 **(정릉동)				이화동	9-412	대	창고								
	이화동	9-412	대	창고		6.3	6.3	1/4	김*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사은로126번길 46, 311동 ****호(보라동, 민속마을현대모닝사이드)				이화동	9-412	대	창고								
	이화동	9-412	대	창고		6.3	6.3	1/4	박*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세실로 114-**				이화동	9-412	대	창고								
	이화동	9-412	대	창고		6.3	6.3	1/4	안*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화동	9-412	대	창고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양지면 세실로 114-**																	
	이화동	9-412	대	장동		8.6	8.6	1/4	박*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20길 **(정릉동)					이화동	9-412	대	장동		8.6	8.6	1/4	박*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20길 **(정릉동)			
	이화동	9-412	대	장동		8.6	8.6	1/4	김*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사은로126번길 46, 311동 ****호(보라동, 민속마을현대모닝사이드)					이화동	9-412	대	장동		8.6	8.6	1/4	김*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사은로126번길 46, 311동 ****호(보라동, 민속마을현대모닝사이드)			
	이화동	9-412	대	장동		8.6	8.6	1/4	박*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세실로 114-**					이화동	9-412	대	장동		8.6	8.6	1/4	박*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세실로 114-**			
	이화동	9-412	대	장동		8.6	8.6	1/4	안*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세실로 114-**					이화동	9-412	대	장동		8.6	8.6	1/4	안*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세실로 114-**			
	이화동	9-412	대	수목	라일락 (R24+H1.5)	1주		1/4	박*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20길 **(정릉동)					이화동	9-412	대	수목	라일락 (R24+H1.5)	1주		1/4	박*자	서울시			
	이화동	9-412	대	수목	라일락 (R24+H1.5)	1주		1/4	김*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사은로126번길 46, 311동 ****호(보라동, 민속마을현대모닝사이드)					이화동	9-412	대	수목	라일락 (R24+H1.5)	1주		1/4	김*인	서울시			
	이화동	9-412	대	수목	라일락 (R24+H1.5)	1주		1/4	박*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세실로 114-**					이화동	9-412	대	수목	라일락 (R24+H1.5)	1주		1/4	박*희	서울시			
	이화동	9-412	대	수목	라일락 (R24+H1.5)	1주		1/4	안*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세실로 114-**					이화동	9-412	대	수목	라일락 (R24+H1.5)	1주		1/4	안*환	서울시			

연번	변경전													변경후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2	창신동	626-100	대	건물비 01호)	철근콘크 리트조	18.51	10.7		김*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백양로 84, 1203동 ***호(화정동, 옥빛마을)				창신동	626-100	대	건물비 01호)	철근콘크 리트조	18.51	10.7		김*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백양로 84, 1203동 ***호(화정동, 옥빛마을)			
	창신동	626-100	대	건물10 1호	철근콘크 리트조	18.51	11.0		김*민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성곽동길 59-8, 1층 ***호(창신동)				창신동	626-100	대	건물10 1호	철근콘크 리트조	18.51	11.0		김*민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성곽동길 59-8, 1층 ***호(창신동)			
	창신동	626-100	대	건물120 1호	벽돌조	18.51	11.0		홍*연	경기도 광명시 양지로 16, 103동 ****호(일직동, 광명역써밋플레이스)	세입자	이*자	서울시 종로구 낙산성곽동길 59-8, ***호	창신동	626-100	대	건물120 1호	벽돌조	18.51	11.0		홍*연	경기도 광명시 양지로 16, 103동 ****호(일직동, 광명역써밋플레이스)	세입자	이*자	서울시 종로구 낙산성곽동길 59-8, ***호
	창신동	626-100	대	건물130 1호	벽돌조	18.51	11.0		유*보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성곽동길 59-8, 301호(창신동)				창신동	626-100	대	건물130 1호	벽돌조	18.51	11.0		유*보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성곽동길 59-8, 301호(창신동)			
	창신동	626-100	대	건물140 1호	벽돌조	59.88	11.9		고*열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성곽동길 59-8, 4층 ***호(창신동)				창신동	626-100	대	건물140 1호	벽돌조	59.88	11.9		고*열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성곽동길 59-8, 4층 ***호(창신동)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창신동	626-100	대	옥탑	샷시	2.6	2.6		고*열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성곽동길 59-8, 4층 ***호(창신동)				창신동	626-100	대	옥탑	샷시	2.6	2.6		고*열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성곽동길 59-8, 4층 ***호 (창신동)			
3	충신동	1-571		건물(1층)	철근콘크리트조		1.0		김*환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4길 **, 1층(충신동)	세입자	김*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4길 **, 1층	충신동	1-571		건물(1층)	철근콘크리트조		1.0		김*환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4길 **, 1층(충신동)	세입자	김*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4길 **, 1층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4길 **, 2층	세입자	원*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4길 **, 2층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4길 **, 2층	세입자	원*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4길 **, 2층
4	창신동	670-4	대	옹벽,담장	콘크리트		26.7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성곽1길 *(창신동)				창신동	670-4	대	옹벽,담장	콘크리트		26.7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성곽1길 *(창신동)			
	창신동	670-4	대	샷시			8.7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성곽1길 *(창신동)				창신동	670-4	대	건물(지하층)	철근콘크리트조		22.2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성곽1길 *(창신동)			
	창신동	670-4	대	건물(1층)	철근콘크리트조		22.2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성곽1길 *(창신동)				창신동	670-4	대	건물(1층)	철근콘크리트조		22.2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성곽1길 *(창신동)			
	창신동	670-4	대	건물(2층)	철근콘크리트조		22.2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성곽1길 *(창신동)				창신동	670-4	대	건물(2층)	철근콘크리트조		22.2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성곽1길 *(창신동)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교회					*(창신동)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성곽1길 *(창신동)			
5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사찰	목재, 기와	122.0	118.4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사찰	목재, 기와	122.0	118.4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사찰	목재, 기와	47.6	30.8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사찰	목재, 기와	47.6	30.8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626-3)	종교용지	건물(1층)	벽돌조	174.9	145.1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626-3)	종교용지	건물(1층)	벽돌조	172.5	145.1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70-4	대	건물(3층)	철근콘크리트조	113.1	14.6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성곽1길 *(창신동)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건물(2층)	벽돌조	113.1	110.7		지*암	서울특별시		

연번	변경전													변경후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창신동	(626-3)	지	철					(대표 강*수)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곽동길59,***호 (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3)	지	철					(대표 강*수)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곽동길59,***호 (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건물(2층)	판넬	1.8	1.8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곽동길59,***호 (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건물(2층)	판넬	1.8	1.8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곽동길59,***호 (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건물(2층)	판넬	17.8	17.8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곽동길59,***호 (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건물(2층)	판넬	17.8	17.8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곽동길59,***호 (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석등	석재(화강암), 3.0m(h)*3.6m(돌레)	2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곽동길59,***호 (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석등	석재(화강암), 3.0m(h) *3.6m(돌레)	2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곽동길59,***호 (창신동,영은주택)			

연번	변경전													변경후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콰몰대	스테인레스, 화강암, 8.0m(h)*0.4m(돌레)	2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콰몰대	스테인레스, 화강암, 8.0m(h)*0.4m(돌레)	2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외부수전	-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외부수전	-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소대(화로)	철제, 2.0m(h)*1.5m*1.5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소대(화로)	철제, 2.0m(h)*1.5m*1.5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콰몰(석물)	석재(불석), 0.8(h)*0.5m*0.5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콰몰(석물)	석재(불석), 0.8(h)*0.5m*0.5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연번	변경전												변경후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관계인	관계주소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관계인	관계주소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제단	대리석, 1.3m*1.0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 성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제단	대리석, 1.3m*1.0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 성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돌확	석재(화강암), 0.4m(h)*2.5m(돌레)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 성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돌확	석재(화강암), 0.4m(h)*2.5m(돌레)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 성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바닥포장(석물)	석재(화강암), 1.5m(돌레)	33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 성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바닥포장(석물)	석재(화강암), 1.5m(돌레)	33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 성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바닥포장(잔디)	-	㎡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 성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바닥포장(잔디)	-	㎡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 성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자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자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철근콘크리트(화관바닥)	철제, 1m(h)*0.6m*0.5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로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철근콘크리트(화관옥상)	철제, 4m(h)*0.8*0.5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로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철근콘크리트(화관옥상)	철제, 4m(h)*0.8*0.5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로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철근콘크리트(화관바닥)	철제, 1m(h)*0.6m*0.5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로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돌체단(대응전)	석재, 화강암, 3m(h)*8m*1.3m*1/2		1식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로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돌체단(대응전)	석재, 화강암, 3m(h)*8m*1.3m*1/2		1식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로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외등	-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로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외등	-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로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풍경동(좌)	-	7개			자*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풍경동(좌)	-	7개			자*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혈판(대웅전)	목재, 1.4m*0.5m	1개			자*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혈판(대웅전)	목재, 1.4m*0.5m	1개			자*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주련(대웅전)	목재, 1.8m*0.3m	6개			자*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주련(대웅전)	목재, 1.8m*0.3m	6개			자*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불단(대웅전)	목재, 1.0m(h)*6.5m*2.0m	1개			자*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불단(대웅전)	목재, 1.0m(h)*6.5m*2.0m	1개			자*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신동,영은주택)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 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블럭(대지 옹전)	목재, 1.0m(h)*2.0m*1.0m	17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 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블럭(대지 옹전)	목재, 1.0m(h)*5.3m*1.0m	27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 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블럭(대지 옹전)	목재, 1.0m(h)*5.3m*1.0m	27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 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블럭(대지 옹전)	목재, 1.0m(h)*5.3m*1.0m	27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 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불상(철근콘)	석재(블석), 0.7m(h)*0.3m	97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 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불상(철근콘)	석재(블석), 0.7m(h)*0.3m	97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 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불상(일반)	석재(블석)	27개			지*암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불상(일반)	석재(블석)	27개			지*암	서울특별시		

연번	변경전													변경후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괄~울괄보실)	), 0.8(h)*0.4m*0.4m				(대표 강*수)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성곽로59,***호 (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괄~울괄보실)	석), 0.8(h)*0.4m*0.4m				(대표 강*수)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로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불상(산 신남)	석재(불석), 0.5m(h)*0.5m*0.3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로59,***호(창 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불상(산 신남)	석재(불석), 0.5m(h)*0.5m*0.3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로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불상(독 성님)	석재, 0.3m(h)*0.3m*0.3m	1개			자*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로59,***호(창 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불상(독 성님)	석재, 0.3m(h)*0.3m*0.3m	1개			자*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로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불상(석 가붙)	목재, 금박, 1.5m(h)*1.0m*0.8m	2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로59,***호(창 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불상(석 가붙)	목재, 금박, 1.5m(h)*1.0m*0.8m	2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로59,*** 호(창신동,영은주택)			

연번	변경전												변경후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블상(가석조자, 안난곤자)	석재, 0.8m(h)*0.3m*0.3m	2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블상(서울시 유형문화재)(지장보살, 관세음보살)	석재(불석), 0.8m(h)*0.5m*0.3m	2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블상(서울시 유형문화재)(지장보살, 관세음보살)	석재(불석), 0.8m(h)*0.5m*0.3m	2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블상(가석조자, 안난곤자)	석재, 0.8m(h)*0.3m*0.3m	2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종대(유전)	청동, 1.5m(h)*1.3m(지름)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종대(유전)	청동, 1.5m(h)*1.3m(지름)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탱화(서울시 유형문화재)(대웅전)	2.5m*2.0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탱화(서울시 유형문화재)(대웅전)	2.5m*2.0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탱화(대웅전)	1.5m*1.0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로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탱화(대웅전)	1.5m*1.0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로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탱화(대웅전)	1.6m*1.0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로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탱화(대웅전)	1.6m*1.0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로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탱화(대웅전)	2.0m*2.6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로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탱화(대웅전)	2.0m*2.6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로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탱화(대웅전)	2.0m*1.5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로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탱화(대웅전)	2.0m*1.5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로59,***호(창신동,영은주택)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탱화(대웅전)	2.5m*2.0m	2개			자*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탱화(대웅전)	2.5m*2.0m	2개			자*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집기비품(대웅전 전체)	-	1식			자*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집기비품(대웅전 전체)	-	1식			자*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혀판(명부전)	목재, 1.0m*0.5m	1개			자*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혀판(명부전)	목재, 1.0m*0.5m	1개			자*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주련(명부전)	목재, 1.8m*0.3m	4개			자*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주련(명부전)	목재, 1.8m*0.3m	4개			자*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연번	변경전														변경후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신동,영은주택)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 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블럭(명부전)	목재, 1.0m(h)*3.5m*1.0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 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블럭(명부전)	목재, 1.0m(h) *3.5m* 1.0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 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블럭(명부전)	목재, 1.0m(h)*5.5m*1.0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 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블럭(명부전)	목재, 1.0m(h) *5.5m* 1.0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 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블럭(명부전)	목재, 1.0m(h)*6.5m*1.0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 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블럭(명부전)	목재, 1.0m(h) *6.5m* 1.0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 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블럭(명부전)	목재,		1개		지*암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블럭(명부전)	목재,		1개		지*암	서울특별시			

연번	변경전													변경후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불상(가건물)	목재, 1.8m(h)*0.8m	2㎡			지*암(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로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불상(가건물)	목재, 1.8m(h)*0.8m	2㎡			지*암(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로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불상(건물)	석재(블석), 0.7m(h)*0.4m*0.4m	16㎡			자*암(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로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불상(건물)	석재(블석), 0.7m(h)*0.4m*0.4m	16㎡			자*암(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로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불상(무허가 도로원 도명존 좌, 10대왕)	석재(블석), 0.8m(h)*0.4m*0.4m	13㎡			지*암(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로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불상(무허가 도로원 도명존 좌, 10대왕)	석재(블석), 0.8m(h)*0.4m*0.4m	13㎡			지*암(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로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지	장보실	1.5m(h)*1.0m*1.0m				(대표 강*수)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로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지	장보실	1.5m(h)*1.0m*1.0m				(대표 강*수)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로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연번	변경전													변경후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물상(미륵불, 관세음보살상)	석재, 0.5m(h)*0.3m*0.3m	2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로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탱화(희왕도)	1.0m*0.4m	10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로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탱화(희왕도)	1.0m*0.4m	10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로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탱화(지장보살 후불 칠성탱화)	2.6m*1.5m	27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로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탱화(지장보살 후불 칠성탱화)	2.6m*1.5m	27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로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탱화(지장보살 후불 칠성탱화)	1.0m*0.7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로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탱화(지장보살 후불 칠성탱화)	1.0m*0.7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로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물상(미륵불, 관세음보살상)	석재, 0.5m(h)*0.3m*0.3m	2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로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경량철골(커튼월)	1.0m(h)*0.7m*0.5m	2개			지*암(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로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경량철골(커튼월)	1.0m(h)*0.7m*0.5m	2개			지*암(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로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철골조(지붕,서울시 유형문화재)	목재, 0.9m(h)*4.0m*0.5m	1개			지*암(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로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철골조(지붕,서울시 유형문화재)	목재, 0.9m(h)*4.0m*0.5m	1개			지*암(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로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건물(지하실,명부전)	2.0m(h)	28㎡			지*암(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로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건물(지하실,명부전)	2.0m(h)	28㎡			지*암(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로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집기비품(명부전 전체)	-	1식			지*암(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집기비품(명부전 전체)	-	1식			지*암(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주택(전)	청동, 0.9m(h)*0.6m*0.4m	1개			자*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주택(전)	청동, 0.9m(h)*0.6m*0.4m	1개			자*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블상(서울시 유형문화재)관세음보살	석재, 0.5m(h)*0.3m*0.3m	1개			자*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블상(서울시 유형문화재)관세음보살	석재, 0.5m(h)*0.3m*0.3m	1개			자*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블상(서울시 유형문화재)관세음보살	목재, 0.5m(h)*0.3m*0.3m	1개			자*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블상(서울시 유형문화재)관세음보살	목재, 0.5m(h)*0.3m*0.3m	1개			자*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블상(아미타불)	목재, 0.8m(h)*0.4m*0.4m	1개			자*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블상(아미타불)	목재, 0.8m(h)*0.4m*0.4m	1개			자*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연번	변경전														변경후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신동,영은주택)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물상(석재)	석재, 0.3m(h)* 0.2m*0.2m	27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물상(석재)	석재, 0.3m(h) *0.2m* 0.2m	27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탱화(심지)	2.4m*1.6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탱화(심지)	2.4m*1.6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물상(석불)	석재, 0.5m(h)* 0.3m*0.3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물상(석불)	석재, 0.5m(h) *0.3m* 0.3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물상(석)	목재,	1개			지*암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물상(석)	목재,	1개			지*암	서울특별시		

연번	변경전													변경후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금고(석북)	1.3m(h)*1.2m*0.6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로5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금고(석북)	1.3m(h) *1.2m* 0.6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로5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불감	목재, 2.5m(h)*0.9m*0.9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로5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불감	목재, 2.5m(h) *0.9m* 0.9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로5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불상(관세음보살)	목재, 금박, 0.3m(h)*0.2m*0.2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로5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불상(관세음보살)	목재, 금박, 0.3m(h) *0.2m* 0.2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로5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가불)	금박, 0.5m(h)*0.3m*0.3m				(대표 강*수)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로5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가불)	금박, 0.5m(h) *0.3m* 0.3m				(대표 강*수)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로5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관계인	관계주소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관계인	관계주소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조(화관 2층)	청동, 1.1m(h)*0.8m*0.4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조(화관 2층)	청동, 1.1m(h)*0.8m*0.4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댕화(서울시 유형문화재)(산신도)	1폭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댕화(서울시 유형문화재)(산신도)	1폭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불단(회관 2층)	1.1m(h)*8.0m*1.3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불단(회관 2층)	1.1m(h)*8.0m*1.3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댕화(철 성댕화; 육성도)	2.5m*2.0m	2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댕화(철 성댕화; 육성도)	2.5m*2.0m	2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집기비품(화관 1층, 2층, 건물 외부)	-		1식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로59,***호 (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집기비품(화관 1층, 2층, 건물 외부)	-		1식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로59,***호 (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단풍나무	H6.0*R21		2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로59,***호 (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단풍나무	H6.0*R2 1		2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로59,***호 (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블두화	H2.0*W1. 5		2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로59,***호 (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블두화	H2.0*W 1.5		2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로59,***호 (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모란	H0.5		2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로59,***호 (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모란	H0.5		2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로59,***호 (창신동 영은주택)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괄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산수구	H1.5*R4	4주			자*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 괄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산수구	H1.5*R4	4주			자*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 괄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메실나무	H2.0*R6	2주			자*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 괄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메실나무	H2.0*R6	2주			자*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 괄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무늬사철	H1.2*W0.4	1주			자*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 괄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무늬사철	H1.2*W 0.4	1주			자*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 괄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병꽃나무(색무늬)	H1.0*W0.4	1주			자*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 괄동길59,*** 호(창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병꽃나무(색무늬)	H1.0*W 0.4	1주			자*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연번	변경전													변경후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신동,영은주택)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 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계수나무	H1.0*R3		1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 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계수나무	H1.0*R3	1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 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담팔수	H1.0*R5		3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 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담팔수	H1.0*R5	3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 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홍가시나무	H1.5*W0.8		4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 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홍가시나무	H1.5*W 0.8	4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 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장미	5가지		3주		지*암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장미	5가지		3주			지*암	서울특별시		

연번	변경전													변경후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철푸	H0.5*W0.5	1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 성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지						(대표 강*수)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 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찔레장미	57가지	1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 성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찔레장미	57가지	1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 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퀑의다리	H1.0*R5	3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 성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퀑의다리	H1.0*R5	3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 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지						(대표 강*수)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 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연번	변경전												변경후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부처꽃	H0.8	22주	22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 성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부처꽃	H0.8	22주	22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 성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꽃매화	H1.5*R3	1주	1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 성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꽃매화	H1.5*R3	1주	1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 성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팽크물리	-	2㎡	2㎡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 성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팽크물리	-	2㎡	2㎡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 성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능소화	L4	1주	1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 성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능소화	L4	1주	1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 성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진달래	H1.8*W1.8	1주			지*암(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로59,***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진달래	H1.8*W 1.8	1주			지*암(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로59,***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백일홍	H5.0*R13	1주			지*암(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로59,***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백일홍	H5.0*R1 3	1주			지*암(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로59,***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사철나무	H6.0*R13	1주			지*암(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로59,***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사철나무	H6.0*R1 3	1주			지*암(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로59,***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왕보리수	H1.5*W1.2	1주			지*암(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로59,***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왕보리수	H1.5*W 1.2	1주			지*암(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로59,***호(창신동 영은주택)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화단	4m*4m		1식		자*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외부 마감	스테인레스, 2.0m*0.8m		1개		자*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6	창신동	627-38	종교용지	숙소	시멘블록조	46.4	46.4		자*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7-38	종교용지	숙소	시멘블록조	46.4	46.4		자*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7-38	종교용지	해우소	시멘블록조	11.6	11.6		자*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창신동	627-38	종교용지	해우소	시멘블록조	11.6	11.6		자*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연번	변경전														변경후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신동,영은주택)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 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7-38	종교용지	철쭉	H1.0*W0.8		4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 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7-38	종교용지	철쭉	H1.0*W 0.8		4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 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7-38	종교용지	모과나무	H2.0*R3		1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 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7-38	종교용지	모과나무	H2.0*R3		1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 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7-38	종교용지	매화나무	H1.2*R5		2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 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7-38	종교용지	매화나무	H1.2*R5		2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 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7-38	종교용지	라일락	H5.0*W0.		1주		지*암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7-38	종교용지	라일락	H5.0*W		1주		지*암	서울특별시			

연번	변경전														변경후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창신동	627-38	종교용지	오동나무	H10.0*R20	1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 성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7-38	종교용지	오동나무	H10.0*R20	1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 성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7-38	종교용지	감나무	H10.0*R20	1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 성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7-38	종교용지	감나무	H10.0*R20	1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 성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7-38	종교용지	향나무	H4.0*W2.0	2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 성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7-38	종교용지	향나무	H4.0*W2.0	2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 성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지		5				(대표 강*수)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 성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지		0.5				(대표 강*수)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 성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연번	변경전													변경후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창신동	627-38	종교용지	나무장식	-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7-38	종교용지	나무장식	-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7-38	종교용지	화단	30.0m*1.2m	1식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7-38	종교용지	화단	30.0m*1.2m	1식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3577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내무부고시 제449호(1958.11.03.)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건설교통부고시 제198호(1971.04.07.)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건설교통부고시 제147호(1986.04.10.)로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 강동구고시 제2015-65호(2015.06.11.)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4호(2016.01.14.)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사업 실시계획 인가, 강동구고시 제2017-29호(2017.03.09.)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94호(2017.06.01.), 제2019-126호(2019.04.18.), 제2019-440호(2019.12.26.)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강동구고시 제2022-154호(2022.09.22.)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황산~생태공원간 천호대로 확장 및 황산교차로 지하차도 신설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서류의 열람을 실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 단지사업1부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이며, 열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송달 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열람공고로 갈음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사업
- ○ 명칭 : 황산~생태공원간 천호대로 확장 및 황산교차로 지하차도 신설사업

나.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둔촌동, 명일동, 상일동 일원(변경없음)
- ○ 시점 :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25-4(생태공원교차로)
- ○ 종점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394-4(서울시계)

다. 사업의 규모
- ○ 폭원 : 50m~93m, 연장 : 1,940m
- ○ 면적 : (당초) 28,647㎡ → (변경) 29,204㎡ (증 : 557㎡)

※ 변경사유 : 대사골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위한 사업규모 변경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서울지역본부 하남사업본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 2016. 01. 14. ~ 2022. 12. 31.

○ 변경 : 2016. 01. 14. ~ 2025. 06. 30.

※ 변경사유 : 2필지 도로용지 추가편입으로 토지보상 및 대사골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위한 사업기간 연장 필요

바. 열람기간 : 2023. 12. 29(금) ~ 2024. 01. 11(목)

사.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02-2133-8077)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 단지사업1부(☎031-790-7828)

아. 수용 및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붙임(토지조서)

□ 토지세목조서(수용)

○ 광로2-5호선 토지조서

일련번호	위치	당초				변경				증감(㎡)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둔촌동	산88-3	임	485	403	산88-3	임	485	403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2	둔촌동	산88-2	임	1,186	1,186	산88-2	임	1,186	1,186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3	둔촌동	산91	임	36	36	산91	임	36	36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4	둔촌동	산87	임	343	343	산87	임	343	343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5	둔촌동	산86-1	임	1,193	1,183	산86-1	임	1,193	1,183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6	둔촌동	산85-1	공	87	69	산85-1	공	87	69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7	둔촌동	558-10	공	1,172	626	558-10	공	1,172	626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8	둔촌동	산78-1	공	285	285	산78-1	공	285	285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9	둔촌동	산78-2	공	258	258	산78-2	공	258	258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10	둔촌동	산77-1	공	754	754	산77-1	공	754	754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11	둔촌동	557-3	공	37	37	557-3	공	37	37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12	둔촌동	557-4	공	93	93	557-4	공	93	93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13	둔촌동	557-5	전	559	559	557-5	전	559	559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14	둔촌동	557-2	전	9	9	557-2	전	9	9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15	둔촌동	557-1	전	13	13	557-1	전	13	13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16	둔촌동	산76-1	임	100	100	산76-1	임	100	100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17	둔촌동	산76-2	임	559	559	산76-2	임	559	559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18	둔촌동	산79-1	임	51	51	산79-1	임	51	51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19	둔촌동	산74-1	임	186	186	산74-1	임	186	186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20	둔촌동	산74-3	임	547	547	산74-3	임	547	547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일련번호	위치	당초				변경				증감(㎡)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21	둔촌동	산74-2	임	10	10	산74-2	임	10	10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22	둔촌동	산72-1	공	2,127	2,127	산72-1	공	2,127	2,127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23	둔촌동	산71-1	임	251	251	산71-1	임	251	251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24	둔촌동	산70-1	임	309	309	산70-1	임	309	309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25	둔촌동	산69	공	159	159	산69	공	159	159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26	둔촌동	산74-4	임	15	15	산74-4	임	15	15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27	둔촌동	산88-4	임	97	97	산88-4	임	97	97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28	둔촌동	산86-2	임	239	239	산86-2	임	239	239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29	둔촌동	산72-2	공	146	146	산72-2	공	146	146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30	둔촌동	산77-2	공	293	293	산77-2	공	293	293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31	둔촌동	산78-3	공	27	27	산78-3	공	27	27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32	둔촌동	산78-4	공	232	232	산78-4	공	232	232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33	둔촌동	산79-2	임	8	8	산79-2	임	8	8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34	둔촌동					산72	공	81	30	30	공	서울시				금회추가
35	둔촌동					산74	임	2,973	198	198	이성룡	서울시 서대문구 신영동 111-2				금회추가
36	둔촌동					산71	임	33	33	33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금회추가
37	둔촌동					산70	임	1,887	296	296	윤여현 1,529/2,355	서울 서초구 잠원동 65-32 신반포7차 아파트 303-503				금회추가
											서기동 826/2,355	서울시 광진구 영화사로16길 43, 102동 401호(구의동 아차산 한라아파트)				
38	상일동	435-1	천	776	46	435-1	천	776	46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일련번호	위 치	당 초				변 경				증감(㎡)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39	상일동	359-3	도	19,777	58	359-3	도	19,777	58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40	상일동	367-5	천	1,300	191	367-5	천	1,300	191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41	상일동	443-12	주	634	634	443-12	주	634	634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42	상일동	443-13	주	331	331	443-13	주	331	331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43	상일동	443-14	답	226	226	443-14	답	226	226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44	상일동	442-20	답	233	233	442-20	답	233	233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45	상일동	442-18	대	299	299	442-18	대	299	299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46	상일동	442-8	도	28	28	442-8	도	28	28		공	강동구				변경없음
47	상일동	441-4	도	2	2	441-4	도	2	2		공	강동구				변경없음
48	상일동	441-7	도	49	49	441-7	도	49	49		공	강동구				변경없음
49	상일동	435-10	도	71	71	435-10	도	71	71		공	강동구				변경없음
50	상일동	436-17	도	99	99	436-17	도	99	99		공	강동구				변경없음
51	상일동	436-21	대	33	33	436-21	대	33	33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52	상일동	436-23	대	171	171	436-23	대	171	171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53	상일동	436-22	답	384	384	436-22	답	384	384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54	상일동	431-10	답	167	167	431-10	답	167	167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55	상일동	431-4	대	191	191	431-4	대	191	191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56	상일동	430-7	답	389	389	430-7	답	389	389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57	상일동	428-9	대	194	194	428-9	대	194	194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58	상일동	428-2	답	8	8	428-2	답	8	8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59	상일동	428-10	대	990	990	428-10	대	990	990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일련번호	위 치	당 초				변 경				증감(㎡)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60	상일동	432-14	답	65	65	432-14	답	65	65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61	상일동	360-12	도	514	514	360-12	도	514	514		국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62	상일동	427-13	잡	108	108	427-13	잡	108	108		공	강동구				변경없음
63	상일동	427-10	잡	27	27	427-10	잡	27	27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64	상일동	427-6	도	9	9	427-6	도	9	9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65	상일동	425-15	천	852	852	425-15	천	852	852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66	상일동	426-10	천	129	129	426-10	천	129	129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67	상일동	389-3	도	2,777	2,777	389-3	도	2,777	2,777		국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68	상일동	362-8	답	686	686	362-8	답	686	686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69	상일동	12-10	도	136	136	12-10	도	136	136		국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70	상일동	443-11	답	21	21	443-11	답	21	21		공	강동구				변경없음
71	상일동	441-6	도	138	138	441-6	도	138	138		공	강동구				변경없음
72	상일동	442-19	도	2	2	442-19	도	2	2		공	강동구				변경없음
73	상일동	442-21	차	2	2	442-21	차	2	2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74	상일동	442-22	답	11	11	442-22	답	11	11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75	상일동	436-24	대	7	7	436-24	대	7	7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76	상일동	436-16	도	67	67	436-16	도	67	67		공	강동구				변경없음
77	상일동	442-17	대	42	42	442-17	대	42	42		공	LH, 하남시				변경없음
78	상일동	436-15	도	130	130	436-15	도	130	130		공	강동구				변경없음
79	상일동	431-5	도	107	107	431-5	도	107	107		공	강동구				변경없음
80	상일동	431-8	대	121	121	431-8	대	121	121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일련번호	위 치	당 초				변 경				증감(㎡)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81	상일동	431-7	도	7	7	431-7	도	7	7		공	강동구				변경없음
82	상일동	431-6	도	36	36	431-6	도	36	36		공	강동구				변경없음
83	상일동	431-9	대	18	18	431-9	대	18	18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84	상일동	430-6	도	27	27	430-6	도	27	27		공	강동구				변경없음
85	상일동	8-4	도	1,625	1,625	8-4	도	1,625	1,625		국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86	상일동	427-12	잡	77	77	427-12	잡	77	77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87	상일동	432-16	답	5	5	432-16	답	5	5		공	하남시				변경없음
88	상일동	432-15	답	138	138	432-15	답	138	138		공	하남시				변경없음
89	상일동	428-6	대	122	122	428-6	대	122	122		공	하남시				변경없음
90	상일동	360-8	잡	24	24	360-8	잡	24	24		공	하남시				변경없음
91	상일동	360-3	잡	496	496	360-3	잡	496	496		공	하남시				변경없음
92	상일동	427-3	잡	347	347	427-3	잡	347	347		공	하남시				변경없음
93	상일동	428-8	대	288	288	428-8	대	288	288		공	하남시				변경없음
94	상일동	427-4	잡	3	3	427-4	잡	3	3		공	하남시				변경없음
95	상일동	432-17	답	13	13	432-17	답	13	13		공	하남시				변경없음
96	상일동	403-13	도	1,255	1,255	403-13	도	1,255	1,255		국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97	상일동	399-9	구	31	31	399-9	구	31	31		공	강동구				변경없음
98	상일동	12-2	도	17,508	84	12-2	도	17,508	84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99	상일동	산10-5	임	132	132	산10-5	임	132	132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100	상일동	산8-9	임	22	22	산8-9	임	22	22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일련번호	위 치	당 초				변 경				증감(㎡)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01	상일동	산10-7	도	57	57	산10-7	도	57	57		국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102	상일동	436-25	대	22	22	436-25	대	22	22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103	상일동	436-18	대	12	12	436-18	대	12	12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104	상일동	442-11	도	73	73	442-11	도	73	73		공	강동구				변경없음

○ 교통광장 167호선 토지조서

일련번호	위 치	당 초				변 경				증감(㎡)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상일동	399-11	구	134	134	399-11	구	134	134		공	서울특별시				변경없음
2	상일동	423-4	대	142	142	423-4	대	142	142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3	상일동	400-3	답	730	730	400-3	답	730	730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4	상일동	402-4	잡	9	9	402-4	잡	9	9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5	상일동	403-12	전	260	260	403-12	전	260	260		토지주택공사	진주시 충의로 19				변경없음
6	상일동	393-5	도	503	503	393-5	도	503	503		국	국토교통부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3583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 · 양수 및 법인합병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양도 · 양수 및 법인합병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보통신공사업의 양도 · 양수 및 법인합병 등록 내역

연번	구분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등록일자	비고
1	양도자	201809	주식회사 원스테이지 김홍태 110111-15449067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6-4(원효로4가, 금홍2빌딩)	23. 12. 21.	분할
	양수자	-	주식회사 테크데이타피에스 (Techdata Ps Co.,Ltd) 김홍태 110111-8781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6-4(원효로4가, 금홍2빌딩)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7조(공사업의 양도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공사업 양도의 신청 등)

3.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2133-289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3584호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 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승인일자: 2023. 12. 14.
2. 관리계획 주요내용
   - 대규모시설의 설치계획

시 설 명	사업시행자	위 치	면적(㎡, 괄호안은 누계)		비 고
			토지형질변경면적	건축연면적	
경호안전교육원 특수운전훈련장	대통령경호처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576-8 일원	81,123 (81,123)	1,012.41 (1,012.41)	

3.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여가정책과(02 - 2133 - 2015)
   강서구 공원녹지과(02-2600-4177)
4. 열람기간: 시보게재 다음일로부터 14일간
5. 관계도서: 게재생략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3586호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및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납자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분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주차장법 제9조, 제1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별첨

4. 공고기간 : 2023. 12. 28. ~ 2024. 1. 11.(14일간)

5. 이의신청 및 납부안내
   가. 공영주차장 사용자의 사용료 이의신청은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 FAX 02-2290-6444번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이의신청 기간 : 최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다. 공영주차장 사용료 미납 확인 후 인터넷(https://etax.seoul.go.kr) 통하여 납부 가능

6. 유의사항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이내에 미납주차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하여 자동차 등에 압류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서울시설공단 ☎02-2290-6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연번	고지번호	차량번호	차종	납세번호	주차장	주차시간	입차일자	입차시각	출차일자	출차시각	부과금액	주차요금	가산금	납부자	주소	반송사유	납부기한
	43건																
1	20221685	06더6830	718 박스터 GTS	000047339214201 20231125003079	마포유수지	0001:44	2023-10-16	19:18	2023-10-16	21:02	4,600	4,600	0	백O우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호수로662	폐문부재	2024-01-05
2	20221774	07다2931	아반떼 하이브리드(AVANTE HYBRID)	000047339214201 20231125003049	구파발역	0009:44	2023-10-20	08:08	2023-10-20	17:52	2,700	2,700	0	유O숙	경기도의정부시녹양로62번길	폐문부재	2024-01-05
3	20221784	08가2091	말리부 1.5 TURBO	000047339214201 20231125003019	종묘	0001:28	2023-10-04	16:53	2023-10-04	18:21	3,600	3,600	0	백O일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대로45길4	폐문부재	2024-01-05
4	20221703	08모1628	G70	000047339214201 20231125002893	종묘	0001:58	2023-10-21	13:22	2023-10-21	15:20	9,600	9,600	0	이O준	인천광역시서구가정로387	폐문부재	2024-01-05
5	20221759	09가1888	로체	000047339214201 20231125002856	신설동	0001:07	2023-10-16	11:26	2023-10-16	12:33	3,600	3,600	0	홍O	경기도화성시팔탄면온천로237번길16	폐문부재	2024-01-05
6	20221894	106소2596	Mercedes-Benz C300	000047339214201 20231125002770	마포유수지	0001:24	2023-10-16	20:44	2023-10-16	22:08	1,800	1,800	0	장O식	서울특별시마포구신촌로28길50	폐문부재	2024-01-05
7	20221862	11누2790	쏘렌토	000047339214201 20231125002703	동대문	0006:08	2023-10-09	21:04	2023-10-10	03:12	26,600	26,600	0	임O택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예체로67번길87	폐문부재	2024-01-05
8	20221780	127머6570	트레일블레이저 1.35 TURBO FWD	000047339214201 20231125002641	종묘	0001:37	2023-10-03	11:18	2023-10-03	12:55	4,000	4,000	0	최O용	경기도수원시영통구인계로254	폐문부재	2024-01-05
9	20221900	141두3153	레이	000047339214201 20231125002572	마포유수지	0001:07	2023-10-27	19:39	2023-10-27	20:46	1,500	1,500	0	김O정	서울특별시강서구마곡중앙8로90	폐문부재	2024-01-05
10	20221915	145수9005	C220 d 4Matic	000047339214201 20231125002542	개화산역	0003:24	2023-10-18	08:55	2023-10-18	12:19	6,900	6,900	0	황O락	인천광역시연수구컨벤시아대로252번길30	폐문부재	2024-01-05
11	20221643	149로2874	스팅어	000047339214201 20231125002512	종묘	0001:21	2023-10-09	13:06	2023-10-09	14:27	6,800	6,800	0	안O규	경기도구리시산마루로5	폐문부재	2024-01-05

연번	고지번호	차량번호	차종	납세번호	주차장	주차시간	입차일자	입차시각	출차일자	출차시각	부과금액	주차요금	가산금	납부자	주소	반송사유	납부기한
12	20221682	165호4659	K3	000047339214201 20231125002338	복정역	0002:19	2023-10-15	10:19	2023-10-15	12:38	2,300	2,300	0	(주) 쏘O	경기도이천시고담동 69번지4호	이사불명	2024-01-05
13	20221810	16주8243	K9	000047339214201 20231125002282	종묘	0001:55	2023-10-15	13:20	2023-10-15	15:15	9,200	9,200	0	(주)세시부터OO	서울특별시성동구둘레15길	폐문부재	2024-01-05
14	20221680	171도3904	G70	000047339214201 20231125002269	세종로	0003:05	2023-10-15	16:41	2023-10-15	19:46	15,900	15,900	0	김O섭	서울특별시동작구대방동15길	폐문부재	2024-01-05
15	20221859	20오6870	티볼리 에어	000047339214201 20231125001953	동대문	0001:20	2023-10-05	22:11	2023-10-05	23:31	5,700	5,700	0	전O형	광주광역시남구상지석길	폐문부재	2024-01-05
16	20221616	223나9331	레인지로버 스포츠 3.0D	000047339214201 20231125001923	한강진역	0001:26	2023-10-08	13:43	2023-10-08	15:09	7,200	7,200	0	양O석	경기도수원시영통구신원로117-3	폐문부재	2024-01-05
17	20221669	253오9460	MINI Cooper Countryman	000047339214201 20231125001693	구파발역	0000:14	2023-10-13	11:51	2023-10-13	12:05	200	200	0	이O영	서울특별시은평구통일로75길6-11	폐문부재	2024-01-05
18	20221908	26도9332	A3 40 TFSI	000047339214201 20231125001602	한강진역	0000:22	2023-10-20	18:00	2023-10-20	18:22	1,000	1,000	0	송O주	서울특별시송파구올림픽로4길42	폐문부재	2024-01-05
19	20221846	281수2307	BMW 320d xDrive	000047339214201 20231125001564	잠실역	0005:14	2023-10-12	12:00	2023-10-12	17:14	25,200	25,200	0	진O숙	경기도남양주시백봉로32	폐문부재	2024-01-05
20	20221665	30수3047	투싼(TUCSON)	000047339214201 20231125001441	동대문	0000:20	2023-10-11	11:39	2023-10-11	11:59	1,400	1,400	0	김O연	부산광역시사상구주례로28번길	주소불명	2024-01-05
21	20221674	311루7445	Q7 45 TDI quattro	000047339214201 20231125001435	마포유수지	0000:50	2023-10-14	11:48	2023-10-14	12:38	2,200	2,200	0	박O환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대로246	폐문부재	2024-01-05
22	20221694	33모4405	카이런	000047339214201 20231125001336	종묘	0002:35	2023-10-18	13:36	2023-10-18	16:11	12,400	12,400	0	박O민	경기도오산시청학로250	폐문부재	2024-01-05
23	20221861	343라7717	트레일블레이저 1.35 TURBO FWD	000047339214201 20231125001297	동대문	0003:01	2023-10-09	21:36	2023-10-10	00:37	6,600	6,600	0	천O창	인천광역시부평구원적로361	폐문부재	2024-01-05

연번	고지번호	차량번호	차종	납세번호	주차장	주차시간	입차일자	입차시각	출차일자	출차시각	부과금액	주차요금	가산금	납부자	주소	반송사유	납부기한
24	20221619	348부3450	QM6	000047339214201 20231125001273	한강진역	0001:12	2023-10-07	15:09	2023-10-07	16:21	6,000	6,000	0	이O규	서울특별시마포구와우산로10길	주소불명	2024-01-05
25	20221910	34모3238	BMW 520i Luxury	000047339214201 20231125001250	한강진역	0002:59	2023-10-28	18:04	2023-10-28	21:03	7,200	7,200	0	우O재	서울특별시성동구매봉길15	폐문부재	2024-01-05
26	20221835	35라5081	레이	000047339214201 20231125001206	동대문	0000:59	2023-10-19	23:39	2023-10-20	00:38	1,900	1,900	0	원O순	서울특별시용산구녹사평대로245	수취인불명	2024-01-05
27	20221943	38거3079	렉서스 ES300h	000047339214201 20231125001075	수서역	0000:31	2023-10-20	17:28	2023-10-20	17:59	1,100	1,100	0	유한회사OO에너지	충청남도태안군안면읍창기리2014번지	폐문부재	2024-01-05
28	20221778	38보4686	레이	000047339214201 20231125001069	종묘	0000:38	2023-10-15	17:35	2023-10-15	18:13	1,600	1,600	0	이O람	서울특별시종로구난계로257	폐문부재	2024-01-05
29	20221873	38소4789	포르테	000047339214201 20231125001052	천호역	0002:48	2023-10-08	11:28	2023-10-08	14:16	2,600	2,600	0	이O순	서울특별시강북구도봉로59길	폐문부재	2024-01-05
30	20221695	395다3213	팰리세이드(PALISADE)	000047339214201 20231125001039	구파발역	0003:57	2023-10-19	12:23	2023-10-19	16:20	8,100	8,100	0	조O연	경기도파주시미래로345	폐문부재	2024-01-05
31	20221800	42다1524	그랜저(GRANDEUR)	000047339214201 20231125000906	종묘	0003:00	2023-10-22	16:06	2023-10-22	19:06	7,200	7,200	0	박O현	서울특별시마포구월드컵북로43길20	폐문부재	2024-01-05
32	20221727	43가0462	렉서스 ES300h	000047339214201 20231125000898	도봉산역	0003:35	2023-10-24	10:38	2023-10-24	14:13	3,600	3,600	0	박O립	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로	폐문부재	2024-01-05
33	20221953	43서2225	코나 일렉트릭(KONA ELECTRIC)	000047339214201 20231125000881	훈련원공원	0000:21	2023-10-18	21:27	2023-10-18	21:48	1,300	1,300	0	서O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인주대로344번길21-24	폐문부재	2024-01-05
34	20221884	46거7736	GV60	000047339214201 20231125000821	복정역	0003:49	2023-10-22	13:45	2023-10-22	17:34	3,900	3,900	0	이O한	서울특별시성북구고려대로17가길	폐문부재	2024-01-05

연번	고지번호	차량번호	차종	납세번호	주차장	주차시간	입차일자	입차시각	출차일자	출차시각	부과금액	주차요금	가산금	납부자	주소	반송사유	납부기한
35	20221895	47다2161	Q3 30 TDI quattro	000047339214201 20231125000775	마포유수지	0001:02	2023-10-12	08:50	2023-10-12	09:52	2,800	2,800	0	허O진	서울특별시마포구대흥로	수취인불명	2024-01-05
36	20221647	48가1051	레이	000047339214201 20231125000769	용산주차빌딩	0023:59	2023-10-01	00:00	2023-10-01	23:59	43,200	43,200	0	표O훈	경기도시흥시신천3길31	폐문부재	2024-01-05
37	20221690	54무8269	A6 40 TFSI	000047339214201 20231125000591	종묘	0000:13	2023-10-17	12:43	2023-10-17	12:56	1,200	1,200	0	주식회사OO엘앤시	경기도광주시퇴촌면갈올길	폐문부재	2024-01-05
38	20221893	55도7450	그랜저(GRANDEUR)	000047339214201 20231125000584	마포유수지	0003:54	2023-10-07	17:00	2023-10-07	20:54	2,000	2,000	0	김O진	인천광역시동구송림로162번길9	폐문부재	2024-01-05
39	20221965	56두1143	K3	000047339214201 20231125000577	개화역	0008:59	2023-10-13	10:12	2023-10-13	19:11	9,100	9,100	0	김O목	경기도김포시고촌읍수기로136	폐문부재	2024-01-05
40	20221672	59버0879	오피러스	000047339214201 20231125000517	세종로	0003:54	2023-10-14	09:39	2023-10-14	13:33	20,200	20,200	0	신O철	경기도시흥시인선길39	폐문부재	2024-01-05
41	20221753	63로8940	ML350 BlueTEC 4Matic	000047339214201 20231025003262	남산한옥마을	0003:00	2023-10-31	17:00	2023-10-31	20:00	15,400	15,400	0	최O희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대로1길21	이사불명	2024-01-05
42	20221670	76거2912	그랜드 카니발	000047339214201 20231125000203	복정역	0002:08	2023-10-13	16:52	2023-10-13	19:00	4,400	4,400	0	심O수	경기도평택시비전4로175	폐문부재	2024-01-05
43	20221724	95로1702	그랜드 스타렉스(GRAND STAREX)	000047339214201 20231125000165	신대방역	0008:29	2023-10-14	10:10	2023-10-14	18:39	26,500	26,500	0	O O호	경기도가평군북면카이저길	폐문부재	2024-01-05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3587호

『상암 택지개발지구내』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사업용지 공급 공고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DMC : Digital Media City)내 사업용지를 공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급대상 용지 : 2필지(F1, F2) 37,262.3㎡
 ○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645, 1646번지
 ○ 용지현황

필지 번호	면적 (㎡)	단가 (원/㎡)	기준가격(원)	용지기능	용지용도	비 고
F1·F2	37,262.3	22,450,000	836,538,635,000	일반유치	숙박업무	마포구 상암동 1645·1646

2. 공급(입찰) 신청자격
 ○ 사업신청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입찰참가자 자격이 제한된 자를 제외한 국내·외의 개인,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명의, 설립예정 법인 또는 컨소시엄인 경우에는 최대 출자자(출자사)의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 공동으로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참가신청 및 접수일시에 대표입찰자가 소정의 공동입찰 참가신청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용지 용도별 공급(입찰)방법
 ○ 유치시설
  - 숙박시설,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 F1 필지와 F2필지를 합필하여 개발하는 경우 특별계획구역으로 운영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랜드마크 용지공급지침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신청 방법
  - 랜드마크용지(F1·F2) 공급신청은 합필개발을 목적으로 2필지를 모두 신청하여야 함
   ※ 랜드마크용지(F1·F2)중 1필지만 신청하는 것은 불가함
 ○ 용지공급 가격
  - 용지공급가격은 기준가격(토지감정가격) 이상의 제안입찰가격으로 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입찰가격의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 . 공급대상자 결정방법

○ 용지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객관적인 기준과 공정한 절차를 거쳐 DMC실무위원회 평가, DMC기획위원회의 심사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심사과정 및 그 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공급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공급(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5. 공급신청 일정(장소) 등

구 분	일 정	장 소	비 고
공급공고 및 공급지침서 게재	2023.12.28.(목)	서울시보, 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s://news.seoul.go.kr/economy/)	공급지침서 게재
사업설명회	2024. 1. 3.(수) 15:00	첨단산업센터 7층 세미나실 (마포구 상암동 1580)	공급지침서 배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2024.5.28.(화) 09:00~18:00	서울특별시 전략산업기반과 (전략산업정책팀, 서소문2청사 17층)	입찰보증금 납부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2024. 6월중(예정)	서울특별시	별도통보

※ 사정에 따라 일정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6 . 공급신청(입찰)의 무효

○ (제안)입찰가격을 공급대상지의 기준가격 미만으로 제출시

○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 미만일 경우

○ 입찰참가(공급) 신청 및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거나 입찰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

7 . 매매대금 납부조건

○ 대금 납부조건

구 분	계 약 금	잔 금
매매대금 중 납부비율	제안입찰 금액의 10%	제안입찰 금액의 90%
납부기한	계약체결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입찰보증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일괄 대체 처리함

※ 입찰보증금 지급보증서(전자보증서)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낙찰자(우선협상대상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 전체를 납부하여야 함

※ 잔금을 1년이상 연체한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음

※ 잔금은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되, 6개월 단위로 5년까지 균등분할 납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할납부에 따른 연부 이자율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36조에 따름

8 . 토지사용 승낙 및 소유권 이전

○ 토지사용 승낙

- 매수인이 매각대금 완납전이라도 대상용지의 개발을 위해 토지사용 승낙을 요청하는 경우, 서울시는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상용지의 사용을 승낙할 수 있음
- 매매계약자가 매각대금을 연체한 상태에서 대상용지의 사용승낙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연체금액에 대한 지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서울시가 인정하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등)를 서울시에 제출해야 함
- 토지사용 승낙 이후에 토지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관리책임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매수인의 책임으로 함

※ 매수인의 토지사용으로 인해 기반시설에 훼손이 생기거나 매매된 토지내의 문제 발생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 제반 민원 및 민 · 형사상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매수인의 책임임

○ 소유권 이전

- 해당 용지의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였을 시에 소유권을 이전함

9. 유의사항

○ 사업신청자(입찰참가자)는 해당「용지공급지침서」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용지매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된 신청서 등은 정정 및 취소가 불가하며,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공급신청(입찰참가)과 관련한 제반 소요비용(사업계획서 작성 등)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입찰참가 자격이 없거나 서류미비, 담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무효로 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합니다. 이 경우 계약체결 전에는 입찰가격의 10%를 계약체결 이후에는 총 매매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서울시에 귀속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특별한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무효로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란 서울시와 매수자가 간 협의된 경우를 말하며, 매수자가 협상 자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협상을 결렬시킬 의도로 위법하거나 비현실적인 협약안을 제시하는 등 협상 절차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약금(입찰가격의 10%)을 서울시에 귀속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협상이 성립하였으나, 매수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성립을 무효로 하고, 위약금(입찰가격의 10%)을 서울시에 귀속합니다.

○ 사업신청자(입찰참가자)와 계약자는 동일인이어야 하고, 2인 이상 공동명의로 입찰할 경우 공동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며 대금납부 등의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 용지매수인은 DMC지구단위계획, DMS조성기본계획, DMC택지공급지침 및 관련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에 따라 위약금 부과, 계약해제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용지공급 관련하여 관계법령 중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용지별「용지공급지침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DMC사업의 제반 사항 안내는 서울시청 페이지(https://news.seoul.go.kr/economy/)자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0. 문의처 안내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기반과 전략산업정책팀(☎ 02-2133-8465)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3590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로 신규 등록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 환경컨설팅회사 신규 등록 내역

연번	상 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영업소 소재지
1	환경안전솔루션㈜	제6110000-20-2023-00024호	' 23.12.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32, 1109호(영등포동7가, 케이엘케이유윈시티)
2	크노엘코리아 유한회사	제6110000-20-2023-00026호	' 23.12.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7, 2803호(여의도동, 에스트레뉴)
3	㈜미래비엠	제6110000-20-2023-00027호	' 23.12.18.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162(신당동, 약수빌딩 4층)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3592호

2023년도 제12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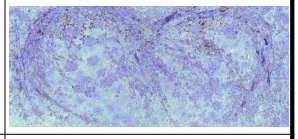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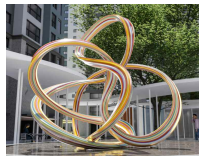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제12차 서울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심의일시: 2023. 12. 21.(목), 14:30
2. 심의장소: HJBC 세미나룸 A
3. 심의대상: 일반안건 16건(20작품)
4. 심의결과: 승인 14작품, 부결 6작품
5. 작품별 심의결과: 별첨
6.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담당관(☎ 02-2133-2716)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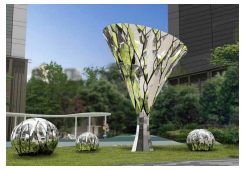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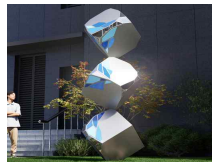
2023년 제12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일반안건 심의결과

□ 부결사유는 회의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건물위치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비고
				승인	부결	
1	중구 수표동 35-10일대	회화	꽃춤	○		
2	성동구 성수동 2가 336-16번지 외 4필지	조각	Walkers		○	
3	용산구 이태원동 22-34번지 일원	조각	BABY 3.0		○	
4	도봉구 창동 1-23, 24번지 외 3필지	조각	Happy Day	○		
5-1	관악구 신림동 505-1번지	조각	Forest-생명의 공간		○	
5-2		회화	치유	○		
6	강북구 미아동 195	조각	씨앗과 숲	○		
7-1	동대문구 이문동 257-42번지 일원	조각	Fountain of Blossom/ Harmony and Petal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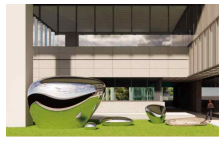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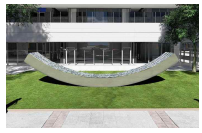
2023년 제12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일반안건 심의결과

□ 부결사유는 회의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건물위치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비고
				승인	부결	
7-2		조각	Rabbit	○		
7-3		조각	Forest of Dreams	○		
8	중구 을지로4가 99번지 외 7필지	조각	가족 나들이		○	
9	서초구 서초동 1362-27번지 외 1필지	조각	인연생기		○	
10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439번지 일대	조각	HOPE231100	○		
11	강동구 둔촌동 30-4번지 외 1필지	조각	Still Life	○		
12	성북구 석관동 338-18	조각	잠시 멈추어 서서	○		

2023년 제12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일반안건 심의결과

□ 부결사유는 회의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건물위치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비고
				승인	부결	
13-1	중구 을지로3가 65-14 일원	조각	Together	○		
13-2		조각	Contemplation 230905	○		
14	중랑구 중화동 331-1일대	조각	Windows-사유의창		○	
15	송파구 양재대로 932	조각	FLOW-샘	○		
16	중랑구 양원역로 39	조각	사랑의샘 그리고 떠오르는 은빛희망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3597호

도시계획시설사업(낙산근린공원 조성) 실시계획인가(변경)을 위한 열람공고문 공시송달 공고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으로 시행하는 낙산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4조 및 「민사소송법」제19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공시송달 대상자

번호	성명	송달주소	비고
1	김*환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4길 **, 1층(충신동)	
2	원*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4길 **, 2층(충신동)	

□ 공시송달 내용: 도시계획시설사업(낙산근린공원)실시계획인가(변경) 열람공고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615-280 등 56필지(변경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사업의 명칭 : 낙산근린공원 조성사업(보상)

다. 사업의 내용 및 규모(변경없음)

1) 사업면적 : 3,782.1㎡

2) 사업내용 : 도시공원 조성 및 보상

라. 사업의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1) 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마.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장(변경없음)

바. 사업기간(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1) 기존 : 실시계획인가고시일로부터 2024.12.31까지
2) 변경 : 실시계획인가고시일로부터 2026.12.31까지

사. 수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변경): 따로붙임

아.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자.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중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02-3783-5920)

※ 향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도면 등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업명 : 낙산근린공원 조성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연번	변경전										변경후										비고
	소재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공유지분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공유지분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권리	
계			3,645.8	3,782.1									3,648.5	3,782.1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15-280	대	163.1	163.1		**기업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76 롯데캐슬천지인 지****4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15-280	대	163.1	163.1		서울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15-281	대	121.9	121.9		**기업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76 롯데캐슬천지인 지****4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15-281	대	121.9	121.9		서울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15-282	대	8.5	8.5		**기업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76 롯데캐슬천지인 지****4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15-282	대	8.5	8.5		서울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15-283	대	240.2	240.2		**기업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76 롯데캐슬천지인 지****4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15-283	대	240.2	240.2		서울시					
5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15-265	대	3.3	3.3		김*심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성곽길 96-**(창신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15-265	대	3.3	3.3		서울시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15-271	대	6.0	6.0		전*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 442, 103동 ****호 (신길동, 래미안 프레비뉴)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15-271	대	6.0	6.0		서울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동 9-412	대	194.9	194.9	1/4	박*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20길 **(정릉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동 9-412	대	194.9	194.9		서울시					
					1/4	김*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은로126번길 46, 311동 ****호(보라동, 민속마을현대모닝 사이드)														
					1/4	박*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새실로 114-**														
					1/4	안*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새실로 114-**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동 9-957	도로	66.2	66.2		종로구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동 9-957	도로	66.2	66.2		종로구 청					
9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동 9-968	도로	10.5	10.5		종로구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동 9-968	도로	10.5	10.5		종로구 청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동 9-779	도로	188.5	188.5		종로구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동 9-779	도로	188.5	188.5		종로구 청			
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동 9-955	도로	7.1	7.1		종로구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동 9-955	도로	7.1	7.1		종로구 청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7-211	도로	6.2	6.2	1/8	박*윤	평안남도 평양시 하수구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7-211	도로	6.2	6.2		서울시			
					5/8	박*봉	평안남도 평양시 장별동 **												
					2/8	윤*엽	평안남도 평양시 위청리 ***												
13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7-228	도로	6.4	6.4	1/8	박*윤	평안남도 평양시 하수구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7-228	도로	6.4	6.4		서울시			
					5/8	박*봉	평안남도 평양시 장별동 **												
					2/8	윤*엽	평안남도 평양시 위청리 ***												
14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7-55	도로	109.7	109.7	1/8	박*윤	평안남도 평양시 하수구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7-55	도로	109.7	109.7		서울시			
					5/8	박*봉	평안남도 평양시 장별동 **												
					2/8	윤*봉	평안남도 평양시 위청리 ***												
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7-67	도로	3.3	3.3	1/8	박*윤	평안남도 평양시 하수구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7-67	도로	3.3	3.3		서울시			
					5/8	박*봉	평안남도 평양시 장별리 **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2/8	윤*엽	평안남도 평양시 위청리 ***													
16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7-339	도로	272.3	272.3	1/8	박*분	평안남도 평양시 하수구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7-339	도로	272.3	272.3		서울시				
					5/8	박*봉	평안남도 평양시 장별리 **												
					2/8	윤*엽	평안남도 평양시 위덕리 ***												
17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7-240	도로	11.1	11.1	1/8	박*분	평안남도 평양시 하수구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7-240	도로	11.1	11.1		서울시				
					5/8	박*봉	평안남도 평양시 장별리 **												
					2/8	윤*엽	평안남도 평양시 위덕리 ***												
18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7-103	도로	0.7	0.7	1/8	박*분	평안남도 평양시 하수구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7-103	도로	0.7	0.7		서울시				
					5/8	박*봉	평안남도 평양시 장별리 **												
					2/8	윤*엽	평안남도 평양시 위덕리 ***												
19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7-107	대	9.9	9.9		최*만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산6-*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7-107	대	9.9	9.9		서울시				
2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7-128	도로	9.9	9.9	1/8	박*분	평안남도 평양시 하수구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7-128	도로	9.9	9.9		서울시				
					5/8	박*봉	평안남도 평양시 장별리 **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21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7-131	도로	1.7	1.7	2/8	윤*엽	평안남도 평양시 워덕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7-131	도로	1.7	1.7		서울시					
					1/8	박*윤	평안남도 평양시 하수구리 ***														
					5/8	박*봉	평안남도 평양시 장별리 **														
					2/8	윤*엽	평안남도 평양시 워덕리 ***														
22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7-241	도로	2.7	2.7	1/8	박*윤	평안남도 평양시 하수구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7-241	도로	2.7	2.7		서울시					
					5/8	박*봉	평안남도 평양시 장별리 **														
					2/8	윤*엽	평안남도 평양시 워덕리 ***														
23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7-328	도로	76.3	76.3	1/8	박*윤	평안남도 평양시 하수구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7-328	도로	76.3	76.3		서울시					
					5/8	박*봉	평안남도 평양시 장별리 **														
					2/8	윤*엽	평안남도 평양시 워덕리 ***														
24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7-149	도로	13.2	13.2	1/8	박*윤	평안남도 평양시 하수구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7-149	도로	13.2	13.2		서울시					
					5/8	박*봉	평안남도 평양시 장별리 **														
					2/8	윤*엽	평안남도 평양시 워덕리 ***														
25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	3.1	3.1	21870 0/837	강*오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13길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	3.1	3.1	6070/ 93060	김*봉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동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충신동 1-584				5400		23-6, ***호(사당동)				충신동 1-584				0		1-***				
					10800/8375400	강*진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동 1-***(5/2)	강*호	서울시 광진구 용마산로22길 11-8, ***호 (중곡동)	상속					92453 0/930 600	서울시					
					24300/8375400	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1가 1-164(1/1) 배수지4차빌라 ***호	정*훈	경기도 구리시 갈매중앙로 25, 603동 ****호 (갈매동, 갈매6단지)	상속											
								강*희	서울시 구로구 개봉로3길 87, 109동 ****호 (개봉동, 개봉한진아파트)	상속											
								강*화	서울시 중구 난계로11길 16, *** 호(황학동, 어메인)	상속											
								강*화	울산광역시 중구 번영로 463, 103동 ***호 (복산동, 서한이다음1단지)	상속											
					29752 2/8372/5400	권*주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219번길 26, 2동 ***호(갈산동, 정광빌라)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유 자		관 계 인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유 자		관 계 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동 1-584	도로	3.1	3.1	14876 1/837 5400	권*혁	경기도 부천시 장말로 136, 1902동 ****호(상동, 꿈동산)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동 1-584	도로	3.1	3.1	92453 0/930 600	서울시				
					22500 /8375 400	김*덕	전라남도 해남군 북일면 만월길 **	예금보험공사	서울시 중구 다동 **	가압류										
					22500 /8375 400	김*례	충청남도 천안시 신부동 56-20(14/5) 극동아파트 2동 ****호	김*덕	전라남도 해남군 북일면 만월길 **	상속										
								김*례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화천길 86-**	상속										
								김*득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2270번 길 16, 109동 ***호(소망마을)	상속										
								김*득	서울시 양천구 국회대로 271, ***호(목동, 동도빌라트)	상속										
								김*오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화천길 86-**	상속										
								김*득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상속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230, A동 ****호(관양동, 평촌아크로타워)											
								김*실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물무로 227, 105동 ***호(도동휴먼시아)	상속										
					31770 0/837 5400	김*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891, 301동 ****호 (도봉동, 도봉파크빌아파트)													
					39240 /8375 400	김*심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201-12(4/7) ***호	공*원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 ***(남부민동)	상속										
					22500 0/837 5400	김*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97, 106동 ****호(서초동, 롯데캐슬클래식아파트)													
					22500 0/837 5400	변*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97, 106동 *호(서초동, 롯데캐슬클래식아파트)													
					22500 /8375 400	김*숙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신하길로135번길 5-14, ***호													

연번	변경전													변경후									비고
	소재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공유지분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공유지분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공유지분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27450/8375400	김*수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516-* (9/4)	윤*숙	서울시 관악구 양녕로6다길 36, ***호(봉천동)	상속																				
								김*희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동리로 133-*	상속																		
								김*아	서울시 관악구 은천로32길 5, 107동 ***호(봉천동, 관악동부센트레빌)	상속																	
					62100/8375400	김*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동 1-***																						
					21870/8375400	김*열	경기도 파주시 시민화관길 13-11, 가동 ***호(금촌동,장안귀빈아파트)																						
					54630/8375400	김*봉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동 1-***																						
					31500/8375400	김*덕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동 1-***	**산업주식회사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신도림동, 디큐브시티)	근저당권																				
					28800/8375400	김*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동 1-***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동 1-584	도로	3.1	3.1	6750/83754 00	김*하	경기도 부천시 역곡로98번길 36-**(역곡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동 1-584	도로	3.1	3.1	92453 0/930 600	서울시					
					69750 /8375 400	김*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2길 **(충신동)														
					13500 /8375 400	라*필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길 72-*(충신동)														
					10890 0/837 5400	박*준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동 76-**														
					31500 /8375 400	박*순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동 1-***														
					32805 0/837 5400	박*규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빌리지3길 52, ***호(한남동, 상월대2동)	현*환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85길 89-5, ***호(길동, 한강스타빌)	근저당권										
					27000 /8375 400	박*철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521번길 **														
					32805 0/837 5400	배*애	#1208 880 GRANDVIEW WAY NORTH YORK ON M2N *** CANADA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연번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43740/83750400	배*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33, 1401동 ***호(주엽동, 강선마을)													
					27450/83750400	서*종	광주광역시 광산구 본량동서로 ** (송치동)													
					27450/83750400	석*수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서로109, 701동 ***호(반석동, 반석마을7단지아파트)	서*애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로 123, 604동 ***호(지족동, 노은해랑숲마을 6단지아파트)										상속	
								서*숙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0길 74, 101동 ****호(문배동, 이안용산차아파트)										상속	
								서*숙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168, 501동 ****호(관양동, 공작아파트)										상속	
								서*종	광주광역시 광산구 본량동서로 ** (송치동)										상속	
					13050/8375	송*춘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63길 53,	송*옥	서울시 성동구 독서당로63길										상속	

변경 후												비고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변경 전												연번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400		***호(응봉동, 금호파크빌)		53, ***호(응봉동, 금호파크빌)				
							송*숙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52길 19, ***호(면목동, 미소 빌리지)	상속			
							송*숙	경기도 양주시 삼숭로38번길 91, 404동 ****호(삼숭동, 양주자이아파트)	상속			
							송*섭	서울시 성동구 독서당로63길 53, ***호(응봉동, 금호파크빌)	상속			
				11970 0/837 5400	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36길 6, ***호(상도동, 시온빌라)						
				21870 0/837 5400	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88, 301동 ***호(잠원동, 신반포7차아파트)						
				40500 /8375 400	유*식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2길 16-* (창신동)	최*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2길 16-* (창신동)	상속			
							유*홍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2길 16-* (창신동)	상속			

변경 후												비고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변경 전												연번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유*흥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126번길 17-26, 106동 ****호(한도아파트)	상속			
							유*미	전라남도 나주시 우정로 101, 207동 ****호(빛가람동, 빛가람중흥S-CLASS센트럴 2차)	상속			
				58050/8375400	유*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						
				27794/97/83/75400	윤*욱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75 (6/4) 호수마을 404동***호	윤*선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가마골로 9, 101동 ****호(푸른마을아파트)	상속			
							윤*선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30-*(48/1)	상속			
							윤*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노루목로 79, 404동 ***호(장항동, 호수마을)	상속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연번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27450/83754000	윤*숙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녕로6다길 36, ***호(봉천동)														
					6750/83754000	이*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46길 28, 104동 ***호 (논현동, 논현아파트)														
					72900/83754000	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신동 1-***														
					21870/83754000	이*상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29길 20-17, 가동 ***호 (목동, 힐그위너빌)	박*숙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29길 20-17, 가동 ***호 (목동, 힐그위너빌)	상속										
								이*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29길 20-17, 가동 ***호 (목동, 힐그위너빌)	상속										
								이*영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73길 24, 102동 ***호(염창동, 염창힐스테이트)	상속										
					81945/83754000	이*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4길 21-*(충신동)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83632/8375400	이*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257번길 ** (서현동)													
					21870/8375400	이*임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12길 ** (신림동)	안*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3로 45, 213동 ****호(가좌동, 가좌마을)										근저당권	
					13500/8375400	이*흠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57길 15, ***호 (연건동)	윤*순	서울시 강서구 까치산로 180-10, ***호(화곡동)										상속	
								이*화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39길 74, 502동 ****호(등촌동, 등촌5단지 주공아파트)										상속	
								이*석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성미1로 7, 209동 ****호(힐스테이트 리버시티 2단지)										상속	
								이*옥	경기도 부천시 삼작로118번길 19, ***호(내동, 행복마을)										상속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83632/8375400	이*옹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로 13, 103동 ***호(은행동, 두산위브)													
					44100/8375400	이*희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4나길 14-**(충신동)													
					21600/8375400	이*선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3길 57, 116동 ****호(신정동, 양천아파트)													
					22500/8375400	이*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숭문1671길 17-*(염리동)													
					45000/8375400	이*상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307길 30-6, *층(안암동 1가)													
					83632/8375400	이*연	강원도 강릉시 선수촌로 113, 801동 ****호(유천동, LH선수촌 8단지 아파트)													
					62100/8375400	이*웅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동 1-***	전*희	서울시 종로구 낙산성곽서길 89-*(충신동)	상속										
								이*국	울산광역시 중구 옥교로 83, 2동	상속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동 1-584	도로	3.1	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동 1-584	도로	3.1	3.1	92453 0/930 600	서울시					
									***호(학성동, 삼화골드아파트)													
								이*숙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로206, 706동 ***호(중산동, 중산마을)		상속											
								이*성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14길 17, ***호(혜화동)		상속											
					16200 /8375 400	이*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동 1-**															
					58050 /8375 400	임*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															
					21870 0/837 5400	장*술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매송북길247번길 41-*	박*순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매송북길247번길 41-*		상속											
								장*환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매송로37번길 17-13, C동 ***호(효도빌라)		상속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12544 8/8375400	정*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257번길 **(서현동)													
					14876 1/8375400	정*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중로 16번길 17, *층(주안동)													
					11250 /8375 400	조*수	경기도 구리시 갈매중앙로 131, 311동 ****호(갈매동, 한라비발디)													
					11250 /8375 400	조*숙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읍 경춘북로558번길 12, 121동 ***호(퇴계원힐스 테이트)													
					21600 /8375 400	주*희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동 1-***													
					13500 /8375 400	최*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중앙로17길 7, ***호 (홍은동, 동부캐슬)													
					31500 /8375 400	최*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길 72-** (충신동)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26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40-408	대	30.0	30.0		학교법인* *대학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40-408	대	30.0	30.0		서울시					
27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60-159	대	6.2	6.2		학교법인* *대학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60-159	대	6.2	6.2		서울시					
28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60-171	대	0.7	0.7		학교법인* *대학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60-171	대	0.7	0.7		서울시					
29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40-418	도로	9.1	9.1		학교법인* *대학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40-418	도로	9.1	9.1		서울시					
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40-417	도로	78.9	78.9		학교법인* *대학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40-417	도로	78.9	78.9		서울시					
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40-419	도로	1.4	1.4		학교법인* *대학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40-419	도로	1.4	1.4		서울시					
32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40-381	도로	109.5	109.5		학교법인* *대학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40-381	도로	109.5	109.5		서울시					
33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도로	12.5	12.5		학교법인* *대학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도로	12.5	12.5		서울시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연번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640-420										640-420										
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40-376	도로	205.2	205.2		학교법인* *대학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40-376	도로	205.2	205.2		서울시					
35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68-64	도로	133.6	133.6	1/2	오*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68-64	도로	133.6	133.6		서울시					
					1/2	이*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시로 147, 6동 ***호(청량리동, 미주아파트)														
36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68-29	대	3.3	3.3		이*삼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68-29	대	3.3	3.3		서울시					
37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68-28	도로	32.3	32.3		이*삼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68-28	도로	32.3	32.3		서울시					
38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68-47	도로	3.1	3.1		이*삼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68-47	도로	3.1	3.1		서울시					
39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68-48	도로	1.0	1.0		이*삼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68-48	도로	1.0	1.0		서울시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70-4	대	64.0	64.0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성곽길 * (창신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70-4	대	64.0	64.0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성곽길 * (창신동)			
41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101	대	27.8	27.8		최*희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의동**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101	대	27.8	27.8		서울시			알류	
42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102	대	14.7	14.7		최*희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의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102	대	14.7	14.7		서울시				
43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53	대	4.0	4.0		최*희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의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53	대	4.0	4.0		서울시				
44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54	대	0.6	0.6		최*희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의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54	대	0.6	0.6		서울시				
45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7-38	중교 용지	419.3	419.3		지*암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성곽동길 57-*(창신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7-38	중교 용지	419.3	419.3		지*암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성곽동길 57-*(창신동)			
46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7-39	대	56.2	56.2	1/8	박*윤	평안남도 평양시 하수구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7-39	대	56.2	56.2		서울시				
					5/8	박*봉	평안남도 평양시 장별리 **												
					2/8	윤*영	평안남도 평양시 위덕리 ***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47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7-40	종교 용지	86.0	86.0	1/2	황*식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문화로84번길 84, 112동 ****호(송도동, 베르디움 더퍼스트)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7-40	종교 용지	86.0	86.0		서울시					
					1/2	신*혜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문화로84번길 84, 112동 ****호(송도동, 베르디움 더퍼스트)														
48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23-312	대	3.0	3.0		**기업주 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76 롯데캐슬천지인 지****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23-312	대	3.0	3.0		서울시					
49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100	대	21.2	21.2	7.21/1 39.9	김*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백양로 84, 1203동 ****호(화정동, 옥빛마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100	대	21.2	21.2	7.21/ 134.3 4	김*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백양로 84, 1203동 ****호(화정동, 옥빛마을)			
					20.54/ 139.9	권*석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분평로 18, 703동 ****호(분평동, 분평주공아파트)								20.54 /134. 34	권*석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분평로 18, 703동 ****호(분평동, 분평주공아파트)			
					7.21/1 39.9	김*민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성곽동길 59-8, 1층 ***호(창신동)								7.21/ 134.3 4	김*민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성곽동길 59-8, 1층 ***호(창신동)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99	종교 용지	686.4	686.4	20.54/139.9	전*비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성곽동길 59-8, ***호(창신동)	주식회사 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회현동1가)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99	종교 용지	686.4	686.4		지*암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성곽동길 57-*(창신동)				
5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교 용지	99.6	99.6	7.21/139.9	홍*성	경기도 광명시 양지로 16, 103동 ****호(일직동, 광명역써밋플레이스)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교 용지	99.6	99.6	7.21/134.34	홍연	경기도 광명시 양지로 16, 103동 ****호(일직동, 광명역써밋플레이스)				
					43.88/139.9	고*열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성곽동길 59-8, 4층 ***호(창신동)	종로중앙**** 금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길 **(창신동)						43.88/134.34	고열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성곽동길 59-8, 4층 ***호(창신동)				
					7.21/139.9	유*보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성곽동길 59-8, ***호(창신동)								7.21/134.34	유보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성곽동길 59-8, ***호(창신동)				
					20.54/139.9	김*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4길 30-*(동숭동)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 은행	서울시 종로구 종로**(공평동)						20.54/134.34	김*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4길 30-*(동숭동)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 은행	서울시 종로구 종로**(공평동)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창신동 627-336						57-*(창신동)				창신동 627-336					낙산성곽동길 57-*(창신동)					
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7-203	종교 용지	0.5	0.5		자*암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성곽동길 57-*(창신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7-203	종교 용지	0.5	0.5		자*암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성곽동길 57-*(창신동)				
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7가 1-86	대	0.9	0.9		종*환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27-**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7가 1-86	대	0.9	0.9		서울시					
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97-6	대	0.1	0.1		권*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97-*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97-6	대	0.1	0.1		서울시					
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총신동 1-571	대	0.7	0.7		김*환	서울특별시 종로구 총신4길 **, 1층(총신동)	김*익	서울특별시 종로구 총신4길 **, 1층	세입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총신동 1-571	대	0.7	0.7		김*환	서울특별시 종로구 총신4길 **, 1층(총신동)	김*익	서울특별시 종로구 총신4길 **, 1층	세입자	
								원*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총신4길 **, 1층	세입자								원*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총신4길 **, 1층	세입자	
5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1가 0-9			133.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1가 산1-11			133.6		문화재청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 사업명 : 낙산근린공원 조성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편입 면적(㎡)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편입 면적(㎡)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1	이화동	9-412	대	출입문	샷시형 (H1.5*W0.9*T0.04)	1EA		1/4	박*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20길 **(정릉동)				이화동	9-412	대	출입문	샷시형 (H1.5*W0.9*T0.04)	1EA			서울시			
	이화동	9-412	대	출입문	샷시형 (H1.5*W0.9*T0.04)	1EA		1/4	김*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사은로126번길 46, 311동 ****호(보라동, 민속마을현대모닝사이드)				이화동	9-412	대	출입문	샷시형 (H1.5*W0.9*T0.04)							
	이화동	9-412	대	출입문	샷시형 (H1.5*W0.9*T0.04)	1EA		1/4	박*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새실로 114-**				이화동	9-412	대	출입문	샷시형 (H1.5*W0.9*T0.04)							
	이화동	9-412	대	출입문	샷시형 (H1.5*W0.9*T0.04)	1EA		1/4	안*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새실로 114-**				이화동	9-412	대	출입문	샷시형 (H1.5*W0.9*T0.04)							
	이화동	9-412	대	담장	시멘블록조 (W7.8m*H1.8m*T0.1)	1식		1/4	박*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20길 **(정릉동)				이화동	9-412	대	담장	시멘블록조 (W7.8m*H1.8m*T0.1)	1식			서울시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관계인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관계인	관계주소
	이화동	9-412	대	담장	시멘블록조 (W7.8m*H1.8m*T0.1)	1식		1/4	김*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사은로126번길 46, 311동 ****호(보라동, 민속마을현대모닝사이드)		이화동	9-412	대	담장	시멘블록조 (W7.8m*H1.8m*T0.1)	1식		1/4	김*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사은로126번길 46, 311동 ****호(보라동, 민속마을현대모닝사이드)		
	이화동	9-412	대	담장	시멘블록조 (W7.8m*H1.8m*T0.1)	1식		1/4	박*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세실로 114-**		이화동	9-412	대	담장	시멘블록조 (W7.8m*H1.8m*T0.1)	1식		1/4	박*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세실로 114-**		
	이화동	9-412	대	담장	시멘블록조 (W7.8m*H1.8m*T0.1)	1식		1/4	안*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세실로 114-**		이화동	9-412	대	담장	시멘블록조 (W7.8m*H1.8m*T0.1)	1식		1/4	안*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세실로 114-**		
	이화동	9-412	대	건물	시멘블록조	56.1	56.1	1/4	박*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20길 **(정릉동)		이화동	9-412	대	건물	시멘블록조	56.1	56.1	1/4	박*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20길 **(정릉동)		
	이화동	9-412	대	건물	시멘블록조	56.1	56.1	1/4	김*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사은로126번길 46, 311동 ****호(보라동, 민속마을현대모닝사이드)		이화동	9-412	대	건물	시멘블록조	56.1	56.1	1/4	김*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사은로126번길 46, 311동 ****호(보라동, 민속마을현대모닝사이드)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관계인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관계인	관계주소
	이화동	9-412	대	건물	시멘블록조	56.1	56.1	1/4	박*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새실로 114-**		이화동	9-412	대	건물	시멘블록조	59.4	59.4		서울시			
	이화동	9-412	대	건물	시멘블록조	56.1	56.1	1/4	안*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새실로 114-**		이화동	9-412	대	건물	시멘블록조	59.4	59.4		서울시			
	이화동	9-412	대	건물	시멘블록조	59.4	59.4	1/4	박*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20길 **(정릉동)		이화동	9-412	대	건물	시멘블록조	59.4	59.4		서울시			
	이화동	9-412	대	건물	시멘블록조	59.4	59.4	1/4	김*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사은로126번길 46, 311동 ****호(보라동, 민속마을현대모닝사이드)		이화동	9-412	대	건물	시멘블록조	59.4	59.4		서울시			
	이화동	9-412	대	건물	시멘블록조	59.4	59.4	1/4	박*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새실로 114-**		이화동	9-412	대	건물	시멘블록조	59.4	59.4		서울시			
	이화동	9-412	대	건물	시멘블록조	59.4	59.4	1/4	안*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새실로 114-**		이화동	9-412	대	건물	시멘블록조	59.4	59.4		서울시			
	이화동	9-412	대	건물(지하)	시멘블록조	6.3	6.3	1/4	박*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20길 **(정릉동)		이화동	9-412	대	건물(지하)	시멘블록조	6.3	6.3		서울시			

연번	변경전												변경후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관계인	관계주소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관계인	관계주소
	이화동	9-412	대	건물(지하)	시멘블록조	6.3	6.3	1/4	김*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사은로126번길 46, 311동 ****호(보라동, 민속마을현대모닝 사이드)			이화동	9-412	대	건물(지하)	시멘블록조	6.3	6.3		서울시			
	이화동	9-412	대	건물(지하)	시멘블록조	6.3	6.3	1/4	박*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세실로 114-**			이화동	9-412	대	건물(지하)	시멘블록조							
	이화동	9-412	대	건물(지하)	시멘블록조	6.3	6.3	1/4	안*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세실로 114-**			이화동	9-412	대	건물(지하)	시멘블록조							
	이화동	9-412	대	창고		6.3	6.3	1/4	박*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20길 **(정릉동)			이화동	9-412	대	창고		6.3	6.3					
	이화동	9-412	대	창고		6.3	6.3	1/4	김*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사은로126번길 46, 311동 ****호(보라동, 민속마을현대모닝 사이드)			이화동	9-412	대	창고		6.3	6.3					
	이화동	9-412	대	창고		6.3	6.3	1/4	박*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세실로 114-**			이화동	9-412	대	창고		6.3	6.3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이화동	9-412	대	창고		6.3	6.3	1/4	안*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세실로 114-**				이화동	9-412	대	창고								
	이화동	9-412	대	장독		8.6	8.6	1/4	박*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20길 **(정릉동)				이화동	9-412	대	장독		8.6	8.6		서울시				
	이화동	9-412	대	장독		8.6	8.6	1/4	김*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사은로126번길 46, 311동 ****호(보라동, 민속마을현대모닝 사이드)				이화동	9-412	대	장독		8.6	8.6						
	이화동	9-412	대	장독		8.6	8.6	1/4	박*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세실로 114-**				이화동	9-412	대	장독								
	이화동	9-412	대	장독		8.6	8.6	1/4	안*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세실로 114-**				이화동	9-412	대	장독								
	이화동	9-412	대	수목	라일락 (R24*H1.5)	1주		1/4	박*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20길 **(정릉동)				이화동	9-412	대	수목	라일락 (R24*H 1.5)	1주			서울시			
	이화동	9-412	대	수목	라일락 (R24*H1.5)	1주		1/4	김*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사은로126번길 46, 311동 ****호(보라동, 민속마을현대모닝 사이드)				이화동	9-412	대	수목	라일락 (R24*H 1.5)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이화동	9-412	대	수목	라일락 (R24*H1.5)	1주		1/4	박*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세실로 114-**				이화동	9-412	대	수목	라일락 (R24*H1.5)	1주		1/4	안*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세실로 114-**			
2	창신동	626-1 00	대	건물(비01호)	철근콘크리트조	18.51	10.7		김*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백양로 84, 1203동 ****호(화정동, 옥빛마을)				창신동	626-10 0	대	건물(비0 1호)	철근콘크리트조	18.51	10.7		김*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백양로 84, 1203동 ****호(화정동, 옥빛마을)			
	창신동	626-1 00	대	건물(1 01호)	철근콘크리트조	18.51	11.0		김*민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성곽동길 59-8, 1층 ***호(창신동)				창신동	626-10 0	대	건물(101 호)	철근콘크리트조	18.51	11.0		김*민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성곽동길 59-8, 1층 ***호(창신동)			
	창신동	626-1 00	대	건물(2 01호)	벽돌조	18.51	11.0		홍*연	경기도 광명시 양지로 16, 103동 ****호(일직동, 광명역써밋플레이스)	세입자	이*자	서울시 종로구 낙산성곽동길 59-8, ***호	창신동	626-10 0	대	건물(201 호)	벽돌조	18.51	11.0		홍*연	경기도 광명시 양지로 16, 103동 ****호(일직동, 광명역써밋플레이스)	세입자	이*자	서울시 종로구 낙산성곽동길 59-8, ***호
	창신동	626-1 00	대	건물(3 01호)	벽돌조	18.51	11.0		유*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성곽동길 59-8,				창신동	626-10 0	대	건물(301 호)	벽돌조	18.51	11.0		유*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성곽동길 59-8,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창신동	626-100	대	건물(401호)	벽돌조	59.88	11.9		고*열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성곽동길 59-8, 4층 ***호(창신동)				창신동	626-100	대	건물(1층)	철근콘크리트조		1.0		김*환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4길 **, 1층(충신동)	세입자	김*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4길 **, 1층
	창신동	626-100	대	옥탑	샷시	2.6	2.6		고*열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성곽동길 59-8, 4층 ***호(창신동)				창신동	626-100	대	옥탑	샷시	2.6	2.6		고*열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성곽동길 59-8, 4층 ***호(창신동)			
3	충신동	1-571		건물(1층)	철근콘크리트조		1.0		김*환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4길 **, 1층(충신동)	세입자	김*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4길 **, 1층	충신동	1-571		건물(1층)	철근콘크리트조		1.0		김*환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4길 **, 1층(충신동)	세입자	김*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4길 **, 1층
				건물(2층)	철근콘크리트조		1.0				세입자	원*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4길 **, 2층				건물(2층)	철근콘크리트조		1.0				세입자	원*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4길 **, 2층
4	창신동	670-4	대	옹벽,담장	콘크리트		26.7		대한예수교장로회*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성곽1길 *(창신동)				창신동	670-4	대	옹벽,담장	콘크리트		26.7		대한예수교장로회*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성곽1길 *(창신동)			
	창신동	670-4	대	건물(지하1층)	철근콘크리트조		22.2		대한예수교장로회*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성곽1길 *(창신동)				창신동	670-4	대	건물(지하1층)	철근콘크리트조		8.7		대한예수교장로회*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성곽1길 *(창신동)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창신동	670-4	대	건물(1층)	철근콘크리트조		22.2		대한예수교장로회*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성곽1길 *(창신동)				창신동	670-4	대	건물(1층)	철근콘크리트조		22.2		대한예수교장로회*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성곽1길 *(창신동)			
	창신동	670-4	대	건물(2층)	철근콘크리트조		22.2		대한예수교장로회*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성곽1길 *(창신동)				창신동	670-4	대	건물(2층)	철근콘크리트조		22.2		대한예수교장로회*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성곽1길 *(창신동)			
	창신동	670-4	대	건물(3층)	철근콘크리트조		14.6		대한예수교장로회*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성곽1길 *(창신동)				창신동	670-4	대	건물(3층)	철근콘크리트조		14.6		대한예수교장로회*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성곽1길 *(창신동)			
5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사찰	목재, 기와	122.0	118.4		자*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사찰	목재, 기와	122.0	118.4		자*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사찰	목재, 기와	47.6	30.8		자*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사찰	목재, 기와	47.6	30.8		자*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창신동	626-99 (626-3)	종교용지	건물(1층)	벽돌조	174.9	145.1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626-3)	종교용지	건물(1층)	벽돌조	172.8	145.1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626-3)	종교용지	건물(2층)	벽돌조	113.1	110.7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626-3)	종교용지	건물(2층)	벽돌조	113.1	110.7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건물(2층)	판넬	1.8	1.8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건물(2층)	판넬	1.8	1.8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건물(2층)	판넬	17.8	17.8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건물(2층)	판넬	17.8	17.8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호(창신동 영은주택)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석등	석재(화강암), 3.0m(h)*3.6m(둘레)	2개			자*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석등	석재(화강암), 3.0m(h)*3.6m(둘레)	2개			자*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궤불대	스테인레스, 화강암, 8.0m(h)*0.4m(둘레)	2개			자*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궤불대	스테인레스, 화강암, 8.0m(h)*0.4m(둘레)	2개			자*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외부수전	-	1개			자*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외부수전	-	1개			자*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호(창신동, 영은주택)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소대(화로)	철제, 2.0m(h)*1.5m*1.5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소대(화로)	철제, 2.0m(h)*1.5m*1.5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불상(석불)	석재(불석), 0.8(h)*0.5m*0.5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불상(석불)	석재(불석), 0.8(h)*0.5m*0.5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제단	대리석, 1.3m*1.0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제단	대리석, 1.3m*1.0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돌확	석재(화강암), 0.4m(h)*2.5m(둘레)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돌확	석재(화강암), 0.4m(h)*2.5m(둘레)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바닥포장(석물)	석재(화강암), 1.5m(둘레)	33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바닥포장(잔디)	-	㎡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바닥포장(잔디)	-	㎡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철계단 (화관바닥)	철재, 1m(h)*0.6m*0.5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철계단 (화관바닥)	철재, 1m(h)*0.6m*0.5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관계인	관계주소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관계인	관계주소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철계단(화관육상)	철재, 4m(h)*0.8*0.5	1개			지*암(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철계단(화관육상)	철재, 4m(h)*0.8*0.5	1개			지*암(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돌계단(대웅전)	석재, 화강암, 3m(h)*8m*1.3m*1/2	1식			지*암(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돌계단(대웅전)	석재, 화강암, 3m(h)*8m*1.3m*1/2	1식			지*암(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외등	-	1개			지*암(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외등	-	1개			지*암(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풍경(동종)	-	7개			지*암(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풍경(동종)	-	7개			지*암(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은주택)													곽동길59,**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현판(대웅전)	목재, 1.4m*0.5m	1개			지*암(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현판(대웅전)	목재, 1.4m*0.5m	1개			지*암(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주련(대웅전)	목재, 1.8m*0.3m	6개			지*암(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주련(대웅전)	목재, 1.8m*0.3m	6개			지*암(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불단(대웅전)	목재, 1.0m(h)*6.5m*2.0m	1개			지*암(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불단(대웅전)	목재, 1.0m(h)*6.5m*2.0m	1개			지*암(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불단(대웅전)	목재,	1개			지*암	서울특별시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불단(대웅전)	목재,	1개			지*암	서울특별시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관계인	관계주소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관계인	관계주소
	창신동	9	용지	대(공전)	1.0m(h)*2.0m*1.0m				(대표 강*수)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성곽동길59, ***호 (창신동, 영은주택)			동		용지	전)	1.0m(h)*2.0m*1.0m				(대표 강*수)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성곽동길59, ***호 (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불단(대웅전)	목재, 1.0m(h)*5.3m*1.0m	2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성곽동길59, ***호 (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불단(대웅전)	목재, 1.0m(h)*5.3m*1.0m	2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성곽동길59, ***호 (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불상(철원군 대)	석재(불석), 0.7m(h)*0.3m*0.3m	9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성곽동길59, ***호 (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불상(철원군 대)	석재(불석), 0.7m(h)*0.3m*0.3m	9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성곽동길59, ***호 (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불상(일광, 월광보살)	석재(불석), 0.8(h)*0.4m*0.4m	2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성곽동길59, ***호 (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불상(일광, 월광보살)	석재(불석), 0.8(h)*0.4m*0.4m	2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성곽동길59, ***호 (창신동, 영은주택)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불상(산신님)	석재(물석), 0.5m(h)*0.5m*0.3m		1개		지*암(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불상(산신님)	석재, 0.3m(h)*0.3m*0.3m		1개		지*암(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불상(독성님)	석재, 0.3m(h)*0.3m*0.3m		1개		지*암(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불상(독성님)	석재, 0.3m(h)*0.3m*0.3m		1개		지*암(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불상(석가불)	목재, 금박, 1.5m(h)*1.0m*0.8m		2개		지*암(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불상(석가불)	목재, 금박, 1.5m(h)*1.0m*0.8m		2개		지*암(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불상(가섭존자, 안난존자)	석재, 0.8m(h)*0.3m*0.3m		2개		지*암(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불상(가섭존자, 안난존자)	석재, 0.8m(h)*0.3m*0.3m		2개		지*암(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안난존재)	*0.3m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낙산성곽동길59,*** *호 (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불상(서울시 유형문화재)(지장보살, 관세음보살)	석재(물석), 0.8m(h)*0.5m*0.3m	2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 (창신동, 영은주택)			
				불상(서울시 유형문화재)(지장보살, 관세음보살)	석재(물석), 0.9m(h)*0.5m*0.3m	2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 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 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불상(서울시 유형문화재)(지장보살, 관세음보살)	석재(물석), 0.8m(h)*0.5m*0.3m	2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 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 은주택)			
				종(대웅전)	청동, 1.5m(h)*1.3m(지름)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 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 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종(대웅전)	청동, 1.5m(h)*1.3m(지름)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 (창신동, 영은주택)			
				탱화(서울시 유형문화재)(대웅전)	2.5m*2.0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 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 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탱화(서울시 유형문화재)(대웅전)	2.5m*2.0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 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 은주택)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탱화(대웅전)	1.5m*1.0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탱화(대웅전)	1.5m*1.0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탱화(대웅전)	1.6m*1.0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탱화(대웅전)	1.6m*1.0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탱화(대웅전)	2.0m*2.6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탱화(대웅전)	2.0m*2.6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탱화(대웅전)	2.0m*1.5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탱화(대웅전)	2.0m*1.5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구낙산성곽동길59,***호(창신동,은주택)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댕화(대웅전)	2.5m*2.0m	2개			지*암(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댕화(대웅전)	2.5m*20.0m	2개			지*암(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집기비품(대웅전 전체)	-	1식			지*암(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호(창신동,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집기비품(대웅전 전체)	-	1식			지*암(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호(창신동,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현판(명부전)	목재, 1.0m*0.5m	1개			지*암(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호(창신동,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현판(명부전)	목재, 1.0m*0.5m	1개			지*암(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관계인	관계주소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관계인	관계주소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주련(명부전)	목재, 1.8m*0.3m	4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주련(명부전)	목재, 1.8m*0.3m	4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불단(명부전)	목재, 1.0m(h)*3.5m*1.0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불단(명부전)	목재, 1.0m(h)*3.5m*1.0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불단(명부전)	목재, 1.0m(h)*5.5m*1.0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불단(명부전)	목재, 1.0m(h)*5.5m*1.0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불단(명부전)	목재, 1.0m(h)*6.5m*1.0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불단(명부전)	목재, 1.0m(h)*6.5m*1.0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관계인	관계주소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관계인	관계주소
										,***호(창신동 영은주택)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불상(지장보살)	목재, 1.5m(h)*1.0m*1.0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불상(지장보살)	목재, 1.5m(h)*1.0m*1.0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불상(무독귀왕, 도명존자, 10대왕)	석재(물석), 0.8m(h)*0.4m*0.4m	13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불상(무독귀왕, 도명존자, 10대왕)	석재(물석), 0.8m(h)*0.4m*0.4m	13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불상(권속)	석재(물석), 0.7m(h)*0.4m*0.4m	16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불상(권속)	석재(물석), 0.7m(h)*0.4m*0.4m	16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불상(거령신)	목재, 1.8m(h)*0.8m*0.8m	2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불상(거령신)	목재, 1.8m(h)*0.8m*0.8m	2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불상(미륵불, 관세음보살상)	석재, 0.5m(h)*0.3m*0.3m	2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불상(미륵불, 관세음보살상)	석재, 0.5m(h)*0.3m*0.3m	2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탱화(희왕도)	1.0m*0.4m	10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탱화(희왕도)	1.0m*0.4m	10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탱화(지장보살)	1.0m*0.7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탱화(지장보살)	1.0m*0.7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탱화(지장보살후불, 칠성탱화)	2.6m*1.5m	2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탱화(지장보살후불, 칠성탱화)	2.6m*1.5m	2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명경대(거울)	1.0m(h)*0.7m*0.5m	2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명경대(거울)	1.0m(h)*0.7m*0.5m	2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괘불함(서울시 유형문화재)	목재, 0.9m(h)*4.0m*0.5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괘불함(서울시 유형문화재)	목재, 0.9m(h)*4.0m*0.5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건물(지하	2.0m(h)	28㎡			지*암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건물(지하	2.0m(h)	28㎡			지*암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창신동	9	옹지	지하실, 명부전)	)				(대표 강*수)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동		옹지	실, 명부전)	)				(대표 강*수)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 9	종교 옹지	집기비품 (명부전 전체)	-	1식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 옹지	집기비품 (명부전 전체)	-	1식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 9	종교 옹지	종(명부전)	청동, 0.9m(h)*0.6m*0.4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 옹지	종(명부전)	청동, 0.9m(h)*0.6m*0.4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 9	종교 옹지	불상(서울시 유형문화재)(지장보살)	석재, 0.5m(h)*0.3m*0.3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 옹지	불상(서울시 유형문화재)(지장보살)	석재, 0.5m(h)*0.3m*0.3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불상(서울시 유형문화재)(관세음보살)	목재, 0.5m(h)*0.3m*0.3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불상(서울시 유형문화재)(관세음보살)	목재, 0.5m(h)*0.3m*0.3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불상(아미타불)	목재, 0.8m(h)*0.4m*0.4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불상(아미타불)	목재, 0.8m(h)*0.4m*0.4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불상(동자)	석재, 0.3m(h)*0.2m*0.2m	2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불상(동자)	석재, 0.3m(h)*0.2m*0.2m	2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탱화(삼존)	2.4m*1.6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탱화(삼존)	2.4m*1.6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관계인	관계주소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관계인	관계주소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불상(관세음보살)	목재, 금박, 0.3m(h)*0.2m*0.2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불상(관세음보살)	목재, 금박, 0.3m(h)*0.2m*0.2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불상(석가불)	목재, 금박, 0.5m(h)*0.3m*0.3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불상(석가불)	목재, 금박, 0.5m(h)*0.3m*0.3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불상(약사불)	석재, 0.5m(h)*0.3m*0.3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불상(약사불)	석재, 0.5m(h)*0.3m*0.3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호(창신동 영은주택)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호(창신동영은주택)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불감	목재, 2.5m(h)*0.9m*0.9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불감	목재, 2.5m(h)*0.9m*0.9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금고(쇠북)	1.3m(h)*1.2m*0.6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금고(쇠북)	1.3m(h)*1.2m*0.6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종(회관 2층)	청동, 1.1m(h)*0.8m*0.4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종(회관 2층)	청동, 1.1m(h)*0.8m*0.4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댕화(서울시 유형문화재)(산신도)	1폭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댕화(서울시 유형문화재)(산신도)	1폭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벽돌(회관 2층)	1.1m(h)*8.0m*1.3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벽돌(회관 2층)	1.1m(h)*8.0m*1.3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댐화(철성댐화, 독성도)	2.5m*2.0m	2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댐화(철성댐화, 독성도)	2.5m*2.0m	2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집기비품(회관 1층, 2층, 건물 외부)	-	1식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집기비품(회관 1층, 2층, 건물 외부)	-	1식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단풍나무	H6.0*R21	2주			지*암	서울특별시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단풍나무	H6.0*R	2주			지*암	서울특별시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석수국	H1.5*R4	4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석수국	H1.5*R 4	4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모란	H0.5	2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모란	H0.5	2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불두화	H2.0*W1.5	2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불두화	H2.0* W1.5	2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9	용지	무					(대표 강*수)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 동	626-99	용지		21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 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 9	종교용지	석수국	H1.5*R4	4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창신 동	626-99	종교용지	석수국	H1.5*R 4	4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 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창신동	626-9 9	종교용지	모란	H0.5	2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 동	626-99	종교용지	모란	H0.5	2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 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 9	종교용지	불두화	H2.0*W1.5	2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 동	626-99	종교용지	불두화	H2.0* W1.5	2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 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매실나무	H2.0*R6	2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159, ***호 (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매실나무	H2.0*R 6	2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 (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무늬사철	H1.2*W0.4	1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159, ***호 (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무늬사철	H1.2* W0.4	1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 (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병꽃(삼색무늬)	H1.0*W0.4	1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159, ***호 (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병꽃(삼색무늬)	H1.0* W0.4	1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 (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계수나무	H1.0*R3	1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계수나무	H1.0*R 3	1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 곽동길59, ** *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담팔수	H1.0*R5	3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 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 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담팔수	H1.0*R 5	3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 구낙산성곽동길59, ** *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홍가시나무	H1.5*W0.8	4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 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 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홍가시나무	H1.5* W0.8	4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 구낙산성곽동길59, ** *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장미	5가지	3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 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 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장미	5가지	3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 구낙산성곽동길59, ** *호(창신동, 영은주택)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꽹과리	H1.0*R5	3주	3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꽹과리	H1.0*R5	3주	3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꽹과리	5가지	1주	1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꽹과리	5가지	1주	1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철쭉	H0.5*W0.5	1주	1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철쭉	H0.5*W0.5	1주	1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부처꽃	H0.8	22주	22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부처꽃	H0.8	22주	22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느티나무	L4	1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느티나무	L4	1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팽나무	-	2㎡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팽나무	-	2㎡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꽃매화	H1.5*R3	1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꽃매화	H1.5*R 3	1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창신동	626-9 9	종교 용지	진달래	H1.8*W1.8	1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 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 용지	진달래	H1.8* W1.8	1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 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 9	종교 용지	백일홍	H5.0*R13	1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 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 용지	백일홍	H5.0*R 13	1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 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 9	종교 용지	사철나무	H6.0*R13	1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 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 용지	사철나무	H6.0*R 13	1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 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 9	종교 용지	왕보리수	H1.5*W1.2	1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 구낙산성곽동길59				창신동	626-99	종교 용지	왕보리수	H1.5* W1.2	1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 구낙산성곽동길59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626-99	종교용지	화단	4m*4m		1식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화단	4m*4m		1식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626-99	종교용지	외부 문	스테인레스 2.0m*0.8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6-99	종교용지	외부 문	스테인레스 2.0m*0.8m		1개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6	창신동	627-38	종교용지	숙소	시멘블록조	46.4	46.4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7-38	종교용지	숙소	시멘블록조	46.4	46.4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7-3	종교	해우소	시멘블록조	11.6	11.6		지*암	서울특별시				창신	627-38	종교	해우소	시멘블	11.6	11.6		지*암	서울특별시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창신동	8	용지						(대표 강*수)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동	627-38	종교 용지		목조				(대표 강*수)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7-38	종교 용지	철쭉	H1.0*W0.8	4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7-38	종교 용지	철쭉	H1.0* W0.8	4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7-38	종교 용지	모과나무	H2.0*R3	1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7-38	종교 용지	모과나무	H2.0*R 3	1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7-38	종교 용지	매화나무	H1.2*R5	2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7-38	종교 용지	매화나무	H1.2*R 5	2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종류	관계인	관계주소
	창신동	627-38	종교용지	라일락	H5.0*W0.5		1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은주택)			창신동	627-38	종교용지	라일락	H5.0* W0.5		1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7-38	종교용지	황나무	H4.0*W2.0		2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7-38	종교용지	황나무	H4.0* W2.0		2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7-38	종교용지	감나무	H10.0*R20		1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7-38	종교용지	감나무	H10.0* R20		1주		지*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은주택)			
	창신동	627-38	종교용지	오동나무	H10.0*R20		1주		지*암 (대표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창신동	627-38	종교용지	오동나무	H10.0* R20		1주		지*암 (대표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번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관계인	관계주소	소재지	모지번	지목	종류	구조 및 규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지분	성명	주소	관계인	관계주소
									강*수)	626-* (서울특별시종로 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 은주택)											강*수)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 종로구낙산성 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7-38	종교 용지	나무장식	-	1개			자*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 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 은주택)			창신 동	627-38	종교 용지	나무장식	-	1개		자*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 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창신동	627-38	종교 용지	화단	30.0m*1.2m	1식			자*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 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영 은주택)			창신 동	627-38	종교 용지	화단	30.0m* 1.2m	1식		자*암 (대표 강*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26-* (서울특별시종로 구낙산성곽동길59,** *호(창신동, 영은주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3598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직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동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직인 등록사유 : 2024. 1. 1.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2. 직인 등록일자 : 2024. 1. 1.

3.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 내용

가. 등록 직인

소관부서	직인명	규격 및 서체	인영	직인 등록일자	사유
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전략과	도시공간전략과 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훈민정음창제당시의 자체		' 24.1.1.	2024. 1. 1. 조직개편
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전략과	도시공간전략과 분임물품출납원인	1.8㎝×1.8㎝ 훈민정음창제당시의 자체		' 23.1.1.	2024. 1. 1. 조직개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3599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전용차로의 설치) 및 제160조 제3항에 따라 전용차로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서(의견진술)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부재, 이사,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및 제160조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주식회사동인플랜트 등 1,097명
4. 공고기간 : 2023. 12. 28 ~ 2024. 1. 12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기한 : 2023. 12. 28 ~ 2024. 1. 12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시 증빙서류와 함께 인터넷(http://cartax.seoul.go.kr)또는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감경(50%)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동명의 및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의견제출처
   - 주 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층 교통지도과 과태료과징팀
   - 전화번호 : 02-2133-4570~79 팩스번호 : 02-2133-4904
   ※ 서울시 교통위반단속조회(http://cartax.seoul.go.kr)에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붙임 :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의견제출 대상 및 의견진술서 작성예시. 1부.

공시송달(사전통지서) 명단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1	16마91**	임*숙	경기도 성남시	2023-08-18 18:10	반포역~고속터미널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2	18더15**	이*준	경기도 평택시	2023-09-08 13:11	서초IC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	133하22**	박*승	경기도 광주시	2023-09-12 15:45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4	116허68**	K*E*I*U*Z*N*D*I*E	서울특별시	2023-09-24 12:29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현로 167	전용차로위반	50,000
5	35두32**	김*중	서울특별시	2023-10-07 14:47	용두동사거리	전용차로위반	50,000
6	116허68**	K*E*I*U*Z*N*D*I*E	서울특별시	2023-10-09 15:42	해모로아파트~번동3.4단지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7	116허68**	K*E*I*U*Z*N*D*I*E	서울특별시	2023-10-10 18:26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	50호05**	정*욱	서울특별시	2023-10-13 15:42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9	116허68**	K*E*I*U*Z*N*D*I*E	서울특별시	2023-10-18 07:51	해모로아파트~번동초교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10	38호46**	김*	서울특별시	2023-10-25 08:07	수정아파트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1	69모79**	김*식	경기도 광명시	2023-10-25 11:47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12	44호96**	(*)*스*스*	대전광역시	2023-10-25 14:07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3 (여의도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3	122하32**	조*자	경기도 남양주시	2023-10-25 19:29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4	221조51**	양*지	경기도 구리시	2023-10-27 17:48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15	140호12**	박*	서울특별시	2023-10-29 08:05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6	43조73**	노*찬	서울특별시	2023-10-29 13:09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7	46더15**	이*영	서울특별시	2023-10-30 07:59	종합운동장사거리~삼성교	전용차로위반	50,000
18	29호13**	이*우	경기도 화성시	2023-10-30 10:3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9	30저37**	임*호	서울특별시	2023-10-30 17:49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20	149허47**	조*민	인천광역시	2023-10-30 18:3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21	169호81**	이*지	경기도 광주시	2023-10-30 19:35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2	35호08**	플*타*엑*	대구광역시	2023-11-01 15:57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3	159호47**	한*우	경기도 여주시	2023-11-01 16:01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24	126하68**	김*온	경기도 안산시	2023-11-01 18:08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25	188도80**	조*	서울특별시	2023-11-01 18:48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6	194호39**	곽*태	서울특별시	2023-11-02 08:33	무악재역~독립문역	전용차로위반	50,000
27	152호77**	이*호	충청남도 천안시	2023-11-02 09:3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8	149호61**	정*용	경기도 용인시	2023-11-02 10:58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29	381라93**	(*)*앤*이*이*	서울특별시	2023-11-02 15:35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3 (여의도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0	143하67**	양*윤	경기도 광주시	2023-11-02 16:4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1	160허68**	강*현	서울특별시	2023-11-02 17:51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32	39라03**	권*현	서울특별시	2023-11-02 19:1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33	156하86**	J*N*I*N*N	경기도 시흥시	2023-11-03 07:3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4	160하73**	(*)*이*	경기도 하남시	2023-11-03 08:28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35	140호24**	김*희	서울특별시	2023-11-03 09:2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6	805모27**	이*스*랜*식*사	서울특별시	2023-11-03 09:53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7	805모27**	이*스*랜*식*사	서울특별시	2023-11-03 09:55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8	220호86**	서*수	서울특별시	2023-11-03 11:01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9	197호10**	이*숙	경기도 성남시	2023-11-03 11:14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0	149허77**	김*일	경기도 군포시	2023-11-03 14:17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1	159호47**	한*우	경기도 여주시	2023-11-03 16:14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2	159호47**	한*우	경기도 여주시	2023-11-03 16:15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3	126하79**	정*균	서울특별시	2023-11-03 19:0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44	261거15**	(*)*이*컬*스	경기도 광주시	2023-11-03 19:51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45	140하39**	(*)*스*엠	경기도 성남시	2023-11-04 12:02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46	159호47**	한*우	경기도 여주시	2023-11-04 16:31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7	159호47**	한*우	경기도 여주시	2023-11-04 16:32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48	159호47**	한*우	경기도 여주시	2023-11-04 16:33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9	805모27**	이*스*랜*식*사	서울특별시	2023-11-04 17:18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0	161하29**	손*관	경기도 오산시	2023-11-05 19:55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1	161하29**	손*관	경기도 오산시	2023-11-05 19:56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2	156호72**	씨*코*아*식*사	경기도 화성시	2023-11-05 20:30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3	303조75**	박*정	경기도 고양시	2023-11-05 21:39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4	370오13**	(*)*스*아*평*교*원	서울특별시	2023-11-06 09:1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5	175호25**	제*에*마*컨*팅	서울특별시	2023-11-06 09:2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6	114나55**	최*종	서울특별시	2023-11-06 13:52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57	114나55**	최*종	서울특별시	2023-11-06 13:5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8	48버08**	최*	경기도 화성시	2023-11-06 14:45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9	174호12**	공*원	서울특별시	2023-11-06 17:36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60	101호83**	권*미	경기도 광주시	2023-11-06 18:07	해군회관앞~보라매역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61	167허26**	남*연	서울특별시	2023-11-07 08:20	육사야구장~화랑대사거리	전용차로위반	50,000
62	149하74**	엄*용	서울특별시	2023-11-07 09:1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3	195호88**	오*광	경기도 하남시	2023-11-07 17:0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4	175하40**	마*엔*테*먼*	서울특별시	2023-11-07 17:12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5	195호88**	오*광	경기도 하남시	2023-11-07 18:19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6	387루66**	신*원	서울특별시	2023-11-07 18:28	고척동 구로성심병원 버스정류소(시내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7	395우61**	이*석	서울특별시	2023-11-07 19:03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8	131버55**	한*열	인천광역시	2023-11-07 19:33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9	157하22**	김*현	경기도 김포시	2023-11-07 19:50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70	167하31**	(*)*아*메*칼	서울특별시	2023-11-07 20:02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71	157하22**	김*현	경기도 김포시	2023-11-07 20:50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2	167호12**	정*	경기도 부천시	2023-11-08 08:42	강서구청입구교차로~등촌사거리	전용차로위반	50,000
73	333거15**	(*)*티*스	서울특별시	2023-11-08 09:14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4	154호43**	임*륜	서울특별시	2023-11-08 10:01	여의도선착장교차로~수정아파트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5	153저69**	김*용	경기도 의정부시	2023-11-08 13:46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6	서울중타73**	김*우	서울특별시	2023-11-08 16:15	종로4가교차로~청계4가교차로	전용차로위반	40,000
77	154호43**	임*륜	서울특별시	2023-11-08 16:28	국제금융로7길 보건약국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8	52하21**	(*)*이*케*	서울특별시	2023-11-08 17:52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느산부인과	전용차로위반	50,000
79	172호68**	세*	경기도 남양주시	2023-11-09 08:14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80	157우71**	기*식*주*회*	서울특별시	2023-11-09 08:2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1	140하25**	심*일	경기도 용인시	2023-11-09 10:46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2	220호67**	김*우	서울특별시	2023-11-09 11:2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3	128두96**	(*)*이*스*이*스*	서울특별시	2023-11-09 13:01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84	165허42**	김*돈	울산광역시	2023-11-09 14:25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5	191허64**	주*회*디*이*글*벌	서울특별시	2023-11-09 15:05	서대문역~독립문역	전용차로위반	50,000
86	154호43**	임*륜	서울특별시	2023-11-09 15:30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0 (여의도동, 대교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87	116하11**	김*현	경기도 하남시	2023-11-09 16:32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88	162허54**	제*에*렌*	인천광역시	2023-11-09 18:32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9	148하50**	한*웅	서울특별시	2023-11-09 19:1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90	157하91**	문*식	서울특별시	2023-11-09 19:25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91	286누33**	(*)*이*드	경기도 안산시	2023-11-10 07:11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92	286누33**	(*)*이*드	경기도 안산시	2023-11-10 07:13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93	165호16**	(*)*지*스*일	서울특별시	2023-11-10 08:12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94	149허72**	이*진	서울특별시	2023-11-10 09:45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95	40호06**	최*욱	인천광역시	2023-11-10 12:42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96	195호19**	백*순	경상북도 경산시	2023-11-10 13:09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97	126하87**	박*선	경기도 남양주시	2023-11-10 14:20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98	02호46**	장*탁	서울특별시	2023-11-10 15:40	서울 관악구 신림동 526	전용차로위반	50,000
99	14오94**	김*희	경기도 시흥시	2023-11-10 16:00	반포IC 주변 경부고속도록	전용차로위반	50,000
100	126하90**	임*영	인천광역시	2023-11-10 17:5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01	174하80**	씨*스*업*식*사	경기도 안산시	2023-11-10 18:31	종로5가교차로~종로4가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102	109호21**	문*미	서울특별시	2023-11-10 18:3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03	49호19**	박*성	서울특별시	2023-11-10 18:51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104	125호54**	류*열	서울특별시	2023-11-10 20:27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위반	50,000
105	149허47**	박*성	경기도 동두천시	2023-11-10 20:35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06	128하81**	앙*로*떡*이*대*점	서울특별시	2023-11-11 06:15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107	183구14**	주*회*비*씨*이	서울특별시	2023-11-11 10:09	반포3동주민센터교차로~신동초교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108	327조59**	윤*희	경상북도 경산시	2023-11-11 12:27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09	327조59**	윤*희	경상북도 경산시	2023-11-11 12:28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10	327조59**	윤*희	경상북도 경산시	2023-11-11 12:30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11	195하12**	민*연	서울특별시	2023-11-12 17:38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112	125가82**	유*회*토*스*설	광주광역시	2023-11-13 10:46	영등포고가차도~영등포역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113	125호18**	장*영	경기도 포천시	2023-11-13 17:42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14	162허57**	롯*에*리*드*너*이*식*사	서울특별시	2023-11-13 18:4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15	125호22**	권*지	서울특별시	2023-11-13 19:07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116	165호94**	최*석	세종특별자치시	2023-11-14 03:47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117	64하03**	임*수	서울특별시	2023-11-14 10:28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118	152호33**	김*회	서울특별시	2023-11-14 14:02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19	170허20**	(*)*온*프*비	서울특별시	2023-11-14 15:27	상봉동 중랑역 가나안교회 건너편 GS25상봉사랑점	전용차로위반	50,000
120	170하56**	(*)*에*	서울특별시	2023-11-14 16:42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121	171하19**	김*회	경기도 시흥시	2023-11-14 19:57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22	222허91**	이*준	경기도 평택시	2023-11-14 20:01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23	67하91**	서*입	경기도 의정부시	2023-11-15 11:28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124	57하27**	박*삼	서울특별시	2023-11-15 16:32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125	193하49**	K*시*템	경기도 성남시	2023-11-15 17:19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26	169호97**	김*율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2023-11-15 17:4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27	33하96**	정*란	서울특별시	2023-11-15 17:48	롯데백화점잠실점	전용차로위반	50,000
128	149호61**	정*용	경기도 용인시	2023-11-15 18:10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129	194하51**	주*회*엘*	인천광역시	2023-11-15 19:15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30	169호29**	오*영	서울특별시	2023-11-15 19:26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131	175허69**	(*)*아	경기도 부천시	2023-11-15 20:15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32	195호18**	(*)*성*혁	서울특별시	2023-11-16 07:46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33	126호21**	김*석	서울특별시	2023-11-16 08:08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34	386고22**	박*화	경기도 군포시	2023-11-16 08:10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35	130호33**	이*복	경기도 의정부시	2023-11-16 09:40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36	130호33**	이*복	경기도 의정부시	2023-11-16 09:42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37	301모95**	(*)*준*지*어*	서울특별시	2023-11-16 10:4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38	104호76**	주*회*헤*씨*씨	서울특별시	2023-11-16 10:4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139	157하22**	김*현	경기도 김포시	2023-11-16 12:28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40	191허14**	K*M*U*Y*N	경기도 용인시	2023-11-16 12:29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41	157하22**	김*현	경기도 김포시	2023-11-16 12:29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42	191허14**	K*M*U*Y*N	경기도 용인시	2023-11-16 12:30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43	157하22**	김*현	경기도 김포시	2023-11-16 12:31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44	116하21**	박*진	인천광역시	2023-11-16 17:2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145	190호83**	이*영	서울특별시	2023-11-16 17:2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46	165하15**	지*스*(*)	서울특별시	2023-11-16 17:57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47	157하22**	김*현	경기도 김포시	2023-11-16 18:03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48	159호87**	(*)*림*우*	인천광역시	2023-11-16 18:28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149	31호45**	하*필*구*점	경상북도 구미시	2023-11-17 08:27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150	150저85**	황*숙	서울특별시	2023-11-17 09:08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51	165호50**	백*호	경상북도 포항시	2023-11-17 15:58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52	165호50**	백*호	경상북도 포항시	2023-11-17 15:59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53	122하94**	(*)*이*마*팅	서울특별시	2023-11-17 16:15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154	161허85**	이*기	전라북도 남원시	2023-11-17 18:2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55	125호41**	민*기	서울특별시	2023-11-17 19:23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위반	50,000
156	169하61**	강*한	경기도 용인시	2023-11-18 10:26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57	33고93**	농*회*법*음*고*주*회*	충청북도 음성군	2023-11-18 13:04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158	53두66**	박*운	서울특별시	2023-11-19 11:19	영등포역	전용차로위반	50,000
159	89보98**	강*철	서울특별시	2023-11-19 13: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	전용차로위반	50,000
160	182저13**	J*O*M*H*E	경기도 화성시	2023-11-19 14:28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61	182저13**	J*O*M*H*E	경기도 화성시	2023-11-19 14:29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62	31수30**	조*진	서울특별시	2023-11-19 16:15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73	전용차로위반	50,000
163	174호22**	김*한	경기도 시흥시	2023-11-19 16:33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164	174하62**	김*순	전라남도 목포시	2023-11-19 17:15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65	63무05**	오*호	서울특별시	2023-11-19 18:39	신동초교교차로~한남IC	전용차로위반	50,000
166	20호51**	L*E*O*N*E*	서울특별시	2023-11-19 20:19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67	169하95**	주*희*솔*브	서울특별시	2023-11-20 08:32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168	50어06**	L*R*N*G*N	서울특별시	2023-11-20 08: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	전용차로위반	50,000
169	159하99**	권*경	경기도 수원시	2023-11-20 09:22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170	191허14**	K*M*U*Y*N	경기도 용인시	2023-11-20 11:18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71	191허14**	K*M*U*Y*N	경기도 용인시	2023-11-20 11:20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72	805모27**	이*스*랜*식*사	서울특별시	2023-11-20 19:02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73	805모27**	이*스*랜*식*사	서울특별시	2023-11-20 19:04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74	104하10**	정*윤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2023-11-20 19:4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75	284두54**	이*숙	서울특별시	2023-11-21 00:48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176	서울31사93**	임*호	경기도 의정부시	2023-11-21 02:06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177	31소06**	이*일	인천광역시	2023-11-21 02:12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78	21도03**	윤*란	경기도 부천시	2023-11-21 02:17	고척동 구로성심병원 버스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79	14루99**	강*웅	경기도 부천시	2023-11-21 03:31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180	87루71**	박*수	경기도 수원시	2023-11-21 06:25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181	80나78**	이*일	경기도 고양시	2023-11-21 07:16	은평지문교~구파발사거리	전용차로위반	50,000
182	40두59**	안*식	경기도 고양시	2023-11-21 07:16	은평지문교~구파발사거리	전용차로위반	50,000
183	63누22**	이*복	경기도 평택시	2023-11-21 07:16	은평지문교~구파발사거리	전용차로위반	50,000
184	160허68**	(*)*카	전라남도 목포시	2023-11-21 07:30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85	경기99바27**	(*)*드*타	경기도 화성시	2023-11-21 07:40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60,000
186	324보52**	고*호	서울특별시	2023-11-21 07:4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187	08마72**	구*혁	서울특별시	2023-11-21 08:0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88	148버54**	이*환	경기도 고양시	2023-11-21 08:02	은평지문교~구파발사거리	전용차로위반	50,000
189	138버54**	박*수	경기도 남양주시	2023-11-21 08:06	육사체육관~화랑대사거리	전용차로위반	50,000
190	800나16**	박*수	경기도 이천시	2023-11-21 08:19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191	32나03**	박*심	서울특별시	2023-11-21 08:19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192	22주88**	김*용	서울특별시	2023-11-21 08:23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193	서울36바19**	김*철	서울특별시	2023-11-21 08:31	영등포구 샛강역 1번출구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94	29러85**	조*서	경기도 화성시	2023-11-21 08:3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95	142도73**	(*)*마*바*리*	서울특별시	2023-11-21 08:3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96	307어30**	김*빈	경기도 의정부시	2023-11-21 08:41	온수골사거리~노원역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197	93버07**	김*미	경기도 화성시	2023-11-21 08:42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198	41보76**	신*선	인천광역시	2023-11-21 08:4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199	42도30**	이*헌	서울특별시	2023-11-21 08:52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00	32저45**	곽*영	서울특별시	2023-11-21 09:0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01	19부91**	다*수밋	서울특별시	2023-11-21 09:0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202	09누21**	김*구	경기도 동두천시	2023-11-21 09:13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위반	50,000
203	48로89**	안*희	서울특별시	2023-11-21 09:18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204	경기92배11**	김*한	경기도 광주시	2023-11-21 09:1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05	307더80**	황*권	경기도 광주시	2023-11-21 09:21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206	서울84사68**	유*회*라*건*	서울특별시	2023-11-21 09:34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07	서울84사68**	유*회*라*건*	서울특별시	2023-11-21 09:38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08	31어30**	손*준	서울특별시	2023-11-21 09:48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09	81우71**	양*순	경기도 고양시	2023-11-21 09:48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210	64라20**	김*주	서울특별시	2023-11-21 09:51	온수골사거리~노원역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211	112너12**	H*N*Z*E*U	서울특별시	2023-11-21 10:09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12	58수84**	김*순	서울특별시	2023-11-21 11:23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느산부인과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213	81다52**	조*남	서울특별시	2023-11-21 11:26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214	22마01**	에*그*트*스*주*회*	서울특별시	2023-11-21 12:24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15	135누99**	난*양	서울특별시	2023-11-21 13:15	반포역~논현역	전용차로위반	50,000
216	50나47**	김*영	경기도 부천시	2023-11-21 14:2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17	151가67**	정*선	경기도 남양주시	2023-11-21 15:04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218	275소97**	김*아라	서울특별시	2023-11-21 15:09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19	24어17**	강*원	전라북도 전주시	2023-11-21 15:11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220	서울81배26**	서*식	서울특별시	2023-11-21 15:30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221	28우57**	민*식	경기도 동두천시	2023-11-21 15:3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22	43보73**	삼*에*비*비*스*(*)	서울특별시	2023-11-21 15:52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23	312우36**	심*억	경기도 시흥시	2023-11-21 16:12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224	26구76**	신*정	경기도 남양주시	2023-11-21 16:35	서초IC~반포IC	전용차로위반	50,000
225	167나46**	송*군	인천광역시	2023-11-21 16:35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26	36어73**	박*숙	경상북도 김천시	2023-11-21 16:56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느산부인과	전용차로위반	50,000
227	63소07**	최*준	경기도 구리시	2023-11-21 17:01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228	339주58**	이*호	경기도 가평군	2023-11-21 17:11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229	60수07**	양*훈	경기도 고양시	2023-11-21 17:16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30	42수25**	홍*주	서울특별시	2023-11-21 17:17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31	46머53**	박*욱	경기도 구리시	2023-11-21 17:20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32	14버39**	(*)*드	서울특별시	2023-11-21 17:21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33	64어25**	김*복	서울특별시	2023-11-21 17:23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234	56가08**	정*휘	서울특별시	2023-11-21 17:24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35	47서07**	이*현	서울특별시	2023-11-21 17:3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236	48하52**	프*렌*카*주*	서울특별시	2023-11-21 17:42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위반	50,000
237	808보73**	이*준	경기도 김포시	2023-11-21 17:54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38	04소36**	김*유	서울특별시	2023-11-21 17:59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239	01노90**	배*환	서울특별시	2023-11-21 18:00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240	254수56**	송*서	경기도 성남시	2023-11-21 18:0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41	846로52**	박*장	인천광역시	2023-11-21 18:03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42	22가53**	유*환	서울특별시	2023-11-21 18:0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43	41마01**	S*N*U*X*A*	서울특별시	2023-11-21 18:08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44	15오51**	조*호	부산광역시	2023-11-21 18:09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245	46버72**	김*혁	충청북도 청주시	2023-11-21 18:11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46	32누15**	이*환	서울특별시	2023-11-21 18:11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47	819머73**	주*회*퍼*트*립	경기도 고양시	2023-11-21 18:12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248	106소25**	김*연	경기도 안양시	2023-11-21 18:15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49	67오14**	서*환	서울특별시	2023-11-21 18:17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50	139라47**	홍*경	서울특별시	2023-11-21 18:17	육사야구장~화랑대사거리	전용차로위반	50,000
251	82머74**	김*빈	인천광역시	2023-11-21 18:3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52	67우43**	D*S*T*E*E*M*N*H*U*A	서울특별시	2023-11-21 18:34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53	서울31자89**	정*채	서울특별시	2023-11-21 18:45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54	92가02**	김*일	경기도 의정부시	2023-11-21 18:53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55	393머31**	박*임	서울특별시	2023-11-21 18:55	공릉동 목예원(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56	53노60**	최*이	인천광역시	2023-11-21 19:01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257	152어87**	김*규	경기도 의정부시	2023-11-21 19:02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258	36로40**	김*윤	서울특별시	2023-11-21 19:07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259	24서10**	박*건	인천광역시	2023-11-21 19:12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60	283가32**	D*N*O*K*A*H	경기도 용인시	2023-11-21 19:14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261	20러57**	이*빈	경기도 양주시	2023-11-21 19:44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62	379무62**	강*	경상남도 김해시	2023-11-21 19:49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63	379무62**	강*	경상남도 김해시	2023-11-21 19:50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64	379무62**	강*	경상남도 김해시	2023-11-21 19:51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65	서울31바73**	김*찬	경기도 부천시	2023-11-21 19:5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66	225저13**	강*례	서울특별시	2023-11-21 20:08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위반	50,000
267	36루91**	김*수	서울특별시	2023-11-21 20:10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268	275서33**	박*희	서울특별시	2023-11-21 20:12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269	37머39**	이*근	경기도 용인시	2023-11-21 20:14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270	303두13**	(*)*령*업	전라남도 영광군	2023-11-21 20:27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271	03오48**	원*이	경기도 수원시	2023-11-21 20:46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72	서울31아19**	윤*명	서울특별시	2023-11-21 20:4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73	60수65**	백*재	전라북도 전주시	2023-11-21 20:50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위반	50,000
274	서울32자61**	최*석	서울특별시	2023-11-21 22:12	상봉역~망우역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275	55너59**	손*재	서울특별시	2023-11-21 22:24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276	서울31바25**	김*원	서울특별시	2023-11-21 22:34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277	33가01**	양*규	서울특별시	2023-11-21 22:42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278	255모30**	(*)*한*상	경기도 남양주시	2023-11-21 23:42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279	85모28**	김*수	서울특별시	2023-11-22 01:01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280	65오48**	이*웅	서울특별시	2023-11-22 01:16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느산부인과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281	21루13**	노*덕	경기도 파주시	2023-11-22 01:50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느산부인과	전용차로위반	50,000
282	808저96**	박*규	서울특별시	2023-11-22 04:48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283	719더95**	안*산	충청북도 음성군	2023-11-22 05:10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60,000
284	15마81**	신*철	서울특별시	2023-11-22 05:19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285	35도52**	서*민	경기도 수원시	2023-11-22 06:25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286	11조17**	주*회*비*미*어	경기도 고양시	2023-11-22 07:07	은평지문교~구파발사거리	전용차로위반	50,000
287	36부93**	심*이	경기도 고양시	2023-11-22 07:07	은평지문교~구파발사거리	전용차로위반	50,000
288	서울31바68**	김*수	서울특별시	2023-11-22 07:08	은평지문교~구파발사거리	전용차로위반	50,000
289	31두21**	유*찬	경기도 고양시	2023-11-22 07:08	은평지문교~구파발사거리	전용차로위반	50,000
290	서울32아50**	박*삼	서울특별시	2023-11-22 07:42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91	13루01**	지*영	서울특별시	2023-11-22 07:45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92	95로32**	김*현	서울특별시	2023-11-22 08:16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93	16라86**	이*황	서울특별시	2023-11-22 08:24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294	15주07**	우*수	경기도 의정부시	2023-11-22 08:38	온수골사거리~노원역	전용차로위반	50,000
295	822조52**	정*국	경기도 시흥시	2023-11-22 08:44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296	19버07**	허*경	경기도 동두천시	2023-11-22 08:45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97	06고80**	박*순	충청남도 아산시	2023-11-22 08:4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298	41누98**	임*완	서울특별시	2023-11-22 08:53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299	382저84**	박*상	경기도 화성시	2023-11-22 08:57	국립현충원~흑석역	전용차로위반	50,000
300	56고63**	김*표	서울특별시	2023-11-22 08:59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위반	50,000
301	839누32**	한*오	충청남도 당진시	2023-11-22 09:00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302	69구05**	이*배	서울특별시	2023-11-22 09:16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303	82마60**	방*성	경기도 의정부시	2023-11-22 09:19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04	294서17**	곽*순	서울특별시	2023-11-22 09:23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305	39보27**	이*택	경기도 포천시	2023-11-22 09:25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06	84어43**	에*물*(*)	경기도 포천시	2023-11-22 09:27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07	서울31아14**	주*호	서울특별시	2023-11-22 09:28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08	148더25**	김*호	서울특별시	2023-11-22 09:3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09	22거07**	장*영	서울특별시	2023-11-22 09:3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10	82다06**	조*남	인천광역시	2023-11-22 09:36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11	52나29**	L*A*G*O*G*I*	경기도 군포시	2023-11-22 09:38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12	56너55**	이*희	서울특별시	2023-11-22 09:38	아차산역~아차산역사거리	전용차로위반	50,000
313	24도49**	김*성	서울특별시	2023-11-22 09:4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14	54보55**	한*철	경기도 하남시	2023-11-22 09:59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315	133하80**	(*)*렌*	경기도 안양시	2023-11-22 10:01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16	133하80**	(*)*렌*	경기도 안양시	2023-11-22 10:02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17	152고30**	최*정	서울특별시	2023-11-22 11:12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18	28두08**	방*성	경기도 고양시	2023-11-22 11:33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319	66주17**	송*영	충청남도 천안시	2023-11-22 11:37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20	66주17**	송*영	충청남도 천안시	2023-11-22 11:38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21	서울02더50**	조*숙	경기도 광명시	2023-11-22 11:41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 (여의도동, 광장아파트)	전용차로위반	60,000
322	375러92**	K*N*V*E*I*A	서울특별시	2023-11-22 11:4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23	86버77**	황*오	경기도 의정부시	2023-11-22 12:26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 (여의도동, 광장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324	239머80**	강*준	경기도 수원시	2023-11-22 12:27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25	365무21**	한*혜	서울특별시	2023-11-22 12:3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26	19오32**	최*희	경기도 안양시	2023-11-22 12:59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27	315로91**	김*은	경기도 광주시	2023-11-22 13:27	종로2가 스타벅스 종각점	전용차로위반	50,000
328	서울06거75**	정*철	경기도 의정부시	2023-11-22 14:11	종로2가 스타벅스 종각점	전용차로위반	6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329	194허96**	주*회*쏘*	경상남도 창원시	2023-11-22 14:25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108	전용차로위반	50,000
330	40로04**	주*회*이*위*스	서울특별시	2023-11-22 14:26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331	133보21**	유*	경기도 안양시	2023-11-22 14:29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32	27어55**	박*중	전라북도 군산시	2023-11-22 14:46	서울 강남구 논현동 279	전용차로위반	50,000
333	36보66**	김*구	서울특별시	2023-11-22 15:17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334	198러54**	송*숙	충청북도 진천군	2023-11-22 15:4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35	73고83**	김*현	서울특별시	2023-11-22 16:1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60,000
336	26마30**	조*근	서울특별시	2023-11-22 16:42	고척동 구로성심병원 버스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37	198노43**	노*진	경기도 화성시	2023-11-22 17:02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38	174우14**	최*희	인천광역시	2023-11-22 17:13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39	07우90**	윤*슬	경기도 의정부시	2023-11-22 17:18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40	15오51**	조*호	부산광역시	2023-11-22 17:29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341	300오62**	박*은	경기도 성남시	2023-11-22 17:30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42	14서06**	김*	경기도 고양시	2023-11-22 17:3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43	57러82**	이*영	서울특별시	2023-11-22 17:36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44	전북83사43**	(*)*양*류	전라북도 정읍시	2023-11-22 17:39	공릉동 목예원(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60,000
345	278나28**	변*혁	서울특별시	2023-11-22 17:4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346	397조34**	김*남	서울특별시	2023-11-22 17:42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47	12라03**	이*음	서울특별시	2023-11-22 17:44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48	201루75**	김*윤	서울특별시	2023-11-22 17:46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49	40오11**	김*순	경기도 남양주시	2023-11-22 17:52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350	53누59**	한*자	충청남도 천안시	2023-11-22 17:52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51	110고88**	박*해	경기도 고양시	2023-11-22 17:59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352	서울31바30**	이*수	서울특별시	2023-11-22 18:00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353	63버68**	박*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23-11-22 18:0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354	26도06**	김*태	서울특별시	2023-11-22 18:06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55	194호47**	주*회*쏘*	경기도 김포시	2023-11-22 18:0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356	05로06**	주*회*지*스*스*퍼*이*	서울특별시	2023-11-22 18:09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57	29보68**	주*회*선*테*	경기도 화성시	2023-11-22 18:13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58	36도62**	김*옥	서울특별시	2023-11-22 18:13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59	59더79**	최*희	대전광역시	2023-11-22 18:14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60	59더79**	최*희	대전광역시	2023-11-22 18:15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61	59더79**	최*희	대전광역시	2023-11-22 18:16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62	95부97**	강*혁	경기도 파주시	2023-11-22 18:21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363	50모53**	김*욱	경기도 의정부시	2023-11-22 18:25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위반	50,000
364	서울35바54**	최*진	서울특별시	2023-11-22 18:2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65	29러45**	백*현	서울특별시	2023-11-22 18:29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66	36우59**	김*호	서울특별시	2023-11-22 18:34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느산부인과	전용차로위반	50,000
367	서울32사90**	곽*훈	경기도 고양시	2023-11-22 18:35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368	154두96**	임*숙	경기도 군포시	2023-11-22 18:36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69	10저65**	정*주	경기도 고양시	2023-11-22 18:38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370	46저91**	김*경	서울특별시	2023-11-22 18:50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71	264무37**	김*준	경기도 성남시	2023-11-22 18:51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72	346무29**	김*선	서울특별시	2023-11-22 18:5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373	17서08**	주*회*유*피*빌*코*아	인천광역시	2023-11-22 19:01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374	서울32자13**	박*숙	서울특별시	2023-11-22 19:03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75	20우80**	N*U*E*V*N*O*	전라남도 여수시	2023-11-22 19:04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376	11도33**	허*건	인천광역시	2023-11-22 19:07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377	서울31아30**	박*철	인천광역시	2023-11-22 19:13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78	50로11**	권*근	경기도 의정부시	2023-11-22 19:21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79	11조54**	주*회*평*다*인*원	경기도 안양시	2023-11-22 19:22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위반	50,000
380	서울36바14**	김*란	서울특별시	2023-11-22 19:31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81	23로61**	이*수	서울특별시	2023-11-22 19:4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82	368루17**	세*법*셜*택*	서울특별시	2023-11-22 20:05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83	서울31자54**	윤*태	서울특별시	2023-11-22 20:2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384	51부41**	고*현	서울특별시	2023-11-22 20:27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385	서울32자63**	홍*채	서울특별시	2023-11-22 20:29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86	10수12**	김*훈	인천광역시	2023-11-22 20:33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387	서울81배50**	김*재	서울특별시	2023-11-22 20:36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388	서울32사79**	이*태	인천광역시	2023-11-22 20:48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위반	50,000
389	96구39**	손*영	경기도 의정부시	2023-11-22 22:19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390	11우71**	심*진	경기도 시흥시	2023-11-22 23:03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전용차로위반	50,000
391	147고56**	백*기	인천광역시	2023-11-22 23:27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392	46어97**	김*원	서울특별시	2023-11-23 00:31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393	51마78**	방*원	경기도 고양시	2023-11-23 00:58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느산부인과	전용차로위반	50,000
394	23소08**	오*석	경기도 안산시	2023-11-23 01:22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395	229모47**	김*환	경기도 화성시	2023-11-23 02:04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396	16가66**	서*영	경기도 양주시	2023-11-23 04:17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느산부인과	전용차로위반	50,000
397	166머90**	L*U*H*N*I*	인천광역시	2023-11-23 05:08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398	34도06**	김*선	인천광역시	2023-11-23 06:07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399	116하43**	(*)*오*	인천광역시	2023-11-23 06:58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400	119러61**	강*숙	서울특별시	2023-11-23 07:15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01	02무50**	김*진	경기도 고양시	2023-11-23 07:15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02	65고53**	이*열	경기도 용인시	2023-11-23 07:18	공릉동 목예원(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03	35머02**	임*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2023-11-23 07:25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04	362수72**	황*구	서울특별시	2023-11-23 08:00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405	01고01**	(*)*타*스*쥬*웍*	서울특별시	2023-11-23 08:02	천호대교~광나루역	전용차로위반	50,000
406	92더59**	박*수	서울특별시	2023-11-23 08:10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07	186오15**	방*철	서울특별시	2023-11-23 08:1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08	65머47**	김*화	경기도 안산시	2023-11-23 08:31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409	33누62**	이*희	경기도 남양주시	2023-11-23 08:34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10	05구22**	민*선	서울특별시	2023-11-23 08:38	은평지문교~구파발사거리	전용차로위반	50,000
411	166보37**	지*환	경기도 양주시	2023-11-23 08:40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12	55보07**	송*석	서울특별시	2023-11-23 08:45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13	52나29**	L*A*G*O*G*I*	경기도 군포시	2023-11-23 08:57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14	52부02**	(*)*이*스*퍼*이*	서울특별시	2023-11-23 09:10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15	06너05**	이*우	서울특별시	2023-11-23 09:10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위반	50,000
416	42우14**	박*수	서울특별시	2023-11-23 09:33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위반	50,000
417	57러90**	이*연	경기도 성남시	2023-11-23 09:36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418	148모73**	남*범	서울특별시	2023-11-23 09:38	서울 송파구 잠실동 20	전용차로위반	50,000
419	45오38**	김*관	경기도 하남시	2023-11-23 09:39	영등포구 샛강역 1번출구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20	09노03**	최*호	경기도 성남시	2023-11-23 09:4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21	서울31아56**	변*환	경기도 광주시	2023-11-23 09:4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22	234우69**	이*석	서울특별시	2023-11-23 09:47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위반	50,000
423	368머96**	이*훈	경기도 의정부시	2023-11-23 09:48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424	28가54**	박*진	경기도 남양주시	2023-11-23 09:48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25	서울37사12**	지*카*주*	서울특별시	2023-11-23 09:50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426	127로68**	윤*현	대전광역시	2023-11-23 10:11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27	83모49**	이*택	경기도 수원시	2023-11-23 10:15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28	57러32**	김*육	경기도 부천시	2023-11-23 10:28	국회의사당역 5--> 6번 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429	156가34**	최*리	서울특별시	2023-11-23 10:3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30	63더49**	유*선	전라북도 순창군	2023-11-23 11:15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31	63더49**	유*선	전라북도 순창군	2023-11-23 11:16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32	63더49**	유*선	전라북도 순창군	2023-11-23 11:17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33	12누80**	오*민	경기도 수원시	2023-11-23 11:27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34	서울32아46**	박*국	경기도 용인시	2023-11-23 11:33	논현역~반포역	전용차로위반	50,000
435	006다92**	김*규	경기도 하남시	2023-11-23 11:45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60,000
436	61라81**	백*호	서울특별시	2023-11-23 12:10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37	146구79**	J*N*H*N*U	경기도 이천시	2023-11-23 12:46	상봉동 중랑역 가나안교회 건너편 GS25상봉사랑점	전용차로위반	50,000
438	53서66**	최*만	서울특별시	2023-11-23 12:5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39	80마94**	김*	서울특별시	2023-11-23 12:54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40	26우30**	송*석	경기도 파주시	2023-11-23 13:3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41	33버31**	함*민	서울특별시	2023-11-23 13:3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42	43더06**	김*산	서울특별시	2023-11-23 13:58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443	146구79**	J*N*H*N*U	경기도 이천시	2023-11-23 14:00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느산부인과	전용차로위반	50,000
444	45두95**	김*진	인천광역시	2023-11-23 15:22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9 (여의도동, 한양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445	20거87**	B*K*T*Y*R*V*M*B*K*M*D*E*U*L*	경상북도 영천시	2023-11-23 15:32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446	29누47**	J*N*O*G*H*N	인천광역시	2023-11-23 15:34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3 (여의도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47	61주99**	(*)*스*드*인	서울특별시	2023-11-23 16:11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448	20거87**	B*K*T*Y*R*V*M*B*K*M*D*E*U*L*	경상북도 영천시	2023-11-23 16:21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49	96무08**	유*모	서울특별시	2023-11-23 16:4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50	26가25**	주*회*천*인*이*	충청북도 제천시	2023-11-23 17:01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51	259조26**	최*	서울특별시	2023-11-23 17:02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452	14누81**	배*길	서울특별시	2023-11-23 17:06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453	31거20**	박*은	인천광역시	2023-11-23 17:10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54	27노29**	(*)*코*디*씨	서울특별시	2023-11-23 17:1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455	49러86**	홍*준	경기도 의왕시	2023-11-23 17:18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456	54너76**	이*훈	경기도 안산시	2023-11-23 17:20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457	18거47**	손*우	경기도 남양주시	2023-11-23 17:2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58	57주82**	김*희	서울특별시	2023-11-23 17:42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느산부인과	전용차로위반	50,000
459	194하21**	주*회*쏘*	경기도 성남시	2023-11-23 17:4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60	379마49**	황*미	경기도 남양주시	2023-11-23 17:44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461	21로74**	이*민	경기도 성남시	2023-11-23 17:4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62	152도81**	배*영	경기도 남양주시	2023-11-23 17:53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63	01우62**	김*중	서울특별시	2023-11-23 17:53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위반	50,000
464	39도81**	옥*배	경기도 의정부시	2023-11-23 17:58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위반	50,000
465	35더33**	이*은	서울특별시	2023-11-23 18:05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66	182어65**	김*은	서울특별시	2023-11-23 18:1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67	02마12**	이*민	경기도 하남시	2023-11-23 18:21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468	46구14**	진*화	서울특별시	2023-11-23 18:25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469	10서95**	오*훈	서울특별시	2023-11-23 18:38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470	96서01**	김*근	경상남도 김해시	2023-11-23 18:40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471	49머76**	김*송	서울특별시	2023-11-23 18:46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472	33루73**	허*순	인천광역시	2023-11-23 19:00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473	16가04**	이*민	경기도 고양시	2023-11-23 19:0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74	42두82**	안*환	서울특별시	2023-11-23 19:09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위반	50,000
475	51무85**	배*희	서울특별시	2023-11-23 19:09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476	109더64**	주*회*그*티*글*벌	경기도 성남시	2023-11-23 19:12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477	34노44**	강*중	경기도 양주시	2023-11-23 19:14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478	35로67**	장*영	경기도 고양시	2023-11-23 19:18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79	24머65**	박*영	경기도 남양주시	2023-11-23 19:25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느산부인과	전용차로위반	50,000
480	서울35아15**	김*래	서울특별시	2023-11-23 19:29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81	51어23**	이*기	서울특별시	2023-11-23 19:37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82	19노79**	정*명	서울특별시	2023-11-23 19:4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83	139나29**	오*영	서울특별시	2023-11-23 19:58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84	53소43**	김*준	서울특별시	2023-11-23 20:00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485	344수96**	이*석	서울특별시	2023-11-23 20:08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86	서울31사73**	길*집	경기도 의정부시	2023-11-23 20:18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487	196오80**	유*주	서울특별시	2023-11-23 20:2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488	21러81**	구*철	서울특별시	2023-11-23 20:2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489	30수51**	조*태	충청남도 예산군	2023-11-23 20:30	공릉동 목예원(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490	26구07**	김*용	경기도 안양시	2023-11-23 20:33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491	서울38아34**	전*천	서울특별시	2023-11-23 20:3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492	329부75**	조*범	경상남도 김해시	2023-11-23 20:43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493	85누73**	(*)*이*푸*	경기도 남양주시	2023-11-23 23:05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494	12누97**	심*구	서울특별시	2023-11-24 02:09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전용차로위반	50,000
495	71보82**	주*회*굿*이*비*	인천광역시	2023-11-24 02:57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60,000
496	45노63**	남*구	경기도 남양주시	2023-11-24 07:25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497	86가50**	이*하	인천광역시	2023-11-24 07:54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498	127저70**	강*모	경기도 고양시	2023-11-24 07:55	반포역~논현역	전용차로위반	50,000
499	24저24**	유*호	서울특별시	2023-11-24 07:57	예일디자인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500	68구68**	사*법*세*예*교*협*	서울특별시	2023-11-24 08:04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01	25너69**	양*갑	경기도 구리시	2023-11-24 08:07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02	28가53**	강*훈	서울특별시	2023-11-24 08:10	고속터미널역~신반포역	전용차로위반	50,000
503	35버98**	김*벽	서울특별시	2023-11-24 08:15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04	157너77**	고*지	서울특별시	2023-11-24 08:25	현충로151	전용차로위반	50,000
505	19누53**	박*옥	경기도 안양시	2023-11-24 08:31	신반포2차아파트~반포3동주민센터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506	317로67**	이*영	서울특별시	2023-11-24 08:32	반포3동주민센터교차로~메이플라워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507	인천85자20**	전*복	인천광역시	2023-11-24 08:33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08	66누67**	박*복	인천광역시	2023-11-24 08:36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09	28서05**	최*희	경기도 부천시	2023-11-24 08:38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10	05수19**	오*민	경기도 안산시	2023-11-24 08:45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511	57러32**	김*육	경기도 부천시	2023-11-24 09:0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	전용차로위반	50,000
512	263가81**	신*숙	경기도 구리시	2023-11-24 09:28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513	65우14**	이*인	서울특별시	2023-11-24 09:32	서초ic~한남ic	전용차로위반	50,000
514	47러92**	박*영	서울특별시	2023-11-24 09:36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15	86두54**	윤*석	인천광역시	2023-11-24 09:3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16	67구76**	김*우	서울특별시	2023-11-24 09:39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517	91무76**	장*재	인천광역시	2023-11-24 10:12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18	40조41**	조*선	경기도 이천시	2023-11-24 10:19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519	08부06**	윤*현	인천광역시	2023-11-24 10:24	상봉동 중랑역 가나안교회 건너편 GS25상봉사랑점	전용차로위반	50,000
520	34주63**	유*재	서울특별시	2023-11-24 11:36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521	서울06거70**	윤*인	인천광역시	2023-11-24 11:50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여의도동)	전용차로위반	60,000
522	서울07나59**	박*식	서울특별시	2023-11-24 11:54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60 (여의도동)	전용차로위반	60,000
523	28우57**	민*식	경기도 동두천시	2023-11-24 12:2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24	08구40**	변*상	경기도 의정부시	2023-11-24 12:45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525	20거89**	오*옥	서울특별시	2023-11-24 12:55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526	189도72**	정*성	서울특별시	2023-11-24 12:58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527	경기32바66**	배*철	경기도 성남시	2023-11-24 13:41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528	52러51**	서*희	경기도 성남시	2023-11-24 13:42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29	41노41**	김*훈	경기도 성남시	2023-11-24 13:43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530	277저76**	Y*N*H*N*F*	경기도 안양시	2023-11-24 13:56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531	95로37**	장*남	인천광역시	2023-11-24 14:29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532	16소02**	강*석	경기도 양주시	2023-11-24 14:38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33	399두29**	강*식	경기도 부천시	2023-11-24 14:55	서울 송파구 잠실동 261	전용차로위반	50,000
534	31누29**	최*희	경기도 수원시	2023-11-24 15:30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535	33가02**	채*우	서울특별시	2023-11-24 15:3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36	397서33**	이*민	인천광역시	2023-11-24 16:29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34 (신사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37	서울31사59**	정*실	서울특별시	2023-11-24 16:3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38	362머23**	조*진	서울특별시	2023-11-24 16:41	휘문고교사거리~대치우성아파트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539	05다65**	김*현	인천광역시	2023-11-24 16:52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540	45가02**	이*희	서울특별시	2023-11-24 16:52	우이교~수유역	전용차로위반	50,000
541	23다59**	김*민	서울특별시	2023-11-24 17:02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542	08가04**	허*숙	경기도 의정부시	2023-11-24 17:12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543	18누91**	윤*진	경기도 남양주시	2023-11-24 17:14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44	서울31사37**	송*우	서울특별시	2023-11-24 17:2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45	247너68**	정*영	세종특별자치시	2023-11-24 17:29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46	368루17**	세*법*셜*택*	서울특별시	2023-11-24 17:39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47	15우39**	주*수	서울특별시	2023-11-24 17:40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48	134루35**	이*혁	서울특별시	2023-11-24 17:44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549	810부25**	오*미자	서울특별시	2023-11-24 17:48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550	235마73**	주*회*지*알*엔*	경기도 남양주시	2023-11-24 17:52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51	53마54**	김*수	경기도 의정부시	2023-11-24 17:53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52	199구96**	이*숙	경기도 안양시	2023-11-24 17:55	공릉동 목예원(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53	52머20**	추*실	경기도 화성시	2023-11-24 17:5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54	27저46**	오*욱	인천광역시	2023-11-24 17:5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55	12소02**	유*희	서울특별시	2023-11-24 17:58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56	228나79**	주*회*볼*노*합*설	경기도 안양시	2023-11-24 18:02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57	228나79**	주*회*볼*노*합*설	경기도 안양시	2023-11-24 18:04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58	05도27**	짱*	경기도 안산시	2023-11-24 18:0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59	19누81**	다*물*주*회*	서울특별시	2023-11-24 18:0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560	91주45**	주*회*사*드*	서울특별시	2023-11-24 18:13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561	52부02**	(*)*이*스*퍼*이*	서울특별시	2023-11-24 18:16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62	248도30**	주*회*알*이*	경기도 남양주시	2023-11-24 18:18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63	서울31바95**	이*우	경기도 안양시	2023-11-24 18:2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64	서울31사64**	김*철	서울특별시	2023-11-24 18:2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65	15러40**	김*기	서울특별시	2023-11-24 18:24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566	376로91**	김*성	서울특별시	2023-11-24 18:25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567	23어17**	이*환	서울특별시	2023-11-24 18:25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568	24머09**	하*경	경기도 양주시	2023-11-24 18:26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569	21소54**	J*A*T*N*	서울특별시	2023-11-24 18:27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570	52너79**	뉴*리*스*리*주*	경기도 고양시	2023-11-24 18:27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71	346주25**	오*근	경기도 포천시	2023-11-24 18:29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572	173어89**	강*규	서울특별시	2023-11-24 18:30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위반	50,000
573	10도68**	J*N*I*H*	경기도 김포시	2023-11-24 18:32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574	174마25**	김*선	서울특별시	2023-11-24 18:37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75	09부07**	임*련	인천광역시	2023-11-24 18:42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576	54마88**	박*우	서울특별시	2023-11-24 18:42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577	27우29**	이*원	서울특별시	2023-11-24 18:42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78	187버86**	김*정	경기도 용인시	2023-11-24 18:42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79	26오20**	유*	경기도 의정부시	2023-11-24 18:43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580	서울성북나03**	이*	서울특별시	2023-11-24 18:44	군자교교차로~군자역	전용차로위반	40,000
581	95고07**	김*일	경기도 의정부시	2023-11-24 18:48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582	163나70**	(*)*엠*노*이*	대전광역시	2023-11-24 18:50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83	10저65**	정*주	경기도 고양시	2023-11-24 18:5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584	25노32**	Q*A*Y*N*N	인천광역시	2023-11-24 18:54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585	296거23**	이*훈	경기도 김포시	2023-11-24 19:02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586	08부47**	주*회*케*티*인*내*날	경기도 김포시	2023-11-24 19:0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587	168주18**	J*A*Y*E*S*R*Y	서울특별시	2023-11-24 19:06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88	157너69**	김*연	경기도 고양시	2023-11-24 19:09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589	24조13**	현*혜	경기도 성남시	2023-11-24 19:1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90	809서94**	김*환	서울특별시	2023-11-24 19:12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591	01구14**	김*화	경기도 남양주시	2023-11-24 19:1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92	93모80**	안*우	경기도 가평군	2023-11-24 19:22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93	32소55**	이*호	서울특별시	2023-11-24 19:23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594	59오17**	주*회*에*제*마*	서울특별시	2023-11-24 19:46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95	241주58**	박*배	경기도 남양주시	2023-11-24 19:47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느산부인과	전용차로위반	50,000
596	41더61**	이*일	서울특별시	2023-11-24 19:54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97	88마23**	김*자	경기도 포천시	2023-11-24 19:57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598	61로11**	김*수	서울특별시	2023-11-24 20:0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599	48서40**	김*호	서울특별시	2023-11-24 20:04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00	31버19**	이*영	경기도 구리시	2023-11-24 20:0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601	149어73**	(*)*들*농*회*법*	경기도 평택시	2023-11-24 20:14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02	40러04**	이*원	서울특별시	2023-11-24 20:2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03	서울32자18**	봉*근	서울특별시	2023-11-24 20:2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04	55보19**	강*희	경기도 남양주시	2023-11-24 20:24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05	15우75**	최*구	서울특별시	2023-11-24 20:25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06	13부17**	이*애	경기도 부천시	2023-11-24 20:30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607	212러94**	기*송	전라북도 전주시	2023-11-24 20:34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608	18버26**	이*철	전라남도 장성군	2023-11-24 20:3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609	149다51**	장*진	서울특별시	2023-11-24 20:38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610	149다51**	장*진	서울특별시	2023-11-24 20:41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11	21너23**	여*동	서울특별시	2023-11-24 20:42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612	147구22**	윤*우	서울특별시	2023-11-24 20:44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613	73머68**	정*사	서울특별시	2023-11-24 20:4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60,000
614	55마90**	장*석	경기도 안양시	2023-11-24 21:12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615	15서62**	곽*빈	서울특별시	2023-11-24 23:59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616	57도95**	이*영	경기도 군포시	2023-11-25 00:12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17	22머61**	하*승	경기도 동두천시	2023-11-25 01:44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느산부인과	전용차로위반	50,000
618	서울31자46**	배*우	서울특별시	2023-11-25 06:08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619	82소97**	석*섭	서울특별시	2023-11-25 08:26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620	159버79**	강*희	경기도 오산시	2023-11-25 08:51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21	159버79**	강*희	경기도 오산시	2023-11-25 08:52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22	159버79**	강*희	경기도 오산시	2023-11-25 08:53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23	29서82**	정*열	서울특별시	2023-11-25 08:5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전용차로위반	50,000
624	48서05**	기*환	경기도 구리시	2023-11-25 09:17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625	93오51**	주*회*에*케*하*에*지	경기도 동두천시	2023-11-25 09:21	상봉동 중랑역 가나안교회 건너편 GS25상봉사랑점	전용차로위반	50,000
626	48두33**	천*영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2023-11-25 09:35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느산부인과	전용차로위반	50,000
627	02무18**	한*선	서울특별시	2023-11-25 10:05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28	05루75**	박*욱	대전광역시	2023-11-25 10:27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29	05루75**	박*욱	대전광역시	2023-11-25 10:29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630	05다56**	전*혜	서울특별시	2023-11-25 10: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0	전용차로위반	50,000
631	379주82**	김*민	인천광역시	2023-11-25 11:13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632	07소32**	조*혜	서울특별시	2023-11-25 11:27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33	144나95**	김*정	서울특별시	2023-11-25 11:44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634	서울32사70**	이*직	서울특별시	2023-11-25 12:34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635	107마98**	변*석	서울특별시	2023-11-25 13:55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636	29버26**	문*희	경기도 의정부시	2023-11-25 14:08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느산부인과	전용차로위반	50,000
637	25고43**	서*수	울산광역시	2023-11-25 14:20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38	17주99**	최*영	서울특별시	2023-11-25 14:50	홍제역~홍은사거리	전용차로위반	50,000
639	서울84자32**	박*열	서울특별시	2023-11-25 14:58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640	14가72**	위*익	경기도 양주시	2023-11-25 14:58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641	55도57**	전*현	서울특별시	2023-11-25 14:58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642	252다40**	서*나	충청북도 청주시	2023-11-25 15:00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643	서울31사75**	이*경	경기도 시흥시	2023-11-25 15:43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644	291더31**	이*릭스	인천광역시	2023-11-25 15:47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45	91모26**	김*주	경기도 양주시	2023-11-25 15:48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646	15나09**	구*환	경기도 광주시	2023-11-25 16:12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47	15나09**	구*환	경기도 광주시	2023-11-25 16:13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48	101다24**	현*수	서울특별시	2023-11-25 16:40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느산부인과	전용차로위반	50,000
649	279구70**	변*윤	대구광역시	2023-11-25 16:42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50	236머56**	나*희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2023-11-25 16:53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651	01저09**	김*범	전라남도 나주시	2023-11-25 17:32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52	53우61**	윤*원	전라북도 군산시	2023-11-25 17:33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53	43두50**	심*연	경기도 용인시	2023-11-25 17:34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54	53우61**	윤*원	전라북도 군산시	2023-11-25 17:34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55	53우61**	윤*원	전라북도 군산시	2023-11-25 17:35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56	57누91**	김*준	경기도 수원시	2023-11-25 17:48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57	09러12**	유*희	서울특별시	2023-11-25 17:56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658	63두86**	최*식	경기도 의정부시	2023-11-25 18:07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659	05두22**	백*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2023-11-25 18:15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60	05두22**	백*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2023-11-25 18:17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61	05두22**	백*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2023-11-25 18:18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62	33조83**	박*영	서울특별시	2023-11-25 19:10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63	33조83**	박*영	서울특별시	2023-11-25 19:11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64	175허19**	(*)*일*트*	인천광역시	2023-11-25 19:30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665	13거31**	박*석	경기도 안양시	2023-11-25 20:09	시흥IC~금천우체국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666	서울35아17**	이*균	서울특별시	2023-11-25 20:47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67	서울35아17**	이*균	서울특별시	2023-11-25 20:49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68	61노18**	최*오	경상북도 구미시	2023-11-25 21:35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669	10서67**	A*G*I*U*	서울특별시	2023-11-25 22:38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670	65더55**	Z*A*G*O*G*I*	서울특별시	2023-11-25 23:02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671	184소32**	주*회*원*스*터*라*즈	서울특별시	2023-11-26 00:04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672	서울89자72**	강*한	서울특별시	2023-11-26 00:17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673	125누43**	박*규	충청북도 충주시	2023-11-26 00:54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674	160허18**	(*)*카	경기도 파주시	2023-11-26 01:18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675	68나89**	조*울	서울특별시	2023-11-26 03:35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676	816나15**	(*)*서*프*비	서울특별시	2023-11-26 05:17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677	96머75**	이*수	인천광역시	2023-11-26 05:50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678	231부51**	김*선	서울특별시	2023-11-26 06:07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679	249로99**	최*희	충청남도 홍성군	2023-11-26 07:21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680	37오36**	남*우	경기도 의왕시	2023-11-26 07:33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81	09로37**	신*철	서울특별시	2023-11-26 07:42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682	333부18**	김*영	경상북도 안동시	2023-11-26 07:48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83	333부18**	김*영	경상북도 안동시	2023-11-26 07:49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84	110마25**	손*수	인천광역시	2023-11-26 08:07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685	244루17**	이*일	서울특별시	2023-11-26 08:56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86	244루17**	이*일	서울특별시	2023-11-26 08:57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87	989조42**	김*수	경기도 의정부시	2023-11-26 09:33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60,000
688	127무88**	함*현	경기도 시흥시	2023-11-26 10:01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89	303구46**	최*진	서울특별시	2023-11-26 11:03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90	23머03**	김*흥	경기도 화성시	2023-11-26 11:03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91	65더09**	M*L*S*J*M*S*.	대구광역시	2023-11-26 11:47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92	33더05**	윤*경	경기도 성남시	2023-11-26 12:25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693	20부51**	박*석	충청남도 홍성군	2023-11-26 13:15	한남IC~잠원IC	전용차로위반	50,000
694	143수80**	(*)*스*지*룹	인천광역시	2023-11-26 13:23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95	101러12**	유*근	서울특별시	2023-11-26 13:24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696	63부95**	주*회*트*이*엑*콘*넨*	서울특별시	2023-11-26 13:25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97	101러12**	유*근	서울특별시	2023-11-26 13:26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98	15너72**	N*U*E*T*A*H*O*	서울특별시	2023-11-26 14:30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99	37더30**	장*지	서울특별시	2023-11-26 16:34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00	37더30**	장*지	서울특별시	2023-11-26 16:36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01	37더30**	장*지	서울특별시	2023-11-26 16:37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02	11너07**	(*)*울*	서울특별시	2023-11-26 17:00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03	11너07**	(*)*울*	서울특별시	2023-11-26 17:01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04	61우87**	채*묵	서울특별시	2023-11-26 17:18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05	32수03**	이*호	전라북도 전주시	2023-11-26 17:29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06	49어31**	K*M*L*I*T*K*I*O*I*H	충청남도 아산시	2023-11-26 19:19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707	72누63**	정*철	인천광역시	2023-11-26 20:25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60,000
708	142로75**	이*효	서울특별시	2023-11-26 20:32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09	333모46**	이*안	경기도 안양시	2023-11-27 05:25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느산부인과	전용차로위반	50,000
710	05어62**	조*현	서울특별시	2023-11-27 06:32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711	338오29**	유*석	울산광역시	2023-11-27 06:42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12	21루70**	정*록	서울특별시	2023-11-27 07:1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713	서울31자16**	전*권	서울특별시	2023-11-27 07:31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14	809소60**	박*현	전라남도 화순군	2023-11-27 07:53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15	80마89**	한*흥	서울특별시	2023-11-27 07:5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16	268모22**	김*경	경기도 오산시	2023-11-27 08:00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17	서울98바99**	권*철	서울특별시	2023-11-27 08:27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60,000
718	273서50**	신*윤	서울특별시	2023-11-27 08:30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19	30루94**	김*우	경기도 수원시	2023-11-27 08:46	몽촌토성역~송파구청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720	23버01**	김*윤	경기도 시흥시	2023-11-27 09:00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721	116저78**	최*아	서울특별시	2023-11-27 09:02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22	57러32**	김*육	경기도 부천시	2023-11-27 09:07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	전용차로위반	50,000
723	86가50**	송*영	서울특별시	2023-11-27 09:13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위반	50,000
724	39고49**	안*정	경기도 구리시	2023-11-27 09:16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25	32가63**	한*현	서울특별시	2023-11-27 09:18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26	서울32자65**	김*남	경기도 구리시	2023-11-27 09:23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27	16버28**	송*진	서울특별시	2023-11-27 09:28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28	160소41**	주*덕	서울특별시	2023-11-27 09:29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729	86부33**	유*숙	경기도 남양주시	2023-11-27 09:35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30	006가93**	김*재	경기도 부천시	2023-11-27 09:3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60,000
731	63버74**	김*호	서울특별시	2023-11-27 09:37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732	49조60**	윤*민	서울특별시	2023-11-27 09:40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733	09누86**	송*근	서울특별시	2023-11-27 09:43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734	65우45**	조*성	충청남도 천안시	2023-11-27 09:43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735	20주11**	(*)*앤*테*	경기도 김포시	2023-11-27 09:4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36	37버98**	지*현	충청남도 아산시	2023-11-27 09:50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37	37버98**	지*현	충청남도 아산시	2023-11-27 09:53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38	378두46**	오*미	경기도 남양주시	2023-11-27 10:04	종합운동장역~삼성역	전용차로위반	50,000
739	80루02**	채*선	서울특별시	2023-11-27 10:54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40	서울31아15**	한*원	서울특별시	2023-11-27 10:56	종합운동장사거리~잠실새내역	전용차로위반	50,000
741	58마97**	안*범	서울특별시	2023-11-27 11:10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742	16우18**	S*R*A*L*N*B*N*I*O*A*E*S*N*	서울특별시	2023-11-27 11:20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743	07다34**	사*준	서울특별시	2023-11-27 11:35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744	65더09**	M*L*S*J*M*S*.	대구광역시	2023-11-27 12:03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45	65더09**	M*L*S*J*M*S*.	대구광역시	2023-11-27 12:04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46	52두23**	정*식	인천광역시	2023-11-27 13:12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느산부인과	전용차로위반	50,000
747	18보79**	K*U*A*B*R*I*V*B*U*B*K*I	경기도 화성시	2023-11-27 13:34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48	40나61**	신*운	경기도 의왕시	2023-11-27 13:54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49	225노61**	이*기	경기도 안양시	2023-11-27 13:59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50	24라16**	김*관	대전광역시	2023-11-27 14:05	상봉동 중랑역 가나안교회 건너편 GS25상봉사랑점	전용차로위반	50,000
751	19저08**	박*원	서울특별시	2023-11-27 14:1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52	69오42**	김*운	경기도 포천시	2023-11-27 14:11	상봉동 중랑역 가나안교회 건너편 GS25상봉사랑점	전용차로위반	50,000
753	서울35바59**	임*택	서울특별시	2023-11-27 14:37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754	29루73**	김*진	서울특별시	2023-11-27 14:42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55	08라55**	오*민	대구광역시	2023-11-27 14:50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56	802우68**	최*락	경기도 광주시	2023-11-27 14:54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757	124러37**	이*형	경기도 의왕시	2023-11-27 15:55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58	49너31**	김*관	서울특별시	2023-11-27 16:2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59	46부94**	최*열	서울특별시	2023-11-27 16: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27	전용차로위반	50,000
760	184두39**	성*호	경기도 광주시	2023-11-27 16:39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61	811구92**	안*현	경기도 가평군	2023-11-27 16:4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62	56서76**	김*순	서울특별시	2023-11-27 16:57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63	241조18**	정*윤	인천광역시	2023-11-27 17:15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764	52우35**	김*	서울특별시	2023-11-27 17:16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765	16고37**	정*복	경기도 성남시	2023-11-27 17:16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766	52우35**	김*	서울특별시	2023-11-27 17:18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67	31고23**	박*수	경기도 남양주시	2023-11-27 17:25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68	43더01**	박*찬	서울특별시	2023-11-27 17:29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769	서울84사18**	남*철	경기도 남양주시	2023-11-27 17:41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70	158가58**	전*능	서울특별시	2023-11-27 17:42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771	149오56**	이*표	경기도 성남시	2023-11-27 17:44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72	30무22**	박*준	서울특별시	2023-11-27 17:45	봉천중앙시장앞	전용차로위반	50,000
773	서울31사73**	길*집	경기도 의정부시	2023-11-27 17:48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774	13우74**	정*원	전라남도 무안군	2023-11-27 17:49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775	33보72**	김*영	충청북도 청주시	2023-11-27 17:58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776	190머90**	이*숙	경기도 남양주시	2023-11-27 18:09	공릉동 목예원(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77	97수48**	전*숙	인천광역시	2023-11-27 18:14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778	210조45**	안*길	서울특별시	2023-11-27 18:32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79	63저49**	김*아	인천광역시	2023-11-27 18:3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780	08오13**	여*징	전라남도 순천시	2023-11-27 18:44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위반	50,000
781	13노51**	김*수	서울특별시	2023-11-27 18:47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82	01누17**	최*식	울산광역시	2023-11-27 18:4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783	138모65**	이*진	경기도 남양주시	2023-11-27 18:48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784	35러29**	최*일	서울특별시	2023-11-27 18:56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85	08노04**	김*현	서울특별시	2023-11-27 19:0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86	140두15**	(*)*엔*컴	서울특별시	2023-11-27 19:08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787	14머57**	김*환	서울특별시	2023-11-27 19:0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88	106저26**	박*나	울산광역시	2023-11-27 19:11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89	13수33**	김*영	경기도 성남시	2023-11-27 19:21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790	20오14**	임*규	서울특별시	2023-11-27 19:25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791	203루27**	이*실	경기도 양평군	2023-11-27 19:27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92	서울31사85**	장*명	경기도 의정부시	2023-11-27 19:42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위반	50,000
793	56누49**	양*구	경기도 남양주시	2023-11-27 19:47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794	07머36**	윤*호	서울특별시	2023-11-27 19:4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795	46더85**	서*희	서울특별시	2023-11-27 19:50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위반	50,000
796	서울81배50**	김*재	서울특별시	2023-11-27 19:51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797	192더25**	채*원	서울특별시	2023-11-27 19:56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798	83우72**	(*)*리*스*스*	경기도 화성시	2023-11-27 20:04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799	145소99**	이*정	인천광역시	2023-11-27 20:06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800	83우72**	(*)*리*스*스*	경기도 화성시	2023-11-27 20:07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01	332너92**	조*환	경기도 고양시	2023-11-27 20:10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802	303저11**	신*호	경기도 화성시	2023-11-27 20:1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803	379노59**	최*현	서울특별시	2023-11-27 20:12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04	38러56**	조*희	서울특별시	2023-11-27 20:12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805	14나05**	황*주	경기도 화성시	2023-11-27 20:29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06	62도53**	최*연	서울특별시	2023-11-27 20:29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807	202노68**	고*희	서울특별시	2023-11-27 20:30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08	238소81**	김*철	서울특별시	2023-11-27 20:32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09	서울31사50**	김*섭	서울특별시	2023-11-27 20:45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10	14더31**	김*빈	서울특별시	2023-11-27 20:49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811	09마09**	주*회*라*르*퍼*	경기도 용인시	2023-11-27 22:12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812	139서76**	신*주	경상남도 진주시	2023-11-27 22:48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813	42누98**	김*민	서울특별시	2023-11-27 23:19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814	47오70**	김*훈	서울특별시	2023-11-28 00:40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815	334로59**	전*성	서울특별시	2023-11-28 04:16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816	34도06**	김*선	인천광역시	2023-11-28 05:59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817	387소32**	오*영	경기도 성남시	2023-11-28 06:30	상봉동 중랑역 가나안교회 건너편 GS25상봉사랑점	전용차로위반	50,000
818	94어26**	김*섭	서울특별시	2023-11-28 06:36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819	58러73**	박*호	경기도 남양주시	2023-11-28 07:5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20	58노75**	김*안	경기도 의정부시	2023-11-28 08:04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821	경기06오85**	최*수	경기도 남양주시	2023-11-28 08:06	육사야구장~화랑대사거리	전용차로위반	60,000
822	58수14**	김*혁	경기도 고양시	2023-11-28 08:08	은평뉴타운10단지~구파발사거리	전용차로위반	50,000
823	서울87자96**	정*석	서울특별시	2023-11-28 08:16	성산2교교차로~마포구청역	전용차로위반	50,000
824	367마97**	김*정	서울특별시	2023-11-28 08:17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25	83모95**	주*회*엠*스*퍼*	서울특별시	2023-11-28 08:19	육사야구장~화랑대사거리	전용차로위반	50,000
826	67두41**	김*우	서울특별시	2023-11-28 08:19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27	27로05**	S*A*S*Y*	서울특별시	2023-11-28 08:29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828	66노39**	오*환	인천광역시	2023-11-28 08:3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829	191마98**	홍*진	서울특별시	2023-11-28 08:3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830	32라08**	박*원	서울특별시	2023-11-28 08:45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831	122나94**	박*천	인천광역시	2023-11-28 08:49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832	17버32**	최*용	서울특별시	2023-11-28 08:50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833	30우29**	안*옥	서울특별시	2023-11-28 08:53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34	서울32아41**	이*열	서울특별시	2023-11-28 09:15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835	235거96**	이*규	서울특별시	2023-11-28 09:2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36	90저57**	윤*섭	서울특별시	2023-11-28 09:33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837	119모72**	이*훈	경기도 의정부시	2023-11-28 09:36	군자교~군자역	전용차로위반	50,000
838	67노58**	주*현	서울특별시	2023-11-28 09:44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839	375루25**	엄*하	경기도 성남시	2023-11-28 09:4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40	25로39**	박*선	전라북도 고창군	2023-11-28 10:52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41	100노18**	박*운	경기도 남양주시	2023-11-28 11:39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42	25부21**	정*	서울특별시	2023-11-28 11:4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전용차로위반	50,000
843	225오39**	신*식	인천광역시	2023-11-28 11:41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44	225오39**	신*식	인천광역시	2023-11-28 11:42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45	50부87**	한*현	서울특별시	2023-11-28 11:42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46	52저70**	송*경	서울특별시	2023-11-28 12:49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847	390어14**	최*정	서울특별시	2023-11-28 13:0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48	33구78**	최*일	전라북도 부안군	2023-11-28 13:07	수색동 경의중앙선 수색역1번출구 공영주차장	전용차로위반	50,000
849	91모74**	심*재	경기도 양주시	2023-11-28 13:33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850	279누41**	김*섭	서울특별시	2023-11-28 13:4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51	경기79사45**	미*로*광*식*사	경기도 동두천시	2023-11-28 14:10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위반	60,000
852	서울32바35**	조*성	서울특별시	2023-11-28 14:33	영등포구 신송빌딩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853	16서50**	이*완	경기도 의정부시	2023-11-28 14:57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854	경기95자78**	정*효	경기도 고양시	2023-11-28 15:1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55	15무26**	이*철	서울특별시	2023-11-28 15:33	은천삼거리~봉천로사거리	전용차로위반	50,000
856	13조43**	(*)*만*이*팀	서울특별시	2023-11-28 15:45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857	262나20**	민*우	서울특별시	2023-11-28 16:05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58	72거54**	정*호	경기도 성남시	2023-11-28 16:44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67-2	전용차로위반	60,000
859	14허98**	스*트*트*(*)	경기도 남양주시	2023-11-28 17:1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60	35소34**	김*숙	경기도 고양시	2023-11-28 17:34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861	43마28**	이*희	충청남도 공주시	2023-11-28 17:3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62	18부17**	백*원	서울특별시	2023-11-28 17:4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63	47두57**	이*원	서울특별시	2023-11-28 17:41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64	16도29**	김*욱	서울특별시	2023-11-28 17:4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865	806어59**	최*문	경기도 양평군	2023-11-28 17:48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866	서울32사44**	황*복	서울특별시	2023-11-28 17:5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867	41서63**	김*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23-11-28 18:11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868	27더89**	김*현	서울특별시	2023-11-28 18:1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69	167저12**	윤*빈	서울특별시	2023-11-28 18:20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870	69도27**	남*선	인천광역시	2023-11-28 18:29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871	13두81**	성*찬	서울특별시	2023-11-28 18:3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72	25로62**	이*	서울특별시	2023-11-28 18:34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73	380두78**	유*희	서울특별시	2023-11-28 18:51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874	201도73**	강*희	서울특별시	2023-11-28 18:51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75	133로19**	김*정	서울특별시	2023-11-28 18:5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76	13부70**	(*)*코*림	경기도 시흥시	2023-11-28 19:0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77	56고91**	이*일	서울특별시	2023-11-28 19:09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878	경기93배38**	김*기	경기도 김포시	2023-11-28 19:1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879	31모10**	정*서	경상남도 양산시	2023-11-28 19:20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880	43우02**	조*주	서울특별시	2023-11-28 19:2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881	01부24**	J*N*I*G*U*	경기도 김포시	2023-11-28 19:30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82	14다94**	정*숙	서울특별시	2023-11-28 19:33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83	30노98**	조*희	경기도 광주시	2023-11-28 19:33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884	368루17**	세*법*셜*택*	서울특별시	2023-11-28 19:45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85	50러47**	이*혜	서울특별시	2023-11-28 19:50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86	231모38**	정*엽	경기도 수원시	2023-11-28 19:5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87	46두12**	김*옥	전라남도 순천시	2023-11-28 20:06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888	02나51**	이*현	서울특별시	2023-11-28 20:11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위반	50,000
889	35도30**	안*완	서울특별시	2023-11-28 20:1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90	213저62**	박*준	인천광역시	2023-11-28 20:18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891	266무29**	최*주	인천광역시	2023-11-28 20:19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92	11부50**	대*불*조*종*미*사	인천광역시	2023-11-28 20:20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893	서울32아33**	최*규	서울특별시	2023-11-28 20:22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894	65루53**	복*규	경기도 고양시	2023-11-28 20:23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95	24부52**	노*근	서울특별시	2023-11-28 20:25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96	서울31사54**	정*복	서울특별시	2023-11-28 20:28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897	26소12**	추*물	서울특별시	2023-11-28 20:30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898	14수98**	박*희	경기도 의왕시	2023-11-28 20:34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899	09버84**	이*님	서울특별시	2023-11-28 20:3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900	126머32**	하*민	서울특별시	2023-11-28 20:41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901	서울32아30**	원*호	서울특별시	2023-11-28 20:46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902	306나53**	길*준	경기도 용인시	2023-11-29 04:08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903	81오02**	유*형	서울특별시	2023-11-29 05:46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904	81가52**	김*불	경기도 광주시	2023-11-29 07:2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905	57두66**	김*형	서울특별시	2023-11-29 07:37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906	61수90**	박*길	경기도 평택시	2023-11-29 07:4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907	66저51**	L*H*G*A*U*E*B*D*A*H*U*E*	인천광역시	2023-11-29 08:05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908	46루93**	김*홍	서울특별시	2023-11-29 08:29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909	30라71**	정*권	경기도 고양시	2023-11-29 08:31	은평지문고~구파발사거리	전용차로위반	50,000
910	서울32자60**	조*섭	서울특별시	2023-11-29 08:54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위반	50,000
911	23가11**	박*규	서울특별시	2023-11-29 09:01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912	서울31사48**	호*진	서울특별시	2023-11-29 09:0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913	서울86자43**	양*복	경기도 의정부시	2023-11-29 09:14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914	226머15**	S*A*I*E*O*D*S*A*B*K	충청남도 논산시	2023-11-29 09:23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915	91누52**	이*모	경기도 안양시	2023-11-29 09:2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916	282저60**	박*연	서울특별시	2023-11-29 09:27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917	67구76**	김*우	서울특별시	2023-11-29 09:39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918	50소99**	(*)*이*기*트	경기도 의왕시	2023-11-29 09:4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919	34보06**	임*림	경기도 구리시	2023-11-29 09:50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920	19수99**	K*D*S*U*U*H*N*Y*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2023-11-29 10:27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921	32오39**	김*한	경기도 고양시	2023-11-29 10:43	종로2가교차로~종로3가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922	37거29**	표*석	경기도 남양주시	2023-11-29 10:4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923	37너13**	김*은	인천광역시	2023-11-29 11:14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924	46라06**	이*정	서울특별시	2023-11-29 11:32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925	서울38아28**	정*수	서울특별시	2023-11-29 11:47	영등포구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926	11나73**	정*숙	인천광역시	2023-11-29 12:43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전용차로위반	50,000
927	85러81**	윤*훈	인천광역시	2023-11-29 13:27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928	261조91**	이*진	경기도 평택시	2023-11-29 13:27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929	13다84**	이*자	서울특별시	2023-11-29 14:09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930	807저65**	이*현	서울특별시	2023-11-29 14:10	영등포구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931	30수97**	박*일	경기도 남양주시	2023-11-29 14:1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932	서울38아55**	유*범	경기도 김포시	2023-11-29 16:15	영등포구 롯데캐슬엠파이어 앞	전용차로위반	50,000
933	170노84**	S*E*Y*N*F*N	서울특별시	2023-11-29 16:28	압구정로데오역~성수대교남단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934	01조18**	이*관	서울특별시	2023-11-29 17:2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935	04더18**	김*희	경기도 안산시	2023-11-29 17:2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936	126라86**	이*훈	서울특별시	2023-11-29 17:3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937	235루41**	오*석	경기도 수원시	2023-11-29 17:34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938	67모87**	권*돈	서울특별시	2023-11-29 17:36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939	154보45**	이*기	경기도 남양주시	2023-11-29 17:53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940	80수23**	안*호	경기도 광주시	2023-11-29 17:54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941	15노31**	한*진	서울특별시	2023-11-29 17:56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942	235루41**	오*석	경기도 수원시	2023-11-29 18:0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943	41구05**	황*한	대구광역시	2023-11-29 18:03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위반	50,000
944	99서69**	박*희	서울특별시	2023-11-29 18: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전용차로위반	60,000
945	193소67**	송*규	서울특별시	2023-11-29 18:17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946	서울14라52**	이*화	경기도 의정부시	2023-11-29 18:22	공릉동 목예원(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60,000
947	서울31바69**	최*근	경기도 김포시	2023-11-29 18:30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948	131러36**	장*미	경기도 의정부시	2023-11-29 18:30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949	09로97**	김*란	서울특별시	2023-11-29 18:30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950	306더15**	박*용	서울특별시	2023-11-29 18:31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951	10보39**	진*람	서울특별시	2023-11-29 18:3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952	41구05**	황*한	대구광역시	2023-11-29 18:45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953	171노52**	안*환	서울특별시	2023-11-29 18:4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954	20모72**	이*칠	서울특별시	2023-11-29 18:54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955	51고62**	이*승	경기도 화성시	2023-11-29 18:55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956	47수78**	박*애	울산광역시	2023-11-29 18:5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957	92가02**	김*일	경기도 의정부시	2023-11-29 18:58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958	100다98**	박*관	경기도 남양주시	2023-11-29 19:00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959	234루41**	김*정	서울특별시	2023-11-29 19:03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960	서울31사62**	이*형	서울특별시	2023-11-29 19:05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961	34조29**	임*규	서울특별시	2023-11-29 19:06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962	36루57**	이*한	서울특별시	2023-11-29 19:09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963	58너10**	박*자	서울특별시	2023-11-29 19:12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964	13거95**	김*형	경기도 고양시	2023-11-29 19:17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965	06로51**	김*아	서울특별시	2023-11-29 19:18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966	238우61**	김*석	경기도 수원시	2023-11-29 19:26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위반	50,000
967	서울55마35**	박*구	서울특별시	2023-11-29 19:2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968	서울31자66**	최*기	서울특별시	2023-11-29 19:2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969	39오35**	오*승	경기도 의정부시	2023-11-29 19:32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970	24머76**	한*곤	경기도 안양시	2023-11-29 19:50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971	46오33**	김*한	서울특별시	2023-11-29 19:5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972	43로66**	박*원	서울특별시	2023-11-29 19:5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973	10소12**	박*은	서울특별시	2023-11-29 20:00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974	177구31**	배*경	경기도 광주시	2023-11-29 20:0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975	서울31아29**	안*국	경기도 의정부시	2023-11-29 20:08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976	67마73**	최*동	전라남도 무안군	2023-11-29 20:12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977	376더88**	양*갑	서울특별시	2023-11-29 20:1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978	148소83**	김*규	서울특별시	2023-11-29 20:1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979	05우08**	심*호	서울특별시	2023-11-29 20:28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980	24머49**	(*)*윌*듀	경기도 용인시	2023-11-29 20:32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981	249노51**	문*경	경기도 하남시	2023-11-29 20:32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982	서울84자10**	김*우	서울특별시	2023-11-29 20:36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983	54고65**	송*영	경기도 하남시	2023-11-29 20:4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984	03두73**	정*용	서울특별시	2023-11-29 20:4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985	서울32사84**	김*관	경기도 안양시	2023-11-29 20:5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986	56너67**	김*언	서울특별시	2023-11-29 23:35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987	89고17**	주*회*가*트*이*	경기도 시흥시	2023-11-30 03:28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988	280오62**	문*희	충청남도 천안시	2023-11-30 06:18	서울역 앞 버스정류장	전용차로위반	50,000
989	172거89**	W*N*O*G*U*	서울특별시	2023-11-30 06:36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전용차로위반	50,000
990	62루43**	유*한	서울특별시	2023-11-30 07:2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991	97어96**	신*현	경기도 광주시	2023-11-30 07:54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992	334수88**	고*정	경기도 하남시	2023-11-30 08:15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993	106거80**	최*숙	서울특별시	2023-11-30 08:25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994	24저66**	김*원	경기도 남양주시	2023-11-30 08:34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995	31어02**	구*길	인천광역시	2023-11-30 08:38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996	248저84**	공*준	서울특별시	2023-11-30 08:40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997	258서65**	장*수	서울특별시	2023-11-30 08:40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998	166나87**	노*법*지*	서울특별시	2023-11-30 08:4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999	서울36바15**	박*수	경기도 의정부시	2023-11-30 09:06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1000	53가46**	김*한	서울특별시	2023-11-30 09:22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위반	50,000
1001	03나27**	박*임	서울특별시	2023-11-30 09:28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1002	92도67**	최*호	서울특별시	2023-11-30 09:3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003	19고93**	이*환	서울특별시	2023-11-30 09:46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1004	서울31자19**	김*도	서울특별시	2023-11-30 09:50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1005	서울33바62**	스*일*시*식*사	서울특별시	2023-11-30 10:2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006	경기53바42**	최*설	충청남도 부여군	2023-11-30 10:26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007	91수19**	조*철	서울특별시	2023-11-30 10:29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1008	48라08**	박*균	충청남도 아산시	2023-11-30 10:58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009	107라76**	김*성	경기도 평택시	2023-11-30 11:20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010	238수58**	방*훈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2023-11-30 12:00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1011	397조34**	김*남	서울특별시	2023-11-30 12:1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012	서울38아28**	박*두	서울특별시	2023-11-30 12:15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여의도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013	28마37**	김*동	경기도 하남시	2023-11-30 13:04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1014	80라26**	박*환	경기도 성남시	2023-11-30 13:22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1015	23너05**	이*환	전라북도 군산시	2023-11-30 13:24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016	서울89자63**	박*우	서울특별시	2023-11-30 13:26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017	28수53**	김*일	경기도 안양시	2023-11-30 13:47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018	21주28**	홍*재	경기도 화성시	2023-11-30 13:4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019	28수53**	김*일	경기도 안양시	2023-11-30 13:48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020	178도81**	주*회*에*지	경기도 수원시	2023-11-30 13:50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2 (여의도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021	22도61**	주*인	서울특별시	2023-11-30 13:52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1022	178도81**	주*회*에*지	경기도 수원시	2023-11-30 14:19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1023	87루96**	손*권	경기도 양주시	2023-11-30 14:19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024	50고56**	장*환	인천광역시	2023-11-30 14:45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1025	26더01**	(*)*리*이*레*	서울특별시	2023-11-30 15:00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026	26더01**	(*)*리*이*레*	서울특별시	2023-11-30 15:01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027	26더01**	(*)*리*이*레*	서울특별시	2023-11-30 15:02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028	14나95**	조*순	서울특별시	2023-11-30 15:07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1029	서울87자53**	위*환	서울특별시	2023-11-30 15:10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1030	333노42**	김*석	서울특별시	2023-11-30 15:11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031	23마85**	주*회*준*터*셔*	경기도 성남시	2023-11-30 15:26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1032	33무23**	Z*A*Y*N*	서울특별시	2023-11-30 15:26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1033	경기88바89**	주*회*천*운*	경기도 구리시	2023-11-30 15:42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1034	398다16**	유*환	경기도 광주시	2023-11-30 15:45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위반	50,000
1035	125호35**	(*)*로*터*	서울특별시	2023-11-30 16:1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036	188더41**	이*호	서울특별시	2023-11-30 16:42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1037	59저52**	오*규	경기도 성남시	2023-11-30 17:15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1038	133고16**	이*준	서울특별시	2023-11-30 17:1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1039	05버60**	최*호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2023-11-30 17:1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1040	서울32자51**	박*복	서울특별시	2023-11-30 17:22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041	03누54**	주*회*동*씨*코*아	경기도 구리시	2023-11-30 17:2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042	24머62**	박*훈	경기도 남양주시	2023-11-30 17:31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043	57너73**	김*민	서울특별시	2023-11-30 17:32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044	64거99**	조*영	경기도 안양시	2023-11-30 17:36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1045	394보84**	메*룩*(*)	서울특별시	2023-11-30 17:47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046	57노55**	허*철	서울특별시	2023-11-30 17:49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1047	36마79**	김*연	인천광역시	2023-11-30 17:54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1048	02구75**	이*국	인천광역시	2023-11-30 17:56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1049	62수26**	J*R*A*M*J*O*유*주*	서울특별시	2023-11-30 18:0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1050	41주43**	김*숙	경기도 고양시	2023-11-30 18:0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위반	50,000
1051	141너54**	안*훈	서울특별시	2023-11-30 18:08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1052	43수33**	전*군	서울특별시	2023-11-30 18:11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위반	50,000
1053	48고78**	최*원	서울특별시	2023-11-30 18:1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054	서울31사22**	박*운	서울특별시	2023-11-30 18:12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1055	28로01**	김*호	경기도 평택시	2023-11-30 18:15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056	34조65**	이*기	경기도 남양주시	2023-11-30 18:16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1057	94나36**	김*조	서울특별시	2023-11-30 18:17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058	15우37**	김*숙	경기도 파주시	2023-11-30 18:17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059	161누52**	백*혜	서울특별시	2023-11-30 18:23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060	68누04**	한*혁	서울특별시	2023-11-30 18:2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061	서울31자43**	김*정	경기도 시흥시	2023-11-30 18:41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062	78로92**	김*경	경기도 광명시	2023-11-30 18:42	석수IC~기아대교앞교차로	전용차로위반	60,000
1063	17부39**	J*A*G*I*L*N	경기도 안산시	2023-11-30 18:44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064	93거05**	(*)*나*조	경기도 구리시	2023-11-30 18:46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065	서울31자37**	이*행	서울특별시	2023-11-30 18:4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066	16오31**	오*원	경기도 양주시	2023-11-30 18:48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067	20다62**	김*석	전라북도 전주시	2023-11-30 18:51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1068	394부59**	김*령	서울특별시	2023-11-30 18:53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1069	34우03**	김*희	경기도 의정부시	2023-11-30 18:54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1070	04오95**	이*경	인천광역시	2023-11-30 19:02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071	50가29**	J*A*G*E*G*H*N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2023-11-30 19:05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위반	50,000
1072	19마97**	황*학	인천광역시	2023-11-30 19:06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1073	33구01**	조*찬	서울특별시	2023-11-30 19:18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위반	50,000
1074	323루58**	이*철	경상북도 고령군	2023-11-30 19:19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1075	서울31바70**	유*치	서울특별시	2023-11-30 19:22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076	376더88**	양*갑	서울특별시	2023-11-30 19:2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077	20도65**	주*회*티*지*축*사*소	경기도 이천시	2023-11-30 19:24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078	323루58**	이*철	경상북도 고령군	2023-11-30 19:25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1079	서울32자58**	이*용	서울특별시	2023-11-30 19:26	상봉동 중랑역 가나안교회 건너편 GS25상봉사랑점	전용차로위반	50,000
1080	19노79**	정*명	서울특별시	2023-11-30 19:5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081	275고71**	정*권	서울특별시	2023-11-30 19:57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082	14가79**	김*숙	서울특별시	2023-11-30 20:04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083	57버94**	안*현	대구광역시	2023-11-30 20:14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084	323루58**	이*철	경상북도 고령군	2023-11-30 20:17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위반	50,000
1085	69오45**	김*기	서울특별시	2023-11-30 20:20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위반	50,000
1086	경기81자90**	김*형	경기도 성남시	2023-11-30 20:22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1087	22루39**	김*호	경기도 안산시	2023-11-30 20:25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088	서울31사67**	이*덕	서울특별시	2023-11-30 20:29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089	서울32자52**	서*식	경기도 화성시	2023-11-30 20:3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090	서울31바22**	김*언	서울특별시	2023-11-30 20:39	강남소방서앞	전용차로위반	50,000
1091	서울87자95**	정*홍	서울특별시	2023-11-30 20:41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위반	50,000

	차량 소유주			위반 내역			처분내역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잔액
1092	280너43**	김*화	서울특별시	2023-11-30 20:42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위반	50,000
1093	38거29**	최*원	서울특별시	2023-11-30 20:47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위반	50,000
1094	160나86**	최*영	서울특별시	2023-11-30 20:57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095	107두95**	파*뷰*테*(*)	광주광역시	2023-11-30 21:11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1096	36더51**	허*욱	경기도 부천시	2023-11-30 21:33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전용차로위반	50,000
1097	서울31바38**	조*현	서울특별시	2023-11-30 22:02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위반	50,00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3601호

공인 재등록 및 폐기 공고

서울특별시공인조례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의거하여, 공인 등록 및 폐기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공인 재등록

○ 공인등록 사유 : 2024년 01.0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명칭 변경

○ 최초 사용일자 : 2024년 01월 01일

○ 공인등록 내용

공 인 명	규 격	인 영	전자이미지 인영
서울특별시도시공간본부장의인	2.4㎝×2.4㎝		

□ 공인 폐기

○ 공인폐기 사유 : 2024년 01.0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명칭 변경

○ 폐기 일자 : 2024년 01월 01일

○ 공인폐기 내용

공 인 명	규 격	인 영	전자이미지 인영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장의인	2.4㎝×2.4㎝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

◈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23-10호

2023년 수시 재산변동사항 공고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수시 재산변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

○ 퇴직(2023.9.22.)

소속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직위	(전)원장		성명	임성은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가격)	감소액 (실거래가격)		
▶ 토지(소계)			0	30,442	0	30,442	
본인	전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마산리 1354번지 218.00㎡ 중 36.33㎡ (총면적 218.00㎡ 증가, 지분면적 36.33㎡ 증가)	0	105	0	105	상속

본인	전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마산리 749번지 1,744.00㎡ 중 290.67㎡ (총면적 1,744.00㎡ 증가, 지분면적 290.67㎡ 증가)	0	6,365	0	6,365	상속
본인	대지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마산리 836번지 789.00㎡ 중 130.00㎡ (총면적 789.00㎡ 증가, 지분면적 130.00㎡ 증가)	0	6,318	0	6,318	상속
본인	도로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마산리 860-10번지 31.00㎡ 중 5.17㎡ (총면적 31.00㎡ 증가, 지분면적 5.17㎡ 증가)	0	75	0	75	상속
본인	도로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마산리 860-2번지 70.00㎡ 중 11.67㎡ (총면적 70.00㎡ 증가, 지분면적 11.67㎡ 증가)	0	172	0	172	상속
본인	전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마산리 870번지 179.00㎡ 중 29.83㎡ (총면적 179.00㎡ 증가, 지분면적 29.83㎡ 증가)	0	439	0	439	상속
본인	전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마산리 873번지 902.00㎡ 중 150.33㎡ (총면적 902.00㎡ 증가, 지분면적 150.33㎡ 증가)	0	2,210	0	2,210	상속
본인	전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마산리 876번지 1,040.00㎡ 중 173.33㎡ (총면적 1,040.00㎡ 증가, 지분면적 173.33㎡ 증가)	0	3,241	0	3,241	상속
본인	답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마산리 895-1번지 10.00㎡ 중 1.67㎡ (총면적 10.00㎡ 증가, 지분면적 1.67㎡ 증가)	0	25	0	25	상속
본인	도로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마산리 895-4번지 139.00㎡ 중 23.17㎡ (총면적 139.00㎡ 증가, 지분면적 23.17㎡ 증가)	0	341	0	341	상속

본인	도로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마산리 895-5번지 33.00㎡ 중 5.50㎡ (총면적 33.00㎡ 증가, 지분면적 5.50㎡ 증가)	0	81	0	81	상속
본인	답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마산리 928-6번지 584.00㎡ 중 97.33㎡ (총면적 584.00㎡ 증가, 지분면적 97.33㎡ 증가)	0	1,810	0	1,810	상속
본인	답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마산리 928-7번지 337.00㎡ 중 51.17㎡ (총면적 337.00㎡ 증가, 지분면적 51.17㎡ 증가)	0	1,045	0	1,045	상속
본인	답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마산리 928-8번지 2,283.00㎡ 중 380.50㎡ (총면적 2,283.00㎡ 증가, 지분면적 380.50㎡ 증가)	0	7,077	0	7,077	상속
본인	답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마산리 928-9번지 367.00㎡ 중 61.17㎡ (총면적 367.00㎡ 증가, 지분면적 61.17㎡ 증가)	0	1,138	0	1,138	상속
▶ 건물(소계)			**1,928,900**	**700,000**	**543,300**	**2,085,600**	
본인	아파트(전세(임차)권)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현대아파트 건물 0.00㎡ (건물 84.63㎡ 감소)	470,000	0	470,000	0	갱신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GS강동자이아파트 건물 147.17㎡ 중 73.59㎡	670,000	0	0	670,000	없음
본인	아파트(전세(임차)권)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쌍용예가아파트 건물 84.91㎡ (건물 84.91㎡ 증가)	0	600,000	0	600,000	이사
배우자	아파트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GS강동자이아파트 건물 147.17㎡ 중 73.58㎡	670,000	0	0	670,000	없음

모	단독주택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마산리 대지 780.00㎡ 건물 114.80㎡	48,900	0	3,300	45,600	공시가 변동
장남	근린생활시설(전세(임차)권)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2가 건물 0.00㎡ (건물 21.49㎡ 감소)	70,000	0	70,000	0	이사(퇴거)
장남	다세대주택(전세(임차)권)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건물 40.85㎡ (건물 40.85㎡ 증가)	0	100,000	0	100,000	이사(전입)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 · 건설기계 · 선박 및 항공기(소계)			**13,830**	**0**	**880**	**12,950**	
본인	자동차	2019년식 소나타 배기량(2,000cc)	13,830	0	880	12,950	연수 감액
▶ 예금(소계)			**431,438**	**9,470**	**157,031**	**283,877**	
본인		(주)KB손해보험 7,049(520 증가), KB증권 125(569 감소), 국민은행 36,619(113 감소), 농협은행 79,119(87,158 감소), 농협중앙회 1,445(5 증가), 동양생명보험 5,346, 미래에셋증권 11,137(70 증가), 스탠다드차타드은행 22, 신한은행 5,781(4 증가), 엔에이치저축은행(주) 57, 우리은행 10,625(3 증가), 유안타증권 540(1 증가), 한국산업은행 4,906(57,443 감소), 한국투자증권 1	307,452	637	145,317	162,772	이사로 인한 전세보증금 증액 지불을 위한 인출
배우자		(주)KEB하나은행 180, 국민은행 7,132(112 증가), 농협은행 11,280(5,927 증가), 농협중앙회 5(5 증가), 삼성생명보험 3,864, 신한라이프생명보험 35,141(1,214 증가), 신한은행 48,367(9,925 감소), 우리은행 1,205,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837(1 증가)	110,677	7,259	9,925	108,011	

모		농협중앙회 1,516(1,779 감소)	3,295	10	1,789	1,516	
장남		(주)KEB하나은행 55(55 증가), 국민은행 1,509(1,509 증가), 우리은행 10,007, 한국투자증권 7	10,014	1,564	0	11,578	
▶ 증권(소계)			**71,002**	**90**	**10**	**71,082**	
본인	상장주식	남광토건보통주 124주, 삼성전자우 20주	2,098	90	10	2,178	
본인	회사채	대우자동차판매50 1주	67,800	0	0	67,800	파산후 청산종료(소멸)
본인	비상장주식	대우산업개발 182주, 자일자동차 513주	1,104	0	0	1,104	
▶ 채무(소계)			**750,000**	**0**	**0**	**750,000**	
본인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GS강동자이아파트 임대보증금	375,000	0	0	375,000	갱신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GS강동자이아파트 임대보증금	375,000	0	0	375,000	갱신
총 계			**1,695,170**	**740,002**	**701,221**	**1,733,951**	**증감액: 38,781천원 (가액변동: -4,100천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규칙]

◈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1071호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3년 12월 28일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통보된 조례안을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서울특별시보가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한”을 “그 자치법규가 서울특별시보에 게재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자치법규는 서울특별시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훈령의 발령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발령일은 게시한 날로 한다.

제6장(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제24조(의견제출서)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의견제출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25조(의견제출 검토)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 검토는 주관부서에서 담당한다.

②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업무분장 및 관련되는 부서의 의견을 고려하여 의견제출의 주된 내용과 관련있는 부서를 주관부서로, 그 밖에 내용과 관련있는 부서를 협조부서로 지정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에서는 의견제출 검토 시 협조부서의 검토내용을 반영한다.

1. 의견제출에 대한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경우
2. 의견제출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

제26조(의견제출 결과통보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8조에 따른 의견제출 검토결과를 법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식에 작성하여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의견제출 검토 또는 검토를 생략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2. 의견제출 제외대상인 경우: 별지 제8호서식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내용은 의견제출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 「지방자치법」 제20조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 규칙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인 ※ 3명 이상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	성명 [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 표시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공동 의견제출	[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대표자 인원: 명
의견 ※ 취지와 이유, 근거 법령 및 조례를 명확하게 밝혀 작성	규칙명(※ 제정 의견의 경우 가칭) [ ] 제정 [ ] 개정 [ ] 폐지	
참고자료 ※ 필요한 경우 제출,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7호서식]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검토결과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제출일자	
제출의견	규칙 명칭	[ ] 제정 [ ] 개정 [ ] 폐지	
주관부서 및 검토자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검토일자	
관련 법령 및 조례			
검토 결과	[ ] 수용 [ ] 일부수용 [ ] 불수용		
검토내용 ※ 의견제출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유를 명확하게 작성	(생략대상인 경우) 생략사유 지개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교육감

■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8호서식]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대상 제외 사유서

의견제출인	성명	제출일자	
제출의견	규칙 명칭	[ ] 제정 [ ] 개정 [ ] 폐지	
주관부서 및 검토자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검토일자	
관련 법령 및 조례			
제외유형	1.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외 사유 ※ 제외 유형에 맞게 사유를 상세히 작성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교육감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법제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 주민발안조례안이 제외됨에 따라 규칙 내 관련 조문 삭제

나. 2023. 10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신설

다. 그 외 동 규칙의 상위법규와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문구 정비

2. 주요내용

가. 법제심의위원회 주민발안조례 심의 위원 구성 조항 삭제(제10조제3항 삭제)

나.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신설 (제6장, 제24조~제26조, 별지 제6호서식~제8호서식 신설)

다. 상위법규 정합성 제고

- 자치법규의 공포방법 및 공포일 규정 조문 문구 정비(제19조제2항~제4항)
- 조직개편 등에 따른 업무분장 조항 삭제(제17조 제3항 삭제)

◈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1072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3년 12월 28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토요일이 아닌 정상근무일”을 “정상근무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 “(숙직근무자의 교대 취침 등)”을 “(숙직근무자의 교대 취침 및 당직근무자의 휴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을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로, “날의 근무시간 일부를”을 “날을”로 한다.

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에 휴무를 할 수 없거나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10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1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각”을 “제1항제3호와 제5호의”로 한다.

제2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일관성 있는 당직 운영 기준 정립
 나. 당직 근무자의 휴식권 확대 및 보장을 위한 세부 근거 마련
 다. 관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각종 문구 정비 및 현행화

2. 주요내용
 가. 당직근무자 대체휴무 확대 및 구체화(제8조)
  - 휴무 대상 확대를 통한 당직(일·숙직) 근무자 간 형평성 제고
  - 휴무 시간 확대 및 명확화를 통한 당직 근무자의 휴식권 보장
  - 불가피한 업무 상황에 대한 복무 유연성 강화(제8조제2항 단서)
 나. 조항 제목 변경을 통한 논지 강화(제8조)
 다.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제3조, 제13조)
 라. 제27조제1항의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조문 신설(제24조제2항)

◈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1073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3년 12월 28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무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및 감사관”을 “·감사관 및 안전총괄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보고) 전결권자는 전결하는 사항 중 개별 사안에 따라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내용을 사전·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결사항(제5조 관련)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공통사항	1. 복무 (협조부서: 총무과)	1. 근무상황관리(출장, 휴가, 유연근무, 공무국외여행 등)						
		가. 실·국장 이상					○	
		나. 과장·담당관				○		
		다. 담당서기관(담당사무관), 담당장학관			○			
		라. 6급 이하 공무원, 장학사(연구사)		○				
		2. 소속공무원의 연가계획			○			
		3. 소속공무원의 당직변경 신청		○				
		4. 초과근무 명령			○			
	2. 기획관리 (협조부서 : 정책기획관)	1. 주요업무계획자료 제출			○			
		2. 주요업무평가자료 제출			○			
	3. 예산관리 (협조부서: 예산담당관)	1. 예산요구서 제출			○			
		2. 예산배정 요구			○			
		3. 예산 재배정 및 교부			○			
		4. 투자교육지원 및 경상교육지원사업비 지원 계획						
		가. 기관당 1억원 이상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공통사항	3. 예산관리 (협조부서: 예산담당관)	나. 기관당 1억원 미만					○	
		5. 국고보조금 및 교부금 신청				○		
		6.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 계획				○		
		7. 세출예산 집행상황 보고			○			
		8. 예산집행 주요사항의 방침 결정 및 변경						○
		9. 예산집행 품의						
		가. 1억원 이상				○		
		나. 1억원 미만			○			
	4. 조직관리 (협조부서 : 행정관리담당관)	1. 기구신설, 명칭변경 및 폐지에 관한 기본계획						○
	5. 민원 (협조부서: 총무과)	1. 대통령 비서실 이첩 민원						
		가. 중요한 사항					○	
		나. 의례적이거나 경미한 사항			○			
		2.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가. 중요한 사항			○			
		나. 의례적이거나 경미한 사항		○				
		3. 비위·진정·청원 등 각종 민원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공통사항	5. 민원 (협조부서: 총무과)	가. 중요한 사항			○			
		나. 의례적이거나 경미한 사항		○				
		4. 민원서류 보완요구, 반려 및 이송		○				
		5. 민원처리기간 연장		○				
		6. 각종 민원관련 제도 개선			○			
		7. 행정정보공개요구에 대한 회신			○			
		8.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요청			○			
		9. 행정정보공개요구에 대한 부존재 처리(단순, 경미한 사항)		○				
		10. 국민신문고 처리		○				
		11. 청원심의회 심의 요청			○			
	6. 쟁송업무 (협조부서 : 행정관리담당관)	1.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제출			○			
		2. 소청심사청구에 대한 변명서 제출			○			
		3. 소송자료 제출 및 수행자 추천			○			
	7.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협조부서:행정관리담당관)	1. 상위법령의 제정·개정 건의				○		
		2. 자치법규 입법안 방침 결정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공통사항	7.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협조부서:행정관리담당관)	(1) 중요한 사항						○
		(2) 경미한 사항 (상위법령의 단순 집행, 단순한 표현·자구 수정 등)				○		
		3. 법제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가. 교육감 발의 자치법규 (시의회 수정 조례안 포함)			○			
		나. 시의원 발의 조례안 (시의회 이송 조례안)				○		
		4. 입법예고			○			
		5. 조례 재의요구(대법원 제소 포함)						○
		6. 조례 공포요구			○			
	8. 법령질의 요구 (협조부서: 행정관리담당관)	1. 상위 법령에 관한 해석 및 질의 요구						
		가. 중요한 사항				○		
		나. 경미한 사항			○			
	9. 의회업무 (협조부서: 대외협력담당관)	1. 국회 및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						
		가. 중요한 사항				○		
		나. 경미한 사항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2.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		
		3. 행정사무조사 결과 처리				○		
공통사항	9. 의회업무 (협조부서: 대외협력담당관)	4. 시의회 부의안건 방침결정						
		가. 중요한 사항						○
		나. 일반적인 사항					○	
	10. 각종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정책자문위원회 제외) (협조부서 : 행정관리담당관)	1. 위원회 신설·폐지, 위원의 위·해촉, 위원회 업무에 관한 방침결정						
		가. 위원장이 교육감 또는 외부인사인 경우						○
		나. 위원장이 부교육감인 경우					○	
		다. 위원장이 실·국장인 경우				○		
		2. 위원회 운영						
		가. 중요한 사항				○		
		나. 일반적인 사항			○			
	11. 정책자문 위원회 운영 (협조부서 : 정책기획관)	1. 위원의 위촉·해촉, 위원회 업무에 관한 방침 결정						○
		2. 위원회 운영						
		가. 중요한 사항(회의 개최 및 결과보고 등)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나. 일반적인 사항			○			
	12.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 지도	1. 연구·실험·시범학교 지정				○		
		2.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지도			○			
공통사항	12.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 지도	3. 운영결과 공개보고			○			
		4. 유공교원 가산점 부여			○			
		5. 운영결과 일반화 추진			○			
	13. 보수 및 연금업무	1. 보수·여비 및 그 밖에 의무적 경비의 집행 품의			○			
		2. 보수 관련 자료제출		○				
		3. 연금 및 교원공제회 대부 신청		○				
		4. 연금 및 건강보험 급여 신청		○				
	14. 국외 연수 실시	1. 기본계획 수립					○	
		2. 연수대상자 선발 및 연수실시			○			
		3. 사전교육 및 사후관리		○				
	15. 장학지도	1. 장학기본계획 수립				○		
		2. 교육지원청 장학협의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3. 장학지도 세부계획 수립 시행			○			
		4. 장학지도 결과 분석 및 보완			○			
		5. 자율장학회 운영지도			○			
		6. 특별장학지도 계획수립 및 결과분석			○			
공통사항	16. 교구설비 확보	1. 교구설비 확보계획 수립 및 조정				○		
		2. 교재 교구 활용지도			○			
	17. 표창업무	1. 우수학교 및 유공교원 표창				○		
		2. 학생 표창			○			
	18. 각종교육 행사	1. 교육행사 관련 학생지도			○			
		2. 교육행사 추진 및 다른 기관 행사 협조			○			
	19. 각종연수 회의	1. 교장·교감 회의				○		
		2. 업무추진 관계자 회의			○			
		3. 각종 교원연수회 개최			○			
	20. 인사관리	1.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실·국내 전보				○		
	21. MOU체결 및 총괄 (협조부서 :정책기획관)	1. MOU 체결						
		가. MOU 기본계획 수립 및 체결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나. MOU 체결 현황 관리			○			
		다. 협약 이행 사항 모니터링				○		
		라. MOU갱신 및 연장체결				○		
	22. 민간전문가 위촉 및 운영 (협조부서: 정책기획관)	1. 민간전문가 위촉 및 위촉해지						
공통사항	22. 민간전문가 위촉 및 운영 (협조부서: 정책기획관)	가. 민간전문가 위촉 및 위촉해지						○
		나.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			
		2. 민간전문가 운영 일반			○			
	23. 그 밖의 사항	1. 기정방침에 부수된 지시사항			○			
		2. 주관 사무에 관한 관계자 출석요구 및 서류 제출 요구			○			
		3. 제증명(확인원) 조회, 교부 및 갱신		○				
		4. 소관사무자료수집			○			
		5. 소속직원 사무분장			○			
		6. 신원조사(신원보안심사) 의뢰			○			
		7. 신원조회		○				
		8. 보안점검표 확인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9. 유관기관 업무협조			○			
		10. 각종사례집 및 업무편람 발간				○		
		11. 일상적·반복적 보고사무 접수		○				
		12. 소관 부서 공문이송		○				
		13.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			
공통사항	23. 그 밖의 사항	14. 각종 통계자료 작성			○			
		15. 관련 단체 및 업무 유공자 교육감 표창			○			
		16. 사무인계인수						
		가. 부교육감 인계인수						○
		나. 실·국장 인계인수					○	
		다. 과장(담당관) 인계인수				○		
		라. 5급(상당) 인계인수			○			
		17. 보도자료 작성 및 제출			○			
		18. 후원명칭 사용 승인			○			
1. 대변인	1. 교육공보 활동	1. 교육공보 기본계획 수립						○
		2. 교육정책, 시책 및 교육활동 공보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가. 서울교육정책의 발표와 언론 브리핑			○			
		나. 교육 및 교육행정관련 보도기사 분석 및 자료 제공			○			
		다. 특색사업 및 우수(미담)사례 수집·발굴 자료 제공			○			
		라. 교육관련 보도기사 분석 및 보도자료 제공			○			
		마. 언론매체의 보도 지원 및 협조			○			
1. 대변인	1. 교육공보 활동	바. 오보·왜곡 보도의 환류			○			
		3. 기자실 운영						
		가. 출입기자 취재협조		○				
		나. 기자실 자료관리		○				
		4. 그 밖에 공보업무에 관한 사항			○			
	2. 교육홍보 활동(홍보기획)	1. 교육정책홍보 기본 계획 수립						○
		2. 교육정책, 시책 및 교육활동 홍보						
		가. 서울교육 홍보물·영상물·간행물 등 교육홍보 자료의 제작 및 보급			○			
		나. 블로그 기획 및 운영			○			
		다. SNS 기획 및 운영			○			
		라. "열린교육감실" 홈페이지 운영관리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마. 교육에 관한 여론조사 및 모니터링			○			
		바.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			
		3. 홍보물·영상물·간행물 심의위원회 운영			○			
		4. 시민기자단 기획 및 운영			○			
	3.교육홍보활동(미디어운영)	1. 홍보영상물 제작 기본계획						
1. 대변인	3.교육홍보활동(미디어운영)	가. 교육청 기관홍보 및 주요정책 홍보영상 주제선정						○
		나. 교육청 기관홍보 및 주요정책 홍보영상 제작업무 계획			○			
		다. 유튜브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운영			○			
		라. 그 밖의 영상물 제작 관련 사항			○			
		2. 홍보 홈페이지 (서울교육소식) 운영			○			
		3. 정책고객관리(PCRM) 시스템 기획·개발 및 운영			○			
		4. 교육정책 홍보, 교육행사, 교육감 동정 사진 촬영 및 편집		○				
		5. 교육감 동정 및 메시지, 교육청 주요행사 등 영상 기획·제작			○			
2. 감사관	1. 감사·조사 계획 및 실시	1. 감사계획						
		가. 연간 자체감사계획 수립						○
		나. 종합·특정·복무·일상감사 세부계획 수립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다. 비위·진정·청원 등에 대한 감사계획 수립			○			
		라. 감사 실시 통보		○				
	2. 감사·조사 결과보고 및 처분(요구)	1. 감사결과 보고						
		가. 교장 및 5급(상당)이상 공무원의 중징계 해당						○
		나. 교장 및 5급(상당)이상 공무원의 경징계 해당					○	
2. 감사관	2. 감사·조사 결과보고 및 처분(요구)	다. 교감 및 6급(상당)이하 공무원의 징계 해당					○	
		라. 가·나호 외의 결과보고			○			
		2. 감사결과 처분(요구)			○			
		3. 감사결과 재심의 신청·처리			○			
		4. 감사결과 이행여부 확인 및 관리			○			
	3. 징계의결 요구 및 소청	1. 징계의결 요구			○			
		2. 징계의결 소청 및 재심의						
		가. 교장 및 5급(상당공무원 포함)이상 공무원					○	
		나. 교감 및 6급(상당공무원 포함)이하 공무원			○			
	4. 외부기관 감사수감 (감사원, 교육부 등)	1. 감사 수감계획 수립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가. 중요사안					○	
		나. 경미한 사안			○			
		2. 감사계획 통보			○			
		3. 증인 및 출석자 명단 제출			○			
		4. 근무요원 차출			○			
		5. 요구자료 제출			○			
2. 감사관	4. 외부기관 감사수감(감사원, 교육부 등)	6. 서면답변서 제출			○			
		7. 감사결과 보고 및 처분·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						
		가. 시책결정이 요구되는 중요사항						○
		나. 업무개선 등 시정을 요하는 사항					○	
		다. 그 밖에 경미한 사항			○			
		8. 자체 감사기구 감사결과(실적) 정기보고			○			
		9. 이첩사항 처리			○			
	5. 감사결과 제도개선	1. 각종 감사관련 제도개선 사항						
		가. 중요사항					○	
		나. 경미한 사항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2. 감사소식 홍보			○			
		3. 직원연수 관련사항			○			
		4. 감사업무 전산화			○			
		5. 감사결과 공개			○			
	6. 물품 손·망실 보고	1. 물품 손·망실에 따른 대책 수립			○			
		2. 물품 손·망실보고			○			
2. 감사관	6. 물품 손·망실 보고	3. 물품 손·망실 통보사항에 대한 감사원 처리 결과보고			○			
	7. 외부기관 감사 이첩 사항	1. 외부기관 감사 이첩 사항 처리						
		가. 중요사항					○	
		나. 경미한 사항			○			
		2. 외부기관 감사 수감 실시보고			○			
	8. 공직기강 확립 대책	1.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수립			○			
		2. 공직기강 실적 관리		○				
	9.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1.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 수립						○
		2.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실적 관리			○			
		3. 기관청렴도 측정자료 관리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4. 『반부패·청렴정책』 추진단 운영 (운영사항은 공통위원회 업무에 준함)			○			
		5. 『반부패·청렴정책』 연구학교 운영			○			
		6. 민관협력체제 구축 운영			○			
		7.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			
		8. 자체 청렴도 평가시스템 운영			○			
		9. 청렴윤리의식 연수			○			
2. 감사관	10. 범죄발생 및 징계처분	1. 범죄발생 보고						
		가. 교장 및 5급(상당 공무원 포함)이상 공무원의 범죄발생					○	
		나. 교감 및 6급(상당 공무원 포함)이하 공무원의 범죄발생			○			
		2.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 처리						
		가. 교장 및 5급(상당)이상 공무원의 중징계 해당						○
		나. 교장 및 5급(상당)이상 공무원의 경징계 해당					○	
		다. 교감 및 6급(상당)이하 공무원의 징계 해당					○	
		라. 소속기관 통보			○			
		3. 처분관련 자료 요구		○				
	11.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1. 공직자 재산등록 안내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2.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 심사 및 결과 보고						
		가. 징계 및 과태료 이상 해당사항					○	
		나. 경고 및 시정조치 이하 해당사항			○			
		3. 비공개 대상자 소명자료 요구			○			
		4.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자료 조회 협조(외부기관)			○			
	12. 공익신고 보상금제 운영	1. 보상금 지급계획 수립					○	
2. 감사관	12. 공익신고 보상금제 운영	2. 보상금 지급업무			○			
		3.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운영			○			
	13. 공익제보센터 운영	1. 기본계획 수립					○	
		2. 추진실적 관리						
		가. 중요사항			○			
		나. 경미한 사항		○				
	14. 감사자문 위원회 운영	1. 운영방안 기본계획 수립					○	
		2. 감사자문위원 위촉·임명					○	
		3.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			
	15.시민감사관 운영	1. 운영방안 기본계획 수립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2. 시민감사관 위촉·임명						○
		3. 시민감사관 운영			○			
	16. 감사처분 심의회 운영	1. 감사처분심의 요구		○				
		2. 감사처분심의 확인			○			
	17. 교육행정 지원센터 운영	1. 교육행정지원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
		2. 교육행정지원센터 운영 세부 추진계획 수립			○			
2. 감사관	17. 교육행정 지원센터 운영	3. 교육행정지원센터 운영 실적관리		○				
		4. 전문인력풀 구성 및 운영			○			
		5. 감사 지적사례 등 직원 역량강화 연수			○			
		6. 각종 감사 및 상담사례 분석 통계 관리		○				
		7. 교육행정지원센터 홍보 추진			○			
		8. 업무분야 관련기관 협력 지원			○			
	18. 교육행정 지원시스템 운영	1. 교육행정지원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			
		2. 교육행정지원시스템 제공기능 개선 관리			○			
		3. 교육행정 자료 탑재 및 정비		○				
		4. 시스템 질의답변 제공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가. 중요한 사항(담당부서 이첩)			○			
		나. 경미한 사항		○				
	19. 교육행정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1. 운영방향 기본계획 수립			○			
		2. 교육행정지원센터 운영위원 위촉·임명			○			
		3. 교육행정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			
	20. 적극행정 운영	1.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	
2. 감사관	20. 적극행정 운영	2. 적극행정 면책 및 사전컨설팅 운영			○			
		3. 기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			○			
3. 총무과	1. 공인관리	1. 공인조각·폐기 공고			○			
		2. 공인보관		○				
	2. 보안·당직 관리 및 청사 방호	1. 보안업무 세부지침 시행계획 및 심사분석			○			
		2. 보안업무 심사분석 보고			○			
		3. 정기보안진단 실시		○				
		4. 비밀관리에 관한 사항			○			
		5. 보안·당직점검 계획 및 결과 조치 지시			○			
		6. 청사방호 계획 수립 및 조정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7. 출입자 통제 및 청사외곽 경비		○				
		8. 통제구역 출입자 단속		○				
		9. 보안자재 관리 및 이상 유무 보고			○			
		10. 보안교육실시 및 결과보고			○			
		11. 안보 현장 연수			○			
		12. 당직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총무과	2. 보안·당직 관리 및 청사 방호	가. 기본방침 및 종합사업계획 수립			○			
		나. 단위 사업별 세부집행계획 수립			○			
		13. 당직운영에 관한 사항						
		가. 당직근무 명령(유예)		○				
		나. 근무변경 승인		○				
		다. 당직근무에 관한 보고 사항		○				
	3. 회의 및 행사	1. 각종행사 및 간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계획 수립 및 집행			○			
		다. 직원 정례조회에 관한 사항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라. 공휴일 및 기념일 행사 관리			○			
	4. 청사시설 관리	1. 청사유지 관리						
		가. 사무실 배정			○			
		나. 특수운영직군(미화, 당직, 시설관리) 지도감독		○				
		다. 청내 자체 에너지 절약 계획 수립			○			
		라. 그 밖에 청사유지 관리		○				
3. 총무과	4. 청사시설 관리	2. 소방시설 관리						
		가. 자체 소방 계획 수립			○			
		나. 그 밖에 소방시설 관리		○				
		3. 각종 회의실 사용 운영에 관한 사항		○				
		4. 방송실 운영		○				
	5. 차량관리	1. 공용차량 정수 배정			○			
		2. 본청 차량관리						
		가. 차량구매 및 불용 결정			○			
		나. 차량등록 및 관리		○				
		다. 일일배차명령 및 유류지급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3. 부설 주차장관리						
		가. 주차장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			
		나. 정기주차권 배정 및 주차권 관리		○				
	6. 일반서무	1. 직장 동호인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기본운영계획 수립			○			
		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		○				
3. 총무과	6. 일반서무	2. 각종 성금모금·집행에 관한 사항			○			
		3. 당직실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4. 우표수불에 관한 사항		○				
		5. 각종 일지 및 장부 관리		○				
		6. 교육수첩 및 업무일지 발간에 관한 사항						
		가. 발간계획 수립			○			
		나. 배부계획		○				
	7. 임용	1. 5급(상당)이상 일반직공무원 임용						
		가. 신규임용, 승진임용, 전보, 강임, 전직, 파견, 직위해제, 직권면직, 의원면직						○
		나. 휴직, 복직, 겸임, 시보해제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2. 6급(상당)이하 일반직공무원 임용						
		가. 신규임용, 승진임용, 전보, 강임, 전직, 파견, 직위해제, 직권면직					○	
		나. 의원면직, 휴직, 겸임, 시보해제, 복직 및 복직에 따른 전보, 시간선택제 전환			○			
		3. 대우공무원 선발			○			
		4. 필수실무요원 지정			○			
		5. 퇴직준비교육						
3. 총무과	7. 임용	가. 퇴직준비교육 기본계획 수립						○
		나. 퇴직준비교육 대상자 결정					○	
		6. 명예퇴직						
		가. 명예퇴직 기본계획 수립					○	
		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통보			○			
		7. 인사교류 계획 수립 및 시행						
		가. 5급이상 일반직 공무원 인사교류 계획 수립						○
		나.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인사교류 계획 수립					○	
		다. 인사교류 시행			○			
	8. 인사기록	1. 인사기록카드 관리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2. 인사기록 변경·추가등재 신청		○				
		3. 징계기록말소		○				
		4. 인사관리 전산프로그램 관리		○				
		5. 인사기록카드 이관		○				
	9. 인사통계	1. 공무원 정원·현원 관리		○				
		2. 각종 인사통계 보고			○			
3. 총무과	9. 인사통계	3. 각종 인사자료 수집		○				
	10. 충원	1. 충원계획 수립					○	
		2. 시험요구					○	
		3. 임용후보자(특채포함) 추천			○			
		4. 신규임용 후보자 명부 작성						
		가.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	
		나.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			
	11. 근무성적 평정 등	1. 근무성적(실적) 평정						
		가. 5급(상당)이하 일반직과 별정직공무원					○	
		2.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가.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
		나.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	
		3. 성과상여금 지급						
		가. 성과상여금 업무처리 지침 수립					○	
		나.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선정			○			
		4.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및 연봉 조정						
3. 총무과	11. 근무성적 평정 등	가. 5급(상당) 이상 근무실적평가						○
		나. 6급(상당) 이하 근무실적평가					○	
		다. 임기제공무원 연봉 조정			○			
	12. 복무	1. 겸직허가						
		가. 4급(상당)이상 일반직과 별정직공무원					○	
		나. 5급(상당)이하 일반직과 별정직공무원			○			
		2. 연가계획 수립(4급 이상)			○			
		3. 복무관련 기본계획 수립					○	
		4. 복무지도 점검 세부계획 수립 및 실시			○			
		5. 기관장 연가신청 수리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13. 교육	1. 교육훈련계획 수립					○	
		2. 수요조사 및 대상자 선정						
		가. 국외교육훈련 및 장기(4주 이상) 국내교육훈련					○	
		나. 단기(4주 미만) 국내교육훈련						
		(1) 일반직 전문교육						
		(가) 5급 이상			○			
3. 총무과	13. 교육	(나) 6급 이하		○				
		(2) 퇴직예정공무원 교육		○				
		(3) 그 밖의 교육(야간교육 등)		○				
	14. 포상	1. 정부우수·모범공무원, 외부기관 표창 추천 및 동의			○			
		2. 교육감 표창						
		가. 표창 기본계획 수립					○	
		나. 표창 시행			○			
		다. 표창번호 부여		○				
		3. 포상전수 계획			○			
	15. 징계	1. 징계처분(경징계)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가. 5급(상당)이상 일반직공무원					○	
		나. 6급(상당)이하 일반직공무원			○			
		2. 징계처분(중징계)						
		가. 5급(상당)이상 일반직공무원						○
		나. 6급(상당)이하 일반직공무원					○	
	16. 고충심사	1. 심사결과에 대한 조치			○			
3. 총무과	17. 연금사무	1. 재직기간 합산승인 및 소급기간 통산신청		○				
		2. 기여금 납부		○				
		3. 재해보상급여 승인 신청		○				
		4. 제급여 청구		○				
		5. 연금기금자금 대부		○				
		6. 국고대여장학금 대부		○				
		7. 연금부담금·재해보상금·퇴직수당부담금 납부		○				
		8.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의금 지급 결정		○				
	18. 의료보험	1. 피보험자(피부양자) 자격관리		○				
		2. 보험급여 관리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3. 본청직원 개인부담 보험료 납부		○				
		4. 정부부담 보험료 납부		○				
	19. 그 밖에 인사관리	1. 정기승급 및 호봉획정		○				
		2.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			
		3. 공무원증 및 감사관증 발급		○				
		4. 공무원 비위면직 및 전력조회		○				
3. 총무과	19. 그 밖에 인사관리	5. 인사위원회 안건 제출			○			
	20.지방공무원 국외연수	1. 기본계획 수립					○	
		2. 연수대상자 선발					○	
		3. 관용여권 및 정부항공운송 의뢰서 발급		○				
		4. 연수자 사전교육 및 연수 사후평가			○			
	21. 공무 국외여행	1. 공무 국외여행 허가			○			
		2.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운영			○			
	22. 총무계획	1. 총무계획 수립 및 부록작성 시행					○	
		2.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총무계획 검토		○				
	23. 을지연습	1. 을지연습 기본계획 수립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2. 을지연습 세부 실시계획			○			
		3. 을지연습 강평 및 사후처리		○				
		4. 을지연습 행정지원		○				
	24. 민방위대 운영	1. 민방위대원 편성 및 전·출입 자원관리		○				
		2. 민방위 자체 훈련계획 수립			○			
		3.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훈련		○				
3. 총무과	24. 민방위대 운영	4. 민방위대원 교육실시		○				
		5. 민방위의 날 훈련		○				
		6. 민방위편성 확인서 발급		○				
	25. 사회복무요원 관리	1. 사회복무요원 복무지침 및 사회복무요원 지정요청			○			
		2. 사회복무요원 복무실태조사		○				
		3.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 관리업무		○				
	26. 고등학교 전·편입학	1. 고등학교 전·편입학 시행 계획					○	
		2. 귀국자 자녀 전·편입학 시행 계획					○	
	27. 전·편입학 배정	1. 고등학교 학생 전·편입학 배정업무 추진계획			○			
		2. 고등학교 학생 전·편입학 접수 및 배정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3. 고등학교 학생 전·편입학 배정 취소		○				
	28. 민원콜센터 운영	1. 민원콜센터운영 월간 보고		○				
		2. 민원콜센터 과별 처리 실적			○			
	29. 민원사무 개선	1. 민원사무 개선 기본계획 수립					○	
		2. 민원사무개선 추진 및 실적보고		○				
	30. 그 밖에 민원사무	1. 민원사무편람 제작			○			
3. 총무과	30. 그 밖에 민원사무	2. 민원접수 및 분류		○				
		3. 처리기간 경과민원에 대한 독촉장 발급		○				
		4. 월별 민원처리 현황		○				
		5. 전자민원(NEIS) 접수 및 발급		○				
	31. 청원제도	1. 청원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청원심의회 위원 선정 및 위촉					○	
		나. 청원심의회 운영			○			
		2. 그 밖에 청원제도에 관한 사항			○			
	32. 행정정보 공동이용	1.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운영 관리			○			
	33. 문서관리	1. 대외 공문서 분류에 관한 사항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가. 문서접수·배부		○				
		나. 공문서 재분류			○			
		2. 문서수발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						
		가. 문서택배제 이용에 관한 계약			○			
		나. 문서택배제 운영		○				
		다. 문서 사송 관리		○				
3. 총무과	33. 문서관리	4. 기록물 우편 후납발송 제도에 관한 사항						
		가. 기록물 우편 후납발송 이용에 관한 계약			○			
		나. 기록물 우편 후납발송 및 환부 제도 이용		○				
		5. 기관 모사전송 관리		○				
	34. 기록물 관리	1.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			
		2. 기록물 관리 교육			○			
		3. 기록물 정리 및 생산현황 통보			○			
		4. 기록관리기준표 운영			○			
		5. 기록물 공개재분류			○			
		6. 기록물 수집 및 이관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7. 기록물 폐기			○			
		8. 기록물 정수·상태 점검 및 보존서고 운영		○				
		9. 기록관리 현황평가			○			
		10. 기록관리 실태점검			○			
		11. 기록물 DB 구축 및 이중보존			○			
		12. 기록물 DB 현행화		○				
3. 총무과	34. 기록물 관리	13.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				
	35. 정보공개제도	1.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정보공개 심의회 운영			○			
		나. 연간정보공개제도 운영결과 보고			○			
		다. 행정정보공개 접수 및 분류		○				
	36. 기록물 관리 시스템 운영 관리	1. 기록물관리시스템 활용방안 계획 수립			○			
		2. 기록물관리시스템 응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관리		○				
		3. 기록물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계획 수립 및 추진			○			
	37. 기록관 홈페이지 운영	1. 자료탑재에 관한 사항		○				
		2. 홈페이지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3. 질의, 응답에 관한 사항		○				
	38. 교육정보 자료관리	1. 교육정보 자료실 운영 계획 수립			○			
		2. 행정자료 및 일반자료 관리		○				
		3. 교육정보자료선정위원회 운영		○				
	39. 증명발급 시스템 운영 관리	1. 증명발급시스템 관리계획 수립			○			
		2. 증명발급시스템 응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관리		○				
3. 총무과	39. 증명발급 시스템 운영 관리	3. 질의, 응답 및 사용자연수에 관한 사항		○				
4. 안전총괄담당관	01. 재난관리 업무	1. 재해(풍수해, 대설) 업무 기본 계획 수립					○	
		2. 재해복구비 신청 및 지급			○			
	02. 재난·안전 관리	1. 학교 안전교육계획 수립			○			
		2. 안전관리 통합매뉴얼 작성			○			
		3. 각종 안전교육자료 홍보 및 보급			○			
		4. 안전관리 협력망 구축			○			
	03. 안전관리 네트워크 구축	1. 안전관리체계 점검·지도			○			
		2. 각종안전사고현황 수집·분석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3. 안전관련 후원명칭 사용 및 우등상 수여 승인			○			
	04. 재난대비훈련	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세부계획수립					○	
		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후 사후대책수립			○			
		3. 재난상황보고훈련 세부계획수립			○			
	05. 안전신고 통합포털 운영	1. 안전신고통합포털 담당자 지정			○			
		2. 안전신고통합포털 모니터링 및 보고			○			
	06. 안전체험관 확충	1. 안전체험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
4. 안전총괄담당관	06. 안전체험관 확충	2. 안전체험관 건립 집행계획 수립					○	
		3. 안전체험센터 지정·운영계획 수립					○	
		4. 안전체험센터 지정·운영 결과보고			○			
	07. 교육안전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1. 기본계획 수립						○
		2. 각 과 시행 및 운영			○			
	08. 학교안전계획 수립 및 평가	1. 기본계획 수립			○			
		2. 평가단 구성 및 평가			○			
		3. 결과분석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09. 국민안전의 날 행사	1. 기본계획 수립					○	
		2. 시행 및 홍보			○			
	10. 교육안전위원회 운영	1. 교육안전위원회 운영			○			
	11. 안전정책조정협의회 운영	1. 안전정책조정협의회 운영			○			
	12. 서울학교안전공제회	1. 보조금 지급 결정				○		
		2. 학교안전사고관련 구상금 지급요청(건강관리보험공단)에 관한 사항			○			
		3.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운영관련 대내외 자료 관리			○			
		4. 정관 인가						
4. 안전총괄담당관	12. 서울학교안전공제회	가. 정관 변경인가				○		
		나. 경미한 내용(자구수정 등) 변경인가			○			
		5. 임원임명						○
		6. 보상심사위원 위촉				○		
		7. 기금운용계획서 승인			○			
		8. 그 밖에 지도·감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3.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1. 초등학교 교통안전 활성화 지원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2. 스쿨존 교통안전 협의체 운영			○			
		3.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운영 계획 수립			○			
		4.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통학로 전수점검 계획						○
	14. CCTV 설치 및 지원	1. 학교 CCTV 현황 조사			○			
		2. 학교 CCTV 예산 지원			○			
	15. 통학버스 안전관리	1. 통학버스 안전관리 점검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16.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 및 시행	1. 기본계획 수립						○
		2. 안전보건관리자 직무에 관한 사항					○	
		3. 산업재해 예방 활동 일반			○			
4. 안전총괄 담당관	17.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운영	1. 개최 계획						○
		2. 결과보고 등 위원회 운영 일반			○			
	18. 중대산업재해 예방	1. 중대산업재해예방 기본계획 수립						○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평가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3.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이행 사항 점검 및 결과보고						○
		4. 중대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세부 정책의 집행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5.정책기획관	1. 교육정책 총괄 및 조정	1. 교육정책 총괄 및 조정						
		가. 자료수집·분석		○				
		나. 기본계획 수립						○
		다. 세부계획 수립			○			
		라. 추진상황 점검 및 환류					○	
	2. 주요업무계획	1. 주요업무계획 수립						
		가. 자료수집·분석		○				
		나.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				○		
		다. 초안작성 및 검토			○			
		라. 주요업무계획 확정						○
5.정책기획관	2. 주요업무계획	마. 주요업무계획 변경 계획 수립				○		
	3. 교육정책 설명회	1. 교육정책 설명회						
		가. 자료수집·분석		○				
		나. 기본계획 수립				○		
		다. 세부계획 수립			○			
		라. 교육정책 설명회 운영 일반사항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마. 결과 보고 및 환류				○		
	4. 교육감 공약사항	1. 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가. 자료수집·분석			○			
		나. 공약사항 이행계획 수립					○	
		다. 이행사항 점검 및 환류				○		
	5. 시도교육감 협의회	1. 시도교육감 협의회 운영						
		가. 운영계획 수립				○		
		나. 안건 제출 및 관리			○			
	6. 대통령·국무 총리 지시 사항	1. 대통령·국무총리 지시사항 관리						
		가. 자료수집·분석		○				
5.정책기획관	6. 대통령·국무 총리 지시 사항	나. 지시사항 추진계획 수립				○		
		다. 지시사항 추진 관리			○			
	7. 국정과제 추진	1. 국정과제 및 교육부 주요업무 추진						
		가. 자료수집·분석		○				
		나. 추진계획 수립				○		
		다. 국정과제 및 교육부 주요업무 추진 관리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8. 교육감 지시사항	1. 교육감 지시사항 관리						
		가. 자료수집·분석		○				
		나. 지시사항 추진계획 수립				○		
		다. 지시사항 추진 관리			○			
	9. 정책실명제 운영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		
		2.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		
		3.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운영			○			
		4. 정책실명제 운영 및 평가			○			
	10. 서울교육 중·장기발전계획수립	1. 교육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가. 기본계획 수립						○
5.정책기획관	10. 서울교육 중·장기발전 계획수립	나. 교육발전계획 추진 상황 점검			○			
		2. 교육발전계획 조정					○	
	11. 주요정책 개발 및 수립	1. 서울교육모니터링 운영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모니터단 구성·운영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2. 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지원				○		
		3. 서울교육종단연구 운영·지원				○		
		4. 주요교육 정책 수집·분석			○			
	12. 정책총량 관리	1. 정책총량 관리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정책총량 산정				○		
		다. 모니터링 및 평가			○			
		2. 신규사업 사전 심의						
		가. 시행계획 수립					○	
		나. 사전심의위원회 운영·지원			○			
		다. 모니터링 및 평가			○			
5.정책기획관	12. 정책총량 관리	3. 정책 · 사업 정비						
		가. 시행계획 수립					○	
		나. 정비심의위원회 운영			○			
		다. 사업 조정·정비					○	
		라. 모니터링 및 평가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13. 정책연구용역 관리	1. 정책연구용역 관리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연구과제 선정 및 확정				○		
		다. 연구용역 관리·운영 일반			○			
	14. 교육만족도 조사	1. 교육정책 만족도 조사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조사 결과 보고				○		
	15. 성과평가 운영	1. 성과평가 기본계획 수립						○
		2. 성과평가단 구성				○		
		3. 연수 및 홍보			○			
		4. 평가결과 확정						○
5.정책기획관	15. 성과평가 운영	5. 성과평가 결과 분석보고서				○		
		6.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			○			
	16. 직무성과 계약제 운영	1. 직무성과계약제 운영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 확정						○
		2.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			
	17. 시·도교육청 평가 수검	1. 수검 기본계획 수립, 평가서 작성 제출 및 결과 보고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2. 그 밖에 평가 수검 일반사항			○			
	18. 정보화기반 교육정책 지원 서비스 추진	1. 서울교육통계 종합계획 수립				○		
		2. 정책지원 통계조사 연구·개발(분석)				○		
		3. 부서별 관련업무 통계 수요조사			○			
		4. 통계법령 및 제도정비			○			
		5. 부서별 관련업무 분야별 콘텐츠 분석 및 표준화			○			
		6. 데이터 소재 정보 관리			○			
		7. 부존재 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			○			
		8. 통계작성기관간 시스템 연계방안 추진			○			
	19. 서울교육 통계조사	1. 기본계획 수립				○		
		2. 기초 통계자료 조사 추진 및 조사자료 제출			○			
5.정책기획관	19. 서울교육 통계조사	3. 조사 자료 정비 및 정합성 관리			○			
		4. 통계담당직원의 교육연수			○			
	20. 교육정보통계 시스템(EDS) 운영 활성화	1. 기본 계획 수립				○		
		2. 통계서비스제공자료 정합성 관리 및 개선개발지원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3. 사용자(온라인) 교육 및 교재(동영상) 제작·보급			○			
	21. 정보공시제도 운영	1. 기본 계획 수립				○		
		2. 홍보, 교육, 지도점검 추진			○			
		3. 공시정보 입력 및 정합성 관리			○			
	22. 서울교육통계 자료집 발간	1. 기본 계획 수립				○		
		2. 통계연보, 핸드북 및 분석 자료집 발간·보급			○			
	23. 데이터 분석 활성화	1. 기본계획 수립				○		
		2. 데이터 분석			○			
		3. 분석 과제 발굴 및 홍보			○			
	24. 교육정책 제도개선	1. 교육정책 제도개선 개발 및 진단						
		가. 자료 수집, 조사 등을 통한 법·제도개선 진단과제 발굴		○				
		나. 법·제도개선 진단과제 분석 및 의견 수렴			○			
5.정책기획관	24. 교육정책 제도개선	다. 법·제도개선 진단과제 검토보고			○			
		2. 교육정책 제도개선 진단과제 자문단 등 구성·운영						
		가. 기본계획 수립				○		
	25. 미래교육정책 개발 및 조정	1. 미래교육정책 개발 및 조정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가. 자료 수집·분석		○				
		나. 기본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2. 미래교육정책 개발과제 자문단 등 구성·운영			○			
6.예산담당관	1. 예산편성	1. 예산편성지침 및 예산안 편성자료 수집			○			
		2. 예산편성지침 및 예산안 확정						○
		3. 예산편성지침(중요한 사항) 변경				○		
		4. 예산편성지침(경미한 사항) 변경			○			
		5. 추경 전 우선 사용(목적경비)			○			
		6. 예산편성 관련 일반사항			○			
	2. 예산운영	1. 예산배정						
		가. 예산배정 계획 수립			○			
		나. 세출예산 배정			○			
6.예산담당관	2. 예산운영	2. 예산이월						
		가. 명시이월사업비 확정			○			
		나. 사고이월사업비 확정			○			
		3. 예산운용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가. 이용·전용 및 이체				○		
		나. 예비비 사용				○		
		4. 특별교육재정수요 운용						○
		5. 성과계획서				○		
		6. 성인지 예산서				○		
	3. 주민참여 예산제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기본 계획				○		
		2.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			
	4.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	1. 중·장기 교육재정계획 수립						
		가. 자료 수집·분석		○				
		나. 초안 작성			○			
		다. 중·장기 교육재정계획 확정						○
		라. 수정계획 수립				○		
6.예산담당관	4.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	2. 서울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가. 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			○			
		나. 심의자료 수집 및 검토			○			
		다. 그 밖에 위원회 운영 관련 일반사항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5. 교부금 및 전입금 관리	1. 교부금 및 전입금 관리						
		가. 협의 및 확보			○			
		나. 배정 요구		○				
	6. 재정분석·평가	1. 지방교육재정분석·평가보고서 작성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자료수집·분석		○				
		다. 자체분석·평가 보고서				○		
		2. 재정분석·평가 일반사항			○			
	7. 인건비 관리	1. 인건비 관리						
		가. 연간 배정계획 수립			○			
		나. 인건비 재배정(교부)			○			
	8. 예산안 심의자료 작성	1. 시의회 예산안 심의자료 작성						
6.예산담당관	8. 예산안 심의자료 작성	가. 예산개요				○		
		나. 주요사업 설명자료			○			
	9. 투자심사 위원회 운영	1. 투자 심사위원회 운영						
		가. 투자심사 제안서 접수 및 안건상정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나. 심사결과 확정 통보			○			
		다. 그 밖에 위원회 운영 관련 일반사항			○			
		2. 투자심사 실시						
		가. 투자심사 실시계획 및 보고서 작성				○		
	10.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	1.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예산성과금 지급			○			
		2.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						
		가. 신청서 접수 및 안건상정			○			
		나. 심사결과 확정 통보			○			
		다. 그 밖에 위원회 운영 관련 일반사항			○			
	11. 재정공시 제도 운영	1. 재정공시 제도 운영						
6.예산담당관	11. 재정공시 제도 운영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지방교육재정 운용상황 공시(예산·결산 기준)			○			
		2.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가. 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12. 서울시교육 지원사업	1. 서울시교육지원사업 관리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			
		다. 그 밖에 서울시 협력 사항			○			
	13.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1.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						
		가. 심의안건 접수 및 상정			○			
		나. 심의결과 확정 통보			○			
		다. 그 밖에 위원회 운영 관련 일반사항			○			
	14.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금 관리	1.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금관리						
		가.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금내역 수집			○			
	15. 기금운용	1. 기금운용계획안 수립(총괄)						
		가. 기본(변경) 계획 수립				○		
6.예산담당관	15. 기금운용	나. 안건 제출			○			
		2.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가. 기본(변경) 계획 수립					○	
		나. 기금결산 및 성과분석 실시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			
	16. 학교회계	1. 공립 학교회계 예산편성						
		가. 예산편성지침 및 예산(안) 자료 수집			○			
		나. 예산편성지침 수립					○	
		다. 학교운영비 예산(안) 편성				○		
		라. 예산편성지침(중요한 사항) 변경				○		
		마. 예산편성지침(경미한 사항) 변경			○			
		2. 공립 학교회계 예산운용						
		가. 학교운영비 교부계획 수립			○			
		나. 학교운영비 교부(재배정)		○				
		다. 학교회계 예산·결산 관련 지도			○			
		라. 학교회계 예산·결산자료 보고 수리		○				
6.예산담당관	17. 학교발전 기금 운영 지도	1. 학교발전기금 관리요령 제정·개정				○		
		2. 학교발전기금 세부 운영계획			○			
		3. 학교발전기금 홍보 및 교육			○			
		4. 학교발전기금 현황 집계·분석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7. 행정관리 담당관	1. 조직진단	1. 조직 분석 및 진단에 관한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2. 조직 분석 및 진단에 관한 업무 추진			○			
		3. 조직 분석 및 진단에 따른 관련 자료 수집		○				
		4. 조직개편 관련 심의·의결 설명 자료 작성				○		
		5. 조직개편에 대한 홍보			○			
	2.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포함) 정원관리	1. 지방공무원 정원책정(조정) 기본계획 수립						○
		2.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			
		3. 지방공무원 정원현황 관리			○			
		4. 지방공무원 정원승인 요청				○		
		5.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수립				○		
	3. 행정권한 관리	1. 행정권한의 위임						
		가. 기본계획 수립					○	
7. 행정관리 담당관	3. 행정권한 관리	나. 대상사무 조사			○			
		다. 행정권한 위임과제 추진·점검			○			
		라. 불합리한 규제성 지침 정비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2. 사무전결규칙 개정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대상 사무조사			○			
	4. 권한이양·분권 및 기능재배분	1. 권한이양 및 분권 추진				○		
		2. 국가권한 지방이양 수용 및 시행			○			
		3.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학교간 기능 재배분 추진				○		
	5. 각종위원회에 관한 사항	1.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 수립				○		
		2. 각종 위원회 현황파악			○			
		3.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			○			
	6. 제안제도 관리	1. 제안제도 운영계획 수립				○		
		2. 공모제안 운영 및 세부업무 추진			○			
		3. 제안심사위원회 운영						
		가. 위원 임명 및 위촉				○		
7. 행정관리 담당관	6. 제안제도 관리	나. 안건상정 및 심의결과 보고				○		
		다. 관계기관(부서) 의견조회 및 세부 업무 추진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라. 실시성과 평가				○		
		4. 제안실무심의회 운영 및 세부업무 추진			○			
	7. 행정서비스 현장 운영	1. 행정서비스현장 운영						
		가. 기본 계획 수립				○		
		나. 자료수집 및 표준안 마련			○			
		다. 추진상황 지도 확인			○			
		2.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실태 점검						
		가. 기본 계획 수립				○		
		나. 점검결과 분석 및 보고				○		
		다. 처리지시 및 개선요구			○			
		3. 고객만족도 조사						
		가. 기본 계획 수립			○			
		나. 조사결과 분석 및 보고			○			
		다. 처리지시 및 개선요구			○			
7. 행정관리 담당관	8. 지식행정 활성화	1. 지식행정 활성화 운영에 관한 사항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가. 학습커뮤니티 운영계획 수립				○		
		나. 지식마스터단 구성 및 운영			○			
		다. 학습커뮤니티 운영 평가·보상			○			
		2. 행정지식 관리·활용·평가				○		
	9. 법제	1. 자치법규 정비 요구처리			○			
		2. 법제심의위원회 운영			○			
		3. 교육규칙 공포예정 보고			○			
		4. 조례 제정·개정·폐지 보고			○			
		5. 조례·교육규칙 공포 및 훈령발령						○
	10. 교육규제 완화	1. 교육규제 완화 및 정비 기본계획 수립				○		
		2. 교육규제 완화 및 정비 대상 사무조사			○			
		3. 교육규제 완화 및 정비 대상 사무조사 결과 보고			○			
		4. 교육규제 완화 및 폐지 결정				○		
		5. 추진상황 점검·확인			○			
		6.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운영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7. 행정관리 담당관	11. 소송업무	1. 소장접수			○			
		2. 응소, 제소, 상소 결정						
		가. 행정상·재정상 중요사건			○			
		나. 일반행정·민사소송			○			
		다. 소액사건 및 경미한 행정소송			○			
		3. 구상권 행사 추심 결정				○		
		4. 소송대리인 선임 및 위임장 발부			○			
		5. 쟁송사건 주관과 지정			○			
		6. 그 밖에 소송자료 수집		○				
	12.법률고문운영	1. 법률고문 위촉·해촉					○	
		2. 법률고문단 운영 일반			○			
	13. 교육소청 심사위원회 운영	1. 소청심사 접수			○			
		2. 심의자료 수집 검토 및 증거조사		○				
		3. 소청심사 결정서 통보			○			
		4. 그 밖에 일반운영에 관한 사항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14. 무료법률 상담운영	1. 무료법률상담 계획 수립			○			
7. 행정관리 담당관	14. 무료법률 상담운영	2. 무료법률상담 변호사 지정		○				
		3. 무료법률 상담 운영 일반		○				
	15. 법무일반	1. 자치법규 질의에 대한 회신			○			
		2. 자치법규집의 대본, 추록발간 및 배부			○			
	16. 행정심판 운영	1. 행정심판 재결서(결정서)					○	
		2. 행정심판 신청사건(집행정지 등) 결정					○	
		3. 그 밖에 중요 운영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일반 운영에 관한 사항		○				
8. 참여협력담당관	1. 학부모 학교참여	1. 학부모·시민협력 기본계획 수립						○
		2.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가. 학부모회 운영비 지원			○			
		나. 학부모회 업무매뉴얼 제작 및 보급			○			
		다. 학부모회 임원 직무연수 운영			○			
		라. 학부모회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마. 학부모회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			○			
		3. 학교운영위원회						
8. 참여협력담당관	1. 학부모 학교참여	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업무담당자 직무연수 운영			○			
		나.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 제작 및 보급			○			
		다. 학교운영위원회 모니터링 추진 및 운영			○			
	2. 학부모 역량 강화	1 .맞춤형 학부모 교육 운영						
		가. 전환기 학부모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			
		나. 학부모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			
		다. 학부모책 계획 수립 및 운영			○			
		라. 학부모캠퍼스 계획 수립 및 운영			○			
		마. 학부모교육 강사풀 구성 및 관리			○			
	3. 서울학부모 지원센터 운영	1. 서울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일반			○			
		2. 학부모리더교육			○			
		3. 학부모 의무연수 통합 운영			○			
	4. 학부모 · 시민 소통 확대	1. 서울교육 공론화 사업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가. 서울교육공론화 기본계획 수립						○
		나. 공론화 추진단 구성				○		
		다. 공론화 사업 운영 일반			○			
8. 참여협력담당관	4. 학부모·시민 소통 확대	2. 서울교육 시민참여단						
		가. 서울교육시민참여단 구성 및 계획 수립				○		
		나. 서울교육시민참여단 토론회 운영			○			
	5.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	1.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 기획						
		가. 서울미래교육지구 기본계획 수립						○
		나. 서울미래교육지구 공모·지정						○
		다.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 계획 수립·추진			○			
		2.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						
		가. 서울미래교육지구 컨설팅 및 연수 추진			○			
		나. 서울미래교육지구 평가 및 성과관리			○			
		다. 서울미래교육지구 대의회 업무				○		
		라.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마. 서울미래교육지구 지원인력 관리			○			
		3. 서울미래교육지구 예산 운영						
		가.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 예산·결산 업무			○			
		나.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비 배정 및 정산			○			
8. 참여협력담당관	5.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	4. 서울미래교육지구 민원 처리						
		가. 서울미래교육지구 관련 민원 처리			○			
		나. 서울미래교육지구 관련 정보공개 처리			○			
		5. 그 밖에 업무						
		가. 그 밖에 서울미래교육지구 관련 업무			○			
	6. 마을결합형 학교 사업 운영	1. 마을결합형학교 사업 기획 및 추진						
		가. 마을결합형학교 기본계획 수립						○
		나. 마을결합형학교 컨설팅 및 연수 추진			○			
		다. 마을결합형학교 평가 및 성과관리			○			
		라. 마을결합형학교 대의회 업무				○		
		2. 마을결합형학교 예산 운영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가. 마을결합형학교 예산·결산 업무			○			
		나. 마을결합형학교 사업비 배정 및 정산			○			
		다.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마을결합형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가. 마을결합형학교 민원 관련 사항			○			
8. 참여협력담당관	6. 마을결합형 학교 사업 운영	나. 그 밖에 마을결합형학교 운영 관련 사항			○			
	7.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1. 학교협동조합 사업 기획 및 추진						
		가. 학교협동조합 사업 기본계획 수립				○		
		나. 학교협동조합 사업 대의회 업무				○		
		다.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관련 업무			○			
	8.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협력업무	1. 자치단체와의 협력업무						
		가. 협의체 운영 기본계획				○		
		나. 협의체 안건 수집			○			
		다. 그 밖에 협력관련 업무			○			
	9. 교육기부 및 사회협력 활성화	1. 교육기부 활성화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2. 사회협력 활성화			○			
	10.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1.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기본계획 수립					○	
		2.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지정 계획 수립					○	
		3.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해지 및 변경			○			
		4. 교육복지 예산배분 및 결산			○			
		5. 교육복지 담당자 연수 계획 수립 및 추진			○			
8. 참여협력담당관	10.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6.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운영 및 컨설팅			○			
		7.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평가 및 분석 보고			○			
		8. 교육복지 서울사업연구지원단 구성·운영			○			
		9. 교육복지공동체 구성·운영			○			
		10. 교육복지 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운영			○			
		11. 두런두런 프로그램 기본계획 수립			○			
		12. 두런두런 프로그램 운영 및 추진			○			
		13. 서울희망교실 기본계획 수립				○		
		14. 서울희망교실 운영 및 추진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15. 새꿈프로그램 기본계획 수립			○			
		16. 새꿈프로그램 운영 및 추진			○			
		17.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기관 및 유공자 표창			○			
	11. 지역 네트워크 구축	1. 교육복지 유관 공공기관·단체 협력 계획				○		
		2. 민간기관·단체·시설과의 연계·협력 계획			○			
		3.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			
		4. 교육복지 자료수집 및 조회		○				
8. 참여협력담당관	11. 지역 네트워크 구축	5. 교육복지 실태 조사			○			
	12. 지역교육복지센터 구축 및 운영	1. 지역교육복지센터 구축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		
		2.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			
		3. 지역교육복지센터와 유관기관과의 연계 협력			○			
	13. 저출산·고령 사회 대비 업무	1.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시행계획 수립				○		
		2.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각종 업무			○			
		3. 인구교육 연구학교 선정 및 운영지원			○			
	14. 저소득층 자녀 초중고 교육비 지원	1. 교육비 지원 기본계획 수립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2. 교육비 지원 세부계획			○			
		3. 교육비 지원 실적보고 및 정산			○			
		4. 그 밖의 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			○			
		5. 교육비 지원 사업 유공자 표창			○			
	15. 저소득층 학생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	1.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 계획 수립			○			
		2.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 실적보고 및 정산			○			
		3. 그 밖의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에 관한 사항			○			
	16. 교육급여지원	1. 교육급여 지원 기본 계획 수립				○		
8. 참여협력담당관	16. 교육급여지원	2 교육급여 지원 보조금 요청 및 정산			○			
		3. 교육급여 지원에 관한 사항			○			
		4. 교육급여 지원 사업 유공자 표창			○			
	17. 방과후 보육료 지원	1. 방과후 보육료 지원 계획 수립			○			
		2. 방과후 보육료 지원 실적보고 및 정산			○			
		3. 그 밖의 방과후 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항			○			
	18.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	1. 저소득층자녀 장학생 선발 및 추천 안내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19. 교육복지 홈페이지 운영	1. 홈페이지 운영 기본계획 수립			○			
		2. 홈페이지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			
	20. 입학준비금 운영	1. 입학준비금 기본계획 수립					○	
		2. 입학준비금 운영 및 추진			○			
	21. 교육복지사업 운영	1. 교육복지 기본계획 수립					○	
		2. 교육복지사업 평가			○			
9. 노사협력담당관	1. 교직단체 업무	1. 교직단체관련 기본정책 수립 및 단체협약 (교섭·협의) 체결						○
		2. 단체교섭(교섭·협의)						
		가. 단체교섭(교섭·협의) 기본계획 수립					○	
9. 노사협력담당관	1. 교직단체 업무	나. 자문단 구성 운영				○		
		다. 교섭 일반에 관한 사항			○			
		라. 국민 여론 및 학부모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		
		3. 교직단체 지원						
		가. 교직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		
		나. 교직단체와의 일상업무 협의			○			
		4. 연수·홍보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가. 연수·홍보 기본계획 수립				○		
		나. 연수계획 집행 및 홍보자료 발간			○			
		5. 단체협약(협의) 사항 이행						
		가. 단체협약(협의사항) 이행점검 기본계획 수립				○		
		나. 학교현장 단체협약 이행 점검			○			
		다. 교섭·협의 사항 이행 점검 및 지도			○			
		6.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관련 업무						
		가. 기본방침 수립				○		
		나. 일반업무 수행			○			
9. 노사협력담당관	1. 교직단체 업무	7. 노조전임자 허가				○		
	2. 공무원 단체 업무	1. 공무원단체 단체협약(합의사항) 체결						○
		2. 단체교섭·협의						
		가. 단체교섭·협의 기본 계획 수립					○	
		나. 단체교섭·협의 실무반 구성·운영			○			
		다. 단체교섭·협의 관련 자료 수집		○				
		라. 자문단 구성에 관한 사항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마. 소속직원 및 공무원단체 여론 수렴				○		
		바. 그 밖의 교섭·협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			
		3. 공무원단체 지원						
		가. 공무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		
		나. 공무원단체와의 업무협의			○			
		4. 연수 및 홍보						
		가. 연수 및 홍보 기본계획				○		
		나. 연수·홍보 세부 추진계획수립			○			
		다. 연수·홍보계획 집행		○				
9. 노사협력담당관	2. 공무원 단체 업무	라. 연수·홍보자료 발간			○			
		5. 단체협약·협의 사항 이행 관련 사항						
		가. 단체협약·협의 사항 이행점검 기본계획 수립				○		
		나. 단체협약 이행 점검 및 지도			○			
		6. 공무원단체업무 관련 협의회 구성·운영						
		가. 공무원단체업무 관련 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수립			○			
		나. 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집행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7.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및 분쟁조정 관련 업무						
		가. 기본방침 수립				○		
		나. 일반업무 수행			○			
		8. 노조전임자 허가				○		
	3. 교육공무직원 인사	1. 교육공무직원 인력관리 계획 수립					○	
		2. 교육공무직 인사 운영						
		가. 교육공무직원 신규채용 계획 수립					○	
		나. 교육공무직원 정기전보 계획 수립				○		
		다. 교육공무직원 인사운영 계획 수립				○		
9. 노사협력담당관	3. 교육공무직원 인사	라. 장애인근로자 채용 기본 계획 수립					○	
		마. 장애인근로자 채용 실행계획 수립				○		
		3. 교육공무직원 복무지침 수립				○		
	4.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1. 교육공무직원 정원책정(조정) 기본계획					○	
		2. 교육공무직원 정원 배정			○			
		3. 인력관리협의회 운영 계획				○		
		4.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수립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5.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				○		
		6. 교육공무직원 실태조사(통계처리) 실시			○			
	5.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관리 및 지원	1. 교육공무직원 통합인건비 운영						
		가. 임금제도 개선 및 변경						○
		나. 통합인건비 운영계획 수립				○		
		다 통합인건비 운영 및 집행			○			
		라. 대체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원			○			
		2.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계획 수립				○		
		3. 공무원외 근로자 장애인고용장려금 및 고용부담금 집행			○			
9. 노사협력담당관	5.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관리 및 지원	4.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		
		5. 교육공무직원 임금업무 처리지침 수립				○		
		6. 교육공무직원 퇴직급여 관리						
		가. 퇴직급여제도 개선 및 변경						○
		나. 퇴직급여제도 운영계획 수립				○		
		다. 퇴직급여제도 운영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라. 퇴직자 퇴직급여 지급신청		○				
	6. 교육공무직원 노무 관리	1. 노사협의회 수립 및 운영						
		가.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 위촉						○
		나. 노사협의회 운영				○		
		2. 교육공무직원 노무 관리 지원						
		가. 직무연수·홍보			○			
		나. 노사관계 지원			○			
		다. 노동사건(노동위원회 심판, 진정, 고소 등) 주관 과(부서) 지정			○			
		라. 노동사건 업무수행자 지정			○			
		마. 노동사건 관련 자료 수집 및 제출			○			
9. 노사협력담당관	7. 교육공무직단체 업무	1. 교육공무직단체 단체협약(합의사항) 체결						○
		2. 단체교섭·협의						
		가. 단체교섭·협의 기본 계획 수립					○	
		나. 단체교섭·협의 실무반 구성·운영			○			
		다. 단체교섭·협의 관련 자료 수집		○				
		라. 자문단 구성에 관한 사항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마. 소속 직원 및 공무원단체 여론 수렴				○		
		바. 그 밖의 교섭·협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			
		3. 교육공무직단체 지원						
		가. 교육공무직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		
		나. 교육공무직단체와의 업무협의			○			
		4. 단체협약·협의 사항 이행 관련 사항						
		가. 단체협약·협의 사항 이행점검 기본계획 수립				○		
		나. 단체협약 이행 점검 및 지도			○			
		5.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및 분쟁조정 관련 업무						
		가. 기본방침 수립				○		
9. 노사협력담당관	7. 교육공무직단체 업무	나. 일반업무 수행			○			
		6. 노조전임자 허가			○			
		7. 노조근로시간면제자 허가						
		가. 운영계획 수립				○		
		나. 일반허가 업무			○			
10. 대외협력담당관	1. 시의회 업무지원	1. 의사일정 접수 및 통보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2. 부의안건 제출			○			
		3. 부의안건 공고 의뢰			○			
		4. 부의안건 의결안 접수 및 의결결과 통보			○			
		5. 의결 및 재의결요구 사항에 대한 조정				○		
		6. 요구자료 접수 및 분류		○				
		7. 요구자료 수합 제출			○			
		8. 서면질문(정책사항)에 대한 답변서 제출			○			
		9. 일반 업무 지원 및 협조		○				
		10. 본회의 및 위원회 질의·답변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서 작성				○		
	2. 국회업무 지원	1. 주요현안 업무보고 지원			○			
10. 대외협력 담당관	2. 국회업무 지원	2. 요구자료 접수 및 분류		○				
		3. 요구자료 수합 제출			○			
		4. 서면 질문(정책사항)에 대한 답변서 제출			○			
		5. 일반업무 지원 및 협조		○				
	3. 임시회 소집	1. 시의회 소집요구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4. 외부기관 감사(조사) 수감 (국회, 시의회)	1. 수감계획 수립					○	
		2. 수감계획 통보			○			
		3. 증인 및 출석자 명단 제출			○			
		4. 요구자료 접수 및 분류		○				
		5. 요구자료 수합 및 제출			○			
		6. 서면답변서 제출			○			
		7. 감사결과 처리 보고			○			
		8. 근무요원 차출 등 수감 관련 행정지원			○			
	5. 국제교류협력	1. 국제교류협력사업 추진						
		가. 국제교류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종합적인 사항 (외국지방교육기관과의 자매결연 체결등)						○
		나.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국제이해교육, 산하기관 자매결연 활성화 등)				○		
10. 대외협력 담당관	5. 국제교류협력	다. 사업추진결과 보고			○			
		2. 외국교육기관 초청 및 방문						
		가. 초청·방문 계획 수립 및 시행(교육감, 부교육감)						○
		나. 초청·방문 계획 수립 및 시행(실국장 이하)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다. 초청 및 방문 결과 보고			○			
		3. 외빈방문 행사 및 학교 섭외			○			
		4. 외국어 문서작성·통역		○				
		5. 자료 및 정보의 수집		○				
11. 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	1. 학교업무 경감 및 효율화 추진에 관한 사항	1. 기본 계획 수립				○		
		2. 학교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계획			○			
		3. 교육지원팀 수업시수 경감 강사비 지원 계획			○			
		4. 과제별 세부 사업 계획 추진 사항			○			
	2. 혁신미래교육 기획·운영	1. 학교혁신 기본 계획 수립						○
		2. 교육전문직 학습공동체 운영 계획			○			
		3. 학교관리자 학습공동체 운영 계획			○			
		4. 학교혁신지원센터 기본 운영 계획			○			
11. 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	2. 혁신미래교육 기획·운영	5. 혁신미래교육 아카데미 기본계획			○			
		6. 혁신교육 전공 대학원 교육대상자 선발 계획			○			
		7. 학교 안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계획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8. 과제별 세부 사업 계획 추진 사항			○			
	3. 서울형 혁신학교 지정·운영·관리 및 평가	1. 혁신학교 기본계획 수립 (종합계획, 연간 운영 계획)						○
		2. 공모 계획 수립				○		
		3. 지정 및 해제						○
		4. 혁신학교별 운영지원비 교부			○			
		5. 혁신학교 평가 운영 계획			○			
		6. 혁신학교 컨설팅 기본 계획			○			
		7. 과제별 세부 사업 계획 추진 사항			○			
	4. AI·디지털교수학습·정보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추진	1.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
	5. AI·디지털교수학습·정보교육 운영 및 평가	1. AI·디지털교수학습·정보교육 주요업무계획 수립				○		
		2. AI·디지털교수학습·정보교육 운영 점검·지도			○			
		3. AI·디지털교수학습·정보교육 평가 및 표창			○			
11. 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	5. AI·디지털교수학습·정보교육 운영 및 평가	4. AI·디지털교수학습·정보교육 지도자료 개발·보급			○			
	6. AI·디지털교수학습·정보교육 행사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1. 기본계획 수립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2. 운영 및 결과보고, 시상			○			
		3. 교과교육연구회(영역별) 운영 지도		○				
	7. AI·디지털교수학습·정보교육교원연수	1. 직무연수						
		가. 연수 기본계획 수립			○			
		나. 연수 운영 지도 및 결과 처리		○				
	8. AI·디지털교수학습·정보교육연구(시범, 선도)학교 운영	1. 추진계획 수립 및 연구학교 선정			○			
		2. 연구학교 운영지도 및 결과 보고			○			
	9. 정보교육 지원	1. 민간참여컴퓨터교실 관리·운영			○			
		2. 교육 교류 협력국 정보교육 지원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중고 PC 지원 업무 추진			○			
		다. 교원 초청 정보교육 연수 업무 추진			○			
		라. 수혜국 현지방문 업무 추진			○			
11. 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	10. 정보교육 운영	1. 정보교육 세부 추진계획 수립				○		
		2. 정보교육 운영 점검·지도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3. 정보교육 지도자료 개발·보급			○			
		4. 정보통신 윤리교육 계획 수립 및 안내			○			
		5.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계획수립 및 운영			○			
		6. 학부모 정보통신윤리 연수 계획수립 및 운영			○			
		7. 미래학교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		
	11. 과학·수학·메이커·영재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추진	1.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
	12. 과학·수학·메이커·영재교육 운영 및 평가	1. 과학·수학·메이커·영재교육 주요업무계획 수립				○		
		2. 과학·수학·메이커· 영재교육 운영 점검·지도			○			
		3. 과학·수학·메이커· 영재교육 평가 및 표창			○			
		4. 과학·수학·메이커· 영재교육 지도자료 개발·보급			○			
		5. 과학실험실 현대화			○			
		6. 학교 실험실 폐수·폐시약 처리			○			
	13. 과학·수학·메이커·영재교육 행사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1. 기본계획 수립			○			
		2. 운영 및 결과보고, 시상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11. 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	13. 과학·수학·메이커·영재교육 행사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교과교육연구회(영역별) 운영 지도		○				
	14. 과학고·과학중점고·발명교실 운영	1. 지원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			
		2. 지원 및 운영지도		○				
		3. 운영성과 평가			○			
	15.과학전시관·과학교육센터 및 융합과학교육센터 운영 지도	1. 과학전시관, 과학교육센터 및 융합과학교육센터 운영 계획 수립 지도			○			
		2. 과학전시관, 과학교육센터 및 융합과학교육센터 운영 지도		○				
	16. 영재교육기관 설치 및 운영, 평가	1. 영재교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영재교육기관 승인					○	
		2. 영재교육기관 평가 기본계획 수립			○			
		3. 영재교육기관 공모계획			○			
		4. 영재교육기관 지원 및 운영 지도		○				
		5. 영재교육기관 평가 및 결과보고, 시상			○			
	17. 영재교육 운영	1. 영재교육 운영 세부추진계획 수립			○			
		2. 영재교육 운영 점검 및 지도		○				
		3.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			
		4. 영재교육연구회 운영 지도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5.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지도		○				
11. 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	17. 영재교육 운영	6. 영재교육담당자 워크숍 운영			○			
	18. 과학·수학·메이커·영재교육 교원연수	1. 직무연수						
		가. 연수 기본계획 수립			○			
		나. 연수 운영 지도 및 결과 처리		○				
	19. 과학·수학·메이커·영재교육 연구학교 운영	1. 추진계획 수립 및 연구학교 선정			○			
		2. 연구학교 운영지도 및 결과 보고			○			
	20. 행정정보화 계획 및 추진	1. 정보화 중장기 계획 수립						○
		2. 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	
		3. 지능정보화 전략계획 수립(ISP)						○
		4. 정보기술 아키텍처(범정부EA) 관리			○			
		5. 전산업무 개발 및 보급 추진				○		
	21. 정보화사업 관련 위원회 등 운영	1.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 운영					○	
		2. 정보화사업실무협의회 운영			○			
		3.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22. 정보화 교육 및 최신기술 전문인력 양성 업무	1. 기본계획 수립				○		
		2. 운영계획 수립			○			
11. 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	23. 행정사무 자동화에 관한 업무	1. 기본계획 수립				○		
		2. 업무 개발 및 보급			○			
	24. 학교정보화지원 체계 기획	1.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2. 연간 운영계획 수립				○		
		3. 월간 테크센터 운영보고				○		
		4. 사업 발주, 계약, 협의 조정 등 사업관리일반			○			
		5. 추진 협의회 및 컨설팅 지원단 운영 관리			○			
	25. 행정업무 전산기기 보급·관리	1. 기본 계획 수립				○		
		2. 보급 및 교체			○			
		3. 유지관리		○				
	26.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관리	1. 기본 계획 수립				○		
		2. 학교정보화기기 예산편성 및 교부관리			○			
		3. 학교정보화기기 관리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27.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관리	1. 기본 계획 수립				○		
		2. 관리 운영			○			
	28. 학생 스마트기기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1. 기본 계획 수립				○		
11. 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	28. 학생 스마트기기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2. 관리 운영			○			
	29. 업무용 정품 SW 관리·보급	1. 기본 계획 수립				○		
		2. 관리 운영			○			
	30. 영상회의시스템 운영	1.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			
	31. 정보보안	1. 정보보호 기본 계획 수립						○
		2. 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정			○			
		3. 정보보안 보안성 검토 위원회 운영 및 보안적합성 검증			○			
		4. 정보보안 수준진단 추진			○			
		5. 정보보안 감사 및 지도·감독			○			
		6. 정보보안 교육 계획 수립·추진			○			
		7.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운영			○			
		8. 그 밖에 일반 정보보안 활동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9. 정보보호 중대한 사항				○		
		10. 정보보호 경미한 사항			○			
		1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 수립			○			
		1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 이행			○			
11. 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	32. 개인정보보호	1.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수립·개정·점검결과				○		
		2.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		
		3.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추진			○			
		4.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 수립·추진			○			
		5. 개인정보 관리 실태 지도·감독			○			
		6. 정보보호 업무 매뉴얼 개정			○			
		7. 정보보호 컨설팅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일반 개인정보보호 활동			○			
	33. 인정도서 관련업무	1. 인정도서심의회 운영			○			
		2. 인정도서 승인				○		
	34. 우등상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1. 후원명칭 사용승인 결과 수합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2. 교육감 포상(학생) 번호 부여		○				
	35. 무상교과서	1. 무상교과서 수급관리			○			
12. 유아교육과	1. 유아교육지원계획 수립	1. 유아교육지원계획 수립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기본계획 운영 업무 추진			○			
12. 유아교육과	2. 유치원교육과정 운영	1. 교육과정 편성, 운영						
		가. 유치원 교육과정 관련 기본계획 수립			○			
		나.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도			○			
		다.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관련 업무			○			
		2. 교육과정 연수						
		가.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			
	3. 유치원 장학	1. 유치원 장학 기본 계획 수립			○			
		2. 유치원 장학 결과 분석			○			
	4. 연구학교운영	1. 연구학교 운영 지원						
		가. 사업별 시행 계획 수립			○			
		나. 사업별 시행 계획 추진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다. 사업별 평가 및 환류			○			
	5. 장학 자료 개발·보급	1. 장학 자료 개발·보급						
		가.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			
		나. 장학 자료 개발 보급			○			
	6. 유치원 교구 기준	1. 유치원 교구 기준 수립				○		
12. 유아교육과	6. 유치원 교구 기준	2. 유치원 교구 기준 고시					○	
	7. 중장기 발전계획	1.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2.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8. 유아교육위원회 운영	1. 유아교육위원회 운영						
		가. 유아교육위원회 위원 선정 및 위촉					○	
		나. 유아교육위원회 운영					○	
	9. 유치원 교육공무원 선발 관리	1. 교원정원관리						
		가. 교원수급계획 수립					○	
		나. 교원정원 소요자료 수집·분석			○			
		다. 교원 정원 배정 및 결과보고			○			
		2. 교육전문직원 정원·현원 관리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10. 교원임용	1. 신규교사 교육지원청 배정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임용후보자 명부작성 및 배정			○			
		2. 승진 및 전보						
		가. 원장승진(승진후보자명부) 및 전보, 파견						○
12. 유아교육과	10. 교원임용	나. 원감승진(승진후보자명부) 및 전보, 파견					○	
		다. 원장 겸임 발령			○			
		라. 원장·원감자격 연수후보자 명부			○			
		마. 교사전보			○			
		3. 그 밖의 임용						
		가. 원장중임제 업무추진				○		
		나. 휴·복직, 파견, 퇴직, 사망보고			○			
		4. 교육공무원 명예퇴직						
		가. 기본계획					○	
		나. 명퇴대상자 선정, 특별승진				○		
		다. 퇴직교원포상 및 명예퇴직금 지급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5. 교원임용 결과보고 및 대장관리		○				
	11. 교육전문직원 인사	1. 임용후보자 선발						
		가. 장학사·교육연구사 임용후보자 선발 전형 기본계획					○	
		나. 선발 전형 시행 계획			○			
		다. 선발 전형 세부업무추진			○			
12. 유아교육과	11. 교육전문직원 인사	라. 임용후보자 명부 작성			○			
		2. 교육전문직원 임용						
		가. 장학관·교육연구관 임용 및 교류						○
		나. 장학사·교육연구사 임용 및 교류				○		
		다. 교육전문직원 휴직·복직 및 퇴직			○			
		라. 교육전문직원 사망보고				○		
		마. 교육전문직원 근무성적 평정					○	
	12. 교원초빙제	1. 기본계획 수립				○		
		2. 초빙원장 임용제청 추천자 선정						○
		3. 원장초빙제 업무 추진			○			
		4. 교사초빙제 업무추진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13. 교육공무원 인사교류	1. 교사의 국·공립 교류 및 시·도간 교류			○			
	14. 파견·장기 연수 대상자 선발	1. 파견·장기연수 대상자 선발 기본계획				○		
		2. 파견·장기연수 대상자 추천(전문직, 원감 이상)			○			
		3. 파견·장기연수 대상자 추천(교사)			○			
	15. 교육공무원 상훈	1. 모범공무원 추천						
12. 유아교육과	15. 교육공무원 상훈	가. 기본계획				○		
		나. 표창대상자 공적심사 및 추천			○			
		다. 포상전수계획			○			
		2. 서울특별시교육상						
		가. 기본계획					○	
		나. 표창대상자 공적심사 및 추천			○			
		다. 포상전수계획			○			
		3. 스승의 날 정부포상 및 교육감 표창						
		가. 기본계획				○		
		나. 표창대상자 공적심사 및 추천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다. 포상전수계획			○			
	16. 교육공무원 인사일반	1. 인사제도						
		가. 인사관리원칙 및 제도개선				○		
		나. 각종 인사 관련 위원회 운영			○			
		2. 부장교사 등 임용						
		가. 부장교사 관리			○			
12. 유아교육과	16. 교육공무원 인사일반	나. 개설요원(교사) 임용 및 관리			○			
		다. 기간제 교원·산학협동교사·강사·명예교사 관리			○			
		3. 교원인사관리 일반						
		가. 인사기록관리		○				
		나. 정기승급 및 호봉획정		○				
		다. 교원 현원명부 및 신원대장 관리			○			
	17. 교육훈련	1. 교원연수 기본계획				○		
		2.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			
		3. 교원 자격연수						
		가. 원장·원감 자격연수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나. 교사(교사부전공)자격연수			○			
		4. 교원재교육 및 특별연수			○			
		5. 신규채용후보자 사전교육			○			
		6. 교원연수 제도개선			○			
	18. 교육공무원 복무관리	1. 겸직허가						
		가. 장학관·교육연구관·원장				○		
12. 유아교육과	18. 교육공무원 복무관리	나. 장학사·교육연구사			○			
		2. 원장의 휴가신고 및 국외여행 신고			○			
		3. 교육공무원 복무관리 일반			○			
		4. 기관장(교육전문직원) 연가신청수리			○			
	19. 교육공무원 후생복지	1. 성과급지급업무						
		가. 장학관·교육연구관·원장				○		
		나. 장학사·교육연구사·원감·교사				○		
		2. 교원 고충처리				○		
		3. 교원 사안처리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20. 교육공무원 징계	1. 징계 의결 요구·처분 및 직권면직, 직위해제						
		가. 장학관·교육연구관·원장						○
		나. 장학사·교육연구사·원감·교사					○	
		2. 징계처분 기록말소 및 대장관리			○			
		3. 재심·소송업무 처리 및 결과보고			○			
	21. 교원 능력개발 평가	1.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						
		가. 시행계획 수립					○	
12. 유아교육과	21. 교원 능력개발 평가	나. 세부운영계획			○			
		2. 맞춤형 연수 운영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운영계획			○			
		3. 평가관리위원회 운영						
		가. 규정 제정·개정				○		
		나. 위원회 운영			○			
	22. 수석교사 선발 및 임용	1. 수석교사 선발 기본계획				○		
		2. 수석교사 교육지원청 배치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23.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1. 방과후 과정 운영 기본계획 수립·운영			○			
		2. 에듀케어 계획·운영			○			
		3. 방과후 과정 보조인력(3세대하모니) 자원봉사자 계획·운영			○			
		4. 방과후 과정 교직원 연수			○			
		5. 유치원 온종일돌봄교실 계획·운영			○			
		6. 방과후 특성화 교육활동 운영 지원			○			
		7. 유아 사교육 경감 업무 추진			○			
12. 유아교육과	23.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8. 서울시 지원 방과후 과정 관련 업무			○			
	24. 유아교수 학습활동 지원	1. 유치원 독서교육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			○			
		2. 지역 유아교육 협력 네트워크 운영 지원			○			
		3. 유치원 도덕·인성 교육계획 수립 및 추진			○			
		4. 단기 대체 교사 지원			○			
	25. 유치원 생활지도	1. 유치원 생활지도 기본계획 수립			○			
		2. 유치원 생활지도 업무 추진		○				
	26.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운영지도	1. 기본 운영계획 조정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2. 진흥원 운영지도			○			
	27. 유아학비 지원	1. 유아학비지원 기본계획 수립				○		
		2. 유아학비지원 실적보고			○			
		3. 유아학비지원에 관한 사항			○			
	28.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1. 장애유아 무상교육비지원 기본계획 수립			○			
		2. 장애유아 무상교육비지원 실적보고			○			
		3. 장애유아 무상교육비지원에 관한 사항			○			
	29.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1.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기본계획 수립				○		
12. 유아교육과	29.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2. 지원금 교부			○			
	30. 유치원 운영위원회 운영지도	1.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			
		2. 유치원 운영위원회 현황조사 및 지도			○			
	31.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운영 지원	1.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운영 지원 기본계획 수립				○		
		2.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32. 공립유치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지원	1. 공립유치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지원 기본계획 수립				○		
		2. 공립유치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33. 유치원 유아모집·선발	1. 유치원 유아모집·선발 기본계획				○		
		2.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사항(홍보, 연수 등)			○			
		3. 유치원 유아모집 실적 보고			○			
	34. 유치원 교육비용 및 납부금	1. 사립유치원 납입금 안정화정책 기본계획 수립				○		
		2. 사립유치원 납입금 안정화점검단 구성·운영			○			
		3. 사립유치원 납입금 안정화 정책 후속 조치			○			
	35. 공영형 유치원 선정·운영	1. 공영형 유치원 신규 선정·재약정·해지						○
		2. 공영형 유치원 운영 계획 수립				○		
		3. 공영형유치원지원위원회 운영				○		
12. 유아교육과	35. 공영형 유치원 선정·운영	4. 공영형유치원 평가 및 컨설팅			○			
		5. 공영형 유치원 예산 배정			○			
	36. 유·보 협력사업	1. 유·보 협력사업 관련 업무			○			
	37. 유아교육 홍보	1. 유아교육 홍보자료의 제작 및 보급			○			
	38. 유치원 안전교육 및 지원	1. 유치원 안전교육 및 지원 계획 수립			○			
		2. 안전교육 지도·점검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13. 초등교육과	1. 초등 교육과정 운영	1. 초등 교육과정 관련 기본계획 수립				○		
		2. 초등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도			○			
		3. 사업별 세부추진 계획 수립			○			
		4. 초등 교육과정 관련 연수 및 홍보			○			
		5. 초등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관련 업무			○			
		6. 초등 교과교육 운영 계획 수립·추진			○			
	2. 초등학생 참여형 수업 운영	**1. 초등학생 참여형 수업 혁신 기본 계획 수립**				○		
		2. 사업별 세부추진 계획 수립			○			
	3. 초등 학생평가	1. 초등 학업성적관리 지침			○			
		2. 초등 평가 기본계획 수립				○		
13. 초등교육과	3. 초등 학생평가	3. 교과학습 평가자료 개발			○			
	4. 초등학교 학교생활 기록부 입력 및 관리	1.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및 관리			○			
	5. 인성교육 총괄	1. 인성교육 시행 기본계획 수립				○		
		2. 사업별 세부추진 계획 수립			○			
	6. 초등 장학자료 개발·보급	1.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2. 자료 개발 위원 선정		○				
	7. 초등학교 장학 지도	1. 초등 장학 계획 수립				○		
		2. 초등 장학 실행 계획 수립 운영			○			
		3. 초등 장학 결과 분석 보고			○			
	8. 학습준비물 지원	1. 학습준비물 지원 계획 수립 및 추진			○			
	9. 꿈을 담은 놀이터 만들기 지원	1. 꿈을 담은 놀이터 만들기 운영 계획 수립 및 추진				○		
	10. 연구학교 운영 총괄	1. 기본 계획 수립					○	
		2. 사업별 운영 계획(안) 수립			○			
		3. 사업별 운영 계획(안) 수합 및 조정			○			
		4. 총괄 운영 계획 수립				○		
		5.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		
13. 초등교육과	10. 연구학교 운영 총괄	6. 평가 및 환류			○			
	11. 초등 연구학교 운영	1. 연구학교 지정 심사계획 수립			○			
		2. 연구학교 운영 및 장학계획			○			
		3. 연구학교 운영 보고회			○			
		4. 초등 연구학교 유공교원 가산점 부여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12. 교육실습 협력학교 운영	1. 운영 기본계획 수립			○			
		2. 협력학교 지정 및 재지정			○			
		3. 협력학교 장학계획 수립 및 지도			○			
		4. 유공교원 가산점 부여			○			
	13. 연구대회 승인	1. 외부 연구대회 업무추진(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가. 연구대회인정위원회 구성·운영				○		
		나. 승인 심의 및 결과 통보			○			
		다. 연구대회 결과 관리			○			
	14. 학교 교구 기준	1. 학교교구 기준 수립				○		
		2. 학교교구 기준 고시					○	
	15. 생태전환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추진	1.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
13. 초등교육과	16. 생태전환교육 운영 및 평가	1. 생태전환교육 기본 계획 수립				○		
		2. 생태전환교육 세부 운영 및 점검·지도			○			
		3. 생태전환교육 평가 및 표창			○			
		4. 생태전환교육 관련 자문위원회 운영			○			
		5. 농촌유학 기본 계획 수립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6. 농촌유학 운영 및 평가			○			
	17. 생태전환교육 교원연수	1. 연수 기본계획 수립			○			
		2. 연수 운영 지도 및 결과 처리			○			
	18. 생태전환교육 연구학교 운영	1. 추진계획 수립 및 연구학교 선정			○			
		2. 연구학교 운영지도 및 결과 보고			○			
	19.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1.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기본계획 수립				○		
		2.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세부사업별 시행계획 수립·운영			○			
		3.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지도 및 장학자료 발간			○			
		4. 서울시 지원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사업 시행 계획 수립·운영			○			
	20.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	1.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			
		2.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세부사업별 시행계획 수립·운영			○			
13. 초등교육과	21. 초등 돌봄교실 운영·지원	1. 운영계획 수립				○		
		2. 운영 세부 내용 추진			○			
	22. 교육공무원 선발·관리	1. 교원정원관리						
		가. 교원수급계획 수립					○	
		나. 교원정원 소요자료 수집·분석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다. 교원 정원 배정 및 결과보고			○			
		2. 교육전문직원 정원·현원 관리				○		
	23. 교원임용	1. 신규교사 교육지원청 배정(초)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임용후보자 명부작성 및 배정			○			
		2. 승진 및 전보						
		가. 교장승진(승진후보자명부) 및 전보, 파견						○
		나. 교감승진(승진후보자명부) 및 전보, 파견					○	
		다. 교장·교감자격 연수후보자 명부			○			
		라. 교사전보			○			
		마. 교장 겸임 발령			○			
13. 초등교육과	23. 교원임용	3. 그 밖의 임용						
		가. 교장중임제 업무추진				○		
		나. 휴·복직, 파견, 퇴직, 사망보고			○			
		4. 교육공무원 명예퇴직						
		가. 기본계획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나. 명퇴 대상자 선정, 특별승진				○		
		다. 명예퇴직금 지급			○			
		5. 교원임용결과보고 및 대장관리		○				
	24. 교육전문직원 인사	1. 임용후보자 선발						
		가. 장학사·교육연구사 임용후보자 선발 전형 기본계획					○	
		나. 선발 전형 시행 계획				○		
		다. 선발 전형 세부업무추진			○			
		라. 임용후보자 명부 작성			○			
		2. 교육전문직원 임용						
		가. 장학관·교육연구관 임용 및 교류						○
		나. 장학사·교육연구사 임용 및 교류				○		
13. 초등교육과	24. 교육전문직원 인사	다. 교육전문직원 휴직·복직 및 퇴직, 겸임			○			
		라. 교육전문직원 사망보고				○		
		마. 교육전문직원 근무성적 평정					○	
	25. 교원초빙제	1. 기본계획 수립				○		
		2. 공모교장 임용제청 추천자 선정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3. 공모교장 업무 추진			○			
		4. 교사초빙제 업무추진			○			
	26.교육공무원 인사교류	1. 교사의 국·공립 교류 및 시·도간 교류			○			
	27. 파견·장기 연수 대상자 선발	1. 파견·장기연수 대상자 선발 기본계획				○		
		2. 파견·장기연수 대상자 추천(전문직, 교감 이상)			○			
		3. 파견·장기연수 대상자 추천(교사)			○			
	28. 교육공무원 상훈	1. 모범공무원 추천						
		가. 기본계획				○		
		나. 표창대상자 공적심사 및 추천			○			
		다. 포상전수계획			○			
		2. 서울특별시교육상						
13. 초등교육과	28. 교육공무원 상훈	가. 기본계획					○	
		나. 표창대상자 공적심사 및 추천			○			
		다. 포상전수계획			○			
		3. 스승의 날, 퇴직교원 정부포상 및 교육감 표창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가. 기본계획				○		
		나. 표창대상자 공적심사 및 추천			○			
		다. 포상전수계획			○			
	29.교육공무원 인사일반	1. 인사제도						
		가. 인사관리원칙 및 제도개선				○		
		나. 각종 인사 관련 위원회 운영			○			
		2. 부장교사 등 임용						
		가. 부장교사 관리			○			
		나. 개설요원(교사) 임용 및 관리			○			
		다. 기간제 교원·산학협동교사·강사·명예교사 관리			○			
		3. 교원인사관리 일반						
		가. 인사기록관리		○				
13. 초등교육과	29.교육공무원 인사일반	나. 정기승급 및 호봉획정		○				
		다. 교원 현원명부 및 신원대장 관리			○			
	30. 교육훈련	1. 교원연수 기본계획				○		
		2.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3. 교원 자격연수						
		가. 교장·교감 자격연수			○			
		나. 교사(교사부전공)자격연수			○			
		4. 교원재교육 및 특별연수			○			
		5. 신규채용후보자 사전교육			○			
		6. 교원연수 제도개선			○			
	31.교육공무원 복무관리	1. 겸직허가						
		가. 장학관·교육연구관·교장				○		
		나. 장학사·교육연구사			○			
		2. 교장의 휴가신고 및 국외여행 신고			○			
		3. 교육공무원 복무관리 일반			○			
		4. 기관장(교육전문직원) 연가신청수리			○			
13. 초등교육과	32.교육공무원 후생복지	1. 성과급지급업무						
		가. 장학관·교육연구관·교장				○		
		나. 장학사·교육연구사·교감·교사				○		
		2. 스승의 날 행사추진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3. 교원 고충처리				○		
		4. 교원 사안처리			○			
	33.교육공무원 징계	1. 징계 의결 요구·처분 및 직권면직, 직위해제						
		가. 장학관·교육연구관·교장						○
		나. 장학사·교육연구사·교감·교사					○	
		2. 징계처분 기록말소 및 대장관리			○			
		3. 재심·소송업무 처리 및 결과보고			○			
	34. 교원능력 개발평가	1.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						
		가. 시행계획 수립					○	
		나. 세부운영계획			○			
		2. 맞춤형 연수 운영						
		가. 기본계획 수립				○		
13. 초등교육과	34. 교원능력 개발평가	나. 세부운영계획			○			
		3. 평가관리위원회 운영						
		가. 규정 제정·개정				○		
		나. 위원회 운영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35. 학교 교육력 제고 유공교원	1. 학교 교육력 제고 유공교원 운영						
		가. 기본 계획 수립			○			
		나. 운영 기관(부서) 선정 및 지도			○			
		다. 유공교원 가산점 부여			○			
	36.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수원 운영지도	1. 기본 운영계획 조정				○		
		2. 연수원 운영지도			○			
	37. 수석교사 선발 및 임용	1. 수석교사 선발						
		가. 선발 계획 수립				○		
		나. 선발 전형 시행			○			
		다. 임용후보자 명부 작성			○			
		2. 수석교사 교육지원청 배치			○			
		3. 수석교사 평가 및 운영			○			
14. 중등교육과	1. 중등학교 장학 지도	1. 중등 장학 계획 수립				○		
		2. 중등 장학 실행 계획 수립 운영			○			
		3. 중등 장학 결과 분석 보고			○			
	2. 교육과정 심의	1. 교육과정위원회 구성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2. 교육과정위원회 운영			○			
		3.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고시						○
		4. 신설학과 및 신설과목 교육과정 승인				○		
	3. 중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1. 교육과정 관련 기본계획 수립				○		
		2.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도			○			
		3. 교육과정 관련 연수 및 홍보			○			
		4. 수준별 수업 운영 지도			○			
		5. 신설학교 교과서 선정		○				
		6. 교육과정 운영 개선 사업 추진			○			
	4. 서울형 자유학년제 기획 및 운영	1. 기본계획 수립				○		
		2. 연구학교 운영			○			
		3. 연수 및 홍보			○			
14. 중등교육과	4. 서울형 자유학년제 기획 및 운영	4. 중학교 교육개선 추진단 운영			○			
		5. 자유학년제 지원자료 개발			○			
	5. 학교 교구 기준	1. 학교교구 기준 수립				○		
		2. 학교교구 기준 고시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6. 고교교육개선	1. 고교교육 개선 추진계획						
		가. 일반고 전성시대 기본계획				○		
		나. 학교 간 협력교육과정(거점형, 연합형, 온라인형) 운영 연간계획			○			
	7. 교과교실제 운영지원	1. 교과교실제 운영학교 선정 기본계획 수립				○		
		2. 교과교실제 신규 도입학교 선정			○			
		3. 교과교실제 운영학교 운영 지도			○			
	8.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운영관련 업무	1.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운영 지원			○			
	9. 교단지원 장학자료 개발(중등)	1. 교단 지원 장학 자료 발간						
		가. 기본 계획 수립 및 추진			○			
		나. 장학자료 개발 보급			○			
	10. 국제중학교 입학업무 등 총괄	1. 국제중학교 입학업무 등 총괄				○		
		2. 국제중학교 운영 관련 업무			○			
14. 중등교육과	11. 대학수능 시험관리	1.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지침				○		
		2.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			
		3. 교육부, 평가원 및 학교와의 업무협조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12. 중·고등학교 학력평가	1. 시험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 지침				○		
		2. 출제본부 설치·운영 계획				○		
		3. 시험시행계획 및 결과처리			○			
	13.교육공무원 선발·관리	1. 교원정원관리						
		가. 교원수급계획 수립					○	
		나. 교원정원 소요자료 수집·분석			○			
		다. 교원 정원 배정 및 결과보고			○			
		2. 교육전문직원 정원·현원 관리				○		
	14. 교원임용	1. 신규교사 임용 및 배정(중등)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임용후보자 명부작성 및 배정			○			
		2. 승진 및 전보						
		가. 교장승진(승진후보자명부) 및 전보, 파견						○
14. 중등 교육과	14. 교원임용	나. 교감승진(승진후보자명부) 및 전보, 파견					○	
		다. 교장·교감자격 연수후보자 명부			○			
		라. 교사전보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마. 교장 겸임 발령			○			
		3. 그 밖의 임용						
		가. 교장중임제 업무추진				○		
		나. 휴·복직, 파견, 퇴직, 사망보고			○			
		4. 교육공무원 명예퇴직						
		가. 기본계획					○	
		나. 명퇴대상자선정, 특별승진				○		
		다. 퇴직교원포상 및 명예퇴직금 지급			○			
		5. 교원임용 결과보고 및 대장관리		○				
	15. 교육전문직원 인사	1. 임용후보자 선발						
		가. 장학사·교육연구사 임용후보자 선발 전형 기본계획					○	
		나. 선발 전형 시행 계획				○		
		다. 선발 전형 세부업무추진			○			
14. 중등교육과	15. 교육전문직원 인사	라. 임용후보자 명부 작성			○			
		2. 교육전문직원 임용						
		가. 장학관·교육연구관 임용 및 교류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나. 장학사·교육연구사 임용 및 교류				○		
		다. 교육전문직원 휴직·복직 및 퇴직, 겸임			○			
		라. 교육전문직원 사망보고				○		
		마. 교육전문직원 근무성적 평정					○	
	16. 교원초빙제	1. 기본계획 수립				○		
		2. 공모교장 임용제청 추천자 선정						○
		3. 공모교장 업무 추진			○			
		4. 교사초빙제 업무 추진			○			
	17.교육공무원 인사교류	1. 교사의 국·공립 교류 및 시·도간 교류			○			
	18.파견·장기 연수 대상자 선발	1. 파견·장기연수 대상자 선발 기본계획(해외연수 포함)				○		
		2. 파견·장기연수 대상자 추천(전문직원, 교감 이상)			○			
		3. 파견·장기연수 대상자 추천(교사)			○			
	19.교육공무원 상훈	1. 모범공무원 추천						
14. 중등교육과	19.교육공무원 상훈	가. 기본계획				○		
		나. 표창대상자 공적심사 및 추천			○			
		다. 포상전수계획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2. 서울특별시교육상						
		가. 기본계획					○	
		나. 표창대상자 공적심사 및 추천			○			
		다. 포상전수계획			○			
		3. 스승의 날 정부포상 및 교육감 표창						
		가. 기본계획				○		
		나. 표창대상자 공적심사 및 추천			○			
		다. 포상전수계획			○			
	20.교육공무원 인사일반	1. 인사제도						
		가. 인사관리원칙 및 제도개선				○		
		나. 각종 인사 관련 위원회 운영			○			
		2. 부장교사 등 임용						
		가. 부장교사 관리			○			
14. 중등교육과	20.교육공무원 인사일반	나. 개설요원(교사) 임용 및 관리			○			
		다. 기간제 교원·산학협동교사·강사·명예교사 관리			○			
		3. 교원인사관리 일반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가. 인사기록관리		○				
		나. 정기승급 및 호봉획정		○				
		다. 교원 현원명부 및 신원대장 관리			○			
	21. 교육훈련	1. 교원연수 기본계획				○		
		2.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			
		3. 교원 자격연수						
		가. 교장·교감 자격연수			○			
		나. 교사(교사부전공)자격연수			○			
		4. 교원재교육 및 특별연수			○			
		5. 신규채용후보자 사전교육			○			
		6. 교원연수 제도개선			○			
	22.교육공무원 복무관리	1. 겸직허가						
		가. 장학관·교육연구관·교장				○		
14. 중등교육과	22.교육공무원 복무관리	나. 장학사·교육연구사			○			
		2. 교장의 휴가신고 및 국외여행 신고			○			
		3. 교육공무원 복무관리 일반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4. 기관장(교육전문직원) 연가신청수리			○			
	23.교육공무원 후생복지	1. 성과급지급 업무						
		가. 장학관·교육연구관·교장				○		
		나. 장학사·교육연구사·교감·교사				○		
		2. 스승의 날 행사추진			○			
		3. 교원 고충처리				○		
		4. 교원 사안처리			○			
	24.교육공무원 징계	1. 징계 의결 요구·처분 및 직권면직, 직위해제						
		가. 장학관·교육연구관·교장						○
		나. 장학사·교육연구사·교감·교사					○	
		2. 징계처분 기록말소 및 대장관리			○			
		3. 재심·소송업무 처리 및 결과보고			○			
	25. 교원능력 개발평가	1. 교원능력 개발평가 운영						
14. 중등 교육과	25. 교원능력 개발평가	가. 시행계획 수립					○	
		나. 세부운영계획			○			
		2. 맞춤형 연수 운영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운영계획			○			
		3. 평가관리위원회 운영						
		가. 규정 제정·개정				○		
		나. 위원회 운영			○			
	26. 학교 교육력 제고 유공교원	1. 학교 교육력 제고 유공교원 운영						
		가. 기본 계획 수립			○			
		나. 운영 기관(부서) 선정 및 지도			○			
		다. 유공교원 가산점 부여			○			
	27. 수석교사 선발 및 임용	1. 수석교사 선발 기본계획				○		
		2. 수석교사 교육지원청 배치			○			
		3. 수석교사 평가			○			
	28.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수원 운영지도	1. 기본 운영계획 조정				○		
14. 중등교육과	28.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수원 운영지도	2. 연수원 운영지도			○			
	29. 교원 자격검정	1. 교(원)장 자격인정제도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2. 교원 자격증 (재)발급						
		가. 교원 무시험 검정에 의한 자격증 발급			○			
		나. 자격연수 이수자 자격증 발급			○			
		다. 영문 교원자격증 발급		○				
		라. 교원자격증 부관 삭제		○				
		마. 교원자격증 박탈 및 박탈처분 통지			○			
		3. 교원양성위원회 운영				○		
	30. 초·중등 교원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1. 초·중등 교원 임용 시험 기본계획					○	
		2. 초·중등 교원 임용 시험 세부추진계획(출제, 채점, 감독)				○		
		3. 초·중등 교원 임용 시험 계획 공고				○		
		4. 초·중등 교원 임용 시험 합격자 결정(발표)				○		
		5. 초·중등 교원 임용 시험 운영 일반						
		가. 감독위원 차출 및 협의회 운영			○			
		나. 고사장 등 시설물 사용 협조			○			
14. 중등 교육과	30. 초·중등 교원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다. 성적 및 경력 등 유관기관 협조·확인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라. 국기기술자격증 사실 조회 요청			○			
		6. 초·중등교원 임용 시험에 대한 행정소송 관리				○		
		7. 초·중등교원임용시험 자문위원회 운영			○			
		8. 국·사립 교원 임용 시험 위탁선발 계획				○		
		9. 사립 교원 임용 시험 위탁선발 주요 방침 변경						○
	31. 사립학교 교원 인사 관리	1. 교장 임명 승인 및 임면보고 수리						
		가. 이사장과 친인척관계인 교장의 임명승인				○		
		나. 교장 임명보고			○			
		다. 전보, 기타(면직 보고 등)			○			
		2. 교감 및 교사 임면보고 수리		○				
		3. 임면대장, 인사기록 정리		○				
		4. 정원·현원 관리						
		가. 교원 정원배정 및 결과보고			○			
		나. 정원·현원 관리				○		
		5. 명예퇴직 및 휴·복직			○			
14. 중등교육과	31. 사립학교 교원 인사 관리	6. 성과급지급업무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7. 정부포상 및 표창			○			
		8. 교원 인사 관련 지침 및 기준 수립					○	
	32.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1. 자율학교 등 지정 운영위원회 구성					○	
		2. 자율학교 등 지정 운영위원회 운영			○			
		3. 자율학교 등 평가기본계획 수립				○		
		4. 자율학교 지정						○
	33. 자사고 관련 업무	1. 자사고 일반고 전환 지원 기본 계획						○
		2. 자사고 일반고 전환 지원				○		
		3. 자사고 운영			○			
	34. 고입전형업무	1. 특목고(외고, 국제고, 예술고), 자사고 입학전형 요강승인				○		
		2. 특목고(외고, 국제고, 예술고), 자사고 등 입학전형 업무			○			
		3.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 결과 보고				○		
	35. 대입제도	1. 대입제도 관련 업무			○			
15. 교수학습 ·기초학력 지원과	1. 기초학력 보장 지원 사업	1. 기초학력 보장 시행 계획 수립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사업별 세부추진 계획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15. 교수학습 ·기초학력지원과	1. 기초학력 보장 지원 사업	다. 장학자료 개발 및 보급			○			
		라. 우수학교 및 유공교원 표창			○			
		마. 각종 연수 운영			○			
		바. 각종 컨설팅, 모니터링 실시			○			
		2.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 업무 총괄						
		가. 세부추진계획 수립			○			
		나. 장학자료 개발 및 보급			○			
		다. 각종 담당자 연수 운영			○			
		라. 각종 컨설팅, 모니터링 실시			○			
		3. 서울학습도움센터 운영·관리						
		가. 기본운영계획 수립			○			
		나. 사업별 세부추진 계획			○			
		다. 각종자료 개발 및 보급			○			
		라. 상담사 교육운영			○			
	2. 중등 교수학습	1. 기본 계획 수립				○		
		2. 운영 및 세부업무 추진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3. 중등 수석교사 운영	1. 중등 수석교사 운영			○			
15.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	4. 중등 학생평가	1. 중등 학업성적관리 지침			○			
		2. 중등 평가 기본계획 수립				○		
		3. 중등 평가자료 개발			○			
	5.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1. 학교생활기록부관리지침 작성				○		
		2.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 및 대입 이송자료 작성			○			
		3. 그 밖의 성적관리 업무		○				
	6.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1. 방과후학교 내실화 지원 기본계획 수립				○		
		2. 방과후학교 내실화 세부사업별 시행계획 수립·운영			○			
		3. 방과후학교 운영 지도 및 장학자료 발간			○			
		4. 외부 기관 연계 방과후학교 사업 시행계획 수립·운영			○			
	7. 독서와 연계한 토론, 논술 교육 지원	1. 기본 계획 수립				○		
		2. 운영 및 세부업무 추진			○			
	8. 독서교육 총괄	1. 기본 계획 수립				○		
		2. 운영 및 세부업무 추진			○			
	9. 독서 외부자원 연계 사업	1. 기본 계획 수립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2. 운영 및 세부업무 추진			○			
	10.학교도서관 지원업무	1. 학교도서관 지원 기본 계획				○		
15.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	10.학교도서관 지원업무	2. 학교도서관 지원 사업 운영			○			
	11. 인문학적 소양 함양 교육 업무	1. 기본 계획 수립				○		
		2. 운영 및 세부업무 추진			○			
	12. 국제바칼로레아(IB) 및 한국형바칼로레아(KB) 업무	1. 기본 계획 수립				○		
		2. 운영 및 세부업무 추진			○			
	13. 영어교육 활성화	1. 영어교육 활성화 추진 종합계획 수립				○		
		2. 영어교사 역량강화			○			
		3.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배치						
		가. 계획 수립				○		
		나. 배치학교 선정 및 고용계약 체결			○			
		다. 원어민 보조교사 수업장학 및 복무관리		○				
		4. 영어 교수학습 방법 개선 지원			○			
		5.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						
		가. 기본 계획 수립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나. 배치학교 및 배치인원 계획 수립			○			
		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수업장학 및 복무관리		○				
	14. 제2외국어 교육 활성화	1. 제2외국어교육 활성화						
15.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	14. 제2외국어 교육 활성화	가. 기본 계획 수립				○		
		나. 운영지도			○			
		다. 원어민 제2외국어 보조교사 배치			○			
16. 평생교육과	1. 평생교육기획 및 제도 개선	1.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					○	
	2. 평생교육 기본사항	1. 평생교육 세부계획 수립				○		
		2. 평생교육활동 표창계획 및 추진				○		
	3.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	1.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지정취소					○	
		2.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사항 변경			○			
		3.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도			○			
		4.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평가				○		
		5.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4.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학습자 학력인정	1.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학력인정 기준 수립					○	
		2.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학력인정 계획 수립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3. 학습이력 조사			○			
		4. 학력인정 여부 결정				○		
		5. 학력인정서 교부			○			
	5. 장애성인 프로그램 운영	1. 기본계획 수립				○		
16. 평생교육과	5. 장애성인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성인 프로그램 운영·지원			○			
	6.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운영·지도감독 및 등록·폐쇄 업무	1.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 승인, 등록 및 폐쇄					○	
		2. 학력인정 지정 및 취소						○
		3. 학력인정지정사항 변경			○			
		4.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등록사항 변경			○			
		5. 보조금 교부결정 기본계획 수립				○		
		6. 보조금 교부			○			
		7. 보조금 정산			○			
		8. 운영지도 감독			○			
	7. 평생교육시설 운영지도	1. 평생교육시설 관련 기획·운영			○			
		2. 평생교육시설 통계		○				
	8. 학교의 평생교육 운영 지원	1. 학교평생교육 기본 계획 수립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2. 학교평생교육 운영계획 및 실적			○			
		3. 학교평생교육 운영 만족도 조사			○			
	9. 평생교육 그 밖의 업무	1. 평생교육관계자 연수 및 워크숍				○		
		2. 평생교육 제도 개선			○			
	10. 검정고시	1. 검정고시 시행 기본계획 수립						○
16. 평생교육과	10. 검정고시	2. 고사장 선정			○			
		3. 원서접수 계획 수립			○			
		4. 문제지 배부 계획			○			
		5. 고사장 운영 세부 시행계획 수립				○		
		6. 문제지 보안 관리계획			○			
		7. 답안지 채점계획 수립			○			
		8. 검정고시 응시 결과 보고			○			
		9. 답안지 채점 결과 보고			○			
		10. 부정행위자 처리계획				○		
		11. 합격자 결정 및 발표 계획 수립			○			
		12. 합격증서 수여식 계획 수립				○		
		13. 학력조회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11. 평생학습관 및 공공도서관 활성화	1. 평생학습관 및 공공도서관 활성화 계획 수립				○		
		2.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3. 평생학습관 지정·운영				○		
		4. 평생학습관 및 공공도서관 통계 작성		○				
		5. 평생학습 및 독서진흥을 위한 행사 지원			○			
		6. 평생학습관 및 공공도서관 정보화 사업 지원			○			
16. 평생교육과	11. 평생학습관 및 공공도서관 활성화	7. 지역사회평생학습협력망 구축				○		
		8. 평생학습포털시스템 운영 지원			○			
	12. 평생학습관 및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1. 평생학습관 및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			
		2. 평생학습관 및 공공도서관 관련 민원처리			○			
	13. 교육자원봉사 지원센터 운영	1.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기본 운영계획 수립				○		
		2. 교육자원봉사단 및 교육자원봉사자문위원회 운영			○			
		3. 교육청 각 부서·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협력			○			
		4. 각종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14. 서울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	1. 서울평생교육정보센터 기본 운영계획 수립				○		
		2. 각종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15. 학점은행제 지원	1. 학점은행제도 신청서 접수 및 상담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16. 학원지도·감독 기본계획 수립·운영	1. 학원 지도·감독 계획 수립				○		
		2. 학원 지도·감독 계획 시행			○			
	17.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 포함)의 운영 지원·지도	1. 학원(교습소) 지도에 관한 주요사항				○		
		2. 학원수강료 관리			○			
		3. 학원(교습소)에 대한 각종 통계		○				
		4. 학원(교습소)지도·점검 실적 관리		○				
16. 평생교육과	17.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 포함)의 운영 지원·지도	5. 신고포상금제 및 단속보조원 관리			○			
		6. 학원업무 담당자 연수 및 워크숍			○			
		7.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 연수계획 수립				○		
		8. 학원(교습소) 연수경비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9. 학원장과의 정책협의회 계획 수립 및 시행			○			
		10. 학원총연합회 지원 협조에 관한 사항			○			
	18. 통학버스 관리 및 안전교육(학원)	1. 학원 통학버스 관리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			
	19.시민협의체 구성·운영	1. 시민협의체 구성·운영 기본계획 수립						○
		2. 시민협의체 운영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20. 비영리(공익) 법인 지도·관리	1. 공익법인 인허가 세부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개정						○
		2. 비영리(공익)법인 지도·감독 계획 수립				○		
		3. 비영리(공익)법인 연수계획 수립				○		
	21. 비영리(공익) 법인 설립지원	1. 비영리(공익)법인 설립허가 및 취소						
		가. 기본재산 30억 이하				○		
		나. 기본재산 30억 초과 100억 미만					○	
		다. 기본재산 100억 이상						○
		2. 비영리(공익)법인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		
16. 평생교육과	22. 비영리(공익) 법인 운영지원	1. 기본재산 처분(장기차입 포함) 허가						
		가. 기본재산 처분(기본 재산 100억 이상)				○		
		나. 기본재산 처분(기본 재산 100억 미만)			○			
		2. 기본재산 편입예외 기부금 사용 승인		○				
		3. 정관 변경 허가						
		가. 정관의 목적, 사업, 명칭 변경			○			
		나. 기본재산 변경(교환, 매도, 증자, 감자 등)			○			
		다. 법인 소재지 변경		○				
		라. 임원(이사) 정수 변경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마. 그 밖에 경미한 사항		○				
		5. 예산·결산서 검토 및 보고			○			
		6. 외부기관 협의(이관, 사업, 수혜자한정)			○			
		7. 임원 취임·해임 승인		○				
		8. 법인 허가(승인) 신청 서류 보완 요청		○				
		9. 각종 민원(허가·승인) 처리기간 연장		○				
	23.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변경) 및 말소	1. 신규 등록				○		
		2. 변경 등록 및 등록 말소			○			
		3. 그 밖에 비영리민간단체 지도·감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7. 민주시민 생활교육과	1. 탈북학생교육 지원	1. 기본계획 수립				○		
		2. 세부 계획 추진			○			
		3. 운영 및 세부업무 추진		○				
	2. 다문화교육 지원	1. 기본계획 수립				○		
		2. 세부 계획 추진			○			
		3. 운영 및 세부업무 추진		○				
	3. 세계시민교육	1. 기본 계획 수립				○		
		2. 세부 계획 추진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3. 운영 및 세부업무 추진		○				
	4. 역사교육자료 개발	1. 기본 계획 수립				○		
		2. 운영 및 세부업무 추진			○			
	5. 학생 생활교육	1. 학생 생활규정 검토 및 제·개정 지원			○			
	6. 학생인권 종합계획 수립	1. 학생인권 종합계획 수립						
		가. 학생인권 종합계획 수립						○
		나. 학생인권 종합계획 추진 현황 점검				○		
		2. 학생인권 연도별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가. 학생인권 연도별 시행계획				○		
17. 민주시민 생활교육과	6. 학생인권 종합계획 수립	나. 학생인권실태조사			○			
		3. 학생인권 영향평가			○			
		4. 연례보고서 발간		○				
	7. 학생인권증진 체계 구축 업무	1. 학생인권증진 계획						
		가. 기본 계획 수립				○		
		나. 운영 및 세부업무 추진			○			
		2. 학생참여단 구성 운영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3.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가.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		○				
		4.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 관리			○			
	8.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업무	1. 학생인권상담		○				
		2. 학생인권침해 권리구제						
		가. 진정사건 조치 결과 보고(분기별)					○	
		나. 진정사건의 접수 및 사례 통계 관리		○				
		다. 자료요청 및 권고, 시정 조치		○				
		라. 조치결과 통지		○				
	9. 인권교육 및 홍보	1. 인권교육 및 연수			○			
17. 민주시민 생활교육과	9. 인권교육 및 홍보	2. 학생인권조례 홍보			○			
	10. 학생 노동인권증진 지원	1. 학생 노동인권 증진 계획						
		가. 학생 노동인권 증진 기본계획 수립				○		
		나. 운영 및 세부업무 추진			○			
	11. 예산 운영 및 집행	1. 학생인권 관련 예산 운영 및 집행			○			
	12. 평화·통일교육	1. 기본 계획 수립				○		
		2. 세부 계획 추진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3. 운영 및 세부업무 추진		○				
	13. 학생자치활동	1. 기본 계획 수립				○		
		2. 세부 계획 추진			○			
		3. 운영 및 세부업무 추진		○				
	14. 민주시민교육	1. 기본 계획 수립				○		
		2. 세부 계획 추진			○			
		3. 운영 및 세부업무 추진		○				
	15. 학생봉사 활동	1. 기본 계획 수립				○		
		2. 학생 봉사활동 운영 지도			○			
		3. 학생 봉사활동 운영 매뉴얼 개발			○			
		4. 학생 봉사활동 우수학교 표창			○			
17. 민주시민 생활교육과	16. 교복 학교주관 구매	1. 교복 학교주관구매 관련 업무추진			○			
	17. 상담지도	1. Wee프로젝트 운영 기본계획				○		
		2. 계약직 전문상담사 운영 기본계획			○			
		3. 학생 상담활동 업무 추진		○				
		4. Wee 센터 운영 추진		○				
		5. 학생 생명존중 및 자살 예방 대책 수립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18. 대안교육 위탁교육	1. 대안교육위탁교육 기본 계획				○		
		2.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지정			○			
		3. 대안교육위탁교육 세부업무 시행			○			
	19. 학업중단 예방	1. 학업중단예방 기본계획				○		
		2.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			
		3. 학업중단예방 지원			○			
	20. 대안교육기관 등록 및 지원	1. 대안교육기관 등록 운영						
		가. 대안교육기관 등록 운영 고시					○	
		나.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다. 대안교육기관 등록 운영 기본 계획				○		
		라. 대안교육기관 등록 운영 세부 계획			○			
		마. 대안교육기관 등록 운영 공고			○			
17. 민주시민 생활교육과	20. 대안교육기관 등록 및 지원	바. 대안교육기관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		
		사. 대안교육기관 변경 등록 및 폐쇄에 관한 사항			○			
		2. 대안교육기관 지원						
		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기본 계획				○		
		나. 대안교육기관 지원 세부 계획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대상자 성과 평가			○			
		라. 대안교육기관 지원금 정산 보고			○			
	21. 학교밖 청소년 지원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기본계획 수립				○		
		3.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 사업			○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유관기관 연계 사업			○			
		5. '친구랑 센터' 운영			○			
	22. 학생 생활교육 지원	1. 학생 도박 예방교육 계획 수립				○		
		2. 학생 도박 예방 업무 추진			○			
		3. 배움터지킴이 운영 계획 수립				○		
		4. 배움터지킴이 운영 업무 추진			○			
		5. 학교 기숙사 학생 생활지도			○			
		6.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운영 계획 및 회의록 결재				○		
17. 민주시민 생활교육과	22. 학생 생활교육 지원	7.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업무 추진			○			
	23.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1.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수립				○		
		2.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			
		3.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4. 특별교육 이수기관 선정 및 점검계획			○			
	24.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1.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계획 수립				○		
		2.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연수 운영 계획 수립			○			
		3. 학교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예방교육 관리			○			
		4.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매뉴얼 및 콘텐츠 개발			○			
		5.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세부 업무추진		○				
		6. 성희롱·성폭력 상급심의위원회 운영 계획					○	
		7. 성희롱·성폭력 상급심의위원회 관련 사안처리 지원			○			
	25. 성폭력 사안처리	1. 성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				○		
		2. 성폭력 사안처리 지원			○			
		3. 성인권시민조사관 위촉 운영			○			
		4. 스쿨미투 회복교육 및 특별교육 지원			○			
		5. 성폭력 사안처리 세부 업무 추진		○				
	26. 성인권 증진	1.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기본계획 수립						○
17. 민주시민 생활교육과	26. 성인권 증진	2.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연도별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		
		3. 성평등 교육 활성화 및 문화 조성 계획 수립				○		
		4. 성평등 교육 사업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5. 성평등 교육 콘텐츠 개발			○			
		6.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세부 업무 추진			○			
	27. 성별영향평가	1. 성별영향평가 추진 계획 수립					○	
		2. 성별영향평가 및 분석			○			
18. 진로직업교육과	1. 교육과정 운영지원	1. 기술·가정 교육과정 운영 지도			○			
		2. 학사일정 조정			○			
		3. 교수·학습지도 및 평가방법 개선			○			
		4. 교수·학습 자료개발 지원			○			
	2. 직업교육 운영	1. 직업교육 운영계획						
		가. 직업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
		나. 직업교육 기본계획 수립				○		
		다. 직업교육 운영 점검·지도			○			
		2. 직업교육 진흥 지원						
		가. 기본방침 수립				○		
		나. 직업교육발전 연구용역 지원			○			
18. 진로직업교육과	2. 직업교육 운영	3. 직업 교육 학교평가 및 표창						
		가. 기본계획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나. 우수학교(교원) 표창 실시			○			
	3. 특성화고 교사연수	1. 특성화고 전문교과 직무연수						
		가. 연수계획 수립			○			
		나. 연수 교육과정 개발			○			
		다. 연수대상자 선정			○			
		라. 연수 실시 및 결과처리			○			
		2. 특성화고 교사 국외 현장연수						
		가. 연수 대상자 선정계획			○			
		나. 연수 대상자 선정고사 시행			○			
		다. 연수 대상자 선정·통보			○			
		3. 외부기관 교사 연수 협조			○			
	4. 각종대회 운영	1. 대회 기본계획				○		
		2. 예선·본선대회운영(기능경기대회, 상업경진대회)						
		가. 대회 운영계획			○			
		나. 장소 선정 및 대회 실시			○			
		다. 각종 위원 선정 및 의뢰			○			
18. 진로직업교육과	4. 각종대회 운영	3. 대회 개최결과 보고 및 입상자 시상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4. 우수작품 전시회		○				
		5. 전국대회 출전지도			○			
		6. 정부기관 후원 각종대회 협조			○			
	5. 직업 연구(실험·시범)학교운영	1. 특성화고 연구(실험·시범)학교 선정계획			○			
		2.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 및 지도계획			○			
	6. 연구대회 (기능지도, 직업교육선진화)	1. 기본계획 수립			○			
		2. 지도계획서 심사 및 연구보고서 제출			○			
		3. 연구 운영지도			○			
	7. 특성화고 전문교과 교육과정 운영지도	1. 특성화고 전문교과 교육과정 운영지도						
		가. 전문교과 교육과정 편성·운영지도			○			
		나. 학교별 전문화·특성화 교육지도			○			
		다. 현장 적응력 강화 교육과정 연구지도		○				
		2. 특성화고와 전문대학간 교육과정 연계지도			○			
		3. 고등기술학교 전문교과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도			○			
		4. 산업(문화예술)정보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도			○			
		5. 직업교육 거점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도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18. 진로직업교육과	7. 특성화고 전문교과 교육과정 운영지도	6.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교육과정 편성·운영지도			○			
	8. 특성화고 실험실습 시설 설비확충 및 운영 지도	1. 특성화고 실험실습 시설설비 확충 및 운영						
		가. 실험실습 시설설비 확충 기본계획					○	
		나. 실험실습 시설설비 확충현황 및 소요액 조사			○			
		다. 계열별 시설설비 기준안				○		
		라. 실험실습 시설설비 확충 예산지원				○		
		마. 실험실습 시설설비 확충 추진지도			○			
		바. 기자재 활용연수 및 활성화 방안 수립·지도			○			
		2. 교육차관 기자재 구매 및 관리지도						
		가. 교육차관 자금 배정				○		
		나. 교육차관 기자재 구매품목 승인 및 구매업무			○			
		다. 교육차관 기자재 관리 지도			○			
		라. 교육차관 기자재 처분요구 실사 및 승인			○			
		마. 교육부·조달청·관세청 업무협조			○			
		3. 특성화고 실험실습실 운영관리 지도						
		가. 학교별 실험실습실 확충 중장기 계획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나. 실험실습실 확충·운영지도			○			
18. 진로직업교육과	8. 특성화고 실험실습 시설 설비확충 및 운영 지도	다. 환경오염 방지 지도		○				
		라. 실습실 안전지도		○				
		4. 특성화고 실험실습비 지원						
		가. 실험실습비 지원계획				○		
		나. 실험실습비 지원 기초자료 조사			○			
		다. 학교별 실험실습 연간운영계획 수립지도		○				
		라. 실험실습비 지원 및 집행결과 분석			○			
	9. 특성화고 산학협력 및 현장실습	1. 특성화고 산학협력 운영			○			
		2. 취업역량(기능)강화를 위한 특성화고 육성 사업						
		가. 취업역량(기능)강화 사업 추진 계획				○		
		나. 취업역량(기능)강화 사업 선정 및 운영비 지원			○			
		다. 점검 및 컨설팅 운영 계획			○			
		3. 학생 현장실습 지도						
		가. 현장실습운영 지침			○			
		나. 현장실습 컨설팅 및 운영			○			
		4. 취업지원센터 운영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가. 취업지원센터 운영 계획				○		
18. 진로직업교육과	9. 특성화고 산학협력 및 현장실습	나. 취업지원센터 운영			○			
	10. 글로벌 현장학습(국제화교육지원)	1. 글로벌 현장학습(국제화교육지원) 기본계획				○		
		2. 글로벌 현장학습(국제화교육지원) 운영 지원						
		가. 학생 모집 및 업체 선발(학교 선발)			○			
		나. 위탁 운영 및 점검			○			
		3. 글로벌 현장학습(국제화교육지원) 운영 결과 보고			○			
	11. 또래노동인권지킴이단 운영	1. 기본계획			○			
		2. 지킴이단 운영 지원						
		가. 학생모집			○			
		나. 학생 교육			○			
		다. 또래노동인권지킴이단 관리			○			
	12. 취업 및 진로지도	1. 취업지도			○			
		2. 국가기술자격 취득 관련지도			○			
		3. 취업홍보용 책자 발간·배포			○			
	13. 특성화고의 장학 및 학사운영	1. 특성화고 장학 및 학사운영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가. 직업교육 장학계획 수립 및 운영지도			○			
		나. 특성화고 신입생 모집 계획 및 현황 파악			○			
18. 진로직업교육과	13. 특성화고의 장학 및 학사운영	2. 각종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학사운영						
		가. 기본계획수립				○		
		나. 학사운영 및 신입생 선발 업무지도			○			
		다. 전문교과 교육과정 편성·운영지도			○			
	14. 특성화고 신설·증설 및 개편추진	1. 특성화고 신설업무 추진						
		가. 특성화고 신설 기본계획 수립						○
		나. 특성화고 신설 소요예산 편성				○		
		다. 신설 특성화고 실습장 및 기자재 확충			○			
		라. 특성화고 교육과정 운영 검토			○			
		2. 특성화고 체제개편 지도						
		가. 직업교육 선진화 추진 기본계획				○		
		나. 학교지원과, 초·중등교육과 업무협의 및 협조			○			
		다. 학과 신설 및 개편검토			○			
		3. 학교기업 운영						
		가. 기본계획 수립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나. 학교기업 운영 예산 지원			○			
		다. 운영지도 및 결과 처리			○			
18. 진로직업교육과	14. 특성화고 신설·증설 및 개편추진	4.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가.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운영 계획 수립				○		
		나.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지정계획 및 지정					○	
		다.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운영지원			○			
	15. 특성화고 장학금 운영	1. 특성화고교생 장학금 지원						
		가. 기본계획				○		
		나. 장학금 지원			○			
		2. 특성화고 외부장학생 추천			○			
		3. 장학사업 지원			○			
	16. 특성화고 인정도서 발간	1. 인정도서 발간 기본계획 수립				○		
		2. 인정도서 발간 추진			○			
	17. 특성화고 지정·운영 위원회 운영	1. 특성화고 지정운영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	
		2. 특성화고 지정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	
		3. 특성화고 지정운영위원회 안건 처리 결과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18.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직업기초능력평가	1.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직업기초능력평가 기본 계획			○			
		2. 직업기초능력평가 시행			○			
		3. 직업기초능력평가 결과			○			
18. 진로직업교육과	19. 기술, 가정과 실험실습시설 설비확충지도	1. 기본계획 수립				○		
		2. 실험실습시설 설비 확충 및 운영지도			○			
		3. 실험실습시설 설비 기준안				○		
	20. 일반고 직업교육 운영	1. 일반고 직업교육 운영 기본계획				○		
		2. 일반계교 직업교육 위탁교육생 모집						
		가. 직업기술 위탁교육 전형·운영계획			○			
		나. 직업기술 위탁교육생 수요조사 및 모집			○			
		3. 일반계고 직업위탁 교육기관 운영지도						
		가. 일반계고 직업위탁 교육 예산 지원			○			
		나. 위탁교육운영 기관 장학협의 및 지도		○				
	21. 산업(문화예술)정보학교 신설·증설 및 체제 개편	1. 산업(문화예술)정보학교 신설·증설 및 체제 개편						
		가. 산업(문화예술)정보학교 신설·증설 및 체제 개편 기본계획					○	
		나. 산업(문화예술)정보학교 신설·증설 및 체제 개편 실무반 운영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다. 산업정보학교 교육 코스개발 및 개편 추진			○			
		2. 산업(문화예술)정보학교 실습장 및 기자재 확충 지원			○			
	22. 직업교육 거점학교 신설·증설 및 체제 개편	1. 직업교육거점학교 신설·증설 및 체제 개편						
		가. 직업교육거점학교 신설·증설 및 체제 개편 기본계획					○	
18. 진로직업교육과	22. 직업교육 거점학교 신설·증설 및 체제 개편	나. 직업교육거점학교 신설·증설 및 체제 개편 실무반 운영		○				
		다. 직업교육거점학교 교육 코스개발 및 개편 추진			○			
	23. 서울특별시 특성화고등학교 미래기술교육센터 운영지도	1. 미래기술교육센터 운영계획 수립			○			
		2. 미래기술교육센터 예산지원 및 운영지도 점검			○			
	24. 북방지역 학생 초청 기술교육	1. 북방지역 학생 초청 기술교육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유학생 초청			○			
		다. 유학생 기술교육과정 편성·운영지도			○			
	25. 서울진로직업박람회	1. 기본계획 수립				○		
		2.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26. 진로교육 활성화	1. 진로교육 활성화계획 수립				○		
		2. 학생, 학부모, 교원 연수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3. 진로직업의식 강화 프로그램 운영			○			
		4. 진로교육 기획·유관기관 연계업무			○			
		5. 진로체험관 운영			○			
		6. 진로교육 연구과제 운영			○			
		7. 학생 진로체험 운영			○			
18. 진로직업교육과	26. 진로교육 활성화	8. 자치구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			
		9. 진로전담교사 운영			○			
		10. 학교진로활동실 설치 운영			○			
		11. 진로교육센터 구축 운영 기본계획 수립				○		
		12.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				○		
		13. 진로교육센터 구축 운영				○		
	27. 진로교육 학교평가 및 표창	1. 우수학교(교원, 체험처, 봉사자 등) 표창 실시			○			
19. 체육건강예술교육과	1. 학교체육 관리운영	1. 학교체육 장학계획 수립				○		
		2. 학교체육 관리자료 발간			○			
		3. 학교체육교육 운영 지도			○			
		4. 서울체육고등학교 운영 관리			○			
		5. 초등 스포츠 강사 기본계획 수립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6. 초등 스포츠 강사 운영 지도			○			
		7. 중학교 스포츠 강사 운영 기본계획 수립				○		
	2. 학교체육 연구 및 연수	1. 장학자료 개발·발간			○			
		2. 학생 건강체력 평가(PAPS) 운영			○			
	3. 체육 특기 학교 및 특기자 관리	1. 체육특기학교 지정·승인			○			
19. 체육건강예술교육과	3. 체육 특기 학교 및 특기자 관리	2. 체육특기자 관리						
		가. 체육특기자 전·입학 업무			○			
		나. 고입 체육특기자 전형 계획				○		
		다. 고입 체육특기자 배정 지원			○			
	4. 전임코치 운영관리	1. 전임코치 지도학교 배정 및 관리			○			
		2. 전임코치 인건비 지급			○			
	5. 체육대회 운영	1.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 계획 수립						○
		2. 전국(소년)체육대회 업무추진			○			
		3. 각종 체육대회 개최 운영			○			
		4. 각종 체육대회 결과 보고			○			
		5.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기본계획 수립·운영			○			
	6. 국외연수 및 국제교류	1. 국외연수 기본계획 수립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2. 국외연수 업무추진 및 결과보고			○			
		3. 체육교류 기본계획 수립				○		
		4. 체육교류 업무 추진			○			
	7. 각종포상 및 우수선수 지원	1. 포상 기본계획 수립				○		
		2. 우수선수 격려			○			
		3. 체육 장학생 선정, 표창			○			
19. 체육건강예술교육과	7. 각종포상 및 우수선수 지원	4. 서울체육 장학재단 지원금 관리			○			
	8. 수련교육 및 수학여행 운영지도	1. 기본계획 수립				○		
		2. 수련교육 및 수학여행 실시 계획 및 결과 보고			○			
		3. 수련교육 및 수학여행 지도 자료 발간·보급			○			
		4. 수련교육 및 수학여행 현장 장학			○			
		5. 수련교육 및 수학여행 우수학교 및 유공교원 표창				○		
	9. 청소년 단체 운영지도	1. 운영지도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청소년단체 활동 운영 지도 자료 발간·보급			○			
		다. 청소년단체 활동 학생·지도교원 현황 보고			○			
		라. 청소년단체 지원 및 행사 안내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마. 청소년단체 유관기관 및 교류 지원			○			
		2. 유공교원 및 학생 표창						
		가. 기본 계획 수립				○		
		나. 청소년단체 활동 모범학생 표창			○			
		다. 청소년단체 활동 유공교원 표창			○			
	10.학생교육원 운영지도	1. 학생교육원 운영 기본계획 조정				○		
19. 체육건강예술교육과	10.학생교육원 운영지도	2. 학생교육원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			
	11. 체육시설 운영 지도	1. 체육시설 이용 지도 계획 수립				○		
		2. 학교체육시설 이용 안전 지도			○			
		3. 직속기관 체육시설 운영지도			○			
	12. 학교체육 외부보조금 관리	1. 학교체육 관련 외부 보조금 운영계획 수립				○		
		2. 학교운동부 외부 보조금 관리			○			
		3. 학교체육 외부 보조금 교부·정산			○			
	13.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1. 기본계획 수립				○		
		2. 문화예술교육자문위원회 운영 계획 수립				○		
		3. 문화예술교육자문위원회 운영			○			
	14.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1. (교복입은 예술가)협력종합예술활동 운영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2. (교복입은 예술가)예술꿈담터(연습실) 지원			○			
		3. 학교예술교육 학교간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			
		4. 악기교육 지원사업			○			
		5.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			
		6. 국악 관현악단 운영학교 지원사업			○			
		7. 국악교육 활성화 관련 지원 사업			○			
19. 체육건강예술교육과	14.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8. 학교예술교육 직무연수			○			
		9. (교육부)학생예술동아리 운영			○			
		10. (교육부)예술드림거점학교 운영			○			
		11. (교육부)지역연계 예술교육활성화 교육지원청 운영			○			
	15. 창의·감성교육 활성화 지원	1. 제1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은평) 운영			○			
		2. 제2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성동) 운영			○			
		3. 서울학생필하모닉오케스트라 운영			○			
	16. 학교보건관리 및 교육	1. 학교보건 관리						
		가. 학교보건관리 기본계획 수립						○
		나. 학교보건 시설확충						
		(1) 추진계획 수립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2) 예산집행관리 및 그 밖에 진행관리			○			
		다. 학교보건위원회 운영				○		
		2. 학교보건 장학지도						
		가. 학교보건 장학지도 기본 계획				○		
		나. 학교보건 장학지도 세부계획 수립 시행, 결과 분석			○			
		다. 보건실 운영지도			○			
19. 체육건강예술교육과	16. 학교보건관리 및 교육	3. 학교 보건 교육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그 밖에 보건교육 운영			○			
	17. 학생흡연예방, 금연 및 약물 오용·남용 예방	1. 기본계획 수립				○		
		2. 예방활동 운영 지원			○			
	18. 학생건강관리 및 건강 증진	1. 학생 건강검사 기본계획 수립				○		
		2. 건강검사 운영 및 지도, 결과분석			○			
		3. 학생 건강검사 표본학교 지정, 운영지도			○			
		4. 비만예방(생활습관병)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		
		5. 학교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가. 감염병 기본 계획 수립				○		
		나. 감염병 발생 대응 및 보고(신고), 지도			○			
		6. 학생 구강 건강관리 및 관련 단체 협조			○			
		7.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19. 학교환경관리	1.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학교주변 유해업소 조사·정비			○			
19. 체육건강예술교육과	19. 학교환경관리	다.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 지도			○			
		라.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및 지도			○			
		마. 학교주변 유해업소 합동단속 지원		○				
		2. 교육환경 평가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교육환경평가 업무				○		
		다.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				○		
		3. 교내환경 위생관리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학교 교사 내 환경위생(공기질, 조도, 소음, 석면, 먹는 물, 구내식당, 매점) 관리 지도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다. 대기오염에 따른 학생 건강관리 지도			○			
		4. 특수운영직군(미화) 정원관리			○			
	20. 보건안전진흥원 운영 지도	1. 보건안전진흥원 운영 지도·감독			○			
	21. 학교급식 관리	1. 학교급식 기본계획 수립						○
		2. 학교급식 운영 현황 조사, 관리			○			
		3. 무상급식 운영						
		가. 무상급식 기본계획 수립						○
19. 체육건강예술교육과	21. 학교급식 관리	나. 무상급식 관련 기관 간 업무 협력				○		
		다. 무상급식비 집행·정산			○			
		라. 무상급식 점검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4. 학교급식위원회 운영					○	
	22. 영양교육	1. 기본계획 수립				○		
		2. 영양교육 자료개발·보급			○			
		3.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23. 식생활교육	1. 기본계획 수립				○		
		2. 식생활교육 자료 개발·보급			○			
		3.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24. 비만예방교육	1. 비만예방 교육 기본계획 수립				○		
		2. 비만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25. 영양상담	1. 영양상담 기본계획 수립				○		
		2. 영양상담 프로그램 개발·보급			○			
	26. 학교급식 운영·지도	1. 조리종사원 인력 관리						
		가. 조리종사원 배치기준 계획 수립					○	
		나. 조리종사원 처우개선				○		
		다. 조리종사원 인건비 교부 및 결산			○			
19. 체육건강예술교육과	26. 학교급식 운영·지도	2. 학교급식 예산·결산 운영지도			○			
20. 특수교육과	1. 특수교육 운영	1. 특수교육 운영기획						
		가.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
		나. 기본 계획 수립					○	
		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	
		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운영				○		
		2. 특수학교(급) 장학지도			○			
	2.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1. 기본 계획 수립				○		
		2. 사업별 기본 계획 수립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3. 운영 및 세부업무 추진		○				
	3. 특수교육 교육과정 지원	1.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가. 특수교육 교육과정 관련 기본계획 수립				○		
		나. 특수학교(급) 교육과정 운영 지원			○			
		다.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관련 업무(전공과 교육과정 승인 등)			○			
		라. 특수교육 교육과정 평가 내실화 지원 관련 업무			○			
		2. 교수·학습 관련 지원						
		가. 특수교육 교육과정 관련 연수 계획 및 추진			○			
		나. 특수학교(급) 교사 전문성 신장 지원 계획 및 추진			○			
20. 특수교육과	3. 특수교육 교육과정 지원	다. 장학자료 개발 보급 계획 수립 및 추진			○			
		3.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지원			○			
		4. 병원학교 운영 지원			○			
		5. 진로직업교육 운영 지원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기본계획 수립				○		
		나. 특수학교(급) 진로·직업교육 관련 업무추진			○			
		다. 특수학교 진로직업 중점학교 지원계획 및 추진			○			
		라. 고등학교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지원계획 및 추진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마.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운영 계획 수립 및 지원			○			
		6.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지원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			○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체육활동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			○			
	4. 통합교육	1. 통합교육 기본 계획 수립				○		
		2. 통합교육 사업별 업무 추진			○			
		3. 장애공감문화 활성화 운영 계획 수립			○			
		4. 장애공감문화 활성화 사업별 업무 추진			○			
	5. 긍정적 행동지원	1. 긍정적행동지원 기본 계획 수립				○		
		2. 학교차원 긍정적행동지원 관련 업무			○			
20. 특수교육과	5. 긍정적 행동지원	3. 행동중재전문관 운영			○			
		4. 행동중재특별지원 관련 업무			○			
		5. 긍정적행동지원 역량 강화 연수 운영			○			
	6. 장애학생 인권보호	1.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침해 예방.대응 계획 수립			○			
		2.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실태조사 관련 업무			○			
		3.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관련 업무			○			
	7.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1. 사업별 기본 계획 수립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2. 운영 및 세부업무 추진			○			
		3. 특수교육실무사 운영						
		가. 기본 계획 수립				○		
		나. 사립 특수학교·고등학교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학교 심사·선정			○			
		4.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지원인력 인건비 지원						
		가. 기본 계획 수립				○		
		나. 운영 및 세부업무 추진			○			
		5. 특수교육지원인력 역량강화 연수 업무 추진			○			
		6. 장애학생 가족지원 사업 업무 추진			○			
	8.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돌봄교실 운영 지원	1.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20. 특수교육과	8.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돌봄교실 운영 지원	가. 기본 계획 수립				○		
		나. 방과후학교 운영 및 세부업무 추진			○			
		2. 특수학교(급) 돌봄교실 운영 지원						
		가. 기본 계획 수립				○		
		나. 돌봄교실 운영 및 세부업무 추진			○			
	9.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	1. 특수학교(고등학교 과정) 및 고등학교 입학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계획 수립				○		
		2.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 선정 취소, 재배치				○		
		나. 특수교육대상자 학적 변동(유예, 면제)				○		
	10. 특수교육통계 및 연차보고서	1. 특수교육통계 및 연차보고서						
		가. 기본 계획 수립			○			
		나. 운영 및 세부업무 추진			○			
	11. 특수학급 환경개선 비용 예산 지원	1. 특수학급 여건개선(신증설비, 이전 및 환경개선비)						
		가. 기본 계획 수립				○		
		나. 운영 및 세부업무 추진			○			
		2. 특수학급 운영예산 지원			○			
21. 학교지원과	1. 학생배치계획	1. 유·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학생배치계획 수립						○
21. 학교지원과	1. 학생배치계획	2. 공립학교 신설·증설시설사업 계획수립				○		
		3. 유·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학생배치계획 조정				○		
		4. 공립 초·중·고·특수학교 학급 수 확정				○		
	2. 학교설립·폐지·위치 변경	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폐지·위치변경(계획 또는 인가)						○
		2.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중요사항 변경 (계획 또는 인가)				○		
		3.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폐지·위치변경에 대한 그 밖의 경미한 사항			○			
		4. 학교 신설·지정 관련 위원회 운영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가.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			
	3. 각종 통계업무	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관련 현황 작성			○			
		2.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 소요정원 책정 자료 작성			○			
	4. 중·고등학교 학교군 설정	1. 중·고등학교 학교군 설정						
		가. 중요한 사항						○
		나. 의례적이거나 경미한 사항				○		
	5. 고등학교 입학전형	1. 고입전형 기본계획 수립						○
		2. 후기고 신입생 사정(안)						○
		3. 후기고 신입생 배정(안)					○	
		4. 고입 전형관련 모든 위원회 운영						
21. 학교지원과	5. 고등학교 입학전형	가. 위원회 구성				○		
		나. 위원회 운영			○			
		5. 고입 전형요강 결정				○		
		6. 고입 전형관련 업무처리편람 결정			○			
		7. 후기고 신입생 합격자 명단 확정				○		
		8. 고입전형 면제대상자 입학업무 추진			○			
		9. 거주사실조사 관련 업무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가. 거주사실조사 업무처리 기본계획 수립				○		
		나. 거주사실조사 업무 추진			○			
		10. 근거리통학대상자 지정·심사계획 수립 및 추진			○			
		11. 후기고 신입생 학교 배치				○		
	6. 의무취학	1. 의무취학 아동조사 및 취학에 대한 요강 수립				○		
		2. 국립·사립 초등학교 신입생 모집 전형요강 수립				○		
	7. 도시계획시설(학교)	1. 학교용지(시설) 확보(해제) 기준					○	
		2.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 단계별 집행계획				○		
		3. 경미한 도시계획관련 업무						
		가. 도시계획 현황 작성			○			
		나. 미개설 학교용지 관리			○			
21. 학교지원과	8. 학교법인 설립·해산	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치·경영법인의 설립허가·해산인가·합병인가 및 해산명령						○
	9. 정관변경인가	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치·경영법인의 정관 변경인가			○			
	10. 학교법인 임원 취·해임 승인	1. 임원 취임 승인			○			
		2. 임원 승인 취소						○
		3. 임시이사 관리						
		가. 임시이사 후보자 선정 및 임시이사 선임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안 제출				○		
		4. 임시이사 선임 법인 정상화						
		가. 정이사 후보자 선정 및 이사 선임						○
		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안 제출				○		
	11. 이사회 소집 승인	1. 이사회 소집 승인			○			
	12. 학교법인 기본재산에 대한 지도·감독	1.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의무부담·권리포기 및 차입허가						
		가. 100억원 이상				○		
		나. 100억원 미만			○			
		2. 기본재산 관리 실태조사 계획 수립			○			
		3. 그 밖에 재산관리 지도·감독			○			
	13. 사학기관 운영평가	1. 기본계획 수립				○		
21. 학교지원과	13. 사학기관 운영평가	2. 우수기관 선정				○		
		3. 결과 보고			○			
	14. 학교법인 재정관리 지도·감독	1. 학교법인 예산편성 및 결산지침 수립				○		
		2. 학교법인 예산·결산 검토결과 시정지시			○			
		3. 학교법인 예산·결산서 보고 수리		○				
		4. 학교법인 추경예산보고 수리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5. 학교법인 추가경정예산서 검토결과 시정지시			○			
	15. 사립학교 교비회계	1.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 교비회계 예산편성 및 결산지침 수립						
		가. 예산편성지침(중요한 사항) 변경				○		
		나. 예산편성지침(경미한 사항) 변경			○			
		2. 사립학교 교비회계 예·결산 관련 지도			○			
		3. 사립학교 예산·결산서(추경포함) 보고 수리		○				
		4. 사립학교 교비회계 재정분석			○			
		5. 사립학교 적립금 제도 운영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적립금 승인			○			
	16. 사립학교 재정결함(경상) 지원금 지원	1.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 재정결함(경상)지원금 지원 지침 수립					○	
21. 학교 지원과	16. 사립학교 재정결함(경상) 지원금 지원	2. 지원금 신청서 검토		○				
		3. 지원금 연간 교부 결정				○		
		4. 지원금 월별 교부			○			
		5. 지원금 정산 검토		○				
		6. 지원금 정산 및 확정				○		
		7.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법인부담 현황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법정부담금 현황 관리 및 공개			○			
	17. 사학기관 사무직원 인사	1. 사립학교 사무직원 연수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계획 수립 및 집행			○			
		2. 사무직원 인사지침 수립						
		가. 사무직원 인사지침(중요한 사항) 변경					○	
		나. 사무직원 인사지침(경미한 사항) 변경				○		
		3. 사무직원 정·현원 관리			○			
		4. 사무직원 복무 지도·점검 관리			○			
		5. 사무직원 임용 결과 보고 관리		○				
21. 학교지원과	17. 사학기관 사무직원 인사	6. 사무직원 명예퇴직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 및 수당 지급			○			
		7. 사무직원 성과상여금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성과상여금 지급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8. 사립학교 교직원 맞춤형복지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맞춤형 복지비 지급			○			
		9. 사무직원 표창 추천			○			
	18. 특목고 지정·운영 위원회	1. 특목고 지정·운영위원회 운영						
		가. 위원회 구성					○	
		나. 위원회 운영			○			
	19. 특성화중학교 지정	1. 특성화중학교 지정					○	
	20. 학과개편	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초·중학교 제외) 학과개편				○		
	21. 적정규모학교 육성	1.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가.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본계획 수립						○
21. 학교지원과	21. 적정규모학교 육성	나. 적정규모학교 육성 세부추진계획 수립					○	
		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홍보, 설명회 및 의견조사			○			
		라. 통합운영학교 지정·해제						○
		마. 통합운영학교 관리지침 제·개정					○	
		바. 적정규모학교 운영 지원			○			
		사. 적정규모학교 육성 업무매뉴얼 제·개정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2.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위원회 운영					○	
		3. 적정규모학교 육성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			○			
	22.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	1.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 관리						
		가.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 집행지침 및 지원기준 제·개정					○	
		나.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 지원 계획				○		
		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 운영 및 관리			○			
	23. 학교 이전적지 활용	1. 학교 이전적지 활용						
		가. 학교 이전적지 활용 기본방향 수립						○
		나. 학교 이전적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					○	
		다. 이전적지 활용 수요조사 계획 수립				○		
		라. 이전적지 활용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			○			
21. 학교지원과	23. 학교 이전적지 활용	마. 이전적지 활용 관련 의견수렴			○			
22. 교육재정과	1. 계약관리	1. 주요사항의 방침 결정 및 변경				○		
		2. 계약 원인행위 금액						
		가. 추정가격 20억원 초과				○		
		나. 추정가격 20억원 이하			○			
	2. 물품관리	1. 수급관리계획 및 실적보고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2. 물품의 정수 및 소요기준 관리			○			
		3. 정기재물조사			○			
		4. 물품관리전환 및 불용결정			○			
	3. 계약심의 위원회 운영(결격업체관리)	1.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및 결과 통보			○			
		2. 부정당업자(결격업체) 제재 및 통보			○			
		3. 부정당업자(결격업체) 이첩사항 처리		○				
	4. 채권관리	1. 미확정 채권양도 신청에 대한 승인			○			
		2. 채권압류, 전부명령, 채권대장관리		○				
	5.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예산 및 결산업무	1. 세입징수보고서 및 세입징수액계산서 작성				○		
		2. 세입예산의 관리 및 징수결정			○			
		3. 세입금 과오납반환 및 경정			○			
22. 교육재정과	5.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예산 및 결산업무	4. 수입·지출 일계표 및 일별 자금점검 관리		○				
		5. 결산보고서 작성 및 보고						○
		6. 결산작성 기준시달 및 자료제출			○			
		7. 지방교육재정 공시 계획수립 및 공시			○			
		8. 체납세입금 집중관리 추진계획 수립				○		
		9. 체납세입금 징수실적 보고 및 관리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6. 지출업무	1. 교육비특별회계 자금 배정 및 조정			○			
		2.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지출한도액 송금		○				
		3. 일상경비 출납계산서 집계 처리		○				
		4. 법령 조례 등 의무적 지출경비 품의			○			
		5. 기정 방침에 따른 조달 사업 집행			○			
		6. 모든 저축관리			○			
		7. 수시입출금식(MMDA) 관리		○				
		8. 업무추진비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점검			○			
		9. 5급 이상 연봉 책정				○		
		10. 교육청 내 봉급지급			○			
		11. 보수변동 자료수합 및 각종 신고서 처리		○				
22. 교육재정과	7. 세입·세출외 현금	1.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 및 관리		○				
	8. 재정보증	1. 회계직원 재정보증 설정			○			
	9. 자금관리	1. 지방채 발행(증권 및 차입)				○		
		2. 지방채 상환, 일시차입금 및 세입금 관리			○			
		3. 월별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수급 결과분석				○		
	10. 교육금고 관리	1. 교육금고 지정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2. 교육금고 지도, 감독			○			
	11.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1.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결정						○
		2.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관한 일반사항			○			
		3. 학비 감면에 관한 기본계획				○		
		4. 학비 감면 실적보고 및 관리			○			
	12. 국유재산 관리	1. 국유재산 관리계획			○			
		2. 국유재산 관리환 조회		○				
		3. 국유재산관리청 지정 신청			○			
		4. 국유재산 용도폐지				○		
		5. 국유재산 소관청 조회		○				
		6. 국유재산 관련 국가소송 업무			○			
22. 교육재정과	13. 공유재산 취득	1. 공유재산 매수 기본계획						○
		2. 현황조사 및 보상협의			○			
		3. 공유재산 매수, 기부채납 등						
		가. 금액 20억 이상				○		
		나. 금액 20억 미만			○			
		4. 지장물(분묘 포함) 철거 및 이전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5. 수용재결			○			
		6. 보상금 지급 및 공탁			○			
		7. 세제감면 신청 및 확인서 발급		○				
	14. 공유재산 관리	1. 공유재산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		
		2. 공유재산 관리계획						
		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대상 확정				○		
		나. 시의회 부의			○			
		3. 공유재산 심의회 운영						
		가. 공유재산 심의회 운영				○		
		나. 심의회 결과 통보			○			
		4. 공유재산 심의회 생략대상의 취득·관리			○			
		5. 재산관리관 지정(통보)			○			
22. 교육재정과	14. 공유재산 관리	6.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			
		7.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예산 지원 기본계획 수립				○		
		8. 변상금 부과 실적보고 및 관리			○			
		9. 사용허가(일시사용허가 포함) 및 대부 실적 보고·관리			○			
		10. 행정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및 용도폐지(철거 포함) 검토·승인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11. 공유재산의 위탁·신탁				○		
		12. 임차재산 관리			○			
	15. 공유재산 처분	1. 공유재산의 매각·양여(공유재산심의회 제외)						
		가. 금액 5,000만원 이상				○		
		나. 금액 5,000만원 미만			○			
		2. 회계 간 재산 이관				○		
	16. 공유재산 감정 및 측량	1. 부동산 및 동산의 감정의뢰			○			
		2. 측량 신청			○			
	17. 공부관리	1. 공부 표시변경 정정		○				
		2. 소관재산의 대장 정리		○				
		3. 토지 분할·합병 및 지목 변경		○				
		4. 모든 공부의 열람 및 발급		○				
		5. 등기 위임		○				
22. 교육재정과	18. 자료 수집 업무	1. 각급학교(사립학교 포함) 매점 및 계약관련 자료 총괄			○			
	19.햇빛발전소 업무	1. 햇빛발전소 업무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설치 활성화 관련 실행계획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다. 시의회 동의안건 제출			○			
	20.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	1.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						
		가. 기본(변경) 계획					○	
		나. 안건 제출			○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			
		나. 위원회 결과 통보			○			
23. 교육시설안전과	1. 연간시설 사업계획	1. 시설사업비 투자계획 수립						
		가. 중장기 시설사업비 투자계획 수립						○
		나. 단기 시설사업비 투자계획 수립				○		
		2.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가. 기본(변경) 계획					○	
		나. 안건 제출				○		
23. 교육시설안전과	1. 연간시설 사업계획	3. 시설사업비 투자계획 자료 수집						
		가.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			
		4. 시설사업비 예산·결산						
		가. 시설사업비 본예산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나. 시설사업비 추가경정예산			○			
		다. 시설사업비 결산			○			
		5. 시설사업비 집행 확대 방안 수립						
		가. 조기집행 계획 수립				○		
		나. 집행실적 관리			○			
		6. 시설사업비 특별교부금 및 전입금 관리						
		가. 특별교부금 및 전입금 확보			○			
		나. 잔액 관리			○			
	2. 시설관리	1. 각급학교 시설 및 시설투자 계획에 따른 각종 실적 및 조사 보고			○			
		2. 각급학교 시설실태 조사표 작성에 관한 사항		○				
	3. 학교시설 전산화	1. 학교 및 직속기관 시설 전산화(에듀빌, FMS 등) 자료 조사 및 관리		○				
	4. 학교시설 복합화 및 외부자본 유치	1. 학교시설 복합화 기본계획 수립						○
		2. 복합화사업 타당성 검토			○			
23. 교육시설안전과	4. 학교시설 복합화 및 외부자본 유치	3. 교육지원청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			
	5. BTL 사업추진	1. BTL사업 추진계획 수립						○
		2. BTL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3. BTL사업 적격성 검토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4. BTL사업 평가계획 수립				○		
		5. BTL사업 협상추진 결과보고				○		
		6. BTL사업 실시계획 승인			○			
		7. BTL사업 협약내용 변경				○		
		8. BTL사업 일반 행정 업무			○			
	6. 학교시설 지침수립	1. 학교시설 지침 수립 (공·사립)				○		
		2. 자료 수집·분석			○			
	7. 학교시설 사업검토	1. 학교신설, 증축, 개축사업에 대한 계획 검토						
		가. 기본 계획					○	
		나. 변경 계획				○		
		2. 교육과정(교과교실) 검토			○			
		3. 학교용지 선정을 위한 교육환경 검토			○			
	8. 학교시설 안전관리	1. 안전관리계획 수립				○		
23. 교육시설안전과	8. 학교시설 안전관리	2. 내진보강 추진계획 수립				○		
		3. 노후교사 개축사업 추진계획(지정·해소)				○		
		4.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		
		5. 학교시설 안전관리 일반(조사·수집·분석·보고 등)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9. 장애인편의 시설관리	1. 장애인편의시설 계획 수립				○		
		2.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 일반 (조사·수집·분석·보고 등)			○			
	10. 시설직원 등 직무교육	1. 시설직원 등 직무 및 청렴 교육 계획			○			
	11. 학교시설 평가	1. 시설사업 평가 지침 수립				○		
		2. 세부사업추진 및 평가			○			
	12. 시설공사 표준화	1. 시설사업 표준화 지침 수립				○		
		2. 단계별 시설표준화 수립·시행			○			
		3. 학교시설 유지관리 지침 개발				○		
	13. 시설공사 원가절감	1. 시설공사 원가 분석 및 절감방안 수립			○			
		2. 시설사업 주요 자재 관리 및 지도			○			
		3. 자료수집·분석		○				
	14. 학교시설 품질관리	1. 시설사업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2.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업무			○			
		3. 시설사업 만족도 조사 업무			○			
23. 교육시설안전과	14. 학교시설 품질관리	4. 설계·시공 우수학교 관련 업무			○			
		5. 학교시설사업 시민모니터링 운영			○			
		6. 시설분야 공직 윤리 확립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7. 기술자문 및 지도점검			○			
		8. 시설공사 투명성 확보에 관한 사항			○			
		9. 자료수집·분석		○				
	15. 직속기관 관리	1. 시설사업 시행계획 및 인·허가 업무 지원			○			
		2. 지도점검 및 평가			○			
	16. 다른 시·도 업무 협의	1. 외부기관 기술자문 및 협조관련			○			
	17. 학교급식 시설관리	1. 학교급식시설 신증축 및 환경개선 사업						
		가. 학교급식시설 사업 추진계획 수립				○		
		나. 예산집행관리 및 그 밖에 진행관리			○			
	18. 교육공간 디자인 정책	1. 서울교육공간 디자인 정책 사업 추진						
		가. 서울교육공간 디자인 정책사업 기본계획 수립						○
		나. 사업별 기본계획 수립				○		
		다. 사업별 세부계획 수립 및 집행			○			
		라. 사업별 계획 통보			○			
		마. 사업별 결과 보고				○		
23. 교육시설안전과	18. 교육공간 디자인 정책	2. 디자인 정책 전문 자문관 운영						
		가. 자문관 운영 계획 및 위촉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나. 자문관 운영·관리			○			
		3. 디자인 정책사업 심사위원회 운영						
		가. 각종 심사위원회 구성			○			
		나. 심사 결과보고			○			
		4. 디자인 정책사업 홍보						
		가. 교육공간 디자인 사업 백서 계획 수립				○		
		나. 백서 배포			○			
		다. 홍보자료 제출 및 배포			○			
	19. 기획시설사업 기획	1. 기획시설사업 건립계획 수립						
		가. 사업별 기본계획 수립						○
		나. 사업별 세부계획 수립				○		
		2. 사업타당성조사				○		
		3. 기획시설사업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운영						
		가. 기획시설사업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운영계획				○		
		나. 기획시설사업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운영·관리			○			
		4. 백서 작성 및 홈페이지 운영			○			
23. 교육시설안전과	20. 기획시설사업 건립	1. 용역 집행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가. 발주, 변경, 검수				○		
		나. 공정 및 품질관리, 운영, 기성검사			○			
		2. 시설공사						
		가. 발주, 설계변경, 준공검사				○		
		나. 공정 및 품질관리, 기성검사			○			
		다. 관급자재						
		1) 구매, 변경			○			
		2) 검수 및 기타사항		○				
		라. 각종 인·허가 신청 및 처리			○			
		3. 이전						
		가. 이전계획 수립					○	
		나. 준공시설물 인계			○			
		다. 하자처리			○			
	21. 교육지원시설 사업 지원	1. 교육지원시설사업 중장기 건립계획 수립						○
		2. 사업별 현황 관리			○			
		3. 사업별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			
23. 교육시설안전과	22.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1.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추진 계획 수립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가. 중장기 추진 계획						○
		나. 단기 및 변경 계획				○		
		2. 공공건축 기획						
		가. 건축기획 수행			○			
		나. 건축기획 결과 통보			○			
		3. 건축기획 사전검토			○			
		4. 설계공모						
		가. 설계공모운영 지침 수립				○		
		나. 설계공모 사업추진			○			
		다. 심사 결과 보고			○			
		라. 공모안 기술검토			○			
24. 미래학교 추진단	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개축, 리모델링) 추진계획 수립(공간혁신 포함)						
		가. 추진계획 수립						○
		나. 변경계획 수립				○		
		2. 미래교육과정 연계 추진 방안					○	
		3. 사업 추진 실적, 현황 관리 및 지원 업무			○			
		4. 신·재생에너지 조성 및 생태(외부환경)에 관한 업무			○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24. 미래학교 추진단	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5. 미래학교 추진 협의회 및 지원단 운영·관리			○			
		6.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비 관리 및 정산			○			
	2.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BTL 사업추진	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BTL사업 관리						
		가. 협약내용 변경				○		
		나. BTL사업 일반 행정 업무			○			
25. 청사 이전 추진단	1. 건립 및 이전 추진	1. 계획 수립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 추진 계획				○		
		2. 일반 행정 업무			○			
	2. 청사시설공사 및 스마트오피스 등 구축	1. 용역 집행						
		가. 발주, 변경, 검수				○		
		나. 공정 및 품질관리, 운영, 기성검사			○			
		2. 시설공사						
		가. 발주, 설계변경, 준공검사				○		
		나. 공정 및 품질관리, 기성검사			○			
		다. 자재						

각과·(담당)관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전결권자					교육감
			담당자		과장(담당관)	실·국장	부교육감	
			실무급	담당급				
		1) 구매, 변경			○			
25. 청사 이전 추진단	2. 청사시설공사 및 스마트오피스 등 구축	2) 검수 및 기타사항		○				
		라. 각종 인·허가 신청 및 처리			○			
		마. 준공시설물 인계			○			
		바. 하자처리			○			
	3. 건립 및 이전 홍보	1. 백서 계획 수립				○		
		2. 백서 제작 및 배포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환경 변화 및 업무의 중요도를 고려한 전결권의 합리적 조정으로 책임경영 기반 조성 및 행정능률 향상

나.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신설 · 이관 업무 등 변경사항 반영으로 원활한 업무 추진 도모 및 사전 · 사후 보고 조항 신설로 전결권자의 책무성 강화

2. 주요내용

가. 보고 체계 강화를 위해 전결하는 사항 중 개별사안에 따라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 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 사후 보고하는 조항 신설(제8조)

나.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업무의 전결권 설정, 분장사무 조정에 따른 업무 이관 및 종료된 사업 전결권 폐지 반영(별표)

다. 중요도가 높아진 업무의 전결권 상향 조정(별표)

라. 행정능률 향상 및 책임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전결권 하향 조정(별표)

◈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1074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3년 12월 28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중 “학교통합지원센터, 초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지원과 및 교육협력복지과”를 “학교통합지원센터, 교육협력복지과, 초등교육지원과 및 중등교육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초등교육지원과장 및 중등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학교통합지원센터장 및 교육협력복지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를 “학교통합지원센터장 및 교육협력복지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초등교육지원과장 및 중등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한다.

제58조제3항제2호, 제3호,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초등교육지원과장”을 “교육협력복지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유치원·초등학교 과학·환경·정보·영재교육”을 “유·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유치원·초등학교 체육교육 및 체육행사”를 “유·초·중·고등학교 학부모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운영
2.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연계 지원
3.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
4.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
7.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8. 교육 급여에 관한 업무
9. 지역사회 협력·연계 지원
10.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저소득층 가구 학생 학비 지원
11. 무상급식에서 제외되는 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저소득층 가구 학생 급식비 지원
12. 저소득층 가구 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정보화, 그 밖의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13. 방과후학교 지원
14. 돌봄교실 지원
15. 초·중학교 교과서 수급관리
16. 지역학습도움센터 운영
17. 위센터 운영
18. 그 밖의 교육복지 관련 업무

제5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등교육지원과장”을 “초등교육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중학교·일반고등학교”를 “유치원·초등학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제5호 및 제

11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제4호 및 제9호를 각각 제4호, 제9호 및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및 제9호(종전의 제4호) 중 “중학교·일반고등학교”를 각각 “유치원·초등학교”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14호 및 제13호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4호(종전의 제6호) 중 “(중·고등학교과정)”을 “(초등학교과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종전의 제7호) 중 “중학교·일반고등학교”를 “유치원·초등학교”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8호) 중 “중학교 교원”을 “유치원·초등교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종전의 제9호) 중 “중등”을 “유치원·초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0호) 및 제5호(종전의 제12호)부터 제7호(종전의 제14호)까지 중 “중학교·일반고등학교”를 각각 “유치원·초등학교”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 중 “중학교·일반고등학교”를 “초등학교”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치원·초등학교 장학
8. 유치원·초등학교 학예행사 및 학생 생활지도
12. 유치원·초등학교 교원의 자격검정 및 제증명 발급
16. 교수학습 지원

제5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협력복지과장”을 “중등교육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중학교·일반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도
2. 중학교·일반고등학교 장학
3. 중학교·일반고등학교 연구·시범·선도·중점학교 지도
4. 중학교·일반고등학교 특수교육 지도
5. 고입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
6.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중·고등학교과정)의 교육과정 운영 지도·장학지도 및 생활지도
7. 중학교·일반고등학교 교육기자재 관리 운영
8. 중학교 교원(교육전문직원 포함) 인사·연수·복무·국외여행·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9. 중등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10. 중학교·일반고등학교 특별활동 운영 지도
11. 중학교·일반고등학교 학예행사·학생 생활지도·진로지도 및 교육상담
12. 중학교·일반고등학교 과학·환경·정보·영재교육에 관한 사항
13. 중학교·일반고등학교 체육교육 및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14. 중학교·일반고등학교 청소년 육영단체·학생야영 수련활동
15. 중학교·일반고등학교 학교 안 교원학습공동체 연수에 관한 사항
16. 사립학교 교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교수학습 지원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및 아동학대 조사 지원 등을 위한 교육지원청 역할 강화

나. 교육지원청 내 분산되어 있는 학생 지원 시스템을 교육협력복지과로 일원화하고, 초·중등 교육지원과를 중심으로 교수학습 통합지원 추진

2. 주요내용

가. 교육지원국 내 과 직제를 학교통합지원센터, 교육협력복지과, 초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지원과 순으로 조정(제58조제1항 ~ 제6항)

나. 학교통합지원센터 분장 사무 중 ‘지역학습도움센터 운영’, ‘위기학생지원에 관한 사항’ 삭제(제58조제3항)

다. 학교통합지원센터 분장 사무 중 ‘교수학습 지원’을 초·중등교육지원과로 각각 이관(제58조제3항, 제5항, 제6항)

라. 교육협력복지과에 ‘지역학습도움센터 운영’, ‘위센터 운영’ 신설(제58조제4항)

◈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1075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3년 12월 28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구 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7,722	6	1,822	1,344	4,550
정무직	정무직 계		1	-	1	-	-
	교육감		1	-	1	-	-
일반직	일반직 계		7,125	6	1,530	1,039	4,550
	2 · 3급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1	-	1	-	-
	3급	부이사관	9	-	9	-	-
	3 · 4급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3	-	3	-	-
	4급	소계	42	-	31	11	-
		서기관	37	-	27	10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5	-	4	1	-
	4 · 5급	서기관 또는 교육행정사무관	7	-	7	-	-
	5급	소계	340	1	153	55	131
		교육행정	250	1	91	41	117
		행정	6	-	6	-	-
		사서	30	-	30	-	-
		보건	1	-	1	-	-
		교육행정 또는 행정	10	-	4	-	6
		교육행정 또는 사서	6	-	6	-	-
		교육행정 또는 보건	8	-	3	3	2
		교육행정 또는 시설	2	-	2	-	-
		공업 또는 시설	20	-	9	11	-
		교육행정 · 공업 또는 시설	6	-	-	-	6
		교육행정 · 보건 또는 식품위생	1	-	1	-	-
	6급	소계	1,916	5	502	284	1,125
		교육행정	1,234	5	217	160	852
		전산	51		29	22	-

구 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			
		사서	131	-	120	11	-
		공업	12	-	10	-	2
		녹지	1	-	1	-	-
		보건	19	-	9	10	-
		식품위생	6	-	4	-	2
		간호	5	-	5	-	-
		시설	41	-	18	23	-
		방송통신	1	-	1	-	-
		시설관리	288	-	42	11	235
		운전	5	-	2	-	3
		통신운영	1	-	1	-	-
		전기운영	3	-	1	-	2
일반직	6급	열관리운영	10	-	8	-	2
		사무운영	55	-	20	12	23
		교육행정 또는 사무운영	3	-	3	-	-
		교육행정 또는 전산	-	-	-	-	-
		교육행정 또는 보건	1	-	-	-	1
		방호 또는 시설관리	3	-	3	-	-
		공업 또는 시설	30	-	4	26	-
		보건 또는 식품위생	3	-	3	-	-
		교육행정 · 공업 또는 시설	3	-	-	-	3
		교육행정 · 보건 또는 식품위생	10	-	1	9	-
	7급	소계	2,695	-	579	459	1,657
		교육행정	1,630	-	247	316	1,067

구 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전산	58	-	47	11	-
		사서	173	-	173	-	-
		공업	20	-	8	12	-
		녹지	1	-	1	-	-
		보건	31	-	17	14	-
		간호	5	-	5	-	-
		시설	48	-	20	28	-
		시설관리	522	-	19	15	488
		운전	12	-	3	6	3
		통신운영	1	-	1	-	-
		전기운영	5	-	2	-	3
		열관리운영	12	-	4	-	8
		사무운영	143	-	22	33	88
		교육행정 또는 시설	1	-	1	-	-
		교육행정 또는 사무운영	1	-	1	-	-
		공업 또는 시설	18	-	3	15	-
		보건 또는 식품위생	2	-	2	-	-
		방호 또는 시설관리	4	-	2	2	-
		교육행정 · 보건 또는 식품위생	8	-	1	7	-
	8급	소계	2,091	-	235	219	1,637
		교육행정	1,310	-	67	115	1,128
		전산	24	-	13	11	-
		사서	85	-	85	-	-
		공업	14	-	2	12	-
		보건	21	-	4	17	-

구 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시설	50	-	8	42	-
		시설관리	551	-	44	6	501
		운전	12	-	1	5	6
		전기운영	3	-	1	-	2
일반직	8급	열관리운영	-	-	-	-	-
		사무운영	4	-	4	-	-
		교육행정 또는 사무운영	5	-	5	-	-
		공업 또는 시설	11	-	-	11	-
		보건 또는 간호	1	-	1	-	-
		방호 또는 시설관리	-	-	-	-	-
	9급	소계	-	-	-	-	-
		시설관리	-	-	-	-	-
		운전	-	-	-	-	-
		전기운영	-	-	-	-	-
		열관리운영	-	-	-	-	-
		사무운영	-	-	-	-	-
		방호 또는 시설관리	-	-	-	-	-
	전문 경력관	소계	7	-	7	-	-
		가군	1	-	1	-	-
		비상계획관	1	-	1	-	-
		나군	2	-	2	-	-
		교육영상물제작PD	1	-	1	-	-
		평생교육사	-	-	-	-	-
		학생수련지도사	1	-	1	-	-
		다군	4	-	4	-	-
		속기사	-		-	-	-

구 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			
		학생수련지도사	4	-	4	-	-
	연구사	소계	14	-	3	11	-
		학예연구	1	-	1	-	-
		기록연구	13	-	2	11	-
별정직	별정직 계		8	-	8	-	-
	4급 상당(비서)		1	-	1	-	-
	5급 상당(비서)		4	-	4	-	-
	6급 상당(비서)		3	-	3	-	-
특정직	특정직 계		588	-	283	305	-
	장학관·교육연구관	소계	123	-	67	56	-
		3급 상당	17	-	6	11	-
		4급 상당	34	-	23	11	-
		5급 상당	72	-	38	34	-
	장학사·교육연구사		465	-	216	249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2024년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통보에 따른 국가정책수요를 조기 반영하고,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일부 조정하며,

나. 일반직공무원 정·현원 불일치 해소 및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단위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직공무원 단위기관별 정원 조정

○ 본청(직속기관 포함)
: 5급 (증)3명, 6급 (증)11명, 7급 (증)6명, 계 (증)20명

○ 교육지원청
: 7급 (증)10명, 8급 (증)17명, 계 (증)27명

○ 각급학교
: 5급 (감)2명, 6급 (증)7명, 7급 (감)6명, 8급 (감)46명, 계 (감)47명

나. 일반직공무원 직렬별·직급별 정원 조정

○ 5급: 교육행정 5급 (증)1명, 계 (증)1명

○ 6급: 교육행정 6급 (증)13명, 전산 6급 (증)3명, 시설 6급 (증)1명, 공업 6급 (증)1명, 계 (증)18명

○ 7급: 교육행정 7급 (증)14명, 전산 7급 (증)1명, 보건 7급 (증)1명,
시설관리 7급 (감)2명, 전기운영 7급 (감)2명, 열관리운영 7급 (감)2명,
계 (증)10명

○ 8급: 교육행정 8급 (증)6명, 보건 8급 (증)2명, 시설관리 8급 (감)37명, 계 (감)29명

[교육훈령]

◈ 서울특별시교육훈령 제21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
2023년 12월 28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교육공무직원 정원의 총수

<기관 2024.1.1., 학교 2024.3.1. 기준>

연번	직 종 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행정기관	합계
1	유치원교육실무사	459	2,260	828	329	22	8	11	3,917
2	교육실무사[교무]								
3	교무행정지원사								
4	교육실무사[과학실험]								
5	교육실무사[전산]								
6	교육실무사[통합]								
7	사서		471	274					745
8	학교도서관실무사		50	2					52
9	교육실무사[실습]				93		21		114

연번	직 종 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행정기관	합계
10	구학부모회직원(사무행정.시설관리)				449	263				712
11	사무행정실무사(단위학교)									
	사무행정실무사(행정기관)								4	4
12	특수교육실무사		169	472	169	75	189			1,074
13	돌봄전담사			1,835						1,835
14	특수에듀케어강사		55				74			129
15	유치원에듀케어강사		892							892
16	영양사		22	57	166	73			3	321
17	조리사		46	564	275	43	11		6	945
18	조리실무사		46	2,536	1,185	196	28		17	4,008
19	전문상담사	단위학교		150	115	38		5		308
		Wee/117센터							40	40
		본청 · 직속기관							31	31
20	지역사회교육전문가		11	179	108					298
21	교육복지조정자								23	23
22	유아교육사								12	12
23	수련지도사								73	73
24	특수교육지원센터전담인력								40	40
25	당직전담원			35	26	30			43	134
26	미화원		22	228	91	64	7	2	224	638
27	시설관리원			26	27	10			54	117
28	콜센타상담원								35	35
29	취업지원관								2	2
합 계			1,722	8,863	3,715	1,214	331	36	618	16,499

※ 직종별·기관별 총정원 범위내에서 인력 운용하며, 신설교(유) 및 신설학급은 선 배치 후 정원 조정
※ 정원책정과 인건비 지급기준은 다를 수 있음
※ 연번 1~5개 직종의 정원수에 구학부모회직원(호봉제직원) 포함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 상의 정원 총수에 직종 통합 및 직종 분리, 직종 신설에 따른 정원 변동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의 별표(교육공무직원 정원의 총수)에 정원 조정 사항 반영

나.「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직종 변경 사항 반영

1) 직종통합: 유아교육복지전문가 · 지역사회교육전문가→지역사회교육전문가

2) 직종분리: 사서→사서 · 학교도서관실무사

3) 직종신설: 교육실무사[통합]

구 고 시

◈ 용산구공고 제2023-210호

도시계획시설사업(이촌소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

1. 『구 도시계획법』 부칙(제2435호,1972.12.30.) 및 동법 시행령 부칙(1973.3.21.) 공원결정(의제) 및 용산구 고시 제2018-118호(2018.9.21.)로 변경 결정되고, 용산구 고시-제56호(2019.5.2.)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도시계획시설(이촌소공원)에 대해
2.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용산구 고시 제2020-9호(2020.1.16.)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 준공예정일 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3. 사업 관계서류 및 도서는 용산구청(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업문의는 용산구청(공원녹지과☏02-2199-76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28일
용 산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1-60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2) 사업의 명칭 : 이촌소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내용(면적) : 공원조성(1,736.9㎡), 토지보상(1,736.9㎡)
라. 사업의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시행자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용산구청 7층 공원녹지과)
마. 사업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1) 당초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 변경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바. 고시방법 : 서울시보(구 홈페이지)에 게재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의 소재 및 지목, 지적,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별 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 업 명 : 이촌소공원 조성사업

□ 사업 시행자 : 용산구청장

연번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계										
1	용산구 이촌동 301-60	공원	1,736.9	1,736.9	OOOOOOO O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 OOOO				이촌 소공원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위치도(이촌소공원 : 이촌동 301-60/1,73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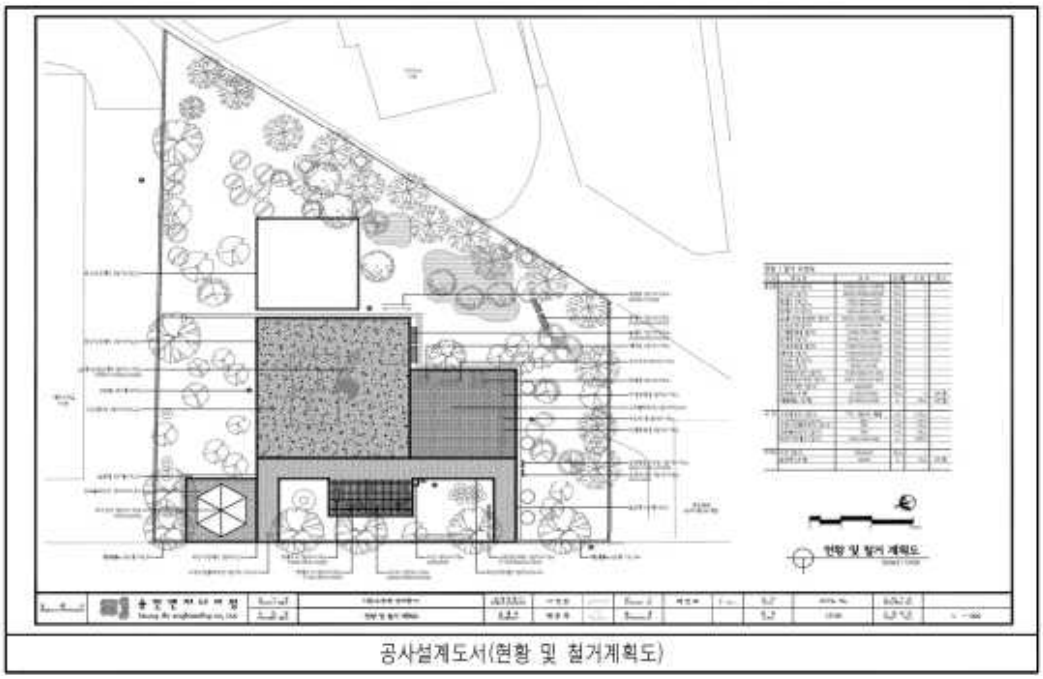
공원 현황사진(이촌소공원 : 이촌동 301-60/1,73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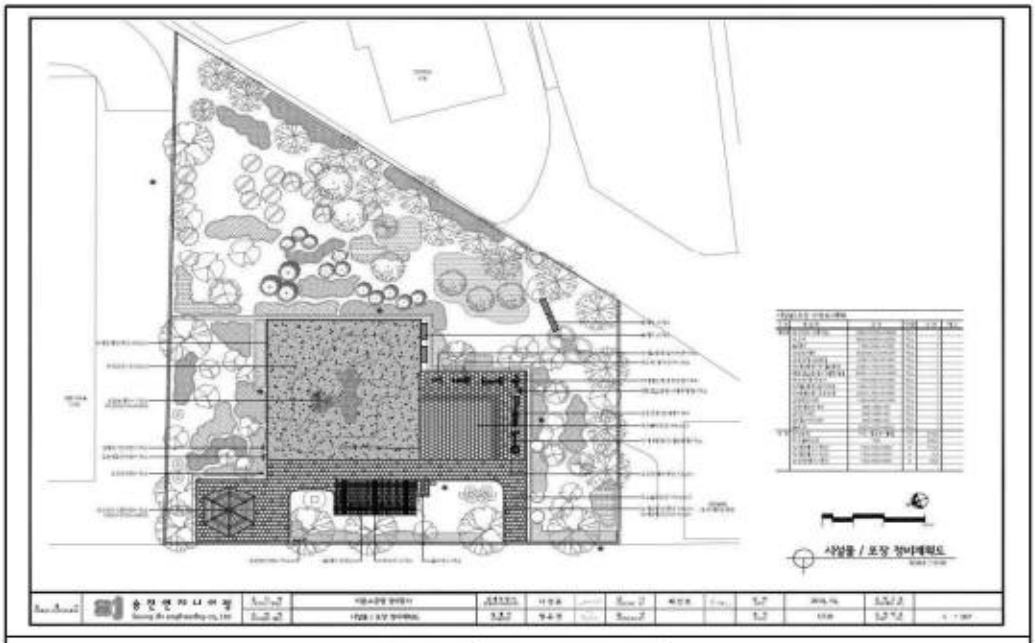
사업계획 평면도[공원조성 및 토지보상 1,736.9㎡]

별첨-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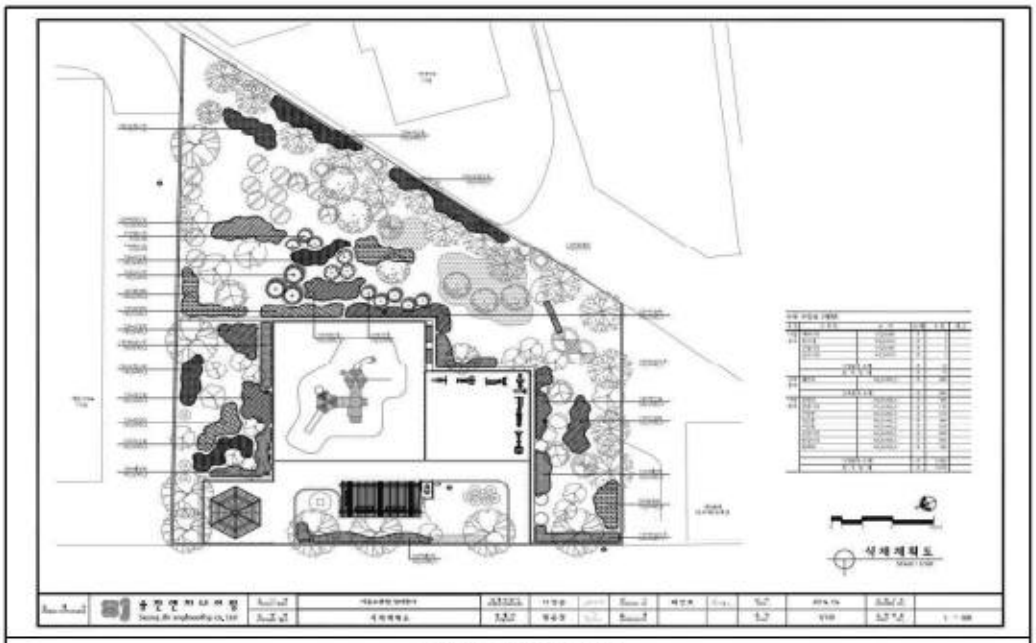
공사설계 도서



공사설계도서(현황 및 철거계획도)



공사설계도서(시설물/포장정비 계획도)



공사설계도서(식재계획도)

◈ 용산구고시 제2023-211호

도시계획시설사업(꿈나무소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구 도시계획법」 부칙(제2435호,1972.12.30.) 및 동법 시행령 부칙(1973.3.21.) 공원결정(의제) 및 용산구 고시 제2018-118호(2018.9.21.)로 변경 결정되고, 용산구 고시-제164호(2019.10.31.)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꿈나무소공원에 대하여
2.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용산구 고시 제2020-126호(2020.7.9.)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 준공예정일 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3. 사업 관계서류 및 도서는 용산구청(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업문의는 용산구청(공원녹지과 ☏ 02-2199-760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28일
용 산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1-86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사업의 명칭 : 꿈나무소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내용(면적)
1) 공원조성(1,352.4㎡) 토지보상(1,352.4㎡), 건물보상(1동/137.47㎡)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시행자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용산구청 7층 공원녹지과)

마. 사업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1) 당초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 변경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바. 고시방법 : 서울시보(구 홈페이지)에 게재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의 소재 및 지목, 지적,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별 첨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 업 명 : 꿈나무소공원 조성사업
□ 사 업 위 치 : 이촌동 301-86(꿈나무소공원)
□ 사업 시행자 : 용산구청장

연번	소재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계										
1	용산구 이촌동 301-86	대지	1,352.4	1,352.4	○○○○○○ 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빌딩 ○○○호				꿈나무 소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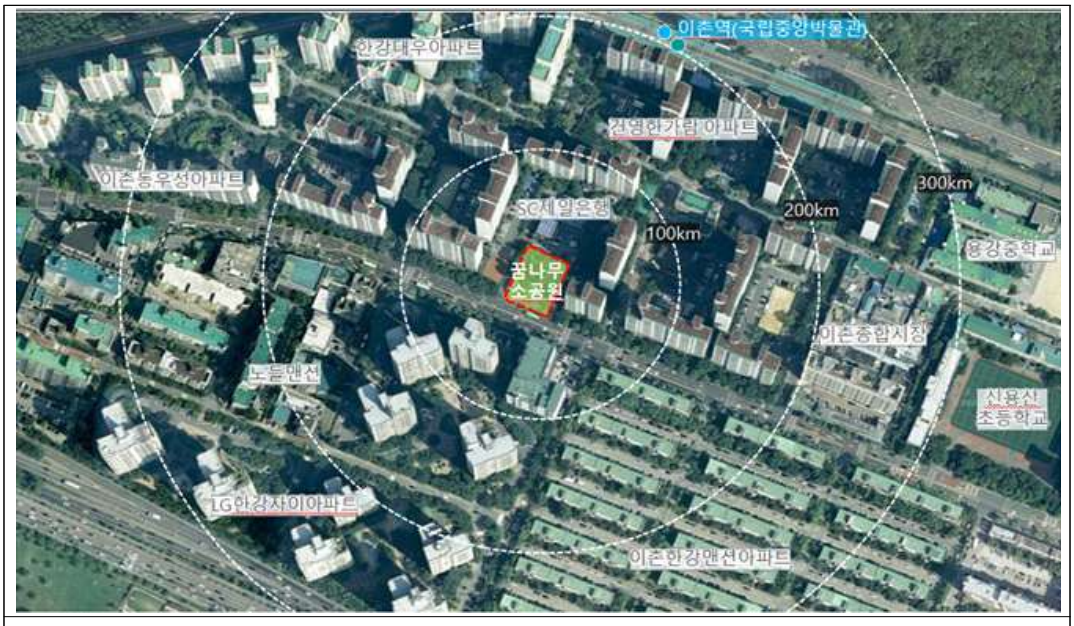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 사 업 명 : 꿈나무소공원 조성사업
□ 사 업 위 치 : 이촌동 301-86(꿈나무소공원)
□ 사업 시행자 : 용산구청장

연번	지번	물건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주) 또는 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층별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계										
1	용산구 이촌동 301-86	건물	철근콘크리트시멘트벽돌 슬래브지붕 2층	137.47	○○○○○ ○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빌딩 ○○○호				· 1층 59.40 · 2층 59.40 · 지층 18.67

별첨-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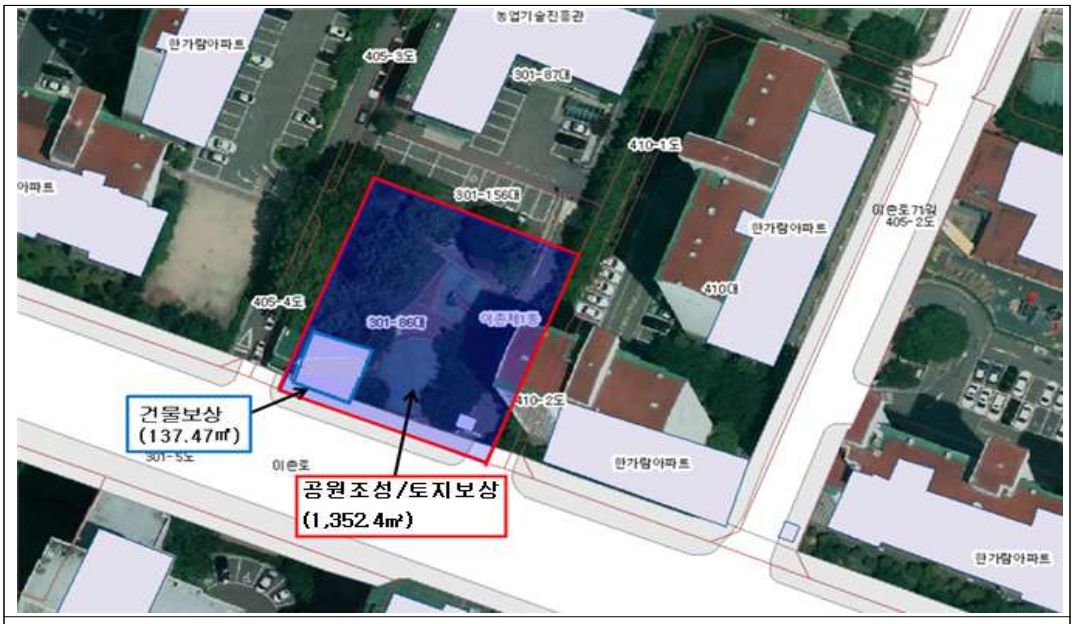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위치도(꿈나무소공원 : 이촌동 301-86 / 1,35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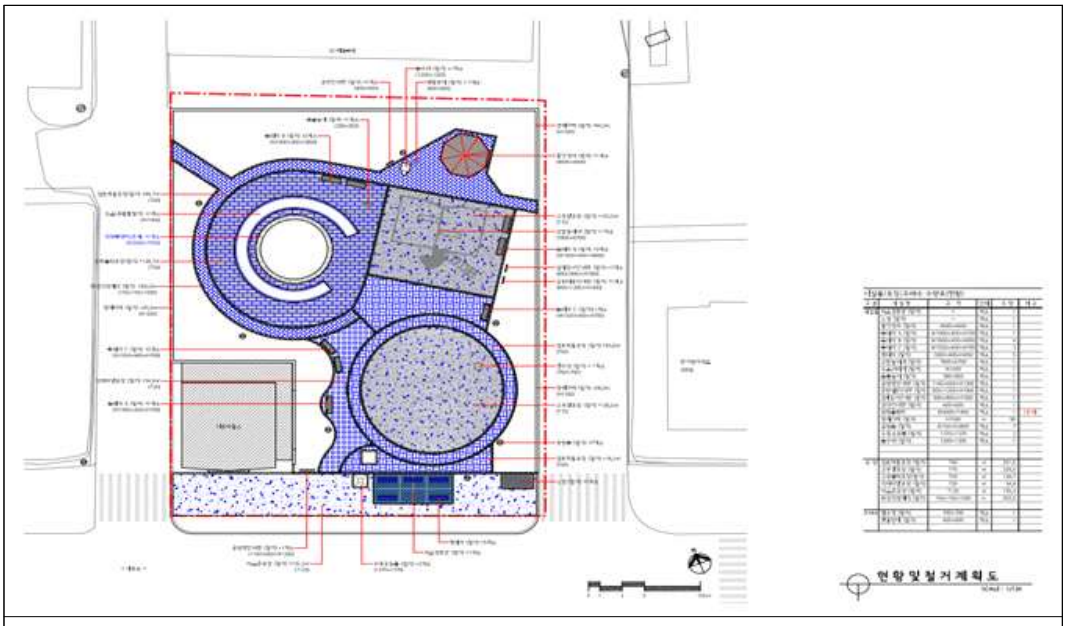
공원 현황사진(꿈나무소공원 : 이촌동 301-86 / 1,35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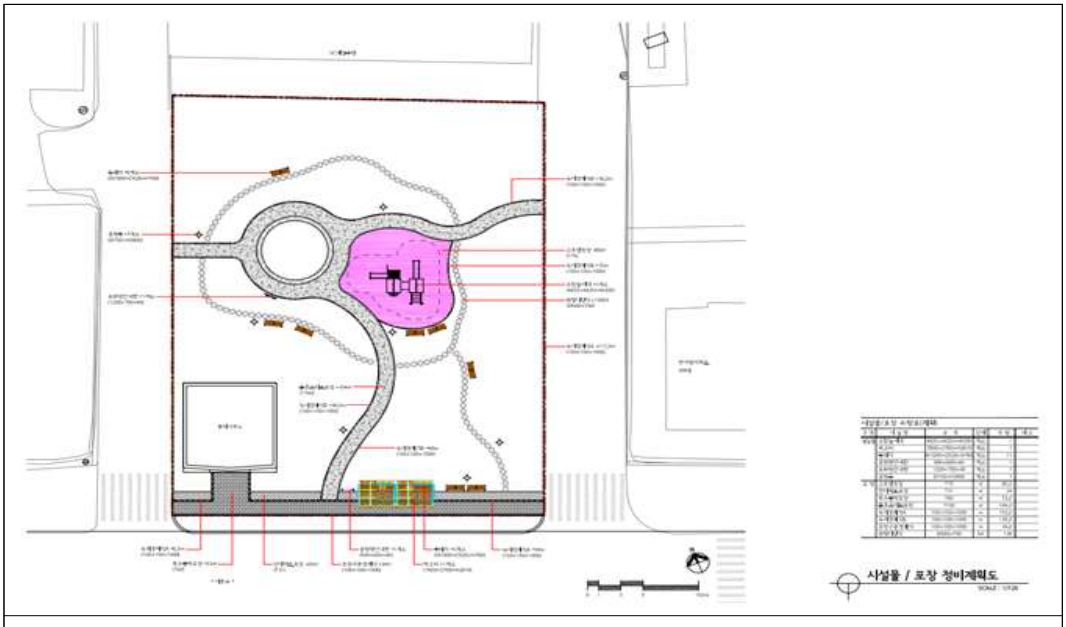
사업계획 평면도[공원조성 및 토지보상 1,352.4㎡, 건물보상 137.47㎡]

별첨-3

공사설계 도서



공사설계도서(현황 및 철거계획도)



공사설계도서(시설물/포장정비 계획도)



공사설계도서(식재계획도)

◈ 용산구고시 제2023-212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7.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14호(2018.10.4.)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동빙고근린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변경) 사업을 시행하고자

2. 용산구공고 제2018-1010호(2018.11.29.)로 열람공고하고 용산구고시 제2019-100호(2019.7.25.)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하고, 용산구고시 제2021-249호(2021.12.23.)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 준공예정일 변경의 사유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용 산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6가 69-162, 69-163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변경)사업
○ 명칭 : 동빙고근린공원

다. 사업의 규모 및 내용
○ 면적 : 55,740.7㎡(사업부지 : 26,849㎡)
○ 내용 : 근린공원 재조성(청소년수련시설 및 국공립어린이집 등 포함)

라. 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 성명(명칭) : 남유산업(주) 대표 김영수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343-20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당초
- 2019.7.25.(실시계획 인가일) ~ 2023.12.31.까지
○ 변경
- 2019.7.25.(실시계획 인가일) ~ 2026.12.31.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 따로붙임

사. 관계서류 비치 : 용산구청 공원녹지과(☎02-2199-7593)

붙임 : 토지조서 1부.

토 지 조 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사업시행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1	용산동 6가	69-162	대	13,048.0	13,048.0	남유산업(주)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3-20	㈜우리은행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3 (서빙고동 지점)	근저당권	
								㈜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35 (서빙고 지점)		
2	용산동 6가	69-163	대	13,801.0	13,801.0	남유산업(주)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우리은행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3 (서빙고동 지점)	근저당권	
								㈜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35 (서빙고 지점)		
합계				26,849	26,849						

◈ 중랑구고시 제2023-117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사업기간) 고시

1.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19-79호(2019. 9. 5.)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23-59호(2023. 5. 24.)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중화1동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 대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중 랑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중랑구 중화동 29-2, 85-1, 85-2, 85-3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및 기반(일반)시설 사업
  2) 명 칭 : 중화1동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다. 사업의 규모 : 면적 2,023㎡, 주차시설 230면
  1) 도시계획 시설 : 면적 1,899㎡(중화동 29-2, 85-1, 85-2)
  2) 기반(일반)시설 : 면적 124㎡(중화동 85-3)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중랑구청장(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기 존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023. 12. 31.까지
  - 변 경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024. 5. 31.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별첨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청 주차관리과(☎02-2094-26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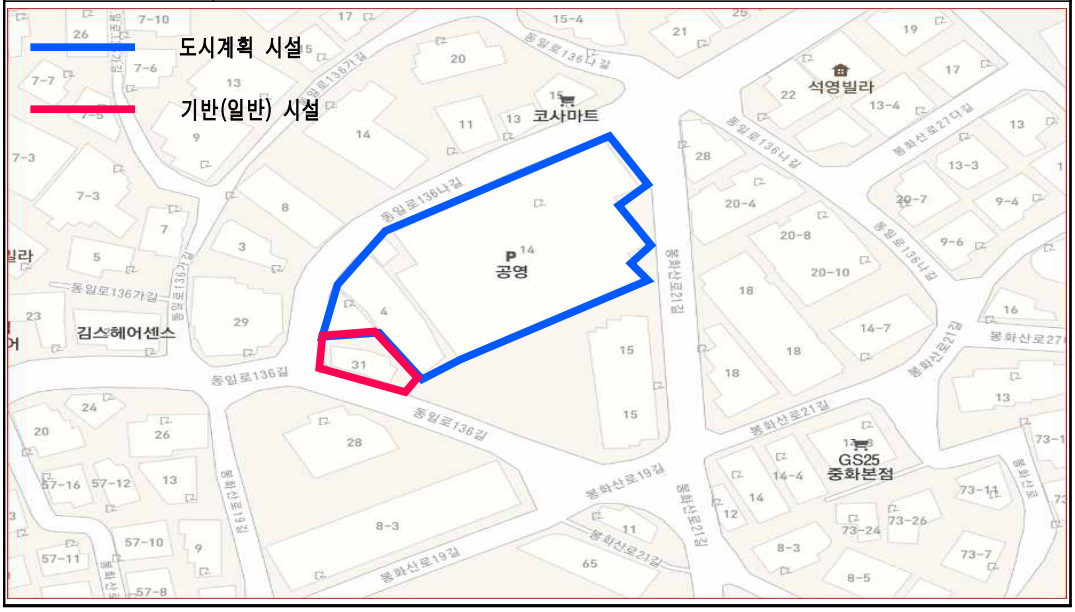
토 지 및 물 건 조 서

사업시행자 : 중랑구청장
사 업 명 : 중화1동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연번	소재지(위치)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동	번지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권리	
1	중화동	29-2	주차장	1,575	1,575	중랑구청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1	중화동	85-1	대	103	103	중랑구청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2	중화동	85-2	전	221	221	중랑구청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3	중화동	85-3	대	124	124	중랑구청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 치	중화1동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내 용	현황사진



◈ 강북구고시 제2023-143호

미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소공원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83호(2010.5.20.)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 및 강북구고시 제2020-114호(2021.7.17.)호로 변경 결정되고, 강북구고시 제2013-201호(2013.8.16.)로 공원조성계획 최초 결정 및 강북구고시 제2021-155호(2021.8.19.)로 변경 결정된 미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소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경미한 변경)을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강 북 구 청 장

가. 공 원 명: 미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소공원

나. 위　　치: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62-121번지 일대

다. 면　　적: 1,607.15㎡

라.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결정(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원경관 및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임

마.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도면: 붙임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바. 열람장소 및 내용문의: 강북구 공원녹지과 공원기획팀(☎02-901-6925)

미아 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소공원 조성계획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1. 총괄표 (위치 :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762-121번지 일대)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계		1,607.15	317.25				24	1,607.15	319.93				27	증 2.68㎡ 증 3기
기반시설	소 계	251.92	251.92				-	232.85	232.85				-	감 19.07㎡
	도 로	233.98	233.98				-	232.85	232.85				-	감 1.13㎡
	광 장	17.94	17.94				-	-	-				-	감 17.94㎡
조경시설		16.93	16.93				11	-	-				9	감 16.93㎡
휴양시설		18.36	18.36				-	62.73	62.73				-	증 44.37㎡
운동시설		30.04	30.04				3	24.35	24.35				3	감 5.69㎡
관리시설		-	-				10	-	-				15	증 5기
녹지 및 기타		1,289.90	-				-	1,287.22	-				-	감 2.68㎡
시 설 율		(317.25 ÷ 1,607.15) × 100% = 19.74%						(319.93 ÷ 1,607.15) × 100% = 19.91%						법정 20%이하
건 폐 율		0%						0%						법정 5%이하

2.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치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 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 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계				1,607.15	317.25					24			1,607.15	319.93					27	증 3기
기반 시설	소 계			251.92	251.92						소 계		232.85	232.85						감 19.07㎡
	도 로		부지내	233.98	233.98						도 로	부지내	232.85	232.85						감 1.13㎡
	진 입 광 장		부지내	17.94	17.94															폐지
	광장	가	부지내	17.94	17.94															폐지
조경 시설	소 계			16.93	16.93					11	소 계					9				감 16.93㎡
	파고라	①	부지내	11.54	11.54	목재				1										폐지
	그늘막										①	부지내			철재	1				신설
	등의자	②	부지내			목재				3	②	부지내			목재	2				감 1기
	평의자	③	부지내	5.39	5.39	목재				7	③	부지내			목재	6				감 1기
휴양 시설	소 계			18.36	18.36						소 계		62.73	62.73						증 44.37㎡
	휴게소	나	부지내	18.36	18.36						가	부지내	62.73	62.73						증 44.37㎡
운동 시설	소 계			30.04	30.04					3	소 계		24.35	24.35					3	감 5.69㎡
	체력단련장	다	부지내	30.04	30.04						나	부지내	24.35	24.35						감 5.69㎡
	트위스트 +바디싣업	④	체력단련장 다			철재				1	④	체력단련장 나			철재				1	
	스트레칭로라+롤링 웨이스트	⑤	체력단련장 다			철재				1	⑤	체력단련장 나			철재				1	
	크로스컨트리 +체어풀	⑥	체력단련장 다			철재				1	⑥	체력단련장 나			철재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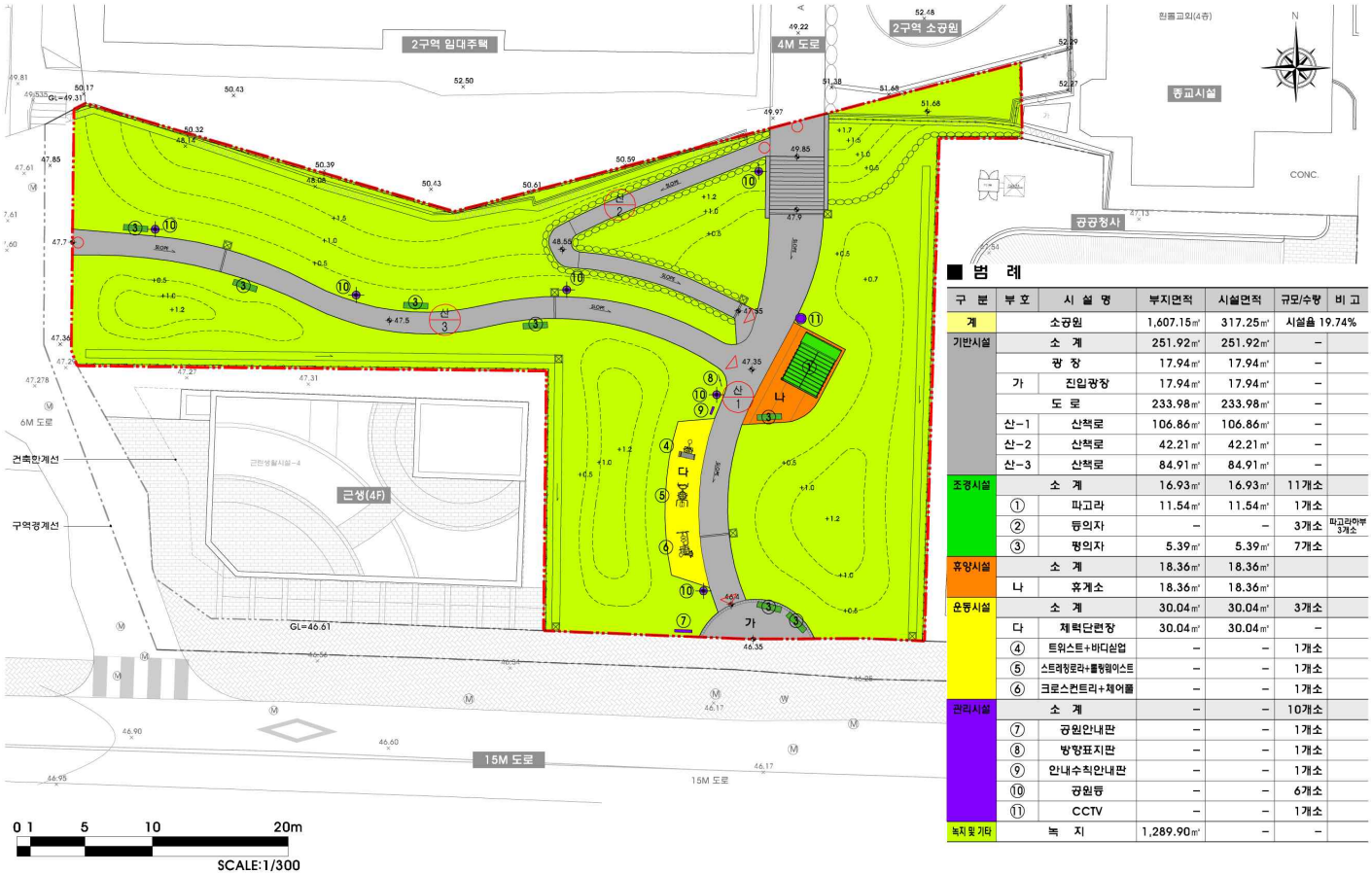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 면적 (㎡)	시설 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 면적	연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		
관리 시설	소 계	소 계								10	소 계								15	증 5기
	공원안내판	⑦	부지내			목재				1	⑦	부지내			목재				1	
	방향표지판	⑧	부지내			목재				1	⑧	부지내			목재				1	
	안내수칙안내판	⑨	부지내			목재				1	⑨	부지내			목재				1	
	공원등	⑩	부지내			철재				6	⑩	부지내			철재				11	증 5기
	CCTV	⑪	부지내			철재				1	⑪	부지내			철재				1	
녹지 및 기타	녹지		부지내	1,289.90								부지내	1,287.22							감 2.68㎡

3.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 고
합 계					117.7	232.85				
당 초	산책로	계			120.6	233.98				
변 경					117.7	232.85				
당 초		3	1	2.1~4.0	36.8	106.86	산책로	부지외(4M도로)	진입광장 가	
변 경		3	1	1.6~4.0	40.1	109.29	산책로	부지외(4M도로)	부지외(15M도로)	
당 초		3	2	1.2	32.8	42.21	산책로	산책로1	산책로 1	
변 경		3	2	1.2~1.4	27.8	40.85	산책로	산책로1	산책로 3	
당 초		3	3	1.5~1.9	51.0	84.91	산책로	부지외(6M도로)	산책로 1	
변 경		3	3	1.5~2.0	49.8	82.71	산책로	부지외(6M도로)	산책로 1	

조 성 계 획 총 괄 도 (기정)

소 공 원



■ 범 례

구 분	부 호	시 설 명	부지면적	시설면적	규모/수량	비 고
계		소공원	1,607.15㎡	317.25㎡	시설율 19.74%	
기반시설		소 계	251.92㎡	251.92㎡	–	
		광 장	17.94㎡	17.94㎡	–	
	가	진입광장	17.94㎡	17.94㎡	–	
		도 로	233.98㎡	233.98㎡	–	
	산–1	산책로	106.86㎡	106.86㎡	–	
	산–2	산책로	42.21㎡	42.21㎡	–	
	산–3	산책로	84.91㎡	84.91㎡	–	
조경시설		소 계	16.93㎡	16.93㎡	11개소	
	①	파고라	11.54㎡	11.54㎡	1개소	
	②	등의자	–	–	3개소	파고라하부 3개소
	③	평의자	5.39㎡	5.39㎡	7개소	
휴양시설		소 계	18.36㎡	18.36㎡		
	나	휴게소	18.36㎡	18.36㎡		
운동시설		소 계	30.04㎡	30.04㎡	3개소	
	다	체력단련장	30.04㎡	30.04㎡	–	
	④	트위스트+바디싱업	–	–	1개소	
	⑤	스트레칭로라+롤링웨이스트	–	–	1개소	
	⑥	크로스컨트리+체어폴	–	–	1개소	
관리시설		소 계	–	–	10개소	
	⑦	공원안내판	–	–	1개소	
	⑧	방향표지판	–	–	1개소	
	⑨	안내수칙안내판	–	–	1개소	
	⑩	공원등	–	–	6개소	
	⑪	CCTV	–	–	1개소	
녹지 및 기타		녹 지	1,289.90㎡	–	–	

조 성 계 획 총 괄 도 (변경)

소 공 원



■ 범 례

구 분	부 호	시 설 명	부지면적	시설면적	규모/수량	비 고
계		소공원	1,607.15㎡	319.93㎡	시설율 19.91%	
기반시설		소 계	232.85㎡	232.85㎡	–	
		도 로	232.85㎡	232.85㎡	–	
	산-1	산책로	109.29㎡	109.29㎡	–	
	산-2	산책로	40.85㎡	40.85㎡	–	
	산-3	산책로	82.71㎡	82.71㎡	–	
조경시설		소 계	–	–	9개소	
	①	그늘막	–	–	1개소	
	②	등의자	–	–	2개소	
	③	평의자	–	–	6개소	
휴양시설		소 계	62.73㎡	62.73㎡	–	
	가	휴게소	62.73㎡	62.73㎡	–	
운동시설		소 계	24.35㎡	24.35㎡	3개소	
	나	체력단련장	24.35㎡	24.35㎡	–	
	④	트위스트+바디싱업	–	–	1개소	
	⑤	스트레칭로라+플렝웨이스트	–	–	1개소	
	⑥	크로스컨트리+체어폴	–	–	1개소	
관리시설		소 계	–	–	15개소	
	⑦	공원안내판	–	–	1개소	
	⑧	방향표지판	–	–	1개소	
	⑨	안내수칙안내판	–	–	1개소	
	⑩	공원등	–	–	11개소	
	⑪	CCTV	–	–	1개소	
녹지 및 기타		녹 지	1,287.22㎡	–	–	

◈ 은평구고시 제2023-173호

도시계획시설사업(거북골근린공원)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건설교통부 고시 제138호(1977.7.14.)로 최초 결정, 서울시고시 제254호(2020.6.29.)로 최종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101호(2023.3.23.)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어 서울시은평구 고시 제207호(2022.12.9.)로 실시계획인가(변경)된 거북골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작성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 등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원녹지과, ☎ 351-800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토지 등의 감정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공고되는 내용과 달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의 보상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28일
은 평 구 청 장

가. 사업 시행지(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159 외 7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사업의 명칭 : 거북골근린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면적 및 규모(변경없음)
1) 면 적: 3,332㎡
2) 규모: 구산동 159 외 7필지
3) 내용: 공원조성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1) 성 명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당초) 고시일로부터 ~ 2023.12.31.까지
변경) 고시일로부터 ~ 2024.12.31.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의 소재 및 지목, 지적,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붙임

사. 관계도면 :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 업 명 : 거북골근린공원 조성사업

□ 사업위치 : 구산동 159 외 7필지

연번	소재지(위치)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동	번지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 권리	
1	구산동	159-11	대	307	300	장*영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 ***동 ****호(금호동, 속초*****아파트)				
2	구산동	167-8	임야	98	98	양*	서울 종로구 평창동 161-** **빌라 *동 ***호				
3	구산동	산18-5	임야	1,047	500	이*훈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17길 **(구산동)	이*진	서울 은평구 연서로 ***, ****호(갈현동, *******아파트)	소유권 이전청구권가등기	
								국가 처분청 은평세무서		압류	
								서부농업협동조합	서울 은평구 응암동 397-** (**지점)	지상권	토지의 전부
4	구산동	산20-8	임야	3,174	1,000	신*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 ***동 ****호(서현동, **아파트)				
						임*윤	**** 시마론 레인 풀로톤시 켈리포니아주 ***** 미합중국				
						신*운	서울 강남구 언주로 114길 ** *층동(논현동)				
						신*안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 **동 ***호(압구정동, **아파트)				
						강*희	서울 서초구 방배중앙로 **, ***호(방배동, ****하우스)				
						강*진	서울 성동구 무학봉길 **, ***동 ***호(하왕십리동, ****아파트)				
						강*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달맞이길117번가길 **, ***호(중동, **빌라1차)				

연번	소재지(위치)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동	번지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 권리	
5	구산동	산22-1	임야	679	200	최*희	서울 마포구 성산동 40-** *층				
6	구산동	산22-2	임야	774	362	유*준	경기 용인시 기흥읍 영덕리 *** **빌리지 ***-***				
7	구산동	산36-1	임야	1,884	773	양*혜	경기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 **** ***-***				
8	구산동	산147	임야	99	99	김*자	대구직할시 수성구 상동 4가 ***				

물 건 조 서

□ 사 업 명 : 거북골근린공원 조성사업

□ 사업위치 : 구산동 159 외 7필지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1	구산동 159	주택	부록조 세멘와즙 1층 총면적 50.05㎡	1	장우영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439, 106동 1502호(금호동, 속초이편한세상아파트)	비거주
2	구산동 산 20-3	창고/화장실	시멘블럭 슬레이트지붕 4.5㎡	1	장우영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439, 106동 1502호(금호동, 속초이편한세상아파트)	

조성계획결정도(변경)

거북골근린공원



◈ 영등포구고시 제2023-182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예정 지역 내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영 등 포 구 청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
가. 제한지역

연번	사업명	구역면적	위치	비고
1	신길역세권(확대구역)	3,590.8㎡	신길동 48-1번지 일대	붙임 지형도면 참조
2	대방역세권	14,922㎡	신길동 1358번지 일대	
3	대림역세권	15,616㎡	대림동 807-13번지 일대	
4	신길동 96-24	13,497㎡	신길동 96-24번지 일대	
5	신길6역세권	22,049㎡	신길동 1448-1번지 일대	
6	도림2역세권	60,462㎡	도림동 247-48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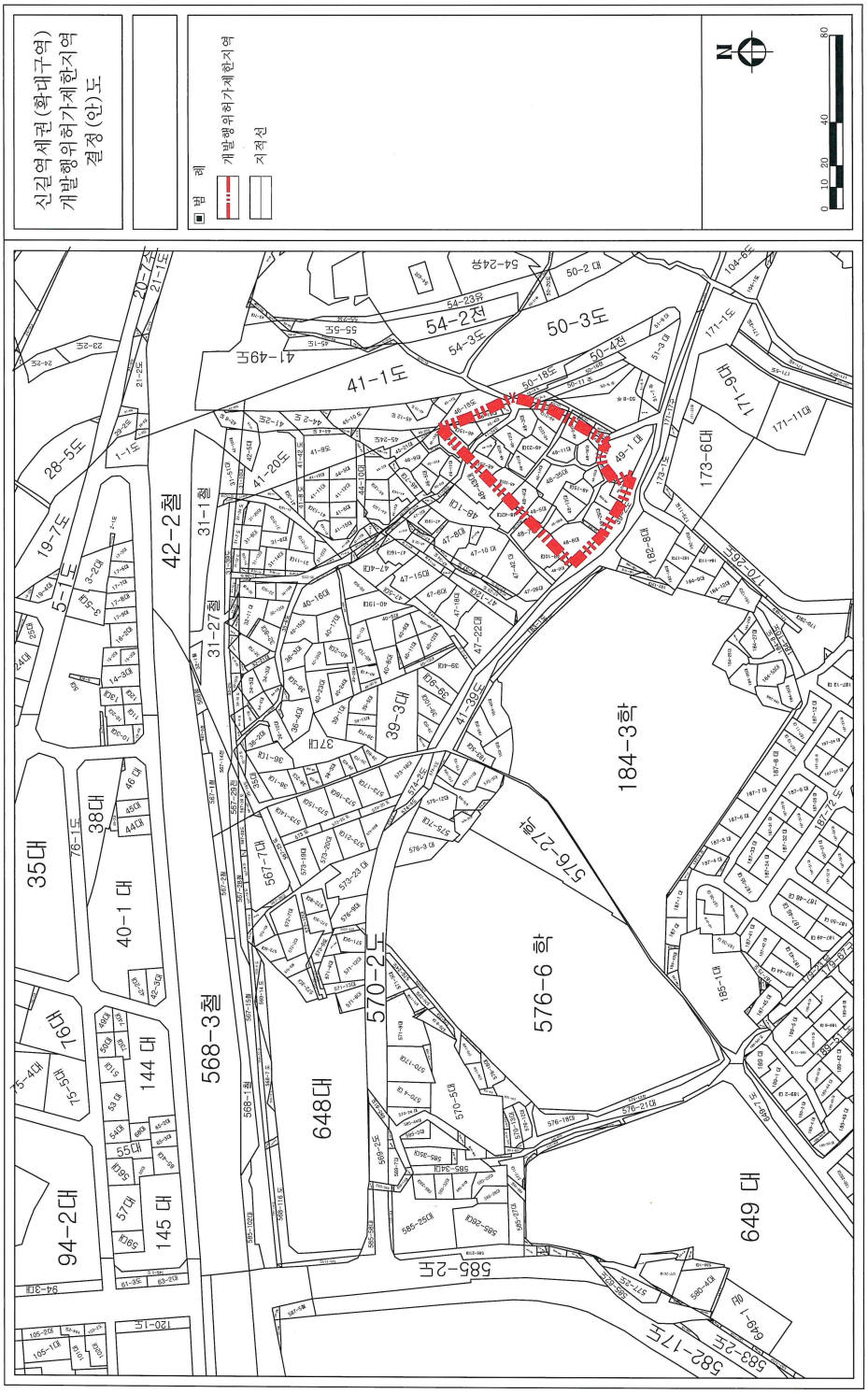
나.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 또는 정비구역 지정 시까지
다. 제한행위 :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분할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 행위
- 토지의 분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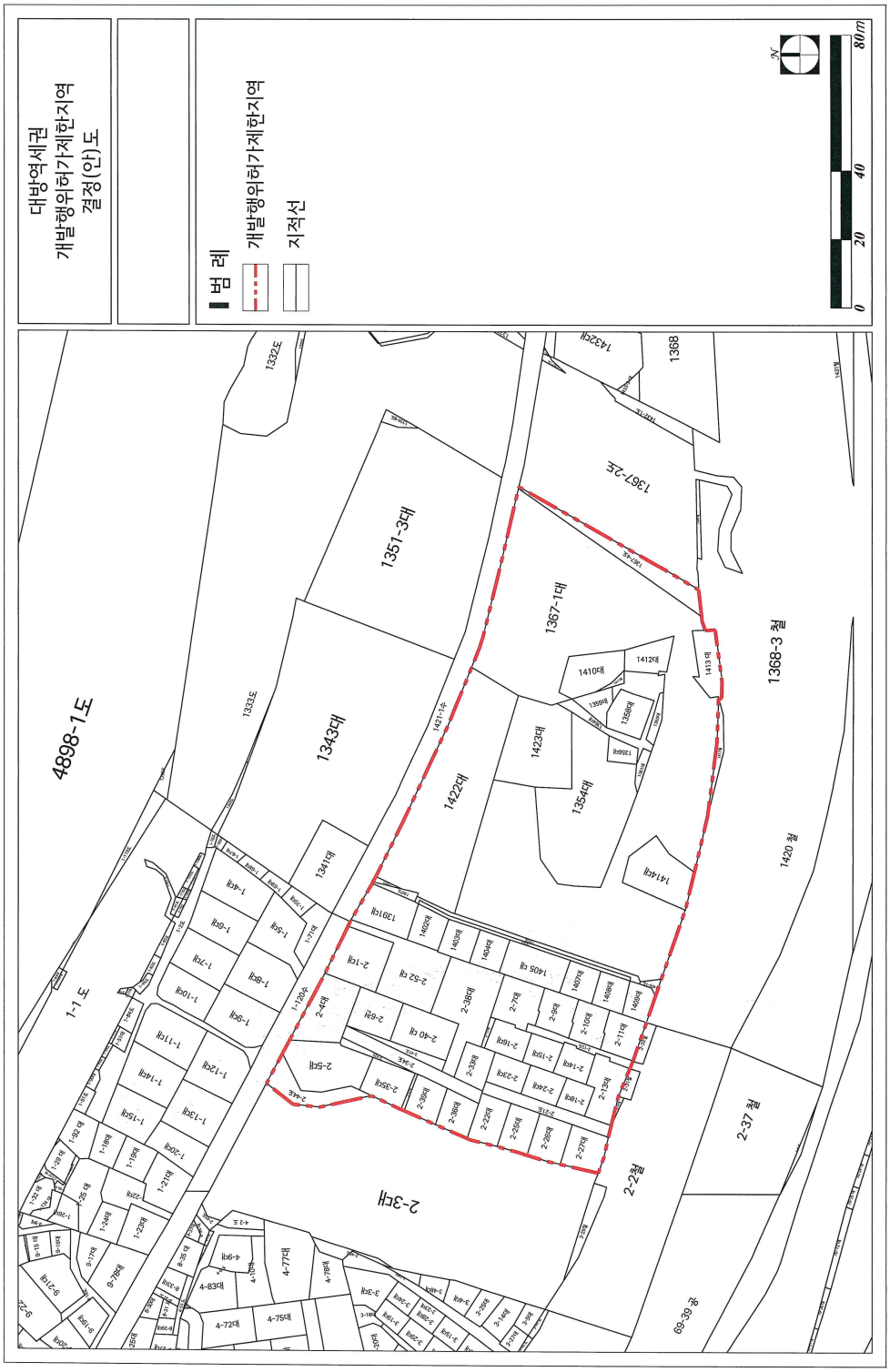
라. 적용예외
- 개발행위제한 고시 이전 건축허가 접수되었거나 건축허가 · 신고 등을 받아 진행 중인 사업
-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대수선
-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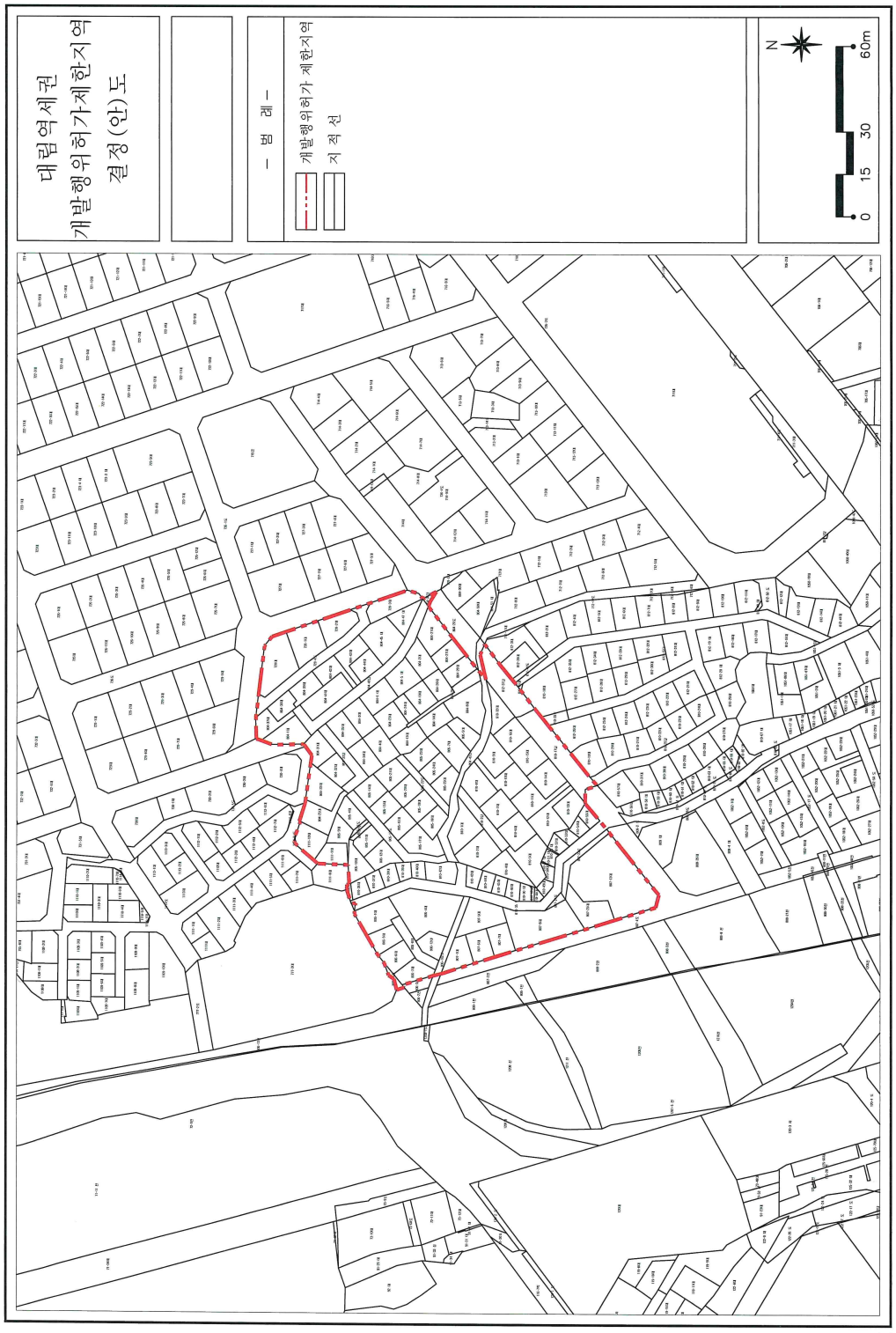
2. 지형도면 : 붙임 참조

3. 기타사항 :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형도면 고시와 관련된 도면은 영등포구 주거사업과(☎ 02-2670-352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토지이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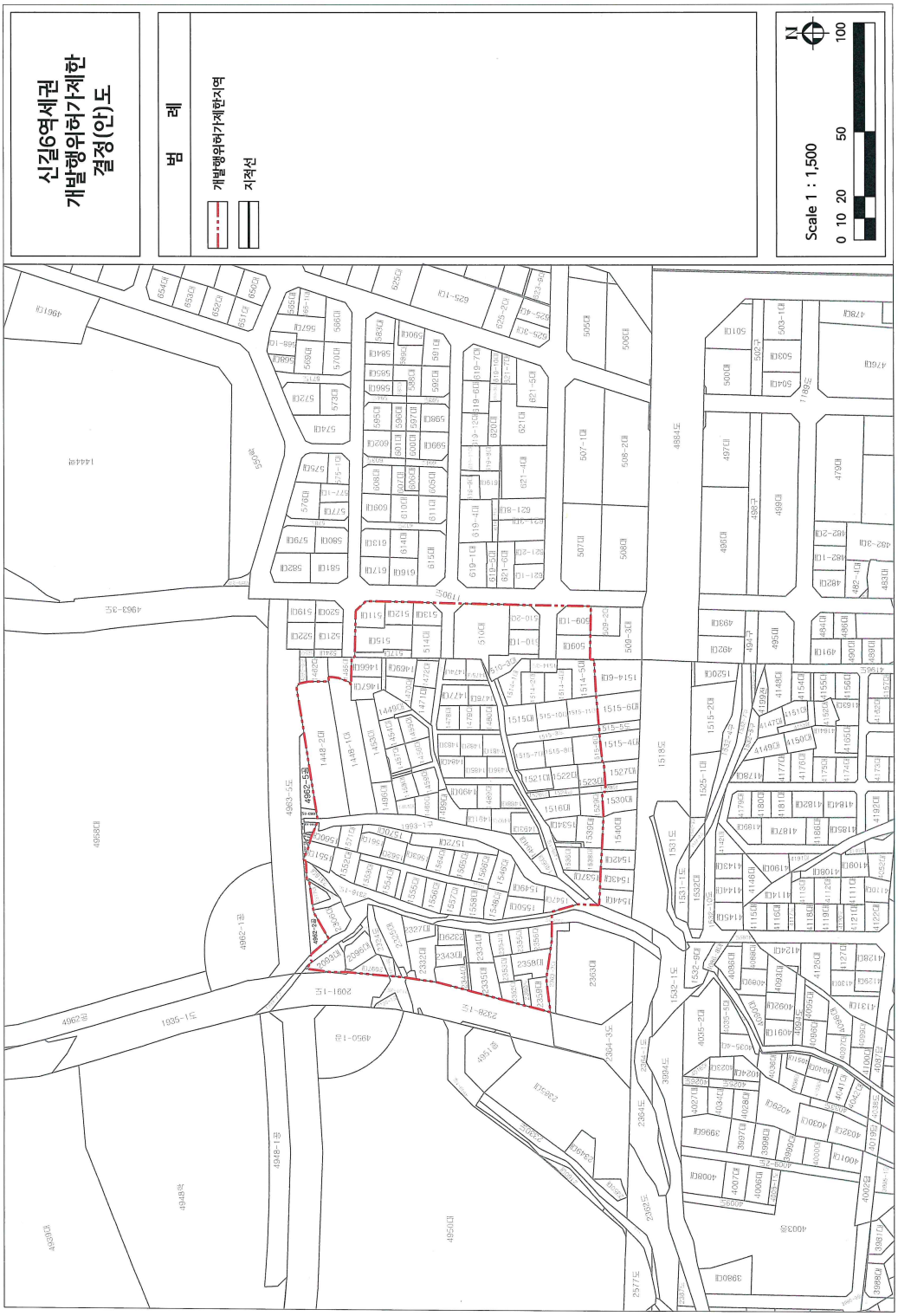
붙임 : 지형도면.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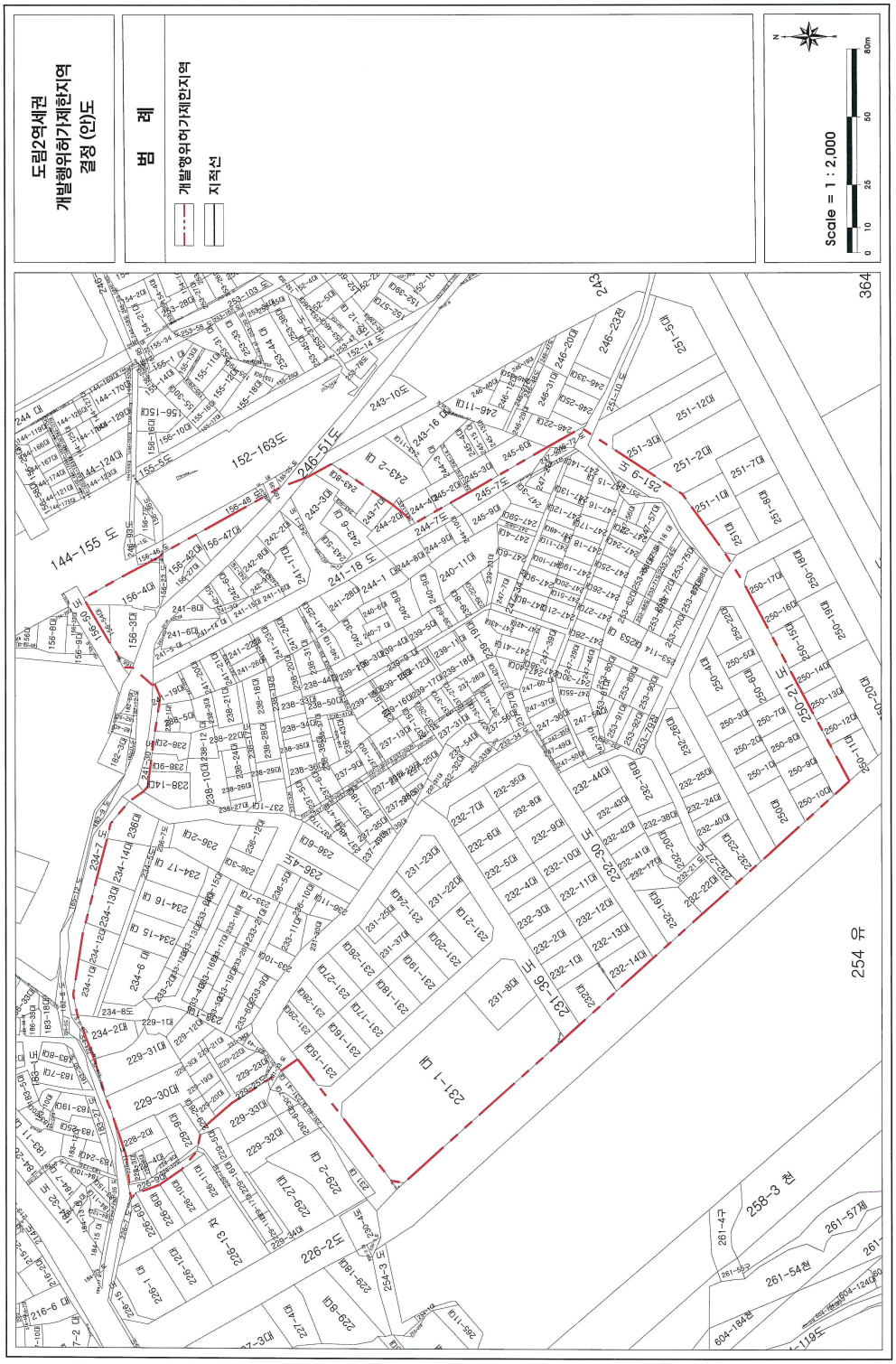

신길역세권 (확대구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결정(안) 도
범 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적선
N
0 10 20 40 80
35대
94-2대
145 대
144 대
40-1 대
38대
648대
568-3철
42-2철
31-27철
31-1철
41-1도
50-3도
54-2전
184-3학
576-6 학
576-21학
649 대
570-2도
585-2도
582-17도
583-2도
173-6대
171-9대
171-11대
37대
39-3대
567-7대
28-5도
19-7도
5-1도
76-1도
20-7도
21-1도
1-1도
120-1도


대방역세권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결정(안)도
범 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적선
0
20
40
80m
N
4898-1도
1-1 도
1332도
1333도
1351-3대
1343대
1341대
1367-1대
1367-2대
1368
1368-3 철
1422대
1423대
1364대
1410대
1412대
1420 철
2-37 철
2-2철
2-3대
4-77대
4-75대
4-72대
4-83대
69-39 철


대림역세권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결정(안)도
- 범 례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 적 선
N
0 15 30 60m


신길동 96-24
개발행위허가제한 결정(안) 도
범 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 적 선
N
0 10 25 50m


신길6역세권
개발행위허가제한
결정(안)도
범 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적선
Scale 1 : 1,500
0 10 20 50 100
N


도림2역세권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결정 (안)도
범 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적선
Scale = 1 : 2,000
0 10 25 50 80m
N
152-163도
246-51도
144-155 대
243-2 대
241-18 도
251-9 도
250-21 대
231-26 대
231-1 대
254 유
258-3 전
261-54 전
604-184 전

◈ 동작구고시 제2023-15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작성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973-54호(1973.04.30.) 및 동작구고시 제2020-97호(2020.06.25.), 동작구고시 제2021-110호(2021.06.03.), 동작구고시 제2021-171호(2021.07.29.)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되고, 동작구고시 제2020-75호(2020.06.18.)로 실시계획 고시되고, 동작구고시 제2021-223호(2021.09.23.), 동작구고시 제2022-198호(2022.12.29.)로 실시계획 변경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2. 사업기간 변경을 위해 동작구 공고 제2023-2049호(2023.12.14.)로 열람공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작성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관리과(02-820-9903)에 비치하며,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12월 28일
동 작 구 청 장

가. 변경사유 : 사업지연에 따른 기간 변경(연장)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2) 명 칭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3) 내 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보상

다.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구분	위 치	연장(m)	폭(m)	면적(㎡)	기점	종점
기정	사당3동 산35 ~ 220-102	400	6	2,642.1	사당4동 252	사당3동 220-102

라.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1) 시 행 자 : 동작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2동 47-2)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기정)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3.12.31.까지
- (변경)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4.12.31.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조서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도로관리과(☎ 820-99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토지 등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고시되는 내용과 달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보상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없음)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사용 또는 수용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권리	
1	기정	동작구 사당동	220-161	도로	72	72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61				소유권 변동
2	기정	동작구 사당동	220-165	도로	19	19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61				소유권 변동
3	기정	동작구 사당동	산25-18	임야	188	188	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동 ***-**				
							홍***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				
							이**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				

◈ 동작구고시 제2023-15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작성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974-52호(1974.05.03.) 및 동작구고시 제2020-97호(2020.06.25.), 동작구고시 제2021-124호(2021.06.17.), 동작구고시 제2021-171호(2021.07.29.), 동작구고시 제2021-210호(2021.09.16.)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되고, 동작구고시 제2020-76호(2020.06.18.)로 실시계획 고시되고, 동작구고시 제2021-252호(2021.10.28.), 동작구고시 제2022-199호(2022.12.29.)로 실시계획 변경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2. 사업기간 변경을 위해 동작구 공고 제2023-2050호(2023.12.14.)로 열람공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작성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관리과(02-820-9903)에 비치하며,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12월 28일
동 작 구 청 장

가. 변경사유 : 사업지연에 따른 기간 변경(연장)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2) 명 칭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3) 내 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보상

다.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구분	위 치	연장(m)	폭(m)	면적(㎡)	기점	종점
기정	상도4동 215-37~210-18	360	6	2,342.1	상도4동 215-37	상도4동 210-18

라.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1) 시 행 자 : 동작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2동 47-2)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기정)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3.12.31.까지
- (변경)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5.12.31.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조서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도로관리과(☎ 820-99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토지 등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공고되는 내용과 달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보상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없음)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사용 또는 수용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권리	
1	기정	동작구 상도동	216-17	도로	36	36	김*생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18, *동 ****호 (도곡동, ******아파트)				
							김*립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347, *동 ***호 (서빙고동, ***아파트)				
2	기정	동작구 상도동	214-455	도로	211	211	재단법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				
	기정	동작구 상도동	214-456	도로	11	11	재단법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				

◈ 동작구고시 제2023-15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작성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973-54호(1973.04.30.) 및 동작구 고시 제2020-97호(2020.06.25.), 동작구 고시 제2021-110호(2021.06.03.)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고, 동작구고시 제2020-78호(2020.06.18.)호로 실시계획 고시되고, 동작구고시 제2021-217호(2021.09.16.), 동작구고시 제2022-43호(2022.03.17.), 동작구고시 제2022-200호(2022.12.29.)로 실시계획 변경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2. 사업기간 변경을 위해 동작구 공고 제2023-2051호(2023.12.14.)로 열람공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작성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관리과(02-820-9903)에 비치하며,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12월 28일
동 작 구 청 장

가. 변경사유 : 사업지연에 따른 기간 변경(연장)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2) 명 칭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3) 내 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보상

다.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구분	위 치	연장(m)	폭(m)	면적(㎡)	기점	종점
기정	사당2동 87-4 ~ 산20	310	6	1,465	사당2동 708-659	사당2동 128-10

라.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1) 시 행 자 : 동작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2동 47-2)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기정)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3.12.31.까지
- (변경)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4.12.31.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조서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도로관리과(☎ 820-99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토지 등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공고되는 내용과 달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보상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없음)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사용 또는 수용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권리	
1	기정	동작구 사당동	92-20	대	2	2	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동 **-**				
							백**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				
							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				
							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				
							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61				
2	기정	동작구 사당동	128-57	대	13	13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61				
3	기정	동작구 사당동	128-52	대	5	5	이**	인천 계양구 계산동 ***-**				
							김*	인천 계양구 계산동 ***-**				
		동작구 사당동	128-58	대	7	7	이**	인천 계양구 계산동 ***-**				
							김*	인천 계양구 계산동 ***-**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사용 또는 수용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권리	
4	기정	동작구 사당동	128-53	대	9	9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61				
5	기정	동작구 사당동	128-54	대	19	19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61				
6	기정	동작구 사당동	128-55	대	36	36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61				
7	기정	동작구 사당동	129-18	대	1	1	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동 **호(반포동,*****)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태평로2가) 반포지점	근저당권	
8	기정	동작구 사당동	129-19	대	47	47	권**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				
9	기정	동작구 사당동	130-32	대	1	1	윤**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길 **				
							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당동 ***-**				
							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당동 ***-**				
							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당동 ***-**				
10	기정	동작구 사당동	139-5	잡종지	31	31	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번길 *				
							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				
							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 ***동 ****호(반포동, *******)				
							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번길 **, ***동 ****호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사용 또는 수용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권리	
11	기정	동작구 사당동	139-105	잡종지	7	7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61				
12	기정	동작구 사당동	708-1212	대	4	4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61				
							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				
							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				

◈ 동작구고시 제2023-15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작성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978-428호(1978.08.30.) 및 동작구고시 제2020-97호(2020.06.25.), 동작구고시 제2021-124호(2021.06.17.), 동작구고시 제2021-171호(2021.07.29.), 동작구고시 제2021-300호(2021.12.16.)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되고, 동작구고시 제2020-84호(2020.06.18.)로 실시계획 고시되고, 동작구고시 제2021-254호(2021.10.28.), 제2022-202호(2022.12.29.)로 실시계획 변경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2. 사업기간 변경을 위해동작구 공고 제2023-2052호(2023.12.14.)로 열람공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작성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관리과(02-820-9903)에 비치하며,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12월 28일
동 작 구 청 장

가. 변경사유 : 사업지연에 따른 기간 변경(연장)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2) 명 칭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3) 내 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보상

다.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구분	위 치	연장(m)	폭(m)	면적(㎡)	기점	종점
기정	상도3동 313-36~312-9	120	5~6	558	상도3동 313-36	상도3동 312-9

라.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1) 시 행 자 : 동작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2동 47-2)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기정)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3.12.31.까지
- (변경)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5.12.31.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조서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도로관리과(☎ 820-99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토지 등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고시되는 내용과 달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보상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없음)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사용 또는 수용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권리	
1	기정	동작구 상도동	312-22	대	2	2	이*웅	서울 동작구 등용로14길 ** (노량진동)				
2	기정	동작구 상도동	312-19	대	20	20	이*실	서울 동작구 성대로6길 ** (상도동)				
							황*희	서울 동작구 성대로6길 ** (상도동)	강서** **조합	서울 강서구 양천로 ** (방화동, 강서** 본점)	근저당권	
							황*로	서울 동작구 성대로6길 ** (상도동)				
3	기정	동작구 상도동	313-42	대	1	1	조*애	서울 동작구 성대로6길 ** (상도동)	주식회사 한국**** *****은행	서울 종로구 종로 ** (****운영부)	근저당권	
4	기정	동작구 상도동	256-290	대	3	3	최*자	서울 동작구 상도로11길 6, *동***호(대방동, 대방빌리지)				
5	기정	동작구 상도동	313-43	도로	3	3	홍*유	서울 관악구 노량진동 산**				
6	기정	동작구 상도동	312-23	대	1	1	김*재	서울 동작구 성대로6길 ** (상도동)				
7	기정	동작구 상도동	312-21	대	21	21	이*희	서울 동작구 성대로6길 ** (상도동)				
8	기정	동작구 상도동	312-20	대	6	6	이*웅	서울 동작구 등용로14길 ** (노량진동)				
9	기정	동작구 상도동	313-37	도로	20	20	이*흥	서울 동작구 양녕로 *** (상도1동)				
							홍*애	서울 동작구 상도1동 ***				
							차*희	서울 동작구 상도1동 ***				

◈ 동작구고시 제2023-15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작성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0-354호(1990.10.31.), 동작구 고시 제2020-97호(2020.06.25.), 동작구 고시 제2021-160호(2021.07.15.), 동작구 고시 제2021-249호(2021.10.28.), 동작구 고시 제2021-250호(2021.10.2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되고, 동작구 고시 제2020-85호(2020.06.18.),로 실시계획 고시되고, 동작구 고시 제2022-1호(2022.01.06.), 동작구고시 제2022-9호(2022.01.20.), 동작구고시 제2022-203호(2022.12.29.)로 실시계획 변경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2. 사업기간 변경을 위해 동작구 공고 제2023-2053호(2023.12.14.)로 열람공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작성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관리과(02-820-9903)에 비치하며,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12월 28일
동 작 구 청 장

가. 변경사유 : 사업지연에 따른 기간 변경(연장)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2) 명 칭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3) 내 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보상

다.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구분	위 치	연장(m)	폭(m)	면적(㎡)	기점	종점
기정	상도4동 187-3~194-10	162	6	821	상도4동 187-3	상도4동 194-10

라.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1) 시 행 자 : 동작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2동 47-2)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기정)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3.12.31.까지
- (변경)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4.12.31.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조서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도로관리과(☎ 820-99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토지 등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고시되는 내용과 달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보상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없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사용 또는 수용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권리	
1	동작구 상도동	187-6	대	39	39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61				소유권 변동
2	동작구 상도동	194-44	도로	28	28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61				소유권 변동
3	동작구 상도동	194-45	대	27	27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61				소유권 변동
4	동작구 상도동	196-97	대	30	30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61				소유권 변동
5	동작구 상도동	194-43	대	10	10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61				소유권 변동
6	동작구 상도동	195-53	대	33	33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설*동	서울 중구 청구로4길 ** (신당동)				
7	동작구 상도동	195-9	대	50	50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설*동	서울 중구 청구로4길 ** (신당동)				
8	동작구 상도동	195-58	대	50	50	상도스타리움지역 주택조합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174, 7층				주택건설사업 계획부지
9	동작구 상도동	195-59	대	3	3	상도스타리움지역 주택조합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174, 7층				주택건설사업 계획부지
10	동작구 상도동	194-42	대	11	11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61				소유권 변동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사용 또는 수용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권리	
11	동작구 상도동	195-36	대	53	53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61				소유권 변동
12	동작구 상도동	194-46	대	3	3	권*렬	서울 서대문구 대조동 76-*				
13	동작구 상도동	195-12	대	69	69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61				소유권 변동
14	동작구 상도동	195-57	대	30	30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61				소유권 변동
15	동작구 상도동	195-54	대	11	11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61				소유권 변동
16	동작구 상도동	195-55	대	1	1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61				소유권 변동
17	동작구 상도동	195-56	대	3	3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61				소유권 변동
18	동작구 상도동	194-41	대	17	17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61				소유권 변동
19	동작구 상도동	186-12	대	33	33	방*운	서울 관악구 신림동 24-**				
20	동작구 상도동	196-95	대	5	5	상도스타리움지역 주택조합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174, 7층				주택건설사업 계획부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사용 또는 수용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권리	
21	동작구 상도동	196-96	대	10	10	상도스타리움지역 주택조합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174, 7층				주택건설사업 계획부지
22	동작구 상도동	194-47	대	4	4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61				소유권 변동
23	동작구 상도동	196-94	대	233	233	상도스타리움지역 주택조합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174, 7층				주택건설사업 계획부지

◈ 동작구고시 제2023-15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작성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973-54호(1973.04.30.) 및 동작구고시 제2020-97호(2020.06.25.), 동작구고시 제2021-160호(2021.07.15.), 동작구고시 제2021-210호(2021.09.16.), 동작구고시 제2021-249호(2021.10.28.), 동작구고시 제2021-251호(2021.10.2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되고, 동작구고시 제2020-87호(2020.06.18.)로 실시계획 고시되고, 동작구고시 제2021-310호(2021.12.23.), 동작구고시 제2022-204호(2022.12.29.)로 실시계획 변경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2. 사업기간 변경을 위해 동작구 공고 제2023-2054호(2023.12.14.)로 열람공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작성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관리과(02-820-9903)에 비치하며,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12월 28일
동 작 구 청 장

가. 변경사유 : 사업지연에 따른 기간 변경(연장)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2) 명 칭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3) 내 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보상

다.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구분	위 치	연장(m)	폭(m)	면적(㎡)	기점	종점
기정	사당2동 73-6~1155	594	6	3,848	사당2동 73-6	사당2동 1155

라.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1) 시 행 자 : 동작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2동 47-2)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기정)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3.12.31.까지
- (변경)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4.12.31.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별첨조서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도로관리과(☎ 820-99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토지 등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공고되는 내용과 달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보상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사용 또는 수용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권리	
1	기정	동작구 사당동	68-5	도로	23	23	강**	서울 관악구 남현4길 26, *층 (남현동)				
							강**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29길 118, ***동 ****호 (사당동, 신동아아파트)				
							강**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29길 110, ***동 ***호 (사당동, 신동아아파트)				
							강**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청일로 159-** (유평리)				
							김**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29다길 ** (사당동)				
							강**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29길 118, ***동 ***호(사당동, 신동아아파트)				
							강**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92나길 27, ***호 (사당동)				
							강**	경기 안성시 고삼면 고삼호수로 269-** (월향리)				
							강**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230, *동 ***호 (분당동, 한성빌라)				
							김**	서울 구로구 경서로11길 46, ***동 ***호 (고척동, 명품하이츠빌)				
							최**	인천 연수구 한나루로193번길 16, ***동 ****호 (옥련동, 태평아파트)				
							김**	서울 강서구 화곡로53가길 26, ***호 (화곡동, 상아하이츠빌라)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사용 또는 수용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권리	
1	기정	동작구 사당동	68-5	도로	23	23	김**	서울 강서구 화곡로53가길 26, ***호 (화곡동, 상아하이츠빌라)				
							신**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42번길 18, *층 (파장동)				
							박**	미합중국 90017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리스 유니온 드라이브 420 아파트 ***호				
							박**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317번길 15, ***동 ****호				
							박**	서울 마포구 백범로37길 12, ***동 ****호 (신공덕동, ****삼성래미안아파트)				
							박**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매곡1로 32, *** (매곡동, 드림인시티 에일런의뜰2차)				
							박**	미합중국 95119 캘리포니아 산호세 모라가웨이 ***				
							강**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375길 6, ***호(도곡동)				
							강**	서울 관악구 신림로28길 53, ***호 (신림동)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61				소유권 변동
2	기정	동작구 사당동	57-91	답	3	3	김**	서울 동작구 사당동 **				
3	기정	동작구 사당동	71-61	대	2	2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61				소유권 변동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사용 또는 수용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권리	
4	기정	동작구 사당동	68-21	대	1	0	한**	서울 서초구 동광로3길 18, ***동 ***호				
							송**	서울 서초구 동광로3길 18, ***동 ***호				
							이**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 120-5, ***호				
5	기정	동작구 사당동	산10-53	임야	174	174	강**	서울 관악구 관천로25길 **				
							강**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29길 118, ***동 ****호				
							강**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청일로 159-**				
							강**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29길 110, ***동 ***호				
							신**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42번길 **, *층				
							김**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29다길 **				
							강**	서울 동작구 사당로23길 208, ***호				
							강**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29나길 **				
							강**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고삼호수로 269-**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사용 또는 수용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권리	
5	기정	동작구 사당동	산10-53	임야	174	174	강**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31길**				
							김**	서울 구로구 경인로 343, ***동 ***호				
							최**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나루로193번길 **, ***동 ****호				
							김**	서울 강서구 화곡로53가길 **, ***호				
							김**	서울 강서구 화곡로53가길 **, ***호				
							박**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42번길 **, *층				
							박**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317번길 15, ***동 ****호				
							박**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서로 7, ***동 ****호				
							박**	경기도 김포시 풍년로 19, ***동 ***호				
							박**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				
							강**	서울 관악구 신림로28길 **, ***호(신림동)				
							강**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375길 *, ***호 (도곡동, 벨라빌)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사용 또는 수용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권리	
5	기정	동작구 사당동	산10-53	임야	174	174	강**	경기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57, ***동 ***호 (호계동, 목련아파트)				
							조**	경기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57, ***동 ***호 (호계동, 목련아파트)				
							강**	서울 강남구 삼성로 150, ***동 ***호 (대치동, 한보미도맨션)				
							김**	서울 강남구 삼성로 150, ***동 ***호 (대치동, 한보미도맨션)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61				소유권 변동

◈ 동작구고시 제2023-15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작성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973-54호(1973.04.30.), 동작구고시 제2021-267호(2021.11.11.)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되고, 동작구고시 제2020-88호(2020.06.18.)로 실시계획 고시되고, 동작구고시 제2022-205호(2022.12.29.)로 실시계획 변경고시된 도로에 대하여,

2. 사업기간 변경을 위해 동작구 공고 제2023-2055호(2023.12.14.)로 열람공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작성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관리과(02-820-9903)에 비치하며,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12월 28일
동 작 구 청 장

가. 변경사유 : 사업지연에 따른 기간 변경(연장)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2) 명 칭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3) 내 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보상

다.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연 번	위 치	연 장 (m)	폭 (m)	면적 (㎡)	기점	종점
기정	사당3동 1131-4 ~사당3동259-1	70	6	467.6	사당3동 1131-4	사당3동 259-1

라.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1) 시 행 자 : 동작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2동 47-2)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기정)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3.12.31.까지
- (변경)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5.12.31.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조서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도로관리과(☎ 820-99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토지 등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고시되는 내용과 달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보상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없음)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사용 또는 수용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권리	
1	기정	동작구 사당동	260-2	답	182	182	김**	서울 양천구 목동				
							김**	서울 양천구 목동				
							이**	서울 강남구				
							김**	서울 강남구				
2	기정	동작구 사당동	259-3	도로	172	172	이**	서울 동작구				
							정**	광주광역시 북구				
							채**	광주광역시 북구				

◈ 동작구고시 제2023-15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작성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972-100호(1972.07.19.) 및 동작구고시 제2020-97호(2020.06.25.), 동작구고시 제2021-160호(2021.07.15.), 동작구고시 제2021-249호(2021.10.2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되고, 동작구고시 제2020-89호(2020.06.18.)호로 실시계획 고시되고, 동작구고시 제2022-10호(2022.01.20.), 동작구고시 제2022-206호(2022.12.29.)로 실시계획 변경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2. 사업기간 변경을 위해 동작구 공고 제2023-2056호(2023.12.14.)로 열람공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작성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관리과(02-820-9903)에 비치하며,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12월 28일
동 작 구 청 장

가. 변경사유 : 사업지연에 따른 기간 변경(연장)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2) 명 칭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3) 내 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보상

다.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구분	위 치	연장(m)	폭(m)	면적(㎡)	기점	종점
기정	본동 10-30~10-41	48	4	235	본동 10-30	본동 10-41

라.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1) 시 행 자 : 동작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2동 47-2)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기정)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3.12.31.까지
- (변경)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5.12.31.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조서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도로관리과(☎ 820-99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토지 등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고시되는 내용과 달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보상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없음)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사용 또는 수용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권리	
1	기정	동작구 본 동	10-51	대	7	7	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4로 46, ***동 ****호 (식사동, 위시티일산자이2단지)				
							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03-**				
							강**	서울 강북구 숭인로7가길 **, ***-*** (미아동, 동부센트레빌아파트)				
							오**	서울 동작구 본동 ***				
							기획재정부					
							서울특별시					
2	기정	동작구 본 동	10-50	대	1	1	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4로 46, ***동 ****호 (식사동, 위시티일산자이2단지)				
							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03-**				
							강**	서울 강북구 숭인로7가길 **, ***-*** (미아동, 동부센트레빌아파트)				
							오**	서울 동작구 본동 ***				
							기획재정부					
							서울특별시					

◈ 동작구고시 제2023-16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작성 고시

1.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1-354호(1990.10.31.)로 및 동작구고시 제2020-97호(2020.06.25.), 동작구고시 제2021-160호(2021.07.15.), 동작구고시 제2021-210호(2021.09.16.), 동작구고시 제2021-249(2021.10.28.), 동작구고시 제2021-251호(2021.10.2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되고, 동작구고시 제2020-90호(2020.06.18.)로 실시계획 고시되고, 동작구고시 제2021-311호(2021.12.23.), 동작구고시 제2022-86호(2022.05.26.), 동작구고시 제2022-207호(2022.12.29.)로 실시계획 변경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2. 사업기간 변경을 위해 동작구 공고 제2023-2057호(2023.12.14.)로 열람공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작성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관리과(02-820-9903)에 비치하며,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12월 28일
동 작 구 청 장

가. 변경사유 : 사업지연에 따른 기간 변경(연장)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2) 명 칭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3) 내 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보상

다.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구분	위 치	연장(m)	폭(m)	면적(㎡)	기점	종점
기정	상도4동 201-135~204-45	110	4	458	상도4동 201-135	상도4동 204-45

라.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1) 시 행 자 : 동작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2동 47-2)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기정)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3.12.31.까지
- (변경)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5.12.31.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조서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도로관리과(☎ 820-99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토지 등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고시되는 내용과 달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보상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없음)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사용 또는 수용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권리	
1	기정	동작구 상도동	204-269	대	53	53	전주*씨 **대군파종중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20-*				
2	기정	동작구 상도동	201-234	대	75	75	전주*씨 **대군파종중	서울 중구 세종대로 ** (남대문로5가)				
3	기정	동작구 상도동	201-231	대	9	9	김*옥	서울 도봉구 도봉로110다길 5, ***동 ***호 (창동, 창동 한신아파트)	주식회사 **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 (을지로1가)	근저당권	
4	기정	동작구 상도동	201-227	도로	15	15	정*남	서울 동작구 성대로37길 ** (상도동)				
5	기정	동작구 상도동	201-228	대	3	3	정*남	서울 동작구 성대로37길 ** (상도동)				
6	기정	동작구 상도동	201-230	대	8	8	우*기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9길 2-**(상도동)				
							최*애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9길 2-**(상도동)				
7	기정	동작구 상도동	201-229	대	295	295	전주*씨 **대군파종중	서울 중구 세종대로 ** (남대문로5가)				

◈ 서초구고시 제2023-183호

도시계획시설사업(서리풀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1.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08.06)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21-394호(2021.07.29.)로 서리풀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산40-12번지 일대의 서리풀근린공원에 대하여
2.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서초구 공고 제2023-2768(2023.12.07.)호로 실시계획인가(변경)를 위한 열람공고를 완료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변경)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하며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공원녹지과(☎02-2155-6882)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초 구 청 장

가. 사업 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산40-12번지 등 22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2) 명　　칭: 서리풀근린공원 조성
  3) 내　　용: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다. 사업의 면적: 85,967.5㎡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시 행 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2)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번지
마. 시설관리청: 서울특별시장
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1) 변 경 전: 실시계획인가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 변 경 후: 실시계획인가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 변경사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기간 연장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별첨조서
아. 고시방법: 서울시보 및 서초구청 홈페이지 게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 업 명 : 도시계획시설(서리풀근린공원 조성)사업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계	22필지		85,967.5	85,967.5					
1	반포동 산40-12	임	10,090	10,09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	서초동 산183-12	임	7,628	7,628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	서초동 산185-24	임	4,744	4,744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지상권
4	서초동 산185-1	임	4,337	4,337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지상권
5	반포동 산85-2	임	20,015	20,015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	지상권
6	방배동 산17-46	임	19,654	19,654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	지상권
7	방배동 산17-40	임	200	20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	방배동 산17-42	임	1,292	1,292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	방배동 산18-6	임	443	443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	방배동 산17-48	임	262	262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	방배동 산17-49	임	55	55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2	방배동 산17-38	임	801	80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3	방배동 산17-39	임	1,791	1,79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4	방배동 산17-44	임	1,964	1,964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5	서초동 산165-4	임	2,830	2,83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6	서초동 1497-4	공원	410.5	410.5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17	서초동 산161-2	임	264	264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8	서초동 산160-52	임	89	89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9	서초동 산160-15	임	172	172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0	방배동 167-30	대	155	155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1	방배동 167-31	대	142	142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2	서초동 산156-58	임	8,629	8,629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서초구고시 제2023-184호

도시계획시설사업(방배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1.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08.06)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21-395호(2021.07.29.)로 방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산43-7번지 일대의 방배근린공원에 대하여
2.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서초구 공고 제2023-2769(2023.12.07.)호로 실시계획인가(변경)를 위한 열람공고를 완료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변경)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하며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공원녹지과(☎02-2155-6882)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초 구 청 장

가. 사업 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산43-7번지 등 13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명　　칭: 방배근린공원 조성
  3) 내　　용: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다. 사업의 면적: 20,933㎡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시 행 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2)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번지
마. 시설관리청: 서울특별시장
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1) 변 경 전: 실시계획인가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 변 경 후: 실시계획인가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 변경사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기간 연장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별첨조서
아. 고시방법: 서울시보 및 서초구청 홈페이지 게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 사 업 명 : 도시계획시설(방배근린공원 조성)사업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계	22필지		20,933	20,933						
1	방배동 274-2	임	996	996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	방배동 273-2	임	301	301	학교법인 서울**학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9길 **				부지사용계약
3	방배동 273-3	임	301	301	학교법인 서울**학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9길 **				부지사용계약
4	방배동 275-2	임	180	180	학교법인 서울**학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9길 **				부지사용계약
5	방배동 산43-7	임	6,522	6,522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6	방배동 산43-8	임	836	836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	방배동 산43-9	임	297	297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	방배동 산84-26	임	940	94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	방배동 산84-25	임	845	845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	방배동 산84-7	임	1,488	1,488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	방배동 산84-24	임	2,626	2,626	학교법인 서울**학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9길 **				부지사용계약
12	방배동 산86-3	임	2,721	2,72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3	방배동 산40-6	임	2,880	2,88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서초구고시 제2023-185호

도시계획시설사업(우면산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1.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08.06)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시자연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74호(2021.10.21)로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산33-2번지 일대의 우면산근린공원에 대하여,
2.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서초구 공고 제2023-2770(2023.12.07.)호로 실시계획인가(변경)를 위한 열람공고를 완료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변경)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하며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공원녹지과(☎02-2155-6882)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초 구 청 장

가. 사업 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산33-2번지 등 5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2) 명　　칭: 우면산근린공원 조성
  3) 사업내용: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다. 사업의 면적: 11,050㎡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시 행 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2)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번지
마. 시설관리청: 서울특별시장
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1) 변 경 전: 실시계획인가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 변 경 후: 실시계획인가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 변경사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기간 연장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별첨조서
아. 고시방법: 서울시보 및 서초구청 홈페이지 게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 업 명 : 도시계획시설(우면산근린공원 조성)사업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계	5필지		11,050	11,050					
1	방배동 산33-2	임	9,980	9,98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	방배동 산31-1	임	520	52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	방배동 산32-2	임	200	20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	서초동 산139-6	임	130	13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	서초동 산141-13	임	220	22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서초구고시 제2023-188호

신반포4지구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소공원(27호) 조성계획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1685호(1995.5.20.)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128호(2022.6.16.)호로 변경 결정된 신반포4지구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내 소공원(27호)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초 구 청 장

가. 공 원 명: 신반포4지구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소공원(27호)
나. 위　　치: 잠원동 58-24일원
다. 면　　적: 5,033.50
라.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신반포4지구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소공원의 조성계획결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휴식 및 여가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마. 고시방법: 서울시보 게재
바. 조성계획 결정(최초)조서 및 지형도면: 별첨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음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한 지형도면 작성, 승인고시는 본 고시로 갈음함
아. 열람장소: 서초구청 공원녹지과(☎2155-6861)
자.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서초구청 공원녹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공원(27호) 조성계획결정조서 및 지형도면 1부.　끝.

신반포4지구 27호 소공원 조성계획결정조서(최초)

1. 총괄표(위치:서초구 잠원동 58-24일원)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5,033.50	1,006.00				69	
공원시설	소 계		1,006.00	1,006.00				69	
	기반시설	소계	522.00	522.00				-	
		도로	522.00	522.00				-	
	조경시설		13.00	13.00				4	
	휴양시설		224.00	224.00				36	
	유희시설		213.00	213.00				3	
	운동시설		34.00	34.00				4	
	관리시설		-	-				22	
녹지및 기타			4,027.50	-				-	
시설율 (법정 20%)			(1,006.00㎡ ÷ 5,033.50㎡) × 100 = 19.99%						
건폐율 (법정 5%)			(0.0㎡ ÷ 5,033.50㎡) × 100 = 0.0%						

2.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비고
								바닥 면적	연 면적		
합 계				5,033.50	1,006.00					69	
기반시설	계			522.00	522.00					-	
	도 로		잠원동 58-24일원	522.00	522.00					-	
조경시설	계			13.00	13.00					4	
	앉음벽	①	전지역	-	-					3	
	조형벽천	②	잠원동 58-24일원	13.00	13.00					1	
휴양시설	계			224.00	224.00					36	
	휴게소	가	잠원동 58-24일원	224.00	224.00					-	
		가-1	〃	100.00	100.00					-	
		가-2	〃	95.00	95.00					-	
		가-3	〃	29.00	29.00					-	
	파고라	③	휴게소내		-	-				3	
	사각의자	④	가-1		-	-				4	
	등의자	⑤	전지역		-	-				25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비고
								바닥 면적	연 면적		
	평의자	⑥	가-2		-	-				4	
유희시설	계			213.00	213.00					3	
	놀이터	나	잠원동 58-24일원	213.00	213.00					-	
	조합놀이대	⑦	나	-	-					1	
	흔들놀이대	⑧	나	-	-					2	
운동시설	계			34.00	34.00					4	
	체력단련장	다	잠원동 58-24일원	34.00	34.00					-	
	생활체육시설	⑨	체력단련장내	-	-					4	
관리시설	계			-	-					22	
	공원등	⑩	전지역	-	-					16	
	CCTV	⑪	전지역	-	-					2	
	분전함	⑫	잠원동 58-24일원	-	-					1	
	공원안내판	⑬	잠원동 58-24일원	-	-					2	
	음수전	⑭	잠원동 58-24일원	-	-					1	
녹지 및 기타				4,027.50	-					-	

3. 도로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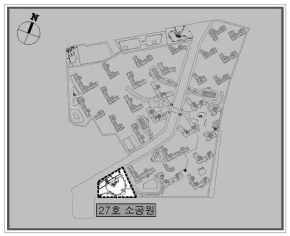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합 계				234.60	522.0		-	-	
신설	산책로	3	1	2.5	130.8	332.0	산책로	남측 대지경계	북측 대지경계	
신설	산책로	3	2	1.5	17.1	26.0	진입로	동측 대지경계	산책로-1	
신설	산책로	3	3	1.5	25.0	38.0	진입로	남측 대지경계	산책로-1	
신설	산책로	3	4	2.0	26.8	56.0	연결로	가-2	산책로-1	
신설	산책로	3	5	2.0	34.9	70.0	연결로	가-2	산책로-1	

조 성 계 획 도

27호 소 공 원

■ KEYMAP





■ 범 례

구분	부호	시 설 명	부지면적	시설면적	규모/수량	비고
계		소공원	5,033.50	1,006.00	69	시설율 19.99%
기반시설		소 계	522.00	522.00	-	
	산-1	도로	332.00	332.00	-	
	산-2	도로	26.00	26.00	-	
	산-3	도로	38.00	38.00	-	
	산-4	도로	56.00	56.00	-	
	산-5	도로	70.00	70.00	-	
조경시설		소 계	13.00	13.00	4	
	①	암음벽	-	-	3	
	②	조형벽천	13.00	13.00	1	
휴양시설		소 계	224.00	224.00	36	
	가	휴게소	224.00	224.00	-	
	가-1	휴게소	100.00	100.00	-	
	가-2	휴게소	95.00	95.00	-	
	가-3	휴게소	29.00	29.00	-	
	③	파고라	-	-	3	
	④	사각의자	-	-	4	
	⑤	등의자	-	-	25	
	⑥	원의자	-	-	4	
유희시설		소 계	213.00	213.00	3	
	나	놀이터	213.00	213.00	-	
	⑦	조합놀이대	-	-	1	
	⑨	흔들놀이대	-	-	2	
운동시설		소 계	34.00	34.00	4	
	다	체력단련장	34.00	34.00	-	
	⑨	생활체육시설	-	-	4	
관리시설		소 계	-	-	22	
	⑭	공원등	-	-	16	
	⑮	CCTV	-	-	2	
	⑫	분진함	-	-	1	
	⑬	공원안내판	-	-	2	
	⑯	음수전	-	-	1	
녹지 및 기타		소 계	4,027.50	-	-	
		녹 지 및 기타	4,027.50	-	-	

◈ 서초구고시 제2023-189호

신반포4지구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소공원(29호) 조성계획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1685호(1995.5.20.)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128호(2022.6.16.)호로 변경 결정된 신반포4지구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내 소공원(27호)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초 구 청 장

가. 공 원 명: 신반포4지구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소공원(29호)
나. 위　　치: 잠원동 60-6일원
다. 면　　적: 1,600㎡
라.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신반포4지구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소공원의 조성계획결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휴식 및 여가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마. 고시방법: 서울시보 게재
바. 조성계획 결정(최초)조서 및 지형도면: 별첨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음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한 지형도면 작성, 승인고시는 본 고시로 갈음함
아. 열람장소: 서초구청 공원녹지과(☎2155-6861)
자.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서초구청 공원녹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공원(29호) 조성계획결정조서 및 지형도면 1부.　끝.

신반포4지구 29호 소공원 조성계획결정조서(최초)

1. 총괄표(위치:서초구 잠원동 60-6일원)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1,600.00	312.00				44	
공원시설	소 계		312.00	312.00				44	
	기반시설	소계	144.00	144.00				-	
		도로	144.00	144.00				-	
	조경시설		12.00	12.00				4	
	휴양시설		156.00	156.00				29	
	관리시설		-	-				11	
녹지및 기 타			1,288.00	-				-	
시설율 (법정 20%)			(312.00㎡ ÷ 1,600.00㎡) × 100 = 19.50%						
건폐율 (법정 5%)			(0.0㎡ ÷ 1,600.00㎡) × 100 = 0.0%						

2.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비고
								바닥 면적	연 면적		
합 계				1,600.00	312.00					44	
기반시설	계			144.00	144.00					-	
	도 로		잠원동 60-6일원	144.00	144.00					-	
조경시설	계			12.00	12.00					4	
	앉음벽	①	전지역	-	-					3	
	조형벽천	②	잠원동 60-6일원	12.00	12.00					1	
휴양시설	계			156.00	156.00					29	
	휴게소	가	잠원동 60-6일원	156.00	156.00					-	
		가-1	잠원동 60-6일원	94.00	94.00					-	
		가-2	잠원동 60-6일원	62.00	62.00					-	
	파고라	③	가-1	-	-					2	
	사각의자	④	가-2	-	-					5	
	등의자	⑤	전지역	-	-					12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비고
								바닥 면적	연 면적		
	평의자	⑥	가-1	-	-					4	
	조형벤치	⑦	전지역	-	-					6	
관리시설	계			-	-					11	
	공원등	⑧	전지역	-	-					6	
	CCTV	⑨	전지역	-	-					1	
	분전함	⑩	잠원동 60-6일원	-	-					1	
	공원안내판	⑪	잠원동 60-6일원	-	-					2	
	음수전	⑫	잠원동 60-6일원	-	-					1	
녹지 및 기타				1,288.00	-					-	

3. 도로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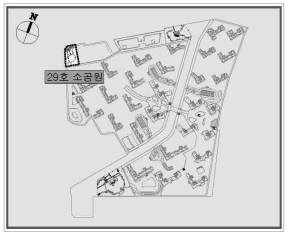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합 계				72.4	144.0		-	-	
신설	산책로	3	1	2.0	63.5	130.0	산책로	남측 대지경계	가-2	
신설	산책로	3	2	1.5	8.9	14.0	진입로	남측 대지경계	산책로-1	

조 성 계 획 도

29호 소 공 원

■ KEY MAP





■ 범 례

구분	부호	시 설 명	부지면적	시설면적	규모/수량	비고
계		소공원	1,600.00	312.00	44	시설율 19.50%
기반시설		소 계	144.00	144.00	-	
	산-1	도로	130.00	130.00	-	
	산-2	도로	14.00	14.00	-	
조경시설		소 계	12.00	12.00	4	
	①	암음벽	-	-	3	
	②	조형벽천	12.00	12.00	1	
휴양시설		소 계	156.00	156.00	29	
	가	휴게소	156.00	156.00	-	
	가-1	휴게소	94.00	94.00	-	
	가-2	휴게소	62.00	62.00	-	
	③	파고라	-	-	2	
	④	사각의자	-	-	5	
	⑤	등의자	-	-	12	
	⑥	원의자	-	-	4	
	⑦	조형벤치	-	-	6	
관리시설		소 계	-	-	11	
	⑧	공원등	-	-	6	
	⑨	CCTV	-	-	1	
	⑩	분전함	-	-	1	
	⑪	공원안내판	-	-	2	
	⑫	음수전	-	-	1	
녹지 및 기타		소 계	1,288.00	-	-	
		녹 지 및 기 타	1,288.00	-	-	

◈ 서초구고시 제2023-190호

신반포4지구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소공원(30호) 조성계획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1685호(1995.5.20.)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128호(2022.6.16.)호로 변경 결정된 신반포4지구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내 소공원(27호)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초 구 청 장

가. 공 원 명: 신반포4지구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소공원(30호)
나. 위　　치: 잠원동 60-3일원
다. 면　　적: 2,529.20㎡
라.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신반포4지구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소공원의 조성계획결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휴식 및 여가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마. 고시방법: 서울시보 게재
바. 조성계획 결정(최초)조서 및 지형도면: 별첨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음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한 지형도면 작성, 승인고시는 본 고시로 갈음함
아. 열람장소: 서초구청 공원녹지과(☎2155-6861)
자.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서초구청 공원녹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공원(30호) 조성계획결정조서 및 지형도면 1부.　끝.

신반포4지구 30호 소공원 조성계획결정조서(최초)

1. 총괄표(위치:서초구 잠원동 60-3일원)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2,529.20	495.00				47	
공원시설	소 계		495.00	495.00				47	
	기반시설	소계	363.00	363.00				-	
		도로	304.00	304.00				-	
		광장	59.00	59.00				-	
	조경시설		22.00	22.00				4	
	휴양시설		93.00	93.00				24	
	운동시설		17.00	17.00				3	
	관리시설		-	-				16	
녹지 및 기 타			2,034.20	-				-	
시설율 (법정 20%)			(495.00㎡ ÷ 2,529.20㎡) × 100 = 19.57%						
건폐율 (법정 5%)			(0.0㎡ ÷ 2,529.20㎡) × 100 = 0.0%						

2.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비고
								바닥 면적	연 면적		
합 계				2,529.20	495.00					47	
기반시설	계			363.00	363.00					-	
	도 로		잠원동 60-3일원	304.00	304.00					-	
	광 장	가	잠원동 60-3일원	59.00	59.00					-	
조경시설	계			22.00	22.00					4	
	앉음벽	①	전지역	-	-					3	
	조형분수	②	잠원동 60-3일원	22.00	22.00					1	
휴양시설	계			93.00	93.00					24	
	휴게소	나	잠원동 60-3일원	93.00	93.00					-	
		나-1	잠원동 60-3일원	79.00	79.00					-	
		나-2	잠원동 60-3일원	7.00	7.00					-	
		나-3	잠원동 60-3일원	7.00	7.00					-	
	연식파고라	③	나-1	-	-					1	
	사각의자	④	나-1	-	-					5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비고
								바닥 면적	연 면적		
	등의자	⑤	전지역	-	-					16	
	평의자	⑥	전지역	-	-					2	
운동시설	계			17.00	17.00					3	
	체력단련장	다	잠원동 60-3일원	17.00	17.00					-	
	생활체육시설	⑦	다	-	-					3	
관리시설	계			-	-					16	
	공원등	⑧	전지역	-	-					11	
	CCTV	⑨	전지역	-	-					1	
	분전함	⑩	잠원동 60-3일원	-	-					1	
	공원안내판	⑪	잠원동 60-3일원	-	-					2	
	음수전	⑫	잠원동 60-3일원	-	-					1	
녹지 및 기타				2,034.20	-					-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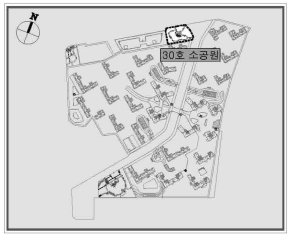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합 계				155.6	304.0	산책로	-	-	
신설	산책로	3	1	2.0	18.1	45.0	진입로	북측 대지경계	나-1	
신설	산책로	3	2	2.0	21.6	55.0	진입로	북측 대지경계	광장	
신설	산책로	3	3	2.0	34.5	80.0	진입로	동측 대지경계	나-1	
신설	산책로	3	4	1.5	81.4	124.0	산책로	산책로-1	산책로-3	

조 성 계 획 도

30호 소 공 원



■ KEY MAP



■ 범 례

구분	부호	시 설 명	부지면적	시설면적	규모/수량	비고
계		소공원	2,529.20	495.00	47	시설율 19.57%
기반시설		소 계	363.00	363.00	-	
	산-1	도로	45.00	45.00	-	
	산-2	도로	55.00	55.00	-	
	산-3	도로	80.00	80.00	-	
	산-4	도로	124.00	124.00	-	
	가	광장	59.00	59.00	-	
조경시설		소 계	22.00	22.00	4	
	①	많음벽	-	-	3	
	②	조형분수	22.00	22.00	1	
휴양시설		소 계	93.00	93.00	24	
	나	휴게소	93.00	93.00	-	
	나-1	휴게소	79.00	79.00	-	
	나-2	휴게소	7.00	7.00	-	
	나-3	휴게소	7.00	7.00	-	
	③	연식파고라	-	-	1	
	④	사각의자	-	-	5	
	⑤	원의자	-	-	16	
	⑥	평의자	-	-	2	
운동시설		소 계	17.00	17.00	3	
	다	체력단련장	17.00	17.00	-	
	⑦	생활체육시설	-	-	3	
편의시설		소 계	-	-	16	
	⑧	공원등	-	-	11	
	⑨	CCTV	-	-	1	
	⑩	분전함	-	-	1	
	⑪	공원안내판	-	-	2	
	⑫	음수전	-	-	1	
녹지 및 기타		소 계	2,034.20	-	-	
		녹 지 및 기타	2,034.20	-	-	

◈ 송파구고시 제2023-15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5호(2013.2.21.)로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녹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고시 제2015-67호(2015.7.30.)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송파구고시 제2016-44호(2016.4.28.), 송파구고시 제2017-168호(2017.12.14.), 송파구고시 제2018-156호(2018.12.27.), 송파구고시 제2019-114호(2019.9.26.), 송파구고시 제2021-59호(2021.3.25.), 송파구고시 제2021-214호(2021.10.28.), 송파구고시 제2022-158호(2022.9.22.)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송파구고시 제2022-212호(2022.12.22.)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송파구고시 제2023-52호(2023.3.30.)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송파구고시 제2023-87호(2023.6.29.)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송파구고시 제2023-141호(2023.11.23.)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위례신도시 지구북측도로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송 파 구 청 장

1. 실시계획(변경)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 송파구 마천동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위례신도시 지구북측도로 건설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대로	2	106	30	주간선 도로	266	하남시 학암동	송파구 마천동	일반 도로	천마근린 공원	'13.2.21	-총 2,295m중 서울시 구간 266m에 한하여 인가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한국토지주택공사장
○ 주 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

○ 기　정: 2015.07.30. ~ 2023.06.30.

○ 변　경: 2015.07.30. ~ 2024.04.3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열람장소에 비치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도로관리 협약 등에 따라 대상 필지는 준공후 시설물 관리청(서울시 송파구, 하남시)에 무상귀속

아. 관계도서는 송파구청 도시계획과(☎02-2147-299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강동구고시 제2023-21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시장)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475호(1982.11.24.)로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 및 지적승인된 강동구 천호동 454-1번지(舊 성내동 57-3)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강 동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시장)에 대하여 해당 토지등소유자의 제안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시장)을 폐지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시장) 변경 결정
   ○ 도시계획시설(시장) 변경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폐지	-	소매시장 (백화점)	대규모점포	강동구 천호동 454-1	2,109	감) 2,109	-	1982.11.24. (서울시고시 제475호)	

○ 도시계획시설(시장)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장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	소매시장 (백화점)	• 도시계획시설(시장) 폐지 - 면적: 2,109㎡	•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시장 유지 필요성 저하 및 역세권 상업지의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한 시설 폐지

3. 관계도면: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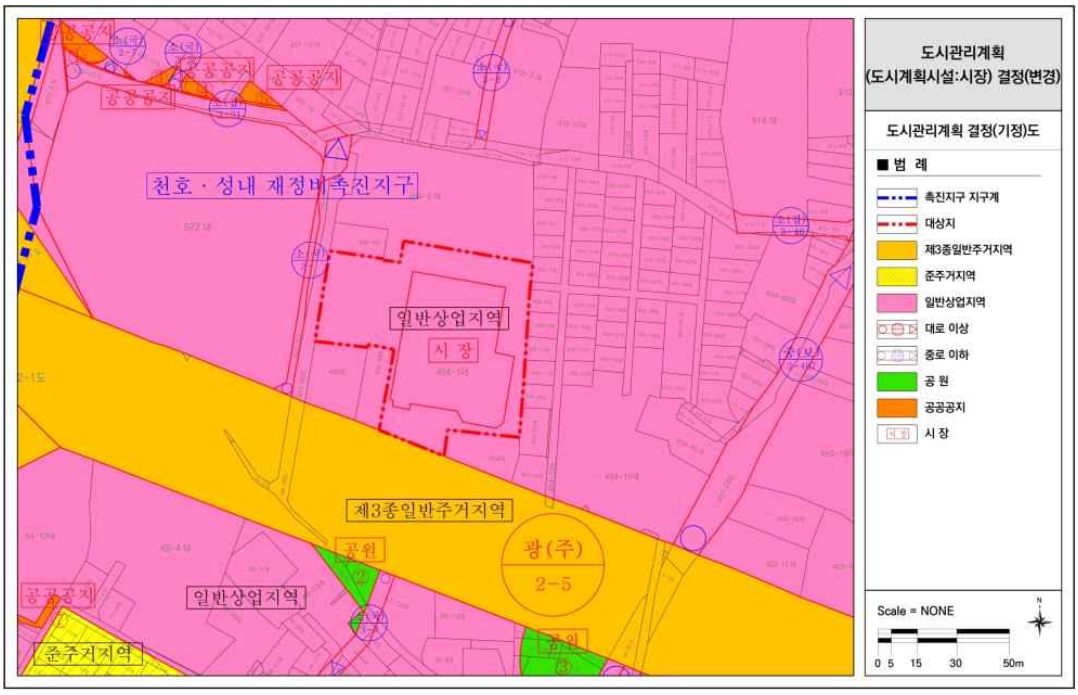
4. 관계도서는 강동구청 도시계획과(☎02-3425-6055)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며,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안과정에서 제시된 주요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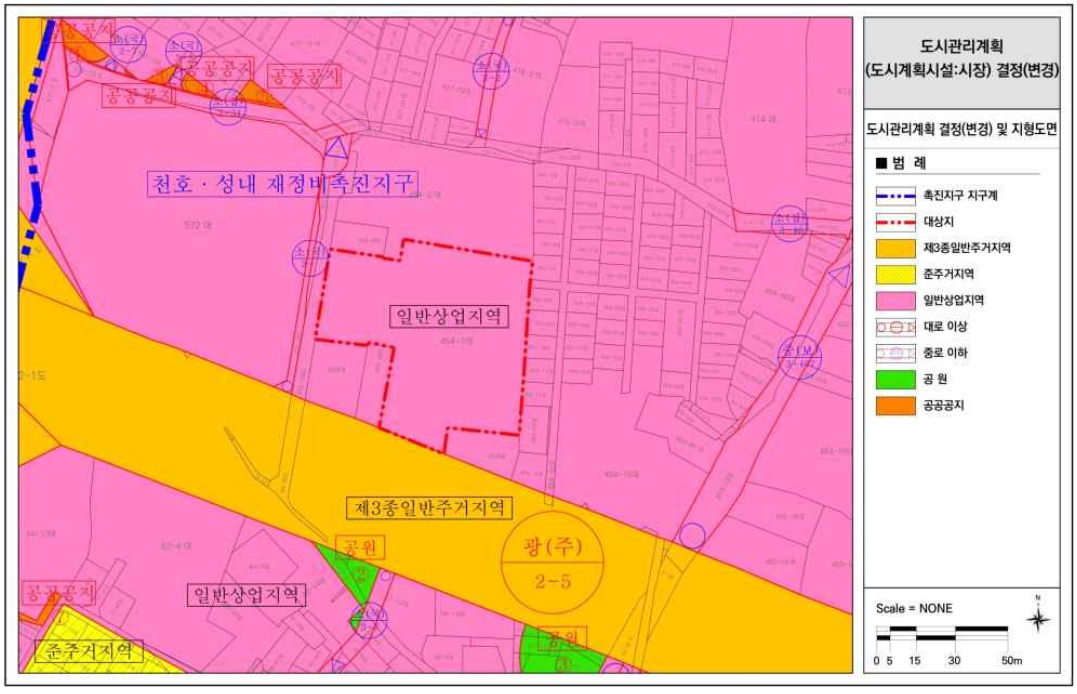
연번	주요 의견
1	도시계획시설(시장) 폐지 제안 시 제시된 공공기여계획 등의 사업계획은 이후 세부개발계획에도 연계하여 반영
2	천호대로변 유동인구 등을 고려 전면부 개방형 녹지 확보
3	대상지 주변의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한 교통처리계획 수립

[붙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시장) 결정(기정)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시장) 결정(변경)도]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구 공 고

◈ 동대문구공고 제2023-1537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공고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의거 동대문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과(☎2127-4815) 및 도시계획과(☎2127-566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12월 28일
동 대 문 구 청 장

1.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

(사업비 : 백만원)

시설별	시행기간별									비고
	계			1단계(1~3년차)			2단계(4년차이후)			
	건수	면적(㎡)	사업비	건수	면적(㎡)	사업비	건수	면적(㎡)	사업비	
계	18	20,402	15,004	5	5,043	8,735	13	15,359	6,269	
도로	18	20,402	15,004	5	5,043	8,735	13	15,359	6,269	

2.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

연번	시설명	위 치	규 모			고시일	해제에 관한의견	단계별 집행계획
			폭원(m)	연장(m)	면적(㎡)			
1	도로	제기동 67-141 ~ 67-55	4	150	574	2004-11-10	존치	1
2	도로	회기동 45-58 ~ 52	4	85	343	2007-10-04	존치	1
3	도로	회기동 73-9 ~ 62-62	2~6	78	358	2007-10-04	존치	1
4	도로	회기동 60-285 ~45-35	8	177	1,418	2007-10-04	존치	1

연번	시설명	위 치	규 모			고시일	해제에 관한의견	단계별 집행계획
			폭원(m)	연장(m)	면적(㎡)			
5	도로	전농동 295-2 ~ 38-2	8	252	2,350	2007-07-05	존치	1
6	도로	회기동 16-9 ~ 3-38	8	340	1,185	2007-10-04	존치	2
7	도로	회기동 16-11 ~ 33-1	4	95	380	2007-10-04	존치	2
8	도로	전농동 295-124 ~ 295-12	10~16	228	3,238	2007-07-05	존치	2
9	도로	신설동 114-25 ~ 114-6	10~12	306	3,366	2011-06-30	존치	2
10	도로	신설동 114-87 ~ 114-1	6	63	378	2011-06-30	존치	2
11	도로	신설동 104-8 ~ 104-41	8	206	1,648	2011-06-30	존치	2
12	도로	신설동 103-20 ~ 96-44	10	357	3,570	2011-06-30	존치	2
13	도로	신설동 104-34 ~ 104-22	4	35	140	2011-06-30	존치	2
14	도로	신설동 104-28 ~ 104-30	6	36	216	2011-06-30	존치	2
15	도로	신설동 104-10 ~ 104-19	2~3	35	88	2011-06-30	존치	2
16	도로	신설동 114-65 ~ 114-3	6	64	384	2011-06-30	존치	2
17	도로	신설동 96-24 ~ 96-22	10	47	470	2011-06-30	존치	2
18	도로	신설동 96-34 ~ 96-22	4	74	296	2011-06-30	존치	2

◈ 성북구공고 제2023-1654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완료 공고

1. 건설부고시 제795호(1967.12.16)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412호(2019.12.12.)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성북구고시 제2016-163호(2016.12.1.)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하고, 성북구고시 제2017-11호(2017.01.19.), 성북구고시 제2018-172호(2018.12.20.), 성북구고시 제2020-211호(2020.12.10.) 및 성북구고시 제2021-273호(2021.12.23.)로 변경 고시된 『북악산도시자연공원(성북지구)-2차』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이 완료되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완료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성 북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사업의 명칭 : 북악산도시자연공원(성북지구) 조성(2차)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장(사무수임자 : 성북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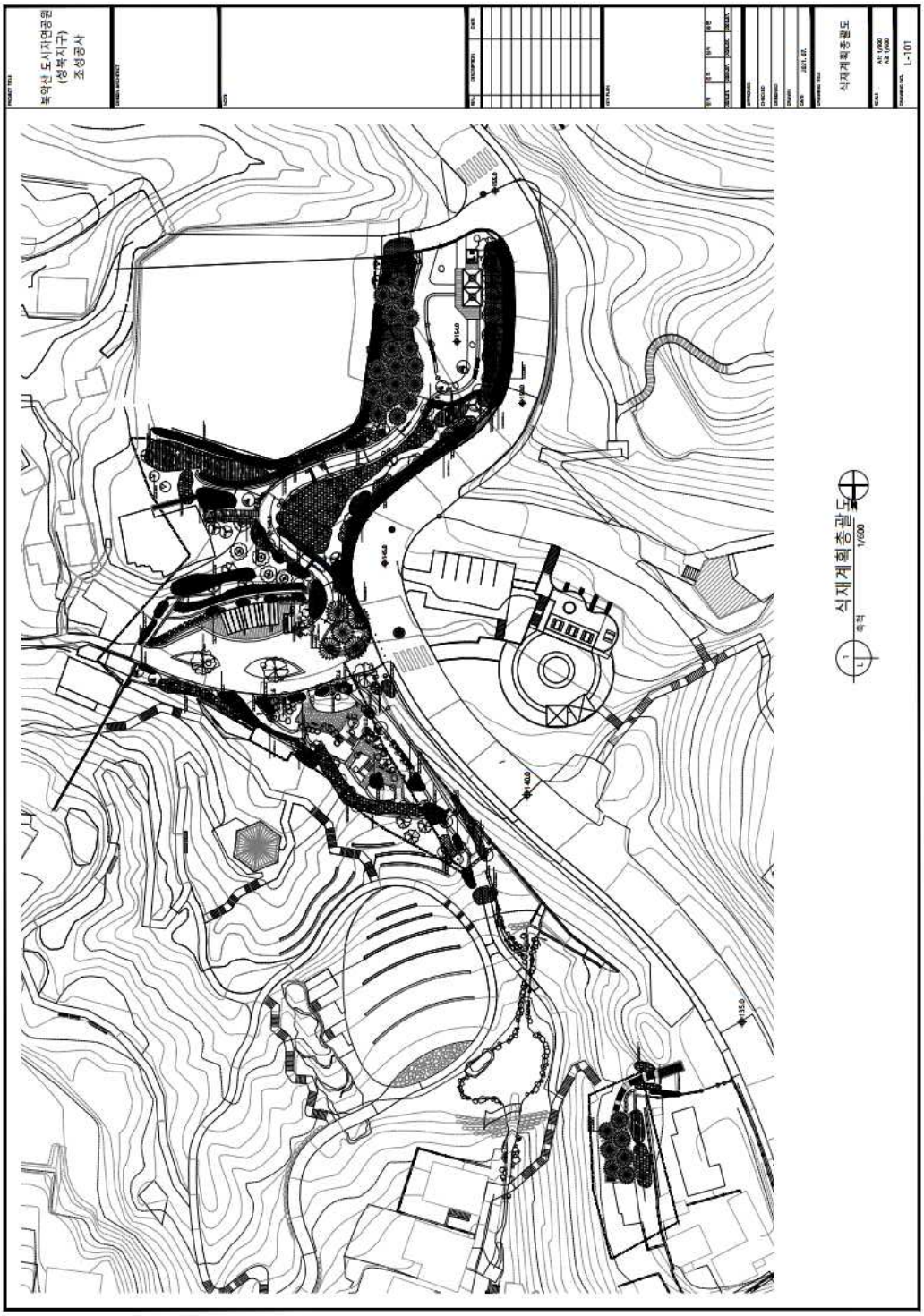
다.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완료 공고 내역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지의 위치	사업규모	실시계획 인가	사업기간
북악산도시자연공원 (성북지구) 조성(2차)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226-65번지 일대	5,772㎡	성북구고시 제2016-163호 (2016.12.1.)	2016.12.01. ~ 2023.12.31.

라. 관계도서 : 게재생략(성북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

□ 위 치 도


313아트프로젝트
성북스페이스
성북
운정의공원
수월암
현대빌라
사보이빌라
조쌤의
커피만부
성북로31길
성북동350
성북동 벤딩
수제버거치킨
리움아트갤러리
비앙도
성북로
신원그린빌라
만해
한용운 동상
서울대광학교
노틀담
콘테스리학교
키즈키즈
리연
대성사
성북예향재
만해한용운
심우장
바위전망대
성북동23다길
비둘기공원
북악산 청소년
체험의숲
북정마을
북정경로당
성북로27길
읍스큐라
성북로23길


북악산 도시연결로
(정북지구)
조성공사
식재계획총괄도
L-101
식재계획총괄도
1/600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북악산도시자연공원 성북지구 조성)-2차

연번	위치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 권리종류 및 내용	
1	성북	226-33	대	364	364		국 (재정경제원)				
2	성북	226-36	대	400	400		국 (재정경제원)				
3	성북	226-65	대	482	482		유**				
4	성북	226-68	대	353	353		국(재무부)				
5	성북	226-69	대	1,028	1,028		국(재무부)				
6	성북	226-109	임	734	734		김**				
7	성북	226-122	임	50	50		재단법인 ******				
8	성북	226-234	대	2,000	2,000		서울시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북악산도시자연공원 성북지구 조성)-2차

연번	위치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 권리종류 및 내용	
9	성북	226-242	대	30	30		성북구				
10	성북	226-251	대	2	2		이**				
							이**				
11	성북	226-252	도로	18	18		국(재무부)				
12	성북	226-319	임	183	183		박**				
13	성북	226-300	임	26	26		김**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북악산도시자연공원 성북지구 조성)-2차

연번	위치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 권리종류 및 내용	
14	성북	226-301	대	16	16		국(재무부)				
15	성북	226-302	대	14	14		국(재무부)				
16	성북	226-303	대	1	1		국(재무부)				
17	성북	226-304	대	56	56		국(재무부)				
18	성북	226-305	임	5	5		박**				
19	성북	226-306	임	10	10		박**				

물 건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북악산도시자연공원 성북지구 조성)-2차

연번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규격	면적(㎡)		실제이용 상 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 적	측 량 면 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 권리 종류 및 내용	
1	성북동 226-65 226-270	건 물 (주택 및 부수시설)	세멘조	59.306052	54	주거		유**				기존무허가
			조립식		92	주거						기존무허가
				-	1	보일러실						신발생무허가
2	성북동 226-33 226-109	건물 (주택)	세멘조	39.6696	74	주거		최**				기존무허가
3	성북동 226-33 226-122	건물 (주택)	세멘조	49.587	118	주거		백**				기존무허가
4	성북동 226-36	건 물 (주택)	세멘조 조립식 등	-	45	주거		미상				신발생무허가
			세멘조 조립식 등	-	81	주거		미상				신발생무허가

◈ 도봉구공고 제2023-1619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공고

1.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도시계획과(☎2091-3554), 도로과(☎2091-4055), 공원여가과(☎2091-3753), 문화체육과(☎2091-22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12월 28일
도 봉 구 청 장

가.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

시설별	시 행 기 간												비고
	계			1단계(1~3년 차)			2-1단계(4~5년 차)			2-2단계(6년 차 이후)			
	건수	면적(㎡)	사업비(백만원)	건수	면적(㎡)	사업비(백만원)	건수	면적(㎡)	사업비(백만원)	건수	면적(㎡)	사업비(백만원)	
계	8	6,872	70,504	3	2,513	30,579	3	2,955	38,625	2	1,404	1,300	
도로	3	2,178	2,560	1	332	460	1	566	1,800	1	1,280	300	
공원	1	450	500				1	450	500				
공공공지	2	1,705	20,020	1	1,581	19,020				1	124	1,000	
문화시설	2	2,539	47,424	1	600	11,099	1	1,939	36,325				

나.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

시설	우선순위	사업개요				계획 기간중 사업비(2024~2029) (단위 : 백만원)										실효시기
		위 치	사업기간	기 타 주요내용	결정일자	총계	지방비			1단계			2-1 단계		2-2 단계	
							계	시비	구비	'24	'25	'26	'27	'28	'29년 이후	
도로	1	도봉동626-115 ~ 626-87	2026	B=4m L=83m A=332㎡	2007-08-23	460	460		460			460				2027
도로	2	도봉동625-32 ~ 625-58	2027	B=4~6.5m L=132m A=566㎡	2007-08-23	1,800	1,800		1,800				1,800			2027

시설	우선순위	사업개요				계획 기간중 사업비(2024~2029) (단위 : 백만원)										실효시기
		위 치	사업기간	기 타 주요내용	결정일자	총계	지방비			1단계			2-1단계		2-2단계	
							계	시비	구비	'24	'25	'26	'27	'28	'29년 이후	
도로	3	도봉동288-1 ~ 281	2029	B=8m L=160m A=1,280㎡	2009-12-31	300	300		300						300	2029
공원	1	도봉동 630-2 일원	2027	A=450㎡	2007-08-23	500	500		500				500			2027
공공공지	1	방학동 705-19, 706-1 일대	2025 ~2026	A=1,581㎡	2006-04-27	19,020	19,020	9,510	9,510		5,700	13,320				2026
공공공지	2	방학동 446-2	2030	A=124㎡	2010-06-03	1,000	1,000		1,000						1,000	2030
문화시설	1	창동 643-5 일대	2026 ~2028	A=1,854㎡	2006-05-04	35,467	35,467		35,467			8,350	8,350	18,767		2026
문화시설	2	쌍문동 103-66 일대	2026 ~2028	A=685㎡	2006-05-04	11,957	11,957		11,957			2,749	2,749	6,459		2026

◈ 송파구공고 제2023-2226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공사완료 공고

송파구고시 제2021-48호(2021.03.11.)로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 고시되고, 송파구고시 제2021-261호(2021.12.30.)로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철도 8호선 장지역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송 파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장지동 216-2번지 일대(장지역)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 명 칭: 8호선 장지역 1번 출입구 외부 에스컬레이터 설치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면 적: 197.1㎡(일시 252.2㎡)
 - 규 모: 외부 에스컬레이터 1200형 설치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서울교통공사
 - 주 소: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2021.12.30. ~ 2023.12.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관련조서 생략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시설물 준공 후 서울교통공사로 무상귀속
아. 관계도서는 송파구청 도시계획과(☎02-2147-2992), 서울교통공사 토목사업소(☎02-6110-526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기관의 장
선람	

공람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홍보기획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02-2133-6431 문의 : ☎120